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69-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15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5)

2012. 9.

- 목 차 -

1. 성종실록 <2> 기사자료집 : 성종 10년 6월 ~ 성종 16년 1월 1

1. 성종실록 <2> 기사자료집

성종실록 <2> 기사자료집 : 성종 10년 6월 ~ 성종 16년 1월

날짜	내용	원문
성종 105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6월 8일 (계사) 2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모든 포(浦)의 염전(鹽田)이 본영(本營)과 서로의 거리가 요원(遙遠)하여 각성(角聲)은 비록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황(救荒)과 군수의 소금을 보급하는 데에 예비(預備)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포 군관(軍官)의 식량은 전부 어염(魚鹽)에 기대하고 있으니, 오래 된 염전은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옛날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 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 “諸浦鹽田, 與本營相距遙遠, 角聲雖未及聞, 救荒及補軍需鹽, 預備爲難。且諸浦軍官糧餉, 專仰魚鹽, 久遠鹽田, 不可輕革。請仍舊。”從之。
성종 105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6월 10일(을미) 1번째기사	제주(濟州)에 표류(漂流)했던 사람 김비의(金非衣)·강무(姜茂)·이정(李正) 등 세 사람이 유구국(琉球國)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지나온 바 여러 섬의 풍속(風俗)을 말하는 것이 매우 기이(奇異)하므로, 임금이 홍문관(弘文館)에 명하여 그 말을 써서 아뢰라고 하였다. 그 말에 이르기를, “우리들이 정유년(9711) 2월 1일에 현세수(玄世修)·김득산(金得山)·이청민(李清敏)·양성돌(梁成突)·조귀봉(曹貴奉)과 더불어 진상(進上)할 감자(柑子)를 배수(陪受)하여 같이 한 배에 타고 바다로 출범(出帆)하여 추자도(楸子島)로 향해 가다가, 갑자기 크게 불어오는 동풍(東風)을 만나 서쪽으로 향하여 표류하였습니다. 처음 출발한 날로부터 제 6일에 이르러서는 바닷물이 맑고 푸르다가, 제 7일부터 제 8일까지 1주야(晝夜)를 가니 혼탁(渾濁)하기가 뜨물과 같	○乙未/濟州漂流人金非衣、姜茂、李正等三人, 還自琉球國, 言所歷諸島風俗, 甚奇異。上令弘文館, 書其言以啓。其言曰: “俺等, 丁酉二月初一日, 與玄世修、金得山、李清敏、梁成突、曹貴奉, 陪受進上柑子, 同騎一船, 開洋向楸子島, 忽值東風大起, 西向漂流。自初發至第六日, 海水澄碧, 自第七日至八日, 行一晝夜, 渾濁如汙, 第九日, 又遭西風, 向南漂流, 海

았으며, 제 9일에 또 서풍(西風)을 만나서 남쪽을 향하여 표류해 가니 바닷물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 14일 제에 한 작은 섬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미처 기슭에 대이지 못하여 키가 부러지고 배가 파손되어 남은 사람은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고, 여러가지 장비도 모두 물에 빠져 잃어버렸으며, 우리들 세 사람은 한 판자에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탕(漂蕩)하는 사이에 마침 고기잡이 배 두 척이 있어서 각각 네 사람이 타고 앉아 있다가 우리들을 발견하고는 거두어 싣고 가서 섬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윤이시마(閔伊是麿)라고 【그곳 풍속에 섬을 일컬어 시마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인가(人家)가 섬을 둘러 살고 있고, 둘레는 이틀 길이 될 듯하며, 섬사람은 남녀 1백여 명으로 풀을 베어 바닷가에 여막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제주(濟州)를 출발한 때로부터 큰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 파도가 이마[類] 위를 지나고, 물이 배 가운데 짝 차서 뱃전이 잠기지 않은 것은 두어 판자뿐이었습니다. 김비의와 이정이 바가지로 가지고 물을 퍼내고, 강무는 노(櫓)를 잡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다 배멀미를 하여 누워 있어서 밥을 지을 수가 없어 한 방울의 물도 입에 넣지 못한지가 무릇 열나흘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섬사람이 쌀죽[稻米粥]과 마늘을 가지고 와서 먹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는 처음으로 쌀밥 및 탁주(濁酒)와 마른 바다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 이름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7일을 머문 뒤에 인가(人家)에 옮겨 두고서 차례로 돌려가며 대접을 하는데, 한 마을에서 대접이 끝나면 문득 다음 동네로 체송(遞送)하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우리들을 세 마을에 나누어 두고 역시 차례로 돌려가며 대접하는데, 무릇 술과 밥은 하루에 세끼였으며, 온 섬사람의 용모(容貌)는 우리 나라와 동일(同一)했습니다.

1. 그 나라 풍속은 귀를 뚫어 푸르고 작은 구슬로써 꿰어 2, 3촌쯤 드리우고, 또 구슬을 꿰어 목에 3, 4겹을 돌려서 1자[尺]쯤 드리웠으며, 남녀(男女)가 같이 하는데 늙은 자는 안했습니다.

水澄碧。第十四日，望一小島，未及泊岸，舵折船毀，餘人皆溺死，裝載盤纏，亦皆滄失，俺等三人，騎坐一板。漂蕩間，適有漁舟二隻，各有四人騎坐，見我輩，收載而去，到島岸。島名閔伊是麿。【其俗，謂島爲是麿。】人家，環島而居，周回可二日程，島人男女百餘名，刈草結廬於海濱，將俺等住止。俺等自發濟州，大風激浪過類，水滿舟中，舷不浸者數板。金非衣、李正，操瓠挹水去之，姜茂執櫓，餘皆眩暈而臥，不能炊爨，勺飲不入口者，凡十四日，至是島人，將稻米粥及蒜本來饋。自其夕，始饋稻米飯及濁酒、乾海魚，魚名皆不知。留七日，移置人家，輪次饋餉，一里饋訖，輒遞送次里。一月後，分置俺等於三里，亦輪次饋餉，凡饋酒食，一日三時，一島人容貌，與我國同一。其俗穿耳，貫以青小珠，垂二三寸許，又貫珠繞項三四匝，垂一尺許，男女同，老者否。一，男女，皆徒跣無鞋。一，男子絞髮，屈而疊之，束以苧繩，作髻於項邊，不着網巾。鬚長過臍，或絞而繞髻數匝。婦人髮亦長，立則及跟。短者及

	<p>1. 남자·여자 모두 다 맨발로 신이 없었습니다.</p> <p>1. 남자는 머리를 꼬아 곱쳐서 포개어 삼베 끈으로 묶어서 목 가에 상투를 틀었는데 망건(網巾)을 쓰지 않았습니니다. 수염은 길어서 배꼽을 지나갈 정도인데, 혹은 꼬아서 상투를 두어 곁을 들렀습니다. 부인(婦人)의 머리도 길어서 서면 발뒤꿈치까지 미치고 짧은 것은 무릎에 이르는데, 쪽을 찌지 않고 머리 위에 들렀으며, 옆으로 나무빗을 귀밑머리에 꽂았습니다.</p> <p>1. 가마·술·손가락·젓가락·소반·밥그릇·자기(磁器)·와기(瓦器)는 없고, 흙을 뭉쳐서 술을 만들어 햇빛에 쬐어 말려서 짚불로써 태워 밥을 짓는데, 5,6일이면 문득 과열(破裂)해 버립니다.</p> <p>1. 쌀[稻米]을 전용(專用)하고, 비록 조(粟)가 있더라도 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p> <p>1. 밥은 대나무 상자에 담아서 손으로 뭉쳐 덩어리를 만들되 주먹 크기와 같이 하고, 밥상은 없고 작은 나무 쟈(几)를 사용하여 각각 사람 앞에 놓습니다. 매양 밥을 먹을 때에는 한 부인이 상자를 맡아서 이를 나누어 주며 사람마다 한 덩어리씩인데, 먼저 나뭇잎을 손바닥 가운데 놓고 밥덩이를 그 나뭇잎 위에 얹어 놓고 먹으며, 그 나뭇잎은 연꽃잎과 같았습니다. 한 덩어리를 다 먹으면 또 한 덩어리를 나누어 주어 세 덩어리로 한도를 삼으나, 먹을 수 있는 자에게 덩어리 수를 계산하지않고 다 먹는 데에 따라 주었습니다.</p> <p>1. 염장(鹽醬)은 없고, 바닷물에 채소를 넣어서 국을 만들며, 그릇은 바가지[瓠子]를 사용하거나 혹은 나무를 파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p> <p>1. 술은 탁주(濁酒)는 있으나 청주(淸酒)는 없는데, 쌀을 물에 불려서 여자로 하여금 씹게 하여 죽같이 만들어 나무통에서 빚으며, 누룩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이 마신 연후에야 조금 취하고, 술잔을 바가지를 사용하며, 무릇 마실 때에는 사람이 한 개의 바가지를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는데, 양(量)에 따라 마시며 수작(酬酢)의 예가 없고, 마실 수 있는 자에게는 더</p>	<p>膝，不作髻，環統頭上，橫插木梳於鬢。一，無釜、鼎、匙、筋、盤、盂、磁、瓦器，塶土作鼎，曝日乾之，熏以藁火炊飯，五六日輒破裂。一，專用稻米，雖有粟，不喜種。一，飯盛以竹筥，搏而爲丸，如拳大，無食案，用小木几，各置人前。每食時，一婦人主筥分之，人一丸，先置本葉於掌中，以飯塊，加葉上而食之，其木葉如蓮葉焉。一丸盡，又分一丸，以三丸爲度，能食者不計丸數，隨盡隨給。一，無鹽醬，以海水，和菜作羹，器用瓠子，或剝木爲之。一，酒有濁而無淸，(漬) [漬]米於水，使女嚼而爲糜，釀之於木桶，不用麴釀。多飲然後微醉，酌用瓢子，凡飲時，人持一瓢，或飲或止，隨量而飲，無酬酢之禮，能飲者，又添爵焉。其酒甚淡，釀後三四日便熟，久則酸不用，芻一肴，用乾魚，或聶切鮮魚爲膾，加蒜菜焉。一，或漬米擣於步臼，塶而爲餅，如椶大，裹椶葉以藁束之，烹食之。一，其居，率作一室，無房與戶牖，前面稍軒舉，後面簷垂地，蓋用茅，無瓦，外無藩籬，寢用木床，無衾褥，藉用蒲席，所居室前，</p>
--	---	--

	<p>첨가합니다. 그 술은 매우 담담하며, 빛은 뒤 3, 4일이면 익고 오래 되면 쉬어서 쓰지 못하며, 나물 한가지로 안주를 하는데, 혹 마른 물고기를 쓰기도 하고, 혹은 신선한 물고기를 잘게 끊어서 회(膾)를 만들고 마늘과 나물을 더 하기도 합니다.</p> <p>1. 혹 쌀을 불려 보구(步臼)9712) 에 찼어서 이를 멩쳐 떡을 만들되 종려나무 잎의 크기와 같이 하고, 종려나무 잎으로 싸고 짚으로 묶어서 삶아 먹습니다.</p> <p>1. 그 거처는 모두 1실(室)을 만들고, 내실(內室)이 따로 없고 창[戶牖]이 없으며, 전면(前面)은 조금 높이 들려 있고, 후면(後面)은 처마가 땅에 드리워져 있으며, 대개 띠[茅]를 사용하고 기와가 없으며, 밖에는 울타리가 없고 잠자리는 목상(木床)을 사용하며, 이불과 요가 없고 포석(蒲席)을 깔아서 사용하며, 사는 집 앞에 따로 누고(樓庫)를 만들어 거둔 바의 벼를 쌓아 두었습니다.</p> <p>1. 관대(冠帶)가 없고 더우면 혹 종려나무 잎을 사용하여 삿갓 모양의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나라의 승립(僧笠)과 같았습니다.</p> <p>1. 삼[麻]·목면(木綿)이 없고, 양잠(養蠶)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모시[苧]를 짜서 베를 만들고, 옷을 만들되 직령(直領)과 같았으며 옷깃과 주름은 없고 소매는 짧고 넓으며, 염색(染色)은 남청(藍靑)을 쓰고, 속옷은 백포(白布) 세 폭을 써서 불기[臀]에 매었으며, 부인의 옷도 같았으나, 다만 속치마를 입고 속옷이 없으며 치마도 푸른 빛을 물들였습니다.</p> <p>1. 집에는 쥐·소·닭·고양이가 있으나, 소와 닭의 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곧 묻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르기를, ‘소·닭의 고기는 먹을 만한데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더니, 섬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비웃었습니다.</p> <p>1. 산에는 재목(材木)이 많고, 잡수(雜獸)가 없었습니다.</p> <p>1. 날짐승으로는 오직 비둘기와 황작(黃雀)뿐이었습니다.</p>	<p>別立樓庫，以貯所收敗之禾。一，俗無冠帶，暑則或用櫻葉，作笠狀，如我國僧笠。一，無麻、木綿，亦不養蠶，唯織苧爲布，作衣如直領，而無領及襞積，袖短而闊，染用藍靑。中裙用白布三幅，統繫於臀，婦人之服，亦同。但內着裳，而無中裙，裳亦染靑。一，家有鼠，畜牛雞貓，不食牛雞肉，死則輒埋之。俺等云：‘牛雞肉可食，不可埋。’島人唾而晒之。一，山多材木，無雜獸。一，飛禽惟鳩與黃雀而已。一，昆蟲，有龜、蛇、蟾、蛙、蚊、蠅、蝠、蝠、蜂、蝶、螳螂、蜻蜓、蜈蚣、蚯蚓、螢、蟹。一，有鐵冶，而不造耒耜，用小鍤剔田去草以種粟。水田則十二月間，用牛踏播種，正月間移秧，不鋤草，二月稻方茂，高一尺許，四月大熟早稻，四月畢刈，晚稻五月方畢刈。刈後根芟復秀，其盛愈於初，七八月收穫。未穫前，人皆謹慎，雖言語亦不厲聲，不蹙口爲嘯，或有捲草葉吹之以杖擬之，而禁，收穫後乃吹小管，其聲甚微細。一所穫稻，連階束之，置於樓庫，以竹枚鑷之，春以步臼。一，刈草及禾用鎌，斫用斧鑿子，</p>
--	--	---

	<p>1. 곤충(昆蟲)으로는 거북·뱀·두꺼비·개구리·모기·파리·박쥐·벌·나비·사마귀[螳螂]·잠자리·지네[蜈蚣]·지렁이·개똥벌레[螢]·게가 있었습니다.</p> <p>1. 철야(鐵冶)는 있으면서도 쟁기[耒耜]를 만들지 않고 작은 삽을 사용하여 밭을 파헤치고 풀을 제거하여 조[粟]를 심습니다. 수전(水田)은 12월 사이에 소를 사용하여 밟아서 파종(播種)을 하고, 정월 사이에 이앙(移秧)을 하되 풀을 베지 않으며, 2월에 벼가 바야흐로 무성하여 높이가 한 자쯤 되고, 4월에 무르익는데, 올벼[早稻]는 4월에 수확을 마치고 늦벼[晚稻]는 5월에 바야흐로 추수를 마칩니다. 벼 뒤에는 뿌리에서 다시 자라나 처음보다 더 무성하며, 7, 8월에 수확합니다. 수확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근신(謹慎)하여, 비록 말을 하더라도 소리를 크게 하지 아니하고, 입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지 아니하며, 혹 풀잎을 말아서 불면 막대기로 이를 금하다가, 수확을 한 뒤에야 작은 피리[管]를 부는데, 소리가 매우 가늘었습니다. 한번 수확한 벼는 이삭을 연달아 묶어서 누고(樓庫)에 두고, 대나무 막대기로 이를 털어서 디딜방아로 짚습니다.</p> <p>1. 풀과 벼를 베는 데에는 낫[鎌]을 쓰고, 쪼개거나 찍는 데에는 도끼와 무자(鏟子)를 사용하며, 또 작은 칼이 있고, 궁시(弓矢)와 부극(斧戟)9713)은 없으며, 사람들은 작은 창(鎗)을 가지고 기거(起居)하며 농지를 아니하였습니다.</p> <p>1. 사람이 죽으면 관(棺) 속에 앉혀서 언덕의 석굴[尸] 밑에 두고 흙으로 묻지 않았으며, 만약 언덕의 석굴이 넓으면 대여섯 개의 관을 함께 두었습니다.</p> <p>1. 그 지역은 따뜻하여 겨울에도 서리와 눈이 없고 초목(草木)이 마르지 아니하며 또 얼음이 없습니다. 섬사람들은 홑옷 두 벌을 입고 여름에는 다만 하나를 입는데 남녀가 같았습니다.</p> <p>1. 채소로는 마늘·가지·참외·토란[母鴨]·생강이 있는데, 가지의 줄기 높이가 3, 4척이나 되고 한 번 심으면 자손(子孫)에게까지 전하는데 결실(結實)은 처음과 같고, 너무 늙으면 가운데를 찍어 버리나 또 움이 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p>	<p>又有小刀，無弓矢斧戟，人持小鎗，於起居不捨。一，人死則坐置棺中，置於厓厂下，不埋之以土，若厓厂廣，則并置五六棺。一，其土溫燠，冬無霜雪，草木不彫，又無冰。島人着單衣二，夏則只着一，男女同。一，蔬有蒜、茄子、眞瓜、蹲鴟、生薑，茄子莖高三四尺，一種則傳子孫，結實如初，太老則中斫之，又生芽蘗結實。一，本有烏梅、桑、竹。一，果有青橘、小栗，橘四時開花。一，無燈燭，夜則束竹爲炬以照之。一，家無溷廁，遺矢於野。一，織布用箴杼，模樣與我國同，其他機械不同，升數麤細，亦與我國同。一，掘地作小井，汲水用瓢罌。一，舟有柁棹無檣，但順風懸帆而已。一，其俗無盜賊，道不拾遺，不相詈罵喧鬪，撫愛孩兒，雖啼哭，不加手焉。一，俗無酋長，不解文字，俺等與彼言語不通。然久處其地，粗解所言。俺等思念鄉土，常常涕泣，其島人，拔新稻莖，比舊稻而示之，東向而吹之，其意，蓋謂新稻如舊稻，而熟當發還也。凡留六朔，至七月晦，候南風，島人十三名，將俺等齋糧及酒</p>
--	--	---

	<p>다.</p> <p>1. 나무는 오매(烏梅)·뽕나무·대나무가 있었습니다.</p> <p>1. 과실로는 청귤(靑橘)·작은 밤[栗]이 있는데, 곁은 사시(四時)로 꽃이 피었습니다.</p> <p>1. 등촉(燈燭)이 없고, 밤이면 대[竹]를 묶어서 횃불을 만들어 비추었습니다.</p> <p>1. 집에는 뒷간[溷廁]이 없고 들에다 그냥 눕니다.</p> <p>1. 베를 짤 때에는 성서(箒抒)9714) 를 사용하는데 모양은 우리 나라와 같았고, 그 밖에 다른 기계는 같지 않았으며, 승수(升數)9715) 와 추세(麤細)9716) 도 우리 나라와 같았습니다.</p> <p>1. 땅을 파서 작은 우물을 만들고 물을 길어 올릴 때에는 바가지와 병을 썼습니다.</p> <p>1. 배는 키와 돛대만 있고 노(櫓)는 없는데 순풍(順風)에만 돛을 달 뿐이었습니다.</p> <p>1. 그 풍속에 도적이 없어서 길에서 떨어진 것을 줍지 아니하고, 서로 꾸짖거나 큰 소리로 싸우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를 어루만져 사랑하여 비록 울더라도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p> <p>1. 풍속에 추장(酋長)이 없고, 문자(文字)를 알지 못했으며, 우리들은 저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땅에 있으니, 조금은 그 말하는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고향을 생각하고 항상 울었는데, 그 섬 사람이 새 벼의 줄기를 뽑아서 옛날 벼와 비교해 보이고는 동쪽을 향하여 붙었는데, 그 뜻은 대개 새 벼가 옛 벼와 같이 익으면 마땅히 출발하여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말함이었습니다.</p> <p>무릇 6삭(朔)을 머물고, 7월 그믐에 이르러 남풍(南風)이 불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섬사람 13명이 우리들과 같이 양식과 탁주(濁酒)를 준비해 가지고 같이 한 척의 배를 타고서 1주야(晝夜) 반을 가니,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소내시마(所乃是麿)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자(護送者)들은 8,9일</p>	<p>醪, 同騎一船, 行一晝夜半, 至一島。島名所乃是麿, 護送者, 留八九日, 還本島。去所乃是麿狹而長, 周回可四五日程。其言語、飲食、衣服、居室、土風, 大概與閩伊島同, 供饋俺等亦同。一, 婦人穿鼻兩旁, 貫小黑木, 狀如鬚焉。足脛繞繫小青珠, 其廣數寸許。一, 用稻與粟, 粟居稻三分之一。所收禾, 積於近居閑地, 高俱二丈許。同里人, 聚積于一處, 多者或至四五十餘所。一, 家有鼠, 畜牛、雞、貓、狗, 屠牛食之, 不食雞肉。一, 山有豕, 島人持槍牽狗捕之, 熏其毛, 割而烹之, 獵者獨食, 雖至親不與, 與人則難獲云。一, 果有柚子、小栗、橡栗。一, 菜有蹲鴟、女瓜、薑、蒜、茄子、瓠。一, 山多材木, 或輸載買賣於他島。又有冬栢樹, 高數丈開花。一, 有薯蕷, 其長尺餘, 如人身大, 兩女子共戴一本, 斧斷之, 烹而食之。一, 飛禽有烏鳩、鷓鴣、鷓、鶯、黃雀。一, 昆蟲有蚊、蠅、蟾、蛙、蚰蝸, 其俗烹蝸而食之, 有巨蚰長五六尺, 其大如椽, 有抱兒女見蝸, 以兒足加蝸背, 而拊之蝸尾, 大不</p>
--	--	--

	<p>동안을 머물다가 본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내시마는 좁으면서 길었는데, 들레는 4, 5일정(日程)이 될 만하였고, 그 언어(言語)·음식(飲食)·의복(衣服)·거실(居室)·풍토(風土)는 대개 운이시마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p> <p>1. 부인은 코를 양쪽으로 뚫어 조그마한 검은 나무를 꿰었는데, 모양이 검은 사마귀와 같았고, 정강이에는 조그마한 푸른 구슬을 둘러 매었는데, 그 넓이가 수촌(數寸)쯤이었습니다.</p> <p>1. 벼와 조를 쓰는데 조는 벼의 3분의 1쯤 되었습니다.</p> <p>1. 수확한 나락은 가까이 있는 빈터에 쌓아 두었는데 높이가 모두 두 길쯤이었고, 같은 마을 사람은 한곳에 모여서 사는데 많은 것은 4, 50여 소(所)에 이르렀습니다.</p> <p>1. 집에는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개를 기르는데, 소는 도살하여 이를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p> <p>1. 산에는 산돼지가 있는데 섬사람이 창을 가지고 개를 끌고 가서 사냥해 잡아다가 그 털을 태우고, 베어서 삶아 먹으나, 사냥한 자만 먹고 비록 지극히 친한 자일지라도 주지 않으니, 만일 남에게 주면 잡기가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p> <p>1. 과실로 유자(柚子)·작은 밤·도토리[橡栗]가 있었습니다.</p> <p>1. 채소로는 토란·치과(冬瓜)·생강·마늘·가지·호박이 있었습니다.</p> <p>1. 산에는 재목(材木)이 많아서 혹은 실어내어 다른 섬에 무역(貿易)하기도 하고, 또 동백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두어 길[丈]이며 꽃이 피었습니다.</p> <p>1. 마[薯蕷]가 있는데 그 길이가 한 자[尺] 남짓하고 사람의 몸 크기와 같으며, 두 여자가 함께 하나를 이고 도끼로 끊어서 삶아 먹습니다.</p> <p>1. 날짐승으로는 까마귀·비둘기·바다가마우지[鷓鴣]·갈매기·해오리·황작(黃雀)이 있었습니다.</p>	<p>能掉。餘同閩伊島。俺等凡留五朔，至十二月晦，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同騎一小船，行一晝至一島。名捕月老麻伊是鷹。其地平衍無山，皆沙石之地，周回比所乃島稍小。其言語、飲食、衣服、居室、土風，大概與閩伊島同，供饋俺等，亦同。一，有黍、粟、牟、麥，無水(日)[田]稻米，貿易於所乃島。一，種牟、麥，當秋月，用牛糞，以手掬置於田，用鍤起土覆之，二三月方熟。刈畢後，治田種之九種粟，亦於十月間播種，二三月收穫訖，後種之，七八月又收穫。一，飛禽有鳩、黃雀、鷗。一，家有鼠，畜牛、雞、貓，屠牛而食，不食雞肉。一，菜有茄子、蹲鴟、蒜、瓠。一，男女穿耳，貫小青珠，亦串珠掛頂。一，無材木，構家，皆取於所乃島而爲之，又無果木。一，有蚊、蠅、蝸，其俗烹蝸而食之，餘同閩伊島。俺等，留一朔，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騎一小船，行一晝，至一島。島名，捕刺伊是鷹。護送人，翌日還本島。其地平衍無山，周回可二日程。人家僅四十餘，其言語、衣服、飲食、居</p>
--	--	--

	<p>1. 곤충으로는 모기·파리·두꺼비·개구리·뱀·달팽이가 있었는데, 그 풍속에는 달팽이를 삶아서 먹었으며, 큰 뱀의 길이는 5, 6척이나 되고 크기는 서까래와 같았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구렁이를 보고서 아이의 발을 구렁이 등에 올려 놓고 구렁이의 꼬리를 어루만졌는데 커서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윤이도(閔伊島)와 같았습니다.</p> <p>우리들은 무릇 5삭(朔)을 머물다가, 12월 그믐에 이르러서 남풍(南風)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과 같이 한 척의 작은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갔더니, 한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 <p>그 섬의 이름은 포윌로마이시마(捕月老麻伊是麿)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서 산이 없었는데 모두 다 모래와 돌로 된 땅이었고, 들레는 소내도(所乃島)에 비교하여 조금 작았습니다. 그 언어와 의복·거실·풍토는 대개 윤이도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p> <p>1. 기장·조·밀·보리가 있고 논과 벼는 없어서, 소내도에서 무역(貿易)해 온다고 하였습니다.</p> <p>1. 밀·보리를 심고, 가을이 되면 우분(牛糞)을 사용하되 손으로 움켜서 밭에 넣고, 삽을 사용하여 흙을 일으켜서 덮으며, 2, 3월에 바야흐로 익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밭을 일구어 심는데 아홉 종류의 곡식을 심고, 또 10월 사이에 파종(播種)하여 2, 3월에 수확해서 마치고, 다시 심어서 7, 8월에 또 수확하였습니다.</p> <p>1. 날짐승으로는 비둘기·황작·갈매기가 있었습니다.</p> <p>1. 집에는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며, 소를 잡아 먹으나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p> <p>1. 채소는 가지·토란·마늘·박[瓠]이 있었습니다.</p> <p>1. 남녀가 귀를 뚫어 조그마한 푸른 구슬을 꿴고 또한 구슬을 꿴어서 목에 걸었습니다.</p>	<p>室、土風，大概與閔伊島同，供饋俺等，亦同。一，其俗以青珠，繞繫臂及脛，男女同。一，飛禽有鳩、黃雀、鷗。一，有黍、粟、麩、麥，無稻，稻米貿易於所乃島。一，家有鼠，畜牛、雞、貓，屠牛而食之，不食雞肉。一，菜有茄子、蹲鴟、蒜、瓠。一，無材木，又無果木。一，昆蟲有蚊、蠅。無龜、蛇、蟾、蛙，餘同閔伊島。留一朔，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同駕小船，行一晝，至一島。島名，欸尹是麿。護送人，翌日還本島。其地平衍無山，周回可一日程。其言語、飲食、衣服，亦與閔伊島同。一，有黍、粟、麩、麥，無稻，稻米貿易於所乃島。一，飛禽有鳩黃、雀、鷗。一，家有鼠，畜牛、雞、貓，屠牛而食之，不食雞肉。一，菜有蒜、蹲鴟。一，無果木、材木。一，昆蟲有蚊、蠅、蝸，其俗烹蝸而食之，餘同閔伊島。留一朔，候南風，島人八名，將俺等，同騎一船，行一晝夜半，至一島。島名，他羅馬是麿。平衍無山，周回可一日程，人居五十餘戶。其言語、飲食、居室、土風，大概與閔伊島</p>
--	--	--

	<p>1. 재목은 없고 집을 지을 때에는 모두 다 소내도에서 가지고 와서 짓는다고 하였으며, 또 과일 나무도 없었습니다.</p> <p>1. 모기·파리·달팽이가 있었는데, 그 풍속에 달팽이를 삶아서 먹는다고 하며, 나머지는 윤이도와 같았습니다.</p> <p>우리들은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한 척의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가서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p> <p>섬의 이름은 포라이시마(捕刺伊是鷹)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2일정이 될 만 하였습니다. 인가(人家)는 겨우 40호 남짓하고, 언어·의복·음식·거실·토풍(土風)이 대개 윤이도와 같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p> <p>1. 그 풍속은 푸른 구슬로써 팔 및 정강이를 둘러감아 매었는데 남녀가 같았습니다</p> <p>1. 날짐승으로는 비둘기·황작·갈매기가 있었습니다.</p> <p>1. 기장·조·밀·보리가 있고 벼는 없었으며, 쌀은 소내도에서 무역해 온다고 하였습니다.</p> <p>1. 집에는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며, 소를 잡아 먹는데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p> <p>1. 채소는 가지·토란·마늘·박이 있었습니다.</p> <p>1. 재목이 없고, 과일나무도 없었습니다.</p> <p>1. 곤충은 모기·파리가 있고, 거북이·뱀·두꺼비·개구리는 없었으며, 나머지는 윤이도와 같았습니다.</p> <p>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작은 배에 올라서 하루 낮 동안을 가니, 한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 <p>섬의 이름은 홀윤시마(歙尹是鷹)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은 평평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1일정이 될 만하였</p>	<p>同。一，有黍、粟、粳、麥，無稻。一，無材木，或取於所乃島，或取於伊羅夫島，又無果木。一，其俗用苧布，染藍擣而爲衣。其色如彩段。一，飛禽有鳩、黃雀、鷗。一，昆蟲、家畜，與前島同。一，菜有蒜、蹲鴟。留一朔，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同騎小船，行一晝，至一島。島名，伊羅夫是鷹。護送人，翌日還本島。周回可二日程。其言語、飲食、居室、土風，大概與閩伊島同，其衣服，與他羅馬島同，(洪) [供] 饋亦同。一，婦人，掛水精大珠於頂。一，有黍粟粳麥，亦有稻。稻居粳麥十分之一。一，少有山谷，有櫻、桑、竹，亦有材木。一，家有鼠，畜牛、雞、貓，屠牛而食之，不食雞肉。釀酒用米麴。一，飛禽有鷗、鷺、黃雀、鳩。一，昆蟲有蚊、蠅、蝸，烹蝸而食之，無蛇，餘同閩伊島。一，菜有蒜、蹲鴟、薑。留一朔，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同騎小船，行一晝，至一島。島名覓高是鷹。護送人，翌日還本島。其地平衍無山，周回五六日程。其言語、飲食、居室、土風，大概與閩</p>
--	---	--

	<p>으며, 그 언어·음식·의복은 또한 윤이도와 같았습니다.</p> <p>1. 기장·조·밀·보리가 있고, 벼는 없는데 쌀은 소내도에서 무역한다고 합니다.</p> <p>1. 날짐승은 비둘기·황작·갈매기가 있었습니다.</p> <p>1. 집에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며, 소는 잡아 먹어도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니다.</p> <p>1. 채소는 마늘·토란이 있었습니다.</p> <p>1. 과일나무와 재목이 없었습니다.</p> <p>1. 곤충은 모기·파리·달팽이가 있었는데, 그 풍속에 달팽이를 삶아 먹으며, 나머지는 윤이도와 같았습니다.</p> <p>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8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한 배를 타고 1주야(晝夜)반을 가서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타라마시마(他羅馬是麿)라고 하였습니다. 평평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1일정이 될 만하며, 사람은 50여 호가 살고 있었고, 그 언어·음식·거실·토풍이 대개 윤이도와 같았습니다.</p> <p>1. 기장·조·밀·보리가 있고, 벼는 없었습니다.</p> <p>1. 재목이 없어서 혹은 소내도에서 가져오고 혹은 이라부도(伊羅夫島)에서 취해온다고 하며, 또 과일 나무도 없었습니다.</p> <p>1. 그 풍속에 저포(苧布)를 사용하여 남색을 물들여 두드려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빛깔은 채단(彩段)과 같았습니다.</p> <p>1. 날짐승으로는 비둘기·황작·갈매기가 있었습니다.</p> <p>1. 곤충과 가축(家畜)은 앞의 섬들과 같았습니다.</p> <p>1. 채소는 마늘·토란이 있었습니다.</p> <p>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작은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가서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p> <p>섬의 이름은 이라부시마(伊羅夫是麿)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p>	<p>伊島同, 衣服與他羅馬島同, 供饋俺等亦同。釀酒與伊羅夫島同, 有稻、黍、粟、牟、麥。一, 炊飯用鐵鼎, 無足似釜, 乃貿易於琉球國者也。一, 婦人掛珠於項, 亦與伊羅夫島同。一, 家有溷廁。一, 家有鼠, 畜牛、雞、猫、狗, 屠牛食之, 不食雞肉。一, 飛禽有(鳥) [鳥]、鳩、黃雀、鷗鷺。一, 昆蟲有龜、蛇、蟾、蛙、蚊、蠅、蝸, 烹蝸食之, 餘同聞伊島。一, 菜有蒜、西瓜、茄子、蹲鴟。一, 有稷、桑、竹, 山多雜木, 其名皆不知。留一朔候南風, 島人十五名, 將俺等, 同騎一船, 行二晝夜半, 至(琉球國) [琉球國], 海勢洶湧, 波濤險惡, 島人亦皆病暈。國王褒賞護送人, 人各賜青紅綿布, 厚饋酒食, 醉倒終日。其人等, 以所賜綿布, 造衣穿着, 留一月, 還本島。國人及通事, 來問俺等: ‘爾是何國人?’ 俺等答曰: ‘朝鮮人。’ 又問曰: ‘爾釣魚漂流至此乎?’ 俺等共議答曰: ‘俱係朝鮮國海南人, 輸運進上米, 向京都, 遭風至此。’ 通事將俺等言, 開寫而去, 達于國王, 俄而遣數官人, 迎致俺等, 處於一館。距海未</p>
--	---	--

	<p>섬으로 돌아왔습니다. 들레는 2일정이 될 만하고, 그 언어·음식·거실·토풍은 대개 윤이도와 같았으며, 그 의복은 타라마도와 같고,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p> <p>1. 부인은 수정(水精)으로 된 큰 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p> <p>1. 기장·조·밀·보리가 있고, 또한 벼도 있었는데 벼는 보리의 10분의 1이었습니다.</p> <p>1. 작은 산골짜기가 있어서 종려나무·뽕나무·대나무가 있고, 또한 재목도 있었습니다.</p> <p>1. 집에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며, 소는 잡아 먹는데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술을 빚는 데에는 쌀 누룩[米麴]을 사용하였습니다.</p> <p>1. 날짐승으로는 갈매기·해오라기·황작·비둘기가 있었습니다.</p> <p>1. 곤충으로는 모기·파리·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를 삶아 먹고 뱀은 없으며 나머지는 윤이도와 같았습니다.</p> <p>1. 채소는 마늘·토란·생강이 있었습니다.</p> <p>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작은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가서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p> <p>섬의 이름은 먹고시마(覓高是鷹)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서 산이 없고, 들레는 5, 6일정이었으며, 그 언어·음식·거실·토풍은 대개 윤이도와 같았고, 의복은 타라마도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술을 빚는 것은 이라부도와 같았으며, 벼·기장·조·밀·보리가 있었습니다.</p> <p>1. 밥을 짓는 데에는 쇠 솥[鐵鼎]을 사용하는데, 발은 없고 가마와 비슷하였으며, 이는 곧 유구국(琉球國)에서 무역한 것이었습니다.</p> <p>1. 부인은 구슬을 목에 걸었는데 또한 이라부도와 같았습니다.</p> <p>1. 집에는 뒷간이 있었습니다.</p>	<p>五里，以板蓋屋，有門戶窓壁，外有石牆，高二丈，牆有門，夜則加扃鑰。又有官舍在傍，有守令二人，監考二人，別有一庫，藏貯財物、錢布、魚鹽。凡出納，守令監之，通事云：‘此猶汝國郡邑之有官廳也。’供饋俺等，日三時，亦有酒。一，家受五日糧米酒醪魚鹽於官廳，供饋訖，次家，又受而輪次供饋。率五六日，守令，一見俺等，饋酒肴，又教館人，常時饋餉豐厚。俺等適見國王之母，出遊，乘漆輦，四面垂簾，舁者幾二十人，皆着白苧衣，以帛裹首。軍士持長劍，佩弓矢，擁衛前後，幾百餘人，吹雙角、雙太平嘯，放火砲。美婦四五人，着綵段衣，表着白苧布長衣。俺等，出道傍拜謁，駐輦以二鑊瓶，盛酒，酌以髹木器俺等，其味與我國同。有小郎，稍後別行，年可十餘歲，貌甚美，髮垂後不辮，着紅絹衣束帶，乘肥馬。執鞵者皆着白衣，騎馬前導者四五人，扶擁左右者，亦甚衆。衛士持長劍者，二十餘人，持傘者，竝馬而行，以障日。俺等，亦拜謁見，小郎下馬，以鑊瓶盛酒饋之，飲訖，小郎上馬去。</p>
--	---	---

	<p>1. 집에는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개를 기르며, 소는 잡아 먹어도 닭고기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p> <p>1. 날짐승은 새·비둘기·황작·갈매기·해오라기가 있었습니다.</p> <p>1. 곤충은 거북이·뱀·두꺼비·개구리·모기·파리·달팽이가 있었는데, 달팽이를 삶아 먹었으며, 나머지는 윤이도와 같았습니다.</p> <p>1. 채소는 마늘·수박·가지·토란이 있었습니다.</p> <p>1. 종려나무·뽕나무·대나무가 있고, 산에는 잡목이 많았으나 그 이름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p> <p>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1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한 척의 배를 타고 2주야 반을 가서 유구국(琉球國)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닷물의 기세가 용솨음치고, 파도(波濤)가 험악(險惡)하여, 섬사람도 모두 배멀미를 했습니다.</p> <p>유구국(琉球國)의 국왕(國王)이 호송인을 포상(褒賞)하여 각각 청홍 면포(靑紅綿布)를 하사(下賜)하고, 술과 밥을 후하게 먹이어 종일토록 취해 있었으며, 그 사람들은 하사받은 바 면포로써 옷을 만들어 입고 한 달을 머물다가 본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라 사람과 통사(通事)가 와서 우리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므로, 우리들이 대답하기를, ‘조선 사람이다.’라고 하니, 또 묻기를, ‘너희들은 고기잡이를 하다가 표류되어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하므로, 우리들은 같이 의논하여 대답하기를, ‘다 함께 조선국 해남(海南) 출신 사람인데, 진상(進上)할 쌀을 싣고 경도(京都)로 향해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통사는 우리들이 한 말을 써가지고 국왕에게 아뢰었는데, 조금 있다가 두어 관인(官人)을 보내어 와서 우리들을 맞아 한 객관(客館)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 집은 바다와의 거리는 5리(里)가 되지 못했는데, 판자로써 집을 덮었고, 문호(門戶)와 창벽(窓壁)이 있었으며, 돌 담장이 있었는데 높이가 두 길이요, 담장에 문이 있어 밤에는</p>	<p>國人云：‘國王薨，嗣君年幼，故母后臨朝，小郎年長，則當爲國王。’一，七月十五日，諸寺刹造幢蓋，或用彩段，或用彩繪，其上作人形及鳥獸之形，送于王宮。居民選男子少壯者，或着黃金假面，吹笛打鼓，詣王宮，笛如我國小管，鼓樣亦與我國同。其夜，大設雜戲，國王臨觀，故男女往觀者，填街溢巷，馱載財物，詣宮者亦多。一，自海岸距王宮，十餘里，俺等遙望，一殿甚高，問之，乃國王所居也。人家或蓋瓦，然板屋甚多。一，男女推髻於頂邊，以帛裹之，庶人皆白苧衣。婦人推髻於腦後，皆着白苧布衫，白苧布裳，或着白苧布長衣，其貴者亦服綵段，有襦襖兒、襦裳。其守令，用班染繪裹髻，着白細苧布，衣帶紅染帛，出則騎馬，從者數人。一，水田陸田，相半，而陸田稍多。水田則冬月播種，五月稻皆熟收穫訖，又以牛踏之，更播種，七月移秧，秋冬間又收穫。陸田則用小鍬治之，種粟，亦於冬月始播，五月收穫，六月更播種，八月始垂穎向熟。一，飯用稻米，又用鹽醬作羹，和以菜，或用肉。一，酒有清濁，盛</p>
--	---	---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또 관사(官舍)가 곁에 있었는데, 수령(守令) 두 사람과 감고(監考) 두 사람이 있었고, 따로 하나의 창고를 두어 재물(財物)·전포(錢布)·어염(魚鹽)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무릇 출납(出納)하는 데에는 수령이 이를 감독하였는데, 통사가 이르기, ‘이것은 너희 나라에 군읍(郡邑)의 관청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을 대접하는 데에는 매일 세 끼이고, 술도 있었습니다.

1. 한 집에서 5일의 양미(糧米)와 탁주(濁酒)와 생선젓을 관청에서 받아 대접하기를 마치면, 다음 집에서 또 받아서 윤차(輪次)로 대접하였습니다. 대개 5, 6일마다 수령이 한 번 우리들을 찾아와 술과 안주를 대접했고, 또 관인(館人)으로 하여금 상시(常時)로 풍후(豐厚)하게 대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마침 국왕의 어머니가 출유(出遊)하는 것을 보았는데, 칠련(漆輦)을 타고 사면(四面)에 발을 드리웠으며, 맨 자가 거의 20인으로 모두가 흰 저의(苧衣)를 입고 비단으로 머리를 썼습니다. 군사는 긴 칼을 가지고 활과 화살을 찻는데, 앞뒤를 옹위(擁衛)한 자가 거의 1백여 인이었고, 쌍각(雙角)·쌍태평소(雙太平嘯)를 불었으며, 화포(火砲)를 쏘았습니다. 아름다운 부인 4, 5인이 채단(綵段) 옷을 입고, 곁에는 백저포(白苧布)의 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들이 길 곁에 나가서 배알(拜謁)하니, 연을 멈추고 두 개의 납병(鐵瓶)에다 술을 담아서 검은 칠을 한 목기(木器)로써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그 맛이 우리 나라의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소랑(小郎)이 조금 뒤에 따로 갔는데, 나이는 10여 세가 될 만하고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머리를 뒤로 드리우고 땅지 않았으며, 붉은 비단옷을 입고 띠를 묶었으며, 살찐 말을 탔습니다. 말굴레를 잡은 자는 모두 다 흰옷을 입었고,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4, 5인이며, 좌우(左右)에서 부옹(扶擁)하는 자도 매우 많았습니다. 위사(衛士)로서 긴 칼을 가진 자가 20여 인이요, 일산(日傘)을 가진 자는 말을 나란히 타고 가면서 햇빛을 막았습니다. 우리들이 또한 배알하여 보이니 소랑이 말에서 내리어 납병에

以鐵瓶，酌以銀鍾，味如我國。又有南蠻國，酒色黃，味如燒酒，甚猛冽，飲數鍾則大醉。一，有寺刹，以板爲蓋。內施漆，有佛像，皆黃金，居僧髡首，或緇衣、或白衣，其架娑，與我國同。一，飯盛漆木器，羹盛小磁器，又有磁櫟，有筋而無匙，筋則木也。一，國中有市，綵段、繒帛、苧布、生苧、梳、剪刀、針、菜蔬、魚肉、鹽、醢，南蠻國班繒、班緜布、檀香、白經黑緯緜布、藤唐青黑白綿布、磁器等物。一，唐人商販來有因居者，其家，皆蓋瓦，制度宏麗，內施舟簾，堂中皆設交倚，其人皆着甘套，衣則如琉球國，見俺等無笠，贈甘套。一，國人皆徒跣，不着鞋。一，其通事，必使日本人在國者爲之。一，江南人及南蠻國人，皆來商販，往來不絕，俺等皆目覩。南蠻人推髻，其色深黑，殊異常人，其衣服與琉球國同，但不裹帛於首。一，有弓、矢、斧、鉅、刀、劍、鏃、鏃、鏃、甲冑，甲或用鐵，或用皮。一，軍士以鐵裹脛，或用皮着漆，如行纏焉。一，其土溫燠，與閩伊島同。一，有松、椶、竹，其餘

	<p>다 술을 담아서 대접하는데, 마시기를 마치자 소량은 말에 올라서 갔습니다. 국인(國人)이 이르기를, ‘국왕(國王)이 흥(薨)하고, 사군(嗣君)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모후(母后)가 임조(臨朝)하게 되었는데, 소량이 나이가 들면 마땅히 국왕이 될 것이다.’라 하였습니다.</p> <p>1. 7월 15일에는 모든 사찰(寺刹)에서 당개(幢蓋)9717) 를 만드는데, 혹은 채단(彩段)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채증(彩繒)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인형(人形) 및 조수(鳥獸)의 형상을 만들어 왕궁(王宮)에 보냈습니다. 거민(居民)은 남자 가운데 소장(少壯)한 자를 뽑아서 혹은 황금 가면(假面)을 쓰고 피리[笛]를 불고 북을 치면서 왕궁으로 나아가는데, 피리는 우리 나라의 작은 피리[管]와 같고, 북 모양도 우리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크게 잡희(雜戲)를 벌이고 국왕이 임석하여 관람하였으므로, 남녀로 가서 보려는 자가 길을 메우고 거리에 넘쳤으며, 재물을 말에 싣고 왕궁으로 나아가는 자도 많았습니다</p> <p>1. 해안(海岸)에서 왕궁과의 거리는 10여 리였는데, 우리들이 멀리 바라보자 한 전각이 매우 높으므로 물어보았더니, 곧 국왕의 거처라고 하였으며, 인가(人家)는 간혹 개와(蓋瓦)였으나 판옥(板屋)도 매우 많았습니다.</p> <p>1. 남녀가 상투를 이마의 가장자리에 틀어 올렸는데, 비단으로 싸고, 서인(庶人)은 모두 다 백저(白苧) 옷을 입었습니다. 부인은 머리 뒤에 머리카락을 쪽지어 올렸고, 모두 다 백저포(白苧布)의 적삼과 백저포의 치마를 입었고, 혹은 백저포의 장옷을 입었으며, 그 귀한 자는 또한 채단을 입었고 유오아(襦襖兒)·유상(襦裳)도 있었습니다. 그 수령은 아롱지게 물들인 비단을 사용하여 상투를 싸고 백세저포(白細苧布)를 입었으며, 의대(衣帶)는 붉은 물을 들인 비단이고, 나갈 때에는 말을 타며 종자(從者)가 수인(數人)이었습니다.</p> <p>1. 눈과 발은 서로 반반이었는데, 발이 조금 많고 눈은 겨울에 파종을 해서 5월에는 벼가 다 익어 수확을 마치며, 또 소[牛]로서 이를 밟아 다시 파종을</p>	<p>雜木, 不知名。 一, 家有鼠, 畜馬、牛、羔、猫、猪、狗、雞、鵠鵝、鴨, 屠馬、牛食之, 或賣於市, 亦食雞。 飛禽有烏、鵲、黃雀、鷹、燕、鷗、鷓、鷯、鷓。 一, 菓有梅、桃、柚子、青橘。 一, 菜有蹲鴟、茄子、眞瓜、冬瓜、菹、葱、蒜、葵、瓠、芭蕉。 一, 昆蟲有蚊、蠅、蟾、蛙、龜、蛇、蝸、蜂、蝶、螳螂、蜻蜓、蠃、蟀、蜈、蚣、蜘蛛、蟬、臭蟲、蚯蚓、螢, 亦有似蠱而大者, 人好食之, 或賣於市, 又有蝙蝠。 俺等凡留三朔, 語通事請還本國。 通事達國王, 國王答曰: ‘日本人性惡, 不可保, 欲遣爾江南。’ 俺等前此問於通事, 知日本近, 江南遠, 故請往日本國。 適有日本霸家臺人新伊四郎等, 以商販來到, 請于國王曰: ‘我國與朝鮮通好, 願率此人, 保護還歸。’ 國王許之, 且曰: ‘在途備加撫恤, 領回。’ 仍賜俺等錢一萬五千文、胡椒一百五十斤、青染布唐繡布各三匹, 又賜三朔糧米五百六十斤、鹽醬、魚醢、莞席、漆木器、食案等物件。 八月初一日, 新伊四郎等百餘人, 將俺等, 同駕一大船, 行四</p>
--	--	--

	<p>해서 7월에 이양(移秧)하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또 수확을 하였습니다. 밭은 작은 삽으로 이를 일구어서 조를 심는데, 또한 겨울에 처음으로 파종하고 5월에 수확하고, 6월에 다시 파종하면 8월에 처음으로 이삭을 드리우고 익어 갑니다.</p> <p>1. 밥은 쌀을 사용하고 또 염장(鹽醬)을 사용하여 국을 만들며, 채소를 섞는데 혹은 고기를 쓰기도 합니다.</p> <p>1. 술은 청주와 탁주가 있는데, 납병에다 담고 은술잔[銀鍾]으로써 잔질하며 맛은 우리 나라와 같았습니다. 또 남만국(南蠻國)의 술이 있었는데 빛은 누렇고 맛은 소주(燒酒)와 같으며, 매우 독하여 두어 종지를 마시면 크게 취하게 됩니다.</p> <p>1. 사찰은 판자로써 덮개를 하고, 안에는 옷칠을 했으며, 불상(佛像)이 있는데, 모두 다 황금(黃金)이었고, 거승(居僧)은 머리를 깎았으며, 치의(緇衣)9718) 도 입고 백의(白衣)도 입었으며 그 가사(袈裟)는 우리 나라와 같았습니다.</p> <p>1. 밥은 옷칠한 목기에 담고, 국은 작은 자기(磁器)에 담으며, 또 자접(磁楪)9719) 이 있고, 젓가락은 있으나 숟가락은 없는데 젓가락은 나무였습니다.</p> <p>1. 국중(國中)에 시장이 있는데, 채단(綵段)·증백(繒帛)·저포(苧布)·생저(生苧)·빗[梳]·전도(剪刀)·바늘·채소·어육(魚肉)·소금·젓갈이 있었고, 남만국(南蠻國)의 아롱진 비단·아롱진 면포(綿布)·단향(檀香)·흰 날에 검은 씨의 면포[白經黑緯綿布]·등당(藤唐)의 푸르고 검고 흰 면포·자기(磁器) 등의 물건이 있었습니다.</p> <p>1. 중국 사람이 장사[商販]로 왔다가 계속해서 사는 자가 있었는데, 그 집은 모두 다 기와로 덮었고 규모도 크고 화려하며 안에는 단확(丹艘)9720) 을 칠하였고 당중(堂中)에는 모두 다 의자[交倚]를 설치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모두 감투(甘套)를 쓰고 옷은 유구국과 같았으며, 우리들에게 갖이 없는 것을 보고서는 감투를 주었습니다.</p>	<p>晝夜，至日本薩摩州。登岸波濤甚惡，僅得而濟海，勢與濟州同。金非衣，自捕刺伊島，患頭痛沈綿未瘳，至琉球國轉劇，國王知之，賜南蠻國藥酒。新伊四郎等見之，又以艾灸之，曲加救療，在舟中大小便時，四郎每使其從者扶執，恐其墜落船頭也。及到薩摩州，病乃愈。新伊四郎等，將俺等，投舊主人家住接，饋酒飯。自翌日，四郎等，以琉球國所贈糧饌，供饋俺等日三時，州太守，再邀俺等及新伊四郎於其家，饋酒飯及餅肴，皆海魚。其家板屋甚壯麗，常在家行公事，財產豐富，有駿馬數匹，持弓矢荷長劔者二十餘人，常在門下。留一朔，至九月，候南風，新伊四郎等，買別船，將俺等，同騎沿岸而行，凡三晝夜，至打家西浦，登岸。四郎騎馬，率俺等，由陸路金非衣病起，氣力未充，亦覓馬使騎，餘二人徒步，行二日，山谷甚險。至霸家臺，副官人左未時等，押盤纏，由海路已先到矣。人家稠密，如我國都城，中有市，亦如我國。四郎等，率俺等，投其家，饋酒飯穀饌甚豐，上官、副官二人，輪次供饋日三時。大</p>
--	---	---

	<p>1. 나라 사람은 모두 맨발이고 신발을 착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p> <p>1. 통사는 반드시 일본인(日本人)으로서 그 나라에 있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였습니다.</p> <p>1. 강남인(江南人) 및 남만국(南蠻國) 사람도 모두 와서 장사를 하여 왕래(往來)가 끊이지 아니하는데, 우리들도 다 보았습니다. 남만인은 상투를 틀어올렸는데, 그 빛이 매우 검어서 보통 사람보다 특이하였고, 그 의복은 유구국과 같았으나 다만 비단으로 머리를 싸지 아니하였습니다.</p> <p>1. 활·화살·도끼·갈고리[鉅]·도검(刀劍)·무자(鏢子)·낫·삼·갑옷과 투구[甲冑]가 있었는데, 갑옷은 흑 철(鐵)을 쓰기도 하고 가죽을 쓰기도 하였습니다.</p> <p>1. 군사(軍士)는 철로써 정강이를 싸고, 흑은 가죽에 옷칠을 입힌 것을 사용했는데, 행전(行纏)과 같았습니다.</p> <p>1. 그 지대는 따스하기가 윤이도와 같았습니다.</p> <p>1. 소나무·종려나무·대나무가 있고, 그 나머지는 잡목(雜木)인데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p> <p>1. 집에 쥐가 있고, 말·소·염소·고양이·돼지·개·닭·짐비둘기·거위·오리를 기르며, 말과 소를 잡아 먹기도 하고 흑은 저자에 팔기도 하며, 또한 닭을 먹었습니다. 날짐승으로는 까마귀·까치·황작(黃雀)·매·제비·갈매기·바다 가마우지·올빼미가 있었습니다.</p> <p>1. 과실로는 매화·복숭아·유자·청귤(靑橘)이 있었습니다.</p> <p>1. 채소로는 토란·가지·참외·동과(冬瓜)·무우·파·마늘·해바라기·박·파초(芭蕉)가 있었습니다.</p> <p>1. 곤충으로는 모기·파리·두꺼비·개구리·거북·뱀·달팽이·벌·나비·사마귀·잠자리·등에[蠱]·연가시새끼[蟬]·지네·거미·매미·빈대[臭蟲]·지렁이·개똥벌레가 있었고, 또한 메뚜기와 비슷하며 큰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먹었으므로 흑 저자에 팔기도 하였고, 또 박쥐가 있었습니다.</p>	<p>內殿所送主將，再邀俺等及四郎，饋酒穀，所居瓦屋甚壯麗，庭下侍立者三十餘人，皆佩刀，門外軍士屯廬者，不知其數。俺等，見主將，往攻小二殿，擁兵而出，軍士持槍、劔、小旗者，三四萬人。凡四日，戰勝而還，斬六級，梟首於竿，或有人柱其齒，以驗其人之貴賤，蓋有爵者，染齒故也。新伊四郎等，以兵亂未息，恐有逃竄者，潛居海島，出而剽掠。以故，留六朔，待兵亂平定，至今年二月，將俺等，登舟行十五里許，至小島，名軾駕。留泊經夜，翌日早朝，開洋，初昏至一岐島登岸，人家甚衆。四郎等，將俺等投宿主人家，用所齋糧饌，供饋俺等。留三日，又開洋，行一晝及暮，至對馬島草那浦登岸。四郎等，將俺等投其舊主人家，其主乃四郎叔父，用所齋糧饌供饋，主人亦饋酒。其地磽瘠無田，民皆艱食，非如所經諸島。以島主留難行狀，風亦不便，故留連二朔，至四月不記日，候東風，沿岸而行，至沙浦投泊。留二日風順，又沿岸而行，泊都伊沙只浦，留三日，候東風，早朝開洋，行一晝及暮，到泊鹽浦。蔚山郡</p>
--	---	--

우리들은 무릇 석 달을 머물다가 통사에게 말하여 본국(本國)으로 돌아가게 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통사가 국왕에게 전달하자, 국왕이 대답하기를, ‘일본 사람은 성질이 나빠서 〈너희들이〉 보전할 수가 없으므로, 너희들을 강남(江南)으로 보내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보다 앞서 통사에게 물어서 일본은 가깝고 강남은 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국(日本國)으로 갈 것을 청하였습니다. 마침 일본의 패가대(霸家臺) 사람 신이사랑(新伊四郎) 등이 장사하러 와서 국왕에게 청하기를, ‘우리 나라는 조선(朝鮮)과 통호(通好)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호하여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니, 국왕이 이를 허락하고, 또 이르기를, ‘도중에 잘 무휼(撫恤)하여 돌려보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어 우리들에게 돈 1만 5천 문(文), 호초(胡椒) 1백 50근, 청염포(靑染布)·당면포(唐緜布) 각 3필을 주고, 또 석달의 양미(糧米) 5백 근, 염장(鹽醬)·어해(魚醢) 9721 ·왕골 자리[莞席]·칠목기(漆木器)·밥상[食案] 등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8월 1일에 신이사랑 등 1백여 인이 우리들을 데리고 한 척의 큰 배를 같이 타고서 4주야(晝夜)를 가다가 일본의 살마주(薩摩州)에 이르렀으나, 기슭을 오르는 데에 파도가 매우 사나워서 겨우 바다를 건넜는데, 형세가 제주(濟州)와 같았습니다. 김비의(金非衣)가 포라이도(捕刺伊島)에서부터 두통이 생겨서 낮지 않고 유구국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했는데, 국왕이 이를 알고 남만국의 약주(藥酒)를 주었습니다. 신이사랑 등도 이를 보고 또 속으로 땀을 뜨는 등 곱진히 치료해 주었으며, 배 가운데에 있어서는 대변이나 소변 때에도 사랑이 매양 그 종자(從者)로 하여금 붙들어 주게 하였는데, 이는 뱃머리에서 추락할까 걱정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살마주에 도착하여서는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9월에 이르러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서 신이사랑 등이 별선(別船)을 사가지고 우리들을 데리고서 같이 타고 연안(沿岸)으로 해서 무릇 3

守, 見俺等, 着甘套, 各給笠子、布一匹, 俺等製衣穿着, 上來。 右閩伊島以下, 凡物産, 俺等所見, 止此。”

주야 만에 타가서포(打家西浦)에 이르러 기슭에 올랐습니다. 신이사랑 등은 말을 타고서 우리를 데리고 육로(陸路)로 왔습니다. 김비의가 병들었다가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기력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말을 구하여 타게 하고 남은 두 사람은 도보(徒步)로 2일을 갔는데, 산골짜기가 매우 험했습니다. 패가대(霸家臺)에 이르니, 부관인(副官人) 좌미시(左未時) 등이 비용[盤纏]을 마련해서 해로(海路)를 경유하여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인가(人家)가 조밀(稠密)한 것이 우리 나라의 도성(都城)과 같았고, 그 가운데 저자가 있는 것도 우리 나라와 같았습니다. 신이사랑 등은 우리들을 데리고 그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 대접하는 술·밥·안주·반찬이 매우 풍부하였으며, 상관(上官)·부관(副官) 두 사람이 차례로 하루 세 끼씩 대접해 주었습니다. 대내전(大內殿)에서 보낸 바 주장(主將)이 우리들과 신이사랑을 맞아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는데, 사는 바의 기와집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뜰 아래에 시립(侍立)해 있는 자 30여 인은 모두 다 칼을 찻고, 문밖의 군사도 집을 지키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주장을 보고난 뒤 그는 소이전(小二殿)을 공격하기 위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는데, 창·칼, 작은 깃발을 가진 자가 3, 4만명이었습니다. 무릇 4일 만에 싸움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6급(級)을 빼어서 장대 끝에 효수(梟首)하고, 혹 어떤 사람은 그 이빨을 살피서 그 사람의 귀천(貴賤)을 징험하였는데, 이는 대개 관작(官爵)이 있는 자는 이빨을 물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사랑 등은 병란(兵亂)이 아직 그치지 않았으므로, 도망하여 숨었던 자가 몰래 해도(海島)에 있다가 나와서 노략질을 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섯 달을 머물다가 병란이 평정(平定)되기를 기다려, 금년 2월에 이르러 우리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 15리쯤 가서 작은 섬에 이르니, 이름을 식가(軾駕)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p>이 바다로 출범하여 초저녁 어두울 무렵에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기슭에 오르니, 인가가 매우 많았습니다. 신이사랑 등은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주인 집에 투숙시키고 가지고 온 양식과 반찬으로 우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사흘을 머물고 또 바다로 출범하여 하루 낮을 가서 저물녘에 대마도(對馬島)의 초나포(草那浦)에 이르러 기슭에 올랐습니다. 신이사랑 등은 우리들을 데리고 그 옛 주인집에 투숙시켰는데, 그 주인은 곧 신이사랑의 숙부(叔父)였으며, 가지고 온 양식과 반찬으로 대접해 주었고, 주인도 술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땅은 메마르고 밭이 없으며 백성은 모두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 지나온 바의 여러 섬과는 같지 않았습니다.</p> <p>도주(島主)가 떠나기 어렵다고 만류하기도 하였고 바람도 순조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달을 머물러 있다가 4월 어느 날에 동풍을 만나 연안을 따라 가서 사포(沙浦)에 이르러 투숙(投宿)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틀을 머물고 바람이 순조로우므로 또 기슭을 따라 가서 도이사지포(都伊沙只浦)에 정박하였으며, 사흘을 머물다가 동풍을 만나 아침 일찍이 바다로 출범하여 하루 낮을 가서 저물녘에야 염포(鹽浦)에 이르러 머물었습니다. 울산 군수(蔚山郡守)는 우리들이 감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각각 갓[笠子]과 베 1필씩을 주었으므로, 우리들은 옷을 만들어 입고 올라왔습니다. 이상 윤이도(閔伊島) 이하 여러 물산(物産)을 우리들이 본 것은 이 정도입니다.”</p> <p>하였다.</p>	
<p>성종 105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6월 20일(을사) 3번째기사</p>	<p>표류인(漂流人) 김비의(金非衣) 등 세 사람을 제주(濟州)로 송환(送還)하고 명하여 2년의 역사(役使)를 면제해 주었으며, 반년의 녹료(祿料)와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過海糧]을 지급하고, 또 각기 저고리와 직신 철릭포(直身帖裏布)·직신 철릭(直身帖裏) 각각 하나씩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送還漂流人金非衣等三人，濟州命除二年役，給半年料及過海糧，又各賜襦直身帖裏布，直身帖裏，各一。</p>
<p>성종 105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6월 22</p>	<p>유구 국왕(琉球國王) 상덕(尙德)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빙례(聘禮)를 올렸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천지(天地)가 개벽(開闢)한 이래로 측은(惻隱)히 여기시고</p>	<p>○琉球國王尙德，遣使來聘。 答書契曰： 伏以天開地闢，惻隱慈愛，揚於四海，</p>

<p>일(정미) 3번째기사</p>	<p>자애(慈愛)로우심이 사해(四海)에 떨치며, 임금은 성(聖)스럽고 신하는 현명(賢明)하여 유풍(流風)과 선정(善政)이 팔황(八荒)에 퍼지므로, 가까이 있는 자는 은혜에 흠뻑 젖어서 기뻐하고 멀리 있는 자는 풍화(風化)를 듣고 우리러 사모합니다. 성화(成化) 14년 여름 5월에 귀국(貴國)의 서민(庶民)으로서 표류(漂流)하여 비국(卑國)의 남쪽 한 모퉁이 변주(邊州)에 이른 자가 7인이었는데, 그곳 사람이 우리 나라에 데리고 온 자는 3인이었고, 그 나머지 4인은 와병(臥病)으로 체류(滯留)하면서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일본국(日本國) 박다(博多)의 상선(商船)이 우리 나라 연안에 닿았는데, 선주(船主)는 신사랑(新四郎) 좌위문사랑(左衛門四郎)이었으며, 그들에게 3인을 귀국(歸國)에 호송(護送)하여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더니, 3인도 함께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저 선주가 바람과 파도의 험한 것을 무릅쓰고 내조(來朝)하였으니, 어찌 감사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므로 과인(寡人)이 바라는 바는 《대장경(大藏經)》 1부와 면주(綿紬) 목면(木綿) 약간 필(匹)이며, 삼가 드리는 토산물[方產品]은 별폭(別幅)에 갖추니다. 황구(惶懼)하고 첨앙(瞻仰)함을 금할 수 없으며, 늦더위가 아직 남았으니保重(保重)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호초(胡椒) 1백 근, 납자(鐵子) 50근, 울금(鬱金) 1백 근, 백단향(白檀香) 50근, 향(香) 50근을 진정(進呈)하니, 삼가 바라건대 헌근(獻芹)의 정성으로 받아 주시고, 변변치 못하다고 하여 꾸짖지 마시고 수납(收納)하여 주시면 다행스럽겠습니다.”</p> <p>하였다.</p>	<p>君聖臣賢，流風善政，播於八荒，近者霑澤，而歡忭，遠者聞風，而仰慕矣。成化十四年夏五月，貴國庶民，漂流到卑國南隅邊州者七人，彼民航海到我邦者三人，其餘四員，臥疾滯留于待日本國博多商船着岸，船主新四郎、左衛門四郎，命彼三人，護送還貴國，三等同慶權呼乞歸也。彼船主，冒風濤險來朝，豈無感遇乎？然則寡人所望《大藏經》一部、絳紬木綿若干匹，伏獻方產，具于別幅。無勝惶懼瞻系之至，秋熱尙殘，保重不宜。進呈胡椒百斤、鐵子五十斤、鬱金百斤、白檀五十斤、香五十斤，伏望獻芹之誠，勿誚微陋，收納是幸。</p>
<p>성종 106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7월 1일 (을묘)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성건(成健)이 아뢰기를, “날이 가무니, 청컨대 술을 금(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p>	<p>○朔乙卯/御經筵。講訖，掌令成健啓曰：“天旱，請禁酒。”上曰可。”</p>

	하였다.	
성종 106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7월 3일 (정사) 3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 전교하기를, “노병(老病)에 복약(服藥)하거나 혼인(婚姻)·제사(祭祀)에 이르러서 병술[瓶酒]을 가진 자 이외에는 모두 금주(禁酒)시키라.” 하였다.	○傳于司憲府曰：“老病服藥，婚姻、祭祀及持瓶酒者外，並禁酒。
성종 106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7월 7일 (신유) 3번째기사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오늘은 칠석(七夕)이니 별도로 주선(晝膳)을 삼전(三殿)에 올릴 것이나, 하늘이 또 비를 내렸으니, 청컨대 향온(香醞)을 올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금주(禁酒)의 영(令)에 노병(老病)에는 금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삼전(三殿)에 올리고, 나는 즐겨 마시지 않으니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성종 106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7월 7일(신유) 3번째기사
성종 106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7월 15일(기사) 2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근래에 금주(禁酒)로 인하여 3전(殿)에 비록 약주(藥酒)를 올리더라도 한 잔[酌]에 불과하여 내 마음에 미안(未安)하였다. 이제는 이미 비도 내렸으니 금(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승지(承旨) 등이 대답하기를, “심히 마땅합니다.” 하였다.	○傳于承政院曰：“近因禁酒，三殿雖進藥酒，不過一酌，予心未安。今既雨，勿禁何如?” 承旨等對曰：“甚當。”
성종 106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7월 15일(기사) 3번째기사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성건(成健)이 와서 아뢰기를, “경중(京中)은 비의 혜택이 비록 족하다 하더라도 외방(外方)은 알 수가 없으니, 금주(禁酒)의 영(令)을 갑자기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憲府掌令成健來啓曰：“京中雨澤雖足，外方則未可知也，禁酒之令，不可遽弛。” 不聽。
성종 106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7월 27일	유구국왕(琉球國王)의 사신(使臣) 신시라(新時羅) 등 18인이 사환(辭還)하니, 그 회답(回答)하는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조선국왕(朝鮮國王) 성(姓)·휘(諱)는 유구국왕(琉球國王) 전하(殿下)에게 봉복	○琉球國王使臣新時羅等十八人，辭。其回答書契曰： 朝鮮國王姓諱，奉復琉球國王殿下。

<p>일(신사) 3번째기사</p>	<p>(奉復)합니다. 글을 받고서 나타낸 뜻을 충분히 살피었는데 겸하여 사개(使价)의 말을 듣고 체도가 안녕하심을 알게 되니 기쁜 마음으로 위로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귀국(貴國)은 창해가 아득히 격(隔)하였으되, 귀국의 신사(信使)는 대대로 끊이지 않고서 빙례(聘禮)를 닦고, 이제 또 표류(漂流)한 사람들을 돌려 보내어 감격함이 깊습니다. 그러나 바닷길이 험간(險艱)하여 즉시 보사(報謝)하지 못하여 후의(厚意)를 저버리니 부끄러움이 지극합니다. 유시하였던 《대장경(大藏經)》은 일찍이 여러 곳에서 이미 다 구하여 갔기 때문에 이에 명(命)에 부응하지 못합니다만,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변변치 못한 토물(土物)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으니, 조령(照領)하시기 바랍니다.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표피심 호피변 전피리 좌자(豹皮心虎皮邊獬皮裏坐子) 1사(事), 잡채화석(雜彩花席) 5장(張), 인삼(人蔘) 50근(斤), 청밀(淸蜜) 15두(斗), 송자(松子) 3백 근(斤), 남사피(藍斜皮) 10장(張), 유지(油紙) 10장, 백접선(白摺扇) 1백 과(把), 소주(燒酒) 30병(瓶), 면포(綿布) 2백 필(匹), 면주(綿紬) 1백 필(匹)입니다.” 하였다.</p>	<p>承書備審示意，兼聆使价之言，得悉動履佳勝，欣慰欣慰。我邦與貴國，滄溟遼隔，而貴國信使不絕，世修聘禮，今者又委還漂流人物感慰悉深。然海路險艱，未卽報謝，孤負厚意，慙恨之至。所諭《大藏經》，曾因諸處求去已盡，玆未副命，非所靳也。不腆土物，俱在別幅，伏惟照領。白細綿紬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一十匹、豹皮心虎皮邊獬皮裏坐子一事、雜彩花席五張、人蔘五十斤、淸蜜十五斗、松子三百斤、藍斜皮一十張、油紙一十張、白摺扇一百把、燒酒三十瓶、綿布二百匹、綿紬一百匹。</p>
<p>성종 108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9월 17일(경오) 2번째기사</p>	<p>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집에 주악(酒樂)을 하사하고, 시연(侍宴)하는 종친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였다. 그것은 대군이 나이가 많아서 잔치에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사가 있는 것이었다.</p>	<p>○賜酒樂于孝寧大君補第，令侍宴宗親往赴焉。大君年高，未能赴宴，故有是賜。</p>
<p>성종 108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9월 18일(신미) 1번째기사</p>	<p>어탁(御卓)과 대선(大膳)을 홍문관(弘文館)에 하사하고, 아울러 술과 풍악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대간(臺諫)에게 명하여 가서 참석하게 하고, 또 도승지 홍귀달(洪貴達)·우부승지 채수(蔡壽)에게 명하여 압연(押宴)9934) 하게 하였다.</p>	<p>○辛未/賜御卓及大膳于弘文館，并賜酒樂，命臺諫往參，又命都承旨洪貴達、右副承旨蔡壽，押宴。</p>
<p>성종 108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9월 18</p>	<p>(...) 별폭(別幅). 자면주(紫綿紬) 3필, 녹면주(綠綿紬) 3필, 유청 면주(柳靑綿紬) 3필, 녹면포(綠綿布) 3필, 수록 면포(水綠綿布) 10필, 탑사마(塔士麻) 20근(斤), 곤포(昆布) 50근, 해의(海衣) 10근, 녹중포(鹿中脯) 50개(箇), 녹편포</p>	<p>別幅：“紫綿紬三四、綠緜紬參匹、柳靑綿紬三四、綠綿布三四、水綠綿布一十四、塔士麻二十斤、昆布五十</p>

<p>일(신미) 3번째기사</p>	<p>(鹿片脯) 50개, 조곽(早藿) 50근, 향점(香簞) 10근, 석수어란자(石首魚卵鮓) 1담(壇), 은구어자(銀口魚鮓) 1담, 중앙 삼사 도자(中樣三事刀子) 50과(把), 소양 삼사 도자(小樣三事刀子) 50과, 세죽선(細竹扇) 50과, 소죽선(小竹扇) 50과, 수량아(繡囊兒) 10류(流), 장아아(獐牙兒) 10류, 침가아(針家兒) 10류, 호아아(虎牙兒) 16, 호로아(葫蘆兒) 16, 청고아(靑苳兒) 16, 세교주문합(細巧紬文蛤) 50류, 흑마포(黑麻布) 1백 10필.</p> <p>별폭. 자면주(紫綿紬) 3필, 녹면주 3필, 청면주 3필, 초록 면주 3필, 백저포(白苧布) 5필, 수록 면포(水綠綿布) 10필, 탑사마(塔土麻) 20근, 해의(海衣) 10근, 곤포(昆布) 50근, 녹중포(鹿中脯) 50개, 녹편포 50개, 조곽(早藿) 50근, 향점(香簞) 10근, 홍합자(紅蛤鮓) 1담(壇), 백하자(白蝦鮓) 9939) 1담, 중앙 삼사 도자(中樣三事刀子) 50과, 소양 삼사 도자 50과, 세죽선(細竹扇) 50과, 소죽선 50과, 수량아(繡囊兒) 10류(流), 장아아(獐牙兒) 10류, 침가아(針家兒) 10류, 호아아(虎牙兒) 10류, 호로아(葫蘆兒) 10류, 청고아(靑苳兒) 10류, 반합(班蛤) 50류.</p> <p>별폭. 자면주 2필, 녹면주 2필, 청면주 2필, 초록 면주 2필, 겸직포(兼織布) 3필, 향점 10근, 탑사마 10근, 소양 삼사 도자 50과, 회합(回蛤) 50류, 흑마포 5필.</p>	<p>斤、海衣一十斤、鹿中脯五十箇、鹿片脯五十箇、早藿五十斤、香簞一十斤、石首魚卵鮓一壇、銀口魚鮓一壇、中樣三事刀子五十把、小樣三事刀子五十把、細竹扇五十把、小竹扇五十把、繡囊兒一十流、獐牙兒一十流、針家兒一十流、虎牙兒十六、葫蘆兒一十六、靑苳兒一十六、細巧紬文蛤五十流、黑麻布一百一十四、別幅紫綿紬三匹、綠綿紬三匹、靑綿紬三匹、草綠綿紬三匹、白苧布五匹、水綠綿布一十四、塔土麻二十斤、海衣一十斤、昆布五十斤、鹿中脯五十箇、鹿片脯五十箇、早藿五十斤、香簞一十斤、紅蛤鮓一壇、白蝦鮓一壇、中樣三事刀子五十把、小樣三事刀子五十把、細竹扇五十把、小竹扇五十把、繡囊兒一十流、獐牙兒一十流、針家兒一十流、虎牙兒一十流、葫蘆兒一十流、靑苳兒一十流、班蛤五十流。”別幅：“紫綿紬二匹、綠綿紬二匹、靑綿紬二匹、草綠綿紬二匹、兼織布三匹、香簞一十斤、塔土麻一十斤、小樣三事刀子五十把、回蛤五十流、黑麻布五匹。”</p>
--------------------	---	---

<p>성종 108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9월 25 일(무인)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통신사 압물관(通信使押物官)의 첩(牒)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본(日本) 각지의 사송 잡물(賜送雜物)과 노차 반전 잡물(路次盤纏雜物) 가 운데 백저포(白苧布) 등 여러가지 물건은 압령 통사(押領通事)로 하여금 운반 하여 제사(諸司)에 환납(還納)하게 하고, 정주(鼎紬)와 양료(糧料)·목면(木綿)· 정포(正布)는 웅천(熊川) 고을에 받아들여서 회계(會計)하여 왜인(倭人)의 답 사(答賜)에 이바지하게 하며, 각색 미멸(米憵)·유밀(油蜜)과 잡물들은 역시 압 령 통사로 하여금 웅천 현감(熊川縣監)과 함께 수량을 알고 전해 말아서 객인 (客人)의 궤향(饋餉)에 이바지하며, 사(使)·부사(副使) 이하에게 하사하는 미 멸·의복·저마포(苧麻布)는 모두 환납(還納)하고, 지로왜(指路倭) 네 사람은 비 록 일본에 갔다 오지 아니하였더라도 우리 나라 백성이 아니므로 상사미(賞 賜米) 20석을 그대로 주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사(使)·부사(副使) 이하에게 하사하는 미면· 의복·저마포는 모두 환수(還收)하지 말도록 명하였다.</p>	<p>○戶曹，據通信使押物官牒啓：“日本 各處賜送雜物及路次盤纏雜物內，白苧 布等雜物，令押領通事，輸轉還納諸 司，鼎紬及糧料木綿正布，則納于熊川 官，會計施行，以供倭人答賜，各色米 憵油蜜及雜物等，亦令押領通事，同熊 川縣監，知數傳掌，以供客人饋餉， 使、副使以下賜給米憵、衣服、苧麻 布，並還納，指路倭四人，則雖不往還 日本，非是我國人民，其賞賜米二十 碩，仍給。”從之。命使、副使以下， 賜給米憵、衣服、苧麻布，並勿還收。</p>
<p>성종 109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0월 4 일(병술) 2번째기사</p>	<p>우찬성(右贊成) 어유소(魚有沼)의 초가집[草舍]에 불이 났는데, 어안(御 鞍)9966) 1부(部)와 노의(奴衣) 6건(件)과 음식물을 하사하였다.</p>	<p>[○] 右贊成魚有沼，草舍失火。賜 御鞍一部、奴衣六件，及食物。</p>
<p>성종 109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0월 10 일(임진) 3번째기사</p>	<p>명하여 종친(宗親)·당상관(堂上官)을 불러서 술을 마시도록 하고, 또 중관(中 官)을 보내어 경연관(經筵官)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p>	<p>○命召宗親、堂上官饋酒，又遣中官， 饋經筵官。</p>
<p>성종 109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0월 14 일(병신) 1번째기사</p>	<p>대가가 행궁(行宮)에서 머물렀다. 선전관(宣傳官)을 좌상(左廂)·우상(右廂)에 보내어 선온(宣醞)을 하사하였다.</p>	<p>○丙申/駕留行宮。遣宣傳官于左右 廂，賜宣醞。</p>
<p>성종 109권, 10년</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p>	<p>○傳旨戶曹曰：“卒昭惠宮主盧氏致賻，</p>

<p>(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0월 23 일(을사) 3번째기사</p>	<p>“졸(卒)한 소혜 궁주(昭惠宮主) 노씨(盧氏)의 치부(致賻)는 명빈(明嬪)의 예(例)에 의하여 쌀·콩 아울러 70석, 면포(綿布)·정포(正布) 각각 50필, 청밀(淸蜜) 10두(斗), 황랍(黃蠟) 30근, 초[燭] 10정(丁), 공석(空碩) 1백, 초둔(草苴) 10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依明嬪例，給米·豆并七十碩、綿布·正布各五十匹、淸蜜十斗、油一碩、黃蠟三十斤、燭十丁、空碩一百、草苴十。</p>
<p>성종 109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0월 24 일(병오)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명숙 공주(明淑公主)가 피우(避寓)하는 곳에 쌀 30석, 콩 20석, 면포(綿布) 2백 50필을 하사하게 하였다.</p>	<p>○傳旨戶曹，明淑公主避寓處，賜米三十碩、豆二十碩、絁布二百五十匹。</p>
<p>출처</p>	<p>내용</p>	<p>원문</p>
<p>성종 11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윤10월 4일(병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삼전(三殿)에게 진연(進宴)하고, 부원군(府院君) 이상에게 음식을 접대하게 하였으며, 종친(宗親)으로 팔계군(八溪君) 이상과 승정원(承政院)에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들과 경연관(經筵官)에게 음악(音樂)을 하사(下賜)하였다.</p>	<p>○丙辰/上進宴于三殿，命饋府院君以上，宗親八溪君以上，承政院入直諸將、經筵官，賜樂。</p>
<p>성종 11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윤10월 12일(갑자) 1번째기사</p>	<p>새벽에 좌승지(左承旨) 이경동(李瓊全)이 선물[人情]인 청류 청주유 담호(靑柳靑紬襦搭胡) 1개, 초록 주유 칠릭(草綠紬襦帖裏) 1개, 아청 단자 초피 허흉(鴉靑段子貂皮虛胸) 1개, 흑사피 협금화 전정 투혜구(黑斜皮挾金靴氈精套鞋具) 1개, 마피화 정분 투구(馬皮靴精分套具) 1개, 채화석(彩花席) 4장(張), 침석(寢席) 2장(張), 백후지(白厚紙) 20권(卷), 흑마포(黑麻布) 20필, 백저포(白苧布) 20필, 사의(蓑衣) 1부(部), 제연구 입모(諸緣具笠帽) 10개, 마장(馬粧) 1부(部), 인삼(人蔘) 20근(斤), 유둔(油苴) 7장(張), 궁전모(弓箭帽) 2건(件), 통개 궁전구(筒介弓箭具) 1부(部), 반아다갈(盤兒多曷) 30부(部) 이마 제연(理馬諸緣) 1부(部) 홍단자 밀위(洪段子蜜韋) 1개, 결궁 장피(結弓獐皮) 10장(張), 부채[扇子] 10자루[把], 유(鑰) 3합(合), 노구(鑪口) 1개, 가구유행기(家具鑰行器) 1부(部) 가구유소자(家具鑰小者) 나남라개구(羅南羅介具) 1개, 황모필(黃毛筆) 1백 지(枝), 유연묵(油煙墨) 50홀(笏), 활[弓] 10장(張), 칼[劍] 10</p>	<p>甲子/黎明，左承旨李瓊全，將人情物件，靑柳靑紬襦搭胡一、草綠紬襦帖裏一、鴉靑段子貂皮虛胸一、黑斜皮挾金靴氈精套鞋具一、馬皮靴精分套具一、彩花席四張、寢席二張、白厚紙二十卷、黑麻布二十四、白苧布二十四、蓑衣一部、諸緣具笠帽十、馬粧一部、人蔘二十斤、油苴七張、弓箭帽二件、筒介弓箭具一部、盤兒多曷三十部、理馬諸緣一部、紅段子蜜韋一、結弓獐皮十張、扇子十把、鑰三合、鑪口一(一)、家具鑰行器一部、家</p>

	<p>자루[柄], 백지(白紙) 30권(卷)을 가지고 태평관(太平館)으로 가니, 사신(使臣)이 방(房) 안에서 서로 만나 보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경동(李瓊全)이 선물[人情]의 단자(單子)를 드리니, 사신이 이를 보고 난 후에 다만 활[弓] 6장(張), 전(箭) 6개(介), 궁견시복(弓鞬矢服) 1부(部), 궁전모(弓箭帽) 1부(部), 붓[筆] 1백 지(枝), 먹[墨] 50홀(笏), 사의(蓑衣) 1령(領), 채화석(彩花席) 2장, 남라개(南羅介) 1개, 칼[劍] 1자루[柄]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물리쳤다. (…)</p>	<p>具鑰小者羅南羅介具一、黃毛筆一百枝、油煙墨五十笏、弓十、張劍十、白紙三十卷、往太平館、使臣許於房內相見。瓊全、呈人情單(字) [子], 使臣覽訖, 只受弓六張、箭六介、弓鞬矢服一部、弓箭帽一部、筆百枝、墨五十笏、蓑衣一領、彩花席二張、南羅介一、劍一, 餘皆却之。(…)</p>
<p>성종 11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윤10월 16일(무진) 5번째기사</p>	<p>병조(兵曹)·호조(戶曹)·예조(禮曹)·도총부(都摠府)의 당상관(堂上官)과 경연관(經筵官)에게 충훈부(忠勳府)에서 잔치를 하사(下賜)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과 좌승지(左承旨) 김계창(金季昌)과 동부승지(同副承旨) 노공필(盧公弼)은 선은(宣醞)을 가지고 갔다.</p>	<p>○賜宴兵曹、戶曹、禮曹、都摠府堂上及經筵官于忠勳府。 都承旨金升卿、左承旨金季昌、同副承旨盧公弼, 齎宣醞而往。</p>
<p>성종 11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윤10월 17일(기사) 3번째기사</p>	<p>충훈부(忠勳府)에 잔치를 내려 주니, 좌승지(左承旨) 이경동(李瓊全)과 좌부승지(左副承旨) 채수(蔡壽)가 선은(宣醞)을 가지고 갔다. 시강관(侍講官) 성숙(成俶)과 전경(典經) 안윤손(安潤孫)도 선은(宣醞)을 가지고 가서 참여하였다.</p>	<p>○賜宴于忠勳府, 左承旨李瓊全、左副承旨蔡壽, 齎宣醞而往。 侍講官成俶、典經安潤孫, 亦齎宣醞往參。</p>
<p>성종 111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1월 10일(신묘) 5번째기사</p>	<p>통사(通事) 장자효(張自孝)가 요동(遼東)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다. 장자효가 아뢰기를, “신(臣)이 요동(遼東)에 처음 도착하니, 고청(高淸)은 먼저 들어가서 태감(太監) 등과 더불어 회의(會議)한 후에 신(臣) 등을 인도하여 들어왔습니다. 신(臣)이 자문(咨文)을 바치니, 태감(太監)이 묻기를, ‘군대를 일으키는 일시(日時)에 관하여 그대의 전하(殿下)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라고 하므로, 신(臣)이 대답하기를, ‘25일은 군대의 출동 시기가 너무 급박하므로, 능히 시기에 맞추어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청(高淸)이 곁에서 태감(太監)에게 이야기하기를, ‘전하(殿下)께서 「25일은 시기에 미치지 못할 듯 하지만, 그러나 장수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시일(時日)을 계산하여 들</p>	<p>○通事張自孝, 還自遼東, 上御宣政殿引見。 自孝啓曰: “臣始到遼東, 高淸先入, 與太監等會議後, 引臣等而入。 臣呈咨文, 太監問: ‘起兵日時, 汝殿下何以云云?’ 臣對曰: ‘二十五日師期太迫, 未能及赴。’ 高淸從旁語太監曰: ‘殿下言: 「二十五日似未可及, 然遣將領兵, 計日入攻。」 我云: 「白顯時及期, 今則何緩也?’ 殿下答曰: 「前日則遼東大人先報, 故預整軍馬,</p>

	<p>어가서 공격하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하기를, 「백용(白顛)이 청병(淸兵)할 때에는 시기(時期)에 맞추었는데, 지금은 어찌 시기를 늦추십니까?」 하니, 전하(殿下)께서 대답하기를, 「전일에는 요동(遼東)의 대인(大人)이 먼저 보고해 준 까닭으로 군사와 말을 미리 정돈(整頓)하여 군대를 출동의 기일에 맞추어 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칙서(勅書)가 도착되어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니, 급박하여 시기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태감(太監)과 어사(御史) 등이 말하기를, ‘전하(殿下)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라고 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감(太監)이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p> <p>하자, 대답하기를, “처음 시기에 미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목소리가 조금 노여웠으나, 고청(高淸)이 이를 해명(解明)하게 되자, 모두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25일에 과연 들어가서 정벌할 수 있겠는가?”</p> <p>하니, 대답하기를, “고청(高淸)이 22일에 돌아와서 25일에 독제(蠶祭)를 행하고 잡희(雜戲)를 하여서 군사를 접대하고, 전군(前軍)을 앞에서 인도하여 28일에 장수가 이에 출발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객관(客館)의 접대는 어떻게 하던가?”</p> <p>하니, 대답하기를, “접대는 과일과 고기를 사용하고, 포백(布帛)을 선사하는 등 예절로써 접대함이 매우 후하였습니다.”</p> <p>하였다. (…)</p>	<p>及赴師期， 今則勅到始知， 恐忙不及期。’」 太監、御史等云：‘殿下之言良是。’” 上曰：“太監無乃不悅乎?” 對曰：“始聞未及之言， 聲猶稍厲， 及高淸解之， 皆有怡色。” 上曰：“二十五日果入征乎?” 對曰：“高淸二十二日回還， 二十五日行蠶祭， 用雜戲饗兵， 前軍啓行， 二十八日將帥乃行。” 上曰：“館待何如?” 對曰：“饗用果肉， 贈以布帛， 禮待甚厚。” (…)</p>
--	--	--

<p>성종 112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2월 8 일(기미) 4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승지(承旨) 등의 공사(公事)를 훤히 살펴보니, 형방(刑房)은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고, 호방(戶房)이 그 다음인데, 모두 모름지기 낱알이 보고 난 후에야 아뢰는 까닭으로 혹시 더디고 늦추는 폐단이 있게 된다. 내 생각에는 모든 공사(公事)는 3일을 넘기지 않고서 처결(處決)한다면, 지체(遲滯)시킨다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지금부터 이후로 승지(承旨) 등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해당 관사(官司)에 내린 상언(上言)과 같은 등류를 3일에 1차례씩 모두 들어와서 대면(對面)하여 아뢰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그 중에 긴급(緊急)한 일은 반드시 친히 아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혹시 삼전(三殿)에 주선(晝膳)을 올리거나, 혹시 대군(大君)을 접견(接見)할 때에는 대면하여 아뢰 수가 없을 것이다. 승지(承旨)가 만약 아뢴 적에 당연히 아뢴 일임을 밝힌다면, 내가 마땅히 미리 알고서 이를 처리하겠다.” 하니, 승지 김계창(金季昌)과 채수(蔡壽)가 대답하기를, “이 일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논하여 결정할 일 같은 것은 비록 작더라도 아뢰어야만 되지만, 만약 긴급하지 않은 일도 모두 대면(對面)하여 아뢰도록 한다면, 어찌 번쇄(煩碎)한 데에 지나쳐서 옥체(玉體)에 피로함이 없겠습니까?” 하자, 전교(傳敎)하기를, “긴급(緊急)하지 않은 일 이외에는 모두 대면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予觀承旨等公事，刑房重而最多，戶房次之，皆須歷覽，而後乃啓，故或有遲緩之弊。予意以謂‘凡公事，不過三日處決，則不可謂遲滯。’今後承旨等，雖小事，如下該司上言之類，三日一次，皆入面啓何如？若其中緊急事，不必親啓。然予或進晝膳于三殿，或接見大君之時，則不得面啓矣。承旨若啓，明當啓事，予當預知而處之。”承旨(金季昌) [金季昌]、蔡壽對曰：“此事甚善。然如議決之事，則雖小可啓，若不緊急事，皆得面啓，則無(奈) [奈] 過於煩碎，而勞於玉體乎？”傳曰：“不緊急外，皆面啓。”</p>
<p>성종 112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2월 21 일(임신) 4번째기사</p>	<p>(...)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에만 그치겠는가? 이보다 먼저도 오이[瓜]를 심었다가 익기를 기다려 돌아간 일이 있었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신(臣) 등의 생각에도 왕직(汪直)이 새로 큰 공을 이루어 총애(寵愛)가 중국</p>	<p>(...) 上曰：“豈止此也？前此亦有種瓜待熟而還。”升卿曰：“臣等意謂，汪直新成大功，寵傾朝廷，恐請來矣。”蔡壽曰：“汪直來，則猶愈於鄭同之來也。”上曰：“凡事預圖，太平館尤宜</p>

	<p>조정(朝廷)을 기울일 정도이니, 이마 오기를 청할 듯합니다.”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왕직(汪直)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정동(鄭同)이 오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 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미리 도모해야만 하니, 태평관(太平館)은 더욱 마땅히 집을 손질 하고 지붕을 새로 이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p>	<p>修葺也。”</p>
<p>성종 112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2월 24 일(을해) 3번째기사</p>	<p>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오늘은 교년회(交年會)이므로 대내(大內)에서 밤을 지내게 되는데, 신(臣) 등 은 안심(安心)하고 집에 물러갈 수가 없으니, 모여서 유숙(留宿)하기를 청합니 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제야(除夜)에 모여서 유숙(留宿)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다. 오늘의 일은 비 록 전례(前例)는 아니지마는, 내가 정승(政丞)들까지 모두 와서 모이기를 허가 하고 싶다. 그러나 날씨가 너무 추운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대 들이 경연관(經筵官)과 더불어 모여서 유숙(留宿)한다면, 내가 또 술과 음악 [酒樂]을 하사하겠다.” 하였다.</p>	<p>○承旨等啓曰：“今日交年會，大內度 夜，臣等不能安心退家，請會宿。”傳 曰：“除夜會宿，例事也。今日之事， 雖非前例，予欲竝許政丞等來會。然 日氣寒嚴，故未果耳。爾等其與經筵 官會宿，予將賜酒樂焉。”</p>
<p>성종 112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2월 24 일(을해) 4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세좌(李世佐)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신(臣) 등이 삼가 듣건대. 오늘 밤의 교년회(交年會)에 여악(女樂)을 사용하 려고 한다 하는데, 여악(女樂)은 간사한 음악과 음란한 여색(女色)이므로, 금 중(禁中)에 들어와서 밤을 지낼 수는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여악(女樂)을 정 지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이다. 비록 밤을 세우더라도 일찍 잠을 자</p>	<p>○弘文館副提學李世佐等，上笱子曰： 臣等伏聞，今夜交年會用女樂，女樂姦 聲亂色，不可入禁中度夜，伏望命停女 樂。 傳曰：“此故事也。雖度夜，而曾不寐 焉，如逐疫時，入內度夜，亦古例也。 世祖朝，日與宗親遊女樂，竝入度夜，</p>

	<p>지 않았으니, 역귀(疫鬼)를 쫓아낼 때에 대궐 안에 들어와서 밤을 지내는 것도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례(慣例)인 것이다. 세조조(世祖朝)에는 날마다 종친(宗親)들과 더불어 놀 적에 여악(女樂)까지 모두 들어와서 밤을 지냈었는데, 나는 이것을 처음 거행(舉行)하는 것이니, 또한 군주(君主)가 술에 빠져서 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경(卿) 등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써가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겸하여 음악을 내려서 위로하려고 한 것이니, 이에 윤휴하지 않겠다.”</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과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이 모이자, 임금(君)이 술과 음악을 하사(下賜)하고, 이어 사의(蓑衣) 1부(部), 백록비(白鹿皮) 2장(張), 석정(石鼎) 1사(事), 활 4장(張)을 내어 주었다. 전교(傳敎)하기를,</p> <p>“그대들은 술에 빠져서 코를 골며 곤히 자지 말고, 모름지기 탕전(帑錢)을 걸고 내기하면서 밤을 지내도록 하라.”</p> <p>하였다. 김승경(金升卿) 등이 이에 종정도(從政圖)10351) 를 사용하여 내기를 하다보니, 새벽의 복을 이미 치고 나서였다.</p>	<p>予則是初舉也，亦非人君沈湎，而爲之也。且以卿等，早暮勤苦，兼欲賜樂慰焉，茲以不允。”承政院、弘文館員既會，賜酒樂，仍出蓑衣一部、白鹿皮二張、石鼎一事、弓四張。傳曰：“爾等毋酒沈眠，須賭帑度宵。”升卿等，乃用從政圖賭之，曉鼓已過矣。</p>
<p>성종 113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1월 18일(기해)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성숙(成俶)이 아뢰기를,</p> <p>“신(臣) 등이 명령을 받들어 《역대군신감(歷代君臣鑑)》을 교정(校正)하다가 선덕 황제(宣德皇帝) 15년에 이르니, 거기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사신(使臣) 조전(趙典)과金玉진(金玉振)이 송이버섯[松菌]과 매와 사냥개[鷹犬]를 중국에 바치자, 황제(皇帝)가 말씀하시기를, ‘송이버섯은 음식물(飲食物)이지 마는, 매와 사냥개는 어디에 쓰겠는가? 지금부터는 음식물과 복식(服飾) 이외에 매나 사냥개와 같은 종류는 다시 공물(貢物)로써 바치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선덕 황제(宣德皇帝)가 우리 나라에 구하여 징수한 것이 매우 번거로워서, 여인(女人)을 구하고 금(金)을 구하기까지 하여 거의 없는 해가 없었는데도 특별히 매와 사냥개를 면제해 주었다 하니, 반드시 이런 이치가 없</p>	<p>○御經筵。講訖，侍講官成俶啓曰：“臣等奉敎校讎《歷代群臣鑑〔歷代君臣鑑〕》至宣德皇帝十五年，有曰：“我國使趙典、金玉振，獻松菌、鷹犬于上國，皇帝曰：「松菌食物，鷹犬何所用？自今食物、服飾外，如鷹犬之類，勿復貢獻。」宣德之於我國，徵求甚煩，以至求女、求金，殆無虛歲，特蠲鷹犬，必無是理。而其時史官，不據事直書，何以鑑後？請刪去不錄。”上曰：“史官之職重矣。據事一書，則</p>

	<p>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때의 사관(史官)이 사실에 의거하여 바른대로 쓰지 않았으니, 어찌 후대(後來)를 경계하겠습니까? 청컨대 삭제하고 기록하지 말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史官)의 직책은 중요한 것이다. 사실에 의거하여 한결같이 쓴다면 선악(善惡)의 사실(事實)이 천년 후에라도 없어지지 않겠지마는, 만약 혹시 전해 듣고서 사실대로 쓰지 않는다면 신용할 역사(歷史)가 못된다.”</p> <p>하고, 마침내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善惡之實，不沒於千載之下，如或傳聞，而不以實書，非信史也。”遂命勿錄。</p>
<p>성종 114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2월 28 일(무인) 3번째기사</p>	<p>명하여 수가(隨駕)한 재추(宰樞)와 여러 장수들과 경연관(經筵官)을 근정전(勤政殿) 뜰에서 대접하게 하고, 술과 풍악[酒樂]을 내려 주었다.</p>	<p>○命饋隨駕宰樞、諸將、經筵官于勤政殿庭，賜酒樂。</p>
<p>성종 115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3월 16 일(병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열무(閱武) 하였다. 대가(大駕)가 돌아올 때에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집에 거둥하여 종친(宗親)의 활 쏘는 것을 보았는데, 술과 풍악[酒樂]을 내려 주고는 수가(隨駕)한 종재(宗宰)를 대접하게 하였다.</p>	<p>○丙申/上幸慕華館閱武。還駕時，幸月山大君婷家，觀宗親射，賜酒樂，饋隨駕宗宰。</p>
<p>성종 116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4월 4일 (갑인)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여, 강옥의 동생 매부(同生妹夫) 박금생(朴今生), 삼촌 조카 강계숙(姜繼叔)·김염(金廉)에게 각각 아청 면포 단원령(鴉青綿布單圓領) 1령, 백면포 단철릭(白綿布單帖裏) 1령, 쌀·콩 아울러 5석(碩), 동생매(同生妹) 박금생(朴今生)의 처에게 저포삼(紵布衫) 1령, 유청 면포 단상(柳青綿布單裳) 1, 동생제(同生弟) 강귀산(姜貴山)의 처에게 저포삼(紵布衫) 1령, 유청 면포 단상 1, 쌀·콩 아울러 10석, 그리고 정동(鄭同)의 삼촌 조카 정지(鄭智)·정효공(鄭孝恭)·정효지(鄭孝智)에게 각각 아청 면포 단원령(鴉青綿布單圓領) 1령, 백면포 단철릭 1령, 쌀·콩 아울러 5석, 동생형(同生兄) 정거(鄭舉)의 처에게 저포삼(紵布衫) 1령, 유청 면포 단상 1, 쌀·콩 아울러 10석, 동생매(同生妹) 윤쌍(尹雙)의 처에게 저포삼 1, 유청 면포 단상 1을 내려 주게 하고, 또 공조</p>	<p>○傳旨戶曹，賜姜玉同生妹夫朴今生、三寸姪姜繼叔·金廉，各鴉青綿布單圓領一領、白綿布單帖裏一領、米·豆并五碩，同生妹朴今生妻，紵布衫一領、柳青綿布單裳一，同生弟姜貴山妻，紵布衫一領、柳青綿布單裳一、米·豆并十碩，鄭同三寸姪鄭智、鄭孝恭、鄭孝智，各鴉青綿布單圓領一領、白綿布單帖裏一領、米·豆并五碩，同生兄鄭舉妻，紵布衫一領、柳青綿布單</p>

	(工曹)에 명하여, 박금생(朴今生)·김염(金廉)·정지(鄭智)에게 각각 사모(紗帽) 1정(頂), 마피화(馬皮靴) 1부(部), 박금생·강귀산·정거·윤쌍 등의 처에게 각각 마피 온혜(馬皮溫鞋) 1사(事), 정효공·정효지에게 각각 사모(紗帽) 1정(頂), 품대(品帶) 1요(腰), 마피화(馬皮靴) 1부(部)를 내려 주게 하였다.	裳一、米·豆并十碩， 同生妹尹雙妻， 紵布衫一、柳青綿布單裳一。 又命工曹， 賜朴今生、金廉、鄭智， 各紗帽一頂、馬皮靴一部。 朴今生、姜貴山、鄭學、尹雙等妻， 各馬皮溫鞋一事。 鄭孝恭、鄭孝智， 各紗帽一頂、品帶一腰、馬皮靴一部。
성종 116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4월 2일 (임자) 3번째기사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박안성(朴安性)에게 하서(下書)하여, 공주(公州)에 거주하는 태감(太監) 강옥(姜玉)의 삼촌 조카인 김남(金男)·김을산(金乙山)에게 각각 쌀·콩 5석(碩)을 내려 주게 하였다.	○下書忠淸道觀察使朴安性， 賜公州居太監姜玉三寸姪金男、金乙山， 各米豆五碩。
성종 117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5월 4일 (계미) 2번째기사	두 사신이 두목(頭目) 13인으로 하여금 와서 채단(彩段) 등의 물건을 바치게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서 술을 대접하고 또 선물[人情]을 주었으며, 또한 부제학(副提學) 최숙정(崔淑精)에게 명하여 빈청(賓廳)에서 대접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兩使， 使頭目十三人， 來獻彩段等物。 上， 御宣政殿， 引見饋酒， 仍賜人情物件， 又命副提學崔淑精， 監饋于賓廳。
성종 112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2월 24 일(을해) 3번째기사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오늘은 교년회(交年會) 이므로 대내(大內)에서 밤을 지내게 되는데, 신(臣) 등은 안심(安心)하고 집에 물러갈 수가 없으니, 모여서 유숙(留宿)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제야(除夜)에 모여서 유숙(留宿)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다. 오늘의 일은 비록 전례(前例)는 아니지마는, 내가 정승(政丞)들까지 모두 와서 모이기를 허가하고 싶다. 그러나 날씨가 너무 추운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대들이 경연관(經筵官)과 더불어 모여서 유숙(留宿)한다면, 내가 또 술과 음악[酒樂]을 하사하겠다.” 하였다.	○承旨等啓曰：“今日交年會， 大內度夜， 臣等不能安心退家， 請會宿。” 傳曰：“除夜會宿， 例事也。 今日之事， 雖非前例， 予欲竝許政丞等來會。 然日氣寒嚴， 故未果耳。 爾等其與經筵官會宿， 予將賜酒樂焉。”

<p>성종 117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5월 18 일(정유) 1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노조경(盧趙卿)이 기장 현감(機張縣監)이 되어 관미(官米) 83석(碩), 황두(黃豆) 48석, 조(租) 25석, 건홍합(乾紅蛤) 8두(斗), 오해조(烏海藻) 6석 8두, 면포(綿布) 6필을 도둑질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자, 여러 증인은 모두 항복하였는데 스스로 죄가 중한 것을 알고 도망하였습니다. 청컨대 죄안(罪案)에 기록하고 추포(追捕)하여 논죄하고, 도용(盜用)한 잡물(雜物)은 도로 징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丁酉/司憲府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 “盧趙卿爲機張縣監, 盜官米八十三碩、黃豆四十八碩、租二十五碩、乾紅蛤八斗、烏海藻六碩八斗、綿布六匹, 事覺衆證皆服, 自知罪重, 而逃。請錄案, 追捕論罪, 徵還盜用雜物。” 從之。</p>
<p>성종 117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5월 28 일(정미) 2번째기사</p>	<p>두 중국 사신이 장차 훈련원(訓練院)에서 유관(遊觀)하려고 하여 지나다가 김담(金淡)의 집에 들렸다. 우승지(右承旨) 채수(蔡壽)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싸가지고 가고, 또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선온을 싸가지고 훈련원에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兩天使將遊觀于訓練院, 歷入金淡家。命右承旨蔡壽, 齎宣醞以往, 又命上黨府院君韓明澮、都承旨金升卿, 齎宣醞, 往慰于訓練院。</p>
<p>출처</p>	<p>내용</p>	<p>원문</p>
<p>성종 118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6월 1일 (경술) 3번째기사</p>	<p>(...) “호조(戶曹)에서 화매(貨賣)에 대한 일. 성화(成化) 16년(1480) 6월 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세좌(李世佐)가 공경히 교지(教旨)를 받아 왔는데, 그 해당 절목(節目)에, ‘이번에 온 중국 사신을 따라온 사람들이 싸가지고 온 물건은 이미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관(太平館)안을 통행하며 양쪽이 공평하게 교역(交易)하게 하였으나, 다만 중간에 헛되이 금약(禁約)을 늘어놓아 여러 사람을 현혹시켜 매매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니, 너희 정원(政院)은 해당 조(曹)로 하여금 일체의 물건을 하나하나 열거(列舉)하여 방을 붙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공경히 여기에 경의(敬依)한 외에 지금 합당한 물건을 뒤에 열거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이다. 개좌(開坐)10606) 한다. 흑세마포(黑細麻布)·백세마포(白細麻布)·각양(各樣) 세면포(細綿布)·호피(狐皮)·토포피(土豹皮)·초서피(貂鼠皮)·서피(鼠皮)·소목(蘇木)·호초(胡椒)·백랍(白蠟)·황랍(黃蠟)·인삼(人蔘)·각양 동기(銅器) 가화(家</p>	<p>(...) 戶曹爲貨賣事。成化十六年六月日, 右副承旨李世佐, 敬奉教旨, 節該: “今來天使(根) [跟] 隨人等, 齎到物件, 已令民人, 通行太平館內, 兩平交易, 但慮中間不無虛張禁約, 以惑衆聽, 遂致買賣阻當, 恁政院着令該曹, 一應物件, 逐一開坐, 出榜曉諭。” 敬此除敬依外, 今將合行物件, 開坐于後, 須至告示者。計開。黑細麻布、白細麻布、各樣細綿布、狐皮、土豹皮、貂鼠皮、鼠皮、蘇木、胡椒、白蠟、黃蠟、人蔘、各樣銅器家火、各</p>

	火)·각양 대소 도자(大小刀子)·화량석(花涼席)이다.” 하였다.	樣大小刀子、花涼席。
성종 118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6월 2일 (신해) 2번째기사	중국사신인 부사(副使) 〈강옥(姜玉)이〉 공주(公州)의 본집을 향하여 떠나니, 상사(上使)가 제천정(濟川亭)에서 전송하였다. 임금(上)이 좌승지(左承旨) 채수(蔡壽)를 명하여 문안하게 하고,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은 선은(宣醞)과 인정 물건(人情物件)을 싸가지고 가서 정자 위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권감(權臧)·어세겸(魚世謙)·정난중(鄭蘭宗)이 참여하였다. 김승경이 인정 물건을 두 사신에게 증정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나는 본가(本家)에 가는 것도 아닌데 아울러 후사(厚賜)하심을 받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였다. 잔치가 과하자, 부사가 북향 재배하고 나갔다. 상사는 누선(樓船)을 타고 기생과 악공을 싣고 흐름을 따라 내려가 칠덕정(七德亭) 앞에 이르르니, 좌부승지(左副承旨) 변수(邊脩)가 또 선은(宣醞)을 싸가지고 이르렀다. 중국 사신이 극진히 즐기고 북향하여 고두(叩頭)하였다.	○副天使發向公州本家，上使餞于濟川亭。上命左承旨蔡壽問安，都承旨金升卿齎宣醞及人情物件以往，設宴于亭上，鄭昌孫、韓明澮、盧思愼、徐居正、權臧、魚世謙、鄭蘭宗與焉。金升卿呈人情物件于兩使，上使曰：“我則非向本家，而竝受厚賜，多謝多謝。”宴罷，副使北向再拜，而出，上使乘樓船載妓樂，順流而下，乃至七德亭前，左副承旨邊脩又齎宣醞而至，天使極歡，向北叩頭。
성종 118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6월 6일 (을묘) 1번째기사	중국사신인 상사(上使) 〈정동(鄭同)이〉 정거(鄭擧)의 집에 가니, 좌부승지(左副承旨) 변수(邊脩)를 보내어 선은(宣醞)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였다.	○乙卯/上天使往鄭擧家，遣左副承旨邊脩，齎宣醞往慰。
성종 118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6월 7일 (병진) 3번째기사	(…) 그 별폭에는, 호초(胡椒) 5백 근(斤), 화(畫) 3폭(幅), 절탁자(折桌子) 1개(介), 향로(香爐) 1개, 침향(沉香) 5백 근, 청자주해(靑磁酒海) 1개(箇), 사탕(沙糖) 1백 근, 야자(椰子) 10개, 감초(甘草) 1백 근, 흑시(黑柿) 2백 50근, 대랑피(大浪皮) 50매(枚), 청자발(靑磁鉢) 2매이었다. (…)	(…) 具如別幅。 胡椒五百斤、畫三幅、折桌子一介、香爐一介、沉香五百斤、靑磁酒海一箇、沙糖百斤、椰子十介、甘草百斤、黑柿二百五十斤、大浪皮五十枚、靑磁鉢二枚。(…)
성종 118권, 11년	부사(副使)가 강계숙(姜繼叔)의 집에 가니,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을	○庚午/副天使往姜繼叔家，命都承旨

<p>(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6월 21 일(경오) 1번째기사</p>	<p>명하여 선운(宣醜)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金升卿，齋宣醜往慰焉。</p>
<p>성종 118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6월 23 일(임신) 6번째기사</p>	<p>상사(上使)가 신천(信川)에서 돌아오니, 부사(副使)가 홍제원(洪濟院)에 나가 맞아 함께 돌아와 모화관(慕華館)에 이르렀다. 좌승지(左承旨) 김계창(金季昌)을 보내어 문안하게 하고, 또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선운(宣醜)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겸하여 궁시(弓矢)를 주니, 상사가 두세 번 고두(叩頭)하고 사례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관반(館伴) 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정난중(鄭蘭宗)이 잔치에 참여하였다. 상사가 노상에서 잉어[鯉魚]를 얻어 치진(馳進)하니, 임금이 신운(申雲)을 명하여 선운을 싸가지고 가서 사례하게 하였는데, 부사가 노하기를, “내가 공주(公州)에서 돌아올 때에는 내관(內官)을 보내지 않고 지금은 따로 보냈으니, 이것은 한 나무에 두 가지 과실이 열리는 것이다.” 하였다.</p>	<p>○上天使還自信川，副天使出迎于洪濟院，偕還至慕華館。遣左承旨金季昌問安，又命都承旨金升卿，齋宣醜往慰，兼贈弓矢，上使再三叩頭而謝。領議政鄭昌孫、上黨府院君韓明澮、光山府院君金國光、左議政尹弼商、館伴盧思愼·徐居正·鄭蘭宗參宴。上使在路上得鯉魚馳進，上命申雲，齋宣醜往謝之，副使怒曰：“我自公州還也，不遣內官，今則別遣，是一樹兩樣果子也。”</p>
<p>성종 119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7월 1일 (기묘) 3번째기사</p>	<p>상사(上使)가 바깥 남산(南山)을 유람하고자 하니, 부사(副使)가 병으로 사양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근시(近侍)하는 사람이니, 어찌 소원(疏遠)한 사람과 함께 놀려고 하겠는가?” 하자, 부사가 함께 가서 유람하였다.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 관반(館伴) 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 우찬성(右贊成) 강희맹(姜希孟)·평양군(平陽君) 박중선(朴仲善)·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가 따랐다. 도승지 김계창(金季昌)에게 명하여 선운(宣醜)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上使欲遊觀外南山，副使辭以疾。上使曰：“彼近侍者也，豈肯與疏遠之人遊乎？”副使偕往遊觀。上黨府院君韓明澮、光山府院君金國光、館伴盧思愼·徐居正、右贊成姜希孟、平陽君朴仲善、禮曹判書李承召從焉。命都承旨金季昌，齋宣醜往慰。</p>
<p>성종 119권, 11년</p>	<p>우부승지(右副承旨) 성현(成愼)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니, 상사(上使)가 성현</p>	<p>○辛巳/右副承旨成愼，問安于天使。</p>

<p>(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7월 3일 (신사) 1번째기사</p>	<p>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우리들이 주관(州官)·통사(通事)·도감 관원(都監官員)을 승직시키도록 청하여 전하께서 이미 허락하였는데, 어제 도승지가 와서 말하기를, ‘자금이 다한 자는 대가(代加)한다.’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승습(承襲)하는 법은 있지만, 대가하는 법 같은 것은 중국 조정에서 듣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의 법제는 천하의 공통인데, 어찌 본국만 다름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우리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마땅히 친히 대궐 문에 나아가서 기어코 청을 이룬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또 내가 강 태감과 함께 명을 받고서 왔는데, 내가 한 가지 말을 발하면 반드시 강 태감에게 고하여 서로 이간을 시키니, 이것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일에 청하여 잔치할 때에 내가 인삼(人蔘) 1백 근을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허락만 하고 주지 않으시니, 의심컨대 반드시 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현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어찌 잊으셨겠습니까? 장차 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성현이 이것을 와서 아뢰니, 곧 좌승지(左承旨) 채수(蔡壽)에게 명하여 인삼 2백 근을 싸가지고 가서 두 사신에게 주고, 상사에게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대인이 도승지의 말을 가지고 이간시키는 것이라 하는데, 도승지가 임의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전한 것입니다. 전일에 대인이 신천(信川)에 있을 때 부사가 진헌한 나머지 물건을 청하기에 내가 이미 허락하였는데, 만일 대인의 말에 따라서 주지 않으면 부사에게 신의를 잃을까 두렵고, 부사의 청에 따라서 주면 대인이 불가하다고 할까 두렵기 때문에, 도승지로 하여금 두 대인에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어제 도승지의 말을 듣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신 사이에 드</p>	<p>上使語倪曰：“前日俺等，請州官、通事、都監官員陞職，殿下既許之矣。昨日都承旨來言：‘資窮者代加。’如其父死子襲之，法則有之，若代加之法，中朝所未聞也。中朝法制，通于天下，豈本國而有異乎？殿下若不從俺等之請，則當親詣殿門，期於得請而後已也。且予與姜太監，同受命而來，予發一言，則必告於姜太監，使相離間，是大不可。”又曰：“前日請宴時，俺請人蔘百斤，殿下許而不給，疑必忘之矣。”倪答曰：“殿下豈忘之？行當贈之矣。”倪以此來啓，即命左承旨蔡壽，齎人蔘二百斤，贈兩使，言於上使曰：“今聞大人，以都承旨之言，爲離間，非都承旨擅自言之，乃傳我所言耳。前日大人在信川時，副使請進獻餘物，予已諾矣，若從大人之言，而不贈，則恐失信於副使，從副使之請，而贈之，則恐大人以爲不可，故命都承旨，語于兩大人耳。”上使曰：“昨聞都承旨之言，不勝鬱抑。兩使之間，遂成嫌隙，豈有是理也哉？予於前日，非獨請人蔘，亦請通事等陞職，人蔘則送之，獨不陞通事之職何耶？”壽答曰：</p>
---	---	---

	<p>디어 혐의스러운 틈이 이루어졌으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전일에 인삼만 청한 것이 아니라 또한 통사 등을 승직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인삼은 보내고 통사는 승직시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p> <p>하니, 채수가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께 아뢰겠습니다.”</p> <p>하였다.</p>	<p>“當啓殿下。”</p>
<p>성종 119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7월 8일 (병술) 3번째기사</p>	<p>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승(使僧) 경종(敬宗)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창해(蒼海)가 멀리 막혔으니, 살피지 못하건대 기거(起居)가 어떠하십니까? 힘써 바라고 바랍니다. 삼가 은혜를 베풀어 돌보아주심을 받고 멀리서 행리(行李)를 위로하였습니다. 서사(書辭)는 간곡하고 지극하였으며 거기다가 진귀한 물건까지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폐방(敝邦)의 백성이 배가 풍파를 만나서 귀도(貴島)에 표류·기착(寄着)하였는데 보호를 해주어서 본토에 돌아오게 하였으니, 능히 전날의 화호(和好)를 닦았다고 하겠습니다. 보낸 상관인(上官人) 동조(同照)가 불행하게도 중도에서 운명하였으니, 참으로 슬프고 애석하여 관원을 보내어서 조제(弔祭)하고는 토산물은 그런 대로 성의를 표하여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p> <p>하고, 별폭(別幅)은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정포(正布) 4백 4필, 면포(綿布) 4백 4필, 채화석(彩花席) 5장(張), 만화석(滿花席) 5장, 만화방석(滿花方席) 5장, 인삼(人蔘) 20근, 유지(油紙) 10장, 소주(燒酒) 30병(瓶), 표피심(豹皮心) 호피변(虎皮邊) 좌자(坐子) 1사(事)이었다.</p>	<p>○琉球國王使僧敬宗辭。其答書曰：滄溟限隔，未審起居奚似？勤企勤企。伏蒙惠顧，遠勞行李。書辭懇至，加以珍貺，祇謝祇謝。往者敝邦之氓，舟楫失利，漂寓貴島，獲賜保護，俾還本土，可謂能修前好矣。所遣上官人同照，不幸道殞，良用憫惜，遣官弔祭斂葬如儀，伏惟照悉。不腆土宜，聊表忱誠，具在別幅。謹此不宣。別幅，白細綿紬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一十匹、正布四百四匹、綿布四百四匹、彩花席五張、滿花席五張、滿花方席五張、人蔘二十斤、油紙一十張、燒酒三十瓶、豹皮心虎皮邊坐子一事。</p>
<p>성종 119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7월 8일 (병술) 6번째기사</p>	<p>두 사신이 바깥 남산(南山)에서 놀았다. 관반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임의로 편안히 놀고자 하니, 전하로 하여금 알게 하지 마시오.”</p> <p>하였다. 임금이 듣고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에게 명하여 문안하게 하고, 또 좌승지(左承旨) 채수(蔡壽)에게 명하여 선은(宣醢)을 싸가지고 가서 위</p>	<p>○兩使遊于外南山，語館伴曰：“俺等欲任便遨遊，無使殿下知之。”上聞之，命都承旨金季昌問安，又命左承旨蔡壽，齎醢往慰之曰：。今此之遊，</p>

	<p>로하기를, “이번 이 놀이가 생각지도 않았던 데에서 나왔으므로, 무릇 지공(支供)하는 것을 반드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사례하기를, “전하께 번거롭게 할까 두려워서 슬그머니 여기에 왔는데, 방문하여 위로하고 또 진미(珍味)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강 위에 바람을 받는 돛단배가 왕래하는 것을 바라보고 매우 즐거워하면서 관반에게 이르기를, “경치의 좋은 것이 선경(仙境)과 같습니다. 후일에 마땅히 이 놀이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였다.</p>	<p>出於不意，凡支供，必不及辦也。” 兩使謝曰：“恐煩殿下，潛身來此，深感問慰，又賜珍味。” 兩使望見江上風帆往來，樂甚謂館伴曰：“景物之勝，有似仙境。後日當續此遊。”</p>
<p>성종 119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7월 11일(기축) 5번째기사</p>	<p>중국 사신인 부사(副使) 강옥(姜玉)이 죽은 지신사(知申事) 곽존중(郭存中)의 딸의 집에 가니,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강옥은 어렸을 때에 이 집에서 부양되었다.</p>	<p>○副天使姜玉，往卒知申事郭存中女家，命都承旨金季昌，齎宣醞往慰之。玉少時，養于此家。</p>
<p>성종 119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7월 15일(계사) 1번째기사</p>	<p>두 사신이 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의 집에 가니, 도승지 김계창(金季昌)으로 하여금 선온(宣醞)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癸巳/兩使往上黨府院君韓明澮家，命都承旨金季昌，齎宣醞往慰之。</p>
<p>성종 119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7월 22일(경자) 1번째기사</p>	<p>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우부승지(右副承旨) 성현(成愼)을 태평관(太平館)에 보내어 진헌하는 물건을 봉(封)하는데, 두 사신이 친히 스스로 계산하여 점고(點考)하였다. 그 물건은 만세패(萬歲牌) 10좌(座), 봉적(鳳的) 5좌(座), 공작적(孔雀的) 5좌, 상아(象牙) 조각룡(彫刻龍) 등 각양(各樣) 10류(流), 수산(壽山) 등 각양 10류, 용선(龍船) 등 각양 10류, 팔길상(八吉祥) 20류, 팔보(八寶) 20류, 비어(飛魚) 등 각양 10류, 초수(草獸) 등 각양 10류, 사자(獅子) 등 각양 10류, 원앙(鴛鴦) 등 각양 10</p>	<p>○庚子/遣禮曹判書李承召、都承旨金季昌、右副承旨成愼于太平館，封進獻物件，兩使親自計點其物件。萬歲牌十座、鳳的五座、孔雀的五座、象牙雕刻龍等各樣十流、壽山等各樣十流、龍船等各樣十流、八吉祥二十流、八寶二十流、飛魚等各樣十流、</p>

	<p>류, 용(龍)·앵무(鸚鵡) 등 각양 10류, 참외[栝瓜] 등 각양 10류, 압아(鴨兒) 등 10류, 자면주(紫綿紬) 30필(匹), 대홍면주(大紅綿紬) 20필, 홍면주(黃綿紬) 20필, 다갈면주(茶褐綿紬) 25필, 유청면주(柳靑綿紬) 25필, 초록면주(草綠綿紬) 20필, 수면주(水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30필, 저사겸직포(苧絲兼織布) 10필, 자면포(紫綿布) 20필, 녹색면포(綠綿布) 20필, 대홍면포(大紅綿布) 20필, 황면포(黃綿布) 20필, 다갈면포(茶褐綿布) 20필, 유청면포(柳靑綿布) 20필, 초록면포(草綠綿布) 20필, 백저포 삼아(白苧布衫兒) 10, 흑마포 삼아(黑麻布衫兒) 10, 백저초 군아(白苧布裙兒) 10, 체비(鬣篋) 2백, 초서피(貂鼠皮) 2백 장(張), 토표피(土豹皮) 5장, 중앙 연석(中樣硯石) 5갑구(匣具), 소양 연석(小樣硯石) 5갑구, 대양 황모필(大樣黃毛筆) 2백 지(枝), 토모필(兔毛筆) 2백 지, 중앙 황모필(中樣黃毛筆) 2백 지, 용향 원묵(龍香圓墨) 1백 홀(笏), 강궁(強弓) 10장(張), 중궁(中弓) 10장, 약궁(弱弓) 10장, 대고도리(臺古都里) 20지(枝), 두을언고도리(豆乙彦古都里) 1백 지(枝), 소고도리(小古都里) 60지, 거리전(居里箭) 60지, 서보자(西甫子) 60지, 상품 백후지(上品白厚紙) 5권(卷), 중품 백후지(中品白厚紙) 5권, 세죽선(細竹扇) 3백 파(把), 화면선(畫面扇) 50파, 소죽선(小竹扇) 2백 파, 변화석(邊花席) 20장(張), 만화석(滿花席) 20장, 삼사 도자(三事刀子) 50부(部), 오사 도자(五事刀子) 50부, 대양 단도(大樣單刀) 50부, 소양 단도(小樣單刀) 50부, 대록포(大鹿脯) 15속(束), 녹편포(鹿片脯) 2백 개, 건문어(乾文魚) 2백 미(尾), 건수어(乾秀魚) 2백 미, 건연어(乾鯁魚) 2백 미, 건대구어(乾大口魚) 3백 미, 건전복(乾全腹) 2백 속, 건오징어[乾鳥賊魚] 8백 미, 건광어(乾廣魚) 2백 미, 곤포(昆布) 2백 근, 다시마[塔上麻] 2백 근, 김[海衣] 1백 근, 미역[海菜耳] 1백 근, 석균(石菌) 1백 근, 향심(香蕈) 1백 근, 홍소주(紅燒酒) 10병(瓶), 백소주(白燒酒) 10병, 잣[松子] 2백 근, 인삼(人蔘) 50근, 상아 호로(象牙葫蘆) 20류(流), 황양목 호로(黃楊木葫蘆) 50류, 진호로 소적(眞葫蘆小的) 20류, 진호로 표아(眞葫蘆瓢兒) 50개,</p>	<p>草獸等各樣十流、獅子等各樣十流、鴛鴦等各樣十流、龍鸚鵡等各樣十流、栝瓜等各樣十流、鴨兒等十流、紫綿紬三十四匹、大紅綿紬二十四匹、黃綿紬二十四匹、茶褐綿紬二十五匹、柳靑綿紬二十五匹、草綠綿紬二十四匹、水綿紬十四匹、白細苧布三十四匹、苧絲兼織布十四匹、紫綿布二十四匹、綠綿布二十四匹、大紅綿布二十四匹、黃綿布二十四匹、茶褐綿布二十四匹、柳靑綿布二十四匹、草綠綿布二十四匹、白苧布衫兒十、黑麻布衫兒十、白苧布裙兒十、鬣篋二百、貂鼠皮二百張、土豹皮五張、中樣硯石五(甲) [匣] 具、小樣硯石五匣具、大樣黃毛筆二百枝、兔毛筆二百枝、中樣黃毛筆二百枝、龍香圓墨一百笏、強弓十張、中弓十張、弱弓十張、臺古都里二十枝、豆乙彦古都里百枝、小古都里六十枝、居里箭六十枝、西甫子六十枝、上品白厚紙五卷、中品白厚紙五卷、細竹扇三百把、畫面扇五十把、小竹扇二百把、邊花席二十張、滿花席二十張、三事刀子五十部、五事刀子五十部、大樣單刀五十部、小樣單刀五十部、</p>
--	---	---

	<p>호아(虎牙) 50류, 장아(獐牙) 50류, 산양각(山羊角) 50개, 세교문합(細巧文蛤) 1백 50류, 회합(回蛤) 1백 50류, 반합(斑蛤) 1백 50류, 가대아(茄袋兒) 20류, 각양 수량아(各樣繡囊兒) 20개, 각양 첩량아(各樣貼囊兒) 20개, 호로 침가아(葫蘆針家兒) 10개, 침가아(針家兒) 30개, 청과아(靑苳兒) 50류(流), 청구아(靑鳩兒) 20류, 녹압아(綠鴨兒) 20류, 능각아(菱角兒) 20류, 연화아(蓮花兒) 20류, 고아(鼓兒) 20류이었다. 또 한씨(韓氏)에게 보내는 물건은 대별폭(大別幅)에 부치는 것으로서 자면주(紫綿紬) 5필, 녹면주(綠綿紬) 5필, 유청면주(柳靑綿紬) 5필, 백저포(白苧布) 30필, 흑마포(黑麻布) 30필, 수량아(繡囊兒) 10개, 침가아(針家兒) 10개, 장아아(獐牙兒) 10류, 호아아(虎牙兒) 10류, 호로아(葫蘆兒) 10류, 청과아(靑苳兒) 10류, 중앙 삼사 도자(中樣三事刀子) 30부(部), 소양 삼사 도자(小樣三事刀子) 10부, 소죽선(小竹扇) 50과(把), 세죽선(細竹扇) 50과, 세교문합(細巧文蛤) 50류, 회합(回蛤) 50류, 반합(斑蛤) 30류, 다시마[塔士麻] 40근, 곤포(昆布) 40근, 김[海衣] 40근, 녹중포(鹿中脯) 50개, 건문어(乾文魚) 20미(尾), 건대구어(乾大口魚) 50미, 건전복(乾全鰓) 30속(束), 오징어[烏賊魚] 2백 미, 향심(香蕈) 20근이고, 소별폭(小別幅)에 부치는 것으로서 자면주 10필, 대홍면주 10필, 녹면주 10필, 유청면주(柳靑綿紬) 10필, 초록면주(草綠綿紬) 10필, 초록면포 5필, 유청면포 5필, 백저포 30필, 흑마포 50필, 중앙 삼사도자(中樣三事刀子) 30부, 소양 삼사 도사 30부, 세죽선(細竹扇) 50과, 수량아(繡囊兒) 10개, 장아아(獐牙兒) 10류, 침가아(針家兒) 10류, 호아아(虎牙兒) 10류, 호로아(葫蘆兒) 10류, 청과아(靑苳兒) 30류, 반합(斑蛤) 30류, 회합(回蛤) 30류, 세교문합(細巧文蛤) 30류, 초서피피(貂鼠皮被) 1상(床), 초서피의(貂鼠皮衣) 1령(領), 다시마[塔士麻] 50근, 곤포(昆布) 50근, 김[海衣] 20근, 녹중포(鹿中脯) 50개, 향심(香蕈) 30근, 해백채(海白菜) 20근, 건수어(乾秀魚) 50미, 건문어(乾文魚) 20미, 건대구어(乾大口魚) 50미, 건전복(乾全鰓) 15속(束), 건오징어[乾烏賊魚] 2백 미이었다.</p>	<p>大鹿脯十五束、鹿片脯二百箇、乾文魚二百尾、乾秀魚二百尾、乾鰓魚二百尾、乾大口魚三百尾、乾全鰓二百束、乾烏賊魚八百尾、乾廣魚二百尾、昆布二百斤、答士麻二百斤、海衣一百斤、海菜耳一百斤、石菌一百斤、香蕈一百斤、紅燒酒十瓶、白燒酒十瓶、松子二百斤、人蔘五十斤、象牙葫蘆二十流、黃楊木葫蘆五十流、眞葫蘆小的二十流、眞葫蘆瓢兒五十箇、虎牙五十流、獐牙五十流、山羊角五十箇、細巧文蛤一百五十流、回蛤一百五十流、斑蛤一百五十流、茄袋兒二十流、各樣繡囊兒二十箇、各樣貼囊兒二十箇、葫蘆針家兒十箇、針家兒三十箇、靑苳兒五十流、靑鳩兒二十流、綠鴨兒二十流、菱角兒二十流、蓮花兒二十流、鼓兒二十流。 又韓氏處贈送物件，大別幅付，紫綿紬五匹、綠綿紬五匹、柳靑綿紬五匹、白苧布三十四匹、黑麻布三十四匹、繡囊兒十箇、針家兒十箇、獐牙兒十流、虎牙兒十流、葫蘆兒十流、靑苳兒十流、中樣三事刀子三十部、小樣三事刀子十部、小竹扇五十把、</p>
--	---	---

		<p>細竹扇五十把、細巧文蛤五十流、回蛤五十流、斑蛤三十流、塔土麻四十斤、昆布四十斤、海衣四十斤、鹿中脯五十箇、乾文魚二十尾、乾大口魚五十尾、乾全鰵三十束、烏賊魚二百尾、香蕈二十斤、小別幅付、紫綿紬十四、大紅綿紬十四、綠絨紬十四、柳青綿紬十四、草綠綿紬十四、草綠絨布五匹、柳青綿布五匹、白苧布三十四、黑麻布五十四、中樣(布)三事刀子三十部、小樣三事刀子三十部、細竹扇五十把、小竹扇五十把、繡囊兒十箇、獐牙兒十流、針家兒十流、虎牙兒十流、(蛤) [葫] 蘆兒十流、青菘兒三十流、斑蛤三十流、回蛤三十流、細巧文蛤三十流、貂鼠皮被一床、貂鼠皮衣一領、塔土麻五十斤、昆布五十斤、海衣二十斤、鹿中脯五十箇、香蕈三十斤、海白菜二十斤、乾秀魚五十尾、乾文魚二十尾、乾大口魚五十尾、乾全鰵十五束、乾烏賊魚二百尾。</p>
<p>성종 119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7월 27</p>	<p>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의 처 한씨(韓氏)가 졸(卒)하였으니, 예에 의하여 부의로 쌀·콩 아울러 40석, 정포(正布) 50필, 청밀(淸蜜) 7두(斗), 유(油) 10</p>	<p>○傳旨戶曹曰：“桂陽君增妻韓氏卒，依賜賻米豆并四十碩、正布五十四、淸蜜七斗、油十斗、紙一百卷、石灰</p>

일(을사) 2번째기사	두, 종이 1백 권, 석회(石灰) 50석을 주어라.” 하였는데, 증(贈)의 처는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의 언니[姊]였다.	五十碩。”增妻，乃仁粹王大妃之姊也。
성종 120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8월 1일 (무신) 1번째기사	두목(頭目) 18인이 먼저 떠나려고 와서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술을 대접하고, 인하여 물건을 내려 주었다.	○朔戊申/頭目十八人，以先行來辭，上，御宣政殿饋酒，仍賜物。
성종 120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8월 2일 (기유) 1번째기사	두 사신이 정거(鄭舉)의 집에 가니,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에게 명하여 선운(宣醞)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己酉/兩使往鄭舉家，命都承旨金季昌，齎宣醞往慰之。
성종 120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8월 4일 (신해) 1번째기사	경복궁(景福宮)에 거동하여 두 사신에게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잔치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배사(拜辭)하고자 하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남면(南面)하여 예를 받으소서.” 하니, 임금이 굳이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선물로 두 사신에게 각각 백저포(白苧布)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 호피(狐皮) 40장, 6폭짜리 유둔(油苧) 2장, 2폭짜리 유둔 2장, 작설차[雀舌茶] 2두(斗), 표피(豹皮) 2장을 주니, 두 사신이 고두(叩頭)하여 사례하였다. 부사(副使)가 친히 꽃을 잡고 임금에게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중국 조정의 예입니다.” 하였다. (...)	○辛亥/幸景福宮，宴兩使於慶會樓下。兩使曰：“吾等欲拜辭，請殿下南面受禮。”上固讓，不得已從之。因贈人情物件，兩使處，各白苧布十匹、黑麻布十匹、狐皮四十張、六幅付油苧二張、二幅付油苧二張、雀舌茶二斗、豹皮二張，兩使叩頭而謝。副使親執花，進上前曰：“此是朝廷之禮。”(...)
성종 120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8월 9일 (병진) 2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사신이 오는 것은 한 번이 아닌데, 본국에 폐해를 끼친 것은 금년이 더욱 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통사(通事)에게서 연유합니다. 심지어 호조(戶曹)의 방목(榜目)까지 두목(頭目)에게 가리켜 보여 무릇 우리 나라에서 숨기	○御經筵。講訖，執義李德崇、獻納金成慶啓曰：“使臣之來非一，而貽弊本國，今年尤甚。所以致此者，皆由於通事。至以戶曹榜目，指示頭目，凡我國所諱，無不洩之，罪莫大焉。

	<p>는 것을 누설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를 다스리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옳다. 또한 사신의 족친에게도 죄가 있다.”</p> <p>하였다. 이덕숭 등이 말하기를,</p> <p>“족친이 몰래 사신에게 청탁하여 스스로 전민(田民)을 점거(占據)하였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그 욕망을 달성한 것은 통사입니다. 지금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먼저 족친을 추궁하면 통사의 죄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p> <p>하였다.</p> <p>이덕숭이 말하기를,</p> <p>“경기(京畿) 백성이 사신의 행차로 인하여 곤란과 고생이 막심하였으니, 청컨대 요역(徭役)을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하고, 또 금년 경기에서 점마(點馬)10693) 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이덕숭·김성경이 또 아뢰기를,</p> <p>“낙산사의 노비를 영세토록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그 자손(子孫)을 본도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소속하게 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덕숭이 아뢰기를,</p> <p>“낙산사의 증은 한 도의 큰 해가 되는데, 백성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하니, 백성이 더욱 괴롭게 여깁니다. 미역[海菜] 종류는 오히려 괜찮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것까지 금하고, 그 노비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여서 이리 저리 판매하여 치부(致富)합니다. 각 고을에서 불시에 진상할 것이 있으면 도리어 중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중들은 사치하고 방자하여지</p>	<p>請治之。” 上曰：“可。 且使臣族親，亦有罪矣。” 德崇等曰：“族親潛囑使臣，自占田民，(城) [誠] 有罪也。 然周旋其間，道達其欲者，通事也。 今不治之，必爲後患。” 上曰：“先推族親，則通事之罪，自露矣。” 德崇曰：“畿甸之民， 因使臣之行， 困苦莫甚，請停徭役，以寬其力。 且停今年京畿點馬。” 上皆從之。 德崇、成慶又啓曰：“洛山寺奴婢，命傳永世不便。 請以其子枝， 分屬本道諸邑。” 不聽。 德崇又啓曰：“洛山寺僧，爲一道巨害，禁民採海，民尤苦之。 海菜之類，猶可也，至於禁人捕魚，使其奴婢，專擅其利，轉販致富。 各官有不時之獻，則反資於僧，故僧徒侈肆，民生日貧，郡邑日殘，今又永傳其奴婢，尤爲不可也。” 不聽。 領事洪應曰：“臣以宣慰使，到碧蹄驛，見漢司饗者，與頭目，交結作弊， 諸邑不能堪也。” 上曰：“伴送使，其不能禁之耶？ 若有弊，則當勿遣。” 應曰：“天使過碧蹄，不過一日支供，而京畿守令來會者，至十餘人，其弊不貲。 黃海以北諸邑諸站，則二邑措辦，不爲不足。” 上曰：“卿</p>
--	---	--

	<p>며 백성은 날로 가난하여지고 군읍(郡邑)은 날로 쇠잔하여지는데, 지금 또 그 노비를 영구히 전하게 되면 더욱 옳지 못합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신이 선위사(宣慰使)로 벽제역(碧蹄驛)에 가서 보았는데, 한사옹(漢司饗)이 두목(頭目)과 결탁하여 폐단을 만들므로 여러 고을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송사(伴送使)가 금하지 못하는가? 만일 폐해가 있다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p> <p>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벽제역을 지나가게 되면 하루의 지공(支供)에 불과한데, 경기의 수령으로 와서 모인 자가 10여 명이나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황해도(黃海道) 이북 여러 고을의 여러 참(站)에는 두 고을이 조차하고 준비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내가 마땅히 상정(詳定)하겠다.”</p> <p>하였다.</p> <p>이덕숭·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방산수 이난(李瀾)이 처음에는 어유소·노공필·김세적·김칭·김휘·정숙지가 어울우동을 간통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어 숨기니, 청컨대 끝까지 추궁하여 진실을 알아내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가 제 죄를 가볍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무고(誣告)하여 끌어낸 것이 많으니, 어찌 반드시 다시 물겠는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p>	<p>言甚善。 予當詳定之。” 德崇、成慶又啓曰：“方山守瀾，初言魚有沼、盧公弼、金世勳、金僞、金暉、鄭叔墀，奸於乙宇同，今乃變辭諱之，請窮推得情。” 上曰：“方山守，欲輕其罪，故多誣引，何必更問？置之可也。” 成慶曰：“瀾罪大，而只流于高靈，請遠竄。” 上曰：“可。”</p>
--	--	---

	<p>하였다. 김성경이 말하기를, “난(瀾)이 죄가 큰데 다만 고령(高靈)에 귀양보냈으니,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p>	
<p>성종 120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8월 11 일(무오) 4번째기사</p>	<p>원의승(源義勝)의 사자(使者) 치부(治部)가 하직하였다. 그 회답하는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글을 받고서 편안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영수하였으며, 토산물[土宜]로 백저포(白苧布) 10필, 표피(豹皮) 2장(張), 채화석(彩花席) 5장, 인삼(人蔘) 3근, 잣[栝子] 15두(斗), 청밀(淸蜜) 3두, 소주(燒酒) 10병을 돌아가는 사신편에 부치니, 영수하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양심(良心)을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사실은 양심이 아니라 귀국의 사자인 묘무(妙茂)·경유(慶瑜)였습니다. 무술년(10699) 6월 일에 제주(濟州) 지경에 표박(漂泊)하였는데, 경비하는 군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만류(挽留)하여 변장(邊將)에게 고하였습니다. 변방의 장수가 귀국의 사자라는 것을 살펴 알고 후하게 관대(館待)하고서 돌아가는 길을 가리켜 주었으므로, 묘무 등이 곧 글을 써서 사례하고 갔으며, 처음부터 가두어 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족하(足下)가 들은 것은 사실과 틀린 것입니다. 요구한 흰매[白鷹]는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대로 하지 못합니다. 끝으로保重(保重)하기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하였다.</p>	<p>○源義勝使治部辭。 其修答書契曰： 承惠， 得認康勝， 開慰。 所獻禮物， 謹啓收訖。 將土宜白苧布一十四、 豹皮二張、 彩花席五張、 人蔘三斤、 栝子一十五斗、 淸蜜三斗、 燒酒一十瓶， 付回使， 惟領留。 就中良心囚繫事實， 非良心， 貴使妙茂、 慶瑜。 於戊戌六月日， 到泊濟州境上， 戍卒， 不知爲何如人， 挽留以告邊將。 邊將審其貴使， 館待優厚， 指示歸路， 妙茂等， 卽修書回謝而去， 初無囚繫之事。 足下所聞， 過其實矣。 所索白鷹， 非本國所產， 未得依諭。 餘冀保重， 不宣。</p>
<p>성종 120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8월 19 일(병인) 1번째기사</p>	<p>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한한(韓僞)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北京)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拜禮)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싸가지고 가는 별진헌(別進獻)의 물목(物目)은 만세패(萬歲牌) 10좌(座), 봉적(鳳的) 5좌, 공작적(孔雀的) 5좌, 자면</p>	<p>○丙寅/遣同知中樞府事韓僞， 奉表如京師， 賀聖節， 上， 率百官， 拜表如儀。 其齋去別進獻物目， 萬歲牌十座、 鳳的五座、 孔雀的五座、 紫綿紬</p>

	<p>주(紫綿紬) 50필, 녹색면주(綠綿紬) 50필, 대홍면주(大紅綿紬) 30필, 황면주(黃綿紬) 30필, 다갈면주(茶褐綿紬) 45필, 유청면주(柳靑綿紬) 45필, 초록면주(草綠綿紬) 30필, 수록면포(水綠綿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50필, 저사겸직포(苧絲兼織布) 20필, 자면포(紫綿布) 30필, 녹색면포(綠綿布) 30필, 대홍면포(大紅綿布) 30필, 황면포(黃綿布) 30필, 다갈면포(茶褐綿布) 30필, 유청면포(柳靑綿布) 30필, 초록면포(草綠綿布) 30필, 수록면포(水綠綿布) 10필, 백저포삼아(白苧布衫兒) 12건, 흑마포삼아(黑麻布衫兒) 11건, 백저포군아(白苧布裙兒) 10건, 흑마포군아(黑麻布裙兒) 2건, 대홍면주겹철릭(大紅綿紬袂帖裏) 2건, 다갈면주겹탑호(茶褐綿紬袂搭胡) 1건, 초록면주겹직신(草綠綿紬袂直身) 1건, 백저포철릭(白苧布帖裏) 1건, 흑마포직신(黑麻布直身) 1건, 초록저포탑호(草綠苧布搭胡) 1건, 대홍면주겹오아(大紅綿紬袂襖兒) 1건, 다갈면주겹오아(茶褐綿紬袂襖兒) 1건, 초록면주겹군아(草綠綿紬袂裙兒) 1건, 수록면포겹군아(水綠綿布袂裙兒) 1건, 케비(鬚篋) 3백 파(把), 초서피(貂鼠皮) 3백 장(張), 토표피(土豹皮) 7장, 중앙연석(中樣硯石) 10사, 갑구소양연석(匣具小樣硯石) 10사, 갑구대양황모필(匣具大樣黃毛筆) 3백 지(枝), 중앙황모필(中樣黃毛筆) 3백 50지, 토호필(兎毫筆) 3백 50지, 용향원묵(龍香圓墨) 2백 홀(笏), 용향방장묵(龍香方長墨) 2백 홀, 강궁(強弓) 25장(張), 중궁(中宮) 25장, 양궁(弱弓) 30장, 대고도리(臺古都里) 40지, 두을언고도리(豆乙彦古都里) 1백 40지, 소고도리(小古都里) 1백 20지, 거리전(居里箭) 1백 20지, 서보자(西甫子) 1백 20지, 상아조각룡(象牙雕刻龍) 등 각양(各樣) 10류(流), 수산(壽山) 등 각양 10류, 용선(龍船) 등 각양 10류, 팔길상(八吉祥) 20류, 팔보(八寶) 20류, 비어(飛魚) 등 각양 10류, 초수(草獸) 등 각양 10류, 사자(獅子) 등 각양 10류, 원양(鴛鴦) 등 각양 10류, 앵무(鸚鵡) 등 각양 10류, 참외[蛄瓜]·압아(鴨兒) 등 10류, 호로(葫蘆) 70류, 우골호로(牛骨葫蘆) 70류, 황양목호로(黃楊木葫蘆) 1백 류, 진호로소적(眞葫蘆小的) 40류, 진호로표아(眞葫蘆瓢</p>	<p>五十四、綠綿紬五十四、大紅緜紬三十四、黃緜紬三十四、茶褐綿紬四十五匹、柳靑綿紬四十五匹、草綠緜紬三十四、水綠綿布十四、白細苧布五十四、苧絲兼織布二十四、紫綿布三十四、綠綿布三十四、大紅綿布三十四、黃緜布三十四、茶褐緜布三十四、柳靑綿布三十四、草綠綿布三十四、水綠綿布十四、白苧布衫兒十一件、黑麻布衫兒十一件、白苧布裙兒十件、黑麻布裙兒二件、大紅綿紬袂帖裏二件、茶褐綿紬袂搭胡一件、草綠綿紬袂直身一件、白苧布帖裏一件、黑麻布直身一件、草綠苧布搭胡一件、大紅綿紬袂襖兒一件、茶褐綿紬袂襖兒一件、草綠綿紬袂裙兒一件、水綠綿布袂裙兒一件、鬚篋三百把、貂鼠皮三百張、土豹皮七張、中樣硯石十事、匣具小樣硯石十事、匣具大樣黃毛筆三百枝、中樣黃毛筆三百五十枝、兎毫筆三百五十枝、龍香圓墨二百笏、龍香方長墨二百笏、強弓二十五張、中弓二十五張、弱弓三十張、臺古都里四十枝、豆乙彦古都里一百四十枝、小古都里一百二十</p>
--	--	---

	<p>兒) 1백 개, 진호로 원적(眞葫蘆圓的) 50개, 각양 호아아 각룡두(各楊虎牙兒刻龍頭) 1백 류, 장아아 각룡두(獐牙兒刻龍頭) 1백 류, 산양각 각룡두(山羊角刻龍頭) 1백 류, 세교문합(細巧文蛤) 2백 50류, 회합(回蛤) 2백 50류, 반합(班蛤) 2백 50류, 각양 가대아(各樣茄袋兒) 40류, 각양 수랑아(各樣繡囊兒) 40개, 각양 칩랑아(各樣貼囊兒) 40개, 호로 침가아(葫蘆針家兒) 20개, 침가아(針家兒) 60개, 청과아(靑瓜兒) 1백 개, 청구아(靑鳩兒) 30개, 녹압아(綠鴨兒) 30류, 능각아(菱角兒) 30류, 연화아(蓮花兒) 30류, 고아(鼓兒) 30류, 상품 백후지(上品白厚紙) 10권(卷), 중품 백후지(中品白厚紙) 10권, 세죽선(細竹扇) 6백 과, 화면선(畫面扇) 1백 과, 원과선(圓把扇) 1백 과, 소죽선(小竹扇) 4백 과, 변화석(邊花席) 40장, 만화석(滿花席) 40장, 삼사 도자(三事刀子) 1백 20부(部), 오사 도자(五事刀子) 1백 20부, 대양 단도(大洋單刀) 1백 30부, 소양 단도(小樣單刀) 1백 30부, 대록포(大鹿脯) 30속(束), 녹편포(鹿片脯) 4백 개, 건문어(乾文魚) 4백 미(尾), 건대구어(乾大口魚) 6백 미, 건전복어(乾全鞭魚) 4백 속, 건오징어[乾烏賊魚] 1천 6백 미, 건광어(乾廣魚) 4백 미, 건수어(乾秀魚) 4백 미, 건연어(乾鱧魚) 2백 근, 곤포(昆布) 4백 근, 다시마[塔土麻] 4백 근, 김[海衣] 2백 근, 미역[海菜耳] 2백 근, 향심(香蕈) 2백 근, 석균(石菌) 1백 근, 홍소주(紅燒酒) 20병, 백소주 20병, 잣[松子] 4백 근, 인삼(人蔘) 1백 근이었다.</p>	<p>枝、居里箭一百二十枝、西甫子一百二十枝、象牙雕刻龍等各樣十流、壽山等各樣十流、龍船等各樣十流、八吉祥二十流、八寶二十流、飛魚等各樣十流、草獸等各樣十流、獅子等各樣十流、鴛鴦等各樣十流、鸚鵡等各樣十流、聒瓜鴨兒等十流、葫蘆七十流、牛骨葫蘆七十流、黃楊木葫蘆一百流、眞葫蘆少的四十流、眞葫蘆瓢兒一百箇、眞葫蘆圓的五十箇、各樣虎牙兒刻龍頭一百流、獐牙兒刻龍頭一百流、山羊角刻龍頭一百流、細巧文蛤二百五十流、回蛤二百五十流、班蛤二百五十流、各樣茄袋兒四十流、各樣繡囊兒四十箇、各樣貼囊兒四十箇、葫蘆針家兒二十箇、針家兒六十箇、靑瓜兒一百箇、靑鳩兒三十箇、綠鴨兒三十流、菱角兒三十流、蓮花兒三十流、鼓兒三十流、上品白厚紙十卷、中品白厚紙十卷、細竹扇六百把、畫面扇一百把、圓把扇一百把、小竹扇四百把、邊花席四十張、滿花席四十張、三事刀子一百二十部、五事刀子一百二十部、大樣單刀一百三十部、少樣單刀一百三十部、</p>
--	---	---

		大鹿脯三十束、鹿片脯四百箇、乾文魚四百尾、乾大口魚六百尾、乾全鰓魚四百束、乾烏賊魚一千六百尾、乾廣魚四百尾、乾秀魚四百尾、乾鱧魚二百尾、昆布四百斤、塔土麻四百斤、海衣二百斤、海菜耳二百斤、香蕈二百斤、石菌一百斤、紅燒酒二十瓶、白燒酒二十瓶、松子四百斤、人蔘一百斤。
성종 121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9월 2일 (기묘) 4번째기사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최숙정(崔淑精)이 졸(卒)하였다. 임금(上)이 부의(賻儀)를 내린 구례(舊例)를 물으니, 승정원(承政院)에서 고(故) 시강관(侍講官) 장계이(張繼弛)에게 부의를 내린 예(例)를 써서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장계이는 집안의 가난하여 후하게 부의한 것인데, 어찌 이것으로써 상례(常例)를 삼을 수 있겠느냐? 최숙정의 생활은 어떠하였느냐?”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 등이 대답하기를, “최숙정은 초야[草茅]에서 출생했고, 집안 또한 빈한(貧寒)하였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장계이의 예(例)에 따라 유둔(油菴) 2장(張)과 종이 60권(卷), 미두(米豆) 아울러 10석(碩)과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다.	○弘文館副提學崔淑精卒。 上問致賻舊例，承政院，書故侍講官張繼弛致賻例以啓。 傳曰：“繼弛以家貧厚賻，豈可以此爲常例？ 且淑精居計何如？” 都承旨金季昌等對曰：“淑精起自草茅，家又貧寒。” 命依張繼弛例，賜油菴二張、紙六十卷、米豆并十碩及棺槨。
성종 121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9월 9일 (병술) 2번째기사	기영회(耆英會)를 훈련원(訓練院)에서 베풀었다. 도승지 김계창(金季昌)과 좌승지 채수(蔡壽)에게 명하여 가게 하고, 특별히 우승지 변수(邊脩)에게 명하여 선은(宣醞)을 싸 가지고 가게 하였다.	○設耆英會于訓練院。 命都承旨金季昌、左承旨蔡壽往赴， 別命右承旨邊脩，齎宣醞以往。
성종 122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10월 18일(갑자) 6번째기사	12일에 사후(射侯)하였을 때 이기지 못한 자에게 훈련원(訓練院)에서 잔치를 베풀도록 명하고, 주악(酒樂)을 내려 주었으며, 또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운(運)을 나누어 가서 참석하게 하였다.	○命十二日射侯不勝者， 設宴于訓練院，賜酒樂，又命承旨，分運往參。

<p>성종 123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11월 6 일(임오) 3번째기사</p>	<p>정현 옹주(貞顯翁主)가 졸(卒)하였다. 호조(戶曹)에 명하여 쌀·콩[米豆] 1백 석(碩), 종이 1백 50권(卷), 정포(正布) 40필(匹)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옹주는 세종대왕(世宗大王)의 딸인데,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에게 하가(下嫁)하였었다.</p>	<p>○貞顯翁主卒。命戶曹賜賻米·豆一百碩、紙一百五十卷、正布四十四。翁主，世宗大王女，下嫁鈴川府院君尹師路。</p>
<p>성종 123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11월 12 일(무자) 2번째기사</p>	<p>(...) 하루는 현석규가 조회(朝會)의 반열(班列)에 있는데, 매우 파리해 보이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기력(氣力)이 매우 피로해 보이니, 조섭[調護]을 잘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휴가를 주고, 중관(中官)을 보내어 선온(宣醞)과 진수(珍羞)를 내려 주었다. 또 어선(御膳)을 거두어 내려 주니, 임금의 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쇠퇴(衰頹)하지 않았다. 졸(卒)하니, 나이가 51세였다. 부음(訃音)을 듣고 임금이 전교하기를, “현석규가 살림이 빈곤(貧困)하니, 특별히 부의(賻儀)한 예를 써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정갑손(鄭甲孫)의 예를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현석규가 비록 어질다고는 하나, 지금 광산군(光山君)에게 부의하지 않았는데, 현석규에게 부의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그 집안의 곤궁함을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시호(諡號)는 정경(貞景)이니, 정도(正道)로써 굽히지 않는 것이 정(貞)이고, 뜻을 펴서 행하기를 굳세게 하는 것이 경(景)이다.</p>	<p>(...) 一日，碩圭在朝班，貌甚羸瘠，上曰：“卿氣力甚憊，其善調護。”仍賜假〔賜暇〕，遣中官賜宣醞、珍羞。又徹御膳以賜之，其恩眷，終始不〔贊〕〔替〕。卒年五十一。訃聞傳曰：“碩圭家貧，其書別賻例以啓。”承政院書鄭甲孫例以啓，傳曰：“碩圭雖賢，今不賻光山，而賻碩圭不可。問其家所乏以啓。”諡貞景：直道不撓，‘貞’；布義行剛，‘景’。</p>
<p>성종 124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12월 7 일(임자) 1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주문사(奏聞使) 한명회(韓明澮)·부사 이계동(李季全)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한명회에게 친히 술을 내려 주고, 또 한명회에게 궁시(弓矢)·옷·신[靴]을 내려 주었다.</p>	<p>○壬子/御宣政殿，宴奏聞使韓明澮、副使李季全。上親賜明澮酒，又賜明澮弓矢、衣、靴。</p>
<p>성종 124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p>	<p>(...) 그 세 번째에는 이르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궁재(弓材)에 소용되는 물소 뿔[水牛角]은 본래 우</p>	<p>(...) 三曰： 臣竊惟弓材所需水牛角，本非小邦所</p>

<p>(成化) 16년) 12월 9일(갑인) 3번째기사</p>	<p>리 나라에서는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중국에만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약(禁約)으로 인하여 수매(收買)을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성화(成化) 13년 8월 26일에 사유를 갖추어 진청(陳請)함에 따라 공경되게 성은(聖恩)을 입어 매년 한 차례씩 궁각(弓角) 50부(副)를 수매(收買)하도록 허락하시니, 신은 감격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는 세 방면으로부터 적의 침입을 받는데다가 근일(近日)에는 또 야인(野人)이 변경에서 혼단(鬻端)을 꾸며 여러 번 침요(侵擾)하니, 병비(兵備)가 더욱 소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나라 사람들이 창검(槍劍)을 익히지 아니하고, 오직 궁시(弓矢)만을 업으로 삼아 적(敵)을 방어함에 있어서는 활에만 의존하니, 비록 제조(製造)하는 것은 많다 하더라도 감당하여 이를 쓸 수 있는 자는 적습니다. 겹하여 또 쉽사리 부러져 훼손되니, 50부를 가지고는 소용되는 데 넉넉하지 못하여 신은 적이 민망스럽습니다. 이에 신은 감히 호소하며 삼가 성은을 바라오니, 불쌍히 여겨 수매할 때의 몫을 지난해의 사례(事例)를 조사하고, 그에 의하여 액수(額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수매하도록 허락하여 군수(軍需)를 넉넉하게 해 주소서. 진헌(進獻)하는 예물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 50필, 용문염식(龍文簾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 잡색마(雜色馬) 20필입니다.” 하였다.</p>	<p>產，專仰上國。頃因禁約，不許收買，於成化十三年八月二十六日，具由陳請，欽蒙聖恩，許於每歲一次，收買弓角伍拾副，臣不勝感激。第念本國，三方受敵，近日又與野人，構釁邊圉，數被侵擾，兵備尤不可疏虞。矧惟國人，不慣槍劍，專業弓矢，以爲禦敵，只緣弓張，製造雖多，堪用者尠少。兼又易致折毀，所有伍拾副，不裕於用，臣竊悶焉。敢此籲呼，伏望聖恩，憐憫於收買時分，特許照依先年事例，不拘額數收買，以廣軍需。其進獻禮物，黃細苧布貳拾匹、白細苧布貳拾匹、黑細麻布五十四匹、龍文簾席四張、黃花席一拾張、滿花席一拾張、滿花方席一拾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一百斤、雜色馬二十四匹。</p>
<p>성종 124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12월 15일(경신) 3번째기사</p>	<p>주문사(奏聞使) 한명회(韓明澮)가 길을 떠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에게 명하여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전별(餞別)하게 하고, 또 좌부승지(左副承旨) 성현(成愼)에게 선운(宣醞)을 가지고 가서 대접하게 하였다.</p>	<p>○奏聞使韓明澮發行，命領議政鄭昌孫等，出餞于慕華館，又命左副承旨成愼，齎宣醞往饋之。</p>
<p>성종 124권, 11년 (1480 경자 / 명 성화 (成化) 16년) 12월 29</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계동(李季叟)은 선정전(宣政殿)에 잔치를 내려 주었을 때 술에 취하여 여기(女妓) 연경비(燕輕飛)를 두 번 부르고, 황감(黃</p>	<p>○義禁府啓：“同知中樞府事李季叟，於宣政殿賜宴時，醉酒，再呼女妓燕輕飛，以黃柑投擲戲弄，罪律該決杖六</p>

<p>일(갑술) 2번째기사</p>	<p>柑)을 던지며 희롱하였으니, 죄가 울에 장(杖) 60대에 도(徒) 1년에 해당되며,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推奪)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직첩(職牒)을 거두고 전라도(全羅道) 해남현(海南縣)에 부처하도록 하였다.</p>	<p>十、徒一年，依《大典》，告身盡行追奪。”命收職牒，付處全羅道海南縣。</p>
<p>성종 127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3월 22일(병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정괄(鄭恬)·사간(司諫) 경준(慶俊)이 아뢰기를, “올해에는 심한 흉년이 들어 면포(綿布) 한 필의 값이 쌀 너 말이니, 술을 금해야 합니다. 또 외방(外方)에 도둑이 성행하여 혹 원우(院宇)를 불사르고 인물(人物)을 살해하니, 청컨대 방지하는 방도를 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날씨를 보면 장차 가물 조짐이 있으나, 술을 금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겠는가? 제도(諸道)에 일러 밀·보리의 형편 및 흉황(凶荒)을 구제할 대책과 도둑을 막을 방법을 잘 살펴서 치계(馳啓)하게 하라.”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가 말하기를, “불을 막는 제구가 형조(刑曹)·의금부(義禁府)·한성부(漢城府)에 있기는 하나, 혹 불을 끌 때에는 느려서 일에 미치지 못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한 군데에 기계를 많이 갖추어서 오로지 불을 끄는 데에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p>	<p>○御經筵。講訖，大司憲鄭恬、司諫慶俊啓曰：“今年甚歉，一匹縣布，直米四斗，當禁酒。且外方盜賊興行，或焚燒院宇，殺害人物，請申防弭之方。”上曰：“觀天氣，則將有旱徵，酒禁，則無乃太早乎？其諭諸道，兩麥形止及救荒之策，防盜之術，詳審馳啓。”同知事李克基曰：“禁火之具，雖在於刑曹、義禁府、漢城府，或救火之際，緩不及事。臣意以謂‘宜於一處，多備器械，專爲救火可矣。’”上曰：“商議以啓。”</p>
<p>성종 128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4월 10일(갑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領事) 심회(沈滄)에게 이르기를, “승지들의 사건을 대간(臺諫)에서 여러 차례 논박(論駁)하니, 나도 이들에게 죄를 주고 싶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이 오는 때가 가까와지는데, 하루아침에 다섯 승지를 바꾼다면 신관 승지들이 일의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여 혹시 잘</p>	<p>○御經筵。講訖，上謂領事沈滄曰：“承旨之事，臺諫累累論駁，予欲罪之。然天使臨近，一朝遞五承旨，則新承旨，不知事之始末，恐或有誤也。”沈滄曰：“誠如上教。使臣之來</p>

	<p>못하는 것이 있을까 두렵다.” 하니, 심회가 말하기를, “진실로 성상의 하교(下敎)하심과 같습니다. 사신의 오는 때가 이미 가까와졌으니, 가볍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돌아보면 매우 큼니다만, 다만 성상의 재결(裁決)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장령(掌令)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승지는 임금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에 있으니, 마땅히 공정하게 직임(職任)을 받들어야 할 것인데, 그들이 도감(都監)의 낭청(郎廳)을 뽑을 때 국가의 대체(大體)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족친(族親)을 등용하여 그 사정(私情)을 충족시켰으니, 그들의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관 승지(承旨)들이 비록 일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朝廷)의 큰 일은 묘산(廟算)이 있으며, 승지들은 다만 출납(出納)할 따름입니다. 진실로 어진 사람을 등용한다면 누구인들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지대(支待)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진실로 전의 규례(規例)가 있는데, 더구나 지금 이미 마련하여 행문 이자(行文移咨) 하였으니, 받들어 시행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다. 대간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이를 알겠는가? 승지는 내신(內臣)이니, 마땅히 그 마음을 공정하게 하여 공경하고 성실하게 그 직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인데, 이에 족친(族親)을 끌어들이 도감(都監)의 낭청(郎廳)에 임명하고서, 도리어 말하기를, ‘노공필(盧公弼)·이세좌(李世佐)·이경동(李瓊全)이 지난해에 사신이 왔을 때 모두 족친을 등용하였습니다. 신 등도 또한 그 불가(不可)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일을 착오(錯誤)한 것이 아니다. 신관 승지들이 비록 일에 익숙하지 못하더라도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마땅히 죄를 주어야겠으니, 그 추국안(推鞠案)을 가져 오라.”</p>	<p>已逼，不可輕遞。顧其罪則甚大，只在上裁。”掌令李枰啓曰：“承旨居近密之地，當以公正奉職，其抄都監郎廳，不計國家大體，反用族親，以濟其私，其罪固不可貸。新承旨雖不更事，朝廷大事，自有廟算，承旨但出納而已。苟選用賢者，孰不堪任？且支持諸事，固有前規，況今已磨鍊行移，舉而行之耳。”上曰：“臺諫之言，是矣。臺諫不言，則予何知之？承旨，內臣也，當公正其心，敬勤供職，而乃引族屬，差都監郎廳，反曰：‘盧公弼、李世佐、李瓊全，去年使臣之來，皆用族親。’臣等亦知不可，則此非誤錯事也。新承旨雖不諳練，若用謬誤，予當罪之，其取推案以來。”枰又啓曰：“今年之凶，近歲所無，外方則綿布一匹，直租七斗。民皆仰食義倉，嗷嗷待哺，苟不以時賑濟，民不聊生，荒政不可緩也。”上曰：“外方之事，予未悉知。觀察使巡視民間，審其飢荒，以時馳啓，隨宜賑貸。”左副承旨李吉甫曰：“察其飢餓，隨處賑救事，已諭諸道觀察使，時未回啓耳。”枰曰：“京中穀價騰貴，絛布一匹，直米三</p>
--	---	--

	<p>하였다.</p> <p>이평이 또 아뢰기를, “금년의 흉년(凶年)은 근년에 없었던 바이니, 외방(外方)에서는 면포(綿布) 1필(匹)의 값이 곡식 7두(斗)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의창(義倉)의 곡식으로 먹고 살기를 바라고 애타게 먹여주기를 기다리니, 진실로 제때에 진제(賑濟)하지 아니한다면 백성들이 힘입어 살아갈 수가 없어서, 황정(荒政)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외방의 일은 내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관찰사(觀察使)가 민간(民間)을 순시(巡視)하여 그 굶주리는 상황을 조사하여서 제때에 치계(馳啓)하면 형편에 따라 진대(賑貸)하겠다.”</p> <p>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이길보(李吉甫)가 말하기를, “그 굶주리는 상황을 조사하여 곳에 따라 진구(賑救)하는 일은 이미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였으나, 제때에 아직 회계(回啓)하지 않고 있습니다.”</p> <p>하고, 이평이 말하기를, “경중(京中)의 곡가(穀價)가 등귀(騰貴)하여 면포 1필의 값이 쌀 3두(斗)입니다. 무지(無知)한 백성들은 송사(訟事)를 결단(決斷)하는 도감(都監)에서 기한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농사일을 버려 두고 서울에 운집(雲集)하는데,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억지로 머물다가 혹은 옷을 팔아서 먹기도 합니다. 장례원(掌隸院)에 소송하는 자도 또한 수백 명을 내려가지 아니하는데, 그 중에서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현령(懸鈴)을 사용하여 불러 들여 소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외방(外方)도 또한 그러하니 농업을 돌보지 아니하고 소송을 일삼아 어지럽게 변별(辨別)을 구(求)하여 군현(郡縣)에 모입니다. 간사한 사람들은 소송을 결단하는 때를 틈타서 만의 하나라도 요행을 구하여 본부(本</p>	<p>斗。而無知之民，以斷訟都監，有定限，舍其農事，雲集於京，贏糧強留，或賣衣而食。訟于掌隸院者，亦不下數百，其中事千人，用懸鈴召致，至爲騷擾。外方亦然，不顧農業，以爭訟爲事，紛紛求辨，聚于郡縣。奸詐之人，乘斷訟之時，僥倖萬一，訟于本府，或行移、或例退者，不知其幾。其爲防農莫甚，請停都監，俟秋聽訟何如?”</p> <p>上曰：“元隻俱在京者，只許聽訟何如?”</p> <p>枹曰：“兩邊雖在京中，其中事干，散在外方，必須證成，雖在遠處，無不致之，其弊莫甚。”</p> <p>上曰：“秋成間，凡諸聽訟，一皆停罷何如?”</p> <p>知事李克增啓曰：“臣觀旱災太甚。麥不成穗，種未入土，飢饉已形，甚可懼也。農事，自三月至六月最繁，七月則已間矣。諺云：‘耕後之旱，可得而食，鋤後之旱，不可得而食。’乾耕用力，比水種倍蓰，故芒種之期，在於數旬。而水田半不耕種，東作如此，敢望西成乎? 且小麥，於祭享之用最要，而廣興倉無斗麥，頒祿時，轉請於軍資監。今年又無麥，(乃) [奈] 何? 且天之示災，豈無心哉? 君臣上下，固當恐懼修</p>
--	---	--

	<p>府)에 소송하므로, 혹은 행문 이자(行文移咨)하기도 하고, 혹은 예대로 퇴짜를 놓는 경우가 그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농사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심하니, 청컨대 도감(都監)을 정지시키고 가을철까지 기다렸다가 청송(聽訟)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원고와 피고가 모두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다만 청송(聽訟)을 허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p> <p>하였다. 이평이 말하기를,</p> <p>“양쪽이 비록 경중(京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사건에 관계된 자들은 외방(外方)에 흩어져 있는데, 반드시 모름지기 증인(證人)을 세우려면 비록 먼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도록 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그 폐단이 너무나 심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가을걷이 때까지 모든 청송을 일체 정과(停罷)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p> <p>하였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p> <p>“신이 보건대, 한재(旱災)가 너무 심합니다. 보리가 이삭이 제대로 패지 못하고 모종이 흙에 뿌리박지도 아니하였는데, 기근(饑饉)이 이미 나타나니, 매우 두려울 만한 일입니다. 농사(農事)는 3월부터 6월까지 가장 긴요하니, 7월이면 이미 한가하게 됩니다. 속언(俗諺)에 이르기를, ‘논같이한 뒤에 가물면 곡식을 먹을 수 있으나, 호미질한 뒤에 가물면 곡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른갈이[乾耕]는 힘들기가 못자리하기[水種]에 비하여 몇 갑절이나 되기 때문에, 망종(芒種)11120) 의 시기가 몇십 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논[水田]의 반(半)이 갈이를 하지 못하고 모를 심지도 못하였습니다. 봄철 농사[東作]가 이와 같으니, 감히 가을 추수[西成]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밀[小麥]은 제향(祭享)에 가장 긴요하게 쓰이는데, 관흥창(廣興倉)에 몇 말의 밀도 없</p>	<p>省, 以弭之也。 如不緊之用, 請皆量減。” 上曰: “今之大旱, 豈可謂天無心哉? 要當盡其在我者耳。 且獄中恐有冤抑, 令承旨考驗。 亦無冤者, 然囚人, 孰不自謂有冤抑? 但未知何者實有冤抑耳。” 克增曰: “官吏等, 凡諸訊鞫, 多務深刻, 不以寬平。 雖罪答者, 嚴加拷掠, 或有非辜隕命者, 良可哀也。” 上曰: “視罪之輕重, 而低昂推鞫可也。 然欲得情, 則不得不用刑。” 沈澹曰: “凡穀, 務在散舊蓄新, 臣觀軍資米, 或有世宗朝所儲者, 紅腐將爲無用, 可貸畿甸飢民。” 上曰: “用舊蓄新, 儲穀之道。 有司於散穀之時, 不先用舊, 不可也。” 克增曰: “凡穀多積, 則舊穀居下, 勢難先用。” 吉甫曰: “已令陳米四萬斛, 賑貸貧民矣。” 上曰: “平安道之民, 困於使臣之行, 誠可哀憫。” 枰曰: “此道人民, 曩者盡失鞍馬、軍裝於東八站之路, 而賣財鬻田, 僅得備焉。 今又重困, 其不聊生, 必矣。 使臣年年出來者, 欲成其私也。 如天子之命, 固不可違, 鄭同私請, 小加裁抑, 使不得濟欲, 則彼不願來, 而民亦小蘇矣。” 上曰:</p>
--	--	--

었으므로, 반록(頒祿)11121) 할 때 군자감(軍資監)에 전청(轉請)11122) 하였 습니다. 금년에도 또 밀이 없게 되었으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늘이 재앙(災殃)을 보이는 것이 어찌 그 뜻이 없겠습니까? 임금과 신하, 위 아래에 서 진실로 마땅히 공구(恐懼)하고 수성(修省)하여 이를 그치게 해야 할 것입 니다. 만약 긴요치 않은 용도는, 청컨대 모두 적당히 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큰 가뭄이 어찌 하늘에서 그 뜻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요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道理)를 다할 뿐이다. 또 옥중(獄中)에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두려우니, 승지(承旨)로 하여금 고험(考驗)하게 하라. 또한 원통함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갇힌 사람들이면 누군들 스스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하지 아니하겠는가? 단지 어떠한 사람이 실지로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알지 못할 뿐이다.”

하였다. 이극중이 말하기를,

“관리들이 무릇 죄인을 신문(訊問)하거나 국문(鞫問)할 때 대개 심하고 가혹 하게 하기에 힘쓰고, 너그럽고 공평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비록 죄가 태형(笞刑)에 해당하는 자라도 엄하게 고문(拷問)을 더하여 혹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 는 자도 있으니, 참으로 가엾은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의 경중(輕重)을 따져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여 추국(推鞠)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정(實情)을 캐내려고 한다면 형벌을 쓰지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심회가 말하기를,

“무릇 곡식은 묵은 것은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햇것은 저축하는 데 힘써야 하는데, 신이 보건대, 군자미(軍資米) 가운데 어떤 것은 세종조(世宗朝)에 저 축한 것도 있으니, 붉어지고 썩어서 장차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므로, 경

“待之不如去年，則彼必發怒，前規不可減也。” 沈澹曰：“今中宮誥命，雖例事，又有角弓之請，必自伐其功，而營求萬端，何以裁抑乎？” 克增曰：“以主人，待賓客，何可薄耶？” 沈澹曰：“外方置養蠶都會，民甚怨咨，分定諸邑何如？” 上曰：“雖有民弊，農桑，古人所重，不可革也。” 克增曰：“昔郡邑，皆有蠶室，猾吏憑之，侵漁百端，民皆苦之。至有芟去墻桑，以避其患。故或者歷陳其弊，乃設都會。臣爲全羅道觀察使時，以諸邑，於都會，年年作室蓋茨，民之勞苦莫甚，故啓抄附近居民，蠲免徭役，使守蠶室，今則民弊已除，桑木蔽野，不如仍舊。”

	<p>기 부근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끼우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묵은 것을 쓰고 햇것을 저축하는 것이 곡식을 저장하는 방도이다. 유사(有司)가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묵은 것을 쓰지 않는다면 아니될 것이다.”</p> <p>하였다. 이극중이 말하기를, “무릇 곡식을 많이 쌓게 되면 묵은 곡식은 아래에 있게 되니, 형편상 먼저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p> <p>하니, 이길보가 말하기를, “이미 묵은 쌀 4만 곡(斛)을 빈민(貧民)들에게 진대(賑貸)하도록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임금이 말하기를, “평안도의 백성들이 사신(使臣)의 행차에 시달리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p> <p>하니, 이평이 말하기를, “이 도(道)의 인민(人民)들이 지난번에 안마(鞍馬)와 군장(軍裝)을 동팔참(東八站)의 길에서 잃어버리고 가재(家財)를 팔고 전지(田地)를 팔아서 겨우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거둬 시달리면, 그들이 생업(生業)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신(使臣) 가운데 해마다 나오는 자는 그 사욕(私欲)을 채우고자 함입니다. 만약 중국 천자(天子)의 명(命)이라면 진실로 어길 수가 없을 것이나, 정동(鄭同)의 사사로운 청(請)일 때에는 조금 억제를 가하여 사욕을 채우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가 사신으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이며, 백성들도 또한 조금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p> <p>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를 대접하는 것이 지난해와 같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성을 낼 것이니, 전</p>	
--	---	--

	<p>의 법규(法規)에서 감할 수가 없다.” 하였다. 심희가 말하기를, “지금 중궁(中宮)의 고명(誥命)은 비록 보통 으레 있는 일이지만, 또 각궁(角弓)의 청(請)이 있었으니, 반드시 자기 공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만단으로 물건을 요구하기를 꾀할 것인데, 어떻게 이를 억제하겠습니까?” 하고, 이극증이 말하기를, “주인으로서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데 어찌 박(薄)하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심희가 말하기를, “외방(外方)에 양잠 도회소(養蠶都會所)를 설치하니, 백성들이 심히 원망하는 데,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定)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민폐(民弊)가 있다 하더라도 농상(農桑)은 옛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바이니, 혁파(革罷)할 수가 없다.” 하자, 이극증이 말하기를, “옛날 군읍(郡邑)에 모두 잠실(蠶室)이 있었는데, 간활(奸猾)한 아전들이 이를 빙자하여 온갖 방법으로 침탈(侵奪)하니, 백성들이 모두 이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담장의 뽕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환(患)을 피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자가 그 폐단을 두루 진술(陳述)하였으므로, 이에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한 것입니다. 신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었을 때 여러 고을에서 도회소에 해마다 지봉을 잇느라고 백성들의 노고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나라에 아뢰고, 부근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뽑아서 요역(徭役)을 감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잠실(蠶室)을 지키게 하였더니 지금은 민폐(民弊)도 이미 없어지고, 뽕나무가 들판을 덮어서 옛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였다.</p>	
--	---	--

<p>성종 128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4월 17 일(신유) 3번째기사</p>	<p>호조(戶曹)·공조(工曹)에 전지(傳旨)하여 정동(鄭同)의 3촌 조카 정지(鄭智)·정효공(鄭孝恭)·정효지(鄭孝智)에게 각각 아청 면포 원령(雅靑綿布圓領) 1벌, 면포 단철릭(綿布單帖裏) 1벌, 마피화(馬皮靴) 1벌, 사모(紗帽) 1개와 쌀·콩 아울러 5석(碩)을 내려 주게 하고, 동생형(同生兄) 정거(鄭擧)의 아내에게 저포삼(苧布衫) 1벌, 유청 면포 단군(柳靑綿布單裙) 1벌, 마피혜(馬皮鞋) 1벌과 쌀·콩 아울러 10석(碩)을 내려 주게 하고, 동생 누이[同生妹] 윤쌍(尹雙)의 아내에게 저포삼(苧布衫) 1벌, 면포 단군(綿布單裙) 1벌, 마피혜(馬皮鞋) 1벌을 내려 주게 하고, 김흥(金興)의 3촌 조카 김담(金淡)의 아내와 김정(金澄)의 아내와 김효문(金孝文)의 아내에게 각각 쌀·콩 아울러 5석(碩)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工曹， 賜鄭同三寸姪鄭智、鄭孝恭、鄭孝智， 各鴉靑綿布圓領一、綿布單帖裏一、馬皮靴一、紗帽一、米太并五碩。 同生兄鄭擧妻， 苧布衫一、柳靑綿布單裙一、馬皮鞋一、米太并十碩。 同生妹尹雙妻， 苧布衫一、綿布單裙一、馬皮鞋一。 金興三寸姪金淡妻·金澄妻·金孝文妻， 各賜米太并五碩。</p>
<p>성종 128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4월 17 일(신유) 4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안초(安迢)에게 글을 내리기를, “신천(信川)에 사는 정동(鄭同)의 동생 누이[同生妹] 윤쌍(尹雙)의 아내에게 쌀·콩 아울러 10석(碩), 3촌 조카 정군생(鄭羣生)·윤송산(尹松山)과 3촌 조카 딸의 남편 김생(金生)·김효말(金孝末)·이복경(李卜敬)·장검송(張檢松)과 안악(安岳)에 사는 정효손(鄭孝孫)에게 각각 쌀·콩 아울러 5석(碩)을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黃海道觀察使安迢曰：“信川接鄭同同生妹尹雙妻， 米太并十碩。 三寸姪鄭羣生·尹松山、三寸姪女夫金生·金孝末·李卜敬·張檢松、安岳接鄭孝孫， 各米太并五碩題給。”</p>
<p>성종 128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4월 19 일(계해) 6번째기사</p>	<p>주문사 서장관(奏聞使書狀官) 권건(權健)이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건을 바치기를, “1. 신 등이 옥하관(玉河館)에 이르자, 정동(鄭同)이 즉시 금내(禁內)에서부터 말을 달려 이르러 먼저 전하(殿下)의 안부를 묻고, 다음에 특별히 진헌(進獻)할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신이 대답하기를, ‘없다.’고 하니, 정동이 발끈 성을 내어 얼굴색이 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본국(本國)에 이르러 전하와 재상과 직접 약속하였는데, 어찌하여 응낙(應諾)한 약속을 저버리는가?’고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대인(大人)이 돌아가고 성절사(聖節使) 한한(韓僞)이 갈 때에 토산(土產)으로 요구하는 물건을 모두 성</p>	<p>○奏聞使書狀官權健， 進聞見事件：“一， 臣等到玉河館， 鄭同， 卽自禁內馳到， 先問殿下安否， 次問別獻之物幾何。 使答曰：‘無。’ 同， 艱然變色曰：‘我前到本國， 與殿下及宰相面約， 何負諾耶?’ 答曰：‘頃者大人之還， 及聖節使韓僞之行， 土產要子之物， 俱依聖旨備獻， 更無異物。 且未知聖鑑何如， 未敢爾。’ 同曰：‘雖無他物， 何妨再獻</p>

지(聖旨)에 의하여 준비하여 바쳤으므로, 다시 다른 물건을 바칠 것이 없다. 또 황제의 성감(聖鑑)께서 어떻게 여기실지 알지 못하겠기에 감히 그리 하지 못한다.’고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비록 다른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바치는 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대저 인자(人子)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할 때 스스로 마땅히 그 마음을 다할 뿐이지, 어찌 그 아버지가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묻겠는가? 황제가 본국(本國)에서 진헌(進獻)하는 바를 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물건을 중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곧 본국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황제를 섬기는 것은 황제가 본국을 대접하는 뜻과는 아주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전하의 허물이 아니라, 반드시 의정부(議政府)의 여러 재상들의 논의가 자자(藉藉)하여 아마 이것을 가지고 선례(先例)를 만들까봐 두려워한 것이다. 본국에서 지난해에는 매양 해청(海靑)을 바치고, 표리(表裏) 1벌을 하사(下賜)하면 또 즉시 사은(謝恩)하였으니, 그 노력과 비용을 따져볼 때 지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지금 본국에서 황제를 섬기는 예(禮)가 이와 같으니 얼마나 박(薄)한가? 사신 온 일을 장차 무슨 면목(面目)으로 황제에게 주달(奏達)하겠는가?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관계 없으나, 두 노재상(老宰相)이 험한 길에 멀리 왔는데, 어찌 일을 이루어서 돌아가고자 아니하겠는가?’고 하므로, 사신이 말하기를, ‘이미 잘못 생각하였으니, 이를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만약 허락을 받고 돌아간다면, 마땅히 사은(謝恩)하는 예(禮)가 있을 것이다.’고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이를 주달(奏達)하기를, 「조선(朝鮮)의 사신이 동팔참(東八站)에 여진(女眞)의 성식(聲息)11128) 이 있다는 소문으로 인하여 물건을 창탈(搶奪)당할까봐 두려워해서, 그 짐바리[馱]에 실었던 물건을 간추렸기 때문에 특별히 진헌(進獻)하는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다면, 황제도 반드시 이를 믿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이러한 말은 매우 좋다. 우리들이 사신 온 일은 비단 고명(誥命)과 각궁(角弓) 문제뿐만 아니라, 동팔

乎? 大抵人子之孝其親, 自當盡心焉耳, 安問其親之喜不喜乎? 帝之重本國所獻, 非重其物也, 乃所以重本國也。本國之事帝, 殊異乎帝之待本國之意。然此非殿下之過也, 必議政府諸相, 論議藉藉, 恐以此成例耳。本國於先年, 每進海靑, 賜一表裏, 又卽謝恩, 較其勞費, 與今相去幾何? 今者本國事帝之禮, 如此其薄, 爲來事, 將何面目, 奏於帝乎? 事之成否, 不干於我, 兩老宰相, 間關遠來, 豈不欲成事而歸乎?’ 使曰: ‘業已錯料, 悔之無及。今若蒙準而還, 當有謝恩矣。’ 同曰: ‘然則我當奏之曰: 「朝鮮之使, 緣東八站有聲息, 恐被搶擄, 簡其馱載, 故別獻之物, 不得齎來。」 云則帝必信之。’ 使曰: ‘此言甚佳。俺等爲來事, 非徒誥命、角弓也, 東八站一路, 與賊境甚近, 屢被邀截, 有礙朝貢, 故欲請開新路。’ 同曰: ‘迤南果有他路。然朝廷議建新鎮于鳳凰山, 新路之請, 不甚緊要。但請封世子, 事之大者, 何緩也?’ 使曰: ‘今請王妃誥命, 故不可兼請爾。’ 同曰: ‘然。’ 使曰: ‘昔年赴京時, 令我私獻, 今將若何?’ 同曰: ‘今不可廢

참(東八站) 하나의 길이 적경(賊境)과 매우 가까워서 여러 번 길이 막히고 저지를 당하여 중국에 조공(朝貢)하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신로(新路)를 열도록 청하려는 것이다.’고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그 이남에 과연 다른 길이 있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새 진(鎭)을 봉황산(鳳凰山)에 세우기로 의논하였으니, 신로(新路)의 청은 그다지 긴요(緊要)치 않다. 그러나 세자(世子)를 책봉(冊封)하기를 청하는 일은 큰 문제인데, 어찌하여 늦추는가?’고 하므로, 사신이 말하기를, ‘지금 왕비(王妃)의 고명(誥命)을 청하기 때문에 겹하여 청할 수는 없다.’고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지난해에 북경(北京)에 왔을 때 나로 하여금 사사로이 진헌(進獻)하게 하였는데, 지금 장차 어떻게 할까?’고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지금 폐지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구례(舊例)에 의해야 한다. 그 진헌할 물목(物目)을 써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신이 즉시 물목을 써서 보여주니, 정동의 노여움이 조금 풀려서 얼굴을 부드럽게 해서 말하기를, ‘그 숫자를 정해서 오라. 부족한 것은 장차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황제에게 바친 물목은 백저포(白苧布) 10필(匹), 흑마포(黑麻布) 15필, 인삼(人蔘)·세죽선(細竹扇)·소죽선(小竹扇)·우롱자(雨籠子)·도자(刀子)·백후지(白厚紙)·필묵(筆墨)과 여러 가지 음식물(飲食物) 등이었는데, 정동이 백저포 10필, 흑마포 35필을 더하도록 하고, 또 스스로 녹면포(綠綿布) 10필, 수록면포(水綠綿布) 15필, 녹면주(綠綿紬) 10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한씨(韓氏)에게 진헌(進獻)할 물목(物目)은 백저포(白苧布) 5필, 흑마포(黑麻布) 15필, 인삼(人蔘)·세죽선(細竹扇)·소죽선(小竹扇)·우롱자(雨籠子)·백후지(白厚紙)·필묵(筆墨)과 여러 가지 음식물이었는데, 정동이 또 백저포 5필, 흑마포 10필을 더하도록 하고, 또 스스로 수록면포(水綠綿布) 4필을 추가하였습니다. 예궐(詣闕)하여 숙배(肅拜)할 때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진헌(進獻)할 물건을 가지고 동화문(東華門)으로 가서 올려 바쳤는데, 정동이 안에서부터 나와 이르기를, ‘황제가 진헌(進

也，當依舊例。其書所獻物目來。’使即書物目示之，同怒稍弛，和顏以言曰：‘定其數以來。不足者，將以吾所有充之。’其獻帝所物目，白苧布十匹、黑麻(希)[布]十五匹、人蔘、細竹扇、小竹扇、雨籠子、刀子、白厚紙、筆墨、諸色食物等件。同令加白苧布十四、黑麻布三十五匹，又自以綠綿布十四、水綠緜布十五匹、綠綿紬十四加焉。其進韓氏處物目，白苧布五匹、黑麻布十五匹、人蔘、細竹扇、小竹扇、雨籠子、白厚紙、筆墨、諸色食物。同又令加白苧布五匹、黑麻布十四，又自以水綠緜布四匹加焉。詣闕肅拜，使、副使齎獻物，詣東華門上進，同自內而來謂曰：‘帝見獻物，頗有喜色。’同又謂使曰：‘聖旨私問宰相曰：『王妃既生子，有何過失，而廢之乎？』使答曰：『廢妃失德頗多，不得已廢之。』’同曰：‘我當入奏。’即入內，少間還出曰：‘已奏矣。’同又言曰：‘帝問弓角事，我對曰：『弓角，非本國土產，故前此不拘多少，任其收買，近來只許每年一次收買，不過五十副，不裕於用，故今復奏

獻)한 물건을 보시고 자못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다.’고 하였고, 정동이 또 사신에게 이르기를, ‘성지(聖旨)로써 재상에게 사사로이 묻기를, 「왕비(王妃)가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무슨 과실(過失)이 있어서 이를 폐(廢)하는가?」고 하셨다.’고 하므로, 사신이 대답하기를, ‘폐비(廢妃)가 덕(德)을 잃은 것이 자못 많아서 부득이 이를 폐하는 것이다.’고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들어가서 아뢰겠다.’고 하고, 즉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뒤에 도로 나와서 말하기를, ‘이미 아뢰었다.’고 하였습니다. 정동이 또 말하기를, ‘황제가 궁각(弓角)의 일을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궁각(弓角)은 본국(本國)의 토산(土産)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서는 숫자의 다소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그 수매(收買)를 맡겼는데, 근래에 단지 매년 한 차례 수매(收買)를 허락하여 50부(副)를 넘지 못하니, 용도에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주청(奏請)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사신 하나가 한씨(韓氏) 앞에 서계(書契)를 바쳤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조카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한명회(韓明澮)는 삼가 고모님 존전(尊前)에 배상(拜上)합니다. 조카는 지금 가슴에 품은 생각이 있어 좌우(左右)에 앙달(仰達)하여, 앞드려 부주(敷奏)하기를 희망합니다. 그웁이 생각하건대 폐비(廢妃) 윤씨(尹氏)는 성격이 쾌려(悻戾)하여 왕조모(王祖母)와 왕모(王母)에게 불순(不順)하고, 덕(德)을 잃는 것이 상당히 많아 종사(宗社)를 능히 잘 받들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조모님과 어머니의 말씀을 받들어 종묘(宗廟)·사직(社稷)에 고(告)하고 궁 밖의 사제(私第)에 폐(廢)하여 두었습니다. 돌아보건대 내조(內助)는 오랫동안 비위될 수가 없으므로, 부실(副室) 윤씨(尹氏)로써 왕비(王妃)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진주(陳奏)하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이러한 사유(事由)를 갖추어 어전(御前)에 곡진히 주달(奏達)하여 고명(誥命)과 관복(冠服)을 특별히 하사(下賜)하게 해 주소서. 지극한 소원(所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본국이 3면으로 적의 침입을 받는데, 근일에는 두 번이나 본국(本國)에 조칙(詔勅)하여 야인(野人)

請耳。」’一，使於韓氏前呈書契，其辭曰：‘姪男議政府左議政韓明澮，謹拜上姑孃尊前。姪男今有所懷，仰達左右，伏希敷奏。竊惟廢妃尹氏，性度違戾，不順于王祖母及王母，失德滋多，不克共承宗祀。殿下承祖母及母之教，告于宗廟、社稷，廢置外第。顧惟內助不可久缺，以副室尹氏爲妃。是用陳奏，伏望具此事由，曲達御前，特賜誥命、冠服，不勝至願。且念本國三面受敵，近日再勅本國，夾攻野人。因此構釁不淺，兵備不可疎虞。而弓材所需水牛角，非本國所產，專仰上國。頃緣建議者以爲：「本國人收買弓角，轉賣野人」始立禁防。我國與野人，構釁既久，何敢販賣弓材，以資敵人？我國自祖宗朝以來，敬事朝廷，深蒙恩眷，累賜書籍、樂器。且火藥，兵家所最重，而洪武七年間，高皇帝賜之不疑。欽惟我陛下臨御以來，曲施恩寵，凡有所奏，必賜允許，而獨於弓角有禁，一國臣民咸悶焉。於成化十三年，具由陳請，獲蒙聖恩，許於每歲一次，收買五十副，一國臣民，不勝感激之至。然弓張製造雖多，堪用

들을 협공(挾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혼단(罽端)이 생긴 것이 적지 않으므로 군사 방비(防備)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활의 재료로 필요한 수우각(水牛角)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바가 아니므로 오로지 중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建議)하는 자가 「본국인(本國人)이 궁각(弓角)을 수매(收買)하여 야인(野人)들에게 전매(轉賣)한다.」고 하였던 탓으로 인하여 비로소 금방(禁防)의 법을 세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야인(野人)들과 혼단(罽端)이 생긴 지는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감히 활의 재료를 판매하여 적인(敵人)을 돕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중국 조정을 공경하고 섬겨서 은혜를 깊이 입었고, 여러 차례 서적(書籍)·악기(樂器)를 하사하였습니다. 또 화약(火藥)은 병가(兵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인데도 홍무(洪武) 7년 동안에 고향제(高皇帝)가 이를 의심 없이 하사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폐하(陛下)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곡진히 은총을 베풀어서, 무릇 주달(奏達)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윤택(允許)을 내려 주었는데, 오로지 궁각(弓角) 문제만은 금지를 하시니, 온 나라 신민들이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성화(成化) 13년(11129)에 사유를 갖추어 진청(陳請)하여 성은(聖恩)을 받게 되어, 매년 한 차례씩 50부(副)를 수매(收買)하도록 허락하시니,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지극한 감격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궁장(弓張)11130)의 제조를 비록 많이 하지만 용도를 감당할 재료는 아주 적으며, 겸하여 또 쉽게 꺾어지거나 훼손(毀損)되는 지경에 이르니, 가지고 있는 50부(副)로서는 용도에 넉넉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울러 이 뜻을 가지고 어전(御前)에 곡진히 진달(陳達)하여 특별히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해의 사례(事例)를 참작하여 매양 본국의 사신이 올 때마다 가지고 오는 값이나 돈의 다소에 따라서 숫자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수매(收買)하게 해 주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1. 2월 24일에 태감(太監) 강옥(姜玉)이 회동관(會同館)에 이르러 사신의 방

者鮮少，兼又易致折毀，所有五十副，不裕於用。伏望并將此意，曲達御前，特許照依先年事例，每於本國使臣之來，隨所齎價錢多少，不拘數收買，不勝至願。’ 一，二月二十四日，太監姜玉，到館就使房內，付蘇合油一斤、龍腦一斤，皆用御封印題。謂曰：‘我奏于帝曰：「本國欲覓蘇合油、龍腦等藥求之，未得其真。今來宰相，依臣懇求。」帝曰：「當與之。」因出內帑所藏曰：「可付韓明澮。仍宴慰之。」我爲此而來。’使叩頭拜謝，玉因盛設酒飯以饋。回贈麻布十匹、扇子、雨籠等物，玉曰：‘我不敢私，將獻于帝。’玉所齎酒器，皆刻御製詩。題銀瓶詩曰：‘明時需碩德，黼黻贊皇猷。禁闈多清暇，黃流注玉甌。’又題一面曰：‘內禁恩寵隆，慤勲協奏功。金樽迎雅況，黽勉盡丹衷。’

	(房)에 나와서 소합유(蘇合油) 1근(斤), 용뇌(龍腦) 1근을 특별히 주었는데, 모두 어봉인제(御封印題)11131) 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황제에게 아뢰기를, 「본국에서 소합유(蘇合油)와 용뇌(龍腦) 등의 약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를 구하여도 그 진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재상이 신에게 부탁하여 간절히 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마땅히 이를 주도록 하라.」 고 하고, 인하여 내탕(內帑)에 간직한 것을 내주면서 말하기를, 「한명회(韓明澮)에게 주도록 하라. 이어서 연회를 베풀어 그들을 위로하라.」 고 하였으므로, 내가 이 때문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사신이 머리를 조아리고 배사(拜謝)하니, 강옥이 인하여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서 대접하였습니다. 마포(麻布) 10필과 선자(扇子)와 우룡(雨籠) 등의 물건을 회증(回贈)하였더니, 강옥이 말하기를, ‘내가 감히 사사로이 받을 수는 없고, 장차 황제에게 바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강옥이 가지고 온 술그릇에는 모두 어제 시제(御製詩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종 128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4월 21 일(을축) 2번째기사	호조에 전지(傳旨)하여, 내관(內官) 김녹생(金祿生)에게 부의(賻儀)로서 쌀·콩 아울러 8석(碩), 종이 60권(卷), 곽(槨) 1개를 내려 주게 하였다.	○傳旨戶曹, 賜內官金祿生賻米豆并八碩、紙六十卷、槨一。
성종 128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4월 22 일(병인) 4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여, 장평 부정(長平副正) 이혼(李訢)의 첩(妾) 효도(孝道)가 떡 속에 독약(毒藥)을 넣어 정처(正妻) 신씨(申氏)를 죽인 사건을 추국(推鞠)하여서 아뢰게 하고,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과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인충(李仁忠)에게 명하여 가서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傳旨義禁府, 長平副正訢妾孝道, 餅中置藥, 殺正妻申氏, 其推鞠以啓, 命右議政洪應、同副承旨李仁忠, 往鞠之。
성종 128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4월 25 일(기사) 3번째기사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정상(情狀)을 자세히 듣건대 독약을 넣어 사람을 해치려고 꾀한 흔적이 조금도 없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본국(本國)에서는 즉사(卽死)하는 독약(毒藥)이 없으니, 더욱 의심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또 이혼(李訢)의 첩(妾)이 이미 나	○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尹壕議: “備聞情狀, 片無致毒謀害之事。況本國, 無卽死毒藥, 尤無可疑。且訢妾年已衰老, 專擅家事, 與嫡室無妬爭之勢, 訢妻得病已久, 不顧

	<p>이가 노쇠하여 집안 일을 오로지 마음대로 하고, 적실(適實)과는 질투하거나 다투는 경우도 없었으며, 이혼의 처(妻)가 병든 지 이미 오래 되어 집안 일을 돌볼 수가 없었으므로, 또한 다투거나 질투할 정상도 없었습니다. 사건의 정상이 애매하니, 비록 끝까지 추국(推鞠)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사람만을 상(傷)하게 할 뿐이요, 실정을 캐낼 도리가 조금도 없을 것이니, 그대로 넘겨버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한치례(韓致禮)·신승선(愼承善)·유지(柳輕)·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이혼의 첩 효도의 사건은 허위(虛僞)임이 드러났지만, 사건이 대벽(大辟)11153)에 관계되니, 쉽게 논단(論斷)할 수는 없습니다. 논하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까.”</p> <p>하고, 이극증(李克增)이 의논하기를, “떡 여섯 개를 가지고 이혼(李訢)의 처(妻)와 시비(侍婢)가 나누어 먹었는데, 이혼의 처만 혼자 죽었으니, 그 독약을 넣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였다.</p> <p>임금이 또 전교하기를, “구황(救荒)하는 정책을 이미 해당 조(曹)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승 등이 이를 다시 의논하라.”</p> <p>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경기는 이미 경창(京倉)의 쌀 2만 석(石)을 본도(本道)에 지급하였으니, 또한 20만 석(石)을 지급하였으면 이미 족(足)한 것인데, 또 어찌 추가하겠습니까? 신 등도 별다른 조치(措置)할 방법이 없습니다.”</p> <p>하자,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알았도다.”</p> <p>하였다.</p>	<p>家事，亦無爭妬之情。事涉曖昧，雖窮極推鞠，但傷人而已，略無得情之理，棄之何如？”韓致禮、愼承善、柳輕、李坡議：“訢妾孝道事，虛僞現然，事干大辟，不可容易論斷。勿論爲便。”李克增議：“以餅六箇，訢妻及侍婢分食，而訢妻獨死，其不置毒分明。勿論何如？”上，又傳曰：“救荒之策，已令該曹議之，然政丞等，更議之。”皆曰：“京畿已給京倉米二萬石，於本道，亦給二十萬石，既已足矣，又何加焉？臣等別無措置之策。”傳曰：“知之。”</p>
--	--	---

출처	내용	원문
<p>성종 129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5월 4일 (무인) 1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손순효(孫舜孝)가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天使]을 접대하기 위해 본도(本道)에서 별공(別貢)하는 돼지[猪]는 3백여 구(口)인데, 큰 고을에서는 15구(口)이고, 작은 현(縣)에서는 7, 8구(口)입니다. 몸체가 크고 살이 찌지 아니한 놈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값이 혹은 포목 20필(匹)에 이르기도 합니다. 신이 한 지방의 감사(監司)를 맡아서 그러한 폐단을 듣고서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써는 혹은 그 숫자를 재량하여 줄이기도 하고, 혹은 중간치 돼지를 받기를 허락하기도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큰 소의 값이 포목 10필(匹)을 넘지 않는데, 돼지는 그 갑절이나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손님을 접대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 모두 소·양·돼지를 썼습니다. 소 한마리를 돼지 네 마리에 준(准)하게 하고, 섞어서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승지(承旨) 등이 모두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찌 소를 죽이자는 말을 아릴 수가 있겠는가?” 하므로, 손순효가 말하기를, “열 사람이 굶어 죽는데, 소 한 마리 죽인들 어떠하겠는가?” 하였다.</p>	<p>○戊寅/京畿觀察使孫舜孝來啓曰：“天使支待，本道別貢之猪三百餘口，大邑十五口，小縣則七八口。非體大肥臍者則不得納，故一口之直，或至二十四。臣受任方面，聞其弊，不可不啓。臣意，謂或裁減其數，或許納中猪。今大牛之直，不過十四，而猪則倍之。古人，於賓祭，皆用牛、羊、豕。以牛一頭，準猪四口，雜用之何如？”承旨等皆笑曰：“豈可以殺牛之言啓乎？”舜孝曰：“十人飢死，何如一牛之死哉？”</p>
<p>성종 129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5월 10일(갑신) 2번째기사</p>	<p>호조에서 전지(傳旨)하여 사은 부사(謝恩副使) 한한(韓僴)에게 별인정(別人情)11176) 으로 백저포(白苧布) 30필(匹), 흑마포(黑麻布) 30필(匹), 인삼(人蔘) 20근(斤)을 내려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賜謝恩副使韓僴，別人情白苧布三十四、黑麻布三十四、人蔘二十斤。</p>
<p>성종 129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5월 15일(기축) 2번째기사</p>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이신희(李愼孝)에게 글을 내리기를, “김흥(金興)의 4촌 손자로서 청주(淸州)에 살고 있는 김적(金積)에게 쌀과 콩을 각각 2석(碩)씩 지급하라.” 하였다.</p>	<p>○下書忠淸道觀察使李愼孝曰：“金興四寸孫淸州居金積處，給米太各二碩。”</p>
<p>성종 129권, 12년</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끝마치자,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p>	<p>○御經筵。講訖，都承旨金升卿啓曰：</p>

<p>(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5월 19일(계사) 2번째기사</p>	<p>卿)이 아뢰기를, “전일에 주문사(奏聞使)가 정 사신(鄭使臣)11218) 의 입염 면포(入染綿布) 30 필(匹)을 빌어 가지고 회봉(回奉)한 일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니,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서로 만났을 때에 부사(副使)가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갈 때에 마땅히 회봉(回奉)해야 하니, 이것을 말하도록 하라. 또 어제 내가 상사(上使)의 족친(族親) 1인에게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 주는 일을 말하였을 때에 만족스럽지 못한 의사가 있는 듯하였다. 생각건대, 반드시 부사(副使)의 족친(族親)에게는 3자급(資級)을 건너뛰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반(館伴)에게 부탁하여 그 의사를 던지시 보게 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어명(御命)을 받들고 아울러 사은(謝恩)할 물목(物目)을 가지고 태평관(太平館)에 나아가서 상사(上使)에게 보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석자(席子)와 소라(小螺)를 제외하고는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선(畫面扇)은 마땅히 나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주문사(奏聞使) 한명회(韓明澮)가 북경(北京)에 갔을 때에 대인(大人)이 간직했던 여러 가지 입염 면포(入染綿布)를 내어서 바쳤다니, 그 후의(厚意)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자, 상사(上使)가 말하기를, “내가 본국(本國)을 향하는 뜻인데, 어찌 감히 보답을 바라겠습니까? 또 연전에 한찬(韓僎)·장유화(張有華)와 주관(州官) 등에게 관직(官職)을 더해 주도록 청하였었는데, 전하께서 대답하기를, ‘내년에 오면 마땅히 제수(除授)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년에 내가 이곳에 도착하였으며, 인군(人君)은 희언(戲言)이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조정에서는 본국(本國)에서 신로(新路)를 청하였기 때문에 탕참(湯站)에다 보(堡)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본국(本國)에서 양</p>	<p>“前日奏聞使， 貸用鄭天使入染綿布三十匹回奉事， 何以說之？” 上曰：“前日相會時， 有副使， 故不得說與。 回還時， 當回奉， 以此說之。 且昨日， 予語上使族親一人陞堂上之事， 似有未滿之意。 想必以副使族親， 則超三資故也。 囑館伴， 微觀其意。” 升卿承命， 并齎謝恩物目， 詣太平館， 以示上使。 上使曰：“除席子、小螺， 備送可也。 畫面扇， 宜示我。” 升卿曰：“奏聞使韓明澮赴京時， 大人出所(莊) [藏] 諸色， 入染綿布以獻， 多謝厚意。” 上使曰：“俺向本國之意， 何敢望報？ 且年前， 請韓僎、張有華及州官等加職， 殿下答曰：‘明年來則當除之。’ 今年俺到此， 人君無戲言。 且朝廷， 以本國請路， 故欲於湯站設堡， 本國給糧， 可也。” 升卿回啓， 傳曰：“知道。”</p>
--	---	---

	<p>식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김승경(金升卿)이 돌아와서 아뢰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도다.” 하였다.</p>	
<p>성종 129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5월 19 일(계사) 6번째기사</p>	<p>우박(雨雹)이 광주(廣州)에 내렸는데, 작은 것은 탄환(彈丸)만 하였고, 큰 것 은 계란만 하여, 보리를 망치고 벼를 죽이고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죽었다.</p>	<p>○雨雹於廣州，小者如彈丸，大者如雞 卵，敗麥殺禾，飛鳥輒死。</p>
<p>성종 129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5월 19 일(계사)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날씨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며, 경기(京畿)와 하삼도(下三道)에서 종자(種子)가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보리도 추수할 것이 없으니, 구황 (救荒)하는 여러 가지 일을 예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가 다음에 조목별로 기록합니다. 1. 금년에 양맥(兩麥)11219) 이 부실(不實)하니, 내년의 종자(種子)를 준비하 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고을의 창고(倉庫)로 하여금 묵은 곡식을 햇 보리[新麥]로 적당히 바꾸게 하였습니다. 다만 수령(守令)이 부실(不實)한 곡 식을 가지고 억지로 바꾸게 하므로, 본래 백성들을 위한 일인데도 도리어 백 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니, 또한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 대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 폐단이 없이 바꾸게 하고,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1. 소금은 구황(救荒)하는데 있어서 가장 긴요한데도 이 앞서 여러 포구(浦 口)의 염분(鹽盆)11220) 을 잘 고찰(考察)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은 수량을 구워 내니, 미편(未便)합니다. 청컨대 여러 진(鎭)의 여러 포구로 하여금 전의 수교(受教)를 고찰하여, 당령 수군(當領水軍)11221) 으로 하여금 많은 수량을 구워 내게 하되, 곡식과 바꾸지 말게 하고, 아울러 고을의 창고에 바치게 하 고, 그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p>	<p>○戶曹啓：“今天久不雨，京畿及下三 道，種不入土，麥未有秋，救荒諸事， 不可不預備，故謹條錄于後。一，今 年兩麥不實，明年種子，不可不備。 已令邑倉陳穀，量換新麥。但守令， 以不實之穀，勒令回換，本以爲民，而 反以害民，亦不可不慮。請從民情願， 無弊回換，錄數啓聞。一，鹽於救荒 最緊，而前此諸浦鹽盆，不謹考察，數 小煮取未便。請令諸鎭諸浦，考前受 教，以當領水軍，多數煮取，勿質穀， 竝納邑倉，錄數啓聞。一，醬於救荒 緊要，而諸邑會計，虛張其數，當賑恤 時，不得依數分給，誠爲可慮。請令 諸道，從實啓聞，諸邑或有不足，則量 給軍資別倉豆及救荒鹽，預先合造，錄 數以啓。一，木麥莖葉，皆可食，今 因旱災，稻田多有未落種處，請令觀察</p>

	<p>1. 장(醬)은 구황(救荒)하는 데 있어서 긴요한데도 여러 고을에서 회계할 때 그 숫자를 허위로 과장하므로, 진휼(賑恤)할 때를 당하여 숫자대로 나누어 지급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청컨대 여러 도(道)로 하여금 사실대로 계문(啓聞)하게 하되, 여러 고을에서 혹시 부족한 바가 있으면 군자 별창(軍資別倉)의 콩과 구황의 소금을 적당히 지급하여 미리 먼저 합하여 장을 만들게 하고, 그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p> <p>1. 메밀[木麥]의 줄기와 잎은 모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한재(旱災)로 인하여 논[稻田] 가운데 종자를 심지 못한 곳이 많이 있으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종자를 많이 준비하여 권장해서 갈도록 하소서.</p> <p>1. 황각 미역[黃角藿]·참가사리[細毛]·바닷나물[海菜]과 산삼(山蔘)·도라지[桔梗]·비름[莧菜]·도토리[橡實]는 하나같이 구황(救荒)에 대처하는 긴요한 초식(草食)이니, 그 숫자를 미리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p> <p>1. 내년의 구황(救荒)과 농사 식량이 나올 방도가 없으니, 모름지기 양맥(兩麥)을 많이 같은 다음이라야 기근(飢饉)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청컨대 민간(民間)에게 널리 알려져 풀을 태워 잿거름을 만들고 퇴비를 만드는 등 미리 많이 준비하게 하여 그 숫자를 많이 경종(耕種)하게 하소서.</p> <p>1. 무우는 구황(救荒)하는 긴요한 것이니, 여러 도(道)의 수령(守令)들에게 삼밭[麻田]·채소밭[菜田]·모밀밭[大麥田]에다 주민들을 권장하여 많이 심게 하소서.</p> <p>1. 민간에서 곡식이 귀한 때에 장사아치[商賈]의 무리들이 긴요치 않은 잡물(雜物)을 가지고서 여리(閭里)에 횡행(橫行)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이익을 취하니, 미곡상(米穀商) 이외의 여러 가지 행상(行商)을 일체 금지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使，多備種子勸耕。一，黃角藿、細毛、海菜及山蔘、桔梗、莧菜、橡實，一應救荒緊要草食，多數預備。一，明年救荒及農糧，出處無由，須多耕兩麥，然後可免飢饉，請於民間，廣行知會，灰草及糞壤，預先多備，倍加耕種。一，菁根，緊於救荒，令諸道守令，於麻田、菜田、木麥田，勸民多數耕種。一，民間穀貴時，商賈之徒，不緊雜物齎持，閭里橫行，誑誘取利。米商外諸色行商一禁。”從之。</p>
<p>성종 129권, 12년</p>	<p>상사(上使)가 두목(頭目) 8인을 보내어 궤(櫃) 24개와 농(籠) 9개를 사사로이</p>	<p>○乙未/上使遣頭目八人，私進櫃二十</p>

<p>(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5월 21일(을미) 1번째기사</p>	<p>바치고, 부사(副使)가 두목(頭目) 4인을 보내어 궤(櫃) 11개와 사(筭)11228) 8개를 바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고 술 3작(爵)을 내려주고, 승지(承旨)와 중관(中官)11229) 을 시켜서 빈청(賓廳)에서 대접하게 하였다.</p>	<p>四、籠九，副使遣頭目四人，進櫃十一、筭八。上，御宣政殿，引見賜酒三爵，使承旨及中官，饋于賓廳。</p>
<p>성종 129권,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5월 25일(기해) 1번째기사</p>	<p>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한한(韓僴)을 보내어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받들고 중국 북경[京師]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표문(表文)에 배례(拜禮)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고명(誥命)을 사례하는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사신(使臣)이 바야흐로 와서 무수(無綏)하기를 곡진하게 더하니, 거룩한 은혜가 성하고 후(厚)하여 삼가 은총(恩寵)과 복(福)을 받들때,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고 놀랍고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앞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잔열(孱劣)한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창성(昌盛)한 시대를 만나서 오직 번방(藩邦)을 지키는데 삼갈 줄을 알 뿐이지 일찍이 황제를 도우는 데 아무런 공효(功效)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번거롭게 부주(敷奏)하기를 부지런히 하였으나, 전공(戰兢)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는데, 어찌 과처(寡妻)에게 남다른 은혜를 얻을 줄 생각하였겠습니까? 난고(鸞誥)11237) 가 성하게 빛나서 하늘에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넉넉하게 받았고, 적의(翟衣)11238) 가 환하게 빛나니 재사(在筭)11239) 의 신비한 물건을 특별히 반사(頒賜)하였습니다. 더구나 채폐(綵幣)11240) 를 겸하여 내려 주시어 이에 아름다운 하사(下賜)가 많음을 보여 주시니, 온 나라에서 모두 기뻐하며, 옛날부터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앞드려 황제께서 어쉴이 두터워 작은 것을 사랑하시고 도량이 넓어 거친 것을 포용하시어 신의 술직(述職)11241) 하는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의(義)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살펴주시는 때를 만나서, 드디어 하예(遐裔)11242) 로 하여금 특수한 영광을 입게 하였습니다. 삼가 마땅히 주선(周旋)하심을 받들어 마음은 항상 협광(挾纊)11243) 하는 데 돈독하며, 거의 밤</p>	<p>○己亥/遣左議政尹弼商、同知中樞府事韓僴，奉表箋，如京師謝恩。上，率百官，拜表如儀。其謝誥命表曰：使華鼎來，曲加綏撫，睿恩渙渥，祇承寵靈，感激難忘，驚惶失措。伏念臣，猥將孱質，幸際昌辰，唯知謹於守藩，曾未效於補袞。頃勤敷奏之瀆，采切兢戰之懷，豈意寡妻，獲紆異數？鸞誥渙赫，優荷自天之休；翟衣煒煌，特頒在筭之秘。況兼綵幣之賜，載示嘉貺之稠。舉國均權，從昔罕遇。伏遇仁敦字小，度廓包荒。憐臣述職之誠，察臣慕義之懇。遂令遐裔，得被殊榮。謹當奉以周旋，心常篤於挾纊。其方物表曰：星使聿來，祇承寵命。土宜不腆，聊表謝忱。謹備黃細苧布三十四、白細苧布三十四、黑細麻布一百匹、闊黑細麻布三十四、龍文簾席四張、黃花席一十五張、滿花席一十五張、滿花</p>

	<p>낮으로 더욱 오래 사시도록 항상 축수(祝壽)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사신이 이에 와서 삼가 은총스런 명(命)을 받들었습니다. 토의(土宜)가 변변치 못하나 애오라지 사례하는 정성을 표(表)합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3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3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1백 필(匹), 활흑세마포(闊黑細麻布) 30필(匹), 용문염석(龍文簾席) 4장(張), 황화석(黃花席) 15장(張), 만화석(滿花席) 15장(張), 만화방석(滿花方席) 15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張), 인삼(人蔘) 1백 근(斤), 잡색마(雜色馬) 80필(匹)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한 것이 정(精)하지 못하고 물목[名般]도 매우 적습니다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헤아려서 굽어 향상(享上)의 의례(儀禮)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황태후 폐하(皇太后陛下)에게 진헌(進獻)하는 물건으로서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 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을 갖추었습니다.” 하였다. 그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지위가 이극(貳極)11244) 에 높이 계시어 덕(德)이 황제를 공경히 받드는데 나타나고, 은혜로 황제[中辰]를 인도하여 어짐이 보천솔토(普天率土)11245) 에 깃듭니다. 마음에 맹세하여 보답하기를 도모하나,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창성한 때를 만나서 외람되게 변방(藩邦)의 직임(職任)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자가 꺾(闕)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러한 부주(敷奏)를 부지런히 하였는데, 천권(天眷)11246) 이 정녕(丁寧)하시어 홀연히 사륜(絲綸)의 조서(詔書)를 내려 주시니, 명복(命服)11247) 이 아름답게 빛나고, 또 광비(筐篚)의 진기한 물건을 더하시매, 이와 같은 특수한 은혜는 전고(前古)에 드문 바입니다. 엎드려 황태자께서 품성(品性)이 온전히 순수하시고 학식이 집희(緝熙)한 지경</p>	<p>方席一十五張、雜彩花席一十五張、人蔘一百斤、雜色馬八十匹。右件物等，製造匪精，名般甚尠。冀諒由中之信，俯容享上之儀。 謹備皇太后陛下進獻禮物，紅細苧布一十四、白細苧布一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 箋曰： 位尊貳極，德著祗承。恩導中辰，仁深普率。矢心圖報，揆分難堪。伏念臣幸際昌辰，叨守藩寄。頃緣配偶之闕，敢此敷奏之勤。天眷丁寧，忽頒絲綸之詔。命服璀璨，又加筐篚之珍。殊恩若茲，前古所罕。伏遇稟全純粹，學就緝熙。諒小邦嚮慕之(城) [誠]，體上聖懷綏之篤。遂令庸品，獲被耿光。臣敢不載廣重潤之歌，恒申添壽之祝? 謹備進獻禮物，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五十斤、雜色馬四匹。 其謝弓角表曰： 皇猷密勿，曲加撫綏，睿渥便蕃，采增感激。凌兢失措，荷戴難堪。切念敝</p>
--	--	--

에 나아가시어, 소방(小邦)의 향모(嚮慕)하는 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성상(聖上)의 회수(懷綏)하시는 돈독한 마음을 본받는 때를 만나서, 드디어 용렬(庸劣)한 자품(資品)으로 하여금 밝은 성덕(盛德)을 입게 하였으니, 신은 감히 중윤(重潤)11248)의 노래를 화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항상 오래 사시라는 축수(祝壽)를 드립니다. 삼가 진헌(進獻)하는 예물(禮物)로서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 잡채화석(雜綵花席) 10장(張), 인삼(人蔘) 50근(斤), 잡색마(雜色馬) 4필(匹)을 갖추었습니다.”

하였다. 그 궁각(弓角)을 사례하는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황제께서 모유(謀猷)를 부지런히 힘쓰고 곡진히 무수(撫綏)하기를 더하시며 거룩한 은혜가 자주 이르니 감격함이 참으로 더합니다. 그래서 능궁(凌兢)11249)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은 은혜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폐방(敝邦)은 멀리 황복(荒服)11250)에 처하여 삼면(三面)을 돌아보면 용추(戎醜)와 널리 인접(隣接)하고 있는데, 5병(五兵)11251)에서 실제로 궁재(弓材)가 으뜸인지라, 감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情)을 나타내어 우리러 부지런히 부주(敷奏)하였는데, 홀연히 너무나 큰 은택(恩澤)을 베풀어서 유윤(兪允)을 얻게 하시니, 이와 같은 은총과 영광은 예전에는 드문 바였습니다. 오히려 황제께서 어짐을 두터이 하여 함육(涵育)하시고 도량이 넓게 포용(包容)하시어 신의 사대(事大)하는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의(義)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살피주시는 때를 만나서, 드디어 용렬(庸劣)한 자질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신민(臣民)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강릉(岡陵)과 같은 축수(祝壽)를 감절이나 드리며, 삼가 변한(藩翰)을 지키면서 항상 규곽지침(葵藿之忱)11252)을 바치겠습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5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5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匹), 황화석(黃花席) 20장(張), 만화석(滿花席) 20장(張), 잡채화

邦，邀處荒服。顧三面，誕隣戎醜，而五兵，實先弓材。敢瀝由中之情，仰勤敷奏。忽霈無外之澤，獲蒙允俞。寵光若茲，前昔所罕。伏遇仁敦涵育，度廓包容。憐臣事大之誠，察臣慕義之懇。遂令庸質，得紆洪私。臣謹當嘉與臣民，倍祝岡陵之壽。恪守藩翰，恒輸葵藿之忱。謹備黃細苧布五十四、白細苧布五十四、黑細麻布五十四、黃花席二十張、滿花席二十張、雜彩花席二十張、松子三百斤、人蔘二百斤、雜色馬二十四。謹備皇太后陛下進獻禮物，紅細苧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謹備中宮殿下進獻禮物，紅細苧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

箋曰：
 位正貳極，密贊謀猷。恩導九重，庸篤懷撫。驚惶失措，感激采深。竊念敝邦，誕隣獷俗。弓材必賴於上國，冒陳籲呼。綸音渙發於中宸，獲蒙允俞。榮寵至此，前昔所稀。伏遇性稟

	<p>석(雜彩花席) 20장(張), 송자(松子) 3백 근(斤), 인삼(人蔘) 2백 근(斤), 잡색마(雜色馬) 20필(匹)을 갖추었습니다.</p> <p>삼가 황태후 폐하(皇太后陛下)에게 진헌(進獻)하는 예물(禮物)로서 홍세 저포(紅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을 갖추었습니다.</p> <p>삼가 중궁 전하(中宮殿下)에게 진헌(進獻)하는 예물(禮物)로서 홍세저포(紅細苧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을 갖추었습니다.”</p> <p>하고, 그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지위가 이극(貳極)11253) 에 바로 계시면서 모유(謀猷)를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은혜를 구중(九重)에서 인도하시어 무수(撫綏)하기를 돈독하게 하시니,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감격함이 더욱 깊습니다. 그옥이 생각하건대, 폐방(敝邦)은 광속(獷俗)11254) 과 널리 인접하고 있으며, 궁재(弓材)를 반드시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모람되게 아뢰고 하소연하였더니, 윤음(綸音)이 황제[中宸]에게서 성대하게 나와 유운(兪允)을 입게 되었는데, 영광과 은총이 이와 같은 데 이른 것은 예전에는 드문 바였습니다. 앞드려 황태자께서 성품(性稟)이 온량(溫良)하시고 자태(姿態)가 기의(岐嶷)하시어 성상(聖上)의 유원(柔遠)하심을 본받으시고, 소신(小臣)의 근왕(勤王)11255) 하는 것을 살펴주시는 때를 만나서, 드디어 잔열(殘劣)한 자질로 하여금 곡진하게 특수한 은택을 입게 하였으니, 삼가 마땅히 중윤(重潤)의 노래를 화창(和唱)하며, 항상 천세토록 사시라고 축수(祝壽)합니다. 삼가 진헌(進獻)하는 예물(禮物)로서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40필(匹), 만화석(滿花席)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인삼(人蔘) 50근(斤), 잡색마(雜色馬) 6필(匹)을 갖추었습니다.”</p> <p>하였다.</p>	<p>溫良，姿凝岐嶷。體上聖之柔遠，察小臣之勤王。遂令殘資，曲荷殊澤。謹當載賡歌於重潤，恒祝壽於千齡。謹備進獻禮物，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四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五十斤、雜色馬六匹。</p>
--	--	---

<p>성종 129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5월 29 일(계묘) 3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번에 한재(旱災)로 인하여 중외(中外)로 하여금 금주(禁酒)하게 하였는데, 마침 지금 사신이 나라에 도착하였으므로, 임시로 금주라는 명령을 임시로 파(罷)하였다. 바로 농사철을 당하여 한재(旱災)가 자심(滋甚)하고, 또 우박(雨雹)의 재변(災變)도 있었으니, 내가 매우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하는데,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들이 내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스스로 방자하게 굴며 조금도 하늘의 경계에 능히 삼가는 뜻도 없도다. 그 사신(使臣)이 있는 곳 이외의 공사(公私) 각처(各處)에서 마음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서 하늘의 견책(譴責)에 답(答)하게 하라.” 하였다.</p>	<p>○傳旨議政府曰：“頃因旱災，令中外禁酒，適今使臣到國，權罷禁命。正當農月，旱災滋甚，且有雨雹之變，予甚戒懼，避殿減膳，中外臣民，不體予意，飲酒自恣，略無克謹天戒之意。其使臣在處外，公私各處，毋得縱飲，以答天譴。”</p>
<p>성종 130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6월 20 일(계해) 1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소주(燒酒)와 어육(魚肉)을 가지고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두 중국 사신에게 주게 하였다.</p>	<p>○癸亥/命都承旨金升卿，齎燒酒及魚肉往太平館，贈兩天使。</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맹현(李孟賢)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 네째는 숭음(崇飲)11470) 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하늘이 비로소 서직(黍稷)11471) 을 내어 백성이 술을 만들게 한 까닭은 입과 배를 채워 비환(悲歡)을 술회(述懷)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공양(供養)하고, 제사하여 복을 빌고, 쇠약한 자와 늙은 자를 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예주(醴酒)11472) 가 맛이 좋으나, 〈제사에서 도리어〉 현주(玄酒)11473) 를 숭상하는 것은 오미(五味)11474) 의 근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신명(神明)을 공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군자(君子)11475) 에게 술이 있으니 많고도 맛이 좋다.’ 하였으니, 이는 손님을 대접하게 위한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례(酒醴)를 순후(醇厚)하게 하고, 황구(黃耇)11476) 를 보양(報養)한다.’ 한 것은 부모(父老)를 대접하여 마시게 하는 것이고, 《예기》에 ‘읍양(揖</p>	<p>○甲子/弘文館副提學李孟賢等上疏曰：(…) 四曰，戒崇飲。’ 臣等竊謂，天之始生黍稷，俾民爲酒者，非爲充口腹，暢敘悲歡也，所以頤養天下，享祀祈福，扶衰養老者也。《記》曰：“醴酒之美，玄酒之尚，貴五味之本，” 所以養神明也。《詩》云：“君子有酒，多且旨。” 所以燕賓客也。其曰：“酒醴維醴，以祈黃耇。” 者，燕父老而飲也，其曰：“揖讓而升，下而飲。” 者，因射而飲也。燕飲之禮，明君臣之義也；鄉飲之禮，明長幼之序也。非此</p>

讓)하고 올라가 〈활을 쏘고〉 내려와 마신다.’ 한 것은 활쏘기로 말미암아 마시는 것입니다. 연음(燕飲)의 예(禮)는 군신(君臣)의 의리를 밝히는 것이고, 향음(鄉飲)의 예는 장유(長幼)의 차서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군자(君子)는 마시지 않으나, 오히려 선왕(先王)의 수작(酬酌)하는 예를 절제하여 한 번 잔을 바치는 예에 손님과 주인이 백번 절하게 하여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예방하였어도 술의 말류(末流)가 재앙을 일으킨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주(紂)의 죄악을 셀 때에 주색에 빠진 것을 첫머리에 꼽았고, 풍서(鄆舒)11477)의 다섯 가지 죄 가운데의 하나가 술을 즐긴 것이었으며, 백유(伯有)11478)는 술을 즐기다가 마침내 사씨(駟氏)11479)에게 쫓겼고, 진준(陳遵)11480)은 술을 즐기다가 흉노(匈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진(陳)나라·수(隋)나라 이후로는 그 재앙이 더욱 참혹하여, 혹 적의 군사가 지경에 임박하여 〈자신이〉 누워 있는 상榻(床榻) 밖이 이미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오히려 취(醉)해서 모르기도 하였으니, 이것에 의하여 술이 재앙을 빚어내는 것을 논하면, 어찌 곡식을 낭비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참으로 목숨을 잃게 하는 도끼이며, 창자를 썩히는 못된 약입니다. 위로는 나라를 망치고 아래로는 자신을 죽이며, 강상(綱常)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우리 나라 삼국 시대(三國時代)의 일도 거울삼을 수 있습니다. 성조(盛朝)11481)가 개국(開國)한 이래로 열성(列聖)이 서로 계승하여 정교(政教)를 닦고 밝히셨으므로 때를 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영이 법전(法典)에 뚜렷하게 있고, 세종대왕께서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술의 재앙을 갖추어 서술하게 하여 중외(中外)에 경계하여 이르셨으니, 조종(祖宗)께서 술을 삼가신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보필(輔弼)하는 정승 같은 자들도 임금의 명을 받아 감히 어기지 않았을 뿐더러, 직사(職事)를 집행하는 신하들도 다 보익(輔翼)하는 공경을 다하여, 스스로 한가하고, 편안한 것도 오히려 감히 취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族也, 君子不飲, 然猶先王節之以酬酢之禮, 一獻之禮, 賓主百拜, 使之終日飲酒, 而不得醉焉, 以此坊之, 酒之流生禍久矣。 武王數紂之惡, 以沈湎爲首, 鄆舒五罪, 其一嗜飲, 伯有酣飲, 而終奔於駟氏, 陳遵嗜酒, 而遇害於凶奴。 陳、隋以下, 其禍尤慘, 或敵兵臨境, 臥榻之外, 已非己有, 而猶醉不知。 以此而論酒之釀禍, 豈特糜穀而已? 實喪性之斧斤, 腐腸之狂藥。 上焉亡國, 下焉殺身, 瀆亂綱常, 毀敗風俗者, 不可殫錄, 吾東方三國之事, 亦可鑑已。 盛朝開國以來, 列聖相承, 修明政教, 群飲之禁, 著在令甲, 世宗大王, 命儒臣備述酒禍, 戒諭中外, 祖宗所以謹愆于酒者至矣。 時則有如輔相, 不惟稟上之命, 而不敢違也, 治事之臣, 亦皆盡輔翼之敬, 而雖自暇自逸, 且猶不敢, 矧曰其敢崇飲乎? 近來時平日久, 人心解弛, 狃於逸豫, 惟沈湎是務。 彼宗室之家, 任俠之徒, 酣飲般樂, 游蕩無度, 以累清明之治, 固非美也, 而公卿、百執事, 則皆有官守, 各供其職可也, 荒廢厥職, 日以群飲爲事, 務勝於人, 不計其費, 酒必醇

어찌 감히 술마시기를 좋아하였다고 하겠습니까? 근래에는 태평한 날이 오래 계속되어 인심이 해이해지고 안일에 젖어 주색에 빠지는 것을 일삼습니다. 저 종실(宗室)의 집과 협기(俠氣)를 부리는 무리가 술에 취하여 실컷 즐기며 절도 없이 놀아서 청명(淸明)한 정치에 누를 끼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경(公卿)·백집사(百執事)는 다 관직이 있으므로, 각각 그 직임에 이바지해야 할 터인데도, 그 직임을 버려두고 날마다 떼를 지어 마시는 것을 일삼으며, 남보다 나으려고 힘쓰느라 그 비용을 헤아리지 않고 술은 반드시 상등 술이라야 하고, 과일도 반드시 진기(珍奇)한 것이라야 하며, 음식은 반드시 가짓수가 많아야 하고, 그릇은 반드시 중국 것이라야 하며, 또 행과(行果)라 하여 온갖 맛있는 것을 많이 벌여 놓아 한 자리에 드는 비용이 걸핏하면 만전(萬錢)이나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또한 비루하게 여기므로, 가난한 자가 발돋움하여 남의 나쁜 버릇을 본떠 음식을 사치하게 하려면 모자라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구하여 구차하게 얻으려는 욕심이 생기므로, 몹시 탐내어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름이 따르게 되니, 이 무슨 폐풍(弊風)이 온통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대저 예의는 음식에서 비롯하므로, 성인(聖人)이 그 큰 욕심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절문(節文)11482) 하였는데, 당상(堂上)에 정례(正例)로 놓일 음식 그릇이 천자(天子)는 26개, 제공(諸公)은 16개, 제후(諸侯)는 12개, 상대부(上大夫)는 8개, 하대부(下大夫)는 6개입니다. 많고 적은 수가 각각 그 지위(地位)에 맞고 본래 제도가 있으니, 재산을 믿고 함부로 분수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천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받들므로 수륙(水陸)의 맛있는 물건을 다하는 것도 못할 일은 아니나, 천자의 음식에도 일정한 수가 있는 까닭은 참으로 천지의 생물에는 한정된 수량이 있으므로, 취(取)하는 데에 도리가 있고 쓰는 데에 절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땅이 메말라서 한 번 흉년이 들면 온 백성이 굶주림에 울부짖는데, 술마시기를 좋아하는 집에서는 이것을 살피지 않습니

酌, 果必珍異, 膳羞必多品, 器皿必漢物, 又稱行果, 錯陳百味, 一席之費, 動至萬錢。 不如是, 人亦鄙之, 貧者企而效尤, 欲侈其羞, 則不能無不足。 於是乎妄求苟得之欲生焉, 窮貪無恥之名隨之, 是何弊風, 一至於此? 夫禮義始於飲食, 聖人因其大欲, 而寓之以節文, 堂上正羞之豆, 天子則二十有六焉, 諸公則十六, 而諸侯則十二焉, 上大夫則八, 而下大夫則六焉。 多寡之數, 各稱其位, 而自有制度, 不可恃財僭越也。 以天下奉一人, 窮水陸之味, 非不能也, 而天子之豆, 尙有數者, 誠以天地之生物, 有大數, 取之有道, 用之有節故也。 況我國土地瘠薄, 一有凶災, 萬姓啼飢, 而崇飲之家, 曾莫之省。 凡可以宴飲之事, 強而名之, 一有除拜, 則名之曰致賀, 小有往返, 則名之曰迎(錢) [餞], 某爲先生, 往拜禮也, 某爲新進, 免新禮也。 由是而群飲之風長焉, 長夜之飲興焉, 其餘邀致權勢, 私相宴樂, 以爲後日相援之地者, 難以枚舉。 甚者, 未辦酒肉, 不能入仕者有之。 且閭巷小民, 一醉之餘, 遽生嫌隙, 水火可入, 白刃可蹈,

다. 무릇 연음(宴飲)할 만한 일은 억지로 이름 붙여 한 번 제배(除拜)가 있으면 이름하여 치하(致賀)라 하고, 조금만 왕래가 있으면 이름하여 영전(迎錢)이라 하며, 누구는 선생이므로 가서 뵈는 예(禮)를 하느니, 누구는 신진(新進)이므로 신참을 면하는 예를 하느니 합니다. 이 때문에 때를 지어 마시는 풍습이 자라나고, 밤새도록 마시는 일이 일어나며, 그 밖에 권세 있는 사람을 맞아 와서 사사로이 서로 연락(宴樂)하여 뒷날 서로 후원(後援)하는 여지를 만드는 것 등은 이루 들어 말할 수 없거니와, 심하면 주육(酒肉)을 장만하지 못하여 벼슬살이를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여염의 미천한 백성이 한 번 취한 끝에 문득 혐극(嫌隙)을 일으키면 물불도 가리지 않고 칼날도 밟을 수 있으니, 옥송(獄訟)의 번거로운 것이 참으로 여기에서 말미암습니다. 전하께서 재변을 만나 수성(修省)하고, 찬선(饌膳)을 줄이고, 정전(正殿)을 피하시며, 술을 금하는 영(營)이 바야흐로 엄할지라도 아래에서 주색에 빠져 있는 자가 있는 것을 전하께서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장엄하고 조심스럽게 임하시고, 법사(法司)에서 결따라서 규혁(糾劾)하여도 폐단이 이러한데, 더구나 도성(都城) 밖의 이목(耳目)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떠한겠습니까? 감사(監司)는 한 도(道) 말고, 변장(邊將)은 한 진(鎭)을 맡으며, 수령(守令)·만호(萬戶)는 각각 한 고을이나 한 영(營)을 맡아서 분담하여 외적(外敵)을 막으므로, 직임이 중대하고 직무가 번극(煩劇)한데, 손님을 만나기만 하면 먼저 주색(酒色)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힘써 흠뻑 취하고, 날로 심하여져서 제가 맡은 일을 멀리 버려두니, 그 마시기를 즐기는 폐해가 서울보다 더욱 심합니다. 지금의 시기를 잃고 바로잡지 않으면, 아마도 서진(西晉)의 풍속이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니, 말이 여기에 이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신 등은 바라건대, 전하께서 용도를 절약하여 백성을 아끼는 일을 몸소 행하여 이끄시고, 세종께서 술을 경계하신 분부를 다시 밝히시되, 그래도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제서 유위(制書有違)11483) 로 논죄(論罪)하여 이 폐단을 엄하게

獄訟之煩，實由於此。雖殿下遇災修省，減膳避殿，禁酒之令方嚴，而下之沈湎者有焉，殿下安得而知之？殿下莊敬以臨之，法司從旁而劾之，弊尚如此，況輦轂之外，耳目所不及者乎？監司主一道，邊將主一鎮，守令、萬戶，各主一邑，一營，分爲禦侮，任重事劇，而一見賓旅，先以酒色，務悅其心，一醉日富，而遐棄厥司，其酣飲之弊，視京師尤甚。失今不救，臣等恐西晉之俗，復起於今日，言之至此，誠可寒心。臣等願殿下節用愛人，躬行以率之，申明世宗戒酒之教，而猶有犯禁者，論以制書有違，痛革此弊。則財不妄費，而可以備水旱之災矣。(…)

	<p>금하소서. 그렇게 하면, 재물이 낭비되지 않아서 수재(水災)·한재(旱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p>	
<p>성종 130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6월 25일(무진) 2번째기사</p>	<p>상당 부원군 한명회가 와서 아뢰기를, “내일 중국 사신이 압구정(狎鷗亭)에서 놀고자 하므로, 신이 오늘 아침 중국 사신에게 가 보았더니, 중국 사신이 신을 만류하여 주반(晝飯)을 같이하였습니다. 상사(上使)가 말하기를, ‘내가 얼굴에 종기가 나서 낫지 않았으므로, 가지 못할 듯합니다.’ 하기에, 신이 청하기를, ‘나가 놀며 구경하면 병도 나을 것인데, 답답하게 객관(客館)에 오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정자는 본래 좁으므로 지금 더운 때를 당하여 잔치를 차리기 어려우니, 해사(該司)를 시켜 정자 곁의 평평한 곳에 대만(大幔)을 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이 이미 중국 사신에게 정자가 좁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다시 무엇을 혐의 하는가? 좁다고 여긴다면 제천정(濟川亭)에 잔치를 차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한명회가 또 보첩만(補簷幔)11505) 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잔치를 차리지 않기로 하였는데, 또 무엇 때문에 처마에 잇대는가? 지금 큰 가뭄을 당하였으므로 뜻대로 유관(遊觀)할 수 없거니와, 내 생각으로 는, 이 정자는 헐어 없애야 마땅하다. 중국 사신이 중국에 가서 이 정자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면, 뒤에 우리 나라에 사신으로 오는 사람이 다 유관하려 할 것이니, 이는 폐단을 여는 것이다. 또 강가에 정자를 꾸며서 유관 하는 곳으로 삼은 자가 많다 하는데, 나는 아름다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 내일 제천정에 주봉배(晝捧杯)11506) 를 차리고 압구정에 장막을 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신은 정자가 좁고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아내가</p>	<p>○上黨府院君韓明澮來啓曰：“明日天使欲遊(狎鷗亭) [狎鷗亭]，故臣今朝往見天使，天使留臣同晝飯。上使曰：‘予有面腫未痊，似未得往。’臣請曰：‘出遊觀賞，則病亦痊矣。何必鬱鬱長在客館乎?’上使曰：‘吾當往矣。’臣之亭本狹小，今當炎熱，設宴爲難，請令該司，於亭傍平衍處，設大幔。”傳曰：“卿既語天使以亭窄，今更何嫌?若以爲窄，則當設宴於濟川亭矣。”明澮又請補簷幔，傳曰：“既不設宴，又何補簷?今當大旱，不可肆志遊觀，吾意以爲‘此亭當撤去也。’天使若說此亭風景之美于中原，則後之奉使于我國者，必皆遊觀，是開弊端也。且聞構亭江上，以爲遊觀之所者多，吾不以爲美也。明日設晝捧杯于濟川亭，而勿令帳幔於(鴨鷗亭) [狎鷗亭]，可也。”明澮啓曰：“臣以亭窄而熱酷，故啓之耳。然臣妻本以宿疾，今又加發，臣觀其病勢若劇，則雖濟川亭，臣似未得往也。”傳于承政院曰：“予未知江濱作亭者某某也。今天使遊狎鷗</p>

본래 숙질(宿疾)이 있는데 이제 또 더쳤으므로, 신이 그 병세를 보아서 심하면 제천정일지라도 신은 가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강가에 정자를 지은 자가 누구누구인지 모르겠다. 이제 중국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면 반드시 강을 따라 두루 돌아다니면서 놀고야 말 것이고, 뒤에 사신으로 오는 자도 다 이것을 본떠 유람(遊覽)할 것이니, 그 폐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우리 나라 제천정의 풍경은 중국 사람이 예전부터 알고, 희우정(喜雨亭)은 세종(世宗)께서 큰 가뭄 때 이 정자에 우연히 거둥하였다가 마침 영우(靈雨)를 만났으므로 이름을 내리고 기문(記文)을 지었으니, 이 두 정자는 헐어버릴 수 없으나, 그 나머지 새로 꾸민 정자는 일체 헐어 없애어 뒷날의 폐단을 막으라. 또 내일은 제천정에서 주봉배(晝捧杯)를 차리고 압구정에는 유관만 하게 하라.”

하였다.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한명회의 말은 지극히 무례합니다. 중국 사신이 가서 구경하려 하더라도 아내가 참으로 앓는다면 이것으로 사양해야 할 것인데, 중국 사신이 병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도리어 스스로 놀기를 청하고서 한마디도 아내의 병을 말하지 않았고, 이제는 아뢰어서 대만(大幔)과 보첩(補簷)을 청하였으니, 대개 그 사치하고 큰 것을 꼭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상의 뜻에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서는 말을 바꾸어 아뢰기를, ‘신의 아내가 병이 심하므로 제천정일지라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성상의 뜻에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을 마음에 언짢게 여겨서 나온 말일 것이며, 마음에 분노를 품어서 언사(言辭)가 공손하지 않았으니, 신하로서의 예의가 아주 없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명에 대하여서는 천리의 먼길이라도 사양하지 않고 가야 할 것인데, 더구나 스스로 청하고 나서 도리어 사양하는 것이겠습니까? 유사(攸司)를 시켜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亭,必沿江歷歷偏遊,而後乃已,後之奉使而來者,必皆效此遊覽,其弊寧有既耶?我國濟川亭之景,中朝人自古知之,喜雨亭,世宗於大旱,偶幸此亭,適遇靈雨,仍賜名作記,此二亭,則可不壞也,其餘新構之亭,一切撤去,以防後弊。且明日晝捧杯,設於濟川亭,而狎鷗亭,則但使遊觀可也。”承旨等啓曰:“明澮之言,至爲無禮。天使雖欲往觀,妻苟病,則當以此辭之,而天使稱病,反自請遊,無一語及妻病,今乃啓請大幔及補簷,蓋欲極其侈大,以誇美也。及知上意不肯,乃變辭啓曰:‘臣妻病劇,雖濟川亭,亦不得往。’此必以上意不肯,爲未愜於心而發,心懷憤怒,言辭不恭,殊無人臣之禮。臣之於君命也,雖千里之遠,當無辭而行,況自請而反辭乎?請令攸司鞫問。”傳曰:“此言甚可。然當徐教之。”承旨等又啓曰:“君臣之間,豈可如此悖慢?請命鞫,以快臣等之望。”傳曰:“予豈優游不斷而然也?當徐教之。何急急爲耶?”

	<p>하니, 전교하기를, “그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천천히 분부하겠다.”</p> <p>하였다. 승지들이 또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이처럼 패만(悖慢)11507)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문 하도록 명하여 신들의 소망하는 바를 시원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그러겠는가? 천천히 분부하겠다. 어찌 서둘러야 하겠는가?”</p> <p>하였다.</p>	
<p>성종 130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6월 29 일(임신) 3번째기사</p>	<p>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가 행향사(行香使)로 흥천사(興天寺)에서 비를 비는 데, 예조 좌랑(禮曹佐郎) 소사식(蘇斯軾)을 보내어 와서 아뢰기를, “예전에는 부처 앞에 과병(果餅)을 썼는데, 이제는 생쌀[生米]을 쓰니 미편(未便)한 듯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신에 정성드리는 도리는 성경(誠敬)에 달려 있을 따름이고 물건이 많고 적은 것이나 익히고 안 익힌 것에 달려 있지 않다.”</p> <p>하였다.</p>	<p>○玉山君躋，以行香使，禱雨于興天寺，遣禮曹佐郎蘇斯軾來啓曰：“昔於佛前，用果餅，今用生米，似未便。”傳曰：“格神之道，但在誠敬而已，不在物之多寡、生熟也。”</p>
<p>성종 131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7월 12 일(을유)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教)하기를, “가뭄이 이미 매우 심하니, 경기(京畿)에서 오전(五殿)11561) 에 진상하는 어육(魚肉)을 감면하고, 또 나와 중궁(中宮)의 낫 수라(水刺)는 수반(水飯)11562) 만을 올리라.”</p> <p>하니, 승정원과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경기에서 진상하는 것을 감면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乙酉/傳于承政院曰：旱既太甚，其減京畿五殿進上魚肉，且予與中宮晝水刺，只進水飯。” 政院及司饗院提調，請勿減京畿進上，不聽。</p>
<p>성종 131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7월 13</p>	<p>대내(大內)에서 어서(御書)한 소간(小簡)을 내보냈는데, 그 소간에 이르기를, “1. 명일(名日)에 진상하는 주물(晝物)·별주물(別晝物) 및 늘 공상(供上)하는 두탕(豆湯)·타락(駝駱)은 모두 전량(全量)을 제감(除減)하라.</p>	<p>○內出御書小簡： 一，名日進上晝物、別晝物及常供豆湯、駝駱，竝全除。一，香醞非懿旨，</p>

<p>일(병술) 4번째기사</p>	<p>1. 향온(香醞)은 의지(懿旨)11564) 가 아니면 바치지 말라.</p> <p>1. 제사(諸司)에서 공상(供上)하는 기름·개자(芥子)·초[錯]·장(醬)·두부는 반을 줄이고, 우무[牛毛]·장과아(醬瓜兒)와 주방(酒房)의 축거(杻炬)는 전량을 제감(除減)하라.</p> <p>1. 여러 도에서 세 대비전(大妃殿)에 바치는 삭선(朔膳)11565) 을 황해도는 전량을 제감하고, 다른 도는 망전(望前)11566) ·망후(望後)11567) 를 물론하고 한 번만 봉진(封進)하고, 경기는 날것을 한 번 바치라.</p> <p>1. 대전·중궁의 차비인(差備人)11568) 의 삭료미(朔料米)11569) 는 각각 한 말을 줄이라.</p> <p>1. 감선(減膳)11570) 하는 동안에는 강원도 이외의 물선(物膳)을 모두 봉진하지 말라.”</p> <p>하였다.</p>	<p>勿進。 一， 諸司供上油、芥子、醋醬、豆腐，減半，牛毛醬、瓜兒、酒房杻炬，全除。 一， 諸道三大妃殿朔膳，黃海道則全除，他道則除望前後，一度封進，京畿則一度進生物。 一， 大殿、中宮差備人朔料米， 各減一斗。 一， 減膳間江原道外物膳， 竝勿封進。</p>
<p>성종 132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8월 3일 (을사) 1번째기사</p>	<p>사신(使臣)을 인정전(仁政殿)에서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사신이 이르니, 임금이 인정전 밖에 나아가 맞이하여 전(殿) 안으로 들어왔다. 상사(上使)가 아뢰기를,</p> <p>“여러 번 후한 상을 내리시고 자주 연회를 베풀어 주시며, 또 진헌(進獻)하는 희완물(戲玩物)은 그 제조됨이 대단히 좋으니,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서 감사드립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우리 나라 장인(匠人)은 모두 솜씨가 졸렬하여 만든 것이 정밀하지 못합니다.”</p> <p>하였다. 두 사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고, 어좌(御座)를 잡아서 남면(南面)하여 설치하고, 어좌에 오르기를 청하여 또 머리를 조아리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어찌 이렇게까지 합니까?”</p>	<p>○乙巳/宴使臣于仁政殿。 兩使至， 上出仁政門外， 迎入殿內。 上使啓曰：“累累厚賞， 頻頻請宴， 又進獻戲玩之物， 製造甚好， 我等叩頭謝恩。” 上曰：“本國匠人， 皆拙手， 所做匪精。” 兩使叩頭謝， 執御座， 移設南面， 請陞座， 又欲叩頭。 上曰：“何爲若是?” 兩使曰：“此是正禮。” 上曰：“大人雖云正禮， 予心未安。” 上使曰：“本國文武大臣， 見我等行是禮， 皆曰：‘鄭同、金輿， 是土民， 殿下是土王， 故其禮如是。’ 則豈不是正禮乎?” 上從之， 兩使叩頭各就座。 命都承旨金升卿，</p>

	<p>하였는데, 두 사신이 말하기를, “이것이 곧 정례(正禮)입니다.” 하자, 임금(上)이 말하기를, “대인(大人)께서는 비록 정례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미안하오.” 하니, 상사(上使)가 말하기를, “본국(本國)의 문무 대신(文武大臣)이 우리들이 이러한 예(禮)를 행함을 보고, 모두 ‘정동(鄭同)·김흥(金興)은 본토의 백성이며, 전하는 본토의 임금(王)이므로 그 예가 이렇다.’고 한다면 어찌 이것이 정례가 아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두 사신이 머리를 조아리고 자리에 앉았다.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인정(仁定) 예물로 각각 백저포(白苧布) 10필(匹), 흑마포(黑麻布) 10필, 호피(狐皮) 70장(張), 표피(豹皮) 3장, 표지 (表紙) 1권(卷), 유둔(油菴) 2벌[事], 입모(笠帽) 40벌, 세죽선(細竹扇) 4백 자 루[把], 사의(蓑衣) 1부(部), 작설차(雀舌茶) 2말[斗], 호초(胡椒) 2말, 장궁(粧弓) 1장(張), 대전(大箭) 1부(部)를 주니, 두 사신이 각각 내 려 준 활을 들고 임금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상을 내려 주심이 빈번하였는데, 또 이런 물품을 내리시니, 전하의 천은(天 恩)은 말로써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p>	<p>贈人情禮物, 各白苧布十四、黑麻布十四、狐皮七十張、豹皮三張、表紙一卷、油菴二事、笠帽四十事、細竹扇四百把、蓑衣諸緣具一部、雀舌茶二斗、胡椒二斗、粧弓一張、大箭一部。兩使各執賜弓, 就上前啓曰: “賞賜繁頻, 又賜此等物件, 殿下天恩, 說不能盡。” (…)</p>
<p>성종 132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8월 17 일(기미) 3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가 아뢰기를, “지금 이미 추분(秋分)이 지났으니, 청컨대 향운(香醞)11623) 을 진어(進御)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p>	<p>○領議政鄭昌孫、禮曹判書李坡啓曰: “今已過秋分, 請進香醞。” 不許。</p>
<p>성종 132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8월 26 일(무진) 2번째기사</p>	<p>(…) 이세좌(李世佐)가 말하기를, “지금 술을 금하는 것은 쌀을 소비하기 때문인데, 떡시루를 가지고 다니는 자 는 금하지 아니하니, 떡에 곡식이 허비되는 것이 술보다 더합니다. 청컨대 아 울러 금하소서.”</p>	<p>世佐曰: “今酒禁, 爲糜費也, 而持餅盆者不禁, 餅之糜穀, 甚於酒。請并禁之。” 上曰: “可。”</p>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 132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8월 26 일(무진) 6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근간에 면포(綿布)의 비용이 거의 다 되었으니, 미리 비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전(大典)》에, ‘염분세(鹽盆稅)는 소금을 곡식과 베로 바꾸어서 군자(軍資)에 보충한다.’고 실렸는데, 염창(鹽倉)에 있는 관리들은 다만 곡식만을 바꾸고 베는 바꾸지 아니하니 특별히 입법(立法)한 근본 뜻에 어긋난다. 베 바꾸는 일을 다시 확실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傳于戶曹曰：“近者綿布費用殆盡，不可不預儲。《大典》載鹽盆稅鹽換穀布補軍資，而鹽倉所在官吏，但換穀，而不貿布，殊無立法本意。貿布事，其申明舉行。”
성종 132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8월 27 일(기사) 3번째기사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신정(申潐)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도내(道內)의 모든 진상물을 이미 올리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수박을 올린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역로(驛路)로 수송하기에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후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下書平安道觀察使申潐曰：“道內凡進上，已令勿進，今進西瓜何也？驛路轉輸，必有弊，後勿如是。”
성종 133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9월 17 일(무자)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순천 교수(順天教授) 권경온(權景溫)은 나이가 거의 70이 되었는데,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경자년(11665)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으므로, 내가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탁수(擢授) 11666) 하였다. 그러나 권경온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므로, 여년(餘年) 11667) 을 마칠 때까지 명하여 본직(本職)을 제수하여 그 뜻을 위로하고자 하였었다. 올해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처자(妻子)을 양육(養育)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쌀·콩 아울러 10석(碩)을 주어 포장(褒獎)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傳旨戶曹曰：“順天教授權景溫，年垂七十，不倦于學，歲庚子，登明經科，予嘉其志，擢授司憲府監察。景溫自以老耄，欲歸田里，以終餘年，命授本職，以慰其志。今年凶荒，妻子養育必難，令所居長水縣給米豆竝十碩，以示褒獎。”
성종 133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영중추(領中樞)·예조 당상(禮曹堂上)·사헌부(司憲府)·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무사(武士)들이 사후(射侯)할 때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命領中樞、禮曹堂上、司憲府、承政院，議武士射侯時許飲酒事。李克

<p>(成化) 17년) 9월 24일(을미) 4번째기사</p>	<p>이극배(李克培)·이파(李坡)·김승경(金升卿)·이길보(李吉甫)·노공필(盧公弼)·이세좌(李世佐)·성준(成俊)·김세적(金世勳)은 의논하기를, “활을 쏘는 자는 반드시 술을 먹어야 궁력(弓力)을 도움받습니다. 이 때문에 활을 쏘 때에는 대략 주효(酒肴)를 준비하는 것이니,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무사가 술을 마신 후에 활을 쏘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처럼 일체 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이봉(李封)·구치곤(丘致崐)·윤기반(尹起礪)·김학기(金學起)·김석원(金錫元)·곽은(郭垠)은 의논하기를, “근일에 술을 금하는데도 날마다 범하는 자가 4, 5명을 밀돌지 아니하고, 또한 모여서 마시면서까지 범하는 자도 있습니다. 만약 사후하면서 마시도록 허락하면, 위로는 사대부(士大夫)로부터 아래로는 공상(工商)·천례(賤隸)에 이르기까지 사후한다고 칭탁하고 모여서 마시며 자연히 방자할 것이니, 절용(節用)하여 하늘의 경계에 삼가한다는 뜻이 어찌 있겠습니까? 청컨대 한결같이 엄하게 금(禁)하소서.” 하였는데, 이극배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培、李坡、金升卿、李吉甫、盧公弼、李世佐、成俊、金世勳議：“射者必借酒以助弓力，其因射略備酒肴者，勿禁何如？”金自貞議：“武士不必飲酒，而後射也。仍舊一禁何如？”李封、丘致崐、尹起礪、金學起、金錫元、郭垠議：“近日犯酒禁者，日不下四五人，亦有犯會飲者。若許射侯之飲，則上自士大夫，下至工商賤隸，必托射侯，群飲自恣，其節用謹天戒之意安在？請一切痛禁。”從克培等議。</p>
<p>성종 133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17년) 9월 25일(병신) 3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 전지하기를, “혼인(婚姻)·제사(祭祀)·노병(老病)·복약(服藥)으로 부득이하야 술을 쓰는 경우와 무사가 사후할 때 주효(酒肴)를 준비하는 것을 위하여 술과 떡을 파는 것은 금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司憲府曰：“婚姻、祭祀、老病、服藥不得已用酒處及武士射侯時，略備酒肴者，賣酒賣餅者，勿禁。”</p>
<p>성종 134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17년) 10월 1일(임인) 1번째기사</p>	<p>종정국(宗貞國)이 특송(特送)한 종무승(宗茂勝) 등이 하직하였는데, 예조(禮曹)의 답서는 이러하였다. (….) 특별히 내리는 물품은 말 2필, 안자(鞍子) 2면(面), 채단(綵段) 3필, 생초(生絹) 3필, 면주(綿紬) 2백필, 면포(綿布) 3백 필, 정포(正布) 3백 필, 쌀과 콩 2백 석, 계피(桂皮) 3각(角), 다식(茶食) 3각, 잣</p>	<p>○朔壬寅/宗貞國特送宗茂勝等辭，禮曹答書曰：(…) 別幅特賜，馬二匹、鞍子二面、綵段三匹、生絹三匹、綿紬二百匹、綿布三百匹、正布三百</p>

	<p>[栢子] 1섬, 소주(燒酒) 2백 병, 청주(淸酒) 50병, 건치(乾雉) 1백 마리, 표피(豹皮) 3장, 호피(虎皮) 5장, 유둔(油苧) 2장, 유석(油席) 3장입니다.”</p>	<p>匹、米太并二百碩、桂三角、茶食三角、栢子一碩、燒酒二百瓶、淸酒五十瓶、乾雉一百首、豹皮三張、虎皮五張、油苧二張、油席三張。</p>
<p>성종 134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0월 12일(계축)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마도(對馬島)에서 특송(特送)한 왜인 종무승(宗茂勝)이 본조(本曹)에서 접대하는 날에 말하기를, ‘왜적 22명이 배 2척에 나누어 타고 전라도 지방의 이름이 안밝혀진 포구(浦口)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약탈하고 궁시(弓矢)·기명(器皿)·의량(衣糧) 등을 빼앗아 와서 대마도민이 모르게 몰래 석견주(石見州)로 가서 그것을 팔아 생활합니다. 이들은 이나군(而那郡) 종성홍(宗盛弘)의 관하(管下)이지만 종성홍은 그들을 제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도주(島主)가 대관(大官) 및 나와 평국충(平國忠) 등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잡게 하였는데, 적들이 산에 의거하여 항전(抗戰)해서 피차간에 모두 사상자가 났으며 7명을 사로잡고 15명을 사살 하였습니다. 그 우두머리 2명의 머리는 전에 대국(大國)으로 보내고 13명의 머리는 대마도의 여러 포구에 전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p>	<p>○禮曹啓: “對馬島特送倭宗茂勝, 於本曹饋餉日言曰: ‘賊倭二十二人, 分乘二船, 於全羅道地面不記名浦所, 海採人抄掠, 奪弓矢、器皿、衣糧等物而來, 不使本島人見之, 潛往石見州, 買賣以爲生業。 此賊所居, 則而那郡宗盛弘管下也, 然盛弘力不能制。 島主命代官及俺與平國忠等, 率軍往捕賊, 依山拒戰, 彼此俱有死傷, 生擒者七人, 射殺者十五人。 而爲首二人頭, 則先送大國, 十三人頭, 則傳示本島諸浦’云。”</p>
<p>성종 134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0월 15일(병진)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금년의 경상도 전세(田稅)로서 광흥창(廣興倉)과 풍저창(豐儲倉)에 납부할 조미(糙米)11713) 2천 54석을 상납하지 않고 전지에서 생산된 벼 4천 8백 8석을 농부로 하여금 가흥창(可興倉)으로 바로 바치게 하고, 이를 조운(漕運)하여 평안도·황해도의 종자곡(種子穀)으로 충당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書) [曹] 啓: “今年慶尙道田稅, 廣興、豐儲倉應納糙米二千五十四石, 除上納, 以本色稻四千八百八碩, 令佃夫直納于可興倉, 漕轉, 以補平安、黃海道種子何如?” 從之。</p>
<p>성종 135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1월 1</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前) 영동 현감(永同縣監) 홍강(洪剛)은 불법으로 노비(奴婢) 8구(口)를 거느리고, 또 쌀 60석(碩) 6두(斗) 2승(升)과 콩 2석 4두 1승을 남용하였으며,</p>	<p>○義禁府啓: “前永同縣監洪剛, 濫率奴婢八口, 又濫用米六十碩六斗二升、豆二碩四斗一升。 且因納壻, 又私用</p>

<p>일(신미) 5번째기사</p>	<p>또 사위를 보면서 쌀 2석 2두 2승과 콩 12두 8승을 사용(私用)함으로써, 합계 1백 7관 6백 90문(文)을 뇌물로 받았으니, 율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유(赦宥) 전의 일이어서 예에 따라 응당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청컨대 장리안(贓吏案)에 기록하고 쌀과 콩은 그 양만큼 관에 몰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米二碩二斗二升、豆十二斗八升罪，計贓一百七貫六百九十文，律該絞待時。但事在赦前，例應蒙宥。請錄案，其米豆依數沒官。”從之。</p>
<p>성종 135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1월 28일(무술)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권집(權諱)의 처(妻) 한씨(韓氏)에게 쌀과 콩 아울러 40석(碩), 종이 1백 권, 석회(石灰) 50석, 정포(正布) 50필(匹), 청밀(淸蜜) 7두(斗), 기름 10두, 관곽(棺槨) 각 1벌씩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權諱妻韓氏，賻米豆并四十碩、紙一百卷、石灰五十碩、正布五十四、淸蜜七斗、油十斗、棺槨各一賜給。”</p>
<p>성종 136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2월 11일(신해)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教)하기를, “장빙(藏氷)하는 군인(軍人)에게 3일에 한 차례씩 술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藏氷軍人，三日一次饋酒。”</p>
<p>성종 136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2월 22일(임술) 1번째기사</p>	<p>성절사(聖節使) 한치형(韓致亨)이 칙서(勅書)를 받들고 중국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해서 칙서를 맞고, 환가(還駕)하여 인정전(仁政殿)에서 칙서를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 대록포(大鹿脯) 15속(束), 녹편포(鹿片脯) 2백 개, 건문어(乾文魚) 2백 미(尾), 건대구어(乾大口魚) 3백 미, 건전복어(乾全鰓魚) 2백 속(束), 건오징어[乾烏賊魚] 8백 미, 건광어(乾廣魚) 2백미, 건수어(乾秀魚) 2백 미, 곤포(昆布) 2백 근(斤), 다시마[塔士麻] 2백 근, 김[海衣] 1백 근, 해채용(海菜茸) 1백 근, 향신(香蕈) 1백 근, 홍소주(紅燒酒) 10병(瓶), 백소주(白燒酒) 10병, 송자(松子) 2백 근, 인삼(人蔘) 50근이다.”</p>	<p>○壬戌/聖節使韓致亨，奉勅來自京師。上幸慕華館迎勅，還駕受勅于仁政殿如儀 (...) 大鹿脯一十五束、鹿片脯二百箇、乾文魚二百尾、乾大口魚三百尾、乾全鰓魚二百束、乾烏賊魚八百尾、乾廣魚二百尾、乾秀魚二百尾、昆布二百斤、塔士麻二百斤、海衣一百斤、海菜茸一百斤、香蕈一百斤、紅燒酒十瓶、白燒酒十瓶、松子二百斤、人蔘五十斤。</p>
<p>성종 136권, 12년</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한치형(韓致亨)을 인견(引見)하고 중국 조정</p>	<p>○上御宣政殿，引見韓致亨，問中朝</p>

<p>(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2월 22일(임술) 2번째기사</p>	<p>의 사정을 물으니, 한치형이 대답하기를, “정동(鄭同)은 9월 25일에 중국 경사(京師)에 들어갔고, 신(臣)은 26일에 중국 경사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교위(校尉)가 와서 말하기를, ‘황제(皇帝)께서 지난번에 나로 하여금 재상(宰相)11820) 이 오는가를 보게 했는데, 그 때 재상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황제께서 또 나로 하여금 와 보게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마치 속히 진헌(進獻)하라고 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즉시 진헌할 물건을 가지고 동화문(東華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이 돌아갈 때에 상당히 노여워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말한 바가 없었는가?”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정동이 말하기를, ‘진헌하는 음식물(飲食物)에 대하여 전하(殿下)께서 성지(聖旨)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답례(答禮)하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전하께 아뢰기를, 「성지가 있으면 공진(供進)하겠습니까?」 하니,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지가 있으면 어찌 공진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나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전하께 반복하여 말하면서 한낮이 되도록 힐난(詰難)하였는데, 내가 그러한 말을 들은 뒤로는 6, 7일 동안 분통함이 가슴에 가득하여 마치 기운이 없는 듯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대답하기를, ‘전하의 지성(至誠)을 대인(大人)이 어찌 모르고서 이런 말을 하시오?’ 하니, 정동(鄭同)이 말하기를, ‘전하의 지성은 내가 아는데, 나의 지성은 전하께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동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성지가 있으면 일일이 공진하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중국 조정의 명이 있으면 어찌 공진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동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재상은 칙서(勅書)가 내려짐을 원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하므로, 신이</p>	<p>事。致亨對曰：“鄭同九月二十五日入京，臣則二十六日到京。有一校尉來言：‘皇帝向者使予見宰相來否，時宰相未到，故皇帝又使予來見矣。’其言似若速令進獻。臣即將進獻之物，由東華門而進。”上曰：“鄭同回還時，頗有怒色，無奈有所言乎？”致亨曰：“鄭同云：‘進獻食物，殿下以不付聖旨，不肯答，予啓殿下曰：『有聖旨，則其供進乎?』殿下曰：『有聖旨，則何不供進乎?』是殿下以予言爲不實也。故予以此言，反覆於殿下，日中而詰，予自聞此語以後，六七日痛滿胸臆，若無氣焉。’臣答曰：‘殿下至誠，大人豈不知之，有是言耶?’鄭同曰：‘殿下至誠，則予知之矣，予之至誠，殿下不知矣。’同又語臣曰：‘信乎有聖旨則一一供進乎?’臣答曰：‘若有朝廷之命，則何不供進乎?’同曰：‘然則宰相不欲降勅矣。’臣答曰：‘若降勅，則予何敢辭乎?’同曰：‘予往還本國之後，奏皇帝曰：『朝鮮平安、黃海二道，自春徂秋不雨，所經皆赤地，有轉輸之弊矣。』皇帝無有勿獻之旨也。且予又奏皇帝曰：『朝鮮言官言於國王云：</p>
---	--	---

대답하기를, ‘만약 칙서가 내린다면 내가 어찌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정동이 말하기를, ‘내가 본국(本國)에 갔다 돌아온 뒤에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朝鮮)의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가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오지를 않아 지나가는 곳은 모두 적지(赤地)11821) 여서 수송(輸送)하는 데에 폐단이 있습니다.」 하였으나, 황제께서는 진현하지 말라는 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의 언관(言官)들이 국왕(國王)11822) 에게 말하기를, 성지(聖旨)는 흰 종이에 썼고 흑점(黑點)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묻기를, 「국왕의 태도는 어떻던가?」 하므로, 내가 아뢰기를, 「국왕은 말하기를, 성지(聖旨)가 있으면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칙서를 내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습니다. 내가 본국에 있어서는 부모(父母)의 나라이고, 또 전하의 은혜를 입음이 지극히 큰데, 내가 어찌 본국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본국에서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면, 나의 족친(族親)은 모두 전하의 국민(國民)이므로 충군(充軍)도 할 수 있고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찌 거짓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묻기를, 「네가 가지고 간 옥대(玉帶)의 하사에 대해서 국왕은 어떻게 생각하던가?」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국왕이 이르기를, 이러한 옥대를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또 묻기를, 「향대(香帶)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던가?」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향대는 국왕이 떨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나에에 이르기를, 이러한 향대도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짐(朕)이 마땅히 띠에다 용(龍)을 새겨서 주어야 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언관의 일은 사실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어찌서 이러한 말이 있었는가? 이는 반드시 억측하여 아뢰었을 것이다.”

『聖旨乃素楮無黑點，不可信也。』」
皇帝問曰：「國王則何如？」予奏曰：「國王則云，有聖旨，則當唯命矣。」
皇帝曰：「降勅可也。」予於本國，爲父母之邦，而又蒙殿下之恩至大矣，予豈不盡心於本國事乎？本國以予爲不可，則予之族親，皆殿下之民也，可以充軍，可以爲百姓矣，予豈作僞之有哉？
皇帝問：「汝齋去賜帶，國王以爲何如？」予對曰：「國王云：『如此之玉，何可易得？』」
皇帝又問曰：「香帶則何如？」予對曰：「香帶則國王無帶之時。然國王謂予曰：『如此之香，亦未易得也。』」
皇帝曰：「然則朕當刻龍于帶，以賜之。」
上曰：「言官之事，實無之也，何以有此言耶？必臆度而奏也。」
仍慰(致享) [致亨] 曰：“受帶而還，一行榮寵矣。”
致亨起拜，而啓曰：“鄭同以聖旨，賜犀帶于臣，臣答曰：‘本國之法，惟王子得帶犀，諸宰相，則不得帶焉，今聖上賜陪臣此帶，不勝惶恐。’”
同曰：“本國之事，雖細微，予悉知之。議政府堂上，皆着犀帶，對我勿出此言。”
因親解臣所着舊帶，而帶以賜帶。序班李詳密

	<p>하였다. 이어서 한치형을 위로하기를, “서대(犀帶)를 받고 돌아왔으니, 일행(一行)의 영광이다.” 하니, 한치형이 일어나 절하고 아뢰기를, “정동(鄭同)이 성지(聖旨)로써 신에게 서대를 주므로, 신이 답하기를, ‘우리 나라의 법으로는 오직 왕자(王子)라야 서대를 떨 수 있고 여러 재상(宰相)은 떨 수가 없는데, 지금 성상(聖上)11823)께서 배신(陪臣)에게 이러한 서대를 주시니, 황공(惶恐)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본국(本國)의 일은 비록 미세한 일이라도 내가 모두 압니다.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은 모두 서대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그러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어서 직접 신이 띠고 있던 옛날 띠를 풀고 하사(下賜)한 서대를 띠게 했습니다. 서반(序班) 이상밀(李詳密)이 신에게 이르기를, ‘한씨(韓氏)가 황제(皇帝)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이미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만약 오라버니의 아들을 만나본다면 온 족인(族人)을 다 만나본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치형을 만나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직접 만나보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벼슬을 제수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직사(職事)를 주도록 한씨가 국왕(國王)에게 청하는 것이 매우 옳을 것입니다.」 하였습니 다. 한씨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비록 국왕에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국왕이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일은 비록 옳지 못하더라도 짐이 국왕에게 칙서로 말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습니 다.」 라고 하였습니 다. 또 한 서반(序班)이 신에게 이르기를, ‘황제가 나인(內人)에게 시켜서 경연(經筵)의 학사(學士)로 하여금 칙서를 짓게 하였다.’고 하였습니 다. 무릇 외국에 칙서를 내릴 때, 황제가 예부(禮部)에 하명(下命)하면 예부에서 한림원(翰林院)에 이첩하고, 한림원에서 초고(草稿)를 작성하여 아뢰면 다시 예부로 내린 다음에 외인(外人)이 예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혹 존귀(尊貴)할</p>	<p>謂臣曰：‘韓氏請于皇帝曰：「予既年老，死日無幾，若見甥之子，則如盡見一族人矣。請見韓致亨。」皇帝答曰：「親見則不可也，授職以送何如？且授職事，韓氏請于國王甚可。」韓氏曰：予在此，故雖請于國王，國王不聽焉。」皇帝曰：「然則事雖非便，朕當勅諭于國王。」’且一序班謂臣曰：‘皇帝令內人，製勅于經筵學士。’凡降外國勅書，皇帝下禮部，禮部移于翰林院，翰林院製草以奏，還下禮部，而後外人得受于禮部，例也。若或尊貴之，則受于內庭，不拘常例。”上曰：“然則今來勅書，但禮部不知耳，朝廷未爲不知也。”致亨曰：“但該部不知也。”上曰：“此勅，鄭同必奏皇帝，而爲之也。”又問曰：“向聞皇帝崇道家之事，迨今猶然乎？”致亨曰：“道家、佛法，無不崇信。故朝則必進素膳，宦官云：‘本國供進鹿脯，觀則美矣，臭惡故不進。且如布子，則全不記數，如香蕈、昆布、全鰻、大口魚嗜進。故以大口魚、全鰻，和豬羊肉湯之，而進焉，必留置餽餘，而復進。”’上曰：“此處素饌，味好故嗜進耳，其</p>
--	---	--

	<p>경우는 내정(內庭)에서 받고 관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번에 온 칙서는 다만 예부에서만 알지 못하는 것이지 조정(朝廷)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다만 해당 부서에서만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칙서는 정동이 반드시 황제에게 아뢰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그전에 들으니, 황제는 도가(道家)의 일을 숭상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도 그러하던가?”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도가(道家)와 불법(佛法)을 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소선(素膳)을 드리는데, 환관(宦官)이 이르기를, ‘본국(本國)에서 공진(供進)하는 녹포(鹿脯)는 보기에선 좋으나 냄새가 나쁘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또 베[布子] 같은 것은 수를 전연 기록하지 않으며, 향점(香簾)·곤포(昆布)·전복(全腹)·대구어(大口魚) 같은 것은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대구어와 전복을 돼지고기·양고기와 섞어서 탕(湯)을 만들어 드리고 반드시 남겨 두었다가 다시 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곳에는 소찬(素饌)이 맛이 좋기 때문에 즐겨 들지마는, 그 곳은 맛이 좋은 소찬이 없던가?”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채(蔬菜)를 드리며, 본국에서 바치는 노리개의 물건은 황제가 직접 펴보고 보관해 두며, 또 염색(染色)이 된 물건을 매우 기뻐하신</p>	<p>處, 則無味好素饌乎?” 致亨曰: “人言以蔬菜進之, 本國所獻戲玩之物, 則皇帝親自披閱封署, 且染色之物亦甚悅焉。” 上曰: “聞汪直威振天下, 信乎?” 致亨曰: “以(達子) [撻子] 防禦, 領軍出歸。汪直, 本在南方一萬里之地, 其父能舉千斤, 故名曰千斤, 嘗叛焉, 中朝討平, 而宮汪直, 皇帝甚寵待, 使之摠兵。然能進退人物, 號曰小皇帝。人稱直之爲人, 不輕言, 體弱而善射。” 上曰: “李珍亦有寵乎?” 致亨曰: “亦甚寵焉。珍本爲姜玉之子, 而呼鄭同爲父。其人指揮凡事, 稍有氣勢, 然氣象不若(鄭國) [鄭同], 珍每言承差往來本國事。且金輔亦有寵, 而摠兵伴人, 語于臣曰: ‘鄭太監族親, 則授職者多矣。予之同生, 只一人加資, 須回啓殿下。’ 人言: ‘金輔與鄭同不協, 姜玉贈食物于金輔, 而語之曰: 「毋使鄭太監知之。」’ 臣一日到姜玉家, 玉賀鄭同焉, 問之則以往朝鮮, 能供進獻之功, 授養子(谷請) [谷清] 小監之職。且臣受勅時, 鄭同以一小豎, 奉勅書, 而出給矣, 書冊則鄭同言: ‘本國書來目錄, 皇帝覽曰:</p>
--	---	---

	<p>다.’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들으니, 왕직(汪直)이 위엄이 천하(天下)에 떨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p> <p>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p> <p>“달자(達子)를 방어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왕직은 본래 남방(南方)의 1만 리(里)나 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1천 근(斤)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천근’이라고 했는데, 일찍이 반역(叛逆)하였으므로 중국에서 토벌하여 평정하고 왕직을 임명하였으며, 황제가 매우 총애하여 그에게 군사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물(人物)을 진퇴(進退)시킬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름하여 ‘소황제(小皇帝)’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컫기를, ‘왕직의 사람됨이 경솔하게 말하지 아니하며, 몸은 약하나 활을 잘 쏜다.’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진(李珍)도 총애를 받고 있던가?”</p> <p>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p> <p>“역시 매우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은 본래 강옥(姜玉)의 아들인데, 정동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데, 상당한 기세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기상(氣象)은 정동만 못하였습니다. 이진은 언제나 차견(差遣)되어 본국에 오가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보(金輔)도 총애를 받아,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썩인(倅人)11824)인데, 신에게 말하기를, ‘정태감(鄭太監)11825)의 족친(族親)은 벼슬한 자가 많습니다. 나의 동생은 한 사람만이 가자(加資)되었는데, 모름지기 전하(殿下)께 회계(回啓)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보는 정동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강옥이 김보에게 음식물(飮食物)을 주면서 말하기를, 「정태감은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어느 날 강옥의 집에 갔더니, 강옥</p>	<p>「或有所未見之書也。」 卽命搜得于內藏無之， 令谷清， 貿易于私處以送。” 上曰：“予囑鄭同， 同必奏達也。” 致亨曰：“韓氏受戲玩見樣于臣， 并與其所入花銀， 臣戲語鄭同曰：‘見此見樣之銀， 無奈小乎?’ 鄭同曰：‘此處之銀， 多歸在爾國矣。’” 又啓曰：“一年常行赴京之使凡三次， 而其迎護送軍， 則六次。 今以正朝使護送軍， 迎聖節使之行， 以聖節使護送軍， 迎(于) [千] 秋使之行， 則除迎逢二行之弊矣。 且千秋使發程， 正當農月， 抄農民護送， 有妨農事。 其時則解冰， 江邊防禦不緊， 以諸邑、諸鎮口傳軍官抄送， 則亦減妨農之弊也。” 上曰：“可。”</p>
--	---	--

이 정동을 칭찬하므로, 그 이유를 묻자, ‘조선에 가서 진헌(進獻)하게 한 공로로 <정동의> 양자(養子)인 곡청(谷淸)에게 소감(小監)의 직위(職位)를 제수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칙서를 받을 때에 정동은 한 명의 소수(小豎)로서 칙서를 받들어 내어다 주었고 서책(書冊)에 대해서는 정동이 말하기를, ‘본국에서 요구한 서책 목록을 황제가 보시고 말하기를, 「혹 보지 못하던 책이 있다.」 하고 즉시 내장(內藏)11826) 의 것을 찾아보게 하였는데, 거기에 없으므로 곡청(谷淸)으로 하여금 사처(私處)에서 사다가 보내게 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동에게 부탁하였으니, 정동이 반드시 주달(奏達)했을 것이다.”

하였다. 한치형이 말하기를,
“한씨가 노리게의 본[見樣]을 신에게 주고 아울러 거기에 들어갈 화은(花銀)까지 보여주었는데, 신이 농담으로 정동에게 말하기를, ‘본으로 보여주는 이 은(銀)은 적지 않습니까?’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이 곳의 은은 그대의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1년에 북경[京師]으로 항상 가게 되는 사절(使節)이 무릇 세 차례인데, 이를 맞이하고 호송(護送)하는 군사는 여섯 차례입니다. 이제 정조사(正朝使)를 호송하는 군사로 성절사(聖節使)11827) 의 행차를 맞이하고, 성절사를 호송하는 군사로 천추사(千秋使)11828) 의 행차를 맞이하면, 맞이하고 호송하는 두 가지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천추사의 발정(發程)은 바로 농사철이니, 농민(農民)을 뽑아 호송함은 농사(農事)에 방해가 됩니다. 그 때에는 얼음이 풀려서 강변(江邊)의 방어(防禦)가 긴박(緊迫)하지 않을 때이니, 여러 고을과 여러 진(鎭)의 구전 군관(口傳軍官)11829) 을 가려서 보낸다면 또한 농사에 방해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성종 136권, 12년 (1481 신축 / 명 성화 (成化) 17년) 12월 24 일(갑자) 2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오늘은 교년(交年)11831) 이므로 대군(大君)들과 밤을 세우려 한다. 입직 승 지(入直承旨)·경연관(經筵官)·주서(注書)·한림(翰林) 등 6인(人)은 모두 문신(文 臣)이니, 삼경(三更) 전에는 각각 고시(古詩) 1백 운(韻)을 지어서 아뢰고 삼 경 이후에는 술을 마시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술을 내렸다. 승지(承旨) 이길보(李吉甫)·노공필(盧公弼), 교리 (校理) 김흔(金訢), 수찬(修撰) 민사건(閔師騫), 주서(注書) 박문간(朴文幹), 검 열(檢閱) 박인(朴訥) 등이 각각 50운을 지어서 아뢰었는데, 바로 삼경 5점 (點)이었다.	○傳于承政院曰：“今日是交年也，欲 與大君等過夜。入直承旨、經筵官、 注書、翰林等六人，皆文臣也，三更 前，各製古詩百韻以啓，三更後，其飲 酒。”仍賜酒。承旨李吉甫·盧公 弼、校理金訢、修撰閔師騫、注書朴 文幹、檢閱朴訥等，各製五十韻以啓， 乃三更五點也。
출처	내용	원문
성종 137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월 3일 (임신) 1번째기사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손순효(孫順孝)·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안초 (安迢)·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신정(申潐)·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정난중(鄭蘭宗)·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철건(李鐵堅)·충청도 관찰사(忠 淸道觀察使) 이신효(李愼孝)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도내(道內)에 흉년이 들었으니, 여러 고을의 인민(人民)이 세전(歲前)에는 그 해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지금 농사철을 당 하여 묵은 곡식은 다하였는데, 공廩(公廩)의 비축은 넉넉하지 못하니, 매우 염려스럽다. 해사(該司)에서 비록 세밀히 조치를 취했다 하나 어찌 경(卿)들이 직접 보는 것만 하겠는가? 경(卿)들은 마음을 다해 구휼(救恤)하여 우리 백성 을 굶주리지 않게 하라.” 하였다.	○壬申/下書京畿觀察使孫順孝、黃海 道觀察使安迢、平安道觀察使申潐、 全羅道觀察使鄭蘭宗、慶尙道觀察使 李鐵堅、忠淸道觀察使李愼孝曰：“道 內失農，諸邑人民，歲前則新穀不至乏 絕，既已生活，今當力農之時，舊[穀] [穀]既盡，公廩所儲不敷，至可慮 也。該司雖詳悉措置，豈如卿之親見 乎？卿其盡心救恤，毋使吾赤子飢 餓。”
성종 137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임금이 삼전(三殿)에 잔치를 올리고, 여러 승지(承旨)와 입직(入直)한 제장(諸 將)과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에게 명하여 활쏘기를 하게 하고 술과 안주를	○上進宴于三殿，命諸承旨及入直諸 將、司饗院提調射侯，賜酒肴。

<p>(成化) 18년) 1월 15 일(갑신) 2번째기사</p>	<p>하사(下賜)하였다.</p>	
<p>성종 137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월 17 일(병술) 3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오늘 아침에 허 판서(許判書)11890)가 말하기를, ‘어변성(魚變成)의 일은 애매합니다.’고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전일(前日)에 어세겸(魚世謙)은 체찰사 중사관(體察使從事官)이 되었고 어변성은 군관(軍官)이 되었을 때 상종(相從)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분이 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서정(西征)한 군공(軍功)에 대하여 녹용(錄用)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서 어세겸에게 말한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심정으로 써는 그럴 수 있는 것으로서 굳이 큰 허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梨]와 수박[西瓜]의 일에 대해서는 애당초 형장(刑杖)으로 인하여 나온 말인데, 두 번째 고문할 때에는 이에 허위 자백이라고 고쳐서 진술하였으니, 정상이 사실 애매합니다. 가령 어머니께 바쳤다 하더라도 배와 수박은 하찮은 식물(食物)이니, 이것을 가지고 형장을 가하여 대신에게 애매한 허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어세겸은 이미 파직(罷職)을 당했고 어변성은 두 차례나 장형을 받았으니, 사정(事情)에 있어서 이미 지나쳤습니다.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내버려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대신에게 관계되었으니, 주상(主上)께서 재결(裁決)하심이 어떻겠습니까?” (…)</p>	<p>○傳曰：“今朝，許判書言：‘魚變成事曖昧。’其議諸領敦寧以上。”領議政鄭昌孫、廣陵府院君李克培議：“前日魚世謙爲體察使從事官，魚變成爲軍官，相從日久。因此交親，今以西征軍功，未蒙錄用，憫憫而言於世謙，亦人情之必然，不必深過。至於梨瓜之事，初出於刑杖之下，再拷之時，乃以誣服改招，情實曖昧。假令納於母家，梨瓜食物之微者，不可因此，而加刑杖，以成大臣曖昧之過。況世謙已至見罷，變成受杖二次，於事情已過。臣愚以爲‘棄之爲便。’然事干大臣，上裁何如？”</p>
<p>성종 137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월 21 일(경인) 6번째기사</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고려사(高麗史)》를 강(講)하다가, 음식을 먹을 때에 배반(杯盤)이 과다(過多)했다는 데에 이르러, 설경(說經)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이러한 풍속은 전조(前朝)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정에서도 그러합니다. 잔치와 음식을 베푸는 곳에는 다투어가며 호화스러움을 숭상하여 과반(果盤)을 많이 준비하여 별도로 상 곁에다 놓아두는데, 부유한 자는 그럴 수</p>	<p>○御夕講。講《高麗史》，至“飲食之際，杯盤過多，”說經宋軼啓曰：“如此之風，非徒前朝然也，我國亦如是。宴飲處，爭尙豪侈，多設行果盤，別置案側。富者猶可，貧者亦強辦，虛費不貲。此風所宜痛革。”侍講官柳允</p>

	<p>있겠으나 가난한 자도 억지로 마련하니, 헛된 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풍속은 마땅히 엄하게 고쳐야 합니다.”</p> <p>하고, 시강관(侍講官) 유윤겸(柳允謙)은 말하기를, “혼인을 하는 날에도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로 인해 가난한 자는 혼기(婚期)를 놓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前日)에도 그 점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p>	<p>謙曰：“至於婚姻之日，亦皆爲之，因此貧者，婚嫁失時。”上曰：“前日亦有言者。其禁之。”</p>
<p>성종 13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2월 4일 (계묘)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박치(朴耜)와 정언(正言) 정광세(鄭光世)가 수춘군(壽春君)의 부인이 <정업원의> 주지로 있는 것을 갈아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비구니가 되었으므로 속가(俗家)에 살더라도 부처를 모실 것이니, 주지로 있는 것이 무방(無妨)하지 않은가?”</p> <p>하니, 박치가 말하기를, “무릇 비구니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추잡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시(詩)로써 기롱하기를, ‘오경(五更)의 종이 치면 절 문이 열려, 앞의 사위 돌아가자 뒤의 사위 이어 오네.’ 하였습니다. 지금 정업원은 평소 비구니들이 섞여 사는 곳이니, 왕자(王子)·군(君)의 부인(夫人)으로서는 살 데가 아닙니다.”</p> <p>하고, 영사 노사신(盧思愼)은 말하기를, “부인(婦人)으로서 비구니가 되면 모두 비구니와 다를 것이 없어서 나들이를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엄하게 금하여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때의 장난으로 지은 시귀(詩句)를 가지고 무엇을 그리 말하는가?”</p>	<p>○御經筵。講訖，掌令朴耜、正言鄭光世，請改壽春君夫人住持。上曰：“已爲尼，在家尚亦奉佛，爲住持，無乃不妨乎?”朴耜曰：“凡尼會處，必有醜聲。古人有詩譏之云：‘五更鍾動寺門開，前壻纔歸後壻來，’是也。淨業院，常尼雜處，王子君夫人，不宜居也。”領事盧思愼曰：“婦人爲尼，則與凡尼無異，出入自恣，可痛禁也。”上曰：“一時戲作詩句，何足道也?”鄭光世又啓曰：“今年凶民飢，酒禁不嚴，迎餞如舊，糜費莫甚。持壺酒者，竝禁何如?”上曰：“民間不得家家釀酒。欲服藥買瓶酒者竝禁，無乃曖昧乎?會飲外勿禁。”</p>

	<p>하였다. 정광세가 다시 아뢰기를,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술에 대한 금지가 엄하지 못하여, 맞이할 때와 보낼 때에 〈술을〉 쓰는 것이 옛날과 다름이 없어서 소비함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 병 술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아울러 금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민간(民間)에서는 집집마다 술을 빚을 처지가 못된다. 그런데 약으로 복용하고자 하여 병 술을 사 가는 것을 아울러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애매(曖昧)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회음(會飲)함을 제외하고는 금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13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2월 9일 (무신) 6번째기사</p>	<p>임금이 궁(宮)으로 돌아올 때에 월산 대군(月山大君)이정(李婷)의 집에 거둥하여서 대홍 필단(大紅匹段)·초록 필단(草綠匹段) 각 1필과 남라(藍羅) 3필을 하사(下賜)하였다. 월산 대군정이 아뢰기를, “간단한 주식(酒食)을 장만하여서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을 대접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 하였다. 월산 대군정이 다시 아뢰자,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시위하는 여러 장수들과 승지(承旨)와 주서(注書)와 한림(翰林)들을 대접하였다.</p>	<p>○上還宮時，幸月山大君婷第，賜大紅·草綠匹段各一匹、藍羅三匹。婷啓曰：“請設一酌，以飲侍衛諸臣。”上曰：“不可。”婷更啓，上許之。於是饋諸將、承旨、注書、翰林。</p>
	<p>이보다 앞서 전력 부위(展力副尉) 신희호(申希浩)가 진언(陳言)하여 직접 아뢰기를 원하였었는데, 이날 승정원(承政院)에 불려서 묻게 하였다. 신희호가 그의 의견을 써서 올렸는데, 그 제 1조에 이르기를, “이미 수령들로 하여금 직접 순시(巡視)하여 진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들이 직접 순시하지 아니하고 진휼관(賑恤官)으로 하여금 진휼하게 하였으니, 진휼관은 자기에게 후(厚)한 자에게는 후하게 하고 자기에게 박(薄)하게 하는 자에게는 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수령들로 하여금 직접 순</p>	<p>○前此，展力副尉申希浩上陳言，願親啓，是日，命致承政院問之。希浩書其意以進，其第一條曰：“已令守令，親巡賑恤，然守令不親巡，令賑恤官賑之。賑恤官，於己厚者厚之，於己薄者薄之。自今須令守令，親巡賑恤，亦令監司巡檢，如有違者重論。”第二</p>

<p>성종 13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2월 13 일(임자) 4번째기사</p>	<p>시하여 진휼하게 하는 한편 감사들로 하여금 순시하며 검사(檢査)하도록 하고, 만일 이에 어기는 자가 있으면 무거운 죄로 다스리소서.”</p> <p>하고, 제 2조에는 이르기를, “지난해에 곡식이 풍년들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제 새로 제수된 수령들이 대개 권속(眷屬)을 거느리고 임지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신관을 맞이하고 구관을 전송하느라고 백성들의 곤궁함이 더욱 심합니다. 하물며 <농번기인> 춘분(春分)이 며칠 남지 아니하였으니,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권속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소서.”</p> <p>하고, 제 3조에는 이르기를,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낭관(郎官)의 집에는 분경(奔競)11951)의 금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드나들거나 부탁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분경을 금지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이를 보고 전교하기를, “둘째 조목은 채택(採擇)할 만하다. 그러니 소관하는 조(曹)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條曰：“去年禾穀不登，黎元飢饉。而今新除守令，皆許率眷赴任，迎新送舊，民困益甚。況今春分纔隔數日，願秋成後，許率眷。” 第三條曰：“吏、兵曹郎官家，無奔競之禁，故想必有躡足囁耳之弊。願自今禁奔競。” 上覽之，傳曰：“第二條可採也。令該曹議啓。”</p>
<p>성종 13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2월 14 일(계축) 3번째기사</p>	<p>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보낸 은서기(閔書記)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편지를 보고 동리(動履)가 가승(佳勝)함을 알게 되어 기쁘고 위로됩니다. 헌상(獻上)한 예물(禮物)들은 성상께 보고하고 받았습니다. 우리의 토산물로 정포(正布) 19필과 면포(綿布) 10필과 신축년(11967)의 예에 의하여 쌀과 콩 아울러 2백 석을 온 사신편에 부쳐 보냅니다. 그대가 보내 준 황금(黃金)·주홍(朱紅) 등은 본국에 저축하여 있는 것이 많은데다가 또 긴요하게 쓸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둬 족하(足下)의 청을 어겼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성상께 아뢰었습니다. 면주(綿紬) 1천 4백 26필과 면포(綿布) 3천 2백 6필 28척 4촌</p>	<p>○宗貞國特送閔書記等辭。其答書曰：書來備認動履佳勝，欣慰。所獻禮物，謹啓收訖。將土宜正布一十九匹、綿(希)[布]一十四及辛丑年例賜米太並二百碩，就付來使。所送黃金、朱紅，本國素儲已多，亦無繁用之處。然重違足下之請，具由以啓。將綿紬一千四百二十六匹、絁布三千二百六匹二十八尺四寸、亦付還使。且助國次捕</p>

	<p>을 또한 돌아가는 사신편에 부쳐 보냅니다. 그리고 조국차(助國次)가 도적을 체포한 공로에 대하여는 비록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족하의 칭을 받았으므로 상(賞)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뢰어 면포 10필을 주게 하니, 그렇게 아십시오. 나머지는 스스로 진중(珍重)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p> <p>하였다.</p>	<p>賊功勞，雖未可的知，然承足下之命，不可不賞。特啓賜綿布一十四匹，惟照悉。餘冀自玉不宣。</p>
<p>성종 13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2월 17일(병진) 2번째기사</p>	<p>경기 진휼사(京畿賑恤使) 강희맹(姜希孟)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과천(果川)과 금천(衿川) 등지를 본즉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이는 땀나뭇을 저다 팔아 양곡을 사서 생활을 꾸려 갑니다. 그래서 현재 굶주리는 기색이 없습니다만, 그 밖의 지역인 통진(通津)·부평(富平)·교동(喬桐)·강화(江華) 등 물가에 있는 군현(郡縣)들은 기근(飢饉)이 더욱 심합니다. 모름지기 양미(糧米) 20만 석이 있어야만 양맥(兩麥)이 익을 기간 동안 진휼할 수 있겠습니다. 또 김포(金浦) 등 물가에 사는 여러 군읍의 백성들이 와서 경창(京倉)의 환자미[還上米]11969)를 받을 때에 그 관(官)에서 받은 환자미[還上米]를 가지고 가면서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때 썩 되면 경창의 조미(糶米)를 거의 다 먹고 겨우 두서너 되[升]가 남습니다.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두서너 되는 양미(糧米)를 구하기 위하여 <경창까지> 오가는 폐단이 있으니, 모름지기 경창의 양미 20만 석을 관청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박(船舶)들을 동원하여 실어다가 물가에 쌓아두고 진휼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에는 볍씨가 다 없어졌으니, 충청도에 요청하여 햇곡식을 다 먹기 전에 바꾸어서 운반하여 오도록 하여 주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을 <진휼사로> 파견한 것은 흉년을 구제하기 위함이지 폐단을 만드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듣건대, 경은 추종자들을 많이 인솔하고 가서 여러 군읍에 폐단을 끼친다고 하니, 어찌서 그렇게 하는가?”</p>	<p>○京畿賑恤使姜希孟來啓曰：“臣觀果川、衿川，則距京不遠，民或負柴，質穀資生。故時無飢色，其他通津、富平、喬桐、江華等水邊郡縣，則飢饉尤甚。須得米二十萬碩，可以賑兩麥成熟間矣。且金浦等水邊諸邑之民，來受京倉還上時，受其官還上，以爲行糧，及還其家，京倉糶米，食之幾盡，僅餘二三升。農務方繁之時，爲數升米，而往還有弊，須糶京倉米二十萬碩，竝以官、私船漕運，積置水邊，賑恤爲便，且京畿，則稻種盡乏，請於忠清道新穀未盡食前，回換運來。”傳曰：“予之遣卿，爲救荒也，非作弊也。聞卿多率驕從，貽弊諸邑，何爲其然耶？”希孟啓曰：“臣聞是教，不勝惶愧。殿下遣臣之意，爲救荒也，臣雖無識，安敢不念殿下委遣之意，而爲弊至此？又焉有馬至二十六匹，人至六</p>

하였다. 강희맹이 아뢰기를,
 “신이 이러한 하교(下敎)를 들으니, 황송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파견한 뜻은 흉년을 구제하는 데에 있는데, 신이 비록 무식(無識)하나 어찌 감히 전하께서 <진휼의 일을> 위임하여 파견한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폐단을 끼치겠습니까? 또 어찌 말이 26필이나 되고 추종하는 인원이 60여 명이나 되는 데에 이르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도리는 없습니다. 신의 행차에는 말이 12필이고 추종 인원이 28인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처음 순행하여 과천현(果川縣)에 이르렀을 적에 도사(都事)와 찰방(察訪)이 나보다 먼저 이 현에 이르렀다가 신에게 만나기를 청하였으므로, 신이 묻기를,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가?’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진휼사를 위하여 왔습니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다음날 여염(閭閻)을 순시(巡視)할 적에 찰방이 또 신을 좇아오기에 신이 말하기를, ‘속히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날 도사가 들어가 현감(縣監)에게 묻기를, ‘오늘의 지용(支用)이 얼마인가?’ 하니, 현감이 말하기를, ‘이미 자세히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하고서 그 장부를 내보였습니다. 그 때에 도사가 손수 타산(打算)하며 말하기를, ‘말의 수가 몇 마리인가?’ 하니, 한 방자(房子)가 이르기를, ‘말이 27필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마침 그 때에 교대하는 말이 과연 20여 필에 이르렀는데, 그 방자가 이를 보고서 모두 신이 거느리고 온 줄로 여기어 잘못 고한 것을 가지고 도사도 그것을 사실로 여기어 이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인솔한 인원과 말이 과연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다면 이는 과천에서 폐를 끼친 것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금천(衿川) 등 다른 군현에 조사하여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 진휼사를 사직하고 변명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十之多乎? 萬無此理。 臣之行, 馬十二、人二十八而已。 今所云若是, 未知出自何口? 臣初行至果川縣, 都事與察訪, 先我到縣, 請謁於臣, 臣問曰: ‘有何所事而來?’ 答曰: ‘爲賑恤使來矣。 臣曰: ‘可還也。’ 越翌日, 巡視閭閻, 察訪又從臣以來, 臣曰: ‘速還可也。’ 其日都事入問縣監曰: ‘今日支用幾何?’ 縣監曰: ‘已令詳記矣。’ 乃出示之。 都事手自打算曰: ‘馬數幾何?’ 有一房子告曰: ‘馬二十七匹。’ 適其時遞馬, 果至廿餘匹, 彼方子見以爲皆臣所率而妄告, 都事亦以爲然, 而有是言也。 臣之所率人馬, 果若人言, 則不但起弊於果川。 證在衿川等他郡。 請辭賑恤使發明。” 傳曰: “前日於輪對, 宋瑛言之, 予亦不以爲然也。 然人之所言, 不可不推。 推之則可知其虛, 故令憲府覈之。” 仍傳于司憲府曰: “守令非則罪在守令, 都事非則罪在都事。 大臣無實之事, 輕易言之, 亦非也, 其鞫以啓。” 希孟曰: “臣承命而出, 旋又被劾, 道內之人, 孰不知之? 大抵人望重, 然後人亦重之, 而其令已行, 今臣已失人望, 而臣心亦未

“전일 윤대(輪對)하였을 적에 송영(宋瑛)이 말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여기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한 것을 추국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추국을 하면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므로 사헌부에 명령하여 조사하게 하겠다.”

하고, 이어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수령이 잘못하였으면 그 죄가 수령에게 있을 것이요, 도사가 잘못하였으면 그 죄가 도사에게 있을 것이다. 대신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일을 경솔하게 말한 것도 잘못이니, 그 사실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강희맹이 말하기를,

“신이 왕명을 받들고 나갔다가 곧 탄핵을 받았으니, 도내(道內)의 사람들이 누가 이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대저 인망(人望)이 무거운 뒤에야 사람들도 존중하는 것인데, <사실을 추국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렸으니, 신은 이미 인망을 잃은 것이 되고, 신의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파견하여 저를 대신하게 하여 주소서. 또 전에 받은 서장(書狀)에 진휼사를 파견함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대하여 백성에게 묻게 하였는데, 어떤 자는 이르기를, ‘갑자년(11970)에는 관찰사가 곡식 50만 석을 청구해서 40만 석을 얻어 진휼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굶어 죽은 이가 없었다.’ 하고, 또 임진년(11971)에 진휼사를 파견하여 구제하였을 적에도 백성들이 굶어 죽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곡식이 많고 재물이 넉넉하면 비록 진휼사를 파견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리는 이가 없을 듯합니다. 진휼사가 요망(要望)되는 것은 편이하게 창고를 열 수 있기 때문인데, 만일 감사가 창고를 열게 된다면 감사와 진휼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이 또한 그 폐단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흥년이 든 도내(道內)에 감사와 진휼사가 서로 교대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비록 <진휼사의> 추종이 아무리 간략하더라도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게 위임하여 진휼하도록 하고, 때

安。請遣他人以代之。且前承書狀，問賑恤使便否於民間，或云：‘甲子年，則觀察使請粟五十萬碩，而得四十萬碩以賑之，民無餓死，又壬辰年，則遣賑恤使以救之時，亦民無餓死者。’苟粟多，而財有餘，則雖不遣賑恤使，可以無飢矣。所望於賑恤使者，以其便宜發倉也，若監司發倉，則監司與賑恤使何異焉？臣亦目擊其弊。殘荒道內監司、賑恤使，更出迭入，則雖騶從過簡，不得無弊。但委監司賑恤，而時遣大臣，察其付種與賑恤形止似便。”傳曰：“卿其勿辭。若有可啓之事，馳書以聞，毋數來京，以盡救荒之責。且賑恤使便否，豈問於一二郡縣，而實聽之乎？須巡問諸邑，而後可言之也。二十萬碩題給事、漕轉分給事、穀種多數回換事，速令戶曹議啓。且人民或飢餓而死，或疾病而死，死亡之數，不可不知，須細知數以啓。”

	<p>때로 대신을 파견하여 <농사철의> 씨 뿌리는 일과 진휼의 상황을 시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경은 <경기 진휼사를> 사직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일 아될 일이 있으면 치서(馳書)하여 아될 것이고, 자주 서울에 오지 말도록 하며, 흉년을 구제하는 책임을 다하여라. 그리고 또 진휼사의 파견이 좋은지 좋지 아니한지에 대하여는 어찌 한두 군현에 물어서 진실한 여론을 들었다고 하겠는가? 모름지기 여러 군읍에 두루 물은 뒤에 말하도록 하라. <경이 요청한> 20만 석을 지급하는 일과 조운(漕運)하여다가 나누어 주는 일과 곡식 종자의 다수를 <충청도에서> 무역하여 오는 일들에 대하여는 속히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또 백성들이 혹은 굶주려서 죽거나 혹은 질병(疾病)으로 죽는 자들은 사망한 자의 수를 알지 아니할 수 없으니, 자세한 숫자를 알아내어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3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2월 18 일(정사)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허종(許琮) 등이 와서 아뢰기를,</p> <p>“어제 군자곡(軍資穀) 20만 석을 내어 경기 백성들을 진휼하라고 명하였습니 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이미 5만 석을 지급하였었고, 이제 또 황해도에 4만 석을 지급하였으므로, 본감(本監)11973) 에 현재 있는 곡식은 백미(白米)·전 미(田米)·황두(黃豆) 이외에 조미(糙米)가 겨우 70만여 석 있을 뿐입니다. 그 런데 이제 또 경기도에 20만 석을 지급하게 되면, 남아 있는 것이 매우 적어져 서 군국(軍國)의 수용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지(無知)한 소민(小 民)들이 <나라에서> 많이 지급함을 들으면 반드시 절약하여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해도에서 듣고는 반드시 많은 수를 청구하게 될 것이니, 마침내 계속하여 <지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우선 5만 석만을 지 급하여서 진휼하여 구제함이 좋을 듯합니다.”</p>	<p>○戶曹(制) [判] 書許琮等來啓曰: “昨日命發軍資穀二十萬碩, 賑京畿 民。前此已給五萬碩, 今又於黃海道 給四萬碩, 本監見在之穀, 白米、田 米、黃豆外, 糙米只有七十萬餘碩。 今又給京畿二十萬碩, 則所存者甚少, 軍國之需, 不可盡用。且無知小民, 聞其多給, 必不撙節食之。黃海道聞 之, 亦必多請, 終難繼矣。今給五萬 碩, 賑救似便。”傳曰: “已悉所啓。 然今聞百姓之飢, 其可不救? 其給十五</p>

	<p>하니, 전교하기를, “보고한 것은 잘 알았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굶주림을 듣고서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15만 석을 지급하라.” 하였다.</p>	<p>萬碩。”</p>
<p>성종 13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2월 26 일(을축)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교(傳敎)하기를, “예빈시(禮賓寺)·내자시(內資寺)·봉상시(奉常寺)에 있는 묵은 장(醬)은 경중(京中)에서 용도(用度)가 될 분량만을 계산하여 내놓고, 그 나머지는 경기와 황해도 등 흉년이 아주 심한 군읍에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을 진휼하게 하라.” 하였다.</p>	<p>○傳于戶曹曰：“禮賓寺、內資寺、奉常寺陳醬，計其京中用度，分給京畿、黃海道凶荒尤甚之邑，以賑民。”</p>
<p>성종 139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3월 3일 (신미)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依據)하여 아뢰기를, “대저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들을 일체 환급(還給)하면 의리(義理)에 걸릴 것 같으며, 만일 모두 해송(解送)하면 국경의 혼단(釁端)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분명한 중국 사람으로서 본주인이 환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로 해송함으로써 국경의 혼단을 일으켜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이제 치준(輜俊)은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이 아니고 영수(永守)를 따라온 것인데, 온성 부사(穩城府使) 이승조(李承祚)가 치준의 말만을 치우쳐 듣고서 중국사람으로 취초(取招)하여 첩보(牒報)하였으며, 절도사 박성손(朴星孫)도 <치준이> 도망하여 왔는지 아닌지를 가려 보지 않고 저 사람들의 노예(奴隸)를 빼앗아서 내지(內地)에 옮겨 둔 것은 모두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그들을 추국(推鞠)하소서. 그리고 또 치준의 말이 과연 옳은데도 환급을 한다면 영수가 반드시 그를 해칠 것이요, 만일 치준이 도망하여 요동(遼東)에 돌아가서 그를 해송(解送)하지 아니한 이유를 누설(漏洩)하게 되면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해송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영수도 그의 노예를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원한을 쌓아서 그의 동류(同類)들이 모두 분한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찰사</p>	<p>○禮曹據永安道觀察使啓本啓曰：“大抵被擄逃來唐人，一切還給，則似礙於義，若皆解送，則邊釁可慮。明白唐人，而本主不請還則已矣，不然，不可強令解送，以構邊釁。今輜俊，非逃來唐人，乃從永守而來，穩城府使李承祚，偏聽輜俊之言，以唐人取招牒報，節度使朴星孫亦不辨其逃來與否，奪彼人之奴，移置內地，皆不可。請鞠之。且輜俊之言果是而還給，則永守必致害，若輜俊逃還遼東，漏其不解送之由，則亦非小事。宜許上來解送爲便。但永守被奪其奴，則必積怨，同類亦皆含憤。令觀察使，招永守厚饋，諭以輜俊曾已送京，不得還給，仍給魚、鹽、米、豆，以慰其心，使無生釁何如?” 命示領敦寧以上。 鄭昌孫、</p>

	<p>에게 명하여 영수를 불러다가 후하게 대접하고, ‘치준을 이미 서울로 보냈기에 환급(還給)하지 못한다.’고 유시하며, 이어서 생선과 소금과 쌀과 콩 등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한명회·심회·윤필상·윤호는 의논하기를,</p> <p>“치준이 항상 본토(本土)에 돌아가기를 생각하지만 영수의 방금(防禁)이 매우 견고함을 인연하여 나오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행히 온성진(穩城鎭)까지 데려왔었고, 중국 사람의 신분을 모두 보고하였으니, 영수의 노예라 하여 갑자기 환급할 수 없기에 절도사에게 보고한 것은 죄될 것이 없다 하겠으며, 온성진에서 이미 절도사에게 보고하였으면 절도사도 그것을 중지할 수 없기에 다시 치준의 신분을 물어서 치계(馳啓)한 것이 또한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준이 당초에 울적함(兀狄哈)타마치(他麻赤)의 처소로부터 도망하여 오는 것을 영수가 요행히 강 위에서 붙잡아 노예로 삼은 것이어서 본래 값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니, 영수가 심하게 분개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물며 영수는 우리 나라 중추(中樞)의 직위를 받아서 일찍부터 우리 나라를 섬기는 자이니, 나라의 법령을 어찌 감히 어겨서 거스르겠습니까? 그러니 절도사에게 명하여 영수를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중국을 공경하여 섬기기에 포로가 된 중국 사람으로서 도망해 온 자들을 모두 해송하는 것은, 너도 귀와 눈이 있으니, 어찌 들어서 알지 않겠느냐? 우리 나라에서 너에게 중추의 직위를 주어서 너를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는 터이니, 너에게 어찌 사람 하나를 아끼겠느냐마는, 다만 중국에서 이를 들으면 어찌 물어 오지 않겠느냐?’ 하여, 이와 같이 설명하여 주고, 면포(綿布)와 미멸(米矚)과 어염(魚鹽) 등의 물건을 후하게 주어서 그 값에 맞게 하여 주면, 반드시 은덕에 감격하여 분한을 풀 것입니다.”</p> <p>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p>	<p>韓明澮、沈澮、尹弼商、尹塚議：“輻俊常思還本土，只緣永守防禁甚固，未得出來，今幸率來穩城鎭，唐人根脚悉告之，不可以爲永守之奴，而遽還給也。其報節度使，似若無罪，穩城鎭已報節度使，則節度使又不可中止，更問根脚，馳啓取旨亦當矣。且輻俊，當初自兀狄哈他麻赤處逃來，永守幸於江上，執致爲奴，初非給價買得之人，永守必不得深忿之也。況永守受本國中樞之職，曾事我朝者也，國令何敢違逆？令節度使，招永守語之曰：‘我朝敬事上國，被虜唐人出來者，皆解送，汝有耳目，豈不聞知？我國授汝中樞，待汝甚厚，於汝豈惜一人，但中朝聞之，則豈無致問？’如此開說，綿布、米矚、魚鹽等物，厚給以酬其直，彼必感恩釋忿。”洪應議：“李承祚、朴星孫措置，恐未得宜。邊將如此處置，似爲輕率。依啓目推鞠何如？”議入，從昌孫等議。</p>
--	--	---

	<p>“이승조(李承祚)와 박성손(朴星孫)의 조치(措置)가 아마 잘못된 듯합니다. 변방을 맡은 장수로서 이와 같이 처치(處置)한 것이 너무 경솔한 것 같습니다. 계목(啓目)에 의거하여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는데, 의논이 들어가자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성종 139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3월 5일 (계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이 아뢰기를,</p> <p>“전자에 구수영(具壽永)이 여러 고을에 명하여 나진(那進)을 잡아 진상하게 하기를 청하니, 성상께서 폐단이 있다고 여겨 청허(聽許)하지 않으셨음을 신 등이 듣고서 참으로 매우 기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교서를 내려 매를 구하신다는 것을 들으니, 신 등은 결망(缺望)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는 때를 당하여 매를 가지고 가고 오는 폐단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 따로 진상하지 말고 매를 예[例]대로 진상할 때에 함께 진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강자평이 또 아뢰기를,</p> <p>“전일에 경기 진휼사 강희맹이 미곡(米穀) 20만 석을 청구하였습시다만, 대저 축적(蓄積)은 한두 해에 저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소비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p> <p>“어떻게 하겠는가?”</p> <p>하자,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p> <p>“강희맹이 <미곡> 20만 석을 청구하였을 적에 15만 석을 주라고 명하였음은 과연 많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벌써 알고 있어서 다 성상의 은덕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이제 만일 그 수를 감하였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결망(缺望)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휼사가 짐작하여 처리할 것이니, 반</p>	<p>○御經筵。講訖，大司諫姜子平啓曰：“前者具壽永請令諸邑，捕那進以進，上以有弊而不聽，臣等聞之，實深欣抃。及聞下書求鷄，臣等不勝缺望。今當民飢，持鷄往來之弊不貲。”上曰：“然。其勿令別進，可於鷹子例進時并進。”子平又啓曰：“前日京畿賑恤使姜希孟，請米二十萬碩，夫蓄積，固非一二年所儲也。豈可輕費乎？”上問左右曰：“何如？”領事李克培對曰：“希孟請二十萬碩，命許十五萬碩，果多矣。然人民皆已知之，咸仰上德，今若聞又減其數，則必缺望矣。且賑恤使亦當斟酌，必不妄費矣。”上曰：“然。”子平又啓曰：“臣聞平安道觀察使申澐啓以得橡實二十萬碩。臣等以謂‘平安一道之民，盡令拾之，不得如是之多矣，’況以數少人吏，其能至此乎？是必欺罔也。”上曰：“申澐果有此啓，然何以知其非實也？”子平曰：“克培必知之矣。今若下問，則可</p>

	<p>드시 함부로 허비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p> <p>하였다. 강자평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신정(申靜)이 도토리[橡實] 20만 석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합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평안도 전도의 백성들이 모두 다 <도토리를> 줍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많지를 못할 것인데, 더구나 소수(少數)의 관리들로서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기망(欺罔)하는 것일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정이 과연 이러한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을 아는가?”</p> <p>하자, 강자평이 말하기를, “이극배가 반드시 알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문(下問)하면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p> <p>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신이 또한 신정의 이번 보고를 보았습니다. 신정이 말한 것이 비록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만일 백성들에게 굶주림이 없게 하였다면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도토리를 이제 이미 사용하였으니, 상고하려 하여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이 왕명(王命)을 받들어 한 도의 주인이 되었는데, 어찌 갑자기 추국하게 하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정이 보고한 도토리가 20만 석이나 된다는 것은 과연 의심할 만하다. 그래서 대간(臺諫)의 말한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 <도토리를> 사용하였으니, 그 사실을 조사하기라 매우 어렵겠다.”</p>	<p>知。” 克培啓曰：“臣亦見靜此啓。 靜言雖不實， 若能使人無飢， 則可也。 況其橡實， 今已用之， 考之無據。 且大臣承命爲一道之主， 豈可遽令鞠之也?” 上曰：“申靜所啓， 多至二十萬碩， 果可疑也。 臺諫言之宜矣。 然今已用， 則覈之且難。” 子平曰：“臣等聞其言太過， 故以爲要功， 而奸詐也。” 上曰：“申靜既曰：‘可使民無飢。’ 又賑恤使已下去。 果能使吾民無餓死者， 則可矣。”</p>
--	---	--

	<p>하자, 강자평이 말하기를 “신 등은 그의 말이 너무 지나친 것을 듣고 공(功)을 요하여 간사(奸詐)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정이 이미 말하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였 고, 또 진휼사가 이미 내려갔다. 그러니 과연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 는 자가 없게 한다면 가할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140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4월 5일 (계묘) 3번째기사</p>	<p>경기 진휼사(京畿賑恤使) 권감(權臧)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산간 고을[山郡]을 순회하여 살펴보니, 곡식을 저축한 집도 더러 있어 서, 먹기 어려움이 해변(海邊)의 군읍(郡邑)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 다. 그리고 지금은 비가 온 뒤라서 소채(蔬菜)가 돋아나 또한 요기(療飢)를 할 만합니다. 그러나 관찰사의 임기(任期)가 장차 다 되어서 체임(遞任)하게 되 면, 구황(救荒)하는 일이 간혹 소루(疏漏)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새 감사(監司) 는 구감사(舊監司)처럼 자세한 실정을 알지 못할 것이니, 양맥(兩麥)이 성숙 (成熟)할 때까지 체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도내(道內)의 양 맥이 무성하게 잘된 것이 근래에 없었던 바입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양맥이 무성하다는 것을 들으니, 내 마음이 매우 기쁘다. 감사는 아직 체임 (遞任)하지 말라.” 하였다.</p>	<p>○京畿賑恤使權臧來啓曰：“臣巡見山 郡，或有儲粟之戶，其艱食不至如海邊 郡邑。且今雨後，蔬菜發生，亦足療 飢。然觀察使瓜期將逼，見遞則救荒 之事，恐或疏虞。新監司恐不如舊監 司之悉知也，限兩麥成熟，勿遞何如？ 且道內兩麥茂盛，近來所無。”傳曰： “聞兩麥茂盛，予深喜焉。監司姑勿 遞。”</p>
<p>성종 139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3월 18 일(병술) 1번째기사</p>	<p>경기 진휼사(京畿賑恤使) 권감(權臧)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여러 고을을 순시하여 살펴보니, 백성들의 생활이 굶주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진휼할 적에 사리를 아는 자는 ‘지난 겨울부터 진휼하여 줌에 힘입어 목숨을 부지하여 이에 이르렀으니, 임금의 은혜를 어떻 게 헤아리겠습니까?’ 하였으며, 사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쌀과 곡식을 숨겨</p>	<p>○丙戌/京畿賑恤使權臧來啓曰：“臣巡 審諸邑，民生不至飢餓。但賑恤時， 識理者則以爲：‘自去冬賴賑恤，連命 至此，上恩何量也。’無知者，則隱匿 米穀，若將飢死。且山郡，則兩麥稍</p>

	<p>두고는 마치 굶어 죽는 시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골의 고을에는 양맥(兩麥)12014) 이 약간 익어가고 있었으나 바닷가에는 양맥이 한참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농사에 힘쓸 때를 당하여 두 시기로 나누어 공궤(供饋)를 하여 줌이 좋을 듯한데, 인구를 헤아려서 곡식을 주려 하니 반 이상이 부족(不足)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일시에 공급하여 주었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p>	<p>稔，海邊則兩麥尤稔。今當力農之時，似可兩時供饋，然計人口，而量穀數，則過半不足，故臣以一時給之。”傳曰：“知道。”</p>
<p>성종 140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4월 27일(을축) 2번째기사</p>	<p>경기 진휼사(京畿賑恤使) 권감(權臧)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비가 고르고 풍족하게 와서 양맥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교동(喬桐)·강화(江華)·김포(金浦)·통진(通津)·양천(陽川) 등의 고을은 벼[稻種]가 부족하니, 2천 석쯤 옮겨다가 주게 되면 거의 다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監司)가 〈그들에게〉 식량을 넉넉하게 주어서 그것으로 종자(種子)에 보태게 하려고 하였으나, 품지(稟旨)를 받지 못하여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양맥(兩麥)이 비록 무성하다고 하나, 어찌 그 유종(有終)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京畿賑恤使權臧來復命，仍啓曰：“今年雨澤周足，兩麥茂盛。但喬桐、江華、金浦、通津、陽川等邑，則稻種不足，移轉二千碩以給之，則庶幾畢種矣。且監司欲優給口食，以資其種，然未取旨，故未敢也。”傳曰：“兩麥雖云茂盛，安保其終?”</p>
<p>성종 139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3월 25일(계사) 2번째기사</p>	<p>(...) 김여석이 다시 아뢰기를, “진휼사가 떠난 것이 오래 되었으니, 백성들이 이미 성상의 백성을 근심하는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도록 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휼사들은 반드시 ‘우리가 가는 것은 간솔(簡率)하여 폐단된 것이 없을 것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가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驛)에서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礪石又啓曰：“賑恤使之行久矣，民皆已知聖上憂民之意。命還爲便。賑恤使則必曰：‘吾行簡也，無復有弊。’然其所經諸邑、諸驛，豈不有弊乎?”上曰：“前日京畿賑恤使馳啓云：‘限四月二十日間賑恤，則民庶幾免死矣。’姑令勿還可也。”仍問左右。</p>

	<p>“전일에 경기 진휼사(京畿賑恤使)가 치계(馳啓)하기를, ‘4월 20일까지를 시한(時限)으로 하여 진휼을 하면 백성들이 거의 굶어죽는 것은 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니 아직은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고, 이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p> <p>“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p> <p>하고, 동지사(同知事) 이파(李坡)는 말하기를,</p> <p>“지금 이미 떠났으니, 아직 돌아오지 않게 함이 좋겠습니다.”</p> <p>하고, 강귀손(姜龜孫)은 말하기를,</p> <p>“진휼사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에 관찰사들이 흉년 구제하는 일을 돌보지 아니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진휼사가 있기 때문에 관찰사가 창고의 것을 마음대로 꺼내지 못한다.”</p> <p>하였다. 강귀손이 말하기를,</p> <p>“신 등이 들으니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신정(申澍)이 도토리[橡實] 20만 석을 얻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것으로써 흉년을 구제할 수 있겠으니, 진휼사를 따로 보내지 말고 전적으로 신정에게 흉년 구제하는 일을 맡기도록 하소서.”</p> <p>하고, 홍응은 말하기를,</p> <p>“금년이 비록 흉년이지마는 양맥(兩麥)이 익게 되고 들나물도 먹을 만하니, 국가에게 주는 곡식으로 백성들을 진휼하는 것은 관찰사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진휼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듣기에는 양맥이 잘 되었다 한다. 그러나 금년은 철이 늦으니 아마 5월 그믐께나 되어야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돌아오지 말</p>	<p>領事洪應對曰：“臺諫言是也。” 同知事李坡曰：“今既往矣， 姑勿還爲便。” 龜孫曰：“賑恤使委去， 故觀察使不顧救荒之事。” 上曰：“有賑恤使， 故觀察使不得發倉矣。” 龜孫曰：“臣等聞平安道觀察使申澍， 以得橡實二十萬石啓聞。 若然， 則此可以救荒矣， 請勿遣賑恤使， 而專委救荒之責於申澍。” 洪應曰：“今年雖險， 兩麥將熟， 野菜亦可食， 以國家所給之粟， 賑貸其民， 觀察使亦足爲也。 賑恤使可還。” 上曰：“予聞兩麥之好。 然今年節晚， (相) [想] 必五月晦， 時可得食。 姑宜勿還。” 龜孫又啓曰：“有韓存義者， 朝衣而出， 暮脫而還， 日日如是， 其父母患之， 追蹤而見， 乃爲雙不所(賭) [睹] 也。” 本府聞之， 捕其黨鞫之， 則幾四十餘人。 律曰：‘只舉見贓者，’ 然臣等聞世宗朝， 如此之人， 皆流放痛禁之， 請依祖宗朝痛懲。” 上問左右。 洪應對曰：“如此風俗， 果可懲也。 然須畢鞫其黨， 則所傷必多， 依律施行爲便。” 上曰：“今已服者幾人？” 龜孫曰：“十四人也。” 上曰：“然則只罪此人等可也。” 雙不云者， 方言也， 其術</p>
--	---	--

	<p>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강귀손이 또 아뢰기를, “한존의(韓存義)라는 자가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벗고 돌아오는데, 날마다 그러하기에 그의 부모가 근심하여서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쌍불(雙不)12027) 도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이를 듣고 그 무리들을 잡아다가 추국을 하였는데 거의 40여 인이나 됩니다. 율문에는 ‘다만 장물(贓物)이 드러난 것만 거론한다.’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신 등이 듣건대, 세종조에 이와 같은 사람은 모두 유방(流放)12028) 시켜 엄하게 금지하였다 하니, 조종조(祖宗朝)에 의거하여 엄히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풍속은 과연 징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을 다 추국하면 상하게 되는 이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율문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이미 죄를 자복한 자가 몇 사람이 되느냐?” 하니, 강귀손이 말하기를, “14인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만 이 사람들만 죄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쌍불이란 것은 방언(方言)인데 그 놀이 방법이 장구(藏鬪)와 비슷하다.</p>	<p>類藏鬪。</p>
<p>성종 140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4월 1일 (기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성균관(成均館) 관원(官員)을 불러서 강서(講書)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극배(李克培)·달성군(達城君)서거정(徐居正)·호조 판서(戶曹判書) 허중(許琮)·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가 입시(入侍)하였다. 임금</p>	<p>○朔己亥/上御宣政殿, 召成均館員講書。左議政尹弼商、右議政洪應、領中樞府事李克培、達城君徐居正、戶曹判書許琮、禮曹判書李坡入侍。上</p>

	<p>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양맥(兩麥)12036) 이 무성하다 하는데, 여러 도(道)도 같은가?” 하니,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신이 북경(北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평안도와 황해도 등의 도에 양맥(兩麥)이 무성함이 예전에 〈일찍이〉 없었던 바입니다.” 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금년에 비가 때를 따라 알맞게 내렸으니, 벼도 반드시 무성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를 어찌 미리 예측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금년 봄에 비가 고르고 풍족하게 내렸으니, 가을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시속(時俗)에 ‘봄에 비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봄에는 비가 지나치게 내린 것은 아니다.” 하였다.</p>	<p>曰：“予聞兩麥茂盛，諸道同乎？”弼商對曰：“臣赴京而還，見平安、黃海等道，兩麥之盛，古所未有。”克培曰：“今年雨澤順時，禾穀必茂。”上曰：“農事安可預期乎？”洪應曰：“今春雨澤周足，至秋如是，則甚好矣。俗云：‘春不貴多雨。’”上曰：“今春不至過雨也。”</p>
<p>성종 140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4월 1일 (기해) 3번째기사</p>	<p>야대(夜對)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경연관(經筵官)에게 승정원(承政院)에 머물라고 명하고,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전일에는 야대(夜對)한 뒤에 혹 담론(談論)하기도 하고, 혹은 음식 대접을 하기도 하였는데, 근래에는 하지 못하였다. 오늘은 마침 비도 오고 하여 술을 내리겠으니, 마시도록 하라. 그대들을 귀히 여겨서가 아니고, 성현(聖賢)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이다. 또 술을 마실 때에는 한갓 술만 마실 수는 없으니, 승지(承旨)와 주서(注書)·사관(史官) 등과 더불어 각기 시를 지어 올리라.” 하고, 어필(御筆)로, “춘소사주율시(春宵賜酒律詩). ‘지(墀)’ 자(字)를 운(韻)으로 한다.”</p>	<p>○御夜對。講罷，命經筵官留承政院，傳曰：“予前日夜對後，或談論，或饋餉，近來則不爾。今日適雨，乃賜酒，其飲之。非貴爾等，乃貴學聖賢道理也。且飲酒之時，不可徒飲，與承旨、注書、史官等，各製詩以進。”御書：“春宵賜酒律詩墀字爲韻。”仍傳曰：“經筵官夜對來往，有炬火乎？”侍讀官李昌臣等啓曰：“無矣。”傳曰：“自今其給炬。”又傳曰：“經筵官必以</p>

	<p>라고 썼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경연관이 야대(夜對)에 내왕(來往)할 때, 거화(炬火)12037) 가 있는가?”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창신(李昌臣) 등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거화(炬火)를 주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연관이 반드시 내일의 진강(進講) 때문에 취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마땅히 다른 관원으로 하여금 진강(進講)하게 할 것이니, 모두 취(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明日進講之故，惡醉而不飲。 明日當令他員進講，盡醉爲可。”</p>
<p>성종 140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4월 5일 (계묘) 3번째기사</p>	<p>경기 진휼사(京畿賑恤使) 권감(權臧)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산간 고을[山郡]을 순회하여 살펴보니, 곡식을 저축한 집도 더러 있어서, 먹기 어려움이 해변(海邊)의 군읍(郡邑)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가 온 뒤라서 소채(蔬菜)가 돋아나 또한 요기(療飢)를 할 만합니다. 그러나 관찰사의 임기(任期)가 장차 다 되어서 체임(遞任)하게 되면, 구황(救荒)하는 일이 간혹 소루(疏漏)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새 감사(監司)는 구감사(舊監司)처럼 자세한 실정을 알지 못할 것이니, 양맥(兩麥)이 성숙(成熟)할 때까지 체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도내(道內)의 양맥이 무성하게 잘된 것이 근래에 없었던 바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양맥이 무성하다는 것을 들으니, 내 마음이 매우 기쁘다. 감사는 아직 체임(遞任)하지 말라.” 하였다.</p>	<p>○京畿賑恤使權臧來啓曰：“臣巡見山郡，或有儲粟之戶，其艱食不至如海邊郡邑。 且今雨後，蔬菜發生，亦足療飢。 然觀察使瓜期將逼，見遞則救荒之事，恐或疏虞。 新監司恐不如舊監司之悉知也，限兩麥成熟，勿遞何如？ 且道內兩麥茂盛，近來所無。” 傳曰：“聞兩麥茂盛，予深喜焉。 監司姑勿遞。”</p>
<p>성종 140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p>	<p>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조위(曹偉)가 아뢰기를, “《육지주의(陸贄奏議)》를 국가에서 이미 간행(刊行)하게 하였는데, 치란(治</p>	

<p>(成化) 18년) 4월 10 일(무신) 9번째기사</p>	<p>亂)과 흥망(興亡)의 자취가 갖추어 기재되어 있어서, 한때의 주의(奏議)일 뿐만 아니라, 후세의 인군(人君)이 마땅히 보아야 할 글이니, 모름지기 주장(晝講)과 석강(夕講)에서 진강(進講)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책은 과연 볼 만하나, 지금 보는 책이 많으니, 뒤에 마땅히 진강(進講)하게 하겠다.”</p> <p>하였다. 조위가 또 아뢰기를, “조여우(趙如愚)가 편찬한 송(宋)조(朝)의 제신(諸臣)의 주의(奏議)도 또한 정치(政治)의 도(道)를 극언(極言)한 것이므로, 역시 볼만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보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보아야 하겠다.”</p> <p>하였다. 위가 아뢰기를, “신이 근친(覲親)하기 위하여 경상도에 갔다가 보니, 본도(本道)는 비록 전혀 실농(失農)하지는 않았으나, 저축한 것이 거의 없어서 기아(飢餓)의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상도는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야채(野菜)가 바야흐로 났으니, 거의 이것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p>	<p>----- ----- ----- -----</p> <p>○御夜對。侍讀官曹偉啓曰：“《陸贄奏議》，國家已令刊行，治亂興亡之迹備載，非徒奏議於一時，後世人主，所當觀覽也，須於晝、夕講進講。”上曰：“其書果可覽也，但今所見書多，後當講之。”偉又啓曰：“趙如愚所撰宋朝諸臣奏議，亦極言爲治之道，亦可覽也。”上曰：“予曾不見耳，當見之。”偉曰：“臣因覲親歸慶尙道，見本道雖非全失農，所儲幾乏，恐有飢餓之弊。”上曰：“慶尙道非他道比。今且野菜方生，庶幾資活。”</p>
<p>성종 140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4월 13</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승원(李崇元)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감사(監司)의 임무(任務)는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일이 큰 것이니, 경(卿)은</p>	<p>○平安道觀察使李崇元辭，上御宣政殿引見曰：“監司之任，恤民爲大，卿其盡心救荒。”崇元啓曰：“臣亦以此爲</p>

<p>일(신해) 2번째기사</p>	<p>구황(救荒)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이승원이 아뢰기를, “신도 또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이제는 산과 들에 소채(蔬菜)가 이미 나고 양맥(兩麥)도 장차 익게 되어서 비록 살아갈 방도가 있기는 하나, 지난해에 기근이 너무 심하였으니, 경은 마땅히 백성을 구제하는 데 유의(留意)해야 할 것이다.” 하자, 승원이 아뢰기를, “본도(本道)는 양맥(兩麥)이 비록 타도(他道)만은 못하나, 지난해보다는 나으며, 내달 보름이면 거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대전(大典)》 안에는 ‘공신(功臣)과 의친(議親)12075) 은 계문(啓聞)하여 처치(處置)하라.’ 하였고, 감사(監司)에게 내린 교서(敎書)에는,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의 처치는 경(卿)에게 맡긴다.’고 하여서 저촉되는 바가 없지 아니하여, 따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교서에 ‘경(卿)의 처치에 맡긴다.’고 하였으면, 마땅히 교서에 따라야 한다. 이것도 또한 조종조(祖宗朝)의 고례(古例)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전 감사(監司)가 아뢰기를, ‘영(營)의 아전(衙前)으로 하여금 도토리[橡實] 20만 석을 준비하게 하여, 흉년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조정에서 모두 거짓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니 경(卿)은 자세히 물어서 계문(啓聞)하라.” 하였다.</p>	<p>念。敢不盡心?” 上曰：“今也山野蔬菜已生，兩麥將熟，雖有生理，然去年飢荒太甚，卿當留意救民。” 崇元曰：“本道兩麥，雖不如他道，猶勝於去年，來月望時，則庶可得食矣。” 右承旨李世佐啓曰：“《大典》內：‘功臣、議親啓聞處置。’ 監司敎書曰：‘通訓以下，任卿處置。’ 不無抵牾，莫適所從。” 上曰：“敎書曰：‘任卿處置’云爾，則當從敎書矣。是亦祖宗朝古例也。” 上又曰：“前監司啓云：‘令營衙，前備橡實二十萬碩，可以救荒矣。’ 朝廷皆疑其詐也，卿其詳問以啓。”</p>
<p>성종 140권, 13년</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禮曹啓曰：“本曹宴日本國使臣，日</p>

<p>(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4월 17 일(을묘) 3번째기사</p>	<p>“본조(本曹)에서 일본국(日本國) 사신을 연회하던 날 후추[胡椒]의 씨를 구해 보낼 것을 말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남만(南蠻)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구국(琉球國)에서 항상 남만에 청(請)하고 본국에서 또 유구국에 청하여, 종자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이 비록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하나, 후추는 일본에서 왔으니, 일본이 유구국에 청하여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청(傳請)하여 보내라는 뜻을 아울러 서계(書契)에 써서 유시(諭示)하라.”</p> <p>하였다.</p>	<p>言胡椒種覓送事， 答云：‘不產於本國， 乃產於南蠻， 故琉球國常請於南蠻， 本國又請於琉球國， 其種似難得之也。’</p> <p>傳曰：“彼雖云不產， 然胡椒自日本來， 則日本可請於琉球國以送。 其以傳請送來之意， 竝錄書契諭之。”</p>
<p>성종 140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4월 26 일(갑자) 4번째기사</p>	<p>경기·평안도·황해도의 진휼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양맥(兩麥)이 장차 익게 되어 구황(救荒)하는 일이 끝났으니 경(卿)은 올라오라.”</p> <p>하였다.</p>	<p>○下書京畿、平安、黃海道賑恤使曰：“兩麥將熟， 救荒事歇， 卿其上來。”</p>
<p>성종 140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4월 27 일(을축) 2번째기사</p>	<p>경기 진휼사(京畿賑恤使) 권감(權臧)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비가 고르고 풍족하게 와서 양맥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교동(喬桐)·강화(江華)·김포(金浦)·통진(通津)·양천(陽川) 등의 고을은 벼[稻種]가 부족하니, 2천 석쯤 옮겨다가 주게 되면 거의 다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監司)가 〈그들에게〉 식량을 넉넉하게 주어서 그것으로 종자(種子)에 보태게 하려고 하였으나, 품지(稟旨)를 받지 못하여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양맥(兩麥)이 비록 무성하다고 하나, 어찌 그 유종(有終)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京畿賑恤使權臧來復命， 仍啓曰：“今年雨澤周足， 兩麥茂盛。 但喬桐、江華、金浦、通津、陽川等邑， 則稻種不足， 移轉二千碩以給之， 則庶幾畢種矣。 且監司欲優給口食， 以資其種， 然未取旨， 故未敢也。” 傳曰：“兩麥雖云茂盛， 安保其終?”</p>
<p>성종 141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p>	<p>전교하기를, “대사헌(大司憲)은 법사(法司)이므로 반드시 술을 마시지 못하였을 것이니, 가</p>	<p>○傳曰：“大司憲以法司， 必不得飲酒矣， 其往參宴。” 大司憲蔡壽， 以朝參</p>

<p>(成化) 18년) 5월 5일 (계유) 3번째기사</p>	<p>서 잔치에 참여하라.” 하였다. 이는 대사헌 채수(蔡壽)가 조참(朝參)차 왔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또 덕원군(德源君)이서(李曙)·오산군(烏山君)이주(李澍)·정양군(定陽君)이순(李淳)도 또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명하고, 내관(內官) 조진(曹疹)을 보내어 선운(宣醞)을 하사(下賜)하면서 ‘단오(端午)에 후원(後苑)에서 사후(射侯)한다.’는 사운시(四韻詩)를 어서(御書)하고 전교하기를, “비록 문신(文臣)이 아니더라도 시(詩)를 지어 올려라.” 하였다. 술을 반도 마시지 못하여 비바람으로 인하여 파(罷)하고 돌아왔는데, 이긴 편에 유둔(油苴) 각각 1장(張)씩을 하사하였다.</p>	<p>來，故有是命。 又命德源君曙、烏山君澍、定陽君淳亦參宴， 命內官曹疹，賜宣醞、御書：‘端午後苑射侯’ 四韻詩， 傳曰：“雖非文臣， 亦可製進。” 酒未半， 因風雨罷歸， 賜勝耦油苴各一張。</p>
<p>성종 141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5월 8일 (병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강귀손(姜龜孫)·사간(司諫)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신(臣) 등이 한치례(韓致禮) 및 이효백(李孝伯)을 추국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니, 실망[缺望]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효백의 일은 대체(大體)에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신종군(新宗君)은 특히 잘못 생각해서 망령된 짓을 한 것이지, 무군(無君)12173)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 비록 국문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죄주겠는가? 한치례도 또한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다시 묻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강귀손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강귀손이 또 아뢰기를, “요즘음 비[雨澤]가 내리지 아니하여 조금 가문 기운이 있으니, 병 술[瓶酒]</p>	<p>○御經筵。 講訖， 執義姜龜孫、司諫金礪石啓曰：“臣等請鞫韓致禮及孝伯， 未蒙允俞， 不勝缺望。” 上問左右。 領事鄭昌孫對曰：“臺諫之言是矣。 然孝伯之事， 不關大體。” 上曰：“新宗君特錯料妄作耳， 非有無君之心而然也， 雖鞫亦何以罪之？ 致禮亦已自服， 更無所問。” 龜孫更請之， 不聽。 龜孫又啓曰：“邇來雨澤不下， 稍有旱氣， 持瓶酒者， 請竝禁之。” 上曰：“瓶酒之禁似猥瑣。 若有救病服藥者， 則禁之未便。” 龜孫曰：“或稱射侯， 或稱服藥， 則雖致百瓶， 禁之爲難。” 上曰：“然則限兩麥成熟禁之。”</p>

	<p>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모두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병 술을 금한다는 것은 외쇄(猥瑣)한 듯하다. 만약 병구완(病救援)에 약으로 먹는 자가 있으면, 이를 금하는 것이 마땅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강귀손이 말하기를, “혹 사후(射侯)를 일컫거나, 혹 복약(服藥)을 일컫는다면, 비록 백병(百瓶)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그렇다면 양맥(兩麥)이 성숙(成熟)할 때까지를 한정하여 이를 금하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141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5월 12 일(경진) 3번째기사</p>	<p>일본(日本) 국왕(國王) 원의정(源義政)의 사승(使僧) 영홍(榮弘)과 이천도(夷千島)주(主) 하차(遐叉)가 보내 온 궁내경(宮內卿)이 하직하였다. 그 일본 국왕에게 답(答)한 글은 이러하였다. “우리 나라는 귀조(貴朝)와 더불어 대대로 신뢰와 화목을 돈독히 하였습니다만 창해(滄海)가 멀리 가로놓여 그리운 생각이 오래도록 간절하였는데, 이제 귀사(貴使)로 인(因)하여 귀체[動履]의 건강하심[佳勝]을 잘 알았으며, 후(厚)한 선물을 받아서 진실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조연(助緣)과 《대장경(大藏經)》은 별폭에 적은 대로 회사(回使)에게 부쳐 보냅니다. 상아부(象牙符)는 본래 두 나라가 서로 징험을 삼아서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니, 어찌 반드시 한두 차례 가지고 온 뒤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사(來使)가 본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두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사신에게 부쳐서 회송(回送)하니, 조량(照亮)하십시오. 호초(胡椒)는 제약(劑藥)에 쓰이는 바인데, 그 종자를 내사를 인하여 부쳐 주셨으므로 다행하게 여깁니다.” 그 별폭(別幅)에는 면주(綿紬) 3백 필(匹), 면포(綿布) 3백 필, 정포(正布) 4백 필, 《대장경(大藏經)》 1부(部),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p>	<p>○日本國王源義政使僧榮弘、夷千島主遐叉所遣宮內卿辭。其答日本國王書曰： 我國與貴朝，世敦信睦，而滄海遼隔，久切企想。今因貴使，備諳動履佳勝，蒙厚賜，良用欣感。所示助緣及《大藏經》，就付回使，具在別幅。象牙符，本爲兩國相驗，以防奸僞耳，何必一二次第齋來，而後可信耶？來使未諳本意，欲置而去，故付使回送，照亮。胡椒劑藥所需，其種幸因來使寄與。 別幅綿紬三百匹、綿布三百匹、正布四百匹、大藏經一部、白細綿紬一十</p>

	<p>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인삼(人蔘) 1백 근(斤), 표피(豹皮) 5장, 호피(虎皮) 5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표피심 호피변 녹비리 좌자(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 1사(事), 남사피(藍斜皮) 10장, 해송자(海松子) 5백 근, 청밀(淸蜜) 29두(斗), 후지(厚紙) 10권(卷), 납촉(蠟燭) 1백 자루[柄], 대요발(大鑿鉢) 1사, 중요발(中鑿鉢) 1사, 법고(法鼓) 1면(面), 유쟁(鑮錚) 1사, 중경(中磬) 1사, 운판(雲板) 1사, 서각(犀角) 1척(隻) 완청(莞靑) 2냥(兩), 백용골(白龍骨) 1근, 하수오(何首烏) 2근, 망사(硯砂) 10냥, 자황(雌黃) 1근, 박초(朴硝) 1근, 양기석(陽起石) 3냥, 노회(蘆薈) 3냥, 석종유(石鍾乳) 5냥, 광명사(光明砂) 10냥, 자연동(自然銅) 1근, 사상자(蛇床子) 1근, 온늘제(膾肭臍) 3부, 정력(葶藶) 2근, 산자고(山茨菰) 1근, 우황(牛黃) 3부(部), 패구(敗龜) 4부, 택사(澤瀉) 2근, 백선피(白鮮皮) 2근이었다.</p> <p>이천도(夷千島)주(主)에게 답하는 글은 이러하였다.</p> <p>“이제 혜서(惠書)를 받고 보이신 뜻을 잘 알았으며, 보내 준 예물(禮物)도 삼가 아뢰고 수납(收納)하였습니다. 이에 토산품으로 면포(綿布) 3필, 정포(正布) 4필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보냅니다. 말한 바 《대장경(大藏經)》은 일본(日本) 국왕(國王)이 사신을 보내서 구하여 갔고, 또 여러 주장(酋長)들이 구하여 감으로 인하여 거의 다 되고 남은 것이 없어서, 부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족하(足下)가 사는 이천도와 섬의 있고 없음을 전부터 들은 바가 없고, 내사(來使)의 말도 또한 착란(錯亂)해서 진위(眞僞)에 대한 의심이 없지 아니합니다.”</p>	<p>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一十匹、人蔘一百斤、豹皮五張、虎皮五張、雜彩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一事、藍斜皮一十張、海松子五百斤、淸蜜二十斗、厚紙一十卷、蠟燭一百柄、大鑿鉢一事、中鑿鉢一事、法鼓一面、鑮錚一事、中磬一事、雲板一事、犀角一隻、莞靑二兩、白龍骨一斤、何首烏二斤、硯砂一十兩、雌黃一斤、朴硝一斤、陽起石三兩、蘆薈三兩、石鍾乳五兩、光明砂一十兩、自然銅一斤、蛇床子一斤、膾肭臍三部、葶藶二斤、山茨菰一斤、牛黃三部、敗龜四部、澤瀉二斤、白鮮皮二斤。 其答夷千島主書曰：</p> <p>今承惠書，備審示意，所獻禮物，謹啓收納。 仍將土宜綿布三匹、正布四匹，就付還使。 所示《大藏經》，則日本國王遣使求請，又因諸酋求去，殆盡無餘，未得從諭。 且足下居夷千島及島之有無，前所未聞，而來使之言，亦且錯亂，眞與僞不無可疑。</p>
<p>성종 141권, 13년</p>	<p>승정원(承政院) 및 입직(入直)한 경연관(經筵官)에게 선은(宣醞)을 하사(下賜)</p>	<p>○賜宣醞于承政院及入直經筵官，且令</p>

<p>(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5월 17 일(을유) 3번째기사</p>	<p>하고, 또 시(詩)를 지어 올리게 하였는데, <글제가> 희우(喜雨)이었다.</p>	<p>製詩以進, 喜雨也.</p>
<p>성종 142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6월 3일 (경자) 2번째기사</p>	<p>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조석보(曹碩輔)와 예조 좌랑(禮曹佐郎) 김수동(金壽童)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이제 양맥(兩麥)이 이미 익었고, 우택(雨澤)이 또한 족한데, 어선(御膳)을 줄여서 다만 일곱 그릇만 올리게 하니, 신(臣) 등은 마음에 편치 못합니다. 청컨대 복선(復膳)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반찬은 많은 데에 있지 않고, 입에 맞으면 그만이다. 또 외방(外方)의 우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議政府舍人曹碩輔、禮曹佐郎金壽童、將堂上議來啓曰：“今兩麥已熟，雨澤亦足，而減省御膳，只進七器，臣等未安於心。請復膳。”傳曰：“膳不在多，適口而已。且外方雨澤，時未的知。”不聽。</p>
<p>성종 142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6월 22 일(기미) 1번째기사</p>	<p>병조(兵曹)에서 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마가롱개(馬加弄介)와 유상동개(柳尙同介) 등이 전일 허수라(虛水羅) 등지(等地)에 가서 동산(童山) 등이 포주(蒲州)로 되들어간 사실을 탐지(探知)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보다 앞서의 하유(下諭)에, ‘성(城)밑의 야인(野人)을 능히 되돌아가서 불러들여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장차 중상(重賞)을 가(加)할 것이고, 비록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만약 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면 왕래(往來)한 수고를 또한 마땅히 포상(褒賞)하겠다.’고 이르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만약 상(賞)을 논하지 아니하면 권려(勸勵)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감사(監司) 등으로 하여금 염장(鹽醬)과 면포(綿布)를 요량해서 상을 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동산 등이 스스로 죄가 중함을 알고 깊이 들어가서 돌아오지 아니할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이것도 감사 등으로 하여금 여러 방면으로 조치(措置)하여 속히 쇄환(刷還)하게 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 등이 의</p>	<p>○己未/兵曹據永安北道節度使啓本啓：“馬加弄介、柳尙同介等，前往虛水羅等處，探知童山等蒲州入歸事而還。前此下諭有云：‘城底野人，有能入歸招率而來，則將加重賞，雖不能招來，若的知去接處，則往來之勞，亦當褒賞。’今若不論賞，無以勸勵，請令監司等，量給鹽醬、綿布以賞之。且童山等，自知罪重，深入不還，爲可慮也。亦令監司等，多般措置，斯速刷還。”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等議：“依兵曹所啓。”從之。遂下諭觀察使鄭文燭、節度使朴星孫曰：“今見卿啓，知卿遣柳尙同介、馬加弄介，探</p>

	<p>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뢰 바에 의거(依據)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마침내 관찰사(觀察使) 정문형(鄭文炯)과 절도사(節度使) 박성손(朴星孫)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경(卿)의 장계(狀啓)를 보고, 경이 유상동개·마가룽개를 보내어 동산 등이 오거개(吾車介)·동모지리(童毛知里)·동포당개(童蒲堂介)·구유음파(具由音波) 등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 기탁하여 살고 있음을 탐문한 사실을 알았다. 내가 생각해 보니, 저 사람들은 성질이 본래 이(利)를 탐내므로, 후하게 상(賞)을 주는 데에는 죽음도 피할 줄을 모르는데, 만약 쇠환할 형세가 있다고 하면 유상동개 등이 어찌 원수진 것을 핑계대겠는가? 이제 비록 다시 〈그들로 하여금〉 불러서 데리고 오게 한다 하더라도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수고스럽기만 하며 유익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경(卿) 등이 함께 회령(會寧)·종성(鍾城) 등지에 가서 성 밑에 사는 약인의 우두머리 되는 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부령(富寧)·청암(靑巖)에서 동산(童山) 등을 거점시킨 원계(元係)12319 들은 비록 향화인(向化人)12320 이라 하더라도 투항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 되어서 우리 양인(良人)과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시집가고 하여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 우리 나라의 편氓(編氓)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나라 인민(人民)을 모두 이끌고 전후(前後)로 도망간 자가 60여 인이나 된다. 그래서 조정(朝廷)에서 장차 군사를 일으켜 쇠환시키고자 하는데, 너희 무리들을 경요(驚擾)12321) 하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監司)와 절도사에게 특별히 명하여 불러 모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무리가 오거개 등을 불러 거느리고 올 수 있다면 나라에서 장차 너희들에게 중한 상(賞)을 주고 오거개 등도 두터운 상을 더할 것이며, 이어 요구하는 면포(綿布) 등의 물품도 주어 보낼 것이다. 그들이 만약 되들어가서 오거개를 불러 데리고 오게 되면 후(厚)하게 접대(接待)를 더하고 면포를 많이 주겠다.’ 하고, 이어 오거개 등에</p>	<p>問童山等寄接於吾車介、童毛知里、童蒲堂介、具由音波等所居里中事。予惟彼人等，性本貪利，重賞之下，死不知避，若有刷還之勢，則柳尙同介等，豈以讎嫌托辭哉？今雖更令招率以來，事必無成，而徒勞無益矣。卿等偕到會寧、鍾城等處，招城底野人爲首者，謂之曰：‘富寧、靑巖接童山等元係，雖是向化，投來已久，與吾良人，男婚女嫁，生育子枝，爲吾編氓，今者竝率我國人民前後逃往者六十餘人。朝廷將欲學師刷還，恐驚擾汝輩，故特命我監司、節度使，召募汝輩。有能與吾車介等招率以來，則國家將重賞汝等，吾車介等亦加厚賞，仍給所求綿布等物以送。彼若入歸，招率吾車介以來，則厚加接待，多給綿布。’仍語吾車介等曰：‘汝等居國近境，自汝祖父，誠心效順，厚蒙賞賜，上恩至重。我人逃去者，義當隨卽刷還，而便爲容匿之計，爲逋逃主，汝等不得辭其責矣。然其逃去者，本非汝等招諭，我今不以深責也。若能刷還，則自有重賞，如或不爾，汝罪益深矣。且童山等世受國恩，一朝背恩逃去，罪固重矣。然</p>
--	--	--

	<p>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라의 가까운 지경에 살고 있으면서 너의 조부(祖父)로부터 성심(誠心)으로 따랐으므로, 상사(賞賜)를 후하게 받아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 도망해 간 자를 의리로써 마땅히 즉시 쇠환시켜야 할 터인데, 도리어 숨겨주기를 도모하여 도망한 자의 주인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그 책임을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도망해 간 자는 본래 너희들이 초유(招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하게 깊이 꾸짖지는 않겠다. 만약 능히 쇠환시키게 되면 자연히 중한 상(賞)이 있을 것이지 마는, 만일 혹 그렇지 못하면 너희 죄는 더욱 중할 것이다. 또 동산(童山) 등은 대대로 국은(國恩)을 받았는데도 하루 아침에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해 갔으니, 죄가 진실로 무겁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 땅에 오래 살면서 안심(安心)하고 생업을 즐겼는데, 처음부터 어찌 도망할 마음이 있었겠느냐? 반드시 기한(飢寒)에 휩박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뉘우쳐서 서로 이끌고 되돌아오면 국가에서 특별히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구업(舊業)을 회복시켜 주고 대우하기를 처음과 같이 할 것이다. 너희들은 함께 이 뜻을 동산 등에게 가서 타일러 이들로 하여금 본래대로 되돌아오게 하면, 국가에서 더욱 너희들의 효성(孝誠)을 알 것이다.’라고 하라. 경이 이 뜻을 가지고 타일러서 은혜와 위엄을 열어 보이고, 사기(事機)에 합당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彼久居我土，安心樂業，初豈有逃竄之心哉？必迫於飢寒，不能自存故耳。若自悔悟，相率以還，則國家非特賞罪，將復其舊業，待之如初。汝等俱以此意，往諭童山等，使之還本，則國家益知汝等效誠矣。’ 卿將此意以諭之，開示恩威，務合事機。”</p>
<p>성종 142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6월 23일(경신) 4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의령현(宜寧縣)의 사람 이임종(李林宗)은 그 아버가 미친병[狂疾]을 얻어 매우 위태로왔는데, 이임종이 그 대변을 맞보아서 그 차극(差劇)을 징험하고 12329) 또 손가락을 끊어서 죽(粥)에 타서 드렸으며, 그 아버가 죽게 되자 이임종이 묘(墓) 곁에 여막[廬]을 짓고 슬퍼함이 매우 지극했으니, 그 효행</p>	<p>○禮曹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宜寧縣人李林宗，其父得狂疾甚危，林宗嘗其糞，以驗其差劇，又斷手指，和粥以進，及其父死，林宗廬于墓側，哀毀甚至，其孝行，足勵風俗。請依《大典》旌門復戶。”從之。</p>

	(孝行)은 족히 풍속을 장려할 만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정문(旌門) 복호(復戶)12330)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142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6월 30일(정묘) 1번째기사	호조 판서(戶曹判書) 허종(許琮)이 와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가뭄이 심한데, 경기(京畿)와 황해도(黃海道)가 더욱 심합니다. 지난 봄의 진휼(賑恤)로 창고(倉庫)가 장차 비겠으니, 청컨대 제초(除草)를 한 뒤 농사의 틈을 타서 전라도(全羅道)의 곡식 20여만 석을 미리 실어다 구황(救荒)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丁卯/戶曹判書許琮來啓曰：“今年旱甚，京畿、黃海道尤甚。去春賑恤，倉庫將匱，請於除草後農隙，預輸全羅道穀二十餘萬碩，以備救荒。”傳曰：“議節目以啓。”
성종 143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1일(무진) 5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서울과 경기(京畿)·황해도를 구황(救荒)할 적에 경창(京倉)의 미멸(米憵)12369) 을 이미 나누어 준 것이 20여만 석이고, 남은 것은 다만 40여만 석뿐이며, 경기와 황해도의 군자 별창(軍資別倉)에 있는 곡식도 많지 아니합니다. 두 도의 해변(海邊) 여러 고을들은 금년에 한재가 더욱 심하니, 만약 또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구휼하자면 미멸(米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청컨대 전라도의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의 쌀 21만 5척 석을 조운(漕運)하여 경창(京倉)과 황해도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들어서 흉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啓：“京城及京畿、黃海道救荒時，京倉米憵，已分給者二十餘萬碩，所餘只四十餘萬碩。京畿、黃海道軍資別倉留穀，亦不多。而兩道海邊諸邑，今年旱災尤甚，如又飢饉，不得已賑救則，米憵何從而得？請以全羅道諸邑軍資倉米二十一萬五千碩漕運，分入京倉及黃海道諸邑，以備荒。”從之。
성종 143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18일(을유) 1번째기사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아뢰기를, “어반미(御飯米)가 본래 수량이 적은데, 지금 또 이를 감하였으니, 신자(臣子)의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청컨대 이를 감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몸을 닦고 마음을 살펴서 하지 않는 바가 없는데도 비가 내	○乙酉/上黨府院君韓明澮來啓曰：“御飯米本數少，而今又減之，於臣子之心，甚爲未安。請勿減。”傳曰：“今方修省，無所不爲，而猶不雨，予更無所事，故減之耳。且雖多何益？適於

	리지 않으니, 내가 다시 할 바가 없어서 이를 줄이는 것이다. 비록 많더라도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입에 맞으면 될 뿐이다.” 하였다.	口而已。”
성종 143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7월 29 일(병신) 3번째기사	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나아가 삼전(三殿)에 문안하였다. 명하여 수가(隨駕)한 채추(宰樞)와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의 관원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上詣景福宮，問安于三殿。命饋隨駕宰樞及承政院、弘文館。
성종 144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8월 6일 (임인) 4번째기사	승지(承旨)·주서(注書)·사관(史官)들에게 명령하여 가을 장마[秋霖]에 대한 율시(律詩)를 지어서 올리게 하고, 이어서 술을 하사하였다.	○命承旨、注書、史官，製秋霖律詩以進，仍賜酒。
성종 144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8월 19 일(을묘) 1번째기사	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나아가서 삼대비전(三大妃殿)에 문안하였다. 어가(御駕)를 따라온 종친·재상과 승지(承旨)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乙卯/上詣景福宮，問安于三大妃殿。命饋隨駕宗宰及承旨。
성종 144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8월 24 일(경신) 4번째기사	호조 겸판서(戶曹兼判書) 이극배(李克培)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은 가을 추수를 할 때이니, 비록 자기 집의 곡식이 없더라도 빌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과 봄이 되면 경창(京倉)의 곡식을 내어 진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창의 곡식은 50만 석에 지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겨울과 봄에 굶어 죽게 될 때에 진휼하여 구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백성이 굶주린다고 와서 아뢰는데, 어찌 차마 앉아서 그들의 굶주림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겠느냐? 속히 헤아려서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戶曹兼判書李克培來啓曰：“今當秋成，雖無自家之穀，猶可丐食。至於冬、春，不可不發倉賑之。且京倉之穀，不過五十萬碩。以臣之計，冬、春飢死之時，賑救可也。”傳曰：“以民飢來啓，安忍坐視其飢餓，而不之救乎？其速量給。”
성종 144권, 13년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이 와서 아뢰기를,	○領議政鄭昌孫等來啓曰：“御飯米減

<p>(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8월 24 일(경신) 5번째기사</p>	<p>“수라[御飯]의 쌀을 1되 5홉으로 줄인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적습니다. 아무리 감선(減膳)한다하여도 어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2되의 쌀인데 내가 어찌 다 먹겠느냐?” 하였으나, 정창손 등이 다시 청하자, 전교하기를, “가(可)하다. 예전대로 하라.” 하였다.</p>	<p>至一升五合過小。雖曰減膳，豈宜如此?” 傳曰：“雖二升，予豈盡食乎?” 昌孫等更請之，傳曰：“可。仍舊。”</p>
<p>성종 145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윤8월 1 일(정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행하고, 또 연은전(延恩殿)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세 대비전(大妃殿)에 문안(問安)하였다. 그리고 수가(隨駕)한 종재(宗宰)12591)와 여러 장수(將帥)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고, 풍악을 내려 주었다.</p>	<p>○朔丁卯/上詣文昭殿，行朔祭，又詣延恩殿，行祭，仍問安于三大妃殿。命饋隨駕宗宰及諸將賜樂。</p>
<p>성종 145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윤8월 2 일(무진) 2번째기사</p>	<p>성절사(聖節使) 한한(韓僞)이 와서 아뢰기를, “한씨(韓氏)의 처소(處所)에 음식물(飲食物)을 보내지 않는 것을 정동(鄭同)이 만약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우니, 진헌(進獻)하는 것 외에 여분(餘分)의 수효를 싸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 (…)</p>	<p>聖節使韓僞來啓曰：“韓氏處不送食物，鄭同若問，答之爲難，進獻餘數，齎去何如?” 傳曰：“其議諸領敦寧以上。” (…)</p>
<p>성종 145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윤8월 14일(경진) 3번째기사</p>	<p>구변국(久邊國)주(主) 이획(李獲)이 사신(使臣)을 보내 와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지난 해에 일본(日本)의 살주인(薩州人) 아무개를 통하여 처음으로 귀국(貴國)에 빙문(聘問)12652) 할 뜻을 말하였더니, 살주(薩州)의 수호 대관(守護代官) 점정구상(占貞久相)이 배[船] 1척을 주면서 해로(海路)가 험난(險難)함을 알려주었으므로 마침내 귀국(貴國)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의 회보[尊報]와 토산물[土宜]인 정포(正布) 7필과 면포(綿布) 3필, 백저포(白苧布) 3필, 흑마포(黑麻布) 3필, 호피(虎皮) 1장을 얻어왔으니, 오래 전부터 바라던 바를 달성하였으므로, 기쁨이 더할 수 없이 큼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가 사신(使</p>	<p>○久邊國主李獲，遣使來獻土宜。其書契曰： 往歲因日本薩州人某，初通聘問于貴國，薩州之守護代官占貞久相，副一船，以諭海路之險難，遂達貴國。得尊報并土宜正布七匹、綿布三匹、白苧布三匹、黑麻布三匹、虎皮一張來，已達夙望，善莫大焉。今謹遣使船，</p>

	<p>臣)과 배[船]를 보내어서 사례(謝禮)하는 정성(精誠)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에 아뢴 바, 대장경(大藏經)을 요구한 일에 대하여 회보하시기를, ‘일찍이 여러 추장(酋長)들이 구(求)하여 갔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일본[扶桑]과 유구(琉球)에서 구한 것은 더욱 많을 것이니, 귀국의 비용을 생각하면 비록 계산을 능숙하게 하는 자라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하(天下)에서 귀국이 광대(廣大)하고, 성덕(聖德)의 무궁(無窮)함이 천지(天地)와 같음을 압니다. 그리고 또 여래(如來)12653)의 무한히 많은 법보장(法寶藏)12654)이 여러 겁(劫)12655)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불초(不肖)하나, 이미 동성(同姓)의 통가지호(通家之好)12656)를 맺었으니, 지금 나의 백성의 곧 폐하(陛下)의 백성입니다. 멀고 가까운 것으로써 백성들의 복(福) 받는 것을 아끼지 마소서. 폐하께서 받아들인 불교[佛]로써 불법(佛法)이 오늘날에 유통(流通)되는데, 우리 나라는 비록 불보(佛寶)12657)는 있으나, 오히려 법보(法寶)12658)가 없습니다. 굽어살피시고 한 벌[藏]을 하사하시어 불법(佛法)의 유루(遺漏)를 온전히 하게 해 주소서. 백배 돈수(百拜頓首)하겠습니다. <삼가>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소향(燒香) 5근(斤)과 호초(胡椒) 20근, 납은(鑞銀) 20근, 견(絹) 3필(匹), 약구(淪具) 5개, 염소(鹽素) 3근입니다.”</p> <p>하였다.</p>	<p>以奉致其謝忱于前啓大藏可索之事，尊報曰：“曾因諸酋求去殆盡。”云云，扶桑、琉球所求尤多，想夫貴國費用，雖巧算，不可計之。天下以是知貴國之廣大，夫聖德之無窮者，量齊天地。且又如來之無盡法寶藏，歷多劫，豈有盡乎？臣雖不肖，已辱同姓通家之好，爾者吾民，即陛下之民也。以遠近莫恪生民之殖福。陛下親受佛，以流通佛法于今日，吾國雖有佛寶，猶欠法寶。俯賜一藏，以契佛之遺漏。百拜頓首。進上燒香五斤、胡椒二十斤、鑞銀二十斤、絹三匹、淪具五、鹽素三斤。</p>
<p>성종 145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윤8월 25일(신묘) 2번째기사</p>	<p>전지(傳旨)하기를, “이 절은 다른 절에 비(比)할 바가 아니다. 영전(影殿)이 있고, 또 전례(前例)에 이곳에 거동하면 모두 하사(下賜)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흉년이 들어서 한결같이 전례는 따를 수 없으니, 쌀·콩 아울러 30석(碩)과 면포(綿布) 1백 필, 정포(正布) 1백 필을 하사하라.”</p> <p>하였다.</p>	<p>○傳曰：“此寺非他寺之比。有影殿，且於前例，幸于此，則皆有賜，今則年歉，不可一依前例，其賜米·豆并三十碩、綿布百匹、正布百匹。</p>
<p>성종 145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감(李堪)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지(傳旨)를 보니, 봉선사(奉先寺)에 미두(米豆)와 포물(布物)을 하사하</p>	<p>○司憲府掌令李堪來啓曰：“臣觀傳旨，賜奉先寺米豆、布物。今以年歉，各</p>

<p>(成化) 18년) 윤8월 28일(갑오) 2번째기사</p>	<p>였습니다.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각전(各殿)도 감선(減膳) 하는데, 이 같이 허비(虛費)하심은 불가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같이 고집하는가? 사람이란 변통(變通)할 줄 몰라서는 안된다.”</p> <p>하였다. 이감이 아뢰기를, “지금 사방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30석의 미두(米豆)는 족히 한 고을을 구제(救濟)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절에는 공廩(公廩)이 있어서 기한(飢寒)에 이르지 않는지 않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이 절에 어용(御容)12713) 이 있고,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도 여러 번 행차하셨으므로, 내가 이미 잘 생각해 보고 조처한 것이니, 말하지 말라.”</p> <p>하였다.</p>	<p>殿亦減膳，不可如此虛費。” 傳曰：“爾等何固執如是？人不可不知變通。” 堪曰：“今四方民庶飢餓，三十碩米豆，足以救一邑之民。況寺有公廩，不至飢寒乎？” 傳曰：“寺有御容，且大王大妃屢幸，予已審計，而處之，其勿言。”</p>
<p>성종 145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윤8월 29일(을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감(李堪)이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30석의 미두(米豆)는 족히 수백 명의 기아(飢餓)를 구제할 수 있으니, 원컨대 함부로 허비하지 마소서.”</p> <p>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전례(前例)가 있으니, 신은 무방(無妨)하게 생각합니다.”</p> <p>하고, 시독관(侍讀官) 김흔(金訢)은 아뢰기를, “봉선사(奉先寺)의 중들은 기한(飢寒)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대간(臺諫)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御經筵。講訖，掌令李堪啓曰：“今年凶歉，三十碩米豆，足以救數百人之飢，願勿妄費。” 上問左右。領事盧思愼對曰：“有前例，臣以爲無妨。” 侍讀官金訢曰：“奉先寺僧，不至飢寒，臺諫之言甚當。” 不聽。</p>
<p>성종 147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p>	<p>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와 참판(參判) 김작(金碓)과 참의(參議) 권정(權挺)이 와서 아뢰기를,</p>	<p>○禮曹判書李坡、參判金碓、參議權挺來啓曰：“酌獻文宣王，非親行釋奠</p>

(成化) 18년) 10월 2
일(정묘) 3번째기사

“문선왕(文宣王)12835) 에게 작헌(酌獻)12836) 하는 것은 친히 석전(釋奠)12837) 을 거행하는 예(例)가 아니므로, 면복(冕服) 차림으로써 행례(行禮) 하는 것이 불가(不可)하니, 원유관(遠游冠)과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써 거행하기를 청합니다. 또 의주(儀註)의 안에는 재계(齋戒)는 없고 전작관(奠酌官)12838) 이 여러 집사(執事)들과 동시(同時)에 행례(行禮)하고, 진규(摺圭)12839) 는 있으나 집규(執圭)12840) 는 없으며, 술잔 드리기를 마친 후에 여러 집사(執事)들이 사배(四拜)하는 일이 없으니 미편(未便)합니다. 개정(改正)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임금이 문묘(文廟)에 참배(參拜)하는 예절은 비록 친히 드리는 성대한 예절은 아니지마는, 면복(冕服) 차림으로써 선성(先聖)을 참배(參拜)하는 것이 예절의 당연(當然)히 할 바입니다. 하물며 강사포(絳紗袍)는 곧 여러 신하들을 대(對)하는 의복이므로 비록 역대(歷代)에서 때때로 혹시 이를 사용하였지마는, 《오례의(五禮儀)》 주(註)에 따르면 면복(冕服)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전작관(奠酌官)은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의 예(例)는 아니고 여러 집사(執事)들과 같이 일하고 있으니 그런 까닭으로 의주(儀註)에는 집사(執事)와 더불어 같은 때에 배례(拜禮)를 행하고, 문묘(文廟)의 참배(參拜)가 끝난 후에는 전작관(奠酌官)과 여러 집사(執事)들은 모두 제 자리에 돌아와서 같은 때에 백관(百官)들과 함께 사배(四拜)를 하고 나가게 되니 여러 집사(執事)들이 배례(拜禮)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묘(文廟)의 참배(參拜)는 임시(臨時)에 이를 행하는 것이고 제향(祭享)의 비교는 아니니, 그런 까닭으로 예문(禮文)에 재계(齋戒)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집규(執圭)에 관한 일은 의주(儀註)에 아마 틀린 것이 있는 듯합니다.”

之例。以冕服行禮，不可，請以遠遊冠、絳紗袍行之。且儀註內無齋戒，奠酌官與諸執事，同時行禮，有摺圭，而無執圭，酌獻畢後，諸執事無四拜未便，請改正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韓明澮、沈澮、尹士昕、尹弼商、洪應、盧思愼、李克培、尹壕議：“酌獻之禮，雖非親享盛禮，以冕服謁先聖，禮所當然。況絳紗袍，乃臨群臣之服，雖歷代時或用之，依《五禮儀註》，用冕服爲便。奠酌官非亞獻官、終獻官之例，與諸執事同事，故儀註與執事，一時行拜禮，酌獻畢後，奠酌官及諸執事，俱復位，一時與百官，同四拜而出，非諸執事無拜禮也。酌獻臨時行之，非祭享之比。故於禮文無齋戒矣。但執圭事，儀註，恐有違誤。”命示禮曹。

	하였다. 임금이 예조(禮曹)에 보이도록 명하였다. 호조(戶曹)에 전교(傳敎)하기를,	
성종 147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0월 4 일(기사) 2번째기사	“명숙 공주(明淑公主)에게 부의(賻儀)로 쌀 60석(碩), 콩 20석(碩), 청밀(淸蜜) 10두(斗), 기름 15두(斗), 밀 3석(碩), 석회(石灰) 50석(碩)을 특별히 하사(下 賜)하라.” 하였다.	○傳于戶曹曰：“別賜明淑公主賻米六 十碩、豆二十碩、淸蜜十斗、油十五 斗、小麥三碩、石灰五十碩。
성종 147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0월 10 일(을해) 4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근일에 연사(年事)의 흉년으로 인하여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녹봉(祿俸) 을 줄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지금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의 수위자 (首位者)에게 청컨대 쌀을 내려 주지 마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장원(壯元)한 사람에게 쌀을 하사(下賜)하는 것은, 이것이 권장(勸獎)하는 좋 은 일이니 그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戶曹啓：“近因年歉，至減東、西班 祿俸，今文、武科居首者，請勿賜 米。”傳曰：“壯元賜米，是勸獎美事， 仍舊可也。
성종 14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1월 5 일(기해) 1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경기 진휼사(京畿賑恤使)의 단자(單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기민(飢民)이 장정 남녀가 모두 13만 7천 5백 57명이고, 늙고 어린 남녀가 모두 9만 명입니다. 청컨대 전라도에서 옮겨 온 쌀 2만 9천 73 석 9두(斗)와 경창미(京倉米) 4만 8천 83석 11두를 가지고 구제하게 하소 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己亥/戶曹據京畿賑恤使單(字) [子]，啓：“道內飢民，壯男女，總十 三萬七千五百七十五名，老弱男女，總 九萬名。請以全羅道移轉米二萬九千 七十三碩九斗及京倉米四萬八千八十 三碩十一斗，賑救。”從之。
성종 14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1월 13 일(정미) 2번째기사	명하여 강희맹(姜希孟)의 아내 안씨(安氏)에게 쌀 10석, 누런 콩 5석, 정포(正 布) 10필, 종이 80권, 유둔(油菴) 2, 송지(松脂) 3두와 관곽(棺槨)을 부의(賻 儀)하였는데, 원자(元子)가 일찍이 그 집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命賻姜希孟妻安氏米十碩、黃豆五 石、正布十匹、紙八十卷、油菴二、 松脂三斗及棺槨，以元子嘗寄養其家 也。
성종 148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오늘 내린 눈이 때에 맞추었기 때문에 술을 하사하니, 감교청 당상(勘校廳堂	○傳于承政院曰：“今日下雪得時，故 賜酒。其與勘校廳堂上、經筵官共飲，

<p>(成化) 18년) 11월 16일(경술) 2번째기사</p>	<p>上)과 경연관(經筵官)은 함께 마시면서 각각 신설(新雪)을 제목으로 하여 사운시(四韻詩)를 지어서 올리라.” 하였다.</p>	<p>各賦新雪四韻詩以進。”</p>
<p>성종 148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11월 21일(을묘) 2번째기사</p>	<p>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서 삼대비전(三大妃殿)에 문안하였다. 전교하기를, “날씨가 몹시 차가우니 입직(入直)한 수가 군사(隨駕軍士)에게 술을 하사하라.” 하였다.</p>	<p>○上詣景福宮，問安于三大妃殿。傳曰：“日甚寒，其賜入直隨駕軍士等酒。”</p>
<p>성종 149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12월 6일(경오)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북청(北靑) 여러 고을에 흉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군자창(軍資倉) 잡곡 2만 석과 쌀 1만 석을 제급(題給)하여 백성을 진휼(賑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永安道觀察使啓本啓：“北靑諸邑饑。請以軍資倉雜穀二萬碩、米一萬碩，題給賑民。”從之。</p>
	<p>명하여 낭이가대(浪尼加大)를 전정(殿庭)에 나치(拿致)하고, 승지(承旨)로 하여금 전교(傳教)하여 이르기를, “네가 이미 의(義)를 생각하여 투항해 왔으면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는데, 이제 네가 손으로 관교(官教)13039) 를 비비고 또 하사(下賜)한 망건을 찢었으니, 만약 법에 의거하여 죄를 정한다면 마땅히 극형에 처할 것이나 네가 향화인(向化人)13040) 으로서 예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네 죄를 너그럽게 한다. 뒤에 만약 무례하면 내가 마땅히 너를 죽일 것이다.” 하니, 낭이가대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성상의 전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는데, 마침내 술을 먹이고 석방하여 주었다</p>	
<p>성종 149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12월 8일(임신) 5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 전교하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하늘의 경계를 삼가히 하는 것이다. 지금은 수한(水旱)의 재화(災禍)가 없으니, 재상을 접견할 때에 술을 쓰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금하는 것을 파하라.”</p>	<p>○傳于司憲府曰：“酒禁，所以謹天戒也。今無水旱之災，接見宰相時，不可不用酒。其罷禁。”</p>

<p>성종 149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2월 8 일(임신) 6번째기사</p>	<p>하였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박형문(朴衡文)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흉년을 구휼하는데 금주(禁酒)를 파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 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해를 만나서 경계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닌데, 술을 쓰는 것이 무엇에 방해 롭겠는가?” 하였다.</p>	<p>○司憲府掌令朴衡文來啓曰：“今方救 荒，罷酒禁，未便。”傳曰：“非遇災 戒懼時也。用酒，何妨？”</p>
<p>성종 149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2월 21 일(을유) 3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이세우(李世佑) 가 아뢰기를, “근일에 종묘(宗廟)의 번육(膳肉)13077)의 맛이 몹시 나쁜데, 그것은 희생 (犧牲)이 살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제사를 중하게 여기는데,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해사(該司)에서 제사에 쓸 소를 거두어 들 이는 데에 간혹 얼룩빛 소를 검게 물들여서 그것을 바쳐서 제사하기도 하고, 집사(執事)가 재계할 때에 술이 취하는 것이 예사이고 인하여 거동에 실수를 하며, 전사관(典祀官)이 친히 진물(奠物)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인(下人)에 게 맡기므로 제물이 정결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옳다.” 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p>	<p>○御晝講。講訖，侍讀官李世佑啓曰： “近日宗廟膳肉，味甚惡，以犧牲不肥 腴故也。國家重祭祀，而如此，甚不 可。且該司收納祭牛，或以色駁牛， 染黑而納之祭。執事齋戒時，醉酒爲 常，因而失儀。典祀官當親受奠物， 而委諸下人，因此祭物多不淨潔。此 非細事。”上謂承旨曰：“此言是也。” 令該曹，議啓。</p>
<p>성종 149권,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 (成化) 18년) 12월 26 일(경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서 삼대비전(三大妃殿)에 잔치를 올리고, 명하여 종친 (宗親) 1품과 영돈녕(領敦寧) 이상, 육조 판서(六曹判書), 승정원(承政院)과 입 직(入直)한 제장(諸將)을 불러서 술과 풍악을 하사하고 전교하기를, “오늘 내전(內殿)에 잔치를 올렸으니, 경(卿)들도 모두 즐겁게 술을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술이 반쯤 돌아가자 전교하기를,</p>	<p>○庚寅/上詣景福宮，進宴于三大妃 殿。命召宗親一品、領敦寧以上、六 曹判書、承政院入直諸將，賜酒樂。 傳曰：“今日進宴于內，卿等亦皆樂飲 酒。”半，傳曰：“以忠恕爲題，孫判 書當賦十韻詩，他宰相賦四韻以進。”</p>

	<p>“충서(忠恕)로 시제(詩題)를 삼아 손 판서(孫判書)13103) 는 마땅히 십운시(十韻詩)를 지을 것이며, 다른 재상은 사운시(四韻詩)를 지어서 올리라.”</p> <p>하자, 손순효가 취한 김에 절구(絶句)를 지었는데 부자(父子)·군신(君臣)·부부(夫婦)·형제(兄弟)·치도(治道)로써 각각 한 장(章)을 지어 올리니, 임금이 보고 전교하기를,</p> <p>“이제 손 판서의 시를 보니 정성이 간절하고 지극하다. 정헌 대부(正憲大夫)의 자급을 더하여 표창하라.”</p> <p>하였다.</p>	<p>舜孝乘醉賦絕句。以父子、君臣、夫婦、兄弟、治道，各成一章以進。上覽之，傳曰：“今觀孫判書詩，精誠切至，其加正憲階以旌之。”</p>
<p>성종 15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월 4일 (정유) 7번째기사</p>	<p>약방 제조(藥房提調) 정창손(鄭昌孫)·권찬(權攢)이 와서 아뢰기를,</p> <p>“온탕(溫湯)13121) 은 본래 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도리어 다른 병을 얻는 자가 많습니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는 춘추(春秋)가 이미 60이 넘으셨고 병이 뱃속에 있으며 또 어선(御膳)을 드시지 않아서 기운이 이미 약하십니다. 신은 이로 인하여 다른 증세가 생기면 병이 더욱 위태로와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온탕을〉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나도 이를 헤아린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대왕 대비께서 하시고자 하니 간하여 말릴 수 없다. 비록 온양(溫陽)에 행차하시더라도 기운이 만약 순조롭지 못하시면 그때 가서 정지할 수도 있다.”</p> <p>하였다.</p>	<p>○藥房提調鄭昌孫、權攢來啓曰：“溫湯本欲治疾，而反得他證者，多矣。大王大妃，春秋已過六旬，疾在腹中，又不御膳，氣已弱矣。臣恐因此，而又生他證，則疾加危矣。請停若何?”</p> <p>傳曰：“予亦計此，久矣。然大王大妃欲之，勢不可諫止也。雖幸溫陽，氣若不調，則臨時可停矣。”</p>
<p>성종 15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월 4일 (정유) 10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자정(金自貞)·경상좌도 병마 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 윤말손(尹末孫)·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왕종신(王宗信)에게 하서(下書)하기를,</p> <p>“사람들이 말하기를,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주장(主將)의 두 영(營)이 모두 울산(蔚山) 한 고을 안에 있어서 공돈(供頓) 하는 데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못 앞뒤에서 호응하여 적을 방어하는 형세가 없다.’고 하니, 마땅히 나누어서 두어야 할 것이나, 진(鎭)을 설치하는 것은 큰 일이므로</p>	<p>○下書慶尙道觀察使金自貞、左道兵馬節度使尹末孫、右道兵馬節度使王宗信曰：</p> <p>人言：‘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主將兩營，俱在蔚山一郡之內，非徒供頓有弊，殊無犄角之勢。’固當分置。然</p>

	<p>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만일 수영(水營)을 옮기고자 하거든 반드시 포구(浦口) 안이 넓어서 병선(兵船)이 정박(停泊)할 수 있는 곳이라야 가하다. 도병영(兵營)은 반드시 울산에 있어야 되고 내지(內地)로 옮길 수는 없는가? 두영(營)을 예전대로 두면 참으로 큰 폐단이 있어서 옮기지 아니할 수 없는가? 수영과 병영은 어느 것을 옮겨야 하며, 병영은 어느 곳으로 옮기고 수영은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하겠는가? 경(卿)들은 그 형세를 자세히 살피고 적당한가의 여부를 헤아려서 상세하게 모두 치계(馳啓)하라.” 하였다.</p>	<p>置鎮大事，不可遙度。如欲移徙水營，必須浦內廣闊，兵船有停泊處，乃可矣。且兵營必在蔚山，而不可移諸內地歟？兩營仍舊，信有巨弊，不得不移歟？水營、兵營，何者可移，而兵營移之於何地，水營移之於何地歟？卿其審視形勢，商度便否，詳悉馳啓。</p>
<p>성종 15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월 12일(을사)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김종(金宗)이 아뢰기를, “예충년(芮忠年)은 본디 내력(來歷)이 없는데 이제 사천 현감(泗川縣監)으로 제수하였으니, 내력이 없는 자는 동반(東班) 벼슬을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종이 또 아뢰기를, “민함(閔諫)은 일찍이 청송 부사(靑松府使)로 있으면서 황두(黃豆) 2석으로 자초(紫草)13147) 10석을 바꾸어서 반(半)은 자기의 소용으로 하였는데, 이제 수령으로 임명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국안(鞫案)을 상고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김종이 말하기를, “비록 궁중에 썼을지라도 백성을 침학(侵虐)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p>	<p>○乙巳/御經筵。講訖，持平金宗啓曰：“芮忠年本無來歷，而今拜泗川縣監。無來歷者，不可授東班職。”不聽。宗又啓曰：“閔諫曾爲靑松府使，以黃豆二碩，貿易紫草十碩，半爲己用。今拜守令未便，請改差。”上曰：“考鞫案可也。”宗曰：“雖用於官中，侵虐百姓，則一耳。”</p>
<p>성종 15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월 13일(병오) 2번째기사</p>	<p>이관의(李寬義)에게 유의(襦衣) 두 벌을 하사하고 묻기를, “그대가 지금 벼슬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관의가 말하기를, “신이 이제 늙고 병들어 벼슬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본도 관찰사(本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여 미두(米豆)를 내려서 권</p>	<p>○賜寬義襦衣二領，問：“汝今可仕乎？”寬義曰：“臣今老病，不能仕。”諭本道觀察使，賜米豆以獎之。</p>

	장하게 하였다.	
성종 15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월 15 일(무신)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듣건대, 전 찰방(察訪) 이관의(李寬義)가 이학(理學)13151) 을 연구하 여 늙어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불려서 시험해 물었더니, 논의가 정 밀하고 능숙하여 과연 소문과 같으므로 장차 드러나게 기용하여 그 뜻을 위 로하고자 하였으나, 이관의가 스스로 나이가 많아 일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 여 전리(田里)로 돌아가서 여년(餘年)을 마치고자 하므로, 내가 그 뜻을 아 름답게 여겨 의복을 하사하고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이제 흉년으로 생 활이 어려울 것이니, 그가 살고 있는 이천(利川) 관청으로 하여금 쌀과 콩 아 울러 10석을 하사하여 나의 포장(褒獎)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傳旨戶曹曰：“予聞，前察訪李寬義， 研窮理學，老而不倦。 召致試問，論 議精熟，果副所聞。 將欲顯用，以慰 其志，寬義自以年老，不能治事，欲還 田里，以終餘年。 予嘉其志，賜衣許 還。 度今年荒，過活爲難，令所仕利 川官，賜米、豆并十碩，以示予褒獎之 意。”
성종 15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2월 20 일(계미) 3번째기사	왕세자(王世子)가 처음으로 서연(書筵)에서 강(講)을 하였다. 명하여 경연(經 筵) 서연관(書筵官)에게 술을 내리게 하였다.	○王世子始講書筵，命賜經筵、書筵官 酒。
성종 15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2월 21 일(갑신) 2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이과(李坡)가 아 뢰기를, “지금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특별히 보낸 평국행(平國幸)이 등이 삼포(三浦) 의 왜인(倭人)을 쇄환(刷還)한 일을 가지고 스스로 그 공을 자랑하며, 왕래선 (往來船) 50척을 더 주고 금료도 더 달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남만(南蠻)에 사신을 보내어 후추씨[胡椒種]를 구하고자 하는데, 남만은 땅이 멀어 3년이 걸린다. 그 내왕에 드는 식량을 죄다 미곡(米穀)만을 실을 수 없으니, 동전 2 만 췌미를 내려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구함이 몹시 번거로운데, 장차 어 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날 일본국(日本國) 사신이 돌아갈 때에 <우리가> 후추씨를 요구하였으	○御經筵。 講訖， 同知事李坡啓曰： “今來對馬島主特送平國幸等， 以刷還 三浦倭人， 自誇其功， 請加往來船五十 隻， 以益其料。 且云： ‘欲遣使南蠻， 以求胡椒種， 南蠻地遠， 動經三年。 其往來之糧， 不可盡以米穀載之。 請 賜銅錢二萬緡。’ 如此求請甚煩， 將何 以答之?” 上曰：“往者日本國使之還， 求胡椒種， 故彼必以此誘我， 而欲遂所 求， 或故請難從之事， 欲構邊釁也。 姑優禮待之。”

	<p>므로, 저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피어서 〈그들이〉 구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거나 혹은 짐짓 따르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여 변방의 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우선 후히 예대(禮待)하라.” 하였다.</p>	
<p>성종 15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2월 21일(갑신)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좌찬성(左贊成) 강희맹(姜希孟)에게 부의(賻儀)로 쌀·콩을 아울러 15석(碩), 괭(榔) 하나, 석회(石灰) 30석(碩), 숯 15석, 전칠(全漆) 6승(升), 종이 80권, 유둔(油菴) 2를 내려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賜左贊成姜希孟賻米豆并十五碩、榔一、石灰三十碩、炭十五碩、全漆六升、紙八十卷、油菴二。</p>
<p>성종 15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2월 29일(임진) 1번째기사</p>	<p>전라도 병마 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 변종인(卞宗仁)이 치계(馳啓)하기를, “왜선(倭船) 수 척이 달량(達梁)·청산도(靑山島)에 이르러 상선(商船)을 약탈하고, 무명[綿布] 50필, 미곡(米穀) 30여 석(碩)을 빼앗아 갔으며, 세 사람을 죽이고 일곱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하였다.</p>	<p>○壬辰/全羅道兵馬節度使卞宗仁馳啓：“倭船數隻，至達梁、靑山島，刦掠商船，奪綿布五十匹、米穀三十餘碩，殺三人、傷七人。”</p>
<p>성종 152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3월 3일(을미) 2번째기사</p>	<p>기영회(耆英會)13249) 를 훈련원(訓練院)에서 베풀고, 좌승지(左承旨) 김세적(金世勳)에게 명하여 선운(宣醞)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도록 하였다.</p>	<p>○設耆英會于訓練院，命左承旨金世勳，齎宣醞，往慰之。</p>
<p>성종 152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3월 3일(을미)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경연관(經筵官)·대간(臺諫)과 수리도감(修理都監)에 술을 하사(下賜)하고, 이어서 답청시(踏靑詩)13250) 20운(韻)을 짓도록 명하였다.</p>	<p>○賜承政院、都摠府、兵曹、經筵官、臺諫及修理都監酒，仍命製踏靑詩二十韻。</p>
<p>성종 152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3월 6일(무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박계성(朴繼姓)과 장령(掌令) 박형문(朴衡文)이 아뢰기를, “근년에 가뭄이 너무 심하여 보리가 다 말라 죽어 민간(民間)에서 매우 굶주리고 있는데도 여러 백성들이 재산을 헤아리지 않고서 날마다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서 비용을 써 없애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거리의 빈천한 백성은 진</p>	<p>○御經筵。講訖，大司諫朴繼姓、掌令朴衡文啓曰：“近年旱氣太甚，麩麥盡枯，民間甚飢，而大小人民，不計資產，日肆飲酒，糜費泰侈。街巷細民，固不足論，大臣知國體者，亦帶妓縱</p>

	<p>실로 논할 것도 못되지마는, 대신(大臣)으로서 나라의 대체(大體)를 아는 사람도 기생(妓生)을 데리고서 술을 실컷 마시고 있으니, 청컨대 주금(酒禁)을 엄중히 제정하여 이러한 폐단 제거하도록 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술을 실컷 마시는 사람이 누구인가?”</p> <p>하니, 박형문(朴衡文)이 대답하기를,</p> <p>“부중(府中)13255)의 풍문(風聞)으로는, 한성부(漢城府)와 이조(吏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郎官)들이 문밖에 모여 풍악을 울리면서 술을 마셨다 하는데, 지금 추핵(推覈)했으나 현재 실정(實情)을 알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금주(禁酒)하는 것이 좋겠다. 노병(老病)으로 약을 먹거나 혼인(婚姻)·제사(祭祀)·헌수(獻壽)·사후(射侯) 때에나 병술을 가진 사람을 제외(除外)하고는 무릇 술을 마시는 자는 모두 이를 금하게 하라.”</p> <p>하였다. 시강관(侍講官)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p> <p>“신(臣)이 듣건대, 임피(臨陂)·함열(咸悅) 등의 고을에서는 연달아 실농(失農)한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절반이나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자(父子)와 형제(兄弟)가 서로 보전(保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구휼(救恤)하도록 하고, 또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자의 수효를 살펴서 아뢰도록 하였다.</p>	<p>飲。請嚴立酒禁，以祛此弊。”上曰：“縱飲者，誰？”衡文對曰：“府中風聞，漢城府、吏曹堂上、郎官，會于門外，張樂飲酒，今方推覈，時未得情耳。”</p> <p>上曰：“可禁酒。除老病服藥、婚姻、祭祀、獻壽、射侯、持瓶酒者外，凡飲酒一切禁之。”侍講官金宗直啓曰：“臣聞‘臨陂、咸悅等邑，連因失農，民半流離，父子兄弟，不相保。’”命其道觀察使救恤，且審流離之數以啓。</p>
<p>성종 152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3월 19일(신해)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p> <p>“지난번에 신(臣)이 명령을 받들고 충청도(忠淸道) 연해(沿海)의 고을에 가서 살펴보았는데 보리와 밀이 말라 죽고 있으니, 지금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먹을 수 없을 듯합니다. 구황(救荒)하는 곡식을 계산해 본다면 겨우 4개월을 지탱할 만하니, 청컨대 호조(戶曹)로 하여금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서 더 주도록</p>	<p>○御經筵。講訖，領事盧思愼啓曰：“曩者臣承命往審忠淸道沿海之郡，兩麥枯槁，今雖下雨，恐不可食。計救荒之穀，僅能支四月。請令戶曹，量宜加給。”上曰：“可。”</p>

	<p>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p>	
<p>성종 152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3월 24 일(병진)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오는 4월 초 5일에 삼전(三殿)께서 궁궐로 돌아오실 때에 제천정(濟川亭)의 연향(宴饗)은 전부 속악(俗樂)13306) 을 사용하고 당악(唐樂)13307) 은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기생(妓生)은 전원을 쓰고 공인(工人)은 50명을 쓰도록 할 것이며, 대전(大殿)에 수가(隨駕)하는 종친(宗親)과 재추(宰樞) 1품 이상과 삼전(三殿)에 수가(隨駕)하는 종친과 재추 전원에게 접대하는 음식물을 하사(下賜)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來四月初五日，三殿還宮時，濟川亭宴饗，全用俗樂，勿用唐樂。妓用全數，工人五十名。大殿隨駕宗宰一品以上、三殿隨駕宗宰全數，賜饋餉。</p>
<p>성종 152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3월 25 일(정사)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박계성(朴繼姓)과 장령(掌令) 이혼(李渾)이 아뢰기를, “근래에 가뭄이 너무 심하니, 청컨대 영조(營造)를 정지시켜 하늘의 경계에 삼가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수강궁(壽康宮)을 개조(改造)하는 거사(擧事)는 나도 염려했으니, 대간(臺諫)의 말이 진실로 이치가 있다. 그러나 고의(故意)로 분수에 지나친 사치(奢侈)를 하여 민력(民力)을 궁곤(窮困)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 궁실(宮室)이 기울어지고 무너진 것을 살펴보건대, 형세가 오래 지탱하기 어려울 뿐더러 재목을 운반해 쌓아 둔 지가 이미 오래 되어 썩은 것이 많이 있다. 만약 금년에 역사(役事)를 정지하게 된다면, 혹시 연사(年事)가 실농(失農)하고 민력(民力)이 날로 곤궁하게 될 경우 장차 그 궁실이 무너지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이를 수리(修理)하지 않겠는가? 만약 마지 못하여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이미 운반한 재목은 벌써 썩었을 것이므로 장차 반드시 다른 재목을 구해</p>	<p>○御經筵。講訖，大司諫朴繼姓、掌令李渾啓曰：“近來旱氣太甚，請停營造，以謹天戒。”上曰：“壽康宮改造之舉，予亦慮焉，臺諫之言，誠有理。然非故爲侈靡，以窮民力。觀其宮室傾頽，勢難支久，況材木轉積已久，多有朽敗。若今年停役，則儻有年歲失農，民力日(國) [困]，將坐視其圯頽，而不一之修乎？如不得已而更舉，則既輸之材已朽，將必更求他材，民力豈不重困乎？今修治之功已就，不可停廢。且陰陽家以今年爲吉。邪說雖不足信，然凡人造一小屋，尙必問其吉凶，建立宮闕，豈可不顧乎？其勿更言。”李渾</p>

	<p>야 할 것이니, 민력(民力)이 어찌 거듭 곤궁하지 않겠는가? 지금 수리(修理)하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정폐(停廢)할 수가 없다. 또 음양가(陰陽家)에 서도 금년(今年)을 길(吉)하다고 하였다. 사실(邪說)은 비록 믿을 것이 못되지 마는, 그러나 무릇 사람들이 한 채의 작은 집을 짓더라도 반드시 그 길흉(吉凶)을 묻는데, 궁궐을 건립(建立)하면서 어찌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p> <p>하였다. 이혼(李渾) 등이 또 아뢰기를, “가뭄이 매우 심하니, 병술[瓶酒]까지 모두 금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력이 있는 큰 부자(富者)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즐기고 있는데, 가난한 백성은 저자에서 술을 사고도 유독 법금(法禁)에 걸리게 되니, 불쌍하다. 그것은 말하지 말라.”</p> <p>하였다.</p>	<p>等又啓曰：“旱氣深重，并禁瓶酒，何如？”上曰：“豪富者痛飲醉歡，而貧民沽市，獨罹法禁，可矜。其勿言。”</p>
<p>성종 152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3월 27 일(기미) 1번째기사</p>	<p>(…) 이종윤(李從允)이 또 아뢰기를, “금년에는 보리와 밀이 잘 자라지 못하였는데 경상도(慶尙道)가 더욱 심하니, 청컨대 감사(監司)로 하여금 흉년에 대비(對備)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p> <p>하였다.</p>	<p>(…) 從允又啓曰：“今年兩麥不茂，慶尙道尤甚。請令監司備荒。”上曰：“可。”</p>
<p>성종 152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3월 28 일(경신)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박계성(朴繼姓)과 장령(掌令) 이혼(李渾)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사재감(司宰監)의 종[奴子]이 내공(內供)13312) 이라고 핑계하고는 시중(市中)을 위협(威脅)하여 싼 값으로 어물(魚物)과 억지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戶曹)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p>	<p>○庚申/御經筵。講訖，大司諫朴繼姓、掌令李渾啓曰：“頃者司宰監奴子，托以內供，威脅市中，以賤價劫換魚物，此甚不可。”上曰：“其令戶曹考啓。”(…)</p>

<p>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4월 2일 (갑자) 1번째기사</p>	<p>하였다. (...)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육조 당상(六曹堂上)이 모여 대행 대비(大行大妃)의 빈장(殯葬)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전하(殿下)께서 너무 서러워하심이 법제에 지나치고 전죽(飢粥)을 들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3일이 되면 죽을 먹고, 죽은 이 때문에 산 사람을 상(傷)하게 하지 않는다.[三日食粥不以死傷生]’고 하였으니, 청컨대 진선(進膳)하여 신민(臣民)의 소망에 부응(副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의 말을 듣고 이미 전죽(飢粥)을 마셨다.” 하였다.</p>	<p>○甲子/議政府、忠勳府、六曹堂上會議大行大妃殯葬諸事，仍啓曰：“臣等聞‘殿下哀毀過制，不進飢粥。’古人云：‘三日食粥，不以死傷生。’請進膳，以副臣民之望。”傳曰：“聞卿等之言，已飲飢粥。”</p>
<p>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4월 3일 (을축) 1번째기사</p>	<p>종정국(宗貞國)이 특송(特送)한 평국행(平國幸)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글을 받고 강승(康勝)함을 갖추 확인하였으니 위로가 됩니다. 지난번에 위인(委人)이 삼포(三浦) 사람을 쇄환(刷還)하고, 이제 또 왜적(倭賊)을 수포(搜捕)한다는 말이 있어 삼가 전하(殿下)에게 아뢰었으며, 족하(足下)가 아랫사람을 어거함에 법도[律]가 있으니 진실로 가상할 만합니다. 그러나 간세(奸細)한 무리가 간혹 도적질을 하였는데 다시 금집(禁戢)을 한 것은 다행입니다. 제시하여 주신 선척(船隻)의 일은 우리 선왕조(先王朝)에서 귀도(貴島)의 구주(舊主)와 더불어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액수(額數)를 정한 것이며, 지금까지 본 받아 준수하여 바꾸지 않았으니, 어찌 가볍게 변경하여서 증감(增減)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 더할 수 있다면 다른 날 또한 감할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구약(舊約)을 변경하고, 분경(紛更)13333) 하여 한결같지 않으면, 귀주(貴州)에 이익이 아닙니다. 또 동(銅)은 본시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데다 전폐(錢幣)를 폐(廢)하여 더 쓰지 않으니, 그 내려온 일이 이미 오래 되고 공사(公私)에 저축된 것이 없어 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애오라지 변변</p>	<p>○乙丑/宗貞國特送平國幸等辭。其答書曰： 承書，備認康勝，爲慰爲慰。向者委人，刷還三浦之人，今又有倭賊搜捕之言，謹已啓過殿下，以足下馭下有律，良用嘉之。然奸細之徒，間或竊發，更加禁戢爲幸。所示船隻事，在我先朝與貴島舊主，斟酌多寡，參定額數，式至于今，遵守不替，豈可輕易變更，而增減之哉？今日若可增也，他日亦可減也？輕變舊約，紛更不一，非貴州之利也。且銅本，非本國所產，加以廢錢幣不用，其來已久，公私無儲，未得從命。聊將不腆土宜，就付來使，具在別簡，并領納。但本國凶歉相仍，</p>

	<p>치 못한 토의(土宜)를 가지고 내사(來使)에게 부치어 보내며 별폭의 간찰에 갖추었으니, 아울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국은 흉년이 계속되고 또 중국의 사신이 해마다 답지(逖至)하여 소비되는 것이 너무 많아 국용(國用)도 넉넉지 못하니, 뒤에 만약 계속하여 청구한다면 소망을 다 부응하지 못할까 염려되며, 도서(圖書)13334) 도 간위(奸僞)의 싹[萌]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주(貴州)에서 기피할 것 같으면 어찌 반드시 고치겠습니까? 그전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p> <p>하였고, 별폭(別幅)에는, 면주(綿紬) 5백 필(匹), 면포(綿布) 1천 필(匹), 흑마포(黑麻布) 30필(匹), 미두(米豆) 아울러 2백 석(碩), 송자(松子) 2석(碩),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2장(張), 청밀(淸蜜) 6두(斗), 계(桂) 2(角), 다식(茶食) 1각(角), 소주(燒酒) 20병(瓶), 잡채화석(雜彩花席) 5장(張), 4장 부유석(四張付油席) 2사(事)이었다.</p>	<p>而及皇朝使臣連歲沓至，所費甚夥，國用不敷。後若陸續求請，則恐無以盡副所望，圖書欲杜奸僞之萌耳。若貴州拘於避忌，則何必改爲？仍舊爲便。別幅，綿紬五百匹，綿布一千匹，黑麻布三十四匹，米豆并二百碩，松子二碩，虎豹皮各二張，淸蜜六斗，桂二角，茶食一角，燒酒二十瓶，雜彩花席五張，四張付油席二事。</p>
<p>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4월 3일 (을축) 8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졸곡(卒哭) 전에는 창릉(昌陵)13335) ·경릉(敬陵)13336) ·연은전(延恩殿)13337) ·소경전(昭敬殿)13338) 은 아울러 향사(享祀)를 정지함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덕종(德宗)·예종(睿宗)은 모두 종묘(宗廟)에 들었으니, 문소전(文昭殿)13339) 의 삭망(朔望)과 시제(時祭)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이 아뢰기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께서 모두 동당(同堂)에 계신데, 유독 양종(兩宗)에만 제사를 올리지 않는 것은 의리에 미안(未安)하니, 아울러 향사(享祀)함도 무방(無妨)합니다. 다만 고기[肉]로써 향사(享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소선(素膳)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 등의 뜻에서 일어난 의논이니,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옛 제도[古制]</p>	<p>○禮曹啓：“卒哭前，昌陵、敬陵、延恩殿、昭敬殿，並停享祀，宜矣。但德宗、睿宗皆入于宗廟，文昭殿朔、望、時祭，何以處之？”上命領敦寧以上議之。領議政鄭昌孫等啓曰：“宗廟、文昭殿，先王、先后皆同堂，而獨不祭兩宗，於義未安，并享無妨。但不可以肉，宜用素膳。然此臣等意起之論，令弘文館，考古制，何如？”從之。</p>

	를 상고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4월 3일 (을축) 10번째기사	본 승정원(分承政院)에 하서(下書)하기를, “내가 양 대비(兩大妃)께서 너무 슬퍼하심이 예제(禮制)에 지나칠까 염려가 되니, 너희 가 수가(遂駕)한 종재(宗宰)와 더불어 연속하여 전죽(饘粥)을 드시 도록 청(請)하라.” 하였다.	○下書分承政院曰： 予慮兩大妃哀毀過制，爾與隨駕宗宰， 連續請進饘粥。
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4월 4일 (병인) 1번째기사	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 등이 아뢰기를, “듣자오니, 전하께서 여러 날 전죽(饘粥)을 들지 않으셨다 하니, 양대비(兩大 妃)께서 만약 들으시면 반드시 애통을 더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위안(慰安)하 여 드리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모름지기 진선(進膳)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제 곧 죽을 들겠다.” 하였다.	○丙寅/都承旨李世佐等啓曰：“聞‘殿 下累日不進饘粥。’兩大妃若聞之，必 加哀慟，非所以慰安親心也。請須進 膳。”傳曰：“予今卽歎粥矣。”
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4월 6일 (무진) 3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종(金琮)이 와서 아뢰기를, “대행 대비(大行大妃)께서 처음 탕욕(湯浴)했을 때에는 기체(氣體)가 평복(平 復)하여 한 나라의 신민(臣民)이 듣고서 기뻐하였는데, 겨우 수일(數日)이 지 나서 갑자기 천수(天壽)를 마치시는 슬픔을 끼치니, 신 등은 그욕이 탕욕(湯 浴)과 어선(御膳) 절차가 실중(失中)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청컨대 의원(醫員) 의 죄(罪)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大妃)께서는 여러 해를 편치 못하여 수라를 들지 못하였으며, 근래에 듣건대, 탕욕한 뒤에도 전연 수라를 들지 못하셨다고 하니, 어찌 갑자기 대고 (大故)가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는가? 이것은 인력으로 미칠 것이 아니니, 죄를 의원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司憲府持平金琮來啓曰：“大行大妃 湯浴之初，氣體平復，一國臣民，聞之 喜悅，纔過數日，遽貽終天之痛。臣 等竊疑湯浴、御膳之節失中也。請治 醫員之罪。”傳曰：“大妃累年不豫， 未能進膳。比聞湯浴後，全未進膳， 豈意遽至大故乎？此非人力所及，不可 歸罪於醫也。”

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4월 7일
(기사) 2번째기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복선(李復善)이 온양(溫陽)에 있으면서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이 삼전(三殿)을 호종(扈從)하여 온정(溫井)에 이르렀더니, 황천(皇天)이 돌보지 아니하여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갑자기 홍서(薨逝)하셨습니다. 양대비(兩大妃)께서 홀로 머물러 읍혈(泣血)하시니, 이것은 마음이 아파 행하는 날을 늦출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재궁(梓宮)은 더디게 환궁할 수 없으며, 양전(兩殿)께서도 오래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조정(朝廷)에서도 예의상 마땅히 급히 맞아야지 더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들으니, 초8일에 성복(成服)하고, 11일에 환궁한다는 말이 있으며, 또 듣건대 17일로 미루어 정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음양(陰陽)을 구기(拘忌)13350) 하는 말이며, 그 술수(術數)를 팔아먹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에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처리하는 것을 이치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찌 길흉(吉凶)의 말을 따라 대체(大體)를 불계(不計)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르기를, ‘상사(喪事)는 나아감은 있어도 미루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여름철이니, 천연(遷延)하는 사이에 대우(大雨)가 갑자기 이르면 교량(橋梁)이 협착한데, 이때엔 무슨 계책으로 시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양전(兩殿)께서 납시어 계신 행궁(行宮)은 낮고 좁아 천기(天氣)가 점점 더우면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오히려 또 불안하거든 더구나 재궁(梓宮)의 곁에서이겠습니까? 죽음(粥飲)을 들지 않으시고 곡음(哭泣)이 끊이지 않으시니, 만일 이로 인하여 병이 되시면 비록 택일을 하더라도 일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주군(州郡)에서는 공돈(供頓)하는데 피곤하고 역기(驛騎)는 전명(傳命)하는 데 지쳤으니, 또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11일에 출발하면 14일에 낙생역(樂生驛)에 도착할 것이니, 3, 4일을 머무르면 17일은 바로 길일(吉日)입니다. 이날에 성빈(成殯)하는 것도 무방(無妨)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기(禁忌)해야 하면 수일을 더 미루어 길일을 정할 때를 기다리는 것도

○司憲府持平李復善在溫陽，上書曰：
 臣扈從三殿，到溫井，皇天不弔，大王大妃遽爾薨逝。兩大妃獨留泣血，此心痛不可徐行日也。梓宮不可遲還，兩殿不可久留。朝廷禮當急迎，不可緩也。昨者聞初八日成服、十一日還宮之言，又聞十七日退定之言。此必陰陽拘忌之言，有以售其術也。然事有緩急，處之要當於理，豈可從吉凶之說，不計大體乎？古云：“喪事有進而無退。”今夏令方行，遷延之間，大雨忽至，橋梁狹窄，當此之時，不知何策以施。且兩殿所御行宮湫隘，天氣漸熱，雖在常時，尚且不安，況此梓宮之側？粥飲不御，哭泣不絕，如或因此成疾，則雖擇日，何益於事哉？州郡困於供頓，驛騎斃於傳命，亦非細事也。若十一日發還，十四日到樂生驛，留止三四日，則十七日乃吉日矣。是日成殯，亦恐無妨。如又禁忌，加留數日，以待卜吉，亦可也。樂生距京都不遠，雖留數日，供辦不難，一舉而兩全矣。上以書諭之曰：“爾所啓之事，予非不商確，勢出於不得已耳。”

	<p>옹습니다. 낙생(樂生)은 경도(京都)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비록 수일을 머물더라도 공판(供辦)이 어렵지 않아 한 가지 일로서 두 가지를 온전히 얻을 것 [一舉而兩全]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글로써 유시(諭示)하기를, “그대가 아뢰었던 일을 내가 상확(商確)하지 않음이 아니나, 형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왔다.”</p> <p>하였다.</p>	
<p>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4월 7일 (기사) 4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입조(入朝)하는 사신의 입고 먹는 절차(節次)에 관한 일. (…) 1. 음주(飲酒)는 취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마시고, 예궐(詣闕)할 때와 사연(賜宴)할 때에는 술을 마시되 평상시와 같이 마시며 미란(迷亂)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할 것.</p>	<p>○禮曹啓: “入朝使臣服食節次。(…) 一, 飲酒不至於醉, 詣闕時、賜宴時, 飲酒如常, 然不至迷亂。</p>
<p>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4월 13일(을해) 1번째기사</p>	<p>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가 와서 아뢰기를, “신체(身體)를 조절하고 보호하는 것은 향온(香醞)13357) 과 같은 것이 없으니, 청컨대 조금 드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최질(衰絰) 중에 어찌 차마 술을 마시겠는가? 그것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p> <p>하였다.</p>	<p>○乙亥/領敦寧尹壕來啓曰: “調保身體, 莫如香醞, 請少進之。” 傳曰: “衰絰之中, 安忍飲酒? 其勿更言。”</p>
<p>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4월 14일(병자) 4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에게 하서(下書)하기를, “행궁(行宮)이 편안치 못함을 내가 매우 진려(軫慮)한다. 초야(草野)의 차고 더움이 맞지 않으니, 기혈을 조절하여 보호하는 데는 향온(香醞)만 같은 것이 없는 까닭으로 소주(燒酒) 10병(瓶)을 올리니, 경은 나의 지극한 회포를 몸받아 양전(兩殿)께 청하여 드시도록 하라.”</p> <p>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이 인하여 아뢰기를, “성상께서 수라를 드시지 않으시고, 또 향온(香醞)을 드시지 않으시니 원컨대 얼마 동안은 약주(藥酒)를 드소서.”</p>	<p>○下書右議政洪應曰: 行宮未安, 予甚軫慮。 草野寒暖不中, 節宣調護, 無如香醞, 故進燒酒十瓶。 卿體予至懷, 請進于兩殿。” 領議政鄭昌孫因啓曰: “上不進膳, 又不進香醞。 願暫進藥酒。” 傳曰: “居喪, 安有飲酒之理? 當於卒哭後飲之。”</p>

	<p>하니, 전교하기를, “거상(居喪)에 어찌 음주(飲酒)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마땅히 졸곡(卒哭) 후에 마시겠다.” 하였다.</p>	
<p>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4월 18 일(경진) 2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이 양전(兩殿)의 명을 받들어 치계(馳啓)하기를, “이제 이극배(李克培)로 인하여, 주상(主上)께서 행궁(行宮)이 편안치 못함으로써 수라(水刺)를 적게 드시고 또 대신(大臣)이 향온(香醞)을 드시기를 청하여도 듣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본시 마실 수가 없는데, 거듭 주상의 말을 어길까 하여 이미 소주(燒酒)를 마시고, 향온(香醞)을 권진(勸進)합니다. 특히 대신(大臣)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소망도 더욱 간절하니, 빌건대 지극한 정(情)을 따라 수라(水刺)와 향온(香醞)을 때때로 드시도록 하소서.” 하니, 즉시 홍응(洪應)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경(卿)의 아힘으로 인하여, 내교(內敎)를 자세히 알았다. 내가 비록 먹는 것이 많지 않으나 조식(朝夕)으로 때를 잃는 데에 이르진 않았고, 또 술을 먹지 못하며 질병(疾病)이 없으므로, 대신(大臣)이 여러 번 술을 들도록 청하였어도 아직 윤후(允兪)하지 않았으나, 이에 내교를 받들어 만약에 마땅히 마실 때가 있으면 때때로 마시려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양전(兩殿)에게 아뢰라.” 하였다.</p>	<p>○右議政洪應承兩殿之命， 馳啓曰： “今因李克培， 知主上以行宮未安， 罕進水刺， 且大臣請進香醞， 不聽。 我輩本不能飲， 重違主上之言， 已服燒酒， 勸進香醞。 非特大臣， 我輩所望尤切。 乞勉循至情， 水刺、香醞， 以時許進。 卽下書于洪應曰： 今因卿啓， 備悉內敎。 予食雖不多， 朝夕不至失時， 又不能飲， 且無疾病， 大臣累請進酒， 尙不允兪， 今承內敎， 若有當飲之時， 則以時進服爲意， 以此啓兩殿。</p>
<p>성종 153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4월 27 일(기축)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광릉(光陵)의 제례(祭禮)는 의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어미[母]를 부모(父墓)에 부장(祔葬)하면, 3년 안은 그 아버지를 아울러 제사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이 어찌 다 예문(禮文)에 의하였겠습니까? 다만 인정(人情)의 부득이한 데서 나왔을 뿐이나, 국휼(國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상(喪)은 세종(世宗)의 앞에 있었고 세종(世宗)을 그 능(陵)에 합장(合葬)하였으니, 그 때에 3년 동안 같이 제사[併祭]한 것은 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왕(大王)의 상(喪)으로써 왕후(王后)를 병제(併祭)</p>	<p>○禮曹啓：“光陵祭禮， 多有可疑。 士大夫家， 以母祔葬于父墓， 則三年內， 多有併祭其父者， 此豈盡依禮文？ 特出於人情之不得已爾。 國恤則不然。 昭憲王后之喪， 在世宗之前， 而世宗合葬于其陵。 其時三年內併祭， 此則宜矣。 何者？ 以大王之喪， 而併祭王后， 於禮爲順， 且幽明雖異， 而王后爲世宗</p>

하였으니, 예(禮)에 순(順)함이 되고 또 유명(幽明)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왕후(王后)는 세종(世宗)을 위하여 응당 참취(斬衰) 3년의 복(服)을 입어야 할 것인 즉, 병제(併祭)할 즈음에 흉례(凶禮)를 순용(純用)하여도 좋으나, 이제는 대행 대비(大行大妃)의 상(喪)이 세조(世祖)의 뒤에 있어서 왕비(王妃)의 상(喪)으로써 대왕(大王)을 병제(併祭)하니, 인정(人情)으로 인연하여 이를 말하면, 비록 편하더라도 예(禮)로는 불순(不順)함이 됩니다.

가령 조식(朝夕)의 상식(上食)을 대왕(大王)과 병제(併祭)하여서 만약 길복(吉服)을 쓰면 경이하게 쇠질(衰絰)을 벗을 수가 없고, 만약 흉복(凶服)을 쓰면 흉례(凶禮)를 대왕에게 추후하여 쓸 수가 없으니, 예(禮)에 있어서나 형편에 있어서 크게 방해(防礙)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연제(練祭)13379) 와 상제(祥祭)13380) 의 두 제사를 또한 대왕에게 행함은 더욱 근거되는 것이 없으니, 별도로 정자각(丁字閣)을 지어서 두 제사에 길흉(吉凶)을 각각 쓰는 것이 예(禮)에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금(古今)으로 제왕(帝王)은 합장(合葬)한 자가 매우 많으니, 이른바 예문(禮文)이란 시대마다 각각 부동(不同)합니다.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널리 고제(古制)를 상고하게 한 뒤에, 널리 의논하여 시행하셔야지 용이(容易)하게 논의하여 정함은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예조(禮曹)에서 아뢰는 것이 의견에 어떠한가?”

하였다.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상인(常人)의 일로써 말하면, 부모(父母)가 무덤을 한가지로 하면, 또한 아울러 제사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국가의 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헌 왕후(昭憲王后)께서는 세종(世宗)의 앞에 있어서 조식(朝夕)으로 아울러 제사함도 마땅하나, 이제는 왕후(王后)의 상(喪)이 선왕(先王)의 뒤에 있으니, 순전히 흉례(凶禮)만을 씀은 불가(不可)합니다. 더구나 광릉(光陵)의 정자각(丁字閣)을 옮기어 설치함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應服斬衰三年，則併祭之際，純用凶禮，可也。今則大行王妃之喪，在世祖之後，而以王妃之喪，併祭大王。緣人情言之，雖便，而於禮，爲不順。假令朝夕上食，併祭大王，而若用吉服，不可輕脫衰絰，若用凶服，則不可追用凶禮於大王，於禮於勢，似大防礙。且練、祥二祭，亦行大王，尤爲無據，別作丁字閣，兩祭各用吉凶，於禮爲便。然古今帝王合葬者甚多，所謂禮文，代各不同。令弘文館，博考古制後，廣議施行，不可容易論定。”

傳于承政院曰：“禮曹所啓，於意何如？”承旨等啓曰：“以常人之事言之，父母同塋，則亦有併祭者，國家之事，不然。昭憲王后在世宗之前，朝夕併祭，宜矣。今則王后之喪，在先王之後，不可純用凶禮也。況光陵丁字閣移設，似不可。”傳曰：“予亦以爲難也。將問於領敦寧以上。

	<p>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또한 어렵다고 생각하나, 장차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묻겠다.” 하였다.</p>	
<p>성종 154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5월 1일 (임진)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충훈부(忠勳府)에서 아뢰기를, “신 등은 엎드려 듣건대, 성상의 몸이 편치 못하다고 하시니 놀랍고 두려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의 한 몸은 종사(宗社)에 관계되므로 염려하지 아 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고기를 올리게 하고 조리하며 보호하소서. 예(禮) 에, ‘상중(喪中)에 병이 있으면 육즙(肉汁)을 마신다.’는 글이 있으며, 또 우리 세종(世宗)께서도 복(服) 중에 병이 있었으므로 졸곡(卒哭) 전에 고기를 올리 게 하였으니, 조종(祖宗)께서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러하였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병은 상(床)에 누워서 신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식상(食傷)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내 나이가 아직 30이 못되었는데 반드시 고기를 먹은 뒤에야 몸을 조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대저 병은 시초에 삼가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전하께서 는 부귀(富貴)한 환경에서 탄생하고 자랐으므로 만약 고기 반찬이 아니면 반 드시 병이 날 것인데, 더구나 병환(病患)이 나셨으니 더욱 마땅히 권도(權道) 에 따라 신민(臣民)의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소서. 날을 달로 계산하면 27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내 병이 심하지 아니하니 경(卿) 등은 말하 지 말라. 나를 여릉왕(廬陵王)·창읍왕(昌邑王)13392) 으로 만들려는가?” 하였다. 정창손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p>	<p>○議政府、六曹、忠勳府啓曰：“臣等 伏聞上體未寧，不勝驚恐。 殿下一身， 係于宗社，不可不念。 請進肉調保。 《禮》有居喪有疾。 飲肉汁之文，且 我世宗在服有疾，未卒哭而進肉，祖宗 豈無所見而然耶？” 傳曰：“予病非臥床 呻吟，特傷於食而發耳。 予年未三十， 不必進肉，然後可調保也。” 昌孫等又 啓曰：“凡病不謹於始，則終難治療。 殿下生養富貴，若非肉膳，必生疾病， 況當不豫，尤宜從權，以副臣民之望。 以日易月，則二十七日，已過矣。” 傳 曰：“予豈不思乎？ 予病不劇，卿等勿 言。 卿等以予爲廬陵、昌邑王乎。” 昌孫等固請不得。</p>
<p>성종 154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p>	<p>임금이 슬퍼하여 병이 나니,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육조(六曹)의 당상 관(堂上官)이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p>	<p>○癸巳/上哀毀違豫， 議政府、忠勳 府、六曹堂上問安， 仍啓曰：“殿下，</p>

<p>(成化) 19년) 5월 2일 (계사) 1번째기사</p>	<p>“전하께서는 위로 모후(母后)가 계시고 아래로 신민(臣民)이 있는데 비록 스스로 몸을 아끼지 않으시더라도 어찌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禮)에 ‘병이 있으면 육즙(肉汁)을 써서 그 반찬을 돕는다.’고 하였고, 우리 조정의 세종(世宗)·세조(世祖)께서도 초상(初喪)에 계시면서도 일찍이 권도(權道)에 따랐으니, 원하건대 신 등의 말을 힘써 따르시어 양전(兩殿)13393) 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민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경(卿) 등의 청하는 것이 비록 간절하더라도, 내 병이 심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아직 강장(強壯)할 때이므로, 비록 육즙(肉汁)이 아니더라도 손상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더구나 세종·세조의 일은 오늘과 다르니 다시 말하지 말라.”</p> <p>하였다. 곧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정창손 등이 또 아뢰기를,</p> <p>“지금 성상의 몸이 편치 않으시니, 청컨대 단오(端午)에는 빈전(殯殿)에 거둥하지 마소서. 그리고 육즙(肉汁)을 올리지 못하게 하시면 향온(香醞)13394)을 조금 올리게 하여 기체(氣體)를 조섭(調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단오 제사는 경(卿) 등의 말에 따라 정지하겠으며, 향온은 내가 본래 마시지 못하나 근간에 양전(兩殿)의 전교를 받들어, 때로 조금씩 마신다.”</p> <p>하였다.</p>	<p>上有母后，下有臣民，縱不自愛，可不念宗社大計乎？況《禮》：‘有病則用肉汁，以助其饌。’我朝世宗、世祖在初喪，亦嘗從權。願勉從臣等言，以慰兩殿之心，以副臣民之望。”傳曰：“卿等請之雖懇，予病未甚，年尚強壯，雖非肉汁，自知無傷也。況世宗、世祖之事，則異於今日矣，其勿更言。”固請不已，上不許。昌孫等又啓曰：“今上體不安，請端午勿幸殯殿。肉汁不得進，則宜小進香醞，以調氣體。”傳曰：“端午祭，從卿等言停之。香醞，則予本不能飲，然頃承兩殿之教，時且小飲矣。”</p>
<p>성종 154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5월 3일 (갑오) 1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좌찬성(左贊成) 서거정(徐居正)·병조 판서(兵曹判書) 권감(權臧)·우참찬(右參贊) 이극증(李克增)이 문안하자, 전교하기를,</p> <p>“증세가 감함이 없다.”</p>	<p>○甲午/領議政鄭昌孫、左議政尹弼商、左贊成徐居正、兵曹判書權臧、右參贊李克增問安。傳曰：“證(候)〔候〕無減。”昌孫等啓曰：“上體未</p>

	<p>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기체(氣體)가 병으로 편치 못하신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증세가 감함이 없으니, 청킨대 육즙(肉汁)을 올리게 하여 조리하고 보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병은 기거(起居) 동작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육즙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찌 갑자기 낫겠는가?” 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전하의 한 몸은 종묘·사직에 관계되므로 한갓 작은 예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증세가 만약 깊어지면 비록 치료하려고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신 등의 말한 바는 역시 예문(禮文)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기를 먹는 것은 마음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 아랫사람이 들으면 모두 말하기를, ‘주상께서도 이미 고기를 먹었다.’고 하여 모두 본받을 것이니 그러면 몸소 실천하면서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도리에 어찌 되겠는가? 내가 먼저 고기를 먹고는 중국 사신을 대하여 거짓으로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는 자기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예문(禮文)에 이른바, ‘병이 나오면 처음과 같이 한다.’는 말은, 반드시 병이 심한 것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대저 상(喪)을 당하게 되면 기운과 몸이 여위고 약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주어 부지(扶持)하게 한 것인데, 만약 초상에 고기를 먹고 몸을 조리해 보호하면 어찌 지팡이를 짚을 필요가 있겠는가? 되풀이하여 생각하건대 마음에 미안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p>	<p>寧已久，證(候)〔候〕無減。請進肉汁調保。”傳曰：“予病非不能起居，雖食肉汁，豈能遽爾平善乎？”昌孫等啓曰：“殿下—身，係宗廟社稷，不可徒守小節。證候若深，雖欲治療，得乎？臣等所言，亦是禮文所在。”傳曰：“食肉非徒未安於心，群下聞之，則皆謂：‘主上亦已食肉’，必皆效之，躬行率下之道，何居？予先自啖肉，而對天使，陽爲不食，是自欺而欺天也。禮文所謂：‘疾止復初’之語，必指病劇而言也。大抵居喪，氣體瘦弱，故授杖，而扶持之。若於初喪，食肉調保，則何必扶杖？反復思之，未安於心，其勿復言。”昌孫等固請不得。</p>
<p>성종 154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5월 3일</p>	<p>가승지(假承旨) 이유인(李有仁)이 양전(兩殿)의 전교를 받들고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들건대 재상(宰相)이 고기를 올리도록 청하였으나, 주상이 굳이 거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두통(頭痛)과 식상(食傷)의</p>	<p>○假承旨李有仁承兩殿之教，來啓曰：“今聞‘宰相請進肉，上固拒不許’，予謂‘頭痛食傷之證，非輕。’凡疾病當</p>

<p>(갑오) 3번째기사</p>	<p>증세는 가볍지 않다고 여깁니다. 대저 병은 마땅히 때에 미쳐서 치료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약 깊고 중한 데 이르면 약으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병이 그치면 처음과 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우선 허락하여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그치면 무엇이 옳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세종의 상중에 세조께서 병 때문에 고기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세조는 대군(大君)으로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더구나 주상의 한 몸은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이니, 원컨대 주상은 《예경(禮經)》과 조종(祖宗)의 일을 상고하여 힘써 따르시오.”</p> <p>하였는데,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여석(金礪石)에게 명하여 양전(兩殿)에 회답해 아뢰기를,</p> <p>“신(臣)이 현재 약을 먹고 있으니, 5, 6일을 기다려서 낫지 아니하면 신이 마땅히 고기를 먹겠습니다.”</p> <p>하였다. 양전(兩殿)에서 전교하기를,</p> <p>“주상께서 약을 먹고 낫지 아니한 뒤에 육즙(肉汁)을 올리게 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픔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행 대비께서 평상시에 항상 주상의 평안을 원하셨는데, 이제 만약 고기를 올리게 하면 하늘에 계시는 영혼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청컨대 우리의 말을 따르시오.”</p> <p>하고, 또 이유인(李有仁)을 보내어 청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p> <p>“주상께서 고기를 올리게 한 뒤에 오도록 하라.”</p> <p>하였는데, 이유인이 이를 갖추어 아뢰자, 임금이 이유인으로 하여금 양전(兩殿)에 복명하게 하기를,</p> <p>“내교(內敎)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신이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p> <p>하였다.</p>	<p>及時治療，若至於深重，則難以救藥。況古人云：‘疾止復初’，今姑許之，待其病愈而止，奚爲不可？在昔世宗之喪，世祖以病進肉。世祖以大君，猶若是，況主上一身，係于宗社？願主上考《禮經》及祖宗之事，勉從之。”命右副承旨金礪石，復于兩殿曰：“臣今方服藥，待五六日，猶未差愈，則臣當食肉。”兩殿教曰：“主上服藥未差，然後欲進肉汁，不勝痛心。大行大妃，平時常以主上平善爲願。今若進肉，在天之靈，亦必爲喜。請從予言。”又遣李有仁請之，仍教曰：“主上進肉，而後來也。”有仁具以啓，上令有仁，復于兩殿曰：“內敎至此，臣豈敢違？”</p>
<p>성종 154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p>	<p>좌참찬(左參贊) 이승소(李承召)가 병으로 사직장(辭職狀)을 올리자, 임금이 내의(內醫)에게 명하여 진찰하게 하였는데, 위태로운 증세가 많았다. 전교하기</p>	<p>○左參贊李承召，以病上狀辭職。上命內醫謬視，多危證。傳曰：“參贊病</p>

<p>(成化) 19년) 5월 10일(신축) 5번째기사</p>	<p>를, “참찬(參贊)의 병이 심하니 술과 고기를 하사하여, 개소(開素)13425) 하게 하라.” 하였다.</p>	<p>甚, 其賜酒肉開素。”</p>
<p>성종 154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5월 12일(계묘)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 병은 나아지고 있으며 내일은 문종(文宗)의 기신(忌辰)13429) 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고기 반찬을 올리지 말게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양전(兩殿)과 대신들이 굳이 청한 뒤에 고기를 올렸는데, 이제 조금 나오시더라도 비위(脾胃)의 병은 모름지기 육즙(肉汁)을 써서 조리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비위가 상하여 고기 먹는 것을 중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졸곡(卒哭) 전에도 연달아 올릴 수 있는가? 내 병이 이미 나왔으니 내일 이후로는 고기를 올리지 말라. 더구나 예문(禮文)에, ‘병이 나오면 처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다.</p>	<p>○癸卯/傳于承政院曰: “予疾向愈, 明日文宗忌辰也。 自今以後, 勿進肉膳。” 承政院啓曰: “兩殿及大臣固請, 然後進肉。 今雖小愈, 脾胃之證, 須用肉汁以調之。” 傳曰: “若言脾胃有傷, 不可輟肉, 則卒哭以前, 其可連進歟? 予疾已愈, 明日以後, 勿進肉, 況《禮》文有疾止復初之語乎?”</p>
<p>성종 154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5월 13일(갑진) 1번째기사</p>	<p>양전(兩殿)이 가승지(假承旨) 손비장(孫比長)을 보내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주상께서 문종(文宗)의 기신(忌辰)이므로 고기 반찬을 올리지 못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주상의 몸이 아직 평온하지 못하신데 갑자기 육즙(肉汁)을 중지하게 하면 다른 증세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를 보내어 양전(兩殿)에 답하기를, “신의 병이 이미 나왔으므로 명령에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양전(兩殿)이 전교하기를, “비위(脾胃)의 병은 고기가 아니면 치료하지 못하는데 병이 만약 점점 심해지면 약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주상께서 16일에 친히 제사</p>	<p>○甲辰/兩殿遣假承旨孫比長來啓曰: ‘今聞主上以文宗忌辰, 不進肉膳。 卽今上體未盡平和, 遽輟肉汁, 恐生他證。’ 上遣都承旨李世佐, 復于兩殿曰: “臣疾已愈, 不得從命。” 兩殿教曰: “脾胃之病, 非肉不療。 病若轉劇, 又不可以藥餌治也。 予等初聞主上十六日親祭之語, 猶以爲慮, 及聞進素膳, 非獨予輩, 朝廷大臣, 豈不驚慮乎? 肉汁不可不進。” 上又遣左承旨</p>

	<p>하신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염려하였는데 소선(素膳)13430) 을 올린다는 말을 듣자 우리들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들이 어찌 놀라고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또 좌승지(左承旨) 김세적(金世勳)을 보내어 아뢰기를, “신의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비위의 병은 쉽게 갑자기 낫는 것이 아닌데, 만약 다 나은 뒤에 고기 먹는 것을 중지하려고 하면 중지할 만한 때가 없습니다. 요즘 친히 제사하고자 하는데 고기를 먹고 제사를 행하는 것이 마음에 미안합니다.”</p> <p>하였다. 양전(兩殿)에서 언서(諺書)13431) 로 답하기를, “주상의 몸이 만약 평안하시다면 우리들이 어찌 이 상사(喪事)를 가볍게 여겨서 억지로 고기를 올리게 하겠습니까? 주상께서 항상 치통(齒痛)으로 음식을 감하였고 비위가 또 상하였는데 장차 무슨 약으로 치료하겠습니까? 이제 중국 조정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주상의 몸이 만약 편치 못하시면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이겠지만 정원(政院) 대신이 어찌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주상의 몸은 종사(宗社)에 관계되니, 원컨대 조정의 뜻을 굽어 따르시어 우리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p> <p>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양전(兩殿)의 하교가 이에 이르렀으니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p> <p>하였다.</p>	<p>金世勳啓曰：“臣病已愈，脾胃之證，未易遽痊。若盡平善，而後輟肉，則無時可輟也。近日欲親祭，食肉而行祭，心所未安。”兩殿以諺書，答曰：“上體若平安，則予等豈以此喪爲輕，而強令進肉乎？主上常以齒痛減食，而脾胃又傷，將以何藥治療歟？今皇朝遣使，上體若未安，則何以待遇乎？予則不解事，政院大臣，豈不熟計乎？主上之身，關於宗社。願俯循朝廷之意，以副予等之望。”傳于承政院曰：“兩殿之教至此，不可不從。”</p>
<p>성종 154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5월 18일(기유) 3번째기사</p>	<p>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를 보내어 양전(兩殿)에게 아뢰기를, “신이 어제 내교(內敎)를 받들어 보건대, 이르기를, ‘《오례의(五禮儀)》에는 비록 「상식(上食)할 때 곡림(哭臨)13464) 한다.’는 글이 있으나 우리들이 곡(哭)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情)이 박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세조께서 승하하자 대행(大行) 대비(大妃)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은 사생(死生)이 다름이 없는데 바야흐로 음식을 올리고 부르짖고 곡하면 신(神)이 편안히 흠</p>	<p>○上遣都承旨李世佐啓兩殿曰：“臣昨承內教云：‘《五禮儀》，「雖有上食，哭臨」之文，我輩不哭，非情薄而然也。昔世祖升遐，大行大妃以謂：「人之死生無異，方上食而號哭，則神其安饗乎？故只哭朝、夕奠，而三時上</p>

향(歎響)하겠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조석전(朝夕奠)에만 곡을 하고 삼시 상식(三時上食)에는 곡을 양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행 대비께서 평시에 곡성(哭聲) 듣기를 싫어하셨으므로 우리들이 대행 대비의 본의(本意)를 체득하여 온양(溫陽)에 있을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만 곡을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예(禮)를 폐할 수 없으므로 삼시 상식에 모두 곡을 하고자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행 대비께서 세조를 위하시는 마음이 어찌 적었겠습니까? 그 곡(哭)하는 것을 싫어하여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禮)는 인정에 따르고 일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 귀한데 때가 아닌 곡(哭)을 하는 것과 평시에 듣기 싫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이 비록 애통한 정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컨대 대행 대비의 본의에 따르소서. 또 이제 바야흐로 흑심한 더위에 양전(兩殿)께서 오시(五時)로 곡림(哭臨)하시면 신의 마음이 아프고 절박할 뿐만 아니라 신하와 서민이 누가 슬퍼하고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양전(兩殿)이 전교하기를,
 “당초 상식에 곡을 하지 아니한 것은 대행 대비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常時)로 곡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식 때에는 신(神)의 마음이 편하시기를 바라서 곡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승지(都承旨)가 와서 전하기를, ‘상식하는 삼시의 곡은 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릉(山陵)에 나아갈 날이 매우 가까운데 어찌 조석전(朝夕奠)에만 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상이 우리가 빈전 곁에서 항상 곡하는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대행 대비의 본의를 체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이세좌(李世佐)를 보내어 다시 아뢰기를,
 “곡(哭)은 비록 감히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지극하면 읍(泣)13465)을 하는 것인데 하필 소리를 내어 곡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보건대, 시녀(侍女)가 부르짖으며 곡(哭)하는 것이 지나쳐서 양전(兩殿)으로

食，則無哭。且大行平時，惡聞哭聲，予等體大行本意，自在溫陽，只哭於朝夕。但今思之，禮不可廢，欲於三時上食，皆哭焉。’ 臣意，大行大妃爲世祖之心，亦豈少哉？非惡其哭，而不爲也。禮順人情，事貴得宜，況非時之哭，平時所惡聞乎？今欲行之，是雖哀痛之情，不能自己。願遵奉大行本意。且今方炎熱，兩殿五時哭臨，非獨臣心痛切，臣庶孰不痛悶？” 兩殿教曰：“當初不爲上食哭者，遵大行大妃之意也。然常時哭不絕聲，故上食時，則冀安神心，不哭。今都承旨來傳云：‘上食三時之哭，不可爲也。’ 然赴山陵之日甚近，豈可哭止朝、夕奠而已哉？主上慮予在殯側，常常號哭，故欲予體大行本意耳。” 上又遣世佐復啓曰：“哭雖不敢止，哀至則泣，何必出聲而哭？昨日見侍女號哭過度，致使兩殿，尤增悲慟。今當炎熱，固宜節哀。願勉抑至情。” 兩殿教曰：“今考禮文，不可以一身之故，廢萬世常行之禮。且山陵期逼，哀痛之情，自不能禁，未敢從命。初在溫陽，只哭朝、夕奠，予等之過也。”

	<p>하여금 더욱 슬픔을 더하게 하니, 이제 흑심한 더위를 당하여 슬픔을 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컨대 지극한 정을 힘써 억제하소서.”</p> <p>하니, 양전(兩殿)에서 전교하기를, “이제 예문(禮文)을 상고하건대, 일신의 까닭으로써 만세에 떳떳하게 행하는 예를 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산릉으로 가는 기일이 가까와 애통한 정을 스스로 금할 수 없으므로 감히 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처음 온양에 있을 적에 조석전(朝夕奠)에만 곡을 한 것은 우리들의 과실입니다.”</p> <p>하였다.</p>	
<p>성종 154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5월 19일(경술) 3번째기사</p>	<p>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를 보내어 양전(兩殿)에 아뢰기를, “양전(兩殿)께서 온양에 계실 때에 조석전(朝夕奠)에만 곡(哭)을 한 것은 대행 대비의 뜻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문(禮文)에 따라 상식(上食)에 곡을 하고자 하시지만 일은 경중이 있는 것인데 어찌 대행 대비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대신에게 물어서 행하소서.”</p> <p>하였는데, 양전(兩殿)이 전교하기를, “성밖에다 빈전(殯殿)을 만든 것은 행궁(行宮)이 고요하지 못하므로 주상과 멀리 한 것인데 조정에서 모두 잘못이라고 하며 누(累)가 주상에게 미친다고 하니, 이제 생각하면서 뉘우친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당초에 슬픈 정을 스스로 금하지 못한데다 부녀(婦女)의 무지(無知)한 소치로 일마다 예(禮)에 어긋났으며, 또 상식의 곡(哭)마저 폐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상께서 여러 번 염려하시니 내가 몸둘 곳이 없습니다.”</p> <p>하였다. 이세좌가 다시 아뢰기를, “대행 대비의 본의를 어기지 마시고 주상의 청을 힘써 따르소서.”</p> <p>하니, 양전(兩殿)에서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힘써 따르겠다.”</p>	<p>○上遣都承旨李世佐啓兩殿曰：“兩殿在溫陽，只哭於朝、夕奠者，奉大行大妃之意也。今從禮文，欲哭於上食，然事有輕重，其可不遵大行本意乎？請問大臣，而行之。”兩殿教曰：“於城外成殯，以行宮不靜，欲其遠於主上也。朝廷皆以爲非，累及主上，今乃思之，悔其可追乎？當初哀戚之情，自不能禁，婦女無知，事事違禮，又廢上食之哭，甚不可，故復爲之。以予之故，主上屢爲動念，予措躬無地。”世佐更啓曰：“毋違大行本意，勉從主上之請。”兩殿教曰：“然則當勉從。”</p>

<p>성종 155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6월 6일 (정묘) 1번째기사</p>	<p>하였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길보(李吉甫)가 졸(卒)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길보가 집이 가난해서 상장(喪葬)하는 일을 반드시 많이 꺾(闕)했을 것입니다.” 하니, 특별히 곱(槨) 하나와 유둔(油菴)13565) 3, 지(紙) 80권(卷), 쌀·콩 아울러 15석(碩)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p>	<p>○丁卯/京畿觀察使李吉甫卒。 承政院啓曰：“吉甫家貧，喪葬之事，必多闕焉。 命特賜槨一、油菴三、紙八十卷、米豆并十五碩。”</p>
<p>성종 155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6월 13일(갑술) 1번째기사</p>	<p>임금의 몸이 편치 못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이 와서 아뢰기를, “요즈음 고기를 올리지 않아 병이 나셨으니, 청컨대 다시 고기를 잡수시어 몸을 돌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몸이 마침 편치 못하여 몸소 우제(虞祭)를 행하지 못해서 한(恨)됨이 망극(罔極)한데, 어찌 감히 고기를 먹겠는가?”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다시 아뢰기를, “위로는 양대비(兩大妃)가 계시고 아래로는 군신(群臣)과 백성(百姓)이 있으니, 고기를 잡수시고 위 아래가 원하는 바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병이 심하지 않은데 어찌 차마 먹을 수 있겠으며, 더구나 혼전(魂殿)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한 어찌 고기를 먹으면서 제사(祭祀)를 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甲戌/上體未寧。 領議政鄭昌孫來啓曰：“近不進肉，以致違豫。 請更進肉節宣。” 傳曰：“予身適不寧，未得躬行虞祭， 茹恨罔極， 安敢食肉乎?” 昌孫更啓曰：“上有兩大妃， 下有群臣百姓， 不可不進肉， 以副上下之望。” 傳曰：“病不深重， 安可忍食? 況欲詣魂殿， 又安可食肉， 而行祭乎?”</p>
<p>성종 155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6월 13일(갑술)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혼전(魂殿)의 의주(儀註)를 올렸는데, 조석 상식(朝夕上食)에 모두 곡(哭)이 있었다. 임금이 묻기를, “빈전(殯殿)에만 곡(哭)하고 조석전(朝夕奠)을 올리는데, 혼전(魂殿)의 조석 상식(朝夕上食)에 모두 곡(哭)이 있는 것은 어찌서인가?” 하니,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비록 예문(禮文)에 그렇다 하더라도 성상께서 어떻게 재단(裁斷)하시느냐에</p>	<p>○禮曹進魂殿， 儀註， 朝夕上食， 皆有哭。 上問曰：“殯殿則只哭朝夕奠而魂殿， 則朝夕上食， 皆有哭， 何也?” 禮曹啓曰：“雖禮文如此， 在上裁如何耳。” 上又問曰：“卒哭前， 大君等當在何處?” 禮曹啓曰：“魂殿則吉殿也，</p>

	<p>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졸곡(卒哭) 전에 대군(大君)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니,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혼전(魂殿)은 길전(吉殿)인데 최복(衰服)13670) 을 입고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며 또 사저(私邸)로 물러갈 수도 없으니, 마땅히 대궐 안에 거처하면서 졸곡(卒哭)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예조(禮曹)에서 마땅히 예(禮)의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행할 만하면 행할 것 이지 어찌 임금이 재단하여야 한다고 말하느냐? 혼전(魂殿)의 상식(上食)에 곡(哭)이 없으면 대군(大君)들은 대궐안에 거처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또 아뢰기를, “상식(上食)할 때 곡(哭)하는 절차가 비록 예문(禮文)에는 실려 있으나, 행할 수 없습니다. 대군(大君)이 바야흐로 최질(衰絰)중에 있으니, 마땅히 상차(喪 次)에 거처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곡(哭)하는 절차는 없어야 한다. 대군(大君)들은 사제(私第)에 물러가 있다가 제사(祭祀)하는 날 나아가는 것이 옳다.” 하였다.</p>	<p>不可衰服，而入處，又不可退私邸，當處闕內，以待卒哭也。”傳曰：“禮曹當酌禮之輕重，取其可行而行之，何乃謂之上裁乎？魂殿上食無哭，則大君等不必處闕內也。”禮曹又啓曰：“上食時哭節，雖載禮文，不可行也。大君方在衰絰，宜居喪次。”傳曰：“哭節可無也。大君等退處私第，祭日則進焉，可也。”</p>
<p>성종 155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6월 16 일(정축) 9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듣건대, 성상의 몸이 파리하고 약해서 육즙(肉汁)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예(禮)에 이르기를, ‘존장(尊長)이 권하면 감히 사양할 수 없 다.’ 하였으니, 신 등의 말은 들을 것이 없습니다만, 양 대비(兩太妃)의 전교 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친히 우제(虞祭)를 행하는 것도 청건대 멈 추소서.”</p>	<p>○領議政鄭昌孫等啓曰：“臣等聞 ‘上體羸弱，肉汁不可不進。’ 禮云：‘尊長勸之，則不敢辭。’ 臣等之言，不足聽，兩太妃之教，不可不從。親行虞祭，亦請停之。” 會金礪石回自景福宮，兩殿勸肉之教甚切，上傳于承政院曰：</p>

	<p>하였다. 때마침 김여석(金礪石)이 경복궁(景福宮)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양전에서 고기를 권하는 전교(傳敎)가 매우 간절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p> <p>“지금 양전의 전교가 매우 엄하여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으니, 지금 마땅히 고기를 올리고, 내일의 친제(親祭)도 멈추도록 하라.”</p> <p>하였다.</p>	<p>“今兩殿之教甚嚴，予不敢拒。 今當進肉，明日親祭，亦停之。”</p>
<p>성종 155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6월 14일(을해) 3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충훈부(忠勳府)·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p> <p>“성상의 몸이 좋아지신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육즙(肉汁)을 거두었으니, 청컨대 다시 올리도록 하소서. 또한 태경전(泰慶殿)의 우제(虞祭)에 만일 병을 참으면서 몸소 행하신다면, 지금 매우 더운 때를 당하여 다른 증세가 일어날까 염려스러우니, 청컨대 멈추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가 처음 대고(大故)를 듣고서 갑자기 마음에 놀라고 인하여 먹은 것이 체하고 머리가 아픈 증세가 있었는데, 그때에 양전(兩殿)과 대신(大臣)이 억지로 육즙(肉汁)을 권하므로 내가 마지 못하여 따랐다. 지금은 내 병이 심한 데에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 차마 고기를 먹겠는가? 친제(親祭)하는 것을 병이 낫기를 기다린다면 행할 만한 때가 없을 것이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p> <p>“질병은 마땅히 처음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니, 만일 심해진다면 약으로써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만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생각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제(虞祭)를 행하지 못한 것이 많지만, 우선 좋아지시기를 기다린 뒤에 친행(親行)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원컨대 신들의 말을 들어서 조정(朝廷)의 바라는 바에 따라 주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議政府、六曹、忠勳府、宗親府啓曰：“上體平善未久，而遽輟肉汁。 請復進。 且泰慶殿虞祭， 若強疾親行， 則今當酷熱， 恐生他證。 請停之。” 傳曰：“予初聞大故， 心忽驚動， 因而有食傷頭痛之證。 其時兩殿及大臣， 強勸肉汁， 予不得已從之。 今則予病不至深重， 豈忍食肉乎？ 親祭若待病愈， 則無時可行矣。” 又啓曰：“疾病固當謹之於始， 若深重， 則難以救藥。 殿下縱不顧一身， 獨不念宗社大計乎？ 且虞祭未行者尚多， 姑待平善， 而後親行， 猶未晚也。 願聽臣等之言， 以副朝廷之望。” 傳曰：“予少時得暑疾， 每遇酷熱， 其證復作， 此上黨君所知也。 予之得此病， 其來久矣， 豈以此小證， 復進肉汁乎？ 親祭， 亦豈可輕廢乎？ 卿等已知予意， 何強之乃爾。” 又啓曰：‘古云病加於小愈’， 不可以此爲</p>

	<p>“내가 어렸을 때에 서질(暑疾)13671) 을 얻어 언제나 심한 더위를 만나면 그 증세가 다시 일어나니, 이것은 상당군(上黨君)이 알고 있는 바이다. 내가 이 병을 얻은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어찌 이러한 작은 증세로 다시 육즙(肉汁)을 먹겠으며, 또한 친제(親祭)를 어찌 가볍게 폐하겠는가? 경(卿)들은 이미 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어찌 억지로 이렇게 하는가?”</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병이 조금 나은 데에서 더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병이 나으면 처음과 같이 한다는 것은 예문(禮文)에 분명(分明)한데, 만일 좋아하신다면 어찌 감히 억지로 아뢰겠습니까? 우제(虞祭)는 또한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들은 나의 병이 심할 때 고기를 권하고 병이 나아갈 때 또한 고기를 권하니,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어느 때에 있겠는가? 경들은 나로 하여금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여릉왕(廬陵王)·수(隋)나라양제(煬帝)와 같이 되라고 하는가? 친제(親祭)만 우선 멈추라.”</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성상의 몸이 편치 못하여도 고기를 올리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영혼이 또한 어찌 편안하겠습니까?”</p> <p>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p>	<p>輕也。且疾止復初，禮文分明，若平善，則何敢強啓乎？虞祭，尤不可力疾而行也。”傳曰：“卿等，當予病劇時勸肉，病歇時亦勸肉，然則不食肉，在何時乎？卿等以予爲廬陵王、隋煬帝乎？但親祭姑停之。”又啓曰：“上體未寧，猶不進肉，大行在天之靈，亦豈安乎？”竟不許。</p>
<p>성종 155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6월 16일(정축) 8번째기사</p>	<p>가승지(假承旨) 손비장(孫比長)이 양전(兩殿)의 전교(傳敎)를 받아와서 아뢰기를, “주상(主上)의 서증(暑證)이 바야흐로 심한데도 육선(肉膳)을 끊은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외인(外人)이 누가 주상의 편치 못함을 모르고서 성의(誠意)가 박(薄)하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성의가 후하고 박한 것은 육선(肉膳)을 올리고 올리지 않는데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비위(脾胃)가 상하면 증세가 날로</p>	<p>○假承旨孫比長承兩殿之敎，來啓曰：“主上暑證方甚，而輟肉已久，外人孰不知主上之未寧，而以爲誠意之薄乎？且誠意之厚薄，不係於肉之進、不進也。脾胃有傷，證日益深，雖欲救藥，不可及也。”兩殿因命比長，必得請乃</p>

	<p>더욱 심해질 것이니 비록 약(藥)으로 구하고자 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양전(兩殿)이 손비장(孫比長)에게 명하여 반드시 허락을 얻고서 물러 나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여석(金礪石)을 보내어 양전(兩殿)에 아뢰기를,</p> <p>“양전(兩殿)에 생각하심이 여기에 이르니 신은 마땅히 고기를 먹어야하고, 병(病)이 나면 고기를 먹는 것이 비록 무방할 것 같지만, 다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려는 것입니다. 신은 지금 병이 심하지도 않은데 바로 고기를 먹으면, 무슨 면목으로 대신을 보겠습니까? 비록 근신(近臣)을 대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에 부끄럽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기를 먹었으니, 이것이 더욱 마음 아픈 바입니다.”</p> <p>하였다.</p>	<p>退。上乃遣同副承旨金礪石，復于兩殿曰：“兩殿動念至此，臣當食肉，有疾食肉，雖似無妨，但居喪不食肉，欲不知滋味也。臣今病未甚，而便食肉，何面目見大臣乎？雖對近臣，亦自內愧。臣自初至今，食肉不輟，此尤所痛心也。”</p>
<p>성종 155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6월 27일(무자) 4번째기사</p>	<p>임금이 노사신(盧思愼)을 경복궁(景福宮)으로 보내어 육선(肉膳)을 양전에게 올릴 것을 권하게 하니, 양전이 전교하기를,</p> <p>“졸곡이 이미 지났으나, 그 날짜를 계산한다면 백일(百日)이 되지 않았으니, 어찌 차마 고기를 먹겠는가?”</p> <p>하였다.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p> <p>“졸곡(卒哭) 후에 고기를 올리는 것은 예문(禮文)에 실려 있으니, 비단 한 때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전일 주상(主上)께서 편찮으실 때에 양전(兩殿)께서 권하여 육즙(肉汁)을 올리게 하기를 간곡하게 반복하였는데, 지금 마땅히 그 뜻을 미루어 생각하시고 주상의 정성을 본받아 힘써 따르소서.”</p> <p>하니, 양전(兩殿)이 전교하기를,</p> <p>“우리들이 대행 대비(大行大妃)를 위해서 효(孝)를 행하는 일로서, 이것이 아니면 그밖에 한 바가 없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p> <p>하자, 노사신이 청함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임금이 다시 좌의정(左議政)</p>	<p>○上遣盧思愼于景福宮，勸進肉膳于兩殿，兩殿教曰：“卒哭已過，然計其日數，則未滿百日，安忍食肉？”思愼啓曰：“卒哭後進肉，載在禮文，非但一時之事。況前日主上違豫之時，兩殿勸進肉汁，反覆曲陳，今當追想其意，體主上之誠，勉從之。”兩殿教曰：“予等爲大行大妃行孝之事，非此則餘無所爲，勿更言之。”思愼不得請而來，上復遣左議政尹弼商，啓曰：“卒哭後進肉，自先王朝，已行之矣。以誠孝言之，則非特百日，雖滿三年，猶爲不足，臣以病先食肉，兩殿如此，則</p>

	<p>윤필상(尹弼商)을 보내어 아뢰기를, “졸곡 뒤에 고기를 올리는 것은 선왕조(先王朝)부터 이미 행했던 일입니다. 성효(誠孝)로 말하면 백일뿐만 아니라 비록 3년이 다 찬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한데, 신은 병으로 먼저 고기를 먹었으니, 양전(兩殿)께서 이같이 하신다면 신이 어찌 감히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p> <p>하였으나, 양전이 그래도 들어주지 않았다. 윤필상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명령을 받들고 위임받아 왔는데, 만일 청을 이루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복명(復命)하겠습니까? 더구나 주상께서 편치 아니하여 옥체(玉體)가 파리하고 약한데, 지금 만일 청을 이루지 못한다면 걱정하는 증세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비록 혹 법에 어그러짐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곡종(曲從)13696 하여 그 마음을 위안해 주셔야 하는데, 더구나 예(禮)에 당연한 것이겠습니까?”</p> <p>하자, 양전(兩殿)이 굳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주상(主上)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한는 정성이야 우리들이 3년 동안 행하고 싶은 정(情)과 어찌 다르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또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과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을 보내어 함께 나아가서 굳이 청하게 하였으나, 양전이 허락하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마땅히 백일을 기다려서 다시 청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臣豈敢安心乎?” 兩殿猶不聽。 弼商更啓曰：“臣承命委來，若不獲請，則將何以復命？ 況主上違豫，玉體羸弱，今若不得請，則恐有心勞之證。 臣意以爲‘雖或有違於法，尙當曲從以慰其心，’ 況禮所當然者乎?” 兩殿固拒之曰：“主上勸我食肉之誠，與予等欲行三年之情，庸何異乎?” 上又遣領議政鄭昌孫與弼商、思愼，俱進固請，兩殿不許，傳曰：“當俟百日，更請。”</p>
<p>성종 156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7월 2일 (임진) 2번째기사</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동하여 하마연(下馬宴)13719 을 베풀었다. 임금이 중문(中門)에 이르니, 두 사신이 청사(廳事)에 맞아들여 고두(叩頭)하고 꿇어앉아 말하기를, “전하께서 더위를 무릅쓰고 오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上幸(太平館) [太平館] , 設下馬宴。 上至中門，兩使迎入廳事，叩頭跪曰：“殿下冒熱而來，動勞動勞。” 上曰：“皇恩至重，不知勞熱。 且賓主之禮，安敢廢也。” 兩使欲去卓上花，</p>

	<p>“황제의 은혜가 매우 중하니, 더위에 괴로운 줄 모르겠고. 또 빈주(賓主)의 예(禮)를 어찌 감히 그만둘 수 있겠소?”</p> <p>하였다. 두 사신이 탁자 위의 꽃을 치우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상복을 입었으나, 대인(大人)은 꽃을 치울 것 없소.”</p> <p>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도 본토(本土)의 백성인데, 어떻게 차마 꽃을 주위에 두겠습니까?”</p> <p>하고, 드디어 치웠다. 두 사신이 몸소 어좌(御座)를 들어 북쪽 가까운 곳으로 옮겨놓고, 또 먼저 주정(酒停)13720) 에 가서 잔을 들고 말하기를, “청컨대 전하께서 정면하여 서소서. 우리가 마땅히 먼저 술을 바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기는 공관(公館)인데,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겠소?”</p> <p>하자, 상사(上使)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토(本土)의 백성이므로 이 예(禮)를 행하려 하니, 원컨대 가없이 여겨 주소서.”</p> <p>하니, 임금이 마지못하여 그대로 따랐다. 상사가 먼저 쌍배(雙杯)를 바치고, 임금도 쌍배로 답하였으며, 부사(副使)도 그렇게 하였다. 오산군(烏山君)이주(李澍)가 술을 돌릴 때에 상사가 ‘전하께서 먼저 받으소서.’라고 청하므로 임금이 사양하였으나, 두 사신이 굳이 청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두 사신이 일어나 중문(中門)까지 나와서 공경히 전송하였고, 임금이 도승지(都承旨)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남아서 두 사신에게 인정(人情)13721) 을 주게 하였는데, 각각 아청 목면 원령(鴉青木綿圓領) 1개, 초록주 겹탑호(草綠紬袂搭胡) 1개, 대홍주 남요선 겹철릭(大紅紬藍腰線袂帖裏) 1개, 백저포 철릭(白苧布帖裏) 1개, 백초 삼아(白綃衫兒) 1개, 백초 단고(白綃單袴) 1개, 흑초림(黑草笠) 1개, 백첩선(白疊扇) 30자루[柄], 안구마(案具馬) 1필(匹), 사장부 유석(四張付油席) 4장(張), 인삼(人蔘) 20근(斤), 호초(胡椒) 12근이고, 두목(頭目) 41</p>	<p>上曰：“予雖服喪， 大人不宜去花。”</p> <p>兩使曰：“我等亦本土小民， 何忍帶花？” 遂去之。 兩使親執御座， 移設近北， 又先詣酒亭執杯曰：“請殿下正面而立。 俺等當先進酒。” 上曰：“此是公館， 何敢如此？” 上使曰：“我等土民， 故欲行此禮， 願垂矜憐。” 上不得已從之。 上使先進雙杯， 上亦酬雙杯， 副使亦如之。 烏山君澍行酒， 上使請殿下先之， 上讓之， 兩使固請， 上從之。 兩使起， 祇送于中門， 命留都承旨李世佐， 贈人情于兩使。 各鴉青木綿圓領一、草綠紬袂搭胡一、大紅紬藍腰線袂帖裏一、白苧布帖裏一、白綃衫兒一、白綃單袴一、白鹿皮挾金起子靴氈精黑斜皮套鞋具一、黑草笠一、白疊扇三十柄、鞍具馬一匹、四張付油席四張，人蔘二十斤、胡椒十二斤、頭目四十一人、各柳青紬單帖裏一、黑草笠一、白疊扇五柄。</p>
--	---	--

	<p>인에게는 각각 유청주 단철릭(柳靑紬單帖裏) 1개, 흑초립 1개, 백첩선 5자루 이었다.</p>	
<p>성종 156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7월 9일 (기해)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두 대비(大妃)께서 한 번 태경전(泰慶殿)에 가서 상식(上食)하려 하시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을 불러 의논하라.” 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이 의논하기를, “대행 대비(大行大妃)께서 영창전(永昌殿)에서 친히 제사하신 전례가 이미 있는데, 더구나 태경전은 문소전(文昭殿)의 예(例)와 달라서 빈전(殯殿)과 마찬가지로, 상식(上食)에 따라 제사를 지내셔도 무방합니다.”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兩大妃欲一詣泰慶殿上食，召領敦寧以上議之。領議政鄭昌孫等議：“大行大妃，於永昌殿親祭，已有前例，況泰慶殿，非文昭殿之例，與殯殿一體，因上食行祭，不妨。”</p>
<p>성종 156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7월 11일(신축) 3번째기사</p>	<p>임금이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우의정(右議政) 윤필상(尹弼商)·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를 보내어 두 대비전(大妃殿)에 육선(肉膳)을 들도록 청하니, 두 대비가 전교하기를, “우리가 졸곡(卒哭) 뒤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심을 다할 길이 없으므로 듣지 않는 것이니, 경(卿)들은 이 뜻을 잘 아뢰고 다시 와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다시 정창손 등을 보내어 두 대비에게 아뢰기를, “백일이 이미 지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였으나, 두 대비가 그래도 들어주지 않았다. 또 충훈부(忠勳府)·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과 정창손 등을 보내어 함께 육선을 들도록 청하니, 두 대비가 전교하기를, “우리가 본래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려 하였는데, 이제 주상(主上)께서 재상을 시켜 굳이 청하시므로 마지못하여 따르겠으나 다만 오늘과 내일은 봉선사에서 재를 올리므로 바야흐로 계금(戒禁) 중이니, 모래에는 상교(上敎)를 따르겠다.” 하였다.</p>	<p>○上遣領議政鄭昌孫、右議政尹弼商、都承旨李世佐，請兩大妃殿(肉)進[肉]膳，兩大妃傳曰：“予等非不知卒哭後食肉也，然非此，則無所效其誠心，故不聽。卿等善啓此意，更勿來請。”上更遣昌孫等，啓兩大妃曰：“百日已過，何至如此乎?”兩大妃猶不聽。又遣忠勳府、六曹堂上與昌孫等，共請進，兩殿傳曰：“予等本欲終三年，不食肉，今者主上，使宰相強請，不得已從之。但今日，則設齋於奉先寺，方在戒禁，明明日則當從上敎。”</p>

<p>성종 156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7월 22 일(임자) 5번째기사</p>	<p>광평 대군(廣平大君)의 집에 쌀과 콩 아울러 20석(碩)을 내렸는데, 대행 왕비(大行王妃)를 그 집에 빈렴(殯斂)하였기 때문이다.</p>	<p>○賜廣平大君家米、豆并二十碩，以大行王妃，殯于其第也。</p>
<p>성종 156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7월 24 일(갑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甲寅/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57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8월 5일 (을축)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상식(上食)하는 데 참여하였다. 처음에 어가(御駕)가 승화문(承華門) 밖에까지 왔으나 그때까지 문이 열려 있지 않아 임금이 연(輦)에서 머무른 지 얼마 뒤에야 문이 열렸다. 병조 좌랑(兵曹佐郎) 권통(權通)을 의금부에 회부하여 국문하도록 명하였다.</p>	<p>○乙丑/上詣泰慶殿，上食。初駕至承華門外，門猶未開，上駐輦，良久乃開。命下兵曹佐郎權通于義禁府，鞠之。</p>
<p>성종 157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8월 11 일(신미) 1번째기사</p>	<p>(...) 임금이 말하기를, “한확 재상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기 때문에 대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대인이 말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다. 상사가 일어나 나가려 하니, 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선물[人情]으로써, 연사폭 유둔(連四幅油氈) 3사(事), 연육폭 유둔(連六幅油氈) 4사(事), 유안룡(油鞍籠) 2부(部), 사의(蓑衣) 1부, 채화석(彩花席) 20장(將), 백록피(白鹿皮) 3장, 대록피(大鹿皮) 2장, 입모(笠帽) 80사(事), 작석차[雀舌茶] 6두(斗), 활[弓] 1장(張), 대전(大箭) 1부(部), 이마 제연(理馬諸緣) 2부, 흑마포 직령(黑麻抱直領) 1, 흑마포 칠릭(黑麻布帖裏) 1, 백저포 칠립(白苧布帖裏) 2, 마피화 투혜구(馬皮靴套鞋具) 1, 마(馬) 1필(匹), 궁사건복구(弓矢韃服具) 1부(部), 호피(狐皮) 4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표피(豹皮) 4장을 주고, 두목(頭目)들에게는 각각 흑마포(黑麻布) 4필(匹), 백저포(白苧布) 1필, 선자(扇子) 3과(把)를 주었다. 상사(上事)가 임금 앞에 나아가 고두(叩頭)하고 사례하며 임금께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굳이 사양하</p>	<p>(...) 上曰：“韓確宰相，有先知，故依托大人矣。大人不言，予安知此事乎？”上使起立欲出，命都承旨李世佐，贈人情連四幅油氈三事、連六幅油氈四事、油鞍籠二部、蓑衣一部、彩花席二十張、白鹿皮三張、大鹿皮二張、笠帽八十事、雀舌茶六斗、弓一張、大箭一部、理馬諸緣二部、黑麻布直領一、黑麻布帖裏一、白苧布帖裏二、馬皮靴套鞋具一、馬一匹、弓矢韃服具一部、狐皮四十張、雜彩花席十張、豹皮四張，頭目各賜黑麻布四匹、白苧布一匹、扇子三把。上使就上前叩頭，謝請上陞座，上固讓，不得</p>

	<p>다가 마지못해 따랐다. 상사가 연이어 술을 두 잔씩 올리며 임금이 잔을 돌리니, 상사가 말하기를,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먹을 수가 없으니,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하고, 고두하면서 사양하고 나아갔다.</p>	<p>已從之。上使連進杯雙，上回杯，上使曰：“身不和喫不得，只飲一杯，”叩頭辭出。</p>
<p>성종 157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8월 18 일(무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 상식(上食)에 나아갔다.</p>	<p>○戊寅/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57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8월 18 일(무인) 3번째기사</p>	<p>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한찬(韓僎)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北京)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였는데, 백관들이 표문(表文)에 배례(拜禮)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따로 진헌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자면주(紫綿紬) 30필, 녹면주(綠綿紬) 30필, 대홍면주(大紅綿紬) 20필, 황면주(黃綿紬) 20필, 다갈면주(茶褐綿紬) 25필, 유청면주(柳靑絨紬) 25필, 초록면주(草綠綿紬) 20필, 수록면주(水綠綿紬) 10필, 자면포(紫絨布) 20필, 녹면포(綠綿布) 20필, 대홍면포(大紅綿布) 20필, 황면포(黃綿布) 20필, 다갈면포(茶褐綿布) 20필, 유청면포(柳靑綿布) 20필, 초록면포(草綠綿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30필, 저사 겸직포(苧絲兼織布) 10필, 백저포 삼아(白苧布衫兒) 30건(件), 흑마포 삼아(黑麻布衫兒) 50건, 중앙 연석(中樣硯石) 5사(事), 갑구 소양 연석(匣具小樣硯石) 20사, 갑구 용향 원묵(匣具龍香圓墨) 1백 홀(笏), 용향 장묵(龍香長墨) 1백 홀, 삼사 도자(三事刀子) 10부(部), 오사 도자(五事刀子) 50부, 대양 단도(大樣單刀) 1백 파(把), 중앙 단도(中樣單刀) 2백 파, 상아 파찬 화채장 단도(象牙靶鑽花彩粧單刀) 13파, 강궁(強宮) 15장(張), 중궁(中弓) 15장, 약궁(弱弓) 10장, 대 고도리(臺古都里) 20지(枝), 두언 고도리(豆彥古都里) 1백 지, 소 고도리(小古都里) 60지, 거리전(巨里箭) 60지, 서보자전(西甫子箭) 60지, 상품 백후지(上品白厚紙) 5권(卷), 중품 백후지(中品白厚紙) 5권, 우골 호로(牛骨葫蘆) 1백 류(流), 황양목 호로(黃楊木葫蘆) 1백류, 진호로 소적(眞</p>	<p>○遣同知中樞府事韓僎，奉表如京師，賀聖節，百官拜表如儀。別進獻物件。紫綿紬三十四，綠綿紬三十四，大紅綿紬二十四，黃綿紬二十四，茶褐綿紬二十五匹，柳靑絨紬二十五匹，草綠綿紬二十四，水綠綿紬十匹，紫絨布二十四，綠綿布二十四，大紅綿布二十四，黃綿布二十四，茶褐綿布二十四，柳靑綿布二十四，草綠綿布二十四，白細苧布三十四，苧絲兼織布一十四，白苧布衫兒三十件，黑麻布衫兒五十件，中樣硯石五事，匣具小樣硯石二十事，匣具龍香圓墨一百笏，龍香長墨一百笏，三事刀子十部，五事刀子五十部，大樣單刀一百把，中樣單刀二百把，象牙靶鑽花彩粧單刀十三把，強弓十五張，中弓十五張，弱弓十張，臺古都里二十枝，豆彥古都里一百枝，小古都里</p>

	<p>葫蘆小的) 30류, 진호로 표아(眞葫蘆標兒) 1백 개, 호아아각용두(虎牙兒刻龍頭) 80류(流), 장아아각용두(獐牙兒刻龍頭) 1백 류, 산양각각용두(山羊角刻龍頭) 1백 류, 각양 수낭아(各樣繡囊兒) 20개, 각양 구낭아(各樣扣囊兒) 20개, 각양 첩낭아(各樣貼囊兒) 20개, 호로침가아(葫蘆針家兒) 20개, 침가아(針家兒) 1백 개, 가대아(茄袋兒) 20류(流), 청고아(靑瓜兒) 3백 류, 고아(鼓兒) 50류, 연화아(蓮花兒) 20류, 능각아(菱角兒) 20류, 청구아(靑鳩兒) 50류, 녹압아(綠鴨兒) 50류, 관음제(觀音臍) 5백 류, 세교문합(細巧文蛤) 5백 류, 회합(回蛤) 5백 류, 반합(班蛤) 5백 류, 세교문합·회합·관음제 모두 일괘(一掛) 1백 류, 체비(鬚篋) 5백 과, 화면선(畫面扇) 3백 과, 원과 각양 화면서(圓靶各樣畫面扇) 1백 과, 초서피(貂鼠皮) 5백 장(張), 토표피(土豹皮) 30장, 상아조각채장 과산출수용필가(象牙雕刻彩粧巴山出水龍筆架) 1좌(座), 상아조각채장 사자필가(象牙雕刻彩粧獅子筆架) 1좌, 상아조각채장 각양 인물 조수 화과 합아 춘성 삼층 사계과 합아(象牙雕刻彩粧各樣人物鳥獸花果盒兒春盛三層四季果盒兒) 1개, 사층용 합아(四層龍盒兒) 1개, 해당화 합아(海棠花盒兒) 2개, 화과 합아(花果盒兒) 3개, 칠층 화과 영모 춘성(七層花果翎毛春盛) 1개, 수초금어은정 합아(水草金魚銀錠盒兒) 2개, 고하방해 요자 합아(枯荷螃蟹要子盒兒) 1개, 금조 화과 합아(禽鳥花果盒兒) 2개, 모란화 합아(牡丹花盒兒) 3개, 화과 요자 합아(花果腰子盒兒) 3개, 화과 영모 합아(花果翎毛盒兒) 3개, 인물 고사 방승 합아(人物故事方勝盒兒) 2개, 화과 영모 팔각 합아(花果翎毛八角盒兒) 1개, 운룡 서우각 합아(雲龍犀牛角盒兒) 2개, 화구 합아(花區盒兒) 2개, 초수 상아(草獸廂兒) 1개, 화과 합아(花果盒兒) 2개, 보상화회문쇄구 합아(寶相花回文鎖口盒兒) 1개, 상아 조각 채장 각양 완희아 수와와(象牙雕刻彩粧各樣玩戲兒睡娃娃) 4건(件), 와와와(耍娃娃) 4건, 진보파사(進寶波斯) 4건, 회회(回回) 4건, 판귀(判鬼) 3건, 선인(仙人) 3건, 소화상(笑和尚) 3건, 향동(香童) 3건, 파사(波斯) 4건, 질교와와(趺交娃娃) 4건, 토아(兔兒) 4건, 수주병(壽酒瓶) 4건, 파사 기린</p>	<p>六十枝, 巨里箭六十枝, 西甫子箭六十枝, 上品白厚紙五卷, 中品白厚紙五卷, 牛骨葫蘆一百流, 黃楊木葫蘆一百流, 眞葫蘆小的三十流, 眞葫蘆鬚兒一百箇, 虎牙兒刻龍頭八十流, 獐牙兒刻龍頭一百流, 山羊角刻龍頭一百流, 各樣繡囊兒二十箇, 各樣扣囊兒二十箇, 各樣貼囊兒二十箇, 葫蘆針家兒二十箇, 針家兒一百箇, 茄袋兒二十流, 靑瓜兒三百流, 鼓兒五十流, 蓮花兒二十流, 菱角兒二十流, 靑鳩兒五十流, 綠鴨兒五十流, 觀音臍五百流, 細巧文蛤五百流, 回蛤五百流, 班蛤五百流, 細巧文蛤、回蛤、觀音臍共一掛一百流, 鬚篋五百把, 畫面扇三百把, 圓靶各樣畫面扇一百把, 貂鼠皮五百張, 土豹皮三十張, 象牙雕刻彩粧巴山出水龍筆架一座, 象牙雕刻彩粧獅子筆架一座, 象牙雕刻彩粧各樣人物鳥獸花果盒兒春盛三層四季果盒兒一箇, 四層龍盒兒一箇, 海棠花盒兒二箇, 花果盒兒三箇, 七層花果翎毛春盛一箇, 水草金魚銀錠盒兒二箇, 枯荷螃蟹要子盒兒一箇, 禽鳥花果盒兒二箇, 牡丹花盒兒三箇, 花果腰子盒兒三箇, 花果翎毛盒兒三箇,</p>
--	---	---

	<p>(波斯麒麟) 3건, 초재(招財) 3건, 회회기린(回回麒麟) 3건, 사자(獅子) 4건, 해홀(獬笏) 4건, 쇠모사자(刷毛獅子) 3건, 녹(鹿) 3건, 용(龍) 4건, 금섬(金蟾) 4건, 인원의마(人猿意馬) 4건, 향로(香鑪) 4건, 상아 조각 채장 각양 인물 조수 팔보 화초 조괘(象牙雕刻彩粧各樣人物鳥獸八寶花草弔掛) 모양마다 3류(流), 구학 경수 화분(龜鶴慶壽花盆)·사상백화(獅象百花)·인마평안(人馬平安)·백사대길(百事大吉)·산선봉수(散仙捧壽)·과사봉주(波斯捧珠)·팔보인물 봉수성인물 포로인물(八寶人物鳳壽星人物飽老人物)·팔보인물 해당화 각양 요희인물(八寶人物海棠花各樣要戲人物)·팔보인물 오색용전 각양화초 춘분(八寶人物五色絨纏各樣花草春盆) 모양마다 4분(盆), 보암모란화(寶鴨牧丹花)·하화(荷花)·금어하화(金魚荷花)·교초(交草)·영지초(靈芝草)·수하화(獸荷花)·계칙 절간금 각양 조환제휴(鷄鶻鐵金各樣條環提携) 모양마다 5부(副), 수초어 조환제휴(水草魚條環提携), 모란화 조화 제휴(牧丹花條環提携)·사룡 조환제휴(獅龍條環提携)·화과 조환제휴(花果條環提携)·마 조환제휴(馬條環提携)·철간금 각양 구자(鐵鑄金各樣鉤子) 모양마다 5과(把), 번신수 구자(番身獸鉤子)·초수 구자(草獸鉤子)·천록장춘 구자(天鹿長春鉤子)·하화 계칙 구자(荷花鷄鶻鉤子)·행화아 구자(杏花鷄鶻鉤子)·각양 흑칠라진 대소 합아(各樣黑漆螺鈿大小盒兒) 30개, 등개(燈蓋) 10개, 관음제문합 반합 회합 산적(觀音臍文蛤班蛤回蛤散的) 1궤(櫃), 화은(花銀) 5백냥(兩), 타주선추아(打做扇墜兒) 각양(各樣)으로 32, 금려지(錦荔枝) 19개, 서교침과(鼠咬蛄瓜) 19개, 토(兔) 19개 호(虎) 19개, 녹(鹿) 19개, 상(象) 19개, 해홀(獬笏) 19개, 사자(獅子) 19개, 서식향과(鼠食香瓜) 19개, 원(猿) 19개, 고사자(古獅子) 19개, 마(馬) 19개, 사자곤수구(獅子袞繡毬) 19개, 묘(猫) 19개, 하아(蝦兒) 19개, 어(魚) 19개, 쌍어(雙魚) 19개, 사과(沙果) 19개, 하화연봉(荷花蓮蓬) 19개, 호로(葫蘆) 19개, 도(桃) 19개, 선(船) 19개, 을엽주(乙葉舟) 18개, 섬(蟾) 18개, 쌍사자 곤수구(雙獅子袞繡毬) 18개, 영지토(靈芝兔) 18개, 묘희서(猫戲鼠) 18개, 쌍양(雙羊) 18개, 구(狗) 18개, 방해(螃蟹) 18개,</p>	<p>人物故事方勝盒兒二箇, 花果翎毛八角盒兒一箇, 雲龍犀牛角盒兒二箇, 花區盒兒二箇, 草獸廂兒一箇, 花果盒兒二箇, 寶相花回文鎖口盒兒一箇, 象牙雕刻彩粧各樣玩戲兒睡娃娃四件, 要娃娃四件, 進寶波斯四件, 回回四件, 判鬼三件, 仙人三件, 笑和尚三件, 香童三件, 波斯四件, 跌交娃娃四件, 兔兒四件, 壽酒瓶四件, 波斯麒麟三件, 招財三件, 回回麒麟三件, 獅子四件, 獬笏四件, 刷毛獅子三件, 鹿三件, 龍四件, 金蟾四件, 人猿意馬四件, 香鑪四件, 象牙雕刻彩粧各樣人物鳥獸八寶花草弔掛每樣三流, 龜鶴慶壽花盆、獅象百花、人馬平安、百事大吉、散仙捧壽、波斯捧珠、八寶人物鳳壽星人物飽老人物、八寶人物海棠花各樣要戲人物、八寶人物五色絨纏各樣花草春盆每樣四盆, 寶鴨牧丹花、荷花、金魚荷花、交草、靈芝草、獸荷花、鷄鶻鐵鑄金各樣條環提携每樣五副, 水草魚條環提携、牧丹花條環提携、獅龍條環提携、花果條環提携、馬條環提携、鐵鑄金各樣鉤子每樣五把, 番身獸鉤子、草獸鉤子、天鹿長春鉤子、荷</p>
--	--	--

	<p>화람(禾籃) 18개, 쌍원(雙猿) 18개, 쇠아(耍兒) 21개, 어아(魚兒) 18개, 중소호로(中小葫蘆) 각 18개, 와와(娃娃) 18개, 구아(鳩兒) 18개, 원앙(鴛鴦) 18개, 소아(梳鴉) 18개, 압아(鴨兒) 18개, 중소합아(中小蛤兒) 각 18개, 가대아(茄袋兒) 18개, 능각아(菱角兒) 18개, 고아(苺兒) 18개, 침가아(針家兒) 18개, 표아(瓢兒) 22개, 장아(獐牙) 16개, 산양각(山羊角) 18개, 도아소아(桃牙銷兒) 18개, 낭아(囊兒) 18개, 섭아(鑷兒) 18개, 녹대포(鹿大脯) 15속(束), 녹편포(鹿片脯) 2백 개, 건문어(乾文魚) 2백 미(尾), 건대구어(乾大口魚) 3백 미, 건전복어(乾全腹魚) 2백 속(束), 건오적어(乾烏賊魚) 8백 미, 건광어(乾廣魚) 2백 미, 건수어(乾秀魚) 2백 미, 곤포(昆布) 2백 근(斤), 탑사마(塔士麻) 2백 근, 해의(海衣) 1백 근, 해채이(海菜耳) 1백 근, 향점(香簞) 1백 근, 홍소주(紅燒酒) 10병, 백소주(白小註) 10병, 송자(松子) 2백근, 인삼(人蔘) 50근이었다.</p>	<p>花鸚鵡鉤子、杏花鸚鵡鉤子、各樣黑添螺鈿大小盒兒三十箇，燈蓋一十箇，觀音臍文蛤班蛤回蛤散的一櫃，花銀五百兩，打做扇墜兒各樣三十二，錦荔枝十九箇，鼠咬話瓜十九箇，兔十九箇，虎十九箇，鹿十九箇，象十九箇，獬笏十九箇，獅子十九箇，鼠食香瓜十九箇，猿十九箇，古獅子十九箇，馬十九箇，獅子袞繡毬十九箇，猫十九箇，蝦兒十九箇，魚十九箇，雙魚十九箇，沙果十九箇，荷花蓮蓬十九箇，葫蘆十九箇，桃十九箇，船十九箇，乙葉舟十八箇，蟾十八箇，雙獅子袞繡毬十八箇，靈芝兔十八箇，猫戲鼠十八箇，雙羊十八箇，狗十八，箇螃蟹十八箇，花藍十八箇，雙猿十八箇，耍兒二十一箇，魚兒十八箇，中小葫蘆各十八箇，娃娃十八箇，鳩兒十八箇，鴛鴦十八箇，梳鴉十八箇，鴨兒十八箇，中小蛤兒各十八箇，茄袋兒十八箇，菱角兒十八箇，苺兒十八箇，鼓兒十八箇，針家兒十八箇，瓢兒二十二箇，獐牙十六箇，山羊角十八箇，桃牙銷兒十八箇，囊兒十八箇，鑷兒十八箇，鹿大脯十五束，鹿片脯二百箇，乾文魚二百尾，乾大口魚三</p>
--	---	---

		<p>百尾, 乾全鰻魚二百束, 乾烏賊魚八百尾, 乾廣魚二百尾, 乾秀魚二百尾, 昆布二百斤, 塔土麻二百斤, 海衣一百斤, 海菜耳一百斤, 香簞一百斤, 紅燒酒十瓶, 白燒酒十瓶, 松子二百斤, 人參五十斤。</p>
<p>성종 157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8월 20일(경진) 7번째기사</p>	<p>(…) 상사가 이세좌에게 말하기를, “두목 등이 천산(千山) 만수(萬水)를 넘고 건너 고생하면서 온 것은 조그마한 이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제 만일 가지고 온 물건을 모두 판매하지 못하고 도로 싣고 돌아가게 된다면 어찌 가련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토표피(土豹皮)·호피(狐皮)·호초(胡椒)·황백담(黃白蠟)·산달피(山獺皮)·인삼 등 물건은 관(官)에서 무역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므로, 이세좌가 그로써 아뢰니, 영둔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토록 하였다.</p>	<p>(…) 上使語李世佐曰：“頭目等，千山萬水，辛苦而來者，欲得尺寸之利也。今若所齎之物，未畢販賣，還載而歸，則豈非可憐？須以土豹皮、狐皮、胡椒、黃白蠟、山獺皮、人參等物，官爲貿易。”世佐以啓，命議于領敦寧以上。</p>
<p>성종 157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8월 21일(신사) 4번째기사</p>	<p>무과(武科)에 급제한 민난손(閔蘭孫)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의 외조모(外祖母) 강씨(康氏)는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질병에 침면(沈綿)13926) 하여 항상 신의 어머니에게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일찍이 신의 아버지 민한(閔欄)이 멀리 창성(昌城) 임소(任所)로 부임해 갈 때 조모의 나이가 칠순(七旬)이 넘었는데 병환이 더욱 위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버지가 가노(家奴)의 상경하는 편에 녹포(鹿脯)와 건치(乾雉)를 가지고 두 포대[帑]에 나누어 담아 조모에게 보내었는데, 사헌부(司憲府)에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은 헌부(憲府)의 위엄에 겁을 내어 거짓 자백하여 말하기를, ‘본가(本家)에서 실어왔다.’고 하였으므로, 헌부에서 신의 아버지를 나치(拿致)하여 의금부(義禁府)에 이첩하여 국문하면서 계속 하여 형장(刑杖)으로 신문했으므로 신의 아버지도 거짓 자백하여 장(杖) 70대의 벌을 받고 제명(除名)이 되어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명(聖明)이 위에 계신 때를 당하여 진정을 펼 수 없어 애매하게 처벌을 받았으니, 신은 그욕이 가슴이 아픔</p>	<p>○武科及第閔蘭孫上書曰： 臣之外祖母康氏，早寡沈綿疾病，常依臣母以生。會臣父欄，遠赴昌城任所，祖母年過七旬，病益篤。臣父因家奴上京，將鹿脯、乾雉，分盛二帑，以遺祖母，爲司憲府所捕鞫。奴怕憲府之威誣，服云：“輸來本家”，憲府拿致臣父，移鞫于義禁府，繼以杖訊，臣父亦誣服，坐杖七十，除名不敘。當今聖明在上，而不能獲伸情素，曖昧坐辜，臣竊痛心。臣父所送之脯，非金帛、錢幣，固非蓄家資身之物也，且非重煩</p>

	<p>니다. 신의 아버지가 보낸 포(脯)는 금이나 비단 또는 전폐(錢幣)가 아니니, 진실로 집에 쌓아 두거나 자신의 밑천으로 삼을 것도 아니며, 또한 마소[馬牛]의 힘을 번거롭게 할 만큼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노자(奴子)가 가는 편에 보내어 늙은 조모를 먹이려고 한 것이니, 이것은 다만 일단(一段)의 노로(老老)13927)와 친친(親親)13928) 하는 지극한 정인데, 그것을 청렴하지 못하고 법을 어긴 것으로 처벌하여, 제명(除名)시켜 서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이르렀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허물을 보고도 인(仁)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사람이 어버이 때문에 오욕(汚辱)의 이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인(聖人)의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신의 지극한 정을 가없이 여기시고 특별히 신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시어 고신(告身)을 도로 주도록 허락하시고, 또 조정의 반열에 서용(敍用)하여 주소서. 지극한 소망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p> <p>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p>	<p>馬牛之力也。只因一奴之行，以餽老祖母，此特一段老老親親之至情，而坐以不廉、不法，至於除名不敍，臣實痛心。孔子曰：“觀過，知仁。”凡人以親之故，受污辱之名者，必爲聖人之所恕也。臣願憐臣至情，特恕臣父之罪，許還告身，且敍朝列，不勝至望。命議于領敦寧以上。(…)</p>
<p>성종 157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8월 22일(임오) 3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를 보내어 두 사신(使臣)에게 문안하고, 상사(上使) <정동(鄭同)에게> 말하기를,</p> <p>“토표피(土豹皮)·산달피(山獺皮)·표피(豹皮)·호피(狐皮)·황랍(黃蠟)·인삼(人蔘) 등의 물건은 본국(本國)에 저장된 것이 없으니, 후추[胡椒]로써 무역하고자 합니다.”</p> <p>하니, 상사(上使)가 대답하기를,</p> <p>“본국에 저축된 물건이 비록 하해(河海)13936)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한강물보다야 적겠습니까? 비록 천하 사람들에게 다 들려 준다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황제(皇帝)가 내게 묻기를, ‘조선(朝鮮)에 어찌 금·은(金銀)이 없겠느냐?’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먹고 있는 것이 다 황제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찌 감히 있는 것을 가지고 없다고 하여 기망(欺罔)하겠습니까? 금과 은은 본국의 소산물(所產物)이 아닙니다.’라고 하</p>	<p>○遣都承旨李世佐問安于兩天使，語上使曰：“土豹、山獺、豹、狐皮、黃蠟、人蔘等物，本國無所儲，欲以胡椒貿易。”上使答曰：“本國所蓄之物，雖不及河海，豈滅於漢江之水乎？縱使天下聞之，人無信者矣。皇帝問俺曰：‘朝鮮豈無金、銀乎？’俺對曰：‘奴之衣食，皆皇帝賜也，安敢以有爲無，而爲欺罔乎？金、銀非本國所產也。’如此周防，俺豈無功？願隨所有物貿易。”上曰：“不可不從。其令該司，貿易。”</p>

	<p>여, 이와 같이 두루 막아 주었는데, 내가 어찌 공(功)이 없다 하겠습니까? 원컨대 소유(所有)한 물건에 따라 무역(貿易)하도록 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무역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57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8월 25 일(을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乙酉/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58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9월 4일 (갑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甲午/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58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9월 12 일(임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壬寅/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58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9월 16 일(병오) 3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진헌(進獻)할 여러 가지 물건을 싸 가지고 태평관(太平館)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상사(上使)는 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고, 부사(副使)가 이세좌와 관반(館伴)14092) 노사신(盧思愼)·허중(許琮)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봉(封)을 썼다.</p> <p>그 품목은 자면주(紫綿紬) 30필, 녹면주(綠綿紬) 30필, 대홍 면주(大紅綿紬) 20필, 황면주(黃綿紬) 20필, 다갈 면주(茶褐綿紬) 25필, 유청 명주(柳靑綿紬) 25필, 초록 면주(草綠綿紬) 20필, 수록 면포(水綠綿布) 10필, 백세 저포(白細苧布) 30필, 저사겸직포(苧絲兼織布) 10필, 자면포(慈綿布) 20필, 녹면포(綠綿布) 20필, 대홍 면포(大紅綿布) 20필, 황면포(黃綿布) 20필, 다갈 면포(茶褐綿</p>	<p>○命都承旨李世佐, 齎進獻雜物, 詣太平館, 上使以病不出, 副使與世佐及館伴盧思愼、許琮共坐封裹。 紫綿紬三十四, 綠緜紬三十四, 大紅綿紬二十四, 黃綿紬二十四, 茶褐綿紬二十五匹, 柳靑綿紬二十五匹, 草綠綿紬二十四, 水綠綿布一十四匹, 白細苧布三十四, 苧絲兼織布一十四匹, 紫綿布二十四, 綠綿布二十四, 大紅綿布二十四,</p>

	<p>布) 20필, 유청 면포(柳靑綿布) 20필, 초록 면포(草綠綿布) 20필, 백저포 삼아(白苧布衫兒) 30건(件), 흑마포 삼아(黑麻布衫兒) 50건, 상품 백후지(上品白厚紙) 5권(卷), 중품 백후지(中品白厚紙) 5권(卷), 중앙 연석(中樣硯石) 5사(事), 소양 연석(小樣硯石) 20사(事), 용향 원묵(龍香圓墨) 1백 홀(笏), 용향 장묵(龍香長墨) 1백 홀(笏), 강궁(強弓) 15장(張), 중궁(中弓) 15장, 약궁(弱弓) 20장, 대고도리(臺古道里) 20지(枝), 두을언 고도리(豆乙彦古道里) 1백 지(枝), 소고도리(小古道里) 60지(枝), 거리전(居里箭) 60지, 서보자(西甫子) 60지, 우골 호로(牛骨葫蘆) 1백 류(流), 황양목호로(黃楊木葫蘆) 1백 류(流), 진호로 소적(眞葫蘆小的) 30류(流), 진호로 표아(眞葫蘆瓢兒) 1백 개(箇), 호아아 각용두(虎牙兒刻龍頭) 30류(流), 장아아 각용두(獐牙兒刻龍頭) 1백 류, 산양각 각용두(山羊角刻龍頭) 1백 류, 각양 수낭아(各樣繡囊兒) 20개, 관음제(觀音臍) 50류, 세교 문합(細巧文蛤) 5백 류, 회합(回蛤) 5백 류, 반합(斑蛤) 5백 류, 가대아(茄袋兒) 20류, 세교 문합·회합·관음제 아울러 1괘(掛) 1백 류, 각양 고낭아(各樣扣囊兒) 20류, 각양 첩낭아(各樣貼囊兒) 20개, 침가아(針家兒) 1백개, 청과아(靑瓜兒) 3백 류, 청구아(靑鳩兒) 50류, 녹압아(綠鴨兒) 50류, 능각아(菱角兒) 20류, 연화아(蓮花兒) 20류, 고아(鼓兒) 50류, 체자(鬚髭) 5백 과(把), 화면선(畫面扇) 3백 과, 원과 각양 화면선(圓靶各樣畫面扇) 1백 과(把), 삼사도(三事刀) 50부(部), 오사도(五事刀) 50부, 대양 단도(大樣單刀) 2백 과, 중앙 단도(中樣單刀) 2백 과, 상아조각 채장과산출수룡 필가(象牙雕刻彩粧巴山出水龍筆架) 3좌(坐), 상아과찬화채장 단도(象牙靶鑽花彩粧單刀) 30과 중에 대양(大樣) 10과, 중앙(中樣) 10과, 소양(小樣) 10과, 상아조각 채장사자 필가(象牙雕刻彩粧獅子筆架) 3좌, 초서피(貂鼠皮) 5백 장, 토표피(土豹皮) 30장, 상아조각 채장각양인물조수화과 합아(象牙雕刻彩粧各樣人物鳥獸花果盒兒) 춘성 매양(春盛每樣) 4개, 삼층 사계과 합아(三層四季果盒兒), 사층룡합아(四層龍盒兒), 해당화 합아(海棠花盒兒), 화과 합하(花果盒兒), 칠층 화과</p>	<p>黃絁布二十四, 茶竭絁布二十四, 柳靑綿布二十四, 草綠綿布二十四, 白苧布衫兒三十件, 黑麻布衫兒五十件, 上品白厚紙五卷, 中品白厚紙五卷, 中樣硯石五事, 小樣硯石二十事, 龍香圓墨一百笏, 龍香長墨一百笏, 強弓十五張, 中弓十五張, 弱弓二十張, 臺古道里二十枝, 豆乙彦古道里一百枝, 小古道里六十枝, 居里箭六十枝, 西甫子六十枝, 牛骨葫蘆一百流, 黃楊木葫蘆一百流, 眞葫蘆小的三十流, 眞葫蘆瓢兒一百箇, 虎牙兒刻龍頭三十流, 獐牙兒刻龍頭一百流, 山羊角龍頭一百流, 各樣繡囊兒二十箇, 觀音臍五十流, 細巧文蛤五百流, 回蛤五百流, 斑蛤五百流, 茄袋兒二十流, 細巧文蛤、回蛤、觀音臍共一掛一百流, 各樣扣囊兒二十流, 各樣貼囊兒二十箇, 針家兒一百箇, 靑瓜兒三百流, 靑鳩兒五十流, 綠鴨兒五十流, 菱角兒二十流, 蓮花兒二十流, 鼓兒五十流, 鬚髭五百把, 畫面扇三百把, 圓靶各樣畫面扇一百把, 三事刀五十部, 五事刀五十部, 大樣單刀一百把, 中樣單刀二百把, 象牙雕刻彩粧巴山出水龍筆架三坐, 象牙靶鑽花彩粧單</p>
--	---	---

	<p>영모춘성 수초금어은정 합아(七層花果翎毛春盛水草金魚銀錠盒兒), 고하방해 요자 합아(枯荷螃蟹腰子盒兒), 금조화과 합아(禽鳥花果盒兒), 모란화 합아(牡丹花盒兒) 화과요자 합아(花果腰子盒兒), 화과 영모 합아(花果翎毛盒兒), 인물 고사방승 합아(人物古事方勝盒兒), 화과영모팔각 합아(花果翎毛八角盒兒), 운룡서우각 합아(雲龍犀牛角盒兒), 화변 합아(花匾盒兒), 초수상아 보상화회문쇄 구 합아(草獸廂兒寶相花回紋鎖口盒兒), 화과 합아(花果盒兒), 상아조각 채장각 양 완희아(象牙雕刻彩粧各樣玩戲兒) 매양(每樣) 5건(件), 수와와 쇠와와 진보 파시(睡娃娃耍娃娃進寶波澌)·회회관귀선인소화상 향동 파시(回回判鬼仙人笑和尚香童波澌)·질교와와 토아 수주병 파시(跌交娃娃兎兒壽酒瓶波澌), 기린초재 회회 기린사자해치 쇠모(麒麟招財回回麒麟獅子獬豸鬃毛), 사자녹룡금섬인원의 마 향로(獅子鹿龍金蟾人猿意馬香爐), 상아조각 채장 각양인물조수팔보화초 조괘(象牙雕刻彩粧各樣人物鳥獸八寶花草弔卦) 매양(每樣) 7류(流), 구학 경수화분(龜鶴慶壽花盆), 사상백화인마 평안백사대길 산선봉수 파시(獅象百花人馬平安百事大吉散仙捧壽波澌), 봉주팔보인물(捧珠八寶人物)·봉수성인물(鳳壽星人物)·포로인물(鮑老人物)·팔보인물(八寶人物)·해당화 각양 쇠회인물 팔보인물(海棠花各樣耍戲人物八寶人物), 오색 용진 각양 화초춘분(五色絨纏各樣花草春盆) 매양 4분(盆), 보압모란 화하화금어(寶鴨牡丹花荷花金魚)·하화교초 영지초수(荷花交草靈芝草獸)·하화계칙(荷花鸕鶿)·철간금 각양 도환제휴(鐵鑄金各樣條環提携) 매양(每樣) 5부(副), 수초어 도환제휴(水草魚條環提携)·모란화 도환제휴(牡丹花條環提携)·사룡 도환제휴(獅龍條環提携)·화과 도환제휴(花果條環提携)·마 도환제휴(馬條環提携)·철간금 각양구자(鐵鑄金各樣鉤子) 매양 5과(把), 번신수 구자(番身獸鉤子)·초수 구자(草獸鉤子)·천록 장춘화 구자(天鹿長春花鉤子)·하화계칙 구자(荷花鸕鶿鉤子), 행화아 구자(杏花鵝鉤子), 각양 흑칠나전 대소 합아(各樣黑漆螺甸大小盒兒) 30개, 등개(燈蓋) 10과(掛), 관음제(觀音臍)·문합(文蛤)·반합(斑蛤)·회합 산적(回蛤散的) 매양(每樣) 1두(斗), 녹대포(鹿大脯)</p>	<p>刀三十把內大樣十把, 中樣十把, 小樣十把, 象牙雕刻彩粧獅子筆架三坐, 貂鼠皮五百張, 土豹皮三十張, 象牙雕刻彩粧各樣人物鳥獸花果盒兒春盛每樣四箇, 三層四季果盒兒, 四層龍盒兒、海棠花盒兒、花果盒兒、七層花果翎毛春盛水草金魚銀錠盒兒、枯荷螃蟹腰子盒兒、禽鳥花果盒兒、物丹花盒兒、花果腰子盒兒、花果翎毛盒兒、人物古事方勝盒兒、花果翎毛八角盒兒、雲龍犀牛角盒兒、花匾盒兒、草獸廂兒、寶相花回紋鎖口盒兒、花果盒兒、象牙雕刻彩粧各樣玩戲兒、每樣五件、睡娃娃耍娃娃進寶波澌、回回判鬼仙人笑和尚香童波澌、跌交娃娃兎兒壽酒瓶波澌、麒麟招財回回麒麟獅子獬豸鬃毛、獅子鹿龍金蟾人猿意馬香爐、象牙雕刻彩粧各樣人物鳥獸八寶花草弔掛每樣七流、龜鶴慶壽花盆、獅象百花人馬平安百事大吉散仙捧壽波澌、捧珠八寶人物、鳳壽星人物、鮑老人物、八寶人物、海棠花各樣耍戲人物、八寶人物五色絨纏各樣花草春盆, 每樣四盆寶鴨牡丹花荷花金魚、荷花交草靈芝草獸、荷花鸕鶿</p>
--	--	---

	<p>15속(束), 녹편포(鹿片脯) 2백 개, 건문어(乾文魚) 2백 미(尾), 건대구어(乾大口魚) 3백 미(尾), 건전복어(乾全鰓魚) 2백 속(束), 건오적어(乾烏賊魚) 8백 미(尾), 건광어(乾廣魚) 2백 미, 건수어(乾秀魚) 2백 미(尾), 곤포(昆包) 2 백 근(斤), 탐사마(塔士麻) 2 백 근(斤), 해의(海衣) 1백 근, 해채이(海菜耳) 1백 근, 향점(香簞) 1백 근, 홍소주(紅燒酒) 10병(瓶), 백소주(白燒酒) 10병, 송자(松子) 2 백근, 인삼(人蔘) 50근이며, 상사(上使)의 곳에 주는 사진헌(私進獻) 잡물(雜物)은, 은장식 상아병 강진초 삼병 도자(銀粧飾象牙柄降眞鞘三并刀子) 10부(部), 사양 삼사 도자(四樣三事刀子) 각 20부, 소양 전자(小樣剪子) 15과(把), 청과아(靑瓜兒) 10류(流), 장아아(獐牙兒) 10류, 회합(回哈) 대·소(大小) 30류, 세교 문합(細巧文哈) 40류, 반합(斑哈) 대소 80류, 관음제(觀音臍) 40류, 백회합(白回哈) 40류, 소라(小螺) 40류, 자면주(紫綿紬) 10필, 초록 면주(草綠綿紬) 10필, 초록 면포(草綠綿布) 15필, 대홍 면포(大紅綿布) 10필이며, 사사로이 주는 인정물[私人情物]은, 중앙 삼사 도자(中樣三事刀子) 20부, 소양 전자(小樣剪子) 10과, 청과아(靑瓜兒) 10류, 장아아(獐牙兒) 5류, 황양목호로(黃楊木葫蘆) 40류, 우골 호로(牛骨葫蘆) 40류, 진호로(眞葫蘆) 10류, 진호로 표아 원적(眞葫蘆瓢兒圓的) 각 50개, 회합(回哈) 40류, 산적(散的) 대·소(大小) 각 1두(斗), 반합(斑蛤) 40류, 산적(散的) 대(大) 1두, 중(中) 5승(升), 세교 문합(細巧文蛤) 20류, 산적(散的) 1두(斗), 관음제(觀音臍) 20류(流), 산적(散的) 1두, 백회합 산적(白回哈散的) 1승(升), 소라 산적(小螺散的) 1승이며, 별도로 주는 식물[別贈食物]은, 홍소주(紅燒酒) 5병(瓶), 백소주(白燒酒) 5병, 청주(淸酒) 20병, 녹대포(鹿大脯) 5첩(貼), 건문어(乾文魚) 50미(尾), 건대구어(乾大口魚) 50미, 건오적어(乾烏賊魚) 1천 미, 건전복어(乾全鰓魚) 20속(束), 건광어(乾廣魚) 50미(尾), 곤포(昆布) 50근(斤), 해의(海衣) 50근, 향점(香簞) 10근, 해채이(海菜耳) 20근, 탐사마(塔士麻) 20속(束)이며, 구청(求請)하는 식물(食物)은, 문어(文魚) 1백 미(尾), 대구어 1백 미, 곤포(昆布) 20주지</p>	<p>鐵鋼金各樣條環提携每樣五副, 水草魚條環提携、牡丹花條環提携、獅龍條環提携、花果條環提携、馬條環提携、鐵鋼金各樣鉤子每樣五把, 番身獸鉤子、草獸鉤子、天鹿長春花鉤子、荷花鸚鵡鉤子、杏花鵝鉤子、各樣黑柴螺甸大小盒兒三十箇、燈蓋十掛、觀音臍、文蛤、斑蛤、回蛤散的每樣一斗、鹿大脯一十五束、鹿片脯二百箇、乾文魚二百尾、乾大口魚三百尾、乾全鰓魚二百束, 乾烏賊魚八百尾, 乾廣魚二百尾, 乾秀魚二百尾, 昆布二百斤, 塔士麻二百斤, 海衣一百斤, 海菜耳一百斤, 香簞一百斤, 紅燒酒一十瓶, 白燒酒一十瓶, 松子二百斤。 人蔘五十斤上使處贈私進獻, 雜物銀粧飾象牙柄降眞鞘三并刀子十部, 四樣三事刀子各二十部, 小樣剪(子) [子] 十五把, 靑瓜兒十流, 獐牙兒十流, 回蛤大、小三十流, 細巧文蛤四十流, 斑蛤大、小八十流, 觀音臍四十流, 白回蛤四十流, 小螺四十流, 紫綿紬十四, 草綠緜紬十四, 草綠綿布十五匹, 大紅綿布十四。 私人情, 中樣三事刀子二十部, 小樣剪子十把, 靑瓜兒</p>
--	--	---

	<p>(注之), 전복어(全鰓魚) 30속(束), 퇴포(槌鮑) 40첩(貼), 탑사마(塔土麻) 20주 지이며, 부사(副使)에게 사사로이 주는 인정물은 중앙 삼사 도자(中樣三事刀子) 20부(部), 소양 전자(小樣剪子) 10부(部), 청과아(靑瓜亞) 10류(流), 장아아(獐牙兒) 5류, 황양목 호로(黃楊木葫蘆) 15류, 우골 호로(牛骨葫蘆) 10류, 진호로(眞葫蘆) 5류, 진호로 표아 원적(眞葫蘆瓢兒圓的) 각 20개, 회합(回蛤) 40류, 산적(散的) 5승(升), 반합(斑蛤) 40류, 산적(散的) 5승, 세교 문합(細巧文蛤) 20류, 산적 5승, 관음제(觀音臍) 20류, 산적 5승이며, 별도로 주는 식물[別贈食物]은, 홍소주(紅燒酒) 5병(瓶), 백소주(白燒酒) 5병, 청주(淸酒) 20병, 녹대포(鹿大脯) 3첩(貼), 건문어 30미, 건대구어 50미(尾), 건전복어 15속(束), 건오적어 5백 미, 건광어 30미, 곤포 30근, 해의(海衣) 30근, 향점(香簞) 5두(斗), 해채이(海菜耳) 20근, 탑사마(塔土麻) 15속(束)이었다.</p>	<p>十流, 獐牙兒五流, 黃楊木葫蘆四十流, 牛骨葫蘆四十流, 眞葫蘆十流, 眞葫蘆瓢兒圓的各五十箇, 回蛤四十流, 散的大, 小各一斗, 斑蛤四十流, 散的大一斗, 中五升, 細巧文蛤二十流, 散的一斗, 觀音臍二十流, 散的一斗, 白回蛤散的一升, 小螺散的一升。 別贈食物, 紅燒酒五瓶, 白燒酒五瓶, 淸酒二十瓶, 鹿大脯五貼, 乾文魚五十尾, 乾大口魚五十尾, 乾烏賊魚一千尾, 乾全鰓魚二十束, 乾廣魚五十尾, 昆布五十斤, 海衣五十斤, 香簞十斤, 海菜耳二十斤, 塔土麻二十束。 求請食物, 文魚一百尾, 大口魚一百尾, 昆布二十注之, 全鰓魚三十束, 槌鮑四十貼, 塔土麻二十注之。 副使處私人情, 中樣三事刀子二十部, 小樣箭子十把, 靑瓜兒十流, 獐牙兒五流, 黃楊木葫蘆十五流, 牛骨葫蘆十流, 眞葫蘆五流, 眞葫蘆瓢兒圓的各二十箇, 回蛤四十流, 散的五升, 斑蛤四十流, 散的五升, 細巧文蛤二十流, 散的五升, 觀音臍二十流, 散的五升別贈食物, 紅燒酒五瓶, 白燒酒五瓶, 淸酒二十瓶, 鹿大脯三貼, 乾文魚三十尾, 乾大口魚五十尾,</p>
--	--	--

		乾全鰻魚十五束，乾烏賊魚五百尾，乾廣魚三十尾，昆布三十斤，海衣三十斤，香簞五斗。海菜耳二十斤，塔士麻十五束。
성종 158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9월 17일(정미) 3번째기사	<p>한씨(韓氏) 앞으로 별폭(別幅)으로 부치는 인정물(人情物)을 봉하여 썼는데, 자면주(紫綿紬) 10필(匹), 녹면주(綠綿紬) 10필, 유청면주(柳靑綿紬) 10필, 녹면포(綠綿布) 10필, 중앙 삼사 도자(中樣三事刀子) 20부, 소양 삼사 도자(小樣三事刀子) 20부, 황양목 호로(黃楊木葫蘆) 30류(流), 수낭아(繡囊兒) 5개(箇), 침가아(針家兒) 10개, 장아아(獐牙兒) 10류, 청과아(靑瓜兒) 10류, 세교문합(細巧文蛤) 30류, 반합(斑蛤) 30류, 회합(回蛤) 30류, 선자(扇子) 1백 과(把), 백저포(白苧布) 20필, 흑마포(黑麻布) 30필, 녹대포(鹿大脯) 3속(束), 녹편포(鹿片脯) 50개, 건문어(乾文魚) 50미(尾), 건대구어(乾大口魚) 50미, 건오적어(乾烏賊魚) 2백 미, 곤포(昆布) 40근(斤), 탑사마(塔士麻) 40근, 향점(香簞) 20근이었다.</p> <p>이 앞서 정동(鄭同)이 청하기를, ‘한씨(韓氏)가 비록 이미 죽었지만 금년의 별폭(別幅)은 예전대로 보내기를 원합니다.’고 한 때문이었다.</p>	○封裹韓氏前別幅付人情，紫綿紬十四，綠緜紬十四，柳靑綿紬十四，綠緜布十四，中樣三事刀子二十部，小樣三事刀子二十部，黃楊木葫蘆三十流，繡囊兒五箇，針家兒十箇，獐牙兒十流，靑瓜兒十流，細巧文蛤三十流，斑蛤三十流，回蛤三十流，扇子一百把，白苧布二十四，黑麻布三十四，鹿大脯三束，鹿片脯五十箇，乾文魚五十尾，乾大口魚五十尾，乾烏賊魚二百尾，昆布四十斤，塔士麻四十斤，香簞二十斤。前此，鄭同請云：“韓氏雖已歿，今年別幅，願依舊送之故也。”
성종 158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9월 18일(무신)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戊申/上詣泰慶殿，上食。
성종 158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9월 20일(경술) 6번째기사	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상사(上使)에게 은구어젓[銀口魚鮓]·수어젓[秀魚鮓]·연어젓[連魚鮓] 각 4항(缸)과 어자젓[魚子鮓]·송어젓[松魚鮓]·연어알젓[鱧魚子鮓]·도초어젓[刀稍魚鮓]·소서젓[蘇魚鮓] 각 3항(缸), 하여아자젓[蝦魚兒子鮓] 6항(缸), 전복어젓[全鰻魚鮓] 2항(缸), 소금물에 삶아서 익힌 송이[鹽水烹熟松茸] 2항(缸)을 주고, 부사(副事)에게 수어젓 3항과 은구	○命都承旨李世佐，贈上使銀口魚鮓·秀魚鮓·連魚鮓各四缸、魚子鮓·松魚鮓·鱧魚子鮓·刀稍魚鮓·蘇魚鮓·各三缸蝦魚兒子鮓六缸、全鰻魚鮓二缸、鹽水烹熟松茸二缸。贈副使秀

	어젓·어자젓·송어젓·연어젓·소어젓 각 2항, 연어알젓·전복어젓·도초어젓 각 1항, 소금물에 삶아서 익힌 송이 1항을 주게 하였다.	魚鮮三缸、銀口魚鮮·魚子鮮·松魚鮮·鯪魚鮮·蘇魚鮮·各二缸、鯪魚子鮮·全鰻魚鮮·刀稍魚鮮各一缸、鹽水烹熟松茸一缸。
성종 158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9월 21일(신해)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辛亥/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58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9월 23일(계축) 5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관반(館伴)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에게 후추씨[胡椒種]를 구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令館伴求胡椒種於天使。”
성종 158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9월 28일(무오)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戊午/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59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0월 1일(경신) 1번째기사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전연(餞宴)을 행하였다. 임금이 중문(中門) 밖에 이르자, 부사(副使)가 나와 맞이하여 대청(大廳)에 들어갔다. 상사(上使)가 임금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전하의 복음(福蔭)14176) 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모화관(慕華館)에 나와서 전송하지 마소서. 소민(小民)이 안심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大人)이 황제의 명을 받들고 왔는데, 내가 어찌 감히 돌아가는 데에 전송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사는 방으로 도로 들어가고 부사가 전하를 남향으로 앉기를 청하여	○朔庚申/上幸(太平館) [太平館], 行餞宴。上至門外, 副使出迎, 入大廳, 上使出就上前, 言曰: “蒙殿下福蔭, 僅全性命。願殿下勿出餞于慕華館。小民欲安心過去。”上曰: “大人奉帝命而來, 我何敢不還送乎?” 上使還入房, 副使請殿下南面坐, 欲行叩頭禮, 上固讓, 副使叩頭, 移設御座于北壁, 上曰: “公館中, 我何敢南面? 況餞宴大禮, 不敢如是。”副使曰: “百

	<p>고두례(叩頭禮)를 행하고자 하니, 임금이 굳이 사양하였다. 부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어좌(御座)를 북벽(北壁)에 옮겨서 마련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관(公館) 안에서 내가 어찌 감히 남면(南面)하겠습니까? 더욱이 전연(餞宴)의 큰 예(禮)는 감히 이같이 못합니다.”</p> <p>하였는데, 부사가 말하기를, “백성이 토주(土主)를 존경함은 예에 당연한 바입니다.”</p> <p>하므로, 임금이 마지못하여 따랐다. 임금이 장차 술을 돌리고자 하니, 부사가 먼저 술을 잔에 부어 청하기를,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자리에 오르소서. 청주(淸州)의 백성이 먼저 술을 올리하고자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실례가 이미 많았는데 또 어찌 감히 앉아서 받겠습니까?”</p> <p>하였는데, 부사가 굳이 청하므로, 임금이 마지못하여 따랐다. 부사가 술을 올리며 말하기를, “소민(小民)의 나이가 벌써 일흔 여덟인데, 언제 다시 와서 술을 올리겠습니까?”</p> <p>하여 연달아 쌍배(雙杯)를 올리니, 임금도 쌍배로 답하였다. 부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한 잔을 올리니, 임금도 한 잔을 답하며 부사에게 이르기를, “오늘 상대인(上大人)14177) 을 보니, 얼굴이 몹시 여위었는데, 우리 나라 의약(醫藥)이 좋지 못하여 그러한 것입니까? 나의 근심하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p> <p>하자, 부사가 말하기를, “의약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노정(老鄭)14178) 이 스스로 병이 심하기 때문입니다.”</p> <p>하였다. 오산군(烏山君)이주(李澍)가 술을 돌리자, 부사가 전하에게 먼저 돌리</p>	<p>姓尊敬土主，禮所當然。”上勉從之。</p> <p>上將行酒，副使先自酌酒，請曰：“願殿下陞座。淸州百姓，欲先進酒。”</p> <p>上曰：“失禮已多，又安敢坐而受之？”副使固請，上不得已從之。副使進酒曰：“小民年已七十八，安得再來進酒乎？”連進雙杯，上亦酬雙杯，副使叩頭，更進一杯，上亦酬一盃，謂副使曰：“今日觀上大人，容貌甚瘦，我國醫藥，不良而然乎？我之憂思，其誰知之？”副使曰：“醫藥非不好，但老鄭自病甚耳。”烏山君澍行酒，副使讓先殿下，上從之，命召上、副使、頭目，賜以卮酒，副使欲進回盃，請殿下陞座，仍跪進曰：“小民到此久留，今已三四月，多勞動殿下。”上曰：“有何勞動事？”副使曰：“久留，正是大賊。”遂進雙杯，上亦酬雙杯。副使飲訖，叩頭而出，上祇送于中門，(…)</p>
--	--	--

	<p>도록 사양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상사·부사·두목(頭目)을 불러서 술을 주게 하였다. 부사가 회배(回杯)를 올리고자 하여 전하께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고, 인하여 꿇어앉아서 술잔을 올리며 말하기를,</p> <p>“소민이 여기에 이르러 오래 머물러 이제 이미 서너 달이 되었으니, 전하를 수고롭게 해 드림이 많았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어찌 수고로운 일이 있겠습니까?”</p> <p>하였다. 부사가 말하기를,</p> <p>“오래 머무는 것은 바로 큰 도둑입니다.”</p> <p>하고는 드디어 쌍배(雙杯)를 올리니, 임금도 쌍배로 답하였다. 부사가 마시기를 마치자 머리를 조아리며 나가니, 임금이 중문에서 공경히 전송하였다. (...)</p>	
<p>성종 159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0월 2일(신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장차 전연(餞宴)을 행하려고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여석(金礪石)을 보내어 두 사신에게 말하니, 상사(上使)가 말하기를,</p> <p>“소민(小民)이 어찌 국왕께 배사(拜辭)하려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병이 심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 잠시 후에 상사가 먼저 모화관(慕華館) 앞에 이르러 장유화(張有華)로 하여금 아뢰게 하기를,</p> <p>“청컨대 전하께서는 문밖에 나오지 마시고 소민이 마음 편히 지나가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덕숭(李德崇)에게 명하여 모마장(毛馬粧) 1부(部), 유석(油席) 1장(張), 유안룡(油鞍籠) 1사(事), 궁전모(弓箭帽) 2부, 사의 제연구(蓑衣諸緣具) 1부, 모편(毛鞭) 1사, 환도(環刀) 1, 궁전 건복구(弓箭韃服具) 1부를 주게 하였다. 잠시 후에 부사(副使)가 관(館)</p>	<p>○辛酉/上幸慕華館，將行餞宴，遣右副承旨金礪石，語兩使。上使曰：“小民豈不欲拜辭國王？然病甚，未能也。”俄而上使先到館前，令張有華啓曰：“請殿下不出門外，小民安心過去。”上從之，命同副承旨李德崇，贈毛馬粧一部、油席一張、油鞍籠一事、弓箭帽二部、蓑衣諸緣具一部、毛鞭一事、環刀一弓、箭韃服具一部。已而副使至館，上迎入，副使請殿下南面，上不許。副使曰：“此已定之禮也”，固請不已，上勉從之。副使扣頭，行拜辭禮，曰：“小民勞動殿下，</p>

	<p>에 이르니, 임금이 맞아들였다. 부사가 전하에게 남면(南面)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니, 부사가 말하기를,</p> <p>“이는 이미 정한 예(禮)입니다.”</p> <p>하며 굳이 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이 마지못해 그대로 따랐다. 부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배사례(拜辭禮)를 행하고 말하기를,</p> <p>“소민(小民)이 전하를 수고롭게 하였으니,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p> <p>하였다.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선사하는 예물을 상사(上使)의 예(例)와 같이 주니, 부사가 사례하였다. 임금이 술을 돌리고자 하니, 부사가 먼저 주정(酒亭)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연달아 쌍배(雙杯)을 올렸다. 임금도 쌍배로 답하니, 부사가 마시고 나서 드디어 머리를 조아리며 하직하고 갔다.</p>	<p>萬死萬死。”命承旨，贈人情禮物，如上使例，副使謝之。上欲行酒，副使先就酒亭酌酒，連進雙杯。上亦酬雙盃，副使飲訖，遂拜辭扣頭而去。</p>
<p>성종 159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0월 9 일(무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고, 인하여 두 대비전(大妃殿)에 문안하였다.</p>	<p>○戊辰/上詣泰慶殿，上食，仍問安于兩殿。</p>
<p>성종 159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0월 11 일(경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庚午/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59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0월 12 일(신미) 4번째기사</p>	<p>부사(副使)가 평양에서 머물렀다. 상사(上使)의 시신이 평양에 이르니, 염습(斂襲)하여 관에 넣고 명정(銘旌)을 세우고 상식(上食)과 설전(設奠)을 모두 본국의 예(禮)와 같이 하였다. 부사(副使)가 백의(白衣)·백대(白帶)를 착용하고 서 치제(致祭)하고, 반송사(伴送使) 노사신(盧思愼)·권찬(權攢)도 치제하였다.</p>	<p>○副使留平壤。上使之屍，至平壤，斂襲入棺，立銘旌，上食、設奠，皆如本國禮。副使著白衣、白帶致祭，伴送使盧思愼、權攢亦致祭。</p>
<p>성종 159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0월 17 일(병자)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丙子/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59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0월 19 일(무인) 1번째기사</p>	<p>야인(野人)조이시합(趙伊時哈) 등 여덟 사람이 사조(辭朝)하니, 도승지(都承旨)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술을 내려 주게 하고, 인하여 묻기를, “너희 위(衛)에서는 남녀의 혼인을 어떤 예식으로 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갑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납채(納采)와 납폐(納幣)의 예식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사위 집에서 먼저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폐물(幣物)로 삼아서 여자 집에 보내고, 다음은 금배(金杯), 다음은 소 두 마리와 말 두 필, 다음은 의복과 노비(奴婢)를 보내는데, 각각 그 집의 빈부(貧富)에 인하여 주며, 부자는 3, 4년 만에 예식을 이루고 가난한 자는 비록 10년의 오랜 세월에도 예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혼인하는 날에 잔치하여 술을 마시는 예식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사위가 가는 날 저녁에 여자 집에서 소를 잡아 잔치하여 술을 마시고 이튿날 사위의 친척을 맞이하여 위로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같은 형제가 만약 먼저 죽는 이가 있으면, 그 아내에게 장가간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이목장합(李木長哈)이 말하기를, “형의 아내가 만약 얼굴이 아름답고 재물이 많으면 장가갑니다.” 하자, 동거우동(童巨右同)이 급히 중지시키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귀족(貴族)에게 어찌 이런 풍습이 있겠습니까?”</p>	<p>○戊寅/野人趙伊時哈等八人辭。 命都承旨李世佐賜酒，仍問曰：“汝衛男婚女嫁，何以爲禮？” 答曰：“男往女家。” 又問：“有納采、納幣之禮乎？” 答曰：“婿家，先以甲冑、弓矢爲幣，而送于女家，次以金盃，次以牛二頭、馬二匹，次以衣服、奴婢。 各因其家之貧富，而遺之，富者三四年，而成禮，貧者雖至十年之久，而猶未得成禮。” 又問：“婚娶之日，有宴飲之禮乎？” 答曰：“婿往之夕，女家宰牛宴飲，翌日邀婿之親戚，而慰之。” 又問：“同生兄弟，若有先死者，娶其妻，然乎？” 李木長哈曰：“兄妻若貌美，而多財者，則娶之。” 童巨右同遽止之曰：“汝何發此言？ 貴族，則安有此風乎？ 此特奴輩之事耳。” 又問：“我殿下欲使人于汝衛，汝等何以接待？” 答曰：“三衛各出兵馬一百以迎之。” 又問：“我殿下，今送諭書于汝衛，有識字者乎？” 答曰：“朝鮮文字雖或不知，蒙古書，則多有知之者。” 又問：“有祭祀之禮乎？” 答曰：“祭天，則前後齋戒，殺牛以祭，又於月望，祭七星。 然此非常行之事，若有疾病祈禱，則有之耳。 親死，則</p>
--	---	---

	<p>이는 다만 종의 무리들의 일일 뿐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우리 전하께서 너희 위(衛)에 사신을 보내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접 대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세 위에서 각각 병마(兵馬) 1백을 내어서 맞이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우리 전하께서 이제 유서(諭書)를 너희 위(衛)에 보내려고 하는데, 글을 아는 자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조선 글자는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몽고 글은 아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제사지내는 예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하늘에 제사하면 전후에 재계(齋戒)하고 소를 잡아 제사하며, 또 보름에 칠 성(七星)에 제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행하는 일이 아니고, 만약 병이 있 어 기도하게 되면 행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집에 빈(殯)하고, 또한 소 를 잡아서 제사하며, 3일 후에 양지바른 곳에 골라서 장사하되, 장사하는 날 에 평상시에 입던 옷가지를 아울러 매장합니다. 또 그 타던 말을 죽여서 그 고기는 버리고 그 가죽을 장사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아버지가 죽으면 무슨 옷을 입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간혹 최복(衰服)을 입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p>	<p>殯於家，亦殺牛以祭，三日後，擇向陽 處葬之，其葬之日，常時所服之物，并 葬之。且殺其所乘之馬，去其肉，而 葬其皮。”又問：“親死，服何服乎？” 答曰：“或著衰服。”又問“親死，食 肉乎？”答曰：“殺牛以祭，故不得已食 之。”又語之曰：“往年征討汝衛，非 本國之意，承天子之命，不得已而爲 之，汝等知此意，今皆來順，殿下深用 嘉悅。”答曰：“天子如天，天之所爲， 我何怨焉？”又問：“汝衛，甲冑以何物 爲之乎？”答曰：“以鐵爲之。”又問 曰：“鐵產於何地？”答曰：“產於火刺 濫地面。”又問曰：“有冶工乎？”答 曰：“多有之。”又問：“汝衛與(達子) [獒子]，相通乎？”答曰：“距我衛十 日程，常往來焉。”又問：“(達子) [獒子]人物之數，幾何？”答曰：“繁 盛優於中國。”又問：“有室廬乎？”答 曰：“以車爲家，蓋以油芑，而居焉。” 又問曰：“汝等往犯遼東邊境之時，汝 等潛往犯之乎？必告於酋長，而爲之 乎？”答曰：“安有不告酋長，而擅行之 理乎？”又問：“常時有謁見酋長之禮 乎？”答曰：“每朝齊往謁見，聽其指揮</p>
--	---	--

	<p>“아버이가 죽었는데, 고기를 먹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소를 잡아서 제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난 해에 너희 위(衛)를 토벌한 것은 본국의 뜻이 아니고 천자의 명을 받아서 부득이하여 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 뜻을 알고 이제 모두 와서 귀순하니, 전하께서 매우 가상하게 여겨 기뻐하신다.” 하니, 대답하기를, “천자(天子)는 하늘과 같은데, 하늘의 하는 바를 우리가 어찌 원망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묻기를, “너희 위에서는 갑옷과 투구를 무슨 물건으로 만드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쇠로 만듭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쇠가 어느 지역에서 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화라온(火刺溫) 지방에서 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야공(冶工)14244) 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희 위(衛)에서는 달자(達子)와 서로 통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p>	<p>者，或至百餘人。”又問：“都督之印，用之於何處？”答曰：“若有文字施行事，則用之。”仍賜例物。又別賜李木長哈、趙伊時哈、童巨右同三人匹段袂塔胡各一、匹段襦帖裏各一、條環具紅帶綵囊各一、刀子各一、馬各一匹。正官童沙何多、王伊羅愁、李巨羅茂、李別郎介匹段襦帖裏各一、條環具紅帶綵囊各一、刀子各一。隨從人趙舍吾章襦黑綿布衣一、條環具綠帶綵囊一、刀子一。左衛都督土老、右衛都督羅下處，賜送匹段紅腰線襦帖裏各一、條環具紅帶綵囊各一、刀子各一、馬各一匹。</p>
--	---	--

	<p>“우리 위에서 열흘 길의 거리에 있어 항상 왕래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달자(達子)에는 인물(人物)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번성함이 중국보다 낮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거처하는 집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수레로 집을 삼고 유둔(油菴)으로 덮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희들이 요동 변경에 가서 침범할 때에 너희들이 몰래 가서 침범하였느냐, 반드시 추장(酋長)하게 고하고 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추장에게 고하지 아니하고서 마음대로 행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묻기를, “상시(常時)로 추장에게 알현(謁見)하는 예(禮)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매일 아침에 함께 가서 알현하고 그 지휘를 듣는 자가 혹 1백여 명에 이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도독(都督)의 인(印)은 어느 곳에 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문자(文字)로 시행할 일이 있으면 씁니다.” 하였다. 인하여 예물(例物)을 하사하고, 또 별도로 이목장합(李木長哈)·조이시합(趙伊時哈)·둥거우동(童巨右同) 세 사람에게는 필단 겹탑호(匹段袂塔胡) 각</p>	
--	--	--

	<p>각 하나, 필단 유철릭(匹段襦帖裏) 각각 하나, 도환구 홍대 채낭(條環具紅帶綵囊) 각각 하나, 도자(刀子) 각각 하나, 말 각각 한 필을 하사하고, 정관(正官) 동사하다(童沙何多)·왕이라수(王伊羅愁)·이거라무(李巨羅茂)·이별랑개(李別郎介)에게는 필단 유철릭 각각 하나, 도환구 홍대 채낭 각각 하나, 도자(刀子) 각각 하나를 하사하며, 수종인(隨從人) 조사오(趙舍吾)에게는 장유 흑면포의(章儒黑綿布衣) 하나, 도환구 녹대 채낭(條環具綠帶綵囊) 하나, 도자(刀子) 하나이며, 좌위 도독(左衛都督) 토로(土老)와 우위 도독(右衛都督) 나하(羅下)에게는 필단 홍요선 유철릭(匹段紅腰線襦帖裏) 각각 하나, 도환구 홍대 채낭 각각 하나, 도자 각각 하나, 말 각각 한 필을 하사하였다.</p>	
<p>성종 159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0월 26일(을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乙酉/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59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0월 29일(무자) 2번째기사</p>	<p>대내전(大內殿) 정홍(政弘)의 사자(使者) 청감(淸鑑) 등이 사조(辭朝)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글을 받아 편하고 길(吉)함을 알아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전하여 아뢰고 거두어 들였습니다. 면포(綿布) 2백 필과 정포(正布) 2백 필을 가지고 절을 창건하는 자급에 보태게 하고, 또 토산물인 백저포(白苧布)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 인삼(人蔘) 35근, 호피(虎皮) 2장, 표피(豹皮) 2장, 남사피(藍斜皮) 10장, 변아침석(邊兒寢席) 15장, 청밀(淸蜜) 15두(斗), 해송자(海松子) 1백 근을 돌아가는 사자 편에 부치니, 살피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사자(使者) 강계(江戒)가 청구하는 쟁반(錚盤) 3사(事), 나와(鑼鍋) 1개를 또한 내려 주니, 아울러 살피시오.” 하였다. 청감(淸鑑)은 올린 후추[胡椒]·동철(銅鐵)의 값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영둔녕(領敦寧) 이상과 호조(戶曹)·예조(禮曹)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호조 관서 어세공(魚世恭)이 아뢰기를,</p>	<p>○大內殿政弘使淸鑑等辭，其答書曰：承書得諳康吉，開慰。所獻禮物，轉啓收訖。將綿布二百匹、正布二百匹，以補創寺之資。且將土宜白苧布一十四匹、黑麻布一十四、人蔘三十五斤、虎皮二張、豹皮二張、藍斜皮一十張、邊兒寢席一十五張、淸蜜一十五斗、海松子一百斤，付回使，惟照納。使者江戒求請錚盤三事、鑼鍋一箇，亦給賜，并照悉。</p> <p>淸鑑以所進胡椒、銅鐵之直，不滿於心，辭不受，命議于領敦寧以上及戶</p>

	<p>“만약 그 값이라고 말하여 주면 후일에 반드시 예(例)가 될 것이니, 청컨대 면포 1천 1백 필, 정포(正布) 3천 4백 필을 더 주어서 특사(特賜)라고 일컫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청감에게 말하기를,</p> <p>“비록 중국(中國) 사신이 와서 주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값에 준하여 주는데, 이제 특별히 더 내려 주는 것은 너희 나라가 바야흐로 사찰(寺刹)을 창건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웃 나라의 수호(修好)를 중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p>	<p>曹、禮曹。戶曹判書魚世恭啓曰：“若稱其直，而賜之，則後日必以爲例，請加給綿布一千一百匹、正布三千四百匹，而稱特賜，何如？”從之。命語清鑑曰：“雖上國使臣來贈之物，只准直償之。今特加賜者，以爾國方創寺刹，又重隣好耳。”</p>
<p>성종 16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1월 2일(신묘)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는 다른 재상(宰相)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내가 매우 중하게 여기는데, 이제 수리 제조(修理提調)로서 밤낮으로 여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선온(宣醞)14310) 을 하사한다.”</p> <p>하고는, 즉시 좌승지(左承旨) 김세적(金世勳)·우승지(右承旨) 권건(權健)·좌부승지(左副承旨) 이덕숭(李德崇)에게 명하여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辛卯/傳于政院曰：“領中樞非他宰相之比，予甚重之。今以修理提調，晨昏無暇，故特賜宣醞。”即命左承旨金世勳、右承旨權健、左副承旨李德崇往慰。</p>
<p>성종 16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1월 3일(임진) 6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검토관(檢討官) 박문간(朴文幹)이 아뢰기를,</p> <p>“도성(都城) 가운데 방곡(坊曲)14346) 에서 음사(淫祀)14347) 를 많이 행하여 북과 피리 소리가 길거리에 통합니다. 이제 국상[國恤]을 당하여 이와 같은 음은 옳지 못하니, 청컨대 엄하게 금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옳다.”</p> <p>하였다. 박문간이 또 아뢰기를,</p> <p>“신은 듣건대, 왜인(倭人)이 진상(進上)한 물건의 회사(回賜)14348) 가 넉넉지 못하다 하여 불평을 말과 얼굴에 나타내고, 사연(賜宴)할 때에 노하여 잔치를 받지 아니하는 데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은 듣건대, 왜인이 후추[胡椒]·소목(蘇木)·환도(環刀) 등의 물건을 예조(禮曹)에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 저들</p>	<p>○御晝講。講訖，檢討官朴文幹啓曰：“都中坊曲，多行淫祀，鼓笛之聲，洞徹街路。今當國恤，如此不可。請痛禁。”上曰：“可。”文幹又啓曰：“臣聞，倭人以進上之物回賜不足，慍於言色，至於賜宴之時，怒不受宴。臣聞，倭人以胡椒、蘇木、環刀等物，多贈遺禮曹，彼必以此，希望其優給也。我國使臣，到中朝禮部，若不受人情者，則以爲廉介。請使禮曹，勿受。”上曰：“若知而不受，則果廉介也。然倭人來自遠土，以禮曹爲統屬之司，用表</p>

	<p>이 반드시 이것으로써 넉넉히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신이 중국에 이르러 예부(禮部)에서 만약 인정(人情)14349) 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청렴하다고 하니,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받지 말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알고서 받지 아니한다면 과연 청렴한 것이나, 왜인이 먼 지방에서 와서 예조를 통속(統屬)하는 사(司)14350) 라고 하여 정성을 표하는 것이니, 받지 아니할 수 없다. 왜인이 물건을 주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다.” 하였다.</p>	<p>情忱，不可不受。受倭人贈物，其來已久。”</p>
<p>성종 16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1월 5일(갑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甲午/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6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1월 14일(계묘) 3번째기사</p>	<p>명하여 수반(隨班)하는 종친·재상 및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을 불러서 빈청(賓廳)에 술을 내려 주게 하고, 명하여 동지(冬至)에 사운 율시(四韻律詩)를 지어서 올리게 하였다.</p>	<p>○命召隨班宗宰及臺諫、弘文館，賜酒于賓廳，命製冬至四韻律詩以進。</p>
<p>성종 16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1월 17일(병오) 1번째기사</p>	<p>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김흔(金訢)이 아버이를 뵈려고 말미[假]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경연관(經筵官)이 귀근(歸覲)14409) 하는 데에 말[馬]을 주는 예(例)가 없는가? 김흔의 아버 김우신(金友臣)은 나의 어릴 때 사부(師傅)이다. 술 열 병을 하사하고, 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하여금 음식물을 갖추어 주게 하라.”</p> <p>하였다. 김우신(金友臣)은 이때 통진 현감(通津縣監)으로 있었다.</p>	<p>○丙午/弘文館典翰金訢，欲覲親請假。傳曰：“經筵官歸覲，無乃有給馬例乎? 訢父友臣，予之少時師傅也。賜酒十瓶，又令京畿觀察使，備食物以給。”友臣，時爲通津縣監。</p>
<p>성종 160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1월 25</p>	<p>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곡성군(鵠城君)이금손(李金孫)이 온정(溫井)에 목욕한다고 수고(受告)14426) 한 뒤에 즉시 배사(拜辭)하지 아니하고는, 드디어 잡된 무리를 끌어들이어 풍악</p>	<p>○宗簿寺啓：“鵠城君金孫，溫井沐浴受告後，不卽拜辭，邀引雜流，動樂野飲。上裁施行。”命議于領敦寧以上，</p>

<p>일(갑인) 2번째기사</p>	<p>을 울리면서 야외(野外)에서 술을 마셨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거짓 병을 일컬어 휴가를 받고는 가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마땅하지 못합니다. 고신(告身)을 거두어서 후래(後來)를 징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금손(金孫)의 죄는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사한 형상이 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율(律)에 비추어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금손이 범한 바는 하나만이 아닙니다. 휴가를 받고는 배사(拜辭)하지 아니하였고, 병을 일컫고는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술을 금하는 때를 당하여 마음대로 마시고 방자하게 놀았고, 문비(問備)14427) 하는 즈음을 당하여 종[奴]을 숨기고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모여서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하나, 불복(不服)하면 어떻게 이로써 종친을 형문(刑問)하겠습니까? 단지 배사(拜辭)하지 아니한 죄만 과(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금손의 죄상(罪狀)을 율(律)에 비춘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금손의 범한 바는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는 바로 보면 간사하고 거짓됨이 많이 있으니, 율(律)에 비추어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고신(告身)을 거두기를 명하였다.</p>	<p>鄭昌孫議：“虛稱病受告不行，甚不當。收告身，以懲後來，何如？”尹弼商議：“金孫之罪，非徒不畏邦憲，多有奸詐之狀，不可不懲。照律上裁。”洪應議：“金孫所犯非一，受告不拜，辭稱病不與會，當酒禁時，縱飲自恣；當問備之際，匿奴不納，皆不畏邦憲也。如此罪犯，不可恕也。”盧思愼議：“會飲明白，然不服，(可) [何] 以此刑問宗親？只科不拜辭之罪，何如？”李克培議：“金孫罪狀，照律後更議，何如？”尹壕議：“金孫所犯，以宗簿寺所啓觀之，則多有詐僞，不得無罪。照律定罪，何如？”命收告身。</p>
--------------------	---	--

<p>성종 16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2월 6 일(을축)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乙丑/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6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2월 10 일(기사) 1번째기사</p>	<p>영안도 절도사(永安道節度使) 이계동(李季叟)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제 경의 계달(啓達)로 인하여 울적함(兀狄哈)의 야다호(也多好) 등이 알타리(幹朶里)와 서로 싸울 때 사변에 대응하는 등의 일을 이미 자세히 알았다. 경의 처치는 옳으나, 다만 저 오랑캐가 우리 연대(煙臺)의 군사를 살상(殺傷)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알타리가 투항해 들어오는 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대는 우리 군사가 설치한 것인데, 저들이 가볍게 범하였으니, 마땅히 반복하여 끝까지 따져 물어서 저들로 하여금 기운이 꺾이고 두려워하여 굴복하게 한 뒤에 조용히 위로해 보내는 것이 가하다. 온성 부사(穩城府使) 정유지(鄭有智)는 처음에 엄한 말로 끝까지 따져 묻지 아니하고 단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謝罪)하게만 하고는 곧 술과 고기를 주어 돌려보냈으니, 이는 약함을 보인 것이므로 적당하지 못한 듯하다. 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비록 저희들끼리 보복(報復)하는 것이기는 하나, 어찌 우리에게 관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홀히 할 것인가? 경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몸가짐을 신중히 하며 삼가하여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하고, 변(變)을 보고서 기회에 응하여 혹시라도 실책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p>	<p>○己巳/下書永安道節度使李季叟曰： 今因卿啓，已悉兀狄哈也多好等，與幹朶里相戰時，應變等，因卿之處置，則得矣，但彼虜殺傷我煙臺之卒，是必忿(幹朶里)〔幹朶里〕投入而然。然煙臺我軍所處，而彼乃輕犯之，宜反覆窮詰，使彼摧沮畏服，然後從容慰還，可也。穩城府使鄭有智，初不嚴辭窮詰，只以叩頭謝罪，遽贈酒肉，此則示之以弱，似未得宜也。彼之相戰，雖是自中報復，然豈可以不干於我，而忽之乎？卿居中持重，慎勿輕動。觀變應機，毋或差失。</p>
<p>성종 16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2월 14 일(계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癸酉/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6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p>	<p>유구국왕(琉球國王)상원(尙圓)이 신사랑(新四郎)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p>	<p>○琉球國王尙圓，遣新四郎來聘。其書契曰：</p>

(成化) 19년) 12월 18
일(정축) 2번째기사

“남북(南北) 만리에 바닷길이 험난하여 배로 왕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빙례(聘禮)를 닦지 못하였습니다만, 성덕(盛德)을 사모하여 일찍이 하루도 서로 잊을 수 없었으니, 고명(高明)하심으로써 환히 알고 계시는 바이므로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양해하실 것입니다. 성화(成化) 14년(14508) 초가을에 표류(漂流)하는 두세 무리를 호송(護送)하여 귀국(貴國)에 돌려보내는 편(便)에 후하지 못한 토산물을 받들어 올려서 작은 정성을 표하였었는데, 물건마다 진귀한 생산품으로 보답하여 주셨으니, 이른바 훌륭한 선물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배롭게 간직하였으니, 어찌 감사하고 부끄러움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신사랑(新四郎)을 전사(專使)로 삼고 야차랑(耶次郎)을 부사(副使)로 삼아 작은 예를 바쳐서 정성을 나타내며 겸하여 구구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비록 신사랑이란 자는 우리 나라 사람은 아닐지라도 일찍이 능히 황화(皇華)14509)의 아름다움을 다하여 전하(殿下)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전사(專使)로 삼았으니, 밝게 살펴소서. 우리 나라는 대대로 불교(佛敎)에 정성을 바쳐서 가람(伽藍)을 짓고 금상(金像)14510)을 설치하고 취도(毘徒)14511)를 두어 장엄(莊嚴)과 복혜(福慧)를 오로지 하였으나, 삼보(三寶)14512) 가운데 법보(法寶)를 갖추지 못한 것을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이 때문에 앞서 비로 법보(毘盧法寶) 1장(藏)을 구하였더니, 답서에 유시(諭示)하기를 ‘여러 곳에서 구해 갔기 때문에 이미 다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1장을 돌아오는 사신편에 부쳐 주어서 남극(南極)의 불모지(不毛地)가 불화(佛化)14513)에 영구히 짓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하여 면주(綿紬) 5천 필과 면포(綿布) 5천 필을 구하는데, 이는 대개 비로법보전(毘盧法寶殿)을 창건하는 자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면 은혜를 입음이 막대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방물(方物) 약간이 별폭(別幅)에 갖추어 있으니, 살펴서 받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끝으로 진중(珍重)14514)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南北萬里，海路險難，舟船遲還，不敢容易。是以不克累年修聘禮，而思慕盛德，未嘗一日相忘，高明所照，必諒此心矣。成化十四年初秋，護送漂流人兩三輩，還着於貴國之次，奉投不腆土宜，聊表微忱，辱報以件件之珍產，所謂瑠瑤之報也。一一寶秘，豈勝感愧乎？方今以新四郎爲專使，以耶次郎爲副使，致塵露謝忱，兼啓區區之願望也。雖新四郎者，非我國人，嘗能盡皇華之美，以達于殿下。由是今亦以爲專使也，亮察亮察。我國累世，推誠佛敎，締緝伽藍，設金像，安毘徒，專莊嚴福慧，然三寶之內，猶以未具法寶，爲缺典也。是故前此，求(昆) [昆] 盧法寶一藏，報書諭曰：“因諸處求去已盡矣。”今更切望以一藏，付回介，俾南極不毛之地，永霑佛化。仍求綿紬五千匹、緜布五千匹，蓋成(昆) [昆] 盧法寶殿創建之資者也。希令我願滿足，荷恩莫大焉。瑣瑣方物若干，具在別幅。伏惟照領，餘冀珍重。不悉。別幅，香五十斤，胡椒五百斤，桂心千斤，鬱金百五十斤，檳榔子百斤，肉豆

	하였다. 별폭은 향(香) 50근(斤), 호초(胡椒) 5백 근, 계심(桂心) 1천 근, 울금(鬱金) 1백 50근, 빈랑자(檳榔子) 1백 근, 육두구(肉豆蔻) 1백근이다.	薙百斤。
성종 16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2월 21일(경진)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庚辰/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6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2월 26일(을유) 1번째기사	도승지(都承旨)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오늘 자식을 초례(醮禮)14544) 시키니 가서 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술과 안주를 하사하도록 명하자, 김여석이 하사하는 것을 공경히 받고서 나갔다. 이튿날 동료(同僚)가 말하기를, “어제 특별히 은사(恩賜)를 입었으니 하례할 만하다. 다만 사사로운 일로써 위로 신청(宸聽)을 번거롭게 함은 어려움이 없었는가?” 하니, 김여석이 말하기를, “일로 인하여 먼저 나가는데 아뢰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였다. 동료가 말하기를, “일찍이 보건대 일찍 나간 적이 많았는데, 어찌하여 일일이 계품(啓稟)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자, 김여석이 대답하지 아니하니 좌중이 가만히 웃었다. 김여석은 승정원(承政院)에 들어오면서부터 뜻을 굽혀 아첨하여 자못 은권(恩眷)이 있어서 도승지(都承旨)에 뛰어올려 제수되었는데, 지우(知遇)14545) 의 깊음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겨서 총애를 굳게 하는 계책에 더욱 힘썼다.	○乙酉/都承旨金礪石啓曰: “今日醮子, 請往見。” 上命賜酒、馔, 礪石拜賜而出。 翌日同僚曰: “昨日別蒙恩賜, 可賀。(怛) [但] 以私事, 上煩宸聽, 得無難乎?” 礪石曰: “因事先出, 不得不啓。” 同僚曰: “嘗見早出者數矣, 何不一一啓稟?” 礪石不答, 座中竊笑。 礪石自入政院, 曲意逢迎, 頗有恩眷, 超拜都承旨, 自幸以爲知遇之深, 尤務爲固寵之計。
성종 16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2월 29일(무자)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戊子/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61권, 14년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신(使臣) 신사랑	○上御思政殿, 接見琉球國王使臣新四

<p>(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2월 29 일(무자) 2번째기사</p>	<p>(新四郎) 등을 접견(接見)하였는데, 월산 대군(月山大君)이정(李婷),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과 여러 종재(宗宰)가 입시(入侍)하였다. 임금(上)이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에게 명하여 상관인(上官人) 신사랑(新四郎) 등에게 말하게 하니, “너희 국왕(國王)이 사람을 위임해 보내 왔으니, 내가 몹시 기뻐한다. 너희들이 멀리서 오느라고 참으로 수고했다.” 하니, 신사랑이 대답하기를, “천은(天恩)이 중하고 크니 감사함이 극진하여 끝이 없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신사랑 이하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인하여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 하였다.</p>	<p>郎等，月山大君婷、領議政鄭昌孫、諸宗宰入侍。上命禮曹判書李坡，語上官人新四郎等曰：“爾國王委遣人來，予甚喜悅。爾等遠來，良苦。”新四郎對曰：“天恩重大，感極無涯。”命新四郎以下進爵，仍賜物有差。</p>
<p>성종 161권, 14년 (1483 계묘 / 명 성화 (成化) 19년) 12월 29 일(무자) 4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내관(內官) 김영진(金永珍)·김의달(金義達)·김효선(金孝善)·정계동(鄭季同)·최영정(崔永貞)이 나인(內人)과 더불어 모여 앉아서 술을 마신 죄는, 김영진은 율(律)이 결장(決杖) 60대와 도(徒) 1년에 해당하고, 김의달 등은 율이 결장 1백 대와 벼슬은 파면하고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며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김영진에게는 장(杖) 60대를 속(贖)바치게 하고 본향(本鄉)에 충군(充軍)하며, 나머지는 각각 한 등(等)을 감하여 속(贖)바치게 하였다.</p>	<p>○義禁府啓：“內官金永珍、金義達、金孝善、鄭季同、崔永貞與內人會坐飲酒罪，金永珍律該決杖六十、徒一年，金義達等律該決杖一百、罷職不敍、告身盡行追奪。”命永珍杖六十贖、本鄉充軍，餘各減一等贖。</p>
<p>성종 16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월 24 일(임자) 1번째기사</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술을 차려 놓고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보낸 영산(永珊)·종수리(宗修理)·양국만(亮國滿)·직선(職宣) 등을 인견(引見)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에게 명하여 영산 등에게 전교하기를, “너희 도주(島州)가 성심으로 진향(進香)하고 진하(進賀)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는, 인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p>	<p>○壬子/上幸景福宮，御思政殿，置酒引見宗貞國特送永珊、宗修理亮國滿、職宣等，命禮曹判書李坡，傳于永珊等曰：“汝島主有誠心進香進賀，予甚嘉之。”因賜物有差。</p>
<p>성종 164권, 15년</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朔戊子/上詣泰慶殿上食。</p>

<p>(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3월 1일 (무자) 1번째기사</p>		
<p>성종 164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3월 29 일(병진)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이제 가뭄의 징조가 있고 근래에 반사(頒赦)14911) 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그래서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 외에는 용서하려고 하니,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사면(赦免)하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가뭄이 극심하지도 않으니, 천천히 기후(氣候)를 보아서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죄(罪)가 경(輕)하면서 실정[情]이 중(重)한 자도 또한 많이 면방(免放)될 것이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경중(輕重)을 김량(斟量)14912) 하여 계달(啓達)하게 한 뒤에 방사(放赦)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가뭄이 당장 극심하지 않고 또 사(赦)란 것은 소인(小人)에게 다행하니, 지금 반사(頒赦)함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또 국상[國恤] 3년 안에 제멋대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자못 많으니, 청컨대 금주(禁酒)하게 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심회(沈澮)의 의논에 따르되, 헌부(憲府)로 하여금 제멋대로 술 마시는 것을 금(禁)하게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今有旱徵，邇來久不頒赦。關係綱常外，欲宥之，其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韓明澮、尹弼商議：“赦是重事，而旱不太甚，徐觀氣候，更議。”沈澮議：“上教允當。但恐罪輕而情重者，亦多免放，令攸司，斟量輕重，啓達後放赦。”洪應議：“旱氣時不太甚，且赦者小人之幸，今之頒赦，無乃太早乎？且國恤三年內，縱酒者頗多。請禁酒。”李克培議：“上教允當。”從沈澮議，令憲府禁縱酒。</p>
<p>성종 165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4월 17 일(계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癸酉/上詣泰慶殿，上食。</p>

성종 165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4월 17 일(계유) 3번째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비가 제때를 어겨 가물 징조가 크게 있으니, 전례 에 따라 비를 빌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술을 금하라고 명하였다.	○禮曹啓曰: “今當農月, 雨澤愆期, 大有旱徵, 請依前例祈雨。” 從之, 仍 命禁酒。
성종 165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4월 27 일(계미)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癸未/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66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5월 5일 (신묘)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辛卯/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66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5월 5일 (신묘) 2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단양절(端陽節)15003) 이라 하여 향온(香 醞)15004) 을 바쳤는데,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금주(禁酒)를 행하는데 내가 만약 미리 알았다면 마땅히 제지했을 것 이나, 이미 가져온 것이니 물리칠 수도 없다. 이것을 가지고 어가를 따라온 종재(宗宰)·제장(諸將)·대간(臺諫)과 홍문관원(弘文館員)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였다.	○議政府、六曹以端陽節進香醞, 傳 曰: “今行酒禁, 予若早知, 當止之, 業 已進, 不當却也。 其以此饋隨駕宗 宰、諸將、臺諫、弘文館員。
성종 166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5월 22 일(무신) 2번째기사	졸(卒)한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명송(李命崇)에게 관곽(棺槨)과 유석 (油席) 3장, 종이 70권, 쌀·콩 아울러 15섬을 내려 주라고 명하고, 이어 전교 하기를, “이명송은 경연관이므로, 특별히 은전(恩典)을 더하는 것이다.” 하였다.	○命賜卒弘文館副提學李命崇棺槨、 油席三張、紙七十卷、米·豆并十五 碩, 仍傳: “命崇經筵官, 故將加恩 數。
성종 166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5월 25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辛亥/上詣泰慶殿, 上食。

<p>일(신해) 1번째기사</p> <p>성종 166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5월 28 일(갑인)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탄일(誕日)에 진상(進上)하는 것을 모두 그만 두게 하고, 장원서(掌苑署)의 진상도 철따라 나는 물품이 아니면 또한 그만두 게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는 특별한 진상이 아니고 예사로운 일이니, 줄이지 아니함이 어땡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국상(國喪)을 당하여 술도 금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쓸 것인가? 만일 장원 서(掌苑署)의 철따라 나는 물품이라면 다 줄일 필요는 없다.”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議政府、六曹誕日 進上，令全除。掌苑署進上，非節物， 則亦除。”承政院啓曰：“此非別進上， 乃例事也。勿減何如?”傳曰：“當國 喪，且有酒禁，用之何處?若掌苑署節 物，則不必盡減。”</p>
<p>성종 167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6월 3일 (무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戊午/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67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6월 14 일(기사)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己巳/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67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6월 14 일(기사) 2번째기사</p>	<p>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이르기를, “주금(酒禁)은 천계(天戒)를 삼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이미 비가 내렸으며, 가난한 백성이 어쩌다 한 병의 술을 얻어 서로 모여서 마시다 가 적발되어 죄를 받는 것은 가엾으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모여서 술을 마시 는 자가 아니면 금하지 말라.” 하였다.</p>	<p>○御書下承政院曰： 酒禁，所以謹天戒、省費用。今既得 雨，貧民幸得一壺酒，相聚而飲，被撻 受罪，甚可矜悶。自今非會飲縱酒者， 勿禁。</p>

<p>성종 167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6월 27 일(임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壬午/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7월 2일 (병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15102) 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丙戌/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7월 6일 (경인) 1번째기사</p>	<p>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정동(鄭同)이 칙지(勅旨)를 빙자하여 우리 나라에 물건을 요구하였던 까닭은 한씨(韓氏)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한씨가 죽고 정동도 죽었습니다. 성지 (聖旨)에는 ‘별헌(別獻)15127) 때마다 한씨의 족친(族親)을 번갈아 보내어 공 진(供進)하라.’ 하였더라도, 이제부터는 한씨의 족친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한씨가 이미 죽었고 정동도 죽었으며, 한씨의 족친 중에서 북경에 가는 일을 감당할 만한 자는 한치형(韓致亨)뿐인데 이제 어머니가 죽고 담제(禫祭)15128) 를 지내지 않았으니, 황제가 한씨의 족친을 보내지 않은 까닭을 물으면,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명회(韓明澮)·홍응(洪應)·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이번 성절(聖節)15129) 에는 성지(聖旨)에 따라 한씨의 족친을 차출하여 보 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이번에 별헌(別獻)하는 물건은 이미 다 수량을 줄였으므로, 한씨의 족친을</p>	<p>○庚寅/承旨等啓曰: “鄭同之憑藉勅 旨, 徵求我國者, 以有韓氏也。 今韓 氏已歿, 鄭同已死。 聖旨雖曰: ‘每於 別獻, 遣韓族, 輪流供進’, 自今韓族勿 入送, 何如? 傳曰: “其議于領敦寧以 上。” 鄭昌孫議: “韓氏已歿, 鄭同亦 死。 韓氏族親內赴京可當者, 唯韓致 亨, 而今母喪未禫, 皇帝若問不送韓族 之由, 以此對之, 何如?” 韓明澮、洪 應、尹壕議: “今聖節, 依聖旨, 差遣 韓氏族親, 何如?” 尹弼商、李克培、 盧思愼議: “今此別獻之物, 既皆減數, 韓族不可不遣。 況明有勅旨, 若問不 遣之由, 將何辭以答之? 今姑差送, 徐 觀其勢。” 傳曰: “予更思之, 韓族不 可不遣。 韓致亨, 皇帝亦知其爲人, 予欲遣之, 於政院意, 何如?” 承旨等 啓曰: “今當別獻減進之時, 不可不擇</p>

	<p>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분명히 칙지(勅旨)가 있었으니, 보내지 않은 까닭을 물으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우선 차출하여 보내고 천천히 형세를 보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한씨의 족친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겠다. 한치형은 황제도 그 사람됨을 아니, 내가 보내려 하는데, 승정원(承政院)의 생각에는 어떠한가?”</p> <p>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p> <p>“이제 별헌을 줄여서 바치는 때를 당하였으니, 사람을 가려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씨의 족친을 보내야 한다면 한치형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한치형을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p>	<p>遣。 臣等意 ‘不得已遣韓族， 則致亨可矣。’ ” 傳曰：“其遣致亨。”</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7월 11일(을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乙未/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7월 12일(병신) 1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송영(宋瑛)이 와서 아뢰기를,</p> <p>“별례(別例)로 진헌(進獻)하는 면포(綿布)·종이 따위의 물건은 더하더라도 괜찮겠으나, 반합(班蛤)같이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제 더 바치더라도 중국에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일의 대체(大體)에 있어서도 적당하지 못하니, 더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자질구레한 물건일지라도 황제가 명한 것이니, 더 바쳐도 무방하다.”</p> <p>하였다.</p>	<p>○丙申/司憲府掌令宋瑛來啓曰：“別進獻絲布、紙等物， 雖加猶可， 如班蛤細瑣之類， 今雖加進， 中朝不以爲喜， 於事體， 亦未穩， 勿加何如?” 傳曰：“雖細鎖之物， 亦是皇帝所命， 加進無妨。”</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7월 17 일(신축)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辛丑/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7월 21 일(을사)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乙巳/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7월 22 일(병오) 3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신의 아버지가 강화(江華)에 부임하여 귀근(歸覲)하지 못한 지 이제 3년이 되 었고, 또 신의 어머니가 병을 심하게 앓아서 신을 보고자 하나, 신의 직관(職 管)이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 보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p>	<p>○都承旨金礪石啓曰: “臣父赴任江華, 不得歸覲, 于今三年, 且臣母患病深, 欲見臣, 臣之職管非輕, 未敢啓耳。” 傳曰: “其往見”, 仍賜酒肉。</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7월 23 일(정미)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제 보화토(浦花土)의 사자(使者) 2인과 토로(吐老)의 사자 5인이 한 관소 (館所)에 함께 있는데, 토로의 사자는 이미 접견하셨으므로 이번에 다시 접견 하실 수 없습니다. 보화토의 사자를 접견하실 때에 토로의 사자는 어떻게 대 접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한 관에 있는 사람에게 어찌 차이를 둘 수 있겠는가? 토로의 사자도 아울러 접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토로의 사자는 전에 이미 접견하셨는데 이제 또 접견하시면 삼위(三衛)에서 사자로 보내는 자가 잇달아 올라올 것이므로, 신들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p>	<p>○丁未/承政院啓曰: “今浦花土使二人、吐老使五人同處一館, 吐老使, 則已接見, 今不可更接也。 浦花吐使接見時, 吐老使, 何以處之?” 傳曰: “一館之人, 何可異之? 吐老使竝當接見。” 承旨等啓曰: “吐老使, 前既接見, 今又接見, 則三衛使送, 絡繹上來, 臣等恐例或一成, 則弊將難支。 浦花吐使接見之日, 吐老使依留館倭賜宴例, 饋餉何如?” 從之。</p>

	<p>관례가 한 번 이루어지면 폐해를 장차 감당하기 어려울 듯하니, 보화토의 사자를 접견하시는 날에 토로의 사자는 관소에 머물러 있는 왜인(倭人)에게 잔치를 내려 주는 예(例)에 의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7월 25일(기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己酉/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68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7월 29일(계축) 1번째기사</p>	<p>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정난중(鄭蘭宗)이 치계(馳啓)하기를, “피인(彼人)15159) 동거처(童巨處) 등 4인이 만포진(滿浦鎭)에 와서 말하기를, ‘본토(本土)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강변에 옮겨 와서 살려 하니, 진제(賑濟)15160) 하여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보이기를, “이 말이 거짓인지 참말인지 모르기는 하나, 일찍이 조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참말인지 허위인지는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본토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와서 진구(賑救)를 바라는데, 어찌 평안도 한 도만으로 지공(支供)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 처자를 데려와 강변에 살면서 우리 허실(虛實)을 엿본다면, 이것은 더욱이 안될 일입니다. 더구나 중국에서 들으면 반드시 견책(譴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모두 해로우니, 변장(邊將)을 시켜 이렇게 타이르게 하소서.” 하고, 윤호(尹壕)·허종(許琮)·한치례(韓致禮)·손순효(孫舜孝)·김작(金碓)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기근 때문에 왔다가 이것을 인연하여 길이 살려고 하는 것인지도 알</p>	<p>○(辛) [癸] 丑/平安道節度使鄭蘭宗 馳啓曰: “彼人童巨處等四人來滿浦鎭言: ‘本土饑饉, 欲移接江邊, 冀蒙賑濟.’” 御書示承政院曰: 此言, 雖未知虛實, 然不可不早爲之所。其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六曹參判以上。 韓明澮、沈澮、尹弼商、洪應議: “彼之誠僞, 固未可知。因本土飢饉, 來望賑救, 豈平安一道所能支也? 儻率妻孥, 來居江邊, 窺我虛實, 則此尤不可, 況中國聞之, 必加譴責。於此於彼, 俱有害焉, 令邊將, 以此曉諭。” 尹壕、許琮、韓致禮、孫舜孝、金碓議: “彼因飢饉而來, 欲因此永居, 未可知也。臣等意謂 ‘若一開一端, 後來者</p>

	<p>수 없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한번 한 단서를 열어 주면 뒤에 오는 자가 반드시 많아서 지응(支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길이 살게 하려 한다면, 본도(本道)와 영안도는 형세가 서로 같지 않아서, 영안도는 연변(沿邊)의 각진(各鎭)에서 다 어염(魚鹽)이 나므로 지대(支待)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본도는 어염이 나는 곳이 만포에서 험한 길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날라 가기가 지극히 어려운데다가, 더구나 이 도의 방어(防禦)는 영안도의 육진(六鎭)15161) 에 비할 바가 아니니, 피인(彼人)으로 하여금 지경에 가까이 와서 허실을 엿보게 할 수 없겠습니다.”</p> <p>하고, 어세공(魚世恭)·어세겸(魚世謙)·이승원(李崇元)·홍이로(洪利老)·이세좌(李世佐)·홍귀달(洪貴達)·김승경(金升卿)·권정(權挺)·변수(邊脩)가 의논하기를, “이제 동거처 등이 고한 것을 보면, 전에는 이르기를, ‘고도을치(高都乙赤) 등이 도둑질한 사변을 알리러 왔다.’ 하였고, 지금은 이르기를, ‘기근 때문에 진제를 바란다.’ 하여 공갈하기도 하고, 애걸하기도 하니, 그 기근으로 진구를 바란다는 말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가령 확실하더라도 저들은 이미 중국의 죄인이고 더구나 강건너 땅은 본래 우리 땅이 아닌데, 와서 접하여 살도록 허가한다면 중국에서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우리 나라에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허실을 엿보면, 장래의 걱정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뒤에 다시 오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이 땅은 중국에 가까우므로, 너희들이 와서 살면 중국 조정(朝廷)에서 듣고 반드시 견책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타일러 진휼(賑恤)하고, 위로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다 같으니, 이것을 절도사(節度使)에게 하유(下諭)하라.” 하였다.</p>	<p>必多，應之爲難。’ 若欲永居，則本道與永安道，勢不相似，永安道沿邊各鎭，皆產魚、鹽，待之無難。本道魚、鹽產處，距滿浦險遠，轉輸極難。況此道防禦，非永安六鎭之比，不可令彼人近境，而窺其虛實。” 魚世恭、魚世謙、李崇元、洪利老、李世佐、洪貴達、金升卿、權挺、邊脩議：“今觀童巨處等所告，則前則云：“爲報高都乙赤等作賊事變而來”，今則云：“因飢饉，望其賑濟。” 或恐嚇，或乞憐，其言飢饉望救，未可的知。假令的實，彼既上國之罪人，況越江之地，本非我土，若許來接，則上國聞之，以爲何如？且近在我國，以窺我虛實，將來之虞，亦甚可慮。後若更來，當語之曰：“此地密邇上國，汝等來居，則朝廷聞之，必加譴責。” 以是開諭，賑恤慰送。” 傳曰：“諸議皆同，其以此下諭節度使。”</p>
<p>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15162) 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지냈다.</p>	<p>○乙卯朔/上詣泰慶殿，行朔祭。</p>

<p>(成化) 20년) 8월 1일 (을묘) 1번째기사</p>		
<p>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1일 (을묘) 4번째기사</p>	<p>명하여 창덕궁(昌德宮)에서 서연관(書筵官)15164) 을 공궤하게 하였는데, 세자(世子)가 친히 잔을 잡고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빈객(賓客) 이상에게 녹비(鹿皮) 각각 1장(張)을, 보덕(輔德) 이하에게 각각 활[弓] 1장을 내리게 하였다. 세자가 《소학(小學)》의 강독(講讀)을 마쳤기 때문이다.</p>	<p>○命饋書筵官于昌德宮，世子親執杯飲之，賓客以上，賜鹿皮各一張，輔德以下，弓各一張。以世子畢講《小學》也。</p>
<p>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2일 (병진) 1번째기사</p>	<p>보화토(甫花土)가 사송(使送)한 마아다우(馬阿多右) 등이 사조(辭朝)하니, 공궤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教)하기를, “보화토가 사자(使者)를 보냈다면, 반드시 아들·사위 등 겨레붙이를 보냈을 것이다. 보화토의 사자라고는 하나, 진위(眞僞)를 알 수 없으면 본디 받아들이지 않아야 마땅하겠지만, 먼 곳 사람이 온 것을 차마 물리칠 수 없으므로 우선 접대하거니와, 아들·사위 등 겨레붙이를 보내어 온다면 평안도를 거쳐 오는 것도 허가할 것이고, 후한 예(例)로 접대하겠다. 이렇게 타이라.” 하였다.</p>	<p>○丙辰/甫花土使送馬阿多右等辭，命饋之。仍傳于承政院曰：“甫花土若遣使，則必送子、壻族屬矣。雖云甫花土之使，眞僞未可知，則固當不納，然遠人之來，不忍拒之，故姑接之。若遣子、壻族屬來，則雖由平安道，亦許之，當以優例接待。其以此教之。”</p>
<p>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2일 (병진) 2번째기사</p>	<p>경상도 대구(大丘) 사람 생원(生員) 서감원(徐坎元)이 봉사(封事)15165) 를 올렸다.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당(唐)·우(虞)15166) 의 일을 아름답게 여기고 상(商)15167) ·주(周)의 일을 즐겁게 여기어 성색(聲色)15168) 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유전(遊畋)15169) 을 일삼지 아니하시며, 오직 경적(經籍)과 사전(史傳)을 날마다 앞에 접하고 경연(經筵)에 나아갈 때마다 치도(治道)를 자문하시니, 치도의 융성함이 주(周)나라의 융성함과 나란히 달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천재(天災)가 유행(流行)하여 겨울에 천둥하고 여름에 우박이 내리며 가뭄이 잇달아서 기근이 거듭 이르러, 백성이 몸둘 곳을 잃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흩어지고 굶어 죽는 자가 거듭 쌓이며, 염치가 아주 없어지고 분경(奔競)15170) 이 풍습을 이루어 간사한 자가 다투어 일어나고 도둑이 흥행(興行)하며, 강직한 신하는 초야에 물러가 있고 소원(疏遠)한 신하</p>	<p>○慶尙道大丘人生員徐坎元上封事。其略曰： 殿下即位以來，嘉唐、虞，樂商、周，不邇聲色，不事遊畋，惟經籍、史傳，日接于前，每御經筵，諮訪治道，其宜治道之隆，竝驅於成周之盛。而頃年以來，天災流行，冬雷夏雹，旱乾相仍，飢饉荐臻，民失其所，父子相離，餓莩相籍，廉恥道喪，奔競成風，姦邪競起，盜賊興行，鯁直之臣，退處於野，疎遠之臣，無路得進，弓旌、玉帛之禮，不</p>

	<p>는 진용(進用)될 길이 없는데 궁정(弓旌)·옥백(玉帛)의 예(禮)15171) 는 세상에서 행해지지 않으니, 무릇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p> <p>신이 듣건대 주공(周公)이 임금을 보필할 때에 어진 사람을 만나기에 바빠서 감던 머리를 쥐고 먹던 음식을 뱉고 나가 접대하여 어진 자는 진용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물리쳤으며, 또 무일(無逸)15172) 의 경계와 입정(立政)15173) 의 글로 은근하게 간절히 아뢰어 성왕(成王)이 받아들였다 하는데, 지금의 재상(宰相)이 과연 주공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은 감히 알 수 없으나, 위에서 아래에 대하는 것이 과연 성왕이 주공에게 대하는 것과 같으실 수 있겠습니까? 천변(天變)은 큰일이며 본디 헛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함께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해야 진실로 마땅한데, 지금 힘쓰는 것은 비를 빌고 술을 금하는 몇가지 일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국가의 사세(事勢)를 사람마다 다 말하기를, ‘화기(和氣)를 상할 수 있고 재변을 부를 수 있다.’ 하는데, 대신(大臣)이 아뢰지 않고 간관(諫官)이 논하지 않으니, 무슨 까닭입니까?</p> <p>신이 듣건대 《춘추(春秋)》에 한 마굿간을 고치거나 한 대(臺)를 쌓은 것까지도 반드시 썼으니, 그것은 민력(民力)을 과중하게 하여 토목 일에 애쓴 것으로 임금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목일이 점점 더 일어나므로 따로 영선(營繕)을 맡은 곳을 세워 수리 도감(修理都監)이라 이름하여 나무를 나르고 돌을 옮기느라 외치는 소리가 길에서 끊이지 않고 백성의 집을 헐기까지 하여, 지아비가 그 처자를 보양할 줄 알지만 떠나려 해도 갈 곳이 없는 한탄이 있으니, 매우 불쌍히 여길 바입니다. 경복궁(景福宮)은 선조(先祖)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성자 신손(聖子神孫)이 여기에서 수공(垂拱)15174) 하고 여기에서 근정(勤政)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궁궐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원유(園囿)가 넓지 않은 것도 아닌데, 궁실(宮室)을 늘려 짓고 원유를 넓게 차지하니, 이것은 참으로 무슨 마음입니까?</p>	<p>行於世，凡所以致此者，何也？臣聞‘周公之爲輔相，其急於見賢也，握髮吐哺以待之，賢者進而用之，不賢者黜而退之。又如《無逸》之戒、《立政》之書，慤懃懇陳，而成王納焉’。今之宰相，果能有周公之心乎？臣不敢知，上之於下，果能如成王之於周公乎？天變大事，固不虛發，則君臣固宜，相與兢惕，以答天譴，而今之所務者，不過祈雨、禁酒數事而已。國家之事勢，人人皆曰：“可以傷和矣，可以召災矣”，而大臣不以聞，諫官不以論，何也？臣聞‘《春秋》於新一廡、築一臺，必書之’，所以重民力，勤土功，示人君不可病民也。今也土木之役浸興，別立營繕之所，名之曰修理都監，輸木轉石，呼耶之聲，不絕於道路，至毀撤民家，夫知保抱厥婦子，有徂何往之嘆，可哀之甚者也。景福宮，乃先祖之所創，而欲使聖子神孫，垂拱於斯，勤政於斯者也。宮闕非不足也，園囿非不廣也，而增營宮室，廣占園囿，是誠何心哉？臣聞‘異端不息，則吾道不明’。今僧徒以因果之說，惑無知之人，遊手遊食，減兵卒之額，賊農</p>
--	--	---

	<p>까?</p> <p>신이 듣건대 이단(異端)이 그치지 않으면 오도(吾道)15175) 가 밝아지지 않는다 합니다. 지금 중[僧]들이 인과(因果)15176) 라는 설(說)로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며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어, 병졸의 액수(額數)를 줄이고 농민의 식량을 축내는데, 장차 어디에 쓸 것이기에 이를 위하여 과시(科試)도 베풀어 예조(禮曹)에서 먼저 뽑고 이조(吏曹)에서 뒤에 벼슬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도첩(度牒)15177) 이 있는 중은 환속(還俗)시키지 말게 하고, 고탑(古塔)이 있는 절은 그에 따라 헐지 않으므로, 중들이 점점 번성하여 곳곳이 무수하고, 절이 날로 흥성하여 금벽(金壁)이 서로 빛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하여 도첩이 있고 없는 것이나 고탑이 있고 없는 것에 얽매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축수(祝壽)하는 재(齋)를 폐지하여 삼사(三寺)에서 천공(薦供)하는 물건을 없애고, 또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역대(歷代)의 부처를 배척한 소(疏)를 쓰게 하여, 온나라의 신민이 다 오도(吾道)가 날로 융성하고 이단(異端)이 날로 쇠퇴하는 것을 알도록 계도(啓導)하였으므로, 태평한 정치를 바랐습니다. 근년 이래로 점점 처음과 같지 않아져서, 대간(臺諫)이 그것을 말하여도 듣지 않고 유사(有司)가 그것을 상소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유생(儒生)이 부처 때문에 갇히고 중 때문에 죄를 받으므로, 저 중들이 득의(得意)하여 기(氣)를 부려 스스로 뽑내고 학궁(學宮)에 함부로 들어가 생도(生徒)를 묶기까지 하니, 마음 아프다 하겠습니다. 근일에 중 육청(六淸)이 서울로부터 대구에 이르러 전 부사(府使) 임수창(林壽昌)과 함께 앉아 수작하다가 임수창이 서울의 기이한 일을 물으니, 육청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학조(學祖)를 접대하고 상사(賞賜)를 후하게 하시는 것이 절도가 없었다.’ 하였는데, 신이 이 말을 듣고는 전하께서 부처를 숭상하시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p> <p>전(傳)에 이르기를, ‘3년 동안 상(喪)을 입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상례(喪禮)</p>	<p>民之食， 不知將何所用， 而亦爲之設科， 禮曹選之於前， 吏曹爵之於後乎。 且有慶牒之僧， 勿令還俗， 有古塔之寺， 因而不毀， 故緇流漸繁， 而所在無額， 寺刹日興， 而金壁相輝， 如知其不可， 何拘度牒之有無、古塔之存否歟？ 殿下卽位之初， 罷祝壽之齋， 除三寺薦供之物， 又令弘文館， 書歷代關佛疏， 以啓一國臣庶， 皆知吾道之日盛、異端之日衰， 而想望太平之治也。 近年以來， 漸不如初， 臺諫言焉而不聞， 有司疏焉而不納， 儒生以佛而見囚， 以僧而被罪， 彼僧者流， 揚揚肆氣， 以自矜誇， 至於濫入學宮， 束縛生徒， 可謂痛心。 近日僧六淸， 自京師， 到大丘， 與前府使林壽昌， 共坐酬酢， 壽昌問京中奇事， 六淸言：“殿下待學祖， 厚賞賜無節。” 臣聞之， 以謂‘殿下崇佛， 自此始矣。’ 傳曰：“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父母之喪， 無貴賤， 一也。” 今也軍卒之徒， 遭親之喪， 纔經百日， 釋服從吉， 負羽荷戈， 奔走行伍之間， 哀痛之心， 因之以少衰， 豈非仁政之一大累乎？ 傳曰：“諫者福也， 諛者賊也。” 夫正色立朝， 極言不諱者， 非爲</p>
--	---	---

이다.’ 하고, ‘부모를 위하여 상을 입는 것은 귀하건 천하건 물론하고 마찬가지로 지이다.’ 하였는데, 지금은 군졸들이 아버지의 상을 만나서 겨우 1백 일을 지내면, 상복(喪服)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갈아 입고 화살을 지고 창을 메고서 향오(行伍) 사이에서 분주하므로, 애통한 마음이 이에 따라 적어지니, 어찌 인정(仁政)의 큰 흠결이 아니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간(諫)하는 자는 복(福)이 되고 아첨하는 자는 해가 된다.’ 하였습니다. 대저 낮빛을 바꾸고 조정(朝廷)에 서서 극진히 말하고 숨기지 않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니, 과실을 바로 잡고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애써 용린(龍鱗)을 건드리고 호수(虎鬚)를 만져서 천둥 같은 위엄을 범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성지(聖知)의 임금은 말한 자를 죄주지 않았습니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물흐르듯이 간언(諫言)을 따르고 말이 온당하지 못하더라도 죄주지 않으셨는데, 근년 이래로는 대간의 말을 흔히 들어주지 않고 말이 알맞지 않은 자도 견책하시며 조신(朝臣) 중에서 혹 일을 말한 것 때문에 파직된 자가 오래도록 복직되지 않기도 하니, 곧은 말을 하는 신하는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 무리는 때로 진용(進用)될까 신은 염려합니다.

신이 듣건대 임금과 함께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자로는 수령(守令)보다 앞서는 이가 없다 합니다. 수령을 마땅한 사람으로 얻으면 백성이 그 혜택을 받고,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백성이 그 폐해를 받으니, 수령의 직임은 중합니다. 근일 전하께서 수령 중에서 가장 어진 자와 가장 어질지 못한 자를 의정부(議政府)에 물어서 올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셨으니, 우리 백성을 생각하시는 도리가 지극하시나, 전하께서 상주고 벌주신 것이 과연 다 공론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의 말을 어찌 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였으니, 신은 전하께서 먼저 조정을 바꾸어서 백관(百官)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백관이 바르면 감사(監

身謀, 皆爲國計, 若無繩愆責難之心, 何苦批龍鱗, 探虎鬚, 以犯雷霆之威哉? 是故, 聖知之君, 不罪言者。 殿下卽位之初, 從諫如流, 言雖失當, 亦不加罪。 近年以來, 臺諫之言, 多不聽納, 而言之不中者, 亦加譴責, 朝臣或以言事見罷者, 久未復職, 臣恐諤諤之臣, 不能自保, 而喋喋之徒, 有時乎進矣。 臣聞 ‘與人主共理, 以安斯民者, 莫先於守令’。 守令得其人, 則民受其賜, 苟非其人, 則民受其害, 守令之職, 重矣。 近日殿下, 以守令之最賢、最不賢者, 問於政府, 或陞或黜, 其所以念吾民者, 至矣。 然未知殿下之賞罰果皆出於公議乎, 左右之言, 豈可盡信。 古人云: “源清則流清。” 臣願殿下先正朝廷, 以正百官, 百官正, 則監司自爾正, 守令自爾正矣。

傳于承政院曰: “疏內多有訾予之言, 然予何怒焉? 但其言曰: ‘言事見罷, 久不復職者’, 予反覆思之, 未知指何人也。 又云: ‘近日以守令之最賢、最不賢者, 問於政府, 或陞或黜, 然未知賞罰果皆出於公議.’ 坎元, 草茅賤

	<p>司)가 절로 바꾸어지고 수령이 절로 바꾸어질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p> <p>“소(疏)에 나를 꾸짖는 말이 많이 있으나 내가 어찌 그것을 노여워하겠는가? 다만 거기에 ‘일을 말하고 파직되어 오래도록 복직되지 않은 자’라고 말한 것은 내가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어느 사람을 가리킨 것인지 모르겠다. 또 ‘근일수령(守令) 중에서 가장 어진 자와 가장 어질지 못한 자를 의정부(議政府)에 물어서 올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였으나, 상주고 별준 것이 과연 다 공론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는데, 서감원(徐坎元)이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서 조정을 멸시하여 그 말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세에서 묘당(廟堂)15178) 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른바 공론이 아니라는 것이 어느 사람을 말한 것인지를 내가 추국(推鞠)하려 하는데, 어떠한가?”</p> <p>하자,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p> <p>“후세 사람들 누가 한낱 유생(儒生)의 말을 믿고 조정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저 일을 말한 자는 혹 알맞지 못하였더라도 죄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일을 말하고 파직된 자가 어느 사람이며 상주고 별준 것이 공정하지 않았던 자가 어느 사람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p> <p>하니, 곧 명하여 관찰사(觀察使) 이육(李陸)에게 하서(下書)하기를,</p> <p>“도내 대구(大丘) 사람 생원(生員) 서감원(徐坎元)의 상소에, ‘조신(朝臣) 중에서 혹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파직된 자가 오래도록 복직되지 않았다는 것과 근일수령 중에서 가장 어진 자와 가장 어질지 못한 자를 의정부(議政府)에 물어서 올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였으나, 상주고 별준 것이 과연 모두 공론에서 나온 것인가? 좌우의 말을 어찌 죄다 믿을 수 있는가?’ 하였는데, 나는 조신 중에서 일을 말하고 파직되어 오래도록 복직되지 않은 자가 누구이며, 올리고 내친 수령 중에서 의논이 공정하지 않았던 자가 또 누구인지를 모르겠으니, 서감원에게 물어서 아뢰라.”</p>	<p>士，而蔑視朝廷，其言至此，後世以謂：‘廟堂有人乎?’ 其所謂非公議者何人予欲推鞠，何如?” 承旨等啓曰：“後之人，誰信一介儒生之言，謂：‘朝廷無人乎?’ 大抵言事者，雖或失中，不當加罪，但言事見罷者何人? 賞罰不公者何人? 此則不可不問也。” 卽命下書觀察使李陸曰：</p> <p>道內大丘人生員徐坎元上疏云：“朝臣或以言事見罷者，久不復職，近日以守令之最賢、最不賢者，問於政府，或陞或黜，賞罰果皆出於公議乎? 左右之言，豈可盡信乎? 予不知朝臣言事見罷久不復職者誰歟、陞黜守令議不公者又誰歟。 其問坎元以啓。</p>
--	---	--

	<p>하였다.</p>	
<p>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4일 (무오)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신수근(愼守勤)이 관가에서 사사전의 조세를 거두기를 청하고, 시독관(侍讀官) 이세우(李世佑)도 아뢰기를, “공신전(功臣田)은 공로가 있는 자가 받는 것이고 직전(職田)은 직사(職事)가 있는 자가 받는 것이거니와, 중은 일하지 않고 백성의 양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을 그르게 여기는 것이 아니며, 중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또 어찌 중이 나라에 보탬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다만 조종조(祖宗朝)의 일이므로 갑자기 변경하는 것을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그대들이 어찌 내 뜻을 모르겠는가?” 하였다. 이세우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황해도(平安道·黃海道)의 유이(流移)한 사람을 죄다 쇄환(刷還)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유이한 자라면 본디 쇄환해야 마땅하겠습니까마는, 한 도 안에서 가까운 사방의 이웃 고을에 남녀가 혼인하여 자손이 흩어져 사는 자도 모두 다 쇄환하면, 집안이 서로 헤어져서 부자·형제가 서로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막심할 것이니, 한 도 안에서 저희끼리 서로 옮겨 사는 자는 쇄환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이 말이 과연 옳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파(李坡)가 아뢰기를,</p>	<p>○戊午/御經筵。 講訖，掌令愼守勤請官收寺社田稅。 侍讀官李世佑亦啓曰：“功臣田有功勞者所受， 職田有職事者所受， 僧則遊手， 而食民之食， 可乎？” 上曰：“非以爾等之言爲非也。 非不知僧之遊手遊食也， 又豈不知僧之無益於家國乎？ 但祖宗朝事， 遽爾變更， 於心不忍耳， 且爾等豈不知予意？” 世佑又啓曰：“平安、黃海流移之人， 悉令刷還。 若實流移者， 則固當刷還， 但一道之內， 旁近四隣， 男婚女嫁， 子支散居者， 竝皆刷還， 則室家相離， 父子兄弟， 不相保矣。 其爲怨咨莫甚， 一道之內， 自相移居者， 勿令刷還， 何如？” 領事盧思愼曰：“此言果然。” 知事李坡曰：“平安北道， 則防禦緊關， 而土廣民稀， 故人不樂居， 南道則土厚役歇， 與下三道無異， 若不刷還， 則人皆樂於無事， 而相繼流亡矣。 南道之民， 以婚姻之故， 自相移居者， 則固當不問； 北道之人， 移徙南道者， 則不可不</p>

	<p>“평안북도는 방어에 긴요하게 관계되는 데다가 땅은 넓고 백성은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살려 하지 않으며, 남도는 땅이 좋고 신역(身役)이 험하므로 하삼도(下三道)15180) 와 다를 것이 없으니, 쇠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다 무사한 것을 즐거이 여겨서 잇달아 유망(流亡)할 것입니다. 남도의 백성 중에서 혼인 때문에 저희끼리 옮겨 사는 자는 진실로 묻지 않아야 마땅하겠으나, 북도의 사람이 남도로 이사한 자는 쇠환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과연 경(卿)의 말처럼 북도에서 남도로 이사한 자는 날날이 쇠환해야 한다.” 하였다. 노사신이 또 아뢰기를,</p> <p>“《대전(大典)》에 ‘양부(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본주(本主)의 뜻에 따라 속신(贖身)하고 양인(良人)이 된다.’ 하였으나, 양인을 만들거나 천인(賤人)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큰 권세입니다. 그 아버지 자가 나이가 서로 걸맞는 노비(奴婢)를 주고 서로 바꾸려 하더라도 본주가 허락하지 않고 수십 구까지 받아도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며, 적실(嫡室)에 후사(後嗣)가 없는 자는 재산을 죄다 기울이더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종량(從良)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인을 만드는 권세가 조정(朝廷)에 있지 않고 사가(私家)에 있게 될 것입니다.”</p> <p>하고, 이파가 아뢰기를,</p> <p>“노사신의 말은 마땅한 듯하나, 본주의 뜻에 따른다는 법이 없으면 첩에게서 난 사람이 법에 따라 종량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주를 경멸할 것이니, 이 폐단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하면 한 방도가 있습니다. 《대전》의 본주의 뜻에 따른다는 글 아래에, ‘나이가 걸맞는 자를 주어도 허락하지 않는 본주는 논죄(論罪)한다.’는 말을 덧붙여 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 법은 전에 승정원(承政院)의 말에 따라 적은 것이다. 이 법이 없으면 본</p>	<p>刷還。” 上曰：“果如卿言，自北道移南道者，一一刷還，可也。” 思慎又啓曰：“《六典 [大典] 》內：‘嫁良夫所生，從本主情願，贖身爲良。’ 爲良爲賤，國家大權也。 爲其父者，雖欲以年歲相準，奴婢相換，而本主不肯許之，至受數十口，而無厭。 若嫡室無後者，則雖盡傾財產，不以爲靳，必欲從良，若是，則爲良之權，不在朝廷，而在私家矣。” 坡曰：“思慎之言似當。 然若無從本主情願之法，妾產之人，意謂‘法當從良’，必輕蔑本主，漸不可長也。 無已則有一焉。 《大典》從本主情願之下，添入‘給年歲相準者，而本主不許者，論罪’之語，何如?” 上曰：“此法曾因政院之言，錄之耳。 若無此法，則有輕慢本主之患，不改此法，則有本主不許之弊。 當與大臣，博議施行。” 思慎曰：“從本主情願之法，本爲贖身其妾也。 其產則應許爲良，但官吏不察，而誤用耳。” 上曰：“予則以爲：‘贖其產也，非謂妾也。’” 經筵官退，副提學安琛入啓事，上曰：“徐坎元所言宮闕營繕、僧學祖厚待等事，予意：‘此儒不知朝廷大體，</p>
--	--	---

	<p>주를 경멸할 걱정이 있고,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본주가 허락하지 않을 폐단이 있으니, 대신(大臣)과 널리 의논하여 시행해야 하겠다.”</p> <p>하자, 노사신이 아뢰기를,</p> <p>“본주의 뜻에 따른다는 법은 본디 그 첩을 속신(贖身)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식은 양인이 되는 것을 허가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관리가 살피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는 그 자식을 속(贖)하는 것이고 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p> <p>하였다. 경연관(經筵官)이 물러가고, 부제학(副提學) 안침(安琛)이 계사(啓事)를 들이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서감원(徐坎元)이 말한 바 궁궐(宮闕)의 영선(營繕)에 관한 일과 중 학조(學祖)를 후하게 접대하였다는 등의 일은, 내 생각으로는 이 선비가 조정(朝廷)의 대체(大體)를 몰라서 이렇게까지 망령되게 말하였을 것이다. 이제 새 궁을 영선하는 것은 놀고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선왕께서 지으신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수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전일에 양전(兩殿)15181) 께서 계시던 궁은 매우 땅이 낮고 좁으므로 경복궁(景福宮)으로 옮겨 계시어 내 마음이 늘 스스로 편안하지 않은데, 창덕궁(昌德宮)도 무너지게 되었으나 쉽사리 수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어 수강궁(壽康宮)으로 옮겨 계시게 되었으니, 군사가 들어가서 거처할 곳과 각 아문(衙門)도 지어야 하므로, 이 때문에 칸수(間數)가 전일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못사람을 괴롭히고 백성을 노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전을 위하는 것이다. 또 이 궁은 경궁 요대(瓊宮瑤臺)15182)의 유가 아닌데 진언(陳言)이 이러하니, 무지한 백성이 속이고 선동하여 내가 백성을 노고시킨다고 생각할까 염려된다. 또 내가 학조를 후하게 대우하였다 하였으나, 내가 그 도(道)를 숭신(崇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은 선왕께서 보호하고 돌보시던 자이고 이제 봉선사(奉先寺)</p>	<p>妄言至此爾。’ 今營新宮，非欲爲遊衍，先王所營，今至傾圮，不得不修繕也。 且前日兩殿所御之宮，甚湫(溢)[隘]，故移御景福宮，予心常不自安，而昌德宮亦至頽圮，然不可輕易修葺，不得已移御壽康宮，則軍士入接處及各衙門，亦須營造，以此間閣之數，倍於前日。 此非毒衆勞民，專爲兩殿也。 且此宮非瓊宮瑤臺之比，而陳言如此，予恐無知之民，誑惑動衆，謂我勞苦百姓也。 且謂：‘予厚遇學祖’，予非崇信其道，此曾先王所護恤者，而今在奉先寺，凡陵寢所在，雖微賤之人，亦加恩數，國家或以微物，賜與此僧，豈過乎？予既受陳言，固不加罪。 顧惟，言事見罷，久未得敍者，予未知指何人也；守令黜陟，未公者，亦不知何人也。 此則不可不問也。 已令觀察使，推問以啓。 大抵國家有臺諫焉，有弘文館焉，如有過舉，則固當言之矣。 若儒生狂妄，敢言不當。” 左副承旨金宗直啓曰：“臣等見徐坎元陳言，似若不知國家事，而言之。 然民間陳弊，或有的實事，而可採者。 如軍人等上來時，盡賣田地，以備囊橐之事，</p>
--	---	---

에 있는데, 무릇 능침(陵寢)이 있는 곳은 미천한 사람이라도 은수(恩數)를 더하는 것이니, 국가에서 혹 하찮은 물건을 이 중에게 내린들 어찌 과실이겠는가? 내가 이미 진언을 받았으므로 참으로 죄줄 수 없으나, 돌이켜 생각하여도 일을 말하고 파직되어 오래도록 서용(敍用)되지 못한 자란 어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내가 모르겠으며, 수령(守令)의 출척(黜陟)이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어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미 관찰사(觀察使)를 시켜 추문(推問)하여 아뢰게 하였다. 대저 국가에는 대간(臺諫)이 있고 홍문관(弘文館)이 있으니, 만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겠으나, 유생이 망령되게 감히 말한다면 마땅하지 않을 것이다.”

하자,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신들이 서감원의 진언을 보니, 국가의 일을 모르고 말한 듯합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폐단을 아뢴 것 중에는 혹 확실한 일이어서 채납(採納)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인들이 올라올 때에 전지(田地)를 죄다 팔아서 노자를 장만한다는 것은 신도 전에 들었습니다. 또 전하께서 불법(佛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은 조정의 신하들이 알 뿐더러 향학(鄉學)의 유생(儒生)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서감원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오로지 근일에 중을 부리고 도첩(度牒)을 준 일과 유생이 부처를 배척한 소(疏)를 윤가(允可)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감원이 말한, 학조를 후하게 접대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육청(六淸)의 말에 따라 발언한 것입니다. 이 중이 스스로 대신(代身)이라 하며 경상도의 고을들에 버젓이 드나들므로, 수령들이 마지 못하여 접대하고 물건을 주는데, 이 중이 누구의 대신인지는 모르겠으나, 본궁(本宮)의 대신이라 큰소리하며 온 도를 마구 다니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 접대한 수령은 당연히 죄를 다스려야 하며, 그 중도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臣亦嘗聞之。且殿下之不好佛法，非徒朝臣知之，雖鄉學儒生，亦皆知之。然坎元所以如此言之者，專以近日役僧給牒事與儒生闕佛疏，不允故也。坎元所言學祖厚待事，專因六淸之說，而發之爾。右僧自稱代身，於慶尙州郡，公然出入，守令不得已接待饋遺，未知此僧爲某之代身也，然聲言本宮代身，橫行一道，甚不可。其接遇守令，固當治罪，其僧亦不可不痛繩也。”上曰：“予亦未知爲某之代身，雖曰：‘代身’，僧豈可使之恣行若是乎？僧人固當在山，若出入官府，豈其所行乎？今後如此僧人，隨即捕繫啓聞事，下書諸道觀察使，可也。”琛啓曰：“僧人啓聞後囚禁之法在《大典》，今若先囚後聞，則可謂痛快矣。但《大典》，官差不得上寺，故雖犯罪僧人，如或隱匿寺刹，則不得摘發。今當《大典》勘校時，不可不削去也。”宗直又啓曰：“雖淫、盜僧人，官差不得入寺搜捕，甚未便。改之何如？”上曰：“僧若犯強盜，官差亦當上寺搜捕，其他所犯，先王已定之法，不可輕變也。”

	<p>“나도 누구의 대신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신이라 하더라도, 중에게 어찌 이처럼 방자한 짓을 하게 할 수 있겠는가? 중은 본디 산에 있어야 마땅한데, 관부(官府)에 드나든다면 어찌 그 행할 바이겠는가? 이 뒤로 이러한 중은 잡아 가두고 아뢰라고 제도(諸道)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안침(安琛)이 아뢰기를,</p> <p>“중은 아뢰 뒤엔 가둔다는 법이 《대전(大典)》에 있거니와, 이제 먼저 가두고 나서 아뢰다면 통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대전》에 ‘관차(官差)15183)는 절에 올라갈 수 없다.’ 하였으므로, 죄를 범한 중이 혹 절에 숨으면 적발하지 못하니, 이제 《대전》을 감교(勘校)할 때를 당하여 삭제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p> <p>하고, 김종직(金宗直)이 또 아뢰기를,</p> <p>“음란한 짓과 도둑질을 한 중일지라도 관차가 절에 들어가 수색하여 잡을 수 없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하니, 고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중이 강도(強盜)를 범하였다면 관차도 절에 올라가 수색하여 잡아야 마땅하나, 그 밖에 범한 것은 선왕께서 이미 정하신 법이니, 가벼이 고칠 수 없다.”</p> <p>하였다.</p>	
<p>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4일 (무오) 2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p> <p>“이제 들건대 중들이 관부에 드나들며 수령과 마주앉아 음식을 먹고 재물을 요구한다 하니, 그 법금(法禁)을 업신여기는 것이 막심하다. 이 뒤로 이러한 중은 잡아 가두고 계품(啓稟)하라.”</p> <p>하였다.</p>	<p>○下書諸道觀察使曰： 今聞僧徒出入官府，與守令對坐飲食，干請財物。其輕侮法禁莫甚。今後如此僧人，捕繫啓稟。</p>
<p>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5일 (기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己未/上詣泰慶殿，上食。</p>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8일
(임술) 1번째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한건(韓健)이 아뢰기를,
 “근일 김유완(金有完)을 위장(衛將)으로 삼았으나, 위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근
 시(近侍)하므로 직임이 지극히 중대한데, 김유완은 전에 삭주(朔州)를 맡았을
 때에 자못 탐오(貪汚)로 알려졌고 또 장연(長淵)·숙천(肅川)을 맡아서도 다 폄
 출(貶黜)되었으며, 또 위장에서 갈린 지 오래지 않아 곧 제수(除授)되었으니,
 미편(未便)합니다. 김거(金据)는 전에 강릉 판관(江陵判官)을 맡아서 자기 이
 익만을 꾀하고, 관가의 일을 삼가지 않았고, 신천 군수(信川郡守)가 되어서는
 또 염개(廉介)15198) 가 없어 태감(太監) 정동(鄭同)에게 부탁하여 당상관(堂
 上官)에 올랐습니다. 갈려 온 뒤에는 외임(外任)이 되기를 바라는 청송 부사
 (靑松府使)에 제수되었는데, 수령(守令)이 되기를 바란 데에는 사정(私情)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장은 과연 중요한 직임이므로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쓸 수 없으니, 김유완
 이 과연 그대 말과 같다면 개정하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그러나 애매하지
 않은가? 김거의 불법은 어느 일인가? 김거가 정동에게 청하지 않았더라도, 정
 동이 스스로 청하였을 것이다. 다만 사헌부(司憲府)에서 김거가 외임을 바랐
 다 하였으니, 어찌 들은 것이 없이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관직(官職)
 을 차지하는 것과 남의 청탁을 듣는 것은 다 죄가 있다. 또 수령이 되려고 청
 한 데에는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며, 수령에서 갈린 지 오래지 않
 은 자는 외임에 서용(敍用)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법이 있는데, 이것은 노
 고와 안일을 고르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그럴듯한 허물을 주워 모으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이다. 김거가 청탁한 정상을 사헌부에 말한 자가 있
 을 것이니, 국문(鞫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정성근(鄭誠謹)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어필(御筆)로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써서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리

○壬戌/御經筵。講訖，持平韓健啓
 曰：“近日以金有完爲衛將。衛將將兵
 近侍，職任至重。有完曾任朔州，頗
 以貪墨聞，又爲長淵、肅川，皆見貶
 黜，且遞衛將不久，而旋即除授，未
 便。金据前任江陵判官，只營己利，
 不謹官事，及爲信川郡守，又無廉介，
 托於太監鄭同，陞堂上官。遞來後，
 求爲外任，得拜靑松府使，其求爲守
 令，必有情。請竝改正。”上曰：“衛
 將，果是重任，不可用非其人，有完果
 如爾言，改之何難？然無乃曖昧乎？金
 据不法，何事耶？据雖不請於鄭同，同
 自請之矣。但憲府謂：‘据求爲外任’，
 豈無所聞而云？然自古官職與聽人請
 托，皆有罪。且請爲守令，必有求利
 之心，遞守令未久者，勿敍外任，已有
 法，是欲均勞逸也。但据撫疑似之愆，
 予所不忍也。金据請托之狀，必有言
 於憲府者。其鞫以啓。”侍講官鄭誠
 謹啓曰：“曩者御書《滕王閣序》，賜
 韓明澮，明澮鍔梓廣布，遍於街巷。
 其後有言不可者，殿下悉令收入，今者
 又書屏風，以賜明澮。且書《待漏院
 記》，賜政院，揭壁書。書畫雖若無

	<p>셨는데, 한명회가 인쇄하여 널리 퍼서 거리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 뒤에 옳지 않다고 말한 자가 있으므로 전하께서 죄다 거둬들이게 하셨는데, 요즈음에 또 병풍을 써서 한명회에게 내리고, 또 대루원기(待漏院記)를 써서 승정원에 내려 벽에 걸게 하셨습니다. 글씨나 그림이 해롭지 않은 듯은 하나, 줄곧 좋아하여 뜻을 두면 도덕(道德)을 이지러지게 하는데, 더구나 만기(萬機)15199)에 어찌 무방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루원기는 다른 저술의 유가 아니고 경계한 말이다. 그러나 비난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어 승정원에 물으니, 승정원에서 무방하다고 하므로 썼다. 내 필법(筆法)은 매우 졸렬한데, 어찌 뽐내느라고 하였겠는가? 한 정승(韓政丞)이 병풍을 써 달라고 청한 지 이제 벌써 5, 6년이 되었는데, 이미 허락하였으니 신의를 잃을 수 없었다. 예전에 위(魏)나라 문후(文侯)는 우인(虞人)과의 기약을 어기지 않았는데,15200) 더구나, 대신(大臣)과 말을 하고서 그것을 저버리겠는가? 옛 임금도 서적(書蹟)이 있거니와, 내가 이것 때문에 정사(政事)를 폐기한다면 말하는 것이 옳겠으나, 내가 늘 글을 읽다가 지루하면 글씨를 쓰고 글씨를 쓰다가 지루하면 글을 읽는데, 어찌 줄곧 거기에 생각을 두어서 그러는 것이겠는가? 또 문묵(文墨)15201) 을 일삼지 않으면 다시 무엇을 일삼겠는가?”</p> <p>하자, 지사(知事) 허중(許琮)이 아뢰기를, “일장일이(一張一弛)15202) 는 문(文)·무(武)15203) 의 도리이니, 때때로 글씨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마는, 문묵에 뜻을 향하게 되면 안될 것입니다. 옛 임금 중에는 부시(賦詩)를 좋아하다가 나라를 망친 이가 있으니, 정성근이 말한 것은 대개 조짐을 막으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조짐은 기를 수 없으니, 막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p>	<p>害，然一向好着，虧損道德，況於萬機，豈無妨乎？”上曰：“《待漏院記》，非他著述之比，乃規警之語也。然慮有非之者，問諸政院，政院以爲無妨，故書之。予之筆法甚拙，豈誇張而爲耶？韓政丞請書屏風，今已五六年矣，業已許之，不可失信。昔魏文侯不失虞人之期，況與大臣言，而負之乎？古之帝王，亦有書蹟，予若以此，而廢棄政事，則言之可也，予常讀書，倦便書字，書字倦又讀書，豈一向着意而然乎？且不事文墨，更爲何事？”知事許琮啓曰：“一張一弛，文、武之道，有時書字無妨，但於文墨向意，則不可。古之人君，有好賦詩，而亡國者焉。誠謹所言，蓋欲防之於漸也。”上曰：“此漸不可長也，防之固宜。”領事沈澹曰：“此非玩戲之書，乃箴規之書，則書之無妨矣。”琮又啓曰：“聞今將量田永安道。北青、吉城、會寧等處，率皆向化之淵藪，而起耕山田，以資生業，今若量田，彼必動搖。臣聞‘世祖朝，有彼人來居青巖里者，聞量田，舉族遷去，世祖聞之乃止。’且以號牌之故，李施愛煽亂，彼道人心本頑愚，易生疑</p>
--	---	--

<p>하자, 영사(領事) 심회(沈澹)가 아뢰기를, “이것은 놀이삼는 글이 아니고 경계하는 글이니,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허종이 또 아뢰기를, “듣건대 이제 영안도에 양전(量田)15204) 할 것이라 합니다. 북청(北靑)·길성(吉城)·회령 등지는 거의 다 향화인(向化人)이 모여들어 산밭을 일구어 생업을 삼는데, 이제 양전한다면 저들이 동요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세조조에 저들 중에서 청암리(靑巖里)에 와서 사는 자가 있었는데, 양전한다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돌아갔으므로, 세조께서 이를 듣고 중지하셨다 합니다. 또 호패(號牌) 때문에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선동하였거니와, 저 도의 인심은 본디 완악하여 의혹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제 양전한다면 틀림없이 서로 놀랄 것이니, 후회가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該曹)에서 영안도에 먼저 양전해야 한다고 하므로 내가 따랐는데, 과연 경(卿)의 말과 같다면 놀라 동요할 걱정이 있을까 염려되니, 멈추도록 하라.” 하였다. 심회가 아뢰기를, “경기(京畿)·하삼도(下三道)는 양전한 지 이미 오래 되어서 혹 지형이 바뀌어 전지(田地)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곳도 있는데, 올해에는 경기의 농사가 조금 잘되었으니, 양전하여 경계를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된다.” 하였다. 허종이 또 아뢰기를, “만포(滿浦)는 저들이 왕래할 때에 처음 닿는 땅이므로 귀순하는 자들이 잇달아서 끊이지 않습니다. 변장(邊將)이 술과 고기를 먹이기도 하고 쌀과 소금을 주기도 하여, 한정이 있는 물건으로 끝이 없는 요구에 응하니, 이것은 임시로 변통하는 계책이고 장구한 도모가 아닐 듯합니다. 뒤에 만약 이어 가기가 어</p>	<p>惑。 今若量田， 必相驚駭， 恐有後悔。” 上曰：“該曹以爲：‘永安道， 宜先量田’， 故予從之。 果如卿言， 慮有驚動之患。 其停之。” 沈澹曰：“京畿下三道， 量田已久， 或陵谷變遷， 不成田形。 今年京畿農事稍豐， 宜量田， 以正經界。” 上曰：“不可。” 琮又啓曰：“滿浦， 乃彼人往來初面之地， 歸順者絡繹不絕。 邊將或饋酒肉， 或贈米鹽， 以有限之物， 應無窮之求， 是乃姑息之計， 恐非長遠之圖也。 後若難繼， 少不如意， 則彼必憤怨， 將來之弊， 殆不可救。 臣每念及此， 不勝痛慮。” 上曰：“卿言果是。 予亦慮此， 久矣。 彼人之來， 或以謁見節制使， 或以喪事求賻， 拒之則必構釁隙， 如其一一聽從， 則其欲難盈。 予意以爲：‘邊將多般開諭， 如或已給， 而再請則權辭勿從’， 何如？” 琮曰：“彼人之心， 不可信也。 外若投誠， 內懷犬、豕之心。” 上曰：“彼人之心， 縱曰難信， 今方向面効順， 則我不可逆料， 而拒之也。 惟在邊將臨時善處而已。” 琮曰：“滿浦， 實野人觀(瞻) [瞻] 之地， 自古必以堂上官爲節制使。 請以有位望者差</p>
---	---

	<p>려워서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분노하고, 원망하여 장차 닥칠 폐단을 거의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니, 신의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매우 염려되어 견딜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경의 말이 과연 옳다. 나도 이것을 염려한 지 오래 되었다. 저들이 오는 것은 절제사(節制使)를 보기 위한 것이거나 상사(喪事)에 부물(賻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물리치면 말썽을 꾸미게 될 것이고, 낱낱이 들어준다면 그 욕심을 채워주기 어려울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변장이 여러 가지로 타이르고, 혹 이미 주었는데도 다시 청하거든 임시방편으로 말하여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떠할까 한다.”</p> <p>하자, 허종이 아뢰기를,</p> <p>“저들의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성을 바치는 듯 하여도 속으로는 개·돼지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저들의 마음은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바야흐로 낮을 대하고 순종을 보이면, 우리로서는 미리 헤아려서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니, 오직 변장이 임시하여 선처하기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p> <p>하자, 허종이 아뢰기를,</p> <p>“만포는 참으로 야인(野人)이 바라보는 곳이므로 예전부터 반드시 당상관(堂上官)을 절제사(節制使)로 삼았으니,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를 차출하여 보내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섬(李暹)이 지금 절제사로 있는데 내가 여러 번 본도(本道)에서 아뢴 것을 보건대, 그 야인을 접대하는 것이 거의 착오가 없다. 이런 사람이면 넉넉히 그 곳을 진어(鎮禦)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당상관이라야 하겠는가?”</p>	<p>遣。” 上曰：“李暹今爲節制使，予屢見本道所啓，其接待野人，略無差誤。如此人，足以鎮禦此地矣，何必堂上官乎？”</p>
--	--	--

	하였다.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10 일(갑자)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甲子/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15 일(기사) 1번째기사	임금이 친히 광릉(光陵)에 제사하고, 수릉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에게 표리(表裏)15216) 를 내리고, 우승지(右承旨) 이덕숭(李德崇)·좌부승지(左副承旨) 성건(成健)에게 명하여 머물러서 수릉관 이하의 사람에게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乙) [己] 巳/上親祭于光陵, 賜守陵、侍陵官表裏, 命留右承旨李德崇、左副承旨成健, 饋守陵官以下人酒。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16 일(경오) 2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창원군(昌原君)의 부물(賻物)로 쌀과 콩을 아울러 1백 석(石), 종이 2백 권(卷), 정포(正布) 60필(匹), 백저포(白苧布)·백면포(白綿布) 각각 10필, 물들인 면주(綿紬)와 면포를 아울러 40필, 석회(石灰) 60석(碩), 청밀(淸蜜)15221) 10두(斗), 진유(眞油)15222) 1석을 내리라.” 하였다.	○傳旨戶曹: “賜米·豆竝一百石、紙二百卷、正(希) [布] 六十四、白苧布·白綿布各十匹、入染綿紬·絺布竝四十四、石灰六十碩、淸蜜十斗、眞油一碩。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18 일(임신) 1번째기사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정난중(鄭蘭宗)이 치계(馳啓)하기를,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 심여룡개(沈汝弄介) 등이 기근 때문에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돌봐 주기를 바랍니다. 신은 이로 말미암아 머물러 모여 있어 무리를 이룰까 염려되고, 또 귀순한다고 성언(聲言)하고, 잇달아 내왕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물건을 요구할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미리 조치해야 할 것이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를 명소(命召)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허종(許琮)·이철건(李鐵堅)·한치례(韓致禮)·신승선(愼承善)·이종생(李從生)·김영유(金永濡)·이약동(李約東)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곤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탁하여 왔으면 가없이 여겨 돌봐야 할	○壬申/平安道節度使鄭蘭宗馳啓曰: “建州衛野人沈汝弄介等, 因飢饉, 率妻子而來, 欲蒙存恤。 臣恐因此屯聚成黨, 且聲言歸順, 絡繹來往, 求請無厭, 亦可慮也。 所宜預爲措置敢稟。” 命召領敦寧以上、議政府、都摠府、兵曹, 議之。 鄭昌孫、沈滄、尹弼商、盧思愼、許琮、李鐵堅、韓致禮、愼承善、李從生、金永濡、李約東議: “彼以窮投我, 義當矜恤, 然一開其端, 後難應之。 況江邊各鎮所儲

의리이겠으나, 한 번 그 단서를 열면 뒤에 지응(支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강변(江邊)의 각진(各鎭)에 저축된 군수(軍需)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구제하려 하더라도 구제할 수 없는 형세이니, 강변에 와서 살겠다는 청은 더욱이 따를 수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 추장(酋長)이 보낸 사람과 사변을 진고(進告)하는 자는 전례에 따라 접대하고,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온 자만은 전에 내린 유서(諭書)의 뜻으로 타이르고 이삼 일 동안 머물게 하여 먹여서 보내고, 요구하는 물건도 죄다 따를 수 없으니 적당히 주게 하소서.”

하고, 서거정(徐居正)이 의논하기를,

“저 곳 사람들이 전에 내왕하며 요구하여도 오히려 돌봐 주었는데, 이제 기근 때문에 우리에게 살려 주기를 바라는 것을 단연코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근을 구제하는 물건을 적당히 조금 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이르지 않으며, 뒤에 잇달아 나오므로 그 요구하는 것에 죄다 응할 수 없게 되면, 대답하기를, ‘전곡(錢穀)은 조정(朝廷)의 처분에 달려 있고 변장(邊將)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굳이 거절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변에는 결코 머무르도록 허가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변수(邊脩)가 의논하기를,

“저들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구제를 바라고 왔으므로, 임금의 인덕(仁德)으로서 진휼(賑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 개·돼지같은 마음은 곤궁하면 귀순하고, 배부르면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니, 쉽사리 접대할 수 없겠습니다. 평안도는 방어하는 군수가 영안도만큼 알차지 못하니, 관문(關門)을 닫고 약한 것을 적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들이 다시 청하면 말하기를, ‘이도의 지경은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잠시도 머무를 수 없으니, 네가 귀순하려거든 후문(後門)15226 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하여, 이렇게 타이르고 요구하는 것을 조금 주어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軍需不敷，雖欲濟之，勢不能也，江邊來接之請，尤不可從。其中酋長所送人及事變進告者，依前例接待，只爲救荒而來者，以前降諭書之意開說，留二三日，饋餉而送，所求之物，亦不可盡從，量宜給之。”徐居正議：“彼土人，前此來往求請，尙加存恤，今以飢窘，求活於我，斷然絕之爲難。救荒物件，隨宜略給，不至煩費，後有相續出來，不能盡副所求，則當答曰：‘錢穀在朝廷處分，非邊將所能擅給’，固拒亦未晚。江邊決不可許留也。”孫舜孝、邊脩議：“彼因凶荒，望救而來，在王者之仁，所當賑恤，但犬豕之心，窮則依歸，飽則爲患，不可容易待之也。平安一道，防禦軍需，不如永安之實，宜閉關，不示敵以弱。彼若更請，當語之曰：‘此道地界，乃上國使臣往來處，不可暫留也。汝欲歸順，則當叩後門。’如是開諭，略施所求，而遣之可也。”傳曰：“徐二相之議，似難從之。餘議皆當。其以此諭節度使。”

	“서 이상(徐二相)15227) 의 의논은 따르기 어려울 듯하다. 나머지 의논들은 다 마땅하니, 이것을 절도사에게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19 일(계유)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癸酉/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19 일(계유) 2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의 종언칠정수(宗彦七貞秀)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왜 호군(倭護軍) 시라쇄문(時羅灑文) 등 2인이 내조(來朝)하였다.	○日本國對馬州宗彦七貞秀遣人, 來獻土宜, 倭護軍時羅灑文等二人來朝。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24 일(무인)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戊寅/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24 일(무인) 2번째기사	청성군(淸城君) 한치형(韓致亨)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성절(聖節)15261) 을 축하하게 하였는데, 백관(百官)이 권정례(權停例)15262) 로 배표(拜表)15263) 하였고, 한치형에게 전교하기를, “한씨(韓氏)의 분묘에 제물(祭物)을 보내는 것과 사사로이 진헌(進獻)하는 것을 온 조정(朝廷)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나 어쩔 수 없이 장만하여 가는 것이니, 곡청(谷淸)의 무리가 굳이 바치게 하더라도 우선 늦추면서 형세를 보다가, 황제의 명이 있어서 일이 마지못하게 되거든 경(卿)이 편의에 따라 선처하라.” 하였다.	○遣淸城君韓致亨奉表如京師, 賀聖節。百官以權停例拜表。傳于致亨曰: “韓氏墳致奠及私進獻, 舉朝以爲不可, 然不獲已備去, 雖谷淸輩強使進之, 姑宜遷延觀勢, 若有帝命, 而事出於不得已, 則卿隨宜善處。”
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성절사(聖節使)가 가져가는 별헌(別獻)의 물목(物目)은, 자주(紫紬) 10필(匹), 녹주(綠紬) 10필, 대홍주(大紅紬) 10필, 황주(黃紬) 10필, 다갈주(茶褐紬) 10	○聖節使齋去別獻物目: 紫紬十匹, 綠紬十匹, 大紅紬十匹, 黃紬十匹, 茶褐

(成化) 20년) 8월 24
일(무인) 3번째기사

필, 유청주(柳靑紬) 10필, 초록주(草綠紬) 10필, 수록 면포(水綠綿布) 10필, 자면포(紫綿布) 10필, 녹색면포(綠綿布) 20필, 대홍 면포(大紅綿布) 10필, 황면포(黃綿布) 30필, 다갈 면포(茶褐綿布) 30필, 유청 면포(柳靑綿布) 20필, 초록면포(草綠綿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40필, 저사겸직포(苧絲兼織布) 10필, 백저포 삼아(白苧布衫兒) 40건(件), 흑마포 삼아(黑麻布衫兒) 60건, 갑(匣)을 갖춘 중앙 연석(中樣硯石) 5사(事), 갑을 갖춘 소양 연석(小樣硯石) 20사, 용향 원묵(龍香圓墨) 1백 홀(笏), 용향 장묵(龍香長墨) 1백 홀, 삼사 도자(三事刀子) 20부(部), 오사 도자(五事刀子) 20부, 대양 단도(大樣單刀) 50과(把), 중앙 단도(中樣單刀) 1백 과, 상아과 찬화채장 단도(象牙靑花彩粧單刀) 15과 안에서 대양(大樣) 5과, 중앙(中樣) 5과, 소양(小樣) 5과, 강궁(強弓) 15장(張), 중궁(中弓) 15장, 약궁(弱弓) 20장, 대고도리(臺古都里) 40지(枝), 두을인 고도리(豆乙彦古都里) 1백 50지, 소고도리(小古都里) 1백 지, 거리전(巨里箭) 1백 지, 서보자(西甫子) 1백 지, 상품 백후지(上品白厚紙) 7권(卷), 중품 백후지(中品白厚紙) 7권, 우골 호로(牛骨葫蘆) 50유(流), 황양목 호로(黃楊木葫蘆) 1백 50유, 진호로(眞葫蘆) 작은 것 30유, 진호로 표아(眞葫蘆瓢兒) 1백 개(箇), 호아아각 용두(虎牙兒刻龍頭) 20유, 장아아각 용두(獐牙兒刻龍頭) 1백 유, 산양각각 용두(山羊角刻龍頭) 1백 유, 각양 수낭아(各樣繡囊兒) 10개, 각양 구낭아(各樣扣囊兒) 10개, 각양 첩낭아(各樣貼囊兒) 10개, 호로 침가아(葫蘆針家兒) 10개, 침가아(針家兒) 50개, 가대아(茄袋兒) 10유, 청과아(靑瓜兒) 2백 유, 고아(鼓兒) 30유, 연화아(蓮花兒) 20유, 능각아(菱角兒) 20유, 청구아(靑鳩兒) 30유, 녹색아(綠鴨兒) 30유, 관음제(觀音臍) 5백 유, 세교 문합(細巧文蛤) 5백 유, 회합(回蛤) 5백 유, 반합(斑蛤) 5백 유, 체비(髭篋) 3백 과(把), 화면선(畫面扇) 3백 과, 원과 각양 화면선(圓靑各樣畫面扇) 1백 과, 초서피(貂鼠皮) 1백 장(張), 토표피(土豹皮) 5장, 상아조각채장 사자 필가(象牙彫刻彩粧獅子筆架) 1좌(座), 상아조각채장 파산출수룡 필가(象牙彫刻彩粧巴山出水龍筆

紬十四, 柳靑紬十四, 草綠紬十四, 水綠綿布十四, 紫綿布十四, 綠綿布二十四, 大紅綿布十四, 黃綿布三十四, 茶褐綿布三十四, 柳靑綿布二十四, 草綠綿布二十四, 白細苧布四十四, 苧絲兼織布十四, 白苧布衫兒四十件, (墨) [黑] 麻布衫兒六十件, 中樣硯石五事, 匣具小樣硯石二十事, 匣具龍香圓墨一百笏, 龍香長墨一百笏, 三事刀子二十部, 五事刀子二十部, 大樣單刀五十把, 中樣單刀一百把, 象牙靑花彩粧單刀十五把內大樣五把、中樣五把、小樣五把, 強弓十五張, 中弓十五張, 弱弓二十張, 臺古都里四十枝, 豆乙彦古都里一百五十枝, 小古都里一百枝, 巨里箭一百枝, 西甫子一百枝, 上品白厚紙七卷, 中品白厚紙七卷, 牛骨葫蘆五十流, 黃楊木葫蘆一百五十流, 眞葫蘆小的三十流, 眞葫蘆瓢兒一百箇, 虎牙兒刻龍頭二十流, 獐牙兒刻龍頭一百流, 山羊角刻龍頭一百流, 各樣繡囊兒十箇, 各樣扣囊兒十箇, 各樣貼囊兒十箇, 葫蘆針家兒十箇, 針家兒五十箇, 茄袋兒十流, 靑瓜兒二百流, 鼓兒三十流, 蓮花兒二十流, 菱角兒二十

	<p>架) 1좌, 상아조각채장의 각양 인물(人物)·조수(鳥獸)·화과(花果)의 합아(盒兒)·춘성(春盛) 매양(每樣) 1개, 삼층 사계과 합아(三層肆季果盒兒)·사층 용합아(肆層龍盒兒)·해당화 합아(海棠花盒兒)·화과 합아(花果盒兒)·칠층 화과 영모 춘성(七層花果翎毛春盛)·수초 금어 은정 합아(水草金魚銀錠盒兒)·고하 방해 요자 합아(枯荷螃蟹腰子盒兒)·금조 화과 합아(禽鳥花果盒兒)·모란화 합아(牡丹花盒兒)·화과 요자 합아(花果腰子盒兒)·화과 영모 합아(花果翎毛盒兒)·인물 고사 방승 합아(人物故事方勝盒兒)·화과 영모 팔각 합아(花果翎毛捌角盒兒)·운룡 서우각 방아 화과 합아(雲龍犀牛角螃兒花果盒兒)·초수 상아 화과 합아(草獸廂兒花果盒兒)·보상화 회문 쇠구합아(寶相花回紋鎖口盒兒)·상아조각채장의 각양 완회아(玩戲兒) 매양 1건, 수와와 쇠와와 진보 파사 회회 판귀선인 소화상 향동 파사 부교 와와 토아 수주병(睡娃娃耍娃娃進寶波漸回回判鬼仙人笑和尚香童波漸跌交娃娃兔兒壽酒瓶)·파사 기린 초재 회회 기린 사자 해치 쇠모사자 녹룡 금섬 인원 의마 향로(波漸麒麟招財回回麒麟獅子獬豸刷毛獅子鹿龍金蟾人猿意馬香爐)·상아조각채장의 각양 인물(人物)·조수(鳥獸)·팔보화초(捌寶花草)의 조괘(弔掛) 매양 1유, 귀학 경수 화분(龜鶴慶壽花盆)·사상 백화 인마평안 백사대길 산선 봉수 파사 봉주 팔보인물(獅象伯花人馬平安百事大吉散仙捧壽波漸捧珠捌寶人物)·봉수성인물(鳳壽星人物)·포로인물(鮑老人物)·팔보인물(捌寶人物)·해당화(海棠花)·각양 돌희인물(突戲人物)·팔보인물·각양 흑칠 나전 대소 합아(黑漆螺甸大小盒兒) 30개, 등개(燈蓋) 2괘(掛), 관음제 문합 반합 산적 분입이 소귀화 은오백량주 선추아(觀音臍文蛤斑蛤散的分入二小橫花銀五百兩做扇墜兒) 각양 32, 금여지(錦荔枝) 19개, 서교침과(鼠咬絨瓜) 19개, 토(兔) 19개, 호(虎) 19개, 녹(鹿) 19개, 상(象) 19개, 해치(獬豸) 19개, 사자(獅子) 19개, 서식향과(鼠食香瓜) 19개, 원(猿) 19개, 고사자(古獅子) 19개, 마(馬) 19개, 사자 곤수구(獅子袞繡毬) 19개, 묘(猫) 19개, 하아(蝦兒) 19개, 어(魚) 19개, 쌍어(雙魚) 19개, 사과(沙果) 19개, 하화연봉(荷花蓮蓬) 19개, 호로(葫蘆) 19개,</p>	<p>流, 青鳩兒三十流, 綠鴨兒三十流, 觀音臍五百流, 細巧文蛤五百流, 回蛤五百流, 斑蛤五百流, 鬚篋三百把, 畫面扇三百把, 圓靶各樣畫面扇一百把, 貂鼠皮一百張, 土豹皮五張, 象牙彫刻彩粧獅子筆架一座, 象牙彫刻彩粧巴山出水龍筆架一座, 象牙彫刻彩粧各樣人物、鳥獸、花果盒兒、春盛每樣一箇, 三層肆季果盒兒, 肆層龍盒兒、海棠花盒兒、花果盒兒、七層花果翎毛春盛、水草金魚銀錠盒兒、枯荷螃蟹腰子(盆) [盒] 兒、禽鳥花果盒兒、牡丹花盒兒、花果腰子盒兒、花果翎毛盒兒、人物故事方勝盒兒、花果翎毛捌角盒兒、雲龍犀牛角螃兒花果盒兒、草獸廂兒花果盒兒、寶相花回紋鎖口盒兒、象牙彫刻彩粧各樣玩戲兒每樣一件, 睡娃娃耍娃娃進寶波漸回回判鬼仙人笑和尚香童波漸跌交娃娃兔兒壽酒瓶、波漸麒麟招財回回麒麟獅子獬豸刷毛獅子鹿龍金蟾人猿意馬香爐、象牙彫刻彩粧各樣人物、鳥獸、捌寶花草弔掛每樣一流, 龜鶴慶壽花盆、獅象伯花人馬平安百事大吉散仙捧壽波漸捧珠捌寶人物、鳳壽星人物、鮑老</p>
--	--	--

	<p>도(桃) 19개, 선(船) 19개, 을엽주(乙葉舟) 19개, 섬(蟾) 18개, 쌍사자 곤수구(雙獅子袞繡毬) 18개, 영지토(靈芝兎) 18개, 묘희서(猫戲鼠) 18개, 쌍양(雙羊) 18개, 구(狗) 18개, 방해(螃蟹) 18개, 화람(花藍) 18개, 쌍원(雙猿) 18개, 좌아(耍兒) 각양 21, 어아(魚兒) 20개, 중호로(中葫蘆) 18개, 소호로(小葫蘆) 36개, 와와(娃娃) 18개, 구아(鳩兒) 18개, 원앙(鴛鴦) 18개, 소압(梳鴨) 18개, 압아(鴨兒) 10개, 중합아(中蛤兒) 18개, 소합아(小蛤兒) 36개, 가대아(茄袋兒) 36개, 능각아(菱角兒) 34개, 과아(瓜兒) 18개, 고아(鼓兒) 18개, 침가아(針家兒) 18개, 표아(瓢兒) 22개, 장아(獐牙) 16개, 산양각(山羊角) 18개, 도아 초아(桃牙鞘兒) 18개, 낭아(囊兒) 18개, 섭아(鑷兒) 18개, 녹대포(鹿大脯) 15속(束), 녹편포(鹿片脯) 2백 개, 건문어(乾文魚) 2백 미(尾), 건대구어(乾大口魚) 3백 미, 건전복어(乾全鮑魚) 2백 속, 건오적어(乾烏賊魚) 8백 미, 건광어(乾廣魚) 2백 미, 건수어(乾秀魚) 2백 미, 곤포(昆布) 2백 근(斤), 탑사마(塔士麻) 2백 근, 해의(海衣) 1백 근, 해채이(海菜耳) 1백 근, 향점(香簞) 1백 근, 홍소주(紅燒酒) 10병(瓶), 백소주(白燒酒) 10병, 송자(松子) 2백 근, 인삼(人蔘) 50근이었다.</p>	<p>人物、捌寶人物、海棠花、各樣突戲人物、捌寶人物、各樣黑漆螺甸大小盒兒三十箇，燈蓋二掛，觀音臍文蛤班蛤散的分入二小櫃花銀五百兩做扇墜兒各樣三十二，錦荔枝十九箇，鼠咬話瓜十九箇，兔十九箇，虎十九箇，鹿十九箇，象十九箇，獬豸十九箇，獅子十九箇，鼠食香瓜十九箇，猿十九箇，古獅子十九箇，馬十九箇，獅子袞繡毬十九箇，猫十九箇，蝦兒十九箇，魚十九箇，雙魚十九箇，沙果十九箇，荷花蓮蓬十九箇，葫(蘆) [蘆] 十九箇，桃十九箇，船十九箇，乙葉舟十九箇，蟾十八箇，雙獅子袞繡毬十八箇，靈芝兎十八箇，猫戲鼠十八箇，雙羊十八箇，狗十八箇，螃蟹十八箇，花藍十八箇，雙猿十八箇，耍兒各樣二十一，魚兒二十箇，中葫蘆十八箇，小葫蘆三十六箇，娃娃十八箇，鳩兒十八箇，鴛鴦十八箇，梳鴨十八箇，鴨兒十箇，中蛤兒十八箇，小蛤兒三十六箇，茄袋兒三十六箇，菱角兒三十四箇，瓜兒十八箇，鼓兒十八箇，針家兒十八箇，瓢兒二十二箇，獐牙十六箇，山羊角十八箇，桃牙鞘兒十八箇，囊兒十八箇，鑷兒十八</p>
--	--	--

		<p>箇, 鹿大脯十五束, 鹿片脯二百箇, 乾文魚二百尾, 乾大口魚三百尾, 乾全鰓魚二百束, 乾烏賊魚八百尾, 乾廣魚二百尾, 乾秀魚二百尾, 昆布二百斤, 塔土麻二百斤, 海衣一百斤, 海菜耳一百斤, 香簞一百斤, 紅燒酒十瓶, 白燒酒十瓶, 松子二百斤, 人蔘五十斤。</p>
<p>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8월 26일(경진)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양면(楊沔)이 아뢰기를, “북경에 가는 행차에 수령(守令)이 건량(乾糧)이라는 핑계로 관물(官物)을 함부로 주는데, 이것이 다 민간에서 거둬들인 것이니, 이제 양도(兩道)15266)를 소복(蘇復)하는 계책을 강구하기는 하나, 이 폐단을 금지하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북경에 가는 자가 병기(兵器)를 가져가지 않고 건량을 많이 실어가서 매매하는 자본으로 삼으니, 혹 도둑의 변고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검찰관(檢察官)이 있기는 하나 만리를 가는 길인데 어찌 인정이 없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따로 어사(御史)를 보내어 검찰하게 하면 이 폐단이 없어지겠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좌우에게 고문(顧問)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극균(李克均)이 대답하기를, “양면의 말이 옳습니다. 압록강(鴨綠江)의 물이 얼 때에는 통사(通事)가 정수 이외의 짐을 싣고 밤을 타서 먼저 건너므로, 어사일지라도 적발할 길이 없겠으나,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는 쥐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것이니, 우선 어사를 보내어 시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찰하기는 하나, 낱낱이 금지할 수 없습니다.</p>	<p>○庚辰/御經筵。 講訖, 獻納楊沔啓曰: “赴京之行, 守令托以乾糧, 濫與官物。 此皆收斂民間, 今雖講兩道蘇復之策, 然若不禁此弊, 不可救。 況赴京者, 不齎兵器, 多載乾糧, 爲買賣之資, 脫有賊變, 將何以應之? 雖有檢察官, 萬里之行, 豈無人情? 臣意 ‘別遣御史檢察, 則無此弊矣。’ ” 上顧問左右, 大司憲李克均對曰: “楊沔之言, 是也。 鴨綠冰合時, 則通事持數外馱載, 乘夜先渡, 雖御史, 無以摘發。 然畜猫之家, 鼠不恣行, 姑遣御史, 試之何如?” 領事尹弼商曰: “國家雖多方以檢察, 然不可一一禁之。 但在使之賢、不賢耳。” 上曰: “旣遣檢察官, 又遣御史, 其於待大臣之體, 何如?” 克均又啓曰: “賜韓致亨、谷清處人情布六十匹, 又賜四十匹, 而致亨請益六</p>

	<p>다만 사신(使臣)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김찰관을 보내고 또 어사를 보낸다면 대신(大臣)을 대우하는 체모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이극균이 또 아뢰기를, “곡청(谷淸)에게 줄 인정(人情)으로 베[布] 60필(匹)을 한치형(韓致亨)에게 내리고 또 40필을 내렸는데, 한치형이 60필을 더 보태어 달라고 청하였으니,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난번 한명회(韓明澮)는 50필을 가져갔으나 쓸 곳이 없어서 한갓 헛되이 썼을 뿐이니, 사사로이 환관(宦官)에게 청하여 진헌(進獻)을 면하려 꾀한다면 사필(史筆)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필에 쓰더라도 백성의 폐해를 던다면 참으로 좋은 일일 것이다.” 하였다. 지사(知事) 이파(李坡)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사사로운 진헌(進獻)은 수량을 줄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로이 바치는 것을 줄여서, 중국에서 어려운 일을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자, 이파가 아뢰기를, “중국에서 어려운 일을 요구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해외(海外)의 나라이니, 굽혀 따르지 않더라도 참으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사사로운 진헌은 갑자기 줄일 수 없겠습니다.” 하였다.</p>	<p>十四。如此多齋，用之何處？曩者韓明澮齋去五十四，而無所用之，徒虛費耳。私請宦官，規免進獻，又於史筆何？”上曰：“雖史筆書之，若除民弊，則固善矣。”知事李坡曰：“臣意：‘私進獻，減數無妨也。’”上曰：“減損私進，而中朝若責難事，則將何爲哉？”坡曰：“中朝雖責難事，安有加於此者乎？我國乃海外之邦，雖不曲從，固無害也。”弼商曰：“私進獻，不可遽減也。”</p>
--	--	---

<p>성종 169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8월 30 일(갑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甲申/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9월 2일 (병술) 2번째기사</p>	<p>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정난종(鄭蘭宗)이 치계(馳啓)하기를, “올해에는 피인(彼人)15270) 들이 실농(失農)을 하여, 나와서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자가 많으므로, 줌도독질을 할 우려가 있게 될까 싶으니, 청컨대 병조 (兵曹)로 하여금 별군관(別軍官) 수십 명을 가려 보내 분담하여 방수(防守)하 게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지금 사민(徙民)15271) 으로 인해 소란스럽습니다. 적변(賊變)이 있지도 않는데 먼저 군관(軍官)들을 보내는 것은 편리하지 못하니, 아직은 정 지해야 합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정난종이 아뢰는 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피인(彼人)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구제해 주기를 바라서 나온 것인데, 비록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무리들을 움직여 도적질을 하게 되겠습 니까? 지금 그런 성식(聲息)도 없는데 따로 군관들을 보낸다면, 한곳 역로(驛 路)에만 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수(軍需)를 허비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 다. 각진(各鎭)의 군사들로 조심해서 방비하더라도 즉시 적변에 대응할 수 있 을 것입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현재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습니다. 군관들이 왕래(往來)하려면 어찌 폐단이</p>	<p>○平安道節度使鄭蘭宗馳啓曰：“今年 彼人失農，出來求卹者多，恐有鼠竊之 虞。請令兵曹，擇送別軍官數十人， 分防。”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 議：“平安道，今因徙民騷優，未有賊 變，而先送軍官未便。姑停之。”沈 澮議：“依蘭宗所啓，施行。”尹弼商 議：“彼人阻飢，求救而來，雖不滿其 欲，何至動衆作賊乎？今無聲息，而別 遣軍官，非徒驛路有弊，糜費軍需，亦 可慮也。以各鎭之兵，謹慎隄備，足 以應變。”洪應議：“時無邊警，軍官 往來，豈無其弊？姑勿送。”盧思慎 議：“野人以獵獸爲生，農業乃其餘 事。彼土雖云失農，稍有自立者，豈 全無可食之物乎？前請居江邊，欲仰食 於我者，皆孤弱貧窶，不能自存者也。 雖欲懷怨作賊，非徒其力有所不及，且 恐後日之禍，必不輕發。況建州衛酋 長，皆已歸順效誠，必不聽此輩之言， 輕犯大國，以廢前功也。且我國，冬</p>

	<p>없겠습니까? 아직은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야인(野人)들은 짐승 사냥을 생업(生業)으로 삼고 농사는 곧 여사(餘事)로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땅이 비록 실농(失農)했다고 하지만, 다소 자립(自立)하게 된 자들이 있는데 어찌 전연 먹고 살 것이 없겠습니까? 전일에 강변(江邊)에서 살기를 청하며 먹을 것을 우리에게 바라려고 한 자들은 모두 고단하고 빈궁하여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원망을 품고 도적질을 하고 싶어도 한갓 그들의 힘만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뒷날의 화(禍)를 두려워하여 반드시 경솔하게 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건주위(建州衛)15272)의 추장(酋長)이 모두 이미 귀순(歸順)하여 정성을 바치고 있으니, 반드시 이들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대국(大國)을 범(犯)하는 짓을 하여 전일의 공로(功勞)를 폐(廢)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는 겨울이면 연변(沿邊)의 거민(居民)들이 모두 성보(城堡)로 들어와버리므로, 혹시 좀도둑질을 할 도적이 있다 하더라도 들관이 깨끗하여 소득될 것이 없어 공연히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게 된다면, 저들에 있어서는 매우 수고로울 것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아무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성(城)을 치려고 한다면 정병(精兵) 수천 명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굶주린 나머지 자기 자신을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찌 수천의 군중을 모아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비록 따로 군관을 보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다른 우려가 없으리라고 여깁니다.”</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요사이 야인(野人)들이 귀순하여 이전의 사단[蠻]이 이미 풀렸으니, 이 나머지 야인들이 비록 다소 분심 품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먼저 소동(騷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則沿邊居民，皆入城堡，倘有鼠竊之盜，清野無所得，空來空去，於彼甚勞，於我無損。若欲攻城，則非精兵數千，不可也。彼飢饉之餘，自救不暇，安能聚數千之衆，作賊於我乎？臣意以爲‘雖不別送軍官，必無他虞。’”李克培議：“近間野人歸順，前蠻已釋，其他野人，雖少有含憤之言，不可以此，先自騷動。”尹壕議：“除別遣軍官，擇其道有武才人，分防何如？”從思愼議。</p>
--	---	--

	<p>“따로 군관을 보내는 것은 제외하고, 그 도(道)의 무재(武才) 있는 사람을 가려 분담하여 방수(防守)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노사신(盧思愼)의 의논대로 따랐다.</p>	
<p>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9월 3일 (정해) 2번째기사</p>	<p>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정난종(鄭蘭宗)이 치계(馳啓)하기를,</p> <p>“야인(野人) 수승응거(愁升應巨) 등이 나왔을 적에 만포 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 이섬(李暹)이 응접(應接)을 잘못하여 객관(客館)에 오래 머무르게 되어 공돈(供頓)15273) 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여인 삼자(三者)가 와서 하는 말이 ‘수승응거의 아내인데 지아버가 사냥하러 나갔기에 도망하여 왔으며, 본토(本土)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승응거가 강변(江邊)에 와 있으므로, 그 여인이 강을 건널 적에 만약 혹시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 정녕(丁寧)하기에 감히 취품(取稟)15274) 합니다.”</p> <p>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p> <p>“오랑캐[戎]를 대우하는 도리를 너무 후하게 해서도 안되고 또한 너무 야박하게 해서도 안되는 법인데, 수승응거 등이 강 밖[江外]에 와 있을 적에 이섬(李暹)이 소금과 양식을 너무 후하게 줌으로써 드디어 그대로 머물러 있고 돌아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또 중국 여인 삼자(三者)에게 즉시 강을 건너오도록 허락하여 감사(監司)에게 보내 준 것도 모두 사의(事宜)15275) 를 잃었습니다. 만일 삼자가 본디 중국 사람인데 도로 야인(野人)에게 준다면 사대(事大)하는 의리에 어그러지게 되니, 예(例)에 의거하여 해송(解送)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자칭(自稱) 중국 여인이라 하면서 도망해 온 자가 이미 오래인데, 수승응거 등이 서로 바라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찾으러 오지 않으니, 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p> <p>하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p>	<p>○平安道節度使鄭蘭宗馳啓曰：“野人愁升應巨等出來時，滿浦僉節制使李暹，失於應接，使之久留，客館供頓不貲。且唐女三者來到，自云：‘愁升應巨妻，因其夫出獵逃來，欲還本土。’然愁升應巨，來在江邊，彼女渡江之時，若或見之，生怨丁寧，敢取稟。”</p> <p>兵曹據此啓曰：“待戎之道，不可過於厚，亦不可失於薄。愁升應巨等，來在江外，李暹贈給鹽、糧、過厚，遂使仍留不還。且唐女三者，許卽渡江，送于監司，俱失事宜。若三者本係唐人，而還給野人，則有乖事大之義，依例解送，何如?”</p> <p>傳于承政院曰：“自稱唐女，逃來已久，而愁升應巨等，近在相望之地，久不來尋，無乃欲構釁端乎?”</p> <p>承政院啓曰：“臣等意亦疑之。今三者乘其夫出獵逃來，彼必出獵未歸，未卽來尋耳。”</p> <p>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議：“三者自稱唐女，欲還本土，須及其夫不來，解送爲便。贈與鹽、糧，雖云過厚，業已與之，何必</p>

	<p>“신들의 생각에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삼자(三者)가 그의 지아버가 사냥하려 나간 것을 틈타 도망해 왔는데, 그가 반드시 사냥 갔다 돌아오지 않았기에 즉시 찾으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p> <p>하였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p> <p>“삼자(三者)가 자칭 중국 여인이라 하며 본토(本土)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니, 모름지기 그의 지아버가 오기 전에 해송(解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소금과 양식을 비록 너무 후하게 주었다고 하지만, 이미 주어버린 것을 어찌 반드시 추론(追論)할 것이 있겠습니까?”</p> <p>하고, 심희(沈澹)는 의논하기를,</p> <p>“평안도 연변(沿邊)의 각진(各鎭)은 비축한 물자의 수량이 적으므로, 야인(野人)들의 청구를 잇대어 수응(酬應)하기 어려운데, 이섬(李暹)이 너무 후하게 주었으니 잘못이 큼니다. 또 삼자(三者)가 비록 중국 여인이라고 했지만,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가 반드시 원망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버린다면 사대(事大)하는 의리에 어그러지게 되니 해송(解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p> <p>“이섬(李暹)이 전에 내린 유서(諭書)를 준행(遵行)하지 않고, 수승응거 대접을 너무 우등하게 했습니다. 삼자(三者)는 비록 중국 여인이더라도 원래 수승응거의 아내이므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한데 경솔하게 응접해 주었으니, 사단 생길 것이 정녕(丁寧)합니다. 이 여인은 저들의 땅에서 도망해 온 사람과 같은 예(例)의 것이 아니고, 지아버를 따라 나왔다가 지아버가 사냥하려 나간 것을 틈타 배반하여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실정이 가증스럽습니다. 비록 그의 지아버에게 주더라도 어찌 의리에 어그러질 것이 있겠습니까? 저들 야인(野人)이 굶주리고 있다고 했는데도 이미 구제하지는 않고서 또한 그의 아내를 빼앗는다면, 원망하는 마음 가짐이 반드시 심할 것이니, 임시 변</p>	<p>追論?” 沈澹議: “平安沿邊, 各鎭儲備數少, 野人求請, 應之難繼, 暹給與過厚, 其失大矣。 且三者雖云唐女, 若不還給, 則彼必構怨, 然給之, 則有乖事大之義, 解送爲便。” 尹弼商議: “李暹不遵前降諭書, 待愁升應巨, 甚優。 三者雖係唐女, 元是愁升應巨之妻, 拒而不納可也, 輕易許接, 生釁丁寧。 此女非彼土走回人口之例, 隨夫出來, 乘夫出獵, 背棄而逃, 其情可憎。 雖給其夫, 何乖於義? 彼人告飢, 既不救之, 又奪其妻, 生怨必甚。 從權還給, 以杜邊患。” 洪應、尹壕議: “李暹招來三者, 以啓釁端, 專擅之罪, 不可不問。 依兵曹所啓施行。” 盧思慎議: “依所啓爲便。 但愁升應巨等, 率其妻子, 來住江邊, 望其賑救, 如不得其欲, 必有缺望之心。 以大國邊將, 給米、鹽斗升, 豈是過歟? 此恐無罪。” 李克培議: “三者雖是唐女, 棄夫出獵, 乘夫出獵, 脫身逃來, 其夫豈不知蹤迹之所向? 李暹輕易許接, 擅送監司, 誠有罪矣。 愁升應巨, 若出來請之, 邊將當答云: ‘某月日, 女一人, 夜到江邊, 稱唐女, 本國凡被擄逃來</p>
--	---	--

	<p>통으로 도로 내주어 변방의 환란을 막아야 합니다.”</p> <p>하고, 홍응(洪應)·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이섬이 삼자(三者)를 불러 와 사단이 생기게 했으므로 함부로 한 죄[專擅之罪]를 묻지 않을 수 없으니, 병조에서 아뢰 바대로 시행해야 합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뢰 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수승응거 등이 그의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강변(江邊)에 와서 살며 구제해 주기를 바랐으니, 만일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대국(大國)의 변장(邊將)으로서 몇 말의 쌀 몇 되의 소금을 준 것이 어찌 과오이겠습니까? 이는 죄가 없을 듯합니다.”</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삼자(三者)가 비록 중국 여인이더라도 지아비를 따라 나왔다가 지아비가 사냥하러 나간 것을 틈타 탈출하여 도망해 왔으니, 그의 지아비가 어찌 종적(蹤跡)이 간 데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섬(李暹)이 경솔하게 응접해 주었고 함부로 감사(監司)에게 보냈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수승응거가 만일 나와서 청하게 된다면, 변장(邊將)이 마땅히 답변하기를 ‘어느 달 어느 날 여인 한 사람이 밤중에 강변(江邊)으로 와서 중국 여인이라고 했는데, 본국(本國)에서는 무릇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오는 사람을 모두 해송(解送)하는 것이 준례(準例)이기 때문에, 감사(監司)에게 보내어 북경[京]에 전달(轉達)하게 한 것이고, 당초에 네 아내임을 알지 못해 그렇게 한 것이다. 이제 이미 이렇게 되었지만 내가 독단[擅便]한 것이 아니다. 네가 또한 이목(耳目)이 있는데 어찌 본국(本國)의 해송하는 준례를 알지 못하겠느냐?’고 이처럼 답변해야 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의 그 중국 여인은 저들의 땅 깊은 고장에서 도망해 온 것이 아니라, 굶</p>	<p>者，竝解送例也。 故送于監司，轉達于京，初不知爲汝妻而然耳。 今既如此，非吾擅便，汝亦有耳目，豈不知本國解送之例?’ 如是答說。” 傳曰：“今此唐女，非從彼土深處逃來，欲要救飢，隨夫來住，脫身逃來，遲輕易許接，又送于監司，此大不可。 以我國事大之義，固當解送。 然海外之邦，有時用權，何害? 欲留此女，俟彼尋索還給。 其更議于領敦寧以上。”</p>
--	--	---

	주립을 면하고 싶어 지아비를 따라와 있다가 탈출하여 도망해 온 것인데, 이 섬(李暹)이 경솔하게 응접해 주었고 또한 감사(監司)에게로 보냈으니, 이는 크게 불가하다. 우리 나라의 사대(事大)하는 의리에 있어서는 진실로 마땅히 해송(解送)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海外)의 나라에서 혹가다가 임시 변통하는 것이 있은들 어찌 해롭겠느냐? 이 여인을 머물러 두고 그가 찾기를 기다렸다가 돌려주고자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9월 9일 (계사)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15283) 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癸巳/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9월 11 일(을미) 2번째기사	왜인(倭人) 구라사야문(仇羅沙也文)과 조국(助國)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倭人仇羅沙也文及助國等, 來獻土宜。
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9월 14 일(무술)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戊戌/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9월 20 일(갑진)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甲辰/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9월 20	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 遣人來獻土宜。

<p>일(갑진) 2번째기사</p> <p>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9월 24 일(무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戊申/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9월 27 일(신해) 1번째기사</p>	<p>창경궁(昌慶宮)을 낙성(落成) 하였다. 육승지(六承旨)15339) 를 명하여 수리 도감(修理都監)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고, 이어 홍문관(弘文館) 관원도 잔치에 참여하도록 명하였으며, 이날 장인(匠人)과 군 인(軍人)들에게도 음식을 먹였다.</p>	<p>○辛亥/昌慶宮成。命六承旨，饋修理 都監堂上、郎廳，仍命弘文館員參宴。 是日竝饋匠人、軍人。</p>
<p>성종 170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9월 28 일(임자) 4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무릇 부모(祔廟)15340) 는 길제(吉祭)15341) 를 만나면 시행하는 것이 곧 예문(禮文)이니, 정희 왕후(貞熹王后)를 마땅히 내년 7월의 추향(秋享)15342) 때 부모해야 한다. 내 생각에 7월에는 장마가 매우 심하여 부모하는 날 만일 비가 내린다면, 백관(百官)들이 배제(陪祭)하기가 어려울 듯 싶으므로, 5월에 부모하는 것이 편할 듯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길제(吉祭)를 만나 부모하는 것으로 예문(禮文)이 그렇게 되어 있고, 상사(喪事)는 진실로 앞질러 거행할 수 없는 것이라 이를 실로 결단하기가 어렵다. 내가 재상(宰相)들을 모아 의 논하고 싶은데, 경(卿)들의 의견은 어떻게 여기는가? 부모는 날을 가려서 거 행하지 않고 반드시 길제를 만나 하는 의의를 예문을 고찰하여 아뢰라.”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초상(初喪)·장사(葬事)·소대상(小大祥)·담제(禫祭)15343) 는 앞질러 거행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 있어서는 경사(慶事)이니 대상(大祥)이 지난 뒤에 속히 종묘(宗廟)에 부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예절(禮節)이니 홍문관 (弘文館)으로 하여금 널리 옛 제도를 채집하도록 하고, 또 여러 대신들과도 의논하는 것이 편리합니다.”</p>	
<p>성종 171권, 15년</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15349) 에 나아가서 삭제(朔祭)를 행하였다.</p>	<p>○朔乙卯/上詣泰慶殿，行朔祭。</p>

<p>(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0월 1일(을묘) 1번째기사</p>		
<p>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0월 5일(기미)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수리 도감(修理都監)에게 논상(論賞)함이 지나치게 중합니다. 신은 삼가 들건대 경복궁을 낙성할 때에는 상을 내린 것이 단지 말 한 필뿐이었고, 창덕궁을 낙성할 때에 상을 내린 것도 말 한 필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경복궁은 새로운 도읍을 건설할 때를 당하여 종묘(宗廟)·사직(社稷)과 더불어 일시에 창건하였으므로, 그 공역(功役)이 오늘날에 비하여 십배가 되는데도 상을 내린 것은 여기에 그쳤는데, 지금의 벼슬을 더하고 상품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중하여, 혹은 당상관(堂上官)에 오르고 혹은 정(正) 부정(副正)에 올랐으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하고, 헌납(獻納) 양면(楊沔)은 아뢰기를, “왕사(王事)15368) 에 비록 수고로왔을지라도 신자(臣子)의 직분으로 당연한 것인데, 어찌 상을 내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 “이전에 궁궐을 짓고 논상(論賞)한 예(例)는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이같은 큰 역사(役事)에 논상하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보수(補修)하는 예(例)가 아니라 역시 새로 짓는 것이며, 또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양전(兩殿)15369) 을 위해 지은 것으로, 비록 장려(壯麗)15370) 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도는 갖추었는데 당상 낭관(堂上郎官)이 아침저녁 겨를이 없이 16삭(朔) 만에 완성을 고하였으니, 그 노고를 보답하지</p>	<p>○己未/御經筵。 講訖， 掌令宋瑛啓曰：“修理都監論賞， 過重。 臣竊聞‘景福宮成， 賞賜只馬一匹， 昌德宮成， 賞賜亦不過馬一匹。’ 景福宮， 當始建新都， 與宗廟、社稷， 一時創立， 其功役比今日十倍， 而賞賜止此。 今則爵賞過重， 或陞堂上官， 或陞正、副正， 甚未便。” 獻納楊沔啓曰：“王事雖勞， 皆臣子職分， 當爲何賞之有？” 上顧問左右， 領事鄭昌孫曰：“前此宮闕營造論賞之例， 臣未之詳也， 如此大役論賞， 似無妨。” 上曰：“此非修補之例， 亦是新創， 且非爲予身， 乃爲兩殿而作。 雖不壯麗， 制度則備堂上郎官， 無朝夕之暇， 十六朔而告成， 不可不酬其勞。 且景福宮創造時， 豈不論賞？ 必史官失記耳。” 同知事李瓊全曰：“臣考實錄， 凡宮闕營造制度皆詳， 而論功賞賜， 則不載。 但景福宮成， 賜廐馬一匹， 離宮成， 賜鞍馬一匹， 壽康宮則無賞賜。 臣問於洪應曰：‘營作宮闕， 論賞節目， 不載實錄何也？’ 應曰：</p>

	<p>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복궁을 창건할 때에 어찌 논상(論賞)이 없었겠는가? 반드시 사관(史官)이 기록을 빠뜨린 것이다.”</p> <p>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경동(李瓊叟)이 아뢰기를, “신이 《실록(實錄)》을 상고하건대, 무릇 궁궐을 영조(營造)한 제도는 모두 상제한데 논공(論功)과 상사(賞賜)는 실리지 아니하였고, 다만 경복궁이 이룩되자 구마(廐馬)15371) 한 필을 하사하였고, 이궁(離宮)이 이룩되자 안마(鞍馬) 한 필을 하사하였으며, 수강궁(壽康宮)에는 상을 내린 것이 없습니다. 신이 홍응(洪應)에게 묻기를, ‘궁궐을 지었을 때에 논상 절목(論賞節目)이 《실록》에 실려 있지 아니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전하는 말을 듣건대 태조(太祖)께서 경복궁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는 까닭으로써 상(賞)이 없었다고 하나, 속설(俗說)로 전하는 바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논상(論賞)은 지나치게 중한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하(蕭何)15372) 가 미양궁(未央宮)15373) 을 완성하자, 고조(高祖)가 지나치게 사치하다고 하였으므로 후세에서 어질게 여겼고, 경복궁을 태조께서 장려(壯麗)하다고 하셨으니 이도 아름다운 일인데 사관(史官)이 어찌하여 기록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 《실록》도 족히 믿을 것이 못된다.”</p> <p>하였다. 송영(宋暎)이 아뢰기를, “이극배는 본래 덕망이 있으니, 비록 한 자금을 올리더라도 평상시에 있어서 누가 감히 논하겠습니까? 다만 목석(木石)15374) 의 공(功)으로써 가자(加資)하는 것이 적당치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끓주리고 헐벗은 백성이 양식을 싸가지고 부역(赴役)하여 추위와 더위를 무릅썼으니, 내가 참으로 마음에 애처로운데, 대신(大臣)들이 모두 내 뜻을 본받아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고하여 빨리 큰 일을 이룩하였으므로, 내가 매우</p>	<p>“傳聞太祖以景福宮過壯麗無賞，然諺所傳，未可信也。今論賞似過重。”</p> <p>上曰：“蕭何成未央宮，高祖以爲過侈，後世賢之。景福宮，太祖以爲壯麗，則是亦美事，史官何不書乎？然則實錄，亦未足信也”</p> <p>瑛曰：“李克培，素有德望，雖陞一資，在常時，則誰敢論之？但以木石之功加資未便。”</p> <p>上曰：“飢寒百姓，羸糧赴役，載離寒暑，予實軫懷，大臣悉體予意，夙夜勤苦，亟成大事，予甚喜之。今之加資，欲酬其匪懈，非以木石之功也。”</p> <p>楊沔曰：“郎廳，當以歲月久近論功，而今者論功，甚不均。”</p> <p>上曰：“役處不遠，予常常遣使番，審視堂上郎廳勤勞不遑，今之論功不均，伊誰言之。”</p> <p>瑛曰：“臣等非謂不當賞也，但恐過重。一等雖陞職，亦足矣。”</p> <p>上曰：“勿復言。”</p>
--	--	--

	<p>가상하게 여긴다. 지금 가자하는 것은 그 나라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 뜻을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며, 토목의 공(功)으로서가 아니다.”</p> <p>하였다. 양면(楊沔)이 아뢰기를, “낭청(郎廳)은 마땅히 벼슬한 세월이 오래고 가까운 것으로 논공(論功)해야 하는데, 이제 논공한 것은 매우 고르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사(役事)하는 곳이 멀지 아니하므로 내가 항상 사번(使番)을 보내어 살펴 보게 하였다. 당상 낭청(堂上郎廳)이 부지런히 노력하기에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논공이 고르지 못한 것을 누가 말하는가?”</p> <p>하였다. 송영이 아뢰기를, “신 등은 상(賞)이 부당하다고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나치게 중할까 두렵습니다. 1등은 비록 벼슬을 올릴지라도 족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p> <p>하였다.</p>	
<p>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9일(계해)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오례의(五禮儀)》 주(註)에 부묘(祔廟)15391) 를 반드시 길삭 대제(吉朔大祭)15392) 에 겸해서 행하는 것은 천주(遷主)15393) 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천주가 없고 명년 7월은 바로 장마가 지는 때인데, 만약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비가 오면 반드시 행하지 못할 것이다. 행하지 못하면 마땅히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물려서 행해야 할 것인데, 또한 늦지 아니하겠는가? 5월은 7월 장마철과 같지 아니하니, 이 달에 행하고자 한다. 이는 빨리 행하려고 함이 아니라 이는 바로 길사(吉事)인 것이다. 그것을 의정부(議政府)·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물어 보라.”</p> <p>하였다.</p>	<p>○傳曰：“《五禮儀註》，祔廟必以吉朔大祭兼行者，以其有遷主也。今則無遷主，而明年七月，是霾雨時，若秋享大祭，雨雨則必不行之。不行則當於冬享大祭退行，不亦緩乎？五月非如七月霾雨之節，欲於是月行之。非欲其徑行也，此乃吉事。其問于議政府、領敦寧以上。”</p>
<p>성종 171권, 15년</p>	<p>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김흔(金訢)이 와서 아뢰기를,</p>	<p>○乙丑/弘文館直提學金訢來啓曰：“臣</p>

<p>(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0월 11일(을축) 1번째기사</p>	<p>“신의 아버지 김우신(金友臣)이 단양(丹陽) 임소(任所)에서 병환이 있어서 신이 가서 시약(侍藥)하고자 하니, 청컨대 신의 벼슬을 해임해 주소서.” 하니, 명하여 말[馬]을 주고 약을 내리게 하며, 인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예전에 김우신에게 글을 배웠으니, 진실로 사제간(師弟間)이다. 좋은 의원을 보내어 구호하게 하라.” 하였다.</p>	<p>父友臣，在丹陽任所患病，臣欲往侍藥。請解臣職。”命給馬，賜藥餌，仍傳曰：“予舊學于友臣，實是師弟間。其遣良醫救之。”</p>
<p>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0월 11일(을축) 3번째기사</p>	<p>두 대비전(大妃殿)에서 수리 도감(修理都監)의 당상(堂上)·낭관(郎官)에게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도제조(都提調) 이극배(李克培)에게는 채단(綵段) 1필, 모좌자(毛坐子) 1사(事), 노구(爐口) 2부(部)를, 제조(提調) 한계순(韓繼純) 등에게는 모좌자 각 1사, 노구 각 1부를, 낭관 등에게는 백면자(白綿子) 각 1근을 내리며 인해 전교하기를, “경 등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고하여 빨리 큰 역사를 이룩하였으니, 참으로 대견하고 기쁘다.” 하였다.</p>	<p>○兩大妃殿命饋修理都監堂上、郎官于仁政殿庭，賜都提調李克培綵段一匹、毛坐子一事、爐口二部，提調韓繼純等毛坐子各一事、爐口各一部，郎官等白綿子各一斤。仍傳曰：“卿等夙夜勤勞，速就大役，良用嘉悅。”</p>
<p>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0월 13일(정묘) 1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신수근(愼守勤)이 와서 아뢰기를, “전자에 동대문(東大門) 밖 향실암 불당(香室庵佛堂)을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는데, 이는 옳지 못하니, 청컨대 철거(撤去)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효원(黃孝源)의 첩 이씨(李氏)가 회암사(檜巖寺)에서 묵었으며, 지금 국휼(國恤)을 당하여 저자 사람 1백여 명이 풍악을 울리면서 반불(飯佛)15413) 하였는데, 주지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종문(宗門)15414) 으로 하여금 독촉해 출두하게 하였으나 출두하지 아니 하니, 청컨대 감사(監司)로 하여금 독촉해 보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p>	<p>○丁卯/司憲府掌令愼守勤來啓曰：“前者東大門外香室庵佛堂，令隣居人，守之不可。請撤去。”傳曰：“可。”又啓曰：“黃孝源妾李氏，經宿檜巖寺，今當國恤，市人一百餘名，動樂飯佛，住持不禁，豈得無罪？臣等令宗門，督現而不現。請令監司督送。”傳曰：“住持果有罪，但不得搜索寺刹，載在《大典》。宗門督現，有何難事？而憲府乃欲毀法乎？”守勤更請之，不聽。</p>

	“주지가 과연 죄가 있으나 다만 사찰(寺刹)을 수색하지 못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있다. 종문(宗門)이 꾸짖어 출두시키는 것이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런데 사헌부에서 법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가?” 하였다. 신수근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17일(신미)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15434)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辛未/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17일(신미) 2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비전주(肥前州) 송포 지좌(松浦志佐) 일기 태수(一岐太守) 원의(源義), 하송포(下松浦) 단후 태수(丹後太守) 원성(源盛), 상송포 좌지(上松浦佐志) 원차랑(源次郎), 서해도(西海道) 축전 대마 이주 수호 대관(筑前對馬二州守護代官) 종삼랑 무가(宗三郎茂家),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종언칠정수(宗彦七貞秀)가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日本國肥前州松浦志佐一岐太守源義、下松浦丹後太守源盛、上松浦佐志源次郎、西海道筑前・對馬二州守護代官宗三郎茂家、對馬州太守宗貞國、宗彦七貞秀遣人, 來獻土宜。
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21일(을해) 1번째기사	임금이 광릉(光陵)에 나아가서 별제(別祭)를 행하였다. 구릉(舊陵)에 입번(入番)한 종친(宗親) 및 수릉관(守陵官)과 시릉 내시(侍陵內侍), 양전 참봉(兩殿參奉), 내관(內官)·반감(飯監)에게 이엄(耳掩)을 내려 주었다. 승지(承旨) 한찬(韓儼)·안침(安琛)에게 명하여 수릉관(守陵官)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乙亥/上詣光陵, 行別祭, 賜耳掩于舊陵入番宗親及守陵官、侍陵內侍、兩殿參奉、內官、飯監。 命承旨韓儼、安琛饋守陵官等。
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23일(정축) 1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정희 왕후(貞熹王后)를 부묘(祔廟)하는 일을 내년 5월로 정하였는데, 대저 상사(喪事)는 마땅히 예경(禮經)에 따라야지 앞당겨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3년상(三年喪)을 입으셨는데, 부모만 급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5월에 부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7월에는 지극히 덥고 장맛비가 또	○丁丑/御經筵。 講訖, 大司憲李克均啓曰: “貞熹王后祔廟, 定於來年五月。 大抵喪事, 當從《禮經》, 不可(經) [徑] 行。 殿下既服三年喪, 而獨於祔廟(經) [徑] 行何如?” 上謂左右曰: “五月祔廟非有他意。 七月, 則極熱霾霖又甚, 若大雨, 而不克事, 則當待冬享, 然後及祔。 祔廟必因吉祭

	<p>심한데, 만약 큰 비가 내려서 일을 행하지 못하면 겨울 제사[冬享]를 기다린 뒤에야 부묘할 것이다. 부묘를 반드시 길제(吉祭) 때에 하는 것은 오로지 천주(遷主)를 위한 것인데, 지금은 천주가 없으니, 날을 골라서 부묘하는 것도 무방하다.”</p> <p>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이거(李据)가 아뢰기를, “요즈음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였던 바 한(漢)나라에서는 우제(虞祭)15441) 때에 부묘하였고, 당(唐)나라에서는 날을 받아서 부묘하였으며, 송(宋)나라에서는 금년의 담제(禫祭)15442) 를 마치고 명년에 부묘하였는데, 다만 예(禮)에 이르기를, ‘사시(四時)의 길제(吉祭)를 만나면 새 신주(神主)를 받들고 사당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신의 뜻은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p> <p>하였는데, 동지사(同知事) 이파(李坡)가 아뢰기를, “이극균·이거가 모두 《예경》에 의거하여 말하니,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길례(吉禮)는 먼저 가까운 날에 행하는 것으로 귀하게 여겼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5월에 부묘하더라도 진실로 무방할까 합니다.”</p> <p>하고, 이거가 아뢰기를, “예(禮)는 혹시 부득이 하면 변경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7월의 비를 미리 헤아려서 앞당겨 행하면 혹시 실례(失禮)될까 두렵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실례라고 할 수 없다.”</p> <p>하였다.</p>	<p>者，專爲遷主也，今無遷主，擇日以祔，無妨也。” 檢討官李据啓曰：“近令弘文館，考古制。漢因虞祭以祔，唐卜日以祔，宋今年畢禫，而明年以祔。但《禮》曰：“遇四時之吉祭，而奉新主入廟。” 臣意‘據《禮經》，行之可也。” 同知事李坡曰：“克均、据，皆據禮經而言固是。然古人吉禮以先近，而行爲貴，臣意以爲‘雖五月祔廟，固無妨也。” 据曰：“禮或不得已而變也，今以逆料七月之雨，而徑行，恐或失禮。” 上曰：“不可以此爲失禮也。”</p>
<p>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24일(무인)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박문간(朴文幹)이 아뢰기를, “조종(祖宗) 이래로 부묘(祔廟)는 반드시 사시 대향(四時大享) 때에 하는 것인데, 이제 앞당겨 행하고자 하심은 옳지 못합니다.”</p>	<p>○戊寅/御經筵。講訖，持平朴文幹啓曰：“祖宗以來，祔廟必於四時大享，今欲(經) [徑] 行，不可。” 上顧問左右，領事尹壕對曰：“古有卜日之法，</p>

	<p>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 “예전에 날을 받아서 행하는 법이 있는데, 7월은 바로 장마 비가 올 때이므로 일찍 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p> <p>하고, 이극기(李克基)는 아뢰기를, “《예경(禮經)》은 고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복일법(卜日法)15443) 이 생긴 것은 아마도 단상(短喪) 때의 제도인가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경중(輕重)·후박(厚薄)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릇 부모를 반드시 사시 대향(四時大享)에 행하는 것은 천주(遷主)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천주가 없으니, 다른 제사의 예(例)는 아니다. 7월은 장마 때라 만약 이 날에 비가 오면 반드시 행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승정원에 묻고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앞당겨 행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는데 단지 이극배(李克培)만 불가하다고 하고, 또 홍문관에 물으니, 홍문관에서도 《예경》에 의거하여 말하니, 홍문관과 이극배의 말이 옳기는 옳으나, 이는 상제(喪制)에 방해로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p> <p>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신 등이 옛 제도를 상고하건대, 송(宋)나라 때에는 담제(禫祭) 후에 혹은 한 달을 띄어서 행하기도 하고, 혹은 두어 달 만에 행하기도 하였는데, 신은 그 자세함을 알지 못하나, 아마도 이는 날을 받아 행하는 것인 듯합니다.”</p> <p>하고, 이극기(李克基)는 아뢰기를, “송나라 때에 모두 단상(短喪)하였는데, 오직 효종(孝宗)만이 3년상(三年喪)을 행하였으니, 송나라에서 날을 받아 행하는 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널리 의논하겠다.”</p> <p>하였다. 박문간이 또 아뢰기를,</p>	<p>七月則正霾雨時, (經) [徑] 行無妨。” 同知事李克基啓曰: “《禮經》不可改。 古有卜日之法, 疑是短喪時之制也。” 上曰: “此非輕重、厚薄之意也。 凡祔廟必行於四時大享者, 以其有遷主也。 今則無遷主, 此非他祭享之例。 七月霾雨之時, 若此日雨, 則必不得行之。 予問於政院, 議諸大臣, 皆曰: ‘徑行無妨,’ 但李克培以爲: ‘不可.’ 又問弘文館, 弘文館, 亦據《禮經》言之。 弘文館、克培之言, 是則是矣, 然此非有妨喪制。” 侍讀官宋軼啓曰: “臣等稽古制, 宋時禫後, 或間一月而行, 或數月而行, 則臣未知其詳, 疑是卜日也。” 克基啓曰: “宋時皆短喪, 唯孝宗獨行三年之喪, 宋之卜日, 不可從也。” 上曰: “予將廣議。” 文幹又啓曰: “御製望遠亭詩中, 有船載笙歌意裏移之句, 臣恐後世之人, 謂喪中用笙歌也。” 上曰: “詩中雖有船載笙歌之語, 豈謂此時爲之乎? 予則以爲 ‘無妨也。” 文幹曰: “大君於喪中, 構望遠亭, 將欲以遊戲爲心, 亦不可。” 上曰: “大君豈爲如此乎?” 文幹曰: “承旨等, 豈不知人君爲詩賦,</p>
--	--	--

	<p>“어제(御製)한 망원정(望遠亭) 시(詩) 가운데, ‘배에다 생가(笙歌)15444) 를 싣고 마음속으로 옮긴다[船載笙歌意裏移]’라는 글귀가 있는데, 신은 후세 사람이 상중(喪中)에 풍악과 노래를 썼다고 이를까 두렵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詩) 가운데 비록, ‘배에다 생가를 실었다’는 말이 있더라도 어찌 그때에 한 것을 말한 것이겠는가? 나는 무방하다고 여긴다.”</p> <p>하였다. 박문간이 아뢰기를, “대군(大君)15445) 이 상중(喪中)에 망원정을 짓고 장차 놀이하려는 마음을 하였으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이 어찌 이처럼 하겠는가?”</p> <p>하였다. 박문간이 아뢰기를, “승지(承旨)들이 어찌 임금이 시를 짓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또 상중에 풍월(風月)을 읊는 것이 옳지 못함을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그 잘못을 알면서 무방하다고 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잘못인데, 어찌 승정원(承政院)을 추핵(推劾)하겠는가?”</p> <p>하였다.</p>	<p>非美事? 又豈不知喪中吟風詠月之爲不可乎? 心知其非, 而以爲無妨。 甚不可。 請鞫之。” 上曰: “予已非矣, 何推政院乎?”</p>
<p>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24일(무인) 2번째기사</p>	<p>명하여 의정부(議政府)·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육조(六曹)를 불러서, 부묘(祔廟)의 일을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새 신주(神主)를 올려서 부묘(祔廟)하면 예전 신주는 마땅히 옮기는 것인데, 인자(人子)의 마음에 차마 못할 바가 있기 때문에 비록 즉길(卽吉)15446) 할 지라도 곧 사당에 올려 부묘하지 아니하고, 종묘에 행사가 있을 때를 기다린</p>	<p>○命召議政府、領敦寧以上及六曹, 更議祔廟事。 鄭昌孫韓明澮、沈滄、尹弼商、洪應、盧思愼、尹壕議: “新主升祔, 則舊主當遷, 人子之心, 有所不忍, 故雖卽吉, 不卽升祔, 必待宗廟有事, 而後乃祔。 禮文所云: ‘遇吉祭而</p>

뒤에 부묘하는 것입니다. 예문(禮文)에 이른바, ‘길제(吉祭)를 만나서 부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이같은 데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은 조훼(祧毀)15447) 할 신주가 없고, 오직 새 신주만 세조실(世祖室)에 올려 부묘할 뿐인데, 비록 날을 가려서 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하고, 허종(許琮)·이파(李坡)·손순효(孫舜孝)·이세좌(李世佐)·박승질(朴崇質)·이칙(李則)·우현손(禹賢孫)은 의논하기를,

“부묘(祔廟)는 이것이 큰 예(禮)인데 만약 7월은 비가 많이 내리는 때라고 하여 당기거나 물리면 5월도 역시 장마 달인데 어찌 5월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7월에만 비가 내릴 것을 미리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가례(家禮)》 주(註)에 이르기를, ‘어떤 이는 또 대상(大祥)에 상(喪)을 벗었으나, 새 신주(神主)를 부묘(祔廟)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스러워하지만, 새 신주를 묘(廟)에 옮기지 아니하는 까닭은 바로 죽은 자가 할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뜻을 본받는 것인데, 어찌 제사해 고하여 옮길 수 없기 때문이겠는가?’라고 하였고, 또 새 신주는 침실(寢室)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므로 도리에 있어 빨리 부묘함이 마땅하나, 즉시 부묘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길제(吉祭)를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천주(遷主)를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천주가 없으니 담제(禫祭) 후에 좋은 날을 골라서 부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고, 이승원(李崇元)·어세겸(魚世謙)·김작(金碯)·김승경(金升卿)·이경동(李瓊叟)은 의논하기를,

“3년상(三年喪)을 마치고 사시(四時)의 길제(吉祭) 때에 부묘하는 것은 이미 예문(禮文)이 있으므로, 조종(祖宗)께서 모두 예문에 따르고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신어(神馭)15448) 가 오랫동안 혼전(魂殿)에 머무르는 것이 미안스럽다고 한다면 공정 대왕(恭靖大王)15449) 은 11월 초 8일이 담제인데, 12월 18일에 부묘(祔廟)하였고, 세조 대왕(世祖大王)은 11월 13일이 담제인데, 12월 18일에 부묘하였으니, 모두 순월(旬月)15450) 을 지났습니다. 만약

祔, 其意不過如此。今則無此祧毀之主, 惟新主升祔於世祖室耳。雖擇日而行, 無妨。” 許琮、李坡、孫舜孝、李世佐、朴崇質、李則、禹賢孫議: “祔廟是大禮, 若以謂: ‘七月雨水之時’ 而進退, 則五月亦是蠶月, 豈可預料五月不雨, 而七月雨乎? 但《家禮》註云: ‘或者又以大祥除喪, 而新主未得祔廟爲疑, 新主所以未遷廟者, 正爲體亡者尊祖敬考之意, 豈不可祭告, 而遷之也?’ 且新主不可久留于寢, 義當速祔, 所以未卽遽祔, 必待吉祭者, 專爲遷主而然也。今無遷主, 則禫後, 擇吉而祔, 亦爲得宜。” 李崇元、魚世謙、金碯、金升卿、李瓊叟議: “三年喪畢, 遇四時吉祭而祔, 既有禮文, 祖宗皆遵禮文, 而無違。今若以神馭久留魂殿爲未安, 則恭靖大王, 十一月初八日禫, 而十二月十八日祔廟, 世祖大王, 十一月十三日禫, 而十二月十八日祔廟, 皆經旬月。若以七月雨水爲疑, 則太宗、文宗, 皆以七月升祔, 況五月亦是雨水之時, 安能必其不雨也? 臣等竊恐未可以此輕變禮文。” 洪貴達議: “禮貴因時而合宜。三年喪畢, 遇吉祭

7월에 장마질 것을 의심한다면 태종(太宗)·문종(文宗)도 모두 7월에 부묘하였으며, 하물며 5월도 비올 때인데, 어찌 능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필하겠습니까? 신 등은 그옥이 두렵건대, 그 이유를 가지고 예문(禮文)을 가볍게 변경할 수 없을까 합니다.”

하고, 홍귀달(洪貴達)은 의논하기를,

“예(禮)는 때에 따라서 알맞게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3년상(三年喪)을 마치고 길제(吉祭)를 당하여 부묘(祔廟)하는 것은 바로 고례(古禮)이므로, 역대(歷代)에서 이에 따랐으나, 혹시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일에 타당함을 요하는 것입니다. 왕후(王后)의 상(喪)은 예전에는 3년을 행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만이 행하였으니, 이는 특별히 지극한 정(情)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예(禮)는 때에 따라 알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희 왕후 신주는 다만 세조실(世祖室)에 부(祔)하는 것뿐인데, 어찌 반드시 선왕의 부묘하는 예(例)로 하여 반드시 길제(吉祭) 때에 해야 하겠습니까?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이미 마쳤으면 혼궁(魂宮)을 버리고 신묘(神廟)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神)과 사람이 함께 경사롭게 여기는 것인데, 자손이 된 자는 마땅히 급급히 서둘 일이 차마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열성(列聖)15451)의 부묘(祔廟)는 모두 담제(禫祭) 후 수십일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반드시 추향(秋享)의 길제(吉祭) 때로 한다면 담제 후 70일에야 부묘하게 되는데, 마땅히 부묘할 신주(神主)를 오래 혼궁(魂宮)에 머무르는 것도 미안한 바입니다. 이제 시의(時宜)에 따라 별제(別祭)를 행하여 부묘하는 것은 정문(情文)15452)에 진실로 적합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이 혹은 5월에 부묘하기를 말하는데, 이는 인정과 형편에 따른 것이고, 혹은 길제(吉祭)에 부묘하기를 말하는데, 이는 예문(禮文)에 의거한 것이다. 비로 말하면 7월만 장마 때가 아니라 5월도 비가 아니온다고 기

而祔，此古禮，歷代由之，而或否者，要合乎宜也。王后之喪，古無行三年者，今獨行之，此特出於至情耳，亦禮之因時者也。今貞熹王后主，只祔於世祖室耳，何必例於先王祔，而必因吉祭乎？祥、禫已畢，去魂宮，而卽神廟，是神、人之所共慶，而爲人子者之所宜汲汲，而不忍稽者也。竊考我朝列聖之祔，皆不出禫後數十日。今若必因秋享吉祭，則禫後七十日乃祔，以當祔之主，久留魂宮，亦所未安。今因時宜，用別祭而祔，允合情文。”傳曰：“今諸議，或言五月祔廟者，緣人情與時勢也；或言吉祭祔廟者，據禮文也。以雨言之，非獨七月霖霖之時，五月亦未必不雨也。雨、不雨，固所不論也。五月祔廟，若妨於禮，則予何敢出諸口乎？予意‘祔廟非干喪事，’果如洪貴達之議，去魂宮而卽新，人子所汲汲。予將以前擇五月十二日祔廟。”

	<p>필하지 못할 것이니, 비가 오고 아니오는 것은 진실로 논할 바가 아니다. 5월에 부묘하는 것이 만약 예(禮)에 방해로우면 내가 어찌 감히 입에 내겠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부묘는 상사(喪事)에 간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연 흥귀달의 의논과 같이 혼궁(魂宮)을 버리고 신묘(新廟)에 나아가는 것인데, 인자(人子)로서 급급히 할 바이다. 내가 장차 전에 택일(擇日)한 5월 12일에 부묘하겠다.” 하였다.</p>	
<p>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25일(기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己卯/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27일(신사) 2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서해도(西海道) 비후주(肥後州) 팔대 태수(八代太守) 교신(教信), 명도주(鳴島主) 원번(源繁), 비전주(肥前州) 하송포(下松浦) 오도 우구수(五島宇久守) 원승(源勝), 전평 우진(田平宇鎭) 탄정 소필홍(彈正少弼弘),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 종대선국행(宗大膳國幸)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p>	<p>○日本國西海道肥後州八代太守教信、鳴島主源繁、肥前州下松浦五島宇久守源勝、田平寓鎭彈正少弼弘、對馬州太守宗貞國、宗大膳國幸遣人，來獻土宜。</p>
<p>성종 171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29일(계미)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집의(執義) 조숙기(曹淑沂)가 계달한 전라도·경상도 연변(沿邊)에 보(堡)를 설치하는 일은 조관(朝官)을 보내어 심정(審定)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내 생각은 명년 농한기(農閑期)에 벼슬이 높은 재상(宰相)을 보내어 살펴보고 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승정원의 뜻은 어떤가?”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이제 만약 따로 대신(大臣)을 보내어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살펴면 왜인(倭人)이 까닭을 몰라서 혹시 놀랄까 우려됩니다. 또 하삼도(下三道)는 지금 사민(徙民)15479) 으로 인하여 소요(騷擾)가 막심하니, 신 등의 생각에는 비록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살펴서 정하게 하더라도 될 것이니,</p>	<p>○傳于承政院曰：“執義曹淑沂所啓全羅、慶尙道沿邊設堡事，不可不遣朝官審定。予意‘明年農隙，擇遣位高宰相審定，’於政院意何如?” 承旨等啓曰：“今若別遣大臣，巡審海邊，則倭人未知所以，慮或驚駭。且下三道，今因徙民，騷擾莫甚。臣等意‘雖令觀察使、節度使審定亦可，不須別遣大臣。’” 傳曰：“當遣大臣。其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韓明澮議：“遣知</p>

	<p>따로 대신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마땅히 대신을 보내야 할 것이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대체를 아는 재상을 보내어 살펴서 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대신을 보내어 살펴서 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현재 바야흐로 백성을 옮기는 일로 시끄러우니, 옮기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살펴서 정하더라도 늦지 아니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각포(各浦)에서는 선상(船上)을 성보(城堡)로 삼아 석 달의 요(料)15480)와 아울러 군기(軍器)를 싣고 장구히 배 위에 있게 하였으니, 옛사람의 계책을 배운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 보(堡)를 설치하면 만호(萬戶)가 어찌 육지를 버리고 물에 나아가기를 즐겨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형편으로 보면 만일 혹시 왜선(倭船)이 틈을 타서 몰래 나타나면 육지의 물건과 선척(船隻)이 일시에 모두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여러 포(浦)가 매우 많은데, 일시에 보(堡)를 설치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대신을 보내어 순행해 살펴되 그 완급(緩急)을 헤아려서 사민(徙民)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점차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만호(萬戶)를 둔 것은 영구히 배 위에 있으면서 항상 적(敵)이 이르는 것처럼 경계하여 창졸간에 일어나는 변(變)을 대비하게 한 것인데, 만약 보(堡)를 쌓아서 스스로 지키게 하면 양계(兩界) 구자(口子)의 만호(萬戶)와 다름이 없을 것이며, 그 주집(舟楫)과 육물(陸物)의 기계(機械)는 장차 매양 쓰려고 한 것인데, 만약 사변이 있으면 주집을 버리고 보에 들어가서 스스로</p>	<p>大體宰相，審定爲便。” 沈澮議：“當遣大臣審定，但今方徙民騷擾，待徙民事畢，審定未晚。” 尹弼商議：“各浦以船上爲城堡，糗載三朔之料，并軍器，使將卒，長在船上，古人設策，深意存焉。今若設堡，則萬戶豈肯捨陸而就水哉？然以今觀之，倘或倭船乘間竊發，則陸物船隻，一時俱盡，此可慮也。但諸浦甚多，似不得一時設堡。遣大臣巡審，度其緩急，待徙民事畢，漸次施行爲便。” 李克培議：“國家設萬戶，所以長在船上，恒如敵至，以備倉卒之變。若築堡自守，則無異於兩界口子萬戶而已，其舟楫陸物機械，將每用之，若有事變，則棄舟楫，入堡自守。國家設陸鎮，又設水鎮，倭人捨舟入寇，則陸鎮禦之，使之相維，其慮深矣。萬戶不在水上，乃監司、水使，紀綱不振，豈以一時陵夷，變其舊法？此法一毀，則防禦益疎。向者齊浦、釜山浦、鹽浦萬戶，在處築墻備變。此則與倭人同處，恐有竊發之患，故建議以築之。其他諸浦，則非此之比。築堡之議，似爲非是。” 盧思慎議：“國家沿海各浦，初審其要害及可以藏</p>
--	---	---

지킬 것입니다. 국가에서 육진(陸鎭)을 설치하고, 또 수진(水鎭)을 설치한 것은 왜인이 배를 버리고 들어와서 도둑질할 경우 육진에서 방어하여 서로 유지(維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 생각이 깊습니다. 만호가 물 위에 있지 아니함은 바로 감사(監司)와 수사(水使)의 기강(紀綱)이 떨치지 아니하여서인데, 어찌 일시의 방어가 해이함으로 인하여 옛 법을 변하겠습니까? 이 법이 한 번 허물어지면 방어가 더욱 허술할 것입니다. 전자에 제포(濟浦)·부산포(釜山浦)·염포(鹽浦)의 만호(萬戶)가 곳곳마다 담을 쌓아 사변을 방비하게 하였는데, 이는 왜인(倭人)과 더불어 같이 있으므로 불의의 변이 발하는 근심이 있을까 두려워한 때문에 건의(建議)해 쌓은 것이고, 다른 여러 포(浦)는 이와 비할 것이 아니니, 보를 쌓는 의논은 옳지 아닐 것 같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연해(沿海) 각 포(各浦)에 애당초 그 요해지(要害地) 및 선함(船艦)을 감추어 머무를 만한 곳을 살펴서 수군(水軍)과 대소(大小) 여러 진(鎭)을 두면서 성포(城堡)를 세우지 아니한 것은 어찌 슬기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이겠습니까? 본래 수군(水軍)을 둔 것은 수전(水戰)을 위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배를 수리하고 돛대를 정비하여 장차 적(敵)이 이르는 것처럼 경계하며 일이 있으면 시기를 타고 즉시 행동하여 기회에 응해 추격하고자 함인데, 이제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수군 장졸(水軍將卒)의 침소와 군기(軍器)·육물(陸物)이 모두 불타거나 약탈 당할 것이 염려스럽다고 하나,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여깁니다. 국가의 법령이 병기와 군량은 항상 배 위에 두게 하였으니, 수군 장졸이 배 위를 영보(營堡)로 삼으므로 육지에 편히 있을 이치가 없습니다. 근래에 태평[昇平]한 날이 오래 되어 무사 안일에 길들여져서 수장(水將)이 배에서 살기를 싫어하여 각각 해변에 잠시 살 집을 마련하여 침소(寢所)로 삼고, 또 집을 세워서 육물(陸物)을 간직하니, 이는 변장(邊將)이 고식적(姑息的)으로 스스로 편할 꾀이고, 국가에서 법을 설립한 본의가 아닌

泊船艦處，置水軍、大小諸鎭，而不立城堡者，豈其智慮不及哉？本置水軍，爲水戰也。平時則粧船整棹，若將敵至，有事，則登時卽發，應機追擊。今之議者，以謂：‘水軍將卒寢處及軍器、陸物，皆爲焚掠，是可慮也，’臣意以謂不然。國家著令，兵器、軍糧，常在船上，則水軍將卒，以船上爲其營堡，無有安居陸地之理。近來昇平日久，狃於無事，水將厭居船，各於海邊，暫設居廬，以爲寢處，又立屋，以藏陸物。此邊將姑息自便之計，非國家設法本意。今若立城堡，是教獠升木，而益其怠慢也。人情莫不避危而就安，豈肯棄城中之安，而就船之上之危哉？雖以法禁之，恐不能止也。將卒皆保城中，無一人守船，海寇乘輕舸，焚燒船艦，其勢甚易。當此之時，其所憂者，必有大於議者之所憂矣。古人所以不立城堡，自有深意，不可輕變。但於各浦，藏兵器、陸物處，或作木柵，或築土垣，或築石堡，纔令防護此物而已，不可大築城郭，以爲水軍將卒宴晏之窟穴也。如此，則不須遣大臣，令觀察使、節度使，審定以啓，甚可。”

	<p>데, 이제 만약 성보(城堡)를 세우면 이는 원숭이에게 나무에 오르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 태만함을 더할 것입니다. 인정은 모두 위험을 피하고 평안함에 나아가는 것인데, 어찌 성중(城中)의 편안함을 버리고 배 위의 위태로운 데에 나아가기를 즐겨하겠습니까? 비록 법으로 금할지라도 그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수와 군사가 모두 성중(城中)을 보호하고, 한 사람도 배를 지키는 자가 없으면 해구(海寇)15481) 가 가벼운 배로 선함(船艦)을 불태우는 것은 그 형세가 심히 쉬운 일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근심하는 바는 반드시 의논하는 자의 근심하는 것보다 큼이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성보를 세우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가볍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포(各浦)에 병기(兵器)와 육물(陸物)을 간직하는 곳에는 혹은 목책(木柵)을 만들고, 혹은 흙담을 쌓으며, 혹은 석보(石堡)를 쌓아서 겨우 이 물건을 방호(防護)하게 할 뿐 성곽(城廓)을 크게 쌓아서 수군 장졸이 편히 지내는 굴혈(窟穴)로 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같이 하면 대신(大臣)을 보낼 것도 없이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살펴서 정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p> <p>하였다. 진교하기를,</p> <p>“지금 광릉(廣陵)15482) 과 선성(宣城)15483) 의 의견을 보건대, 진실로 내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성보(城堡)를 크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때에 모두 쌓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뜻은 비록 활이나 화살이라 하더라도 항상 배 위에 두면 장차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석보를 작게 설치하여 병기와 육물(陸物)을 보호하려고 할 뿐이다. 이 의논은 아직 승정원(承政院)에 두고, 명년 봄을 기다려서 다시 아뢰라.”</p> <p>하였다.</p>	<p>傳曰：“今觀廣陵與宣城之議，實未詳予意，而言之也。予非欲大設城堡也，又非欲此時舉築也。予意‘雖弓箭，常置船上，則將爲無用矣。’以故欲小設石堡，以護兵器、陸物耳。此議姑置政院，待明春，更啓。”</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15492) 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丙戌/上詣泰慶殿，上食。</p>

(成化) 20년 11월 3일(병술) 1번째기사		
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5일(무자) 2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귤씨입석(橘氏立石) 우경(右景) 양국장(亮國長) 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日本國對馬州橘氏立石右京亮國長遣人, 來獻土宜。
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8일(신묘)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辛卯/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9일(임진) 2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김여석(金礪石)에게 쌀 10석, 황두(黃豆) 10석, 진말(眞末) 2석, 청밀(淸蜜) 1석, 기름[油] 1석을 내려 주었다.	○傳旨戶曹賜金礪石米十碩、黃豆十碩、眞末二碩、淸蜜一碩、油一碩。
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12일(을미) 4번째기사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정난중(鄭蘭宗)이 치계(馳啓)하기를, “야인(野人)들이 기근(飢饉)으로 인하여 만포(滿浦)에 나와서 그 말[馬]을 가지고 곡식과 바꾸기를 청하는데, 절제사(節制使) 이섬(李暹)이, ‘흉년이므로 곡식을 팔아서 말을 사는 자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병조(兵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변장(邊將)의 응답(應答)이 마땅함을 잃지 아니하였으니, 뒤에 만약 이같은 일이 있거든, 또한 이로써 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둔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아뢰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평안도 한 도(道)는 목장(牧場)이 많지 아니하여 민간에 말이 적으므로, 국가	○平安道節度使鄭蘭宗馳啓曰: “野人等, 因飢饉, 出來滿浦, 請以其馬質穀。節制使李暹答以年歉, 無賣穀買馬者。” 兵曹據此啓曰: “邊將應答, 不至失中, 後若有如此事, 亦以此答之, 何如?” 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洪應、尹壕議: “依所啓施行。” 李克培議: “平安一道, 牧場不多, 民間馬小, 國家往往以下三道牧場馬入送, 分給軍戶, 然得之者, 十分中一分耳。野人如有賣馬者, 許民貿易, 似亦無妨。

	<p>에서 이따금 하삼도(下三道) 목장의 말을 들여보내어 군호(軍戶)에 나누어 주었으나, 얻는 자가 10분(分)의 1일 뿐입니다. 야인으로 말을 파는 자가 있으면 백성들에게 무역(貿易)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민간에 베[布]를 가진 자가 많지 아니하니, 관포(官布)로 매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아된 바에 의하는 것이 편합니다. 다만 군국(軍國)의 용품은 말이 가장 긴요한 것인데, 저들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을 팔아 흉년을 구제하려고 하니, 그 값이 몹시 비싸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군인이 사고자 하는 것을 들어주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광릉(廣陵)15513) 과 선성(宣城)15514) 의 의논이 옳다. 호마(胡馬)15515)는 길들이기가 좋으니, 많이 사면 쓰기에 유익할 것이다. 그 적당한지의 여부를 의논해 아뢰라.”</p> <p>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말[馬]이라는 것은 군국(軍國)의 수요에 지극히 긴요한 것이므로, 매매하기를 허락하는 것이 적당합니다.”</p> <p>하였다.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호마(胡馬)를 수매(收買)하는 일은 광릉(廣陵)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라.”</p> <p>하니, 판서(判書) 손순효(孫舜孝)가 와서 아뢰기를, “말을 매수(買收)하는 일을 신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도사가 계달한 본의는 야인이 기근으로 인하여 마필(馬匹)로써 곡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인데, 의논하는 이는 관포(官布)로써 말을 사고자 하며, 본도(本道)15516)에 관포가 있고 없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민간의 미곡(米穀)을 만포(滿浦)에 운반하여 말을 사게 하면 또한 운반하는 폐단이 있습니</p>	<p>但民間有布者不多， 姑以官布買賣何如?” 盧思愼議：“依所啓爲便。 但軍國之用， 馬爲最緊。 彼人因年凶乏食， 欲賣救荒， 其價不甚騰貴。 軍人欲買者聽之， 於我有利矣。” 傳于承政院曰：“廣陵、宣城議， 是矣。 胡馬馴良多買， 則有益於用矣， 其議便否以啓。” 承旨等啓曰：“馬者， 軍國所需至緊， 許令買賣爲便。” 傳于兵曹曰：“胡馬收買事， 依廣陵議施行” 判書孫舜孝來啓曰：“買馬事， 臣意以謂未便。 節度使所啓本意， 則謂：‘野人因飢饉， 欲以馬匹貿穀，’ 而議之者， 則欲以官布買之， 本道官布有無， 未可知也。 若以民間米穀， 輸之滿浦， 而買之， 則亦有轉輸之弊。 又野人因買賣， 久留于邊， 亦有支持之弊。” 傳曰：“予則以爲此事皆無弊也。 視其馬之可用與否及滿浦穀之有無， 可買則買之耳， 有何弊焉？ 至於民間買賣， 欲則爲之， 不欲則否， 亦豈有害？ 若其久留支持之弊， 則在邊將處置得宜耳， 亦必無弊。”</p>
--	--	---

	<p>다. 또 야인이 매매(賣買)로 인하여 오래 변경에 머물면 역시 지대(支待)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p> <p>“나는 이 일에 폐단이 없다고 생각한다. 말이 쓸 만한가의 여부와 만포에 곡식이 있고 없는 것을 보아서 살 만하면 사는 것인데,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민간에서 매매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는 것인데, 또한 어찌 해로움이 있겠는가? 오래 머물러 지대(支待)하는 폐단은 변장(邊將)이 적당하게 처리하는 데 있으니, 또한 반드시 폐단이 없을 것이다.”</p> <p>하였다.</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13일(병신) 2번째기사</p>	<p>간원(司諫院)에 전지(傳旨)하기를,</p> <p>“사헌부(司憲府)의 금령(禁令)이 해이해져 이달 12일 밤에 백성으로 금령을 범한 자가 매우 많은데, 본부(本府)15517) 아전[吏]들이 여인(女人)과 더불어 등불을 벌여놓고 모여서 술을 마셨으므로, 법을 집행하여 규찰(糾察)하는 뜻이 없으니, 국문(鞫問)하여 계달하라.”</p> <p>하였다.</p>	<p>○傳旨司諫院曰：“司憲府，禁令陵夷，今月十二日夜，民之犯禁者甚多。有本府吏等與女人，張燈會飲，殊無執法糾察之意。其鞫以啓。”</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15일(무술)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비전주(肥前州) 소성(小城) 천엽개(千葉介) 원윤(元胤)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p>	<p>○戊戌/日本國肥前州小城千葉介元胤遣人，來獻土宜。</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16일(기해) 2번째기사</p>	<p>조관(朝官)을 보내어 극성 전산(棘城錢山)에 별제(別祭)를 행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p> <p>“왕은 말한다! 예로부터 거룩하게 다스리는 임금이 덕을 힘쓰면 산천 귀신도 편안하지 아니함이 없다. 대저 신(神)과 사람의 사이는 어둡고 밝음이 비록 다를지라도 감응(感應)함은 어긋나지 아니하니, 그것은 이치가 한결같고 간격이 없는 데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 간격이 없는 까닭으로 신과 사람이 화합하면 재앙[災眚]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내가 과매(寡昧)한 자질로 큰 업(業)을</p>	<p>○遣朝官，別祭于棘城、錢山。其文曰：</p> <p>王若曰，自古盛治之主，能懋厥德，則山川鬼神，亦莫不寧。蓋神、人之際，幽、顯雖殊，感應不爽，由其理一，而無間也。以其無間也，故神、人和，</p>

	<p>이어받아, 덕은 상하(上下)를 화합하게 할 수 없고 정성은 신기(神祇)15527)를 감동시킬 수 없으니, 어찌 어긋난 기운이 맺혀서 퍼지 못하는 것이 없겠는가? 황해도 한 도는 조종(祖宗) 이래로 질병(疾疫)15528)에 걸린 바가 되어 날로 쇠잔하여 가니, 내가 매우 진려(軫慮)하여 감사(監司)·수령(守令)에게 위임하여 위로하고 구휼(救恤)하게 하였으며, 또 의관(醫官)을 보내어 약으로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소생되어 백성의 목숨을 보전하기를 바랐었다. 요즈음 듣건대 요열(妖孽)15529)의 일어남이 전일보다 줄어들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천년(天年)을 보전하지 못하고 사망이 잇대었다 하니, 이는 비록 과인(寡人)의 부덕(不德)한 소치이나 어찌 귀신에게 부끄러운 바가 되지 않겠는가? 말하는 이는 여러 번 전쟁한 장소에 부정(不正)한 기운이 번민[煩冤]하고 침울(沈鬱)하여 요열(妖孽)이 되었다고 말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귀신도 천지 음양(天地陰陽)의 바른 기운으로 정직(正直)을 말았는데 어찌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감동하여 응하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이로써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는 아름다운 법이 있으나 유사(有司)가 삼가지 아니하여 생(牲)15530)과 폐(幣)15531)가 그 정결함을 다하지 못하고, 축사(祝史)가 그 고하는 말을 바르게 못하였으며, 나의 정성이 귀신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귀신도 더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사자(使者)를 내어 정결하게 제사하니, 신(神)은 알지어다. 아아! 귀신은 지극한 정성을 받아서 스스로 감통(感通)하는 이치가 있으므로 제사를 받음이 이로써 어긋남이 없으니 재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러므로 이에 교시(教示)하니, 마땅히 알지어다.” 하였다.</p>	<p>而災眚不作。 予以寡昧， 叨承丕緒， 德不足以協上下， 誠不足以動神祇， 豈無乖戾之氣， 鬱而不伸者乎？ 黃海一道， 自祖宗以來， 爲疾疫所殄， 日就彫謝， 予甚軫慮， 委監司、 守令， 存撫救恤， 又遣醫官， 藥餌治療， 冀其少蘇， 以全民命。 比聞， 妖孽之作， 不減於前日， 而民不保天年， 死亡枕籍。 是雖寡人不德所致， 能不爲鬼神所羞乎？ 言者以爲：“百戰之場， 不正之氣， 煩冤沈[鬱] [鬱]， 爲妖爲孽。” 予則以謂：“鬼神亦天地陰陽之正氣， 正直是司， 安可不感以至誠， 感而不應者乎？” 是用春、 秋享祀， 祀有令典， 然有司不謹， 牲幣不能盡其潔， 祝史不能正其辭， 予之誠不能動鬼神， 鬼神亦或不知。 故今特遣使， 精禋以祀， 神其知之。 嗚呼！ 鬼神享于克誠， 自有感通之理， 饗祀是以不忒， 佇冀災害之蠲。 故茲教示， 尙宜知悉。</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17일(경자)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전교서 정자(典校署正字) 최형한(崔亨漢)은 본래 가난한 선비로서 서울에 와서 있는데, 이제 큰 병을 얻어 거의 사경(死境)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치료해 주게 하소서.”</p>	<p>○庚子/承政院啓曰：“典校署正字崔亨漢， 本以寒士， 旅寓京師， 今得大病， 幾至死域。 請療治。” 命賜藥與食物， 仍傳曰：“非徒此人， 亦有遠方艱難從</p>

	<p>하니, 명하여 약과 음식물을 내려 주게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 사람만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어렵게 벼슬하는 자가 있거든 모두 써서 아뢰라.” 하였다.</p>	<p>仕者，竝書以啓。”</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1월 18 일(신축)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p>	<p>○辛丑/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遣人，來獻(土) [土] 宜。</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1월 20 일(계묘) 1번째기사</p>	<p>형조 판서(刑曹判書) 어세겸(魚世謙)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 간악(奸惡)한 자를 적발하여 들일 때에 범금자(犯禁者)가 많았던 것은 진실로 신 등이 검찰(檢察)하지 못한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소를 잡은 자를 체포하였는데, 사대부(士大夫) 집안의 행랑(行廊)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대부 집은 내사(內使)가 아니면 수색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비록 사대부의 집안일지라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수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행랑은 종이 거처하는 곳이므로 그들의 하는 바를 주인이 반드시 알지 못할 것이며, 종이 범한 것으로 그 주인을 아울러 처벌할 수 없으니, 사대부 집안을 수색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경(卿) 등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어세겸 등이 아뢰기를, “만일 의심스러운 곳이 있을 때 아된 뒤에 수색하면 일이 모두 누설되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무릇 사대부 집 행랑은 내실(內室)과 막혔으니, 수색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영둔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 판서(六曹判書)에게 의논하라.”</p>	<p>○癸卯/刑曹判書魚世謙等來啓曰：“曩者內擿奸時犯禁者多，實由臣等不能檢察也。然近日捕得宰殺牛隻者，多出於士大夫家行廊。士大夫家，若非內使，則搜得甚難。請自今，雖士大夫家，有疑處，則搜之。”傳曰：“行廊奴僕所居，其所爲，主必不知。以奴之犯，不可竝罪其主，士大夫家，搜索似難。卿等其議以啓。”世謙等啓曰：“如有可疑處，啓達後搜索，則事皆漏洩，擿發爲難。凡士大夫家行廊，與內室阻隔，搜索何妨?”傳曰：“以此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判書。”鄭昌孫議：“若有見跡，雖朝士、宰相家行廊，搜之可矣。不然，恐傷大體。”韓明澮議：“[才] [本] 白丁，以宰殺爲業，京中來接者多，朝士若許接，恣其所爲，固宜重論。婦女接處</p>

	<p>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만약 드러난 자취가 있으면 비록 조사(朝士)나 재상(宰相)의 집 행랑이라 하더라도 수색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마도 대체(大體)에 손상될 듯합니다.”</p> <p>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은 소를 잡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 서울 안에 와서 있는 자가 많은데, 조사(朝士)가 만약 허접(許接)하여 그 하는 바를 함부로 하게 하면 진실로 중하게 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부녀(婦女)가 있는 곳 외에는 수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대저 집을 수색하는 것은 큰 일을 당하여 부득이해서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자취가 없는데 수색하기를 허락하면 아마도 분요(紛擾)를 일으킬 것이니, 반드시 드러난 자취가 있기를 기다려서 수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종재(宗宰)15532) 와 조사(朝士)의 집을 일체 수색하면 대체에 방해가 될 듯하나 법을 범하는 집이 때로는 더러 있으니, 이 폐단을 구제(救濟)하려고 하면 이처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사대부의 집을 수색하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뒤에 장차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원한을 가진 자가 말하기를, ‘아무개의 집에 도둑의 장물(贓物)이 있다.’고 하여 어지럽게 와서 고하면 해당 관사(官司)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수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하가 허둥지둥하여 자못 재물을 잃을 것이니, 수색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형조(刑曹)에서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外, 搜探何如?” 沈澮議: “大抵家舍搜探, 當大事, 不得已爲之。無顯跡, 而許令搜探, 則恐致紛擾。必待有顯跡, 搜探何如?” 尹弼商議: “宗宰及朝士之家, 一切搜探, 似妨大體。然犯法之家, 時或有之, 欲救此弊, 不可不如是也。” 洪應議: “搜探士大夫家, 臣意以謂: ‘後將有弊。’ 有恨者曰: ‘某家有賊贓,’ 紛紛來告, 該司不論尊卑, 闖入搜探, 上下遑遑, 頗失財物, 不可搜探。” 盧思愼、尹壕議: “依刑曹所啓, 施行何如?” 李克培議: “但當推刷宰殺者, 區處而已, 宰相、朝士之家, 豈可使之搜探? 若有可疑處, 則依前例, 啓達搜捕, 何如? 刑曹所啓, 雖快於一時, 恐傷事體。” 徐居正議: “今朝士之不謹行者、衣冠子弟之無賴者、寡婦之無幹家者, 與屠牛人, 相爲表裏, 犯法者, 比比有之, 是宜大懲。然今搜探, 只稱兩班, 不細分節目, 臣竊疑之。臣意以爲, 小小秩卑朝士、有蔭子弟、軍士、寡婦之家, 雖名兩班, 非國家尊敬者, 則刑曹以所聞搜捕, 似亦無害。若宗宰、大夫之家, 不可遽索, 但犯之, 則嚴加痛懲, 何</p>
--	--	--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다만 마땅히 소를 잡은 자를 추쇄(推刷)하여 조치할 뿐인데 재상과 조사(朝士)의 집을 어찌 수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전례(前例)에 의해서 계달하고 수색하여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조에서 아뢰는 것은 비록 한때 개운하겠으나 아마도 사체(事體)에 손상될 듯합니다.”</p> <p>하고, 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지금 조사(朝士)로서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와 의관 자제(衣冠子弟)의 무뢰자(無賴者)가 과부로 집을 주관하는 이가 없는 자와 소를 잡는 사람과 서로 안팎이 되어 법을 범하는 자가 자주 있으니, 이는 마땅히 크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색하는 데 있어서 다만 양반이라고만 일컫고 절목(節目)을 세분(細分)하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그웁이 의심스럽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소소하고 계급이 낮은 조사(朝士)·유음 자제(有蔭子弟)·군사(軍士)·과부(寡婦)의 집은 비록 양반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국가에서 존경하는 자가 아니니, 형조에서 아뢰는 바대로 수색하여 체포하는 것도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종재(宗宰)나 대부(大夫)의 집은 갑자기 수색할 수는 없지마는, 범한 것이 있으면 엄하게 징계를 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허중(許琮)은 의논하기를, “비록 양반의 집이라 하더라도 범금(犯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형적이 없는데 갑자기 수색하게 하면 국가에서 사인(士人)을 대우하는 체면이 아닙니다. 만약 사련자(辭連者)15533) 가 있으면 형조(刑曹)에서 아뢰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어세공(魚世恭)은 의논하기를, “양반의 집은 모두 사족(士族)이므로 비록 행랑(行廊)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한 집안의 안인데, 만약 관차(官差)15534) 가 사연이 없이 뛰어들어와서 수</p>	<p>如?” 許琮議: “雖兩班家, 不可謂: ‘無犯禁之人。’ 然無跡, 而遽令搜之, 則非國家待士人之體。 若有辭連者, 則依刑曹所啓, 施行何如?” 魚世恭議: “兩班之家, 皆是士族, 雖曰行廊, 亦是一家之內。 若官差無緣突入搜探, 有違待士族之體。 況無實而見搜, 則有愧瞻視, 似乎不可。 若現有可疑之因, 又因人指告, 則不可不搜。” 孫舜孝議: “今宰牛爲業者, 不得接跡於外, 皆入都城之內, 寄不義之家, 或接空家, 恣行無忌。 請益嚴捕盜之令, 又使捕盜將, 率軍捕捉, 則庶幾可弭矣。” 權攢議: “宰殺牛、馬之禁, 立法嚴矣, 宰殺豈識理兩班所爲哉? 若有兩班家, 知情犯禁, 則以四犯宰殺之法, 論斷何如? 識理朝士, 斷不爲如此事, 雖行廊之內, 不宜搜捕。” 李崇元議: “士大夫之家, 孰有宰殺者? 若搜士大夫之家, 恐傷大體。 但盜賊及宰殺爲業者, 或投接空家, 宜竝搜索。” 御書曰:</p> <p>人君之待士大夫, 不可不重, 予雖昏闇, 豈有重牛, 而輕士大夫之心哉? 但</p>
--	---	--

색하면 사족(士族)을 대우하는 체통에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실이 없는데도 수색을 당하면 남이 보고 듣는 데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니, 옳지 못할 듯합니다. 만약 드러나게 의심스러울 만한 원인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여 고한 것이라면 수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이제 소를 잡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자가 외방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여 모두 도성(都城) 안에 들어와서 불의(不義)한 집에 기탁하고 있거나, 혹은 빈집에 머물면서 방자하게 행하고 꺼림이 없으니, 청컨대 도둑을 잡는 영(令)을 더욱 엄하게 하고, 또 포도장(捕盜將)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잡게 하면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권찬(權攢)은 의논하기를,

“소와 말을 잡는 것을 금하는 것은 법을 세운 것이 엄한데, 도살[宰殺]하는 것이 어찌 도리를 아는 양반의 소위이겠습니까? 만약 양반의 집에서 사실을 알고 금하는 법을 범하였으면 ‘사범 재살법(四犯宰殺法)’으로 논단(論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리를 아는 조사(朝士)는 결단코 이같은 일은 하지 아니 할 것이므로 비록 행랑 안이라 하더라도 수색해서 체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 누가 도살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대부의 집을 수색한다면 대체(大體)에 손상될 듯합니다. 다만 도둑이나 도살로 직업을 삼는 자가 혹시 빈집에 와서 살고 있으면 아울러 수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임금이 사대부를 대우하기를 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비록 <사리에> 어두우나 어찌 소를 중히 여기고 사대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는가? 다만 해조(該曹)15535)의 품(稟)한 바를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채택하려는 것일 뿐이다. 과연 여러 사람의 말과 같이, 차라리 많은 소

以該曹所稟，博採群言耳。果若群言，寧失萬牛，不可失待士夫之禮，搜捕之事，斷不可施行。

仍傳旨刑曹曰：“止奸莫如嚴令，待士當以隆禮。今屠殺牛、馬者，不畏刑法，惟利是求，如此之民，不可易種。依前受教，隨所聞捕捉，輒卽論斷，放之遠裔。搜索時，竝搜士大夫之家，則殊無待士之體，其勿竝搜。如有所聞的實，唯當不避權勢，啓聞推考，以副予弭盜賊，禮臣下之意。”

	<p>를 잃을지언정 사대부를 대우하는 예(禮)는 잃을 수 없으니, 수색해 잡는 일은 결단코 시행할 수 없다.”</p> <p>하고, 인하여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p> <p>“간사함을 막는 데에는 엄격한 법령만한 것이 없고 사대부를 대우하는 데에는 융성한 예(禮)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소와 말을 도살하는 자가 형법(刑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利)만 추구하니, 이같은 백성은 종자(種子)를 바꿀 수 없으므로 앞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듣는 대로 잡아서 즉시 논단(論斷)하여 먼 지방으로 내칠 것이다. 수색할 때에 사대부의 집을 아울러 수색하면 자못 사대부를 대우하는 체면이 없으니, 아울러서 수색하지 말라. 만일 소문이 확실함이 있으면 마땅히 권세를 피하지 말고 계문(啓聞)하여 추고(推考)하여서, 내가 도둑을 없애고 신하를 대우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1월 21 일(갑진) 1번째기사</p>	<p>건주 좌위 주장(建州左衛酋長) 토로(吐老)가 동오을도고(童吾乙都古)를 보내고, 우위(右衛) 주장 보화토(甫花土)가 동합답(童哈答)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p>	<p>○甲辰/建州左衛酋長吐老, 遣童吾乙, 都古右衛酋長甫花土, 遣童哈答, 來獻土宜。</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1월 21 일(갑진) 3번째기사</p>	<p>급제(及第) 채수(蔡壽)가 상서(上書)하기를,</p> <p>“신은 초모(草茅)15536) 의 가난한 선비로서 다행히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친당(親黨)이 없었으나 특별히 천은(天恩)을 입어 외람되게 경연[經幄]에 참여하여 논사(論思)15537) 에 참여함을 얻었고 후설(喉舌)15538) 에 발탁되어 배치되었으며 헌장(憲長)15539) 으로 뛰어 올려서 장려하여 권장하고, 분수에 맞지 아니한 것을 끌어 비유하여 혹은 강개(慷慨)하다고 일컬으시고 혹은 나라에 몸을 바친다고 일컬으시며, 또 옛사람인 고(皐)15540) ·기(夔)15541) ·요(姚)15542) ·송(宋)15543) 을 들어서 힘쓰게 하셨으니, 신이 명령을 듣고 황공하고 부끄러워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재주가 가볍고</p>	<p>○及第蔡壽上書曰：</p> <p>臣草茅寒儒，幸捷科第，朝無親黨，特蒙天[恩]，濫與經幄，獲參論思，擢置喉舌，超遷憲長，誘掖獎勸，引喻非分，或稱慷慨，或稱徇國，又舉古人如皋、夔、姚、宋以勉勵之，臣聞命慙惶，措身無地。自度才輕德薄，無所裨益，獨計以爲‘既任言責，則當盡言</p>

덕이 적어서 도우고 보탬 것이 없었으나, 홀로 헤아리건대 이미 언책(言責)15544) 을 맡았으면 마땅히 숨김이 없이 말을 다하여야 하늘 같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만나면 바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생각이 얕고 부족하여 말한 바가 그릇되고 망령스러워서 위로 천위(天威)를 저촉하였으니 죄가 헤아릴 수 없는데, 정상께서 다른 뜻이 없음을 살피시고 방치하여 두고 묻지 않으시므로, 신이 이에 대궐 뜰에서 슬피 울면서 재생(再生)의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신은 본래 집이 가난하여 돌아갈 곳이 없었는데, 신의 장인[妻父]이 함창(咸昌)에 살고 있었으므로 신이 가서 밥을 먹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갈고 우물을 파며 살았는데,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신의 이성 사촌(異姓四寸) 동생 서감원(徐坎元)이 진언(陳言)을 통하여 국정(國政)을 비방하고 겸하여 신의 부자(父子)의 일을 말하여 비호(庇護)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할 줄이야, 이는 바로 공적인 일에 사심(私心)을 개입시키는 사람이니 국법으로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이 서감원과 이미 가까운 친척이고 한 도(道)에 같이 살았으며, 또 신의 부자의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정상께서는 신이 미리 알고 있음을 의심하시어, 명하여 신과 부동(符同)한 형상을 장신(杖訊)15545) 하게 하셨는데, 신은 가슴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며 마음속의 것을 날날이 삼가 아래와 같이 진술하니, 삼가 바라건대, 정상께서는 천지와 부모 같으시니 애처롭게 여기시어 살피 주소서.

신이 서감원과 비록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하더라도 신은 서울에서 성장하였고 서감원은 대구(大丘)에서 성장하였으며, 또 나이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래 사귀어 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사는 함창과 서감원이 사는 대구와는 비록 한 도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사흘 길인데, 신이 파직되어 돌아간 뒤로부터 서감원이 한 번도 신의 집에 오지 아니하였고 신도 서감원의 집에 한 번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서감원이 형장(刑杖)을 이기지 못하여 혹시 거짓

不諱，庶可少報生成，’故遇事輒言。而智慮淺短，所言謬妄，上觸天威，罪在不測，而聖上察其無情，置之不問，臣於時痛泣闕庭，感激再生之恩。臣素家貧，無所於歸，臣之妻父，居於咸昌，臣往就食，三年于茲。得與齊民，共享耕鑿，豈意臣異姓四寸弟徐坎元，因陳言，謗訕國政，兼言臣父子事，似有庇護之情？此乃因公寓私之人，國法所痛懲。但臣與坎元，既是切族，而同居一道，又言臣父子事，故聖上疑臣預知，乃命杖訊與臣符同之狀。臣拊心呼天，歷歷肝膽，謹陳如左。伏惟聖上，天地父母，哀而察之。臣與坎元，雖切族，而臣生長京城，坎元生長大丘，又年不相若，故素不交親。臣所居咸昌，與坎允〔元〕所居大丘，雖云一道，相距三日程，自臣罷職下去後，坎元一不來臣家，臣亦一不歸坎元家。坎元不勝刑杖，雖或誣服，臣家門戶向背、山川地勢，坎元終不能言也，其相會言語節次，坎元終不能言也，臣之陳言草(蒿)〔藁〕、交通消息，坎元終不能言也。坎元若來臣家，則必有經宿之處，咸昌鄉人，誰不知之？

자복하였을지라도 신의 집 문간의 방향이 어느쪽으로 있는 것과 산천 지형을 서감원이 마침내 말하지 못하였고, 서로 모여서 말한 절차를 서감원이 마침내 말하지 못하였으며, 신의 진언(陳言)하는 초고(草稿)와 서로 통한 소식을 서감원이 끝내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서감원이 만약 신의 집에 왔었다면 반드시 경유하여 묵은 곳이 있었을 것인데 함창 고을 사람이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만약 서감원의 집에 갔었다면 역시 경유하여 묵은 곳이 있었을 것인데 대구 고을 사람이 누가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이것으로 추궁하여 실정을 밝혀 내면 성상께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언사(言事)의 그릇되고 망령된 것으로 거의 중한 죄를 얻게 되었으나 외람되게 성은(聖恩)을 입어 전리(田里)15546) 에서 편히 사는데, 어찌하여 다시 어리석고 망령된 가까운 친척과 같이 의논하여 국정을 비방하고 신의 몸을 비호(庇護)하게 하여 희망을 두고자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을 지라도 이것은 하지 아니합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가없이 여겨서 살피소서. 신의 아버지는 나이 장차 70으로, 늙어 병이 잇따릅니다. 이제 조정의 공론으로 전원(田園)에 폐(廢)해 있게 하니 분수에 달게 여기는 바인데, 어찌 초모(草茅)의 한 미치광이 선비의 말로써 고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상(無狀)할지라도 사세(事勢)를 조금 아는데 어찌 광망(狂妄)한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글을 올려 영구(營救)15547) 하게 하여 희망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식할지라도 이것은 하지 아니합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가없이 여겨서 살피소서. 예전 소자첨(蘇子瞻)15548) 이 죄를 얻어 쫓겨나자 친구가 상소하여 구(救)하기를 논하려고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소자첨이 뒤에 그 소초(疏草)에 칭찬하고 비호(庇護)하는 말이 있음을 보고 소자첨이 혀를 빼물고 한참 있다가 거두며 말하기를, ‘이 글을 올렸으면 소식(蘇軾)은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신하가 죄를 지었는데 밑에서 구(救)하기를 논하는 자가 있으면 다만 임금의 뜻을 격(激)하게 하기 때문에 소자첨이

臣若歸坎元家，亦必有經宿之處，大丘鄉人，誰不知之？以此窮推覈情，則聖上可知其實矣。臣以言事謬妄，幾得重罪，猥蒙聖恩，安居田里，何必更與愚妄切族同議，使之訕謗國政，而庇護臣身，欲有希望乎？臣雖至愚，不爲此也。伏惟聖上哀，而察之。臣父年將七十，老病相仍。今以朝廷公論，廢處田園，分所甘也，豈可以草茅一狂儒之言，有所更改乎？臣雖無狀，稍識事勢，豈可使狂妄切族，上書營救，有所希望乎？臣雖無識，不爲此也。伏惟聖上哀而察之。昔蘇子瞻得罪坐貶，友人欲上疏論救，而不果。子瞻後見其疏草，有稱譽庇護之言，子瞻吐舌，良久而收曰：“若呈此疏，軾必死矣。”自古人臣得罪，下有論救者，則祇激人主之意，故子瞻云然。臣粗知經史，稍識事理，豈不知此意乎？友人猶不可營救，況令臣切族，訕謗國政，而庇護臣父子，欲有希望乎？臣雖愚妄，不爲此也。伏惟聖上哀而察之。世祖朝，有宋希獻者，因上書擢用，故其後儒生，相繼上書，妄議國政者，皆爲自己媒進之計，豈爲國家事乎？臣常惡之，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이 경사(經史)를 대강 알고 사리(事理)를 조금 아는데 어찌 이런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친구도 오히려 구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국정을 비방하고 신의 부자(父子)를 비호(庇護)하게 하여 희망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어리석고 망령스러울지라도 이는 하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가없이 여겨서 살피소서. 세조조(世祖朝)에 송희헌(宋希獻)이란 자가 있어 상서(上書)로 인하여탁용(擢用)되었기 때문에, 그 후 유생(儒生)이 잇따라 상서하여 망령되게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벼슬에 오르기를 중개하기 위한 꾀인데, 어찌 국가를 위하는 일이겠습니까? 신이 항상 그것을 미워하여 유자(儒者)가 써야 할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서도 오히려 미워하는데 더구나 가까운 친척에게 권하겠으며, 더구나 신의 부자(父子)에 관계되는 일이겠으며, 더구나 조정 정사를 비방하게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어리석고 망령될지라도 이는 하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가없이 여겨 살피소서. 옛 신하는 비록 폐해 버림을 당하였을지라도 차마 임금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굴원(屈原)15549)은 궁궐을 슬프게 바라보았고 두보(杜甫)15550)는 종남산(終南山)15551)을 오히려 그리워 하였는데, 신은 10년 동안 시종(侍從)하면서 날마다 천안(天顏)을 뵈다가 하루아침에 서울을 떠나 남쪽 지방에 유락(流落)하여 있으니, 대궐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폐기하여 버려두는 것은 성상께 있고 궁하고 통함은 천명(天命)에 있는데, 어찌 어리석고 망령된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국정을 비방하고 신의 부자를 비호(庇護)하게 하여 희망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상(無狀)할지라도 이는 하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가없이 여겨서 살피소서.

신의 마음은 해와 별처럼 밝은데 성명(聖明)한 세상에 밝게 드러내지 못하면 신이 원통함을 머금고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

以爲: ‘非儒者用心也。’ 他人上書, 猶惡之, 況勸臣切族乎? 況干臣父子事乎? 況使訕謗朝政乎? 臣雖愚妄, 不爲此也。 伏惟聖上哀而察之。 古之人臣, 雖遭廢棄, 不忍忘君, 故屈原悵望修門, 杜甫尙戀終南, 臣十年侍從, 日覲龍顏, 一朝去國, 流落南荒, 戀闕之情, 豈有極乎? 但廢、置在於聖上, 窮、通付之天命, 豈可使愚妄切族, 訕謗國政, 而庇護臣父子, 欲有希望乎? 臣雖無狀, 不爲此也。 伏惟聖上哀而察之。 臣之此心, 皎如日星, 聖明之世, 不能曝白, 則臣含冤入地, 死不瞑目矣。 臣之此冤, 天地神明皆知之, 祖宗英靈皆知之。 臣若實與坎元符同, 而敢懷詐欺, 罔聖上者, 天地神明, 必殛之, 祖宗英靈, 必殛之, 臣敢誣哉? 前日申澣, 身犯奸詐之罪, 而又上書自明, 重欺聖上, 聖上益怒, 終置重典。 臣嘗目覩其事, 豈敢以符同之事, 重欺聖上, 益招大禍乎? 臣雖愚妄, 亦知利害, 豈敢誣哉? 伏惟聖上哀而察之。 古人有失鐵者, 疑其隣人, 朝而視其人, 則言語竊鐵者也, 舉止容貌, 皆竊鐵者也。 及得鐵於他處, 然後更視其

다. 신의 이 원통함은 천지神明(天地神明)이 다 알고 조종(祖宗)의 영령(英靈)이 다 아시는데, 신이 만약 서감원(徐坎元)과 부동(符同)하여 감히 간사함을 품고 성상을 기망(欺罔)하였으면 천지神明이 반드시 죽일 것이며 조종의 영령이 반드시 죽일 것인데, 신이 감히 속이겠습니까? 전일에 신정(申靜)이 친히 간사한 죄를 범하고 또 글을 올려 스스로 변명하여 거듭 성상을 속이니, 성상께서 더욱 노여워하시어 마침내 중한 법에 처하셨습니다. 신이 일찍이 그 일을 눈으로 보았는데 어찌 감히 부동(符同)하는 일로써 거듭 성상을 속여서 큰 화(禍)를 더 불러 일으키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가없이 여겨서 살피소서. 옛사람이 쇠[鐵]를 잃은 자가 있었는데 그 이웃 사람을 의심하여 아침에 그 사람을 보니 말하는 것이 쇠를 도둑질한 자와 같고 행동과 얼굴이 쇠를 훔친 자와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를 다른 곳에서 찾은 뒤에 다시 그 사람을 보니 언어와 용모가 쇠를 훔친 자와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마음에 의심스러움이 있으면 일마다 의심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가 그 실정을 알아낸 뒤에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신의 이 일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서감원을 나치(拿致)하여 신과 대변(對辨)하게 하고,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여러모로 물어서 그 실정을 끝까지 추궁하게 하면 성상의 의심스러움이 환하게 풀어질 것이며, 외로운 신에게 맺힌 원통함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천지나 부모와 같으시니 가없이 여겨 살피소서. 신은 억울하여 통곡하는 지극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소 끝에 어서(御書)로 쓰기를,
“지금 그대의 글에 나의 의심스러움이 조금 풀린다. 그러나 내가 전에 그대를 어떤 선비로 대접하였으며 그대도 나를 어떤 임금으로 섬겼는가? 말기고 의심하지 아니한 것은 믿기 때문이고 뽑아 쓰기를 차례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환(奇患)을 빚어내

人，則言語容貌，皆非竊鐵者也。何者？心有所疑，則事事無非可疑也，及得情而後，乃可釋也。臣之此事，亦類於此。伏望，聖上拿致坎元，與臣對辨，使大臣雜問，窮極其情，則聖上之疑洞釋，而孤臣之冤結得伸矣。伏惟聖上，天地父母，哀而察之。臣無任抑鬱痛哭之至。

御書疏尾曰：

今爾之疏，少釋予疑。然予曩以爾爲何士待之，爾亦以予爲何主，而事之耶？所以任之不疑者，信也；擢之不次者，賢也。而爾將何心釀成奇患，使武氏之周，復生於今日歟？且以爾疏觀之，爾爲子瞻，我爲何主，爾爲杜甫、屈原，我爲何君？夫儒之名者，非一。游俠者儒也，文史者儒也，曠達者儒也，智數者儒也，章句者儒也，事功者儒也，道德者儒也。爾常以何儒，自處耶？

仍傳于政院曰：“其以此意問之。”政院啓曰：“以罪人例，鞫之庭下乎？抑

	<p>어 무씨(武氏)의 주(周)나라를 다시 오늘날에 생기게 하는가?15552) 그리고 또 그대의 글을 보니, 그대가 소자첨(蘇子瞻)이 되면 나는 어떤 임금이 되며, 그대가 두보(杜甫)나 굴원(屈原)이 되면 나는 어떤 임금이 되겠는가 대저 선비[儒]로 이름하는 것이 하나만이 아니다. 유희자(游俠者)15553) 도 선비이고 문사자(文史者)15554) 도 선비이며 광달자(曠達者)15555) 도 선비이고 지수자(智數者)15556) 도 선비이며 장구자(章句者)15557) 도 선비이고 사공자(事功者)도 선비이며 도덕자(道德者)도 선비이다. 그대는 항상 어떤 선비로 자처하느냐?”</p> <p>하였다.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써 물어 보라.”</p> <p>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죄인의 예(例)로 뜰 밑에 잡아다가 국문(鞫問)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러서 물어야 하겠습니까?”</p> <p>하자, 전교하기를, “불러서 물으라.”</p> <p>하였다. 채수(蔡壽)가 승정원에 와서 아뢰기를, “신이 미천한 몸으로서 특별히 발탁하심을 받았으므로, 이미 성상을 만났으니 마땅히 그 포부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무릇 품은 바가 있으면 말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와 생각이 얕고 부족하여 그릇 헤아리고 망령되게 아뢰었으니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한데, 성상의 은혜가 하늘과 같아서 오늘날 목숨을 보전함을 얻었습니다. 신이 굴원과 두보를 말한 것은 다만 신의 대궐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말한 것뿐이니, 어찌 감히 두 신하에게 스스로 비하겠습니까? 신이 소자첨의 일을 말한 것은, 무릇 신하가 죄를 지으면 신하가 영구(營救)할 수 없는 것인데, 서감원의 비호(庇護)는 신이 진실로 무익함을 알기 때문에 신이 서감원과 부동(符同)하지 않았음을 밝히려고</p>	<p>召而問之乎?” 傳曰: “召而問之。” 蔡壽來政院書啓曰:</p> <p>臣以賤品, 特蒙擢拔以謂: ‘既逢聖上, 當盡其所蘊,’ 故凡有所懷, 無不盡言, 而智慮淺短, 錯斜妄陳, 罪當萬死, 聖恩如天, 得保今日。 臣言杜甫、屈原者, 只言臣戀闕之情耳, 豈敢以二臣自比乎? 臣言子瞻事者, 凡人臣作罪, 臣下不可營救, 坎元之庇護, 臣固知無益, 故臣欲明不與坎元符同耳, 豈敢以子瞻自比乎?</p> <p>御書曰:</p> <p>予所問者, 非特此也, 而但以屈原、子瞻爲對, 何也? 爾今若更立于朝, 當法古之何臣?</p> <p>壽啓曰: “臣本迂儒, 以何儒自處? 是以不敢摘對。 但平生立志, 欲法古之忠臣而已, 但無才德智慮, 料事錯誤, 心與事違耳。” 御書曰:</p> <p>所謂: “古之忠臣,” 指誰? 所謂: “料</p>
--	--	--

	<p>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소자첨에게 스스로 비하겠습니까?”</p> <p>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p> <p>“내가 물은 바는 이것만이 아닌데, 다만 권원·소자첨을 가지고 대답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대가 만약 다시 조정에 있게 되면 마땅히 예전 어떤 신하를 본받겠는가?”</p> <p>하자, 채수가 아뢰기를,</p> <p>“신은 본래 우유(迂儒)15558) 인데 어떤 선비로 자처하겠습니까? 이러므로 감히 지적해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평생에 세운 뜻은, 옛 충신을 본받고자 할 뿐입니다. 다만 재주와 덕과 지혜가 없어서 일을 헤아리는 데에 그릇되어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납니다.”</p> <p>하였다. 어서로 이르기를,</p> <p>“이른바 옛 충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른바 일을 헤아리는 데 그릇되었다고 한 것은 어떤 일이며, 이른바 마음과 일이 어긋난다는 것은 어떤 계책인가?”</p> <p>하니, 채수가 아뢰기를,</p> <p>“옛 충신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무릇 나라에 뜻을 둔 자는 모두 본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을 헤아리는 데에 그릇되었다는 것은 신이 전일에 일을 망령되게 헤아리고 잘못 계달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일이 어긋난다고 한 것은, 신의 마음은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였지만 일을 생각하는 데에 그릇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p> <p>하였다. 어서로 이르기를,</p> <p>“그대가 그릇되고 망령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인가?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릇되고 망령되게 생각한 바의 뜻을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이다.”</p> <p>하니, 채수가 글로 써서 아뢰기를,</p> <p>“신이 한갓 옛 일만 알고 대체를 알지 못하여 망령되게 헤아리고 계달하였다</p>	<p>事錯誤,” 何事? 所謂: “心與事違,” 何計?</p> <p>壽啓曰: “古之忠臣非一, 臣觀史策, 凡有志於國者, 皆欲法之。 料事錯誤者, 臣前日慮事妄量, 錯誤啓達, 故云。 心與事違者, 臣心則欲忠於國, 而慮事誤錯, 故云。” 御書曰:</p> <p>爾自以爲誤錯妄量者, 眞耶? 如其眞也, 則當言其所以誤錯妄量之意也。</p> <p>壽書啓曰:</p> <p>臣前日徒知古事, 不知大體, 妄量啓達, 及聞上教, 然後始知國家將有禍患事, 臣惶恐無地, 甘伏重罪。 其時特蒙天恩, 置之不問, 以開自新之路。 教云: “凡人知其過者, 鮮矣。 爾能知過, 故棄之。” 臣聞命痛哭, 感激再生之恩。 至今思前之非, 痛自悔責耳。</p> <p>御書曰:</p> <p>若知古事, 何待予言而後, 知其有禍患</p>
--	---	--

	<p>가 상교(上敎)를 들은 뒤에 미쳐서 비로소 국가에 장차 화환(禍患)의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신이 황공하여 몸둘 바가 없었고, 중한 죄를 받기를 달게 여겼는데, 그 때에 특별히 천은(天恩)을 입어 불문(不問)에 붙이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 주시며 하교 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그 허물을 아는 자가 적은데 그대가 허물을 잘 알기 때문에 놓아둔다.’고 하셨기에, 신이 명령을 듣고 통곡하며 다시 살리신 은혜를 감격해 하였으며, 이제까지 전일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아프게 스스로 누우치고 꾸짖을 뿐입니다.”</p> <p>하였다. 어서로 이르기를,</p> <p>“만약 옛일을 안다면, 어찌 내 말을 기다린 뒤에야 화환(禍患)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p> <p>하니, 채수가 글로 써서 아뢰기를,</p> <p>“신이 망령되게 헤아리고 미혹[迷惑]하기 때문에 미쳐 헤아리지 못하였는데, 상교(上敎)를 들은 뒤에 미쳐서야 알았습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p> <p>“그대가 서감원과 부동(符同)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알았다. 다만 그대가 옛일을 안다면 어찌 내 말을 기다린 뒤에야 그것을 알았는가?”</p> <p>하고, 인하여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니, 채수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p> <p>“신이 참으로 미혹하여 성상의 마음을 수고롭게 하였습니다.”</p> <p>하고, 또 글로 써서 아뢰기를,</p> <p>“미혹한 소치로 미쳐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게 생각하여 그릇되었습니다. 신이 만약 이같은 일이 화환(禍患)의 단서가 될 것을 헤아려 알았으면 신이 어찌 감히 하였겠습니까? 신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그릇 헤아리고 망령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p> <p>하였다. 어서(御書)로 이르기를,</p>	<p>之事哉?</p> <p>壽書啓曰:</p> <p>臣妄量迷惑, 故未及計料, 及聞上敎, 然後知之。</p> <p>傳曰: “爾不與坎元符同, 則予知之。但爾知古事, 則豈待予言, 然後知之乎?” 仍命饋食, 壽哭泣流涕曰: “臣實迷惑, 勞動聖心。” 又書啓曰:</p> <p>迷惑所致, 未及計料, 妄量錯誤。 臣若料知如此事爲禍患之端, 則臣何敢爾耶? 臣未及此, 所以錯料妄量也。</p> <p>御書曰:</p> <p>爾以今之知思之, 則其禍患之淺深, 猶可以言之乎? 大則至於何, 小則至於何?</p> <p>壽書啓曰:</p> <p>臣以今思之, 如此事禍患之深。 且大,</p>
--	--	--

	<p>“그대가 지금 생각하여 알았다면 그 화환의 얇고 깊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크면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작으면 어느 지경에 이르겠는가?”</p> <p>하니, 채수가 글로 써서 아뢰기를,</p> <p>“신이 지금 생각하면 이같은 일의 화환이 깊고 큰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이 미혹하여 그 때에 모두 미처 추측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의 망령되게 헤아린 잘못이었습니다.”</p> <p>하자, 어서(御書)로 이르기를,</p> <p>“화(禍)의 큰 것은 이보다 지나친 것이 없고 그릇된 계획은 곧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그대의 뉘우치고 꾸짖는 것이 앞의 허물을 덮을 수 있겠는가? 충성과 아첨은 둘이 함께 존재할 수 없으며 또 크게 교묘한[巧] 것은 서투른[拙] 것과 같다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p> <p>하니, 채수가 글로 아뢰기를,</p> <p>“이같은 큰 일을 신이 그 때 우혹(愚惑)하여 모두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한데, 특별히 천은(天恩)을 입어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 주시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신명(神明)이 아는 바인데, 일을 헤아리면서 이와 같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매우 호되게 꾸짖으며 두고두고 후회합니다.”</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p> <p>“알았다.”</p> <p>하고,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상소(上疏)와 문답한 글을 의정부(議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여서 의논하게 하라.”</p> <p>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p> <p>“이제 채수의 상소의 뜻을 보건대, 서감원(徐坎元)과 부동(符同)하지 아니한 뜻이 매우 명백합니다. 채수는 재상이었는데 어찌 만들고 꾸며서 천총(天聰)</p>	<p>何可量乎? 而臣愚惑, 其時皆未及料, 此臣之量妄錯誤也。</p> <p>御書曰:</p> <p>禍之大者, 莫踰於此, 而錯誤之計, 乃成亂國。 爾之悔責, 可掩前過, 忠、佞不兩立, 且大巧若拙, 爾知之乎?</p> <p>壽書啓曰:</p> <p>如此大事, 臣其時愚惑, 皆未及料, 罪當萬死, 特蒙天恩, 以開自新之路, 以至今日。 臣報國之心, 神明所知, 而慮事錯誤如此, 故至今痛自刻責追悔。</p> <p>傳曰: “知道。” 乃傳于政院曰: “上疏及問答之書, 示政府及領敦寧以上議之。” 鄭昌孫議: “今觀蔡壽疏意, 不與徐坎元符同之意, 至爲明白。 壽, 宰相, 豈造飾以欺天聰哉?” 韓明澮、沈澮、徐居正議: “徐坎元畢推, 後更議何如?” 尹弼商議: “徐坎元上疏, 雖有形跡之嫌, 然蔡壽有名文臣, 以正大自處, 安有如是符同之理乎?” 洪應議:</p>
--	---	--

	<p>을 속이겠습니까?”</p> <p>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서감원의 추핵(推劾)이 끝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며,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서감원의 상소는 비록 형적(形跡)의 혐의로움이 있더라도, 채수는 이름 있는 문신(文臣)으로서 정대(正大)함을 자처(自處)하는데 어찌 이처럼 부동할 이치가 있겠습니까?”</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제 채수의 상소와 어서(御書)의 문답을 보건대, 채수는 서감원과 더불어 서로 통하지 아니한 것이 저절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수는 이름이 있는 선비인데 만약 서감원에게 요구하여 살기를 구하였으면 어찌 채수라 하겠습니까?”</p> <p>하며, 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이제 채수의 상소와 대답한 바로써 보건대, 서감원과 부동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감원을 추고(推考)한 계본(啓本)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채수의 상소와 대답을 올린 말을 보건대, 서감원과 공모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써 서감원을 형신(刑訊)하여 역사(逆詐)15559) 한 죄와 같이 하는 것은 아마도 사정(事情)을 잃을까 합니다.”</p> <p>하며,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채수가 전일에 아뢰 잘못된 일을 이제 대답한 것으로 보건대, 마음에 진실로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은 것입니다. 채수와 서감원은 가까운 친척이고 한 도(道)에 같이 살고 있으므로 사정이 의심스러울 만하나, 채수는 오래 성조(聖朝)를 모시어 사체(事體)를 대강 아는 자인데 어찌 이같은 무상(無狀)한 일이</p>	<p>“今觀蔡壽上書及御書問答，壽但自明不與坎元相通爾。蔡壽，有名之士，若要坎元求活，豈蔡壽哉？”李克培、尹壕、韓致禮議：“今以蔡壽上疏及所對觀之，似不與坎元符同。然坎元推考啓本，時未到，姑待之何如？”盧思愼議：“觀蔡壽上疏及上對之辭，不與坎元同謀明矣。今以此刑訊坎元，似類逆詐，恐失事情。”許琮議：“壽之前日所啓誤錯之事，今觀所對，於心實自悔責矣。壽與坎元切親，而同居一道，情涉可疑。然壽久侍聖朝，粗知事體者，豈有如此無狀之事乎？既命推坎元，待畢推以啓，處置何如？”傳曰：“徐坎元畢推，啓聞後更啓。”</p>
--	---	---

	<p>있겠습니까? 벌써 서감원을 추문(推問)하도록 명하셨으니, 추문을 마치고 아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처치(處置)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서감원의 추고(推考)를 마치고 계문(啓聞)한 뒤에 다시 아뢰라.” 하였다.</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1월 22 일(을사) 1번째기사</p>	<p>이에 앞서 행 호군(行護軍) 최호원(崔灝元)이 참성 초 행향사(塹城醮行香使)로 서 마리산(摩利山)에 갔다가 돌아와서, 헌관(獻官)을 더 정할 것과 재실(齋室) 을 옮겨 배치할 것과 집사(執事)는 교생(校生)으로 정하고, 제기(祭器)는 보궤 (篚)를 쓰며 제수(祭需)를 더 마련할 것 등의 일을 아뢰니, 명하여 소격서 제조(昭格署提調)와 예조(禮曹)에 보여 최호원의 의논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제 1조(第一條)의 강화 부사(江華府使)를 헌관(獻官)으로 삼는 일에 대하여, 제조(提調) 허중(許琮)이 의논하기를, “본서(本署)의 삼계 초제(三界醮祭)는 내외단(內外壇) 아울러 3백 51위(位)인 데, 행향사(行香使)는 내단(內壇)과 외단(外壇) 서쪽에서 차[茶]·탕(湯)·술[酒] 을 드리고 헌관(獻官)은 외단 동쪽에서 차·탕·술을 드리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참성 초례(塹城醮禮)도 이 예(例)에 의하여 할 것이나 다만 참성(塹城)의 대(臺) 위가 높고 가팔라서 오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외단은 위수(位數)가 많지 아니하니 하단(下壇) 좌우쪽을 모두 헌관으로 하여금 드리 게 하면 경외(京外)15560) 같은 예(例)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부사(府 使)를 헌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일을 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과(李坡)와 참의(參議) 박송질(朴崇質)은 의논하 기를, “참성 초단(塹城醮壇)은 높아서 오르내리는 즈음에 조금이라도 태만함이 있으 면 곧 불경(不敬)이 되는데, 행향사(行香使)가 만약 상단(上壇)에서 술잔을 드</p>	<p>○乙巳/先是, 行護軍崔灝元, 以塹城 醮行香使, 往摩利山, 還啓獻官加定、 齋室移排、執事差校生、祭器用篚· 簋、祭需加設等事, 命示昭格署提調、 禮曹及崔灝元議便否。 第一條江華府 使爲獻官事, 提調許琮議: “本署三界 醮祭內外壇, 并三百五十一位, 行香 使, 則內壇及外壇西偏, 奠茶、湯、 酒, 獻官, 則外壇東偏, 奠茶、湯、酒, 其來已久。 塹城醮禮, 亦依此例爲之, 但塹城, 臺上峻截, 陞降爲難。 且外 壇, 位數不多, 下壇左右偏, 竝令獻官 奠之, 則京外一例。 且雖使其府使爲 獻官, 無有廢事。” 禮曹判書李坡、參 議朴崇質議: “塹城醮壇高峻, 陞降之 際, 少有倦怠, 便是不敬。 行香使, 若上壇奠訖, 復奠下壇, 登降之際, 力 不能支。 江華治所, 距壇不遠, 簿書 不繁, 但致齋三日而已, 差獻官, 何弊 之有?” 從許琮議。 第二條校生差執</p>

	<p>리기를 마치고 다시 하단(下壇)에서 드리려면 오르내리는 즈음에 힘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강화 치소(江華治所)15561) 가 단(壇)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부서(簿書)15562) 의 일이 번거롭지 아니하고 삼일 치재(三日致齋)15563) 할 뿐인데 헌관으로 정하는 것이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니, 허종의 의논에 따랐다.</p> <p>제 2조의 교생(校生)을 집사(執事)로 정하는 일에 대하여, 허종은 의논하기를, “본서(本署)는 제사 때에 집사가 없고 노자(奴子)15564) 가운데 영리한 자를 골라서 배단(排壇)이라고 일컬어 정결한 옷을 입히고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하게 하는데, 참성 제례(塹城祭禮)도 이 예(例)에 의하여 본서의 배단 두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하게 하소서. 이제 집사를 따로 정하면 서울과 지방이 예(例)가 다르고 또 공급하기에 폐단이 있을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최호원이 아뢰기를, ‘단지기[壇直]의 의복이 누추합니다.’ 하니, 호조(戶曹)로 하여금 정결한 옷으로 바꾸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과(李坡)·박송질(朴崇質)은 의논하기를, “참성 초제(塹城醮祭)의 상제(上帝) 4위(位)와 외단(外壇) 91위에 단지 배단(排壇) 두 사람이 진물(奠物)을 차리고 겸하여 차[茶]·탕(湯)·술을 차리니, 간이(簡易)한 듯합니다. 품관(品官)으로 의복이 정결한 자를 골라서 경중(京中)의 재랑(齋郎)·축사(祝史)의 예(例)와 같이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과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제 3조의 제기(祭器)는 이미 개조(改造)하였다.</p> <p>제 4조의 각색병(各色餅)15565) 을 제기에 도배(都排)15566) 하는 것이 미편(未便)하다는 일에 대하여, 허종과 이과가 논하기를,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어 별로 설만(褻慢)15567) 함이 없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p>	<p>事, 許琮議: “本署祭時, 無有執事, 奴子中擇穎悟者, 稱排壇, 着淨衣, 陳設祭物, 塹城祭禮, 亦依此例, 送本署排壇二人爲之。 今別定執事, 則京外異例, 且供給有弊, 仍舊爲便。 但崔灝元啓云: ‘壇直衣服麤陋,’ 令戶曹, 改給淨衣, 何如?” 李坡、朴崇質議: “塹城醮上帝四位、外壇九十一位, 只排壇二人, 設奠物, 兼設茶、湯、酒, 似乎簡易。 擇品官衣服淨潔者, 如京中齋郎、祝史例, 行之何如?” 從李坡等議。 第三條祭器已改造。 第四條各色餅祭器都排未便事, 許琮、李坡議: “行之已久, 別無褻慢, 仍舊何如?” 御書: “可。” 第五條齋室移排事, 許琮議: “移置便否, 遙度爲難, 令觀察使巡行時, 審定以啓何如?” 李坡、朴崇質議: “令風水學提調, 率知風水二人, 審定何如?” 從許琮議。 第六條命刀事, 許琮、李坡議: “命刀體制, 更考古制, 施行何如?” 第七條命紙事, 許琮、李坡議: “自有橫看, 如有非違者, 令獻官, 檢覈啓聞何如?” 第八條用簠、簋事, 許琮、李坡議: “簠、簋非道家所用, 仍舊何如?” 御書: “竝可”</p>
--	---	--

	<p>“가하다.” 하였다. 제 5조의 재실(齋室)을 옮기는 일에 대하여, 허종은 의논하기를, “옮기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한지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순행할 때에 자세히 조사하고 정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파와 박승질은 의논하기를, “풍수학 제조(風水學提調)로 하여금 풍수를 아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세히 조사하고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허종의 의논에 따랐다. 제 6조의 명도(命刀)의 일에 대하여, 허종과 이파가 의논하기를, “명도의 체제(體制)는 옛 제도를 다시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 7조의 명지(命紙)의 일에 대하여 허종과 이파가 의논하기를, “본래 횡간(橫看)이 있는데, 만일 여기는 자가 있으면 헌관(獻官)으로 하여금 검핵(檢覈)하여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제 8조 보궤(篋籩)를 쓰는 일에 대하여 허종과 이파가 의논하기를, “보궤는 도가(道家)에서 쓰는 바가 아니므로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어서(御書)로 모두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1월 26</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주군(州郡)의 문묘 석전(文廟釋奠)15596) 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p>	<p>○己酉/傳于承政院曰：“州、郡文廟釋奠，何以爲之？”承旨等啓曰：“春秋享祀，依成均儀，其獻官、執事，則其邑</p>

일(기유) 1번째기사

“춘추 향사(春秋享祀)는 성균관(成均館) 의식에 의하고,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는 그 고을에 사는 생원(生員)·진사(進士)가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는 선성(先聖)을 존중하고 성균관은 풍속 교화의 근원이다. 유생(儒生)이 모두 안(顏)·증(曾)15597 을 배우려고 하는데 사전(祀典)15598 을 삼가지 아니할 수 없으며 유생의 양육(養育)을 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노비(奴婢)는 안유(安裕)가 바친 것이 있으나 다만 학전(學田)15599 이 없으니, 어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혹시 넉넉지 못할 것이므로 내가 별도로 학전을 내려서 그 수요에 이바지하여 스승을 높이고 도(道)를 존중하는 뜻을 보이 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성균관 유생의 공궤(供饋)는 양현고(養賢庫)가 있고 석전 제물(釋奠祭物)은 봉상시(奉常寺)에서 모두 족히 공급하므로, 지금은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외방(外方) 고을의 석전 제물과 교수(教授)·훈도(訓導)의 봉급은 관(官)에서 받는데, 수령(守令)들이 소홀히 하고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더러는 주지 아니한 것도 있고, 또 각 관둔전(官屯田)15600 도 수(數)에 차지 아니하여 학전(學田)이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을에 만일 주인 없는 땅이 있으면 향교에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주인 없는 땅을 향학(鄉學)15601 에 절급(折給)하면 유생(儒生)이 어 지럽게 다투어 고하여서 도리어 이(利)를 꾀하는 마음을 열게 할 것이다. 국학(國學)15602 은 내가 친히 제사하는 곳이라 제전(祭奠)에 수요되는 것과 유생을 공궤(供饋)하는 것이 비록 상수(常數)15603 가 있더라도 이제 만약 학전을 별도로 하사하면 유생의 마음에 또한 반드시 국가에서 학교를 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며 서로 고무(鼓舞)되어 힘쓸 것이다. 이 뜻으로써 의정부(議

所居生員、進士爲之。”傳曰：“我國尊崇先聖，而成均館風化之源。儒生皆欲學顏、曾，祀典不可不謹，而儒生養育不可不厚。奴婢則有安裕所納，但無學田，其於養賢，或不贍也。予欲別賜學田，以供其需，以示尊師重道之意，何如？”對曰：“成均儒生供饋，則有養賢庫，釋奠祭物，則奉常寺，皆足以供之，今無可爲之事。但外方州、郡釋奠祭物及教授、訓導之廩，受之於官，守令慢不致意，或有不給者，各官屯田，亦不盈數，學田無出處，故迄今未啓耳。州、郡如有無主之田，則給鄉校，何如？”傳曰：“若以無主田，折給鄉學，則儒生紛紛告爭，反開謀利之心矣。若國學，則予所親祭之處，祭奠所需、儒生供饋，雖有常數，今若別賜學田，於儒生之心，亦必以爲：‘國家重學校，’相與鼓舞勉勵矣。其以此意，議于政府、領敦寧以上及禮曹、弘文館。”鄭昌孫、韓明澮、沈澮、尹壕、徐居正、許琮、韓致禮、李坡、李世佐、朴崇質議：“上教允當。”尹弼商議：“國學，風化之地，自古聖帝明王，咸重之，給田厚養，作

	<p>政府)·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예조(禮曹)·홍문관(弘文館)에 의논하라.”</p> <p>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滄)·윤호(尹壕)·서거정(徐居正)·허중(許琮)·한치례(韓致禮)·이과(李坡)·이세좌(李世佐)·박승질(朴崇質)은 의논하기를,</p> <p>“성상의 하교(下敎)가 윤당(允當)합니다.”</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p> <p>“국학(國學)은 풍속과 교화를 맡은 곳인데, 예로부터 훌륭한 제왕(帝王)이 모두 중히 여겨서 땅을 주어 후하게 길러서 인재를 양성하였으니, 성상의 뜻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전토를 주어야 할 수(數)와 나올 곳을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며,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이제 성균관에 전지를 주려는 전교를 살피니, 이는 진실로 성덕(盛德)의 일이나, 다만 남아도는 전지로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봉상시(奉常寺)에서 때로 선성(先聖)·선사(先師)를 제사하고 양현고(養賢庫)에서 유생을 먹이니, 또한 넉넉하고 후합니다. 성상께서 재단하소서.”</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선왕조(先王朝)에서 양현고를 세웠는데 이제 별도로 학전(學田)을 세우고자 하시니 매우 성대한 일입니다.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며,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성균관에 별도로 학전을 주어 그 용도를 넉넉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께서 스승을 높이고 도(道)를 중하게 여기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성(先聖)을 석전(釋奠)하는 데에는 보(簠)·궤(簋)·변(籩)·두(豆)가 본래 그 수(數)가 있는데 봉상시에서 그것을 관비(辦備)하며 유생을 먹이는 것도 수가 있는데 양현고에서 말아 부족함이 없으니, 이제 비록 별도로 학전을 내리더라도 실지로 보탬</p>	<p>成人才，上意允當。 給田之數及出處，令該司議啓，後更議何如?” 洪應議：“今審成均館給田之教，此實盛德事，但無餘剩之田，可以賜給。 奉常以時祀先聖、先師，養賢庫餉儒生，亦甚優厚。 上裁。” 李克培議：“先王朝立養賢庫，今欲別立學田，甚盛舉也。 令戶曹議啓，何如?” 盧思愼議：“成均館別給學田，以贍其用，誠聖上尊師重道之意。 然釋奠先聖，則簠、簋、籩、豆，自有其數，奉常辦之。 饋餉儒生，則亦自有數，而養賢庫掌之，無所不足。 今雖別賜學田，無益於實，祇費國用。” 安處仁、李仁亨、宋軼、李均、金壽童、李琚、閔輔翼、朴增榮議：“自古善治之主，莫不以尊先師、養人材爲急務。 宋眞宗賜田百頃，哲宗添賜百頃，至今以爲美談。 國家建國學，設養賢庫，其尊師養士之意，至矣，而又欲置學田，斯文之大幸也。 但學校無內外之殊，而州、縣鄉校，未有養士之資，學徒難於贏糧，不肯赴學者有之。 昔孫奭請給兗州學田十頃，以爲學糧，眞宗從之，諸州給學田始此。 乞依此例，於州、縣，量宜給學</p>
--	---	--

	<p>이 없고 국용(國用)만 허비할 것입니다.”</p> <p>하고, 안처인(安處仁)·이인형(李仁亨)·송질(宋軼)·이균(李均)·김수동(金壽童)·이거(李据)·민보익(閔輔翼)·박증영(朴增榮)은 의논하기를,</p> <p>“예로부터 잘 다스리는 임금의 선사(先師)를 높이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급무(急務)로 삼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송(宋)나라 진종(眞宗)은 전지(田地) 1백 경(頃)을 내렸고, 철종(哲宗)은 1백 경(頃)을 보태어 내렸으므로, 이제까지 미담(美談)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국학(國學)을 세우고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였으니 스승을 높이고 선비를 기르는 뜻이 지극한데, 또 학전을 두고자 하시니, 사문(斯文)15604)의 큰 다행입니다. 다만 학교(學校)는 안팎의 다름이 없는데, 주현의 향교는 선비를 기르는 자본이 없어서 생도가 양식을 싸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서 취학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손석(孫奭)이 연주(兗州)에 학전(學田) 10경(頃)을 주어서 학생의 양식으로 하기를 청하니, 진종(眞宗)이 그 말에 따랐는데, 여러 고을에 학전을 준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예(例)에 의하여 적당하게 학전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p> <p>“사전 절목(賜田節目)을 해당 관사(官司)에 내려서 의논해 아뢰게 하되, 전지가 만약 남는 것이 있으면 진종(眞宗)의 고사(故事)에 의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이제 홍응·노사신의 의논을 보건대, 대개 같은 뜻이다. 재(齋)에 기숙하는 가난한 선비가 비록 향학심(向學心)이 있더라도 양식을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학궁(學宮)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특별히 학전(學田)을 내려 곤궁함을 구제하면 문교(文教)에 거의 도움이 있을 것인데, 노사신이 실지로 보탬이 없다고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알지 못하겠다.”</p>	<p>田, 何如?” 御書曰:</p> <p>賜田節目, 下該司議啓, 田若有餘, 依眞宗故事, 可也。</p> <p>仍傳于政院曰: “今觀洪應、盧思慎議, 大概一意。寄齋寒儒, 雖有向學之心, 難於齋糧, 未得久留學宮者, 必多。故特賜學田, 以周其窮, 庶有益於文教, 思慎以謂: ‘無益於實,’ 何也? 予未之知也。” 承旨等啓曰: “思慎之意, 臣等亦未詳知也。然其意必曰: ‘釋奠養賢之規, 已備於先王朝, 無以加矣,’ 故如是議啓耳。然賜田國學, 豈爲無益乎?”</p> <p>【史臣曰: “置學田, 初無建白者, 而上欲贍養儒生, 特命賜之, 誠吾道之幸也。思慎獨議以謂: ‘無益於實, 徒費國用,’ 爲斯文之計者, 果如是乎?”】</p>
--	--	--

	<p>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노사신의 뜻은 신 등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반드시 석전(釋奠)과 양현(養賢)15605)의 법이 이미 선왕조(先王朝)에 갖추어져서 더할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논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학에 전지를 내리는 것이 어찌 도움이 없겠습니까?”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학전(學田)을 두는 것을 처음 건백(建白)15606)한 자가 없었는데 주상께서 유생(儒生)을 넉넉히 양성하고자 특별히 학전을 내리기를 명하였으니 진실로 우리 유도(儒道)의 다행인데, 노사신이 홀로 의논하기를 실지로 보탬이 없고 한갓 국용만 허비할 뿐이라고 하였으니, 사문(斯文)을 위해 피하는 자가 과연 이와 같겠는가?” 하였다.</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29일(임자) 2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별도로 내려 주는 학전(學田)의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노사신(盧思愼)이 유독 실지로 도움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실지로 도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뒤에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생각하기를, 별도로 내려 주는 학전은 교화를 일으키는 데 유익하다고 여긴다. 뜻이 있는 선비도 이를 힘입어서 학업을 이룰 수 있는데, 권장(勸獎)함이 없으면 어찌 능히 교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노사신의 의논은 미편(未便)한 듯하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의논은 진종(眞宗)의 고사(故事)를 끌어대어 말하였는데, 내가 진종의 고사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나 다만 전토가 부족할까 염려스럽다.”</p> <p>하니, 시독관(侍讀官)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인데 일이 어찌 학교를 착실하게 하는 것보다 큰</p>	<p>○御晝講。講訖，上曰：“別賜學田事，議于大臣，盧思愼獨云：‘無益於實’，予未知其意也。無益於實云者，必有名無實，然後乃可言之。予意以爲‘別賜學田，其於興化，有益矣。’有志之士，亦可賴此，而遂業也，不有獎勸，安能興化？思愼之議，似未便”上又曰：“弘文館之議，引眞宗故事言之。予欲依眞宗故事行之，但慮田之不足耳。”侍讀官宋軼啓曰：“學校，風化之源，事豈有大於敦學校乎？故臣等以是啓之。”同副承旨李朝陽曰：“臣亦未知思愼之所指。凡有志之士，自遠方來，學于京，贏糧久留者，蓋</p>

	<p>것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 등이 이로써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조양(李朝陽)은 아뢰기를, “신도 노사신의 지적한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뜻이 있는 선비가 먼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배우자면 양식을 싸가지고 오래 머무르는 자가 대개 적은데, 특별히 학전(學田)을 내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였다. 송질이 아뢰기를, “성균관은 공궤(供饋)가 넉넉할 뿐만 아니라 포진(鋪陳)15623) 에 이르러서도 모두 마련해 주니, 유생(儒生)을 대접하는 도리가 진실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향학(鄉學)15624) 은 허술하여 비록 배움에 뜻이 있는 선비라 하더라도 양식을 싸가지고 글을 읽어야 하므로 조석거리[資]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외방(外方) 여러 도(道)의 대장에 기록된 둔전(屯田)은 그만두거니와, 절호(絶戶)15625) 된 전지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이 전지를 향학에 적당하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하였다.</p>	<p>寡。特賜學田，美事也。” 軼曰：“成均館，則非徒供饋有餘，雖至鋪陳，亦皆辦給，待儒之道，固無不足。但鄉學虛疎，雖有志之士，贏糧讀書，不能繼朝夕之資。外方諸道，案附屯田，則已矣，絕戶之田，必多有之。以此田，量給鄉學，何如？” 上曰：“已令戶曹議之。”</p>
<p>성종 172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30일(계축)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癸丑/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1일(갑인)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종친(宗親)들에게도 한결같이 유생(儒生)의 예(例)에 따라 식년(式年)15630) 때마다 강경(講經)·제술(製述)을 시켜 그 재능을 시험하여서 합격한 자에게는 연회(宴會)를 베풀어 주어 격려가 되게 하고자 한다. 그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p>	<p>○傳于承政院曰：“宗親等，一依儒生例，每於式年，講經製述，以試其才，其中格者，欲賜宴，使之激勵。其議節目以啓。” 承政院議啓：“一，式年同文、武科，初場講四書、三經，取粗以上，願講餘二經及子、史者，聽詩、</p>

	<p>“1. 식년(式年)에는 문과(文科)나 무과(武科)와 같이 초장(初場)에는 《사서(四書)》·《삼경(三經)》을 강(講)하여 조(粗)15631 이상을 뽑고, 그 밖에 이경(二經)과 제자(諸子)나 《사기(史記)》를 강하고자 원하는 자는 《시경(詩經)》·《서경(書經)》을 들은 다음에 임문(臨文)15632) 하게 할 것.</p> <p>1. 중장(中場)에서는 부(賦)·잠(箴)·송(頌) 중에서 2편(篇)을 시험하고, 종장(終場)에서는 대책(對策)·논(論)·서(序)·기(記) 중에서 1편 이상을 시험하되, 점수를 주는 것은 문과나 무과와 같으며, 3장(場)을 통계(通計)하여 4명을 뽑는데, 1등 1명, 2등 1명, 3등 2명으로 할 것.</p> <p>1. 1등 한 사람에게는 연회(宴會)를 베풀어 주어 경하(慶賀)하되, 동시에 선발된 자는 모두 참여시키고, 다른 종친으로서 임시 취품(取稟)한 자도 참여하게 할 것.</p> <p>1. 3장(場)을 모두 궐내(闕內)에서 시취(試取)할 것.</p> <p>1. 시관(試官)은 문과나 무과의 전시(殿試)의 예에 따를 것.</p> <p>1. 책을 끼고 들어가는 것과 글을 바꾸는 것을 조사하는 등의 일은 일체 문과의 예에 따를 것.</p> <p>1. 이름을 기록하고 대궐 문에 들어오는 것 등의 일은 종부시(宗簿寺)에서 이를 담당할 것.</p> <p>1. 명선(明善)15633) 이하에게 응시하게 할 것.</p> <p>1. 1등은 세 품계(品階)를 올려 주고, 명선(明善) 이상의 품계로서 마땅히 주어야 할 자에게는 한 품계만 더하고, 2등은 두 품계, 3등은 한 품계를 더하며, 명선 이상의 품계로서 마땅히 주어야 할 자에게는 품계에 따라 대가(代加)할 것.</p> <p>1. 시관(試官)은 은문(恩門)이라고 일컫지 않고 스스로 시관에게 문생(門生)이라고도 하지 않으며, 문과나 무과를 본 사람과 동년(同年)이라고 일컫지 못하게 할 것.”</p>	<p>書外，臨文。一，中場賦、箴、頌中二篇，終場對策、論、序、記中一篇，已上給畫，同文、武科、三場通計，取四人，一等人，二等人，三等人。一，居首人，賜宴慶賀，一時與選者俱參，他宗親，臨時取稟亦參。一，三場竝於闕內試取。一，試官依文、武殿試例。一，搜挾、易書等事，一依文科。一，錄名入門等事，宗簿寺主之。一，明善以下赴試。一，一等人陞三階，若應授明善以上階者，只加一階，二等加二階，三等加一階，應授明善以上階者，準階代加。一，試官不得稱恩門，亦不自稱門生，與文、武科，不得稱同年。”命示領敦寧以上。鄭昌孫議：“古人云：‘宰相之子，不可與寒士，爭進就。’宗親自有定分，不宜赴舉。”韓明澮、李克培、盧思愼、尹壕議：“依節目施行爲便。”尹弼商、洪應議：“宗親獎勸，載在《大典》，不須別立新條。”從明澮等議。</p>
--	--	---

	<p>하였으므로,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p> <p>“옛사람이 이르기를, ‘재상(宰相)의 아들은 한미(寒微)한 선비들과 진취(進就)를 다룰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종친은 본래 정해진 신분(身分)이 있으니,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p> <p>하고, 한명회(韓明澮)·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절목(節目)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였으며,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종친을 권장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굳이 별도로 새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p> <p>하니, 한명회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2일(을묘) 2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어세공(魚世恭) 등이 와서 아뢰기를,</p> <p>“이제 전교(傳敎)를 받으니, 성균관(成均館)에 학전(學田)을 사급(賜給)하는 절목(節目)과 주부 군현(州府郡縣)의 향교(鄉校)에 전토(田土)를 주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는데, 신(臣) 등은 수세전(收稅田)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경전(自耕田)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성균관은 마땅히 수세전을 주어야 하는데, 만약 향교(鄉校)에 자경전을 준다면 어떻게 농사지어 먹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어세공 등이 말하기를,</p> <p>“성균관의 학전(學田)은 4백 결(結)15634 을 주어 그 조세(租稅)의 절반을 거두게 하소서. 향교의 경우는 무릇 3백여 고을이나 되는데, 비록 각각 1 자(字)15635 를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3백여 자나 되니, 아마도 군자(軍資)가 감손(減損)될까 걱정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戶曹判書魚世恭等來啓曰：“今承傳敎，成均館學田賜給節目及州府郡縣鄉校給田事，議啓。臣等未知將賜收稅田歟、抑給自耕田歟。”傳曰：“成均館當給收稅田，若於鄉校，賜自耕田，則將何以耕食？”世恭等曰：“成均館學田，請給四百結，使半收其稅。鄉校則凡三百餘邑，雖各給一字，尙三百餘字，恐軍資減損。”傳曰：“成均館當賜四百結，半收其稅。鄉校則令本邑每年收稅量給何如？”世恭等曰：“雖令本邑收稅量給，其損軍資一也。”傳曰：“然則鄉校學田姑勿給。成均館別賜田之稅，收納豐儲倉，令監察出納何</p>

	<p>“성균관에는 4백 결을 주어 그 조세의 절반을 거두게 하고, 향교는 본 고을로 하여금 해마다 조세를 거두어 그때의 형편에 따라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였다. 어세공 등이 말하기를,</p> <p>“비록 본 고을에서 조세를 거두어 형편에 맞게 준다 하더라도 그 군자가 감손됨은 마찬가지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렇다면 향교의 학전은 아직 주지 말고, 성균관의 별사전(別賜田)의 조세는 풍저창(豐儲倉)에 수납(收納)하였다가 감찰(監察)로 하여금 출납(出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므로, 어세공 등이 아뢰기를,</p> <p>“성균관의 관원은 모두 사리를 아는 사람인데, 어찌 남용(濫用)하는 폐단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본관(本館)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여 사용(私用)하는 식량으로 주고, 또한 유생(儒生)들에게 해가 길 때의 점심과 겨울에 글 읽을 때의 등유(燈油)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좋다.”</p> <p>하였다.</p>	<p>如?” 世恭等白: “成均館員, 皆是識理人, 豈有濫用之弊? 宜令本館收納, 饋私糧, 儒生且備日長時晝飯、冬月讀書燈油爲宜。” 傳曰: “可。”</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3일(병진)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지금은 계동(季冬)15640) 인데도 기후(氣候)가 따뜻하여,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큰 일인데 지금까지도 얼음이 없으니, 이는 내가 덕(德)이 없는 소치이다. 요즈음 옥사(獄事)가 많이 엄체(淹滯)되어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또 인심이 각박해져서 탐욕을 부리는 풍속이 날로 성하여, 비록 지친(至親)의 사이라도 털끝만한 이익을 다투며 서로 헐뜯느라 송사가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징조가 생기는 것이 어찌 원인이 없겠는가?”</p>	<p>○丙辰/御經筵。 講訖, 上曰: “今當季冬, 氣候溫暖, 藏冰大事, 而迨今無冰, 是予否德之致。 今者獄多淹滯, 冤枉未伸, 且人心薄惡, 貪風日滋, 雖至親之間, 爭秋毫之利, 反唇相稽, 詞訟不息, 致此咎徵, 豈無所由?” 領事盧思慎對曰: “臘享日遠, 且立春在明</p>

	<p>하니,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납향(臘享)15641) 의 날은 아직 멀었고 또 입춘(入春)이 명년(明年) 정월(正月)에 있으므로, 일기가 아직까지 따뜻한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는 말하기를, “신(臣)이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한성 참군(漢城參軍)이 되었는데, 그 때에 소송하는 자들은 관리 앞에서 패만(悖慢)한 태도가 조금도 없었으나, 요즘에는 소송하는 자가 불평스러운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비록 당상관(堂上官)이라도 거리낌 없이 꾸짖고 욕을 하니,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 지금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속은 갑자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점차적으로 오랫동안 연마해야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대소(大小)의 신료(臣僚)들로 하여금 각각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라고 하였는데,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검토관(檢討官) 황계옥(黃啓沃)이 말하기를, “서감원(徐坎元)의 말은 비록 간사하였으나, 이미 직언(直言)을 구하였으면 마땅히 그대로 두고 논(論)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명하여 형문(刑問)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서감원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간(外間)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고 반드시 말하기를, ‘말을 했다가 도리어 죄를 얻었으니, 이는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臣)은 아마도 그 때문에 말하는 자가 적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장령(掌令) 박안부(朴安阜)는 말하기를, “서감원은 임금을 속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상소(上疏)하였을 때 사심(私心)을 품고 꾀를 부린 것이 첫번째이고, 달려가서 물었을 때 속이고 사실대로 고(告)하지 않은 것이 두번째입니다. 이제는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궁해서 죄를 주어야 합니다.”</p>	<p>年正月，故日氣今尚溫暖。” 同知事李克基曰：“臣登第之初，爲漢城參軍，其時訟者，於官吏前，略無悖慢之態。今也訟者，稍有不平之心，則雖堂上官，慢罵叱辱，陵上之風，未有甚於此時。然風俗不可卒變，必漸磨之久，然後可變也。” 上曰：“予令大小臣僚，各陳所蘊，而無一言者何歟？” 檢討官黃啓沃曰：“徐坎元，言雖奸詐，然既求言，則宜置勿論，而命使刑推。此雖坎元自取，外間之人，不知其意，必曰：‘陳言而反得罪，不若不言之爲愈也。’ 臣恐以此言者寡矣。” 掌令朴安阜曰：“坎元欺君，有二焉。當初上疏之時，懷私騁謀，一也；及其馳問之時，詐不直告，二也。今既吐露情實，宜窮推抵罪。” 上曰：“坎元上疏，懷詐不直，予欲痛懲。但求言之後，罪之未便，故舍之。” 仍問左右，思愼對曰：“既置勿論，不可更推。” 上曰：“固不可更推也。”</p>
--	---	--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감원의 상소는 간사한 마음을 품고 정직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엄하게 징계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직언(直言)을 구한 후에 죄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우선 놓아준 것이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으니,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이미 논하지 않기로 하였으면 다시 추궁할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다시 추궁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서감원의 일은 임금이 이미 추문(推問)하지 말게 하였는데, 박안부가 대관(臺官)으로서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그 임금의 뜻에 아부하여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땀이 나게 한다.” 하였다.</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3 일(병진)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학교는 풍속을 교화시키는 원천이 되는 것이니, 스승을 존경하고 선비를 양성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급선무가 된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석전(釋奠)15643) 하고, 양현(養賢)하는 제도는 선왕조(先王朝)에 이미 다 마련되었으므로 거기에 더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희름(籩廩)15644) 을 잇대어 주지 못할까 걱정이다. 또 정원 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글을 읽는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내가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현사(賢士)를 권장하는 뜻이겠는가? 전지(田地) 4백 결(結)을 특별히 주어 조세(租稅)를 받아서 그 비용을 넉넉하게 하라.” 하였다.</p>	<p>○傳旨戶、禮曹曰：“學校，風化之源，尊師養士，爲國之先務也。成均館釋奠、養賢之制，先王朝已盡，無以加矣，但慮籩廩有所不給。且額外來學者，贏糧讀書，是豈予崇儒勸賢之意？其特給田四百結，俾收其稅，以贍其用。”</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4</p>	<p>예조(禮曹)에서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담제(禫祭)15645) 후와 부묘(祔廟)15646) 한 뒤에는 대전(大殿)·중궁(中宮)과 양 대비전(兩大妃殿)15647) 에 방물(方物)을 올리자고 계청(啓請)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p>	<p>○丁巳/禮曹請進貞熹王后禫後及祔廟後，大殿、中宮及兩大妃殿方物。傳于承政院曰：“予欲除方物，何(妃)</p>

<p>일(정사) 1번째기사</p>	<p>“나는 방물을 없애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세종(世宗)을 부묘할 때와 세조(世祖)의 담제와 부묘할 때에는 모두 담제 후의 방물은 없었고, 다만 부묘한 뒤에 한해서만 방물을 바쳤으나, 예종(睿宗)의 담제와 부묘 때에는 모두 방물을 바쳤는데, 이것은 훌륭한 일이고 또 예문(禮文)에도 있는 것이니, 방물을 바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것이 어찌 훌륭한 일이겠는가? 나는 부묘한 다음에 양전(兩殿)에만 방물을 드릴까 하는데, 예조에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p>	<p>[如]?”承政院啓曰：“世宗祔廟時及世祖禫祔時，皆除禫後方物，只於祔廟後，進方物。睿宗禫祔時，皆進方物。此是盛事，且有禮文進方物，無妨。”傳曰：“此豈盛事乎？予欲於祔廟後，但進兩殿方物。其問禮曹以啓。”</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4일(정사)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충청도(忠淸道)는 계미년(1564) 이상, 황해도(黃海道)는 임오년(1564) 이상, 영안도(永安道)·전라도(全羅道)는 갑신년(1565) 이상, 경기(京畿)는 계미년 이상, 개성부(開城府)는 을미년(1565) 이상, 평안도(平安道)는 경진년(1565) 이상, 제주(濟州)는 정유년(1565) 이상, 경상도(慶尙道)는 경인년(1565) 이상, 강원도(江原道)는 을유년(1565) 이상의 것으로, 각 해마다 거두지 못한 환자곡[還上穀](1565)은 모두 감해(減)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忠淸道癸未年以上，黃海道壬午年以上，永安、全羅道甲申年以上，京畿癸未年以上，開城府乙未年以上，平安道庚辰年以上，濟州丁酉年以上，慶尙道庚寅年以上，江原道乙酉年以上，各年未收還上，竝令蠲減。”</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4일(정사) 4번째기사</p>	<p>성절사(聖節使) 한치형(韓致亨)보다 앞서서 돌아온 통사(通事)가 듣고 본 사목(事目)을 아뢰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금년 10월 13일 이른 아침에 교위(校尉) 두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조선 사신(朝鮮使臣)은 정 태감(鄭太監)의 바깥채[外第]로 오시오.’ 하였습니다. 사신이 즉시 달려가니, 태감(太監) 곡청(谷淸)이 맞아들이며 말하기를, ‘어제 간곡하게 아뢰었더니, 황제(皇帝)께서 말씀하기를, 「생산(生産)되지 않는 것은 없애고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조선 국왕이 바치는 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나는 그 성지(聖旨)를 받고 나대로 무척이나 기뻐하였소. 재상(宰</p>	<p>○聖節使韓致亨先來通事，啓聞見事目。略曰：“本年十月十三日早朝，校尉二人持簡曰：‘朝鮮使臣，於鄭太監外第，來赴。’使即赴之，太監谷淸迎入，言曰：‘昨日曲奏，帝曰：「不産的罷；難備的，隨王所進。」’我承此聖旨，私喜萬萬，宰相意何如?’使就前致謝曰：‘殿下聞之，喜感何量?’設酒</p>

相)의 의향은 어떠하시오?’ 하므로 사신이 앞으로 나아가 치사(致謝)하기를, ‘우리 전하(殿下)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술과 음식을 대접한 다음 사신이 앞에 나아가 청하기를, ‘비록 우리 나라에서 마련하기 쉬운 물건이라도 그 곳에서 그렇게 긴요한 물건이 아닌 것은 대인(大人)이 지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곡청이 말하기를, ‘전 일에 재상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마음대로 정탈(定奪)15658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미 성지(聖旨)를 받았소.’ 하였습니다. 사령(使令) 김저(金渚)가 별헌(別獻)하는 물목(物目)을 보이니, 곡청이 말하기를, ‘생산되지 않는 금(金)·상아(象牙)·초서피(貂鼠皮)·토포피(土豹皮)·융전(絨纏)·화초(花草) 등의 물건은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가운데 초서피와 토포피는 생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나, 내가 힘써 아뢰어서 또한 면제시킨 것이니, 재상은 그렇게 아시오. 그리고 자색 명주[紫綿紬]·황색 명주[黃綿紬]·유청색 면포(柳靑色綿布)·자색 면포(紫色綿布)·대홍색 면포(大紅色綿布)·백색 세저포(白色細苧布)·문어(文魚)·대구어(大口魚)·전복어(全鰓魚)·오징어[烏賊魚]·곤포(昆布)·향점(香簞)·인삼(人蔘) 등의 물건은 궁중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고, 녹색 면포(綠色綿布)·다갈색 명주[茶褐綿紬]·초록색 면포(草綠色綿布)·다갈색 면포(茶褐色綿布)·저사 겸직포(苧絲兼織布) 등의 염색물(染色物)은 그 곳에서 그렇게 긴요한 것이 아니니, 전부 감면해도 됩니다. 건광어(乾廣魚)·건수어(乾秀魚)·다시마[塔土麻]·미역[海苧耳] 등의 물건도 긴요한 것이 아니니, 전부 감면해도 됩니다. 백색 저포 삼아(白色苧布衫兒)·흑색 마포 삼아(黑色麻布衫兒)·녹대포(鹿大脯)·녹편포(鹿片脯)·소주(燒酒) 등의 물건은 반으로 감해도 되며, 강궁(強弓)·중궁(中弓)은 각각 5장(張)을 감하고, 약궁(弱弓)은 10장을 감하였습니다. 잣[松子]도 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곳의 잣은 그 알맹이가 충실하지 못한데 그대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잣은 충실하면서도 향기로우니, 만약 어렵지 않거든 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호아(虎牙)는 비록 마련하기 어려우나

飯饋訖，使前請曰：‘雖我國易備之物，這裏不打緊之物，深望大人指揮。’ 淸曰：‘前日聞宰相之言，未能自擅定奪，今也已取旨耳。’ 使令金渚示別獻物目，淸曰：‘不產金、象牙、貂鼠皮、土豹皮、絨纏、花草等物，可勿進也。其中貂鼠、土豹(布) [皮]，不可謂不產，然我力奏亦免，宰相知道。紫綿紬、黃綿紬、柳靑綿布、紫綿布、大紅緋布、白細苧布、文魚、大口魚、全鰓魚、烏賊魚、昆布、香蕈、人蔘等物，內裏打緊。綠緋布、茶褐綿紬、草綠綿布、茶褐綿布、苧絲兼織布此(美) [樣] 染色，這裏不打緊，全減可也。乾廣魚、乾秀魚、塔土麻、海菜耳等物，亦不打緊，全減可也。白苧布衫兒、黑麻布衫兒、鹿大脯、鹿片脯、燒酒等物，減半可也。強弓、中弓，各減五張，弱弓減十張。松子亦可減，然此處松子，其仁不實，爾國松子，實而香肥，若不難，可勿減也。虎牙雖難備，不可全減，於今來數，減半可也。繡囊等物，雖用絨線，內裏戲玩之物，亦不可全減。人蔘，內裏茶用，不可減也。紫黃色綿紬，

전부 감할 수는 없고, 이번에 가지고 온 수에서 반을 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낭(繡囊) 등의 물건은 비록 용선(絨線)을 사용하지만 궁중에서 놀이개로 삼는 물건이니 역시 전부 감할 수는 없으며, 인삼은 궁중에서 차[茶]로 쓰는 것이니 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황색(紫黃色)의 명주(綿紬)는 용포(龍袍)를 만들어 항상 입는데, 다른 색은 수를 많이 감하였으니, 만약 여유가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온 수에 더 보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다른 물건은 지금 가지고 온 수에서 적당하게 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지시하였으나, 만약 갑자기 그쪽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감하면 조정에서 반드시 내가 그대의 말을 듣고 조선 국왕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바치게 하여서 이렇게 감소(減少)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오. 더구나 조정에서 전하(殿下)를 대우함이 친왕(親王)과 다름없이 하는데, 어찌 갑자기 감하겠소? 점차로 감하여 바치는 것이 좋을 것이니, 재상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자세히 아뢰어서 내가 조정의 원망을 듣지 않게 해야 할 것이오.’ 하였습니다. 사신이 앞에 나아가 청하기를, ‘비록 이러한 성지(聖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만 전하는 말로만 회계(回啓)할 것 같으면 전하께서 미안(未安)하게 여길 것이니, 성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 곡청이 말하기를, ‘성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마땅히 재상이 돌아갈 때에 다시 아뢰어서 취품(取稟)하겠소.’ 하였습니다. 14일에 교위(校尉)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곡 태감(谷太監)이 성지를 받고 사신을 불러 바깥채[外第]에서 서장(書狀)을 주려고 합니다.’ 하므로 사신이 즉시 달려가니, 곡청이 말하기를, ‘성지가 있습니다.’ 하기에, 사신이 즉시 꿇어앉자 곡청이 탁자 위의 성지를 집어서 주었습니다. 성지에 이르기를, ‘조선국(朝鮮國)에서 차견(差遣)하여 온 배신(陪臣) 한치형(韓致亨) 등에게 말해주니, 알도록 하라. 돌아가거든 국왕에게 전하여, 궁중에 바치는 방물(方物)은 본국(本國)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은 없애고, 다만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제조하는 것은 전번의 수에 구애

倣袍恒御, 他色多有減數, 若有餘於今來數, 加增可也。 餘物件, 於今來數, 量宜而減可也。 我雖如此指揮, 若遽爾一時太減, 則朝廷必謂: 「我爲因汝言, 使朝鮮國王, 隨宜來進, 以致如此減少云爾」, 則不可矣。 況朝廷待殿下, 與親王無異, 豈宜遽減? 漸次減進可也。 宰相須將此意詳啓, 勿使我見過於朝廷。」 使就前請曰: 「雖有聖旨如此, 若但以傳言回啓, 則殿下以爲未安, 願受聖旨。」 淸曰: 「聖旨, 我不敢擅, 當於宰相將還時, 更奏取稟。」 十四日, 校尉二人來曰: 「谷太監承聖旨, 招使書狀于外第, 使即馳往。」 淸曰: 「有聖旨,」 使即跪, 淸取聖旨于桌上授之。 聖旨曰: 「說與朝鮮國差來陪臣韓致亨等知道。 回還傳與國王, 內進方物, 不係本國所出, 艱於措置者罷。 但係本國所產所製, 不拘前數, 任意造辦來貢。」 淸曰: 「於宰相之意何如?」 我近日爲宰相, 好生樵心。 昨日更奏云: 「朝鮮國別獻物件內, 有不產難備之物, 國王以天長地久難繼, 十分樵心事, 韓致亨屢屢說我, 要領聖旨。」 帝即傳司禮監。 我爲宰相, 用心如

	<p>하지 말고 임의대로 마련하여 와서 바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곡청이 말하기를, ‘재상의 뜻에는 어떠하시오? 나는 요즈음 재상을 위하여 호의를 베푸느라 가슴을 태웠소. 어제 다시 아뢰기를, 「조선국에서 별헌(別獻)하는 물건 중에는 거기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국왕은 무한한 세월을 두고 계속하기가 어려워 매우 가슴을 태우고 있다는 일을 한 치형이 여러 번 나에게 말하며 성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황제(皇帝)께서 즉시 사례감(司禮監)에게 전교(傳敎)하였소. 나는 재상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씁니다.’ 하고, 이어 전하에게 하사하는 저사(紵絲) 6표리(表裏), 화은(花銀) 1백 냥(兩)을 주었고, 사신에게는 저사 2표리, 화은 20냥을 주었습니다. 별도로 상아(象牙) 5매(枚), 화은 5백 냥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물건은 전과 같이 제조하되 될 수 있으면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바칠 것이며, 소유한 물건 중에 은(銀)으로 만든, 호로고아(葫蘆鼓兒)·중합아(中蛤兒)·소합아(小蛤兒)는 될 수 있는 대로 속이 비게 만들어 가져오는데, 중합아·소합아는 많이 만드시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번에 가서 상아로 만드는 놀이개[耍兒]는 만약 명년에 다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마땅히 그 다음에 만들어 바쳐도 됩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씨(車氏)·장씨(藏氏)의 집에는 예진과 같이 통신(通信)하도록 성지(聖旨)를 전하라고 하였으며, 또 차씨·장씨가 회간왕비전(懷簡王妃殿)15659) 에 바치는 홍초복(紅綃袱) 1봉(封)을 주었습니다.” 하였다.</p>	<p>此。’ 仍受欽賜殿下紵絲六表裏、花銀一百兩，使絲紵二表裏、花銀二十兩。別給象牙五枚、花銀五百兩曰：‘此物件，照依前製，務要細巧，精造來進。所有物件內，銀做的葫蘆鼓兒、中蛤兒、小蛤兒，須要內空造將來，中蛤、小蛤，多多做。’ 又曰：‘今去，象牙所做耍兒，若於明年，未能畢造，當於後製進可也。’ 又車氏、藏氏家，依舊通信事，傳聖旨。 又授車氏、藏氏所進懷簡王妃殿紅綃袱一封。”</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6일(기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己未/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6</p>	<p>일본국(日本國) 장문주(長門州) 삼도위(三島尉) 정성(貞成)과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長門州三島尉貞成、對馬州太守宗貞國遣人，來獻土宜。</p>

일(기미) 2번째기사		
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8 일(신유)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의 국분사 주지(國分寺住持) 원우위(源祐位), 관서로(關西路) 비축통수(肥筑通守) 중조(重朝), 비후주수(肥後州守) 국지 등원 위행(菊地藤原爲幸), 비전주(肥前州) 송포(松浦) 지좌(志佐) 일기 태수(一岐太守) 원의(源義),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 두두남천도산(畚豆南天道山) 등아비(藤阿比), 유치부 대신(留治部大人) 종무(宗茂) 등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辛酉/日本國國分寺住持源祐位、關西路肥筑通守重朝、肥後州守菊地藤原爲幸、肥前州松浦志佐一岐太守源義、對馬州太守宗貞國、(酉+豆)豆南天道山藤阿比留治部大人宗茂〔留治部大夫宗茂國〕等遣人、來獻土宜。
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8 일(신유) 2번째기사	달한(達罕)의 장자(長子)인 도지휘(都指揮) 이포라다(李包羅多), 자라태(者羅太) 등 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達罕長子都指揮李包羅多、者羅太等六人、來獻土宜。
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8 일(신유) 3번째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담제(禫祭) 후와 종묘(宗廟)에 부묘(祔廟)한 뒤에 모든 방물(方物)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는데, 신 등의 생각에는 이것이 사실 성대한 예이니,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비록 예문(禮文)에 실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고칠 수가 있는 것이니, 담제와 부묘(祔廟) 후에 이미 축하하는 전문(箋文)을 올리는데, 비록 방물을 올리지 않는다고 한들 무슨 손익(損益)이 있겠는가?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禮曹啓曰：“貞熹王后禫祭後及祔宗廟後，方物竝令勿進，臣等意謂‘此實盛禮，不可不進。’”傳曰：“雖禮文所載，尙可因革，禫祔後既進賀箋，則雖不進方物，有何損益？其勿進。”
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10 일(계해)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癸亥/上詣泰慶殿，上食。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10 일(계해)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와서 아뢰기를, “명년(明年)에 담제(禫祭)와 부묘(祔廟)한 뒤에 방물(方物)을 바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성대한 의식이니, 폐지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흉사(凶事)를 마치고 길례(吉禮)로 가는 것인데, 어찌 성대한 의식이라고 하 겠는가? 다만 예조에서 아뢴 바가 그와 같으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논 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담제와 종묘(宗廟)에 부묘한 뒤에 전문(箋文)을 받들어 하례를 올리고 방물 (方物)을 바치는 것은 조종(祖宗) 때부터 시행하던 고사(故事)이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묘한 뒤에 한 차례만 방물을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명회(韓明澮)·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p>	<p>○禮曹來啓曰：“明年禫祔後，命勿進 方物。臣等謂：‘此是盛禮，不可廢 也。’”傳于承政院曰：“去凶即吉，豈 爲盛禮？但禮曹所啓如是。其議領敦 寧以上。”鄭昌孫、洪應、李克培議： “禫祭祔宗廟後，奉箋陳賀，進方物， 祖宗故事，不可廢也。祔廟後，一度 進方物何如？”韓明澮、尹壕議：“依所 啓施行。”從昌孫等議。</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10 일(계해) 4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박건(朴楗)이 만포 첨사(滿浦僉使) 이섬(李暹)의 첩정(牒呈)에 의하여 아뢰기를, “건주 중위 도독(建州中衛都督)인 달한(達罕)의 아우가 조회(朝會)하러 오고자 하므로 이섬이 말하기를, ‘도독의 친아들인 이포라다(李包羅多)가 이미 서울 에 갔으니, 1년 안에 한 위(衛)의 사절(使節)이 두 번 올 수는 없다.’ 하고 거 절하여 돌려보냈습니다.”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병조(兵曹)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 孫)은 의논하기를, “변장(邊將)이 이미 임시 방편의 말로써 대답하여 보냈으니, 만약 다시 와서</p>	<p>○平安道觀察使朴楗據滿浦僉使李暹 牒呈啓：“建州中衛，都督達罕之弟， 欲出來朝，暹語曰：‘都督親子包羅多 已上京，一年內，一衛之使，不可再 來，’拒而還送。”命議于領敦寧以上 及兵曹。鄭昌孫議：“邊將既以權辭答 說入送，若更來請，宜如前答以送。 若又懇請來朝，上送何如？”韓明澮議： “李因塔忽尺，於達罕同祖父母弟，意</p>

	<p>요청한다면 마땅히 전처럼 대답해서 보내고, 만약 그래도 또 다시 조회하러 오기를 간청할 경우에는 올려 보내게 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p> <p>“이인탑홀척(李因塔忽尺)은 달한(達罕)과 동조부모(同祖父母)의 아우이지 친동생은 아닙니다. 이번에 온 야인(野人) 포라다(包羅多)에게 그 족파(族派)를 물어보고, 전에 보냈던 유서(諭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p> <p>“이번에 온 포라다는 추장(酋長)의 아들로서 이미 와 있습니다. 이인탑홀척은 추장의 아들도 아닌데, 만약 오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이러한 경우가 번잡해져서 금하기 어렵게 될 것이니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변장(邊將)이 형편에 따라 설득시켜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억지로 올려고 할 경우에는 영안도(永安道)의 후문(後門)15676) 으로 보내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p> <p>하고,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달한의 아들에게 이미 와서 조회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그 아우는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만약 와서 요청한다면 계본(啓本)에 따라 설득시켜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달한의 아들이 이미 와서 조회하게 되었는데, 그 아우가 또 오는 것은 번거롭지 않습니까? 절제사(節制使) 이섬(李暹)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됨이 없습니다.”</p> <p>하였으며, 손순효(孫舜孝)·박성손(朴星孫)·권정(權挺)은 의논하기를,</p> <p>“이달한의 아우인 이인탑홀척이 처음에는 숙배(肅拜)를 하려고 오겠다고 하다가, 이섬이 대답하기를, ‘달한의 아들이 먼저 서울에 가 있으니, 1년 안에 아</p>	<p>謂: ‘非同生也。’ 今來野人包羅多處, 問其族派, 考前降諭書之辭, 接待何如?” 沈會議: “今來包羅多, 以酋長之子, 已上來。 李因塔忽尺, 非酋長之子, 若許上來, 則如此之類, 紛紜難禁, 不可許也。 邊將因便說諭, 還送爲便。 若強欲上來, 則令從永安道後門, 上送亦可。 尹弼商、盧思愼、李克培議: “達罕之子, 既許來朝, 其弟不可上來。 後若來請, 依啓本, 開說還送爲便。” 洪應議: “達罕之子, 既來朝, 其弟之來, 又何煩也? 節制使李暹, 拒而不納, 未爲失也。” 孫舜孝、朴星孫、權挺議: “李達罕弟李因塔忽尺, 初言: ‘欲肅拜而來。’ 及李暹答云: ‘達罕之子, 前已上京, 一年內, 子弟不可累次上送,’ 則又云: ‘求米、鹽而來。’ 前後所云各異, 邊將所答得中, 不必上送。 謂: ‘以此意行移。’” 從明澮議。</p>
--	---	--

	<p>들이나 형제를 여러 번 올려 보낼 수 없다.’고 하자, 또 다시 쌀과 소금을 구하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뒤의 말이 각각 다르니, 변장이 대답한 바는 마땅한 것이므로 굳이 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컨대 이러한 내용으로 행이(行移)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한명회의 의논에 따랐다.</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15일(무진)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비전주(肥前州) 상송포(上松浦) 파다도(波多島) 원납(源納), 섭진주(攝津州) 병고진(兵庫津) 평방식부위(平方式部衛) 원충능(源忠能), 풍주 태수(豊州太守) 대우 팔랑 수능(大友八郎帥能),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戊辰/日本國肥前州上松浦波多島源納、攝津州兵庫津平方式部衛源忠能〔平方式部尉源忠能〕、豊州太守大友八郎帥能〔大友八郎帥能〕、對馬州太守宗貞國遣人，來獻土宜。</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15일(무진) 2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박안부(朴安阜)가 와서 아뢰기를,</p> <p>“회암사(檜巖寺)에서 풍악을 동원하여 불공(佛供)드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동자 외에는 모두 거론하지 말게 하시고 책변(策辨)도 내버려두게 하셨는데, 저자 사람들이 절에 올라가 풍악을 동원하여 불공드리는 것은 평시에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국상(國喪) 중이겠습니까? 절에서 풍악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길에서도 풍악을 울리며 내키는 대로 술을 마셨으니,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책변은 주지(住持)로서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주동자와 다를 것이 없는데, 지금 아울러 내버려두게 하심은 옳지 못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요즈음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음양(陰陽)의 기운이 조화되지 않으므로, 혹시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작은 허물을 용서해서 하늘의 견책(譴責)에 보답하려는 것이다. 저자 사람들이 어찌 다 죄가 있겠는가? 반드시 주동한 자가 있을 것이니, 주동한 자만 죄를 주고 나머지는 내버려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책변(策辨)은 무식한 중인데, 어찌 부처를 위해 풍악을 동원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겠는가?”</p>	<p>○司憲府掌令朴安阜來啓曰：“檜巖寺動樂供佛人等，謀首外竝皆勿論，策辨亦棄之。市人上寺，作樂供佛，在平時尙且不可，況於國喪乎？非徒作樂於寺，至於路上，作樂縱飲，不畏邦憲莫甚。策辨以住持，不禁其罪，與首謀不異。今竝棄之未便。”傳曰：“邇來天氣乖和，陰陽不調，慮或有冤抑，故欲宥小過，以答天譴。市人豈皆有罪乎？必有謀首者矣，只罪謀首，而餘則棄之，有何不可？策辨，無知僧也，安知爲佛動樂之非？”安阜啓曰：“雨、暘、(煥)〔燠〕、寒，天之道也。人主順天之道，賞善罰惡，然後致中和，而天地位，萬物育。檜巖寺供佛人，其數，則百五六十，所施非我國所產，</p>

	<p>하였다. 박안부가 아뢰기를, “비오고 별나고 따뜻하고 추운 것은 천도(天道)입니다. 인주(人主)는 천도에 순응하여 착한 자에게는 상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중화(中和)를 이루어서, 천지(天地)의 도(道)가 위치를 잃지 않고 만물(萬物)이 올바르게 생육(生育)될 것입니다. 회암사(檜巖寺)에서 불공드린 사람의 수는 1백 5, 60명이고 보시(報施)를 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채단(綵段)을 사용했고, 초[燭]의 무게는 20근(斤)이나 되었습니다. 저자 사람들이 모두 절에 가서 풍악을 동원하여 불공드린 것은 비록 평시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더구나 지금은 국상중인데도 풍악을 동원하여 불공드렸고, 또 길에서까지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셨으니, 그 꺼리는 바가 없음이 너무 심합니다. 이러한 것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견책(譴責)에 보답하고자 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자 사람들이 처음에 풍악을 동원하려고 할 적에 주지가 만약 금지시켰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책변이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동한 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일기가 고르지 못한 것은 실로 나의 소치이다. 더구나 이 1백 50여 명이 어찌 다 죄가 있겠는가? 반드시 주모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책변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정상의 경중(輕重)에 따라 논단(論斷)하고자 함이다.”</p> <p>하였다.</p>	<p>皆用綵段，燭則重二十斤。市人舉皆上寺，動樂供佛，雖在平時，固當治罪，況今國喪，既作樂供佛，又於路上，動樂縱酒，其無所忌憚，甚矣。此而不懲，欲答天譴，難矣。市人初欲動樂，住持若禁之，則必不爲矣，而策辦不禁，與謀首之罪，無異。請須治罪。”</p> <p>傳曰：“天氣不和，實予所致，況此百五十餘人，豈盡有罪？必有首唱者，予非欲庇(策卞)〔策辦〕也，但隨其情之輕重，斷之耳。”</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18일(신미) 1번째기사</p>	<p>성절사(聖節使) 한치형(韓致亨)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니, 한치형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 10월 초 3일에 북경(北京)에 들어갔는데, 태감(太監) 곡청(谷淸)이 옥하관(玉河館)에 이르러 별헌(別獻)하는 물건의 수를 물으므로 신이 대답</p>	<p>○辛未/聖節使韓致亨來復命。上引見，致亨啓曰：“臣去十月初三日入京。太監谷淸到玉河館，問別獻之數，臣答曰：‘於數，或有未準之物。’淸問</p>

하기를, ‘수대로 다 준비하지 못한 물건도 있습니다.’ 하였더니, 곡청이 묻기를, ‘무엇 때문입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금(金)·상아(象牙)·용선(絨線)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일에는 하사(下賜)하신 상아로 해마다 제조하여 바쳤는데, 이번에도 그 때에 남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초서피(貂鼠皮)와 토표피(土豹皮)는 야인(野人)의 땅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지난번 칙명(勅命)을 받고 정토(征討)한 뒤로는 야인들이 보복을 하려고 하므로 가서 잡을 수가 없으며,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기 때문에 호아(虎牙)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대로 다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다른 물건은 어찌되었습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포물(布物)도 수대로 준비하지 못하였고, 다만 식물(食物)과 준비하기 쉬운 물건은 수대로 준비한 것도 있고 수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하였는데, 곡청이 말하기를 ‘명주(綿紬)와 면포(綿布)는 그대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비록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지성(至誠)으로 사대(事大)하기 때문에 왕부(王府)에 비축된 것을 모두 꺼내어 겨우 상자만 채웠는데, 평소의 저축이 거의 바닥이 났으므로 다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자, 곡청이 듣고 얼굴 표정이 변하므로 신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지성으로 상국(上國)을 받들고 있는데, 무릇 공헌(貢獻)하는 데에 있어서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산되지 않는 것과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은 수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자세히 아뢰어서 시행하게 하여 주시오.’ 하였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즉시 가감(加減)한 수를 기록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그 많은 물건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초4일 아침에 곡청이 관사(館舍)에 이르러 별도로 바치는 방물(方物)을 인수(引受)해 가면서 이어 묻기를, ‘차씨(車氏)와 장씨(藏氏)의

曰: ‘何故歟?’ 臣答曰: ‘金、象牙、絨線, 本國所不產。 前日以欽賜象牙, 連年製進, 今以餘剩製來。 貂鼠皮、土豹皮, 則產於野人之地, 曩者奉勅征討後, 野人謀欲報復, 故未得往捕。 虎傷人之物, 虎牙亦難得。 因此未得準數。’ 淸曰: ‘他物何如?’ 臣答曰: ‘布 物亦有未準, 但食物與易備之物, 則或準數, 或加數。’ 淸曰: ‘綿紬、綿布, 爾國所產, 何發此言?’ 臣答曰: ‘雖我國所產, 精細織成爲難。 殿下至誠事大, 盡傾王府所儲, 僅充筐篋, 素儲殆盡, 故未盡耳。’ 淸聞之變色, 臣就前曰: ‘殿下至誠奉上, 凡所貢獻, 敢不盡心? 然不產與難備之物, 未得準數耳。 請詳奏施行。’ 淸曰: ‘卽寫加減之數。’ 臣答曰: ‘許多物件, 何能盡記?’ 初四日朝, 淸到館, 受別獻方物而去, 仍問: ‘車氏、藏氏族親, 何無信字與回奉乎?’ 臣答曰: ‘前則因韓氏通簡, 今韓氏已逝, 通信宮禁爲難, 且畏朝廷法令, 未敢爾。’ 後往太監金興第, 淸亦到, 引臣入房內, 云: ‘皇帝問車氏、藏氏族親書契有無, 我以宰相之言奏之, 皇帝不信之, 宰相須仔細書

	<p>족친(族親)은 어찌하여 서신(書信)과 회봉(回奉)15706) 이 없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한씨(韓氏)를 통하여 통신(通信)하였으나, 지금은 한씨가 이미 죽었으므로 궁금(宮禁)에 통신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중국 조정(朝廷)의 법령(法令)이 두려워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p> <p>뒤에 태감(太監) 김흥(金興)의 집에 갔더니, 곡청도 이르러 신을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르기를, ‘황제(皇帝)가 차씨와 장씨의 족친의 서계(書契)가 없느냐고 물으므로, 내가 재상(宰相)15707) 의 말대로 아뢰었으나 황제는 믿지 않으시니, 재상은 자세히 기록하여 오시오.’ 하므로 신이 거짓으로 말하기를, ‘정 태감(鄭太監)15708) 이 본국(本國)에 있을 때에 이르기를, 「만약 한씨가 죽게 된다면 차씨와 장씨의 족친이 궁금에 통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였으므로, 감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곡청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내제(內第)로 부르므로 신 등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주었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재상이 사적으로 바치는 물건이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한씨가 이미 죽어 사적으로 바칠 길이 없으므로, 애당초 준비해 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였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성지(聖旨)가 있었으니, 거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한씨를 통하여 바쳤으나 지금은 한씨가 이미 죽고 없어 사적으로 바칠 길이 없으므로, 애당초 우리 전하(殿下)에게 품명(稟命)하지도 않고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곡청이 두세 번 강요하였으나, 신도 굳이 거절하였더니, 곡청이 곧 가인(家人)을 시켜 선물로 준 물건 중에서 베[布子] 10필(匹)과 해물(海物) 등을 꺼내어 그것으로 바치는 물건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배신(陪臣)으로서 사적으로 바치는 것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하니, 곡청이 말하기를, ‘성지(聖旨)가 있었고 또 나의 소관이니, 재상(宰相)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 마시오.’ 하였습니다.</p> <p>곡청이 또 관사에 와서 김저(金渚)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내가 지금 상주(上</p>	<p>來。’ 臣諛言曰：‘鄭太監在本國時云：「若韓氏不幸，則車氏、藏氏族親，通信宮禁，甚難。」 故不敢爾。’ 且谷清使人， 招臣于內第， 臣等持人情物件， 往與之。 清曰：‘宰相有私進獻物件乎?’ 臣答 [曰] 韓氏已逝， 無由私進， 故初不備來。’ 清曰：‘有聖旨， 不得辭也。’ 臣答曰：‘前則因韓氏而進， 今則韓氏已逝， 無因私進， 故初不稟命殿下而來。’ 清再三強之， 臣亦固辭， 清卽令家人， 出所贈人情物件內布子十四匹與海物， 將欲爲進獻之物。 臣又就前曰：‘以陪臣私進， 未安於心。’ 清曰：‘有聖旨， 且我所管， 非宰相所與。 勿更言。’ 清又來館， 密語金渚曰：‘我今奏云：「韓致亨言：『本國不產難備之物， 我殿下十分焦心。 帝云：「何物難備也? 宰相宜開寫某某物， 是難備， 某某物， 是不產而來。’ 臣卽令金渚， 具錄以付。 其後清謂臣曰：「我以宰相之意， 奏之。 帝曰：「不產之物， 勿進; 難備之物， 隨王所得以進。」 臣謂清曰：「願承聖旨。’ 清承聖旨， 招使及書狀官、通事于外第， 臣卽往。 清出來曰：‘有聖旨。’ 臣卽跪，</p>
--	---	---

奏)하기를, 「한치형(韓致亨)의 말이, 본국(本國)에서 생산되지 않아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우리 전하께서 무한히 애태우고 있습니다 하였습시다。」 라고 하였더니, 황제(皇帝)께서 이르시기를, 「어떤 물건이 준비하기 어려운 것인가」 하였습시다. 재상은 마땅히 어떠한 물건은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떠한 물건은 생산되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해 와야 할 것입시다.’ 하므로 신이 즉시 김저로 하여금 자세히 기록하여 부치게 하였습시다. 그 뒤에 곡청이 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재상의 뜻대로 아뢰었더니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산되지 않는 물건은 바치지 말고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조선 국왕이 구하는 대로 바치게 하라。」 하였습시다.’라고 하였습시다. 신이 곡청에게 말하기를, ‘성지(聖旨)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였더니, 곡청이 성지를 받아 가지고 사신(使臣)과 서장관(書狀官)·통사(通事)를 바깥재[外第]로 부르므로 신이 즉시 꿇어앉았더니, 곡청이 탁자 위에 있는 성지를 가져다 주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한씨(韓氏)가 사조(四朝)를 섬기며 사공(事功)이 매우 많았고, 또 조선 국왕의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가 죽었을 적에 장사(葬事)는 한결같이 후한 예로 하여 주었으며, 특히 시호(諡號)를 봉(封)하고 사제(賜祭)하였으며, 어제(御製)로 비(碑)를 세웠으니, 은혜와 예우(禮遇)가 지극히 중하였습시다. 그러니 황제께서는 반드시 재상으로 하여금 한씨의 묘소(墓所)에 직접 제사를 지내라고 할 것입시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한씨가 비록 나의 가까운 친족(親族)이기는 하나 한씨는 곧 황제의 후궁(後宮)이며, 또 애당초 우리 전하에게 계품(啓稟)하지 않고 왔으므로 의리상 사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습시다.’ 하였습시다. 그 후에 곡청이 성지를 가지고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른 아침에 재상은 공신 부인 한씨(恭愼夫人韓氏)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하였습시다. 이튿날 상마연(上馬宴)15709)에서 사은(謝恩)한 다음에 곡청이 성지(聖旨)를 받들고 장안문(長安門) 밖에다 이미 역마(驛馬) 20필을 준비하였습시다. 신이 한씨의 산소에 함께 가서 제사

淸取聖旨于卓子上與之，謂臣曰：‘皇帝以韓氏歷事四朝，事功甚多，且朝鮮國王之至親也，其卒葬事，一從厚禮，特許封諡賜祭，御製豎碑，恩禮稠重。帝必令宰相，親祭於韓氏墓所矣。’臣應之曰：‘韓氏雖我至親，韓氏乃皇帝後宮，且初不啓稟殿下而來，義不可私祭。’其後淸將聖旨，語臣曰：‘明日早朝，宰相可就恭愼夫人韓氏墳行祭。’翼日上馬宴謝恩後，淸奉聖旨，已具驛馬二十四于長安門外。臣與偕往韓氏墳塋行祭。少監候能、鄒孝等，典設祭物，而祭器及奠物，極爲精麗。”及出，賜致亨四段塔胡一領、白綿布圓領一領、白鹿皮靴一事。仍傳曰：‘卿能應對，蒙減別獻之物，予用嘉悅。’

	<p>를 지냈습니다. 소감(少監)인 후능(候能)·추효(鄒孝) 등이 제물(祭物)을 차렸는데, 제기(祭器)와 제물이 아주 정결하였습니다.”</p> <p>하였다. 물리나올 때에 한치형에게 필단 답호(匹段塔胡) 1령(領), 백면포 원령(白綿布圓領) 1령, 백록비화(白鹿皮靴) 1사(事)를 하사(下賜)하고, 이어 전교(傳敎)하기를,</p> <p>“경(卿)이 응대(應對)를 잘하여 별헌(別獻)하는 물품을 감(減)하게 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p> <p>하였다.</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19 일(임신) 3번째기사</p>	<p>종친(宗親)에게 시험보이는 절목(節目)을 고쳤다.</p> <p>“1. 식년(式年)은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식년(式年)보다 한 해 물려서 시행한다.</p> <p>1. 식년(式年) 때마다 명선 대부(明善大夫) 이하의 사람들을 대궐 안에 모아 놓고 《사서(四書)》·《삼경(三經)》을 강(講)하게 하여, 조(粗) 이상을 뽑고, 그 밖에 이경(二經)과 제자(諸子)·사기(史記)를 강하려고 희망하는 자는 《사서》와 《시경(詩經)》·《서경(書經)》 외의 것으로 들어주되, 임문(臨文)하여 급획(給畫)15710 하여서 문과(文科)와 함께 급획한 수를 통계하여 4명을 뽑는데, 1등 1명, 2등 1명, 3등 2명으로 한다.</p> <p>1. 시관(試官)은 임시(臨時)하여 취품(取稟)해서 차정(差定)한다.</p> <p>1. 1차 합격한 자는 재차 응시할 수 없다. 임시하여 특명이 있는 자는 여기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 연회(宴會)를 베풀어 주고 논상(論賞)하는 절차는 일반 시험보일 때의 절차와 같다.”</p>	<p>○改宗親試藝節目。</p> <p>一， 式年於文、武科， 式年退一年。</p> <p>一， 每式年， 會明善以下于闕內， 講四書、三經， 取粗以上， 願講餘二經及子、史者聽， 四書、《詩》、《書》外， 臨文給書， 同文科通計畫數， 取四人， 一等一人， 二等一人， 三等二人。</p> <p>一， 試官臨時取稟差定。 一， 一次入格者， 不得再試。 臨時特命者， 不在此限。 其賜宴及論賞節次， 同試藝時節目。</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20 일(계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癸酉/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73권, 15년</p>	<p>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야인(野人) 이포라다(李包羅多)·동오을도고(童吾乙都</p>	<p>○御思政殿， 接見野人李包羅多、童吾</p>

<p>(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20일(계유) 2번째기사</p>	<p>古) 등 8명을 접견하였는데, 종친(宗親)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 등과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에게 명(命)하여 이포라다(李包羅多) 등에게 전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험한 길에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하니, 대답하기를, “성상(聖上)의 덕이 지극히 중하시어 편안하게 왔습니다.” 하였다. 이포라다 등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이어 전교(傳敎)하기를, “너희 도독(都督)은 어찌하여 오지 않는가?” 하니, 이포라다가 말하기를, “토지(土地)와 백성(百姓)이 있으므로 버리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독은 마침내 오지 않을 것인가?” 하니, 이포라다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만약 성상의 덕이 이러하심을 들으면 반드시 내조(來朝)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현재 상중(喪中)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이 곳에서 취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승지(承旨)들로 하여금 밖에서 대접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도록 하라.” 하고, 이어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나와서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이 외청(外廳)에서 대접하였는데, 동오을도고가 몇 잔의 술을 마시고는 더 마시려고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로 하여금 내조(來朝)하게 하였는데, 나만이 임금 앞에서 술잔을 올리지 못하였으니,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한단 말입</p>	<p>乙都古等八人，宗親月山大君婷等、領議政鄭昌孫等入侍。上命禮曹判書李坡，傳于包羅多等曰：“汝等險路勞苦而來。”對曰：“上德至重，安穩而來。”命包羅多等進爵，仍傳曰：“爾都督，胡不來？”包羅多曰：“有土地、百姓，棄而上來爲難。”上曰：“都督終不來乎？”包羅多曰：“父若聞上德如此，必來朝矣。”上曰：“予方在喪中，未敢使爾等，醉飽于此。令承旨，別饋于外，爾等知之。”仍賜物有差。及出，左承旨成健饋于外廳，童吾乙都古飲數杯，更不肯飲，仍泣下曰：“吾父使子來朝，而獨我未得進爵於上前，還家何以語父乎？”頗有愠色。成健曰：“今當國恤，爵數不可過多，故定以三爵，非薄待汝也。勿以爲訝。”</p>
---	---	---

	<p>니까?” 하며,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성건이 말하기를, “지금 국휼(國恤)을 당하여서 술잔의 수를 과다(過多)하게 할 수 없으므로 세잔[三爵]으로 정한 것이니 너를 박대한 것이 아니니,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였다.</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21 일(갑술)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비전주(肥前州) 하송포(下松浦) 삼울 태수(三栗太守) 원만(源滿), 송포(松浦) 지좌(志佐) 일기 태수(一岐太守) 원의(源義), 번마주(幡摩州) 일향 태수(日向太守) 성문(盛文), 석견주(石見州) 등원 주포 좌근장감 화겸(藤原周布左近將監和兼), 풍주수(豊州守) 대우 친번(大友親繁),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 수호 대관(守護代官) 종조육성준(宗助六成俊), 월중수(越中守) 종성홍(宗盛弘)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甲戌/日本國肥前州下松浦三栗太守源滿、松浦志佐一岐太守源義、幡摩州日向太守(盛文) [盛久]、石見州藤原周布左近將監和兼、豐州守(太友親繁) [大友親繁]、對馬州太守宗貞國、守護代官宗助六成俊、越中守宗盛弘遣人，來獻土宜。</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21 일(갑술) 7번째기사</p>	<p>이조 정랑(吏曹正郎) 이복선(李復善)이 상서(上書)하여 아뢰기를, “삼가 근간에 내리신 교지(教旨)를 보건대, 풍속을 순화시키고 세도(世道)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하교(下教)가 있었는데, 이는 참으로 훌륭한 생각으로서 온나라 사람의 복입니다. 신(臣)이 감히 마음을 터놓고 평소에 품었던 생각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아 ! 풍속과 교화의 퇴폐와 융성함은 정치의 잘잘못에 달려 있고, 정치의 잘잘못은 임금의 한 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옛부터 문명한 예의의 나라로 불리어 왔습니다. 태조(太祖)께서 개국(開國)한 뒤로 여러 성조(聖祖)께서 서로 계승하며 거듭 빛내어 흠족하게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하면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총명과 날로 발전하는 학문으로, 교화가 이미 지극하고 은택도 이미 흠족했는데, 어찌하여 인심(人心)은 야박하고 풍속이 차츰 변해 가서 교화를 거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식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으며, 혹은 종들이 그 주인을 해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성상(聖上)께서 밤</p>	<p>○吏曹正郎李復善上書曰： 伏觀近日頒降之旨，有轉移風俗、挽回世道之教，猗歟盛哉！一國人福也。臣敢不披露腹心，以陳平昔所懷者乎？嗚呼！俗化汚隆，係於政治得失，政治得失，關於人主一身。吾東方，古稱文明禮義之邦。自太祖開國以來，列聖相承，重熙累洽。恭惟我主上殿下，聰明天縱，聖學日明，教已至矣，恩已浹矣。乃何人心不古，風俗漸漓，而梗化者有之，或子職不修，兄弟不睦，或奴隸害其主，卑賤凌其上，以軫聖上</p>

	<p>낮으로 근심하게까지 하였습니까?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또 사대부(士大夫)들도 순박한 것을 비루하게 여기고 사치한 것만을 서로가 숭상하여, 집을 지을 적에는 크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담을 쌓을 적에는 높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음에 있어 지나치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단청(丹青)을 함에 있어서는 외람되게 궁궐(宮闕)을 모방하고, 음식을 차림에 있어 호화롭게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술 안주는 화당(華堂)에 벌여 놓는데, 부자는 화려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가난한 자도 그것을 따르려고 힘쓰니, 이 무슨 풍속입니까? 동자(董子)15711) 가 말한, ‘교화(教化)를 밝혀서 인심(人心)을 바로잡고 인심을 바로잡아 조정(朝廷)을 바로 잡는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현재 힘써야 할 것을 의논하는 자는 모두 말하기를, ‘풍속을 변화시키는 계기는 훌륭하고 슬기로운 인재를 뽑아 쓰는 데 달려 있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법을 바탕으로 이를 다시 천명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지당하여 바꿀 수 없는 의논입니다. 당당하고 위대한 우리 조정으로서 인재가 어찌 다 쓸모가 없는 것이며 법령이 어찌 다 도움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명철(明哲)하신 임금이 위에 계시는데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평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명령이 엄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법을 받들어 행하는 자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백리에 풍속이 같지 아니하고 천리에 풍속이 다르니, 백리와 천리의 같지 않는 풍속을 어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깨우쳐 주고 사람마다 만나서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의논하는 자의 말처럼 준수한 인재를 구하여 조정(朝廷)이나 외방(外方)에 배치시키고, 만들어진 법을 거듭 밝혀서 사시(四時)처럼 신용 있게 하여 유사(攸司)·법리(法吏)와 감사(監司)·수령(守令) 등이 각기 그 임무를 다하여 그 영(令)을 펴게 되면 거의 백성의 잘못하는 것을 금할 수 있어서 풍속이 순박하게 될 것이므로, 전하(殿下)께서는 다만 전의 법만 지켜도 될 것입니다.</p>	<p>宵旰之憂乎? 此非細故也。 且士大夫皆以朴野爲陋, 專以奢侈相尚, 作室畏不峻, 築墻畏不高。 家舍過制之禁固也, 而丹青僭擬宮闕。 飲食豪侈之禁固也, 而肴核列於華堂。 富者猶恐其不麗, 貧者亦企而及之, 此何等風也? 董子所謂: “明教化以正人心, 正人心以正朝廷” 者, 此也。 談今之務者, 皆曰: “移風易俗之機, 在於得賢智之才, 用之而已, 因已成之典, 申之而已,” 此至當不易之論也。 以堂堂我朝之盛, 人材豈盡無用? 法令豈盡無補也? 又安有聖明在上, 而有難濟之事乎? 臣於平居, 籌諸方寸熟矣, 非法不足也, 非令不嚴也, 由於奉行者, 不勤也。 況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 千百里不同之俗, 豈能家到而戶曉, 人人而諭之乎? 誠如談者之論, 旁求俊乂, 布列中外, 申明成憲, 信如四時, 攸司、法吏、監司、守令, 各盡其任, 能申其令, 庶幾禁民爲非, 使風俗返於淳, 而殿下但守成算而已。 談者亦曰: “分京在所, 自祖宗朝設立, 其來已久, 近歲革罷而不復, 何也?” 慮有鄉愿之人, 憑藉聲勢, 或規免一戶之徭, 或誘</p>
--	--	--

의논하는 자들은 또 말하기를, ‘분경재소(分京在所)는 조종(祖宗) 때부터 설립 하였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근년에 와서 혁파(革罷)시키고 다시 복구시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아마 향원(鄉愿)15712) 들이 세도를 빙자하여, 혹 한 집의 부역을 면하려 하고 혹은 양민(良民)을 유혹하여 고용살이를 시키는 폐단을 구제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해서일 것입니다. 지금 다시 설립하고자 하나 사람들의 의논이 분분해서, 갑(甲)이 옳다고 하면 을(乙)은 아니라고 하여 자못 일정한 타협이 없는데, 이 역시 한갓 폐단만 있을까 염려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궁벽한 마을에 불량배들이 국법(國法)을 범하며 방자한 행동으로 거리낌 없는 짓을 하는데도 조정의 기강(紀綱)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그 죄상을 밝히고 바로잡아서 시골 백성을 통제하겠으며, 시골의 풍속을 진작시키겠습니까? 더구나 시골의 교활한 아전들이 권력을 잡고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이익을 노리는 것이 한이 없는데도 그 지역의 관리가 견제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노숙하고 정대한 사람 세명을 뽑아 유향소(留鄉所)15713)의 품관(品官)이라 일컫고, 그 성명(姓名)을 기록하고 액수(額數)를 정해 놓고서는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겪는 사람을 찾아보고 풍속의 아름다움을 채택하게 하되, 위엄을 빌어 폐단이 생기게 한다든가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욕(私欲)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며, 만약 여기는 자가 있을 경우 법으로 엄하게 처단한다면 분경재소를 설치하는 것이 역시 풍속을 바로잡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일들은 모두 예나 지금이나 말해오던 것이므로,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할 만한 말이 아니며 또한 풍속의 기강도 되지 못합니다. 신(臣)은 기강의 근원을 규명해 보진대 작상(爵賞)을 중하게 여기고 숭상하는 것을 삼가하는 데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무릇 작상은 임금의 큰 권한[權柄]이니, 소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한(韓)나라 소후(昭侯)는 헤어진 바지도 간직하였다가 큰 공이 있는 자를 기다리게 하였으니, 떨어진 바지도 오히려 아꼈는데, 더구나 작상이겠습니까

良氓而備者，弊將不救故也。今欲復立，物議紛紜，甲可乙否，迨無一定之議，是則徒慮其有弊而然也。若於窮村僻巷之中，頑嚚不逞之輩，干犯邦憲，恣行無忌，而朝綱有所未到，則何以明正其罪，以制鄉人，以振鄉風乎？又況鄉吏奸猾之徒，操權舞文，漁利無厭，而吏于土者，亦不能制之者乎？擇老成正大者，不過三人，稱為留鄉所品官，錄其姓名，定其額數，使之訪其疾苦，采其風俗，不得假威而生弊，憑公而營私。如有違者，痛繩以法，則分京在所之設，亦是正風俗之一端也。然此數事，皆古今陳言，非駭人聽聞之說，亦非風俗之綱也。原其綱，不過曰：“重爵賞也，謹好尚也。”夫爵賞，人主之大柄，不可不重也。昔韓侯藏弊袴，以待有功，弊袴猶愛之，況爵賞乎？爵賞，非殿下之爵賞，乃朝廷之爵賞也，豈可濫而冗乎？臣少時，聞先臣祖父之言。世宗嘗教之曰：“我國，厥土綿薄，厥產鮮少，所以勸勵士大夫，不如中原金、銀、玉、帛之賜。故但重其爵祿，以待賢能而已。”臣幼而誦之，未知其要，長而思之，誠千載罕有

까? 작상은 전하의 것이 아니고 조정의 것인데, 어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어렸을 적에 선신(先臣)인 조부(祖父)의 말을 들었는데, 세종(世宗)께서 일찍이 하교(下敎)하시기를, ‘우리 나라는 토지(土地)가 메마르고 생산이 적어서 사대부(士大夫)를 권장시킴에 있어 중국에서 금(金)·은(銀)·옥(玉)·백(帛)을 주는 것처럼 못한다. 그래서 다만 작록(爵祿)을 후하게 주어 훌륭한 사람을 대우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어렸을 때에는 듣고서도 그 요지(要旨)를 알지 못했는데, 장성한 뒤에 생각하니, 진실로 천년에 있기 드문 성교(聖敎)라고 여겼습니다. 그 때에 서울 밖 재상(宰相)이 현재의 실직(實職)에 있는 수효에 불과하였으므로, 서로 번갈아가며 출입하였으나, 요즈음은 현재 실직에 있는 이외의 당상관(堂上官)만도 무려 수백명이 되니, 조정에는 백관(百官)뿐인데 당상관은 어찌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또 개월수(個月數)에 있어서는 오직 의정부(議政府)의 사인(舍人)·검상(檢詳)과 육조(六曹)의 낭청(郎廳),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그리고 전곡(錢穀)을 담당한 제사(諸司) 중에서 오래 된 임원 1, 2명만 제외하고는 개월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재질에 따라 썼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론이 있게 되면 전조(銓曹)에서 정사(政事) 때마다 해임시키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였으므로 인재(人材)가 침체(沈滯)되는 한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품(六品) 이상은 9백 일, 칠품(七品) 이하는 4백 50일이 되어야 옮겨 주는 것으로 영구한 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의 논박이 있어도 청탁으로 인하여 구차스럽게 세월만 연장시키고 있으니, 이는 아마 사람을 쓰는 좋은 법이 아닌 듯합니다.

요즈음 궁궐(宮闕)을 새로 지으면서 많은 관원(官員)을 두어 감독을 하게 하였고 일이 끝나자 큰 관직으로 상을 주었는데, 토목(土木)을 감역(監役)하는 것은 신하로서 해야 할 직분입니다. 토목을 감역했다고 임금의 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수박을 바치고 벼슬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之聖敎也。其時京外宰相，不過見在實職，故出入相遞而已，今者見在實職外堂上，無慮數百焉，朝官只有百官，而堂上官一何多也？且箇月，惟議政府舍人·檢詳、六曹郎廳、承政院注書、錢穀諸司久任一二員外，不拘箇月，隨其人材而用之。故如有物議者，則銓曹每政黜之，選用其才，無沈滯之嘆。今則六品以上滿九百日，七品以下滿四百五十日乃遷，永爲恒式。故雖有物議駁之者，因緣請托，苟延歲月，恐非用人之良法也。今者新創宮闕，多置官員以董之，役訖，大賞爵秩。夫監役土木，臣子之職也，監役土木，而受上賞，何以異於獻瓜果，而得爵者乎？以新進不諳練之輩，超擢其階，加諸衆員之上，誰能心志交孚，聽其令，濟其事乎？借如邊報忽飛，〔刀〕〔刁〕斗有警，擐甲汗馬之勞，斬將搆旗之功者，臣不識以何者而待之。臣前所謂：“正風俗之綱在於重爵賞”者，此也。夫好尙，一國之標的，不可不謹也。昔堯、舜帥天下以仁，而民從之。釋之者曰：“克讓者一堯耳，而黎民時雍；好生者一舜耳，而四方風動。

새로 나온 능숙하지 못한 무리를 계급을 높여서 여러 관원 위에다 올려놓는다면 누가 진심으로 믿고 사귀어, 그 명에 따라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가령 변방에서 갑자기 변고(變故)가 일어나 조두(刁斗)15714)가 울리게 되면, 갑옷 입고 말 달리는 노고(勞苦)와 적장(敵將)을 무찌르고 깃발을 꺾은 공로(功勞)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그들을 대우하시겠습니까? 신이 앞에서 말한 풍속을 바로잡는 기강은 작상을 신중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금의 좋아하는 것은 온 나라의 지표가 되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요·순은 천하(天下)를 인(仁)으로 통솔하였으므로 백성이 그를 따랐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겸양(謙讓)의 도리를 제대로 행한 분은 요(堯)임금이었는데, 백성이 이에 순응하여 감화되었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분은 순(舜)임금이었는데, 사방에서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자신이 술선하면 쉽고 명령으로 몰아치면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천만 사람의 추향(趨向)이 전하(殿下) 한 분의 좋아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좋아함은 문(文)·무(武)를 함께 채용하여 그 인재를 얻고자 하심이니, 나라의 규모와 체제를 세움이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무를 함께 채용하라는 명령만 내렸고 문·무를 함께 채용하는 실효는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한갓 구하라는 명만 있었고 교양시키는 밑바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들은 것으로 질정을 하겠습니다.

세종(世宗) 때에는 본래 문사(文士)를 교양시켜 왔으므로, 성균관(成均館)의 사표(師表)의 책임자는 모두 큰 덕망이 있는 원로(元老)들이었으며, 선생 밑에서 옷깃을 여미고 있는 자는 훌륭한 선비의 기풍을 가진 자였습니다. 혹은 백발(白髮)이 되도록 경적(經籍)을 탐구하기도 하고 또는 10년이 되도록 <고향에> 돌아가지 않은 자도 있었으니, 어찌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서책을 끼고 다니지 않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주(周)나라의 체제(濟濟)15715) 한 많은 선비도 이보다 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故以身率之則易，以令驅之則難。” 噫！千萬人趨向，在殿下好尚之間，其可忽諸？殿下好尚，欲并用文、武，思得其才，爲國規模體段，豈有大於此哉？然有竝用文、武之令，而無并用文、武之實，其故何也？徒有求之之令，而不有養之之素也。臣請以所聞質焉。世宗朝，教養文士，素矣。成均館師表之任，皆碩德老成者爲之，而樞衣函丈之下，蔚有儒者風。或有皓首窮經者矣，或有十年不歸者矣。豈有乘肥衣輕，而不把書冊者乎？周之濟濟，無以加矣。今則不然，儒風不振也久矣。居上舍者，盡是童稚之輩，絕無年德之高，赴校數年，半途而廢，視儒冠如草芥，以書史爲芻狗，徒步者，衆從而笑之，挾冊者，衆從而排之。重一資，而或投於軍門，慕他技，而或試於弓劔。此無他，近者殿下好用少年，好用武士之故也。況集賢殿，爲士林之源。故選入是殿者，動經十年之久，以討百家之說，久於其職，能盡其才，炳炳琅琅，賁飾文教至矣。今選用弘文館，久滯其職者少。浹旬之間，累加其階，不出數年，或有堂上

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 유풍(儒風)이 떨치지 못한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사(上舍)에 거처하는 자는 모두 어린 무리일 뿐이고 아예 나이 많고 덕(德)이 높은 사람은 없으며, 향교(鄕校)에 온 지 수년 만에 중도에서 그만두어 유관(儒冠) 보기를 초개(草芥)같이 여기고 경서(經書)나 사기(史記)를 추구(芻狗)15716) 처럼 여기며, 말을 타고 다니지 않는 자는 모두가 비웃고 책을 끼고 다니는 자는 모두가 배척합니다. 한편 한 계급을 소중히 여겨 혹은 군문(軍門)에 뛰어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능을 좋아하여 혹은 무예에 응시하기도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요즈음 전하께서 소년(少年)이나 무사(武士)를 가용하기 좋아하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집현전은 사림(士林)의 원천(源泉)입니다. 그래서 집현전에 들어오는 자는 10년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백가(百家)의 글을 토의하고, 그 직책에 오래 있으면서 그 재주를 다할 수 있었으므로 화려하게 빛나는 문화 교육이 지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문관(弘文館)에 선발되어 등용된 자로서 그 직책에 오래 있는 자가 적을 뿐 아니라 열흘 남짓한 사이에 자주 계급을 올려서 수년이 못되어 혹은 당상관(堂上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니, 어느 여가에 옛글을 토론하고 그 재주를 단련하겠습니까? 이미 옛글을 토론하지 못하고 재주를 단련하지 못했다면 그 인재를 배양(培養)시키는 방법에 있어 어찌 되겠습니까? 세종 때에는 본래 무사(武士)를 양성시켜 왔으므로,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시험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재주를 시험했다고 해서 다 일을 맡기지는 않았습시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남다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겸사복(兼司僕)이나 내금위(內禁衛)에 지나지 않게 하여 녹봉(祿俸)을 후하게 주었으며, 봄·가을로 시험을 보여 점수의 많고 적은 데 따라 녹봉을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자가 있으면 양계(兩界)의 외지(外地) 수령(守令)을 시켰다가 임기가 차서 돌아오면 혹은 군직(軍職)을 맡기되, 겸사복(兼司僕)·훈련원(訓練院)·진무소(鎭撫所)·군기감(軍器監) 등의 한관(閑官)에 제수하고 긴요한 아문(衙門)의 직책은

官之榮，何暇討論於古，又何暇鍛鍊其才？既不暇討古，又未暇鍊藝，其於培養人材之道何哉？世宗朝，撫養武士素矣。名一藝者，無不試，試其藝者，不任事。雖有卓越之才、絕人之力者，不過兼司僕焉、內禁衛焉，以豐其祿，春、秋試之以畫數多少，加減其祿焉。有特異者，爲兩界外地守令，及其秩滿而還也，或授軍職，或授兼司僕、訓練鎭撫所、軍器監等閑官，而不於緊關衙門任之，故不廢其業，不失其祿，每於馬上挾毬而行，遇平地則擊之。諺傳李石丁射侯、具文信擊毬者，是也。李澄玉將種，爲兩界節度使也，鞭笞酋長，如治奴僕，野人服其爲人，稱爲李令公。見重於野人如此，而不任以事，不過授一方面，出爲兩界節制使，入爲中樞院副使而已，況其他者乎？今則爲武士者，入軍門數年，爲外地守令，其還也，必爲僉正焉，爲判官焉，皆六寺、七監事繁之地，何暇張弓擊毬乎？以甲冑、弓矢之士，遽委諸簿書之任，公不能治其事，私不得鍊其技，是公私胥失之矣。臣於道路所觀，儒士弓矢而馳突，武士冊匣而從容。臣立馬良

말기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폐하지 않았고 따라서 녹봉도 잃지 않았으므로, 매양 공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다가 평지를 만나면 공을 치고는 하는데, 속담에, ‘이석정(李石丁)은 활을 쏘고 구문신(具文信)은 공을 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징옥(李澄玉)은 장수의 혈통으로서 양계(兩界)의 절도사(節度使)가 되었을 적에 추장(酋長)에게 매질하기를 마치 종을 다루듯 하니, 야인(野人)이 그의 사람 됨됨이에 굴복하여 이 영공(李令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야인에게 인망(人望)이 두터움이 이와 같았으나 일은 말기지 않고 한 지방을 맡기는 데 불과하여, 나가서는 양계의 절제사(節制使)가 되고 들어와서는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가 되었을 뿐이니, 더구나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지금의 무사는 군문(軍門)에 들어온 지 몇 해만 되면 외지(外地)의 수령(守令)이 되고 돌아오면 반드시 첨정(僉正)이나 관관(判官)이 되어 모두가 육시칠감(六寺七監)의 긴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어느 여가에 활을 쏘고 공을 치겠습니까? 갑주(甲冑)나 궁시(弓矢)를 익힌 무사(武士)로서 갑자기 문서를 다루는 직무를 맡게 한다면, 공적(公的)으로는 그 일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사적(私的)으로는 그 기능을 연마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는 공(公)·사(私) 간에 서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臣)이 길에서 본 것인데, 유사(儒士)는 활을 가지고 달려가고 무사(武士)는 책을 끼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신이 말을 세우고 얼마간 서 있다가 탄식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문·무의 인재를 병용(並用)하려는 것은 지극한 심정에서 우리나라 온 것인데, 문사나 무사가 익히는 것이 이렇게 상반(相反)됨은 어찌서 일까? 이는 다만 구하라는 명만 있었고 본래 양성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하였습니다. 더구나 구언(求言)할 적에 문·무의 뛰어난 재질만 들어 말씀하시고 노숙하고 덕망이 있는 인품은 들어 말씀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재주만 숭상하고 덕망은 숭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마광(司馬光)은

久, 而嘆曰: “我殿下竝用文、武之才, 出於至情, 而文、武之士之習, 如此其相反何也? 徒有求之之令, 不有養之之素也。” 況於求言之日, 必曰: “文、武卓異之才,” 而不曰: “老成宿德之人,” 是尙其才, 而不尙其德也。 司馬公曰: “才勝德, 謂之小人; 德勝才, 謂之君子。” 蘇東坡曰: “少年輕銳而不足, 老成遲鈍而有餘。” 臣前所謂: “正風俗之綱, 在於謹好尙” 者, 此也。 臣聞創業易, 守成難。 殿下初年, 每事一遵世宗守成之故典, 而治教隆盛, 卓冠千古, 朝野延頸拭目, 歡欣鼓舞, 相與慶曰: “伏觀世宗之治于今之時矣。” 近年以來, 漸不如初, 大興土木, 以困民力, 數煩使命, 以搖人心。 臣固知土木之役, 爲兩殿不獲已耳, 如內豎於都中, 禁火禁伐, 近臣於方外, 發奸摘伏, 亦所不獲已而然耶? 聖慮至矣, 誰不震懼者? 然可一, 而不可再也。 若此不已, 民間騷然, 告訐日興, 民心日惡, 風俗日薄, 而子議其親, 奴謀其主, 無所不至矣。 昔堯、舜垂衣裳, 而天下治; 漢宣綜核名實, 而史家議之。 以殿下堯、舜之資, 下

	<p>말하기를, ‘재주가 덕망을 능가하면 소인(小人)이 되고 덕망이 재주를 능가하면 군자(君子)가 된다.’고 하였으며, 소동파(蘇東坡)는 말하기를, ‘젊은 사람은 날래기는 하나 부족한 데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느리지만 여유가 있다.’고 하였으니, 신이 앞에서 말한 풍속을 바로잡는 기강은, 좋아하는 것을 삼가는 데에 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p> <p>신은 들으니, 창업(創業)하기는 쉽고 수성(守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처음에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세종(世宗)이 지켜오던 옛법을 따라서 정치와 교화가 융성함이 천고(千古)에 으뜸이 되자 조정과 지방에서 목을 늘어 뜨리고 눈을 비비며 즐겁게 춤추며 경하하기를, ‘세종의 정치를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되었구나.’ 하였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차츰 처음과 같지 못하여 토목(土木)의 공사(工事)를 크게 일으켜서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하고, 사명(使命)을 번거롭게 하여 인심이 동요되게 하시니, 신이 알기로는 토목 공사는 양전(兩殿)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도성(都城) 안에 내수(內豎)를 시켜 금화(禁火)·금벌(禁伐)하는 것과 지방에 근신(近臣)을 보내어 비행을 적발하게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것입니까? 성상(聖上)의 배려는 지극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누가 이를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이나 할 일이지 두 번 할 것은 못됩니다. 만약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동요되어 고발하는 일이 날마다 생겨서 민심(民心)은 날로 악화되고 풍속은 날로 각박해지며, 아들이 아버이를 평가하고 종들이 상전에게 덤벼드는 등,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옛날 요·순은 조복(朝服)만 입고 있어도 천하(天下)가 다스려졌고, 한(漢)나라 선제(宣帝)는 명분과 실상을 따졌으나 사가(史家)들은 그를 평가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요·순의 자질로서, 낮추어 선제의 일을 시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은 수성(守成)의 옛법이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 마침내 큰 덕에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사귄 것은 얕은데 심각한 말을 하는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p>	<p>行宣帝之事，可乎？臣恐守成之故典，無一存者，而終累大德矣。古人有言曰：“交淺言深，君子恥之。”殿下求之以風俗之目，而臣敢言風俗之綱，臣則有罪。然漢文誼主，賈誼年少，賈誼言焉，文帝納焉。天下不以是少漢文，而非賈誼。願殿下守成，而無爲也。無爲而無不爲，無不爲，而風俗自無所不正矣。</p> <p>御書曰：</p> <p>復善之言，有補於治。然亦有未知予意處。</p> <p>仍傳于政院曰：“其召復善，飲之以酒，以示予樂聞之意。”</p>
--	--	---

	<p>였습니다. 전하께서는 풍속에 대한 조목을 구하셨는데, 신은 감히 풍속에 대한 강령을 말씀드렸으니, 신에게 곧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대체(大體)를 아는 임금이었으므로, 가의(賈誼)가 연소(年少)하기는 하나 가의가 말한 것을 문제가 받아들였어도 천하에서 그것 때문에 한나라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가의를 그르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옛법을 지켜서 저절로 다스려지게 하소서. 저절로 다스려지게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고, 되지 않는 일이 없게 되면 풍속이 스스로 바르게 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이복선(李復善)의 말이 정치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나의 뜻을 알지 못한 곳도 있다.”</p> <p>하고, 이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이복선을 불러서 술을 대접하고 내가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는 뜻을 보이라.”</p> <p>하였다.</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21일(갑술) 8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전라도(全羅道) 익산(益山)에 사는 김자완(金自琬)의 처 한씨(韓氏)가 죽었다고 하니, 부조로 쌀·콩 아울러 40석, 관곽(棺槨)과 초둔(草苴) 10번(番), 송지(松脂) 3두(斗), 종이 1백 권, 석회(石灰) 40석, 정포(正布) 20필, 공석(空碩) 60번, 연육폭 유둔(連六幅油苴) 3장, 청밀(淸蜜) 10두, 진말(眞末) 3석, 기름 20두를 그 도(道)에서 보내어 주게 하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曰：“全羅道益山居金自琬妻韓氏卒，賻米·豆并四十碩、棺槨·草苴十番、松脂三斗、紙一百卷、石灰四十碩、正布二十四匹、空碩六十番、連六幅油苴三張、淸蜜十斗、眞末三碩、油二十斗，令其道，給之。”</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27일(경진)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관서로(關西路) 축풍비 삼주 총태수(筑豊肥三州摠太守) 대재부 도독(太宰府都督) 사마 소경(司馬少卿) 등원정상(藤原政尙)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庚辰/日本國關西路筑、豊、肥三州摠太守太宰府都督司馬少卿藤原政尙遣人，來獻土宜。</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28 일(신사) 1번째기사</p>	<p>올량합(兀良哈) 아속(阿速) 등 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辛巳/兀良哈阿速等七人，來獻土宜。</p>
<p>성종 173권,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 (成化) 20년) 12월 29 일(임오) 3번째기사</p>	<p>야인(野人) 동오을도고(童吾乙都古)가 하직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야인으로 귀순(歸順)한 자가 많다. 그래서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해졌으니 약속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내조(來朝)하는 자는 해마다 세 차례를 넘지 말게 하고, 올 때마다 한두 사람에게 지나지 않게 하라.” 하고, 이어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에게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옷과 말을 내려 주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상중(喪中)에 있기 때문에 조용히 술을 줄 수가 없으니, 너는 혐의하지 말라. 비록 너의 아버지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내가 너를 박대한다고 하겠는가?” 하니, 동오을도고가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다.</p>	<p>○野人童吾乙都古辭。傳曰：“今野人歸順者多。緣此驛路凋殘，不可不約束。自今來朝，每年毋過三度，每行毋過一二人。”仍命左承旨成健饋之，賜衣、馬。傳曰：“予在喪中，未得從容賜酒。爾勿以爲嫌。雖汝父聞之，豈謂予薄待耶？”吾乙都古叩頭而退。</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일 (을유) 2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국수(國秀)를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복지산(福利山) 국분사(國分寺) 주지(住持)의 직(職)에는 비록 승목(崇睦)을 임명하였으나, 그 뜻은 두 나라의 화호(和好)와 생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로지 귀국을 위하여 성수(聖壽)15721) 를 빌고 인하여 사선(使船)을 보내기를 바랐는데, 처음에는 한 척을 내리므로, 여러 번 애걸하여 두 척을 더 하여 세 척으로 수(數)를 정하였습시다만, 불행히 승목은 죽고 승통(崇統)이 대신했는데, 승통은 승목에게 속계(俗系)로는 조카가 되고 법계(法系)로는 제자가 됩니다. 인하여 선수(船數)를 예전대로 회복해 주기를 바란 것이 두세 번이었으나 감히 허락을 받지 못하니 부끄러움으로 땀이 납니다. 바라건대 국분사(國分寺)를 위하여 배 네 척을 더 내려 주어서 다섯 척으로 수를 정해 주시면 성은(聖恩)이 더욱 중하겠습니다.”</p>	<p>○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國秀，來獻土宜。其書契曰： 福利山國分寺住持之職，雖命崇睦，其意兩國和好，爲生民植福也。專爲貴國，祝聖壽，因而望遣使船，初賜一隻，以屢乞加兩隻，以三爲定額，不幸而崇睦滅命，崇統於崇睦，俗系爲令姪，法系爲弟子。因望船數復舊者再三，不敢賜許，慙汗忸怩。庶爲國分，加賜四船，以五船爲定額，聖恩之彌重者也。</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일 (을유) 3번째기사</p>	<p>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건주위(建州衛) 야인(野人)의 추장(酋長)의 자제(子弟)에게 접대(接待)를 하게 한 뒤로 다투어 와서 관문(關門)을 두드리며, 혹은 보변(報變)15722) 을 칭탁하고 혹은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청하니>, 이는 은상(恩賞)을 받으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이 뒤로는 야인이 만약 올라오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평안도는 중국 사신(使臣)이 왕래하는 길이므로 사사로이 왕래할 수 없다. 추장의 친자제와 드러나게 공이 있는 자 외에는, 성심으로 귀순하는 자가 있으면 영안도(永安道)의 후문(後門)을 경유하여 내조(來朝)해야 한다.’ 하고, 또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굶주림을 구호받겠다고 칭탁하고 억지로 머무는 것을 믿고 들어주어 은혜를 베풀게 되면, 이를 본받아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마침내 지대(支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예(例)로 대접하여 독촉해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兵曹啓: “建州衛野人, 賜酋長子弟接待後, 爭來叩關, 或托報變, 或持書契。此不過欲蒙恩賞。今後野人, 若或上來, 當語之曰: ‘平安一道, 中國使臣往來之路, 不可私通。酋長親子弟及顯有功者外, 有誠心向順者, 可由永安道後門來朝。’ 又令邊將, 益嚴隄備, 彼若托以救飢強留, 而信聽施惠, 則效此蠶起, 終難支持。亦令例待督還。” 從之。</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3일 (병술) 1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유순(柳洵) 등이 차자(筭子)를 올려 아뢰기를, “경조(京兆)15723) 는 사무의 번극(煩劇)함이 다른 사(司)의 감절이므로, 병이 있는 자가 임무를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공(李拱)은 속대(束帶)15724) 하고 부(府)에 앉아서 의기 양양(意氣揚揚)하게 안뜰과 바깥 거리에서 큰소리로 외쳤고, 일찍이 병이 들어서 임무를 폐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회령(會寧)으로 발령된 이튿날 갑자기 병이 있다고 하며 사양하니 그 뜻은 회령이 북쪽 지방 먼 땅이고, 또 지난번 실화(失火)로 인하여 관부(官府)가 쓸쓸하고 재물과 곡식이 다 없어져서, 이름은 비록 큰 진(鎭)이라 하더라도 실상은 잔폐(殘弊)하며 또 더군다나 처자를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고 단신으로 멀리 가서 3년을 복무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데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 거짓 병으로 임금을 속인 것은 이러한 이유에 벗어나지 아니 합니</p>	<p>○丙戌/司憲府大司憲柳洵等上筭子曰: 京兆事務煩劇, 倍於他司, 非有病者所堪任, 而李拱束帶, 坐府揚揚焉, 行呼唱於內庭、外衢, 曾不聞嬰病廢仕也。拜會寧翼日, 遽辭以病, 其情不過曰: “會寧乃北方遐遠之地, 而且頃緣失火, 官府蕭然, 財穀蕩盡, 名雖巨鎭, 實爲殘敝。又況不得挈妻子而赴, 單身遠莅, 守任三年, 亦云艱辛矣。” 其詐病欺君, 正不外是。若使拱除近道監司</p>

다. 만약 이공(李拱)으로 하여금 가까운 도(道)의 감사직(監司職)에 제수하였다면 그가 사양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결단코 압니다. 전자에 충청도 감사(忠淸道監司)에 제수되었을 때에 신 등은 모두 이공이 병이 있어 부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으나, 천연(遷延)15725) 하면서 취임하고자 하였고, 일찍이 병으로 사임하지 아니하다가 병이 중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뒤에야 체임(遞任)시켰는데, 이는 감사는 계급이 높고 벼슬이 좋은 때문입니다. 벼슬의 좋고 나쁨으로 인하여 그 몸의 나아가고 물러남을 하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이공의 간사한 마음은 신 등이 함께 밝게 보는 바일 뿐만 아니라, 만조(滿朝)의 신하가 모두 듣고 보는 바인데도 승정원(承政院)에서는 또한 그의 말에 따라서 함부로 아뢰니, 이는 이공을 편들고 위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고(推考)하여 죄주어야 합니다. 전하께서 무릇 사대부(士大夫)를 대우함에 있어 신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시는데, 이공에게는 반드시 계급이 높은 재상(宰相)이라고 하시어 대우하시기를 몇 등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공은 그 몸을 스스로 재상으로서의 체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정(市井) 사람의 교사(巧詐)한 마음으로 마음을 쓰니, 죄가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하의 죄는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공성(孔聖)15726) 이 이르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에는 속이지 말고 범(犯)15727) 하라.’고 하였으니, 속이는 신하는 쓸 만한 때가 없는 것인데, 하필 경직(京職)으로 바꾸어서 그의 간사한 죄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빌건대 명백하게 간사함을 밝혀서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 소인(小人)으로 하여금 간사함을 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병은 기약할 수 없고 증세가 경각(頃刻) 사이에 있는 것인데, 이공의 부종(浮腫)의 증상은 내가 보지 못한 바이나 승정원의 아뢰기를 듣고는 그렇게 여겼고, 또 재상(宰相)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이공이 진실로

之任，決知其不辭。 向者授忠淸監司時，臣等悉聞‘拱有病難赴，’然遷延欲就，曾不辭病，至于病革，不獲運身，然後乃遞者，以監司秩高，而職華也。 因職事之美惡，爲其身之去就，人臣事君之義，固如是乎？ 拱之奸詐之心，非特臣等所共灼見，滿朝之臣，皆所耳目者。 政院亦從而冒啓，則是右拱誣上也。 竝推而罪之，可也。 殿下凡待士大夫，信任而勿疑。 其於拱，則必以爲：“秩高宰相，”待之加數等矣。 拱也不以宰相，自待其身，以市井巧詐之心爲心，罪固不容貫矣。 人臣之罪，莫大於欺罔。 孔聖云：“事君勿欺也，而犯之。” 欺罔之臣，無時可用也，何必換授京職，以墮於奸術乎？ 乞明以照奸，痛治其罪，使小人，不得售奸。

御書曰：

病不可期，證在頃刻。 拱之浮腫之狀，予所不見聞，政院之啓，乃以爲然，又信宰相，故不以爲疑。 若拱實無病，而憚於遠赴，僞辭欺君，罪莫大焉。 政院庇護詐僞，附下罔上，予知而不

	병이 없는데, 먼 지방에 부임하는 것을 꺼려서 거짓말로 임금을 속였다면 죄가 더할 수 없이 크다. 승정원에서 비호(庇護)하여 속이고 아래에 붙어서 위를 속였는데, 내가 알면서 징계하지 아니하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으며, 또 어찌 사람을 바로잡겠는가? 경 등은 만약 믿을 수 없는 일로써 대신(大臣)과 승정원에 죄주기를 청하였다면 책임이 돌아가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懲，其何以爲國，其何以正人？卿等若以不信之事，而請罪大臣與政院，則責有所歸。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월 4일 (정해)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15731) 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고 또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丁亥/上詣泰慶殿，上食，又行晝茶禮。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월 5일 (무자)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일향(日向)·대우(大隅)·살마(薩摩)·삼주(三州) 태수(太守) 입구(立久), 살주(薩州) 이집원(伊集院) 우진(寓鎭) 우주(隅州) 태수(太守) 등희(藤熙),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울랑합(兀良哈) 중추(中樞) 유상동개(柳尙同介) 등 일곱 사람이 내조(來朝)하였다.	○戊子/日本國日向·大隅·薩摩三州大守立久、薩州伊集院寓鎭隅州太守藤熙、對馬州太守宗貞國遣人，來獻土宜。兀良哈中樞柳尙同介等七人來朝。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월 5일 (무자) 3번째기사	이보다 앞서 병조 참지(兵曹參知) 최호원(崔灝元)이 여제 헌관(厲祭獻官)으로서 극성(棘城)으로부터 돌아와서 아홉 가지 일을 진언(陳言)하기를, 1. 《오례의(五禮儀)》 주(註)에, 성황(城隍) 1위(位)에는 포해(脯醢)와 실과가 있고, 무사귀신위(無祀鬼神位)에는 밥·국 두 그릇, 양(羊)·돼지 두 그릇[俎]으로 되었습니다. 전망(戰亡)한 장사(將士)의 넋이 성황의 신(神)보다 더 높고 귀한 이가 없지 아니할 것인데, 전물(奠物)은 풍족함과 간소함이 두드러지게 다르니, 이는 아마 소홀한 듯합니다. 본도(本道)는 노루·토끼·실과가 많으니, 청컨대 ‘무사귀신위’에 포[脯]·해(醢) 각각 한 그릇과 실과 두 그릇을 더하게 하소서. 1. 황주(黃州)는 사객(使客)이 모이는 곳인데, 문화(文化)는 잔폐(殘弊)한 고을로서 물산(物産)이 많지 아니하여, 봄·가을 제사의 전물(奠物)을 이바지하기가	○先是，兵曹參知崔灝元以厲祭獻官，自棘城還，陳言九事。“一，《五禮儀》註，城隍一位，有脯、醢、實果，無祀鬼神位，飯、羹二器，羊、豕二俎。戰亡將士之魂，不無尊貴，過城隍之神，而奠物豐簡迥異，似乎褻慢。本道多獐、兔、實果，請無祀鬼神位，加脯、醢各一器，實果二器。一，黃州使客輳集之地，文化殘敝之邑，物產不多，春、秋祭奠物，難於供辦。請分定隣近諸邑。一，教書內有牲、幣

	<p>어려우니, 청컨대 가까운 여러 이웃 고을에 나누어 정하게 하소서.</p> <p>1. 교서(敎書) 안에는, ‘생폐 불결(牲幣不潔)’이란 네 글자가 있는데, 《오례의》 주를 상고하건대 실은 폐백(幣帛)이 없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주(州)에서 항상 행하는 여제(厲祭)에는 향축(香祝)과 폐백이 없는 것이 예(例)입니다. 그밖에 향축(香祝)을 내리는 다른 악독(岳瀆)·산천(山川)에는 모두 폐백이 있으며, 성황(城隍)도 산신의 유(類)이므로 특별히 향축을 내리는데, 별제(別祭) 때에만 폐백이 없으니, 이치에 온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오례의》 주를 상고하여 고쳐 정하소서.</p> <p>1. 황해도는 악병(惡病)이 있는데, 북도(北道)는 봉산(鳳山)·황주(黃州), 남도(南道)는 문화(文化)·풍천(豐川)이 더욱 심하며 그 사이에 안악(安岳)·신천(信川)은 이 병이 없습니다. 신이 가만히 산천 형세를 살피건대, 안악·신천은 모두 토산(土山)으로서 형세가 단정하고 두터우며, 지룡(支壠)15732) 이 병 두르고 산천이 둘러쌓였으니 악질이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나, 황주와 봉산은 석산(石山)이 높게 솟아서 모두 염정(廉貞)·독화(獨火)의 형상이며, 지룡(支壠)이 나누어지고 수파(水破)15733) 가 거두지 아니하여 모두 귀겁(鬼劫)의 모양이므로, 산천에 독기가 없을 수 없어 질병과 여귀가 생김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높고 물이 아름다워서 길(吉)하고, 흉한 그 반응이 가장 빠릅니다. 도선(道詵)이 삼천 비보(三千裨補)15734) 를 설치하고, 또 경축진양법(經祝鎮禳法)15735) 이 있었는데, 현재 비보(裨補)한 곳의 절이나 탑, 그리고 못과 숲을 거의 다 허물어뜨려서 없어졌으니, 산천의 독기가 흘러 모여서 병이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신은 그옥이 의심하건대 악질이 유행하는 것은 비록 전쟁에 죽은 외로운 녀의 억울함이 맺힌 까닭이라고 하나, 또한 산천의 독기가 흘러 모여서 화(禍)를 빚은 소치로 그러한 것이 아난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청컨대 도선(道詵)의 산천 비보(山川裨補)하는 글에 의거하여 진양(鎮禳)15736) 하는 법을 거듭 밝히소서.</p>	<p>不潔四字，考《五禮儀》註，實無幣帛。臣竊念，州常行厲祭，則無香祝、幣帛，例也。他餘降香祝岳瀆、山川，皆有幣帛，而城隍亦山神之類也，特降香祝，別祭時，獨無幣帛，於理未穩。請考《五禮儀》註，改詳定。一，黃海道惡病，北道則鳳山、黃州，南道則文化、豐川爲甚。其間安岳、信川，無此病。臣竊審山川形勢，安岳、信川，類皆土山，形勢端厚，支壠盤旋，山川回抱，惡疾不作，宜矣。黃州、鳳山，則石山嵯峨，皆廉貞、獨火之象，支壠分擊，水破不收，皆鬼劫之形，山川不無毒氣，爲疾爲厲，此其宜也。我國，山高水麗，爲吉爲凶，其應最急。道詵設三千裨補，又有經祝鎮禳之法，今也裨補之處，寺社、塔表、池藪，毀撤殆盡，山川毒氣，注爲疾厲，亦不可知也。臣竊疑，惡病流行，雖云：‘戰亡孤魂冤結之所使，’亦莫非山川毒氣，流注釀禍之致然也。請據道詵山川裨補之書，申明鎮禳。一，黃州城隍堂，隘窄不潔，褻慢太甚。請令修葺牆屋。一，臣按《皇極經世書》，‘乖戾之氣，山應之，’</p>
--	---	---

	<p>1. 황주(黃州)의 성황당(城隍堂)은 비좁고 불결하여 소홀함이 매우 심하니, 청컨대 담장과 집을 수리하게 하소서.</p> <p>1. 신이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상고하건대, 괴려(乖戾)한 기운이 산에 응하면 악한 물건이 나고, 사람에게 응하면 간혹(奸譎)이 난다고 하였는데, 지금 황해도·평안도에 악한 물건이 행하고 있으니, 괴려한 기운이 없지 아니합니다. 도둑이 일어나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해치는 자가 있고, 흉악한 짐승이 많이 날뛰어 집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잡아 먹는 것도 있으니, 이는 작은 변고가 아닙니다. 신은 청컨대 한 용맹한 장수에게 명하여 군졸을 거느리고 가서 낮에는 호랑이를 잡고 밤에는 도둑을 잡게 하여 백성의 해(害)를 덜어 주도록 하소서.</p> <p>1. 황해도의 악질(惡疾)이 평안도에 흘러 들어와서 중화군(中和郡) 일대에 사람이 죽어서 거의 없어졌으니, 청컨대 중화군 지역에도 여제(厲祭)를 마련하게 하소서.</p> <p>1. 황해도와 평안도 백성은 부방(赴防)과 물건 실어나르고 사람을 호송하기에 시달려서 부실(富實)한 자가 적고 빈궁한 자가 많으며, 죽은 사람은 대개 장사하지 못하였는데, 신축년(15737)·임인년(15738)에는 연달아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자가 잇대어 생겼으며, 대다수가 구령을 메워서 뼈가 모래 자갈에 드러 났습니다. 사람의 뼈를 덮고 묻는 것은 월령(月令) 15739)에 실려 있는 어진 정치의 하나이니, 청컨대 여러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아내가 있는 중을 뽑아서 오작(件作) 15740)의 역(役)을 정하여 춘추로 거두어 묻게 하고, 또 행실이 있는 승도(僧徒)로 하여금 수륙재(水陸齋)를 베풀기를 권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냇을 위로하소서.</p> <p>1. 경기(京畿)와 황해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역로(驛路)가 조잔(彫殘)하고, 마필(馬匹)이 피곤하여 정해진 수가 모자라는데, 만약 중국 사신의 행차가 있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청컨대 따로 조신(朝臣)을 보내어 점고(點考)</p>	<p>則惡物生焉；人應之，則奸譎生焉。’ 今也黃海、平安，惡物之行，不無乖戾之氣。盜賊興行，縱火害人者，有之；惡獸繁多，毀屋食人者，亦有之。此非細故。臣請命一勇將，領軍卒以遣，晝則捉虎，夜則捕賊，以除民害。一，黃海惡病，流入平安，中和一郡，死亡殆盡。請中和地面，亦設厲祭。一，黃海、平安之民，困於赴防、騎載、護送，富實者少，貧窮者多。死者類皆不葬，加以辛丑、壬寅，連年凶險，餓殍相望，多填溝壑，骨曝沙磧。掩骼埋胔，《月令》所載，仁政之一端。請令諸邑守令，抄有妻僧人，定件作之役，春秋拾(理)[埋]，又令有行僧徒，勸設水陸，以慰飢渴之魂。一，京畿、黃海道，連年凶險，驛路彫殘，馬匹疲困，不盈額數。脫有天使之行，似難支當。請別遣朝臣，點考啓聞，後蘇復之策，商議措置。”至是，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議：“第一條，祀典、祭品，既已詳定，豈可加減，以瀆祀典哉？第二條，(鄭)[奠]物祀典已定，豈可更改，移定他邑？第三條，幣帛有無，更考禮文施行。第四條，</p>
--	--	---

	<p>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상의하여 조치하소서.”</p> <p>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p> <p>“제1조는 《사전(祀典)》 15741) 의 제품(祭品)이 이미 상세히 정해져 있는데, 어찌 보태거나 덜어서 《사전》을 모독하겠습니까? 제2조의 전물(奠物)은 《사전》에 이미 정하였는데, 어찌 다시 고쳐서 다른 고을에 옮겨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3조의 폐백(幣帛)이 있고 없음은 다시 예문(禮文)을 상고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제4조 풍수설(風水說)은 신이 알지 못하나, 황해도 악병(惡病)의 상태가 어찌 풍수의 까닭으로써 그러하겠습니까? 이는 바로 괴탄(怪誕)한 말이므로 족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제5조의 성황(城隍)은 그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다시 수정(修整)을 가하게 할 것입니다. 제6조는 오활(迂闊) 15742) 한 듯합니다. 제7조의 중화(中和) 지방에 여제(厲祭)를 설치하는 것은 이치에 그럴듯하나, 황해도에 악병이 처음 발생한 뒤에 해마다 향축(香祝)을 내려 기도하였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니, 여제를 실시하라는 말도 거리가 먼 듯합니다. 제8조의 사람의 뼈를 덮어 묻는 것은 이미 국령(國令)이 있으니, 거듭 밝혀서 거행할 것입니다. 제9조는 조관(朝官)을 보내어 심검(審檢)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최호원(崔灝元)의 단자(單子)는 불경(不經) 15743) 한 말이 많으니, 족히 취신할 것이 못되나, 혜조(該曹)에 내려서 적당한 여부를 마감(磨勘)하게 하소서.”</p> <p>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최호원의 아뢰 바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마감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p>	<p>風水之說， 臣未知， 然黃海道惡病之狀， 豈以風水而然哉？ 是乃怪誕之說， 不足信也。 第五條， 城隍， 令其道監司， 更加修整。 第六條， 似乎迂闊。 第七條， 中和地面， 設厲祭， 似乎理然， 然黃海道惡病始發之後， 歲降香祝祈禱， 未見其效， 設厲祭之說， 亦似迂遠。 第八條， 掩骼埋胔， 已有國令， 申明舉行。 第九條， 遣朝官審檢爲便。” 洪應議：“灝元單(字) [子]， 語多不經， 不足取信。 然下該曹， 便否磨勘。” 韓明澮、沈澮、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議：“灝元所啓令該司， 磨勘以啓， 後更議。” 御書曰：</p> <p>下該曹， 曲盡磨鍊， 亦有不可行、不可信之事。</p>
--	---	---

	<p>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해조(亥曹)에 내려서 곡진(曲盡)하게 마련(磨鍊)하게 하였으나, 역시 행할 수 없는 것과 믿을 수 없는 일이 있다.” 하였다.</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월 6일 (기축) 1번째기사</p>	<p>올량합(兀良哈) 첨지(僉知) 어부개(於夫介) 등 일곱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己丑/兀良哈僉知於夫介等七人, 來獻土宜。</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월 6일 (기축) 2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처량(安處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전일 상소하여 풍속의 폐단과 최호원(崔灝元)의 말이 허탄하고 망령되어 병조(兵曹)에 마땅치 못하다는 것을 진술하였는데, 지금까지 명(命)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즈음 경연(經筵)에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고는, 곧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의 상소한 말이 옳다. 대저 풍속의 아름답고 악함은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실행하여 통솔하는 데 달린 것이다. 내가 덕이 없어 몸소 술선하여 지도할 수 없었으니, 풍속이 허물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다만 그대들의 상소에 풍속이 임금에게 근본한다는 것만 개론(概論)하고, 나의 어떤 일과 어떤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으로서의 요(堯)·순(舜)이 아니면 누가 능히 스스로 그 허물을 알겠는가? 내가 불러 묻는 의도는 그러한 것 때문이다.” 하니, 안처량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풍속의 폐단에 대한 말을 구하시므로, 신 등이 널리 의논하여 위로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잘못된 일이 있</p>	<p>○弘文館副提學安處良等來啓曰: “臣等前日上疏, 陳風俗之弊及崔灝元語涉誕妄不宜兵曹, 至今未得聞命。 傳曰: “近因不御經筵, 未諭予意耳。” 俄而引見曰: “爾等之疏, 是矣。 大抵風俗美惡, 在上之人, 躬行以率之耳。 予以否德, 不能躬率以導之, 無惑乎風俗之陵夷也。 但爾等之疏, 概論風俗之本於人主, 而不指摘予某事、某行之失, 人非堯、舜, 誰能自知其過? 予之延訪, 爲此爾。” 處良啓曰: “上曾以風俗之弊求言, 故臣等博議, 仰瀆天聰。 殿下如有過舉, 不待下問, 在所盡言, 安有一慮隱默之理?” 上曰: “近者灝元, 使於外方, 多陳弊事, 予欲試可以觀心術之如何。 凡人邪正, 於立談間, 所難悉知, 必措諸事業, 而後可知。 異端、吾道, 勢不相容。 異端</p>

	<p>있으면 하문(下問)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할 말을 다하였을 것인데, 어찌 한 생각인들 숨기고 침묵할 이치가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요사이 최호원이 외방(外方)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다가 폐단이 있는 일을 많이 진술하였는데, 내가 시험해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한다. 무릇 사람의 간사하고 정직한 것은 말하는 그 즉시에는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 바이므로, 반드시 어떤 일에 시험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 이단(異端)과 오도(吾道)15744)는 형편이 서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단이 없어진 뒤에야 오도가 시행될 수 있는데, 이단이 만약 성하면 아무리 오도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최호원이 아뢰바 비보(裨補)·수륙재(水陸齋) 등의 일은 비록 선왕(先王)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때의 일일 뿐이며, 만세에 떳떳하게 행할 법은 아니니, 진실로 허탄(虛誕)하고 떳떳하지 못한 말이며, 우리 도(道)에 해로운 바가 크고 따라서 최호원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내가 관직을 파하고자 하나 다만 사람을 올리고 물리침을 가볍게 할 수가 없어서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이 하나도 말하는 이가 없었는데 이제 그대들이 최호원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배척하니, 최호원의 간사함을 말할 수 있는가?”</p> <p>하니, 안처량 등이 대답하기를,</p> <p>“최호원이 비록 문과(文科) 출신이기는 하나, 본래 방술(方術)15745)을 숭상하므로 그 때문에 사류(士類)에 끼이지 못하였으며, 선왕조(先王朝)에서도 술사(術士)로 대접하고 사대부(士大夫)로 대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육조(六曹)는 모든 관사(官司)의 장(長)이고, 이조(吏曹)·병조(兵曹)는 바로 정조(政曹)15746)이므로, 그 선임(選任)이 더욱 중하니, 최호원으로서 마땅히 있을 바가 못됩니다.”</p> <p>하였다. 전한(典翰) 정성근(鄭誠謹)이 아뢰기를,</p>	<p>熄，然後吾道可行，異端若熾，則雖欲吾道之行，不可得也。今灑元所啓裨補、水陸等事，雖曰：‘先王之所行，’然一時之事，非萬世常行之典，實虛誕不經之說，於吾道，大有所害，而灑元心術之不正，卜此可知矣。予欲罷官，第以人物進退，不可輕，欲廣議大臣，以處之。大臣一無言者，而今爾等以灑元，斥爲姦人，灑元之姦，可得言歟？”處良等對曰：“灑元雖出身文科，然素尙方術，以是士類不齒，在先王朝，亦以術士待之，而不以士大夫遇之也。六曹，百司之長，而吏、兵曹，乃政曹也，其選尤重，非灑元所當居也。”典翰鄭誠謹曰：“灑元，心術不正，自以術士處己，非特士林嗤之，雖挾冊之儒，皆知其不正。今聖上高明，洞照邪慝，不得售。若一售其計，則繼此爲姦者，乃以怪誕之說，爭欲試之，其害可勝(導) [道] 哉。”上曰：“水陸等事，非經常之道。今灑元所言道詆塔廟之事，不經之甚者，而不可陳於君前者也。舉此觀之，則心術之不正，可知矣。前日除授時，予問於銓曹，而銓曹何不言不可乎？臺諫亦何不</p>
--	--	---

<p>“최호원의 심술이 바르지 못하여 스스로 술사(術士)로써 처신하니, 사림(士林)에서 비웃을 뿐만 아니라, 비록 책을 끼고 다니는 보통 선비일지라도 모두 그 바르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상께서는 높고 밝으셔서 환하게 비추어 보시므로, 간사함을 행하지 못하는데, 만약 한 번 그 꾀가 쓰여지면 잇달아 간사한 자가 괴탄(怪誕)한 말로 다투어 시험하고자 할 것이니, 그 해(害)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수륙재(水陸齋) 등의 일은 바르고 몇몇한 도(道)가 아니며, 이제 최호원이 말한 도선(道詵) 탐묘(塔廟)의 일은 불경(不經)함이 심한 것으로서 임금 앞에 아될 수 없는 것인데도 <거리낌 없이 말했으니,> 이런 일로 보건대, 심술이 바르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전일에 벼슬을 제수할 때에 내가 전조(銓曹)15747) 에 물었는데, 전조에서는 어찌하여 불가함을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대간(臺諫)에서도 어찌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는가?”</p> <p>하니,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이 대답하기를,</p> <p>“최호원은 드러난 악행(惡行)이 없으니, 대간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 그러한 때문인가 합니다. 최호원이 술법(術法)을 숭상하는데, 지금 정조(政曹)에 있으니, 물망에 맞지 아니합니다.”</p> <p>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안침(安琛)이 아뢰기를,</p> <p>“최호원은 술사(術士)이므로 사류(士類)에서 배척하는데, 국가에서도 마땅히 술사로 대접해야지 정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세조께서 안효례(安孝禮)를 부를 경우는 최호원이 함께 나와서 대답한 말은 우스갯말이었으므로 선왕조(先王朝)에서도 사류(士類)로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p> <p>하고, 신종호(申從濩)는 아뢰기를,</p> <p>“최호원의 하는 바는 모두 좌도(左道)15748) 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言乎?” 左承旨成健對曰: “灑元無顯顯惡行, 臺諫之 [不] 言, 疑以此耳。灑元尙術法, 今爲政曹, 未副物望也。” 左副承旨安琛啓曰: “灑元術士, 士類排斥, 國家亦當以術士待之, 不可用於政曹也。世祖若召安孝禮, 則灑元竝進, 對說諛諧, 先王朝亦不以士類待之也。” 校理申從濩啓曰: “灑元所爲, 皆是左道。” 上曰: “以灑元所啓觀之, 心之不正, 可知。其改差。且如此之事, 弘文館言之, 而宰相、臺諫, 一無言之者, 深有憾焉。大抵若非聖人, 自知其過者, 鮮矣。予之所失, 宰相、臺諫, 知無不言可也。弘文館既知灑元之事, 則臺諫其獨不聞乎? 君而必知其臣之心, 臣而必知其君之意, 君臣情志交孚, 則三皇之治, 猶可想望矣。今也予既不德, 宰相、臺諫, 又不糾愆, 何能治道之有成乎? 雖以言語, 欲行三皇之治, 其能致三皇之治乎?” 右副承旨李世佑啓曰: “方今風俗頹敗。臣聞, 典籍權灑, 弄誘其父, 數其兄順罪奪嫡。其父死後, 曾不寢苦守殯, 而退處京家, 排斥其兄, 傷敗彝倫, 莫甚於此。灑, 文臣也, 而所</p>
--	---

<p>“최호원의 아된 바를 보건대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차(改差)15749) 하라. 그리고 이같은 일을 홍문관에서는 말하는데, 재상(宰相)과 대간(臺諫)은 하나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대저 성인(聖人)이 아니면 그 허물을 스스로 아는 자가 드문데, 나의 실수한 바를 재상과 대간이 알면 말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한다. 홍문관에서는 이미 최호원의 일을 아는데, 대간만 알지 못하는가? 임금은 반드시 그 신하의 마음을 알고, 신하는 반드시 임금의 뜻을 알아서 임금과 신하가 마음과 뜻이 서로 합하면 삼황(三皇)15750)의 다스림을 오히려 바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내가 부덕(不德)하여 재상과 대간에서도 허물을 규탄하지 아니하니, 어찌 능히 치도(治道)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말로써 삼황의 정치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삼황의 다스림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바야흐로 지금 풍속이 퇴패(頹敗)하였는데, 신이 듣건대 전적(典籍) 권호(權灝)는 그 아버지를 농락해 피어서 그 형 권순(權順)의 죄를 나무라게 하여 탈적(奪嫡)15751) 하였고,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일찍이 거적자리에 잠자면서 빈소(殯所)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서울 집에 물러가 있으면서 그 형을 배척하였으니, 이륜(彝倫)15752)을 상패(傷敗)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권호는 문신(文臣)으로서 행하는 바가 저와 같은데 하물며 무지한 사람이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효(不孝)하고, 불목(不睦)한 사람을 보건대, 모두 토지와 종으로 말미암아 소송하여 천륜(天倫)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데 이른다. 나는 생각하건대, 만약 토지와 종이 아니면 반드시 이 폐단이 없을까 한다.”</p> <p>하고, 인하여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권호를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p>	<p>行尙如彼，況無知之人乎？”上曰：“予觀不孝、不睦之人，皆由田、民而爭訟，以至汚壞天倫。予意‘若非田、民，則必無此弊矣。’”仍謂承旨曰：“灝，令義禁府鞫之。”誠謹啓曰：“鄉射、鄉飲酒之禮，雖若迂闊，亦正風俗之一端也。國家已令諸邑行之，著在令甲，而一無行之者。臣聞‘金宗直曾爲善山府使，擇鄉中有行者，許參鄉射、鄉飲酒之禮，其不得與選者，感愧之，多懷勸勵之志。’請申明舉行。留鄉所，國家慮其弊生，革之已久，今雖不復，但擇鄉中有德望者二人，糾察一鄉，則風俗自正矣。”上曰：“鄉射、鄉飲酒之禮，近因國喪，未得舉行，喪畢後，申明舉行，可也。留鄉所，則國家已革，且於新校《大典》，不錄，何必復立乎？”右副承旨李世佑及誠謹啓曰：“學校，風化之源，而邇來陵夷不振。教授、訓導，不以教養爲事，退處其家，儒生亦怠於所業，日事游戲，監司守令，亦不檢察，甚不可。”世佑又啓曰：“臣嘗爲慶尚道都事及從事官，見慶州教授河荊山，教誨不怠，隣邑儒生，負笈來學者，甚多。</p>
--	--

	<p>하였다. 정성근이 아뢰기를, “향사례(鄉射禮)와 향음주례(鄉飲酒禮)는 비록 오활(迂闊)한 것이나, 또한 풍속을 바로잡는 한 실마리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여러 고을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영갑(令甲)15753)에 나타나 있으나 하나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김종직(金宗直)이 일찍이 선산 부사(善山府使)로 있으면서 향중(鄉中)에 행실이 있는 자를 골라서 향사례와 향음주례에 참여하게 하니, 그 선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모두 부끄러워하여 권장하는 뜻을 품은 자가 많았다고 하니, 청컨대 이 법을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유향소(留鄉所)15754)는 국가에서 폐단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여 혁파한 지 이미 오래인데, 이제 비록 회복하지는 않더라도 다만 향중에 덕망이 있는 한두 사람을 골라서 온 고을을 규찰(糾察)하게 하면 풍속이 저절로 바를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근래에 국상(國喪)으로 인하여 거행하지 못하였으나, 상을 마치면 법을 다시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유향소는 국가에서 이미 없었고, 또 새로 교정한 《대전(大典)》에도 기록하지 아니하였는데, 하필 다시 세울 것인가?”</p> <p>하였다. 우부승지 이세우와 정성근이 아뢰기를,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인데, 근래에 해이해져서 떨치지 못합니다. 교수와 훈도(訓導)는 교양을 일삼지 아니하고 그 집에 물러가 있고, 유생(儒生)도 학업에는 게을리하고 날마다 놀이와 희롱을 일삼으며, 감사(監司)와 수령도 검찰(檢察)하지 아니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p> <p>하고, 이세우가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 및 종사관(從事官)으로 있으면서 보니, 경주 교수(慶州教授) 하형산(河荊山)은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유생이 책을 지고 와서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진주(晉州)는 예전에 인재</p>	<p>晉州, 古稱: ‘人才之淵(數) [藪],’ 臣與盧思愼, 行到晉州, 招儒生, 令製述, 能製者少。 此無他, 由教養失其道也。” 上曰: “其諭諸道監司, 嚴加考察。”</p>
--	--	---

	<p>(人才)의 소굴이라고 일컬었는데, 신이 노사신(盧思愼)과 더불어 진주에 이르러 유생을 불러 글을 짓게 하였는데, 지을 수 있는 자가 적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교양이 잘못된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도 감사(諸道監司)에게 유지(諭示)하여 엄히 고찰(考察)을 가하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7일 (경인) 2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준(成俊)이 와서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지난해의 공채(公債)를 일시에 징납(徵納)하면 가난한 백성이 땅과 집을 다 팔아서 갚더라도 오히려 모자라므로 점점 흩어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일찍이 목은 빚을 감면해 준 것은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도리어 이같이 되면 인정(仁政)을 베푸는 정치에 있어서 어찌되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지금 비록 독촉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춘분(春分)이 이미 가까워서 백성들이 바야흐로 조(糶)15759)를 얻으려고 하는 때이니, 반드시 갚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해마다 점차로 거두어들이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지금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였다가 뒷날에 능히 다 받아들이게 하겠는가?”</p> <p>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진구(賑救)할 때인데, 도리어 독촉해 바치게 하면 전일 감면해 준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난한 백성이 가산(家産)을 다 팔더라도 다 갚지 못하여 간간히 도망해 흩어지면 일족(一族)에게 징수하는데, 일족도 지탱하지 못하여 또 따라 도망해 흩어지면 그 때는 어디에 징수하겠습니까? 청컨대 아직 다음해를 기다려서 점차로 다 받아들이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京畿觀察使成俊來啓曰：“本道往年公債，一時徵納，貧民盡賣田宅，以償之，猶不能支，漸至流亡。國家曾蠲宿債，欲濟貧民，而今反如此，於仁政何？臣意：‘今雖督納，春分已近，民方告糶，必不能償。’請年年漸次徵納。”傳曰：“卿今不收納，而後日能令畢納乎？”俊啓曰：“今方賑救之時，反令督納，則前日蠲減之意，安在？貧民盡賣家産，猶不充償，往往逃散，徵於一族，一族不能支，又從而逃散，則當徵於何處乎？請姑待後年，漸次畢納。”傳曰：“今聞卿言，宜勿督徵。然該曹不可不知。其召戶曹堂上與觀察使，同議以啓。”戶曹判書李德良、參判金升卿來啓曰：“十四萬八千餘碩，散在民間，京中國庫虛竭。往年農事稍稔。成俊雖云：‘逃散，’然而時無離散之民。且貧窮者先納，而豪富者不</p>

	<p>“이제 경의 말을 들으니 독촉해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해조(該曹)에서 알지 않을 수 없으니, 호조 당상(戶曹堂上)과 관찰사(觀察使)를 불러서 같이 의논해 아뢰게 하라.”</p> <p>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참판(參判) 김승경(金升卿)이 와서 아뢰기를,</p> <p>“14만 8천여 섬이 민간에 흩어져 있어서 경중(京中)의 국고가 비고 바닥이 났습니다. 지난해 농사가 조금 잘되었습니다. 성준(成俊)은 비록 말하기를, ‘도망해 흩어집니다.’ 하였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이산(離散)한 백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먼저 바쳤으나, 호부(豪富)한 자가 바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데, 만약 지금 점차로 받아들이게 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그대로 독촉해 바치게 하여 과연 가난해서 바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감면해 주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p> <p>하니, 성준이 아뢰기를,</p> <p>“이제 바치지 못한 자는 모두 가산과 전지를 미처 방매하지 못한 것뿐인데, 어찌 부유하면서 바치지 아니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만일 도망해 흩어지면 돌아와 모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p> <p>하였다. 이덕량이 또 아뢰기를,</p> <p>“지난번 수령(守令)이 혹 해유(解由)15760)를 없애고, 부임하기를 특별히 허락하였는데, 이는 군자곡(軍資穀)이 점점 허비되는 데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모자라는 수량을 혹은 관물(官物)로써 충당시키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이 뒤로는 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청컨대 부임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또 향화(向化)한 대호시내(大好時乃)의 아들이 혼인할 때에 관에서 자재(資財)를 주기를 특별히 명하셨는데, 이와 같은 무리가 매우 많습니다. 한 번 그 단서를 열면 반드시 모두 성상의 은혜를 바랄 것인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p>	<p>肯納， 若今漸次徵納， 則民必不納。 請仍督納， 而果有貧不能納者， 蠲減似可。” 俊啓曰：“今之未納者， 率皆家產田地， 未及放賣耳， 安有豪富， 而不納者乎？ 臣意以謂 ‘如其逃散， 則恐難還集’。” 德良又啓曰：“頃者守令， 或除解由， 特許赴任， 非但軍資漸至虛耗， 其虧欠之數， 或以官物充備， 甚有不可。 今後未出解由者， 請勿許赴任。 且向化大好時乃子息成婚時， 特命官給資財， 如此類者， 甚多。 一開其端， 必皆希望上恩， 不可盡從其欲。” 傳曰：“戶曹、觀察使所言各異。 然民惟邦本， 本固邦寧。 與其充廩而民散， 不若損穀而民安。 依俊所啓， 漸次畢納。 且如大好時乃堂上者， 幾人乎？ 必無希望者， 其給之。 無解由者， 可勿許赴任。”</p>
--	--	---

	<p>하니, 전교하기를, “호조와 관찰사의 말한 바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한 것인데, 국고를 채우기 위해 백성을 흠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곡식이 줄더라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성준의 아된 바에 의하여 점차로 다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호시내(大好時乃)와 같은 당상관(堂上官)이 된 자가 몇 사람인가? 반드시 은혜를 바라는 자가 없을 것이니, 주도록 하라. 해유(解由)가 없는 자는 부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월 8일 (신묘) 1번째기사</p>	<p>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글을 내리기를,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므로, 세도(世道)의 낮고 높음이 진실로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니, 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다. 듣건대 근래에 교수와 훈도(訓導)가 된 자는 교양(教養)으로 일삼지 아니하고 관(官)을 비우고 자리를 떠나며, 교생(校生)이 된 자도 학업은 게을리 하고 날마다 놀며 희롱하는 것을 일삼는다고 하니, 이와 같으면서 학교가 일어나고 인재가 배출되기를 바라는 어렵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와 수령이 교육을 여분의 일로 보고서 능히 검거(檢擧)하지 못한 소치이다. 경은 이 뜻을 알고 항상 고찰(考察)을 더하여 스승과 생도로 하여금 각각 업무에 부지런하게 하여 나의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뜻에 부응(副應)하라. 향사례(鄉射禮)와 향음주례(鄉飲酒禮)는 예문(禮文)에 실려 있어서 반포(頒布)한지 이미 오래인데, 행하는 자가 대개 적으니, 또한 매우 옳지 못하다. 상(喪)을 마친 뒤에는 거듭 밝혀서 거행하고 폐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p>	<p>○辛卯/下書諸道觀察使曰： 學校，風化之源，世道之污隆，實關於此，不可不重。聞‘近者爲教授、訓導者，不以教養爲事，而瘵官離任；爲校生者，又怠於所業，日事游戲。’如此，而望學校之興、人才之出，難矣。此無他，監司、守令，視爲餘事，不能檢擧所致。卿知此意，常加考察，使師、生，各勤職業，以副予右文興化之意。鄉射、鄉(飲)酒之禮，載在禮文，頒之已久，而行之者蓋寡，亦甚不可。喪畢後，申明舉行，無置廢閣。</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최호원(崔灝元)이 상소하기를, “신은 학술(學術)이 거칠고 견문(見聞)이 고루(孤陋)하며, 성품이 본디 민첩하</p>	<p>○崔灝元上疏曰：</p>

(成化) 21년) 1월 8일
(신묘) 2번째기사

여 잡서(雜書) 보기를 좋아하였는데, 시종(侍從)의 인연이 되어 세묘(世廟)께 알아주심을 받았으며, 겸하여 술학(術學)15762) 에 정통하도록 신에게 허락하시고, 이어 신에게 여러 글의 수찬(修撰)을 맡기시는 한편 낮에는 날마다 세 번씩 접견하시니, 은혜와 사랑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순지(李純之)에게 명해서 신에게 천문(天文)·역산(曆算)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여 술수(術數)의 일을 모두 신에게 맡겼으며,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신에게 천문 예습(天文隸習)을 맡겼고, 지난해에 당상관(堂上官)에 승직시켜 신에게 관상감(觀象監)에 벼슬하기를 명하여 삼학 취재(三學取才)의 일을 맡게 하였으며, 무릇 음양 술수(陰陽術數)·택지(擇地)·택일(擇日) 등의 일을 일체 모두 고문(顧問)하시므로, 신도 자신의 임무로 여겨서 잠시도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나간 산천의 형세를 모두 살펴보고 다른 날 국가의 쓰임에 대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황해도에 악한 병이 유행함을 진념(軫念)하셔서 글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교서(敎書)를 따로 짓게 하고, 신을 헌관(獻官)으로 정하여 극성(棘城)에 보내서 여제(厲祭)를 행하여 나쁜 병을 없애고 백성을 편히 하기를 바라시니, 신이 향(香)을 받은 뒤로부터 먹어도 입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자리가 편치 못하였습니다. 가면서 산천의 형세를 보고 악병(惡病)의 근원을 찾아보았는데, 아마 산천의 독기가 여신(厲神)과 더불어 서로 부채질한 소치인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도선(道詵)의 글을 상고해 비보지설(裨補之設)을 다시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도선은 식견이 얕은 속사(俗士)의 무리가 아니고 바로 신(神)이 통한 밝고 지혜로운 중입니다. 송도(松都)·한양(漢陽) 두 서울 터를 미리 정하였고, 군현(郡縣)의 산천을 비보(裨補)한 곳은 자못 영험이 있었습니다. 신은 들건대 추부(秋夫)의 술법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진군(眞君)의 부적이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선의 비보설만이 어찌 백성에게 보탬이 없겠습니까? 신의 학술이 본디 요격(擾激) 퀘사(擾激詭邪)15763) 하여 백성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아

臣學術疏荒，聞見孤陋，性本僂儻，喜讀雜書，夤緣侍從，知遇世廟，許臣兼通術學，任臣以諸書修撰，晝日三接，恩眷殊隆。命李純之，教臣以天文曆算之學、術數之事，悉皆委臣。逮我殿下即位之初，差臣以天文(隸) [肄] 習。往年陸堂上官，命臣，仕觀象監，任三學取才之事，凡陰陽、術數、擇地、擇日等事，一皆顧問，臣亦以爲己任，頃刻不忘于懷。凡所經歷山川形勢，罔不審視，以備他日國家之用。恭惟，聖上軫念黃海惡病之行，命詞臣別製敎書，差臣獻官，遣棘城行厲祭，冀除惡病，以安民生，臣自受香之後，食不甘味，寢不安席。行看山川之形勢，咨訪惡病之根源，竊疑山川之毒氣，與厲神，相扇之所致。欲考道詵之書，而申明裨補之說。道詵，非他俗士淺見之流也，乃神通明智之僧也。預定松都、漢陽二京，郡縣、山川裨補之處，頗有靈驗。臣聞‘秋夫之術，可以祛病，眞君之符，可以濟民’，道詵裨補之說，豈獨無益於人民乎？臣之學術，本非擾激詭邪，以惑民生也。只以受命所學，冀展所蘊也。臣意以謂：

	<p>배운 것을 가지고 가슴에 쌓은 바를 퍼려고 한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비로(裨補)를 하면 산천의 독기가 저절로 거두어지고, 여제(厲祭)를 지내면 귀신의 억울함이 또한 사라져서 악병이 지식되고 백성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도선이 비보(裨補)했던 시설이 허물어지고 철거되어 거의 다 하였음을 보고 감히 배운 바로써 단자(單子)를 써서 계달하였는데, 곧 듣건대 홍문관에서 신의 말을 허탄하고 망령스럽다고 탄핵하자, 신의 벼슬을 파면하라고 명하시니, 심장과 간장이 함께 찢어지는 듯하여 몸들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일(天日)15764의 밝음을 다시 보고 어리석은 마음을 만의 하나라도 아뢰게 되겠습니까?</p> <p>신은 그옥이 생각하건대 허물을 보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어짊[仁]을 안다고 하였고, 온전하기를 구하다가 궤방을 당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 용서하는 바인데, 만약 지금 분변하지 아니하면 천년 후에 누가 신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는 신이 성명(聖明)한 조정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역대(歷代)의 훌륭한 시대에도 모두 술수(術數)의 선비[儒]가 있었습니다. 여재(呂才)는 《삼원총록(三元摠錄)》을 편찬하였고, 호순신(胡舜臣)은 《지리별집(地理別集)》을 지었는데, 모두 유신(儒臣)으로서 술업(術業)을 겸임하였으나 당시에 잘못이라고 아니하였고, 후세에 높여서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술수를 쓰지 아니한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만둘 수 없는 것이라면 홍문관의 논박(論駁)은 마땅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국초(國初)에 정승 하운(河崙)은 사문(斯文)15765의 종장(宗匠)15766으로서 나라의 원훈(元勳)이 되었으며, 겸하여 술수학(術數學)에 능통하여 여러 학(學)의 임무를 맡아서 산천의 높고 낮은 데를 오르내리며 답사하여 드디어 한양에 도읍을 정하였고, 숭례문(崇禮門) 밖에 못을 파고 숭인문(崇仁門) 안에 산을 만들었는데, 모두 도선의 비보술(裨補術)을 썼으나 당시에 괴이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후세에도 다른 의논이 없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건대 술수의 말을 역대에서는</p>	<p>‘裨補則山川之毒自收，厲祭則鬼神之冤亦消，庶幾惡病寢息，而人民繁庶矣。今見道說裨補之說，毀撤殆盡，敢以所學，書單(字) [子] 以啓。尋聞‘弘文館以臣言爲誕妄，而彈之，命罷臣職’，心肝俱裂，罔知攸措。何緣復觀天日之明，以達愚衷之萬一？臣竊念觀過則斯知仁矣，求全之毀，仁人所恕，儻今不辨，千載之下，孰知臣心乎？此臣之所以不得不辨於聖明之朝也。歷代盛時，皆有術數之儒。呂才撰《三元摠錄》，胡舜臣述《地理別集》，皆以儒臣，兼任術業，當時不以爲非，而後世宗而師之。若不用術數則已，如不得已，則弘文之論駁，當如何耶？國初政丞河崙，以斯文宗匠，爲國元勳，兼通術數之學，掌諸學之任，陟降山川之高下，遂定都漢陽，鑑池於崇禮門外，造山於崇仁門內，皆用道說裨補之術，當時以不爲怪，後世更無異議。臣愚以謂：‘術數之說，歷代不以爲怪，而今則以爲怪，術數之士，歷代皆不見斥，而今則論駁，’何哉？臣既爲經筵師表之任，而敢言裨補之說，則弘文之論斥，宜矣。聖上既以術數之</p>
--	---	--

	<p>괴이히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괴이히 여기고, 술수의 선비를 역대에서는 모두 배척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논박하니, 무엇 때문입니까? 신이 경연(經筵)의 사표(師表)의 임무를 가졌으면서 감히 비보(裨補)의 말을 하였다면 홍문관의 배척하는 의논이 마땅하나, 성상께서 이미 술수의 임무를 신에게 맡겼는데, 신이 만약 부끄러워하여 하지 아니하면 이는 불충(不忠)이며, 알면서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곧지 못한 것입니다. 신이 본 바의 길흉(吉凶)을 도선의 글에서 질정하려고 한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지극한 정성이지 몸을 위하여 스스로 재주를 과는 피가 아니며, 불교를 숭신(崇信)하는 뜻이 아닙니다. 신과 같은 자는 형창(螢窓)15767)의 끝 재주이고, 초모(草茅)15768)의 천한 몸으로서 지위가 이미 높고 벼슬이 이미 나타났는데, 다시 무엇을 요구하여 스스로 재주를 팔고자 하겠습니까? 다만 뒤에 오는 선비가 신의 배척당함을 들으면 누가 즐겨 낮고 더러운 재주를 배워서 유신(儒臣)의 논박에 맞서려고 하겠습니까? 신은 두렵건대 술수학이 장차 전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끊어질까 염려됩니다. 세조 대왕께서 문신(文臣) 중에 나이가 젊은 무리를 뽑아서 술수의 이름을 나누어 칠학(七學)을 설치하였으나, 마침내 한 사람도 부지런히 배워서 재주를 이룩한 자가 없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모두 영진(榮進)을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만 마음을 삼고 술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때문입니다. 신의 이 글은 복직을 바라는 것이 아니며, 그 재주의 능함을 스스로 자랑함도 아닙니다. 오지기 어리석은 마음속을 드러내어서 신총(宸聰)에 상달하려고 할 따름입니다.”</p> <p>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집정 대신(執政大臣)에게 보이라.” 하였다.</p>	<p>任，委之於臣，臣若恥而不爲，則是不忠也；知而不言，則是不直也。臣以所見之吉凶，欲質道誥之書者，乃爲國救民之至懇也，非爲己自售之謀也，非崇信佛教之意也。如臣者，螢窓末藝，草茅微蹤，位已高矣，職已顯矣，更何所求，而自售乎？但後來之士，聞臣見斥，則誰肯學卑陋之技，以(桃) [挑] 儒臣之論駁乎？臣恐數術之學將不傳，而遂絕矣。世祖大王選文臣年少之輩，分號術數，設爲七學，終無一人勤學成才者。此無他，竝以希求榮進爲心，而恥術業之名也。臣之此書，非希其復職也，非自逞其技能也，不過欲曝愚衷，以達宸聰而已。</p> <p>御書： 示執政大臣。</p>
--	--	---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월 9일 (임진) 1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홍문관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은 모두 못난 재질로서 경악(經握)15769) 에 가까이 모시며 총질(寵秩)15770) 의 넉넉함과 예접(禮接)15771) 의 융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생각하기를 거의 어리석은 마음을 다하여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려고 한 것이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삼가 보건대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어 힘써 다스리기를 구하시자, 조정이 깨끗하고 밝으며 사이(四夷)15772) 가 복종하니, 융평(隆平)15773) 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교화는 허물어지고 풍속은 날마다 야박해져서 점점 구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저 풍속은 나라에 있어서 사람의 원기(元氣)와 같아 한 몸을 주장하는 것인데, 능히 조섭(調攝)하지 못하여 한 번 손상함이 있으면 사지(四肢)와 백체(百體)15774) 가 병들지 아니함이 없어 마침내는 숨이 쉰떡거리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진(秦)나라 풍속은 예의(禮義)와 인의(仁義)를 저버려서 아비에게 호미를 빌려 주고도 덕을 베푼 것처럼 여기고, 어머니가 키나 비를 가져 가면 그 자리서 잔소리를 하여, 사랑하는 아들도 이(利)만 좋아함이 금수(禽獸)와 다를 것이 거의 없었는데, 한 사내가 난(亂)을 일으키자 천하가 흠덩이처럼 허물어져서 2세(世)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서진(西晉)의 세상은 풍속이 음란하고 부끄러워하거나 숭상함이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행신(行身)하는 자는 방탕(放蕩)으로 통(通)함을 삼아 신의(信義)를 적절하게 하는 것을 의협(義俠)이라고 여기며, 벼슬에 오르는 자는 구차스럽게 얻는 것으로 귀함을 삼아 바르게 사는 것을 비루하게 여기다가, 중원(中原)이 분열(分裂)되고 백성이 망가지기에 이르렀으니, 임금이 된 자는 여기에 마음을 써서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습관을 삼가하는데 있을 따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자(赤子)15775) 의 울음소리는 사방(四方)의 다름이 없이 그 소리가 같았으나, 성장함에 미쳐서는 언어가 통하지</p>	<p>○壬辰/先是, 弘文館上疏曰: 臣等俱以庸塞之質, 昵侍經幄, 寵秩之優, 禮接之隆, 夙夜計度, 庶竭愚衷, 以報塞萬一者, 非一日矣。 伏觀聖明在上, 孜孜求治, 朝廷清明, 四夷賓服, 可謂隆平矣。 然教化陵夷, 風俗日漓, 浸浸然入於不可救之地。 夫風俗之於國也, 如人之元氣, 主張一身, 不能調攝, 而一有傷損, 則四肢百體, 無不受病, 卒至於奄奄不振而後已。 是故秦俗遺禮義, 棄仁恩, 借父耰鋤, 慮有德色, 母取箕箒, 立而諱語, 慈子嗜利, 不同禽獸者, 無幾矣。 以致一夫作亂, 天下土崩, 二世而亡。 西晉之世, 風俗淫僻, 恥尚失所, 行身者以放蕩爲通, 而俠節信, 進仕者以苟得爲貴, 而鄙居正, 以致中原剖裂, 生民齟齬, 爲人主者, 可不動念于此, 而思所以救之術乎? 亦在乎謹其習而已。 何者? 赤子之啼, 無有四方, 其聲一也, 及其長也, 言語不通, 飲食不同, 至有老死, 而不相爲者, 無他, 所習異也。 至於古今亦然, 有服古衣冠於今之世, 則莫</p>
---	--	--

	<p>아니하고 음식이 같지 아니하며, 늙어 죽음에 이르러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익힌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금(古今)의 일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옛 의관(衣冠)을 지금 세상에 입는 자가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놀라며 웃지 아니하는 이가 없을 것이며, 지금의 의관을 예전 세상에 입었으면 유사(有司)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의관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습관이 아니된 데에 있을 뿐입니다. 대저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것을 풍(風)이라 이르고, 훈도(薰陶)되어 물들 듯이 젖어가는 것을 화(化)라고 이르며, 함께 어울려 휩쓸리는 것을 유(流)라고 이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속(俗)이라 이르는데, 그 풍화(風化)가 이미 위에서 상실되고 유속(流俗)이 이미 아래에 이루어진 다음에는 비록 밝고 지혜로움이 있을지라도 깨우칠 수 없으며, 강하고 굳셀지라도 견제할 수 없으며, 중한 금과 많은 구슬로 상(賞)줄지라도 권장할 수 없으며, 엄한 형벌과 가혹한 법으로 겁내게 하더라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풍속이 야박해지고 습관이 이미 오래 되었는데, 신 등은 전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한갓, ‘어떤 법은 세울 만하고 어떤 일은 행할 만하다.’고 여기고, 따라서 그 효과를 요구하기를, ‘어떤 법이 세워졌으니, 민풍(民風)을 옮길 수 있고, 어떤 일이 행해지면 습속(習俗)을 바꿀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식으로 풍속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구하면 마침내 반드시 얻을 이치가 없습니다.</p> <p>신 등은 듣건대 정치를 하면서 삼대(三代)15776) 를 본받지 아니하면 모두 구차스러운 도(道)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리(倫理)를 후하게 하고 풍속을 이루는 도는 삼대의 교화를 버리고 어찌하겠습니까? 가만히 보건대 삼대의 정치는 정전법(井田法)을 설치하여 천하 사람이 모두 농사에만 힘을 다하였고, 다른 물건을 보고서 옮겨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수고롭기만 하고 또는 게을러서 간사한 데로 흘러 들어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p>	<p>不指顧而駭笑，服今衣冠於古之世，則亦未免於有司之僇，此非衣冠之有是非也，習與不習而已矣。蓋上行下效謂之風，薰蒸漸漬謂之化，淪胥委靡謂之流，衆心安定謂之俗。及其風、化已失於上，流、俗已成於下，則雖有辨智，不能諭也；強毅不能制也；賞之重金積玉，而不能勸也；威之嚴刑酷法，而不能止也。今之風俗漓漓，積習已久，臣等不知殿下以何術而變之。若徒以某法可立，某事可行也，從而責其效曰：“某法立，則民風可移也，某事行，則習俗可易也，”如此而求移風易俗之效，終無必得之理矣。臣等聞爲治而不法三代，皆苟道矣。然則厚倫成俗之道，捨三代之教，而何以哉？竊觀三代之爲政也，設爲井田之法，天下之人，皆盡力於南畝，不見異物而遷焉。然猶懼其勞且怠，而入於邪僻之中，於是爲之牲牢、酒醴，以養其口體，爲之笙匏、俎豆，以悅其耳目，而教之以禮。故因其嫁娶，而爲婚姻之禮；因其死葬，而爲喪祭之禮；因其飲食群聚，而爲鄉飲、鄉射之禮，使民知尊卑長幼，凡人之大倫也。然猶未也，</p>
--	---	---

이에 생뢰(牲牢)와 주예(酒醴)를 만들어서 그 입과 몸을 기르고, 생포(笙匏)15777)와 조두(俎豆)15778)를 만들어서 그 귀와 눈을 즐겁게 하면서 예(禮)로써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갈 때에는 혼인의 예를 만들었고, 죽고 장사할 적에는 상제(喪祭)의 예를 만들었으며, 그 음식을 먹고 여러 사람의 모임을 가질 적에는 향음주례(鄉飲酒禮)와 향사례(鄉射禮)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 장유(尊卑長幼)와 무릇 사람의 큰 윤리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겨 또 학교를 세워서 강구해 밝히게 하였으므로, 안으로는 왕궁(王宮)과 국도(國都)로부터 아래로는 향당(鄉黨)과 주서(州序)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있지 아니한 데가 없었으며, 천자(天子)의 원자(元子)·적자(嫡子)로부터 공경(公卿)·대부(大夫)·원사(元士)의 적자와 모든 백성의 뛰어난 사람에 이르기까지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현송(絃誦)15779) 하는 가운데 놀게 하는 한편, 진퇴(進退)의 절차를 연습하게 하여 그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 귀와 눈을 가지런히 하며, 그 마음과 뜻을 한결같이 하게 하였습니다. 그 가르치고 기르는 법의 갖추어짐이 이와 같이 지극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모두 그 성품을 잃지 아니하고 그 윤리를 어지럽히지 아니하여, 여항(閭巷) 사이에는 순후(醇厚)한 풍속이 아닌데가 없고, 조정 위에는 예양(禮讓)의 바람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어찌 아버지와 아들이 패역(悖逆)한 행동이 있겠으며, 형과 동생이 작은 이익을 다투거나 상하(上下)가 서로 어지럽고 귀천(貴賤)이 서로 업신여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대(三代)가 세상을 화하고 밝은 지경에 올려 놓은 것으로서 후세에서는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秦)나라 이후로부터 못난 임금에 시대마다 나와서 학교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고 부서(簿書)와 기회(期會)로 나라를 다스리는 선무(先務)로 삼고, 형명(刑名)과 법률로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법이라고 여겼는데, 그 사이에 한(漢)나라 명제(明帝)만이 옹(擁)15780)에 나아가 늙은이에게 절하였고, 당나라 문황(文皇)15781)은 학사(學舍)를 더 넓히고 훈

又爲立學，而講明之。故內自王宮國都，下至鄉黨、術序，莫不有學，而自天子之元子、嫡子，以至公、卿、大夫、元士之嫡子與凡民之俊秀，無人不學，而使之朝夕，優游於絃誦之中，服習乎進退之節，有以固其肌膚，齊其耳目，一其心志，其教養之備，如此其至。故人皆有以不失其性，不亂其倫，閭巷之間，無非醇厚之俗，朝廷之上，無非禮讓之風，安有父子，而有悖逆之行，兄弟而爭錙銖之利，上下相紊，而貴賤相陵者乎？此三代之所以躋世雍熙，非後世之所能及也。自秦以來，庸君代作，視學校爲餘事，以簿書期會爲理國之先務，以刑名法律爲治民之良規。其間獨有明帝，臨雍拜老，文皇增廣學舍，薰陶漸磨，庶幾三代之遺風。而無誠心求道之實，故其治至於永平、貞觀而止矣，無怪乎後世之無善俗也。世之論者，以謂：“風俗自厚而之簿，猶人自少而之老，”嗚呼！何其不思之甚耶？自古及今，同戴一天，同履一地，同賦一性，日月不變，耳目口鼻，亦不變也，風俗何爲不如古哉？善乎，魏徵之言！曰：“五帝、三王不易

	<p>도(薰陶)시키며, 점차로 연마하여 삼대의 유풍(遺風)에 거의 가까왔으나, 성심(誠心)으로 도(道)를 구하는 실행이 없기 때문에 그 다스려짐이 영평(永平)15782) 과 정관(貞觀)15783) 에 이르러 그쳤으니, 후세에 착한 풍속이 없는 것이 괴이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에서 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풍속이 후한 데에서부터 박한 데로 가는 것은 마치 사람이 젊음으로부터 늙음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아아! 어쩌면 그렇게 생각지 아니함이 심합니까? 예로부터 이제까지 한 하늘을 같이 쳐다보고 한 땅을 같이 밟으며 한 성품을 같이 받아서 해와 달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이목 구비(耳目口鼻)도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풍속이라 하여 어찌 예와 같지 아니하겠습니까? 훌륭한 저 위징(魏徵)15784) 말에 이르기를, ‘오제(五帝)·삼왕(三王)은 백성을 바꾸지 아니하여도 감화(感化)되어 제도(帝道)를 행하면 제(帝)가 되고, 왕도(王道)를 행하면 왕(王)이 되었으니, 돌이켜 보건대 행하는 바의 여하에 달렸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아, 제도와 왕도가 어찌 학교 밖에 있겠습니까? 진실로 가르치고 기르는 도를 다하면 삼대의 다스림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여러 성왕(聖王)이 잇달아 일어나서 유학(儒學)을 높이고 도(道)를 존중하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안에는 성균관(成均館)이 있고, 밖에는 주현(州縣)의 학(學)이 있어서, 향사(鄉射)와 향음(鄉飲)에 그 예(禮)가 있고, 혼인과 상제(喪祭)에 그 제도가 있으니, 삼대(三代)의 유풍(遺風)과 방불한데도 풍화(風化)가 이와 같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한갓 그 법만 있고 그 실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스승이라고 이름하는 자는 한갓 강과(講課)15785) 로써 일삼고 교유하는 방법이 없으며, 제자가 된 자는 사장(詞章)을 기송(記誦)하는 습관에 지나지 아니하니, 본체(本體)를 밝히고 실용(實用)에 적합한 학문이 아닙니다. 더구나 군현에는 현송(絃誦)의 소리가 없고 향려(鄉閭)에는 예양(禮讓)의 풍속이 없으며, 사치를 금하는 법이 귀근(貴近)15786) 에게는 행하지 아니하고 음벽(淫僻)한 풍조가</p>	<p>民而化，行帝道而帝，行王道而王，顧所行何如耳。”噫！帝道、王道，豈在於學校之外哉？苟盡教養之道，則其致三代之治，有不難矣。今我國家列聖繼作，崇儒重道，建學立師，內有成均，外有州、縣之學，鄉射、鄉飲之有其禮，婚姻、喪制之有其制，髣髴乎三代之遺風。而風化如此其不美者，豈非徒有其法，而無其實乎？何者？今之號爲人師者，徒以講課爲事，而無教育之術；爲弟子者，不過記誦詞章之習，而非明體適用之學。況郡、縣無絃誦之聲，鄉、閭乏禮讓之俗，奢侈之禁，不行於貴近，淫僻之風，多出於豪右，如此而欲望風俗之美，不亦難乎？是雖有司失於奉行之致，然轉移之機，在乎殿下之一身耳。昔堯之民，比屋可封，桀之民，比屋可誅，豈堯之民皆善，而桀之民，皆惡哉？堯、舜率天下以仁，故民亦從而爲仁；桀、紂率天下以暴，故民亦從而爲暴。是故魏武好法律，而天下貴刑名，魏文好通達，而天下賤守節。下之習尚繫於人主之一身者如此，苟有志於化民，則可不修其身而導之乎？修身有要，亦在乎正其心耳。</p>
--	--	---

호우(豪右)15787) 에게서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으면서 풍속이 아름다와지기를 바라고자 하나, 또한 어렵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비록 유사(有司)가 만들어 행하기를 잘못된 소치라고 하더라도 변화시키는 기틀은 전하의 한 몸에 있습니다. 예전 요제(堯帝)의 백성은 집집마다 봉(封)15788) 할 만하고, 걸왕(桀王)의 백성은 집집마다 형벌할 만하였으니, 이는 어찌 요제의 백성은 모두 착하고 걸왕의 백성은 모두 악하겠습니까? 요(堯)·순(舜)은 천하를 인(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도 따라서 인하였고, 걸(桀)·주(紂)는 사나움으로써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도 따라서 사나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魏)나라 무제(武帝)가 법을 좋아하자 천하가 형명(刑名)을 귀하게 여겼고, 위나라 문제(文帝)가 통달(通達)을 좋아하자 천하가 절의를 지키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아래에서 익히고 숭상함은 임금의 한 몸에 매인 것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뜻이 있으면 그 몸을 닦아서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몸을 닦는 데에는 요지가 있으니, 또한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옛사람은 천하를 다 다스릴 수가 없다고 여겼으므로,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뿐이었고, 한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다스리는 것은 한 몸뿐이었으며, 한 몸을 다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다스리는 바는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몸이 바르게 되는데, 몸이 바르기 때문에 바르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지니는 바는 매우 간략해도 그 쓰는 바는 매우 넓으며, 그 근원은 매우 가까와도 그 흐름은 매우 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서 감화하는 것은 정교(政敎)나 호령(號令)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하늘에 덮이고 땅에 실린 것과 해·달이 비치고 서리·이슬이 내리는 곳에 무릇 혈기(血氣)가 있는 자는 기뻐하며 고무(鼓舞)하고, 감동 분발하여 공경하기를 신명(神明)처럼 하고, 사랑하기를 부모처럼 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이와 같으면 풍속이 어찌하여 바르지 아니하며, 이룬(彝倫)이 어찌하여 밝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한 마음은 공격하는 것이 많으므로,

古之人以天下爲不可勝治，故所治者一國而已；以一國爲不可勝治，故所治者一身而已；以一身爲不可勝治故所治者，一心而已。心正則身正，身正故無所不正。此其所守者甚約，而其施甚博，其源甚近，而其流甚遠。民之觀瞻而化者，有不待政敎、號令之間，而天之所覆，地之所載，日、月所照，霜、露所墜，凡有血氣者，莫不懽欣鼓舞，感動奮發，敬之如神明，愛之如父母。如此則風俗何由而不正，彝倫何由而不明乎？然人主一心，攻之者衆，正之爲難。或以奇技、淫巧，或以神仙禱祀，或以佛氏因果，或以申、韓明法，或以讖緯、術數，以至荒怪不經之術，厥類甚多，莫不投間抵隙，欲售其奸，以圖富貴。人主一爲所中，則其破壞心術，豈云小哉？《王制》：“執左道以亂政，殺；假於鬼神、時日、卜筮以疑衆，殺。”聖人未嘗輕於刑殺，而所以如此云者，誣世惑衆，其罪不容於聖人之世故也。其垂訓之意，至矣。近者崔灝元除兵曹參知，灝元雖出身儒科，素業方技，不容清論，除目一出，有識之士，莫不驚駭焉。灝元

	<p>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기기(奇技)와 음교(淫巧)로써, 혹은 신선(神仙)의 도사(禱祀)15789) 로써, 혹은 불씨(佛氏)의 인과(因果)로써, 혹은 신(申)·한(韓)15790) 의 밝은 법으로써, 혹은 참위 술수(讖緯術數)로써 황당(荒唐)하고 괴이하고 바르지 못한 술법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많은데, 모두 그 사이에 끼어 들어서 그 간사함을 써서 부귀를 도모하고자 하니, 임금이 한 번 거기에 빠져 들면 심술(心術)을 파괴함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왕제(王制)15791) 에, ‘좌도(左道)15792) 를 가지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죽이고, 귀신(鬼神)·시일(時日)·복서(卜筮)를 빙자하여 못사람을 의혹하게 하는 자는 죽인다.’고 하였으니, 성인(聖人)은 일찍이 형벌로 죽이기를 가볍게 아니하는데, 이처럼 말한 것은 세상을 속이고 못사람을 의혹하게 함은 그 죄가 성인의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을 드리운 뜻이 지극합니다.</p> <p>근자에 최호원(崔灝元)에게 병조 참지(兵曹參知)를 제수하였는데, 최호원은 비록 유과(儒科)의 출신이라 하더라도 본래 방기(方技)15793) 를 익혀서 청론(淸論)에 용납되지 못하였는데, 한 번 제목(除目)15794) 이 나오자 유식한 선비가 놀라지 아니하는 이가 없습니다. 최호원은 일찍이 대구 부사(大丘府使)로 있을 적에 지리(地理)의 요망한 말로써 물길을 옮기고자 하여 민전(民田)을 침범해 허물어뜨렸다가 그로 인해 죄를 받았으니 그 사람됨을 알 만합니다. 대저 병조(兵曹)는 육관(六官)15795) 중에서 높은 자리인데, 어찌 이같은 사람을 써서 그 벼슬을 맡게 하겠습니까? 이제 듣건대 최호원이 도선(道洗)의 비보술(裨補術)을 올려서 무릇 고려[前朝]의 탑표(塔表) 등의 물건을 모두 다시 세우려고 하였다 하니, 성명(聖明)한 조정에서 이같은 요망한 말을 먼류(冕旒)15796) 앞에 올리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최호원이 비록 아무리 체통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문자를 대강 아는데, 어찌 이 술법(術法)의 요망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p>	<p>曾爲大丘守，以地理妖說，欲移水勢，侵毀民田，因此坐罪，其爲人物，可知矣。夫兵曹在六官之中，至爲高選，豈可用如此之人，典其職乎？今聞‘灝元又進道洗裨補之術，凡前朝塔表等物，皆欲重建之，’不意聖明之朝，有此妖妄之說，得達於冕旒之前。臣等不勝痛心。灝元雖甚無狀，粗識文字，豈不知此術之妖妄也？此不過售其術，以希寵利之計也。廉、恥道喪，一至此極。管子曰：“禮、義、廉、恥，國之四維，四維不張，國乃滅亡。”康澄曰：“陰、陽不調，不足懼，三辰失行，不足懼，廉、恥道消，深可懼。”此甚言廉、恥之不可無也。昔漢武帝以欒大爲五利將軍，燕、齊怪誕之士，莫不扼腕而起，喜其類之進也。今灝元之妖術，雖不至於欒大，而使之鳴玉珥、貂回翔於華秩之中，則小人之希富貴、利達者，無不欽艷而慕之。苟可以榮進，則將不顧廉、恥，而無所不爲矣。其有累於土風，爲如何哉？臣等職在論思，而用人得失，似非所宜言也。然所關者大，故不能自默，況臺諫當言而不言，若臣等不言，則(雖) [誰] 肯言</p>
--	---	--

	<p>는 그 술법을 팔아서 임금의 은혜를 바라는 꾀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염치(廉恥)의 도(道)가 없어짐이 한결같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관자(管子)15797) 가 이르기를, ‘예의 염치(禮義廉恥)는 나라의 네 버리[維]인데, 네 버리가 찢이지 아니하면 나라는 곧 멸망한다.’고 하였고, 강징(康澄)은 말하기를, ‘음양(陰陽)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족히 두려울 것이 없고, 삼신(三辰)15798) 이 길을 잃은 것도 족히 두려울 것이 없으나, 염치의 도가 사라지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염치가 없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심하게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난대(欒大)를 오리 장군(五利將軍)으로 삼자, 연(燕)나라·제(齊)나라의 괴탄(怪誕)한 학자들이 주먹을 움켜쥐고 일어나서 그 무리가 진출함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최호원의 요술(妖術)이 비록 난대에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슬 방울을 울리며 초피(貂皮)와 귀고리의 꾸밈새를 갖추고서 빛나는 품계 가운데 활개치고 다니면 소인(小人)으로 부귀와 이달(利達)을 바라는 자로 부러워하고 사모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영진(榮進)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장차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선비의 기풍에 누(累)가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신 등은 직무가 논사(論思)에 있으므로, 사람을 쓰는 잘잘못은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닌 듯합니다만, 관계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 말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대간(臺諫)에서는 마땅히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아니하니, 만약 신 등이 말하지 아니하면 누가 즐겨 말하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 등의 말에 굽어 따르셔서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고 요망한 말을 끊어서 맑은 의논에 부응(副應)하시면 또한 풍속을 바로잡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p> <p>“홍문관의 상소가 바른 의논입니다. 최호원의 사람됨이 비록 과거(科擧) 출신</p>	<p>之哉? 伏惟殿下俯從臣等之言, 黜退奸人, 以絕妖說, 以副清議, 亦正風俗之大助也。</p> <p>命示領敦寧以上。 鄭昌孫議: “弘文館之疏, 正論也。 崔灝元之爲人, 雖出身科擧, 學術不正。 嘗爲大丘府使, 欲移水勢, 侵壞民田, 其爲邪僻可知。 若崇獎如此之輩, 則風俗日趨於邪僻矣。 用弘文館之疏, 幸甚。” 韓明澮議: “弘文館上疏, 議論正大。 崔灝元出身儒業, 方術不正。 弘文館論請, 當矣。” 沈澮議: “灝元雖出身文科, 其所業, 則風水、陰陽妖妄之術也。 若稍有儒行, 則豈敢以媚事鬼神, 興復異端之說, 達於聖明乎? 宜置之雜類, 而不宜置之六部。 弘文館之論, 固當。 若從所言, 則君子進, 而小人退矣。” 尹弼商議: “弘文館之疏, 語意激切, 誠爲可嘉。 請留神焉。” 洪應議: “弘文館上書論風俗事, 至爲詳備。 願加留意。 灝元儒者, 自先王時, 實治雜技, 其術自爾。 如此不足, 責以正道, 然不可廢也。” 李克培議: “弘文館之論, 至爲正大。 願留聖心。</p>
--	---	--

	<p>이라 하더라도 학술이 바르지 못하여 일찍이 대구 부사(大丘府使)가 되었을 적에 물길을 옹기려고 하여 백성의 땅을 침범해 허물어뜨렸으니, 그 간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무리를 숭상하고 장려하면, 풍속이 날마다 간사해질 것이니, 홍문관의 상소를 채택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p> <p>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상소는 의논이 정대(正大)합니다. 최호원은 유업(儒業) 출신이나 방술(方術)이 바르지 못하니, 홍문관의 논청(論請)이 마땅합니다.”</p> <p>하며,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최호원이 비록 문과(文科)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종사하는 바는 풍수(風水)·음양(陰陽)의 요망한 학술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선비의 행실이 있다면 어찌 감히 귀신을 섬기고 이단(異端)을 일으키는 말로써 성명께 아뢰겠습니까? 마땅히 잡류(雜類)에 두어야지 육부(六部)15799)에 둘 수 없습니다. 홍문관의 의논이 진실로 마땅하니, 만약 그 말을 따르면 군자(君子)가 나오고 소인(小人)이 물러갈 것입니다.”</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상소는 말이 격절(激切)하여 진실로 가상합니다. 청컨대 마음을 기울이소서.”</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상소에 풍속에 관한 일을 논한 것이 지극히 자세하게 갖추어졌으니, 원하건대 더 유의(留意)를 하소서. 최호원은 유자(儒者)이나 선왕(先王) 때부터 실로 잡기(雜技)를 다스렸습니다. 그 학술이 스스로 이와 같으니 족히 정도(正道)로써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폐할 수도 없습니다.”</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의논이 지극히 정대하니, 원컨대 성상은 마음을 기울이소서. 최호원은 이미 개차(改差)하기를 명하였으니, 다시 더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p>	<p>灑元已命改差，更無加議。” 盧思愼、尹壕議：“弘文館之疏，議論正大。上裁。”</p>
--	---	---

	하고, 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상소가 의논이 정대하니, 정상께서 재량하소서.” 하였다.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10 일(계사)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관서로(關西路) 구주(九州) 도원수(都元帥) 원교직(源教直)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왜(倭) 호군(護軍) 조국차(助國次) 등 두 사람이 내조(來朝)하였다.	○癸巳/日本國關西路九州都元帥源教 直遣人，來獻土宜。 倭護軍助國次等 二人來朝。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11 일(갑오)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甲午/上詣泰慶殿，上食。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11 일(갑오) 2번째기사	올량합(兀良哈) 중추(中樞) 이타아비(李打兒非) 등 여덟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兀良哈中樞李打兒非等八人，來獻土 宜。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14 일(정유)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축전주(筑前州) 냉천진(冷泉津) 등씨(藤氏), 평 좌위문위 신중 (平左衛門尉信重), 안예주(安藝州) 소조천(小早川) 미작수(美作守) 평지평(平持 平),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 월중(越中)수(守) 종성홍(宗盛 弘)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왜(倭) 중추(中樞) 평국충(平國忠) 등 일곱 사람이 내조(來朝)하였다.	○丁酉/日本國筑前州冷泉津藤氏平左 衛門尉信重、安藝州小早川美作守平 持平、對馬州太守宗貞國、越中守宗 盛弘遣人，來獻土宜。 倭中樞平國忠 等七人來朝。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15 일(무술) 2번째기사	올량합(兀良哈) 중추(中樞) 이타아비(李打兒非) 등 여덟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兀良哈中樞李打兒非等八人，來獻土 宜。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남윤종(南潤宗)을 보내어 평안도에 가서 삼위(三衛) 의 야인(野人)을 타이르게 하였는데, 그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遣議政府舍人南潤宗，往平安道，說 諭三衛野人。 其事目曰：“一，到滿浦

<p>(成化) 21년) 1월 16 일(기해) 2번째기사</p>	<p>“만포(滿浦)에 이르러 삼위(三衛)의 회보인(回報人)이 나오는 대로 따라 각각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어 준다.</p> <p>1. 회보인이 나와서 만약 이르기를, ‘언약대로 어김이 없다.’고 하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도독(都督) 등이 성심으로 순응하므로 나라에서 진실로 가상하고 기쁘게 여긴다. 다만 평안도 일대는 경계가 중국과 연하여 사신(使臣)의 왕래가 연달아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너 삼위의 사자(使者)가 만약 자주 나오면 중국에서 알고 반드시 우리 나라가 너희들과 연결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러면 삼위에게도 어찌 이로우미 있겠는가? 이 뒤로 보내는 데에는 혹은 친아들을 보내거나 혹은 드러나게 공(功)이 있는 자를 보내되, 한 해에 한 번을 보내고, 4, 5인에 지나지 말도록 하여 영구히 사이가 좋게 할 계책을 삼을 것이며, 또 영안도(永安道) 후문(後門)으로 나오는 자는 한 해에 세 차례에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한 번 행차에 한두 사람에게 지나지 말게 할 것이다.’라고 한다.</p> <p>1. 서로 볼 때에는 남윤중은 북쪽 벽에 앉고, 회보인(回報人)은 동쪽 벽에 앉는다.</p> <p>1. 회보인에게는 상(賞)이 없을 수 없으니, 하사할 청(靑)·홍(紅) 면포(綿布) 각 35필을 가지고 가서 적당하게 내려 주고, 어염(魚鹽) 등 잡물(雜物)은 그도(道) 관찰사로 하여금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게 한다.</p> <p>1. 진(鎭)에 이르러 서로 볼 때에는 전후대(前後隊)를 거느리되, 갑옷을 입는 것은 없애고, 또한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말 것이다.</p> <p>1. 만포(滿浦) 객관(客館)의 허술한 여부와 방어(防禦)의 상황을 아울러 살펴서 계달한다.”</p>	<p>三衛回報人，隨其出來，各設慰宴。</p> <p>一，回報人出來，若云：‘依約無違，’則當語之曰：‘都督等誠心効順，國家良用嘉悅。但平安一路，境連上國，使介往還，絡繹不絕。汝三衛使者，若頻數出來，上國知之，必謂：「我國連結汝輩」，於三衛，亦豈有利哉？今後所送，或遣親男，或遣顯有功者，歲一遣之，毋過四五人，以爲永好之計。且永安道後門出來者，歲不過三次，每行毋過一二人。’</p> <p>一，相見時，潤宗北壁，回報人東壁。一，回報人不可無賞，賜靑、紅綿布各三十五匹齎去，隨宜賜給，魚鹽雜物，令其道觀察使，優給以送。一，到鎭相見時，率前、後隊，除着甲，亦勿過多。一，滿浦客館虛疎與否及防禦之狀，并審以啓。”</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17</p>	<p>일본국(日本國) 일협주(一峽州) 수호대관(守護代官) 진궁(眞弓) 병부 소보(兵部少輔) 원무(源武),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 좌수나(佐須那) 대관(代官) 석견(石見)수(守) 중국길(宗國吉)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p>	<p>○庚子/日本國(一峽州) [一岐州] 守護代官眞弓兵部少輔源武、對馬州太守宗貞國、佐須那代官石見守宗國吉</p>

일(경자) 1번째기사	을 바치고, 왜(倭) 첨지(僉知) 평송이라(平松而羅) 등 두 사람이 내조(來朝)하였다.	遣人，來獻土宜。倭僉知平松而羅等二人來朝。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18 일(신축)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살주(薩州) 이집원(伊集院) 우진(寓鎭) 우주(隅州) 태수(太守) 등희구(藤熙久), 일기주(一岐州) 대관(代官) 목산십랑(牧山十郎) 원정(源正), 비전주(肥前州) 상송포(上松浦) 압타(鴨打) 원영(源永),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辛丑/日本國薩州伊集院寓鎭隅州太守藤熙久、一岐州代官牧山十郎源正、肥前州上松浦鴨打源永、對馬州太守宗貞國遣人，來獻土宜。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19 일(임인) 1번째기사	사민 안접 순찰사(徙民安接巡察使) 이철건(李鐵堅)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인해 아뢰기를, “평안도·황해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관에서 술을 준다고 잘못 듣고 스스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는데, 신이 본도 감사와 의논하여 적당하게 갖추어 주기는 했습니다만 들어가서 사는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마다 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각각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壬寅/徙民安接巡察使李鐵堅來復命，仍啓曰：“平安、黃海道入居人，誤聞官給釜鼎，不自齋去。臣與本道監司共議，隨宜備給，然入居時未畢，不可而與之也。自今以後，令各齋去，何如?” 傳曰：“可。”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19 일(임인) 2번째기사	전 참판(參判) 김유(金紐)가 고율시(古律詩)를 써서 올리니, 전교하기를, “잘 썼다.” 하고, 인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이보다 앞서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병을 묻게 하고, 쇄금지(灑金紙) 열 폭(幅)으로 써서 올리게 한 때문이었다.	○前參判金紐書古律詩以進，傳曰：“善寫矣。”仍命饋之。前此上遣醫問疾，且以灑金紙十幅，令寫進故也。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0 일(계묘)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常食)하였다.	○癸卯/上詣泰慶殿，上食。
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의서(醫書)를 보니, 무릇 약은 한 가지 병을 주로 다스릴 뿐 여러 가지	○傳于承政院曰：“予見醫書，凡藥，主治一病而已，無兼治諸病之藥。凡

<p>(成化) 21년) 1월 22일(을사) 3번째기사</p>	<p>병을 견해 다스리는 약이 없는데, 대개 사람이 혹은 음식에 상하거나, 혹은 가슴, 혹은 배, 혹은 옆구리가 아파서 여러 증세가 발할 적에 만약 한 가지 약만 먹으면 한 가지 병만 치료할 뿐이다. 만약 사람들 가운데 이 여러 증세가 있는 자가 여러 증세에 적합한 약을 합해 지어 먹으면 반드시 빠른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극(相克)하는 약이면 가감(加減)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런 약을 지어서 사람에게 시험하고자 한다.”</p> <p>하고, 인하여 병 증세를 내어 보여서 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과 공조판서(工曹判書) 권찬(權攢)으로 하여금 약성(藥性)을 참고하여 각각 세 제(劑)씩 지어서 올리도록 하였다.</p>	<p>人或食傷，或胸痛，或腹或脅，諸證俱發，若但服一藥，則只治一病而已。若人有此諸證者，諸證適藥，合劑以服，則必速見効。若相克之藥，則亦可加減。予欲劑此藥，以試於人。”</p> <p>仍出示病證，令西河君任元濬、工曹判書權攢，參考藥性，各劑三劑以進。</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2일(을사) 4번째기사</p>	<p>밤에 홍문관(弘文館)에 술을 내려 주고, 인하여 어찰(御札)을 내려 이르기를, “여러 어진 이가 홍문관에 있으면서 고문(顧問)에 대비하여 옳은 도(道)를 논하고, 모든 곧은 선비가 경악(經幄)에 가까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서 도와 보탬이 많다. 이것이 내가 특이한 은혜를 베풀어 대접하는 뜻이다. 오늘 밤은 추우니, 한 번 취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p> <p>하였다. 이날 전한(典翰) 정성근(鄭誠謹)과 저작(著作) 민보익(閔輔翼)이 입직(入直)하였었는데, 전(箋)을 올려 진사(陳謝)15874) 하였다.</p>	<p>○夜賜酒于弘文館，仍賜御札曰：</p> <p>群賢在館，備顧問，而論善道，衆直呢幄，警不悟，而多裨益。此予所以華接異恩之意也。今日夜寒，無惜一醉。</p> <p>是日典翰鄭誠謹、著作閔輔翼入直，上箋陳謝。</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3일(병오) 1번째기사</p>	<p>올적함(兀狄哈) 중추(中樞) 기당가(其堂可) 등 여덟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丙午/兀狄哈中樞其堂可等八人，來獻土宜。</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3일(병오) 2번째기사</p>	<p>평안도 병마 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 정난종(鄭蘭宗)이 치계(馳啓)하기를, “야인(野人) 이인탐홀척(李因塔忽尺)·간흑능(幹黑能) 등이 만포(滿浦)에 와서 서울에 입조(入朝)하고자 하였으나, 변장(邊將) 이섬(李暹)이 타일러서 돌려보냈는데, 저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분(憤)을 내며 돌아갔습니다.”</p>	<p>○平安道兵馬節度使鄭蘭宗馳啓：“野人李因塔忽尺、幹黑能等，來滿浦欲朝京，邊將李暹，開說還送。彼人等，不遂其意，發憤而還。”命示領敦寧以</p>

	<p>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p> <p>“야인들이 굶주림을 구제받기를 원함이 매우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족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박대하면 혹시 분함을 품고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임시 수단의 말로 답하고, 변경 방비를 굳게 지키며 약간의 물건을 베풀어 주어 위로하소서.”</p> <p>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p> <p>“야인을 접대하는 절차는 이미 일찍 하유(下諭)하였고, 또 지금 남윤종(南潤宗)이 내려갔으니 올라온 뒤에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p> <p>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p> <p>“인탑홀척(因塔忽尺)과 인가대(麟加大)의 원망하는 말은 족히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야인의 흉계(凶計)를 알기 어려우니, 엄하게 방비를 더할 것입니다.”</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p> <p>“저들이 비록 분함을 품었더라도 형편이 지대(支待)하기가 어려우니, 이처럼 타일러서 들여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방어하는 일은 허술하게 할 수 없으니, 다시 조처하게 하소서.”</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이제 저들의 말로 보건대 자못 실망하는 마음이 있으나, 어찌 사람마다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변경 방비를 튼튼히 하고, 우리의 무기를 예리하게 하여 대비할 뿐입니다.”</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절제사(節制使)로 하여금 변경 방비를 신중히 하여 대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오랑캐는 이(利)를 탐하여 만족함이 없으니, 하나하나 그 욕심대로 해 줄 수</p>	<p>上。鄭昌孫議：“野人等仍救飢，求請甚切，然其言不足信聽。若如此薄待，則恐或懷憤作賊，權辭答說，固守邊備，略施賜與之物，以慰之。”韓明澮議：“野人接待節次，已曾下諭，且今(南潤宗) [南潤宗] 下去，上來後更議。”沈澮議：“因塔忽尺、麟加大怨望之言，不足畏也。然野人凶計難知，嚴加隄備。”尹弼商議：“彼雖含憤，勢難支持，不過如此開說入送而已。但防禦之事，不可疎虞，更令措置。”洪應議：“今觀彼人等之辭，頗有缺望之心，焉得人人而悅之？但固我邊圉，利吾器械，以待之耳。”李克培議：“令節制使，謹飭邊備以待。”盧思愼議：“戎虜貪利無厭，不可一一如其所欲，況幹黑能等，其中微劣之人，今雖不得所欲而歸，有何能爲？令節度使，嚴加警備，更無他策。”尹壕議：“幹黑能等所言，與國家所議乖違，宜置之度外，從前諭書施行。”御書曰：</p> <p>誠如群議。雖發憤言，何畏耶？據義而勿疑，固備而無悔。以是諭之。</p>
--	---	--

	<p>없는데, 하물며 간혹능(幹黑能) 등은 그 중에서 미약한 사람이므로, 이제 비록 하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도사로 하여금 경비를 엄하게 더하도록 해야지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간혹능 등의 말한 바가 국가에서 의논한 바와 어긋나니, 마땅히 법 밖으로 버려 두고 앞의 유서(諭書)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p> <p>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틀, “진실로 여러 의논과 같다. 비록 분하게 여기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정의(正義)에 의거하여 의심치 말고 방비를 튼튼히 하여 후회가 없게 할 것이다. 이로써 유시(諭示)하라.”</p> <p>하였다.</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4 일(정미) 1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이 사조(辭朝)하고, 인해 아뢰기틀, “삼포(三浦)의 왜인(倭人)이 신이 가는 것을 보고서 만약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신에게 와서 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다른 나머지 일은 사목(事目)에 갖추어 있으나 정승도 마땅히 형편을 보아서 조치할 것이다. 다만 삼포 왜인이 정승이 가는 것을 들으면 소요(騷擾)할까 두려우니, 정승은 힘써 안정하도록 요할 것이다.”</p> <p>하자,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도 왜인이 그 행선(行船)을 보면 혹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까 걱정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왜인이 반드시 그 뜻을 가지고 정승에게 와서 보고할 것이니, 정승이 만약 치계(馳啓)한 뒤에 처리하면 일이 혹시 늦어질 것이다. 또한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는 정승이 때에 따라 조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p>	<p>○丁未/右議政洪應辭，仍啓曰：“三浦倭人，見臣之行，若以其意，來告於臣，將何以處之乎？”上引見曰：“他餘事，則具載事目，而政丞亦當觀勢處置。但三浦倭人，聞政丞之去，則慮恐騷擾，政丞務要安靜。”應對曰：“臣意亦謂：‘倭人見其行船，則或懷疑懼之心也。’上曰：“倭人必以其意，來報於政丞，政丞若馳啓，而後處之，則事或稽緩。亦難遙度，是在政丞隨時措置耳。應對曰：“臣當臨時處之。”上曰：“守令、萬戶，政丞直斷，事干監司，則馳啓論斷，犯法者，或罷黜，或治罪，其勿饒也。”應對曰：“臣當一</p>

	<p>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이 마땅히 때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는 정승이 즉시 처단하고, 일이 감사(監司)에 관계되는 것은 치계(馳啓)하여 논단(論斷)할 것이며, 법을 범한 자는 혹은 파출(罷黜)하고 혹은 죄를 다스려서 용서하지 말 것이다.”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은 마땅히 일체 사목(事目)에 따르겠으나, 다만 군용(軍容)과 군기(軍器)를 점열(點閱)하도록 명하셨는데, 신이 위임받아 가는 일이 많으므로 반드시 빨리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3월 초에 복명(復命)하게 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일이 있으면 빨리 돌아올 필요가 없다.” 하자, 홍응이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번고(反庫)15876) 하는 일은, 일찍이 수령을 지낸 자가 대부분 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번고는 한갓 곡식만 손해될 뿐 번고 후에 만약 남은 수량이 있으면 수령이 간혹 도리어 남용(濫用)하며, 교대한 뒤에는 신관(新官)이 남은 것을 취하고자 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남비(濫費)하고서 그 수량을 거짓 꾸미는데, 만약 번고하지 아니하면 창고 곡식이 남고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풍속이 각박함을 진념(軫念)하시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위를 업신 여기는 풍속이 이때보다 더 심함이 없다고 여깁니다. 예전에 승정원(承政院)의 패(牌)는 제사(諸司)에서 비록 색원(色員)15877) 이 아니더라도 허겁지겁 달려와서 한 사(司)의 일을 모두 비호(庇護)하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p>	<p>從事目，但軍容、軍器，又命點閱，臣委去事多，必不速返。三月初，似可復命也。”上曰：“如其有事，則不須速還。”應啓曰：“諸邑反庫之事，曾經守令者，多與臣言：‘反庫，徒爲損穀而已。反庫後，若有剩數，則守令或反濫用，交代之後，新官務欲取贏，剝民者有之。’”上曰：“守令濫費，而虛張其數，若不反庫，倉穀盈縮，何由而知乎？”應啓曰：“上軫念風俗之薄，臣謂‘陵上之風，未有甚於此時。’在昔承政院之牌，則諸司雖非色員，顛倒趨進，一司之事，皆欲庇護。今則不然，雖政院之牌，不即進來。且以聽訟之司觀之，漢城府、掌隸院決訟之後，雖是非分明之事，不勝者，不自爲非，陵辱官吏，惡言醜詆，無所不至，至於再三，上言而不已。此皆不自安分，末流之弊，深可慮也。臣願聖上洞照上言之辭，察其詐僞，以祛其弊。”上曰：“風俗之弊，果如所言。古人云：‘導以德、禮，齊以刑、政，’此不易之論也。以今觀之，不可徒恃德、禮，以爲治也。今也君既不賢，時亦澆薄。近者權灑之事，下禁府鞠之，灑</p>
--	--	--

아니하여 비록 승정원의 패(牌)라고 하더라도 즉시 달려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청송(聽訟)15878) 하는 사(司)로 보더라도 한성부(漢城府)와 장례원(掌隸院)에서 결송(決訟)15879) 한 뒤에 비록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이라 하더라도 승소(勝訴)하지 못한 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리를 능욕(陵辱)하면서 나쁜 말로 상스럽게 욕하며 갖은 행패를 다 부리고, 심지어는 두세 번까지 상언(上言)하는데, 이는 모두 스스로 분수에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서 말류(末流)의 폐단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성상께서 상언(上言)한 말을 밝게 검토하시어 그 간사하고, 거짓됨을 살펴서 그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풍속의 폐단은 과연 말한 바와 같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덕(德)과 예(禮)로 인도하고 형벌과 정사로 가지런히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꿀 수 없는 지론이나, 지금으로 보면 한갓 덕과 예만 믿고 다스릴 수는 없다. 지금은 임금이 이미 어질지 못하고 시대가 또한 각박하다. 근래에 권호(權灝)의 일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鞫問)하게 하였는데, 권호가 권순(權順)에게 이르기를, ‘아버가 빨리 죽어 상중(喪中)에 장가들기를 바란다.’고 한 말은, 아무리 불초(不肖)한 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아들로써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다. 아직 국문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허실(虛實)15880) 을 알 수 있다.”

하였는데,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저 사람이 학문한 힘이 조금 있으면 심하게까지는 되지 아니하는데, 권호는 사족(士族)의 자제로 문과(文科) 출신이면서 이같은 행동이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홍응에게 초구(貂裘) 한 벌, 사주유 철릭(絲紬繻帖裏) 한 벌, 백면포 단령(白綿布團領) 한 벌, 약낭(藥囊) 하나, 시복(矢服) 하나에 제연(諸緣)을 갖추고, 백록 비화(白鹿皮靴) 하나에 전정(氈精)을 갖추어 하사하고, 임금이 말

謂權順曰：‘冀父速亡，喪中娶女’之言，雖不肖者，人子所不忍爲也。姑待畢鞫，可知虛實矣。” 應對曰：“凡人小有學問之力，則不至若此之甚。權灝以士族子弟，出身文科，而有如此之行，甚不可。” 賜洪應貂裘一領、絲紬繻帖裏一領、白綿布團領一領、藥囊一、矢服一、諸緣具、白鹿皮靴一、氈精具。 上曰：“日寒，聊賜禦寒之具。”

	<p>하기를, “날씨가 추우므로 방한(防寒)할 물건을 내린다.” 하였다.</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5 일(무신) 1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임금이 백성의 풍속이 예스럽지 못하고 이륜(彝倫)15881) 이 퍼지지 아니함을 근심하여 풍속을 옮겨 바꾸고자 하였다. 그래서 진지(傳旨)를 내려 올바른 말을 구하며 대소 신료(大小臣僚)로 하여금 각각 품은 바를 진술하게 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문형(鄭文炯)이 글을 올려 폐단을 진술하기를, “제 1조, 역대(歷代)의 제왕(帝王)은 처음 기초를 잡은 땅을 중히 하지 아니한 이가 없었으니, 한(漢)나라의 풍폐(豐沛)와 당(唐)나라의 진양(晉陽)에서 그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도(永安道)는 본래 호인(胡人)이 점거했던 땅인데,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무(聖武)로써 본도(本道)에서 일어나 문득 동방(東方)을 차지하였으며, 열성(列聖)이 계승하면서 위덕(威德)이 널리 퍼지자 땅을 두만강까지 넓혀 경계를 삼고, 연강(沿江)에 진(鎭)을 설치하여 호인(胡人)과 더불어 섞여서 살게 하였습니다. 왕도(王都)15882) 에서 온성(穩城) 등지까지의 거리가 중국의 광녕(廣寧)과 서로 비등하여 왕화(王化)15883) 가 멀리 막혔으므로, 사람들이 시서(詩書)와 예법(禮法)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강(強)하고 사나움만 익히고 활쏘고 말타는 것으로 업(業)을 삼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외로운 자에게 사납게 굴어 오랑캐 풍속과 같으며, 문교(文教)가 퍼지지 아니하여 교생(校生)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활쏘기를 익혀서 갑사(甲士)가 되면 일족(一族)이 서로 하례하며 그것으로 기구(箕裘)15884) 를 삼습니다. 거기는 참으로 열성(列聖)15885) 께서 새로 만든 땅이므로 인심과 기습(氣習)을 갑자기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악(禮樂)은 백 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 그 습관을 바꾸어 문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찌 선왕(先王)의 유지(遺志)를 잘</p>	<p>○戊申/先是，上軫念民風不古，彝倫不敘，欲轉移風俗，下旨求言，俾大、小臣僚，各陳所懷。至是，知中樞府事鄭文炯上書陳弊。</p> <p>第一條，歷代帝王，莫不重肇基之地。漢之於豐沛，唐之於晉陽，蓋可見矣。永安道，本是朝人所據之地，我太祖大王，天縱聖武，起於本道，奄有東方，列聖相承，威德廣被，闢地至豆滿江爲界，沿江設鎭，與胡人雜處。自王都，至穩城等處，相距之遠，與中原廣寧相等，王化遠隔，人不識《詩》、《書》、禮法。日以強悍爲習，弓馬爲業，陵弱暴寡，有同胡俗。文教不張，名校生者，挽弓爲甲士，則一族相賀，以此自爲箕裘。此眞列聖新造之地，而人心氣習，未易遽易。然禮、樂，百年必興，則其變習歸化，不在善繼善述之日乎？但聖上處九重之內，安能家喻而戶曉也？必得賢守令者，導之以禮，繩之以法，諄諄曉諭，使之知禮義，</p>

계승하는 오늘날에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성상께서는 깊은 궁궐 속에 계시면서 어찌 가가 호호(家家戶戶)마다 타이르고 깨우치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반드시 어진 수령(守令)을 얻어서 예(禮)로써 인도하고 법으로써 다스려서 간절하게 효유(曉諭)하여 예의를 알게 한 다음 법령으로 인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어진 교수(教授)를 얻어서 아침저녁으로 가르쳐 효제(孝悌)·충신(忠信)의 도(道)를 밝히고, 향방(向方)을 알게 하여 완악(頑惡)함을 고쳐서 온순한 데로 돌아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교수로 제수된 자는 자기가 시서(詩書)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능히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단지 승진하기를 꾀하는 것뿐입니다. 하물며 변방에 임명을 받은 자는 모두 권력(權力)이 있고 녹봉(祿俸)이 있으나, 교수만은 무료하므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자신도 초라하게 되어 즐거움이 없는데, 누가 감히 스스로 권장하여 가르치기에 부지런하겠습니까? 저 변방 사람의 자제도 역시 창을 쥐고 활을 잡는 것은 영화롭게 되고, 책을 쥐고 글을 배우는 것은 이로움이 없음을 보는데, 누가 능히 보고 감화되어 그 기질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수령이 된 자는 혹시 자질(資質)이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다스리는 대체를 알지 못하고, 오직 활쏘고 말타는 일만 알아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 예법을 선포(宣布)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송(詞訟)15886)도 그 요령을 알지 못하여 세월을 끌면서 시비(是非)와 곡직(曲直)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억울함을 펼 수가 없고, 강포(強暴)한 자에게 위협을 받아 피차가 흩어져 움기는 자가 많으니, 백성이 뜻을 정하지 못하여 따를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정해년(15887)에 역도(逆徒)15888)가 한 번 외치자 온 도(道)가 움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람에 휩쓸리듯이 추종하여 하나도 여기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배우지 아니하고 무식하여 용맹과 사나움 그리고 이(利)를 다투는 습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염유(冉有)15889)가 공자(孔子)에게 묻기를, ‘이미 백성이 많아졌으면 또 무

導法令，然後可也。又必得賢教授者，朝夕訓誨，使之明孝、悌、忠、信之道，知所向方，而革頑歸順，然後可也。今除此地教授者，自不知《詩》、《書》，安能教人？但以爲媒進之計而已。況邊方受任者，皆有權有祿，獨教授，淡薄無聊，人所易侮，而身亦索然不樂，誰敢自勸，而勤於教誨乎？彼邊人子弟，亦見操戈執弓之爲榮，把冊學文之無利，誰能觀感，變其氣質乎？爲守令者，或資質雖美，未諳治體，唯知弓馬之習，不務治民之事，非唯不宣布禮法，大小詞訟，亦未領其要，淹延歲月，不得辨曲直、分是非，冤不得伸，脅於強暴，而彼此流移實多，民無定志，莫適所從。去丁亥年，逆徒一唱，舉道眩於是非，靡然從風，一無違者。此無他，不學無識，勇悍爭利之習，爲之致也。冉有問孔子曰：“既庶矣，又何加焉？”曰：“富之。”既富矣，又[何]加焉？”曰：“教之。”今六鎮之民，既庶且富，則此正教之之時也，而教道如其廢弛，可乎？若曰：“六鎮之民，皆是軍夫，不須知書，”則其如不教民戰，是謂棄之，

엇을 더해 주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하였으며, 또 묻기를, ‘부유해졌으면 또 무엇을 더해 주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가르쳐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6진(鎭)의 백성이 이미 많아지고 부유해졌으니, 이는 바로 가르칠 때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이 이처럼 폐이(廢弛)되어서 되겠습니까? 만약 말하기를, ‘6진 백성은 모두 군부(軍夫)15890) 이므로 글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백성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싸우게 하면 이는 버리는 것이라고 이른다.’고 한 <공자의 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가 《대전(大典)》을 상고하건대, ‘영안도 4진의 판관(判官)은 문신(文臣)과 무관(武官) 가운데 능히 문리(文理)를 아는 자를 정해 보낸다.’고 하였는데, 법을 만든 이후로 한 문신도 부임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이 도(道)는 오랑캐의 땅과 연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쪽 지방 여러 도(道)는 문교의 바람이 이미 떨치고 왕화(王化)가 이미 행하였으며, 또 수령과 교수가 훌륭한 문신들인데 어찌하여 이 새로 만든 땅에만 거기에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임명하십니까? 신은 원하건대 수령은 《대전》과 타도의 예(例)에 의하여 문신과 일에 익숙한 자를 겸해 써서 차임(差任)하고, 교수도 문신으로 사표가 될 만한 자를 택하며, 교수에게 아록(衙祿)15891) 을 주고, 만기가 되면 경직자(京職者)와 바꾸어 임명해서 스스로 권장되게 하여 각각 가르치고 기르는 임무를 다하게 하면, 10년이 못되어 예의바른 고을로 변하고, 아버이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죽는 풍속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심이 영구히 안정되고 변방이 오래도록 편안함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본도에 있을 때에 경성(鏡城) 이북 지역에 학풍(學風)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條件)을 마감(磨勘)하여 계달하라고 두 번이나 해당 조(曹)에 전지(傳旨)를 내렸으므로, 신이 위의 뜻을 가지고 계문(啓聞)하였었는데, 이조(吏曹)에서는, ‘문관(文官)의 수가 적어서 준차(淮差)15892)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호

何? 謹按《大典》, ” 永安四鎭判官, 以文臣及武官內能曉文理者, 差遣。” 立法以後, 未見一文臣赴任者, 意必此道接連胡地, 人所厭避而然也。 南方諸道, 文風已振, 王化已行, 又守令、教授, 彬彬文臣, 何獨此新造之地, 而任非其人乎? 臣願守令依《大典》及他道例, 兼用文臣及諳練者, 差之, 教授亦擇文臣之堪爲師表者, 亦給教授衙祿, 及其官滿, 與京職者換差, 使之自勸, 各盡教養之任, 則不十年, 可變爲禮義之鄉, 而成親上死長之風矣。 然後人心之永固, 邊方之久安, 猶可期也。 臣在本道時, 鏡城以北, 興學條件, 磨勘以啓事, 再下傳旨于該曹, 臣略將上項事意啓聞。 吏曹則云: “文官額少, 未易準差,” 戶曹則云: “加設衙祿, 多所費也。” 臣愚妄意, 他道則家塾、黨序之教多, 而人各自奮于學, 雖或非文臣, 猶可以興學矣。 此道斷不可不任文臣也。 以他道任守令、教授文官之數觀之, 則文臣亦不可謂之少矣, 特除授之乖張耳。 但加設衙祿, 多費之說, 理或然也。 然有無費, 而可以設之之道焉。 自古邊方守令之未

조(戶曹)에서는, ‘아록(衙祿)을 더 마련하는 것은 소비되는 바가 많다.’고 합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다른 도는 가숙(家塾)15893) 과 당서(黨序)15894) 의 교육이 많고 사람마다 각각 스스로 배움에 분발하니, 비록 혹시 문신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배움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 도는 결단코 문신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도(道)의 수령·교수에 임명된 문관(文官)의 수(數)를 보면 문신이 또한 적다고 할 수가 없으며, 다만 제수를 잘못된 것뿐입니다. 다만 아록(衙祿)을 더 마련하면 소비가 많다는 말은 이치가 혹시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소비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변방 수령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아록이 있어서 비록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상의 목사(牧使)·부사(府使)라 하더라도 한 달에 쌀이 22, 3우(斗)이고, 군(郡) 이하는 한 달에 17, 8 두(斗)로서 사용(司勇)의 녹(祿)보다 조금 많을 뿐입니다. 근래에 성상께서 변장(邊將)의 근로를 진념(軫念)하시어 양계 첨절제사(兩界僉節制使) 10여 원(員)을 특별히 제수하였는데, 3품 이하의 위직(衛職)은 그 녹이 너무 후하여 도리어 아록보다 많으므로 수령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하며, 공도(公道)로써 표준하면 또한 고르지 못합니다. 이것도 의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10여 원의 녹을 가지고 모두 아록을 만들어 주면 그 남은 쌀이 족히 대어섯 교수의 아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면 국고를 다시 소비하지 아니하더라도 문신·무신으로서 변방에 임명을 받은 자는 균일하게 녹이 있어서 성상의 문교(文教)를 숭상하시는 거룩한 뜻에 진실로 합하고, 또 교수가 된 자는 모두 본도에 임명을 받은 것을 즐거워하여 인재를 교육하는 데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 2조, 본도 사람의 마음에 싫어하고 괴로와하는 것은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를 혁파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더욱 중한 것은 관찰사(觀察使)의 감영(監營)을 영흥(永興)에 둔 것입니다. 본도는 예전에 도순문사(都巡問使) 1원(員)

挈家者, 皆有衙祿, 雖嘉善以上牧、府使, 一月米廿二、三斗, 郡以下, 則一月米十七、八斗, 稍優於司勇之祿而已。近者聖上軫念邊將之勞勤, 特除兩界僉節制使十餘員, 三品以下衛職, 其祿太厚, 反優於衙祿, 守令等之心, 頗以此爲不平也, 準以公道, 亦不均也。此亦不可不議。臣謂: ‘將此十餘員之祿, 皆作衙祿給之, 則其餘米足以給五、六教授之衙祿。’然則更不費國廩, 文、武臣受任邊方者, 均一有祿, 允孚聖上右文崇教之盛心, 且爲教授者, 咸樂受任於本道, 教育人才, 可必效矣。第二條, 本道人心之疾苦, 莫先於南道節度使之不革, 尤莫重於觀察使之營永興也。本道, 古有都巡問使一員, 後設觀察使、都節制使各一員, 久矣。歲丁亥, 李時愛之亂之後, 世祖大王特設南·北道觀察使、節度使, 以鎮之而已, 尙無長置不罷之教。故至己丑年, 諸相獻議, 革北道觀察使, 而南道節度使, 則因仍不罷。其無益於國, 有弊於民, 臣前日略陳以啓, 下議于大臣, 請罷者衆, 間有數三獻議云: “世祖大王所命, 不可革也。”

이 있었고, 뒤에 관찰사와 도절제사(都節制使) 각 1원을 설치한 지 오래인데, 정해년(15895)에 이시애(李施愛)의 난리 후에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남북도에 관찰사와 절도사를 특별히 설치하여 진압하게 하였을 뿐 영구히 두고 파하지 말라는 교시가 없었기 때문에, 기축년(15896)에 여러 정승들이 의논을 드리어 북도 관찰사는 없애고, 남도 절도사는 그대로 두고 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라에 보탬은 없고 백성에게 폐단만 있으므로, 신이 전일에 간략하게 진술하여 계달하였던 바 대신(大臣)에게 내려 의논하니, 파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았고, 그 중에 두세 사람이 헌의(獻議)하기를, ‘세조 대왕께서 명하신 바인데 없앨 수 없다.’고 하자, 그 의논에 따라 없애지 아니하였습니다. 관찰사의 감영(監營)은 함흥(咸興)에 두고 도(道) 이름을 함길도(咸吉道)라고 한 것이 또한 오래였는데, 정해년에 세조 대왕이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을 평정하고서 원악(元惡) 15897이 살던 길주(吉州)를 두 현(縣)으로 만들고, 함흥(咸興)은 협종(脅從)한 곳이라고 하여 예전대로 두었으며, 또 이름을 함경도로 명하였으니, 그 뜻한 바가 깊었습니다. 그 뒤 4년째인 경인년(15898)에 영흥(永興) 사람들의 상언(上言)으로 인해 여러 재상들이 헌의(獻議)하여 함흥을 낮추어서 군(郡)을 만들고, 감영(監營)을 영흥부로 옮겨서 도를 영안도라고 칭호를 바꾸었습니다. 함흥은 바로 환조(桓祖) 15899 이상 여러 대(代)의 터전이고 왕화(王化)의 기본이 되는 곳이며, 더욱이 선왕(先王)·선후(先后)의 능침(陵寢)이 계시는 곳이므로, 태종(太宗) 17년(1417)에 목(牧)을 올려서 부(府)로 하였으니, 진실로 특별한 은총을 베푼 바입니다. 이 까닭에 다른 능묘가 있는 군현은 예(例)로 모두 올렸으니, 이는 태종께서 올리신 바이며, 세조께서 그대로 두신 바인데, 우연히 영흥 사람의 말로 인하여 부(府)를 낮추어 군으로 삼았으므로, 신은 옳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섯 능(陵)의 하늘에 계시는 영령(英靈)이 어떻다고 여기겠습니까? 만약 의논하는 이의 말과 같이 남도 절도사는 세조께서 설치하신 것으로 갑자기 없앨 수 없다고 한다면, 북도

從其議不革。若觀察使之營，則置於咸興，道號咸吉，亦久矣。又丁亥歲，世祖大王定施愛之亂，革元惡所居吉州爲二縣，咸興乃以爲脅從之所，而仍舊之，命道號曰咸鏡，其旨深矣。厥後第四年庚寅，因永興人等上言，諸相獻議，降咸興爲郡，移營永興府，改稱道曰永安。咸興，乃桓祖以上累代之宅，王化所基，況先王、先后陵寢所在，太宗十七年，陞牧爲府，實寵異之也。故他陵室所在郡縣，例皆陞之，此則太宗之所陞，世祖之所仍也，而偶因永興人之言，降府爲郡，臣恐未便也。六陵在天之靈，以謂何如？若如議者之言，南道節度使，世祖之設，不可遽革也，則設北道觀察使，仍咸興之營，稱咸鏡道等事，獨非世祖之命，議革議改之如是乎？前後之議，實爲矛盾，必當歸一，然後可也。又況六鎮以西諸邑，距咸興，或十五日，或二十餘日程，常時祁寒暑雨，陪進上持官牒往還者，猶且苦之，而永興，則自咸興往還，四日益遠，弊尤甚焉。去庚午年間，臣爲注書，文宗大王以左副承旨金文起，爲咸吉道觀察使，傳曰：“予受世宗之教，

관찰사를 설치하고 함흥에 감영을 그대로 두어 함경도로 일컫는 일 등은 홀로 세조의 명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없애기를 의논하고 고치기를 의논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입니까? 전후의 의논이 진실로 모순(矛盾)이 되니, 반드시 일치하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더욱이 6진(鎭)의 서쪽 여러 고을은 함흥과의 거리가 혹은 15일, 혹은 20여 일의 길이 되므로, 평소에 큰 추위와 더위, 그리고 비오는 때에 진상(進上)을 받들고 관첩(官牒)15900) 을 가지고 내왕하는 자도 오히려 괴로와하는데, 영흥은 함흥에서 내왕하는 것보다 나흘 길이나 더 머니,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지나간 경오년(15901) 사이에 신이 주서(注書)가 되는데, 문종 대왕(文宗大王)께서 좌부승지(左副承旨) 김문기(金文起)를 함길도 관찰사로 삼고 전교하시기를, ‘내가 세종(世宗)의 하교를 받기를, 「함흥은 조종(祖宗)의 근본이 되는 땅인데 관사(館舍)와 성과(城郭)이 좁고 더럽다.」고 하셨으므로, 이제 특별히 경을 명하여 관찰사로 삼아서 수축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을 경에게 위임하여 계획하게 한다. 대목(大木)15902) 최계수(崔繼壽) 등 이하 각종 장인(匠人)과 화원(畫員)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니, 이에 김문기(金文起)가 그 간각(間閣)의 제도를 그리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건과 공역(供億)의 자료와 공장(工匠)의 수(數)를 모두 계품(啓稟)하고 가서 경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과와 관사의 아름다움이 여러 고을에 으뜸이었는데, 현재는 인물(人物)이 쓸쓸해지고 관사(館舍)가 허물어져서 장차 쓸 수 없게 되었으니, 만약 마침내 버린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부득이하여 관사가 넘어진 뒤에 복구하자면 그 수복(修復)15903)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국가의 노고가 될 것입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당(唐)나라 헌종(獻宗) 때에 회(淮)·채(蔡) 지역이 왕명(王命)을 배반하자, 배도(裴度)가 토벌해서 평정하였으나 고을 이름을 낮춘 일이 없었고, 고려(高麗) 인종(仁宗) 때에 중서문하부(中書門下府)에서 아뢰기를, ‘충주(忠州) 사람 유정(劉挺)이 그 아버를 죽였으니, 이는 그 목수(牧守)와 주리

咸興，祖宗根本之地，而館舍、城郭，隘陋。今特命卿爲觀察使，使修營諸事，委卿布置。擇大木崔繼壽等以下諸色匠人畫員等帶去。”於是，文起圖其間閣、制度，所入雜物、供億之資，工匠之數，悉皆啓稟，而行以經營焉。故其城郭、館舍之美，冠於諸州，見今人物蕭條，館舍頽圯，將爲無用。若終棄之，則已矣，如或不得已，而復舊於館舍既頽之後，則其修復諸事，又必爲國家之勞矣。謹按，唐獻宗時，淮、蔡叛命，裴度討平之，更無降號之事。高麗仁宗時，中書門下府奏曰：“忠州人劉挺弑父，其牧守、州吏，不能教民。請皆下吏，降州爲郡。”王問左右，對曰：“《禮》云：“邾婁定公時，有弑其父者，殺其人，毀其室、洿其宮而止耳。不言所居州邑，則降州爲郡，非古法也。”從之。然則州、郡降號，而懲惡，非古之道也。況《春秋傳》曰：“天道十年而必周，遠惡者十年而必棄。”今咸興之降號，已十五年，足爲懲惡。去辛丑年冬，咸興復舊傳旨將下，永興人金榮老適到京，又上言，而停止。本道大小人民

	<p>(州吏)가 능히 백성을 가르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청컨대 모두 법사에 내리고 주(州)를 낮추어 군(郡)으로 삼으소서.’ 하므로 왕이 좌우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예(禮)》에 이르기를, 「주루(邾婁)15904) 에서 정공(定公) 때에 그 아버를 죽인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형하고 그 집을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못을 파는 데 그쳤다.」고 하였고, 사는 고을은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주(州)를 낮추어 군(郡)으로 삼는 것은 옛 법이 아닙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군으로 이름을 낮추어서 악함을 징계하는 것은 옛도(道)가 아닙니다. 더욱이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천도(天道)는 1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며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도 10년이면 반드시 버린다.’고 하였으니, 이제 함흥의 이름을 낮춘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으므로, 악함을 징계한 것이 족합니다. 지난 신축년(15905) 겨울에 함흥을 복구하라는 전지(傳旨)를 내리려고 하자, 영흥(永興) 사람 김영로(金榮老)가 마침 서울에 이르러서 또 상언(上言)하여 정지하였는데, 본도의 대소 인민(大小人民)이 듣고 더욱 탄식하기를 마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자에 위관 경차관(委官敬差官)이 백성의 질고(疾苦)를 묻자, 역시 이 몇 가지 일로써 진소(陳訴)하였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열성(列聖)께서 함흥을 존중하신 것과 세조께서 예전대로 하라는 전지(傳旨)에 따라서 함흥의 감영(監營)을 회복하고,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를 혁파하여 모두 예전대로 회복하게 하여 패향(沛鄉)15906)의 인물들을 위로 하소서.</p> <p>제 3조, 부령(富寧) 청암리(靑巖里) 향화인(向化人)15907) 동산(童山) 등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저들 야인(野人)의 땅으로 도망해 갔을 때에 우리 나라 남너도 또한 따라갔습니다. 신이 본도(本道)에 있으면서 박성손(朴星孫)과 더불어 예지(睿旨)를 공경히 받들어서 쇄환(刷還)15908) 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조치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쳐 갈 때에 즉시 잡은 자가 아홉 명이고, 어유소(魚有沼)가 쇄환한 자가 열 다섯 명이며, 돌아오지 아니한 자</p>	<p>聞之, 尤爲歎息不已。 曩者委官敬差官, 問民疾苦, 亦皆以此數事陳訴。 伏望追尋列聖崇重咸興、世祖仍舊之旨, 復咸興之營, 革南道節度使, 竝令復古, 以慰沛鄉人物。 第三條, 富寧靑巖里向化童山等, 因饑饉, 逃往彼土時, 我國男女, 亦隨之。 臣在本道, 與朴星孫, 欽承睿旨刷還, 多方以措置而無效。 然當其逃去, 登時捕捉者九人, 魚有沼刷還者, 十五人。 其未還四十人內, 吾民只女人四口而已, 餘皆野人也。 其於去留, 實無損益, 但投化而來, 世居吾土, 已爲編氓, 一朝無緣逃歸, 罪應誅戮, 特以聖上好生之恩, 出於至誠, 曲盡招撫, 來者與之而衣食, 還之以田宅, 使之安業, 恩至渥也。 然而無知邊人, 皆怪其不罪, 而反撫之也, 彼輩, 則不顧國家之恩, 反生驕黠之心, 慍見臣等曰: “我輩雖來, 食物將絕, 何以生生?” 語涉憤怨, 又遇飢寒, 則脫身而逃, 勢或然也。 吾民全檢山、劉貴同等, 亦逃去, 被刷而還者也。 右人等言於臣曰: “童山等謂我等曰: ‘今汝等還去, 國必撫之矣, 此則欲要刷盡我輩也。 我(軍) [輩] 盡</p>
--	--	--

는 40명인데, 그 중에 우리 백성은 단지 여인(女人) 4명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야인(野人)입니다. 그 가고 머무르는 것이 진실로 손해와 이익은 없으나, 다만 투화(投化)해 와서 우리 땅에 대[世]를 이어 살아 이미 편맹(編氓)15909) 이 되었는데, 하루 아침에 까닭 없이 도망해 돌아갔으니, 죄가 배어 죽임이 마땅하나, 특별히 성상께서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은혜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와 곡진(曲盡)하게 불러서 무마하게 하였고, 오는 자에게 의식(衣食)을 주고 땅과 집을 돌려 주어 생업에 안정하게 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優渥)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변경 사람은 모두 그들을 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루만지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국가의 은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만하고 간사한 마음으로 성을 내어 신 등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온다고 하더라도 먹을 물건이 장차 떨어질 것인데, 어떻게 살아 가겠느냐?’고 하면서 말투가 분하고 원망함을 품은 듯하니, 또 굶주리고 추움을 만나면 몸을 빠져 도망할 것은 뻔한 형편입니다. 우리 백성 전검산(全檢山)·유귀동(劉貴同) 등은 역시 도망해 갔다가 검거되어 돌아온 자인데, 이상의 사람들이 신에게 말하기를, ‘동산(童山) 등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돌아가면 나라에서 반드시 무마해 줄 것이나, 이것은 우리들을 모두 찾아 내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다 가면 너희들과 함께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찌 나갈 이치가 있느냐? 너희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하니, 이 말은 교활함이 막심합니다. 이제 정세를 보건대 그 뒤에 한 사람도 나오는 자가 없어 이 말과 서로 맞으니, 나올 희망은 이미 없습니다. 그 쇠환(刷還)한 자를 도리어 우홀(優恤)15910) 을 가하고 죄를 주지 아니한 것이 이미 3년인데, 매듭을 지음이 없으므로, 변경 사람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더구나 죄가 중한 무리가 도망해 돌아오기를 스스로 두려워하면 뉘우쳐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옳드려 바라건대 다시 절도사로 하여금 와주(窩主)15911) 동보당개(童甫堂介) 등을 유치(誘致)하여 구

去, 則與汝等同被戮丁寧, 我何有出去之理乎? 汝等知之。” 此言狡猾莫甚。 今觀情勢, 厥後無一人出來者, 與此言相應, 已無出來之望也。 其刷還者, 反加優恤, 不抵罪, 已三年, 而無發落, 邊人之惑, 滋甚。 況罪重之輩, 自懼逃還, 則悔不可追。 伏望更令節度使, 誘致窩主童甫堂介等拘囚, 勒令刷還, 則或有拿致之人, 即將刷還人等, 據法科罪, 梟首廣示, 以存大體, 以定邊民反側之心。

命示領敦寧以上及議政府。 鄭昌孫議: “永安道安邊, 至六鎮, 道路脩長, 脫有緩急, 南道節度使, 安能及救? 徒兵分力弱, 反致有害。 教授官, 雖給衙祿, 永安道人, 皆視之如彼土, 安能樂爲? 況米穀有數, 安能贍給? 咸興復立事, 貶降未久, 不宜復立。 童山等事, 初來時, 猶可治罪, 今歲月已久, 因而存撫, 以安其心可也” 韓明澮議: “令該司, 擬議以啓後更議。” 沈澮議: “第一條永安道六鎮守令、教授文官交差事, 令該司, 議擬施行。 第二條世祖大王疾賊臣施愛, 而革罷咸興, 移營

	<p>속해 가두고 강제로 쇠환(刷還)하게 하면 혹시 잡아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곧 쇠환한 사람들을 법에 의해 죄를 과(科)하고 효수(梟首)하여 널리 보여서 대체(大體)를 보존하고, 변경 백성의 반측(反側)15912) 하는 마음을 정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보이게 하니,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p> <p>“영안도(永安道) 안변(安邊)은 6진(六鎭)까지 길이 먼데,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가 어찌 능히 미처 구(救)하겠습니까? 한갓 군사만 나누어져서 힘이 약하여 도리어 해(害)가 있게 할 뿐입니다. 교수관(教授官)은 비록 아록(衙祿)을 준다 하더라도 영안도 사람은 모두 저 야인의 땅처럼 보는데, 어찌 능히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물며 미곡(米穀)은 정한 수량이 있는데, 어찌 능히 넉넉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함흥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격하시킨 것이 오래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세우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동산(童山) 등의 일은 처음 왔을 때에는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으나 지금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대로 무마하여 그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한명회는 의논하기를,</p> <p>“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p> <p>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p> <p>“제 1조의 영안도 6진의 수령과 교수를 문관(文官)으로 교차(交差)하는 일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시행하고, 제 2조는 세조 대왕께서 적신(賊臣) 이시애를 미워하여 함흥을 혁파(革罷)하고 영흥으로 영(營)을 옮기고 이시애 같은 자가 있을까 염려하시어 남도 병사(南道兵使)를 설치하셨으니, 그 거룩한 계획이 깊고 먼데 갑자기 없앨 수 없습니다. 제 3조 부령 청암리에서 도망한 사람의 괴수(魁首)를 효수(梟首)하는 일은 인심이 동요될까 두려</p>	<p>永興，恐有如施愛者，建置南道兵使，其聖謀深且遠矣，不可卒革。 第三條富寧青巖逃亡人魁首梟首事，恐人心搖動，不可行也。” 尹弼商議：“六鎭教授，以文臣差遣，甚可。 然文臣不足，難以充差。 給祿之事，則如今國用不敷，何暇給祿？ 咸興爲郡，載在《大典》，不可紛更。 南道節度之事，前日下議時，臣將世祖密教，略節以啓，聖訓洋洋，尚今在耳，此是世祖大計，斷不可革。 童山、金檢山之事，當時未還者，尚多，固當示之以威，懷之以惠，務要招來而已，不可嚴刑峻法，以致邊民之驚動。” 洪應議：“永安教官，給祿似可，然國用不敷，出於何地？ 南道節度、永興治所，《大典》所載，何以輕改？ 青巖里人事，未盡出來者多，示之以威，不若懷之以惠，故給田宅、衣糧，以撫之，今更嚴刑示法，亦緩不及事。 上項數事，皆未可施行。” 李克培議：“第一條守令、教授差下事，已載《大典》，其教授衙祿題給事，事關經費，似有防礙。 令該曹，商度便否施行。 第二條觀察使本營咸興移置事，誠如文炯之言。 臣前日議得時，</p>
--	---	---

	<p>우니 행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6진의 교수를 문신(文臣)으로 정해 보내는 것은 매우 옳으나, 문신이 부족하므로 채워 보내기가 어렵고, 녹(祿)을 주는 일은 지금 국용(國用)이 넉넉지 못한데, 어느 겨를에 녹을 주겠습니까? 함흥이 군(郡)으로 된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나, 어지럽게 고칠 수 없습니다. 남도 절도사의 일은 전일 의논을 내릴 때에 신이 세조(世祖)의 밀교(密敎)를 가지고 간략하게 아뢰었는데, 성훈(聖訓)이 남아 있어 지금까지 귀에 있으니, 이는 세조의 큰 계책인데 결단코 혁파할 수 없습니다. 동산(童山)과 김검산(金檢山)의 일은 당시에 돌아오지 아니한 자가 많으므로, 마땅히 위엄으로 보이고 은혜로 무마하여 힘써 불러 오게 해야지, 엄한 형벌과 법을 써서 변경 백성을 경동(驚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영안도 교관(敎官)에게 녹(祿)을 주는 것은 가할 듯하나, 국용(國用)이 넉넉지 못한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도 절도사와 영흥(永興)의 치소(治所)15913)는 《대전》에 실려 있는 바인데, 어찌 가볍게 고치겠습니까? 청암리(靑巖里) 사람의 일은 아직 나오지 아니한 자가 많으므로, 위엄을 보이는 것이 은혜로 회유(懷柔)하는 것만 같지 못하기 때문에 밭과 집과 옷과 양식을 주어서 어루만지는 것인데, 이제 다시 엄한 형벌로 법을 보이면 또한 늦어서 일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위의 몇 가지 일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제 1조의 수령과 교수를 정하는 일은 이미 《대전》에 실려 있고, 교수에게 아록(衙祿)을 주는 일은 일이 경비(經費)에 관한 것이므로 구애됨이 있을 듯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적당 여부를 헤아려서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제 2조의 관찰사 본영(觀察使本營)을 함흥으로 옮기는 일은 진실로 정문형(鄭</p>	<p>亦以移置可當，議啓。 但南道節度使革罷事， 則與北道節度使， 分據南、北， 世祖之慮深焉， 仍舊何如？ 第三條靑巖里向化刷還人等科罪梟首事， 驚惑向化之心， 以絕後來之望， 似不可行。” 盧思愼議：“第一條兩界僉節制使授衙職， 已定制載《大典》， 不可紛更。 守令、敎授文臣擇差事， 令吏曹， 擬議施行。 第二條南道節度使， 世祖時熟議置之， 不可輕革。 咸興陞府事， 依上書施行。 第三條靑巖刷還人梟首事， 恐傷人心， 不可施行。” 尹壕議：“咸興復立事， 依上書施行， 餘無可行。” 徐居正議：“北道遣文官敎授， 宜可舉行， 給敎授衙祿， 勢難舉行。 南道有節度使， 永興置府尹，《大典》已載， 不可輕改。 童山等事， 朝廷已區處， 因而存恤之， 以安其心， 似便。” 許琮議：“永安六鎮敎授， 以文臣差遣， 似可舉行。 然衙祿之事， 則其艱苦非防戍萬戶之比。 萬戶既未有祿， 則敎授不可給祿也。 世祖於李施愛作亂之後， 以北道遙遠， 於中間， 設南道節度使， 以壓之。 然必壯其形勢， 然後可以鎮遏， 不示弱於彼人矣。 本</p>
--	--	---

	<p>文炯)의 말과 같습니다. 신이 전일에 의논할 때에도 역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논해 아뢰었습니다. 다만 남도 절도사를 혁파하는 일은 북도 절도사와 남북(南北)으로 갈라 있게 한 세조(世祖)의 생각이 깊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제 3조의 청암리의 향화인(向化人)으로서 쇄환(刷還)된 사람들에게 죄를 과(科)하여 효수(梟首)하는 일은 향화인의 마음을 놀라고 의혹하게 하여 뒤에 오는 사람의 희망을 끊게 하는 것이니,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제 1조의 양계 첨절제사(兩界僉節制使)에게 위직(衛職)을 주는 것은 이미 제도를 정하여 《대전》에 실려 있으니, 어지럽게 고칠 수 없고, 수령과 교수를 문신(文臣)으로 골라 정하는 일은 이조(吏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p> <p>제 2조의 남도 절도사는 세조 때에 자세히 의논하여 설치하였는데 가볍게 혁파할 수 없으며, 함흥을 부(府)로 올리는 일은 상서(上書)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p> <p>제 3조의 청암리의 쇄환(刷還)한 사람을 효수(梟首)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우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함흥을 다시 세우는 일은 상서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나머지는 행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북도(北道)에 문관 교수(文官教授)를 보내는 것은 마땅히 거행할 만하나, 교수의 아록(衙祿)을 주는 것은 형편이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남도(南道)에 절도사를 두고 영흥(永興)에 부윤(府尹)을 두는 것은 《대전》에 이미 실려 있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동산(童山) 등의 일은 조정에서 이미 구분 처</p>	<p>道, 山、海、狹、東、郡、縣、不、得、傍、列、只、是、一、路、耳、雖、欲、壯、之、不、可、得、也。若、然、徒、擁、虛、號、何、益、於、事? 但、爲、民、弊、而、已。施、愛、之、亂、則、萬、世、必、無、之、事、今、日、民、害、則、眼、前、緊、切、之、弊。且、咸、興、非、特、陵、寢、所、在、道、路、亦、均、北、據、咸、關、人、物、繁、庶、城、郭、完、固、其、爲、形、勝、非、北、青、之、比。萬、一、北、道、有、變、足、以、控、之、必、革、南、道、節、度、使、移、觀、察、使、營、於、咸、興、然、後、事、體、甚、當。臣、先、將、此、意、以、啓、其、時、設、施、未、久、未、從、其、議、今、雖、已、載、《大、典》、此、乃、關、於、國、家、輕、重、非、他、小、事、之、比。臣、意、以、爲、‘改、之、無、妨。’富、寧、逃、民、前、既、以、利、誘、而、致、之、其、刷、來、之、民、亦、不、罪、之、專、行、姑、息、此、非、爲、國、永、久、之、計。臣、亦、以、此、意、再、三、啓、請、然、其、時、既、不、能、行、之、今、若、罪、之、亦、恐、有、驚、動、也。” 金、謙、光、議：“永、安、六、鎮、教、授、以、文、臣、差、遣、似、合、大、體。但、新、設、衙、祿、於、國、家、經、費、何、如? 臣、愚、以、爲、‘洪、原、以、北、教、授、訓、導、特、加、一、資、其、待、也、與、他、道、異、而、六、鎮、則、道、路、尤、隔、與、胡、地、無、別、人、人、厭、避、固、也。’於、遞、還、時、又、加、一、資、而、授、顯、官、以、獎、其、意。李、施、愛、亂、後、本、道、人、心、未、定、世、祖、以、北、道</p>
--	--	--

리하였고, 인하여 존홀(存恤)15914) 하였으니, 그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허중(許琮)은 의논하기를,

“영안도 6진의 교수를 문신으로 정해 보내는 것은 거행함이 가할 듯하나, 아록(衙祿)의 일은 그 어려움이 방수(防戍)하는 만호(萬戶)에게 비할 것이 아닙니다. 만호가 이미 녹(祿)이 없는데, 교수에게만 녹을 줄 수 없습니다. 세조께서 이시애가 난(亂)을 일으킨 뒤에 북도(北道)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남도 절도사를 설치하여 진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형세를 장(壯)하게 해야만 진압해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저들에게 약함을 보이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본도는 산과 바다가 좁게 결속되어 고을을 널리 벌릴 수 없고, 단지 하나의 길일 뿐이므로 비록 장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갓 실속 없는 이름만 가질 뿐 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민폐(民弊)가 될 뿐입니다. 이시애의 난은 만세에 반드시 없을 일이고 오늘날 백성의 피해는 눈 앞에 긴절(緊切)한 폐단입니다. 또 함흥은 능침(陵寢)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도로도 평평하며 북쪽으로 함관(咸關)에 의거하여 인물이 번성하고, 성곽(城郭)이 완전하고 튼튼하여 그 형세의 아름다움이 북청(北靑)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북도에 사변이 있으면 즉시 제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남도 절도사를 혁파하고 관찰사의 감영(監營)을 함흥으로 옮겨야만 사체(事體)가 합당할 것입니다. 신이 앞서 이 뜻을 가지고 아뢰었으나, 그때 <남도 절도사를> 설치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 의논을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비록 이미 《대전(大典)》에 실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바로 국가의 경중(輕重)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작은 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고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부령(富寧)의 도망한 백성은 전에 이미 이(利)로 달래어서 오게 하였으며, 찾아내어 돌아온 자도 죄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식적(姑息的)으로 시행하니,

道路遙遠，置監司、節度使各一員，以鎮撫之。此一時權宜之舉。況歲在己丑，已革北道監司，而南道兵使，因循不革，今北方已定，國家無事，南道節度使，更無措置等事，革之爲便。咸興雖施愛黨與助亂之地，祖宗陵寢所在，道路適均，以故世祖仍舊道號曰咸鏡，願遵其意勿改。童山之類，於其刷還之時，既不加罪，今若追議罪之，則彼必驚動，亦乖來者撫之之意。”韓致禮議：“文臣數少，其教授不可盡差，國穀有數，不可給祿。南道節度使及咸興爲郡，已載《大典》，不可更改。童山等，其未還者多，今若治罪，恐或驚動。”御書曰：

皆難舉行。童山等，非國無威，且非姑息。爲數十人而輕動，不如全萬民，而久安。且時事不可一概料也。

이는 나라를 위하는 영구한 계책이 아닙니다. 신이 또한 이 뜻으로 두세 번 아뢰어 청하였으나 그때에 이미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만약 죄를 주면 또한 경동(驚動)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영안도 6진(鎭)의 교수를 문신(文臣)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은 대체에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아록(衙祿)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경비에 어떨까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홍원(洪原) 이복의 교수와 훈도(訓導)는 특별히 1자급(資級)을 더하여 그 대우가 다른 도와 다른데, 6진은 길이 더욱 멀리 막혀서 오랑캐 땅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싫어하여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체임(遞任)되어 돌아올 때에 또 1자급을 더하여 현관(顯官)15915)을 주어 그 마음을 권장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이시애의 난이 있는 뒤에 본도 인심이 안정되지 아니하므로, 세조(世祖)께서 북도는 도로가 멀다고 하여 감사(監司)와 절도사(節度使) 각 한 사람씩 두어서 진무(鎭撫)하게 하였으니, 이는 일시의 권의(權宜)15916)로 행한 것입니다. 하물며 기축년(15917)에 이미 북도 감사는 없었으나 남도 병사(南道兵使)는 그대로 두고 없애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북쪽 지방이 이미 안정되고 국가에 일이 없어 남도 절도사는 다시 조치(措置)할 일들이 없으니,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흥은 비록 이시애의 무리의 난(亂)에 협조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이 있는 곳이고 도로가 평탄하므로 세조께서 예전대로 도(道) 이름을 함경도로 하였으니, 원하건대 그 뜻에 따라서 고치지 마소서.

동산(童山)의 무리는 그 쇄환(刷還)할 때에 이미 죄를 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만약 미루어 의논해서 죄를 주면 저들이 반드시 놀라서 동요될 것이며, 또한 오는 자를 어루만지는 뜻에 어긋납니다.”

하고, 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p>“문신(文臣)의 수가 적으니, 그 교수(教授)를 다 문신으로 정할 수 없고, 나라의 곡식이 정해진 수량이 있는데, 녹(祿)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남도 절도사와 함흥을 군(郡)으로 한 것은 이미 《대전》에 실렸으므로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동산(童山) 등은 그 돌아오지 아니한 자가 많으니, 이제 만약 죄를 다스리면 혹시 경동(驚動)할까 두렵습니다.”</p> <p>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이르기를,</p> <p>“모두 거행하기 어렵다. 동산 등의 일은 나라에 위엄이 없는 것이 아니며, 또 고식적(姑息的)인 것도 아니다. 수십 사람을 위하여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만백성을 온전히 하여 오래 편안하게 하는 것만 못하며, 또 시사(時事)는 일괄적으로 헤아릴 수 없다.”</p> <p>하였다.</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6 일(기유)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이 보(堡)를 설치할 곳을 살펴보는 일과 군용(軍容)과 군기(軍器)를 고열(考閱)하는 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 가는데, 만약 삼포(三浦) 등지에 이르러 군용과 군기만 살펴보고 한 마디 말도 없으면, 왜인이 반드시 의혹이 생겨서 도주(島主)에게 전해 보(報)하고 도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청컨대 그 도(道)로 하여금 술과 고기를 갖추게 하여 종사관(從事官)이나 도사(都事)로 하여금 먹이게 하고 인하여 안부를 묻고 오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좋다.”</p> <p>하였다.</p>	<p>○禮曹啓: “右議政洪應, 以設堡處着審及軍容、軍器考閱事, 往慶尙、全羅等道。 若至三浦等處, 只閱軍容、軍器, 無有一言, 則倭人必生疑惑, 轉報島主, 則島主亦必懷疑矣。 請令其道, 備酒肉, 從事官若都事, 使饋之, 仍問寒暄而來。” 傳曰: “可。”</p>
<p>성종 17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월 27 일(경술)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서해도(西海道) 대마주(對馬州) 관처수(對馬州關處守) 진성행(秦盛幸), 일기주(一岐州) 상송포(上松浦) 염진류(鹽津留) 관음사(觀音寺) 간주(看主) 종수(宗殊), 번마주(幡摩州) 일향(日向) 태수(太守) 성구(盛久), 살마주(薩摩州) 시래(市來) 태수(太守) 국구(國久), 비전주 상송포 신전능등(神田能</p>	<p>○庚戌/日本國西海道對馬州關處守秦盛幸、一岐州上松浦鹽津留觀音寺看主宗殊、幡摩州日向太守盛久、薩摩州市來太守國久、肥前州上松浦神田</p>

	<p>登) 수(守) 원덕(源德), 평호(平戶) 우진(寓鎭) 비주 (肥州) 태수(太守) 원풍구(源豐久), 관서로(關西路) 비축통(肥築通)수(守) 중조(重朝), 대마주(對馬州) 월중(越中)수(守) 종성홍(宗盛弘), 상진군(上津郡) 추포(追浦) 백기(伯耆)수(守) 종무차(宗茂次)가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왜(倭) 호군(護軍) 소온 피고파라(所溫皮古破羅) 등 두 사람이 내조(來朝)하였다.</p>	<p>能登守源德、平戶寓鎭肥州太守源豐久、關西路肥築通守重朝、對馬州越中守宗盛弘、上津郡追浦伯耆守宗茂次遣人，來獻土宜。倭護軍所溫皮古破羅等二人來朝。</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2월 1일 (계축) 1번째기사</p>	<p>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이손(李蓀)·곽치희(郭致禧)가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신들이 처음 영안도에 가서 새 지역[新地]의 유무(有無)를 널리 물어보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유시(諭示)하여 알리는 사람에게는 중한 상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한 명도 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본도(本道)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 지역은 토질이 비옥하여 벼[禾穀] 이삭 하나의 크기가 거의 허리통[腰圍]만하고 가지[茄]의 줄기를 도끼로 베게 된다 하므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가서 살려고 하여 간혹 재산을 모조리 처분하고 처자와 부모를 이별하고서 가는 자가 있기도 합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소위 새 지역이란 이에 앞서서도 누차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들이 찾은 곳은 북청(北靑) 동쪽의 깊은 곳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길성(吉城)·명천(明川)에서 도망해 온 자이거나 귀화(歸化)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들이 와서 사는 까닭을 물었더니, 모두들 말하기를, ‘지난 번 본고장에 수해가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유랑하다가 여기에 와서 살게 된 것이고, 국가를 배반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고, 귀화한 사람들은 이에 말하기를, ‘본고장으로 돌아가더라도 생업(生業)에 안정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곳에는 관청의 부역(賦役)이 없기 때문에 와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하였으며, 도망해 온 연월일을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5, 6년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후하게 무마(撫摩)해 주고, 또한 타이르기를 ‘국가에서 반드시 죄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본고장으로 돌아갈지의 여부는 성상께서 재량하</p>	<p>○朔癸丑/永安道敬差官李蓀、郭致禧來復命，仍啓曰：“臣等，初至永安道，廣問新地有無，且諭民以指告者重賞之意，無一人告者。但本道人言：‘新地土性沃饒，禾穀一穗之大，幾如腰圍，茄莖可以斧伐。聞者多欲就彼而居，或有破產傾財，離妻子、父母而行者。’且云：‘所謂新地，前此屢尋不得。’今臣等所得者，北靑東偏深處也，居于此者，皆吉城、明川逃來者及向化人也。臣等問其來居之由，皆云：‘頃緣本土有水患，未得耕稼，流寓至此，非謀背國家也。’向化人等乃曰：‘歸本土，亦可安業，但此處，則無官役，故來居耳。’問其逃來年月，答曰：‘五六年。’臣等厚撫之，且諭曰：‘國家必不罪，爾等還本與否，在於上裁。’此人等，皆惡刷還，且北靑之地，距賊境不遠，此人不必刷還本土。若欲刷還，則或恐逃散，許令仍居，無</p>

	<p>시기에 달려 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쇠환(刷還)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북청(北靑) 땅은 적(賊)들의 지경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이 사람들을 본고장으로 쇠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일 쇠환하려고 한다면 혹은 도망하여 흩어지게 될 듯하니, 그대로 살게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부역을 도피한 백성은 진실로 마땅히 쇠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제 고장이 싫어 여기로 온 것이어서, 지금 본고장으로 쇠환하려고 하면 소요스러운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대로 살도록 한다고 해도 어찌 해롭겠는가?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와 의논하라.”</p>	<p>妨。” 傳曰：“逃賦之民，固當刷還，然此輩既厭彼就此，今欲還本，則不無騷擾之弊，使之仍居，何妨？其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六曹。”</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3일 (을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乙卯/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5일 (정사) 4번째기사</p>	<p>안주 목사(安州牧使) 이공(李拱)이 와서 아뢰기를, “본주(本州)의 창고 곡식이 쌓아 놓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묵은 것이 서로 잇따르게 되었으므로 되질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본주의 소속인 노강(老江)의 수군(水軍) 2백 명을 사용하여 되질하게 하소서. 또 지금 바야흐로 국가에서 양계(兩界)15983)에 관원을 보내어 미곡(米穀)을 다시 되질하니, 청컨대 본주의 것도 그렇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일전에 홍 정승(洪政丞)이 번고(反庫)15984)는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수령(守令)들이 한갓 문서로만 서로 전해주고 받고 한다면 혹은 명목(名目)만 있고 실지는 없게 될 듯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p> <p>하였다. 이공이 또 아뢰기를, “본주의 읍성(邑城)이 무너져 위험할까 염려스러우니, 청컨대 고을에서 가까</p>	<p>○安州牧使李拱來啓曰：“本州倉穀，積儲已久，陳陳相因，斗量爲難。請用州屬老江水軍二百名斗量。且今國家，方遣官兩界，改量米穀。請於本州，亦如之。” 傳曰：“日者洪政丞言：‘反庫無益’，予意謂：‘守令徒以文書相傳受，則意或名存實無也’其議于領敦寧以上。” 拱又(爲) [啓] 曰：“本州邑城頽圯，緩急可慮。請役州近宣沙、廣梁、老江水軍拾名修築。” 傳曰：“可。”</p>

	<p>운 선사(宣沙)·광량(廣梁)·노강(老江)의 수군을 10명씩 역사(役事)시켜 수축(修築)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가(可)하다.”</p> <p>하였다.</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7일 (기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己未/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10 일(임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壬戌/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10 일(임술) 3번째기사</p>	<p>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모든 고을의 곡식을 다시 두량(斗量)하는 것이 적당하겠는가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무릇 수령(守令)들이 교대할 적에 감축(減縮)이 있게 될까 두려워, 번고(反庫)할 때 넉넉한 것이 많게 하려고 힘쓰므로, 반드시 감축이 없을 것이니, 단지 해유(解由)16007)의 법만 거둬 밝히고, 따로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다시 두량(斗量)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농사일이 한창 바빠 백성을 부리기가 마땅치 않습니다.”</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수령들이 교대할 때 인정(人情)에 구애되어 번고(反庫)하지 않고 인수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농사일이 바야흐로 일어나는 때이니, 아직 추수하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안주(安州)는 수군(水軍)을 써서 번고하니, 비록 농사철에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p>	<p>○命議遣朝官, 改量諸邑穀便否于領敦寧以上。 鄭昌孫、韓明澮、尹弼商、尹壕議: “凡守令交代之際, 恐有虧欠, 反庫之時, 務欲多贏, 必無虧欠。 但申明解由之法, 則不必別遣朝官改量。 且今農務正逼, 不宜役民。” 李克培議: “守令交代之際, 拘於人情, 不反庫而傳授者, 間或有之。 然農務方興, 姑待秋成爲之, 何如? 安州用水軍反庫, 雖在農月, 無妨。” 沈澮、盧思慎議: “守令交代之際, 授受不明 虧欠之穀, 必多。 於農隙, 遣官反庫, 誠爲有益。” 傳曰: “安州, 則以當領水軍</p>

	<p>하고, 심회(沈澹)·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수령들이 교대할 적에 인수 인계가 분명하지 못하여 감축된 곡식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농한기에 관원을 보내어 번고하면 진실로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안주(安州)는 당령 수군(當領水軍)16008) 으로 번고를 하고, 나머지 고을들은 추수하기를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反庫，餘邑可待秋爲之。”</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2월 12일(갑자) 1번째기사</p>	<p>알타리(斡朶里)의 부만호(副萬戶) 낭어을거(浪於乙巨) 등 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甲子/斡朶里副萬戶浪於乙巨等二人，來獻土宜。</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2월 13일(을축) 1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기(李克基)가 사조(辭朝)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절도사(節度使) 박지번(朴之蕃)이 사람에게 형장(刑杖)을 때리다가 죽게 하였는데, 사증(詞證)은 모두 승복(承服)하였지만 박지번은 현재까지 승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신이 함문(緘問)16012) 하여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계청(啓請)하여 추신(追身)16013)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지번은 공신(功臣)인데다가 또한 한 지방의 소임을 맡은 사람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또 신이 듣건대, 본도(本道)의 백성들을 지금 바야흐로 입거(入居)16014) 시키고 더하여 유랑민(流浪民)을 쇄환(刷還)하므로, 백성들이 모두 그 고장을 편히 여기고 읍기는 것을 중하게 여겨 애처로운 원망이 바야흐로 일고 있다고 하니, 청컨대 경기(京畿)의 예에 의하여 입거(入居)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우선 쇄환을 정지하게 하소서. 또 장기(長鬢)·경주(慶州)·울산(蔚山)·흥해(興海) 등의 고을은 지난 해에 크게 흉년들었습니다. 신이 부임한 뒤에야 계달(啓達)하여서 구제하려면 반드시 지완될 것이니, 청컨대 그 고을의 군자창(軍資倉) 곡식을 방출하여 적당하게 헤아려서 구제하되,</p>	<p>○乙丑/慶尙道觀察使李克基辭，仍啓曰：“臣聞‘節度使朴之蕃，杖人致死，詞證皆服，而之蕃時未承服。’臣若緘問而不服，則當啓請，追身問之。然之蕃功臣，且受方面之任，何以處之？臣又聞‘本道人民，今方入居，而加以刷還流民，民皆安土重遷，哀怨方興。’請依京畿例，限入居事，姑停刷還。且長鬢、慶州、蔚山、興海等邑，往年大歉。臣赴任後，啓達賑給，則必至稽緩。請發其邑軍資倉，量宜賑給，若猶不贍，更啓何如？”傳曰：“詞證已服，則之蕃何獨不服乎？卿於赴任後，其詞證招辭及之蕃不服之狀以啓，則予當處置。流民刷還及賑民等事，</p>

	<p>만일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다시 계문(啓聞)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증(詞證)이 이미 승복하였는데, 박지번이 어찌 홀로 승복하지 않겠는가? 경(卿)이 부임한 뒤에 그 사증들이 공술한 말과 박지번이 승복하지 않는 상황을 계문하면, 내가 마땅히 처리하겠다. 유랑민을 쇄환하는 것과 빈민을 구제하는 일들은 경이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p>	<p>依卿所啓。</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2월 14일(병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丙寅/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2월 15일(정묘)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뢴 경상도(慶尙道) 성주(星州) 화원현(花園縣)에서 상인[商賈]들의 물화(物貨)를 받았다가 삼포(三浦)16016 왜인(倭人)들의 물건을 구매(收買)하는 것에 관해 제급(題給)한 절목(節目)을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일찍이 그 도의 감사(監司)를 지낸 사람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대저 관가(官家)와 하는 무역(貿易)은 사람들이 모두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법은 절목이 세밀하여 반드시 갖가지 폐단이 많을 것이므로, 준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전례에 의해 각자가 사사로이 무역[互市]하도록 하되, 만일 금물(禁物)을 밀매[潛賣]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징계만 하고, 따로 새 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滄)·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이철건(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대개 물가는 때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여 높낮음이 일정함이 없는 법입니</p>	<p>○戶曹啓慶尙道星州花園縣受商賈人物貨收買三浦倭物題給節目，命議于領敦寧以上及曾經其道監司等。鄭昌孫、尹弼商、金謙光議：“大抵與官家貿易，人皆厭之。況此法節目細巧，弊必多端，似難遵行。依前例，許令私自互市，如有潛賣禁物者，痛懲而已，不須別立新法。”韓明澮、沈滄、李克培、尹壕、李鐵堅議：“依所啓施行。”盧思愼議：“大凡物價，隨時貴賤，低昂無常。若如戶曹所啓，則物價一定，無推移之理。商賈之人，逐物貴賤，乘時邀利，誰肯爲之哉？臣意以謂，互市之法，歷代有之，何必官自收價以給之哉？《大典》用禁物者，罪至</p>

다. 만일 호조(戶曹)에서 아뢰는 대로 한다면 물가가 일정하여 변동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귀하고 천함에 따라 시기를 틈타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 누가 즐겨 하려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무역하는 법이 역대(歷代)로 있었는데, 어찌 관청에서 스스로 값을 거두었다가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전(大典)》에 금물(禁物)을 사용하는 자는 죄가 사형(死刑)에 이르게 되어 있으니, 이 법을 굳게 지킨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범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시 탄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또 승지(承旨)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우승지(右承旨) 한찬(韓儼)·좌부승지(左副承旨) 안침(安琛)·동부승지(同副承旨) 이조양(李朝陽)은 의논하기를,

“백성들에게 사사로이 스스로 매매하도록 하면 폐단이 진실로 많을 것이니, 몰래 금물(禁物)을 가지는 것이 첫번째이고, 기밀(機密)을 누설하는 것이 두번째이고, 이득을 다투다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세번째입니다. 역대의 무역하는 법은 단지 이적(夷狄)들을 견제[羈縻]하기 위한 계책이었고,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법을 조종조(祖宗朝)에 시행하다가 불화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관한 금령(禁令)이 옛 법전(法典)에 실려 있으니, 다시 시행할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성주(星州) 화원현(花園縣)에 왜인(倭人)들의 물품 창고를 설치하여, 무릇 삼포(三浦) 왜인들이 가져다 놓는 물품을 모두 여기에 실어다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가(代價)를 바쳐 상환(償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왜인들의 물품이 매우 많아, 경상도에 저장한 바 대가로 줄 물건으로써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가로 줄 물건을 포소(浦所)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하여 관아에서 매매하기로 하니, 일에 있어서는 편리할 듯합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에는, 서울 안에 있는 객관(客館)은 무역에 관한 금령(禁令)이 매우 엄한데도 오히려 법(法)에 벗어나는 간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수령

於死，堅守此法，則人不自犯，不須更立他法。”又命承旨等議之。左承旨成健、右承旨韓儼、左副承旨安琛、同副承旨李朝陽議：“許民私自買賣，其弊固多。潛持禁物，一也，漏洩機事，二也，爭利構釁，三也。歷代互市之法，只爲竊靡夷狄之計，非欲取利於彼也。此法行於祖宗朝，因生釁乃止。其禁令，載在舊典，其不可復行無疑。國家於星州花園縣，置倭物庫，凡三浦倭人所納之物，盡輸於此，許賈人納價以償之。然倭物甚夥，慶尙所貯價物，不能當之，則又欲使賈人，直納價物於浦所，官爲買賣，於事似便。然臣等以謂‘京中客館，貿易禁令甚嚴，猶有法外之奸。’況守令，節制使，未必盡得其人，萬有庸陋之輩，暗受賈人之賂，恣其所爲，不復禁制，則其流之弊，不可勝言。臣等意以謂，只許賈人貿倭物于花園，官收其價，轉送三浦，以充答賜之數，則(價) [倭] 物不乏於浦所，而賈人不得與倭人相通矣。”右副承旨李世佑議：“在前倭物，自三浦，輸納于花園縣，聽民納價于司贍寺，戶曹隨時低昂移文，照數題給，

(守令)이나 절제사(節制使)들을 모두 책임자를 구하기 어려운데, 만에 하나라도 용렬하고 비루한 무리가 있어 몰래 장사하는 사람의 뇌물을 받고 하는 것이 방자하여 다시 금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한 유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리라고 여깁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단지 상인들에게 화원(花園)에서 만 왜인의 물품을 무역하도록 하여 관아에서 대가를 거두어 삼포(三浦)로 전달하여 보내고 답례로 하사하는 수량을 보충하게 한다면, 포소(浦所)에서 왜인들의 물품이 품질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인들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우부승지 이세우(李世佑)는 의논하기를,

“이전에도 왜인의 물품을 삼포(三浦)에서 화원현(花園縣)에 실어다 놓고 백성들에게 대가를 사섬시(司贍寺)에 바치도록 하고, 호조(戶曹)에서 시세가 높거나 낮은 대로 이문(移文)하여 수량에 맞추어서 제급(題給)하였었는데, 백성들이 좋게 여기며 하였었습니다. 어찌 물가가 일정하여 변동될 리 없는 것이 노사신(盧思愼)의 말한 바와 같겠습니까? 무역하는 법이 비록 옛적부터 있었지만, 시대가 다르고 사세가 달라져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법인데, 혹시라도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삼포의 왜인들의 물품을 양산(梁山) 동원(東院) 나루에서 배로 역류(逆流)하여 7, 8일이나 가야 바야흐로 화원(花園)에 닿게 되는데, 창고에 넣는 날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전량(錢兩)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량에 맞추어 추징(追徵)하므로, 영수하여 받는 관원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따라서 도망해 흩어지는 사람이 자주 있습니다. 한갓 관원이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삼포에서 동원 나루까지의 거리가 부산(釜山)에서는 1식(息)16017 쯤이고, 제포(薺浦)에서는 3식(息)이고, 염포(鹽浦)에서는 4, 5식(息)이 되는데, 비록 농사철이라 하더라도 인마(人馬)를 뽑아서 정하여 짐을 실어 수송하게 하고,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으레 4, 5일이 걸려 농사에 방해가 되고 시기를 잃게 되므로, 백

而民樂爲之，豈有物價一定無推移之理，如思愼所言者乎？互市之法，雖自古有之，時異事殊，有所難行，脫有爭利生釁，悔不可追。且三浦倭物，自梁山東院津，舟行逆流，經七、八日，方達于花園。及納倉之日，少有錢兩之劣，則照數追徵，領納之吏，不堪其苦，因而逃散者，比比有之，非徒吏爲然。自三浦，距東院津、釜山則一息許，薺浦則三息，鹽浦則四五息，雖三農之月，抄定人馬，馱載輪轉，往返之際，動經四五日，妨農失時，民之受弊，亦不貲。臣意以爲，倭物納三浦所在官錄會計，民之願買者，告戶曹，戶曹依前納價司贍寺貿易之例，隨物貴賤，低昂其價，某人布幾匹、某物幾斤兩，俱錄給牒，所在官吏，依牒受布照數題給，以前所納布，充後來倭物之價，或官給價貿易，依前輸入花園縣，以備國用，又嚴立禁防，使商賈之人，不得來往三浦，則無轉輸之弊，而官民兩便矣。不必令民，隨來隨買，使與倭人，一時準到，而曲爲隄防，如戶曹所啓也。”傳曰：“互市之法，自古有之。今若先納其價，而官收以給，則商人留

성들이 받는 폐해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왜인들의 물품을 삼포에 갖다 놓을 적에 소재지의 관원이 회계하여 기록하고, 백성으로서 사기를 원하는 자가 호조(戶曹)에 신고하면, 호조에서는 이전에 사섬시(司贍寺)에다 대가(代價)를 바치고 무역하던 예에 의하여 물가가 높거나 낮은 대로 대가를 낮추거나 올려서, 아무 사람의 베[布] 몇 필, 아무 물품이 몇 근량(斤兩)이라는 것을 갖추 기록하여 문서[牒]를 발급하고, 소재지의 관원은 그 문서에 의하여 베를 받고서 수에 맞추어 제급(題給)하게 하며, 전에 받은 베로 뒤에 오는 왜인들의 물품 값을 충당하기도 하고, 혹은 관아에서 대가를 주고 무역하여 이전처럼 화원현으로 실어들여 국가의 사용에 대비하게 하며, 또 엄중하게 금방(禁防)을 세워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삼포에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면, 수송하는 폐단이 없어 관청이나 백성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호조(戶曹)에서 아된 바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오는 대로 사게 하느라 왜인들과 일시에 함께 오도록 해 놓고 꼭진하게 방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역하는 법은 옛적부터 있었다. 지금 만약 먼저 그 대가를 받아 놓고 관청에서 거두어 주게 된다면, 상인(商人)들이 지체하게 되어 즉시 받아내지 못하므로 반드시 즐겨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사로이 서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금물(禁物)을 몰래 가지게 될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왜인들과의 무역은 중국과는 같지 않으므로, 지금 비록 몰래 금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금은(金銀) 등의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내 생각에 서로 무역하도록 하되 엄하게 금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조종조(祖宗朝)에 서로 무역하도록 허락했었다가 칼을 뽑고 서로 공격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중지했다고 합니다. 관청에서 줄 적에 비록 더러 지체하게 되더라도 이익이 많으므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

連, 未卽受出, 必不肯爲。 今不許私相貿易者, 慮有潛持禁物故也。 與倭人互市, 非中朝比, 今雖潛用禁物, 不過金、銀等物耳。 予意 ‘許令相市, 而嚴立法禁’, 何如?’ 政院啓曰: “臣等聞 ‘祖宗朝, 許令相市, 而有挺刃相擊者, 故遂止焉。’ 官給之際, 雖或逗留, 利重故爲之者多。 今雖嚴立法制, 相市之間, 必構罅隙。”

	고, 지금 비록 엄하게 법제(法制)를 세우더라도 서로 무역하는 사이에 반드시 불화나 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16 일(무진)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일기주(一岐州) 수호 대관(守護代官) 진궁(眞弓) 병부 소보(兵部少輔) 원무(源武),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戊辰/日本國一岐州守護代官眞弓兵部少輔源武、對馬州太守宗貞國遣人，來獻土宜。
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18 일(경오) 1번째기사	울랑합(兀良哈)의 지휘(指揮) 작랑합(綽郎哈) 등 8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庚午/兀良哈指揮綽郎哈等八人，來獻土宜。
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18 일(경오) 3번째기사	정조사(正朝使)의 선래 통사(先來通事)16018) 가 문견(聞見)한 사목(事目)을 아뢰었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정월 초하룻날 별이 서쪽 방향에 떨어지며 흰 기운이 마전한 벼가 내려오듯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날 저녁에 육부(六部)의 상서(尙書) 및 여러 대신들이 모두 대궐로 나아갔습니다. 초사흘날은 회례연(會禮宴)16019) 을 정지하도록 명하고, 조정에 있는 문무(文武) 군신(群臣)들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요사이 상천(上天)이 경계를 보이느라 천재(天災)와 이변(異變)이 번갈아 나타나, 지난 연말 및 올 정조(正朝)에 성변(星變)이 나타나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짐(朕)이 매우 놀랍고 두려운데, 오직 천도(天道)는 인사(人事)와 서로 유통(流通)되는 것이어서, 인사가 어그러지면 천도가 순조롭지 않은 것이다. 그대들 문무 백관은 모두 짐과 함께 하늘이 명한 관직을 맡은 사람이고, 오부(五府)·육부(六部)와 도찰원(都察院)·대리시(大理寺)·통정사(通政司)의 당상관(堂上官), 육과(六科)·십삼도(十三道)의 관원은 부탁받은 것이 더욱 중하니, 무릇 일체의 폐정(弊政)과 국가 및 백성에게 이	○正朝使先來通事啓聞見事目。其略曰：“正月初一日，有星隕于西方，白氣如布練而下，俄而有聲如大雷。是夕，六部尙書及諸大臣，皆詣闕。初三日，命停會禮宴，勅諭在廷文、武群臣曰：‘茲者上天垂戒，災異迭見，去歲暮及今正朝，星變有聲如雷。朕甚驚懼，惟天道與人事，相爲流通，人事乖違，天道不順。爾文、武百官，皆與朕，共天職者；而五府、六部、都察院、大理寺、通政司堂上官、六科、十三道官，付托尤重。凡一應弊政，有利於國家生民之事，其各指實陳奏，無或顧忌。朕當采而行之，用回天

로움이 있을 일을, 각기 사실을 지적하여 진달(陳達)하기를 기탄없이 하라. 짐이 마땅히 채택해서 시행하여 하늘의 뜻을 돌리겠노라’ 하였습니다. 또 구내[海內]에 반사(頒赦)16020) 하기를, ‘짐(朕)이 조종(祖宗)의 중대한 자리를 이어받아 만방(萬方)을 어루만져 다스리면서, 맡겨진 소임이 몹시 어려운 것을 생각하여 감히 스스로 겨를을 갖거나 스스로 안일하게 즐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스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재해가 번갈아 일어나, 지도(地道)가 편치 못하고 천시(天時)는 대단한 가뭄이 들어 땅이 운택한 데가 없다. 짐이 간절하게 근심스럽고 두려워 일찍이 마음을 재계(齋戒)하여 정성스럽게 빌었고, 조정의 신하를 보내어 산천(山川)에 제사하도록 하였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마침내 연사(年事)가 풍년들지 못하여, 하동(河東)·산동(山東)·기내(畿內)가 대개 굶주리는 데가 많고 섬서(陝西)·산서(山西)는 더욱 극심하여, 항산(恒産)과 실가(室家)를 버리고 서로 돌보지 않는 자가 있게 되었다. 백성들이 무슨 죄로 이런 위험한 액운에 걸렸으며, 짐이 국민의 주인이면서 조금도 걱정이 없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 차례 널리 대중의 의논을 채택(採擇)하여, 내탕(內帑)16021) 과 창고에 저축한 것을 방출하되, 여러 유사(有司)들에게 다방면으로 구제하도록 신칙하여,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모두 낙토(樂土)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였었다. 의외에도 지난 세모(歲暮)와 올 연초(年初)에는 성변(星變)이 나타나 소리까지 났었다. 짐의 마음에 오히려 불쌍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서 곧 조정의 신하들에게 신칙하여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갖추 진달(陳達)하게 하였으니, 채택해서 시행하여 아래로는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하고 위로는 천심(天心)에 응답하겠다. 하물며 봄의 온화한 때가 되어 만물들이 발육(發育)하는 참이기에, 하늘[乾元]의 만물을 발생시키는 인(仁)을 삼가 이어받아, 천하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특전(特典)을 크게 펴노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意.’ 又頒赦海內曰：‘朕紹祖宗大位，撫御萬方，思惟負荷之艱，罔敢自違自豫。然而治效未著，災沴迭興，地道不寧，天時亢旱，土無所演。朕切憂惶，嘗齋心懇禱，遣廷臣，祭告山川。(柰)[奈]歲竟不登，而河東、山東、畿內，率多饑饉；陝西、山西尤劇，至有棄恒産、室家，不相顧者。元元何辜，罹茲危阨，朕爲民主，可愀然莫之愍耶？累博采群議，發內帑倉儲，勅所司大小，多方賑濟，期此矜人，咸歸樂土。不意冬暮、春初，星變有聲。朕猶矜惕，載勅廷臣，備陳時政得失，采納而行，用以下慰民望，上答天心。況方春和時，萬物發育，祇承乾元資始之仁，誕敷寬恤天下之典。”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20 일(임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壬申/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24 일(병자)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일기주(一岐州) 상송포(上松浦) 염진류(鹽津留) 차랑 원경(次郎源經), 상송포(上松浦) 염진류(鹽津留) 송림원(松林院) 원실차(源實次), 예주(藝州) 해적 대장(海賊大將) 촌상 비중수(村上備中守) 국중(國重)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丙子/日本國一岐州上松浦鹽津留〈助〉次郎源經、上松浦、鹽津留松林院源實次、藝州海賊大將村上備中守國重 [村上備中守國重] 遣人, 來獻土宜。</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25 일(정축) 1번째기사</p>	<p>올량합(兀良哈)의 호군(護軍) 나송개(羅松介) 등 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丁丑/兀良哈護軍羅松介等七人, 來獻土宜。</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26 일(무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戊寅/上詣泰慶殿, 上食。</p>
<p>성종 17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2월 26 일(무인) 2번째기사</p>	<p>거가(車駕)16027) 를 따라간 재상들을 명소(命召)하여 왜인(倭人)들의 물품을 사사roi 무역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허중(許琮)·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왜인들의 물품을 사사roi 사는 일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해왔는데, 세조(世祖) 말년에 이르러 소소한 폐단 때문에 정지하고 관청에서 그 대가(代價)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다가 사들인 물품들이 쓸데없이 쌓여 있으니, 이는 큰 폐단입니다. 또한 이번에 호조(戶曹)에</p>	<p>○命召隨駕宰相更議倭物私貿易便否。鄭昌孫、尹弼商議：“依前議施行。”許琮、韓致禮議：“私買倭物，自祖宗朝行之。至世祖末年，以小弊停之，官給其價。因此所費不貲，而所買之物，積之無用，此是巨弊。且今戶曹所啓節目細巧，勢終難行。又恐官掌出納，則人不樂爲，倭人到浦，不得趁時貿易，久留生怨。依前受教，</p>

서 아된 절목(節目)은 세밀하여 일의 형세가 마침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청에서 출납(出納)을 관장하면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을 것이고, 왜인들이 포소(浦所)에 왔다가 제때에 무역하지 못하고 오래 머무르게 되면 원망이 생길 것이니, 이전에 수교(受敎)한 대로 사사로이 무역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무역하여 옮기는 일이 옛적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금은(金銀)과 토표피(土豹皮)를 금하는 것은, 본국(本國)에서 나는 것이 아닌데 중국에서 알고 상례의 공물(貢物)로 삼을 듯하여서이고, 건주(建州) 야인(野人)들의 무역을 금하는 것은 평안도(平安道) 전체가 허술해져 적로(賊路)를 열어 놓게 될 듯하여서입니다. 삼포(三浦)에서는 왜놈[倭奴]들이 파는 것이 금은(金銀)·동철(銅鐵)·피물(皮物)·주홍(朱紅)·석류황(石硫黃)인데 모두 우리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물건이고, 우리 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은 또한 화약(火藥)과 금은(金銀)의 두어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염려되는 일은, 왜놈들의 성질이 본래 조급하고 우리 나라 상인들은 마음이 매우 간사하므로, 일의 형세로 보아 반드시 서로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상인들로 하여금 해조(該曹) 및 거주하는 고을에 신고하고 노인(路引)16028) 을 받아 소재지의 관원에게 제시하게 하면, 수령(守令)이 물건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공평한 값으로 무역하여 하나하나 분간해서 주고 노인(路引)은 회보(回報)하게 하소서. 만일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서 법을 어기고 몰래 파는 자가 있으면, 작은 것은 직접 결단하고 큰 것은 계문(啓聞)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되, 잘 단속하지 못하는 수령이나 만호(萬戶)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16029) 로 논죄하게 하소서.”

하고, 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삼포(三浦)에서의 사사로운 매매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시행한 지 이미 오

許令私買爲便。” 孫舜孝議：“貿遷有無，自古而然。金、銀、土豹皮有禁，以非本國所產，恐中國知之，以爲恒貢也。 禁建州野人互市者，以平安一道虛疎，恐開賊路也。 如三浦，則倭奴所賣者， 金、銀、銅、鐵、皮物、朱紅、石硫黃，皆我國功用之物，而我國禁物，亦不過火藥、金、銀數物而已。 所慮者，倭奴性本躁急，我國商賈，其心甚奸，勢必相爭，以生罅隙。 宜令商賈，告該曹及所居邑，受路引，呈所在官，守令照物置簿 平價貿易，一一分授，路引回報。 如有挾禁物違法潛賣者，小則直斷，大則啓聞定罪。 其不能檢舉守令、萬戶， 以制書有違律論。” 李坡議：“三浦私賣，自祖宗朝，行之已久。 至世祖末年，恐商賈買賣之際，容有冒濫，始禁私賣，此特小弊耳。 因此倭人所賣如銅、鐵、皮物及細瑣雜物，並皆公買。 其物，於國家不繁，而所給之價，歲費千萬，儲於官家，積如丘山，銅、鐵或致消融，皮物日就腐朽，終於無用。 今依祖宗故事， 許人私買爲便。 但既許私買，又從而官掌出納， 則人肯樂爲之買賣

	<p>래되었습니다. 세조(世祖) 말년에 이르러 상인들이 매매할 적에 혹시 외람된 것이 있을까 하여 비로소 사사로운 매매를 금하였는데, 이는 다만 소소한 폐단일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왜인들이 관 동(銅)·납(鐵)·철(鐵)·피물(皮物) 및 자질구레한 잡물(雜物)을 모두 다 공무역(公貿易)했는데, 이런 물품은 국가에 긴요한 것도 아니면서 주어야 하는 대가(代價) 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재물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가(官家)에 쌓아놓아 산더미처럼 쌓였었는데, 동·납은 간혹 녹고 피물(皮物)은 날마다 부패하여 마침내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종조의 고사(故事)대로 사람들에게 사사로운 무역을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이미 사사로운 무역을 허락해 놓고 또 뒤따라 관가에서 출납(出納)을 관장한다면 사람들이 즐겨 사고 팔고 하려 하겠습니까?”</p> <p>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왜인들이 동(銅)·납(鐵)·철(鐵)·소목(蘇木) 등의 물건을 사사로운 무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지(無知)한 상인들이 금령(禁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러는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된다면, 이는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사사로운 무역을 제외하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대가(代價)를 왜인들의 물품이 있는 소재지의 관원에게 바치도록 하고, 공평하게 왜인들의 물품을 받게 하라는 것으로 이미 전교(傳敎)가 있었습니다. 이는 왜인들의 배가 오는 곳에서 이전대로 관원이 대가를 주고 물품을 거두어 놓고서 상인들이 스스로 대가를 바치기를 천천히 기다렸다가 해조(該曹)의 문인(文引)16030) 을 보고 관가에서 스스로 무역해 준다면, 금령을 범하거나 불화가 생기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公私) 양측이 편리하고 평탄하여 시행하기도 쉬울 것이니, 다시 자질구레한 조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p> <p>하고, 정괄(鄭括)은 의논하기를, “삼포(三浦)에서의 무역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지금까지 혹은 관</p>	<p>哉?” 魚世謙議：“倭人銅、鐵、鐵、蘇木等物，私自貿易，然無知商賈人，不畏禁令，或挾持禁物，或爭利生釁，是誠可慮。除私貿易，許商賈人納價於倭物所在官，平受倭物事，已有傳敎。是則倭舶到處，依前官給其價，而收其物，徐待商賈自願納價，照該曹文引，官自貿給，則無犯禁生釁之弊，公私兩便，坦然易行，不必更爲猥碎之條。” 鄭括議：“三浦貿易，自祖宗朝，以至于今，或官或私。其禁私而官貿者，以商賈奸詐之徒，買賣之際，濫用禁物，爭利生釁也。若禁私賣，則依前官貿，移輸花園縣貿易耳，不必別立新法。許令私貿，則從其情願，自相買賣，可也，何必官掌出納哉？臣聞‘花園縣貿易倭物，積於無用。’況互市之法，歷代皆有，許自貿易爲便。然防禁不可不嚴，令本道觀察使、所在守令、萬戶，嚴加禁防。” 傳曰：“此事只有二意，而外方之事，予未悉知，故今不可遽斷。大抵商賈人多詐，與倭買賣之際，不無爭利生釁之弊。且官收倭物，以給賈人，則非徒守令出納有弊，賈人亦未及時受出。今議或云：</p>
--	---	--

무역(官貿易)을 하다가 혹은 사무역(私貿易)을 하다가 하였는데, 사무역을 금하고 관무역을 하는 것은, 상인들 중의 간사한 무리들이 매매할 즈음에 외람되게도 금물(禁物)을 가지고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사로운 매매를 금하려면 이전처럼 관무역하여 화원현(花園縣)에 실어다 놓고서 무역하게 하면 되고 따로 새 법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사무역을 하게 하려면 그들의 소원대로 각자 서로 매매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어찌 관가에서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화원현에는 무역해 놓은 왜인들의 물품이 쓸데없이 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무역하는 법이 역대마다 모두 있었으니, 스스로 무역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금방(禁防)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소재지의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로 하여금 엄하게 금방(禁防)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단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외방(外方)의 일이라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히 갑작스럽게 결단하지 못하겠다. 대저 상인은 간사한 사람이 많아 왜인들과 매매할 적에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를 일으킬 폐단이 없지 않다. 또 관가에서 왜인들의 물품을 거두어 상인들에게 주기로 한다면, 수령(守令)들이 출납(出納)하느라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또한 때에 맞게 받아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혹 이르기를 ‘관아에서 화매(和賣)16031) 하여 다시 민간에 판다.’고 하였는데, 만일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다면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북경(北京)에 가는 사행(使行) 때 금물(禁物)에 대한 법령이 비록 엄중하기는 하나, 간혹 은(銀)이나 다른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 몰래 파는 자가 있는데, 다만 발견된 자가 없기 때문에 죄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왜인들에게 화약(火藥)과 은(銀)을 가지고 금(金)과 바꾼다면, 이는 진실로 금물(禁物)이니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해야 한다. 또 상인 중에 능

‘官爲和賣，轉鬻於民。’ 守令如其不賢，則豈無其弊？赴京之行，禁物之令，雖嚴然，或以銀，或以他禁物，挾歸潛賣者有之。但無現發者，故未之罪耳。今於倭人，如以火藥、銀換金，此實禁物，當置重典。且賈人中有能捕告者，仍給犯者財產。如此嚴禁，則人皆有所畏，而不敢爲。其同類者，亦利其財，而樂告之矣。以此意更問，今日議得宰相，承旨等，亦可議啓。”

	<p>히 잡아서 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하여 범죄한 자의 재산을 주어야 한다. 이처럼 엄중하게 금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감히 하지 못할 것이고, 동류(同類)인 자는 또한 그의 재산을 이롭게 여기고 즐겨 고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오늘 의논을 한 재상들에게 다시 묻고, 승지들도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1일 (임오) 2번째기사</p>	<p>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 등이 아뢰기를, “왜인(倭人)의 물건을 무역하는 폐단은 상교(上敎)가 마땅합니다마는, 상인(商人)이 서로 매매하도록 허가하면 금하는 물건을 몰래 감추어 사사로이 서로 무역할 것이니, 이 때문에 말썽을 일으킬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허종(許琮)의 의논에는 잠시 시험할 것이라 하였으나, 국가에서 어찌 법을 세우고 나서 그 가부(可否)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왜인과 시험하고 나서 그만둔다면 저들이 반드시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그만두는 것이 낫겠습니다.”</p> <p>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금·은·초서피(貂鼠皮)는 우리 나라에서 나지 않으므로, 중국에 대하여서는 본래 금하는 물건이나, 왜인에 대하여서는 금하는 물건이 아니며, 화약(火藥)만은 금하는 물건이기는 하나 백성은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것은 염려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단지 왜인은 성질이 본래 경박하고 조급하니, 판매할 즈음에 이익을 다투어 서로 해친다면, 나라의 체모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에 의논한 재상(宰相)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한치례(韓致禮)·어세겸(魚世謙)을 명소(命召)16043) 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마땅합니다.”</p> <p>하고, 어세겸이 홀로 아뢰기를,</p>	<p>○左承旨成健等啓曰：“倭物貿易之弊，上敎允當。但許令商賈互市，則必潛挾禁物，私相貿易，因此生釁可慮。”</p> <p>許琮議云：“姑將試驗，然國家豈可立法，而後驗其可否乎？若與倭人試驗而後已，則彼人必生猜疑。臣等意‘莫若已之爲愈也。’”</p> <p>右副承旨李世佑啓曰：“金、銀、貂鼠皮，我國不產，於中國，則固是禁物，若於倭人，則非是禁物。但火藥雖爲禁物，而人民得之爲難，此則似若無慮。但倭人，性本輕躁，興販之際，若爭利相害，於國體何如？”</p> <p>命召前議宰相沈滄、尹弼商、尹壕、韓致禮、魚世謙議之。僉曰：“上敎允當。”</p> <p>世謙獨曰：“若如上敎，則雖無私挾禁物者，興販之際，必有爭利者，且商賈之人，若以僞物，欺詐買賣，則彼必怨，而歸怨於國家矣。上敎云：‘官收倭物，以給賈人，則必未趁</p>

	<p>“상교와 같이 한다면, 금하는 물건을 사사로이 감추는 자는 없을 지라도 판매할 즈음에는 이익을 다투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상인이 가짜 물건을 속여서 매매한다면 저들이 원망하여 국가에 원망을 돌릴 것입니다. 정상게서 하교하시기를, ‘관가에서 왜인의 물건을 거둬들여서 상인에게 준다면, 제때에 미처 출납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폐단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으나, 왜인들의 내조(來朝)에는 때가 있으니, 왜인의 물건을 미리 거둬들여서 제때에 준다면 어찌 지체되는 폐단이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백성과 협의하여 매매하는 것이 자질구레한 듯하나, 무릇 관가의 물건을 때로는 백성과 협의하여 매매하기도 하니, 이제 왜인의 물건을 상인에게 주어 무역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무역하는 일은 도주(島主)에게 말한 뒤에 시행해야 하며, 지금 ‘사무역(私貿易)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상인(商人)이 이익을 다투어 말썽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니, 내 생각으로는 도주(島主)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 있고 너희 나라도 그러하므로,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매매하여 서로 도와야 마땅하나, 서로 매매할 즈음에 외람된 일이 있으면 우린 나라 사람은 내가 죄를 다스리겠으니, 너희 나라 사람은 네가 또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르면 도주에게서 회답이 있을 것이니, 도주의 회답을 보고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어떠한가?”</p> <p>하였다. 심희·윤필상·윤호·한치례 등이 아뢰기를,</p> <p>“상교(上敎)가 마땅합니다마는, 도주에게 글로 이를 필요 없이 특송(特送)이 오거든 말로 이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파(李坡)가 아뢰기를,</p> <p>“도주에게 의논하고 나서 시행할 것 없이 이제 곧 상인을 시켜 사사로이 서로 무역하게 하고, 뒷날 특송이 오거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時出納，以致遲留之弊。’ 然倭人等，來朝有時，若預收倭物，趁時給之，則豈有遲留之弊？國家與民和買，似若瑣瑣，然凡官物，或時與民和買。今以倭物，給賈人貿易，似無防礙。” 傳曰：“貿易事，諭于島主，而後可行也。今云：‘不可許私貿易’者，恐賈人爭利，以生釁也。予意，當諭于島主曰：‘我國有不產之物，價國亦然，固當互市，有無相資，然互市之際，若有橫濫之事，我國之人，予當治罪，爾國之人，爾亦治罪，可也。’ 如此諭之，則島主必回答矣，見島主回答，議定何如？” 沈澹、尹弼商、尹壕、韓致禮等啓曰：“上敎允當。但於島主，不必以書諭之，因特送之來，以言諭之，何如？” 李坡啓曰：“不必議于島主，而後可行也。今卽令賈人，私相貿易，待後日特送之來，言之可也。” 傳曰：“貿易非急急之事，待特送之來，諭于島主，而後可行也。”</p>
--	---	--

	“무역은 서두를 일이 아니니, 특송이 오거든 도주에게 이르고 나서 시행해야 하겠다.” 하였다.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1일 (임오)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16042) 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지냈다.	○朔壬午/上詣泰慶殿, 行朔祭。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1일 (임오) 3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조위(曹偉)·유호인(兪好仁) 등을 칭찬하는 일에 대하여 전일에 승지(承旨)가 말하기를, ‘은수(恩數)에 관한 일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아필 수 없습니다마는, 글을 내려서 칭찬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일만으로 작록(爵祿)을 더할 수 없고 물건을 내릴 수도 없겠는데, 저 사람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그 부모도 기뻐하며, 후세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선망하고 사모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조위·유호인은 다 늙은 아버이를 위하여 돌아와 봉양하겠다고 청하니, 혹 그 아버지에게 쌀을 내리거나 물건을 내리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유호인은 전에 수령(守令)이 되어 성적이 하등을 차지하였고, 조위도 아버이를 위하여 외임(外任)이 되어 다 공적이 없었다. 그러나 전에 경연관(經筵官)을 지냈고 그 재주도 이러하니, 내가 그 아버지들에게 쌀을 내리고 이어서 글을 내리어 칭찬하고자 한다.” 하였다.	○傳于承政院曰: “曹偉、兪好仁等褒美事, 前日承旨云: ‘恩數之事, 不敢擅啓, 但賜書褒美, 可矣。’ 予意謂, 只以此事, 加爵祿不可, 亦不可以物賜之也。 使彼人等, 自以爲喜, 而其父母亦喜, 使後世之人, 爭相希慕, 何以爲之?” 承旨等啓曰: “曹偉、兪好仁, 皆爲老親乞歸, 或賜米賜物于其親, 何如?” 傳曰: “兪好仁, 曾爲守令, 而居下; 曹偉, 亦爲親外任, 皆無功績。 然曾爲經筵官, 其才亦如此, 予欲賜米其親, 仍賜書褒之。”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일본국(日本國) 살마주(薩摩州) 도진(島津) 등원지구(藤原持久)와 대마주(對馬州) 대관(對馬州代官) 병부 소보(兵部少輔) 종무승(宗茂勝) 등이 사람을 보내	○甲申/日本國薩摩州島津藤原持久、對馬州代官兵部少輔宗茂勝等遣人, 來

<p>(成化) 21년) 3월 3일 (갑신) 1번째기사</p>	<p>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獻土宜。</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3일 (갑신) 2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기(李克基)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문장(文章)은 여사(餘事)이고 시문(詩文)의 재주는 말단의 기예(技藝)이므로, 그것도 치도(治道)에 관계가 없는 듯하기는 하나, 풍속의 오류(汚隆)16045) 과 세도(世道)의 승강(升降)을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아니, 어찌 폐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는 먼 지방에 치우쳐 있어서 서적(書籍) 이 적으므로, 학문에 힘써서 문장으로 떨치는 사람을 많이 얻기가 쉽지 않은 데, 사대(事大)·교린(交隣)에는 관계되는 바가 참으로 중대하다. 도내(道內)의 함양 군수(咸陽郡守) 조위(曹偉)와 전 거창 현감(居昌縣監) 유희인(兪好仁)은 다 경연(經筵)에 오래 있어서 논사(論思)에 유익하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늙 었다 하여 사직하므로, 내가 뜻을 꺾을 수 없어서 외관(外官)에 보임(補任)하 는 것을 허가하여 충효(忠孝)를 온전히 하게 하였으니, 몸은 외방(外方)에 있 더라도 그 마음은 진실로 임금을 잊은 적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바친 시(詩) 몇 편을 보건대, 편마다 의사(意思)와 격률(格律)이 있으니, 이것이 어 찌 문서(文書) 사이에 묻혀 드디어 힘쓰던 일을 폐기한 자이겠는가? 내가 매 우 가상하게 여기고 기뻐서 포장(褒獎)하려고 생각하니, 경(卿)은 그 아버지에 게 쌀과 콩 각각 15석(碩)을 특별히 주어,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된 자로 하여 금 권장하는 까닭을 알게 하라.” 하였다.</p>	<p>○下書慶尙道觀察使李克基曰： 予惟，文章餘事，詞藻末藝，其於治道， 雖若不關，然風俗之汚隆，世道之升 降，亦因是而知，則其可廢乎？我國僻 在遐裔，書籍罕少，人之力於爲學，而 發爲文章者，未易多得。事大、交隣， 所關誠重。道內咸陽郡守曹偉、前居 昌縣監兪好仁，皆久在經筵，論思有 益，一朝以親老辭職，予不能奪志，許 補外官，俾全忠、孝，身雖在外，其心 固未嘗忘君矣。今觀其所進詩若干篇， 篇篇皆有意思、格律，是豈汨沒簿領 間，遂廢所業者乎？予甚嘉悅，思欲褒 獎。卿其特給其親米、豆各十五碩， 使爲子爲父母者，知所以勸。</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3일 (갑신) 3번째기사</p>	<p>조위(曹偉)·유희인(兪好仁)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그대는 논사(論思)하는 지위에 오래 있어서 도운 것이 크고 많았지마는, 어 버지가 늙었다하여 자신이 고향에 돌아가 봉양하겠다고 청하므로, 구차하게 그 뜻만을 따라 외방에 보임하도록 허가하였었는데, 그대의 몸은 외방에 있을 지라도 어찌 임금을 잊었겠는가? 이제 그대가 바친 시고(詩稿)를 보건대, 글 재주가 숭상할 만하니, 내가 감히 여사(餘事)라 하여 소홀히 여기겠는가? 매</p>	<p>○下書于曹偉、兪好仁曰： 爾久在論思之地，裨益弘多，但以親 老，乞身歸養，苟循其志，許補外寄， 雖爾身在外，豈嘗忘君耶？今觀所進詩 藹，詞華可尙，予敢以餘事忽之？深</p>

	우 감탄하고 칭찬하여 특별히 본도(本道)로 하여금 그대의 어버이에게 쌀과 콩 아울러 15석을 내리어 포상하게 하니, 그대는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加歎賞，特令本道，賜爾親米、豆并十五碩，以褒之爾。 其知悉。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4일 (을유) 1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임보형(任甫衡)의 어미에게 부물(賻物)로 쌀 20석(碩), 정포(正布) 50필(匹), 종이 1백 권(卷), 청밀(淸蜜)16046) 7두(斗), 진유(眞油)16047) 10두, 여섯 장 이어붙인 유둔(油苴) 둘, 관(棺)·곽(槨) 각각 하나를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임보형의 어머니는王大妃(王大妃)의 외할머니였다.	○乙酉/傳旨戶曹， 賜任甫衡母賻米二十碩、正布五十四、紙一百卷、淸蜜七斗、眞油十斗、連六張油苴二、棺·槨各一。 甫衡母， 乃王大妃外祖母。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6일 (정해)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丁亥/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7일 (무자)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일기주(一岐州) 상송포(上松浦) 염진류(鹽津留) 조차랑 원경(助次郎源經)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戊子/日本國一岐州上松浦鹽津留助次郎源經遣人， 來獻土宜。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11일(임진)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壬辰/上詣泰慶殿， 上食。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13일(갑오)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관서로(關西路) 축(筑)·풍(豐)·비(肥) 삼주 총태수(三州總太守) 태재부 도독(太宰府都督) 사마 소경(司馬少卿) 정상(政尙)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왜(倭) 호군(護軍) 조국차(助國次) 등 3인이 내조(來朝) 하였다.	○甲午/日本國關西路、筑、豐、肥三州總太守太宰府都督司馬少卿政尙遣人， 來獻土宜。 倭護軍助國次等三人來朝。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임금이 광릉(光陵)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지냈다. 수릉관(守陵官)·시릉 내시(侍陵內侍)·참봉(參奉)과 구릉(舊陵)의 입번 종친(入番宗親)·참봉·내관(內官)을	○丙申/上詣光陵， 行望祭。 召守陵官、侍陵內侍、參奉、舊陵入番宗

<p>(成化) 21년) 3월 15일(병신) 1번째기사</p>	<p>막차(幕次)로 불러 임금이 슬피 울며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 어느덧 상기(祥期)가 되었으니, 자주 와서 능에 참배하러 해도 할 수 없겠다.” 하고, 오랫동안 소리를 머금고 목이 메어 슬픔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니, 좌우에서도 다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이어서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술을 내리고, 아래로 반감(飯監)·각색장(各色掌)까지 의복 따위의 물건을 차등을 두어 내리게 하였다.</p>	<p>親、參奉、內官于幕次。 上悲泣曰：“歲月推遷，奄及祥期，雖欲數來拜陵，不可得矣。” 吞聲嗚咽，悲不自勝者久之，左右亦皆掩泣。 仍命承旨賜酒，下逮飯監、各色掌，賜衣服等物，有差。</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15일(병신) 2번째기사</p>	<p>봉선사(奉先寺)에 쌀과 콩 아울러 60석(碩), 면포(綿布) 50필(匹), 정포(正布) 10필을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절[寺]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p>	<p>○賜奉先寺米·豆并六十碩、綿布五十四匹、正布十四匹。 仍傳曰：“非爲寺也。”</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16일(정유) 1번째기사</p>	<p>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이르기를, “어제는 날이 맑아서 능에 참배하였는데, 오늘은 가물다가 비가 내리니, 승정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내가 술을 내리니, 입직(入直)한 도총부(都總府)·병조(兵曹)의 제장(諸將),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을 불러 한 잔씩 마시도록 하라.” 하니, 도승지(都承旨) 권건(權健) 등이 아뢰기를, “어제 능에 참배하셨는데, 오늘은 또 비가 내리니, 신들의 뜻으로는 무어라 해야될 수 없습니다.” 하였다.</p>	<p>○丁酉/御書下承政院曰： 昨日晴而拜陵，今日則旱而雨，政院之意，以爲‘何如?’ 予賜酒，其召入直都總府、兵曹諸將、弘文館、藝文館，一飲可也。 都承旨權健等啓曰：“昨日拜陵，今日又雨，臣等之意，何量?”</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17일(무술) 1번째기사</p>	<p>사도 순찰사(四道巡察使) 홍응(洪應)이 와서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지금 보(堡)를 설치하는 곳은 다 요해지(要害地)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본 전라도의 여섯 곳은 다 보를 설치할 만하므로, 신이 이미 돌을 주워 모으게 하였습니다. 경상도의 삼포(三浦)16070) 는 전에 성보(城堡)를 설치하</p>	<p>○戊戌/四道巡察使洪應來復命，上引見，謂曰：“今設堡之地，皆要害乎?” 對曰：“臣所見全羅道六處，皆可設堡，臣已令拾石。慶尙道三浦，曾設城堡，但低微不完，有同兒戲。釜山浦，僉使修築其城過半，臣令他浦，依釜山修</p>

<p>였습니다마는, 낮고 작아서 완전하지 않으므로 아이들의 장난 같기도 한데, 부산포(釜山浦)는 첨사(僉使)가 그 정보를 반 넘게 수축(修築)하였으므로, 신이 다른 포(浦)로 하여금 부산포의 예에 따라 수축하게 하였습니다. 사랑(蛇梁)은 외딴 섬인데, 다른 포에서 혹 2식(息)16071)·3식 떨어져 있고 사면이 다 바다입니다. 수자리사는 군졸이 한 달 만에 서로 교체하는데, 한정이 있는 식량을 가지고 풍랑이라도 만나면 드나들기가 어려운 형세입니다. 지난 번에 40여 명이 배가 부서져서 죽었으므로, 수자리사는 군졸들이 다 말하기를,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도, 구적(寇賊)을 보기도 전에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이렇게 위태롭고 괴롭게 하니,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또 부득이하여 옮겨 설치한다면 가배량포(加背梁浦)·소을비포(所乙非浦)의 두 곳뿐일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랑은 구적이 들어오는 길목인가?”</p> <p>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당초 이 곳에 진(鎭)을 설치한 뜻은 왜구(倭寇)가 이 섬에 와서 배를 대고 여러 곳을 노략질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강(朴薑)이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 뒤에 한명회(韓明澮)가 그것이 적당한지를 살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신이 연해(沿海)의 요해처(要害處)를 보건대, 방수(防戍)가 서로 바라 보이고 군기(軍器)가 정련(精鍊)하니, 왜구가 전력을 기울여서 온다면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 나머지는 염려할 것이 못되겠습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삼포(三浦)에 나온 왜선(倭船)이 포(浦)에 머무르는 동안의 양식을 배의 크기에 따라서 주므로 낭비가 매우 많은데, 경상도는 이 때문에 피폐해지는 것이 적지 않으니, 당초에 먼 뒷날의 염려를 하지 않고 양식을 지나치게 많이 준</p>	<p>築。蛇梁，乃絕島也，距他浦，或二息、三息，四面皆海。戍卒一朔相遞，以有限之糧，若遇風波，勢難出入。頃者四十餘人，敗船而死，其戍卒皆曰：‘可革。’臣意亦謂，未見寇賊，而使民，先自危苦如此，移置何如？且不得已而移置，則加背梁、所乙非浦兩處而已。”上曰：“蛇梁，乃賊路乎？”對曰：“然。厥初設鎮此地之意，恐倭寇來泊此島，剽掠諸處。故朴薑建議設之，其後韓明澮審其便否，而仍之。臣觀沿海要害之處，防戍相望，軍器精鍊，倭若卷土而來，事未可知，餘無足慮。”又啓曰：“三浦出來倭船留浦糧，隨船大小而給之，糜費甚多。慶尙道因此，疲敝不貲，當初不爲遠慮，給料過多。臣以爲在平時，減給爲難。’若遇凶年，當語彼人曰：‘稅出於田，今年甚歉，不得已減給。’則彼亦目見其田荒，豈不信聽乎？”上曰：“倭人見卿之行，無乃疑懼乎。”對曰：“臣到薺浦，設酒，肉，欲饋特送倭人。到館者多，將於城內饋之。留浦倭人，相聚疑懼，不肯入城。臣更使人開諭，倭人曰：‘願佩刀而入’，臣許之，竝招</p>
--	--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평시에 있어서는 줄여서 주기 어렵겠으나, 흉년을 만나면 저들에게 말하기를, ‘조세는 논밭에서 나오는 것인데, 올해는 심한 흉년이므로 마지못하여 줄여서 준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도 눈으로 논밭의 흉황(凶荒)을 볼 것인데, 어찌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왜인이, 경(卿)이 간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하지 않던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신이 제포(薺浦)에 이르러 술과 고기를 차려 놓고 특송 왜인(特送倭人)을 먹이려 하였는데, 관(館)에 온 자가 많으므로 성 안에서 먹이려 하였더니, 포(浦)에 머물러 있는 왜인이 서로 모여 의심스러워하며 성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다시 사람을 시켜 타일렀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갈을 차고 들어가겠다.’ 하므로, 신이 허락하고 그 처자를 아울러 불러서 손수 먹이게 하였습니다. 취하고 배부른 뒤에야 여러 사람의 의심이 죄다 풀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사례하고, 한 작은 섬을 가리키며 신에게 말하기를, ‘이 섬은 예전에 경작하던 곳인데 근래에는 경작을 금지하며, 또 판매를 위한 노인(路引)16072)은 영등포(永登浦)를 지나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살 길이 매우 어려우니, 이 작은 섬을 예전대로 경작하고 노인도 먼 섬까지로 제한하여 주기 바란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알았다.’ 하였습니다. 제포의 왜인은 호수(戶數)가 번성하고 부실(富實)하며 그 의복도 아름다우나, 염포(鹽浦)·부산포(釜山浦)의 왜인은 가난하기가 막심한데, 대마 도주(對馬島主)는 삼포에 사는 왜인에 대하여 인구 수에 따라 공물(貢物)을 거두는 것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 수군(水軍)의 신역(身役)이 가장 고됩니다. 이를 떼면 갑사(甲士)는 봉족(奉足)16073)이 충실하고 3년에 한 번 번상(番上)하며 정병(正兵)의 번상도 드문데, 수군은 매달 서로 교체하므로 먼 곳에 사는 자는 번들고 쉬러 오갈 즈음에 걸핏하면 열흘을 넘겨 집에서 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또

其妻子，親自饋之。至于醉飽，然後群疑盡釋，扣頭謝之，指一小島，謂臣曰：‘此島，舊所耕墾，而邇來禁耕，且鬻販路引，不許過永登浦，生理甚艱。請此小島，依前耕墾，路引亦以遠島爲限。’臣答曰：‘知道。‘薺浦倭人，戶數繁盛富實，其衣服亦美；鹽浦、釜山浦之倭，貧窶莫甚。對馬島主，於三浦居倭，逐人口數，徵貢太重。且水軍之役，最爲勤苦。如甲士奉足實，而三年一番上，正兵番上，亦踈。水軍，則每朔相遞，居於遠地者，番休往來之際，動經旬日，在家休息之日，不多。且他軍士，於當番，皆無役事。水軍番上之時，曾不息肩，其勞莫甚。諸邑守令，刷出一家餘丁，或定日守，或定他役。以故水軍爭訴於臣，臣令水軍餘丁定於他役者，一皆完聚。’上曰：“如此事，在守令耳。”應又啓曰：“牧場多，而水、草不敷，不合牧馬處，多。臣所經如九千場、永登場，馬多蕃息，牛場牧養之牛，有同野獸，不可耕田，亦不可用於犧牲，固無用之物。臣以爲‘牛場內水，草周足處，則放馬；不然，則廢其場，而牧子軍定於他役，

	<p>다른 군사는 번을 당하였을 때에 다들 역사(役事)가 없으나, 수군이 번상하였을 때에는 어깨를 쓸 수 없어 그 노고가 막심한데,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한 집의 여정(餘丁)을 찾아내어 일수(日守)16074)에 차정(差定)하기도 하고, 다른 역(役)에 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군들이 앞을 다투어 신에게 호소하므로, 신이 수군의 여정으로서 다른 일에 차정된 자를 모두 다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한 일은 수령에게 달려 있다.”</p> <p>하였다. 홍응(洪應)이 또 아뢰기를, “목장(牧場)은 많으나, 물과 풀이 모자라서 말을 기르기에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신이 지나온 구천장(九千場)·영등장(永登場)으로 말하면 말은 많이 번식하였으나, 우장(牛場)에서 기르는 소는 들짐승과 같아서 말을 갈 수 없고 희생(犧牲)에도 쓸 수 없으므로, 실로 쓸데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장 중에서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은 말을 놓아 기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목장을 폐지하여 목자군(牧子軍)을 다른 역(役)에 차정하면, 국가에 무익하지 않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를 불러서 의논하라.”</p> <p>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이미 행한 일과 행하고자 하는 일을 단자(單子)에 갖추어 적었으니, 여러 의논을 널리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신이 듣건대, 김제 군수(金堤郡守) 김미(金楣)는 법을 지켜 나라의 일을 봉행(奉行)하여 관가(官家)의 일에 조치가 매우 세밀하며, 단성 현감(丹城縣監) 손창(孫昌)은 전에 고령(高靈)을 맡아 다스릴 때 좋은 치적(治績)이 있었고 지금 다스리는 공적도 예전보다 못하지 않으며, 충주 목사(忠州牧使) 경준(慶俊)도 법을 지켜 나라의 일을 봉행하여 정</p>	<p>則於國家，不爲無益。” 上曰：“召司僕提調，議之。” 應又啓曰：“臣已行之事與欲行之事，具在單子。請廣採群議，施行。臣聞‘金堤郡守金楣，守法奉公，官家之事，措置甚密。丹城縣監孫昌，前守高靈，治有聲績，今之治效，亦不減舊。忠州牧使慶俊，亦守法奉公，政績著顯。’其不堪任守令、萬戶，俱錄單子。且金海，乃沿邊，其守令除授時，吏曹與兵曹同議。但此邑，民戶繁庶，防禦不甚緊要，而治民之事，最繁。必以兼有吏才者，差遣，可也。前府使崔浚，徒事飲酒，不治民事，新除府使，請須擇遣。臣到平山浦，萬戶李世隆，庸劣無能，不鍊軍器，問之則到任未久，不及點檢。問其赴任，則去秋也，水卒又有告訴者，臣已推鞫罪之。” 上謂承旨曰：“政丞所啓單子，議于領敦寧以上。其賢守令，各加一資，其不堪任者，罷之。”</p>
--	---	---

	<p>적(政績)이 뚜렷하다 합니다.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령·만호(萬戶)는 단자에 갖추어 적었습니다. 또 김해(金海)는 연변(沿邊)이므로 그 수령을 제수(除授)할 때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함께 의논합니다마는, 이 고을은 백성이 번성하여 방어는 그리 긴요하지 않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가장 긴요하니, 반드시 이재(吏才)16075) 을 아울러 가진 자를 차출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전 부사(府使) 최준(崔浚)은 술을 마시는 것만을 일삼고 백성에 관한 일을 보살피지 않았으니, 새로 부사를 제수할 때에는 반드시 가려서 보내소서. 신이 평산포(平山浦)에 이르니 만호(萬戶) 이세룡(李世隆)이 용렬하고 무능하여 군기(軍器)를 단련하지 않았으므로, 물었더니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서 미처 점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임한 때를 물었더니 지난 가을이었으며, 수군의 병졸 중에 고소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신이 이미 추국(推鞠)하여 죄주었습니다.”</p> <p>하니, 임금(承旨)에게 말하기를,</p> <p>“정승(政丞)이 아뢴 단자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에게 의논하라. 어진 수령은 각각 한 자급(資級)씩 올려 주고,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파직(罷職)하라.”</p> <p>하였다.</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3월 18일(기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조운(趙崙)의 죽음을 듣고 전교하기를,</p> <p>“이 사람은 내가 잠저(潛邸)16077) 에 있을 때의 사부(師傅)이었으니, 부물(賻物)을 보낸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한 자를 배웠더라도 스승과 제자 사이이다. 내 사부는 이제 다 죽었고, 김우신(金友臣)만이 살아 있는데 또한 나이가 많으니, 어찌 오래 벼슬 살 수 있겠는가? 다음 정사(政事) 때에 갈아서 경중(京中)의 좋은 벼슬을 제수(除授)하라.”</p> <p>하였는데, 김우신은 이때 통진 현감(通津縣監)이었다.</p>	<p>己亥/上聞漢城府判官趙崙死。 傳曰：“此，予之潛邸時師傅也。 其考致賻前例， 以啓。 雖一字受訓， 是亦師弟也。 予之師傅， 今皆已亡， 唯金友臣存焉， 而亦年老， 何能久於從仕乎？ 後政， 其遞授京中華職。” 友臣， 時爲通津縣監。</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p>	<p>○庚子/上詣泰慶殿， 上食。</p>

(成化) 21년 3월 19일(경자) 1번째기사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21년 3월 19일(경자) 2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판관(判官) 조운(趙崙)의 부물(賻物)로 쌀과 콩 아울러 10석(石), 베[布] 50필(匹)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傳旨戶曹，賜判官趙崙賻米・豆并十石、布五十匹。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21년 3월 23일(갑진) 3번째기사	졸(卒)한 서양군(西陽君) 한의(韓義)의 부물(賻物)로 쌀과 콩 아울러 25석(碩). 종이 1백 권(卷), 청밀(淸蜜)16100) 10두(斗), 진말(眞末)16101) 1석, 여섯 폭을 이어붙인 유둔(油苴) 2장(張), 전칠(全漆)16102) 6승(升), 석회(石灰) 40 석, 숯 15석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命賜卒西陽君韓義賻米・豆并二十五碩、紙一百卷、淸蜜十斛、眞末一碩、連六幅油苴二張、全漆六升、石灰四十碩、炭十五碩。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21년 3월 24일(을사) 2번째기사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준(成俊)이 와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에서 전일 신이 아뢴 데에 따라 본도(本道)에 볍씨 1만 석과 콩씨 [豆種] 5천 석을 주었으나 반 넘게 모자라니, 벼 3만 석과 콩 5천 석 및 기장[稷]씨를 더 내리소서.” 하니, 벼 3만 석과 콩 1만 석과 기장 1천 석을 주도록 명하였다.	○京畿觀察使成俊來啓曰：“戶曹前日因臣所啓，給本道稻種一萬碩、豆種五千碩，太半不足。請加稻三萬碩、豆一萬碩、稷千碩。” 命給稻三萬碩、豆一萬碩、稷千碩。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21년 3월 25일(병오)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상식(上食)하였다.	○丙午/上詣泰慶殿，上食。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21년 3월 25일(병오) 2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遣人，來獻土宜。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21년 3월 25	왜(倭) 호군(護軍) 우사랑 성수(又四郎盛數) 등 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倭護軍又四郎盛數等五人，來獻土宜。

일(병오) 3번째기사	<p>병조 판서(兵曹判書) 손순효(孫舜孝)가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는 사면이 적의 침입을 받는 땅으로 내외의 경중(輕重)은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양계(兩界)16103)의 연변(沿邊)은 적과 서로 바라보여 방수(防戍)가 가장 긴요합니다. 그런데도 녹봉(祿俸)이 없는 만호(萬戶)가 10보(堡) 가운데 9보입니다. 조정(朝廷)에서도 모름지기 무재(武才)가 뛰어나게 특이한 자를 가려서 차출하여 보내야 하니, 그 직임이 중합니다. 그러나 그 처자는 녹봉을 먹지 못하므로 거의 굶주릴 지경이니, 참으로 가엾습니다. 대저 관작(官爵)과 관록(官祿)은 임금의 큰 권한[權柄]이니, 관작으로 덕(德)이 있는 자를 임명하고, 관록으로 공(功)이 있는 자를 보상합니다. 저 방어하는 군사는 제 몸을 잊고 제 집을 잊고서 짐승 같은 무리와 이웃하여 긴 밤에 갑주(甲冑)를 잠자리로 삼으므로, 처자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데, 또 어느 겨울에 처자의 양육을 돌보겠습니까? 국가에서 그 괴로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요즈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창고가 거의 비어서 널리 베풀어 무리를 구제하지 못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편안한 자는 위태한 자의 걱정을 생각하고, 배부른 자는 굶주린 자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이른바 충서(忠恕)의 도리입니다. 녹과(祿科)는 늘릴 수 없으나, 재상(宰相)들의 녹봉을 조금 줄이고, 또 긴급하지 않은 관원을 없애고, 대체에 무방하다면 궐원(闕員)이 있는 채아(遞兒)16104) 자리를 옮겨다가 덧보태어, 그 처자가 기한(飢寒)에 이르지 않게 하고, 변장(邊將)이 그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하면, 공도(公道)에 있어서 다행이겠습니다.”</p> <p>하니, 재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희(沈澮)·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만호를 설치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 고난을 말하자면 남방이나 북방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긴요한 곳은 첨사(僉</p>	<p>○兵曹判書孫舜孝上書曰： 臣竊惟，我國家，四面受敵之地，而內外輕重則有焉，其中兩界沿邊，與敵相望，防戍最緊。無祿萬戶，十有九堡。朝廷須擇武才卓異者，差遣，其任重矣。然其妻子不得食祿，濱於飢餓，誠可哀也。大抵爵祿，人主之大柄，爵以命德，祿以報功。彼戍禦之士，忘其身，忘其家，與禽獸爲隣，衽甲冑於長夜，不得聞妻子之消息，又何暇顧妻子之生養哉？國家非不知其苦也，而近因凶歉，倉庫幾竭，未能博施而濟衆。臣竊思之，安者思危者之患，飽者思飢者之情，此所謂忠恕之道。祿科不可增也，差減宰相之祿，又汰不急之官，如無妨於大體，則有闕遞兒，轉借添補，使其妻子，不至飢寒，而邊將得以盡其心，公道幸甚。</p> <p>命議于宰相。鄭昌孫、沈澮、洪應、盧思愼、尹壕議：“萬戶之設，其來已久，論其艱苦，則南北無異焉。其最緊處，陞僉使，帶京職，已載《大典》，</p>
-------------	---	--

	<p>使)로 올리고 경직(京職)을 띠도록 이미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편견(偏見)을 가지고 쉽사리 어지럽게 고칠 수 없겠습니까?”</p> <p>하고, 서거정(徐居正)·이철건(李鐵堅)·이극증(李克增)·정문형(鄭文炯)·이극균(李克均)·유지(柳輕)·이극돈(李克墩)·안관후(安寬厚)는 의논하기를,</p> <p>“변장의 고난은 과연 손순효(孫舜孝)가 아뢴 것과 같으나, 만호가 녹봉이 없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관원을 도태시키는 것은 형세가 적당하지 못하며, 녹봉을 줄이는 것은 대체를 손상합니다. 또 팔도(八道)의 만호가 매우 많으므로 단서를 열 수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p>	<p>不可以偏見，輕易紛更。”徐居正、李鐵堅、李克增、鄭文炯、李克均、柳輕、李克墩、安寬厚議：“邊將艱苦，果如舜孝所啓，然萬戶無祿已久，汰官則勢未便，減祿則傷大體。且八道萬戶甚多，不可開端，仍舊何如？”從昌孫等議。</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3월 26일(정미) 1번째기사</p>	<p>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적(李績)이 상소(上疏)하였다. 대략 이르기를,</p> <p>“신(臣)이 듣건대, 제왕(帝王)의 도리로는 학문보다 큰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러므로 옛 임금(古君)은 경연(經筵)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으니, 한(漢)나라의 광무제(光武帝)는 《상서(尙書)》를 받아 대의(大義)를 통하고, 환영(桓榮)16105)을 불러들여 설명하게 하고는 매우 칭찬하고, 자주 공경(公卿)·낭장(郎將)을 불러들여 경서(經書)의 뜻을 강론(講論)하고 한밤에야 잤으며,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은 경술(經術)에 뜻을 기울여 전(殿) 곁에 홍문관(弘文館)을 두고 학사(學士)를 모두 불러들여 번들여 자게 하며 정치를 행하는 여가에는 함께 고금(古今)의 치도(治道)를 논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제왕의 학문에 뜻을 두시어 그 뜻을 겸손히 하고 민첩하기를 힘쓰신 뜻이 두 임금과 부합하여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셨는데, 근래 경연을 오래 멈추고 또 상참(常參)을 그만두시니, 신민(臣民)이 서운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시종 생각하는 것을 늘 배우는 데에 두시어, 성학(聖學)이 날로 광명(光明)해져서 왕도(王道)의 융성을 가져오게 하소서.</p> <p>거동(舉動)은 임금의 큰 절도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제 명왕(聖帝明王)은 갑작스러울 즘에도 움직이면 반드시 예도에 따라, 난거(鸞車)16106)가 앞에</p>	<p>○丁未/司諫院正言李績上疏。略曰：臣聞‘帝王之道，莫大於學。’故古之人君，莫不以經筵爲重。漢光武受《尙書》，通大義，召桓榮入說，甚善之，數引公卿、郎將，講論經義，夜分乃寐。唐太宗，銳精經術，殿左置弘文館，悉引學士，番宿，聽朝之暇，與論古今治道。殿下卽位之初，有志於帝王之學，其遜志務敏之意，可與二君，同符而麗美矣。爾來久停經筵，且廢常參，臣民缺望。伏願殿下念終始典于學，使聖學，日就于光明，以致王道之隆。舉動，人君之大節。是以古之聖帝明王，雖造次之際，動必以禮，鸞車在前，屬車在後，清道而後行，</p>

	<p>있고 속거(屬車)가 뒤에 있으며, 청도(淸道)16107) 한 뒤에야 가고 정로(正路)라야 달려갔습니다. 전하께서도 근래 경복궁(景福宮)에 거동하실 때에 다협로(狹路)를 거치고, 앞뒤에서 시위(侍衛)하는 군사가 난잡하게 가며, 혹 말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하여 예의(禮儀)를 잃는 폐단이 많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무릇 거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로를 거치소서.</p> <p>평안도는 서쪽으로 중국에 통하고 북쪽으로는 산용(山戎)에 잇달았으므로 참으로 우리 나라의 문호(門戶)가 되는 지역이어서, 역로(驛路)의 폐해가 다른도(道)보다 훨씬 더합니다. 칠참(七站) 이북은 말이 죽고 사람이 쓰러지므로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동녕위(東寧衛)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이제 북경에 가는 행차에 종재(宗宰)가 무역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허가하니, 폐단의 근원이 한번 열리면 말류(末流)를 막기 어려운데, 평안도의 백성은 어느 때에나 소복(蘇復)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어 역로를 소복시키소서.</p> <p>풍속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풍문으로 규거(糾擧)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풍문으로 규거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 간사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년 이래 풍문으로 탄핵하면, 혹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말의 근거를 물으시니, 누가 후환을 염려하지 않고 남의 착하지 못한 일을 말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사족(士族)의 부녀자에게 음란한 행동이 있더라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풍문에 간사한 행위가 발각된 것이 있으면, 으레 간통한 곳에서 잡은 것이 아닌데 간통이라 지칭하는 것은 논하지 않는다는 율문(律文)에 따라 내버려 두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사헌부(司憲府)에서 풍문으로 탄핵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도록 허가하소서.</p> <p>문적(文籍)이 국가에 유익함은 큰 것입니다. 전하께서 근래 제자 백가(諸子百家)를 모두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퍼시는 것은 역시 글을 숭상하고 학문을</p>	<p>正路而後馳。 殿下比來幸景福宮時，皆由狹路，前後侍衛之士，雜沓而行，或墜馬而傷，多有失儀之弊。 伏望凡有行幸，必由正路。 平安一道，西通上國，北連山戎，實我國門戶之地，而驛路之弊，倍於他道。 七站以北，馬斃人仆，民不堪其苦，而亡入東寧衛者，多。 今於赴京之行，許持宗、宰貿易之物，弊源一開，末流難塞，平安之民，何時而蘇復乎？ 伏願亟收成命，以蘇驛路。 欲正風俗，雖以風聞糾擧，可也。 若不許風聞，則民間之奸慝，何以知之？ 頃年以來，風聞彈覈，或拒而不納，或問其言根，孰肯不慮後患，而言人之不善乎？ 今之士族婦女，雖有淫行閨闈之事，誰得而知之？ 如有風聞敗露，則例以非奸所捕獲指奸者勿論之律而棄之，不便。 伏願許令憲府，風聞彈覈，以正風俗。 文籍之有益於國家也，大矣。 殿下比來諸子百家，無不鈔梓，廣布於世，亦右文興學之美意。 然四書、五經，性理之學也，諸子百家，浮華之文也。 今經書，歲久板剞，價且踴貴，中外志學之士，莫不病之。 請命中外，廣刊經書，輕價和</p>
--	--	---

일으키려 하시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사서(四書)》·《오경(五經)》은 성리(性理)의 학문이고 제자 백가는 부화(浮華)한 글인데, 이제 경서(經書)는 세월이 오래되어 인판(印版)이 닳고 값도 비싸므로, 중외(中外)의 학문에 뜻을 둔 선비가 모두 걱정하니, 중외에 명하여 널리 경서를 간행하여서 싼 값으로 팔게 하고, 또 사사로이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퍼게 하소서.

국가에 남방과 북방의 근심거리가 있는데,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이 그것입니다. 대마주(對馬州)와 일본국(日本國)은 거의 다 모래와 돌로 된 땅이므로, 우리 나라의 물산(物産)이 풍부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일 무역을 금지하였을 때에도 오히려 험한 데를 넘어와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무역하였는데, 더구나 이제는 서로 무역하도록 허가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오고자 하는 왜인이 지난 번보다 훨씬 많아져서 폐단을 바로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상인(商人)은 성질이 흔히 교활하고 대마주의 왜인은 천성이 경박하고 조급하므로, 서로 무역할 즈음에 혹 털끝만한 이익을 다투어 속이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반드시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일 것이니, 말썽의 단서가 여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영안도는 산천이 험하고 사람이 많으며 육진(六鎭)이 당당하여 관방(關防)이 장고(壯固)하므로,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關門)을 지켜도 만 사람이 열지 못한다는, 참으로 하늘이 요해(要害)를 만들어 놓은 땅이니, 이것을 보는 야인이 어찌 우리를 깔보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평안도는 영안도에 견줄 것이 아니어서, 방수(防守)가 허술하고 고을의 주거(住居)가 쓸쓸하므로, 만약 과격한 도둑이 돌연히 이르면 사람이 없는 지경에 들어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종(祖宗) 이래 무릇 내조(來朝)하는 야인은 이 길을 거치지 않고 모두가 북문(北門)을 거치게 하였으니, 그 심원(深遠)한 계책이 지극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건주(建州)의 야인이 내조할 때에는 쉽사리 직로(直路)를 통과하여 〈그들에게〉 요해를 알게 하니,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다을지개(李多乙之介)로 말하면, 삼위(三

賣，且令私印，廣布於世。國家有南、北之憂，倭、野人，是也。對馬州、日本國，類皆沙石之地，不如我國物產之富也。前日禁市之時，猶欲越險而來，交易有、無，矧今許令互市，則臣恐倭人欲來者，倍於曩時，弊將難救。我國之商，性多狡黠，對馬之倭，天性輕躁，互市之際，或有爭一毫之利而欺詐者，則彼必手刃相殺，釁端從此而起。永安一道，山川險阻，人物富庶，六鎭堂堂，關防壯固，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眞天作設險之地，野人觀者，豈有侮我之心哉？平安道，非永安之比，防守疎虞，邑居蕭然，脫有劇賊突至，則如入無人之境。故祖宗以來，凡野人之來朝者，不由此路，咸由北門，其深謀遠慮，至矣。頃年以來，建州野人來朝，輕通直路，俾知要害，此非細故。如李多乙之介，三衛酋長之豪也，其祖、父皆爲我國所殺，其無報復之心乎？安知今日來朝，爲覬覦我虛實乎？伏望殿下，勿令互市通路，以固邊圉。天子不問有無，諸侯不論多少，懼貨之生人心，而開禍端也。殿下卽位之初，首革內需司長利，

衛)의 추장(酋長) 중에서 호강(豪強)한 자인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우리나라에서 죽었으니, 그들이 보복할 마음이 없겠으며, 오늘날 내조하는 것이 우리의 허실(虛實)을 엿보기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서로 무역하고 길을 통하지 못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하소서. 천자(天子)는 재화(財貨)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제후가 다소를 논하지 않는 것은 재화가 사람의 욕심을 일으켜서 재앙의 단서를 열까 두려워서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먼저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를 폐지하셨으므로 백성이 다 서로 경하(慶賀)하였는데, 지난 번에 다시 세움에 따라 곡식을 맡은 자가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노리고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값은 것을 독촉할 때에도 갖가지로 침포(侵暴)하니, 우리 백성이 어찌 조금이라도 소생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폐지하도록 명하소서. 삼국(三國) 때에는 분열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군사를 징발하여도 혹 한 나라의 군사가 많으면 20여 만에 이르고 적어도 수만을 밀돌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해동(海東)을 모두 소유하고 집집마다 뽑아서 군사를 만들므로, 계획에 빠뜨려진 것이 없는데도 팔도(八道)의 총액이 10만을 넘지 못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인년(1610)부터 회암사(檜巖寺)와 유점사(楡岾寺) 두 절의 역사(役事)가 점점 일어나서 도첩(度牒)16109)을 받는 자가 6만 3천여 인이며, 그 밖에 간경 도감(刊經都監)과 의묘(懿廟)의 역사에 나아가 도첩을 받은 자는 그 수가 또한 갑절이나 되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무인년부터 30년 동안에 법을 어기고 머리를 깎은 자가 몇 만인지 모릅니다. 지금 수리 도감(修理都監)의 역사에 나아가 외람되게 도첩을 받은 자도 많은데, 중은 모두들 죽은 중의 도첩을 전해 받아서 제 물건으로 삼는다 하는데, 유사(有司)도 그 진위(眞僞)를 살피지 못하니, 군액(軍額)이 어떻게 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대로 중이 된 자를 일체 금하여 군액에 채우소서.

民皆相慶，頃緣復立，典穀者乘時射利，不畏邦憲，督償之時，侵暴日端，吾民其有少蘇乎？伏望殿下，亟命革罷。三國之時，瓜分幅裂，而倉卒徵兵，或一國多至二十餘萬，小不下數萬。今我聖朝，奄有海東，家抽爲兵，計無脫漏，而八道摠，額不踰十萬，其故何哉？自戊寅之歲，檜巖、楡岾兩寺之役漸興，而受度牒爲僧者六萬三千餘人，其他刊經都監、懿廟赴役，受度牒者，其數亦倍。以此推之，則自戊寅歲三十年，違法削髮者，不知幾萬人矣。今者赴役修理都監，濫受度牒者，亦多，加以爲：“僧者皆傳受死僧度牒，以爲己物”，而有司亦不能察其眞僞，軍額安得不減乎？伏望殿下，一禁擅便爲僧者，以充軍額。帝王之道，貴於謹始，而尤貴於慎厥終也。《書》曰：“慎厥終，惟其始。”《詩》曰：“靡不有初，鮮克有終。”唐太宗曰：“人主唯有一心，而攻之者衆，或以勇力，或以辨口，或以諂諛，或以奸詐，或以嗜慾，輻輳攻之，各自求售。人主少懈，而受其一，則危亡隨之。此其所以難也。”此誠萬世人主謹始終之龜鑑也。”

	<p>제왕(帝王)의 도리는 처음을 삼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마지막을 삼가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그 끝을 삼가려면 오직 그 처음에 피하라.’ 하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처음에 잘하지 않는 이는 없으나 마침을 잘하는 이는 드물다.’ 하였으며,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은 말하기를, ‘임금이 오직 한 마음을 가져도 공격하는 자가 많아서, 혹 용력(勇力)으로도 하고 변구(辨口)로도 하고 아첨으로도 하고 간사(奸詐)로도 하고 기욕(嗜慾)으로도 하여, 집중하여 공격해서 각각 스스로 쓰여지기를 요구하는데, 임금이 조금이라도 해이하여져서 그 가운데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위망(危亡)이 뒤따르니, 이것이 그 어려운 까닭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만세의 임금들이 시종(始終)을 삼가는 데에 있어서의 귀감(龜鑑)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이제(二帝)·삼왕(三王)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이제·삼왕의 도(道)를 도로 삼으시니, 참으로 근고(近古) 이래 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임금이십니다. 그러나 인심(仁心)은 오직 위태하고 도심(道心)은 오직 희미하므로, 일념(一念)이 어긋나면 만사가 와해(瓦解)되니, 예전부터 제왕으로서 마침을 잘하지 못한 이가 많았습니다. 정관(貞觀)의 치(治)16110) 가 아름답기는 아름다웠으나 십점(十漸)의 소(疏)16111) 를 보면 점점 처음보다 못하여졌고, 개원(開元)의 치(治)는 밝기는 밝았으나 천보(天寶)16112) 의 말세를 보면 거의 잘 마침이 없는 데에 가까웠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치기를 처음처럼 삼가서 길이 이 마음을 굳게 하시며, 부지런히 쉬지 않는 공(功)을 더하고 문왕(文王)의 그침 없는 정성을 생각하시어, 우리 동방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는 행복을 열도록 하소서.”</p> <p>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p> <p>“이제 소(疏)를 보건대, 그대가 애써서 만들었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경연(經筵)은 내가 국휼(國恤)을 만나고부터 신기(身氣)가 편안하지 않아서 멈추었으나, 그 뒤로 혹 나아간 때도 있었으니, 아주 폐지한 것이</p>	<p>也。 殿下臨御以來，心二帝三王之心，道二帝三王之道，誠近古以來，大有爲之君也。 然人心惟危，道心惟微，一念之差，萬事瓦解，自古帝王，不能善終者，多矣。 貞觀之治，美則美矣，觀十漸之疏，則浸不如初。 開元之治，明則明矣，觀天寶之末，則幾于罔終矣。 臣願殿下，慎終如始，永堅此心，加乾健不息之功，念文王不已之誠，以開我東方億萬年無疆之休。</p> <p>傳曰：“今觀此疏，爾必勉力爲之，予甚嘉之。 但經筵，予自遭國恤，身氣不平，而停之。 然其後或有御之之時，予非欲永廢之也，予若平復，當御之矣。 泰慶殿往來時，不由大路，以今當國恤，遵大路而來，未安。 如馬逸墮傷之事，雖大路，或有此弊。 平安開路事，彼人今方歸順，故既與大臣，議而施行，且由此路而來者，其數亦不多也。 漢物貿易，自世祖朝，已行之。 我朝與中國，今方無事，往來無阻，得市漢物，有何妨乎？ 況此是宰相等服飾儀物及藥餌乎？ 風聞公事，予固非例必不聽，慮或有不肖者居臺諫之</p>
--	---	--

	<p>아니다. 내가 회복하면 나아갈 것이다. 태경전(泰慶殿)에 왕래할 때 대로(大路)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금 국휼을 당하여 대로를 따라 오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이다. 말이 뛰어서 떨어져 다친 일로 말하면, 대로일지라도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이다. 평안도에 길을 연 일은 저들이 바야흐로 귀순하므로 이미 대신(大臣)과 의논하여 시행한 것이며, 또 이 길을 거쳐서 온 자는 그 수도 많지 않다. 중국 물건을 무역하는 일은 세조조(世祖朝)부터 이미 행하였고, 우리 나라와 중국이 바야흐로 무사하여 왕래하기에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중국 물건을 무역할 수 있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이것은 재상(宰相)들의 의복에 장식하는 의장(儀章)과 약(藥)임에랴? 풍문에 의한 공사(公事)는 내가 본래 반드시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간혹 변변치 못한 자가 대간(臺諫)의 벼슬에 있어 혹시 혐의스러운 것 때문이나 부실한 일을 가지고 남의 숨은 악(惡)을 앞장서서 발언하여 남에게 헛되이 더러운 이름을 입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었다. 사증(辭證)이 드러나게 명백하다면, 내가 어찌 들어주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사서(四書)》·《오경(五經)》은 외방(外方)이라면 내가 알 수 없겠으나, 서울이라면 학문에 뜻을 둔 자로서 누가 《사서》·《오경》이 없겠는가? 우리 나라는 사대(事大)하는 나라이니, 문장의 재주도 폐기할 수 없으므로, 제자(諸子)를 간인(刊印)한 것이다. 왜인(倭人)과 서로 무역하는 일과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는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중에게 도첩(度牒)을 주고 창경궁(昌慶宮)·회암사(檜巖寺)의 역사를 한 것은 양전(兩殿)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본래 한때의 일이고, 도첩이 없는 자를 환속(還俗)시키는 것은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감사(監司)·수령(守令)이 거행하기에 달려 있다. 시종(始終)을 삼가라는 경계는 내가 잊지 않겠다.”</p> <p>하고, 이어서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p>	<p>職，或因嫌隙，或以不實之事，倡言隱惡，使人虛被醜名故也。雖風聞之事，若顯然辭證明白，則予豈有不聽之理乎？四書、五經，外方則予未之知也，京都則有志學者，誰無四書、五經乎？我國，事大之邦，詞華亦不可廢，故刊印諸子耳。倭人互市及內需司長利，既與大臣，擬議行之，不可改也。僧人給牒，昌慶宮、檜巖之役，爲兩殿耳。是固一時之事，無度牒者還俗，法在《大典》此在監司、守令舉行耳。謹始終之戒，予當不忘也。”仍命饋酒。</p>
<p>성종 176권, 16년</p>	<p>소이전(小二殿) 정상(政尙)의 사자(使者)가 후추[胡椒] 1천 근을 바치니, 전교</p>	<p>○小二殿政尙使者，進胡椒一千斤。</p>

<p>(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26 일(정미) 2번째기사</p>	<p>하기를, “왜인이 바친 후추가 매우 많으니, 그 땅에서 나는 것일 것이다. 전에 물건을 주고 씨를 구한다는 말을 서계(書契)에 하유(下諭)하였으나, 마침내 회답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또한 하서(下書)하여 구하고자 한다. 예조(禮曹)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왜인이 말하기를, ‘후추는 남방에서 나는 것이고,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그 땅에서 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씨를 얻으면 저들은 자기에게 이롭지 않으므로, 와서 바치려 하지 않을 것이니, 구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도주(島主)에게 하유하기를,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돕는 것이 교린(交隣)의 도리이니, 너는 모름지기 유구국(琉球國)에서 후추 씨를 구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면, 혹 와서 바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예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曰：“倭人所進胡椒至多，必其地所產。前此贈物，求種，下諭書契，而終未見答，今亦欲下書求之。其問禮曹。”禮曹啓曰：“前日倭人云：‘胡椒產於南方，非本國所產。’臣等意謂‘雖出於其地，我國得種，則彼必不利於己，不肯來獻，勿求何如?’”傳曰：“予意以謂，諭于島主曰：‘有無相資，交隣之道。爾須求椒種於琉球國，以進’，則或有來獻之理。其更問禮曹。”</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3월 28 일(기유)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내가 친히 대상제(大祥祭)를 지내고자 하였으나, 요즈음 요통(腰痛)을 앓으므로, 대비(大妃)께서 그만두라고 명하셨다. 내 생각으로는, 내 병이 더칠 수도 있겠으나 왕후의 대상은 다시 지낼 때가 없으니, 이제 친히 지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그만 둘 수 없다. 다만 오르내리고 절하고 잔을 올리는 등 예의(禮儀)가 매우 많은데, 병을 무릅쓰고 굳이 거행하면, 성경(誠敬)의 도리를 이즈러뜨릴까 염려된다.”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상제(祥祭)는 큰일이므로 진실로 친히 지내셔야 마땅하나, 편찮으신데 굳이</p>	<p>○己酉/傳曰：“予欲親行大祥祭，近患腰痛，大妃命止之。予惟予病可瘳，王后大祥，更無再行之時，今不得親行，情不能已。但升降、拜獻，禮儀甚多，若力疾強行，恐虧誠敬之道。”承旨等啓曰：“祥祭，大事。固當親行，然有違豫而強行，則恐聖體益勞，且不安而勉行，則誠敬亦或未盡。大祥後，亦有朔望祭及上食禱祭，今不須</p>

	<p>거행하시면 성상의 옥체가 더욱 피로하실 것이며, 또 불안한데도 애써 거행하시면 성경(誠敬)도 혹 극진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대상 뒤에도 삭망제(朔望祭)와 상식 담제(上食禫祭)가 있으니, 지금 굳이 거행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저녁의 증후를 보아서 거행하겠다.”</p> <p>하고, 이윽고 전교하기를, “내가 반드시 친히 지내고자 하였으나, 양전(兩殿)께서 여러 번 사람을 시켜 그만 두게 하시므로, 내가 다시 아뢰어 청하였더니, 양전께서 또 사람을 시켜 분부하시기를, ‘일신(一身)의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니, 병을 무릅쓰고 거행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셨다. 내가 분부를 받고 돌이켜 생각하건대, 제사는 효도로 어버이에게 바치는 것인데, 이제 어버이의 명을 어기고 굳이 지내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멈춘다.”</p> <p>하고, 이어서 어서(御書)를 내려 이르기를, “소상(小祥)을 병 때문에 거행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허리의 병 때문에 또 멈추니, 박복한 나에게 죄가 있다. 어찌 이루 말하겠으며, 승정원(承政院)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눈물만 흘릴 뿐이다.”</p> <p>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성상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 편찮으시니 애써 거행하셔서서는 안 됩니다.”</p> <p>하였다.</p>	<p>强行。” 傳曰：“觀今夕證候，而行之。” 俄而傳曰：“予必欲親行，而兩殿屢使人止之。予再啓請，兩殿又使人，教曰：‘一身所係至重，不可力疾而行。’予承教，反思之，祭所以孝享於親，而今違親命强行，不可故停之。” 仍下御書曰：</p> <p>小祥，以疾不能行，今又以腰疾又停，予之薄福有罪，何可勝道？政院謂我何如？徒垂涕泣而已</p> <p>承旨等啓曰：“聖情何可量哉？而然適值未寧，不可勉行。”</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3월 29일(경술)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대상제(大祥祭)를 친히 지내지 못하는데, 상복(喪服)을 벗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p> <p>하였는데,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신들의 마음에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p>	<p>○庚戌/傳于承政院曰：“大祥祭未得親行，釋服節次，何以爲之？” 承旨等啓曰：“臣等之心，亦有所疑。” 仍問禮曹以啓曰：“尙衣院進淡袍，禮曹判書，啓請易服而已，釋服節次及早晚，大內</p>

	<p>하고, 이어서 예조(禮曹)에 물어서 아뢰기를, “상의원(尙衣院)에서 담포(淡袍)16113) 를 바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갈아 입으시기를 계청(啓請)할 뿐이며, 상복을 벗는 절차와 시기는 대내(大內)에서 임시하여 하십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루(罷漏)16114) 때에 담포를 바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臨時爲之。” 傳曰：“罷漏時，進淡袍，可也。”</p>
<p>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3월 29일(경술) 2번째기사</p>	<p>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노사신(盧思愼)·좌참찬(左參贊) 이과(李坡)·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가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내 증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풍기(風氣)로 허리가 아픈 것이다. 전일에 수릉관(守陵官)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에 놀라 한밤에 일어나서 의원(醫員)을 시켜 치료하게 하였는데, 그 때 풍기(風氣)에 상하여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대상(大祥)은 큰 일이므로 여느 제사의 유례가 아니고 뒤에 다시 할 수 없는데, 친히 지낼 마음을 평소에 정하였다가 뜻밖에 이렇게 되니, 마음이 매우 아프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내가 이 병을 앓은 지 오래되었으나, 참으로 병을 무릅쓰고 친히 지내고자 하여 양전(兩殿)께 다시 청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는데,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몸에 병이 있으면 그 성경(誠敬)을 극진히 할 수 없으므로, 옛사람도 ‘거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친히 지내지 못하시는 것은 참으로 성상의 옥체가 편찮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또 성공(聖躬)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한데, 춘기(春氣)가 아직도 추우니, 이를 무릅쓰고 거행하실 수 없습니다. 뒤</p>	<p>○蓬原府院君鄭昌孫、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右議政李克培、領中樞盧思愼、左參贊李坡、禮曹判書柳攄問安。 傳曰：“予之證候，非他也，以風氣痛腰耳。 前日驚聞守陵官病革，中夜而起，令醫治療，必其時傷風，致此。 大祥，大事，非常祭之例，後不可再，親行之心素定，不圖至此，心切痛焉。” 又傳曰：“予患此疾，久矣。 固欲力疾親行，將更請于兩殿，何如?” 昌孫等啓曰：“身有疾病，則未能盡其誠敬，古人亦云：‘不可行。’ 今之未得親行，實由上體未寧而然也。 且聖躬所係至重，春氣尙寒，不可強冒而行也。 後有禫祭，其時親行，何如?” 傳曰：“群議如是，予當停之。”</p>

	에 담제(禫祭)가 있으니, 그 때에 친히 지내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이러하니, 내가 마땅히 멈추겠다.” 하였다.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3월 30일(신해) 1번째기사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대상(大祥)이었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도승지(都承旨) 권건(權健)이 담복(淡服)을 바쳤다.	○辛亥/貞熹王后大祥。 禮曹判書柳攄、都承旨權健，進淡服。
성종 17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3월 30일(신해) 2번째기사	선결 도감 제조(繕缺都監提調) 이극배(李克培)·한계순(韓繼純)·김겸광(金謙光)이 와서 일이 끝났음을 아뢰니,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繕缺都監提調李克培、韓繼純、金謙光來啓事畢，命饋酒。
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4월 1일(임자)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상송포(上松浦) 나구야(那久野) 능등수(能登守) 뇌영(賴永)과 대마주(對馬州) 종언칠 정수(宗彦七貞秀)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朔壬子/日本國上松浦那久野能登守賴永、對馬州宗彦七貞秀遣人來獻土宜。
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4월 1일(임자) 2번째기사	수릉관(守陵官) 연성군(蓮城君) 이적(李晷)·시릉관(侍陵官) 유한(柳漢)과 구 광릉(舊光陵)에 입번(入番)한 종친(宗親) 등이 와서 숙배(肅拜)하니,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이어서 이적(李晷)에게는 노구(爐口) 1부(部)를 하사하고, 유한에게는 아청 쌍녀군(雅靑雙女裙) 1필(匹)과 마장(馬裝) 1부를 하사하고, 구 광릉에 입번한 종친 등에게는 각각 활 1장(張)씩을 하사하고, 색장(色掌) 등에게는 각각 면포(綿布) 1필씩을 하사하였다.	○守陵官蓮城君晷、侍陵官柳漢及舊光陵入番宗親等來肅拜。 命饋之，仍賜晷爐口一部，漢雅靑雙女裙一匹、馬裝一部， 舊光陵入番宗親等各弓一張，各色掌等緜布一匹。
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4월 7일(무오) 7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다대포 만호(多大浦萬戶) 조숙연(曹叔淵)이 군인(軍人) 5명을 함부로 놓아주고 정포(正布) 22필과 면포(綿布) 21필을 거두고, 또 군인을 부려 어피(魚皮) 5장과 저피(猪皮) 1장을 잡아 가지며, 총통(銃筒)을 만들고 남은 철(鐵)을 사	○義禁府啓：“多大浦萬戶曹叔淵擅放軍人五名，收正布二十二匹、綿布二十一匹；又役軍人， 捕取魚皮五張、豬皮一張；用銃筒造餘鐵， 造鎌五十五；又用

	<p>용하여 낫[鎌] 55개를 만들고, 또 관염(官鹽)을 사용하여 우피(牛皮)·마피(馬皮) 1장씩을 사서 사사로이 사용한 죄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자자(刺字)하며 고신(告身)을 빼앗고 장리안(贓吏案)16127)에 기록하소서.”</p> <p>하니 명하여 자자(刺字)는 면제하게 하였다.</p>	<p>官鹽，買牛馬皮各一張私用罪，決杖一百、刺字、奪告身、錄案。” 命除刺。</p>
<p>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4월 9일 (경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庚申/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4월 12일(계해)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유순(柳洵)과 헌납(獻納) 남기(南綺)가 아뢰기를,</p> <p>“황중(黃中)에게 고신을 돌려주는 것은 부당합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황중은 고신을 거둔 지 이제 몇 달이 되었는가?”</p> <p>하므로, 유순이 아뢰기를,</p> <p>“지난 해 7월에 있었으니 1년이 경과하지 못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당상관(堂上官)으로서 죄를 지은 자는 으레 세월(歲月)을 한정(限定)하지 않는데, 하물며 통사의 임무는 가볍지 아니함에 있어서이겠는가? 지금 말을 통역(通譯)하는 자는 오직 황중과 장유성(張有誠) 등 두어 사람뿐이니, 황중이 죄를 범한 것이 비록 1년을 경과하지 못했어도 2, 3개월이 아닌데 고신을 돌려주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p> <p>하였다. 유순이 아뢰기를,</p> <p>“이와 같이 한다면, 황중은 그 악(惡)함을 징계(懲戒)할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다면, 등용[仕使]할 때를 당하여 서용(敍用)할 것이며, 지금 갑자기 고신을 돌려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御經筵。 講訖，大司憲柳洵、獻納南綺啓黃中不當還給告身。 上曰：“黃中收告身，今幾朔乎？” 洵曰：“在前年七月，未經一年矣。” 上曰：“堂上官作罪者，例不限歲月。 況通事之任非輕，今通譯語者，唯黃中、張有誠數人耳。 中之犯罪，縱未經年，亦非二三朔，還給告身何妨？” 洵曰：“如此則中無所懲其惡矣。 如不得已，當任使時敍用，今不可遽還告身。” 上曰：“姑勿還給。 領事洪應啓曰：“臣前日歷觀沿海諸邑，鮑作干結幕海邊，無定居，寄生船上，爲人勇悍，其船輕疾無比，雖暴風虐浪，略無畏忌。 倭賊遇之，反畏避而去。 臣見其船中有大石數十，臣問所用，答云：‘遇倭船，用此石投擊，則無不破碎。’ 沿海諸邑封進海產珍品，皆鮑作人所採也。 臣又聞鮑作</p>

	<p>“아직은 〈고신을〉 돌려주지 말라.” 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前日)에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포작간(鮑作干)16133) 이 해변(海邊)에 장막[幕]을 치고 일정한 거처(居處)가 없이 선상(船上)에 기생(寄生)하고 있는데,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 비록 폭풍(暴風)과 사나운 파도(波濤)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왜적(倭賊)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 신이 그 배 가운데를 보니, 큰 돌[石]이 수십 개 있으므로, 신이 쓸 데를 물어보았는데, 대답하기를, ‘왜선(倭船)을 만났을 때 이 돌을 사용하여 던져서 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봉진(封進)하는 해산(海産)의 진품(珍品)은 모두 포작인(鮑作人)이 채취(採取)하는 것입니다. 신이 또 듣건대, 포작인이 이따금 상선(商船)을 겁탈(劫奪)하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데, 간혹 사람이 쫓아가는 바가 있으면 왜인의 신발[倭鞋]을 버리고 가서 마치 왜인이 그런 것처럼 한다 합니다. 이것은 포작간에게도 해로움이 있으니, 청컨대 연해 여러 고을로 하여금 소재(所在)해 있는 곳에 따라서 곡진(曲盡)하게 무휼(撫恤)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포작인은 거처(居處)가 일정함이 없고 성품이 흉한(凶悍)하니, 이심(離心)16134)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마땅히 존휼(存恤)16135) 을 더하라.” 하였다.</p>	<p>人往往劫奪商船，掠殺人物，或爲人所逐，則遺棄倭鞋而去，似若倭人然。此則鮑作干亦且有害。請令沿海諸邑，隨其所在，曲加撫馭。”上曰：“鮑作人其居無定，其性凶悍，不可使之離心，宜加存恤。”</p>
<p>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4월 14 일(을축)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서해도(西海道) 축전(筑前)·대마(對馬) 2주(州)의 수호 대관(守護代官) 종 삼랑 무가(宗三郎茂家)와 대마주(對馬州) 병부 소보(兵部少輔) 종 무승(宗茂勝)·종언칠 정수(宗彦七貞秀)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乙丑/日本國西海道筑前·對馬二州守護代官宗三郎茂家、對馬州兵部少輔宗茂勝·宗彦七貞秀遣人來獻土宜。</p>
<p>성종 177권, 16년</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p>	<p>○戶曹啓：“近者私進上物，優給其價，</p>

<p>(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4월 15 일(병인) 3번째기사</p>	<p>“근자에 사사로이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그 값을 후하게 주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장사하는 무리들이 다투어 가지고 있는 것은 세가(勢家)에 의부(依附)하여 이를 바치고, 답사(答賜)16141) 를 희망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사사로이 진헌(進獻)하는 잡물(雜物)은 값을 주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因此商賈之輩，爭以所有依附勢家獻之，希望答賜，甚未便。請自今私獻雜物，勿給價。”從之。</p>
<p>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4월 16 일(정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丁卯/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4월 19 일(경오) 4번째기사</p>	<p>함양 군수(咸陽郡守) 조위(曹偉)가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謝恩)하기를, “명령이 대궐[紫宸]에서 나와 하찮은 재주를 지나치게 포장(褒獎)하셨으며, 은혜가 백옥(白屋)16149) 에 흡족하여 학발(鶴髮)16150) 의 어버이에게 후하신 하사입니다. 삼가 가혜(嘉惠)16151) 에 절하니, 몸이 떨리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臣) 조위(曹偉)는 위포(韋布)16152) 의 천품(賤品)으로서 문필(文筆)을 업(業)으로 삼는 말류(末流)인데, 계방(桂榜)16153) 에 이름이 씌워져 잘못 공봉(供奉)의 선발(選拔)을 받았습니다. 산방(山房)에서 독서하도록 말미를 내리시고 학문을 연구하는 일을 다하도록 허락하시어, 마침내 채택(採擇)의 은혜를 입어 오랫동안 시종(侍從)의 열(列)을 더럽히고, 난파(鬪坡)16154) 에 있는 지 6년이나 되었으나, 논사(論思)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공효(功效)가 없었고, 학금(鶴禁)16155) 을 모신 지 2년이나 되었으나, 보도(輔導)한 것이 어찌 감히 우익(羽翼)이라 말하겠습니까? 비록 성상의 돌보심이 하악(河岳)16156) 보다도 더하시나, 아버지의 나이가 상유(桑榆)16157) 에 임박하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지난 번에 영백(令伯)의 깊은 사정(事情)16158) 을 아뢰었는데, 갑자기 주매신(朱買臣)의 영광스런 임명(16159) 을 받았습니다. 옛날 강하인(江夏人)이 아버지의 침석(枕席)에 부채질을 한 것16160) 처럼 하고 싶지만, 어찌 승명(承明)16161) 의 집을 싫어하겠</p>	<p>○咸陽郡守曹偉上箋謝恩曰：命出紫宸，過褒蟲篆之技；恩沾白屋，優賜鶴髮之親。 僂僕拜嘉，凌兢失措。 伏念臣偉，韋布賤品，鉛槧末流，桂榜題名，謬膺供奉之選，山房賜暇，許盡研覈之功。 遂蒙採擢之私，久玷侍從之列。 在鬪坡者六載，論思無效於涓埃；侍鶴禁者二年，輔導敢言其羽翼？ 雖聖眷踰於河岳，奈親年迫於桑榆！ 頃陳令伯之深情，旋承買臣之榮拜。 欲扇江夏之枕，豈厭承明之廬？ 伏臘歲時，雖親甘旨之欲，耕耘斂穫，方殷勸課之憂。 晝諾無間，吟哦頓廢。 朝天路阻，未飛王喬之鳧；戀闕情深，頻遊簡子之夢。 念未副於字撫之職，忽來徵其著述之篇。 嘲弄風花，</p>

	<p>습니까? 복랍(伏臘)16162) 과 세시(歲時)16163) 에 비록 친히 맛있는 음식을 올리려 하여도 농사짓고 거둬야 하므로 권과(勸課)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획락(畫諾)16164) 할 것이 끊임이 없어, 시(詩)를 읊는 것도 모두 폐하였습니다. 임금에게 조회하는 길이 막혔으나, 왕교(王喬)처럼 오리를 타고 날아가지 못하며,16165) 대궐을 생각하는 정(情)은 깊어서, 자주 조간자(趙簡子)처럼 꿈에서 노닐었습니다.16166) 생각건대 수령의 직임에 부응(副應)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와서 <신의> 저술(著述)한 글을 구하시니, 풍화(風花)16167) 를 조롱(嘲弄)한 것이 장난한 것과 같으며, 성률(聲律)을 배열한 것도 관반(管斑)을 대강 엿보았을 뿐인데, 어찌 비속(卑俗)한 노래가 성상의 상을 획득할 줄 생각했겠습니까? 윤발(綸綍)16168) 을 내리시어 장려하고 깨우치시니, 단조(丹詔)16169) 가 정녕(丁寧)하며, 국고의 곡식을 꺼내어 <신의 집에> 와 쌓으니 희고 곱게 짙은 쌀이 깨끗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가(一家)의 부모[爺孃]가 배불리 먹었으며 두어 간의 가난한 집이 영광(榮光)스러웠으니, 특별한 총행(寵幸)에 감격과 두려움이 서로 엇갈립니다. 이것은 대개 주상 전하께서 총명(聰明)하심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시고, 덕업(德業)이 날로 새로와져서, 죽은 말 뼈를 사는 것은 연(燕)나라 소왕(昭王)이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 16170) 과 같으시고, 밥을 남에게 미루어 주는 것은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선비를 사랑하는 것 16171) 과 같으심을 만나, 흡족한 은택(恩澤)을 베푸심이 거둬 가난하고 미천한 데 이른 것입니다. 신(臣) 조위(曹偉)는 어찌 감히 소심(素心)16172) 을 더욱 힘써서 천지 생성(天地生成)16173) 의 힘을 우러러 보답하지 않겠으며, 구업(舊業)을 폐하지 아니하여 산룡 보불(山龍黼黻)16174) 의 문채를 돕지 않겠습니까?” 하였다.</p>	<p>有同優戲;排比聲律, 粗窺管斑。 何意下里之音, 獲被震衷之賞? 降綸綍而獎, 諭丹詔丁寧, 出廩困而來堆, 白粲精鑿, 一家之爺孃含飽, 數畝之蓬華生輝。 寵幸異常, 感愼交集。 茲蓋伏遇主上殿下, 聰明天縱, 德業日新。 市骨同燕昭之好賢, 推食類漢高之愛士, 肆宣霈澤, 荐及寒門。 臣偉敢不益勵素心, 仰答天地生成之力, 不廢舊業, 庶贊山龍黼黻之文?</p>
<p>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辛未/上詣泰慶殿上食。</p>

(成化) 21년) 4월 20 일(신미) 1번째기사		
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4월 25 일(병자)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丙子/上詣泰慶殿上食。
성종 177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4월 28 일(기묘)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비전주(肥前州) 상송포(上松浦) 압타(鴨打) 원영(源永)이 사람 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己卯/日本國肥前州上松浦鴨打源永 遣人來獻土宜。
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윤4월 1 일(신사)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16180) 에 나아가서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朔辛巳/上詣泰慶殿行朔祭。
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윤4월 6 일(병술)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丙戌/上詣泰慶殿上食。
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윤4월 6 일(병술) 2번째기사	특히 성균관 학정(成均館學正) 강자어(姜子魚)에게 주유의(紬襦衣) 1습(襲) 과 홉옷[單衣] 1령(領), 쌀 한 섬[碩], 젓[醢] 두 통(桶), 석수어(石首魚) 10 속(束)을 내려 주었는데, 가난하고 한미(寒微)하기 때문이었다.	○特賜成均館學正姜子魚紬襦衣一 襲、單衣一領、米一碩、醢二桶、石 首魚十束，以年老孤寒也。
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윤4월 9 일(기축) 1번째기사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준(成俊)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도내(道內)의 농사(農事)를 보니, 양맥(兩麥)이 모두 무성합니다. 그러 나 밀은 아직 기약할 수 없지만, 보리는 이미 이삭이 맺혔으니, 마침내 풍년 이 들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己丑/京畿觀察使成俊來啓曰：“臣觀 道內農事，兩麥皆茂。然麥則時未可 必，麩則今已結穗，其終豐登無疑。”

<p>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윤4월 11일(신묘) 2번째기사</p>	<p>하였다.</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허황(許堇)이 아뢰기를, “심정원(沈貞源)은 영해 부사(寧海府使)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쓸 만한 사람은 한가지 일로 인하여 종신(終身)토록 폐기(廢棄)할 수 없다.” 하였다. 허황이 아뢰기를, “심정원(沈貞源)이 만약 적(敵)과 대응(對應)하여 힘껏 싸우다가 패하였다면 오히려 용서할 수 있지만, 심정원(沈貞源)은 왜구(倭寇)가 우후(虞候)를 살해하는 것을 당하고도 앉아서만 보고 구원하지 않았으니, 어찌 변장(邊將)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심정원의 죄는 다만 과실(過失)일 뿐이며 탐오(貪汚)를 범한 것도 아니고, 학식(學識)도 있으므로, 신 등이 전에 의논하기를, ‘서용(敍用)해도 무방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대사헌(大司憲)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장수에 쓸에 있어 한번 패하였다고 하여 종신토록 서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심정원은 전에 변장(邊將)으로서 적(敵)을 능히 제어(制御)하지 못하였으며, 영해(寧海)도 또한 변방이므로 응(應)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포작인(鮑作人)16244)의 일을 지난 번에 재상(宰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셨으나, 이 무리들은 본래 제주(濟州) 사람들입니다. 제주는 토지가 척박(瘠薄)하고 산업(產業)이 넉넉지 못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도망하여 오로</p>	<p>○御經筵。 講訖， 司諫許堇啓沈貞源不宜寧海府使。 上曰：“可用之人， 不可以一事而終身廢棄也。” 堇曰：“貞源若應敵力戰而敗， 猶可恕也。 貞源當倭寇殺虞候， 坐視不救， 烏在其爲邊將乎？” 上顧問， 領事洪應對曰：“貞源之罪， 只是失錯耳， 非干貪汚。 且有學識， 故臣等前議以敍用無妨爲對。” 大司憲柳洵啓曰：“用將， 不可以一敗終身不敍也。 但貞源前以邊將， 不能制敵， 寧海亦邊方， 故以爲不可。” 應又啓曰：“鮑作人之事， 往者命議宰相。 此輩本濟州人也， 濟州土地瘠薄， 產業不裕， 逃散全羅、慶尙地面， 專事採海， 鬻販資生。 今若督令還本， 彼必缺望。 臣謂仍令存撫爲便。” 知事許琮啓曰：“此輩採海， 賣買以生， 或以供諸邑進上， 守令以故不編戶爲民， 齊民亦或投彼中作僮。 人言此徒詐爲倭服倭語， 竊發作耗， 其漸不可長也。 臣謂宜悉還本土， 以杜後患。” 上曰：“彼等果有草竊之弊， 然不可一以齊民治之。 雖令還本， 必不樂從， 反生怨隙。 彼人之流移， 由濟州守令撫御乖</p>
--	--	---

	<p>지 해물(海物)을 채취하는 것을 일삼아,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데, 지금 만약 독촉하여 본고장으로 돌려보내게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그대로 존무(存撫)16245) 하는 것이 편안하겠습니다.”</p> <p>하였다. 지사(知事) 허종(許琮)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해물을 채취하여 매매(賣買)해서 살아 가고, 간혹 여러 고을의 진상(進上)을 공급(供給)한다 하여, 수령(守令)들이 고의로 호적(戶籍)에 편입시켜 백성을 만들지 아니하고, 평민[齊民]들도 간혹 저들 가운데 투신하여 한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거짓으로 왜복(倭服)을 입고 왜말을 하며 몰래 일어나서 도적질을 한다.’고 하니,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마땅히 모두 본토(本土)로 돌려보내서 후환(後患)을 막아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이 마라기를, “저들이 과연 도적[草竊]질하는 폐단이 있기는 하나, 한결같이 평민으로 다스릴 수 없다. 비록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더라도 반드시 즐겨 좇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과 틈이 생길 것이다. 저들이 유이(流移)하는 것은 제주(濟州)의 수령(守令)들이 〈저들을〉 어루만져 방지하는 것이 방도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수령들에게 일러서 다시 무자(撫字)16246) 를 가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라.”</p> <p>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보(堡)를 설치할 때에 비록 제포(諸浦)의 수군(水軍)을 부역(赴役)하게 하였으나, 소재지(所在地)의 수령(守令)들이 힘을 합해 쌓아야만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역(驛)의 관사(館舍)도 본고을로 하여금 힘을 합하여 수리(修理)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말이 마라기를,</p>	<p>方耳。其諭守令，更加撫字，俾勿出來。”應又啓曰：“設堡時，雖以諸浦水軍赴役，然所在守令併力以築，乃可成事。且諸驛館舍，令本官同力修理何如?”上曰：“以此意下諭。”</p>
--	---	--

	“이 뜻을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윤4월 14일(갑오)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甲午/上詣泰慶殿上食。
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윤4월 15일(을미) 1번째기사	헌릉(獻陵)16253) 의 참봉(參奉) 박서(朴墅)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망제(望祭)의 찬물(饌物)이 이미 진설(陳設)되었는데, 전사관(典祀官) 김구(金龜)가 갑자기 죽었으니, 행제(行祭)할 것입니까?” 하니, 예조(禮曹)의 관원을 명소(命召)하여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춘추 시대(春秋時代) 때 무궁(武宮)16254) 에 제사가 있어서 악(籥)16255) 이 들어가고 숙궁(叔弓)16256) 이 죽으니, 악(樂)을 제거하고 제사를 마쳤는데, 이를 전(傳)한 자가 말하기를, ‘효자(孝子)는 이미 진설한 찬(饌)을 보고서 차마 경솔히 철거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유(先儒)가 논(論)한 것이 이와 같으니, 비록 예조에서 어찌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속히 행제(行祭)하라.” 하였다.	○乙未/獻陵參奉朴墅來啓: “今望祭饌物已設, 而典祀官金龜暴死, 其行祭乎?” 命召禮曹考古制以啓。 承政院啓曰: “《春秋》: ‘有事武宮, 籥入, 叔弓卒, 去樂卒事。’ 傳之者以爲: ‘孝子視已設之饌, 不忍輕撤。’ 傳曰: “先儒之論如此, 雖禮曹有何異議? 其速行祭。”
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윤4월 19일(기해)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	○己亥/上詣泰慶殿上食。
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윤4월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병조(兵曹)의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연해(沿海)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포작인(鮑作人)들을 추쇄(推刷)하여 성명(姓名)과 나이[年歲]·자손[子支]들을 기록하여 아뢰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慶尙道觀察使據兵曹受敎, 推刷沿海諸邑散居鮑作人等, 錄姓名、年歲、子支以啓。 命議領敦寧以上。 鄭昌

<p>19일(기해) 2번째기사</p>	<p>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과 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 제주(濟州)에서 도망해 왔으므로, 지금 비록 본토로 돌려 보낸다 하여도 반드시 즐거이 따르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소재처(所在處)에서 문적(文籍)에 기록하여 존무(存撫)16266) 해서, 유이(流移)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포작인들은 집이 없이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배 위에서 기생(寄生)하므로, 일일이 제어(制禦)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만약 범한 바가 있으면 엄하게 형벌하여 죄를 주고, 만약에 복종하여 섬긴다면 마땅히 존휼(存恤)을 가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이 무리들은 본래 향산(恒産)16267) 이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므로, 국가에서 매양 안접(安接)16268) 하게 하여도 한번만 뜻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곧 다시 도망하여 흩어지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안접시킬 절목(節目)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포작인들은 연해(沿海)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며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업(業)을 삼아, 오랫동안 선상(船上)에 있으므로,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이 일정하지 아니하니, 토착(土着)한 평민(平民)의 예(例)로써 대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문적(文籍)에 기록하여 검찰(檢察)한다 하여도 사세(事勢)가 행할 수 없고, 또 이 무리들이 동쪽으로 옮기고 서쪽으로 간다 하여도 역시 우리 경내(境內)에 있는 것이니, 소재처(所在處)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항상 무휼(撫恤)하고 금방(禁防)16269) 을 가하게 해서 잘못을 저지르지</p>	<p>孫、韓明澮、尹弼商、尹壕議：“此輩皆自濟州逃來，今雖令還本，必不肯從。當於所在處錄籍存撫，使不得流移。”沈澮議：“鮑作人等無家舍，率妻子寄生於船上，似難一一制之。如有所犯，則嚴刑以罪之；如服事，則宜加存恤。”李克培議：“此輩本無恒産，轉輾遷徙，國家每令安接，而一有不愜，則旋復逃散，其來已久。安接節目，令該司議啓後，更議何如？”盧思愼議：“鮑作人散處沿海諸邑，以捉魚賣食爲業。長在船上，去留無常，不可以土着平民之例待之。今雖錄籍檢察，勢不得行。且此輩雖移東就西，亦在我境內，令所在守令常加撫恤禁防，使不得爲非。儻有移去加現者，守令每歲具數報觀察使啓聞，以知去處何如？”從克培議。</p>
----------------------	--	--

	<p>못하게 하고, 만약에 옮겨 갔거나 더 나타난 자가 있으면, 수령이 해마다 수(數)를 기록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계문(啓聞)하게 해서, 거처(去處)를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p>	
<p>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윤4월 19일(기해) 3번째기사</p>	<p>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래(出來)한 포작인(鮑作人)들은 본래 항산(恒産)이 없고 오로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업(業)을 삼아,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 이르는 곳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서, 비록 거취(去就)가 일정함이 없으나, 부득이 연해(沿海)에 의지하여 머물면서 고기를 팔아 생활해 가니, 진실로 엄한 법(法)으로 다스릴 수 없으며, 또한 법(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여러 고을에 있는 자는 이름을 대조하여 명부(名簿)를 만들어 놓고, 나이와 얼굴의 생김새를 상고하여 패(牌)를 만들어 주고, 소지(所持)한 배[船隻]에 낙인(烙印)16270 을 하여 소관(所管) 만호(萬戶)로 하여금 두목(頭目)을 선정(選定)하여 검거(檢擧)하게 해서 마음대로 출입(出入)하지 못하게 하며, 만약에 다른 지방에 출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행장(行狀)16271 을 지급하고, 또 상시(常時)로 진상(進上)하는 물선(物膳)을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가볍게 수(數)를 정해서 생업(生業)을 이루게 하고, 만약에 수령(守令)이 침어(侵漁)하여 이들을 도망해서 흩어지게 하는 자는 계문(啓聞)하여 과출(罷黜)하소서. 그리고 포작인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형각(形刻)한 패(牌)가 없거나, 표(標)가 없는 배[船]나, 행장(行狀)이 없이 경외(境外)에 임의(任意)로 출입하는 자는, 소재지의 만호와 수령이 체포하여 과죄(科罪)해서 점차로 법령을 알게 하고, 그 업(業)을 안정케 하소서.”</p> <p>하니, 명하여 영둔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兵曹啓: “濟州出來鮑作人等, 本無恒産, 專以捉魚爲業。 扁舟載妻子, 流寓海曲, 所至之處如有不愜, 旋即逃散。 雖去就無常, 不得已沿海依止, 賣魚資生, 固不可嚴法以治之, 亦不可無法以馭之。 當時現在諸邑者, 照名置簿, 考年歲、容貌、形標給牌, 又烙印所持船隻, 令所管萬戶, 擇定頭目檢舉, 毋得任意出入, 如欲往來他境者, 給行狀。 且常時進上物膳, 令觀察使從輕定數, 使遂生業。 若守令侵漁使之逃散者, 啓聞罷黜。 鮑作人等不畏法令, 無形牌、無標船、無行狀, 境外任意出入者, 所在萬戶、守令捕捉科罪, 使之漸知法令, 以安其業。” 命示領敦寧以上。 昌孫、明澮、澮、思愼議: “兵曹所啓, 至爲詳密, 依所啓施行何如?” 弼商議: “今觀啓目, 科禁太嚴, 似難施行。 此輩本無恒産, 無顧戀鄉土之念, 一有不愜, 旋即逃散。 雖賢守令, 安能禦之? 防之太急, 則無</p>

	<p>“병조에서 아된 바가 지극히 상밀(詳密)하니, 아된 바에 따라 시행함에 따라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p> <p>“지금 계목(啓目)을 보니, 과금(科禁)16272) 이 너무 엄(嚴)하여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무리들은 본래 향산(恒産)이 없고 향토(鄉土)를 생각 하는 마음이 없어서, 한번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지니, 비록 어진 수령(守令)이라 하여도 어찌 능히 막겠습니까? 이를 막는 것을 너무 급하게 하면, 이들이 돌아갈 데가 없어서 아마도 다른 변(變)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사람이 어질지 아니한 이를 미워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면 어지러워진다.’고 하고, ‘고인(古人)이 또 말하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를 금하면, 법(法)이 반드시 행해지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그 조치(措置)하는 방도(方道)는,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곡진(曲盡)하게 존무(存撫)를 가하여 유이(流移)하지 말게 하는 데 불과 뿐이다.”</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신이 이 사람들의 거처(居處)를 목격(目擊)하니, 안집(安集)시킬 방법은 대개 계목(啓目)에 의하여 시행함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대조하여 명부(名簿)를 만들어 놓고 선척(船隻)에 낙인(烙印)하는 것과 같은 일은, 모두 유이(流移)하는 길을 만들 것이니, 다만 소재지의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로 하여금 그들의 출입을 관대하게 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약소(略少)하게 하며, 해물(海物)로서 공진(供進)할 수 있는 것은 넉넉한 값을 주고 사서 항상 무휼(撫恤)을 가한다면, 자연히 스스로 붙잡고 소재처에서 안도(安堵)16273) 하여 두 마음을 가지고 옮겨 다니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형표(形標)를 만들어 주고 선척(船隻)에 표(標)를 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법이므로, 저들이 반드시 싫어하고 꺼릴 것입니다. 그러나 별달리 검거(檢舉)하</p>	<p>所於歸，恐生他變。孔子云：‘人而不仁，疾之已甚，亂也。’古人又云：‘禁人之所不能，法必不行。’以此觀之，其措置之方，不過令所在守令曲加存撫，勿使流移而已。”應議：“臣目擊此人等居止，安集之方，大概依啓目施行似便。若照名置薄、船隻烙印等事，皆所以致流移之道也。但令所在守令、萬戶，寬其出入，略其所索，其海物可供進者，優價以買之，常加撫恤，則自然親附，所在安堵，無携貳轉徙之弊。”克培議：“形標成給、船隻着標，在前所無之法，彼必厭憚。然無他檢舉安接之策，姑依所啓試驗，以觀其勢何如？如此則已來之人憚於此法，或有棄此還歸之理，其未來之人聞之，亦無避役逃來之弊。”壕議：“飽作人等去留無常，難可以法令治之，亦不可以平民待之。但令所在諸邑務加存恤，勿使流移而已。”傳曰：“更議于今日隨駕宰樞。”魚有沼、李鐵堅、韓致亨、李坡議：“濟州土窄人多，加以田土瘠薄，不能聊生，流寓者甚多。蠡屯蟻聚，略無定處。若一一刷還，則移東就西，勢不能遏，徒自騷擾而已。</p>
--	--	---

	<p>고 안접(安接)시킬 방법이 없으니, 우선 아된 바에 의하여 시험하고 그 형세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이미 온 사람들이 이 법을 꺼려하여 이 곳을 버리고 〈본토로〉 되돌아갈 이치도 있고,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이것을 듣고 구실[役]을 피하여 도망해 올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윤희는 의논하기를,</p> <p>“포작인(鮑作人)들은 가고 머무는 것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법령(法令)으로 다스리기가 어렵고, 평민(平民)으로 대우할 수도 없으니, 다만 수재지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존휼(存恤)을 힘써 가하여 유이(流移)하지 말게 할 뿐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오늘 수가(隨駕)한 재추(宰樞)16274)에게 다시 의논하라.”</p> <p>하였다. 어유소(魚有沼)와 이철건(李鐵堅)·한치형(韓致亨)·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p> <p>“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사람은 많은데다가, 전토(田土)가 척박(瘠薄)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떠돌아 다니며 사는 자가 매우 많아서, 벌처럼 무리지어 모이고 개미처럼 떼지어 모이므로, 조금도 정처(定處)가 없으니, 만약 일일이 쇄환(刷還)한다면, 동쪽에서 옮기어 서쪽으로 가서 사세(事勢)가 이를 막지 못하고, 다만 소요(騷擾)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금방(禁防)의 절목(節目)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실로 병조(兵曹)에서 아된 것처럼 해야 하나, 이 무리들은 본래 향산(恒産)이 없고 일정한 거처(居處)도 없어서, 그들의 처자(妻子)의 생업(生業)은 한결같이 배[船]에 달려 있으니, 무슨 마음에 걸림이 있겠습니까? 비록 원패(圓牌)16275)를 준다 하여도 어찌 능히 잡아매어 두고 붙들어 매어서 그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또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유이(流移)함이 있다 하여도 관진(關津)에서 금함이 있지만, 이 무리들은 오랫동안 선상(船上)에 있어서 왕래하는 것이 바람처럼 빨라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금한다 하여도 막을 길이 없고, 강제로 닿는 곳마다 추쇄(推刷)하게</p>	<p>但禁防節目，不得不嚴，誠如兵曹所啓。然此輩本無恒産，又無定居，其妻子生業，一寓於船，有何顧戀？雖給圓牌，安能拘繫之係縛之使之勿逃乎？且陸居之人雖有流移，自有關津之禁；此輩長在船上，往來飄忽，百計禁之，防遏無由。強令隨處而刷，生變亦可慮也。不若因其所在，曲加撫恤。且置名簿，如有流寓他處，則又隨所在而置簿。於此於彼皆是我國之民，存恤苟得其方，亦是良民。已來之人，但當如上項施行；今後流移之人，亦當嚴加禁防。”</p> <p>韓致禮議：“濟州流移人，固當刷還。然若刷還，則不無騷擾之弊。況此亦我國之人，兵曹所啓詳悉。但此輩無田地，乘船爲業，令所在守令曲加存撫。今後如有出來者，則濟州官吏，重論何如？”</p> <p>李克均議：“依兵曹啓目，而安業流移之數，每節季令諸道觀察使摘奸啓聞，該司檢舉何如？”</p> <p>鄭佶、李崇元議：“依兵曹啓目施行。但形牌成給、朝夕捉魚時給行狀出入，非徒騷擾，使與編戶不類，似非安集之方。遠處商賈出入外，除行狀，形牌亦勿成給。仍令所在官無遺付籍，</p>
--	--	---

	<p>한다면 변(變)이 일어날까 또한 염려되니, 소재처(所在處)에서 곡진하게 무휼(撫恤)을 가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명부(名簿)를 만들어 놓아, 만약에 다른 곳으로 유이(流移)해 가서 산다면, 또 그 소재처에서 명부를 만들어 주게 하소서. 이 곳에서나 저 곳에서나 모두 우리 나라 백성들이니, 존휼(存恤)하는 것이 방도를 얻으면, 이 또한 양민(良民)들입니다. 이미 온 사람들은 다만 상항(上項)처럼 시행할 것이며, 금후로 유이(流移)하는 사람들은 또한 엄하게 금방(禁防)을 가하게 하소서.”</p> <p>하고, 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p> <p>“제주(濟州)에서 유이(流移)한 사람들은 진실로 마땅히 쇄환(刷還)해야 하오나, 만약에 쇄환한다면 소요(騷擾)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무리들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니, 병조(兵曹)에서 아뢰 바가 자세하긴 하나, 이 무리들은 전지(田地)가 없고 배를 타는 것을 업(業)으로 삼으니, 소재지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곡진하게 존무(存撫)를 가하게 하고, 이 뒤에 만약에 나오는 자가 있으면, 제주의 관리(官吏)들을 중론(重論)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p> <p>“병조의 계목(啓目)에 의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유이(流移)한 수(數)를 매 계절말(季節末)에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직간(摘奸)16276 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고,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검거(檢舉)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정괄(鄭括)·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p> <p>“병조의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형패(形牌)를 만들어 주고, 조석(朝夕)으로 고기를 잡을 때에 행장(行狀)을 발급하여 출입하게 하는 것은 소요(騷擾)할 뿐만 아니라, 호적(戶籍)에 편입시키는 것과 같지 않으므로, 안집(安集)시키는 방도가 아닌 듯하오니, 먼 곳에 장사하러 출입하는 것 외에는 행장과</p>	<p>曲加存恤;每歲季安集形止逃移之數, 開坐錄啓何如?” 李世佐、尹甫、李瓊全、李陸議: “國家昇平百年, 生齒日繁, 而土地有限, 無田宅以爲生業, 故不得已以漁採爲生耳。 觀蘇子瞻《漁蠻子》一篇, 則如此之輩, 古亦有之。 今若不加撫恤, 而別立科條以爲檢舉之方, 則官吏或因緣侵漁, 致令輾轉流移, 徒致煩擾。 莫若隨其所在, 錄籍完撫, 稍相羈縻, 歲久安業, 則皆自然爲邊圉有用之民矣。” 金升卿、柳洵議: “沿海鮑作人, 既厭本土流移而來, 今雖欲強之還本, 勢固難行。 當於所在, 安業撫恤可也。 但此輩既以舟楫爲生, 用以防海, 乃國家之利也。 所在官萬戶傍近處分置, 既已立法。 仍令本官着籍爲兵, 如水軍之制而疎其番遞, 優其保數, 如陳荒無主之田, 漸次折給, 使之或力農或採海, 以資其生, 則萬一邊上有警, 此輩最爲水上可用之兵也。 但流移他處及新寓之數, 不可不知, 令諸道監司, 每歲抄具數以聞何如?” 傳曰: “兵曹雖啓, 節目細碎, 諸宰之議, 紛紜不一, 予意難以遙度。 左議政既巡察目擊而來, 當如其議。</p>
--	---	--

형패를 제거하고, 만들어 주지도 말며,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빠짐 없이 호적에 붙여서 곡진하게 존휼을 가하게 하고, 매년마다 연말에 안집한 상황과 도망하여 옮겨 간 수를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세좌(李世佐)와 윤보(尹甫)·이경동(李瓊叟)·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국가가 승평(昇平)한 지 1백 년이 되어, 인구는 날로 번창하는데, 토지(土地)는 국한되어 있어서 전택(田宅)으로 생업을 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채(漁採)16277) 로써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소자첨(蘇子瞻)16278) 의 《어만자(漁蠻子)》 일편(一篇)을 보니, 이와 같은 무리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무휼(撫恤)을 가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과조(科條)16279) 를 세워서 검거(檢擧)하는 방도를 삼는다면, 관리(官吏)들이 간혹 이것을 인연(因緣)하여 침어(侵漁)해서 이리저리 유이(流移)하게 만들어, 다만 번요(煩擾)하게 될 뿐이니, 소재처(所在處)에서 문적(文籍)에 기록하여 온전히 무휼하며, 점차서로 기미(羈縻)16280) 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세월이 오래되고 생업을 편안하게 여기면, 모두 자연히 변방의 유용(有用)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고, 김승경(金升卿)과 유순(柳洵)은 의논하기를, “연해(沿海)의 포작인(鮑作人)은 이미 본토(本土)를 싫어하여 유이(流移)해 왔으니, 지금 비록 강제로 본토로 돌려보내다 하여도 사세(事勢)가 진실로 행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소재처(所在處)에서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게 하고 무휼(撫恤)함이 가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이미 배[舟楫]로써 생활하고 있으니, 바다를 방어하는 데 이용하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소재지[所在官]의 만호(萬戶)에게 부근의 가까운 곳에 분치(分置)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 그대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적(籍)에 올려 군사를 만들고, 수군(水軍)의 제도와 같게 하되 번들고 교대하는 것을 드물게 하며, 보인(保人)16281) 의 수(數)를 넉넉하게 하고, 만약에 묵은 땅과 주인(主人)이 없는 전지(田地)는 접

假如居廣州者移寓水原，則水原官吏存恤之；又移交河，則交河官吏亦存恤之。隨其所在而撫之，勿令逃散而已。其以此意，下諭諸道。”

	<p>차로 절급(折給)해서, 이들로 하여금 힘써 농사짓게 하고, 혹은 해물(海物)도 채취하게 하여 살아나가게 하면, 만일 변방(邊方)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 무리들이 가장 수상(水上)에서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유이(流移)한 것과 새로 들어와 거주하는 수(數)를 몰라서는 아니되니,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해마다 세초(歲抄)16282) 에 수를 갖추 아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병조(兵曹)에서 아뢰기는 했으나 절목(節目)이 세쇄(細碎)16283) 하고 여러 재상(宰相)들의 의논도 분운(紛紜)하여 한결같지 않으니, 나의 뜻은 요탁(遙度)16284) 하기가 어렵다고 여긴다. 좌의정(左議政)이 이미 순찰(巡察)하여 목격(目擊)하고 왔으니, 마땅히 그 의논과 같이 가령 광주(廣州)에 살던 자가 수원(水原)으로 옮겨 살 것 같으면 수원의 관리가 존홀(存恤)하고, 또 교하(交河)로 옮겼으면 교하의 관리가 또한 존홀하여, 소재해 있는 곳에 따라서 무휼(撫恤)하여 도산(逃散)하지 말게 할 뿐이다. 이 뜻을 여러 도(道)에 하유(下諭)하라.”</p> <p>하였다.</p>	
<p>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윤4월 23일(계묘) 2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권건(權健)과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우승지(右承旨) 한찬(韓儼)·좌부승지(左副承旨) 안침(安琛)·우부승지(右副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p> <p>“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변승인(卞崇仁)이 별군관(別軍官) 10인을 데리고 갈 것을 청하였는데, 별군관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 유래가 비록 오래 되었으나, 《대전(大典)》의 법이 아니고, 그 당초에 반드시 일시(一時)의 변사(邊事)가 급하기 때문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대로 따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래 상례(常例)로 삼은 것입니다. 대저 군관(軍官)은 폐단(弊端)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데, 더구나 근래에 북도(北道)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창고의</p>	<p>○都承旨權健、左承旨成健、右承旨韓儼、左副承旨安琛、右副承旨李世佑啓曰：“永安北道節度使卞崇仁請帶去別軍官十人。別軍官帶去，其來雖久，然非《大典》之法。其初必因一時邊事之急，而因循至今，例以爲常。大抵軍官好作弊，況近來北道連年凶荒，倉穀虛竭。且無聲息而別遣軍官，糜費國廩未便。” 同副承旨李朝陽啓</p>

	<p>곡식이 허갈(虛竭)되고 또 성식(聲息)도 없는데, 특별히 군관을 보내서 국고(國庫)를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p> <p>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조양(李朝陽)은 아뢰기를, “북도(北道)는 야인(野人)이 있는 땅이므로, 변장(邊將)이 호궐(犒饋)16300) 할 때에 군관들로 하여금 좌우(左右)에 나누어 서게 하고, 간혹 사후(射侯)16301) 도 하여, 은근히 적인(敵人)의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지금 만약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하고 전의 수(數)에서 감한다면, 적인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본래 예(禮)로써 교제(交際)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도적질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데, 만약 갑자기 변(變)이 있어, 반드시 보고(報告)하여 계청(啓請)하기를 기다린 뒤에 군관을 따로 보낸다면, 어찌 이에 미치지겠습니까? 신은 생각건대, 예전대로 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모두 옳다. 큰 일을 성취하는 자는 작은 폐단을 따지지 않으나, 국고가 허갈된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 마땅히 절충해서 5인을 정해 주라.”</p> <p>하였다.</p>	<p>曰：“北道，野人所在之地，邊將於犒饋之時，使軍官分立左右，或射侯以示其威，陰挫敵人之心。今若一朝遽廢而減於前數，恐啓敵人輕我之心矣。且彼人本不禮戰，日以潛竊爲事，倘有倉卒之變，而必待申報啓請後別遣軍官，則何以及之？臣意仍舊爲便。”傳曰：“爾等之言皆是也。成大事者，不計小弊。國廩虛竭，誠非細事，然其來已久，不可遽爾變更。宜折中，定給五人。”</p>
<p>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윤4월 25일(을사)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서 상식(上食)하였다.</p>	<p>○乙巳/上詣泰慶殿上食。</p>
<p>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윤4월 28일(무신) 1번째기사</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정희 왕후(貞熹王后)를 부묘(祔廟)한 뒤의 음복연(飲福宴)을 구례(舊例)에 의하여 행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그 말미(末尾)에 어서(御書)하기를, “연회를 정지하고 여러 집사(執事)에게 음식을 대접하되, 연회와 풍악을 내려 준 예(例)를 상고하여 아뢰라.”</p>	<p>○戊申/禮曹啓：“貞熹王后祔廟後飲〔福〕宴，依舊例行之何如？”御書其尾曰：“停宴，饋諸執事。考賜宴樂例以啓。”禮曹判書柳輕、參判李世佐來啓曰：“臣等意以謂飲福，受神惠也，非私宴也。古云：‘飲福受胙。’又云：</p>

	<p>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와 참판 이세좌(李世佐)가 와서 아뢰기를,</p> <p>“신 등은 생각건대, 음복(飮福)은 신(神)의 은혜를 받는 것이며 사사로운 연회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음복하고 제육(祭肉)을 받았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복(福)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제사 뒤에 음복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으며 조종조(祖宗朝) 때에도 모두 행하였었는데, 다만 문종조(文宗朝) 때에는 마침 연고가 있어서 친히 연회를 베풀지 못하고 연회와 풍악을 내려 주었습니다. 만약 연고가 없었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문종조에서는 마침 미령(未寧)하셨기 때문에 음복을 행하지 못하셨다. 그러나 예문(禮文)에도 이르기를, ‘만약 연회를 베풀지 못한다면, 연회와 풍악을 여러 집사(執事)에게 내려 준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본다면, 반드시 친히 연회를 베풀 것이 없다. 만약에 음복연을 베풀다면 어느 날에 베풀 것인가?”</p> <p>하였다. 유지 등이 아뢰기를,</p> <p>“예전에 이르기를, ‘신(神)의 은혜(恩惠)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음복을 뒤로 물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4일은 바로 문종(文宗)의 기신(忌辰)이오니, 부묘일(祔廟日)에 행하는 것이 편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양전(兩殿)에게 아직 풍정(豐呈)16323 을 올리지 않았는데, 먼저 군신(群臣)들과 음복연을 행하는 것은 마음에 실로 미안하다. 내 생각에는 양전에게 헌수(獻壽)한 뒤에 군신들과 연음(宴飮)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선 연회를 정지하고 다만 집사(執事)에게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뿐이다. 만약 음복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면, 내가 잠시 나가서 음복한 뒤에 다시 대내(大內)로 들어와, 여러 집사에게 연회와 풍악을 궐정(闕庭)에 내리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였다. 유지 등이 아뢰기를,</p>	<p>‘受禧.’ 祭後飮福, 古亦有之, 且祖宗皆行之。 但文宗朝適有故, 未行親宴而賜宴與樂。 若無故, 不可不行。” 傳曰: “文宗朝適未寧, 故不行飮福。 然禮文亦云: ‘若不親宴, 則賜宴樂于諸執事。’ 觀此則不必親宴也。 若行飮福宴, 則設於何日乎?” 柳攄等啓曰: “古云: ‘不留(伸) [神] 惠。’ 飮福不可退行。 且十四日乃文宗(忌辰) [忌辰], 於祔廟日行之爲便。” 傳曰: “兩殿未進豐呈, 而先與群臣行飮福宴, 心實未安。 予意謂兩殿獻壽後, 當與群臣宴飮, 故欲姑停宴, 只饋執事而已。 若曰飮福在所不得已, 則予暫出飮福後還入內, 賜諸執事宴樂於闕庭何如?” 攄等曰: “若在常時, 則兩殿未進豐呈而先設宴飮, 似爲未安。 此則祭後飮福受禧, 宗廟壓尊, 豈以兩殿未進豐呈爲嫌哉? 古云: ‘不留神惠。’ 受禧重事, 臣等意飮福宴不可不行。” 傳曰: “其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沈澹議: “兩殿進豐呈前飮福, 似爲未安。 然宗廟壓尊, 先行飮福禮, 亦爲無妨。” 尹弼商議: “飮福宴不可停, 亦不可緩, 神惠固不可留。 兩殿雖未</p>
--	---	--

	<p>“만약에 평상시라면 양전에게 풍정을 올리지 아니하고 먼저 연음(宴飲)을 베푸는 것이 미안할 것 같지만, 이것은 제후(祭後)에 음복하고 복을 받는 것이며, 종묘(宗廟)에 압존(壓尊)이 되니, 어찌 양전에게 풍정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혐의(嫌疑)를 삼겠습니까? 예전에 이르기를, ‘신의 은혜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복을 받는 것이 중사(重事)입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음복연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p> <p>하였다. 정창손(鄭昌孫)과 심회(沈澹)는 의논하기를,</p> <p>“양전(兩殿)에게 풍정(豐呈)을 올리기 전에 음복(飲福)하는 것은 미안(未安)한 것 같으나, 종묘(宗廟)에 압존(壓尊)이 되니, 먼저 음복례(飲福禮)를 행하여도 무방합니다.”</p> <p>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p> <p>“음복연은 정지할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신(神)의 은혜는 진실로 멈출 수 없사오니, 양전에게 비록 풍정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어찌 혐의가 되겠습니까?”</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예조에서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하소서.”</p> <p>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p> <p>“만약에 임시(臨時)에 연고가 있어 친히 연회하는 것을 정지하면, 향관(享官)에게만 연회를 내리는 것도 예문(禮文)입니다. 그리고 성상께서 행제(行祭)하신 뒤에 음복하시고 제육(祭肉)을 받고 나서 연회를 정지하심이 어찌 해롭겠습니까? 만약 음복연을 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성상께서 음복을 행하시고 예(禮)가 끝난 뒤에 향관에게 연회를 다른 곳에 내려 주심이 양쪽이 다 편할 것 같습니다.”</p>	<p>進豐呈，何嫌？”洪應議：“依禮曹所啓施行。”李克培議：“若臨時有故停親宴，則只賜享官宴，亦禮文也。且上於行祭後，既已飲福受胙，停宴何害？若以飲福宴爲不可廢，則上行飲福禮畢後，賜享官宴于他處，似爲兩全。”盧思慎議：“飲福日進兩殿豐呈，兩便。”尹壕議：“外殿飲福後，進宴兩殿何如？”傳曰：“今觀群議，盧思慎、尹壕以謂飲福宴及兩殿進豐呈，一日兼行兩全。其日大事累次行之似難。予意暫出飲福後還入內，賜宴樂于諸執事，進曲宴于兩殿，設茶禮而已。乃於後日兩殿進豐呈後，與群臣同宴，亦爲未晚。於政院意何如？”承旨等啓曰：“臣等意謂宗廟壓尊，弼商之議甚當。然以兩殿未進豐呈爲嫌，則上教亦爲無妨。《儀註》云：‘諸享官入就位，上行飲福禮，諸享官復位設宴。’如此則上只行飲福宴，還入內，賜諸享官宴樂亦無妨。然此不得已之事，無如弼商之議。”</p>
--	---	--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음복하는 날에 양전(兩殿)에게 풍정을 올리는 것이 양쪽이 다 편합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외전(外殿)에서 음복한 뒤에 양전(兩殿)에게 연회를 올리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니, 노사신과 윤호는 말하기를, ‘음복연과 양전에게 올리는 풍정을 하루에 겸행(兼行)하는 것이 양쪽이 다 온전하다.’고 하였으나, 그 날에 대사(大事)를 여러 차례 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잠시 나가서 음복하고 나서 다시 대내(大內)로 들어와 연회와 풍악을 여러 집사(執事)에게 내리고 양전(兩殿)에게 곡연(曲宴)16324) 을 올리며, 다례(茶禮)만 베풀고, 후일(後日)에 양전에게 풍정을 올린 뒤에 군신(群臣)과 함께 연회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원(政院)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였다.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신 등의 뜻은 종묘(宗廟)에 압존(壓尊)이 되므로 윤필상의 의논이 매우 마땅하오나, 양전에게 풍정을 올리지 않은 것을 혐의하신다면 성상의 말씀도 또한 무방하십니다. 의주(儀註)에 이르기를, ‘여러 향관이(享官)이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면, 임금이 음복례(飲福禮)를 행하고, 여러 향관이 차례로 전(殿)에 올라 음복을 행하는데, 예(禮)가 끝난 뒤에 여러 향관이 자리에 돌아가면, 연회를 베푼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성상께서 다만 음복연(飲福宴)만 행하시고 다시 대내(大內)로 들어가시어, 여러 향관에게 연회와 풍악을 내려 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오니, 윤필상의 의논만 같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p>	
<p>성종 178권, 16년</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己酉/禮曹啓: “世宗祔廟後, 獻官諸</p>

<p>(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윤4월 29일(기유) 1번째기사</p>	<p>“세종(世宗)을 부묘(祔廟)한 뒤에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에게 의정부(議政府)에다 연회를 내려 주었습니다.”</p>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세종을 부묘한 뒤에 문·무관(文武官) 2품 이상에게 연회와 풍악을 의정부에 내려 주고, 기로(耆老)와 재추(宰樞)는 기로소(耆老所)에다 내려 주었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예조에서 아뢴 것은 다만 ‘연회를 내려 주었다.’고만 칭하였으나, 연회를 내렸으면 풍악을 내린 것이 의심할 바 없습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 “부묘하는 날에 잠시 음복례를 행하고 나서, 내가 대내(大內)에 들어가 양전(兩殿)에게 곡연(曲宴)을 올리고, 집사(執事)에게는 명정전(明政殿)의 뜰에다 연회를 내림이 가하다. 그 때에 함께 참석할 재상(宰相)은 내가 마땅히 임시(臨時)에 명할 것이니, 후일에 양전에게 풍정을 올리고 군신(群臣)에게 연회할 날을 마땅히 다시 택정(擇定)하라.”</p> <p>하였다.</p>	<p>執事，賜宴于議政府。”承政院啓曰：“世宗祔廟後，賜文武官二品以上宴樂于議政府，耆老宰樞于耆老所。臣等意以謂禮曹所啓，只稱賜宴，賜宴則其賜樂無疑。”傳曰：“祔廟日暫行飲福禮，訖，予入內，進曲宴于兩殿。執事則賜宴明政殿庭可也。其時隨參宰相，予當臨時命之。後日兩殿進豐呈及宴群臣之日，當更擇定。”</p>
<p>성종 178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윤4월 29일(기유) 2번째기사</p>	<p>전라도(全羅道)와 영안도(永安道)·경상도(慶尙道)·평안도(平安道) 관찰사(觀察使)에게 글을 내리기를, “감초(甘草)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세종조(世宗朝)에 중국[中原]에서 구(求)해 상림원(上林園)에 심게 하였다가, 마침내 여러 도(道)에 나누어 심게 하였는데, 번성(蕃盛)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심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지금 여러 도에서 아뢴 것을 보니, 해마다 느는 것이 번성하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수령(守令)이 마음을 써서 배양(培養)하지 아니하고, 혹은 땅이 척박(瘠薄)하거나 잡초(雜草)로 인하여 무성하지 못함이니, 척박한 토지에 심은 것은 점차로 옮겨 심고, 잡초를 제거하여 힘써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시험해 쓰려고 하니, 나주(羅州)에 심은 것 3냥(兩)과 진도(珍島)에 심은 것 4냥, 함평(咸平)에 심은 것 1냥, 영암(靈巖)에 심은 것 1냥,</p>	<p>○下書全羅、永安、慶尙、平安道觀察使曰： 甘草不產我國，世宗朝求之中原，種于上林園，遂分種諸道，欲其蕃盛。種之已久，而今觀諸道所啓，逐年生植不蕃盛，是必守令不用意培養。或因地瘠，或因雜草，使不暢茂，其瘠土所種，漸次移種，芟去雜草，務令蕃盛。且今欲試用，羅州所種三兩、珍島四兩、咸平一兩、靈巖一兩、寶城一兩、吉</p>

	보성(寶城)에 심은 것 1냥, 길성(吉城)에 심은 것 4냥, 경원(慶源)에 심은 것 4냥, 온성(穩城)에 심은 것 2냥, 회령(會寧)에 심은 것 3냥, 종성(鍾城)에 심은 것 3냥, 울산(蔚山)에 심은 것 1냥, 평양(平壤)에 심은 것 1냥을, 월령(月令)에 의하여 2월과 8월의 제일(除日)16325) 에 채취(採取)해서 포건(暴乾)16326) 하여 올려보내라.” 하였다.	城四兩、慶源四兩、穩城二兩、會寧三兩、鍾城三兩、蔚山一兩、平壤一兩，依月令，二月、八月除日採取，暴乾上送。
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2일 (신해) 1번째기사	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담제(禫祭)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辛亥/上詣泰慶殿，行禫祭如儀。
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2일 (신해) 3번째기사	명하여 종친(宗親) 2품 이상, 의정부(議政府), 영돈녕(領敦寧) 이상, 육조 당상(六曹堂上), 공신(功臣) 2품의 여러 집사(執事),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대간(臺諫)·제장(諸將)·사금(司禁)에게 빈청(賓廳)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命饋宗親二品以上、議政府、領敦寧以上、六曹堂上、功臣二品、諸執事、承政院、弘文館、臺諫、諸將、司禁于賓廳。
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4일 (계축)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인위군(仁位郡) 중 사랑 직가(宗四郎職家)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왜(倭) 사정(司正) 임사야문(林沙也文)이 와서 조회하였다.	○癸丑/日本國仁位郡宗四郎職家遣人來獻土宜。倭司正林沙也文來朝。
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5일 (갑인) 1번째기사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가 와서 아뢰기를, “신의 어머니가 나이 늙고 또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어 평소에도 약을 정지하지 못하는데, 지금 자수궁(慈壽宮)에 우거(寓居)하고 있으니, 신이 약시중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왕래하며 문안은 합니다만 그 곳도 역시 대궐 안이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청컨대 사제(私第)에 모시고 있으면서 탕약을 시봉(侍奉)하게 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숙원(李淑媛)과 윤귀인(尹貴人)이 사제에 나간 것은 선왕(先王)의 유교(遺	○甲寅/德源君曙來啓曰：“臣母年老，又抱宿疾，居常不輟藥餌。今寓慈壽宮，臣未得侍藥，臣雖往來問安，然彼亦闕內，出入未得自由。請陪居私第，供奉湯藥。”傳曰：“如李淑媛、尹貴人就私第，有先王遺教故許之，此則於事體未穩。予欲別造居處，然今方營繕故未果。且欲優給供奉之物，近因

	<p>教)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체(事體)에 온당하지 않다. 내가 별도로 거처를 마련해 주고자 하였으나, 지금 바야흐로 영선(營繕)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고, 또 공봉(供奉)하는 물건을 넉넉히 주고자 하였으나, 근자에 국가의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또한 뜻과 같이 못하였다. 만일 큰 일을 끝내면 내가 마땅히 넉넉히 공급하겠다. 경이 비록 출입하며 뵈지는 못하더라도 왕래하며 문안하는 것이야 무슨 옳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p>	<p>國家多事，亦未得如意。若畢大事，則予當優供也。卿雖不得出入謁見，然往來問安，有何不可?”</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11일(경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경전(泰慶殿)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신륵(神輦)을 받들어 종묘(宗廟)에 이르러 백관을 거느리고 망묘례(望廟禮)를 행하였다.</p>	<p>○庚申/上詣泰慶殿，行告動駕祭如儀。奉神輦至宗廟，率百官行望廟禮。</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12일(신유) 3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하례를 받고 드디어 반사(頒赦)하였다. 그 반사한 글에 이르기를, “상사(喪事)에 예(禮)를 다하고 제사(祭祀)에 성(誠)을 다하여 숭부(崇祔)하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티를 씻고 때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땅히 관대한 조령(條令)을 반포해야 하겠다. 내가 적은 덕으로써 외람되게 큰 기업을 지키었다. 바야흐로 거상(居喪) 중의 애통을 안고 있다가 문득 길복(吉服)을 입는 시기에 이르렀다. 정은 한이 없으나 제도는 어길 수가 없다. 성화(成化) 21년 16338) 5월 12일에 공경히 황조비(皇祖妣) 자성 흠인 경덕 선열 명순 원숙 휘신 혜의 신헌 정희 왕후(慈聖欽仁景德宣烈明順元淑徽愼惠懿神憲貞熹王后) 윤씨(尹氏)의 신주를 받들어 태묘(太廟)에 숭부하고, 친히 명인(明禋)에 강신하여 성대한 예를 거행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경사를 당하면 대체로 비상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달 12일 매상(昧爽)으로부터 이전에 모반 대역(謀反大逆)·모반(謀叛)과 자손이 조부모(祖父母)·부모(父母)를 모살(謀殺) 구매(歐罵) 하였거나, 처첩(妻妾)이 남편을 모살(謀殺)하였거나, 노비(奴婢)가 주인을 모살(謀殺)하였거나, 고의로 살인(殺人)을 꾀하였거나, 고독(蠱毒)·염매(魘魅)를</p>	<p>○上御仁政殿，受百官賀，遂頒赦。其赦文曰： 追遠愼終，式展崇祔之禮；滌瑕蕩垢，宜布寬大之條。予以寡德，叨守鴻基，方懷在疚之痛，奄屆卽吉之期，情則無窮，制不敢過。以成化二十一年五月十二日，祇奉皇祖妣慈聖欽仁景德宣烈明順元淑徽愼惠懿神憲貞熹王后尹氏神主，祔于太廟，親禋明禋，以舉縉禮。茲屬莫大之慶，蓋推非常之恩。自今月十二日昧爽以前，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歐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蠱毒魘魅、但事關國家(綱) [綱] 常貪</p>

	<p>하였거나, 다만 일이 국가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으로 탐오(貪汚)·강도(強盜)·절도(竊盜)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 죄주겠다. 관직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을 더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대가(代加)하고, 집사 중에 자궁하지 않은 자는 또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고신(告身)을 수탈한 자는 분간하여 돌려주고, 도(徒)·유(流)·부처(付處)한 자는 경중(輕重)을 가려서 방면하고, 공처(公處)에 포흠(逋欠)16339)을 낸 자는 햇수를 한정하여 견감(蠲減)하라. 슬프다! 은전(殷典)이 이루어진 것을 신명(神明)께 고하니 아울러 그 복을 받고, 큰 은택을 널리 백성에게 베푸니 더불어 새로와진다.”</p> <p>하였다. 인하여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음복례(飲福禮)16340)를 행하고, 내전에 돌아와서 양전(兩殿)께 곡연(曲宴)16341)을 올렸으며, 또 명하여 헌관(獻官), 여러 집사 및 종재(宗宰) 등을 창경궁(昌慶宮) 명정전(明政殿) 뜰에 모이게 하여 연악(宴樂)을 내려 주었다. 전교하기를,</p> <p>“어제도 비가 오지 않고 오늘도 비가 오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큰 예(禮)를 이루게 하였으니, 마음에 대단히 기쁘다. 정은 비록 무궁하나 성인(聖人)이 마련한 예제(禮制)에 지나칠 수가 없으니, 오늘의 모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정희 왕후(貞熹王后)를 위하여 경 등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극진히 하고자 한다. 경 등도 3년 동안 오래 즐기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취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의정부(議政府),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종친(宗親) 1품 이상, 충훈부(忠勳府) 1품 이상, 그리고 의빈부(儀賓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기로소(耆老所)·입직(入直諸將)·승지(承旨)·홍문관(弘文館)·대사헌(大司憲)·대사간(大司諫) 및 김세민(金世敏)·김한(金澣) 등이 모두 참여하였다.</p>	<p>汚、強竊盜外，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咸有除之。敢以有旨前事相告語者，以其罪罪之。在官者各加一資，資窮者代加。執事未資窮者，又加一資。收告身者，分揀還給；徒流付處者，辨輕重放；送公處逋欠者，限年蠲減。於戲！殷典告成於神明，竝受其福；鴻澤普施於黎庶，咸與惟新。</p> <p>仍御仁政殿，行飲福禮，還內，進曲宴于兩殿。又命會獻官諸執事及宗宰等于昌慶宮明政殿庭，賜宴樂。傳曰：“昨日不雨，今日不雨，使予得成大禮，心甚喜悅。情雖無窮，聖人制禮，不敢過也。今日之會，不得不爾。予爲貞熹王后欲使卿等極歡，卿等亦於三年內久未歡娛，期在必醉。”議政府、領敦寧以上、宗親一品以上、忠勳府一品以上、儀賓府、六曹、漢城府、耆老所、入直諸將、承旨、弘文館、大司憲、大司諫及金世敏、金澣等皆與焉。</p> <p>○傳于都承旨權健曰：“予因中宮，聞</p>
<p>성종 179권, 16년</p>	<p>도승지(都承旨) 권건(權健)에게 전교하기를,</p>	<p>○傳于都承旨權健曰：“予因中宮，聞</p>

<p>(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14 일(계해) 2번째기사</p>	<p>“내가 중궁(中宮)으로 인하여 경이 어미에게 헌수(獻壽)한다고 말을 들었다. 경의 어미는 다른 공신(功臣)의 아내에 비교할 것이 아니고, 중궁(中宮)에게도 가까운 친족이며, 경이 또한 도승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옹원(司饗院)으로 하여금 찬구(饌具)를 갖추어 주는 것이니, 경이 받아서 어미에게 음식을 대접 하라.” 하였다.</p>	<p>卿壽母。 卿母非他功臣妻之比也， 於中宮亦切族也， 卿亦都承旨。 故特令司饗院備饌具以給， 卿其受之饋母。”</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16 일(을축) 1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盧思愼)·우찬성(右贊成) 이과(李坡)·좌참찬(左參贊) 손순효(孫舜孝)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세좌(李世佐)가 와서 아뢰기를, “3년 안에 재해(災害)의 일이 없었고, 지금 이미 상제(喪制)를 끝냈으니, 이것은 국가의 경사입니다. 신 등이 진연(進宴)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근자에 윤사흔(尹士昕)의 죽음으로 곧 입계(入啓)하지 못하였는데 진연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p>	<p>○乙丑/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右議政李克培、宣城府院君盧思愼、右贊成李坡、左參贊孫舜孝、禮曹參判李世佐來啓曰：“三年之內無災害之事，今既終制，是國家慶事。 臣等欲請進宴，近以尹士昕之卒，未即入啓。 請進宴。” 傳曰：“可。”</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16 일(을축) 3번째기사</p>	<p>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이 와서 진연(進宴)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때가 바야흐로 매우 더운 철인데 가을을 기다려서 행하는 것이 어떨겠는가?” 하니, 이정(李婷)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같은 경사는 늦출 수가 없으니, 가까운 시일 안에 진연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평상시의 잔치라면 더위를 당하여 억지로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실로 3년 후의 경사이니 행하는 것이 좋겠다.”</p>	<p>○月山大君婷、德源君曙、玉山君躋、班城尉姜子順來請進宴。 傳曰：“時方酷暑，待秋行之何如？” 婷等更啓曰：“如此慶事，不可遲緩。 請從近進宴。” 傳曰：“若常時之宴，則當暑不可強， 而此實三年後慶事， 行之可也。”</p>

	하였다.	
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17 일(병인) 1번째기사	왜(倭) 호군(護軍) 정언팔(井彦八) 등 네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丙寅/倭護軍井彦八等四人來獻土宜。
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18 일(정묘) 4번째기사	전교하기를, “근래에 3년의 국홀로 인하여 종재(宗宰)를 접견하지 못한 지 이미 오래되었 다. 광릉(光陵)·태경전(泰慶殿)에 번(番)을 든 종친도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일 후원(後苑)에서 접견하고 활쏘기를 구경하고자 한다. 내가 듣건대, 지난 날 명정전(明政殿)에서 사연(賜宴)할 때에 재상이 얼음을 찾다가 얻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체(大體)에 어떠한가? 육화 탕(六和湯) 등의 약(藥)과 빙정(氷丁) 같은 것은 마땅히 많이 예비하여야 한 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내가 일기를 보니 매우 가물 징조가 있다. 만일 가뭄이 심하면 반드시 기우 (祈雨)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잔치하여 즐길 수 있겠는가? 20일 잔치에는 풍성하게 준비하여 극진히 즐기게 하라.” 하였다.	○傳曰: “近因三年之恤, 不接見宗宰已久, 光陵、泰慶殿入番宗親亦未宴慰。故欲於二十日, 接見于後苑, 觀射。予聞往日明政殿賜宴時, 宰相有索冰而不得者, 是於大體何如? 如六和湯等藥與氷丁, 宜多預備。” 又傳曰: “予觀日候, 頗有旱徵。若旱甚, 必有祈雨之事, 予安能宴樂乎? 二十日之宴, 曲加豐備, 使之極歡。”
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20 일(기사) 1번째기사	후원(後苑)에 나아가 종친이 활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명하여 의정부(議政府), 영돈녕(領敦寧) 이상, 예조 당상(禮曹堂上), 입직(入直)한 도총관(都摠管),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을 서소(西所)에 모이게 하여 잔치와 풍악을 내려 주고, 좌우로 나누어 과녁을 쏘아 이긴 편에게 백록비(白鹿皮) 각각 한 장을 주게 하였으며, 또 잔치에 참여한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각각 사운시(四韻詩)를 짓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3년 뒤에 잔치를 행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해가 지는 것으로 한정하여	○己巳/御後苑, 觀宗親射。命會議政府、領敦寧以上、禮曹堂上、入直都摠管、承政院、弘文館于西所, 賜宴樂。分左右射侯, 賜勝耦白鹿皮各一張。又命與宴文臣各製四韻詩。傳曰: “三年後行宴, 今日乃其初也。日沒爲限, 其極醉飽。” 又傳曰: “大抵音樂, 但欲和暢血氣, 非予所樂也。

	<p>한껏 취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대저 음악은 다만 혈기(血氣)를 화창하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까운 친척이므로 한껏 즐기게 하는 것이다. 종친(宗親)들은 내가 일어나 춤추도록 청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이미 종친을 가인(家人)의 예로 대접하셨으니, 일어나 춤추신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다.</p>	<p>但以親親之故，使之極歡。宗親等請予起舞何如？”領議政尹弼商啓曰：“既待宗親以家人之禮，起舞何妨？”</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21일(경오) 1번째기사</p>	<p>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옥산군(玉山君) 이제(李濟)·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 번에 인정전(仁政殿) 회례연(會禮宴) 때에 주상(主上)께서 잠깐 서 계셨기 때문에 신 등이 어제 후원에서 활쏘기를 구경하실 때 잠깐 서 계시기를 계청(啓請)하였었습니다. 듣건대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 이극증(李克增)이 깜짝 놀라서 장차 논핵하고자 한다고 하니, 신 등에게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어제의 즐겁음 친족을 가까이하고자 함이다. 친족을 가까이하는 도리는 엄하게 할 수만은 없다. 군신(君臣)의 예를 어찌 가까운 친족에게 쓰겠는가? 광천(廣川)16363)의 이 말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만일 한결같이 엄하게만 하여 정색하고, 서로 대접하면 화기(和氣)가 어디에 있겠는가? 일어나 춤춘 것은 음악 소리를 즐긴 것이 아니라 다만 친족의 정을 보인 것이다. 광천의 말이 실로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오늘 대죄(待罪)하면 다음에는 엄격하게 대하고자 하는가?” 하였다. 이정(李婷) 등이 또 아뢰기를,</p>	<p>○庚午/月山大君婷、德源君曙、玉山君濟、河城府院君鄭顯祖、班城尉姜子順來啓曰：“往者仁政殿會禮宴時，上暫立，故臣等於昨日後苑觀射時，啓請暫立。聞宗簿寺提調李克增驚駭，將欲論覈，臣等實有罪。”御書曰： 昨日之歡，親親也，親親之道，不可以嚴。君臣之禮，何用乎親親之間？廣川此言，予未知也。若一於嚴而正色相待，則何有於和哉？所以起舞者，非樂音聲也，但示親親之情耳。廣川之言，實有窒礙。今日待罪，則他日欲以嚴待之乎？ 婷等又啓曰：“聞臣等進宴，以來月初</p>

	<p>“뜬건대 신 등이 진연(進宴)하는 것을 다음달 초5일로 정하였다고 하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기후가 매우 더워지니 만일 5일까지 이르면 점점 큰 더위에 이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진연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러면 이달 그믐날 진연하는 것이 좋겠다. 그 때에는 대소 종친이 빠짐 없이 참석하게 하라. 다만 일기가 매우 덥고 인정전이 비좁으니,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베풀고자 한다. 각각 찬안(饌案)을 받아서 예를 이룬 뒤에는 곧 철거하게 하고, 북쪽에다 과녁을 베풀고 활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전일에도 이 곳에서 진연한 때가 있었다.”</p> <p>하였는데, 모두 아뢰기를,</p> <p>“주상의 분부가 윤당(允當)합니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친족을 가까이하는 도리는 참으로 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어찌 반드시 일어나 춤을 추어야만 가까이함이 되겠는가? 종친들은 임금이 일어나 춤추기를 요구하였으니, 이는 신하가 임금을 공경하는 예가 아니다. 이극중(李克增)의 요청이 비록 행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족히 종친의 불경(不敬)한 마음을 꺾었으므로, 당시의 의논이 장하게 여겼다.” 하였다.</p>	<p>五日爲定。 臣等意以謂時氣甚熱， 若至五日， 漸至隆熱， 請於此間進宴。”</p> <p>傳曰：“然則今月晦日進宴可也。 其時大小宗親， 無遺入參。 但日候酷熱， 而仁政殿狹隘， 欲於慶會樓下設之。 各受饌案， 成禮之後， 卽令撤去， 北向張侯觀射， 何如？ 前日亦有此處進宴之時。” 僉啓曰：“上教允當。”</p> <p>【史臣曰：“親親之道， 信不可嚴也。 然何必起舞而後爲親親也？ 宗親等要上起舞， 固非臣子敬上之禮。 克增之請， 雖不得行， 然足以折宗親不敬之心， 時論多之。”】</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22일(신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갔는데,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진연(進宴)하였다.</p>	<p>○辛未/上御仁政殿。 議政府、六曹進宴。</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24일(계유) 2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어세겸(魚世謙)이 와서 아뢰기를,</p> <p>“근자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도내 광주(廣州) 등지에 화곡(禾穀)이 모두 마르는데, 만일 며칠 동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지극히 염려됩니다. 여러 고을 가운데 가뭄이 더욱 심한 곳으로 하여금 기우(祈雨)하게 하는 것이 어떻</p>	<p>○京畿觀察使魚世謙來啓曰：“邇來久不雨， 道內廣州等處， 禾穀焦枯。 若數日不雨， 至可慮也。 令諸邑旱乾尤甚處， 祈雨何如？” 傳曰：“旱徵如此，</p>

	<p>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뭄의 징조가 이와 같으니, 기우하는 것을 늦출 수 없다.” 하였다.</p>	<p>祈雨不可緩也。”</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27 일(병자) 2번째기사</p>	<p>명하여 종친(宗親)·의빈(儀賓)의 진연(進宴)을 정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가뭄 때문이었다.</p>	<p>○命停宗親、儀賓進宴，以旱也。</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29 일(무인) 4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동되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반응으로 나타나, 좋은 징조와 나쁜 징조가 각각 종류대로 이르는 것이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제때에 오지 않고 불별이 내려쬐여 곡식을 상하게 한다. 내가 염려하건대, 안팎의 관리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혹 억울하게 매를 때려서 인명(人命)을 상하게 하거나 혹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이를 체류(滯留)시켜서 화기(和氣)를 상하고 재앙을 부른 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 바라건대 모든 관리는 각각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여 옥송(獄訟)이 유체됨이 없고 원통하고 억울함이 다 풀리게 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대응하고 나의 수성(修省)하는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p>	<p>○傳旨議政府曰：“人事感於下則天變應于上，休徵咎徵，各以類至。今當農月，雨澤愆期，炎炎赫赫，傷我稼穡。予慮中外官吏不體予意，或枉加捶楚，以傷人命，或慢於聽斷，以致留滯。傷和召災，未必不由於此。惟庶官各供乃職，使獄訟無滯，冤枉畢伸，以答天譴，以副予修省之意。”</p>
<p>성종 179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5월 29 일(무인)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가뭄 기운이 너무 심하니, 날을 가릴 필요 없이 비를 빌고 전례에 의하여 저자를 읍기며 북을 치지 말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라.” 하였다.</p>	<p>○傳于禮曹曰：“旱氣深重，不卜日祈雨。依前例，徙市，勿擊鼓，閉南門，開北門。”</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일본국(日本國) 살마주(薩摩州) 도진(島津) 등원지구(藤原持久)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壬午/日本國薩摩州島津藤原持久遣人來獻土宜。</p>

<p>(成化) 21년 6월 3일 (임오) 1번째기사</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3일 (임오) 2번째기사</p>	<p>명하여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전번 달에 비가 오지 않았고 이번 달에도 비가 오지 않으니, 하늘의 재앙이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 이는 필연코 실정(失政)이 있는 소치일 것이다. 국가에서 항상 민폐(民弊)를 다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어찌 폐해가 없겠는가? 전년에는 비록 약간 곡식이 잘 익었다고는 하지만, 민간에서 예전 빛을 다 갚느라고 축적한 것이 다해 버렸으며 국가의 축적도 역시 넉넉하지 못하다. 만약 금년에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기아(飢餓)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구제하겠는가? 변고(變故)란 반드시 그 연유가 있는 것이니, 경(卿) 등은 만일 들은 바가 있으면 각기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신(臣) 등이 밤낮으로 생각해보아도 재변(災變)의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폐막(弊瘼)은 다 제거하였고, 또 근래에 크게 은전(恩典)을 베풀어 옥(獄)에 체류되어 있는 죄수가 없으니, 신 등은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선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바를 추려서 기록하여 아뢰입니다. 1. 도(徒)·유(流)·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한 사람들은 형조의 제도 감옥 계본(諸道監獄啓本)을 상고하여 급속히 분간(分揀)하여서 놓아 보내게 하소서. 1. 서울에서 송사(訟事)를 맡고 있는 모든 관아에 계류되어 있는 미결(未決) 건수를 점검하여 보고하게 하소서. 1. 중외(中外)에 금고(禁錮)16373)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경중(輕重)을 분간하여 허통(許通)16374) 하게 하소서. 1. 장리(贓吏)에 대해서 그 장수 녹안(贓數錄案)을 헤아리지 않고 일체 금고(禁錮)함은 억울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분간해서 시행하도록 하소서.</p>	<p>○命召領議政尹弼商等。傳曰：“前月不雨，今又不雨，天災豈無所自歟？是必有闕政之所致。國家常欲悉祛民弊，然豈無其弊？前年雖曰稍稔，然民間盡償舊債，所儲罄盡，國家蓄積，亦甚不裕。若今年早荒，民至飢餓，何以賑救乎？變必有由，卿等如有所聞，其各言之。”弼商等啓曰：“臣等晝思夜度，未知災變之故。國家盡除弊瘼，且近日大施恩宥，獄無留滯，臣等無可言者。姑以耳目之所觀記抄啓。一。徒、流、付處、安置、充軍人，考刑曹諸道監獄啓本，急速分揀放送。一。京中聽訟諸司稽留未決道數，檢舉。一。中外禁錮人，輕重分揀許通。一。贓吏不計贓數錄案，一切禁錮。不無冤抑，分揀施行。一。中外禁酒。”傳曰：“可。”弼商等啓曰：“臣等備員三公，不能燮理陰陽，今茲旱災，實由臣等輔相無狀之致。請遞臣等職。”傳曰：“天災專是予否德之致，其勿辭焉。”</p>

	<p>1. 중외(中外)에 술[酒]을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삼공(三公)의 자리만 갖추고 음양(陰陽)을 고르게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이번 한재(旱災)는 실로 신 등이 잘 보필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청컨대 신 등의 직임을 갈아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천재(天災)는 오로지 내가 부덕(否德)한 소치이니, 사임하지 말라.” 하였다.</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3일 (임오) 5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금년에 백성을 윤택하게 되면 여러 고을에서 전송(傳送)하게 되는 폐단이 적지 않고, 또 백성을 편안하게 거주하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니, 풍년을 기다려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를 정승(政丞)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p>	<p>○傳曰: “今年徙民, 則諸邑傳送之弊不費, 且民人安接爲難。 待豐年入送何如? 以此議于政丞。” 僉曰: “上教允當。”</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3일 (임오) 7번째기사</p>	<p>어서(御書)로 승정원(承政院)에 보이기를,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았으나, 마음이 바르지 못한 까닭으로 다스리는 도(道)에 어둡고, 행실을 닦지 않은 까닭으로 일을 행함에 마땅함을 잃어서, 하늘의 노여움과 꾸짖음을 초래하여 한발(旱魃)이 해를 끼친다.” 하였는데, 이 아래는 사책(史冊)에 옳고 전하지 않는다.</p>	<p>○御書示承政院曰: “予以否德, 叨承洪緒, 心不正也, 故昧於爲治之道, 身未修也, 故失於行事之宜。 以致皇天譴怒, 旱魃爲虐, 此下史失之。”</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3일</p>	<p>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혼인(婚姻)·제사(祭祀)·헌수(獻壽)·노병(老病)·복약(服藥)으로 인해 병술[瓶酒]을 가지는 자 이외에는 중외(中外)에 술을 금하게 하라.”</p>	<p>○傳旨司憲府曰: “婚姻、祭祀、獻壽、老病服藥持瓶酒者外, 中外禁酒。”</p>

(임오) 8번째기사	<p>하였다.</p> <p>전교(傳敎)하기를, “이제 가뭄 기운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른 것을 보니, 백성의 생계가 걱정스럽다. 구황(救荒)의 대책을 모든 도(道)에 하서(下書)하고, 또 호조(戶曹)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曰: “今觀旱氣至於此極, 民生可慮。 救荒之策, 下書諸道, 又令戶曹商議以啓。”</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7일 (병술)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흥천사(興天寺)에서의 기우(祈雨)가 비록 정도(正道)는 아니나,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행하여 왔고, 또 내가 즉위(卽位)한 뒤에도 했었다. 이제 무녀(巫女)를 시켜 비를 빈다면, 비록 승도(僧徒)를 시켜 기도(祈禱)한다 하더라도 아마 무방할 것이다. 모두들의 생각에는 어떠한가?”</p> <p>하니, 승지(承旨)가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어느 신(神)이고 제사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상께서 한재를 우려하시어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고, 더욱이 무녀로 비를 비는 것은 주(周)나라 이래로 행하여 왔으며, 오늘날에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진실로 무방합니다. 그러나 승도(僧徒)로 하여금 비를 빌게 하는 것은 비록 조종조에서 행한 일이라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청컨대 거행하지 마소서.”</p> <p>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불도(佛道)를 숭상해 믿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은택을 기도하는 것이니, 무방하지 않겠는가?”</p> <p>하여,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불도를 숭상하지 않음을 신 등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정도(正道)가 아니기 때문에 신 등이 감히 그 거행을 청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p> <p>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 “興天寺祈雨, 雖非正道, 然自祖宗朝行之, 且予卽位後亦爲之。 今以巫女祈雨, 則雖使僧徒祈禱, 疑爲無妨, 於僉意何如?” 承旨啓曰: “古云靡神不舉。 聖上憂旱, 靡所不至, 況以巫祈雨, 自周以來行之, 非今日始, 固無妨也。 以僧祈雨, 雖祖宗所行之事, 然非正道, 請勿舉行。” 傳曰: “予非崇信佛道, 爲民祈澤耳, 無乃不妨乎?” 更啓曰: “上之不崇佛道, 臣等非不知也。 但此非正道, 故臣等不敢請行。 然爲民之事, 無所不爲, 亦無妨也。”</p>
<p>성종 180권, 16년</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禮曹啓: “今以旱氣, 停擊鼓。 文昭</p>

<p>(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7일 (병술) 4번째기사</p>	<p>“이제 가뭄 기운으로 인하여 북[鼓]을 치는 것을 정지하고 있는데, 문소전(文昭殿) 친행제(親幸祭)16388) 에 마땅히 음악(音樂)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을 올릴 것인지의 여부를 취품(取稟)합니다.”</p> <p>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p> <p>“제사에 음악(音樂)을 쓰지 않아도 옳지 못하며 하늘의 경계에 근신할 때이므로 또한 써도 옳지 못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제사를 정지하여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p> <p>“씻소리[金聲]은 음(陰)에 속하고 북소리[鼓聲]는 양(陽)에 속하는데, 가뭄[亢陽]은 재앙이 되기 때문에 씻소리는 써도 북소리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동중서(董仲舒)16389) 의 음(陰)을 막고 양(陽)을 놓아 주는 방술이며, 본래 성인(聖人)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제사의 음악(音樂)에 북이 없으면, 오성(五聲)이 갖추어지지 않아神明(神明)과 접할 수 없으므로, 술수(術數)의 작은 일로 인하여 선조(先祖)를 받드는 대의(大義)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p>	<p>殿親幸祭，當用樂、奏鼓與否取稟。”</p> <p>命議于領敦寧以上。尹弼商議：“祭不用樂不可，謹天戒之時亦不可，臣意以爲姑停祭。”盧思愼議：“金聲屬陰，鼓聲屬陽，亢陽爲災。故用金聲而不用鼓聲，此董仲舒閉陰縱陽之術，而初非聖人之教。若祭樂無鼓，則五聲不備，無以交神明，不可以術數小事而廢奉先之大義也。”從思愼議。</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8일 (정해) 1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p> <p>“이른 곡식은 이제 이미 절망 상태이고 콩도 심지 못하여 백성들의 생업(生業)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만약 보름 전에만 비가 내려도 메밀[蕎麥]은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기(京畿)는 메밀의 종자가 부족하니, 청컨대 충청도(忠淸道) 부근의 여러 고을에서 옮겨 나누어 주게 하고, 또 다른 도(道) 가운데 메밀의 종자가 부족한 곳도 부근 도에서 옮겨 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신 등은 듣건대, 무청(蕪菁)16393) 이 흉년을 구제하는 데 가장 긴요하다 하니, 개성부(開城府) 등지에서 그 종자를 많이 수매(收買)하여 민간에 흠어주고, 또 민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서로 교환하게 하여 메밀과 섞어서</p>	<p>○丁亥/戶曹判書李德良等來啓曰：“早穀今已望絕，豆亦未種，民之生業可慮。然若於望前下雨，則蕎麥可以得食。但京畿蕎麥之種不足，請於忠淸道附近諸邑，推移分給。且於他道蕎麥種不足處，亦以附近之道推移何如? 臣等聞蕪菁於救荒最緊。開城府等處多數收買其種，散給民間，又令民間自相換易，與蕎麥交種，則二物皆盛，救</p>

	<p>심으면 두 가지가 다 무성하여 구황(救荒)하기에 적당할 것입니다. 또 여러 도(道)의 진휼사(賑恤使)를 모름지기 미리 정하여 구황할 물건을 마음을 써서 조치하게 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옳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진휼사(賑恤使)를 의망(擬望)하여 아뢰도록 하라.”</p>	<p>荒爲便。 且諸道賑恤使， 須當預定， 救荒之物， 用意措置， 勿致疏漏。” 傳曰：“皆可。 令該曹擬望賑恤使以啓。”</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8일 (정해) 2번째기사</p>	<p>하남군(河南君) 정승조(鄭崇祖)를 경기 진휼사(京畿賑恤使)로, 우찬성(右贊成) 이파(李坡)를 충청도 진휼사(忠淸道賑恤使)로, 화천군(花川君) 권감(權臧)을 전라도 진휼사(全羅道賑恤使)로, 청성군(淸城君) 한치형(韓致亨)을 경상도 진휼사(慶尙道賑恤使)로, 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을 황해도 진휼사(黃海道賑恤使)로, 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을 강원도 진휼사(江原道賑恤使)로,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을 평안도 진휼사(平安道賑恤使)로, 좌윤(左尹) 이봉(李封)을 영안도 진휼사(永安道賑恤使)로 삼았다.</p>	<p>○以河南君鄭崇祖爲京畿賑恤使， 右贊成李坡忠淸道賑恤使， 花川君權臧全羅道賑恤使， 淸城君韓致亨慶尙道賑恤使， 廣川君李克增黃海道賑恤使， 淸平君韓繼純江原道賑恤使， 廣原君李克墩平安道賑恤使， 左尹李封永安道賑恤使。</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9일 (무자)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가뭄이 한창 심한데 이제 날씨를 보니 다시는 가뭄이 없어, 백성들이 바야흐로 구황(救荒)할 물건을 갖추느라고 다른 일에 겨를이 없을 것이다. 여러 도(道)의 긴요한 공물(貢物) 이외에는 적당히 견감(蠲減)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p>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戊子/傳于承政院曰：“旱氣方甚， 今觀日候， 無復有望。 民方辦集救荒之物， 不暇他事矣。 諸道緊要貢物外， 量宜蠲減何如?” 承政院啓曰：“上教允當。” 傳曰：“令該司商議以啓。”</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9일</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각청에 두번째로 기우(祈雨)하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禮曹啓請於各處二次祈雨。 傳曰：“若至於窮極， 何所不爲? 然姑停宗廟、社稷祈雨， 其餘依所啓舉行。”</p>

<p>(무자) 2번째기사</p>	<p>“만일 극도로 궁핍한 데에 이르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그러나 아직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의 기우(祈雨)는 정지하고, 그 나머지는 아뢴 바에 의해서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9일 (무자) 3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한재(旱災)가 너무 심하여 이제 이미 진휼사(賑恤使)를 파견하기로 의논하였다. 그러나 구황(救荒)에 관한 모든 일을 경(卿)들이 조처할 수 있다면 반드시 파견할 필요가 없으니, 농사의 흉작 실태와 진휼사를 파견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치계(馳啓)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下書諸道觀察使曰：“旱荒太甚，今已議遣賑恤使。然救荒諸事，卿可措辦，則不須遣之。其審農事凶歉、遣使便否，斟酌馳啓。”</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9일 (무자) 4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도내(道內) 각 고을 창고의 양곡을 아마도 수령(守令)들이 그 수량을 헛되게 과장한 듯하니, 그 실제의 수량을 살피고, 또 사채(私債)도 수사(搜查)하여 그 수량을 알아내어서 밀봉하고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下書諸道觀察使曰：“道內諸邑倉穀，恐守令虛張其數，其審實數，又搜私債知數，封閉以啓。”</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10일(기축) 1번째기사</p>	<p>임금이 친히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의 별제(別祭)를 행하였다.</p>	<p>○己丑/上親行文昭殿、延恩殿別祭。</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10일(기축) 3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처량(安處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대간(臺諫)이 장리(贓吏)의 아들과 신정(申澍)의 아들 신영철(申永澈)을 허통(許通)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과 조득림(趙得琳)의 아들 조성(趙成)은 과거에 나아갈 수 없음을 누차 아뢰었으나, 다 운허를 얻지 못하였다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장리의 아들을 허통하는 것은 명교(名敎)에 관계되고, 조성을 시험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명분(名分)과 관계되는 일로서, 모두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재(旱災)로 인하여 8</p>	<p>○弘文館副提學安處良等來啓曰：“臣等聞臺諫累啓贓吏子及申澍子永澈不宜許通、趙得琳子成不可赴試，皆未蒙允。臣等意贓吏子許通，關於名敎；趙成赴試，關於名分，皆不可不從其言也。且因旱災，遣八道賑恤使，又遣從事官，大道則五人，中道則四人，小</p>

	<p>도(八道)에 진휼사(賑恤使)를 보내고 또 종사관(從事官)을 보내되, 큰 도에는 5인, 중간 도에는 4인, 작은 도에는 3인이라 하니, 그 구황(救荒)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을 출입함에 따라 도리어 소요(騷擾)하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진휼사를 정지하시고 강명(剛明)한 조정의 관원을 택하여 어사(御史)의 직함을 주어서 여러 도에 나누어 파견하여 그 구황하는 근만(勤慢)을 잘 살펴보게 한다면,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나는 생각하건대, 한재(旱災)는 혹시 역올함을 속에 품어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한 사람이 있지 않나 염려하여, 대신(大臣)과 의논하여서 죄가 가벼운 자는 그 자손만을 허통(許通)하게 한 것이다. 신정(申靜)의 죄는 비록 크나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으며, 더욱이 훈신(勳臣)의 후예(後裔)를 영구히 금고(禁錮)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대간(臺諫)이 처음에는 조득림의 아들과 유자광(柳子光)의 아들을 다 허통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유독 조득림의 아들만 말하니, 조득림이 유자광과 다를 것이 있느냐? 진휼사(賑恤使)에 관하여는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다시 의논할 것이다.”</p> <p>하였다. 안처량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국가에서 비록 명예(名譽)와 절조(節操)에 힘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선비로서 염치(廉恥) 있는 자가 대개 적은데, 이제 만일 장리의 자손을 허통하게 되면, 비단 탐(貪)하는 풍습이 날로 치성(熾盛)할 뿐만 아니라 《대전(大典)》까지 허물어지고 말것입니다. 《대전》의 법을 허물어뜨리고 탐하는 풍습을 열어 놓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유자광의 아들은 조득림의 아들과는 본래 같지 않습니다. 유자광은 향리(鄕吏)의 딸에게 장가 들어 아들을 둔 것인데, 향리의 딸은 사족(士族)도 혼인하고 있으므로 구애될 것이 없으나, 조득림의 아내는 내수사(內需司)의 계집종[婢]이었으니, 천인(賤人)의 자식을 어찌 시험</p>	<p>道則三人，其救荒之慮深矣。然出入諸邑，反有騷擾之弊。請停賑恤使，擇剛明朝士，結御史銜，分遣諸道，審察救荒勤慢，則諸邑守令皆畏懼而盡心矣。”傳曰：“予念旱災，慮或有含冤傷和之人，與大臣議之，罪之輕者許通其子孫耳。申靜之罪雖大，然非關係宗社，況勳臣之裔，不可永錮。且臺諫初則言得琳子、柳子光子皆不可許通，今則獨言得琳子，得琳與子光有異乎？賑恤使，當與大臣更議之。”處良等更啓曰：“國家雖礪名節，然士之廉恥者蓋寡。今若許通賊吏子孫，非特貪風日熾，《大典》毀矣。毀《大典》之法、開貪黷之風，甚不可。子光之子與得琳之子，固不同。子光娶鄉吏之女而有子，鄉吏之女，士族猶且與婚，無有防礙。得琳之妻則內需司婢也。賤口之子，豈可許令赴試乎？”傳曰：“賊吏子及申靜子許通事，已與大臣議定矣。得琳以賤口娶賤口，有何妨乎？得琳爲賤時，雖欲娶良家子得乎？得琳既爲功臣，位至二品，妻亦封爵，則其子獨爲賤乎？”處良等又啓曰：“禮義廉恥，國之四維。四維不張，將</p>
--	---	---

	<p>보도록 허용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장리의 아들과 신정(申靜)의 아들을 허통(許通)하게 하는 일은 이미 대신(大臣)과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조득림(趙得琳)은 천인(賤人)으로서 천인에게 장가든 것이니,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조득림이 천인으로 있을 때에는 비록 양가(良家)의 자식에게 장가들려고 한들 되었겠는가? 조득림이 이미 공신(功臣)이 되어 그 지위가 2품(品)에 이르렀고 아내도 봉작(封爵)을 받았는데, 그 아들만 유독 천하단 말인가?” 하였다. 안처량 등이 또 아뢰기를, “예의 엄치(禮義廉恥)는 나라의 네 가지 버리[維]16396)입니다. 이 네 개의 버리를 벌여 놓지 않으면 장차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만약에 장리의 자손들이 다 허통(許通)함을 얻고 구애됨이 없다면, 나라의 이 네 개의 버리는 이에 따라 벌여 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득림이 비록 공신(功臣)이기는 하나 명분(名分)은 문란하게 할 수 없는데, 어찌 천처(賤妻)가 낳은 아들을 과거에 나아가도록 허용한단 말씀입니까? 또 이름을 기록할 때 조성(趙成)의 사조 단자(四祖單子)16397) 를 무어라고 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장리의 일은 이미 이미 대신(大臣)과 의논하여 정하였다. 조성(趙成)이 사조 단자(四祖單子)를 쓸 예(例)를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何以〔爲〕國？ 若臧吏子孫皆得許通，無有防礙，則國之四維，從此不張矣。得琳雖功臣，名分不可紊亂，豈以賤妻之子許赴科舉乎？ 且錄名時，成之四祖單子，何以書之？” 傳曰：“臧吏事，已與大臣議定矣。 趙成書四祖單子例，其間以啓。”</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0일(기축) 4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교하기를, “한재가 이 지경에 이르고 다시 바라볼 여지가 없어 구황(救荒)에 관한 모든 일을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도(道)의 진휼사(賑恤使)를 이제 이미 택정(擇定)한 것이다. 그러나 꼭 지금 보낼 필요는 없으니, 각기 한도(道)의 일을 관장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조치하게 하며, 때때로 종사관(從事</p>	<p>○傳于議政府曰：“旱災至此，無復有可望之理； 救荒諸事，不可不預爲之備。 故諸道賑恤使，今已差定，然不須此時發遣也。 各掌一道之事，使各盡心措置， 時遣從事， 官嚴加審察而</p>

	<p>官)을 파견하여 엄한 심찰(審察)만을 더하게 하도록 하며, 이제라도 비가 내려 실농(失農)에 이르지 않는다면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계획하였는데, 홍문관(弘文館)에서는 진휼사를 보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니, 어떠하겠는가?”</p> <p>하니, 의정부에서 모두 아뢰기를, “너무 일찍 진휼사를 파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신 등도 아뢰려고 하였었는데, 이제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매우 마땅합니다.”</p> <p>하였다.</p>	<p>已。 今若得雨不至失農， 則不必遣也。 予計已熟， 而弘文館以爲賑恤使不可遣也， 何如?” 政府僉啓曰：“早遣賑恤使未便事， 臣等亦欲啓之。 今聞上教， 甚當。”</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1일(경인) 2번째기사</p>	<p>영안도 진휼사(永安道賑恤使)가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 본도(本道)는 다른 도의 예(例)에 비할 것이 아니어서 서리가 내리는 것이 너무 이르니, 구황에 필요한 다른 잡물(雜物)은 준비할 수 있지만, 모든 채소는 반드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채취하여 저장해야 한다는 일을, 공문을 보내서 독촉하여서 때맞추어 저장하게 한 후에 종사관(從事官) 1인을 보내어 순회하며 고찰(考察)하도록 하라.</p> <p>1. 관찰사(觀察使) 및 당상관 수령(堂上官守令)이 죄가 있으면 추국(推鞠)하여 계문(啓聞)하여서 죄를 다스리고, 도사(都事) 및 수령(守令)은 공신(功臣)과 의친(議親)16401) 을 막론하고 직접 결단하도록 하라.</p> <p>1. 본도는 서울과 떨어진 길이 멀어서 전지(傳旨)를 받자면 일이 늦어지니, 전례(前例)에 의하여 창고를 열어 양곡을 분배한 뒤에 계문하도록 하라.</p> <p>1. 수령 및 진휼관(賑恤官)으로 공효(功效)가 특별히 남다른 자가 있으면 그 때에 임하여 계문하여서 논상(論賞)하게 하라.</p> <p>1. 진휼관(賑恤官) 해리(該吏)16402) ·권농(勸農)·이정(里正) 등이 진제(賑濟)할 때 빈부(貧富)를 구분하지 않고 제마음대로 마구 준 자는 무겁게 논하고,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16403) 하도록 하라.”</p>	<p>○永安道賑恤使齋去事目：</p> <p>一。 本道非他道之例， 霜降太早， 他餘救荒雜物， 則可備一應菜蔬， 須於霜降前採取儲備事， 移文催促， 趁時儲備後， 遣從事官一員， 巡審考察。 一。 觀察使及堂上官守令有罪， 推鞠啓聞治罪。 都事及守令， 勿論功臣、 議親， 直斷。 一。 本道距京道路遙隔， 取旨事緩。 依前例， 發倉後啓聞。 一。 守令及賑恤官有成效特異者， 臨時啓聞論賞。 一。 賑恤官、 該吏、 勸農、 里正等， 賑濟時不分貧富， 任情濫給者， 重論； 其中尤甚者， 全家徙邊。</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여러 도(道)의 병마 수군 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한재(旱災)를 만나 이미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구황(救</p>	<p>○下書諸道兵馬水軍節度使曰：</p>

<p>(成化) 21년) 6월 11일(경인) 3번째기사</p>	<p>荒한 물품을 많이 갖추도록 가르치게 하였다. 또 유방 군사(留防軍士)를 써서 상실(橡實)16404) 을 많이 줍게 하고, 해채(海菜) 등의 물건을 캐어서 진속(鎭屬)·아리(衙吏)·군사(軍士)를 구제하게 하여야 한다는 일을 말하는 자가 있으니, 경(卿)은 이 뜻을 알고 여러 가지로 조치할 것이며, 방어(防禦)에 대한 제반 사항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今丁旱荒，已令觀察使，教民多備救荒之物矣。且用留防軍士，多拾橡實，採海菜等物賑救。鎭屬衙吏軍士事言者有之，卿知此意，多般措置。防禦諸事，亦勿疎虞。</p>
<p>성종 180권,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2일(신묘)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우(祈雨)하는 일을 지극히 하지 않은 바가 없어 사람의 할 일은 거의 다 하였는데도 끝내 비가 내리지 않으니, 금년의 일은 다시 가망이 없다. 정성과 공경이 하늘에 이르지 못함인가?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아도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다. 전년의 농사가 비록 약간 잘 되었다 하나, 연속하여 흉년이 들어서 민간에는 남은 곡식이 없고 국가의 창고도 거의 고갈 상태인데, 이제 또 한재가 들었으니, 마땅히 창고를 다 털어서라도 구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또 흉년이 든다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니,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금년의 한재가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고 있어 조치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는 알하기를, “만약 오늘 내일 사이에 비가 온다면 곡식이 혹 다시 소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세좌(李世佐)·대사간(大司諫) 한언(韓堰)이 또 아뢰기를, “장리(贓吏) 및 신정(申靜)의 아들을 허통(許通)함은 마땅하지 않으며, 조득림(趙得琳)의 아들을 과거(科擧)에 나아가게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다 말하기를, “성상께서 한재를 만나 진념(軫念)하심이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어 혹시라도</p>	<p>○辛卯/受常參，視事。上曰：“祈雨之事，靡所不至，人事庶可盡矣。而終不下雨，今年之事，無復可望，誠敬不能格天歟？反覆思之，莫知其由。前年農事雖曰稍稔，連歲凶荒，民無餘粟，國廩幾竭。今又旱荒，固當倒廩以賑之，然明年又歉，則將若之何？”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啓曰：“今年旱災至於此極，罔知攸措。”右議政李克培曰：“若今日下雨，則禾穀或有復蘇之理，不然，無復可望。”大司憲李世佐、大司諫韓堰又啓贓吏及申靜之子不宜許通、趙得琳之子不宜赴試。上顧問左右，僉曰：“上遇災軫慮，無所不至，慮有冤枉未伸者，下議臣等。臣等分揀輕重，使其子孫許通耳。”上曰：“趙得琳與柳子光，有以異乎？”僉曰：“子光本以宰相妾子，娶鄉吏之女爲妻，鄉吏之子，無所不通。</p>

	<p>억울하고 원통함을 펴지 못한 자가 있을까 신 등에게 의논을 하도록 하교(下敎)하셨으므로, 신 등이 그 경중(輕重)을 분간(分揀)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허통(許通)하도록 한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득림(趙得琳)이 유자광(柳子光)과 다른 점이 있는가?”</p> <p>하니, 다 말하기를, “유자광은 본래 재상(宰相)의 첩(妾)이 낳은 아들로 향리(鄉吏)의 딸로 아내로 삼았으니 향리의 자식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나, 조득림은 본래 천인으로 또 천인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유자광과는 서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p> <p>하고, 윤필상이 말하기를, “천인을 과거에 나아가게 하는 단서를 열어 주어서는 안됩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공론(公論)이 있는 바를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조득림의 아들은 과거에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得琳本以賤口，又娶賤口之女，其與子光，大相間矣。” 弼商曰：“賤口赴試，不可開端。” 上曰：“公論所在，予何不從？得琳之子，勿許赴。”</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3일(임진) 4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어세겸(魚世謙)이 와서 구황 절목(救荒節目)을 아뢰기를,</p> <p>“1. 여러 고을의 교생(校生)은 스스로 독서(讀書)하기를 원하는 자 이외에는 모두 방학(放學)하도록 하소서.</p> <p>2. 예장 군인(禮葬軍人)16407) 에, 연호(煙戶)16408) 는 쓰지 말고 다만 당령 수군(堂領水軍)만을 쓰게 하소서.</p> <p>3. 구황에는 소금[鹽]과 장(醬)이 가장 긴요한 것인데, 자염 수군(煮鹽水軍)16409) 이 다만 48명뿐이라서 매우 부족합니다. 청컨대 신축년(16410) 의 예(例)에 의하여 1백 명을 준급(准給)해 주소서.</p> <p>4. 말장(末醬)은 미리 인구를 헤아려 메주를 쑤게 하여서 진휼(賑恤)하는데</p>	<p>○京畿(視) [觀] 察使魚世謙來啓救荒節目。</p> <p>其一曰：諸邑校生自願讀書者外，竝放學。 其二曰：禮葬軍人，勿用煙戶，只役當領水軍。 其三曰：救荒，鹽醬爲最。 煮鹽水軍，只四十八名而已，甚不足。 請依辛丑年例，準給百名。 其四曰：末醬預先計口燻造，分給賑恤。 其五曰：京畿諸浦水軍，姑分二</p>

	<p>나누어 주도록 하소서.</p> <p>5. 경기(京畿) 여러 포(浦)의 수군(水軍)은 우선 세 번(番)으로 나누어서 구황의 물자를 갖추도록 하소서.</p> <p>6. 서빙고(西氷庫)의 중가(重家)16411) 에 소요되는 연목(椽木)16412) 은 가을을 기다려서 준비하여 납입하도록 하소서.</p> <p>7. 내수사(內需司)에서 장리(長利)를 놓고 있는 교맥(蕎麥)16413) 역시 민간에 흠어 주어 종자를 갖추도록 하소서.</p> <p>8. 포도장(捕盜將)이 붙잡아서 회부한 강도(強盜)는 비록 나타난 장물(贓物)이 없더라도 여러 달을 옥(獄)에 갇혀 있는데, 승전(承傳)하는 일 때문에 관리가 마음대로 석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현저한 사실이 없는 자는 속히 결단해서 방면하여 구황 물자를 갖추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흉년에도 도적이 자행(恣行)하는 법인데, 만약 가볍게 놓아 보내어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生業)에 안정을 갖지 못하게 하면 그 폐단이 도리어 많을 것이니, 아마도 이는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아뢴 바에 의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番, 使備救荒之物。 其六曰: 西氷庫重家所入椽木, 待秋備納。 其七曰: 內需司長利蕎麥, 亦令散給民間備種。 其八曰: 捕盜將捉付強盜, 雖無現贓, 累朔滯獄, 以其承傳之事, 官吏難以擅放也。 其無顯著事狀者速決遣, 使備救荒物。</p> <p>傳曰: “凶年盜賊恣行, 若輕易放送, 使民不能安業, 則其弊反多, 恐未可施行。 其餘依所啓。”</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3일(임진)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연례(年例)로 서울에 와서 조회하는 야인(野人)은 종전 흉년의 예에 의하여 수효를 감하여서 올려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旨禮曹曰: “年例朝京野人, 依前凶年例, 減數上送。”</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5일(갑오)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서해로(西海路) 축전주(筑前州) 냉천진위(冷泉津尉) 전원(田原) 등원 정성(藤原貞成)과 일향(日向)·대우(大隅)·살마(薩摩) 삼주 태수(三州太守) 도진(島津) 육오수(陸奧守) 입구(立久)와 살마(薩摩) 대우(大隅) 일향(日向) 태수(太守) 무구(武久)와 무구(武久) 막하(幕下)의 집사(執事) 경안(經安)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甲午/日本國西海路筑前州冷泉津尉田原藤原貞成、日向·大隅·薩摩三州太守島津、陸奧守立久、薩摩·大隅·日向太守武久、武久幕下執事經安遣人來獻土宜。</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16 일(을미) 1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인구(人口)를 헤아려 말장(末醬)을 만들어서 구황(救荒)에 대비하게 하자고 계청(啓請)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경기 일원의 황두(黃豆)를 다한다 해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니, 청컨대 인구를 헤아리지 말고 적당히 메주를 썬도록 하소서. 또한 수령(守令)이 교체되면 맞이하고 보내는 데 폐단이 있을 것이니, 비록 이미 개만(箇滿)이 되었더라도, 청컨대 명년을 한도로 하여 교체하지 말도록 하소서. 신 등은 듣건대, 사헌부(司憲府)에서 금란(禁亂)16425) 을 맡은 서리(書吏)와 나장(羅將)이 저자[市]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범람(泛濫)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으나 규찰(糾察)하여 적발하는 자가 없다고 하니, 청컨대 따로 내인(內人)을 보내어 적간(摘奸)하도록 하소서. 또 설을 맞기 전에는 비록 창고의 양곡을 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니, 설을 쇠 뒤에야 양곡을 풀도록 하는 일을 진휼사(賑恤使)에게 하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창고를 여는 일은 진휼사가 또한 마땅히 짐작해서 할 것이니, 따로 전교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에서 특별히 금란(禁亂)하기 위하여 내인(內人)을 보낼 수는 없다.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아무때나 적간하도록 하겠다. 그 나머지는 아뢴 바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乙未/戶曹判書李德良等來啓曰：“京畿觀察使啓請計人口造末醬救荒。然若是，則雖盡京畿黃豆，猶爲不足。請勿計口，量宜燠造。且守令遞代迎送有弊，雖已箇滿，請限明年勿遞。臣等聞司憲府禁亂書吏、羅將，交結入市，多行泛濫事。然無有糾擿者，請別遣內人擿奸。且歲前雖不發倉，猶得生活，至歲後發倉事，下教賑恤使何如?” 傳曰：“發倉，賑恤使亦當斟酌爲之，不必別教也。市裏別禁亂，不可遣內人也，令義禁府無時擿奸。其餘依所啓。”</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18 일(정유) 2번째기사</p>	<p>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성근(鄭誠謹)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臣) 등이 듣건대, 근일에 가뭄 기운이 심하므로 원각사(圓覺寺)에 기우(祈雨)를 명하셨다고 하는데, 어찌 부처의 힘을 빙자하여 비를 얻을 리가 있겠습니까? 불씨(佛氏)가 허망한 것은 성감(聖鑑)으로도 본래 환하게 아시는 바이며, 근일 흥천사(興天寺)의 기우(祈雨)에서 조금도 효험이 없었으니, 그 허망</p>	<p>○弘文館典翰鄭誠謹等來啓曰：“臣等聞近日以旱氣深重，命於圓覺寺祈雨，安有憑藉佛力而可以得雨乎？佛氏誕妄，聖鑑固已洞知。近日興天寺祈雨，無小驗，其爲誕妄明矣。請勿祈禱。”</p>

	<p>함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기도(祈禱)하지 말게 하소서.”</p> <p>하니, 어서(御書)를 내려 이르기를,</p> <p>“원각사(圓覺寺)에서의 기우(祈雨)는 예조(禮曹)에서 예(禮)에 의거하여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 민망한 나머지 그 소청을 윤택한 것이 지 내가 불씨(佛氏)를 좋아하여 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대들의 말을 들어보 니 옳다. 불씨가 만약 신령함이 있다면 흥천사(興天寺)에서 기도하던 날 마땅 히 그 감응이 있어야 했을 것이니, 족히 믿을 수 없음을 알겠다. 한갓 사람만 수고롭게 하고 공양(供養)만 허비하고 말았다.”</p> <p>하였다.</p>	<p>下御書曰：</p> <p>圓覺寺祈雨，禮曹據禮啓請，故悶雨之至，乃允其請，非予好佛而爲也。今聞爾等之言，善矣！佛若有靈，於興天祈禱之日，當有其應矣。其不足信可知，徒勞人力，虛費供羞耳！</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8 일(정유)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p> <p>“금년의 한재가 이에 이르렀으니, 조정 관원의 녹봉(祿俸)을 신축년(16426)의 예(例)에 의하여 오는 추등(秋等)부터 시작해서 감하여 줄이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렇게 하라.”</p> <p>하였다.</p>	<p>○戶曹判書李德良等來啓曰：“今歲旱災至此，朝士祿俸，依辛丑年例，來秋等爲始減省何如？”傳曰：“可。”</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8 일(정유) 5번째기사</p>	<p>전교(傳教)하기를,</p> <p>“농사가 흉년이 드니, 별감(別監)은 세 번(番)으로 나누어 서로 바꾸도록 하 라.”</p> <p>하였다.</p>	<p>○傳曰：“年歉，別監分三番相遞。”</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8 일(정유) 7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p> <p>“이제 정전(政殿)을 피하고 반찬을 감하는 때를 당하여 사전(四殿)에 각 명일(明日)의 물선(物膳)과 병과(餅果) 등의 물품도 아울러 바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于禮曹曰：“今當避殿減膳時，四殿各名日物膳餅果等物，竝勿供進。”</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8 일(정유) 7번째기사</p>	<p>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아뢰기를,</p> <p>“신이 예전에 진휼사(賑恤使)가 되었었는데, 그 해의 실농(失農)은 겨우 2, 3</p>	<p>○戊戌/上黨府院君韓明澮來啓曰：“臣往者爲賑恤使，其年失豐，僅二三道，</p>

<p>(成化) 21년) 6월 19일(무술) 1번째기사</p>	<p>도(道)였기 때문에 양곡을 옮겨 구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팔도(八道)가 다 그러하니, 신은 매우 민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은 듣건대, 왜인(倭人)이 갈근(葛根)16429) 을 먹는다 하기에 시험삼아 갈근을 채취하다가 껍데기를 벗기고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쌀 싸라기와 섞어서 죽(粥)을 만들어 먹었더니 배를 채울 만하였으며, 또 송자(松子)16430) 도 가루를 만들어서 싸라기와 섞어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신이 일찍이 이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 방법을 써서 흉년을 구제함이 좋겠습니다. 또 마을 안에서 유식한 사람의 선택하여 다섯 가구(家口)를 한 통(統)으로 만들어서 그 통 안의 인구(人口)의 다과(多寡)와 식물(食物)의 유무(有無)를 살펴 분배하여서 주게 하면, 때맞추어 구황(救荒)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공로가 있는 자는 논하여 상을 주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갈근(葛根)과 송자(松子)의 일은 내 생각에도 좋다고 여겨지니, 마땅히 즉시 시험하겠다.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갈근 3말[斗]과 송자 2말을 채취하여 들여오게 하라. 다섯 가구를 통(統)으로 만드는 것과 논하여 상주는 일은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논하도록 하라.”</p>	<p>故可以移粟賑救。 今則八道皆然， 臣切痛憫。 臣聞倭人食葛根， 試取葛根， 剝皮爆乾爲屑， 和穀糜作粥食之， 可以充腸。 松子亦爲屑， 和糜食之甚好。 臣曾用之， 今亦用此救荒爲便。 且里中擇有識人， 五家作統， 察統內人口多寡、食物有無賑給， 則可以趁時救荒矣。 其有功勞者， 論賞何如?” 傳曰：“葛根與松子事， 予意亦以爲好。 當卽試驗。 令司僕寺， 葛根三斗、松子二斗採取以入。 五家作統、論賞等事， 議于領敦寧以上。”</p>
<p>성종 180권,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19일(무술)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야인(野人)은 이미 수효를 감하여 올라오게 하였으나, 왜인(倭人)은 아직 수효를 감하지 않아서 그 포구(浦口)에 머물고 바다를 건너는 데 따르는 식량의 소모가 적지 않으니, 어찌 우리 땅의 백성들을 주리고 곤궁하게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을 기르겠는가? 전날 예조(禮曹)에서 이르기를, ‘왜인의 수효를 감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또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에 금년의 한재는 전년의 갑절이나 되니, 어찌 차마 우리 백성이 주려서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겠는가? 대신(大臣)을 불러 의논하도록 하라.”</p>	<p>○傳曰：“野人則既令減數上來， 倭人則時未減數， 其留浦渡海， 糧糜費不貲， 豈可飢困我土之民而養他國之人乎? 前日禮曹以爲倭人減數無前例， 又恐生釁。 然予意今年旱荒倍於昔年， 何忍坐視吾民飢死乎? 其召大臣議之。”</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20일(기해) 1번째기사</p>	<p>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대간(臺諫)을 불러, 왜선(倭船)의 수효를 감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이과(李坡)·김겸광(金謙光)·정괄(鄭恬)·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야인(野人)을 올려 보내는 운(運)16431) 의 수(數)는 변장(邊將)이 때에 따라 가감(加減)하는 본래의 전례가 있으나, 왜인(倭人)은 선척(船隻)의 수를 약정(約定)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한때의 한재로 인하여 갑자기 선척의 수효를 감하게 되면 실망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만약 특별히 사자(使者)를 보내어 청하게 되면, 접대하는 번거로움이 따로 한 폐단을 낳게 될 것이며, 청하였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이 더욱 심하여 혹은 불손(不遜)한 말도 나올 것인데, 이를 내버려 두고 못들은 체하면 국위(國威)에 손상이 있을 것이고, 문책하게 되면 그 일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의 저축이 고갈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아직은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이 당당한 대국(大國)으로서 소추(小醜)에게 고갈되었음을 알리게 되면, 한갓 국위에 손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약함을 보이게 될 것이니, 대체(大體)로 보아 옳지 않습니다.” 하고,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덕량(李德良)·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이경동(李瓊全)·김승경(金升卿)·김종직(金宗直)·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우리 나라가 대마주(對馬州)의 선척(船隻)을 약정(約定)한 것은 기미(羈縻)16432) 의 계략을 둔 것인데, 이제 만약 흉년이라 하여 갑자기 감하게 되면, 비단 원한을 품는 마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나라의 공허함을 보여 주게 되어 전쟁을 하려는 마음만 일으킬 뿐입니다. 또 도주(島主)가 오로지 이에 의뢰하는 것을 이득으로 삼아 그 세력을 버티고 있는 터이므로, 이제 비록 그 액수를 감하더라도 저들은 강력히 청하여 특송(特送)의 행차가 앞</p>	<p>○己亥/命召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漢城府、臺諫， 議倭船減數事。鄭昌孫、韓明澮、李克培、盧思愼、李坡、金謙光、鄭恬、李崇元議：“野人上送運數， 邊將臨時加減， 自有前例。 倭人則船隻定約， 其來已久。 今以一時之旱， 遽減船數， 則缺望者多。 彼若特遣使陳請， 則支持之煩， 別生一弊， 請之不聽， 則缺望彌甚。 或出不遜之語， 置而不聞， 有損國威； 問之， 其事非輕。 今國儲不至空匱， 姑仍舊爲便。 況以堂堂大國， 告匱於小醜， 非徒有損國威， 亦是示弱， 大體不可。” 沈澮、尹弼商、李德良、李克均、成俊、李瓊全、金升卿、金宗直、李陸議：“我國定約對馬州船隻， 以存羈縻之計。 今若以年歉遽減， 則非徒起怨恨之心， 且示我國之虛耗， 以啓戎心而已。 且島主專賴此爲利， 以張其勢， 今雖減額， 彼必堅請， 特送之行， 前後相望。 則其沿路支供之煩、 答賜之費， 尤甚有害。 固拒則坐生邊釁， 從請則國威不嚴。 自祖宗以來， 年歉非一， 然未嘗輕易議減。” 洪應、</p>
---	--	--

	<p>뒤로 연속될 것이니, 그 연도(沿道)에서의 지공(支供)의 번거로움과 답사(答賜)의 비용에서 더욱 심한 해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거절하면 앉아서 변방의 불화를 일으킬 것이고, 청에 따르면 국가의 위신이 엄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종(祖宗) 이래로 연사(年事)의 흥작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일찍이 그 감량을 가볍게 의논하지 않았습시다.”</p> <p>하고, 홍응(洪應)·이봉(李封)·박성손(朴星孫)은 의논하기를,</p> <p>“미리 도주(島主)에게 효유(曉諭)하기를, ‘전에는 왕래하는 선척이 다 정한 액수가 있는 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 왔는데, 국가의 금년 한재가 심하여 각도(各道)에서 실농(失農)하여 구황(救荒)에 겨를이 없으니,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듣고 본 바이다. 그 선척을 평상시의 수량에 구애하지 말고 간략하게 올려 보내도록 하라. 만약 연사(年事)가 풍작을 이루게 되면 예전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타일러서, 스스로 재량하여 감소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세좌(李世佐)·윤보(尹甫)·권건(權健)·이유인(李有仁)·최한정(崔漢禎)·이칙(李則)·손비장(孫比長)·임수창(林壽昌)·이의(李誼)·전영령(全永齡)·송길(宋軼)은 의논하기를,</p> <p>“왜인 선척의 수량은 수량은 조종조(祖宗朝)에서 그 액수를 정하여 행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한재로 인하여 갑자기 그 수량을 감하게 되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하여 아마도 변방의 불화가 생길 듯하니,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허황(許篈)·안진생(安晉生)·정윤(鄭綸)은 의논하기를,</p> <p>“왜인이 조회(朝會)하러 오는 데에는 해마다 일정한 수효가 있어서 가볍게 수량을 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한재는 남도(南道)가 심하여 추수할 희망이 없는데, 만약 교린(交隣)을 중하게 여겨 평상시의 수량대로 대접하게 되면, 영송(迎送)에 따른 접대로 우리 백성이 먼저 곤란을 겪어</p>	<p>李封、朴星孫議：“預諭島主曰：‘在前往來船隻，皆有定額，以爲常式。國家今年旱甚，諸道失農，救荒無暇，接待諸事，茲未能堪，爾等所見聞也。其船隻不拘常數，從約上送。若年豐，依舊施行，其勿疑。’以此開諭，使自裁減何如？”李世佐、尹甫、權健、李有仁、崔漢禎、李則、孫比長、林壽昌、李誼、全永齡、宋軼議：“倭人船隻之數，祖宗朝定額，行之已久。今因旱荒遽減其數，則彼必缺望，恐生邊釁，仍舊何如？”許篈、安晉生、鄭綸議：“倭人來朝，歲有常數，輕易減數未安。然今年旱災，南道爲甚，罔有秋成之望。若以交隣爲重，常數待之，則迎送共頓，吾民先困，必不能支；若以救荒爲急，減數待之，則彼本賴我國以生，恐生邊釁。莫若諭之以凶荒之實、驛路之弊，量減常數，分運上來。又令見減之人例賜之物，權宜減數以給之，則彼亦人心，其敢拒之而依數上來乎？如此則賜予之物雖未盡減，而沿路館驛轉輸之弊，庶幾稍除。”傳曰：“洪政丞之議果是。慶尙道舉道凶荒，彼亦聞之矣。今當諭之曰：‘爾之來</p>
--	--	---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흉년의 구제를 급선무로 삼아서 수량을 감하여 대접하게 되면 저들은 본래 우리 나라에 의뢰해서 살아 왔으므로 아마도 변방의 불화가 생길 듯하니, 흉년의 실상과 역로(驛路)의 폐단을 들어서 타이르고 평상시의 수량을 적당히 감하여 운(運)을 나누어서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감량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例)로 내려 주는 물품을 권의(權宜)대로 수량을 감하여 주게 되면, 저들도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거역하고 숫자대로 올라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하사하는 물품을 비록 다 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연도(沿道)의 관(館)과 역(驛)에서 옮겨 수송하는 폐단을 아마 약간은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정승(洪政丞)의 논의가 과연 옳다. 경상도는 온 도내가 흉년이므로 저들도 들었을 것이다. 이제 마땅히 타이르기를, ‘너희들의 내왕에 항상 경상도의 곡식으로 지공(支供)해 왔는데, 이제 흉년을 만난 것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러 그 조달이 부족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웃 나라가 기황(饑荒)에 빠지면 서로 구제하는 도리가 있었음을 너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하여, 이러한 뜻으로 서계(書契)를 써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모두들 아뢰기를,

“선척의 수량을 감하는 것은 사람의 수량을 감하는 것과 실제로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유서(諭書)를 내려서 저들이 공손히 명령에 따른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만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저들의 생활을 오로지 우리 나라에 의뢰하고 있어, 혹 수량을 감하게 되면 반드시 굶주리고 궁핍하게 되어 청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누누이 사자(使者)를 보낼 것이니, 도리어 그 폐단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황제(皇帝)의 조서(詔書)라도 사이(四夷)가 또한 따르지 않을 때가 있는

往，常以慶尙道之穀爲之支供。今遭凶荒，至於此極，調度不足。古者隣國饑荒，有相救之道，爾豈不知乎？其以此意修書契以送。”僉啓曰：“船隻減數，與人數之減，固無異矣。今下諭書而彼乃俯伏聽命，則猶之可也；如不肯從，反受其侮矣。且彼之生活，專賴我國，苟或減數，必至飢乏，當以得請爲限，累遣特送，則反不勝其弊矣。”傳曰：“雖皇帝之詔，四夷亦有不從之時，不可以此謂之損威。今下書，彼雖不從，何嫌之有？”

	데, 이를 가지고 위엄을 손상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하서(下書)를 저들이 비록 따르지 않더라도 무슨 혐의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20 일(기해) 2번째기사	대마도(對馬島)주(主)에게 치서(致書)하기를, “너희 섬은 너희 조부(祖父)로부터 대대로 충성을 돈독히 하였고, 국가에서 대우하는 예(禮)도 지극히 융성하였으며, 왕래하는 사자(使者)의 선박도 이미 정해진 액수가 있다. 다만 경상도(慶尙道) 전체가 이제 한재로 인하여 곡식이 다 타버린 것은 너희 사자(使者)도 같이 보고 들은 바이다. 사자가 왕래하는 경비를 오로지 본도에 의뢰하고 있는데 기근이 이와 같으니, 대접이 아마도 전일만 못할 것이다. 선박의 수량은 고칠 수 없으나, 타고 오는 사람의 수효는 적당히 감하여 보내도록 하라. 풍년을 기다려서 곧 옛날과 같이 하겠다.” 하였다.	○致書于對馬島主曰： 汝島爰自汝祖父，世篤忠款，國家待之禮極隆，往來使船，已有定額。顧惟慶尙一道，今因旱災，禾穀盡焦，使者所共見聞。使者往來之費，專賴本道，而饑荒如此，供頓恐不如前日也。船數則不可改也，所騎人數，量減以送。若待豐年，便當如舊。
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20 일(기해) 3번째기사	전교(傳敎)하기를, “저자를 옮기고 남문(南門)을 닫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비가 이같이 오지 않으니, 좁은 땅에서 장을 보는 자가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남문을 열어 저자로 돌아오게 하라.” 하였다.	○傳曰：“徙市、閉南門已久，而不雨如此，隘窄之地爲市者，豈不苦哉？其令開南門還市。”
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21 일(경자) 3번째기사	오가 작통(五家作統)16445) 과 진휼(賑恤)에 관한 일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오가 작통과 구휼(救恤)하는 일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통주(統主)의 인원이 많으면 상(賞)을 주기가 어려우니, 혹 20가구(家口)나 30가구로 한 통(統)을 만들면 통 안의 허실(虛實)을 두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을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의논이 옳다. 또 진휼관(賑恤官)의 수효가 많으면 마을이 소요(騷擾)하여 도리어 그 폐단이 있을 것이니, 진휼사(賑恤使)는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라.”	○命議五家作統賑恤事于領敦寧以上。洪應議：“五家作統救恤事，甚佳。然統主員多，行賞亦難，或二十家、或三十家作統，可以周知統內虛實，如此作統何如？”傳曰：“此議是也。且賑恤官多數，則里閭紛擾，反有其弊，其令賑恤使斟酌差定。”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23 일(임인) 1번째기사</p>	<p>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전에 가뭄을 만나면, 삼각산(三角山) 진암(辰巖)에 제사하고 불을 놓으면 혹 비가 내린 적이 있었으니, 지금도 이와 같이 하여 기우(祈雨)하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나이가 장성한 처녀(處女)로 결혼하지 않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해사(該司)16446) 로 하여금 널리 물어서 독려(督勵)하여 결혼하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제 심한 한재를 당하여 어느 신(神)에게나 다 제사를 지냈으니, 진암(辰巖) 의 기우(祈雨)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 하였다.</p>	<p>○壬寅/傳曰：“前此，遇旱則祭三角山 辰巖而火之，或得雨。今欲如此祈雨， 何如？年壯處女未婚嫁者必多，令該司 廣問，督令婚嫁。”承政院啓曰：“今 當旱甚，靡神不舉，辰巖祈雨，似無 妨。”傳曰：“令內官行之。”</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24 일(계묘) 1번째기사</p>	<p>비가 약간 왔다.</p>	<p>○癸卯/小雨。</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25 일(갑진) 3번째기사</p>	<p>병조 판서(兵曹判書) 정괄(鄭佶)·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승원(李崇元)·호조 판 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백성들을 납속 상직(納粟賞職)16448) 에 응모(應募)하게 하라고 하셨 습니다. 옛날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군량의 부족으로 납속 보관(納粟補官) 을 한 바가 있었으나, 이는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미 훌륭한 일 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을 구제하기 위하여 납속 상직한다는 것은 역대(歷代) 에 없던 바로서, 우리 조정에서는 병진년(16449) ·정사년(16450) ·갑자년 16451) 의 흉황(凶荒)이 가장 심하였으나 역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금년 이 비록 흉년이나 병진년(丙辰年)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가령 이로 인하여</p>	<p>○兵曹判書鄭佶、吏曹判書李崇元、 戶曹判書李德良等來啓曰：“今令募人 納粟賞職。昔漢文帝爲兵食不足，納 粟補官，此出於不得已，已非美事。 爲救荒納粟賞職，歷代所無。至我朝 如丙辰、丁巳、甲子年，凶荒最甚，亦 無此事。今年雖歉，非丙辰之比，假 令因此足以救荒，猶非美事，若出此令 而無應之者，則徒有納粟之名而無賑救</p>

	<p>족히 흉년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데, 만약 이 영(令)을 내었다가 응하는 자가 없으면 한갓 납속(納粟)하였다는 이름만 있지 진구(賑救)한 사실이 없을 것이며, 또 반드시 이를 사책(史冊)에 쓸 것이니, 후세에서 무어라고 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경(卿)들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군사를 일으킬 힘이 없어 이를 실시하였지만, 문제의 성덕(盛德)에도 손상이 없고 후세에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제 구황(救荒)하기 위하여 민간에 저장된 양곡을 다 문서에 올려 봉(封)하도록 하였으나, 어찌 은루(隱漏)16452) 한 자가 없겠는가? 만약 이 영(令)을 구황하는 데 행한다면 거의 유익함이 있을 것인데, 경(卿)들은 어찌하여 옳지 않다고 하는가?”</p> <p>하였다. 정괄(鄭恬) 등이 아뢰기를,</p> <p>“관작(官爵)은 지극히 중한 것이므로 가볍게 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민간의 곡식을 가진 자는 판매하여 이익을 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즐겨 응모하겠습니까? 이제 비록 법을 세운다 하더라도 아마 유명 무실(有名無實)하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억지로 하겠는가?”</p> <p>하였다.</p>	<p>之實。 且必書于史冊， 後世以爲何如?” 傳曰：“卿等之言果是。 然漢文帝時， 爲乏軍興而爲之， 無損文帝盛德， 後世亦無異議。 今爲救荒， 民間儲穀盡令封籍， 然豈無隱漏者乎? 若行此令， 於救荒， 庶有益矣。 卿等何以爲不可?” 恬等啓曰：“官爵至重， 不可輕用。 且民間有穀者， 以販賣規利爲念， 誰肯應募? 今雖立法， 恐有名無實也。” 傳曰：“群議如是， 予何強爲?”</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26 일(을사)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이제 비록 비가 왔으나 아직도 고루 흡족하지 않으니, 마땅히 종묘(宗廟)·사직(社稷)에 재차 기우(祈雨)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용산강(龍山江)에 두 번 기우하여 모두 작은 비를 얻은 바 있으니, 아울러 명산 대천(名山大川)에 세번째의 기우를 행하는 것도 좋겠다.”</p> <p>하였다.</p>	<p>○乙巳/傳于承政院曰：“今雖雨， 猶未周洽， 宜於宗廟、社稷再行祈雨。 且龍山江再行祈雨， 皆得小雨， 并名山大川行三度祈雨亦可。”</p>
<p>성종 180권, 16년</p>	<p>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p>	<p>○義禁府啓： “司憲府禁亂書吏金敬</p>

<p>(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26일(을사) 2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의 금란 서리(禁亂書吏) 김경손(金敬孫)과 나장(羅將) 조승로(趙承老) 등이 저자 사람들과 모여 술을 마신 죄는, 그 율(律)이 장(杖) 70대에 해당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이제 사헌부(司憲府) 아리(衙吏)의 소행을 보니, 만약 부호(富豪)로서 뇌물을 바치는 자가 있다면 비록 금하는 것을 범하였더라도 반드시 놓아주고, 그들이 잡는 자는 다 외방(外方)의 의뢰할 데 없는 사람일 뿐이다. 경성(京城) 안은 왕화(王化)16453) 가 지극히 가까운 곳인데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으니, 하물며 외방(外方)이겠는가? 이 무리의 죄가 무거우니, 평안도로 옮겨 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p> <p>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권건(權健)·좌부승지(左副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p> <p>“변방(邊方)으로 옮기는 것은, 이것이 율문(律文) 밖의 일입니다. 이 뒤에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이와 같이 죄를 결단하여도 괜찮을 듯하나, 지금은 옮지 않습니다.”</p> <p>하고,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우부승지(右副承旨) 이조양(李朝陽)·동부승지(同副承旨) 윤은로(尹殷老)는 아뢰기를,</p> <p>“이것이 비록 율문 밖의 일이라는 하나, 근일에 율문 밖의 일로 사변(徙邊)16454) 한 자도 자못 많습니다. 이 무리의 죄가 크니, 사변하게 하여서 한 명을 징계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하게 하는 것도 방해(妨礙)됨이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비록 율문 밖의 일이지만 이 무리의 죄가 무거우니, 전가 사변(全家徙邊)16455) 하게 하고, 지금부터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하라.”</p> <p>하였다.</p>	<p>孫、羅將趙承老等，與市人會飲罪，律該杖七十。”傳曰：“今觀憲府衙吏所爲，若豪富納賂者，則雖犯禁必釋之。其所捕者，皆外方無聊之人耳。京城之內，王化至近之處，猶且如是，況外方乎？此輩罪重，徙處平安道何如？”</p> <p>都承旨權健、左副承旨李世佑啓曰：“徙邊是律外之事。今後有犯者，則如此科罪似可，今則不可。”左承旨成健、右副承旨李朝陽、同副承旨尹殷老啓曰：“此雖律外之事，然近者以律外徙邊者頗多。此輩罪大，使之徙邊，懲一警百，似無妨礙。”傳曰：“雖律外之事，此輩罪重，全家徙邊，自今以爲恒式。”</p>
--	---	--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27 일(병오) 1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집(李諱)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번 6월 초9일에 비가 내렸고 13일에 또 비가 왔으며, 또한 21일에는 서 흥(瑞興)·수안(遂安) 등지의 산군(山郡)에 간혹 소낙비가 왔으며, 23일에 비로 소 큰 비가 내렸습니다. 도내 모든 고을의 곡식이 점차 여물어 가고 있어 실 농(失農)에 이르지 않는 것이며, 전일 아된 바 황충(蝗蟲)도 다시 치성(熾 盛)하지는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황해도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비의 은택(恩澤)이 고루 족하다 하니, 기우(祈雨)는 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丙午/黃海道觀察使李諱馳啓曰：“今 六月初九日下雨，十三日又雨，又於二 十一日，瑞興、遂安等處山郡或驟雨， 二十三日始大雨，道內諸邑禾穀稍稔， 不至失農。前日所啓蝗蟲，亦不復 熾。”傳曰：“今見黃海道啓本，雨澤 至爲周足，其勿行祈雨。”</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27 일(병오) 2번째기사</p>	<p>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한찬(韓僎)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번에 성절사(聖節使)가 되었는데, 진헌물(進獻物)이 감량(減量)을 청 하는 일이 중하니, 일을 잘 아는 통사(通事)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떠하겠습 니까? 또 장씨(臧氏)·차씨(車氏) 및 곡청(谷淸)에게 사사로이 인정물(人情 物)16456) 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통사(通事)는 일을 잘 아는 사람을 택하여 보내고, 곡청(谷淸)은 우리 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매우 후하니, 인정물(人情物)을 후하게 마련해서 아뢰도록 하 라.” 하였다.</p>	<p>○同知中樞府事韓僎來啓曰：“臣今爲 聖節使，進獻物請減事重，擇事知通 事，率去何如？且臧氏、車氏及谷淸處 私人情物，齎去何如？”傳曰：“通事擇 事知人遣之。谷淸向我國甚厚，人情 物從厚磨鍊以啓。”</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27 일(병오) 3번째기사</p>	<p>도총관(都總管) 이극균(李克均)·노공필(盧公弼)이 와서 아뢰기를, “근자에 보정병(步正兵)이 다 토목(土木)의 역사(役事)에 나아가고 입직(入直) 하지 말게 하였기 때문에, 봉점(逢點)16457) 한 뒤에 그 군장(軍裝)을 본가 (本家)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한재(旱災)로 인하여 역사를 파하고 다 입직하 게 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적간(摘奸)할 때 군장을 하지 않은 자가 잇달아 죄 를 받고 있어 하루에 6, 70명의 많은 수효에 이릅니다. 국가에서 한재를 근</p>	<p>○都總管李克均、盧公弼來啓曰：“近 者，步正兵盡赴土木之役，不令入直， 故逢點後其軍裝還送本家。今者因旱 罷役，皆令入直，因此摘奸時闕軍裝 者，相繼受罪，一日多至六七十人。 當國家憂旱之時，捶楚之煩，心所不</p>

	<p>심하는 때를 당하여 번거롭게 장형(杖刑)하는 것은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할 바입니다. 청컨대 그 패두(牌頭)16458) 만 죄를 주고 나머지는 다 논하지 말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의 말이 매우 옳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기고 기뻐한다. 다만 그 늦은 것이 한이다.”</p> <p>하였다.</p>	<p>忍。請罪其牌頭，餘皆勿論。”傳曰：“卿言甚善。予用嘉悅，但恨其晚也。”</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29일(무신)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금년에 여러 도(道)가 다 실농(失農)하였으므로, 만일 과거(科擧)를 시행하게 되면, 시관(試官)을 대접하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외방의 유생(儒生)들이 향시 도회(鄉試都會)16460) 에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것도 폐단이 심할 것입니다. 청컨대 병오년(16461) 가을로 물려서 정하게 하소서.”</p> <p>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소서.”</p>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과거(科擧)는 현재(賢才)를 선발하여 등용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일로서 이보다 큰 것이 없으며, 시관(試官)에게 비록 음식(廩食)16462) 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3, 4일간에 불과하니, 그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작은 소비로 인해 정지한다면, 아마도 경중(輕重)이 차례를 잃을 듯합니다. 또 거자(擧子)16463) 들이 도회(都會)에 왕래하는 것 역시 3, 4일간에 불과하고, 양곡도 족히 갖추어 낼 수 있으며, 더욱이 평일에 배우고 익히는 것을 업(業)으로 삼으면서 시험하는 날을 기다린 지 오래되므로 사람마다 다투어 나아갈 것인데,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p>	<p>○禮曹啓：“今年諸道皆失農，若行科擧，試官支供之弊不貲。且外方儒生鄉試都會，贏糧往來，亦甚有弊。請以丙午年秋退定。”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議：“依所啓施行。”盧思愼議：“科擧所以選用賢才，國家之事莫大於此。試官雖有廩食之費，不過三四日事，其費無幾。今以此小費而停之，恐輕重失倫也。且擧子都會往來，亦不過三四日之間，糧物亦足以辦。況平日以學習爲業，以待選試之日久矣，人人爭趨，有何弊乎？”傳曰：“宣城之議似可。科擧重事，國家有大故，則不得已停之矣，不可以歲歉而停之。其更議之。”洪應議：“鄉、漢城試，乃不多日事，似若無弊。但今年鄉、漢城試入格者，明</p>

	<p>하니, 전교하기를, “선성(宣城)16464) 의 의논이 옳은 것 같다. 과거는 중한 일이므로 국가에 큰 연고가 있으면 정지할 수 밖에 없으나, 연사가 흉작이라 하여 정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향시(鄉試)·한성시(漢城試)는 여러 날 걸리는 일이 아니라서 폐단이 없을 듯 하나, 다만 금년의 향시·한성시에 입격(入格)한 자는 명년 봄에 회시(會試)에 나아가게 되므로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것은 구황하는 행정에 맞지 않으니, 금년 가을에 향시·한성시와 회시(會試)·전시(殿試)를 일시에 다 시행하여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年春節赴會試，贏糧往來，非荒政之宜。不若今秋鄉、漢城試、會試、殿試，一時盡行爲無弊也。”從之。</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6월 29 일(무신) 4번째기사</p>	<p>이어(李 王+ 於)의 【이어(李뽉)는 곧 세종(世宗)의 후궁(後宮) 양씨(楊氏)가 낳은 한남군(漢南君)이다.】 아들 이중생(李衆生)이 소(疏)를 올려 그의 고신(告身)과 전민(田民)을 돌려받기를 청하였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이를 수리(受理)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므로,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김겸광(金謙光)이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이어(李뽉)의 범죄는 국가와 관계되는 일이니, 이중생(李衆生)이 그 친아들로써 사유(赦宥)를 입은 것만으로도 족한데,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뢴 바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어(李뽉)의 죄는 이제 고쳐서 의논할 수 없다. 다만 이중생은 이어(李뽉)가 죄를 범한 뒤에 낳았고, 또 세종(世宗)의 후손인데 생활이 궁핍하니, 매우 불</p>	<p>○王+ 於 子衆生【뽉卽世宗後宮楊氏之出，漢南君也】。上疏，請還受告身及田民。義禁府請勿受理，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鄭昌孫、韓明澮、尹弼商、盧思愼、尹壕、金謙光議：“依所啓施行。”洪應、徐居正議：“뽉之罪犯，關係國家。衆生以親子，蒙宥足矣，復有何望？依所啓施行。”傳曰：“뽉之罪，今不可更議。但衆生於뽉得罪之後，且是世宗遺胤，而生理窮乏，甚可矜。告身則固不可還給也，量給田民，以資衣食何如？其更議于前議宰相。”昌孫等多以還給爲不可，特命還給。</p>

	<p>쌍하다. 고신(告身)은 본래 돌려줄 수 없으나, 전민(田民)을 적당히 주어서 의식(衣食)의 자산(資産)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에 의논한 재상과 다시 의논하라.”</p> <p>하였다. 정창손 등이 대부분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으나, 특명(特命)으로 돌려주게 하였다.</p>	
<p>성종 180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6월 29일(무신) 5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송질(宋軼)이 와서 아뢰기를, “북경(北京)에 가는 행차(行次)에 강이생(講肄生)으로 나이 젊고 총명한 자 2인을 가려서 보낸다고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절사(聖節使) 한찬(韓僎)이 청하기를, 강이생 1인을 감하고 통사(通事) 2인으로써 이를 대신하게 하여, 하나는 압물관(押物官)16465) 으로 삼고 하나는 타각부(打角夫)16466) 로 삼게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통사 중에 이익을 꾀하는 자가 있어 은밀히 한찬에게 청하여 한 것입니다. 한찬이 근일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감히 이와 같이 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몹시 부당합니다. 또 듣건대 곡청(谷淸)에게 따로 인정(人情)을 보낸다고 하는데, 또한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한씨(韓氏)가 살아 있을 당시에 정동(鄭同)은 우리 나라 일을 상세히 아는 자였는데, 우리 나라에 폐단이 있는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사사로이 인정물을 보내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한씨가 이미 서거하였고, 정동도 사망하였는데, 곡청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어디에 의거한 것입니까? 지난 해 한치형(韓致亨)이 가지고 간 별인정(別人情)도 부당하나, 그 때에는 진헌(進獻)하는 잡물(雜物) 속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수량을 감(減)하였다가 견책(譴責)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였던 것인데, 이번에 까닭없이 또 뇌물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중국에서 본래 우리 나라를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일컬어 왔는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만약 중국 조정에 들리게 되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p>	<p>○司憲府持平宋軼來啓曰：“赴京行次，講肄生年少聰敏者二人差送，載于《大典》。今聖節使韓僎請除講肄一人，而以通事二人代之，一爲押物官，一爲打角夫。是必通事之謀利者，暗請於僎而爲之也。僎以近日侍從之臣，敢爲如此違法之事，甚不當。且聞谷淸處送別人情，亦甚不可。前此韓氏生時，鄭同詳知我國之事者也，多爲我國有弊之事，故不得已私致人情物，以悅其心。今則韓氏已逝，鄭同亦亡，谷淸處贈遺，有何所據？去年韓致亨齎去別人情，亦不當。然其時則進獻雜物內非我國所產者減省其數，恐受譴責，故不得已爲之。今無故而又致賂遺，何也？中朝素稱我國爲禮義之邦，今如此之事，若聞於朝廷，則寧無愧乎？”傳曰：“去年韓致亨之行，燈盞破碎，皇帝怒責之，谷淸周旋其間，終得無咎。予甚喜之，故別送人情耳。除講</p>

	<p>하니, 전교하기를, “지난 해 한치형(韓致亨)이 갔을 때 등잔(燈盞)을 깨었으므로 황제(皇帝)께서 노하여 꾸짖는 것을 곡청(谷淸)이 그 사이에서 잘 주선하여 마침내 허물이 없게 하여 내가 매우 기뻐기 때문에 따로 인정(人情)을 보낸 것이다. 강이생(講肄生) 1인을 없애는 일은, 성절사(聖節使)의 행차에는 진헌할 잡물(雜物)이 갑절이나 많아서 통사(通事)가 아니면 주관하여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였다. 송질이 들어와서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곡청의 사람됨이 간사하고 교활하며 보잘것없다고 하는데, 이제 인정의 물품을 얻게 되면 그 재물을 탐하는 마음에 반드시 해마다 바라게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제 뜻과 같지 않으면 도리어 성내어서 죽히 근심거리만 될 것입니다. 강이생을 데리고 가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곡청에게 인정을 보내는 일은 내가 마땅히 헤아려서 할 것이며, 강이생의 일은 《대전》을 무너뜨리는 처사가 아니고 일시의 권의(權宜)일 뿐이다.” 하고, 송질이 반복해서 논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송질이 또 아뢰기를, “이번에 들으니, 한찬에게 사사로운 인정(人情)의 물건을 주시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훈구 대신(勳舊大臣)이 북경에 갈 때 인정물을 내려 주는 것은 대신을 중하게 대우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한찬은 훈구 대신이 아니며 또 하는 일도 없는데, 특별히 내려 주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는 곡청(谷淸)·김흥(金興)·강옥(姜玉) 등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그들에게 아첨하고 기쁘게 하는 자료가 지나지 않습니다. 청컨대 정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앞서 북경에 간 자는 반드시 사사로운 진헌(進獻)이 있었다. 이번에 만약 황</p>	<p>肄一人事，聖節使之行，進獻雜物倍多，非通事難以押去故耳。” 軾入啓曰：“臣聞谷淸爲人狂猾無狀。今得人情之物，則其貪(胃) [冒] 之心，必年年希望，稍不如意，則反生恚怒，適足爲患耳。講肄生帶去，載《大典》，不可壞也。” 傳曰：“谷淸處送人情事，予當酌量。講肄生事，非壞《大典》也，乃一時權宜耳。” 軾反覆論啓，不聽。 軾又啓曰：“今聞欲給韓僎私人情之物。臣意勳舊大臣赴京時賜人情物，重大臣也。今僎非勳舊大臣，又無所爲之事，而特賜之何耶？不過使之分施谷淸、金興、姜玉輩，以爲求媚見悅之資耳。請停之。傳曰：“前此赴京者，必有私進獻。今若皇帝有問，則不可以不齎爲辭，當獻之矣。若無所問，僎豈敢妄施？”</p>
--	---	--

	제께서 묻게 되면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이나, 만일 묻지 않는다면 한찬이 어찌 감히 망령되게 주겠는가?” 하였다.	
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1일 (기유) 1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직선(職宣)을 특별히 보내어 토산물(土產物)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지난 해에 특별히 사자(使者)를 보내어 국분사(國分寺)를 위해 정액(定額)의 선수(船數)를 원하였는데, 곧 2척을 허락하여 정액으로 하고 거기에다 도서(圖書)를 내려 주셨으니, 실로 성은(聖恩)을 입음이 막대합니다. 사자(使者)가 돌아올 때에 또 갑진년(1467)의 예(例)대로 쌀·콩 2백 섬을 내리시고, 또 부산포(富山浦)의 제24선(船)에도 계묘년(1468)의 예대로 쌀·콩 2백 섬을 내리시어 아울러 은사(恩賜)를 입었습니다. 성은이 날로 더욱 무거워져서 감사한 말씀을 이루 다하기 어렵습니다. 전일(前日) 몇 차례에 걸쳐 황금(黃金)·주홍(朱紅)을 보내어 명주[綿紬]와 면포(綿布)를 원하였는데, 성은(聖恩)으로 그 값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상방(尙方)1469)에 있는 것을 내려 주셨으니, 그때의 일은 털끝만한 것도 성은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또 예물을 드리는 사인으로 신 우위문위 대중신(新右衛門尉大中臣) 직선(職宣)과 부관인(副官人)을 아울러 보내어, 42문목(文目)1470) 짜리 황금(黃金) 60정(挺)과 42문목 짜리 주홍(朱紅) 5백 37리(裏)를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명주[綿紬]·면포(綿布) 중에 물건이 정밀하고 좋으며 자[尺]도 넉넉한 것으로서 회서(回書)에 그 원수(員數)를 기재하여 보내 주소서. 신은 이미 상고(商賈)의 매매(賣買)하는 방법을 본뜨지 않고 삼가 은사(恩賜)를 바라니, 집사(執事)도 없는 것을 서로 교역(交易)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권고(眷顧)와 은사(恩賜)를 두터이하여 등용(登用)할 자를 굽어살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대도(大刀) 2자루, 연(練) 2필, 차촉(叉鋏) 1백 개를 진상(進上)합니다.” 하였다.	○朔己酉/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職宣來獻土宜。書契曰： 去歲特遣專使，爲國分寺望定額之船數，輒許兩船以爲定額，加賜圖書，實聖恩之辱莫大焉也。价回，又賜甲辰年例米太二百碩，又富山浦第二十四船賜癸卯年米太二百碩，併以拜恩賜，聖恩日益重，而謝詞難盡之。于前數回遣金朱，以望綿紬、綿布，聖恩不貳其價，尙方所有者賜之，曰彼日者織毫，無不聖恩者。今又差專使饗庭新右衛門尉大中臣職宣，并副官人，令持金六十挺各四十二文目、朱五百三十七裏各四十二文目以遣之。縣紬綿布彌精好而尺長者返，書載其員數以賜之。臣已不擬商賈賣買之道，伏以仰恩賜，執事亦不爲有無交易之，念以顧遇恩賜之甚。俯所登用者多幸。進上：大刀二把、練二匠、又鋏一百。
성종 181권, 16년	어제(御製)하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기(李克基)에게 유시하기를,	○御製諭慶尙道觀察使李克基曰：

<p>(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1일 (기유) 4번째기사</p>	<p>“경(卿)의 아뢰 바를 보고, 가뭄이 더욱 치성(熾盛)하여 채소까지 모두 말라서 흉년에 대비할 물건이 없음을 이미 알았다. 하늘의 견책(譴責)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어찌 다할 수 있겠는가? 내가 덕이 없음으로 인하여 재앙이 무고한 백성에게 미치고 있다. 나의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하니, 무슨 방법으로 감응(感應)하게 하겠는가? 생각할수록 더욱 두렵고 뉘우쳐도 미치지 못하겠다. 아! 그만이로구나, 하늘의 굽어보심이 매우 밝으시고 나는 진실로 죄가 많으니, 백성의 생명이 애처롭구나. 한 지방 백성의 생명을 오로지 감사에게 맡겼는데, 경이 이같이 한다면 나는 장차 무엇을 믿겠는가? 경은 내 뜻을 본받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두루 산천(山川)에 빌고, 원통한 옥사(獄事)를 잘 다스려 풀어 주도록 하라. 지금이라도 만약 비가 내린다면 이미 말라 죽은 것은 그만이지만 아직 마르지 않은 것은 거의 가망(可望)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천방(川防)·제언(堤堰)도 그 이익됨이 적지 않은 것인데, 이제 모두 고갈(枯渴)되어 남음이 없는지 자세히 직접 살펴서 계문(啓聞)하라.”</p> <p>하였다.</p>	<p>觀卿所啓，旱氣益熾，蔬菜盡焦，備荒無物事已悉。天之譴責，何至此極？傷悲傷慮，曷有其極？以予之無良，禍及於無辜，予之誠不能格天，何由感應？思之益懼，悔之無及。嗚呼，已矣！天鑑孔昭，予固多罪，民命斯哀。一方之民命，專委監司，卿而若此，予將安恃？卿體予懷，竭力盡心，〔編〕祈山川，理釋冤獄。今若得雨，已焦之物則已矣，未焦之物，庶有所望。且川防堤堰，其利不小，今盡涸無餘歟？詳悉親審以啓。</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2일 (경술) 2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올해의 가뭄은 고금(古今)에 없었던 것으로, 종묘(宗廟)·사직(社稷)과 산천(山川)에 모두 빌었으나 응험(應驗)을 보지 못하였다. 종묘·사직에는 제사를 번거롭게 할 수 없고, 다시 용추(龍湫)에 빌고자 하는데, 그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보라.”</p> <p>하니, 예조(禮曹)에서 경인년(16474)의 예를 상고하여 아뢰었다. 명하여 즉시 용산강(龍山江)에서 행제(行祭)하게 하였다.</p>	<p>○傳曰：“今年旱乾，古今所無。扁禱宗廟、社稷、山川，未見應驗。宗廟、社稷則祭不可瀆，更欲禱龍湫，其考例。”禮曹考庚寅年例以啓，命卽行龍山江祭。</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2일 (경술) 3번째기사</p>	<p>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은 지위가 육조(六曹)의 반열에 있으면서 그 직위만큼 덕이 없으니, 이번 한재(旱災)는 오로지 신 등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 등을 파직하여 하늘의 견책(譴責)을 막아 주시기를 청합니다</p>	<p>○六曹堂上來啓曰：“臣等位列六曹，德不稱職，今旱災，專由臣等失職。請罷臣職，以塞天譴。”傳曰：“六卿衆務，予獨當之歟？卿等之言，眞出於</p>

	<p>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육경(六卿)의 많은 일들을 내가 홀로 감당하란 말인가? 경 등의 말이 참으로 성심(誠心)에서 나왔단 말인가?”</p> <p>하였다. 다시 아뢰기를,</p> <p>“신 등의 말은 성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 감히 거짓이 있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사직하지 말라.”</p> <p>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성준(成俊)·참판(參判) 이경동(李瓊全)이 다시 아뢰기를,</p> <p>“예로부터 화기(和氣)를 상(傷)하여 재앙을 초래함이 흔히 형옥(刑獄)에서 말미암습니다. 신 등은 숙문(淑問)16475) 하는 재능이 없습니다. 청컨대 자리를 피하여 재앙을 사라지게 하소서.”</p> <p>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誠乎?” 又啓曰: “臣等言出於誠, 安敢有僞?” 傳曰: “其毋辭。” 刑曹判書成俊、參判李瓊全更啓曰: “自古傷和召災, 多由刑獄。 臣等無淑問之才, 請避位消災。” 不許。</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2일 (경술) 4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p> <p>“가뭄이 너무 심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 말라가고 있다. 만약 화재가 있게 되면 박멸(撲滅)하기 어려울 것이니, 선왕(先王)의 능침(陵寢)과 진전(眞殿)16476) 이 더욱 염려된다. 공사(公私)간의 여러 곳에 금화(禁火)를 엄하게 더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諭諸道觀察使曰: “旱氣深重, 百物焦枯, 若有火災, 撲滅爲難。 先王陵及眞殿, 尤爲可慮。 公私諸處, 嚴加禁火。”</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2일 (경술) 5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서 능히 음양(陰陽)을 조화(調和)하지 못하였음을 연유로 하여 글을 올려 사직(辭職)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비답(批答)을 내렸다.</p>	<p>○議政府以不能燮理陰陽, 上狀辭職, 不許批答賜之。</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경상도 진휼사(慶尙道賑恤使) 한치형(韓致亨)이 와서 아뢰기를,</p> <p>“신은 진휼의 일이 염려되어 밤에도 편히 자지 못합니다. 듣건대 경상도의 한</p>	<p>○辛亥/慶尙道賑恤使韓致亨來啓曰: “臣以賑恤爲慮, 夜不安寢。 聞慶尙道</p>

<p>(成化) 21년 7월 3일 (신해) 1번째기사</p>	<p>재가 더욱 심하여 건조(乾燥)한 곳이나 습(濕)한 곳이 모두 말라서, 곡식만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채소도 모두 마르고 상수리까지도 열매 맺지 못하여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 하니, 장차 어떻게 진구(賑救)해야 되겠습니까? 종사관(從事官) 윤간(尹侃)이 지금 안태사(安胎使)16477) 로 본도(本道)에 갔으니, 청컨대 일을 마친 뒤에는 그대로 구황(救荒)하는 여러 가지 일을 살펴보게 하고, 그 나머지 종사관 세 사람은 이달 20일 연후에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에 나누어 보내어서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구황 잡물에 대해서는 수령(守令)이 비록 저축하도록 독려(督勵)하고 있으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먼 앞날의 근심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고식(姑息)16478) 에만 힘써 모두 먹지 못할 물건들만 저축하여 다만 적간(撻奸)에 대비할 뿐입니다. 신은 청컨대, 종사관으로 하여금 먼저 구황에 따른 비축의 정(精)하고 거친 것을 살펴서 백성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비축하도록 힘쓰게 하고, 비축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수령의 근만(勤慢)을 핵론(覈論)하게 하소서. 그리고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에게 어사(御史)의 직함을 결부(結付)시켜 8월에 내려보내도록 호조(戶曹)에서 이미 전교(傳教)를 받았습시다만,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진휼 종사관(賑恤從事官)이 있는데 또 경차관을 두게 되면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종사관으로 하여금 재해를 살피는 일을 겸하게 하고, 또 종사관의 반종인(伴從人) 중에서 한 사람을 줄여 지공(支供)하는 비용을 덜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旱災尤甚，燥濕皆乾，非徒禾穀焦枯，蔬菜盡枯，橡栗亦不結實，民無所食，將何賑救？從事官尹侃，今以安胎使往本道，請事畢後，仍令審檢救荒諸事。其餘從事官三人，今月二十日後，分遣左右道看審，何如？且救荒雜物，守令雖督令儲蓄，愚民不顧遠慮，唯務姑息，皆蓄不可食之物，但備撻奸而已。臣請令從事官，先審救荒儲備精麤，使民務要儲備可食菜蔬，以儲備多寡，覈論守令勤慢。且災傷敬差官，御史結銜，八月下送事，戶曹已受教。臣意以謂既有賑恤從事官，又有敬差官，驛路有弊。請以從事官兼審災傷，且從事官伴從人中減一，以省供費何如？”從之。</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3일 (신해)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저자도(楮子島)의 화룡기우제법(畫龍祈雨祭法)을 상고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이옹(李邕)의 기우법(祈雨法)에 의거(依據)하여 행하라.” 하였다.</p>	<p>○禮曹考楮子島畫龍祈雨祭法以啓。傳曰：“其依《文獻通考》李邕祈雨法行之。”</p>
<p>성종 181권, 16년</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傳于承政院曰：“富弼在青州，活人</p>

<p>(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3일 (신해) 3번째기사</p>	<p>“부필(富弼)16479) 이 청주(靑州)에 있을 때에 사람을 살린 것이 매우 많았는데, 그 법을 오늘날에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부필은 백성에게 곡식을 내도록 권하여 50여 만 석(石)을 얻고 <거기에다> 관곡(官穀)의 잡축(雜蓄)을 가지고 기민(飢民)을 구제하여 나아가 먹게 하였으므로 백성을 살린 바가 매우 많았으니, 이는 축적(蓄積)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축적이 넉넉하지 못하여 이 법을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p>	<p>甚多，其法可行於今日乎？”承旨等啓曰：“富弼勸民出粟，得五十餘萬石，以官穀雜蓄，賙飢民使就食，故活民甚多，此則蓄積多故也。我國蓄積不敷，不可以此行之。”</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3일 (신해) 5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어서(御書)를 홍문관(弘文館)에 내려 이르기를, “황천(皇天)이 나를 견책하여 흉년들지 않는 해가 없었는데, 금년은 더욱 심하다. 내가 어두워서 죄를 얻은 단서(端緒)를 알지 못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삼가고 두려워하면서 깊이 스스로 가슴에 새겨 자책(自責)하는데도 정성이 부족하여 불벌 더위가 더욱 기세(氣勢)를 부리니, 경상도와 같은 큰도가 모두 기근(饑饉)의 재앙이 들어서 시들지 않는 풀이 없으며 한숨 짓지 않는 백성이 없다. 이 천재(天災)를 규명해 보면 실로 내가 덕이 없어서이다.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영특하고 어진 인물로 경악(經幄)에 가까이 있으면서 혹 아름다운 계책을 아뢰고 혹은 시정(時政)에 참여하였으니, 나라에 보답하는 데 있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금의 한재가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덕이 없어 하늘의 뜻을 어겨서 이를 이르게 함인가? 대신(大臣)이 자리만 갖추었을 뿐 임금을 바로잡지 못함이 있어 이를 이르게 함인가? 소신(小臣)이 높은 이름을 낚으려고 하늘을 속이고 윗사람을 업신여겨서 이를 이르게 함인가? 옥송(獄訟)에 원통함이 많고 벼슬아치들이 공도(公道)를 폐하고 사의(私意)를 행하여 억울함이 쌓여서 이를 이르게 함인가? 내가 불초(不肖)한 몸으로 이같은 재앙을 만나 잠을 자</p>	<p>○先是，御書下弘文館曰： 皇天譴予，無歲無之，而今年尤甚。予以寡昧，未知〔護〕罪之端，夙夜祗懼，深自刻責。而精誠未孚，炎赫益熾，慶尙大道，舉罹饑殃。何草不黃？何民不嗷？原此天災，實予之無良，自予而致，而誰是咎？爾等皆以英賢，昵侍經幄，或啓嘉猷，或參時政，其於報國，應不小懈。今之旱災，豈無所由？以予無德，違天之致然歟？大臣有備位，而無能以匡其君之致然歟？小臣欲釣高名，欺天慢上之致然歟？獄訟多冤，而官吏廢公挾私，積累鬱抑之致然歟？予以不淑，遇此之災，寢不安席，食不甘味。恐懼斯切，而嘉應不</p>

	<p>도 잠자리가 편치 아니하고 먹어도 입맛이 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처럼 간절한데도 좋은 보응(報應)은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대들에게 묻는다. 남의 말을 듣고자 하여, 가볍게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며 고집하지도 않을 것이니, 심중에 품은 바를 서슴없이 말하라.”</p> <p>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부제학(副提學) 안처량(安處良) 등이 상소(上疏)하기를,</p> <p>“신 등이 삼가 어서(御書)를 보건대, 자신을 책망하고 덕을 닦아 천견(天譴)을 사라지게 하시려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신 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경악(經幄)에 모시면서 논사(論思)의 직책에 참여해 왔으니, 무릇 민생(民生)의 휴척(休戚)과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마땅히 말해야 할 처지인데, 더구나 천어(天語)16481) 가 간곡 측달(懇曲惻怛)함이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서너 차례 읽는 동안 가슴에 격정(激情)이 북바쳐서 감회가 분발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들으니,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정침(精禋)16482) 이 서로 반응을 나타내고 선악(善惡)이 서로 유추(類推)함이 있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위에서 그에 대한 변(變)이 나타나 재앙과 상서(祥瑞)의 반응이 각각 그 유(類)에 따라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숙(肅)·예(乂)·철(哲)·모(謀)·성(聖)16483) 의 다섯 가지 선도(善道)를 행하면 우(雨)·양(暘)16484) ·옥(燠)16485) ·한(寒)·풍(風)의 다섯 가지 기운이 때에 따라 상서(祥瑞)의 징조가 되지만, 임금이 광(狂)·참(僭)·예(豫)16486) ·급(急)·몽(蒙)16487) 의 다섯 가지 악한 도를 행하면 우·양·옥·한·풍의 다섯 가지 기운이 항상 재앙의 징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서와 재앙의 징조는 모두 인사(人事)의 득실(得失)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불세출(不世出)16488) 의 자질(資質)로 크게 유위(有爲)하시려는 뜻을 분발하시어 한 가지 동작도 법도에 맞지 않음이 없으시고 한가지 호령(號令)도 여망(輿望)에 맞지 않음이 없었으니, 진실로 화기(和</p>	<p>至，故問於爾等，欲聞人言。 毋輕毋執，悉陳所懷。</p> <p>至是，副提學安處良等上疏曰：</p> <p>臣等伏觀御書，其所以責躬修德、欲消天譴之意，至矣。 臣等俱以無狀，待罪經幄，職參論思，凡民生休戚、時政得失，在所當言。 而況天語懇惻，臣等伏讀數四，情激于中，不勝感奮。 臣聞天人之際，精禋有以相盪，善惡有以相推。 事作于下，變見于上，災祥之應，各以類至。 故人君行 ‘肅、乂、哲、謀、聖’五善道，則‘雨、暘、燠、寒、風’五氣時而爲休徵；人君行 ‘狂、僭、豫、急、蒙’五惡道，則‘雨、暘、燠、寒、風’五氣常而爲咎徵。 然則休咎之徵，皆由人事之得失而致然也，固矣。 恭惟主上殿下以不世出之資，奮大有爲之志，一動作無不合於軌物，一號令無不合於輿望，固無有傷和召災之事。 而天譴之嚴一至於此，臣等反覆思之，而未得其由焉。 竊觀前世致旱之事非一矣。 上下皆蒙則旱，近厥德不用則旱，恩德不行則</p>
--	--	---

氣)를 상(傷)하여 재앙을 부를 일이 없는데도 천견(天譴)의 엄함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해보았으나 그 연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옥이 살피건대, 전세(前世)에 한재(旱災)를 초래한 일들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하(上下)가 모두 몽매(蒙昧)하여도 가물었고, 덕 있는 이가 가까이 있는데도 쓰지 않으면 가물었고, 은덕(恩德)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가물었고, 형벌을 함부로 더하여도 가물었고, 갑병(甲兵)을 자주 일으켜도 가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의 반응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며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것처럼 참혹함은 아직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노(魯)나라의 장공(莊公)16489) 이 세 번 누대(樓臺)를 쌓자 가물었고, 한(漢)나라의 혜제(惠帝)는 장안(長安)에 성(城)을 쌓자 가물었고, 위(魏)나라의 명제(明帝)는 궁부(宮府)를 넓히자 가물었고, 수(隋)나라의 문제(文帝)는 궁실(宮室)을 세우자 가물었습니다. 대저 백성이란 편안하게 해야지 수고롭게 해서는 안되며, 후하게 해야지 곤궁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건축의 일터로 몰아넣어 추운 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굶주린 자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원한의 기운이 널리 비등하여 이것이 쌓이고 맺히며 퍼지지 못해서 천지(天地)의 화기(和氣)를 손상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어 <사방의 일들을> 밝게 보시고 밝게 들으시니, 상(上)·하(下)가 모두 몽매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널리 뛰어난 인재를 부르시되 이를 구하기를 마치 목마를 때 물 찾듯 하시니, 덕 있는 이가 가까이 있는 데도 쓰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 번 너그러운 은전(恩典)을 행하시어 백성과 더불어 새롭게 하려 하였으니, 은덕이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죄를 다스림에 있어 의심이 가는 것은 가벼운 쪽으로 처리하여 그 덕택이 백성에게 흡족하였으니, 형벌을 함부로 더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세 방면의 변방이 평온하여 언무수문(偃武修

旱，刑罰妄加則旱，甲兵煩興則旱。然此數者之應，未有如勞民興役之慘也。何者？魯莊公三築臺而致旱，漢惠帝城長安而致旱，魏明帝廣宮府而致旱，隋文帝立宮室而致旱。蓋民者可逸而不可勞也，可厚而不可困也。若一朝驅諸板築之中，使寒者不得衣、飢者不得食，怨氣旁騰，鬱結不伸，所以傷天地之和者，可勝言哉？方今聖明在上而明目達聰，則不可謂上下皆蒙也；旁招俊乂而求之如渴，則不可謂近厥德不用也；屢行寬典而與民更始，則不可謂恩德之不行也；罪疑惟輕而德浹于民，則不可謂刑罰之妄加也；三陲晏然而偃武修文，則不可謂甲兵之煩興也。惟營繕一事，尚有可議者。殿下誠孝通天，奉養兩殿，靡所不至。往歲昌慶宮之役，殿下之所不得已也。然是宮也，非天作地設，而必出於人工，則用民之力，豈云小哉？近歲以來凶荒相連，豆屑麥麩尚不能給，赴役都下者千百爲群，呼耶之聲數里不絕。又於江原、忠清、慶尙等界下旨伐木，州符縣帖急於星火，閭井騷然，其弊不貲。窮山之阻、縣崖之濱，艱苦萬端，因而

文)16490) 하였으니, 갑병(甲兵)을 빈번히 일으켰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선(營繕)하는 한 가지 일만은 아직도 의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하(殿下)의 효성이 하늘에 닿으시어 양전(兩殿)16491) 을 봉양하심이 극진하셨고, 왕년(往年)의 창경궁(昌慶宮)의 역사(役事)는 전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궁궐은 하늘이 만들거나 땅이 세워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공(人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백성의 힘을 쓴 것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근년 이래로 흉황(凶荒)이 계속되어서 콩가루나 밀기울도 오히려 공급할 수 없는데, 서울에 부역(赴役)하는 자가 천 명이나 백 명씩 무리를 지어 ‘영차, 영차!’ 하는 소리가 몇 리(里)까지도 끊어지지 않았고, 또 강원도(江原道)·충청도(忠淸道)·경상도(慶尙道) 등의 지경(地境)에 벌목(伐木)하라는 전지(傳旨)를 내려 주현(州縣)의 재촉하는 부첩(符帖)이 성화(星火)보다도 급하므로 마을과 시정(市井)이 소연(駭然)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의 막다른 곳과 깎아 지른 듯한 벼랑 가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다가 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자도 이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사람이 끌고 물에서는 때로 엮어 그 행렬이 이어져서 그치지 않았는데, 한 번이라도 늦추는 자가 있으면 매를 때리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영세한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어서 더위 속의 장마나 혹심한 추위도 오히려 원망하는데, 더구나 이같은 토목(土木)의 노고(勞苦)이겠습니까?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가뭄을 이르게 함이 여기에서 나왔을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재앙을 만나자 두려워하시어 그 죄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시어, 정전(正殿)을 피하시고 반찬을 감하시는 등 용납할 곳이 없는 것같이 하시고 백성들이 곤궁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음을 염려하면 그 공진(供進)을 덜어 주시며, 백성들이 억울하게 굴종하여 스스로 피하지 못함을 염려하면 그 허물을 벗겨 주시어, 무릇 백성을 너덕하게 해주는 명령과 아랫사람을 구제하는 정사를 거행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 재앙을 없애려는 방법은 다하였

殞命者往往而有。陸輓川筏，項背相望，一有稽緩，鞭撻狼藉。小民至愚，暑雨祁寒，尚且怨咨，況此土木之勞乎？傷和致旱，安知其不出於此也？今殿下遇災而懼，歸罪於己，避殿減膳，若無所容。慮民之窮窶而無以自存，則以蠲其供進焉；慮民之屈抑而無以自伸，則以蕩其瑕垢焉。凡所以裕民之令、恤下之政，無不舉行，其於弭災之方，可謂盡矣。漢和帝幸洛陽理冤囚，行未還而天乃大雨；宋仁宗親幸禱雨，而少時雨至。以和帝、仁宗之爲君，一念之善，足以上徹窮昊而玄貺立臻。天人感應之妙，如此其昭昭。殿下閱雨之誠，雖湯之六責，無以加矣。然天之所應殿下者，反不逮於二主，何也？蓋憂勤惕慮，欲銷災變，唯殿下一身；而今之所謂公卿大夫以至百僚庶士，奉公者少而曠職者多。如此而欲致嘉應，不亦難乎？夫以四海之廣、萬機之煩，非一人之所能獨理。故設官分職，以居賢能。官雖有大小，職雖有尊卑，其所以食天祿而治天職則同也。乘田，委官之最小而職之最卑者也，而必曰‘會計當而牛羊壯長’者，不

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漢)나라 화제(和帝)가 낙양(洛陽)에 거둥하여 억울한 죄수를 다스리니, 그 행차가 채 돌아오지도 않아서 하늘이 큰 비를 내렸으며, 송(宋)나라 인종(仁宗)은 친히 거둥하여 비를 빌었더니 얼마 안되어 비가 왔습니다. 화제(和帝)와 인종(仁宗) 같은 임금의 한 번만 착한 마음을 가져도 그 정성이 족히 하늘에 통하여 현묘한 은택이 즉시 이르렀으니, 하늘과 사람 사이의 감응(感應)의 신묘함은 이같이 소소(昭昭)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를 바라는 정성을 비록 탕(湯)임금의 육책(六責)16492) 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전하에게 응하는 바는 도리어 두 임금에도 미치지 못함은 어찌 된 것이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근심하고 삼가고 두려워하여 재변(災變)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심은 오직 전하 한 몸일 뿐이고, 현재의 이른바 공경 대부(公卿大夫)로부터 백료 서사(百僚庶士)에 이르기까지 봉공(奉公)하는 자는 적고 직책을 게을리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 좋은 반응이 이르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사해(四海)의 넓은 땅과 만기(萬機)의 번거로운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능히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직을 설치하고 직임을 나누어서 어질고 능한 이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관직에 비록 크고 작음이 있고 직임에 비록 높고 낮음이 있으나, 천록(天祿)을 먹고 천직(天職)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승전(乘田)16493) · 위리(委吏)16494) 는 가장 작고 가장 낮은 벼슬인데도 반드시 ‘회계(會計)는 맞아야 하고, 소와 양은 잘 자라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천록을 먹으면서 천직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요즈음 관직을 태만히 하는 것은 이루 다 논할 수 없으나, 한두 가지만을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한성부(漢城府)와 장례원(掌隸院)은 송사(訟詞)를 다스려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인데도 그 낭관(郎官)이 된 자가 혹 그 책임자가 못되어서 사리(事理)에 어두워 옳고 그름을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欲其食天祿而曠天職也。 今之曠官，不可盡論， 將舉其一二言之。 漢城府、掌隸院，所以聽辭訟而伸冤抑也。 爲其郎者或非其人， 闇於事理而紊亂是非者有之， 淹延歲月而坐待遞遷者有之。 司諫院，所以掌諫諍者也， 而或有含默不言者。 翊衛司，所以護儲位者也， 率多庸劣無識者。 內而列於朝著者既如此， 則彼遐方遠州任(守) [字] 牧之責者，豈無瀆于貨財而培克病民者乎？ 豈無盛飾廚傳而要譽過客者乎？ 豈無交通權貴而饋遺苞苴者乎？ 豈無罷軟無能而委諸猾吏者乎？ 然則其不得政平訟理，而田里多愁嘆之聲必矣。 監司，專制方面，黜陟守宰者也。 得其人，則一方蒙其利；不得其人，則一方受其害。 故國家令政府、六曹、臺諫薦其人， 所以重其選也。 今者不以薦引，不由銓主，而舉黜陟之柄， 拍之不學無識之人，則彼安能激濁揚清、興利除害，而使吾民受其賜哉？ 又有大於此者， 六曹卽周之六卿也。 今之居是職者，或由醫術，或由戚里，瑣瑣庸流，雜然竝進，據非其地，不厭人望。 欲其居四民而時地利，其可得

하면 세월을 천연(遷延)시키며 앉아서 벼슬이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자도 있습니다. 사간원(司諫院)은 간쟁(諫諍)을 맡은 곳인데도 혹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익위사(翼衛司)는 저위(儲位)16495) 를 호위하는 곳인데도 용렬하고 무식한 자가 거의 많습니다. 안으로 조정(朝廷)의 반열(班列)에 있는 자가 이미 이려한데, 먼 지방 먼 고을에서 자목(字牧)의 책임을 맡은 자야 어찌 재물을 탐하여 가혹(苛酷)하게 거두어들여서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자가 없겠으며, 어찌 주방(廚房)과 역전(驛傳)을 성대히 꾸며서 과객(過客)의 칭예(稱譽)를 구하는 자가 없겠으며, 어찌 권귀(權貴)와 교통하여 뇌물을 주는 자가 없겠으며, 어찌 나약하고 무능하여 일을 간활(奸猾)한 아전에게 맡기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사(政事)를 공평하게 하거나 옥송(獄訟)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여 전리(田里)에서는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監司)는 한 방면(方面)을 전제(專制)하고 수재(守宰)를 출척(黜陟)하는 자이니, 적임자를 얻게 되면 한 방면이 그 혜택을 받고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한 방면이 그 해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적임자를 천거하게 하는 것은 그 인선(人選)을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거도 하지 않고 진주(銓注)16496) 도 거치지 않고서 출척(黜陟)의 권한을 불학 무식(不學無識)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그가 어찌 능히 격탁 양청(激濁揚清)16497) 하여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弊害)를 제거하여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은택(恩澤)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육조(六曹)는 곧 주(周)나라의 육경(六卿)과 같은 것인데, 현재 이 관직에 있는 자가 혹은 의술(醫術)로써 혹은 척리(戚里)로서 보잘것없는 용렬한 무리들이 마구 섞여 나와 당치도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인망(人望)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민(四民)16498) 의 위에 있으면서 지리(地利)16499) 를 알맞게 하고자 한 들 될

乎? 又有大於此者, 政府, 具瞻之地也。 居具瞻之地者, 有公焉, 有孤焉。 論道經邦、燮理陰陽者, 公之職也; 貳公弘化、寅亮天地者, 孤之職也。 居其職者, 當國耳忘家, 公耳忘私。 衰職有闕, 則思所以補之; 陰陽未調, 則思所以和之; 賢才不用, 則思所以進之; 奸邪未退, 則思所以去之。 夙夜匪躬, 以副其責之不暇, 何暇廣營產業, 爲妻子之計乎? 昔公儀子之相魯也, 去婦拔園葵, 是不與民爭利也; 王戎之相晉也, 執牙籌續李核, 是奪民而專利也。 後世聞公儀之名者, 無不警慕; 聞王戎之名者, 無不醜詆。 爲人相者, 可不戒哉? 今也位冠廊廟與夫參贊大政者, 未聞進一嘉謀以輔主德, 徒以鉅富甲于當時, 恐非公儀子拔園葵之義也。 若曰身爲卿相, 家享勳封, 致此不難, 則是大不然。 昔季文子相魯三世, 宜可富也, 而不蓄私積, 無食粟之馬, 無衣帛之妾。 人臣苟能先公後私而不營財產, 則雖貴極卿相, 而斷無自富之理矣。 臣等伏願殿下俯採瞽言, 察其賢否而進退之, 以答天譴, 不勝幸甚。 臣等學不能探義理之源以裨聖德,

수 있겠습니까?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정부(議政府)는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는 공(公)도 있고 고(孤)도 있는데, 도(道)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陰陽)의 변화를 조화시키는 것은 공의 직책이고, 공을 도와 교화(教化)를 널리 퍼서 천지(天地)의 도(道)를 밝히는 것은 고의 직책입니다. 그 직책에 있는 자는 마땅히 나라만을 생각하고 집은 잊으며 공(公)만을 생각하고 사(私)를 잊어서 곤직(袞職)이 비게 되면 보충할 도리를 생각하고, 음양이 고르지 않으면 조화(調和)시킬 것을 생각하며, 현명한 인재가 쓰여지지 않았으면 등용할 것을 생각하고, 간사한 자가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를 물리칠 것을 생각하므로, 밤낮으로 자기 몸은 돌아보지 않고 그 책임에 충실하기에도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느 여가에 재산을 널리 경영하여 처자를 위한 계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공의자(公儀子)가 노(魯)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적에 가부(家婦)를 내어보내고 채소밭의 아욱을 뽑아 버렸으니, 16500) 이는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않으려는 것이었고, 왕융(王戎)이 진(晉)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적에는 아주(牙籌) 16501) 를 가지고 오얏의 씨를 뚫었으니, 16502) 이는 백성의 것을 빼앗아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것입니다. 후세(後世)에서 공의자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공경하여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고, 왕융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추악하게 욕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재상이 된 자는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정(朝廷)에서 으뜸의 지위에 있는 자와 대정(大政)을 돕고 있는 자로서 한 가지 좋은 계책이라도 진언(進言)하여 임금의 덕(德)을 보필(輔弼)하였다 함을 아직 듣지 못하였고 한갓 거부(鉅富)로서 당시에 제일이 되고 있으니, 이는 아마도 공의자가 채소밭의 아욱을 뽑은 이념(理念)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 자신이 경상(卿相)이 되고 집이 훈봉(勳封)을 누리게 되면 그 정도 이루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옛날에 계문자(季文子)는 3대를 노(魯)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니, 의당 부유(富裕)할 수 있을 것인데 사사로이

又未能究治亂之迹以備顧問，其爲曠職，莫臣等若也。而猥以口舌言人過失，非惟愧忤於心，祇速物議。伏惟殿下更擇賢能，以代臣等之職，於聖德必有裨益。

命示議政府及領敦寧以上。

	<p>축적(蓄積)을 하지 아니하여 곡식을 먹는 말[馬]이 없고 비단옷을 입는 첩(妾)이 없었습니다. 인신(人臣)으로서 진실로 공(公)을 먼저 하고 사(私)를 뒤로 하며 재산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비록 지극히 귀한 경상(卿相)의 지위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단연코 스스로 부유해질 리는 없는 것입니다.</p> <p>신 등은 삼가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눈먼 자의 말을 굽어 채택하셔서, 그 현부(賢否)를 살핀 다음 진퇴(進退)시키어 천견(天譴)에 답하신다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신 등은 배움이 능히 의리(義理)의 근원을 찾아서 성덕(聖德)을 비보(裨補)하지 못하였고, 또 치란(治亂)의 자취를 강구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지 못하였으니,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함이 신 등과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람되게 구설(口舌)로 남의 과실을 말하니, 이는 마음 속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물의(物議)를 초래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다시 가려 신 등의 직임을 대신하게 하신다면, 성덕에 반드시 반드시 비익(裨益)됨이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도록 하였다.</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4일 (임자) 1번째기사</p>	<p>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아뢰기를, “양주(楊州)에 강도(強盜)가 생겨 백성의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쏘아 죽이고서 가재(家財)를 약탈한다는 말을 듣고 신이 7, 8인을 잡아 양주에 가두었으나, 그 나머지 건장한 자는 궁시(弓矢)를 몸에 지니고 숲 속으로 도망해 들어갔으니, 신은 그들의 장난을 두려워합니다. 마땅히 군졸과 병기를 더 주시어 그 여당(餘黨)을 모두 체포하게 해 주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이번 기회를 놓치고 체포하지 않는다면 드디어 큰 도당(徒黨)을 이루어 장영기(張永奇)16503와 같이 된다면 근심이 적지 않을 것이다.”</p> <p>하고, 즉시 이양생이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고, 조관(朝官)을 보내어 갇힌 도</p>	<p>○壬子/捕盜將李陽生來啓曰：“聞楊州有強盜，燒人屋廬，射殺人口，掠奪家財，臣捕得七八人，囚楊州。其餘健者，帶弓矢逃入山林，臣恐其難當。請加給軍卒與甲，盡捕餘黨。”傳曰：“失今不捕，遂成大黨如張永奇，則爲患不貲矣。卽依陽生所啓施行，遣朝官鞫被囚之盜。”又傳曰：“備荒雜食採取之民散在山林者，恐或妄捕囚之，其令陽生審察之。”</p>

	<p>적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흉년에 대비하려고 잡식(雜食)을 채취(採取)하는 백성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혹시 함부로 잡아 가둘까 두렵다. 이양생으로 하여금 밝게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4일 (임자) 3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처량(安處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봉선사(奉先寺) 주지승(住持僧) 학조(學祖)가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절의 곡식을 동원하지 말기를 청하였다고 하는데, 신 등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승정원은 재상(宰相)이 아니면 들어가서 일을 아릴 수 없는 곳인데, 학조는 한낱 머리깎은 중으로서 어찌 감히 승정원에 들어가 일을 아뢰단 말입니까? 만약 말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해사(該司)에 고할 것이고, 그리고 도 뜻을 펴지 못할 것 같으면 상언(上言)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중은 감히 승정원에 들어갔고 또 버젓이 빈청(賓廳)에 앉아 음식을 먹었으니, 국문(鞫問)하여 죄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그대로 봉(封)하여 백성을 진휼(賑恤)하도록 하소서. 또 승지(承旨)들이 중을 접대하며 영외(楹外)에 앉게 한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여 접대함이 잘못되었습니다.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중은 본래 사족(士族)의 자손으로, 고금(古今)의 사리(事理)를 대강 알고 있으니, 범상한 중이 아니므로 낮추어 대우하여서는 안된다. 세조(世祖)께서 항상 승정원으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였고 은총이 매우 두터웠었다. 선왕(先王)이 기르던 것은 비록 견마(犬馬)라 하더라도 오히려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인데, 더구나 이 중은 선왕께서 지극히 공경한 자가 아니던가? 중도 내 백성인데 곡식을 주어 구황(救荒)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는가? 봉선사는 선왕의</p>	<p>○弘文館副提學安處良等來啓曰：“今聞奉先寺住持僧學祖詣政院，請勿動寺穀，臣等以爲不可。政院，非宰相不得入啓事，學祖乃一髡首也，安敢入政院啓事乎？若有可言事，則當告該司；如不得伸，上言可矣。此僧敢入政院，又頑然坐食賓廳，請鞫問罪之，其穀仍封賑民。且承旨等接待僧人，令坐楹外，亦不可。”承旨等啓曰：“臣等未及計較，接待失宜，請待罪。”傳曰：“此僧本土族子孫，粗知古今事理，非庸僧也，待之不可卑下也。世祖常令政院待之，恩眷甚厚。先王所畜，雖犬馬猶且愛敬，況此僧先王致敬者乎？僧亦吾民也，給穀救荒，豈不可乎？奉先寺，先王眞殿所在，常時禁火及掃除事繁，居僧不可少也。若無穀可食，則寺將空矣，兩大妃豈不軫慮？予亦安心乎？況此穀乃眞熹王后所賜，不可奪也。”仍命承旨等勿待罪。處良、金訥、昌臣啓曰：“雖先王所行之事，其</p>

	<p>진전(眞殿)이 있는 곳으로서 항상 화기(火氣)를 금하고 소제(掃除)하는 일이 긴요(緊要)하므로 거처하는 중이 적어서는 안된다. 만약 먹을 곡식이 없다면 질이 장차 비게 될 것이니, 두 분 대비(大妃)께서 어찌 진념(軫念)하지 않으시며 나 또한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더구나 이 곡식은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내리신 것이니, 빼앗을 수 없다.”</p> <p>하고, 이어 승지 등에게 명하여 대죄하지 말라고 하였다. 안처량(安處良)·김흔(金訢)·이창신(李昌臣) 등이 아뢰기를,</p> <p>“비록 선왕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만일 그릇된 것이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진전(眞殿)은 비록 승도(僧徒)가 없더라도 참봉(參奉)과 수호군(守護軍)으로 지키기에 족합니다. 그리고 중과 백성은 또한 크게 경중(輕重)이 있습니다. 백성은 공부(貢賦)16504) 를 바쳐서 국용(國用)을 넉넉하게 하고, 변경(邊境)에 일이 있으면 창을 잡고 이를 막습니다. 옛글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아니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이것이 백성을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중은 인륜(人倫)을 멸시(蔑視)하여 버리고 공부(貢賦)를 피하여 놀고 먹으니, 천지 사이에 한낱 좀벌레와 같을 뿐입니다. 비록 죽게 하여서는 안되겠지만, 그 진제(賑濟)함에 있어서 먼저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도(僧徒)는 곡식을 많이 쌓아 놓고서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고 있는데, 우리 백성은 술지게미나 겨도 배불리 먹지 못하여 장차 굶어죽게 될 형편이니, 신 등은 중의 곡식을 빼앗아 백성의 굶주림을 구제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그대들의 말은 어찌 그렇게도 편벽되냐? 임금은 백성에 대하여 죽는 자를 살리려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려고 한다. 중도 사람인데, 장차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들만을 구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나를 보필(輔弼)하는 말이</p>	<p>事若非，則不可從也。眞殿雖無僧徒，參奉、守護軍足以守之矣。僧之於民，亦大有輕重。民則供貢賦，裕國用，邊境有事，則執戈以禦之。古云：‘民惟邦本，本固邦寧。’非民則社稷宗廟，何以守之？此民之所以重也。僧則蔑棄人倫，逃賦遊食，天地間一蠹耳。雖不可殺，其於賑濟，亦不可先施也。且僧徒多積穀粟，煖衣飽食；吾民不厭糟糠，將爲餓殍。臣等謂奪僧之穀，賑民之飢可也。”傳曰：“爾等之言，何其褊也？君之於民，死者欲生之，飢者欲賑之。僧亦人也，將至餓死，則獨不救之乎？此非輔我之言也。”處良等啓曰：“以王者一視同仁之心觀之，僧亦人命，固當賑卹；以國家之政言之，民爲重，僧爲輕。”傳曰：“爾等之言，豈可謂補闕乎？古之王者鑿池得朽骨而埋之，人謂之澤及朽骨，況此生人乎？若以爾等爲賑濟使，則必忍視僧人之餓死，而只救飢民也。”處良又啓曰：“臣等非偏疾僧而欲其死也，專以輕重先後而言也。”傳曰：“當議可否於大臣而行之。”竟留中不行。</p>
--	--	---

	<p>아니다.” 하였다. 안처량 등이 아뢰기를, “왕자(王者)의 일시동인(一視同仁)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중도 인명(人命)이니 진실로 진휼(賑卹)함이 마땅하지만, 나라의 정사를 가지고 말한다면 백성이 중하고 중은 경(輕)한 쪽이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을 어찌 임금의 덕이 부족함을 돕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옛날에 왕이 못을 파다가 나온 썩은 뼈를 묻어 주었는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은택이 썩은 뼈에도 미쳤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들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만약 그대들을 진제사(賑濟使)로 삼는다면 반드시 중들의 굶어 죽는 것은 그냥 보아 넘기고 다만 기민(飢民)만을 구제할 것이다.” 하였다. 안처량이 또 아뢰기를, “신 등이 편벽되게 중을 미워하여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경중(輕重)과 선후(先後)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그 가부(可否)를 의논하여 행하겠다.” 하였으나, 마침내 머물러 두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승지(承旨)는 옛날의 납언(納言)16505) 이니, 부주(敷奏)16506) 하고 복역(復逆)16507) 함에 반드시 자세히 살펴 도리(道理)에 합당한 뒤에 이를 출납하여야 하는 것이다. 머리 깎은 자가 감히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무리하게 계달하였는데도 권건(權健)의 무리가 이를 맞아 자리에 앉히고 머리를 숙여 그 말에 따라 입계(入啓)하였으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다 하겠는가? 물론(物論)이 이를 그르게 여겼다. 학조(學祖)는 세조 때에, 신미(信眉)·학열(學悅)과 더불어 간특(奸慝)함을 일삼아 백성에게 해를 끼쳤으며, 또 그 음험(陰險)한 계교를 마음대로 하여 그 아우 영전(永銓) 등을 모두 현</p>	<p>【史臣曰：“承旨卽古之納言也。敷奏復逆必審之，既允而後出納之。髡首敢以私事冒啓，而權健等迎之于坐，俛首聽言以入，豈惟允云乎？物論非之。學祖在世祖朝，與信眉、學悅同作奸慝，貽病于民。且肆其陰計，以其弟永銓等皆爲顯官。其母家在安東，取良家女爲妾生子，以金山直指寺爲私利，蓄積鉅萬，多聚其徒，自奉甚侈。”】</p>
--	--	---

	<p>관(顯官)이 되게 하였고, 어미의 집이 안동(安東)에 있었는데 그 곳 양가(良家)의 딸에게 장가들어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금산(金山) 직지사(直指寺)를 자기 개인 소유의 절로 만들어 축적(蓄積)이 거만(鉅萬)에 이르렀고, 도당을 많이 모아 스스로 봉양하기를 매우 사치스럽게 하였다.” 하였다.</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6일 (갑인) 2번째기사</p>	<p>전일(前日)에 어서(御書)를 내려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민간(民間)의 이해(利害)를 진달(陳達)하게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사사(寺社)의 전세(田稅)는 승려(僧侶)가 거둘 때에 혹 불유(佛油)16519) , 혹 소추(掃箒)16520) , 혹 석자(席子)16521) , 혹 각력가(脚力價)16522) 등의 명칭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거두어 민폐(民弊)가 적지 않습니다.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이 있는 곳의 사찰(寺刹) 이외에는 영구히 혁파(革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전세(田稅)로 거둔 것은 절의 중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인데도 주지(住持)와 시봉승(侍奉僧)만이 사사로이 저축(儲蓄)하여 쓰고 있으니, 더욱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이미 견감(蠲減)하였으니, 다시 감할 수 없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사축서(司畜署)에서 소와 돼지를 기르기 위하여 쓰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그 수(數)를 줄이기를 청합니다. 귀후서(歸厚署)에 공납(貢納)하는 판목(板木)은 그 폐해(弊害)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본서(本署)에 있는 포화(布貨)로 수상 무역(水上貿易)을 행하되 사무역(私貿易)의 예(例)와 같이 하고, 또 1, 2년에 한(限)하여 공목(貢木)을 정지하게 하소서. 와서(瓦署)의 토목(土木)도 평소에 저축(儲蓄)한 것이 적지 않으니, 1, 2년을 한하도록 하여 공납(貢納)을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초서피(貂鼠皮)는 영안도(永安道)에</p>	

	<p>서 준비하여 바치는 것인데, 올해에 본도의 한황(旱荒)이 더욱 심하니, 임시로 공납을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군기감(軍器監)의 방화(放火)에 쓰는 백후지(白厚紙)는 평소에 저축한 것이 여유가 있으니, 2, 3년을 한도로 하여 견감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사축서에서 소와 말을 기르는 것은 중국 사신(使臣)을 위한 것이다. 중국 사신이 나오는 것이 때가 있는데 항상 기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중국 사신이 올 때에 임박하여 대비(對備)하여도 늦지 않으며, 돼지도 수효를 줄이도록 하라. 와서에 토목을 바치는 병오년(16523) 까지 귀후서에 공납하는 판목(板木)은 정미년(16524) 까지 한도로 하여 견감하고, 초서피는 쓰는 곳이 많고, 방화에 쓰는 후백지는 변경(邊境)에서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니, 감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6일 (갑인) 3번째기사</p>	<p>명하여 의정부(議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 홍문관에서 상소한 일을 또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 처마 밑에 나아가 한명회(韓明澮)·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파(李坡)·김겸광(金謙光) 및 홍문관의 관원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올해의 한재는 하삼도(下三道)가 더욱 심하다. 기도(祈禱)가 응험(應驗)이 없음은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한 것이니, 나의 부덕(不德)한 소치(所致)이지, 어찌 의정부에 관계되는 일이겠는가? 나는 의심하지 않으니, 경 등은 혐의(嫌疑)하지 말도록 하라.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不肖)한 자를 물리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 홍문관의 소(疏) 안에 초록(抄錄)한 사람들의 범한 허물을, 경 등은 각각 진술하라. 여러 사람의 말이 같은 연후에야 출척(黜陟)을 행할 수 있다.”</p> <p>하였는데, 홍응 등이 아뢰기를,</p>	<p>○命召議政府、領敦寧以上，又議弘文館上疏事。上御宣政殿簷下，引見韓明澮、洪應、李克培、盧思愼、尹壕、李坡、金謙光、弘文館員。上曰：</p> <p>“今年旱災，下三道尤甚，祈禱無應，誠未格天，是予不德之致，豈關於政府乎？予不疑卿等，勿懷嫌。凡爲國之道，莫急於用賢退不肖。弘文館疏內抄錄人所犯過失，卿等其各陳之。衆言同然後，可行黜陟。”洪應等啓曰：</p> <p>“臣等未得細知此輩過惡，令弘文館各</p>

	<p>“신 등은 이 무리들의 허물과 악행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각각 그 이름 밑에 기록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게 하라.”</p> <p>하였다. 홍문관에서 글로 써서 올리기를,</p> <p>“장례원 사의(掌隸院司議) 최자축(崔自丑)·유종수(柳宗琇)·정겸(鄭謙)과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송환중(宋環宗)은 사리(事理)에 어둡고, 정언(正言) 안진생(安晉生)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며, 익위(翊衛) 이승경(李崇經), 익찬(翊贊) 김제(金濟), 위솔(衛率) 정의(鄭依)·현준(玄俊)·정부(鄭溥), 시직(侍直) 윤운손(尹雲孫), 세마(洗馬) 유집(柳輯)은 용렬하고 무능하며, 태안 군수(泰安郡守) 이종경(李宗慶)·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중선(李仲善)·광주 판관(光州判官) 성준(成準)·무안현감(務安縣監) 유천(柳旻)·평양 판관(平壤判官) 이식(李植)·양덕 현감(陽德縣監) 탁경지(卓敬志)·하동 현감(河東縣監) 정내언(鄭來彦)은 탐오(貪汚)하고, 강서 현령(江西縣令) 정인손(鄭仁孫)·강음 현감(江陰縣監) 윤소보(尹紹甫)·진천 현감(鎭川縣監) 양전(梁甸)은 학문이 없고 책략도 없으며, 청안 현감(淸安縣監) 경수(慶修)·안음 현감(安陰縣監) 이서손(李徐孫)·합천 군수(陝川郡守) 허훈(許薰)·신계 현령(新溪縣令) 허창(許菑)은 연약(軟弱) 무능하고, 우후(虞候) 전세정(錢世禎)은 광망(狂妄)하고, 조익희(趙益禧)는 용렬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탐오(貪汚)한 일은 상세히 알기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알았는가?”</p> <p>하니, 김흔(金訢)이 아뢰기를,</p> <p>“신 등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한 사람을 징계하여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를 가려내어 징계하는 것이 좋겠다.”</p>	<p>於名下錄啓何如?” 上曰: “可。” 弘文館書之(白) [曰] 掌隸院司議崔自丑·柳宗琇·鄭謙、漢城府參軍宋環宗, 暗於事理。 正言安晉生, 含默不言。 翊衛李崇經、翊贊金濟、衛率鄭依·玄俊·鄭溥、侍直尹雲孫、洗馬柳輯, 庸劣無能。 泰〈安〉郡守李宗慶、陽智縣監李仲善、光州判官成準、務安縣監柳旻、平壤判官李植、陽德縣監卓敬志、河東縣監鄭來彦, 貪汙。 江西縣令鄭仁孫、江陰縣監尹紹甫、鎭川縣監梁甸, 不學無術。 淸安縣監慶修、安陰縣監李徐孫、陝川郡守許薰、新溪縣令許菑, 罷軟無能。 虞候錢世禎狂妄, 趙益禧庸劣。” 上曰: “貪汙之事, 詳知爲難, 何以知之?” 金訢啓曰: “臣等非親見, 有所聞也。” 上曰: “懲一人而千萬人懼, 其中尤甚者, 揀出懲之可也。” 洪應啓曰: “安晉生性本寡言, 儕輩知之。” 尹壕啓曰: “此輩若皆有罪, 則貶黜之可也; 如其不然, 冤抑不少, 是亦召早之一事也。” 奇禛曰: “如此之輩, 爲大臣所沮, 不能懲之, 則何時而懲乎? 今方救荒, 守令改差, 雖若未便。 然貪吏在</p>
--	---	---

	<p>하였다. 홍응(洪應)은 아뢰기를, “안진생은 그 성품이 본래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을 제배(濟輩)가 알고 있습니다.”</p> <p>하고, 윤호(尹壕)는 아뢰기를, “이들이 만약 모두 죄가 있다면 다같이 폄출(貶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적지 아니할 것이니, 또한 가뭄을 초래한 한 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p> <p>하였다. 기찬(奇禫)이 아뢰기를, “이같은 무리를 대신(大臣)의 저지(沮止)로 인하여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징계되겠습니까? 지금 한창 구황(救荒)하는 중이므로, 수령(守令)을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탐오한 관리가 그대로 자리에 있게 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弊害)가 클 것입니다.”</p> <p>하고, 윤호(尹壕)는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말한 것이 옳습니다. 다만 이식은 전에 수령이 되었을 적에 정치를 잘한다는 성예(聲譽)가 많이 있었으며, 유집(柳輯)은 생원 출신(生員出身)이니 역시 쓸 만합니다.”</p> <p>하고, 홍응은 아뢰기를, “유천은 문(文)에도 능하고 무(武)에도 능하며, 유종수는 송사를 잘 다스리기로 이름이 있으니, 모두 쓸 만할 사람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사리에 어둡다고 하였는가?”</p> <p>하고, 다시 홍문관에 묻기를,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무엇으로 알았는가?”</p> <p>하니, 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충청 도사(忠淸都事)가 되어서 알았고, 그 밖에도 들은 바가 있</p>	<p>任，則貽弊於民多矣。”尹壕曰：“弘文館所言是矣。但李埴前爲守令，多有政聲；柳輯生員出身，亦可用也。”洪應曰：“柳旻能文能武，柳宗琇號爲能聽訟，皆可人也。”上曰：“然則何以曰暗於事理乎？”又問弘文館曰：“守令賢否，何以知之？”閔師騫啓曰：“臣曾爲忠淸都事知之，其他有所聞。錢世禎狂妄無識，不合虞候之任。”尹壕啓曰：“前日已行罷黜，今又如此，恐衆心未安。”上曰：“得人爲難，所用安得一一皆賢？然若無黜陟，官吏何所勸懲？今弘文館歷陳守令貪汙，而宰相何無所聞乎？”應曰：“臣等無所聞矣。陽智縣監則臣爲巡察使，聞其務廣屯田，以致多積，貪汙則未之聞也。”上曰：“守令赴任時，已講《大典》，非不學也。弘文館何以言不學？其暗於事理崔自丑、鄭謙、宋環宗，改差可也。”李昌臣啓曰：“守令與京官不同。京官則遇事，與諸僚議而行之；守令獨治一邑，無與可議，非賢能不可，尤所當擇也。”上曰：“被論守令，必不盡心供職，改差可也。李仲善、安晉生，政丞言其無過，勿改何如？”</p>
--	---	---

	<p>습니다. 전세정(錢世禎)은 광망(狂妄)하고 무식하여 우후의 직임에 맞지 않습니다.”</p> <p>하고, 윤호는 아뢰기를, “전일(前日)에 이미 파출(罷黜)을 행하였는데, 이제 또 이같이 한다면 아마도 못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재를 얻기가 어려운 것인데, 쓰는 사람이 어찌 일일이 다 어질겠는가? 그러나 만약 출척이 없다면 관리들은 어떻게 권장하고 징계하겠는가? 이제 홍문관이 수령의 탐오를 역력히 진달하였는데, 재상(宰相)들은 어찌 들은 바가 없겠는가?”</p> <p>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신 등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지 현감은 신이 순찰사(巡察使)가 되었을 때 둔전(屯田)을 넓히는 데 힘써 축적(蓄積)을 많이 하였다고 들었을 뿐 탐오하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부임(赴任)할 때에 이미 《대전(大典)》을 익혔으니,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다. 홍문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가? 그 사리에 어둡다는 최자축·정겸·송환중은 고쳐 임명하여도 좋다.”</p> <p>하였다.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수령은 경관(京官)과 같지 않습니다. 경관은 일을 당하면 여러 동료들과 의논하여 행하지만, 수령은 혼자 한 고을을 다스리고 함께 의논할 자가 없으므로 어질고 능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 더욱 선택하여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논핵(論劾)을 당한 수령은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직무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것이니, 바꾸어 임명함이 옳다. 이종선과 안진생은 정승이 그 허물이 없음을</p>	<p>昌臣啓曰：“安晉生雖處心謹慎，不合言官矣。”上曰：“換差可也。被論守令，今若改遞，須擇賢者代之。”克培曰：“請於六曹郎廳中選用。”上曰：“然。”安處良啓曰：“古人云：‘左右前後罔非正人。’ 翊衛司員亦當改差。”上曰：“換差可也。”處良又啓曰：“被論守令，既命改差，而監司則勿改，救荒任重，恐未便。”上曰：“尹垓前爲青松府使時，遣暗行撻奸，一無錯失。監司、守令，所任相近，尹垓雖無薦舉，亦可用也。爾等以無薦舉爲言，若用人必吏曹爲之，則人君何所爲乎？古人有舉其子者，其人果賢，則何嫌於親乎？且權攢心行可取，若以業醫爲賤，則人誰爲之醫術？凡爲人子者，所當知也。攢雖非科舉出身，宰相安能盡用文臣乎？”處良、從濩等啓曰：“三公、六卿之任至重，豈可以非其人而冒居其位乎？”上曰：“領議政爲相已久，屢封功臣，多有積貯宜矣，如公孫弘之布被，亦非也。今此旱災，非由相公，乃予之過也。予舍公卿，安能獨治乎？”處良曰：“營產富屋，非宰相事，季文相魯，無衣帛之妾、食粟</p>
--	--	---

	<p>말하니, 고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창신이 아뢰기를, “안진생은 비록 그 마음가짐이 근신(謹慎)하나 언관(言官)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논핵을 당한 수령을 이제 만약 체직시킨다면 모름지기 어진 자를 가려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청컨대 육조(六曹)의 낭청(郎廳) 중에서 가려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안처량(安處良)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진후 좌우에 바른 사람이 아닌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 다. 익위사의 관원(官員)도 마땅히 체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안처량이 또 아뢰기를, “논핵을 당한 수령을 이미 체직하라고 명하였으니, 감사는 바꾸지 마소서. 구 황(救荒)의 책임이 막중(莫重)하니, 아마도 온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윤해가 전에 청송 부사(靑松府使)가 되었을 때에 암행 어사(暗行御史)를 보 내어 적간(擿奸)하였으나, 한 가지라도 차착(差錯)이나 과실(過失)이 없었다. 감사와 수령은 그 소임(所任)이 서로 비슷한 것이다. 윤해는 비록 천거(薦舉) 는 없었지만 또한 쓸 만한 사람이다. 그대들은 천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 지만, 만약 사람을 쓰는 것을 반드시 이조(吏曹)에서 한다면 임금은 무엇을</p>	<p>之馬。凡爲相者，當以此爲法。” 昌 臣曰：“鄭昌孫累代功臣，然而不富。 古人云：‘爲仁不富。’ 奇禱曰：“營產 之人，如此穀貴時，與民爭利，以穀貿 布，乘時射利，無所不爲矣。” 趙之瑞 曰：“臣等非以弼商爲當廢棄不用也。 三公則燮理陰陽，任重責大，不可叨 居。今改之而封君足矣。尹垓不合 重任，守令聞此論駁之言，則亦不畏 敬，竝改差可也。” 昌臣曰：“左右皆 曰賢，然後用之可也。而今尹垓既無 薦舉，又無學術，如此救荒事多之時， 豈能獨辦乎？還試京職，如其可也則用 之，未爲晚也。” 上曰：“救荒諸事， 垓時方措置，知其本末，未可改也。 且以論駁而改差，則有妨於後用。” 【史臣曰：“奇禱之攻貪吏，可謂切 矣。曰貪者在位，則貽弊於民；曰無 恥之徒，宜速懲之；曰營產之人，無所 不爲。大而公卿、小而守令之事，無 所忌避而爲之詆毀。當時聞之者，咸 以爲禱也廉潔自持，疾惡如讎，眞無負 於鑿坡之清選矣。未幾出補靈光郡守， 恣行貪虐，日以掊克爲事，盜官財，輸</p>
--	--	---

	<p>한단 말인가? 옛사람에 그 아들을 천거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과연 현명하다면 어찌 아버지라 하여 혐의하겠는가? 그리고 권찬(權攢)은 마음과 행실이 취할 만한데, 만약 의술(醫術)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천(賤)하다고 여긴다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의술을 하겠는가? 남의 자식 된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권찬이 비록 과거 출신(科擧出身)은 아니나 재상을 어찌 모두 문신(文臣)만을 쓰겠는가?”</p> <p>하였다. 안처량(安處良)·신종호(申從濩) 등이 아뢰기를,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의 임무가 지극히 중한데, 어찌 그 적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써 모람되게 그 자리에 있게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의정은 상신(相臣)이 된 지 이미 오래이고 여러 번 공신(功臣)에 봉하여졌으니, 축적(蓄積)이 많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손홍(公孫弘)의 베이불 같은 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이번 한재는 상공(相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곧 나의 허물이다. 내가 공경(公卿)을 버리고서 어찌 홀로 다스리겠는가?”</p> <p>하였다. 안처량이 말하기를, “재산을 경영하여 집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재상의 일이 아닙니다. 계문자(季文子)는 노(魯)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나 비단옷을 입은 첩(妾)과 곡식을 먹는 말[馬]이 없었으니, 무릇 재상 된 자는 마땅히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이창신은 말하기를, “정창손(鄭昌孫)은 여러 대를 두고 공신(功臣)이 되었으나 부유하지 아니하였으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질게 된다면 부유하지 못하다.’ 하였습니다.”</p> <p>하고, 기찬(奇禛)이 말하기를, “재산을 경영하는 사람은 지금같이 곡식이 귀할 때에 백성과 더불어 이(利)를 다투면서 곡식을 포목(布木)과 바꾸어 때를 틈타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없</p>	<p>京家，水陸不絕焉。同時爲宰於同道者，益山郡守李季通、金堤郡守崔潘，皆出身文地，歷任臺諫，而一朝爲外吏，廉恥掃地。時人目之曰‘湖南三傑’，而又表禛爲三傑中之傑也。厥後事露，爲臺官所劾；季通被拷掠，成疾而死，潘錄贓案，竄身待死，其禍慘矣。禛雖苟免臺劾，亦未逾年而死，天道豈不昭昭哉？世之外示廉恥、內懷貪墨，而好欺世大言者，宜亦有所戒云。”】</p>
--	---	---

	<p>습니다.”</p> <p>하고, 조지서(趙之瑞)는 말하기를,</p> <p>“신 등은 윤필상을 마땅히 폐기(廢棄)하고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삼공(三公)은 음양을 조화하는 책임이 막중(莫重)하므로 외람되게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꾸어 군(君)으로 봉하면 족할 것이며, 윤해는 중임(重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령들이 이 논박한 말을 듣게 되면 또한 두려워하고 공경하지 않을 것이니, 함께 체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이창신은 말하기를,</p> <p>“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연후에 써야 하는데, 지금 윤해는 이미 천거한 바도 없고 또 학술(學術)도 없으니, 이처럼 구황(救荒)하는 일이 많은 때에 어찌 능히 혼자서 담당하겠습니까? 다시 경직(京職)에 시험하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때 가서 써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구황하는 모든 일을 윤해가 바야흐로 조치(措置)를 취하여 그 본말(本末)을 알고 있을 것이니, 고칠 수 없다. 그리고 논박이 있었다 하여 바꾼다면, 뒷날 쓰는 데 방해(妨害)됨이 있을 것이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기찬(奇禛)이 탐오한 관리를 공격한 것은 절실(切實)하다고 하겠다. 말하기를, ‘재물을 탐하는 자가 벼슬자리에 있으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친다.’ ‘염치가 없는 무리는 마땅히 속히 징계하여야 한다.’ ‘재산을 경영하는 자는 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크게는 공경(公卿), 작게는 수령의 일도 거리낌없이 한다.’는 등 당시의 사람들을 비방하였다. 듣는 자가 모두들 기찬은 엄결(廉潔)하게 스스로 몸을 굳게 가지고 악을 미워하기를 원수같이 하니, 참으로 난파(鑾坡)16525)의 청선(淸選)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영광 군수(靈光郡守)로 나갔는데, 탐학(貪虐)을 자</p>	
--	--	--

	<p>행(恣行)하여 날마다 부극(拑克)16526) 을 일삼으며, 관청의 재물을 훔쳐 서울 집으로 실어 보내어서 수륙(水陸)으로 그 짐바리가 끊이지 아니하였다. 같은 때 같은 도(道)에 수령이 되었던 익산 군수(益山郡守) 이계통(李季通)과 김제 군수(金堤郡守) 최반(崔潘)도 모두 문과 출신(文科出身)으로 대간(臺諫)을 역임하였으나, 하루아침에 외리(外吏)16527) 가 되고서는 염치가 전혀 없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 호남 삼걸(湖南三傑)이라 하였고, 또 기찬은 삼절 중의 으뜸이었다. 그 후 일이 탄로나서 대관(臺官)의 탄핵을 받아 이계통은 고문(拷問)을 받아 병이 되어 죽고, 최반은 장안(贓案)에 이름이 실려 귀양살이하는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화(禍)가 참혹하였다. 기찬은 비록 대간의 탄핵은 구차하게 면하였으나 역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니, 천도(天道)가 어찌 밝디 밝지 않은가? 세상에 걸으로는 염치(廉恥)를 보이면서 속으로는 탐욕의 검은 마음을 품어 세상을 속이고 큰 소리를 치는 자는 마땅히 또한 경계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7일 (을묘) 4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이 와서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은 공론(公論)이 있는 곳으로서 성상의 대우하심이 매우 후하기 때문에 말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상의(商議)해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제 홍문관에서 탄핵한 사람 가운데 하관(下官)은 모두 개차(改差)하도록 하면서 당상관(堂上官)은 전과 같으니, 온당하지 않습니다. 의정부(議政府)는 백관을 통찰(統察)하고, 영의정(領議政)은 또한 백료(百僚)의 우두머리이며 감사(監司)는 또 한 방면의 장관이므로, 비록 한 사람이 비방하였더라도 편안하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물며 홍문관 전원이 말을 같이하여 논박한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개차(改差)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 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영의정이 비록 재화(財貨)를 늘렸다 하나, 물건을 거두어 백성을 괴롭힌 일은 없었다. 무릇 일을 말하게 되면 흔히 강개</p>	<p>○司憲府大司憲李世佐等來啓曰：“弘文館，公論所在，上待之甚厚。故凡有所言，必盡心商議以啓。今弘文館所彈人，下官則皆令改差，而堂上官則如舊，未便。議政府，統察百官；領議政，又百僚之首；監司，又一方之伯。雖一人非之，未可安然就職，況弘文館同辭駁論乎？請改差。”傳曰：“卿等之言是也。然領議政雖云殖貨，無聚斂虐民之事，凡言事多慷慨。判書、監司，亦無指言之失，故不改。下官則弘文館指言，或暗於事理，或不</p>

	<p>(慷慨)하기 마련이다. 판서(判書)나 감사(監司)는 또한 지적하여 말한 과실(過失)이 없기 때문에 개차하지 않았으며, 하관(下官)은 홍문관에서 지적하여 말하기를, ‘어떤 자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떤 자는 학식이 없으며 어떤 자는 유약(柔弱)하고 어떤 자는 탐오(貪汚)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개차한 것이다.” 하였다. 이세좌가 아뢰기를,</p> <p>“영의정이 이같은 물의(物議)를 초래하였으니, 비록 개차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편안하게 직무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는 중요한 임무인데다가 충청도는 지역이 넓고 흉황(凶荒)이 더욱 심하니, 구황(救荒)하는 일을 윤해(尹垓)가 어찌 능히 주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영의정과 판서는 앞서 한 말에 이미 다하였다. 윤해가 만약 학문을 알지 못한다면 전일에 어찌 수령의 임무를 감당하였겠는가?”</p> <p>하였다. 이세좌가 아뢰기를,</p> <p>“감사는 한 도(道)의 백성이 우러러보는 바로서 한 도의 일이 모두 감사에게 연관되어 있으니, 그 자신이 비록 수령을 감당할 만한 자라고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감사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윤해가 만약 탄핵한 말을 듣는다면, 또한 어찌 편한 마음으로 직물에 임(臨)하겠습니까? 수령과 백성이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가볍게 여겨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경직(京職)을 제수하여 일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려서 써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시종(侍從)과 대간(臺諫)들이 모두 불가(不可)하다고 하니, 물망(物望)이 어디에 있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경 등이 강경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중궁(中宮)의 친척에게 사정(私情)을 두었다고 여기는 것인가? 비록 백 사람의 홍문 관원(弘文館員)이 말한다 한들 어찌 재상의 말과 같겠는가? 재상이 고쳐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므로 고치지</p>	<p>學，或罷軟，或貪汙，故改之耳。”世佐啓曰：“領議政招此物議，雖不改差，必不安然就職矣。監司重任，忠清道地廣，凶荒尤甚，救荒之事，尹垓安能辦集?”傳曰：“領議政、判書，則前言已盡矣。尹垓若不知學，則前日何堪守令之任乎?”世佐啓曰：“監司，一道之所仰，一道之事皆繫於監司一身，雖堪爲守令者，豈必堪爲監司乎?尹垓若聞彈覈之言，亦豈安心莅職乎?守令、百姓，必聞而輕之，無畏敬之心矣。還授京職，待其諳鍊，用之未晚也。侍從、臺諫皆以爲不可，則物望安所在乎?”傳曰：“卿等強言之者，以予爲懷私於中宮之親乎?雖百弘文館員言之，豈如宰相之言乎?宰相以爲不可改，故不改耳。宰相之言反不如弘文館乎?”世佐等反覆論請，不聽。</p>
--	---	---

	<p>않은 것이다. 재상의 말이 도리어 홍문관만도 못하단 말인가?” 하였다. 이세좌 등이 반복하여 논청(論請)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8일 (병진)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풍당 2군 태수(豐唐二郡太守) 종성준(宗盛俊)과 인위군(仁位郡)의 종 사랑 직사(宗四郎職家)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丙辰/日本國對馬州豐·唐二郡太守宗盛俊、仁位郡宗四郎職家遣人來獻土宜。</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8일 (병진) 3번째기사</p>	<p>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이승건(李承健)이 와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광주 판관(光州判官) 우윤공(禹允恭)은 일찍이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와 개성 도사(開城都事)가 되었었는데, 모두 사리(事理)를 알지 못한다고 논박(論駁)을 당하여 개차(改差)되었고, 신계 현령(新溪縣令) 전석동(全石童)은 인품(人品)이 용렬하고, 해미 현감(海美縣監) 이성손(李成孫)은 일찍이 수령(守令)을 지냈으나 치적(治績)이 없었으니 또한 용렬한 인물입니다. 청컨대 개차(改差)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吏曹)에서 자주 우윤공을 수령에 의망(擬望)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쓸만한 인재일 것이다. 전석동과 이성손은 내가 그 인물을 알지 못하니, 마땅히 다시 이조에 물어서 발락(發落)16539 하겠다.” 하였다. 이승건이 이어 상소를 올렸는데, 이르기를, “신 등은 듣건대, 그 병을 고치려는 자는 반드시 유능한 의원(醫員)을 구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자는 반드시 바른 말을 하는 자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좋은 약이 입에 쓰다 하여 이를 싫어하면 병을 고칠 수 없고, 바른 말이 귀에 거슬린다 하여 이를 막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보건대, 금년의 한재(旱災)는 전고(前古)에 보기 드문 것으로서, 전하(殿下)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16540 하시며, 무릇 옥송(獄訟)과 요부(徭賦)16541 와 죄악(罪惡)의 의심스러운 것들을 억울함이 없게 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오히려 중외(中外)의</p>	<p>○司諫院獻納李承健來啓曰：“新除授光州判官禹允恭，曾爲宗簿主簿、開城都事，皆以不識事理被駁改差。新溪縣令全石童，人品庸劣；海美縣監李成孫，曾任守令無治效，亦庸人也。請改差。” 傳曰：“吏曹數以禹允功〔禹允恭〕擬望守令，此必可用之才也。石童、成孫，予未知其人，當更問吏曹發落。” 承健仍進上疏曰：</p> <p>臣等聞欲醫其病者，必求良醫；欲治其國者，必求直言。若良藥苦於口而忌之，則病不可醫矣；若以直言逆於耳而拒之，則國不可治矣。臣等伏觀今年之旱，前古所罕。殿下憂勤惕厲，避殿減膳，凡獄訟徭賦罪惡之可疑者，無不伸理而寬貸之。尚慮中外之臣有不能供職事者，顧問經幄之士。殿下此問，誠求病之藥；而弘文館之論，尤爲對病之藥也。殿下知聽訟臨民之不可</p>

신하로서 능히 직무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시어 경악(經幄)의 인사(人士)에게 고문(顧問)하였으니, 전하의 이 물음은 진실로 병(病)에 대한 약을 구하는 것이고, 홍문관의 의논은 또한 병에 대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송사(訟事)를 다스리고 백성에게 임함에 있어 마땅한 사람을 얻지 않을 수 없음을 아시고서 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隸院)의 관리와 수령(守令)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는 곧 체차(遞差)하도록 하시었습니다. 비록 동궁(東宮)을 배종(陪從)하고 호위(護衛)하는 사람은 대체(大體)에 무관(無關)할 것 같은데도 좌우(左右) 전후(前後)의 사람이 바르지 않을 수 없음을 아시고는 익위사(翊衛司)의 관리도 체직(遞職)시키도록 명하시었습니다. 유독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감사(監司) 중에 그 직책에 맞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그 불가(不可)함을 아시면서도 체직시키지 않으니, 이것은 개양(疥癢)16542)의 질환(疾患)은 없앨 줄 알면서도 원기(元氣)가 신명(身命)에 크게 관계됨을 알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 등은 사간원(司諫院)에 대죄(待罪)16543) 하면서 윤필상(尹弼商)·김겸광(金謙光)·권찬(權攢)·윤해(尹垓) 등이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음을 말로 아뢰고 차자(劄子)로 진달(陳達)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여 지극한 울분(鬱憤)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은 삼가 상고하건대, 당(唐)·우(虞)16544)의 시대에 관직을 세울 때 안으로는 백규(百揆)·사악(四岳)이 있고, 밖으로는 주목(州牧)·후백(侯伯)이 있었습니다. 주(周)나라에서는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두었으니 이것이 삼공(三公)이고, 소사(小師)·소보(小保)·소부(小傅)를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삼고(三孤)이며, 또 육경(六卿)이 있어 직책을 분담하여 각각 그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구목(九牧)을 창도(倡導)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을 만들되 모두 옛것을 본떴으니, 지금의 의정부(議政府)는 곧 옛날의 백규(百揆)이며, 지금의 의정(議政)은 곧 옛날의 삼공(三公)이며, 찬성(贊成)이라 하고 참찬(參贊)이라 하는 것은 곧 옛날의 삼고(三孤)이며, 지금의 공조(工曹)는 곧 옛날의

以不得其人，則漢城府、掌隸院官吏、守令之非人者，卽命遞之矣；雖陪衛東宮之人，若無關於大體，而知左右前後之人不可以不正，則翊衛司官吏，亦命遞之矣。獨於政府、六曹、監司之不稱其職者，則既知不可而不遞，是何異於知去疥癢之疾而不知元氣之大關於軀命乎？臣等待罪諫院，將尹弼商、金謙光、權攢、尹垓不稱職事，以言以劄，未蒙俞允，不勝憤鬱之至。臣等謹按唐、虞建官，內有百揆、四岳，外有州牧、侯伯。周立太師、太傅、太保，茲惟三公；小師、小保、小傅曰三孤。又有六卿分職，各率其屬，以倡九牧。國家設法，皆倣於古：今之政府，卽古之百揆也；今之議政，卽古之三公；曰贊成，曰參贊，卽古之三孤；今之工曹，卽古之司空也；今之守令，卽古之諸侯也；今之監司，卽古之州牧也。三公之職，論道經邦，燮理陰陽；三孤之職，貳公弘化，寅亮天地，非知道者可宅乎？司空之職，雖不若百揆之大，掌邦土，居四民，時地利，固非庶官之可比，則非知道者可居乎？斯民之休慙，係於守令之賢否，守令賢否，在

사공(司空)이며, 지금의 수령(守令)은 곧 옛날의 제후(諸侯)이며, 지금의 감사(監司)는 곧 옛날의 주목(州牧)입니다. 삼공의 직책은 도(道)를 논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음양(陰陽)을 조화시키는 것이며, 삼고의 직책은 삼공을 도와 덕화(德化)를 널리 퍼서 천지(天地)의 가르침을 공경히 받드는 것이니, 도(道)를 아는 자가 아니고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공의 직책은 비록 백규의 중대함만 같지 못하나, 나라의 토지를 관장(管掌)하여 사민(四民)을 살게 하며 지리(地利)를 때에 맞게 하는 것이어서 다른 여러 관직에 비길 것이 아니니, 도를 아는 자가 아니고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의 휴척(休戚)이 수령의 현부(賢否)에 달려 있고, 수령의 현부는 감사의 독찰(督察)에 달려 있으니, 많은 수령을 다스리는 데 현명하지 않고서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의 대신(大臣)은 임금의 녹(祿)을 먹고 백성의 봉양(奉養)을 누렸으니, 다시 백성과 더불어 이(利)를 다투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맹헌자(孟獻子)는 소와 양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16545) 는 말이 있었고 공의자(公儀子)는 밭의 아욱을 뽑고 벼를 불태우는 의리(義理)가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대부(大夫)가 ‘어찌하면 내 집을 이롭게 할까?’ 한다면 그 해(害)가 마침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윤필상·김겸광은 과거 출신(科擧出身)으로 여러 조정의 지우(知遇)(16546) 를 받아 훈맹(勳盟)에 들어가 참여하고 벼슬이 백료(百僚)에 으뜸 하였으니, 마땅히 얼굴빛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며 의(義)를 이(利)로 삼을 줄 알아서, 곤직(袞職)에 결함이 있으면 비보(裨補)할 것을 생각하고 나라의 정치는 경륜(經綸)할 것을 생각하며, 무릇 천지(天地) 음양(陰陽)의 조화를 다스려 받들어 나갈 것을 생각해서, 아는 것은 하지 않음이 없으며, 마음을 다하고 노고를 다하여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내버려두고 도모(圖謀)하지 아니하며 오직 이익만을 추구(追求)하여 부력(富力)이 한 나라를 기울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방(誹謗)이 공의

監司之督察，則綱紀守令不賢而能之乎？古之大臣，食君之祿，享民之奉，則不可以復與民爭利。故孟獻子有不畜牛羊之語，公儀子有拔葵燔機之義。何者？大夫曰何以利吾家，則其害終有不可勝言者矣。今也弼商、謙光，出身科第，知遇累朝，入參勳盟，位冠百僚，則是宜正色率下，知以義爲利。袞職有闕，思所以裨補之；邦國之政，思所以經綸之。凡天地陰陽之化，思所以燮理寅亮之，知無不爲，盡心勞瘁，冀格于皇天可也。而舍曰不圖，惟利是求，富傾一國，謗出公議。古人云：‘爲富不仁，爲仁不富。’爲富之道，必有術矣，如是而可以經邦國乎？可以理陰陽乎？可以寅亮天地乎？弼商、謙光之招物議，以此也。殿下何惜而不遜乎？巫醫，百工之事，鄉黨自好者不爲，以其人賤之也。是以古人有‘吮癰舐痔’之譏，士林有‘醫家者類’之語。醫術雖國之不可無，雜術固國之不可尚，況處於卿相之位乎？權擯特一良醫耳，既無文武之才，又無節儉之風，但以醫術末技，登名仕版，得參勳列，驟至相位，於分已踰矣，況於六卿

(公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부유하면 어질지 못하고, 어질면 부유하지 못하다.’ 하였으니, 부자가 되는 길은 반드시 술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 나라를 경륜할 수 있고, 음양을 조화시킬 수 있고, 천지의 도를 받들 수 있겠습니까? 윤필상과 김겸광이 물의를 초래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아끼시어 체직(遞職)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무(巫)·의(醫)·백공(百工)의 일은 향당(鄉黨)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자라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이를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따라서 옛사람의 말에 ‘중기를 빨고 치질(痔疾)을 앓는다.’는 풍자(諷刺)가 있고 사림(士林)에서는 의가(醫家)의 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술(醫術)은 비록 나라에 없을 수 없는 것이나, 잡술(雜術)은 본래 나라에서 숭상할 것이 못되는데 하물며 경상(卿相)의 지위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권찬(權攢)은 다만 일개 유능한 의원일 뿐입니다. 문무(文武)의 재능도 없고 또 절검(節儉)의 기풍(氣風)도 없으면서 다만 의술의 말기(末技)로써 이름이 사판(仕版)에 오르고 훈신(勳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게 되어 졸지에 재상의 지위에 이르렀으니, 분수에 이미 넘친 것인데, 하물며 육경(六卿)이겠습니까? 그가 처음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임명되었을 때 대간(臺諫)이 이미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시고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후에 명성과 공적이 없음이 조정(朝廷)에 밝게 드러나게 되자 논박이 그 자신에게 집중(集中)되었으니, 이와 같은데도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자리에 있을 수 있겠으며, 나라의 토지를 관장하여 사민(四民)을 살게 하고 지리(地利)를 때에 맞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덕(德)이 높은 자라야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지위가 덕에 맞지 않으면 시위 소찬(尸位素餐)16547)의 비방과 반식(伴食)16548)의 책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니, 권찬이 물의를 초래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무엇이 아까워서 체직(遞職)하지 않는 것입니까? 백 사람의 수령을 얻는

乎? 其初拜工判也, 臺諫已言不稱, 殿下排群議而不聽。 及其後也, 罔有聲績顯于朝端, 惟論駁叢于厥身。 如是而可以率居其屬乎? 可以掌邦土、居四民、時地利乎? 德之尊者, 可以居位之隆, 位不稱德, 則尸素之譏、伴食之誚, 有所不免。 攢之招物議以此也, 殿下何惜而不遞乎? 得百守令, 不若得一監司。 監司得人, 則一路受其賜; 監司失人, 則一路受其害。 國家俾政府、臺諫薦堪其任者, 亦此義也。 尹垓不學一椒房親耳, 非有激濁揚清之才、承流宣化之德。 故政府、六曹既無僉曰之舉, 及拜監司也, 憲府、諫院交章論駁, 殿下排群議而不聽。 是雖聖人試可之意, 然珊瑚之重, 不付之弱力, 以其愛寶也。 愛其寶者, 尚且不付之弱力; 愛其民者, 其可付之於非人乎? 前日臣等之言, 若以謂未必正論, 則今日弘文之論, 亦非一一目觀之事也。 況臣等聞慶尙、忠淸之旱, 甚於他道, 禾苗盡枯, 川澤既渴。 在今日嗷嗷待哺者, 尚不可數, 自秋經冬由春及夏, 飢者散于四方, 轉于溝壑者, 朝廷不得家至而戶活。 救活之責, 全付

것은 한 사람의 감사(監司)를 얻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감사를 적합한 사람으로 얻으면 일대가 그 혜택을 받고, 감사를 적합한 사람으로 얻지 못하면 일대가 그 해(害)를 입으므로, 국가에서 의정부·대간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천거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뜻에서입니다.

윤해(尹垓)는 학식이 없는 한날 중궁(中宮)의 친척으로, 격탁 양청(激濁揚淸)16549)의 재능과 승류 선화(承流宣化)의 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의정부·육조에서 모두 뜻을 모아 천거함이 없었으며, 감사에 임명되기에 이르러서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번갈아 소(疏)를 올려 논박하였으나, 전하께서 중의(衆意)를 물리치고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성인(聖人)께서 시험해 보시려는 뜻이나, 산호(珊瑚)같이 귀중한 것도 힘이 약한 자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그 보물을 아끼기 때문이니, 그 보물을 아끼는 자도 오히려 힘이 약한 자에게는 이를 맡기지 않는데,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적합하지 않은 자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일 신 등의 말이 만약 정론(正論)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홍문관의 의논도 일일이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신 등은 듣건대, 경상도와 충청도의 한재(旱災)가 다른 도(道)보다 심하여서 곡식이 모두 마르고 천택(川澤)도 이미 말랐다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울부짖으며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자가 오히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가을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봄을 거쳐 여름에 이르게 되면 굶주린 자가 사방으로 흩어져 죽어서 골짜기에 굴러다니게 될 자들을 조정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제하여 살리는 책임으로 전적으로 감사에게 맡겼으니, 진실로 사람을 가려서 그 책임을 맡기지 않을 수 없는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아껴서 체직(遞職)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공(公)과 고(孤)와 육경(六卿)이 안에서 국정(國政)을 총관(總管)하여 다스리고, 주목(州牧)과 후백(侯伯)은 밖에서 정사(政事)를 해서, 안과 밖이 서로 이어받아 체통(體統)이 문란(紊亂)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정(庶政)이 조

之監司，則誠不可不擇人以任其責，殿下何惜而不遞乎？古者，公、孤、六卿總治于內，州牧、侯伯賦政于外，內外相承，體統不紊。故庶政惟和，萬國咸寧。當此之時，鳥獸魚鼈、山川草木，咸若而已。小有災變，則以爲天譴告之，君憂勤於上，臣奔走於下。不以爲天數之適然，而以爲人事之致然，上下惕慮，思所以弭之。然猶未弭，則三公責免而已。今也殿下願治之心，一法古之帝王；而共治之臣，何不法古之大臣乎？殿下不遞若人等職事者，豈天地包容之量，以爲某則勳舊大臣也，某則試可乃已，一朝不忍釋位而然乎？然朝廷乃祖宗之朝廷，名器乃祖宗之名器也。殿下雖欲包容而不遞，朝廷不可私也，名器不可私也。殿下雖欲包容而不遞，彼彼公議者，何強顏就職乎？使弼商、謙光、權攢、尹垓強顏就職，取笑當時，貽譏後世，恐非安全大臣之道也。伏望殿下思祖宗朝廷名器之重。念下民飢饉流離之厄，亟遞若人等職事，以昭公道，以副物望。

	<p>화(調和)를 이루어 만국(萬國)이 모두 편안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조수 어별(鳥獸魚鼈)과 산천 초목(山川草木)이 모두 순조로왔을 뿐인데, 조금이라도 재변(災變)이 있으면 천견(天譴)이라 고하여 임금은 위에서 근심하며 부지런히 힘쓰고, 신하는 아래에서 분주하여, 천수(天數)가 마침 그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람의 한 일이 이를 초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를 그치게 할 것을 생각하였으며,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삼공(三公)이 자책(自責)하여 벼슬을 해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이 옛날의 제왕(帝王)을 본받고 있는데, 다스림을 함께 하는 신하는 어찌하여 옛날의 대신(大臣)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그들의 벼슬을 갈지 않으시니, 어찌 천지와 같이 포용하는 도량(度量)으로 아무는 훈구 대신(勳舊大臣)이며, 아무는 시험해본 뒤에야 그만둘 것이라 하여 하루아침에 차마 벼슬을 거두지 못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조정(朝廷)은 곧 조종(祖宗)의 조정이고, 명기(名器)는 곧 조종의 명기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포용하여 벼슬을 갈지 않고자 하더라도 조정은 사사로이 할 수 없고 명기도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포용하여 벼슬을 갈지 않고자 하더라도 저 공의(公議)를 들은 자들이 어찌 뻔뻔스런 얼굴로 벼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윤필상·김겸광·권찬·윤해로 하여금 뻔뻔스런 얼굴로 벼슬에 나아가게 하여 당시에 비웃음을 받고 후세에 비방을 남기게 하는 것은 아마도 대신을 안전하게 하는 길이 아닐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종의 조정과 명기의 소중함을 생각하시고 백성의 굶주리고 유리(流離)하는 재난을 생각하시어, 속히 그들의 벼슬을 갈도록 하여 공도(公道)를 밝히고 물망(物望)에 적합하게 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不聽。</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처량(安處良) 등이 상소하기를, “이제 천견(天譴)이 바야흐로 엄하여 기근(飢饉)이 거듭 이르고, 올해의 흉년</p>	<p>○弘文館副提學安處良等上疏曰:</p>

(成化) 21년 7월 8일
(병진) 4번째기사

이 지난 해보다도 심하여 공저(公儲)16550) 가 텅 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주현관(州縣官)으로 하여금 민간에 저장(貯藏)하고 있는 곡식을 찾아내어 그 식구(食口)가 먹을 것만 계산하여 남기고, 그 나머지는 모두 봉(封)하여 가난한 백성으로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자의 목숨을 잇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것은 좌씨(左氏)16551) 의 이른바 권분(勸分)16552) 의 법으로서, 황정(荒政)에 있어 거행(舉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봉선사(奉先寺)의 광주(廣州)에 있는 곡식은 학조(學祖)의 청으로 인하여 특명(特命)으로 봉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신 등은 그옥이 생각하건대, 환연(渙然)한 호령(號令)이 한 번 나오면 서로 갈지 않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 백성의 사장(私藏)은 이를 봉하고 승가(僧家)의 것은 봉하지 않는다면 사체(事體)에 방해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유(事由)를 갖추어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였더니, 성상께서 전교하시기를, ‘중도 백성인데, 홀로 긍휼(矜恤)하지 않겠는가?’ 하셨습니다. 이에 전하께서 널리 덮어 주시고 포함(包含)하여 용납하지 않음이 없어서 곤충(昆蟲)·초목(草木) 등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형체를 가진 것들로 하여금 모두 생물(生物)을 생육(生育)하는 성덕(盛德)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 등은 듣건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맹가(孟軻)가 임금과 백성과 사직(社稷)을 논함에 있어 백성을 가장 중한 것으로 말하였으니, 평상시에 있어서는 곡미(穀米)·사마(絲麻)를 내고 역역(力役)을 제공하며, 환란(患亂)을 당하여서는 견고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기(兵器)를 잡고서 사직(社稷)을 호위하는 자들입니다. 신자(臣子)의 몸으로 군부(君父)를 저버려서 강상(綱常)을 무너뜨려 어지럽히고 부세(賦稅)에서 도망치고 요역(徭役)을 피하여 놀면서 먹으니, 하늘과 땅 사이의 큰 줌벌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입니다. 경중(輕重)이 서로 현격(懸隔)한데, 어찌 똑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절의 중은 비록 이 곡식이 없어도 먹을 것이 궁핍(窮乏)하기에 이르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린 백성이 이 곡식을

今者天譴方嚴，飢饉荐至，今年之荒甚於去年，公儲垂罄。故令州縣官括民間有蓋藏者，計其口食，餘悉封之，擬續貧民不能自存者之命。此《左氏》所謂勸分之法，而荒政所不得不舉者也。而奉先之穀在廣州者，因學祖之請，特命勿封。臣等竊謂渙號一出，不宜異同。民之私藏則封之，僧家則否，有防事體。日者具由，仰瀆天聰，聖教若曰：“僧亦民耳，獨不之恤乎？”於此可見殿下徧覆包含，無所不容，使昆蟲草木，凡有形於兩間者，皆遂生生之盛德也。然臣等聞民者邦之本也，故孟軻論君、民、社稷，以民爲重。在平時出穀米絲麻，以供力役；當患亂被堅執銳，以衛社稷者也。以臣子背君父，毀亂綱常，逃賦避役，遊手遊食，爲天地間一大蠹者，僧也。輕重相懸，豈可一視哉？且此寺之僧，雖無是穀，亦不至於乏食；而吾民之飢者得是穀，則可以延數百口數月之命，其所係，不亦重乎？況此穀，非僧之所樹，實出於先后之所賜，則是亦公儲，非民間私藏之比也。民之私藏，猶且括之，況此公儲爲僧徒飽暖之餘者，獨不可推以予

얻으면 몇 백 명의 사람이 몇 달을 연명(延命)할 수 있을 것이니, 그 관계되는 바가 또한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곡식은 중이 심는 것이 아니고 실로 선후(先后)16553)의 사여(賜與)에서 나온 것이니, 이 또한 공저(公儲)로서 민간의 사장(私藏)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백성의 사장도 오히려 이를 거두는데, 하물며 이 공저는 승도(僧徒)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남는 것인데도 유독 백성에게 베풀어 주어 거의 죽게 된 목숨을 구제할 수 없단 말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이 절은 세조 대왕(世祖大王) 진전(眞殿)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먹을 것이 없으면 중이 장차 흩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전에는 참봉(參奉)이 있고 또 수호군(守護軍)이 있는데, 어찌 절의 중을 기다린 연후에야 족히 신어(神御)를 받들어 호위하겠습니까? 또한 조정에서도 국력(國力)을 늦추고자 하여 모든 긴급하지 않은 비용(費用)을 덜거나 줄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비록 국학(國學)의 유생(儒生)에게 있어서도 그 액수(額數)를 감축(減縮)한 것은 대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원각사(圓覺寺)와 내불당(內佛堂)과 복세암(福世庵)의 분수승(焚修僧)16554)만은 예전대로 감축하지 아니하여 세 곳의 승도(僧徒)로 앉아서 나라의 곡식을 허비하는 자가 무려 수십 명이니, 이것을 감축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면 그 혜택을 받는 자가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승정원(承政院)은 국정(國政)의 추기(樞機)가 되는 곳이며 빈청(賓廳)은 재상을 기다리는 곳인데도, 학조(學祖)가 명분(名分)을 돌아보지 않고 헌장(憲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곧장 승정원에 나아가 함부로 스스로 계청(啓請)하고, 또 물러나와 빈청에 앉아서 선반(宣飯)16555)을 먹는 등 참람하게 재상에 비겨 처신하는 데 의심하는 바가 없었으며, 몸에 가사(袈裟)를 걸치고 머리를 깎고서 궁금(宮禁)을 출입하여도 방자함을 금(禁)하는 바가 없으니, 사람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선왕(先王)께서 존중하던 예절로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입니까?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民，以救垂盡之命乎？若曰：“此寺爲世祖大王眞殿而設也，無食則僧將散去。”此甚不然。殿有參奉焉，又有守護軍焉，何待寺僧然後爲足以奉衛神御哉？且朝廷欲紓國力，一應浮費，無不省減，雖在國學儒生，亦減其額，蓋出於不得已耳。惟圓覺寺、內佛堂、福世庵焚修僧，因舊不減，三處僧徒坐費國廩者，無慮數十人。減此救民，則其受賜，亦不爲少矣。政院爲樞機之地，而賓廳乃待宰相之所也。學祖不顧名分，不畏憲章，直詣政院，擅自啓請。又退坐賓廳，食宣飯，僭擬宰相，處之不疑。方袍圓頂出入禁闈，縱恣無禁，駭人觀聽，莫此爲甚。殿下其以先王所尊禮而優容之歟？曾子曰：“父母之所愛亦愛之，父母之所敬亦敬之，至於犬馬盡然。”此特言其孝子愛敬之心無所不至之意也，豈謂以待人之道待犬馬乎？犬馬既不可以人道待之，則其不可以待宰相之禮待僧明矣。伏願殿下學祖攸司治罪，仍封其穀，并省三寺僧所供之廩，以救民命。

	<p>‘부모의 사랑하던 바를 또한 사랑하고, 부모의 공경하던 바를 또한 공경하는 것이니, 견마(犬馬)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렇다.’ 하였는데, 이는 특히 그 효자(孝子)의 애경(愛敬)하는 마음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뜻을 말한 것이지, 어찌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로 견마를 대우함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견마를 사람의 도리로 대우할 수 없다면, 재상을 대우하는 예절로 중을 대우할 수 없음을 명백(明白)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학조(學祖)를 유사(攸司)에 회부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인하여 그 곡식을 봉(封)하며, 아울러 세 절의 중에게 주는 곡식을 덜어서 백성의 목숨을 구제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어찌 학조를 미워하며 하는 것이겠는가? 실로 공의(公議)와 정리(正理)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봉선사(奉先寺)는 선왕의 진영(眞影)이 있는 곳이고, 선후(先后)께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던 바이니, 다른 절과 아울러 논할 수 없다. 비록 학조의 말로 인(因)하였다고 하지만 실로 전일(前日)에 들은 바를 생각한다면 그대들이 상세히 알 바가 아니다.”</p> <p>하였다.</p>	<p>傳曰：“爾等所言，豈憎學祖而發？實出於公議正理也。然奉先寺，先王之影所在，先后之心所重，不可與諸寺並論。雖因學祖之言，實思前日之聞，非爾等所詳知也。”</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11일(기미) 1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성주(星州) 사람 강지해(姜之海)가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무과(武科)에 올랐으니,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해마다 쌀을 내려 주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己未/禮曹啓：“慶尙道星州人姜之海有五子，皆登武科，依《大典》歲賜米。”從之。</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12일(경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 처마 밑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우승지(右承旨) 안침(安琛)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혜민서(惠民署)의 계집종 강덕(姜德)이 그 어머니 내은금(內隱今)의 머리털을 휘어 잡은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p> <p>하였으며, 응교(應教) 기찬(奇禫)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수안(遂安)의 죄수 김극손(金克孫)과 조생(趙生)이 강도(強盜)질한 죄는, 율이</p>	<p>○庚申/上御宣政殿簷下視事。右承旨安琛將刑曹啓本啓：“惠民署婢姜德摔其母內隱今頭髮罪，律該斬不待時。”應教奇禫將刑曹啓本啓：“遂安囚金克孫、趙生強盜罪，律該斬不待時。”皆從之。掌令李誼啓曰：“弘文</p>

	<p>참대부시에 해당합니다.”</p> <p>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장령(掌令) 이의(李誼)가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말한 바 탐오(貪汚)를 범한 수령(守令)을 단지 파직(罷職)할 뿐 그 범한 바를 국문(鞫問)하지 않음은 마땅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만약 국문한다면 반드시 홍문관에 빙문(憑問)하여야 할 것이다. 홍문관의 말을 공론(公論)이라 하여 이를 듣고서 또 다시 빙문한다면, 이는 의심하는 것이 된다.”</p> <p>하였다. 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가 아뢰기를, “현저(顯著)한 장오(贓汚)의 사실도 없이 갑자기 그같은 이름을 얻고도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서 아무 말 못하고 평생을 마친다면 또한 애매(曖昧)하지 않겠습니까?”</p> <p>하고, 이의(李誼)가 말하기를, “비록 빙문(憑問)하지 않더라도 그 관아(官衙)의 아전에게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언(正言) 정윤(鄭綸)이 아뢰기를, “전석동(全石童)·이성손(李成孫)은 모두 쓸 수 없는데, 내관(內官)으로 승직(陞職)시키는 것은 《대전(大典)》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신 등이 여러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정언(正言)이 된 지 이미 석 달이 되었는데도 말한 일에 한 가지도 따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거간(拒諫)16591)의 조짐이 있는 듯합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을 어찌 모두 따를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을 나에게 취품(取稟)하는 것은 내가 재단(裁斷)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만약 내가 능히 재단할 수 없다면 대간(臺諫)이 차라리 스스로 할 일이다. 장번 내관(長番內</p>	<p>館所言貪汙守令，只罷職而不鞫問所犯，未便。”上曰：“若鞫之，必憑問弘文館矣。弘文之言，以爲公論而聽之，又從而憑問，則是疑之也。”靑松府院君沈澮啓曰：“無顯著贓汙之事，而遽得其名，不能自明，悶默終身，亦曖昧。”李誼曰：“雖不憑問，問其官衙吏則可知矣。”不聽。正言鄭綸啓曰：“全石童、李成孫皆不可用，內官陞職，有違《大典》。臣等累啓，皆未蒙允。臣爲正言，已三月矣，所言之事一不見從，恐有拒諫之漸。”上曰：“臺諫之言，豈皆可從？凡事取稟於我者，欲我裁斷也。若予不能有所裁斷，則臺諫寧自爲之也。長番內官仕多者準職，例事也。又能通書，則不得不陞職以勸之也。全石童無他故也，但其父醫員耳；李成孫無推鞫案可考，皆無實之言也。故不聽，爾何遽謂我拒諫乎？”上又曰：“予聞京畿農事或有稍稔處，卿等所聞何如？”沈澮曰：“如朔寧、漣川、積城等處稍稔，海邊則盡焦枯，當於歲前賑給。”李坡曰：“國家積儲有限，農作時賑給尤緊。歲前賑濟，恐未可也。”上曰：“民將餓</p>
--	---	---

	<p>官)16592) 이라도 벼슬살이한 지 오래된 자는 준직(准職)하는 것이 예사(例事)이다. 또 능히 글에 통한다면 벼슬을 올려 주어서 권면(勸勉)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석동은 다른 연고는 없고 단지 그 아버지가 의원(醫員)일 뿐이며, 이성손은 상고할 추국안(推鞫案)이 없으니, 모두 실상(實狀)이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들어주지 않은 것인데, 그대가 어찌 갑자기 내가 거간(拒諫)한다고 말하는가?”</p> <p>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가 들건대, 경기(京畿)의 농사가 간혹 약간 잘 익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경(卿) 등이 들은 바가 어떠한가?”</p> <p>하니, 심회(沈澮)가 말하기를, “삭녕(朔寧)·연천(漣川)·적성(積城) 등지는 〈곡식이〉 조금 익고, 바닷가의 지방은 모두 타버려서 마땅히 세전(歲前)에 진급(賑給)하여야 한다고 합니다.”</p> <p>하고, 이파(李坡)가 말하기를, “국가의 축적(蓄積)은 한정(限定)이 있어서 농사지을 때의 진급(賑給)이 더욱 긴급(緊要)하니, 세전의 구제는 아마도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이 장차 굶어죽는다면 어찌 차마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겠는가? 다만 경기(京畿)는 간혹 조금 익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구황(救荒)하는 일은 감사(監司)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니, 진휼사(賑恤使)는 보내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殍，則何忍坐視不救？但京畿或有稍稔處，救荒事監司可以處置，其勿遣賑恤使。”</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12일(경신) 2번째기사</p>	<p>조계(朝啓)16593) 하는 재상(宰相) 및 홍문관(弘文館)·대간(臺諫)에게 전교하기를, “말[斗]을 가지고 곡식을 헤아려도 오히려 그 수를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정윤(鄭綸)이 정언(正言)에 제수된 지 석 달 만에 무엇으로 나를 헤아려서 갑자기 거간(拒諫)한다고 말하는가? 비록 삼공(三公)의 말이라도 혹 들어주지 않</p>	<p>○傳于朝啓宰相及弘文館、臺諫曰：“以斗量穀，猶難細知其數；鄭綸除正言三月，何以量我而遽謂拒諫乎？雖三公之言，或不可聽，豈可以臺諫之言而必盡聽乎？無拒諫之實，而得此名，予</p>

	<p>을 수 있는데, 어찌 대간(臺諫)의 말이라 하여 반드시 모두 들어주어야 하겠는가? 거간한 실상이 없이 이같은 이름을 얻었으니, 내가 매우 한스럽게 여긴다.”</p> <p>하니, 심회(沈澮)·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파(李坡)·정괄(鄭佶)·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p> <p>“대신이나 대간이 말하는 바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성상(聖上)께서 채택하시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정윤은 신진(新進)이므로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여 조급하고 경망하게 발언(發言)한 것뿐입니다.”</p> <p>하였고, 이의(李誼)는 의논하기를,</p> <p>“정윤의 말한 바가 비록 오만(傲慢)하나 또한 마땅히 포용하시어 언로(言路)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p> <p>하였으며, 정성근(鄭誠謹)·기찬(奇禛)·김수동(金壽童)은 의논하기를,</p> <p>“옛날에는 간(諫)하되 말에 문식(文飾)이 없어서 이를 당간(戇諫)이라고 하였 습니다. 정윤의 말한 바가 비록 광망(狂妄)한 것 같으나 한갓 간쟁(諫諍)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격절(激切)한 말로 성청(聖聽)을 움직이려고 기(期)하였을 뿐이고, 말이 당돌하게 나오는 것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p> <p>“여러 사람의 말이 이와 같으니, 논하지 말라.”</p> <p>하였다. 또 전교하기를,</p> <p>“왕대비(王大妃)께서 하교(下教)하시기를, ‘제안 대군(齊安大君)16594) 이 어 리석고 병이 있어, 비록 다시 장가들게 하려 하나 따르려 들지 않고 김씨(金氏)와 다시 결합하려고 한다. 비록 강제로 다시 장가들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버린다면 또한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일이다.’ 하셨으니, 다시 결합하는 일의 가부(可否)를 모두들 논의하여 아뢰도록 하라.”</p>	<p>甚憾之。” 沈澮、洪應、盧思愼、尹壕、李坡、鄭佶、鄭文炯議：“大臣、臺諫所言，有可聽者，有不可聽者，在上採擇如何耳。鄭綸新進，不知事體，躁妄發言耳。” 李誼議：“鄭綸所言雖倨傲，亦當包容以開言路。” 鄭誠謹、奇禛、金壽童議：“古者，諫而言無文飾，謂之戇諫。鄭綸所言雖若狂率，然徒知以諫諍爲己任，期於激切以動聖聽，不知言之出於唐突。” 傳曰：“群言如是，其勿論。” 又傳曰：“王大妃教云：‘齊安大君愚戇有病，雖令改娶，不肯聽從，欲與金氏復合。雖強令改娶，若復棄之，則亦感傷和氣之事也。’復合可否，僉議以啓。” 沈澮、洪應、鄭誠謹、奇禛、金壽童議：“金氏離異，只以有病，無他可去之義。朴氏既死而金氏病愈，許令復合。” 從之。</p>
--	---	---

	<p>하자, 심회·홍응·정성근·기찬·김수동이 의논하기를, “김씨와 이혼[離異]한 것은 다만 병이 있어서일 뿐이고, 그 밖의 버림을 받아야 할 의리(義理)는 없는 것입니다. 박씨(朴氏)는 이미 죽었고 김씨의 병이 나았으니, 다시 결합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15 일(계해) 2번째기사</p>	<p>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한재(旱災)로 인하여 제도(諸道)의 삭선(朔膳)을 모두 바치지 말도록 하므로 어선(御膳)이 항상 부족하여 괴롭습니다. 듣건대 황해도(黃海道)의 벼가 무성하다 하니, 청컨대 본도(本道)는 전과 마찬가지로 봉진(封進)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벼가 지금 비록 무성하다 하나 그 결실(結實)이 마침내 어떠할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였다.</p>	<p>○司饗院提調玉山君躋等來啓曰：“今因旱災，諸道朔膳竝令勿進，御膳常苦不足。聞黃海道禾稼茂盛，請本道依舊封進。”傳曰：“禾穀今雖茂盛，未知其實終如何也。”</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16 일(갑자) 1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 처마 밑에 나아가 정사(政事)를 보았다. 응교(應教) 이창신(李昌臣)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청도(淸道)의 죄수 선비(善非)가 그 아버지 박근경(朴根敬)의 가슴을 발로 차고 짓밟으며 오른쪽 다리를 물어 상해(傷害)를 입힌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직제학(直提學) 김흔(金訢)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상주(尙州)의 죄수 역자(驛子)16597 윤동(尹同)이 그 아버지 삼실(三實)의 머리털을 휘어잡은 죄를 아뢰었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부모된 자가 혹시 편벽되게 다른 자식의 참소하는 말을 듣고서 무죄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수도 있는데, 이와 같다고 해서 죄를 다스린다면 애매(曖昧)하지 않겠는가?” 하니, 우찬성(右贊成) 정괄(鄭恬)이 아뢰기를,</p>	<p>○甲子/御宣政殿簷下視事。應教李昌臣將刑曹啓本啓：“淸道囚善非蹴踏其父朴根敬胸臆、咬傷右腳罪，律該斬不待時。”從之。直提學金訢將刑曹啓本，啓尙州囚驛子尹同摔其父三實頭髮罪。上顧謂左右曰：“爲父母者，或有偏聽他子讒言，欲殺無罪之子而告之者。如此而治罪，則無乃曖昧乎？”右贊成鄭恬啓曰：“父子之間，綱常最重，不可如此用法。”上曰：“尹同事，非其父親告，乃勸農糾發也，且事涉曖昧，減死何如？”右議政李克培曰：“罪</p>

	<p>“부자(父子)의 사이는 강상(綱常)의 가장 중한 것이니, 이같이 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운동의 일은 그 아버가 직접 고한 것이 아니고 권농(勸農)16598) 이 적발(摘發)한 것이며, 또 일이 애매한 데가 있다. 사형을 감(減)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니, 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죄(罪)가 의심스러운 자는 살려 주는 것이 옳습니다.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p> <p>하므로, 사형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호조 참판(戶曹參判)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올해의 재상(災傷)은 진휼사(賑恤使)와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였는데, 진휼의 임무를 맡은 자가 오로지 진휼만을 마음에 두어 비록 약간 익은 곳도 으레 감손(減損)으로 친다면, 조세(租稅)의 수입이 반드시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로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상세히 답험(踏驗)16599)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세우(李世佑)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항상 흉년(凶年)에는 일이 더욱 많다고 말합니다. 경차관을 보내지 말고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에게 맡겨서 자세히 살피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백성에게 1푼(分)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을 1푼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령 익은 것을 감손(減損)으로 친다 하여도 이는 백성에게 이로운 것입니다.”</p> <p>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이제 한치형(韓致亨)의 아뢰는 바로 인하여 여러 도(道)의 흥판인(興販人)16600) 을 급하게 한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하삼도(下三道)16601)</p>	<p>之疑者，生之可也。上敎允當。”命減死。戶曹參判金升卿啓曰：“今年災傷，令賑恤使從事官審之，受賑恤之任者，專以賑恤爲心，雖稍稔處，例以爲損，則租入必少。別遣敬差官，詳驗何如？”右副承旨李世佑曰：“百姓常言凶年尤多事，勿遣敬差官，付之監司、守令審察爲便。寬民一分，則民受一分之惠。假如以稔爲損，是利於民也。”升卿啓曰：“今因韓致亨所啓，令禁諸道興販人。臣意謂下三道凶荒處則當禁之，如黃海、平安道農事稍稔，京中、京畿失業之民許行興販，以有易無何妨？”上曰：“貿遷有無，古之道也，黃海、平安道，其勿禁。”沈澹、克培啓曰：“避殿已久，諸道亦有下雨處，請復御正殿。”傳曰：“國家失政，天降災變，民卒飢饉，還御正殿，豈所安也？”澹等更啓曰：“群臣朝見之禮久廢，且客人之來，不得覲天光，豈無缺望？請復御正殿。”傳曰：“待秋成御之。”</p>
--	---	---

	<p>의 흉년든 곳은 마땅히 금하여야 하나.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는 농사가 약간 결실되었으니, 서울 안과 경기(京畿)의 생업(生業)을 잃은 백성에게 흥판(興販)을 행하도록 허락하여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꾸게 한다면, 무슨 해(害)될 것이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꾸어 옮기는 것은 옛날의 도(道)이니, 황해도와 평안도는 금하지 말라.”</p> <p>하였다. 심희(沈澮)와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p> <p>“피전(避殿)하신 지 또한 이미 오래되었고 여러 도(道)에 또한 비가 내린 곳도 있으나, 청컨대 다시 정전(政殿)에 나아가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나라의 실정(失政)으로 하늘이 재변(災變)을 내리어 백성이 마침내 굶주리고 있는데, 다시 정전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어찌 편안하겠는가?”</p> <p>하였다. 심희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군신(群臣)의 조현(朝見)하는 예(禮)를 오랫동안 폐하였으며, 또 객인(客人)으로 오는 자가 천광(天光)을 뵈지 못하면 어찌 실망함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정전에 나아가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가을의 결실을 기다려서 나아가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16 일(갑자) 2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집(李諱)이 치계(馳啓)하기를,</p> <p>“이달 12일에 해주(海州) 지방에 큰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며 우박과 얼음 덩어리가 섞여서 내렸는데, 그 크기가 혹 주먹 같기도 하고 혹 달걀 같기도 하였으며, 그것이 지나간 곳의 곡식을 모두 손상되었습니다.”</p> <p>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黃海道觀察使李諱馳啓曰：“今月十二日，海州地面大風雷電，雨雹冰塊交下，其大或如拳，或如雞卵，所經處，禾稼盡損。”傳于承政院曰：“予甚驚懼。今年旱荒已甚，而又有此變，必</p>

	<p>“내가 매우 놀랍고 두렵다. 올해의 한황(旱荒)이 이미 심한데다가 또 이같은 재변(災變)이 있으니, 반드시 사람의 일로 초래한 것이다. 지난 번에 홍문관에서 논박당하여 파출(罷黜)된 수령이 반드시 원통함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이 재변이 비록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편치 않다. 이들을 경직(京職)에 서용(敍用)하여 그 원통함을 펴게 하고 또 개과 친선하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하는데 옳지 않겠는가?”</p> <p>하자, 승지(承旨) 등이 모두 아뢰기를,</p> <p>“신 등이 듣건대, 파출당한 수령들은 그 소행이 홍문관에서 아뢰 바와 그렇게 다르지 아니하다 하니, 폐출(廢黜)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선(善)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惡)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늘의 도(道)이니, 만약 퇴출(退黜)한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데, 이제 갑자기 다시 쓰는 것은 아마도 적당하지 않을 듯합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p> <p>“이들이 만약 능히 허물을 고친다면 이는 선(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어찌 끝내 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뜻을 의정부(議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p> <p>하니, 정창손(鄭昌孫) 등이 모두 아뢰기를,</p> <p>“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p> <p>“내가 교시(敎示)한 뜻대로 전조(銓曹)에 전지(傳旨)를 내리도록 하라.”</p> <p>하였다.</p>	<p>有人事召之者。向者爲弘文館所論見罷守令，必有含冤。今此災變，雖未必由此，予心則未安。欲敍此輩於京職，以伸其冤，且開自新之路，無乃可乎？”承旨等僉啓曰：“臣等聞見罷守令其所行，與弘文館所啓不甚相遠，廢黜宜也。福善禍淫，天之道也，若退黜得宜，則必合天意。今遽復用，恐未便。”傳曰：“此輩若能改過，則是爲善人，豈可終棄乎？其以此意，議于政府及領敦寧以上。”鄭昌孫等僉啓曰：“上敎允當。”傳曰：“以予所敎之意，下傳旨于銓曹。”</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18일(병인)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p> <p>“이제 이미 가을날이 서늘하니, 아침 수라(水刺) 뒤에 승지(承旨)들은 모두 정사를 입계(入啓)하라.”</p> <p>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今已秋涼，朝水刺後，承旨等俱入啓事。”</p>
<p>성종 181권, 16년</p>	<p>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p>	<p>○兵曹啓：“今年諸道雖失農，平安、</p>

<p>(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19일(정묘) 2번째기사</p>	<p>“올해에 여러 도(道)가 비록 흉년들었었으나 평안도와 황해도 두 도(道)는 조금 결실(結實)이 되었습니다. 건주 야인(建州野人)은 일찍부터 이미 입조(入朝)를 허락하였으니,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청컨대 평안도(平安道)로 하여금 그 추종(騶從)을 간략하게 하고 운(運)16606)을 간소하게 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소서.”</p> <p>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홍응(洪應)·이과(李坡)·정괄(鄭佶)·김겸광(金謙光)이 의논하기를,</p> <p>“야인(野人)과 더불어 약속을 정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신의를 잃을 수 없습니다. 아뢴 대로 따르기를 청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黃海兩道稍稔，建州野人曾許入朝，不可違約。請令平安道約其騶從，疎運上送。”命議領敦寧以上。鄭昌孫、韓明澮、尹弼商、尹壕、洪應、李坡、鄭佶、金謙光議：“與野人定約已久，不可失信。請依所啓。”從之。</p>
<p>성종 181권,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21일(기사) 2번째기사</p>	<p>우참찬(右參贊) 김겸광(金謙光)이 와서 아뢰기를,</p> <p>“홍문관에서 신을 지목하여 재물을 증식(增殖)한다고 하는데, 신이 비록 이식을 늘린 일은 있으나 노적(露積)은 없습니다. 집에 또 불이 나서 다른 재상에 비하여 실로 빈곤한데도 물의(物議)가 이와 같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청컨대 신을 체직(遞職)시켜 여러 사람의 기대에 쾌하게 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겸광은 불이 난 뒤에 비록 가산(家産)을 다시 경영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았으나, 그 불이 나기 이전에는 재산을 증식하기에 힘써 포(布)를 무역(貿易)하여 노적(露積)함이 과연 홍문관에서 논한 바와 같았으니, 이번에 불이 난 이후의 일로 그 청렴 결백함을 밝히려는 것이 또한 소루(疏漏)하지 않은가?” 하였다.</p>	<p>○右參贊金謙光來啓曰：“弘文館指臣爲殖貨。臣雖有長利，而無露積，家又失火，比他宰相，臣實貧艱。而物議如，此臣實痛心。請遞臣職，以快衆望。”不聽。</p> <p>【史臣曰：“謙光於失火之後，縱未及復營家産，而其未失火之前，務殖財産，貿布露積，果如弘文館所論。則今以失火後事欲明其清白，不亦疎乎？”】</p>
<p>성종 181권,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7월 24일(임신) 1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p> <p>“진천(鎭川)에 사는 사노(私奴) 임복(林福)이 이제 백성을 진휼(賑恤)하기 위하여 곡식 2천 석(碩)을 바쳤으니, 그 마음이 가상(嘉尙)하다. 이제 기근(飢饉)을 당하여 지식이 있는 사람도 바치려 들지 않는데, 천한 종의 몸으로 이</p>	<p>○壬申/傳曰：“鎭川居私奴林福，今爲賑民納粟二千碩，其心可嘉。今當阻飢，有識之人且不肯納，以賤隸而爲之，免賤以賞何如？”承旨等啓曰：“此</p>

	<p>를 하였으니, 면천(免賤)하는 것으로 상을 줌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본래 면천(免賤)하여 양민(良民)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국가에는 공이 있더라도 그 주인으로서 본다면 횡역(橫逆)한 종이 되며, 또 종량(從良)은 중대한 일이니 쉽게 그 단서(端緒)를 열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p>	<p>人本欲免賤爲良。雖於國家有功，以其主視之，則橫逆之奴也。且從良重事，不可容易開端。”</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25 일(계유) 2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권건(權健) 등이 아뢰기를, “주상(主上)께서 지난 날 국휼(國恤)로 인하여 오래도록 시조(視朝)를 폐(廢)하였고, 근자(近者)에는 한재(旱災)로 정전(正殿)을 피하시고 수성(修省) 중에 계시어 군신(群臣)이 오래도록 모시지 못하였으며, 또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의 내조(來朝)한 자를 오래도록 접견(接見)하지 않으시니, 어찌 결망(缺望)함이 없겠습니까? 올해의 농사는 이미 바랄 것이 없습니다. 비록 비가 내린들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정전(正殿)으로 돌아가시어 시조(視朝)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이라도 만약 비가 내린다면 아직 다 시들지 않은 것은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메밀과 무우·채소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 어찌 무익함이 있겠는가? 다시 정전(正殿)에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실로 미안하다.” 하였다. 권건 등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都承旨權健等啓曰：“上曩因國恤，久廢視朝；近以旱災，避殿修省，群臣久未得侍。且倭、野人來朝者，久而未接見，豈無缺望乎？今年穡事已無可望，雖雨何益？請復正殿視朝。”傳曰：“今若得雨，則其未盡枯者猶可復蘇，蕎麥菁菜猶可食也，何無益之有？復御正殿，心實未安。”健等更啓，不聽。</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26 일(갑술) 2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 “전일(前日)에 우의정(右議政)이 말하기를, ‘진휼사(賑恤使)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금 백성들이 모두 불편(不便)하게 여기고 감사(監司)도 폐단이 있다고 한다. 이제 백성을 살리려고 하면서 도리어 폐단을 행해서야 되겠는가? 충청도(忠淸道)와 경상도(慶尙道)는 진휼사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이 와서 아뢰기를,</p>	<p>○傳曰：“前日右議政言賑恤使不可不遣，然今者下民皆以爲未便，監司亦以爲有弊。今欲活民而反行弊事，可乎？忠淸、慶尙道勿遣賑恤使可也。”戶曹判書李德良來啓曰：“下三道失農尤甚，若措置失宜，則民必餓死。請遣大臣賑濟，且令百姓知朝廷勤恤之</p>

	<p>“하삼도(下三道)는 실농(失農)이 더욱 심합니다. 만약 조치(措置)가 잘 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굶어죽을 것이니, 청컨대 대신(大臣)을 보내어 진제(賑濟)하게 하고, 또 백성으로 하여금 조정(朝廷)에서 진휼에 힘쓰는 뜻을 알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단지 가도사(假都事) 두 사람만을 택하여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p>	<p>意。”傳曰：“只擇遣假都事二人。”</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28 일(병자)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임복(林福)을 불러서 그 원하는 바를 묻게 하니, 임복은 그 네 아들을 면천(免賤)하여 양민(良民)이 되게 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기를 명하니, 한명회(韓明澮)·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p> <p>“임복이 곡식 2천 석을 바쳤으니, 1백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에 족합니다. 자원(自願)에 따라 그 아들을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주고, 그 인원(人員)에 상당(相當)한 노비(奴婢)를 그 주인에게 보충하여 주소서.”</p> <p>하였으며, 심회(沈澮)·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만약 곡식을 바쳐 종량(從良)하는 길을 열어 준다면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p> <p>“임복의 네 아들을 모두 종량(從良)하고, 공천(公賤)으로 본주인(本主人)에게 보상(報償)해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命承政院招林福問其所欲，福請免其四子爲良。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韓明澮、李克培、尹壕議：“林福納穀二千碩，足以救百人之命。從自願良其子，以相當奴婢充給其主。”沈澮、洪應議：“若開納穀從良之路，則背主者蜂起，誠非細故。”傳曰：“林福四子皆從良，以公賤償給本主。”</p>
<p>성종 181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7월 29 일(정축) 4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이 차자(笏子)를 올려 아뢰기를,</p> <p>“그옥이 생각건대, 재해(災害)와 우환(憂患)을 구휼(救恤)하는 것은 나라의 급무(急務)가 됩니다. 이제 심한 가뭄으로 인(因)하여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조식(朝夕)을 보전하기 어려우니, 이는 진실로 성상(聖上)의 진념(軫念)하는</p>	<p>○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上笏子曰： 竊惟救災恤患，爲國急務。今因旱暵，庶民艱食，莫保朝夕，此誠聖上之所軫念、群下之所同憂。於此之時，林福</p>

바이며 못신하들이 함께 근심하는 바입니다. 이때에 있어 임복(林福)이 곡식 2천 석을 바쳤으니, 진실로 마땅히 상격(賞格)을 너그럽게 보여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함으로써 후래자(後來者)를 권면(勸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각해 본다면 양민과 천인의 분별은 마치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자리잡은 것처럼 옮기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 군무(軍務)를 일으킴을 연유로 천인을 모집하여 양민을 삼았는데, 이문이 한 번 열리자 노복(奴僕)이 그 주인을 배반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능멸(陵蔑)하여 업신여기는 풍조(風潮)가 오늘날까지도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복이 때를 틈타 이(利)를 얻으려고 꾀하여 곡식을 쌓은 것이 수만 석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하늘이 내려 준 것이 아니라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라에 흉수나 가뭄으로 흉년드는 재앙이 있으면 독조(督糶)·권분(勸分)을 모두 부유한 백성에게서 취하였으니, 진실로 평시에 백성을 괴롭혀서 곡식을 쌓았다가 흉년에 곡식을 꺼내어 백성을 구제하게 한 것입니다. 재용(財用)을 고르게 조절(調節)함은 구황정책(救荒政策)의 큰 것으로서 관부(官府)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복은 기회를 엿보아 <쌓은 곡식의> 1백분의 1을 꺼내어 헌조(獻助)라는 명목으로 조정(朝廷)의 뜻을 살펴왔는데, 후하게 포상(褒賞)을 더하여서 면천(免賤)하여 양민(良民)으로 삼으니, 신 등은 온당치 않다고 여깁니다. 간사한 사람이 10분의 1의 이(利)를 내어놓았는데, 나라에서는 법을 변경해가며 종량(從良)한 것이 네 사람에게 이른다면, 비록 뒷날에 이를 본떠서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이어 한 관례(慣例)로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 생각건대, 사가(私家)의 복레(僕隸)가 곡식을 쌓아 놓고서 거두고 흡는 것은 대부분 본주인(本主人)의 물건인데, 만약 간사(奸詐)한 무리가 있어 본주인의 형세가 약화된 틈을 타 그것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일컬어 헌조(獻助)하고는 양민이 되기를 구(求)하여 이를 핵실(覈實)하게 된다면, 종과 주인이 서로 송

納租二千石，固宜優示賞格，布告中外，以勸來者。第念良賤之分，如天建地設，不可移易。頃緣軍興，募賤爲良，其門一開，奴背其主，上下交惡陵慢之風，至今尚在。事干綱常，不可不慎。林福乘時射利，積粟至數萬石，此非天降，皆從民出。古者邦國有水旱凶荒之災，督糶勸分，皆於富民焉取之。誠以平時剝民而積穀，凶歲出穀以濟民，均節財用，荒政之大，以官府治之可也。林福窺見其機，出百分之一，名爲獻助，以探朝廷旨趣，而厚加褒賞，放賤爲良，臣等竊以爲未穩。姦人捐什一之利，而國家變法從良，至於四口，雖有後來踵而爲之者，亦恐難繼而例之也。又念私家僕隸積穀斂散者，多是本主之物。萬有奸詐之徒，乘本主勢弱，稱其己物獻助求良而覈實之，則奴主交訟例許之，則冤枉或多。原始要終，未見其可。伏望褒賞節次，更留聖思。此等穀物雖不自獻，亦在勸分之例。未知鎮川縣監封閉知數幾何，若託進上不受官封，則慢國滅法奸猾之尤者，法所當治。伏乞行移檢勘施行。

	<p>사하는 예로써 허락하게 될 것이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더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초를 살피고 종말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포상(褒賞)의 절차를 다시 마음 속에 유념해 두소서. 이같은 곡물은 비록 스스로 바치지 않더라도 권분(勸分)의 예에 들어 있습니다. 진천 현감(鎭川縣監)의 봉폐(封閉)16616) 한 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진상(進上)을 칭탁하여 관가(官家)의 봉함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라를 업신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간활(奸滑)함이 심한 자이니, 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삼가 빌건대, 행이(行移)16617) 하고 검감(檢勘)하여 시행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不聽。</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8월 1일 (기묘)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全)이 아뢰기를,</p> <p>“임복(林福)은 천례(賤隸)로서 시기를 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얻어 곡식을 저축한 것이 수만 석인데, 이는 실지로 모두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것입니다. 지금 흉년을 만나 조정의 권분(勸分)16619)의 영(令)을 꺼리다가 스스로 보유(保有)할 수 없을 것을 헤아려 바쳤으니, 그 마음이 실로 간사한데, 특별히 포상(褒賞)을 더하고, 면천(免賤)하여 양인(良人)을 삼도록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p> <p>하였는데, 임금(上)이 말하기를,</p> <p>“금년은 흉년이므로,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전라도(全羅道)의 곡식을 옮길 것을 청하였는데, 전라도 또한 축적(蓄積)해 놓은 것이 없어서 백성들의 굶주림[飢饉]을 진구(賑救)하지 못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임복은 용우(庸愚)한 사람으로서 곡식을 바쳐 구제하였으니,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포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비록 축적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관청에 곡식을 바친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었는데, 임복은 그것을 하였으니,</p>	<p>○御經筵。講訖，大司憲李瓊全啓曰：“林福以賤隸。乘時射利，積穀數萬，實皆取於民也。今值凶年，憚朝廷勸分之令，自度不能保有而納之，其情實詐。特加褒賞免賤爲良，甚不可。”</p> <p>上曰：“今年凶荒，忠淸監司請移全羅之粟，而全羅道亦無蓄積，民之飢饉，無以賑救。當此之時，林福以愚庸之人，納粟救之，其爲國之心，不可不褒賞之也。識理之人蓄積雖多，而未聞有納官者，而福爲之，當加褒獎。大臣之議，亦豈不顧是非乎？”仍問左右。領事盧思愼對曰：“雖免賤以賞之無不可，但四口，無乃過多乎？”上曰：“數則予當減之。”</p>

	<p>마땅히 포장(褒獎)을 더하여야 한다. 대신(大臣)들의 의논은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가?”</p> <p>하고, 인하여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p> <p>“비록 면천(免賤)하여 상준다 하더라도 옳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단지는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수효는 내가 마땅히 감(減)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2일 (경진)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송질(宋軼)이 아뢰기를,</p> <p>“지금 가뭄[旱乾]을 살펴보건대, 옛날에 없었던 바로서 나라에서는 이를 근심하여 구황(救荒)에 힘써 백성 가운데 사재[私儲]를 가진 자를 모아서 권분(勸分)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도(道)에서 사채(私債)를 봉(封)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개가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한 고을로써 이를 말해 보면, 진천(鎭川) 고을에서 봉한 수효는 단지 1백 10석(碩)일 뿐인데, 신이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바 재상(宰相) 신균(辛均)과 상장(上將) 오유종(吳有終)은 진천에 살면서 모두 거만(巨萬)의 곡식을 쌓아 두고 있으며, 또 임복(林福)이 스스로 2천 석을 바쳤는데, 관봉(官封)할 때에는 단지 1백 10석일 뿐이었으니, 이로써 살펴보건대, 기타 허위(虛僞)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수령(守令)이 사사로운 청탁(請託)을 들어주고 간사한 아전들이 제멋대로 법(法)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청컨대 진천(鎭川) 관리(官吏)의 기망(欺罔)한 죄를 추국(推鞠)하고, 또 다른 도에 유시(諭示)하여 다시 수색하여 관봉(官封)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御經筵。講訖。持平宋軼啓曰：“今觀旱乾，前古所未有。國家憂勤救荒，括民間有私儲者勸分。然觀諸道所封私債，類多不實。以一邑言之，鎭川官所封數，只一百十碩而已。臣詳知之，宰相辛均、上將吳有終居鎭川，皆積穀巨萬。且林福自獻二千碩，而官封只百十碩。以此觀之，其他虛僞可知。是必守令聽私請，奸吏弄法而然也。請推鎭川官吏欺罔之罪。且諭他道，更令搜索官封。”上曰：“果如此言，則國家立法之意安在？鎭川官吏，令司憲府推鞠。且諭諸道可也。”軼曰：“非徒鎭川。臣聞忠州居李福崇、林川居趙益祥皆積穀幾至萬碩，他邑亦有如此者，而忠淸監司所啓</p>

	<p>“과연 이 말과 같다면 나라에서 입법(立法)한 뜻이 어디 있겠는가? 진천(鎭川)의 관리(官吏)는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고, 또 여러 도에 유시하는 것이 가(可)하다.”</p> <p>하였다. 송질이 말하기를,</p> <p>“비단 진천뿐만 아니고, 신이 듣건대, 충주(忠州)에 사는 이복숭(李福崇)과 임천(林川)에 사는 조익상(趙益祥)은 모두 쌓아 놓은 곡식이 거의 만석에 이르는데, 다른 고을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며,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아뢴 바 사곡(私穀)은 총 1만 1천 석일 뿐입니다. 또 지금 재상(宰相)으로서 식화(殖貨)하는 자가 많은데, 곡식을 봉(封)하는 집은 거의 6품 이하의 관원으로, 재상은 사사로이 곡식을 쌓아 두고도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재상들로 하여금 스스로 납속(納粟)하여 나라에서 진궁(賑窮)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승지(承旨) 성건(成健)에게 이르기를,</p> <p>“임복(林福)이 곡식 2천 석을 바쳤는데, 진천 고을에서 봉한 것은 실로 수효가 너무 적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세력이 없는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는 곡식마저 관에서 거두어 들임에 따라 그 식구들이 먹을 것이 도리어 넉넉하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니, 이는 진실로 옳지 못하다. 진휼사(賑恤使)가 내려갈 때 승지(承旨)가 이 뜻을 상세히 유시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私穀，摠一萬一千碩而已。且今宰相殖貨者多，而封穀之家，率皆六品以下之員，宰相私積皆不與焉。請令宰相自納粟，以副國家賑窮之意。”上謂承旨成健曰：“林福納穀二千碩，而鎭川官所封實數甚少。以此推之，無勢之民數少之穀見收於官，而其所口食乃反不贍者亦或有之，此實不可。賑恤使下去時，承旨詳諭此意。”</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2일 (경진) 3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풍(豐) 당(唐) 2군 태수(二郡太守) 종성준(宗盛俊)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p>	<p>○日本國對馬州豐、唐二郡太守宗盛俊遣人來獻土宜。</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2일</p>	<p>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강원도(江原道)·영안도(永安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p> <p>“지난 번에 여러 도(道)의 부호(富戶)의 곡식과 여러 절[寺社]의 장리(長利)는</p>	<p>○下書京畿、忠淸、全羅、慶尙、江原、永安道觀察使曰：</p>

<p>(경진) 4번째기사</p>	<p>관찰사(觀察使)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친히 살펴보아서 본주(本主)의 용도(用度)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감봉(監封)하여 주인 이름과 곡식 수효를 계문(啓聞)하도록 한 일은 호조(戶曹)에서 교지(教旨)를 받아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였었다. 이제 사곡(私穀)의 봉한 수효를 상고하건대, 지극히 수효가 적게 되었는데, 한 고을을 예로 들어 말해 보면 충청도(忠淸道) 진천현(鎭川縣) 안에서는 거만(巨萬)의 곡식을 쌓아 두고 있는 자가 분명 여러 집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봉한 곡식은 단지 1백 10석으로, 관리(官吏)들이 성실하게 법(法)을 받들지 아니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지극히 부당(不當)하므로, 이미 추국(推鞠)하도록 명하였다. 그 밖에 여러 고을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인데, 그 관봉(官封)할 때를 당하여 세력이 없는 사람은 본주(本主)의 용도(用度)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두 수효대로 관봉하고, 권세가 있는 부호(富戶)는 비록 많더라도 반드시 누락시키니, 경들은 이 뜻을 알아서 다시 수색하여 본주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울러 봉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하고, 전후에 관봉한 각호(各戶)의 곡식 수와 인구(人口) 수를 상세하게 기록(開錄)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頃者， 諸道富戶穀食及諸寺社長利。 觀察使令守令親審， 除本主用度， 其餘監封， 主名、穀數啓聞事， 戶曹受教行移。 今考私穀封數。 至爲數少。 姑舉一邑言之， 如忠淸道鎭川縣內， 衆所共知積穀巨萬者， 明有數戶， 而所封之穀只一百十碩。 官吏之不謹奉法， 一至於此， 至爲不當。 故已令推鞠， 他餘諸邑亦必如此。 當其官封時， 無勢人則不計本主用度， 盡數封之， 權勢富戶則雖多必漏。 卿悉此意， 更詳搜括， 除本主用度， 并皆監封。 而前後官封， 各戶穀數及人口數， 仔細開錄以啓。</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5일 (계미)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p> <p>“옛날 주 문공(朱文公)16623 은 주목(州牧)이 되었을 적에 흉년을 만나 사람들에게 납속(納粟)16624 하면 산직[散秩]을 주도록 조정에 청하였으며, 한(漢)나라에서도 용도(用度)가 부족하여 또한 백성을 모아 납속하게 하고 벼슬을 주었으니, 오로지 옛제도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이 보건대, 중국 조정에서는 여염(閭閻) 사이에 진사과(進士科)에 급제한 자는 그 문(門)에 표하기를 ‘은영(恩榮)’이라 하였고, 납속(納粟)하여 보관(補官)된 자는 ‘상의(尙義)’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바야흐로 황정(荒政)을 시행하고 있으</p>	<p>○癸未/御經筵。 講訖， 大司憲李瓊仝啓曰：“昔朱文公爲州， 值年饑， 請于朝許人納粟授散秩。 漢世用度不足， 亦募民納粟拜爵。 不惟古制爲然， 臣見中朝， 閭閻間中進士科者， 標其門曰‘恩榮’， 納粟補官者‘尙義’， 今國家方舉荒政， 依古制納粟補官可矣。 以賤隸爲良， 恐有後弊。” 上顧問左右， 領事李克培曰：“納粟補官， (右) [古]</p>

	<p>니, 옛날 제도에 따라 납속하게 하여 보관(補官)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천례(賤隸)를 양인(良人)으로 삼는 것은 후에 폐단(弊端)이 있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p> <p>“납속하여 보관하는 것은 옛날에 그 제도가 있었으니, 지금 또한 시행(施行)하더라도 무방(無妨)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마땅히 의논하겠다.”</p> <p>하고,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옛제도를 상고하고 아뢰게 하였다.</p>	<p>有其制，今亦行之無妨。”傳曰：“當議之。”仍命承政院考古制以啓。</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6일 (갑신)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한언(韓堰)이 아뢰기를,</p> <p>“지금 호조(戶曹)로 하여금 납속(納粟)하여 보관(補官)하는 절목(節目)을 상의(商議)하도록 하였는데, 신은 미편(未便)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처음에 민간(民間)에서 사곡(私穀)을 관봉(官封)할 것을 건의할 때 빠진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한 까닭에 백성으로 하여금 납속(納粟)하게 하고 보관(補官)하였는데, 후에 호조(戶曹)에서 아뢰는 것으로 인하여 정지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였었다. 그런데 대사헌(大司憲)이 주문공(朱文公)의 일을 끌어대어 아뢰었고, 우의정(右議政) 또한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호조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상의하도록 하였다. 또 나는 생각건대, 국름(國粟)은 이미 일시(一時)에 모두 나누어 줄 수가 없고, 민간(民間)의 사곡(私穀)은 관리(官吏)가 또한 모두 봉할 수 없으므로, 납속(納粟)의 명령은 시행할 수 없을 듯하다.”</p> <p>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은 대답하기를,</p> <p>“납속 보관(納粟補官)은 부득이한 후에 하는 것이니, 청컨대 고사(古事)를 상고하여 처결(處決)하소서.”</p>	<p>○甲申/御經筵。講訖，大司諫韓堰啓曰：“今令戶曹商議納粟補官節目，臣意以爲未便。”上曰：“厥初，建議民間私穀官封時，慮有脫漏者，故令民納粟補官，後因戶曹所啓，寢不行。昨日大司憲引朱文公事以啓，右議政亦言行之無妨，故令戶曹商議節目。且予意謂國廩既不可一時盡散，民間私穀官吏亦不能悉封，納粟之令，恐不可不行。”仍問左右，領事鄭昌孫對曰：“納粟補官，必不得已而後爲之。請詳考古事而處之。”知事李克增曰：“納粟補官事非輕易。且臣意謂應募者必不多也。”堰啓曰：“黃海道距京城甚邇，漕運路通。今年穀稍登，可以轉輸於京。且蕎麥茂盛，若霜降不早，</p>

	<p>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말하기를, “납속 보관의 일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 신은 응모자(應募者)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다. 한언이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는 서울[京城]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조운(漕運)하는 길이 통하고, 금년에는 곡식이 다소 풍년이 들었으니, 서울에 실어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메밀[蕎麥]이 무성한데, 만약 서리가 일찍 내리지 아니한다면 또한 먹을 수 있을 것이니, 납속(納粟)을 일으키는 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천천히 생각하여 처결하겠다.” 하였다.</p>	<p>則亦可食也。 納粟之舉，非出於不得已也。 請停之。” 上曰：“當徐思處之。”</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8월 10 일(무자) 3번째기사</p>	<p>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음복례(飲福禮)를 행하였는데, 단지 한 잔[一爵]을 돌리고는 파(罷)하였다. 명하여 집사관(執事官)들을 인정전 남쪽 행랑(行廊)에서 먹이도록 하였다.</p>	<p>○御仁政殿行飲福禮，只行一爵而罷。命饋執事官於仁政殿南行廊。</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8월 13 일(신묘) 2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根本)으로 먹는 것을 하늘같이 여기는데, 해마다 가뭄이 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다. 올해는 옛날에 비하여 더욱 심해서 울부짖으며 먹을 것을 기다리지만, 장차 구렁[溝壑]에 굴러 떨어질 것인데, 내가 부모(父母)가 되어 스스로 굶주리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또 해마다 흉년을 고(告)한 것으로 인연하여 창고를 열어 진구(賑救)하였으나, <곡식이> 거의 다떨어지게 되었다. 지금 비록 군창(困倉)을 기울여 진구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고, 더욱이 군수(軍需) 또한 결핍(缺乏)되게 할 수 없는 데, 백 가지 계책(計策)을 생각해 보아도 진구할 방법이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농촌 사람이 없으면 군자(君子)를 봉양(奉養)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백</p>	<p>○傳旨議政府曰：“民惟邦本，食爲民天。 頻年早暵，庶民艱食，今年之荒，比古爲甚。 嗷嗷待哺，將轉溝壑，予爲父母，不啻如己之飢。 第緣連歲告歉，發倉幾盡，今雖傾困以賑，尙不能贍。 況軍需亦不可乏也，焦勞百計，賑救無策。 古語云：‘無野人，莫養君子。’ 則黎民阻飢，豈徒爲一人之憂？ 惟爾大小臣僚，苟有私畜，除用度外，各捐贏餘，以活我元元之命，以副予視</p>

	<p>성들의 굶주림을 막는 것이 어찌 한 사람만의 걱정거리이겠는가? 생각건대 그대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사사로이 쌓아 놓은 곡식이 있으면 용도(用度)를 제외하고 각각 그 남는 것을 내어서 백성의 생명을 살려 백성이 상(傷)하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나의 뜻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民如傷之意。”</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14 일(임진)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정윤(鄭綸)이 아뢰기를, “이경동(李瓊全)이 납속 보관(納粟補官)을 청하였는데,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불가(不可)합니다. 당(唐)·우(虞)·삼대(三代)16628) 에도 혹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있었으나, 납속 보관한 일이 없었으며, 한무제(漢武帝) 때에 천하의 재정이 고갈되었으므로, 이를 시행하였으니, 아름다운 법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름다운 법은 아니지만, 지금 거행(舉行)하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생명이 중대해서이다.” 하였는데,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慎)이 아뢰기를, “백성을 진구하는 것은 중대하니, 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하였다.</p>	<p>○壬辰/御經筵。 講訖， 正言鄭綸啓曰：“李瓊全請納粟補官， 臣竊以謂不可。 唐、虞三代之時， 或有水旱之災， 而無納粟補官之事。 漢武帝時， 以天下財竭而爲之， 非令典也。” 上曰：“非令典， 今欲舉行， 重民命也。” 領事盧思慎啓曰：“重在救民， 行之無妨。”</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16 일(갑오) 2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土宜]을 바쳤으며, 왜(倭) 중추(中樞) 평무속(平茂續) 등 6인이 내조(來朝)하였다.</p>	<p>○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遣人來獻土宜。 倭中樞平茂續等六人來朝。</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17 일(을미) 2번째기사</p>	<p>임복(林福)이 또 곡식 1천 석을 바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바친 것은 관봉(官封)한 수량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것도 묻도록 하라.” 하였는데, 임복이 아뢰기를,</p>	<p>○林福又請獻穀一千碩。 傳曰：“今所獻者， 在官封數內乎？ 其問之。” 福啓曰：“臣私穀凡八千餘石， 縣監與御史盡封之。 今臣以封內一千碩獻之。”</p>

	<p>“신의 사곡(私穀)은 모두 8천여 석인데, 현감(縣監)과 어사(御史)가 모두 봉하였으며, 지금 신은 봉한 것 가운데 1천 석을 바치는 것입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 “임복이 전날에 곡식 2천 석을 바쳤으므로, 진휼(賑恤)할 밀천으로 삼고, 특별히 양인(良人)을 삼도록 명하였는데, 그 아들이 4인으로 곡식을 바친 수량은 적고 종량(從良)할 자는 많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종량할 수효를 감하도록 명하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흉년에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1천 석을 더 바치니, 그 정상(情狀)이 가상하다. 그 4인을 아울러 종량하라.”</p> <p>하였다.</p>	<p>傳曰：“林福前日納穀二千碩，以爲賑恤之資，特命許良其子四口。有言納穀數少而從良者多，故命減從良數。然如此凶年，不惜己物，加納一千碩，其情可嘉。其四口竝從良。”</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17일(을미) 3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이 충주(忠州) 전장(田莊)의 곡식 5백 석을 바쳤다.</p>	<p>○領議政尹弼商納其忠州田莊穀五百碩。</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25일(계묘) 3번째기사</p>	<p>경상도 진휼사(慶尙道賑恤使) 한치형(韓致亨)이 와서 아뢰기를, “본도(本道)에서 관봉(官封)한 사곡(私穀)이 2만 4백여 석인데, 이는 반드시 1백 석 이상만 봉하라는 명령을 이쳐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며, 지금 1백 석 이하를 제외하면 5천여 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구(賑救)하는 데 부족(不足)합니다. 더구나 처음 봉할 때 이미 본주(本主)의 용도(用度)를 계산하여 제외시켰으니, 이미 봉한 것은 비록 1백 석 이하라 하더라도, 청컨대 제외하지 말도록 하소서. 또 횡간(橫看) 가운데에 하루에 장정(壯丁)에게 주는 쌀 5홉과 콩 5홉은 신이 일찍이 1, 2홉의 쌀을 가지고 염醬(鹽醬)과 채소(菜蔬)를 섞어 죽을 만들어 시험해 보았더니, 또한 요기(療飢)할 수 있었습니다. 해[歲] 전에는 수량을 감해서 주고, 농사일에 힘쓸 때를 기다려서 더 주는 일은, 청컨대 해조(該曹)와 함께 의논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1백 석 이하를 봉하는 것은 동쪽 것을 가져다가 서쪽을 돕는 것에 불과하</p>	<p>○慶尙道賑恤使韓致亨來啓曰：“本道官封私穀二萬四百餘石。此必未聞只封百碩以上之令而爲之也。今除百碩以下，則不過五千餘碩，於賑救不足。況其初封時。已計除本主用度矣。其已封者，雖百碩以下，請勿計除。且橫看內，一日給壯者，米五合、豆五合。臣嘗以一二合米和鹽醬蔬菜爲粥而試之，亦可以療飢矣。歲前則減數給之，俟其力農時加給事，請與該曹同議。”傳曰：“百碩以下亦封，則是破東補西也。事已施行，不可更改。減數事，則與戶曹同議以啓。”</p>

	<p>다. 일은 이미 시행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는 없고, 수량을 감하는 일은 호조(戶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8월 26 일(갑진) 5번째기사</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전한서(前漢書)》 식화지(食貨志)를 강(講)하다가, 동지사(同知事)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이 책에 이르기를, ‘3년의 축적(蓄積)을 등(登)이라 하고, 6년의 축적을 평(平)이라 하고, 9년의 축적을 태평(泰平)이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축적의 중함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 번 흉년을 만나면 백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민들이 말하기를, ‘콩 열매가 밭에서 꺾질이 저절로 갈라지니, 이는 명년(明年)에 가물 징조이다.’ 하였는데, 금년에 과연 가물었습니다. 올 가을에 또한 말하기를, ‘콩이 익기도 전에 갈라졌으니, 명년에 또 반드시 가물 것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축적하는 것은 더욱 마땅히 급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축적하는 일은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조처하겠다. 그리고 정월(正月)의 징후(徵候)로 1년을 점치는 것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천도(天道)가 멀더라도 인사(人事)는 닦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듣건대, 천방(川防)과 제언(堤堰)은 유리(有利)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도에 유시(諭示)하여 수축(修築)하도록 하고, 특별히 조신(朝臣)을 보내어 살펴보도록 하였다.” 하니, 김종직이 아뢰기를, “천방(川防)과 관개(灌溉)의 이로움은 매우 많으므로, 거행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제언(堤堰)은 이로움이 멀리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또 봄가을로 수축(修築)해야 하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폐단 또한 많습니다.” 하였다.</p>	<p>○御夕講。講《前漢書》《食貨志》。同知事金宗直啓曰：“此書云：‘餘三年之畜曰登，六年之畜曰平，九年之畜曰泰平。’此言畜積之重也。國朝一遇凶旱，民不聊生。去年秋農人言：‘菽實在田，其甲自拆，是明年旱徵。’今年果旱。今秋亦言菽實未熟而拆，明年又必旱。然則畜積尤所當急。”上曰：“畜積之事，當收群議而處之。如正月候月卜歲，皆未可盡信。天道遠矣，人事不可不修。予聞川防堤堰有利，故已諭諸道令修築，欲別遣朝臣以察之。”宗直曰：“川防灌溉之利甚博，不可不舉行，堤堰則利不及遠。且春秋修築，民多苦之，弊亦多矣。”</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하기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나라에 9년의 축적(蓄積)이 없는 것을 부족(不</p>	<p>○傳旨議政府曰：“《記》曰：‘國無九年之畜曰不足，無六年之畜曰急，無三</p>

<p>(成化) 21년) 8월 27 일(을사) 3번째기사</p>	<p>足)이라 하고, 6년의 축적이 없는 것을 급(急)이라 하고, 3년의 축적이 없는 것을 나라 구실을 못하는 나라라고 하였으며, 3년 동안 경작(耕作)하면 반드시 1년의 식량을 저축할 수 있고, 9년 동안 경작하면 반드시 3년의 식량을 저축할 수 있다.’ 하였는데, 미리 축적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면 비록 가뭄과 수채[水溢]가 있다 하더라도 채색(菜色)16638) 한 자가 없으니, 이는 이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자창(軍資倉)을 두어 군량(軍食)에 대비하고, 별창(別倉)을 두어 기근(飢饉)을 진구(賑救)하는데, 상평창(常平倉)에 이르러서는 해마다 군수(軍需)를 보충(補充)하는 법이 지극히 상밀(詳密)하니, 그 대비하는 것을 구비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가 거칠어 [綿薄] 화곡(禾穀)이 무성하지 못해서 공사(公私)의 축적이 모두 적게 되어 오히려 1년의 식량을 지탱하지 못하니, 나라 구실을 하는 나라라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 올해의 가뭄에는 황정(荒政)을 모두 거행해 보았고, 곡식을 기울여 진구하였으며, 사곡(私穀)까지 모으기에 이르렀으나, 또한 능히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만약 풍진(風塵)16639)의 놀람이 있고 또 해마다 흉년을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조치할지를 모르겠다. 저축(儲蓄)의 계책(計策)은 마땅히 미리 강구(講究)해야겠지만, 아래에서 덜어 위에 보태어 주고 백성을 수탈(收奪)하여 봉공(奉公)하는 것은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바이다. 어떻게 하면 백성으로 하여금 족(足)하고 국용(國用)이 넉넉하며, 개인에 이롭고, 공사(公事)에 편하겠는가? 그것을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로 하여금 조목 조목 진술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年之畜曰國非其國也。 三年耕， 必有一年之食； 九年耕， 必有三年之食。 ’ 其預蓄積而備不虞如此。 雖有旱乾水溢， 民無菜色者， 以此也。 我國置軍資倉以備軍食， 置別倉以備賑飢， 至於常平之倉， 歲補軍需之法， 至爲詳密， 其所以備之者， 不可謂不具。 然土地綿薄， 禾穀不盛， 公私蓄積俱爲尠少， 尙不能支一年之食， 其可謂國爲其國乎？ 今年之旱， 荒政畢舉， 傾廩賑救， 至括私穀， 亦不能贍。 儻有風塵之驚， 又遭連歲之凶， 予未知施措之何如。 儲蓄之策， 當預講究。 然損下而益上。 剝民以奉公， 非予所願聞。 何以使百姓足而國用裕， 利於私而便於公歟？ 其令中外大小臣僚， 條陳以聞。”</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8월 30 일(무신)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내 좌경조윤(大內左京兆尹) 중대부(中大夫) 겸 방(防) 장(長) 풍(豐) 축(筑) 4주 태수(四州太守)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원숙(元肅)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는데,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지난 해 사자[信使]가 돌아올 때 서신(書信) 1통과 겸하여 아름다운 선물</p>	<p>○戊申/日本國大內左京兆尹中大夫兼防、長、豐、筑四州太守多多良政弘遣元肅來獻土宜。 其書契曰：</p>

	<p>약간을 내려 주셨는데, 후의(厚意)를 알고 감대(感戴)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또 사자 원숙(元肅)·주촌(朱村) 등을 보내어 삼가 아뢰건대, 제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안의 선산(善山)의 보문선사(普門禪寺)는 우리 상국(相國)의 분사(墳寺)인데, 비로 법보(毘盧法寶)를 갖추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전(缺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장경(大藏經)》 전문(全文) 1부(部)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전법륜(轉法輪)16644 하도록 한다면 나라가 편안하고 병란(兵亂)이 종식되어서 편호(編戶)가 영구히 풍성해질 것이니, 이는 귀국(貴國)의 교화(教化)가 멀리 하국(下國)의 일단(一端)에 미치는 것입니다. 1권(卷)과 1축(軸)이라도 가리지 않고 내려 주신다면 저에게 다행이겠습니다. 하찮은 방물(方物)은 별도로 건목(件目)을 갖추었는데, 마음을 곡진히 하여 삼가 사자 원숙·주촌 등에게 명하여 어리석은 뜻을 대신 전하도록 합니다. 전하(殿下)께서는 조리(操履)가 강녕(康寧)하시고, 정신(廷臣)들도 각각 보애(保愛)하시기를 바랍니다.”</p> <p>하였다. 별폭(別幅)에는 장도(長刀) 1대(對), 개(鎧) 1령(領), 제연구 주칠 견자(諸緣具朱漆鑊子) 1대, 병풍(屏風) 1쌍(雙), 접첩 화선(摺疊畫扇) 20과(把), 대완분(大碗盆) 2개(箇), 연병(鋌瓶) 2대, 자석 문연(紫石紋研) 10매(枚), 유황(硫黃) 1천 근(斤), 계심(桂心) 1천 근이었다.</p>	<p>去歲信使回來，賜書一道，兼嘉貺若干，厚意甚悉，不勝感戴。今又遣信使元肅、朱村等謹啓。僕治內善山普門禪寺者，。吾相國之墳寺也。未妥毘盧法寶，衆以爲缺典。冀得《大藏》全文一部，使衆日日轉之，則國寧兵熄，而編戶永豐焉。是貴國之化遠布下國之一端也。無一卷一軸所貽，則僕之幸也。不腆方物，別具件目，心曲恭命信使元肅、朱村等以遞徹顯。祈殿下操履康寧，廷臣各自保愛。別幅：長刀一對、鎧一領、諸緣具朱漆鑊子一對、屏風一雙、摺疊畫扇二十把、大碗盆兩箇、鋌瓶二對、紫石紋研十枚、硫黃一千斤、桂心一千斤。</p>
<p>성종 182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30일(무신)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 남평(南平)에 사는 사노(私奴) 가동(家同)이 2천 석을 납속(納粟)하였으니, 청컨대 원하는 바에 따라 논상(論賞)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전일에 임복(林福)이 납속(納粟)하였으므로, 특별히 종량(從良)시키도록 하였었는데, 이는 그 납속한 것이 중한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이 가상해서였으나, 이로써 예(例)를 삼을 수는 없다. 만약 가동에게 원하는 바를 물어보면 반드시 양인(良人)이 되고자 하겠지만, 따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원하는 바</p>	<p>○戶曹啓：“全羅道南平居私奴家同納粟二千碩，請從願論賞。”傳曰：“前日林福納粟，特令從良，非重其粟，乃嘉其心也。然不可以此爲例。若問家同所願，則必欲爲良矣，不可從也。然不從其願，則亦不可納粟，何以處之？”戶曹更啓曰：“固不可一從其願。請聽其言，酌其輕重論賞。”傳曰：</p>

	<p>를 따르지 않는 것 또한 불가(不可)하니, 납속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니, 호조에게 다시 아뢰기를, “실로 한결같이 그 원하는 바를 따를 수는 없으니, 청컨대 그 말을 들어 보고 그 경중(輕重)을 참작해서 논상하소서.” 하였으므로, 전교하기를, “종량(從良)은 이미 불가하다. 또 비록 그 곡식을 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곡(私穀)을 봉하는 일은 이미 유시(諭示)를 내렸으며, 또한 이로써 민가(民家)를 진구(賑救)할 수 있으니, 가동(家同)에게는 곡식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p>	<p>“從良既不可，且雖不納其穀，封私穀事已下諭矣，亦可以此賑民，家同穀勿許納可也。”</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3일 (신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광릉(光陵)에 나아가 별제(別祭)를 행하고, 이어서 봉선전(奉先殿)에 나아가 제사(祭祀)를 행하였다.</p>	<p>○辛亥/上詣光陵行別祭，仍詣奉先殿行祭。</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4일 (임자) 1번째기사</p>	<p>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이승건(李承健)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전 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중선(李仲善)이 탐람(貪婪)으로 폐출(廢黜)되자 분한 마음을 품고 관둔전(官屯田)에 말을 풀어 놓고 또 화곡(禾穀)을 베었으며, 또 관청 안의 유기(鋤器)와 철기(鐵器)를 자기 집으로 운반해 왔으니, 청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승건이 또 아뢰기를, “저자 사람들의 옥사(獄事)에는 수인(囚人)들이 매우 많은데, 의심스러운 만한 사람이 없으니, 청컨대 풀어 보내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승지(承旨)가 국문하고 온 뒤에 마땅히 조치하겠다.”</p>	<p>○壬子/司諫院獻納李承健來啓曰：“今聞前陽智縣監李仲善以貪見黜有忿心，放馬于官屯田。又芟刈禾穀，且官中鋤鐵器，自家輸來。請令攸司鞫之。”傳曰：“可。”承健又啓曰：“市人之獄，囚者太多，其無可疑者，請放遣。”傳曰：“承旨鞫來後當處之。”</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5일 (계축) 2번째기사</p>	<p>하였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금구 현령(金溝縣令) 조계손(趙繼孫)이 관물(官物) 6타(駄)를 도둑질하여 집에다 수송(輸送)하는데, 부민(部民)들이 무리를 지어 중로(中路)에서 맞이하여 빼앗았으며, 조계손이 이 말을 듣고 아리(衙吏)를 거느리고 가서 방어하니, 부민이 화살을 쏘며 항거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대사(大事)이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는데,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수령이 관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진실로 죄가 있으며, 부민들의 소행 또한 매우 악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풍화(風化)에 관계된 것이므로,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국(推鞠)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강거효가 또 아뢰기를, “듣건대 근자에 문신(文臣)이 제술(製述)하는 날 시관(試官)과 문신(文臣)들에게 술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데, 신은 무지(無知)한 백성들이 모두 궐내(闕內)에서 또 술을 쓰는 것으로 여기고, 다투어 서로 마시려 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가을 기운[秋氣]이 이미 깊었고, 농사일도 정해졌으니, 하늘의 경계를 삼가 할 때가 아니다. 또 날이 점점 한랭(寒冷)해지는데, 늙은 재상(宰相)들이 예궐(詣闕)한다면 약주(藥酒)가 없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부득이 술을 쓰면서 민간(民間)에서 술을 쓰는 금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김수동(金壽童)이 말하기를,</p>	<p>○御經筵。講訖，執義姜居孝啓曰：“今聞金溝縣令趙繼孫盜官物六駄，輸送于家，部民成群，要於中路而奪，繼孫聞之，率衙吏往禦之，部民射而拒之。此大事，請遣朝官鞠之。”上顧問左右，領事韓明澮對曰：“守令之盜竊官物，固有罪矣；部民所爲，亦甚惡矣。”上曰：“此乃係關風化，不可不痛懲。其遣朝官推鞠可也。”居孝又啓曰：“聞近者文臣製述日，試官及文臣等賜酒。臣恐無知之民皆以爲闕內且用酒，爭相崇飲也。”上謂左右曰：“秋氣已深，農事已定，此非謹天戒之時。且日漸寒冷，老宰相詣闕則不可無藥酒。如此不獲已用酒，而禁民間用酒，無乃不可乎？”檢討官金壽童曰：“若罷酒禁，則無知之民崇飲不已，不爲後日之計，其弊不少，酒禁不可罷也。”上曰：“凶年小民因犯酒禁，或決罪，或納贖，皆可矜也。且聞武士輩畏酒禁，未得射侯。講藝射時，須借酒力，今如此廢業，亦爲未便。”居孝曰：“近因國喪，講武習陣久廢，請行之。”上曰：“國家昇平日久，無虞</p>
--	---	--

	<p>“만약 금주(禁酒)를 파(罷)한다면 무지한 백성들이 술을 숭상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여 후일(後日)의 계책(計策)이 되지 못하고, 그 폐단(弊端)이 작지 아니할 것이니, 금주는 파할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흉년에 소민(小民)이 금주(禁酒)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혹 죄를 결단(決斷)하거나 혹 납속(納贖)하는 것은 모두 가궁(可矜)하다. 또 듣건대 무사(武士)의 무리들이 금주(禁酒)를 두려워하여 사후(射侯)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사(藝射)를 강(講)할 때에는 모름지기 술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니, 지금 이와 같이 업(業)을 폐하는 것 또한 미편(未便)하다.”</p> <p>하였다. 강거효가 말하기를,</p> <p>“지금 국상(國喪)으로 인하여 강무(講武)와 습진(習陣)을 폐(廢)한 지 오래되었으니, 청컨대 거행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국가(國家)가 승평(昇平)한 날이 오래되었고, 걱정이 없을 때에는 더욱 준비가 없을 수 없다. 이제 무신(武臣) 출신의 당상관(堂上官)은 모두 업(業)을 폐하고 다스리지 않으니, 크게 염려할 만하다. 장수(將帥)가 비록 지용(智勇)을 귀하게 여긴다 하나, 기예(技藝)가 없을 수 없다. 장수가 활을 잘 쏘면 사졸(士卒)이 믿고 두려워함이 없고, 적인(敵人) 또한 두려워할 것이다.”</p> <p>하였다. 한명회(韓明澮)가 말하기를,</p> <p>“신이 오랫동안 양계(兩界)에 있었으므로 상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변장(邊將)이 만약 활을 잘 쏘지 못한다면 야인(野人)들이 마음 속으로 복종(服從)하지 않을 것이므로, 변장(邊將)은 모름지기 활 잘 쏘는 자를 골라서 써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다.</p>	<p>之時，尤不可無備也。 今武臣堂上官皆廢業不治，大可慮也。 將帥雖以智勇爲貴，然不可無技藝也。 將帥善射，則士卒恃之而無懼， 敵人亦畏之矣。”</p> <p>明澮曰：“臣久在兩界，備詳知之。 邊將若不善射，則野人不心服， 邊將須擇用善射者也。”</p>
<p>성종 183권, 16년</p>	<p>예조(禮曹)에서 독제(蠶祭)16645) 의 음복(飲福) 때에 음악을 내려 줄지의 여</p>	<p>○禮曹啓稟蠶祭飲福賜樂與否。 傳曰：</p>

<p>(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5일 (계축) 4번째기사</p>	<p>부(與否)를 계품(啓稟)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농사일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내가 주금(酒禁)을 과하려고 하였는데, 대간(臺諫)이 그것을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비(大妃)의 탄일(誕日)이 근래에 있고, 양전(兩殿)이 명하여 종친(宗親)·재주(宰樞)를 공궤(供饋)하도록 하였으므로 마땅히 술을 써야 할 것인데, 이 또한 부득이한 것이다. 주금을 과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 여부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과(李坡)·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과할 만합니다.” 하였고, 이극배(李克培)·정괄(鄭佶)·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과할 만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주금을 과하도록 하라.” 하고,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무릇 국가(國家)의 강상(綱常)과 장오(贓汚)에 관계되는 것 외에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오래되었거나 얼마 안되었거나를 가리지 말고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p>	<p>“今農事已定，予欲罷酒禁，臺諫言其不可。然大妃誕日在近，而兩殿命饋宗宰，當用酒，此亦不得已也。罷酒禁當否，其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 鄭昌孫、韓明澮、尹弼商、洪應、盧思愼、尹壕、李坡、鄭蘭宗議可罷，李克培、鄭佶、金謙光議不可罷。傳曰：“罷酒禁。”傳旨吏兵曹曰：“凡干國家綱常、贓汚外，收告身者，勿揀久近，竝還給。”</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8일 (병진) 3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집(李諱)이 치계(馳啓)하기를, “채령군(載令郡)에는 고랑을 파서 관개(灌溉)하기에 마땅한 곳이 있습니다.” 하니, 명하여 병조 정랑(兵曹正郎) 박문간(朴文幹)을 보내어 가서 살펴보도록 하였다.</p>	<p>○黃海道觀察使李諱馳啓：“載令郡有開梁(權) [灌] 溉可當處。”命遣兵曹正郎(朴文幹) [朴文幹] 往審。</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9일</p>	<p>명하여 종친(宗親) 1품 이상, 의빈(儀賓),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도총부(都摠府)의 입직 당상(入直堂上), 입직한 여러 장수,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을 명정전(明政殿) 뜰에서</p>	<p>○命饋宗親一品以上、儀賓、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漢城府、都摠府入直堂上、入直諸將、弘文館、藝</p>

<p>(정사) 2번째기사</p>	<p>공궤(供饋)하도록 하고, 이어서 명하여 음악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 등이 아뢰기를, “금일 대내(大內)에 음악을 울리지 아니하였는데, 오직 바깥 뜰에만 음악을 내려 주시니, 신 등은 마음이 미안(未安)합니다. 청컨대 양전(兩殿)에도 음악을 울리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내에는 빈객(賓客)이 없기 때문에 음악을 울리지 않았을 뿐이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1년 가운데 탄일(誕日)이 몇 번인가? 경들은 많이 마시고 즐기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큰 옥배(玉杯)를 내어서 내관(內官) 유한(柳漢)·김결(金潔)로 하여금 돌리게 하고, 선운(宣醞)을 여러 번 돌리니, 좌중(座中)에서 취한 자가 많았으며,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가 일어나서 춤을 추었는데, 날이 저물어서야 파하였다.”</p>	<p>文館官員于明政殿庭，仍命賜樂。左議政洪應等啓曰：“今日大內不進樂，獨於外庭賜樂，臣等心實未安。請進樂于兩殿。”傳曰：“內則無賓客，故不令進樂耳。”仍傳曰：“一年內誕日幾番歟？卿等極飲盡歡可也。”又出玉大杯，使內官柳漢、金潔行宣醞數行，坐中多醉者。禮曹判書柳攄起舞，日暮而罷。</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11일(기미)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송질(宋軼)과 정언(正言) 신건(辛鍵)이 아뢰기를, “지금 흉년을 만나 주금(酒禁)을 파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대답하기를, “금년에는 가뭄이 심한데도 소민(小民)들이 준절(樽節)을 알지 못하고 신(神)에게 제사하는 데 망령되게 허비하고, 오고 가는 수령들이 또한 빈객(賓客)을 위하여 주식(酒食)으로 많이 쓰는데, 주금(酒禁)을 파하였으니 미편합니다.” 하였고, 시강관(侍講官) 기찬(奇禛) 또한 말하기를, “주금은 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말하기를,</p>	<p>○己未/御經筵。講訖，持平宋軼、正言辛鍵啓曰：“今當凶歲，罷酒禁未便。”上顧問左右，領事沈澮對曰：“今年旱甚，小民不知樽節，妄費於神祀迎餞，守令亦爲賓客多費酒食，罷酒禁未便。”侍講官奇禛亦曰：“酒禁不可罷。”知事李克增曰：“秋冬開禁，自明春禁之爲便。”上曰：“兩大妃殿當進藥酒，若有酒禁，則兩大妃豈安於心？且武臣侯射，亦不可無酒也。”奇禛、宋軼曰：“闕內不得已用酒及武臣</p>

	<p>“가을과 겨울에는 해금(解禁)하고, 명년 봄부터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비전(大妃殿)에 마땅히 약주(藥酒)를 올려야 하는데, 만약 술을 금한다면 두 대비께서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또 무신(武臣)이 사후(射侯)할 때에도 술은 없을 수 없다.” 하였다. 기찬과 송질이 말하기를, “궐내(闕內)에서 부득이하여 술을 쓰는 것과 무신이 사후할 때 쓰는 것 외에는 모두 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량(商量)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p>	<p>射侯外，餘皆禁之何如?” 上曰：“予當商量處之。”</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11 일(기미) 2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유윤겸(柳允謙) 등이 와서 아뢰기를, “곡식을 술에 허비하는 것은 지나치게 할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곡식이 귀한 때에는 주금(酒禁)을 과하는 것이 미편(未便)합니다. 듣건대 백성들은 굶주리는 자가 많이 있는데 수령(守令)이 술을 마음대로 마시면서 진구(賑救)하는 것을 일삼지 않는다고 하니, 힘써 무휼(撫恤)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컨대 주금을 폐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침 경연에서의 홍문관 관원이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p>	<p>○弘文館副提學柳允謙等來啓曰：“費穀莫過於酒，如此穀貴之時，罷酒禁未便。聞百姓多有飢餓者，守令飲酒縱恣而不事賑救，則其勤恤之意安在？請勿廢酒禁。” 傳曰：“朝經筵，弘文館員已知之矣。”</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12 일(경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이수언(李粹彦)·헌납(獻納) 이승건(李承健)이 군소배(群小輩)들의 숭음(崇飲)의 폐단을 극론(極論)하며 다시 술을 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장차 전지(傳旨)를 내려서 종주(縱酒)16653) 을 금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승건이 말하기를,</p>	<p>○御經筵。講訖，持平李粹彦、獻納李承健極論群小崇飲之弊，請復酒禁。上曰：“禁酒則不可。將下傳旨，禁縱酒矣。” 承健曰：“市裏人醜詆宰相，罪固大矣，固當得情，以快衆心。然事干甚衆，累月囚繫，節氣漸寒，死傷</p>

	<p>“저자 안의 사람들이 재상(宰相)을 비방한 것은 죄가 진실로 크므로, 마땅히 정실(情實)을 얻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쾌(快)하게 해야 하겠으나, 일이 매우 많은 사람에게 관계되고, 여러 달 동안 옥(獄)에 갇혀서 매어 있는데다가 절기(節氣)가 점차 추워져서 죽거나 상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청컨대 속히 결단하여 풀어주소서.”</p> <p>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이미 옥사(獄事)가 오래되어 실정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분사(分司)16654) 하여 속히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p> <p>하였다. 이극배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 창고의 저장은 바닥이 났으니, 만약 흉년을 만나 백성을 진구(賑救)하려면 군자(軍資)를 빌어 써야 하므로,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이 《송사(宋史)》를 보건대, 평소 세금 외에 따로 곡식 1두(斗)를 취하여 의창(義倉)16655) 의 곡식에 보충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또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창은 백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비록 백성에게서 <곡식을> 더 취하여 보충한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의논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必多。請速決放。”上問左右，領事李克培曰：“已爲老獄，得情甚難。臣意謂分司速治可也。”上曰：“可。”克培曰：“我國倉儲虛竭，若遇凶年，賑民貸用軍資，誠非細故也。臣觀《宋史》，常稅之外別取一斗，以補義倉之穀。今亦行之如何？義倉爲民而設，雖加取於民而補之，無怨矣。”上曰：“當議之。”</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12일(경신) 6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올해의 흉년은 옛날에 비해 매우 심하여 공사(公私)간에 텅 비어서 축적해 놓은 것이 모두 바닥이 났으니, 진실로 비용을 절약하여 아껴 써야 마땅한데, 세속(世俗)이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남용(濫用)하여 절제가 없다. 근래에 금주(禁酒)의 영(令)은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쓸데없</p>	<p>○傳旨議政府曰：“今年凶歉，視古爲甚。公私枵然，儲畜俱竭，固當節用省費。然俗尙好飲，濫用無節。近者禁酒之令，非直爲謹天戒，亦欲省浮費耳。但今時候漸寒，奉養兩殿、慰藉</p>

	<p>는 비용을 아끼고자 함이다. 단지 지금 일기[時候]가 점차 추워져서 양전(兩殿)을 봉양(奉養)하고 노신(老臣)을 위자(慰藉)16656) 하는 데에는 이미 부득이하여 술을 쓰고 있으니, 중외(中外)라고 해서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것이다. 무사(武士)는 추울 때 술의 힘이 없으면 즐거이 활을 쏠 수 없으니, 무사의 일도 오랫동안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해금(解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해금을 다행으로 여겨 무리를 지어 마시면서 재물[財穀]을 낭비하며 유익함이 없는 것을 일삼고 있으니, 어찌 내가 해금한 뜻이겠는가? 또 백성을 가까이하는 관리로는 수령(守令)보다 더 긴절한 사람이 없는데, 백성들이 울부짖는 때를 당하여 진구(賑救)하는 것을 여사(餘事)로 삼고 빈객(賓客)을 접대(接對)하며 방자하게 취포(醉飽)16657)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엄하게 다스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중외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p>	<p>老臣，既不得已而用酒，則中外不容有異；武士寒無酒力而不樂爲射，則武事不可久廢，故姑且開禁。若徒以寬禁爲幸，群聚崇飲，糜費財穀，以事無益，豈予開禁之意耶？且親民之官，莫切於守令，而當黎庶嗷嗷之時，以賑救爲餘事，接對賓客恣爲醉飽，則在所痛繩不貸。將此意曉諭中外。”</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15일(계해)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김질(金耆)이 아뢰기를, “예조(禮曹)의 당상(堂上)·낭청(郎廳)이 왜인(倭人)에게 인정(人情)의 물품을 받는 것은 이미 격례(格例)가 되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신숙주(申叔舟)는 겸 예조 판서(兼禮曹判書) 때 증유(贈遺)하는 물품으로 후추[胡椒]·약재(藥材)의 종류 같은 것은 받고 다른 물품은 모두 물리쳤다 하는데, 지금은 비록 사라능단(紗羅綾段)이라 하더라도 모두 받으며 당연하게 생각하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왜인이 요구는 지극히 번거로워서 마음 속으로 만약 증유(贈遺)만 하면 마침내 원하던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예조 당상·낭청은 그것을 받고 사양하지 않으니, 저들이 비록 오랑캐[夷狄]라고는 하지만, 어찌 물품을 받는 것이 불가(不可)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추·약재같이 자질구레한 물품 외에는 한결같이 모두 물리치고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p>	<p>○癸亥/御經筵。講訖，掌令金耆啓曰：“禮曹堂上、郎廳受倭人人情之物，已成格例。臣聞申叔舟兼禮曹判書時，其贈遺物，如胡椒、藥材之類則受之，他物則皆却之。今則雖紗羅綾段，亦皆受之，恬不爲怪。臣意倭人求請至煩，其心以爲若行贈遺，可得遂願。禮曹堂上、郎廳受之不辭，彼雖夷狄，豈不知受之爲不可乎？於其心必不服矣。如胡椒、藥材瑣瑣之物外，一皆却之不受乃可。”正言鄭綸亦言之。上顧問左右，領事盧思慎、知事李克增對曰：“臺諫之言甚當。”上曰：“受其</p>

	<p>하였고, 정언(正言) 정윤(鄭綸) 또한 그것을 말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는데,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대답하기를,</p> <p>“대간(臺諫)의 말이 매우 당연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증유(贈遺)를 받는 것이 비록 격례(格例)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염치(廉恥)에 있어서 어떠한가? 받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p> <p>하였다. 김질이 또 주금(酒禁)을 열어준 것이 불가함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술은 쓰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힘써 말하니,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p> <p>하였다.</p>	<p>贈遺雖成格例，其於廉恥何？却而不受則斯可矣。” 金耆又論開酒禁不可。上曰：“用酒不得已也。然爾等力言之，予當從之。”</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15일(계해)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p> <p>“지금 흉년을 당해 천재(天災)에 대하여 마땅히 삼가야 하며 비용을 아껴야 함을 알지 못하는 바 아니나, 단지 근래에 일기가 추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양전(兩殿)을 봉양(奉養)하고 노신(老臣)을 위자(慰藉)하는 데 부득이 술을 썼었는데, 중외(中外)라고 해서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주금(酒禁)의 영(令)을 너그럽게 했으나, 오히려 숭음(崇飲)하는 법(法)은 엄하게 했었다. 그런데 지금 대간이 한 번 주금을 열면 폐단(弊端)이 진실로 다단(多端)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이치에 가까워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헌수(獻壽)·혼인(婚姻)·제사(祭祀)·양로(養老)·사후(射侯)·노병(老病)·복약(服藥)과 병술[瓶酒]을 가진 자 외에는 이전대로 중외에서는 술을 금하도록 하라.”</p>	<p>○傳旨禮曹曰：“今當荒歉，非不知天災之當謹、浮費之可省。但因近者日候漸寒，奉養兩殿、慰藉老臣，既不得已而用酒，則中外不容有異。故姑寬禁酒之令，尚嚴崇飲之法。今臺諫以爲一開其禁，弊固多端，言近於理，不可不從。除獻壽、婚姻、祭祀、養老、射侯、老病服藥及持瓶酒者外，依前中外禁之。”</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16일(갑자)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아뢰기를,</p> <p>“국가 창고의 저장량이 거의 다하였으므로 구황(救荒)하기가 어려운데, 곡식을 얻는 방법은 어떤 계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식견(識見)이 없으나, 집에서 생각해 보건대, 염세(鹽稅)의 이로움만한 것</p>	<p>○甲子/御經筵。講訖，領事尹壕啓曰：“國家倉儲殆盡，救荒爲難。得粟之術，不知施何計而可也！臣雖無識，在家思之，莫如鹽稅之利。式干歲納</p>

	<p>이 없는데, 정식 염간(鹽干)은 해마다 소금 8석(碩)을 바치고 사사 염간은 4석을 바치며, 하삼도(下三道)와 경기(京畿)에서는 모두 소금을 베[布]로 바꾸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이미 성법(成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령(守令)이 게을러서 뜻을 두지 아니하니, 청컨대 조신(朝臣)을 보내어 가서 그 일을 말아 수세(收稅)·무곡(貿穀)을 검찰(檢察)하여 진구(賑救)하는 자료로 삼으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지사(知事) 이과(李坡)가 대답하기를, “이는 성법(成法)이 있으나, 단지 봉행(奉行)하지 않을 뿐입니다. 거둬 검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법(法)은 날마다 효유(曉諭)시켜가며 봉행(奉行)하도록 할 수는 없다. 법을 세운 지 비록 오래되었다 하나, 거둬 밝혀서 거행한다면 신법(新法)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따로 조관(朝官)을 보낸다면 폐단(弊端)이 없을 수 없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검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과가 아뢰기를, “옛날에 하후씨(夏后氏)는 50묘(畝)에서 5묘를 세금으로 바치는 공법(貢法)을 썼고, 은(殷)나라에서는 70묘에서 7묘를 세금으로 바치는 조법(助法)을 썼으니, 실지로는 모두 십일(什一)16658)이었으며, 이보다 많이 바치게 하면 걸(桀)과 같고 적으면 맥(湄)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제도는 20분의 1인데, 지금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백성만을 위하고 나라는 위하지 아니하여 연분 등제(年分等第)16659) 때에 비록 풍년이 들었 다 하더라도 모두 하등(下等)으로 등급을 매기니, 국용(國用)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감사가 등제하여 계문(啓聞)하면 육조(六曹)에서 1등을 더할 것을 의논하였고, 의정부(議政府)에서 또 1등을 더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청컨대 다시 이 법을 시행하면 국용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연분 등제(年分等第)는 감사가 사실대로 계문하지 않은 것은 청</p>	<p>鹽八碩、私干四碩，下三道、京畿皆收稅鹽換布，已有成法，然守令謾不致意。請遣朝臣往典其事，檢察收稅貿穀，以資賑救。”上問左右。知事李坡對曰：“此有成法，但不奉行耳。宜申檢察。”上曰：“法不可日日曉諭使之奉行也。法立雖久，申明舉行，則與新法無以異也。然別遣朝官，不得無弊。但令該司檢察可也。”李坡曰：“古者夏后氏五十而貢，殷人七十而助，其實皆什一也。多則桀，寡則湄，我國稅民之制，二十而取一也。今之監司守令，爲民而不爲國，年分等第時，雖在豐年，皆第以下等，國用不裕以此也。世宗朝，監司等第啓聞，六曹議而加一等，議政府議而又加一等。請復行此法，以裕國用。自今年分等第，監司不從實啓聞者，請罪之。”執義姜居孝啓曰：“尹壕言推鹽之利，李坡啓重斂之端，皆非大臣言也。”上曰：“此非推鹽也，亦非重斂也。”侍講官李昌臣曰：“我國地勢不均，一平之間，膏壙懸絕，以禾穀茂盛處觀之，則果二十而取一也。然往者戶曹請加年分等第，上教曰：‘百姓足，君誰與不足。’</p>
--	--	--

	<p>컨대 죄주소서.” 하였는데,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아뢰기를, “윤호(尹壕는 각염(推鹽)16660) 의 이로움을 말하였고, 이파(李坡)는 세금을 무겁게 거두는 발단을 아뢰었는데, 모두 대신(大臣)으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이는 각염의 이로움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세금을 무겁게 거두는 발단을 아뢴 것도 아니다.” 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이창신(李昌臣)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지세(地勢)가 균일(均一)하지 못하여 1평(坪) 사이에도 기름지고 척박한 것이 두드러지게 다르지만, 화곡(禾穀)이 무성한 곳을 살펴보면 과연 20분의 1을 취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호조(戶曹)에서 연분 등제를 더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상(聖上)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백성이 죽하면 임금으로서 누가 더불어 부족(不足)하겠는가?’ 하시니, 그 때 듣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등제를 높여 백성을 병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파는 경악(經幄)의 대신으로서 그 말이 이와 같았는데, 이 말대로 시행하였다면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였다.</p>	<p>其時聞者皆悅。 今不可高其等第以病民也。”</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16일(갑자) 2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비전주(肥前州) 하송포(下松浦) 단후(丹後) 태수(太守) 원성(源盛)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p>	<p>○日本國肥前州下松浦丹後太守源盛遣人來獻土宜。</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17일(을축)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대간(臺諫)이 본조(本曹)에서 객인(客人)이 주는 물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신숙주(申叔舟)가 겸판서(兼判書)였을 때부터 인순(因循)되어 오늘에 이르</p>	<p>○禮曹啓: “臣等聞臺諫以本曹受客人贈物爲不可。 然此事非自今始, 自申叔舟爲兼判書時, 因循至今。 如胡椒、梔子、石硯等小物, 則不啓而受;</p>

	<p>게 된 것입니다. 후추[胡椒]·치자(梔子)·석연(石硯) 등과 같은 작은 물품은 아 되지 않고 받았고, 단초(段綃) 등의 물품 같은 것은 반드시 입계(入啓)한 후에 받았는데, 이제 물리치고자 하더라도 다만 저들이 노할 듯하기 때문에 감히 와서 계품(啓稟)하는 것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국가(國家)에서는 받게 할 수도 없고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니, 이는 예조의 조처하는 바에 달려 있는 것이다.”</p> <p>하였다.</p>	<p>如段綃等物，則必入啓後受之。今欲却之，第恐彼發怒，故敢來啓稟。”傳曰：“國家不可使受之，亦不可使不受，是在禮曹處之。”</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18일(병인) 1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이 장계(狀啓)를 올려 사직(辭職)하기를, “신이 본부(本府)에서 대죄(待罪)한 지 19년에 그릇되게 태석(台席)16661) 을 더럽힌 지도 7년이 되었는데, 이에 성은(聖恩)이 지극히 중하여 실로 분수(分數)에 넘쳤으니, 마땅히 힘을 다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갚기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 보건대 신은 용렬(庸劣)한 자질(資質)로 나라에 보탬이 없었고, 자신의 생각과도 어긋나는 것을 초래하였는데, 일전의 일만 해도 반성할 만한 것이니, 가만히 말하면서 생각해 보면 심혼(心魂)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이 옛 서적[古牒]을 상고해 보건대, 이윤(伊尹)이 말하기를, ‘신하는 특별한 총애(寵愛)와 이익으로 성공(成功)을 차지하지 않아야 나라가 길이 성실하게 훌륭해질 것이다.’ 하였고, 노자(老子)는 말하기를,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였고, 채택(蔡澤)은 말하기를, ‘사시(四時)의 차례에 있어서 공(功)을 이룬 자는 떠난다.’ 하였으니, 옛부터 있었던 말이 지금까지 경계가 됩니다. 오로지 신은 녹록(碌碌)하여 이러한 것조차 돌아보지도 못하고, 단지 혼자 몸으로 고립되어 도운 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수상(首相)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에 편안하게 여기고 피할 줄도 알지 못하였으니, 솔밭이 부러질까 하는 근심16662) 과 칼끝에서 밥을 짓는 듯한 위태로움에 신은 실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더욱이 신은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p>	<p>○丙寅/領議政尹弼商上狀辭職曰： 臣待罪本府十有九載，謬玷台席七年于茲。聖恩至重，實踰涯分，固當竭力圖報萬一。顧臣庸劣，無補於國，速戾于躬，日者之事，亦可省矣。靜言思之，心魂飛喪。臣稽古牒，伊尹曰：“臣罔以寵利居成功，邦其永孚于休。”《老子》曰：“知足不辱，知止不殆。”蔡澤曰：“四時之序，成功者去。”自古有言，至今爲誠。惟臣碌碌，莫此之顧，單獨一身，孤立無助，猶居首相，恬不知避，折鼎足之憂，炊劍頭之危，臣實戰慄。況今臣桑榆景晚，日迫西山，老與病隨，眩暈下血，蹇濕諸證發作無時。雖針灸日久，未見痊愈，筋骸漸憊，志氣潛摧，以至於朝謁之禮、</p>

	<p>치하여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늙고 병마져 따라서 현기증에다 하혈(下血)까지 겹쳤고, 다리를 저는 등 여러 가지 병 증세가 때없이 발작하여 비록 침구(針灸)16663) 를 행한 지 오래되었으나, 병은 치유되지 않고 근육과 뼈가 점차 노곤한데다가 지기(志氣)마저 잦아 들어 조알(朝謁)의 예(禮)와 경악(經幄)의 시위(侍衛)를 꺾(闕)한 지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건대, 마음 속에 근심만 엇갈리고 병도 더할 뿐 덜어지지 않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여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간절한 정의(情誼)를 양지(諒知)하셔서 신을 해직(解職)시켜 편안히 조리(調理)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만약 살아만 있다면 신이 비록 재주는 없지만, 무릇 국사(國事)를 만나면 노둔(駑鈍)한 자질을 다하여 거의 성은(聖恩)에 보답하겠습니다.”</p> <p>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고 비답(批答)을 내렸다.</p>	<p>經幄之侍亦且久闕。百爾所思，交煎于中，病亦職此，有加無減。伏望聖上憐臣羸爾，諒臣情懇，解臣所職，得以安意調理，苟存視息。臣雖不才，凡遇國事，更竭駑鈍，庶報聖恩。不允。賜批答。</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19일(정묘) 1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인 상관인(上官人) 원숙(元肅)과 부관인(副官人) 주촌(朱村) 등을 인견(引見)하였는데,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誠)·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노사신(盧思愼)·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숭원(李崇元)·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輕)·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균(李克均)·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세좌(李世佐)가 입시(入侍)하였다. 명하여 승지(承旨) 권건(權健)에게 특별히 옥배(玉杯)에 술을 따라서 원숙(元肅)에게 내려 주도록 하고, 이어서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원숙이 아뢰기를, “우리 주인이 구하는 《대장경(大藏經)》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평소 불경(佛經)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p>	<p>○丁卯/御宣政殿置酒，引見大內殿使上官人元肅、副官人朱村等。德源君曙、河城府院君鄭顯祖、玉山君躋、定陽君淳、雲山君誠、八溪君淨、豐川尉任光載、左議政洪應、右議政李克培、領中樞府事盧思愼、領敦寧尹壕、達城君徐居正、吏曹判書李崇元、禮曹判書柳輕、兵曹判書李克均、刑曹參判李世佐入侍。命都承旨權健別酌玉盃賜元肅，仍命進爵。元肅啓曰：“吾主所求《大藏經》，切望垂賜。”上曰：“予素不喜佛經，故本無所藏。若有則何靳之有？”上、副官人進爵後，賜物有差。</p>

	만약 가지고 있다면 어찌 아까와하겠는가?” 하였다.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이 술잔을 올린 후에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20 일(무진) 1번째기사	임금이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집[第]에 거둥하여 위로연(慰勞宴)을 베푸니, 종친(宗親) 1품 이상, 의빈(儀賓)과 대군(大君)의 자손으로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입시(入侍)하였다. 환궁(還宮)하여 전교하기를, “대군 집의 잔치가 아직 파하지 아니하였으니, 면포(綿布) 50필을 보내어 기생(妓生)과 악공(樂工)에게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戊辰/上幸孝寧大君第設慰宴。宗親一品以上、儀賓及大君子孫堂上官以上入侍。既還宮，傳曰：“大君家宴時未罷，其送縣布五十匹，以賜妓工人。”
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20 일(무진) 2번째기사	이보다 앞서 충주(忠州) 사람 최인우(崔仁佑)는 같은 충주 사람 노거(盧据)와 혼인(婚姻)을 다투다가 틈이 벌어졌는데, 하루는 노거가 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으니, 최인우가 도둑으로 지목(指目)하여 포도관(捕盜官)에게 고하였다. 장차 군사를 내어 나포(拿捕)하려 하였는데, 서로 뒤섞여서 때리다가 〈최인우가 노거를〉 죽여서 시체를 물 속에 던졌으므로, 노거의 장인[婦翁]이 관청에 이를 다스려 줄 것을 호소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노거의 어머니 유씨(柳氏)가 상언(上言)하여 차사원(差使員) 경준(慶俊) 등이 국문(鞫問)을 지체한다고 호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들이 살해되었으니 어머니 원통함을 알 만한데, 차사원 등이 미적거리며 지체하는 까닭인가? 내가 경준(慶俊)의 사람 됨됨이를 아는 바 이에 이르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이창신(李昌臣)으로 하여금 급히 가서 경준을 가두어 국문하도록 하였다.	○先是，忠州人崔仁佑與同州盧据爭婚有隙。一日据釣于江，仁佑指爲盜，告捕盜官，將發兵擒捕，因亂擊殺之，投屍水中。据婦翁訴于官治之，至是据母柳氏上言訴差使員慶俊等鞫問淹滯。上曰：“子爲人所殺，母之冤痛可知。差使員等淹延何哉？予知慶俊爲人，必不至此，今何爾耶？其令李昌臣馳往，囚俊等鞫之。”
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22 일(경오) 2번째기사	명하여 이극배(李克培)가 아뢰는 바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 1두(斗)를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심희(沈澮)·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철견(李鐵堅)·이덕량(李德良)은 의논하기를, “특별히 의창(義倉)에 곡식을 보충하는 일은 당(唐)나라·송(宋)나라의 고사(故	[○] 命議李克培所啓收稅時加斂一斗便否。鄭昌孫、沈澮、盧思愼、尹壕、李鐵堅、李德良議：“別倉補穀事，依唐、宋故事施行爲便。令該司商議

	<p>事)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상의(商議)하여 아뢰게 하소서.”</p> <p>하였고, 이파(李坡)·정괄(鄭佶)·이숭원(李崇元)·정난중(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의창(義倉)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민생(民生)을 위한 것이니, 이는 횡렴(橫斂)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원려(遠慮)16665)가 없어서 문득 축적(蓄積)이 있어도 막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니, 관(官)에서 취(取)했다가 돌려주는 것은 손상(損傷)될 것이 없습니다. 근년에 잇달아 흉년을 만나 의창이 비었으므로, 조치할 방책(方策)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나라·송나라의 옛제도에 의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올해의 가뭄은 이전보다 갑절이 더하니, 아직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였고, 이계동(李季全)·김승경(金升卿)·유순(柳洵)·임수창(林壽昌)·민영견(閔永肩)·안처량(安處良)·유지(柳攄)·권찬(權攢)·이척(李則)·송영(宋瑛)은 의논하기를, “의창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니, 많이 축적하여 흉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더 부세(賦稅)하여 보충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지금 당나라·송나라의 고사(故事)를 살펴보면, 모두 군사를 일으킨 후의 부득이한 제도(制度)였습니다. 조종조(祖宗朝) 이래 의창(義倉)을 써서 백성을 구제한 것은 흉년을 만났다 하더라도 일찍이 더 부세한 제도는 없었는데, 이제 만약 이를 시행한다면 백성들이 듣고 놀랄 것이며,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반드시 깊을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경중(京中)의 화포(貨布)를 헤아려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고, 가을에 곡식이 익어 혼할 때에 곡식으로 바꾸어 의창에 들이게 하며, 또 절[寺社]의 전지(田地)를 혁파하여 그 세를 거두어 들여서 아울러 의창에 들이게 함으로써 축적을 늘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였고, 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노공필(盧公弼)·이봉(李封)은 의논하기를,</p>	<p>節目以啓。” 李坡、鄭佶、李崇元、鄭蘭宗議：“義倉之設，本爲民生，非是橫斂也。 愚民無遠慮， 儻有餘儲， 不惜糜費， 官取而還與之， 恐無傷也。 近年連遭凶歉， 義倉空竭， 措置之方， 不可不慮。 依唐、宗〔宋〕舊制爲便， 但今年之旱倍於昔年， 姑待豐年更議何如？” 李季全、金升卿、柳洵、林壽昌、閔永肩、安處良、柳攄、權攢、李則、宋瑛議：“義倉之設，本爲救民，不可不廣儲以備凶歉。 然加賦以補之， 甚不可。 今觀唐、宋故事， 皆兵興以後不得已之制也。 祖宗以來用義倉救民， 非遇凶荒， 曾無加賦之制。 今若行之， 則駭民聽聞， 怨咨必深。 如不得已， 則京中貨布量宜分送諸道， 秋登穀賤時， 質穀入倉。 又革寺社田收其稅， 并入義倉， 以廣儲蓄何如？” 李克均、成俊、盧公弼、李封議：“義倉本以救民， 雖或加賦， 似爲無害。 然愚民未審國家之意， 必以爲橫斂矣。 今貢法以諸邑四面爲年分之等， 故一面之內雖有上上等之田， 其餘或有不實之處， 則取其中以定其稅， 因此歲入不敷。 臣等以爲年分勿以四面爲等， 一</p>
--	--	--

	<p>“의창은 본래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니, 비록 혹 더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국가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반드시 횡렴(橫斂)으로 여길 것입니다. 지금 공법(貢法)은 여러 고을에서 4면을 가지고 연분(年分)의 등급을 삼기 때문에 1면 가운데에 비록 상상등(上上等)의 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가운데에 혹 부실(不實)한 곳이 있으면 그 중간을 취하여 세금을 정하니, 이로 인하여 세입(歲入)이 펴지지 아니합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연분(年分)은 4면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 말고 1면 가운데에서 더러는 산골짜기[山蹊]를 한계로 삼고 더러는 자호(字號)16666)로 표(標)를 삼아 세금을 정한다면 세입(稅入)이 반드시 많을 것이고, 백성들 또한 병폐(病弊)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 비록 더 부과하지 않더라도 나라의 축적은 저절로 넉넉해질 것이다.”</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전일에 의정부(議政府)의 뜻이 연분(年分)에 등급을 더하고자 하였는데, 나는 이를 옳지 않게 여겼었다. 지금 흉년을 당하여 조세(租稅)를 거두어 들인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축적하고자 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모두 결망(缺望)할 것이므로, 내가 옳지 않게 여긴다.”</p> <p>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上教)가 윤당(允當)합니다.”</p> <p>하였다.</p>	<p>面之中，或以山蹊爲限，或以字號爲標，以定其稅，則稅入必多，民亦不以爲病，雖不加賦，而國儲自裕矣。”傳曰：“前日政府意欲加等年分，予以爲不可。今當年凶，加斂租稅，則愚民不知爲民儲蓄之意，必皆缺望，予則以爲未可也。”僉啓曰：“上教允當。”</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9월 22일(경오) 3번째기사</p>	<p>예조 낭청(禮曹郎廳)을 보내어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인 원숙(元肅)에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너희 나라와 대대로 통호(通好)한 것이 매우 후하여 있거나 없는 것은 의리로서 마땅히 서로 도와야 하겠지만, 지금 청한 《대장경(大藏經)》은 우리 나라에서 불교[釋教]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소장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거듭 그 청을 어겼으므로, 해사(該司)로 하여금 여러</p>	<p>○命遣禮曹郎廳語大內殿使元肅曰：“我國與爾國，世世通好甚厚，其於有無，義當相資。今所請《大藏經》，緣我國不好釋教，本無儲藏。然重違其請，令該司廣搜諸寺私藏以與之，爾其知之。聞爾國產胡椒，此物治暑疾</p>

	<p>절에서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널리 수색하여 줄 것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 듣건대 너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후추[胡椒]가 서질(暑疾)에 효험이 있다고 하므로, 그 씨를 얻어서 심으려고 한다. 대내전이 말하기를, ‘세계(世系)가 우리 나라에서 나왔으니, 무릇 정성을 쏟는 것이 다른 주(州)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면 응당 우리가 요구하는 것 역시 마음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p> <p>하였다.</p>	<p>爲切，欲得其種種之。爾大內殿既曰系自我出，凡輸誠款，非他州比，則其所以應我求者，亦當盡心也。”</p>
<p>성종 183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9월 24 일(임신) 3번째기사</p>	<p>예조 좌랑(禮曹佐郎) 박삼길(朴三吉)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상교(上敎)를 받들어 대내전(大內殿)의 사인에게 말하니, 대답하기를, ‘《대장경(大藏經)》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여러 절에서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널리 수색하여 주겠다고 하신 은혜에 비단 우리들만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도 들으면 어찌 감대(感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마도(對馬島)는 후추[胡椒]가 산출되기에 마땅한 땅이 못되고, 본국(本國)에서도 산출되지 않으나, 남방(南方)에서는 많이 산출되며, 그 다음이 유구국(琉球國)인데, 단지 후추 나무가 가뭄으로 인하여 모두 말라 죽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살마주(薩摩州) 입구(立久)의 집에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또한 말라 죽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서신(書信)을 통하여 그것을 구하면, 우리가 마땅히 널리 구하여 보내겠습니다.’ 하였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을 서계(書契)에 쓰도록 하라.”</p> <p>하였다.</p>	<p>○禮曹佐郎朴三吉來啓曰：“臣承上敎，語大內殿使，答云：‘《大藏經》令該司廣搜諸寺私藏以惠，非徒吾等之喜，吾主聞之，豈不感戴乎？對馬島非胡椒所宜之地，本國亦不產，於南方多產，其次琉球國等，恐椒木因旱盡枯也。又於薩摩州立久家，嘗有數叢，亦慮其枯也。我主處通書求之，則我當旁求以送。”傳曰：“以此意錄于書契。”</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0월 1 일(무인) 1번째기사</p>	<p>이 앞서 대내전(大內殿) 사송(使送) 원숙(元肅)을 보내어 절구(絕句)를 지어서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는 뜻을 붙이어 예조 낭청(禮曹郎廳)에게 주었으므로, 예조(禮曹)에서 아뢰니, 임금이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배율 장편(排律長篇)을 강운(強韻)을 달아 지어서 예조 낭청(禮曹郎廳)이 화답하는 것과 같이 하여서 주었더니, 원숙(元肅)이 이것을 보고는 탄식하기를,</p>	<p>○朔戊寅/先是，大內殿使送元肅作絕句，以寓求請《大藏經》之意，贈禮曹郎廳，禮曹以啓。上令弘文館製排律長篇押強韻，似若禮曹郎廳所答以贈。元肅見之，嘆曰：“吾當藏袈裟中，持</p>

	<p>“내 마땅히 가사(袞裳) 속에 간직하였다가 가지고 본국(本國)에 돌아가겠습니다.”</p> <p>하였다. 【시(詩)에 이르기를, “아득한 부상(扶桑)16674) 의 지역은, 풍연(風煙)으로 한 구역을 이루었네. 오(吳)나라 태백(泰伯)처럼 갈리었고, 한(漢)나라 서도(西都)에서 통역하였네. 그 땅에는 물소 밭과 코끼리가 많이 생산되고, 백성은 벼와 찰벼를 저축하여 생활했네. 옛성으로는 축자(筑紫)가 웅장하였고, 이웃은 구노(拘奴)를 접하여 경계하였네. 노래하고 악기를 부는 것은 피리만을 전하고, 의관은 단지 고운 것만을 입었네.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는 큰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이상한 풍속은 부처를 모시는 것이네. 온갖 재물은 민절(閩浙)16675) 을 통하였고, 유관(儒冠)은 사수(泗洙)16676) 에서 끊겼네. 어찌 물고기와 자라의 굴을 알리오? 봉(鳳)과 난(鸞)의 새끼도 있도다. 달을 인상(印相)하여 마음의 거울을 맑게 하고, 티끌을 헤치어 계주(髻珠)를 얻었네. 선근(善根)16677) 은 연꽃 봉오리에 심고, 도미(道味)16678) 는 계호(醜醐)16679) 를 길렀네. 사나운 짐승은 금책(金策)16680) 을 따르고, 주린 새는 보우(寶盂)를 쫓네. 삼거(三車)16681) 를 타고 벽진(辟塵)16682) 을 휘둘렀으며, 이유(二西)16683) 의 많은 책을 통독하였네. 풍류를 청하니 청운(靑雲)을 움직이고, 바람이 그치니 벽해(碧海)가 고요하네. 먼 나라에서 떠받들기를 부지런히 하여, 이 사람이 멀리서 달려왔네. 멀리 떨어진 섬은 털같이 작게 보이는데, 경쾌한 뜻은 빠르기가 오리와 같네. 자라는 뛰려고 힘을 쓰고 고래는 부릅뜬 눈이 번쩍이네. 구름빛이 고우니 홍륜(紅輪)이 어른거리고, 하늘이 낮으막하니 취립(翠笠)이 오뚝하네. 계림(鷄林)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아득한데, 봉궤(鳳闕)16684) 을 향하여 빠르게 나아갔네. 낮에는 가까이서 피시는 은혜를 받았으며,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여 주셨네. 신선이 마시는 술병으로 하약주(下若酒)16685) 를 따르고, 진귀한 반찬은 순모(淳母)16686) 를 차렸도다. 옥관을 부니 놀란 난새가 이르고, 화인(華茵)16687) 을 까니 상서</p>	<p>還本國矣。”【詩曰：“縹緲扶桑域，風烟作一區。分支吳泰伯，通譯漢西都。土產饒犀象，民居畜稻稌。古城雄筑紫，隣界接拘奴。歌吹唯傳篴，衣冠只着儒。高官尊大德，異俗奉浮屠。萬貨通閩浙，儒冠絕泗洙。那知魚鼈窟，有此鳳鸞雛？印月澄心鏡，披塵得髻珠。善根栽菡萏，道味養醜醐。鷲獸隨金策，飢禽啄寶盂。三車揮辟塵，二酉閱書廚。干呂靑雲動，無風碧海浦。遐方勤仰戴，之子遠馳驅。絕島微如髮，輕颿迅似鳧。鰲身騰鳳鼻，鯨眼閃睂盱。雲鬢紅輪暎，天低翠笠孤。鷄林遙指點，鳳闕條踰趨。盡日承恩晉，雲天賜宴需。仙壺斟下若，珍膳飭淳母。玉管驚鸞至，華茵瑞鵲敷。榻前言更近，階下拜成膜。允屬乾坤泰，休論嶺海紆。靈臺曾偃伯，文館正迎儒。玉燭調時律，金甌壯版圖。桑麻連絕徼，車馬溢通衢。治化今如此，隆平有是夫。一家情更篤，兩國信應孚。賓館相逢話，詞林自愧燕。詩成珠錯落，書罷墨模糊。寂照何須問？奮然可遠踰。山門思永鎮，海藏爲來須。側布龍宮盡，</p>
--	---	--

	<p>로운 까치가 모였네. 탑전(榻前)에서는 말씀이 다시 친근하고, 뜰아래에서는 무릎 꿇고 두손 들어 절을 하네. 진실로 건곤(乾坤)이 태평하니, 영해(嶺海)가 멀다고 말하지 마오. 영대(靈臺)에는 일찍이 군사의 병부(兵符)가 쉬고 있다네. 문관(文館)에는 선비를 맞이하였네. 옥촉(玉燭)16688) 은 사시의 율법을 조화(調和)하였고, 금구(金甌)16689) 같은 판도(版圖)가 웅장하네. 상마(桑麻)는 절요(絶徼)16690) 에 연하였고, 거마(車馬)는 트인 거리에 가득하네. 다스리고 교화함은 이제 이와 같으니, 융성(隆盛)하고 평화스러움이 여기에 있다. 한집안의 정이 다시 도타우니, 두 나라의 신의(信義)야 응당 성실하겠네. 빈관(賓館)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며, 사림(詞林)16691) 의 거친 것을 부끄러워했네. 시(詩)가 이뤄지니 구슬이 뒤섞인 듯하였으며, 쓰기를 마치자 먹이 모호(模糊)하네. 적조(寂照)16692) 를 어찌 물으리요 주연(齋然)16693) 이 멀리 찾아갔네. 산문(山門)16694) 에서는 영원히 안정(安定)하기를 생각하고, 해장(海藏)16695) 은 오는 이를 기다리네. 측포(側布)는 용궁(龍宮)에 다하였네. 짐바리를 싣고 갈 마사(馬寺)는 없네. 오천권의 불경을 구하려고, 십만리의 길을 떠났네. 고갑(古匣)에는 어장검(魚腸劍)16696) 이 들어 있고, 맑은 향기는 작미로(鵲尾鑪)16697) 에서 나도다. 나그네가 기거하는 처소에는 꿈조차 아득한데 푸른 바다에도 한해가 저무네. 멀리 소나무 가지가 가려진 곳이 보문(普門)16698) 의 장실(丈室)16699) 임을 알겠네.” 하였는데, 교리(校理) 신종호(申從濩)가 지은 것이다.】</p>	<p>馱歸馬寺無。 五千經卷軸， 十萬里得途。 古匣魚腸劍， 清香鵲尾鑪。 旅窓鬼夢遠， 滄海歲年徂。 遙想松枝偃， 普門丈室隅。” 校理申從濩所製也。】</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3일(경진) 2번째기사</p>	<p>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의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실 때에 매부(妹夫) 신종호(申從濩)가 살며시 계집종[侍婢]에게 부탁하여 몰래 재물과 보화를 훔치게 하였고, 또 신의 어머니가 임종에 즈음해서는 신에게 말하기를, ‘너는 불교(佛敎)를 좋아하지 않으며 신종호(申從濩)도 유자(儒者)이다.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부도(浮屠)16700)의 일을 쓰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매우 마음 아파한다. 비록 재물을 없애더라도</p>	<p>○蛇山君灝來啓曰：“臣母病苦時， 妹夫申從濩陰囑侍婢， 潛偷財寶。 且臣母臨沒謂臣曰：‘汝不好佛， 申從濩亦儒者也， 我死後必不用浮屠之事， 予甚痛之。 雖費財物， 宜設道場， 以資冥福。’ 母之遺言， 諸女無不聞之。 母</p>

	<p>도 마땅히 도량(道場)을 설치하여서 명복(冥福)을 자뢰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어미의 유언(遺言)을 모든 딸들이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미가 죽은 뒤에 신(臣)이 마음을 다하여 재(齋)를 베풀었더니 신중호는 처음에는 따르는 것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달가와 하지 않았고, 신우정(辛禹鼎)은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승(飯僧) 때에는 중의 의복을 두 누이의 집에서 마름질하도록 하였는데, 두 누이는 일부러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끊어서 작게 하여 척촌(尺寸)이 맞지 않게 하였으며, 또 어미의 병이 위급할 때에 두 누이가 곁에서 모시더니 선부(先父)의 의대(衣帶)와 집안의 보물을 몰래 그 집에 보내어 거의 다 없었습니다.</p> <p>그러나 신은 비통한 즘음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근자에 신중호(申從濩) 등이 신의 의롭지 못한 일을 말하여 나라안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며 신중호의 외조(外祖) 한명회(韓明澮)는 한 나라의 대신으로서 신을 일러 누이들에게 박정(薄情)하게 대한다면서 글을 신의 장인인 김원신(金元臣)에게 보냈으니, 듣는 자 뉘라서 한명회(韓明澮)의 말을 그렇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신중호 등이 장차 그 일을 드러내려 하는 까닭에 신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의 모가(母家)의 일을 주간하던 계집종과 두 누이의 유모(乳母)는 신이 이미 불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도망가면 추궁할 근거가 없어 집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상세하게 다 분간하여서 아뢰게 하고, 그 일을 주간한 계집종과 유모도 아울러 가두라.” 하였다.</p>	<p>死之後， 臣盡心設齋， 申從濩初若從之， 終乃不肯， 辛禹鼎則全不行焉。 飯僧時， 僧之衣服， 使二妹家裁之， 二妹故欲不成， 斷而小之， 不中尺寸。 且母病危急時， 二妹侍側， 先父衣帶及家中寶物， 潛輸其家殆盡。 然臣悲慟之際， 無一語出諸口。 今者申從濩等言臣不義之事， 使國人皆知之。 從濩外祖韓明澮， 一國大臣也， 謂臣薄於諸妹， 通書于臣舅金元臣， 聞之者孰不以明澮之言爲然乎？ 從濩等將發其事， 故臣不敢不啓。 且臣母家幹事婢與二妹乳母， 臣已收之， 若逃逸， 則推之無據矣。” 傳曰：“令司憲府詳悉分揀以啓。 其幹事婢與乳母， 竝囚之。”</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7</p>	<p>예조 정랑(禮曹正郎) 정광세(鄭光世)가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 중[僧] 원숙(元肅)의 서간(書簡) 수폭(數幅)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는데, 그 1에 이르기를,</p>	<p>○禮曹正郎鄭光世將大內殿使僧元肅書簡數幅來啓。 其一曰:</p>

일(갑신) 4번째기사

“온조 백제국왕(溫祚百濟國王) 여장(餘璋)의 세째 아들이 일본국에 내조(來朝) 하였음이 수(隋)나라의 대업(大業)16713) 7년 신미년(16714) 이니, 이로부터 9백여 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면면(綿綿)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성(琳聖)의 아버지는 여장(餘璋)이라 하고, 장(璋)의 아버지는 여창(餘瑒)이라 하고, 창(瑒)의 아버지는 여경(餘慶)이라 하는데 이로부터 이상은 왕대(王代) 명호(名號)를 기억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 몸은 일본국에 있으나 계통을 밝히고자 하므로 백제국의 옛일을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온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정하신 국사(國史)가 있을 만하니, 여경(餘慶) 이상의 왕대의 명호를 명하여 베껴서 내려 주소서. 중 원숙(元肅)이 삼가 말씀드립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어제 상경(上京)하는 도중에 지나다 보니 나라의 고을에 너무 가무는 재앙이 있어 백성과 우마(牛馬)가 제일 괴롭게 노역하니, 우신(愚臣)은 감상(感傷)하는 정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든건대, 내일 궐하(闕下)에서 하직을 하는데 반드시 선호사(宣護使)와 호송관(護送官)을 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말이 더욱 갑절의 노역을 해야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만 왜어(倭語)를 통하는 사람 1인으로써 넉넉합니다. 변변치 못한 뜻이 이와 같사오니 우러러 임금님 명만을 헤아릴 뿐입니다. 중 원숙(元肅) 등이 삼가 말씀드립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옷을 내려 주신 은혜를 사례하옵니다.

선호사(宣護使)가 대궐에서 나와 옷을 전해주고

다시 이몸에게 상을 내려 주셨네.

달마 대사(達摩大師)가 전한 굴순(屈眊)16715) 과도 다르지 않으며,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중에게 시주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네.

대단한 은총은 일본에 불일(佛日)16716) 이 돌아오게 하였고,

(溫祖) [溫祚] 百濟國王餘璋第三子, 日本國來朝, 隋大業七年辛未歲也。 自來九百餘年矣, 于今綿綿不絕焉。 琳聖父曰餘璋, 璋父曰餘瑒, 瑒父曰餘慶, 自此以上王代名號不記知。 以其身在日本國, 而契繼圖於百濟國之昔年之故, 不可不知其溫祖之事業。 殿下定可有國史, 餘慶以上王代之名號, 命寫賜之。 僧元肅謹言。

又曰:

昨歷覽上京道中, 國郡有太旱之災, 人民牛馬最苦勞役, 愚不勝感傷之情。 大凡蓋聞, 明辭闕下, 必有宣護使、護送官。 然則人馬尚可倍勞役之憂, 但通倭語者一人以足矣。 微志如斯, 俯仰上命而已。 僧元肅等謹言。

又曰:

賜衣謝恩。 宣使傳衣出紫宮, 更加賞賜忝斯躬。 達摩屈眊曾非異, 武帝施僧今是同。 光寵扶桑回佛日, 德輝中國體仁風。 無茲恩大何以報? 誦呪焚

	<p>빛나는 덕은 중국에 알려져 인후(仁厚)한 풍습을 본받게 하였네. 더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주문을 외고 향을 태우며 순(舜)임금처럼 훌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내전(大內殿) 사인(使人) 중 원숙(元肅)은 예조 대신(禮曹大人) 족하(足下)에게 받습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삼가 예조 3대인 족하(足下)에게 말합니다. 어제 칙명(勅命)16717) 의 뜻을 삼가 절하고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연히 제가 내조(來朝)하러 타고 온 배가 길을 안내할 수 있으니 통신사(通信使)를 보내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백성들이 너무 가무는 근심이 있으니 배를 보내면 고을과 나라의 비용이 있어야 하고 백성의 노역을 써야 하니, 다만 4, 5명의 인원을 차견사(差遣使)로 삼아 제 배에 부쳐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실로 호위하여 일본국에 돌아가서 성지(聖旨)로써 신(臣) 정홍(政弘)을 효유하여 후추[胡椒]의 종자(種子)를 갖고 있는 나라를 찾아가서 명년에 궐하(闕下)에 내조하겠습니다. 정통(正統) 4년(16718) 에 이예(李藝)가 표류하여 우리 나라에 올 때에 배와 돛대를 수선하여 송환하였고, 동(同) 5년(16719) 에 선군(船軍) 김연(金延)을 장주(長州) 적간관(赤間關)에 머물게 하였다가 동년에 고득중(高得宗)이 왔을 때에 부치어 돌려보냈으며, 동(同) 8년(16720) 에 허후(許詡)를 보내어 신의 조부(祖父) 지세래(持世來)를 제사 하였고, 천순(天順)16721) 4년(16722) 에 칙명(勅命)을 받고 수우(水牛)16723) 암수[牝牡]한 쌍을 바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칙명으로 구함이 없음을 따라 다만 경박(輕薄)한 물건만을 바치고 비길 바 없이 큰 은혜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신이 지난해에 전하의 사선(使船)을 기다렸는데, 이제 돌아가는 편에 모(某) 등을 신사(信使)로 보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대내전(大內殿) 사인(使人) 중 원숙(元肅)은 받습니다.”</p>	<p>香祝聖瞳。 大內殿使僧元肅奉禮曹大人足下。 又曰： 謹言禮曹三大人足下。 昨蒙勅命之旨，拜納信受焉。 今偶有予來朝之船，爲之南針，遣信使則幸也。 而今歲民間必可有太早之憂，遣船則可有郡國之費、用人民之勞役。 但以員名四五人爲差遣使，付達予船者最可也。 然則予輩固護之，歸到日本國，以聖旨諭臣政弘，尋覓胡椒種子於所有之邦，明年來朝闕下。 正統四年李藝飄流吾邦來時，修舟楫送還；同五年船軍金延逗留長州赤間關，同年高得宗來時付之還。 同八年遣許詡祭臣祖父持世來。 天順四年蒙勅命獻水牛牝牡，自爾以來，依無勅命之求，但獻輕薄之物，蒙莫大之恩賜而已。 臣往年待殿下使船，今付回使某等遣信使，則以爲幸。 大內殿使僧元肅奉。 又曰：“《四書》、《六經》及《翰墨全書》、《事林廣記》、《韻會》、</p>
--	--	---

	<p>하고 또 이르기를, “《사서(四書)》·《육경(六經)》과 《한묵전서(翰墨全書)》·《사림광기(事林廣記)》·《운회벽암(韻會碧菴)》 등의 책을 사려고 하면 없습니다. 청컨대 국가(國家)에서 찾아 주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백제의 온조의 뒤의 세계(世系)는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써서 주게 하고, 호송관(護送官)은 보내지 말며, 단지 서책만을 주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후추의 종자를 구하는 일은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 의논하게 하라.” 하니,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비록 사람을 보내어 구하더라도 다른 보물(寶物)에 비할 바가 아니니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滄)는 의논하기를, “후추는 군국(軍國)의 쓸 바가 아니니, 사람을 보내어 청구함은 대체(大體)에 편하지 못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이제 보빙(報聘)1674 하는 일이 없는데 후추 종자를 위하여 사람을 일본국(日本國)에 보내면 교린(交隣)하는 대체가 아닙니다. 다만 사자(使者)에게 말하기를, ‘만약 후추의 종자를 얻어서 바치면 반드시 많은 상을 내리겠다.’고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신이 정동(鄭同)의 관반(館伴)1675 이 되어 후추가 중국에서 생산되는지의 여부를 물었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남만(南蠻)에서 생산되고 중국에는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옮겨 심을 수 있었다면 중국이 반드시 먼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없는 것은 어찌 풍토(風土)의 마땅함이 다르</p>	<p>《碧菴》等冊，欲買之則無有，請國家覓給。”云云。傳曰：“百濟溫祿之後世系，令弘文館略書賜之，勿差護送官，只給書冊。差人求椒種事，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鄭昌孫議：“雖遣人求之，非他寶物之比，似無妨。”韓明澮、沈滄議：“胡椒非軍國所用，遣人求請，大體未便。”尹弼商、洪應、李克培議：“今無報聘之事，而爲胡椒種遣人於日本國，非交隣大體也。但語使者曰：‘若得椒種以獻，則必加重賞。’何如？”〔盧思愼〕議：“臣爲鄭同館伴，問胡椒產於中國與否，同曰：‘產於南蠻，中國無有也。’若可以移種，則中國必先之矣，然至今無有，則豈非風土異宜而然乎？且問於倭人，皆言胡椒因商舶而至，非本國所產也。然則恐彼無由得也。彼若可得，豈必待我人同行而後奉進哉？今來元肅等，蒙我國重賜，所願無不遂，難於虛答，故爲此姑息之計，依違之言耳。胡椒非軍國所關，有無不足卹，何必爲此遣人絕國哉？”尹壕、李坡、鄭佶、金謙光、柳輕、柳洵、權仲麟議：“往者大內殿請通信</p>
--	---	--

	<p>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왜인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후추는 상선(商船)으로 인하여 이르는 것이 본국(本國)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들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얻을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우리측의 사람이 동행하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받들어 올리겠습니까? 이제 온 원숙(元肅) 등이 우리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고 소원을 이루지 못함이 없으니, 헛되이 대답하기에 어려운 까닭으로 당장에 편한 것만을 취하는 계책을 삼아 어물어물하는 말입니다. 후추[胡椒]는 군국(軍國)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있고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반드시 이를 위하여 사람을 아주 먼 나라[絕國]에까지 보내겠습니까?”</p> <p>하고, 윤호(尹壕)·이파(李坡)·정괄(鄭括)·김겸광(金謙光)·유지(柳攄)·유순(柳洵)·권중린(權仲麟)은 의논하기를,</p> <p>“지난 번에 대내전(大內殿)이 통신(通信)을 청한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후추 종자를 위하여 사자(使者)를 보냄은 대체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경상도는 흉년이 너무 심하니 사자를 보내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p>	<p>者屢矣，而國家不從；今只爲胡椒種遣使，有妨大體。況今慶尙道饑荒太甚，遣使有弊。”</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8 일(을유) 2번째기사</p>	<p>대내전(大內殿) 사송(使送) 원숙(元肅) 등이 하직하였다. 도승지(者承旨) 권건(權健)이 명을 받고 후추[胡椒] 종자를 찾아서 보낼 일을 말하니, 원숙(元肅)이 대답하기를,</p> <p>“우리 주인은 바로 백제(百濟)의 계통을 받은 까닭으로 마음을 다하여 대국을 사모[向仰]합니다. 후추의 종자가 비록 저희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얻지 못할 이치가 없을 것이니 얻으면 보내겠습니다. 제가 만약 거짓말을 하면 제 몸을 어느 땅에 두겠습니까?”</p> <p>하였다. 예조 참판(禮曹參判) 유순(柳洵)이 대내전(大內殿)에게 치서(致書)하기</p>	<p>○大內殿使送元肅等辭。 都承旨權健承命語胡椒種覓送事。 元肅答曰：“我主乃係出百濟，故盡心向仰大國。 椒種雖非我土所產，我盡心求之，則無不可得之理，得之則爲送矣。 我若爲詐言，則置我身於何地乎?” 禮曹參判柳洵致書大內殿曰：</p>

	<p>를, “멀리서 동정(動靜)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고 위안이 됩니다. 특히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시어 족하(足下)에게 글을 보냅니다. 후추의 씨라고 하면 서독(暑毒)을 다스리는 데 효험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일반적인 약재가 없지 않으나 반드시 여러 종류를 모아서 조제(調劑)한 연후라야 쓸 수 있으니, 궁벽한 시골과 가난한 백성이 갑자기 병이 나면 얻기가 어려우므로 좋은 종자를 얻어 널리 민간에 심게 해서 위급한 때에 자뢰하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귀전(貴殿)이 우리 나라에 파견한 모든 정성스러운 마음이 다른 고을에 비하여 한층 더 돈독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자뢰하여 지내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좋은 종자의 심을 만한 것을 보내 준다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겠습니다. 그것이 귀하의 토지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장삿배가 왕래하는 곳에 널리 구하여 보내는 것도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하였다.</p>	<p>遙想動止康勝爲慰。就中殿下命臣致書于足下。若曰：胡椒子治暑毒有效，我國所產，非無一般藥材，然必收拾諸種而劑之，然後可用。窮巷細民猝病難得，思得良種廣植，民間以資緩急。貴殿派出我邦，凡所誠款，比他州尤篤，有無相資，其來已久。冀得良種之可以生植者見遺，幸甚。若曰非貴土所產，則商舶往來之處，廣行求討以送，亦所冀也。</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8 일(을유) 3번째기사</p>	<p>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 등을 명소(命召)하여 의정부·호조(戶曹)·승정원(承政院)에서 진달한 말을 보이고, 그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진언(陳言)하기를, “중국(中國)에는 일반적으로 부과(賦課)하는 〈세금〉 외에 소금과 차[茶]를 전매(專賣)하는 것과 같은 종류가 있어 별도로 수입이 많으나, 본국(本國)에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외에는 달리 별다른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 국가에서 쓰는 것이 부족합니다. 근년에는 해마다 흉년을 만나 항시적으로 반드시 사용할 것과 군수(軍需)가 장차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렀으니, 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신(臣) 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별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어 삼가 소견을 항목별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제1조에 이르기를,</p>	<p>○命召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臺諫等，示議政府、戶曹、承政院陳言，議其可否。議政府陳言曰：“中國則常賦之外，如推鹽、推茶之類，別利所入數多；本國則田租之外，無他別稅所入，國用不足。近年以來，連遇凶歉，常用調度及軍需，將至虛竭，實爲可慮。臣等反覆思之，別無措置之方，謹以所見條陳于後。”第一條曰：“近年以來，諸道觀察使不顧大體，要譽於民，農事雖實，年分率置下等，國用虛</p>

	<p>“근년 이래로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대체(大體)를 돌보지 않고 명예를 백성에게 요구하여 농사가 비록 충실하다 하더라도 연분율(年分率)을 하등(下等)에 두어 국용(國用)이 탕진되었으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연유를 임시(臨時)에 간계(奸計)가 있나 없나를 캐어 살피어 관찰사가 만일 큰 잘못이 있으면 파출(罷黜)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는데,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盧思愼)·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좌찬성(左贊成) 이과(李坡)·우찬성(右贊成) 정괄(鄭恬)·좌참찬(左參贊) 김겸광(金謙光)·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승원(李崇元)·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枝)·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균(李克均)·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형조 판서(刑曹判書) 성준(成俊)·이조 참판(吏曹參判) 노공필(盧公弼)·공조 참판(工曹參判) 이계동(李季仝)·호조 참판(戶曹參判) 김승경(金升卿)·병조 참의(兵曹參議) 김극유(金克仇)·호조 참의(戶曹參議) 임수창(林壽昌)·병조 참지(兵曹參知) 송영(宋瑛)은 의논하기를,</p> <p>“마땅히 의정부에서 아뢴 것을 따르소서.”</p> <p>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유순(柳洵)·예조 참의(禮曹參議) 권중린(權仲麟)·공조 참의(工曹參議) 손비장(孫比長)·형조 참의(刑曹參議) 민영건(閔永肩)·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 장령(掌令) 이의(李誼)·김질(金耆), 지평(持平) 송질(宋軼)은 의논하기를,</p> <p>“의정부에서 아뢴 것은 실행해서는 안됩니다.”</p> <p>하고, 대사간(大司諫) 한언(韓堰)·헌납(獻納) 이승건(李承鍵), 정언(正言) 정윤(鄭綸)·신건(辛鍵)은 의논하기를,</p> <p>“연분(年分)16726 의 등급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자에게 죄를 과하는 것은 모두 《대전(大典)》에 갖추 실려 있는데, 《대전》 외에 또 과조(科</p>	<p>竭, 職此之由。 臨時擿奸, 觀察使如有大失, 罷黜何如?” 蓬原府院君鄭昌孫、上黨府院君韓明澮、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右議政李克培、宣城府院君盧思愼、領敦寧尹壕、左贊成李坡、右贊成鄭恬、左參贊金謙光、吏曹判書李崇元、禮曹判書柳枝、兵曹判書李克均、戶曹判書李德良、刑曹判書成俊、吏曹參判盧公弼、工曹參判李季仝、戶曹參判金升卿、兵曹參議金克仇、戶曹參議林壽昌、兵曹參知宋瑛議: “當從議政府所啓。” 禮曹參判柳洵、禮曹參議權仲麟、工曹參議孫比長、刑曹參議閔永肩、大司憲李瓊仝、執義姜居孝、掌令李誼·金耆、持平宋軼議: “議政府所啓, 不可行也。” 大司諫韓堰、獻納李承鍵、正言鄭綸·辛鍵議: “年分等第失中者科罪, 具載《大典》, 《大典》之外又立科條, 務欲重收, 則守令監司必希朝旨, 或有過重之弊。 臨時下諭, 不使失中爲便。” 第二條曰: “還上蠲減, 雖曰施惠, 蒙利者少, 而奸猾之徒希望恩澤, 遷延不納, 蓄積虛竭, 亦由於此。 今後勿減何如?” 僉議</p>
--	---	---

	<p>條)16727) 를 세워 많이 거둬들이는데만 힘쓰려 하면 수령(守令)과 감사(監司)는 반드시 조정의 뜻을 맞추려고 더러는 심하게 거둬들이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임시(臨時)에 유시를 내리어 공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p> <p>하였다. 제2조에 이르기를, “환자[還上]를 건감(蠲減)해 주는 것이 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득을 보는 자는 적고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은택(恩澤)을 희망해서 질질 끌며 납부하지 않아서, 창고가 비고 바닥이 난 것도 이 때문이니, 이 뒤로는 건감해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옳습니다.”</p> <p>하였다. 제3조에 이르기를, “전자에게는 갑사(甲士)에게 월봉(月俸)을 주었는데, 세조조(世祖朝)에 특별히 녹봉(祿俸)을 주어 우대하였습니다. 이제 흉년을 당하여 매번마다 2천 인 이상이 한꺼번에 계급에 따라 녹봉을 받게 되니, 그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갑사에게는 2보(保)16728) 를 주는데 다른 군사에 비교하면 많은 것이 되니, 전례에 따라 월봉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정창손(鄭昌孫) 등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p> <p>하고, 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안됩니다.”</p> <p>하였다. 제4조는, “북경(北京)에 가는 사신(使臣)의 반전미(盤纏米)16729) 의 수량을 줄이는 것이 어떠합니까?”</p> <p>하니, 한명회(韓明澮) 등은 의논하기를,</p>	<p>曰：“可。” 第三條曰：“在前甲士給月俸，世祖朝特給祿優之。今當險年，每番二千人竝隨品受祿，其費甚多。甲士則給二保，視他爲優，依前例給月俸何如？” 鄭昌孫等議可，李崇元議否。 第四條：“赴京使臣盤纏米，量減何如？” (孫明澮) [韓明澮] 等議可，鄭昌孫、尹壕、李崇元、柳輕、成俊議否。李克均議：“使、副使、書狀量減，餘皆勿給。” 第五條曰：“功臣田則半減，職田則全減，成均館、四學儒生常養之數亦已減省，寺社位田及別賜田稅，竝權減何如？” 兪議可。 第六條曰：“在前，京畿無水軍節度使，觀察使兼帶。今防禦不緊處，虛設費祿未便，權罷何如？” 鄭昌孫等議可，盧思愼、尹壕、李崇元、李德良議否。 第七(第) [條] 曰：“國屯田，以水軍耕作不便，革之久矣。然以今日之勢觀之，事出權宜，當務爲急。復令耕作，以敷國用何如？” 鄭昌孫等議：“令戶曹磨勘施行。” 臺諫等議可，孫比長議否。 第八條曰：“川防之利，甚於堤堰，《大典》只載修築堤堰，不錄川防，故守令曾不用心。其引水處，或</p>
--	---	---

	<p>“웁습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윤호(尹壕)·이승원(李崇元)·유지(柳輕)·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 “안됩니다.” 하였다, 이극균(李克均)은 아뢰기를, “사(使)·부사(副使)·서장(書狀)은 수량을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지 마소서.” 하였다. 제5조에 이르기를, “공신전(功臣田)16730) 은 절반으로 줄이고 직전(職田)16731) 은 모두 줄이며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16732) 의 유생(儒生)을 항상 기르는 수효도 이미 벌써부터 줄였으며, 사사전(寺社田)16733) ·위전(位田)16734) ·별사전(別賜田)16735) 의 세금도 함께 임시로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웁습니다.” 하였다. 제6조에 이르기를, “전에는 경기(京畿)에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가 없고 관찰사(觀察使)가 겸대(兼帶)16736) 하였으니, 이제 방어(防禦)가 긴요하지 않은 곳은 공연히 설치만 해놓고 녹봉만 주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으니 권도(權道)로 혁파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 등은 의논하기를, “웁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慎)·윤호(尹壕)·이승원(李崇元)·이덕량(李德良)은 의논하기를, “안됩니다.” 하였다. 제7조는 이르기를, “국둔전(國屯田)16737) 을 수군이 경작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여 이를 개혁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형세로써 살펴보건대, 일이 임시로 편</p>	<p>在他邑，或在一二息之地，百姓雖欲爲之，力不及焉。令諸道觀察使訪問可當處，調發丁夫，築之何如？”僉議可。第九條曰：“《大典》內，魚箭收稅補軍資，近來或別賜，或給貧民。强有力者冒稱貧民，隱占爲利，故官倉所入不多。自今勿以給人，皆官收以補穀何如？”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李坡、金謙光、柳輕、李季全、權仲麟、韓堰、閔永肩、宋瑛、李承健、鄭綸、辛鍵議可，李克均、李崇元、李德良、成俊、盧公弼、柳洵、金升卿、金克忸、孫比長、林壽昌、李瓊全、姜居孝、李誼、金耆、(宋瑛) [宋軼] 議否。盧思慎議：“結箭功役甚大，不可盡令官收。依前例，諸道上等箭擇而官結何如？”第十條曰：“魚、鹽、船、網工商等雜稅不一，官吏等慢不致意，有名無實。自今檢覈年年所入多寡，其不實者，官吏論罪何如？”僉議可。第十一條曰：“觀察使、節度使，往者皆以京官兼差，故祿科爲省，今亦依前兼差何如？”韓明澮、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慎、尹</p>
--	---	--

	<p>의한 데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위급한 것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경작하도록 하여서 국용(國用)이 퍼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 등은 의논하기를, “호조(戶曹)로 하여금 마감(磨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p> <p>하고, 대간(臺諫) 등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p> <p>하고, 손비장(孫比長)은 의논하기를, “안됩니다.”</p> <p>하였다. 제8조는 이르기를, “넷독의 이로움은 방죽보다 더 많은데, 《대전(大典)》에는 단지 방죽을 수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넷독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이 안된 까닭으로 수령들이 일찍이 신경을 쓰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줄을 끌어오는 곳이 혹 다른 고을이거나 아니면 1, 2식(息) 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비록 하고자 하여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모든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이고 마땅한 곳을 탐문(探問)하여 장정[丁夫]을 조발(調發)해서 넷독을 쌓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옳습니다.”</p> <p>하였다. 제9조에 이르기를, “《대전》 안에는 어전(魚筭)16738)의 수세(收稅)는 군자(軍資)를 보충한다고 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혹 별사(別賜)하고 혹 빈민(貧民)에게 주었는데, 강하고 힘센 자는 함부로 빈민이라 자칭하여 몰래 차지하여 이익을 취하는 까닭에 관청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모두 관청에서 수납하여서 곡식을 보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p>	<p>壕、李坡、鄭佶、金謙光、柳輕、李德良、金克忸、韓堰、孫比長、林壽昌、權仲麟、閔永肩、宋瑛、李承健、鄭綸、辛鍵議可，鄭昌孫、金升卿、李瓊全、姜居孝、李誼、金耆、宋軼議否。李崇元、李克均、成俊、盧公弼、李季全、柳洵議：“觀察使、節度使，以京官兼差，則雖祿省而有資於國儲。然宰相窳闕有數，新除者皆帶京官實職，則遞來者不得已降職，其於大體未便。前此行之，未久復廢之，節度使仍舊，而觀察使兼牧何如？”第十二條曰：“前此營繕時，專用彭排、隊卒，役使苦重，給月俸以贍其生。今則并役正兵，而彭排等獨受月俸，未便。限國用周足，蠲減何如？”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慎、尹壕、李坡、鄭佶、金謙光、柳輕、李德良、成俊、盧公弼、李季全、金升卿、柳洵、韓堰、金克忸、林壽昌、孫比長、權仲麟、姜居孝、李誼、金耆、宋軼、李承健、鄭綸、辛鍵議可，鄭昌孫、韓明澮、沈澮、李克均、李崇元、閔永肩、宋瑛議：“彭排、隊卒月俸，皆已權減。但受月俸者，近隊</p>
--	---	---

	<p>극배(李克培)·윤호(尹壕)·이과(李坡)·김겸광(金謙光)·유지(柳輕)·이계동(李季全)·권중린(權仲麟)·한언(韓堰)·민영견(閔永肩)·송영(宋瑛)·이승건(李承健)·정윤(鄭綸)·신건(辛鍵)은 의논하기를, “웁습니다.”</p> <p>하고, 이극균(李克均)·이승원(李崇元)·이덕량(李德良)·성준(成俊)·노공필(盧公弼)·유순(柳洵)·김승경(金升卿)·김극유(金克旻)·손비장(孫比長)·임수창(林壽昌)·이경동(李瓊全)·강거효(姜居孝)·이의(李誼)·김질(金耄)·송영(宋瑛)은 의논하기를, “안됩니다.”</p> <p>하고, 노사신(盧思慎)은 의논하기를, “어살을 지르는 공역(功役)이 매우 크므로 모두 관(官)에서 수납하기가 어려우니, 전례에 의하여 모든 도의 상등전(上等箭)은 가리어서 관에서 지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다. 제10조는 이르기를, “어염(魚鹽)·선망(船網)·공상(工商) 등의 잡세(雜稅)가 일정하지 않아 관리들이 태만히 하고 정성을 쏟지 않아 허울좋은 이름뿐이고 실속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해마다 들어오는 것의 많고 적음을 검핵(檢覈)16739 하여 그 충실하지 못한 자는 관리면 논죄(論罪)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웁습니다.”</p> <p>하였다. 제11조는 이르기를,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를 지난 번에는 경관(京官)을 겸차(兼差)한 까닭으로 녹과(祿科)를 덜 수 있었는데, 지금도 전례에 따라 겸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p>	<p>卒淸路隊而已，不宜更減。”第十三條曰：“冗官沙汰何如？”尹弼商、李克培、李坡、鄭佺、金謙光、柳輕、李瓊全、李季全、金升卿、金克旻、孫比長、林壽昌、韓堰、姜居孝、李誼、金耄、宋軼、李承健、鄭綸、辛鍵議可，鄭昌孫、韓明澮、沈澮、洪應、盧思慎、尹壕、李崇元、李克均、李德良、成俊、盧公弼、柳洵、權仲麟、閔永肩、宋瑛議否。戶曹陳言第一條曰：“《大典》以年之豐歉分九等，定租稅，我國土地縣薄，上等之年則不易得也，如中等之年則亦屢矣。而守令不謹驗察，雖年豐，例皆以下等審定，甚者以實爲災轉報觀察使，觀察使亦不親審，從其所報，轉聞于上，府庫儲積之少，實由於此。守令治罪，已有其法，觀察使亦痛斷以法，則租稅之入必多矣。”此條議，與議政府第一條議同。第二條曰：“《大典》《備荒》條，諸鎮令當番水軍煮鹽，具數報觀察使，觀察使每節季啓聞。又《魚鹽》條，鹽盆遙隔諸邑，置鹽倉，輸稅鹽，換穀布，補軍資。其慙遷儲蓄之法，至詳且密。然諸鎮官如煮百碩，</p>
--	---	---

	<p>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과(李坡)·정괄(鄭恬)·김겸광(金謙光)·유지(柳淸)·이덕량(李德良)·김극유(金克丑)·한언(韓堰)·손비장(孫比長)·임수창(林壽昌)·권중린(權仲麟)·민영견(閔永肩)·송영(宋瑛)·이승건(李承健)·정윤(鄭綸)·신건(辛鍵)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p> <p>하고, 정창손(鄭昌孫)·김승경(金升卿)·이경동(李瓊叟)·강거효(姜居孝)·이의(李誼)·김질(金耆)·송질(宋軼)은 의논하기를, “안됩니다.”</p> <p>하고, 이승원(李崇元)·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노공필(盧公弼)·이계동(李季叟)·유순(柳洵)은 의논하기를, “관찰사·절도사를 경관(京官)으로써 겸차하면 비록 녹봉을 덜게 되어 국가의 저축에 자뢰함이 있겠으나, 재상(宰相)의 과궐(窳闕)16740)이 그 수효가 있는데, 새로 임명되는 자들을 모두 경관의 실직(實職)을 겸하게 한다면 체임(遞任)되어 오는 자는 부득이 직급(職級)을 강등(降等)하게 되어 대체(大體)에 편치 못합니다. 이보다 앞서 시행했다가 오래 못가서 다시 폐하고 말았으니, 절도사는 예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관찰사만 목사(牧使)를 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고, 제12조는 이르기를, “이보다 앞서 영선(營繕)할 때에는 오로지 팽배(彭排)16741)·대졸(隊卒)16742)만을 써서 역사(役使)의 괴로움이 중하였으므로 월봉(月俸)을 주어 서 그 생계(生計)를 넉넉히 꾸리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정병(正兵)도 함께 역사하는데 팽배 등만 월봉을 받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국용(國用)이 두루 넉넉할 때까지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과(李坡)·정괄(鄭恬)·김겸광(金謙光)·유지(柳淸)·이덕량(李德良)·성준(成俊)·노공</p>	<p>則以五十碩轉報觀察使，觀察使亦於此數遞減啓聞，則換穀補軍資之需無幾。更令觀察使務從實數，嚴加糾察，則買穀之數必多矣。有如慶尙道所煮之鹽，由洛東江輸運，轉賣於尙州、善山等地面，其價必不如鹽鄉之賤而倍蓰矣。如此則轉運無弊，而買穀軍需之補，必倍於前昔矣。” 僉議可。 第三條曰：“去甲辰年諸道各年未納還上，悉令蠲減，聖上惠解之意至矣。然凡受還上者，貧民居多，而豪强者亦其半。然其貧民則迫於督徵，先豪强畢輸，而豪强者所受，雖至累百，遷延不納，例蒙蠲減之恩。然則雖有蠲減之令，貧民不得蒙實惠矣。且守令任情出納，多致虧欠，虛張文記，以待國家蠲減之令，苟免己罪。今後勿行蠲減。其豪强之家不肯納者，痛繩以法，則儲積必裕矣。” 此條議與議政府第二條議同。 第四條曰：“司贍寺所儲奴婢身貢，摠計縣布七十二萬四千五百餘匹、正布十八萬餘匹，雖積如丘山，若遭饑歲，民不得食。國家雖欲買穀活民，公私俱竭如今年之甚，則無處得買，此爲緩急無用。今後收貢諸邑奴婢數內，</p>
--	---	--

	<p>필(盧公弼)·이계동(李季全)·김승경(金升卿)·유순(柳洵)·한언(韓堰)·김극유(金克忸)·임수창(林壽昌)·손비장(孫比長)·권중린(權仲麟)·강거효(姜居孝)·이의(李誼)·김질(金耄)·송길(宋軼)·이승건(李承健)·정윤(鄭綸)·신건(辛鍵)은 의논하기를, “웁습니다.”</p> <p>하고,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이극균(李克均)·이승원(李崇元)·민영견(閔永肩)·송영(宋瑛)은 의논하기를, “팽배(彭排)·대졸(隊卒)의 월봉은 이미 모두 임시로 감해버렸으며 다만 월봉을 받는 자는 근래에 대졸(隊卒)과 청로대(淸路隊)뿐이니, 다시 더 감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p> <p>하였고, 제13조에는 이르기를, “용관(冗官)16743) 을 사태(沙汰)16744) 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이파(李坡)·정괄(鄭佸)·김겸광(金謙光)·유지(柳輕)·이경동(李瓊全)·이계동(李季全)·김승경(金升卿)·김극유(金克忸)·손비장(孫比長)·임수창(林壽昌)·한언(韓堰)·강거효(姜居孝)·이의(李誼)·김질(金耄)·송길(宋軼)·이승건(李承健)·정윤(鄭綸)·신건(辛鍵)은 의논하기를, “웁습니다.”</p> <p>하고,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승원(李崇元)·이극균(李克均)·이덕량(李德良)·성준(成俊)·노공필(盧公弼)·유순(柳洵)·권중린(權仲麟)·민영견(閔永肩)·송영(宋瑛)은 의논하기를, “안됩니다.”</p> <p>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진언(陳言)한 제1조에는 이르기를, “《대전(大典)》에 해의 풍년과 흉년을 따져서 9등급으로 나눠 조세(租稅)를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나라의 토지는 메말라서 상등에 해당되는 해는 얻기가 쉽지 않고 중등에 해당되는 해는 또한 자주 만날 수 있지만 수령들이 조심해서 살피지 않기 때문에 비록 풍년이 들었더라도 으레 모두 하등으로 판정할</p>	<p>其一半收綿布，一半從時直收米穀，納州倉，以備饑荒。”沈澮、尹弼商、洪應、李崇元、柳輕、李德良、成俊、盧公弼、李瓊全、李季全、金升卿、柳洵、金克忸、林壽昌、韓堰、姜居孝、李誼、金耄、宋軼、李承健、鄭綸、辛鍵議可，鄭昌孫、韓明澮、李坡、鄭佸、金謙光、孫比長、權仲麟、閔永肩、宋瑛議不可。李克培、盧思愼、尹壕議：“若穀賤之年米之入官多，則猶云可也；若穀貴，則米之入官無幾，而國用布貨漸至虛耗矣。豐年則收米，凶年則收布可也，亦不可爲常法，姑行一二年試驗何如？”第五條曰：“密陽守山堤堰，土地沃饒，甲于慶尙一道。曩在世祖朝，曹錫文爲本曹判書，獻議耕墾，水田共二百餘結。今考會計，乙酉年收穀買布之數三千七百餘匹，丁亥年收穀四千七百六十餘碩，則此堤堰固不可輕棄。而頃年國家以其一半施納于奉先寺，是不得補軍資、備荒政也。願令附近諸浦當領水軍耕治，廣其蓄積，誠爲便益。不特此也，諸道諸邑廢棄國屯田，亦必多矣，併令耕治，以備國用。”僉議可。</p>
--	---	---

	<p>뿐만 아니라, 심한 자는 실제로 재앙이 들은 것같이 관찰사에게 전보(轉報)하고 관찰사 또한 직접 자세히 살펴서 판단하지 않고 그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임금께 보고하는데, 이 때문에 부고(府庫)의 저축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령을 치죄(治罪)하는 것이 이미 그 법이 있고 관찰사도 법으로써 엄하게 결단한다면 조세의 수입은 반드시 늘어날 것입니다.”</p> <p>하니, 이 조목의 의논은 의정부의 제1조의 의논과 같았다. 제2조는 이르기를, “《대전》의 비황조(備荒條)에는, ‘모든 진(鎭)의 당번 수군(當番水軍)으로 하여금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어 수량을 채워서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도 절계(節季)16745) 마다 계문(啓聞)하게 한다.’ 하였고, 또 어염조(魚鹽條)에는, ‘염분(鹽盆)16746) 이 모든 고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창(鹽倉)을 설치하여 세염(稅鹽)을 실어보내 곡포(穀布)를 바꿔다가 군수 물자를 보충한다.’ 하였으니, 그 교역(交易)에 힘쓰고 저축하는 법이 지극히 상세하고 또 세밀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鎭)의 관리들이 1백 석을 구울 것 같으면 50석만 관찰사에게 전보(轉報)하고, 관찰사도 여기서 차례로 수량을 줄여서 계문하니, 곡식을 바꾸어 군자의 수요를 보충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실제 수량을 따르는 데 힘쓰게 하고 엄하게 규찰(糾察)을 더하게 하면 무역하는 곡식의 수량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경상도 같은 데서 굶는 소금은 낙동강(洛東江)을 이용해 수운(輸運)하여 상주(尙州)·선산(善山) 등지에 전매(轉賣)하면 그 값이 반드시 소금을 생산하는 지방에서 처럼 헐값은 안 될 것이며 갑절 혹은 다섯 갑절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전운(轉運)하는 폐단이 없으며 곡식을 무역하여 부족한 군수(軍需)를 보충하는 것이 전일의 갑절은 될 것입니다.”</p> <p>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옳습니다.”</p> <p>하였고, 제3조는 이르기를,</p>	<p>政院陳言曰：“一。凡民墾田幾結，限幾年免稅，其中力業特異有成效者，依《大典》錄啓獎勸，而大小人員幾結起耕者，差等賞職何如？一。永安道則地多遺利，民有餘力，而例皆惰於農業，沾體塗足之苦，人皆厭憚，水田興業者鮮少。沃饒可耕處，擇富實鉅戶爲先分授勸耕，限年免稅，力業特異有成效者，依《大典》錄啓獎勸，而其中親軍衛入屬限當者，爲先許屬，勸勵何如？一。非關係國家徒流付處人等幾結起耕者，免罪何如？一。願爲僧者，姑除丁錢，幾結以上開墾，二三年耕作，遂成熟田者，方許度牒何如？一。陳地起耕免罪、受職人等，不多年內還陳，則令所在守令檢舉削職論罪，而不檢舉後現，則守令竝論何如？”鄭昌孫議：“可。但僧人則遊手遊食，軍額日減。今若陳田開墾者不加罪罰乃許度牒，是勸其爲僧也。”韓明澮、李克均、成俊、盧公弼、李季全、金克忸、韓堰、孫比長、權仲麟、閔永肩、宋瑛、李承健、鄭綸、辛鍵議：“令該司便否磨鍊，更議何如？”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尹</p>
--	--	--

“지난 갑진년(1674)에 모든 도의 해마다 미납된 환자[還上]를 다 견감(蠲減)하도록 하셨는데, 성상의 혜선(惠鮮) 1674) 하시는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대저 환자[還上]를 받은 자는 빈민이 많이 차지하지만 호강(豪強)한 자도 그 절반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빈민은 독촉하여 징수하는 데에 핍박되어 호강한 이보다 먼저 다 바치고, 호강한 자는 받은 것이 비록 수백에 이른다 하더라도 지연시켜 납부하지 않고 항상 탕감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탕감하는 명령이 있더라도 가난한 백성은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수령들이 마음내키는 대로 출납하여 많은 결손을 초래하고 쓸데 없이 문서로만 번드르르하게 꾸며서 나라의 견감해 주는 명령만을 기다렸다가 구차스럽게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 합니다. 이후로는 견감해 주는 조치를 취하지 말고 그 호강한 집에서 잘 납부하지 않는 자는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면 저축이 반드시 넉넉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조항의 의논은 의정부의 제2조의 의논과 같았다. 제4조는 이르기

를,
 “사섬시(司贍寺)에 쌓아둔 노비 신공(奴婢身貢) 1674)의 총계는 면포(縣布)가 72만 4천 5백여 필(匹)이고 정포(正布)가 18만여 필이니, 비록 쌓아둔 것이 산더미와 같다 하더라도 만약 흉년을 만나면 백성은 먹을 것이 없는데, 국가가 비록 곡식과 바꾸어서 백성을 살리려 하더라도 공사(公私)간의 저축이 모두 바닥이 난 상태이므로 금년과 같이 심하면 아무데도 바꿀 곳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위급한 때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고을의 노비(奴婢) 숫자 내에서 공물을 거둬들이되 그 받은 면포로 거두고, 나머지 받은 그때의 값을 따져서 미곡(米穀)을 수납하여 각 지방의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심회(沈滄)·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숭원(李崇元)·유지(柳輕)·이덕량(李德良)·성준(成俊)·노공필(盧公弼)·이경동(李瓊叟)·이계동(李季叟)·김승경(金升

壕、林壽昌議可，李坡、鄭恬、金謙光、李崇元、柳輕、李德良議：“第一條墾田賞職事，平安、黃海兩道，地廣人稀，人力不足，故地多遺利，開墾之人，理當論賞。他道則民多地窄，若有閑地，不必賞之然後開墾也。此條，兩界及黃海道行之可也。四條僧人墾田給度牒事，不可行。其餘令該司便否磨勘後，更議何如？”李瓊全、姜居孝、李誼、金鏊、宋軼議：“各令該司磨勘施行，而僧人墾田給牒事，恐不可施行。”金升卿、柳洵議：“朝廷無弊政，民寬力役，則自自然人有餘力，無不墾之田矣，何必設法誘之？在世祖朝，平安道墾田大小朝臣，竝加褒賞。其時爭先開墾，以邀賞職，不數年間，旋即廢棄，無永墾之利，此其驗也。且度僧免罪，不可輕易開端，設爲法條，尤爲不可。況力業特異褒賞之法，載在《大典》，不須別立新法。”

卿)·유순(柳洵)·김극유(金克旵)·임수창(林壽昌)·한언(韓堰)·강거효(姜居孝)·이의(李誼)·김질(金耄)·송질(宋軼)·이승건(李承健)·정윤(鄭綸)·신건(辛鍵)은 의논하기를,
 “웁습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이파(李坡)·정괄(鄭佶)·김겸광(金謙光)·손비장(孫比長)·권중린(權仲麟)·민영건(閔永肩)·송영(宋瑛)은 의논하기를,
 “웁지 않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만약 곡식이 많아서 천하게 될 때에는 쌀이 관청에 들어오는 것이 많이 되니 오히려 그럴 듯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곡식이 적어서 귀하게 되는 해에는 쌀이 관청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국용(國用)의 포화(布貨)가 점점 헛되이 소모하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에는 쌀을 거둬들이고, 흉년에는 베[布]를 수납함이 웁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상법(常法)을 삼을 수는 없으니, 아직 1, 2년 시행하게 하여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제5조는 이르기를,
 “밀양(密陽)의 수산(守山)의 방죽은 토지가 기름지고 비옥함이 경상도 내에서는 제일입니다. 지난날 세조조(世祖朝)에 조석문(曹錫文)이 본조의 판서가 되어 의견을 드리어 개간하여 경작하는 수전(水田)이 모두 2백여 결(結)이었는데 이제 회계(會計)를 상고하건대, 을유년(16750)에 곡식을 수납하여 베와 바꾼 수량이 3천 7백여 필이고 정해년(16751)에 곡식을 수납한 것이 4천 7백 60여 석(碩)이나 되었으니, 이 방죽을 진실로 가볍게 버릴 수가 없는데, 근년에 국가에서 그 절반을 봉선사(奉先寺)에 시납(施納)하였으니, 이것이 군자(軍資)를 보충하고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에 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부근의 모든 포(浦)의 당령 수군(當領水軍)(16752) 으로 하여금

	<p>경작하게 하여 그 축적(蓄積)을 넓히면 진실로 편리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 모든 고을의 국둔전(國屯田)을 폐기하는 것도 또한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함께 경작하게 해서 나라에서 쓸 것을 준비하게 하소서.”</p> <p>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웁습니다.”</p> <p>하였다. 정원(政院)에서 진언(陳言)하기를, “1. 대저 백성이 개간한 전지 몇결은 몇년 동안 면세를 해줘 그 중에 힘껏 일하여 특별히 남다른 효과를 이룬 자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기록해 아뢰어 권장토록 하고 대소의 인원이 몇결의 경작을 일으킨 자는 차등하여 벼슬을 상(賞)으로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p> <p>1. 영안도(永安道)는 토지의 이익을 버린 것이 많고 백성은 남아도는 힘이 있는데도 모두 농사에 게으르고 태만해 땀흘리며 농사짓는 수고로움을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꺼려하여 수전(水田)에서 생업을 일으키는 자는 적고 드물어지니, 땅이 기름지고 경작할 만한 곳은 부실(富實)한 큰 집을 가려내어 우선 먼저 나눠주어 경작을 권장케 하고, 몇년을 기한부로 면세(免稅)하여 힘껏 일하여 남다른 효과를 이룬 자는 《대전》에 의하여 기록하여 아뢰고 권장하여서 그 중에 친군위(親軍衛)16753)에 들어가도록 하되, 번(番)에 당(當)한 자를 우선 먼저 입속(入屬)토록 허락하여 권하고 장려함이 어떻겠습니까?</p> <p>1. 국가에 관계되지 않고 도형(徒刑)·유형(流刑)에 처해졌거나 부처(付處)16754) 된 등의 사람들에게 몇 결을 경작할 때에는 죄를 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1. 원하여 중이 된 자는 우선 정전(丁錢)16755) 을 면제해 주고, 몇결 이상을 개간하고 2, 3년을 경작하여 마침내 완전한 좋은 밭을 이룬 자는 바야흐로 도첩(度牒)16756) 을 허락하심이 어떻겠습니까?</p>	
--	--	--

	<p>1. 묵은 땅에 경작을 일으켜 죄를 면하고 직품을 받은 사람들이 몇년 되지 않아 도리어 땅을 묵히게 되면 그 지방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검거하여 관직을 빼앗고 죄를 논하게 하되, 검거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나타나면 지방 수령도 함께 죄를 논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p> <p>“웁습니다. 다만 중은 높고먹으므로 군액(軍額)이 날로 감소되는데, 이제 만약 묵은 밭을 개간한 자에게 죄와 벌을 더하지 않고 도첩을 허락하신다면 이는 곧 그 중이 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p> <p>하니, 한명회(韓明澮)·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노공필(盧公弼)·이계동(李季叟)·김극유(金克丑)·한언(韓堰)·손비장(孫比長)·권중린(權仲麟)·민영견(閔永肩)·송영(宋瑛)·이승건(李承健)·정윤(鄭綸)·신건(辛鍵)은 의논하기를,</p> <p>“해사(該司)로 하여금 편한지 불편한지를 마련하게 하여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임수창(林壽昌)은 의논하기를,</p> <p>“웁습니다.”</p> <p>하였고, 이과(李坡)·정괄(鄭括)·김겸광(金謙光)·이승원(李崇元)·유지(柳輕)·이덕량(李德良)은 의논하기를,</p> <p>“제1조의 전지를 개간하면 벼슬을 상(賞)으로 주자는 일은,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 두 도는 땅은 넓은데 사람은 드물어 인력이 부족한 까닭에 땅의 이익을 버리게 되는 것이 많으니 개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 권장시킨다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겠지만, 다른 도는 백성은 많고 땅은 좁아 만약 노는 땅이 있더라도 상을 준 연후에 개간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양계(兩界)16757) 와 황해도에만 시행함이 옳을까 합니다. 4조의 중이 전지를 개간하면 도첩을 주는 일은 시행해선 안되고, 그 나머지는 해사(該司)로 하여금</p>	
--	--	--

	<p>편부(便否)를 마감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이경동(李瓊全)·강거효(姜居孝)·이의(李誼)·김질(金耆)·송질(宋軼)은 의논하기를, “각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마감하여 시행하게 하되, 중이 전지를 개간하면 도첩을 주자는 일은 아마도 시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였고, 김승경(金升卿)·유순(柳洵)은 의논하기를, “조정에 폐정(弊政)이 없고 백성이 너그럽게 힘써 일하면 자연히 백성에게 남는 힘이 생겨 개간하지 않은 전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반드시 법을 정하여서 유도(誘導)하겠습니까? 세조조(世祖朝)에 있어서는 평안도에 전지를 개간하면 대소의 조신(朝臣)이 아울러 포상을 더하였으므로 그 때는 다투어 먼저 개간하려고 하여 벼슬을 상(賞)으로 구하더니, 몇년이 되지 않아 도로 곧 폐기(廢棄)하여 영구히 개간하는 이익이 없었으니 이것이 그 증험입니다. 또 도승(度僧)16758)의 죄를 면제하는 것은 경솔하게 그 시단(始端)을 열어서는 안되며, 법조문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불가한 것입니다. 더구나 힘써 일하여 남다른 성과를 거둔 자에게 포상하는 법은 《대전》에 명문이 규정되어 있사오니, 모름지기 새로운 법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9일(병술) 2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흉년이 들어 국고(國庫)가 허갈(虛竭)함을 진념(軫念)하시고 여러 대신과 의논하시어 감사의 녹봉을 줄이셨으니, 이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평안도(平安道)·영안도(永安道)에 부방(赴防)하는 감사(甲士)는 그 수고롭고 괴로움이 번상하는 감사의 갑절이나 됩니다. 이 무리들은 오랫동안 변지(邊地)에 있어 그 녹봉을 친히 받을 수가 없고, 그 고신(告身)과 녹패(祿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이제 만약 녹봉을 덜게 되면 이미 관 녹봉</p>	<p>○御晝講。講訖，侍讀官趙之瑞啓曰：“上軫念年凶國庫虛竭，議諸大臣減省甲士祿俸，此實出於不得已也。但平安、永安道赴防甲士，則其勤苦倍於番上甲士，此輩長在邊地，其祿俸不得親受，以其告身祿牌賣於人。今若減祿，則其已賣之祿，將必還徵矣，此甚可矜。請勿減。且別侍衛祿，竝減何</p>

	<p>은 장차 반드시 도로 징수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가급하니, 청컨대 덜지 마소서. 그리고 별시위(別侍衛)의 녹봉도 아울러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p>	<p>如?” 上曰：“當更議之。”</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11일(무자)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김흔(金訢)이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국가에서 후추 종자를 왜사(倭使)에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대저 먼데 사람을 대우함에 있어 오는 자는 막지 말며 가는 자는 쫓지 말 따름이니 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형원(李亨元)이 일본 통신사(日本通信使)가 되고 신이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대마주(對馬州)에 도착하여 후추의 생산지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남만(南蠻)과 유구국(琉球國) 등에서 생산되고 일본에는 없는 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구하려 해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倭人)은 거짓이 많으니 공연히 저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신이 본초(本草)를 상고하건대, 후추는 서융(西戎)에서 생산되고 혹은 남해(南海)의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다 하고, 중국에도 없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물건의 성질은 각각 토지에 알맞은 것이 있습니다. 옛적에 이르기를, ‘귤(橘)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제주(濟州)에는 귤감이 많이 생산되지만 그것을 이곳에 옮겨 심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제 비록 후추 종자를 얻는다 하여도 반드시 잘 자라지는 못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연 그러하나 앵무(鸚鵡)와 공작(孔雀) 같은 새는 비록 와서 바치더라도 내 마땅히 물리쳐 받지 않겠지만, 이것은 약용(藥用)에 긴급(緊切)하니 구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수우(水牛)도 유구(琉球)로부터 우리 나라에</p>	<p>○御經筵。 講訖， 侍講官金訢啓曰：“今聞國家求胡椒種於倭使。 大抵待遠人， 來者勿拒， 去者勿追而已， 不可有求於彼也。 往年李亨元爲日本通信使， 臣爲書狀官， 到對馬州問胡椒產地， 其人言產於南蠻、 琉球等國， 日本所無也。 然則雖求之， 未易得也。 倭人多詐， 徒爲彼所誑耳。 臣攷《本草》， 胡椒產於西戎， 或云產於南海諸國， 中國亦無有也。 臣謂物性各有土宜， 古云：‘橘渡淮爲枳。’ 我國濟州產柑子， 而不得移種於此地。 今雖得胡椒種， 必不生長矣。” 上曰：“此言果然。 然如鸚鵡孔雀， 則雖來獻， 當却之矣。 此則藥用緊切， 求之何害？ 水牛來自琉球， 蕃育於我國， 胡椒安知必不生長乎？” 領事洪應曰：“世祖朝我國人漂流到琉球， 見胡椒， 乃草實也。 其莖與實， 與蕎麥相似。”</p>

	<p>왔건만 잘 번식되고 잘 자라니, 후추라고 해서 반드시 잘 자라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p> <p>하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이르기를, “세조조(世祖朝)에 우리 나라 사람이 표류하여 유구에 이르러 후추를 보았는데, 바로 이것이 풀씨였습니다. 그 줄기와 열매는 교맥(蕎麥)으로 더불어 서로 흡사했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15일(임진) 3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나례(儼禮)16762) 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행하여 왔으며, 어찌하여서 설치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도 외방(外方)의 재인(才人)이 나례(儼禮)를 위하여 많이 성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니, 궁하면 반드시 도적질을 할 것이다. 금년의 나례(儼禮)는 중지하도록 하고 다만 내간(內間)의 아이들이 보려고 하니 서울에 사는 우인(優人)을 가리어 간략하게 하라.”</p> <p>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儼禮，自祖宗朝行之，未知何爲而設。今者年凶，外方才人爲儼禮多到城中，無以爲食，窮則必爲盜竊，其停今年儼禮。但內間兒輩欲見之，其擇京居優人，略爲之。”</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18일(을미) 2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참판(參判) 김승경(金升卿)과 순찰사(巡察使) 정난중(鄭蘭宗)을 명소(命召)하여 도랑 파는 역사(役事)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덕량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역군(役軍)을 5결(結)에 1부(夫)를 내는 것과 그 도의 당령 수군(當領水軍)16766) 으로 긴요한 역사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하면 역사에 동원할 수 있는 인부가 2만여 인이 되고, 또 본도에 있는 염장(鹽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각각 소금 1말, 간장 5되씩을 나눠주면 20일의 식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맹인(盲人)과 노약자(老弱者)를 구분하지 않고 인부를 동원시키면 어찌 역사(役使)를 감당하겠는가? 순찰사(巡察使)는 자세히 살피어서 하고, 또 부역</p>	<p>○命召戶曹判書李德良、參判金升卿與巡察使鄭蘭宗，議穿渠役。德良等議啓曰：“役軍，五結出一夫及其道當領水軍緊要役事者外竝計，則出夫凡二萬餘人。且以本道所在鹽醬分施，人各鹽一斗、醬五升，可以辦二十日之食。”傳曰：“若不分盲人老弱出夫，則豈能堪役乎？巡察使其詳審爲之。且赴役軍戶，限今冬勿役事，諭監司可也。”</p>

	<p>하는 군호(軍戶)16767) 는 올 겨울 동안만 하고 더 역사시키지 말 것을 감사(監司)에게 유시함이 옳겠다.” 하였다.</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0월 20 일(정유) 1번째기사</p>	<p>주정(晝停)16771) 에 풍악을 쓰는 것의 편부(便否)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능(陵)을 배알(拜謁)한 뒤에 주정(晝停)에 풍악을 쓰는 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옛적에 흉년이 들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제사하는 일에도 〈악기를〉 달지 않았으니, 이로써 보면 흉년에 풍악을 쓰지 않음은 옛 예(禮)입니다. 그러나 행궁(行宮)에 남악(男樂)을 쓰는 것은 연락(宴樂)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무방할 것 같으나, 그만두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중추(領中樞)의 의논이 어떠하나? 가령 8도 안에 2, 3도만 실농(失農)하여도 또한 흉년이라고 하여 풍악을 쓰지 못하겠느냐? 고례(古禮)라고 이르는 것은 조종조(祖宗朝)부터 그러하였는가?”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금년은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 두 도만이 비록 약간 풍년이 들었으나, 우리 나라는 하삼도(下三道)16772) 가 가장 큰데, 이제 기황(飢荒)을 만납니 이와 같은 까닭으로 흉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례(古禮)라고 말한 바는 바로 전대(前代)의 일입니다. 주정(晝停)에 남악(男樂)은 비록 쓰더라도 무방하나, 쓰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연향(宴享)과 대사(大事) 같은 데에는 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신이 이와 같이 의논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 등은 아뢰기를,</p>	<p>○丁酉/議晝停用樂便否于領敦寧以上。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議：“拜陵後晝停用樂，似爲無妨。”盧思愼議：“古者歲凶，年穀不登，祭事不懸。以此觀之，凶年不用樂，古禮也。行宮用男樂，非宴樂之比，似乎無妨。然不若已之爲宜。”傳曰：“領中樞之議何如？假如八道內二三道失農，亦曰歲凶而不用樂乎？所謂古禮，自祖宗朝而然乎？”思愼曰：“今年平安、黃海兩道雖稍稔，我國則下三道爲最鉅，而今值飢荒如此，故云歲凶耳。所謂古禮，乃前代之事也。晝停男樂，雖用之無妨，而不用亦可。如宴亨〔宴享〕大事，似不可行，故臣議如是耳。”尹弼商等啓曰：“古云：‘歲凶殺禮。’今於晝停用歌童奏樂，是小節目，非大舉也。且如朝賀軒架等樂，皆非用樂之例。故臣等之議如是耳。”傳曰：“予非指行宮動樂，爲大概用樂可否而言也。《周禮》云：‘凶荒之年，君臣素</p>

	<p>“옛적에 흥년이 들면 예를 감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이제 주정(晝停)에 가동(歌童)을 써서 주악(奏樂)함은 조그마한 절목(節目)이고 큰 행사는 아닙니다. 또 조하(朝賀)와 헌가(軒架)16773) 등과 같은 풍악은 모두 일반적으로 풍악을 쓰는 예가 아닌 까닭에 신 등이 이와 같이 의논하였을 뿐입니다.”</p> <p>하자, 전교하기를,</p> <p>“내가 행궁(行宮)16774) 에 풍악을 동원한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대개 풍악을 쓸 것인가의 가부를 말한 것이다. 《주례(周禮)》에 이르기를, ‘흥년이 든 해에는 임금과 신하가 소복(素服)을 입는다.’고 하였으나, 어찌 모두 옛 제도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후일에 창릉(昌陵)·경릉(敬陵)에 갈 때에는 이를 쓰지 말라.”</p> <p>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p> <p>“임금께서 거동하실 때에는 고취(鼓吹)16775) 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저 예악(禮樂)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대부(士大夫)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나라의 임금이겠습니까? 그리고 대소의 신하가 그 어버이에게 헌수(獻壽)하는데도 이미 음악을 쓰도록 허락하셨는데, 조정에 서 어찌 폐할 수 있겠습니까? 옛 그대로 함이 편하겠습니까.”</p> <p>하고, 서거정(徐居正)은 아뢰기를,</p> <p>“만일 음악을 쓰지 않는다면 제향(祭享) 때에도 쓰지 못하는 것이니, 제향의 음악도 폐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음악을 정지하지 말라.”</p> <p>하였다.</p>	<p>服.’ 豈可盡從古制? 然後日昌敬陵行幸, 其勿用。” 弼商等啓曰: “人君舉動, 不可不用鼓吹。 大抵禮樂, 不可斯須去身, 士大夫猶然, 況國君乎? 大小之臣獻壽其親, 既許用樂, 則於朝廷, 何可廢也? 仍舊爲便。” 徐居正啓曰: “若不用樂, 則於祭享之時, 亦不用之, 祭享之樂, 其可廢乎?” 傳曰: “勿停樂。”</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20</p>	<p>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를 명소(命召)하여 신종호(申從濩)·신우정(辛禹鼎) 등의 처(妻)들이 상언(上言)한 것을 내어보이고 인해서 전교하기를,</p> <p>“경(卿)이 고소(告訴)한 것은 재보(財寶)를 위함이니, 재보와 골육(骨肉)이 어</p>	<p>○命召蛇山君灝, 出示申從濩、辛禹鼎等妻上言。 仍傳曰: “卿之告訴, 爲財寶也。 財寶與骨肉孰重? 卿今含忍息</p>

일(정유) 2번째기사

느 쪽이 더 중한가? 경이 이제 꼭 참고 싸움을 멈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호(李灝)가 아뢰기를,
“신은 재보를 사랑함이 아닙니다 신종호(申從濩)가 성혼(成婚)할 때에는 신이 어미의 명을 받들어 모든 일을 전담하여 관장하였습니다. 신종호(申從濩)가 진사(進士)·급제(及第)를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자, 경사스런 좌석의 일들을 신이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신종호의 내외조부(內外祖父)는 모두 나라의 원훈(元勳)이며, 또 그가 연달아 장원으로 합격한 까닭에 신이 경앙(景仰)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종호는 한번도 와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 신의 어미가 일찍이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종호는 반드시 불사(佛事)를 금할 것이니, 너는 삼가해서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미의 명이 이와 같은 까닭으로 어미가 죽은 뒤에 신이 반불(飯佛)하고 재승(齋僧)하여 집안의 물건을 소비(糜費)한 것이 과연 많았습니다. 신종호는 재물이 소비됨을 꺼리어 드디어 분노를 머금고 신을 불의(不義)하다고 꾸며서 조정에 말을 퍼뜨렸으니, 신이 비록 상기(喪期)를 마친다 하더라도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서겠습니까? 신종호는 어리석으면서 저항하므로 생판(生板)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경멸하여 조금도 우애(友愛)의 정이 없으므로, 신이 억지로 떠들썩하게 관(官)에 고(告)한 것은 이 때문이며 재화를 아까와한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종실(宗室)이 미약하여 권세 있는 집안에 제약을 받는 것인데, 신종호도 신이 외롭다고 생각하여 능욕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통심(痛心)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성상의 하교(下教)를 듣고 신이 감히 억지로 다투고 변명하려 하겠습니까? 다만 신의 회포가 이와 같은 까닭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그 말과 같으면 잘했다. 사산(蛇山)이 누이들을 그르다고 한 것 때문에 누이들이 인해서 원망을 맺었으니, 골육상잔(骨肉相殘)이 이보다 심함이 없

爭何如?” 灝啓曰：“臣非愛財寶也。申從濩成婚時，臣奉母命，專掌諸事。從濩進士及第皆居魁，慶席之事，臣無不盡心。況從濩內外祖父皆國之元勳，而其身連中壯元，故臣嘗景仰不已，而從濩一不來見我。且臣母嘗語臣曰：‘我死後，從濩必禁爲佛事，汝慎勿聽。’母命如是，故母死後，臣飯佛齋僧，家中之物，糜費果多。從濩憚於費財，遂含憤焉，構臣不義，播說朝著，臣雖卽吉，何面目立於朝廷乎？從濩戇而抗，號爲生板者也。輕蔑小臣，略無友愛之情，臣之強聒告官，爲是也，非愛財貨也。自古宗室微弱，受制於權勢之門。從濩謂臣孤單，陵辱至此，不勝痛心。今聞上教，臣敢強欲爭辨乎？但臣之所抱如是，故敢啓耳。” 傳曰：“果如其言則善矣。蛇山以妹等爲非，妹等因而構怨，骨肉相殘，莫此爲甚。若欲強訟，予何止之？然予所言，殆利益於蛇山矣。” 灝啓曰：“上教至此，臣何敢違？明日當與妹等均分財產。但全與生者無後，世宗命收養臣父，田民家產臣父盡得之。臣今奉祀，唯此不可不辨。” 傳曰：“作收養根因，

	<p>다. 만약 억지로 소송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증지시키겠느냐?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거의 사산(蛇山)에게 유익한 것이다.”</p> <p>하였다. 이호(李灝)가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여기에 이르시니 신이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명일에 마땅히 누이들과 재산을 고르게 나누겠습니다. 다만 전여생(全與生)이라는 이가 후사(後嗣)가 없었는데, 세종(世宗)께서 명하시어 신의 아버지를 수양(收養)하게 하여 전민(田民)과 가산(家産)을 신의 아버지가 모두 얻었으므로 신이 이제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이것만은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수양(收養)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을 자세히 써서 아뢰라”</p> <p>하였다.</p>	<p>詳書以啓。”</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0월 25 일(임인)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全)이 아뢰기를, “유자문(柳子文)이 숙천(肅川)을 맡았을 때에 누에고치를 무역한 일이 탄로되어 죄에 연좌되어 장안(贓案)16781) 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상서(上書)한 것으로 경솔히 장안(贓案)을 고침은 옳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누에고치를 무역한 쌀은 바로 아중(衙中)에 저축하였으니, 관물(官物)을 도적질한 것이 아닌데, 자손까지 금고(禁錮)함은 정상이 매우 애매한 까닭에, 명하여 장안(贓案)에서 덜게 했을 뿐이다.”</p> <p>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全)이 아뢰기를, “근래에 수군(水軍)이 영선(營繕)하는 데 피곤하여 만일 위급함이 있으면 적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일 부득이한 역사가 있으면 차리리 연호군(煙戶軍)16782) 을 쓰고, 수군을 역사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p>	<p>○壬寅/御經筵。講訖，大司憲李瓊全啓曰：“柳子文任肅川時，質繭事露，坐罪錄贓案。今以其子上書，輕改贓案，甚不可。”上曰：“質繭之米，乃衙中所儲，非盜官物也。而至于子孫禁錮，情甚曖昧，故命減贓案耳。”大司憲李瓊全啓曰：“邇來水軍疲於營繕，儻有緩急，禦敵爲難。臣意謂如有不得已之役，則寧用煙戶軍，水軍則不可役也。”上曰：“當領水軍無役事，故役於營繕耳。若以田結出夫役之，則進言者必曰，農夫不可役於土木也。法立弊生，古今通患。煙戶軍決不可役。”領事李克培曰：“臣觀景福宮造</p>

	<p>“당령 수군(當領水軍)은 역사가 없는 까닭으로 영선(營繕)하는 역사에 부리었다. 만약 전결(田結)을 가지고 인부를 동원시켜 역사하면 진언(進言)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농부는 토목 공사에 역사시킬 수가 없습니다.’고 할 것이다. 법을 세우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古今)에 공통된 병통이다. 그러니 연호군(煙戶軍)은 결단코 역사시킬 수 없다.”</p> <p>하였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이르기를, “신이 경복궁(景福宮)의 조성 의궤(造成儀軌)를 보아도 또한 연호군(煙戶軍)을 쓰지 않았습니다.”</p> <p>하고, 조지서(趙之瑞)가 이르기를, “방어가 소우(疏虞)해지는 것은 그 책임이 수사(水使)·만호(萬戶)에게 있으니, 만약 수사·만호가 엄하게 규찰(糾察)을 가하여 각각 원패(圓牌)16783) 를 주어 대신 서지 못하도록 점열(點閱)을 하고 고찰(考察)한다면, 군인에 늙고 약한 이가 없고 병사들은 저절로 정예화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호(萬戶)는 비록 무신이 아니더라도 쓸 만한 사람을 골라 제수하는 것이 어떠한가?”</p> <p>하자,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비록 무신(武臣)을 차출해서 보내더라도 오히려 책임자를 놓치는 실정인데, 더구나 무신이 아니면 더욱 적격자가 될 수 없으니, 그러한 단서(端緒)를 열어서는 안되겠습니다.”</p> <p>하였다.</p>	<p>成儀軌，亦不用烟戶軍。” 趙之瑞曰：“防禦疎虞，其責在於水使、萬戶。若水使、萬戶嚴加糾察，各給圓牌，使不代立，點閱考察，則軍無老弱而兵自精矣。” 上曰：“萬戶雖非武臣，若可用之人，除授何如？” 克培曰：“雖以武臣差遣，然且失人，況非武臣，則尤失其人，不可開端。”</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0월 25일(임인) 3번째기사</p>	<p>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의(李誼)가 상소하기를,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왕공(王公)이 설험(設險)하여 그 나라를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장성(長城)의 역사도 또한 그 유의(遺意)입니다. 그러나 한갓 설험(設險)하는 것만 알고 백성의 힘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국가의</p>	<p>○司憲府掌令李誼上疏曰： 《易》曰：“王公設險，以守其國。”今長城之役，亦其遺意也。 然徒知設</p>

	<p>평안하고 위태함과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는 것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난 신축년(1678) 가을에 신이 순변사(巡邊使)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의주(義州) 등 고을의 연강(沿江)의 형세를 가서 살피었는데, 얼음이 얼면 경계[封疆] 사이의 험함이 없고 방수(防戍)와 첩입(輒入)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한 번 장성을 쌓으면 만세를 영구히 힘입게 되니, 그 국가에 이익됨을 말로써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道) 백성은 본래 번성[蕃庶]하지 않아 읍리(邑里)가 소조(蕭條) (1678) 하고 물억새가 눈에 보이는 데까지 멀리 뻗었으며, 거기다가 중국에서 사신이 오고 조근(朝覲)하러 가기 때문에 오는 이를 맞고 가는 이를 전송해야 하므로 백성의 피로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또 뒤쫓아서 축성하는 역사에 몰아붙인다면 백성이 조금이라도 소복(蘇復)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도적을 막을 때 마침 쇠잔한 백성으로써 하게 됨은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p> <p>신의 뜻으로는 반드시 곡식을 많이 축적한 연후에 공역(功役)을 일으켜야 된다고 여깁니다. 대저 의주(義州)의 위화(威化)·조몰(鳥沒)·검동(黔洞)의 세 섬은 땅이 기름져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근래에 오랑캐의 침략 때문에 경작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진실로 국가에 이득이 있다면 어찌 작은 오랑캐의 침략을 염려하겠습니까? 적합하게 대처하여 조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옛적에 조충국(趙充國) (1678)의 금성(金城)과 제갈량(諸葛亮)의 위빈(渭濱)과 조조(曹操)의 허하(許下)와 곽원진(郭元振) (1678)의 양주(涼州)는 혹 적국이 서로 대치하고 혹 변어(邊圉) (1678)가 매우 다급했는데도 모두 둔전(屯田)의 이(利)를 얻어서 경작하고 방수(防戍)하였으니, 이것은 그 명확한 효과를 크게 증험함이 아니겠습니까? 본도의 노강(老江)·선사(宣沙)·광량(廣梁) 3포(浦)의 수군(水軍)이 2천 6백 83명인데, 방수(防戍)가 긴요치 않으니, 본포(本浦)의 유방군(留防軍) 1천 5백 명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농군(農軍)을 삼고, 황해도(黃海道)의 번상(番上)하는 기병(騎兵)과 본도(本道)의</p>	<p>險, 而不量民力, 則國家之安危、生民之休戚係焉, 豈不懼哉? 去辛丑秋, 臣以巡邊從事官往審義州等官沿江形勢, 冰合則無封疆之險, 防戍輒入之, 無歲無之。一築長城, 則萬世永賴, 其有益於國家, 可勝言哉? 然此道之民本不蕃庶, 邑里蕭條, 萑葦極目, 加之以皇華之來、朝覲之行, 迎來送往, 民勞極矣。又從而驅之築城之役, 則民夫其有少蘇乎? 將以禦寇, 適以殘民, 誠非細故也。臣意以謂必先儲穀, 然後功役可興。夫義州之威化、鳥沒、黔同三島, 土地沃饒, 生穀甚多。而近以狄人侵掠, 棄而不耕久矣。苟有利於國家, 何慮小虜之侵掠乎? 在處置得宜耳。昔趙充國之金城, 諸葛亮之渭濱, 與夫曹操之許下, 郭元振之涼州, 或敵國相持, 或邊圉孔棘, 而皆得屯田之利, 且耕且戍, 此非其明效大驗歟? 本道老江、宣沙、廣梁三浦水軍二千六百八十三人, 而防戍不繁焉。除本浦留防一千五百人, 其餘以爲農軍。黃海番上騎兵與本道留防軍五六百人, 以爲守護之軍, 具田器, 備耕牛, 多造渡船, 耕耘之時, 設木柵, 遠斥埃, 朝渡</p>
--	---	--

	<p>유방군(留防軍) 5, 6백 명을 수호하는 군대로 삼아 전기(田器)16789) 를 갖추고 경우(耕牛)를 준비하여, 도선(渡船)을 많이 만들어서 경운(耕耘)하는 때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척후(斥候)를 멀리 하여 아침에 건너고 저녁에 돌아오게 하며, 농한기에는 벽돌을 굽고 돌을 모르게 하면서 그 한 해에 생산되는 곡식의 수량을 계산하여 3, 4년을 기약하면 변방의 창고가 점점 축적될 것입니다. 또 경외(京外)에서 속전(贖錢)으로 징수하거나 장물(贓物)로 몰수하는 물건과 상고(商賈)와 어살[魚筭] 등의 세(稅)는 모두 의주(義州)에 운반해와서 혹 경우(耕牛)를 사거나 혹 전기(田器)를 바꾸게 하며, 또 연변(沿邊) 부근의 군현(郡縣)에서 곡식을 무역하게 해서 이렇게 한 곡식이 10만에 가깝게 된 연후에 다른 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한 해에 혹 4, 5만 혹 6, 7만을 차례로 뽑아 들여와 본도의 백성과 같이 쌓게 하고, 다른 도의 백성이 갈 때의 양식은 본인이 가지고 와서 머물며 역사하게 하고, 돌아가는 길의 양식은 면포(綿布) 한 필을 납부하면 관에서 쌀 1곡(斛)을 주고, 납부한 베[布]는 또 좃아서 곡식과 바꾸게 하여서 다음해의 용도를 삼으면, 해마다 계속해서 역사해도 본도의 백성은 피곤하고 피로운 데에 이르지 않고, 다른 도의 백성은 식량을 싸가지고 와야 하는 걱정이 없을 것이고, 장성은 쌓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읍보(邑堡)도 점점 차례로 수리하면 변방의 창고는 이로써 넉넉해 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곤한 백성을 거느려 중대한 역사를 일으키려는 것은 신은 아마도 민력(民力)만을 수고롭게 하고 그 효과는 거두지 못할 듯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의논하게 하라.”</p> <p>하였다.</p>	<p>暮還。 居閒月則燔磚焉，聚石焉，計其一歲生穀之數，期三四年則邊廩漸蓄矣。 又京外徵贖贓沒之物及商賈魚筭等稅，皆輸入義州，或買耕牛，或換田器，又於沿邊附近郡縣買穀。 以此而粟穀幾於十萬，然後令他道之民，一歲或四五萬，或六七萬，輪次抄入，與本道之民共築之。 他道之民，往時之糧則自齎，留役、回程之糧，則納綿布一匹，官給米一斛。 所納之布，又從而買穀，以爲翌年之用，則每歲連役，而本道之民不至困苦， 他道之民無患贏糧，而長城可得而築也。 邑堡漸次而修葺，邊廩以之而足矣。 不然而率疲困之民舉重大之役，則臣恐徒勞民力而未見其效也。</p> <p>傳曰：“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모든 승지(承旨)를 인견(引見)하고, 전일에 의논한 조건을 아뢰도록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안처량(安處良)이 의정부</p>	<p>○上御仁政殿引見諸承旨，令啓前日議得條件。 同副承旨安處良啓議政府</p>

<p>(成化) 21년) 10월 27 일(갑진) 4번째기사</p>	<p>(議政府)에서 의논한 것을 아뢰기를, “제1조는 연분(年分)을 가볍고 험하게 하는 관찰사(觀察使)를 파출(罷黜)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면 감사(監司)가 반드시 연분의 등급을 가중(加重)하게 하여 많이 거두어 들이는 데 이를 것이니,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제2조는 환자[還上]를 견감(蠲減)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환자를 견감함은 늘 하는 일이 아니며, 특별한 한때의 은혜이다.” 하였다. “제3조는 갑사(甲士)의 녹봉(祿俸)을 제하고 월봉(月俸)을 주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왕조(先王朝)로부터 녹봉을 주어서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만약 하루아침에 빼앗으면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였는데,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갑사는 너무 많고 정선(精選)된 군졸(軍卒)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봉족(奉足) 4정(丁)을 두니, 이것도 이미 후합니다. 월봉을 주는 것도 벌써 전례가 있으니 행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다시 전에 의논한 재상(宰相)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제4조는 북경에 가는 사신(使臣)의 반전미(盤纏米)16791)의 수량을 감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議。 第一條，年分輕歇觀察使罷黜事； 上曰：“如此則監司必加重年分之等，至於重斂，未可施行也。” 第二條，還上勿蠲減事；上曰：“蠲減還上，非常事也，特一時之恩也。” 第三條，甲士除祿俸，給月俸事；上曰：“自先王朝給祿以厚待之，若一朝奪之，則必生怨心矣。” 承旨等僉啓曰：“甲士猥多，非精選之卒，且有奉足四丁，亦已厚矣。給月俸，既有前例，似可行也。” 上曰：“更議于前議宰相。” 第四條，赴京使臣盤纏米量減事；上曰：“仍舊。” 第五條，功臣別賜、寺社田稅權減事；上曰：“寺社田稅已有半減處矣，予於佛家之事，本無心也。但貞熹王后付囑於予，言猶在耳，不忍遽革。” 第六條，京畿水軍節度使權罷事；上曰：“權罷可也。” 第七條，國屯田復立事；上曰：“令該司議啓。” 第八條，諸邑魚箭官結補穀事；上曰：“如思慎議而試之可也。” 第九條，魚鹽等雜稅檢覈事；上曰：“可第十條，觀察使、節度使皆以京官兼差事；承旨僉啓曰：“如此則窳闕不足，不可施行。” 上曰：“然。” 第十一條，彭排、隊卒月俸蠲</p>
---	---	---

	<p>“옛 그대로 하라.” 하였다. “제5조는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사사전(寺社田)의 세(稅)를 임시로 감(減)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사전의 세는 벌써 반감(反減)하여 처리하였다. 내가 원래 불가(佛家)의 일에 대해서는 본래 마음이 없었다. 다만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오히려 컷가에 있어 차마 갑자기 개혁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제6조는 경기 수군 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를 임시로 혁파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임시로 혁파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제7조는 국둔전(國屯田)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제8조는 모든 고을의 어살[魚筭]은 관(官)에서 질러 곡식을 보충(補充)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노사신(盧思愼)의 의논과 같이 시험해 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제9조는 어염(魚鹽) 등 잡세(雜稅)를 검핵(檢覈)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減事; 上曰: “可。” 第十二條, 冗員沙汰事; 上曰: “何者是冗員乎?” 承旨等僉啓曰: “如通禮院, 所事不繁而員多矣。 又如司饗院, 古有別坐, 掌苑署、造紙署、司圃署之類, 古者只有別坐矣。” 上曰: “令該司議啓。” 戶曹議第四條, 諸道諸司奴婢身貢一半米穀收納事; 承旨等僉啓曰: “姑行之, 待蓄積有餘, 還以縣布收納何如?” 上曰: “可。” 第五條, 守山堤堰、復立國屯田事; 上曰: “今者伊誰耕作乎?” 承旨等僉啓曰: “一半奉先寺, 一半平民耕作。 曩者洪允成爲巡察使, 建白罷之。” 上曰: “如奉先寺、正因寺, 爲先王也, 不可奪也。 其餘田耕作及堤堰便否, 令堤堰司看審更啓。” 承政院議第二條, 永安道沃饒可耕處分授鉅戶耕治事; 上曰: “令該司議啓。”</p>
--	--	--

	<p>“옳다.” 하였다. “제10조는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를 모두 경관(京官)으로써 겸차(兼差)하는 일입니다.” 하니, 승지(承旨)가 모두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과궐(窳闕)16792) 이 부족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의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제11조는 팽배(彭排)·대졸(隊卒)의 월봉(月俸)을 견감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제12조는 용원(冗員)16793) 을 사汰(沙汰)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떤 자가 용원이냐?” 하자,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통례원(通禮院)의 업무 같은 것은 긴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원이 너무 많고, 또 사옹원(司饗院)과 같은 것은 예전에 별좌(別坐)를 두었으며, 장원서(掌苑署)·조지서(造紙署)·사포서(司圃署)와 같은 것은 옛적에 단지 별좌(別坐)만 두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의논한 제4조는 모든 도와 모든 관청의 노비(奴婢)의 신공</p>	
--	---	--

	<p>(身貢)은 하나 반은 미곡(米穀)으로 수납(收納)하는 일입니다.” 하니,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우선 시행하다가 축적(蓄積)한 것의 여유가 있음을 기다려 그 때 다시 면포(綿布)로 거뒀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임금의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제5조는 수산 제언(守山堤堰)을 다시 국둔전(國屯田)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은 이것을 누가 경작하느냐?” 하자,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하나의 반은 봉선사(奉先寺)에서, 또 하나의 반은 평민이 경작하던 것을 지난 번에 홍윤성(洪允成)이 순찰사(巡察使)가 되어 건의하여 파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봉선사(奉先寺)·정인사(正因寺) 같은 데는 선왕(先王)을 위해서 준 것이니, 뺏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지를 경작하는 것과 방축의 편부(便否)는 제언사(堤堰司)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의논한 제2조는 영안도(永安道)의 기름지고 경작할 만한 곳을 부유한 집에 나누어 주어서 경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듣건대, 이제 양지(仰止)에게 금강산(金剛山)을 가서 구경하도록 허</p>	<p>○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上筓子曰:</p>

<p>(成化) 21년) 10월 29 일(병오) 2번째기사</p>	<p>락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일 같으나 실제로 대체(大體)에 관계됩니다. 양지(仰止)가 가는 데는 따르는 자가 반드시 많으며, 또 호송관(護送官)이 있어야 하고, 역로(驛路)가 조폐(凋弊)하여 지나는 여러 고을에는 공돈(供頓)하기 어려우며, 포구(浦口)에 머무르는 왜인(倭人)에게 오래도록 희름(餼廩)16794) 을 허비함은 매우 불가합니다. 또 길이 험난하고 눈이 많이 쌓여 파묻힐 재난이 없지 않습니다. 금년은 흉년이 들어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산군(山郡)에 많이 있어 만약 표략(剽掠)의 변이라도 있고 보면 공연히 앉아서 변방의 혼란(弊端)을 일으킬 것이니, 이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모든 섬의 왜인(倭人)들이 계속해서 본받아 잇달아 구경하기를 원한다면 전하께서는 일일이 따르시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차자(筭子)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보이고 의논케 하라.” 하니,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홍응(洪應)·윤호(尹壕)·이과(李坡)·정괄(鄭佶)은 의논하기를, “벌써 칭찬 것을 따르기로 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끝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혐의스런 틈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정난중(鄭蘭宗)은 의논하기를, “만약 산중에 이르러 눈이 쌓여 길이 막히고 왕래가 통하지 않으면 이것이 염려할 만하니, 이 일의 뜻을 가지고 예조(禮曹)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말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p>	<p>臣等聞今許仰止往觀金剛山， 雖若小事， 實關大體。 仰止之往， 從者必多， 又有護送官， 驛路凋弊， 所經諸邑困於供頓， 留浦之倭久費餼廩， 甚不可。 且路險積雪， 有覆壓之患。 今年凶荒， 無賴之徒多在山郡， 萬有剽掠之變， 則坐生邊釁， 此亦不可不慮。 又有大於此者， 諸島之倭踵而效之， 相繼求見， 則殿下——從之乎？” 傳曰：“示筭子于領敦寧以上及政府議之。” 鄭昌孫、尹弼商、李克培、洪應、尹壕、李坡、鄭佶議：“業已從請， 不可中止。 終若不許， 則必生嫌隙。” 盧思愼、鄭蘭宗議：“若到山中， 積雪壅塞， 往來不通， 則此爲可慮。 將此事意， 令禮曹開說何如？”</p>
<p>성종 184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0월 30 일(정미) 4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근래에 국휼(國恤)으로써 대비전(大妃殿)에 헌수(獻壽)를 폐함이 오래 되었다. 이제 동지(冬至)에 잔치를 올리고 인하여 재상(宰相)들을 대접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무 풍족하고 화려하게 하지 말라.”</p>	<p>○傳曰：“近以國恤， 久廢大妃殿獻壽， 今欲於冬至進宴， 仍饋宰相。 然勿務豐華。”</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1 일(무신) 1번째기사</p>	<p>하였다. 조하(朝賀)를 받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全)이 아뢰기를, “유자문(柳子文)이 죄를 입은 것은 이미 14년이 되었습니다. 유자문이 관곡(官穀)으로 실[絲] 5근(斤)을 교환하였으며, 생간(生繭) 10석(碩)을 사사로이 썼습니다. 대저 감림 자도(監臨自盜)16796) 한 것은 비록 물건이 적더라도 모두 장안(贓案)16797) 에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은 범장(犯贓)한 것이 중하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아무리 헛수가 오래 되었더라도 만약 애매(曖昧)한 정상(情狀)이 있으면 당연히 그로 하여금 원통한 것을 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지서(趙之瑞)도 평안도(平安道)의 사람들이 모두 ‘유자문의 사건은 애매하다.’ 한다고 말하였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미 다시 분변하여 장안(贓案)에서 이름을 삭제(削除)하였으니, 다시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경동(李瓊全)이 또 아뢰기를, “지금 왜(倭)의 사인(使人) 양지(仰止)가 금강산(金剛山)에 가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세견사선(歲遣使船)16798) 이 50척이고 또 특송선(特送船)이 있습니다. 만약 가서 구경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뒷날에 구경하려고 하는 자들이 잇달아 나올 것이므로 끝내는 지공(支供)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단서(端緒)를 열 수 없습니다. 또 강원도(江原道)는 역로(驛路)가 조잔(彫殘)할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든데다 도둑이 많으며, 또 쌓인 눈이 무너져 깔려 죽은 행인(行人)들</p>	<p>○朔戊申/受朝賀。 御經筵。 講訖， 大司憲李瓊全啓曰：“柳子文被罪， 今已十四年矣， 子文以官穀換絲五斤、生繭十碩， 私用。 大抵監臨自盜， 則雖小物， 皆錄贓案， 此則贓重， 不可輕論。” 上曰：“雖年久， 若有曖昧之狀， 當使之解冤也。 趙之瑞亦言， 平安之人皆云， 子文之事曖昧。” 仍問左右， 領事盧思愼對曰：“今已更辨， 削名贓案， 不可更論。” 瓊全又啓曰：“今使倭人仰止往見金剛山， 臣意以為未便。 對馬島主歲遣使船五十隻， 而又有特送， 若許往見， 則後之欲見者相繼出來， 終不能支矣， 今不可開端。 且江原道非但驛路彫殘， 年凶多盜， 又有積雪崩頽， 行人壓死者多。 今仰止之行， 若遇賊見害， 或壓雪而死， 島主必致疑於我， 釁從此生。” 上曰：“仰止雖或遇害， 豈曲在我乎？ 頃者平茂續以胡椒減價抑買， 懷忿而歸， 茂續仕我朝， 爲兼司僕， 知我國虛實， 性又凶險。 今若不許仰止之請， 則亦必懷憤， 二憾共謀， 恐或扇亂生事。” 瓊全曰：“今以路遠難通開諭， 止之何如？” 侍讀官趙</p>
---	---	---

이 많습니다. 지금 양지(仰止)가 가다가 만약 도둑을 만나 해(害)를 당하거나
혹시 눈에 깔려 죽는다면 도주(島主)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두게 되고
흔단(罽端)이 이를 따라 생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지(仰止)가 비록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찌 잘못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지난번에 평무속(平茂續)이 후추[胡椒]의 값을 삭감해서 억지로 사들였다 하
여 분(忿)을 품고 돌아갔다. 평무속은 우리 조정에 벼슬하여 겸사복(兼司僕)이
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허실(虛實)을 알며, 성질이 또 음험(陰險)하다. 지금
만약 양지(仰止)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분(憤)을 품을 것이니,
유감(遺憾)을 품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아마도 변란을 선동(扇動)하고 일을
낼 것 같다.”

하니, 이경동(李瓊全)은 말하기를,

“지금 길이 멀고 통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개유(開諭)하여 중지하도록 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독관(侍讀官) 조지서(趙之瑞)는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이형원(李亨元)과 함께 대마도(對馬島)에 도착하였는데, 섬의 사
람들이 신 등을 인도하면서 직로(直路)로 안내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우리에
게 지름길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대마주(對馬州)에서 강원도(江原
道)까지의 거리가 수로(水路)로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 저들로 하여금 이
길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경동(李瓊全)은 말하기를,

“중국이 우리 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친왕(親王)16799) 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일찍이 자유채(刺楡寨)의 길로 내왕하기를 청했는데도 끝내 허
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산계(山溪)의 도로는 경솔하게 적국의 사람들
에게 알게 할 수 없습니다.”

之瑞曰：“臣嘗偕李亨元到對馬島，島人引臣等，不由直路，是不欲我見其捷路也。對馬州距江原道水路甚近，不可使彼知此路也。”瓊全曰：“中國待我國如親王，然我國曾請刺楡寨路，而竟不蒙許。山溪道路，不可輕使敵人知也。”思慎曰：“仰止已知許見之意，不可中止，亦不可以盜賊之害言之。”上曰：“以雪深路險之弊語仰止，以觀其意可也。”

	<p>하고, 노사신(盧思愼)은 말하기를, “양지(仰止)가 이미 보도록 허락한 뜻을 알고 있으니 중지할 수도 없고, 또 도둑의 피해를 그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눈이 깊이 쌓였고 길이 험하다는 폐단을 양지(仰止)에게 말하여 그의 의사(意思)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1 일(무신) 2번째기사</p>	<p>어서(御書)를 예조(禮曹)에 내려 양지 화상(仰止和尚)에게 말하게 하기를, “너의 도주(島主)가 우리 나라에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대우하기를 매우 후하게 한다. 그래서 무릇 청구하는 것은 따라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금년은 가뭄으로 기근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먹는 것도 어려우므로 창고를 열어 진휼(賑恤)하는 데 이르렀다. 그리고 또 도주(島主)에게 유시(諭示)하여 사인(使人)의 수를 헤아려서 줄이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백성을 위해서이고 그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 네가 도주(島主)의 청을 매우 간절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금강산(金剛山)을 구경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역은 산길이 매우 험하며 겨울에는 눈이 산봉우리와 언덕같이 쌓여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때로 실종되기도 하며 갑자기 길에서 죽기도 하므로 네가 〈그곳으로〉 가는 데 대해서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길에서 불행하게 이와 같은 환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이러한 폐단을 알면서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교린(交隣)하면서 서로 후하게 대하는 뜻이 아니다.”</p> <p>하였다.</p>	<p>○御書下禮曹，令語仰之和尚曰：“汝島主輸款我國，故我國遇之甚厚，凡所求請，靡不從之。今年飢荒，民生艱食，至發倉賑之。且諭島主量減使人之數，此乃爲民，非與之絕也。今汝以島主之請，懇懇言之，故許觀金剛山。然江原一道山路甚險，冬雪積如峯丘，行人有時失蹤，輒死於道，汝之行止，不可不慎。若在路不幸有如此之患，爲之奈何？我知此弊而不以實告，則非交隣相厚之意也。”</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1 일(무신) 5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全)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장리(贓吏)는 국가의 두적(蠹賊)16800) 으로서 풍속과 교화를 손상시키고 선비의 풍습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왕자(王者)가 미련 없이 버리고 후사까지 금고(禁錮)시켜서 선비의 기풍을</p>	<p>○司憲府大司憲李瓊全等上箚子曰： 贓吏者，國之蠹賊，傷風教，壞士習，莫此爲甚。故王者棄之，不惜禁錮，</p>

	<p>면려(勉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자문(柳子文)은 자신이 장오(贓汚)를 범하여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고 성명(姓名)이 장안(贓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10년 뒤에 기용되기를 희망하여 뻔뻔스럽게 다시 변명하면서 옛날에 승복(承服)했던 인리(人吏)도 지금에 와서 변경시키며 옛날에 들여놓지 않았던 문권(文券)을 지금 와서 들여 놓으니, 그 당시의 인리는 어찌하여 사실대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으며, 문권은 어찌하여 즉시 들여놓지 않고서 뒷날을 기다린 것입니까? 그 진실과 속이는 것을 알만한데도 전하(殿下)께서 애매(曖昧)하다고 여기시어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장안(贓案)에서 이름을 삭제하게 하셨습니다. 신 등은 모르긴 합니다만 유자문의 애매한 것이 어떤 일입니까? 무릇 장리(贓吏)로서 도망 중에 있는 자도 오히려 증거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는데, 더구나 유자문은 그를 처음 추문(推問)할 적에 변명을 못하고 말없이 자복한 것이겠습니까?</p> <p>법은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사람마다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인주(人主)의 법은 마땅히 튼튼하기가 금석(金石)과 같고 신실(信實)하기가 사시(四時)와 같아서 한 번 결정하면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유자문(柳子文)을 용서한다면 유자문과 같은 자가 반드시 별때처럼 일어나서 원통함을 호소할 것이니, 전하(殿下)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시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고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모두 따라 준다면 탐람(貪婪)하고 청렴한 것을 권면하고 징계할 수가 없어서 선비의 풍습이 점점 비오(鄙汚)해지고 염치(廉恥)의 도(道)가 장차 흔적도 없이 되어 나라가 나라꼴이 안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신 등이 고집하면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까닭입니다.</p> <p>근자에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여러 도(道)의 연분 등제(年分等第)16801)를 함께 의논하여 등급을 더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진실로 국가에 잇달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허덕이며, 금년의 가뭄은 작년</p>	<p>至於後嗣，以礪土風。今柳子文身犯贓汚，既服其罪，姓名錄在贓案。然猶希用於十年之後，乃復靦然發明，昔之承服人吏，今則改之，昔之未納文券，今則納之。當其時，人吏何不以實證之，文券何不即納，而以待後日耶？其情其詐可知。而殿下以爲曖昧，特原其罪，削名贓案，臣等未知子文曖昧者何事歟？凡贓吏在逃者，猶據證定罪，況子文其在初推，未能辨明，無辭自服乎？法不可以一人而搖，一人而搖，則人人得而搖之。人主之法，當堅如金石，信如四時，一定而不可易。赦一子文，則如子文者必蠶起而訴冤。殿下不從之，則用法不均；盡從之，則貪廉無所勸懲，士習漸以鄙汚，廉恥之道將恐掃地，而國非其國。此臣等所以固執而不能自己者也。近日議政府、六曹將諸道年分等第同議加等。誠以國家連歲凶荒，人民阻飢，而今年之旱甚於去年，發倉賑救，大半不贍，後日之備，亦不可不先具也。然賦稅可減，而不可加也。《大典》所載議政府、六曹同議收稅者，豈是一向加等云乎哉？蓋慮分憂者，有賢有否，或以</p>
--	--	---

	<p>보다 심하여 창고를 열어 진구(賑救)하지만 태반(太半)도 너넉하지 않으므로 뒷날을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갖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세(賦稅)를 줄이는 것은 가하지만 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전(大典)》에 기재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함께 의논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이 어찌 한결같이 등급을 더하는 것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대개 분우자(分憂者) 16802는 어진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어서 더러는 풍년을 흉년이라고 하고 더러는 재앙을 상서라고 하여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정(朝廷)의 공의(公議)를 따라서 혹은 올리고 혹은 내리기도 하여 중도(中道)에 맞게 하였으니, 이것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너넉하게 하는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풍년이 든 해에 시행하는 것은 그래도 좋겠지만, 만약 흉년이 든 해에 시행한다면 국가의 용도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얻는 것은 매우 적으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하는 것을 보이게 되어 잃는 것이 매우 클 것인데, 더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 세 도는 사람들이 모두 생업을 잃고 근심에 빠져서 먹여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 중에 비록 조금 풍년이 든 지역도 있으나 이미 곡식 종자로 바뀌 버렸고 또 바치지 못한 세금을 재촉하므로 백성들이 이미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제 또 세금을 더한다면 백성들의 실망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p> <p>평안도(平安道)는 국가의 문호(門戶)이므로 변방의 환란에 대비하여 곡식을 축적(蓄積)하는 것은 참으로 시급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조종(祖宗) 때부터 엄하게 방금(防禁)을 세워 저축하는 것을 힘쓰게 하는 한편 온 도(道)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곡식은 사사로이 운반하여 경성(京城)으로 수송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쌀장사들이 금지당하여 내왕하지 못하였는데, 근래에 연달아 흉년과 가뭄을 만나 비로소 배로 운반하는 것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외(京外)의 행상(行商), 그리고 중과 일반인의 구걸하는 무리들이 성화</p>	<p>熟爲荒，或以災爲祥，未可盡信。故從朝廷之公議，或升或降，以適于中，無非所以安民裕國之意也。行之於豐稔之年，猶云可也；若行之於凶歲，則裨補國用所得毫毛，而示民加賦所失甚大，其可加之哉？今忠淸、全羅、慶尙三道人皆失業，嗷嗷望哺，其間雖有稍稔之地，既換穀種，又催逋租，民已不堪其苦。而今又加稅，則民之失望，不可勝言。平安道爲國門戶，備邊積穀，誠爲急務。自祖宗以來，嚴立防禁，務要儲蓄，一道人民所有之穀，不得私運以輸京城，緣此米商禁不往來。近來連遭荒旱，始通船運，京外行商與夫僧俗乞丐之徒，星奔輻輳，今年尤甚。雖云稍稔，民間穀食想已費耗，朝廷諉以豐熟，一則曰築城，二則曰籍軍，使命往來，公私俱困。不但此也，前年徙民之時，造其居室，運其馱載，民已告勞。若有此舉，寧不重困吾之民力哉？若籍軍，則當追集吏胥，檢括丁口，間有不實，則鞭撻隨之。雖有所得，以逃漏久逸之民，一朝就加羈勒，其爲怨詈，不占可知。臣等反覆思之，括丁雖關機務，卽今行之，恐未</p>
--	--	---

	<p>(星火)같이 빠르게 모여들었는데, 금년에 더욱 심합니다.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나 민간의 곡식은 아마 벌써 다 소비되었을 것인데, 조정에서는 풍년이 들었다고 여겨서 첫째로 성(城)을 쌓는다고 하고 둘째로는 군적(軍籍)을 만든다 하며 사명(使命)이 왕래하여 공사(公私)가 함께 곤고(困苦)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해 백성들을 이사시킬 때에 그들의 거실(居室)을 지어주고 그들의 짐바리를 운반했으므로 백성들이 이미 고달프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거사(學事)가 있게 되면 어찌 거둬 우리의 민력을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적(軍籍)을 만드는 것은 마땅히 이서(吏胥)를 추가로 모집하여 정구(丁口)16803)를 단속하거나 간혹 부실한 것이 있으면 벌을 가하도록 하소서. 비록 얻는 것이 있더라도 도망하거나 누락되어 오래도록 빠뜨려진 백성을 하루아침에 기적(羈勒)16804)을 가하게 되면 그들이 원망하고 욕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만합니다. 신 등이 반복해서 생각하건대 정구(丁口)를 단속하는 것이 비록 기무(機務)에 관계가 되지만 지금 곧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마도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유념(留念)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穩便。 伏願殿下留心焉。</p> <p>不聽。</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1일(무신) 6번째기사</p>	<p>승지(承旨)와 입직(入直)한 홍문관 주서(弘文館注書)·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새로 내린 눈[新雪]에 대하여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지어 올리게 하고, 인하여 술을 내려 주었다. 시를 다 지어 올리자, 전교(傳敎)하기를, “내일 경연 당상(經筵堂上)으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게 하라.”</p> <p>하였다.</p>	<p>○命承旨、入直弘文館、注書、史官，製《新雪》七言律詩以進， 仍賜酒。 既製進， 傳曰：“令明日經筵堂上科次。”</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2일(기유) 4번째기사</p>	<p>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강거효(姜居孝)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유자문(柳子文)은 문과(文科) 출신으로 사리(事理)를 조금 아는데, 한 번 수령에 임명되자 탐욕스런 마음이 갑자기 생겨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만 살찌려 하였으며 공사(公事)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경영하였으니, 참으로 정사(政事)를 좀먹는 두적(蠹賊)입니다. 이름을 장안(贓案)에 기록하여 종신토</p>	<p>○司憲府執義姜居孝等上笱子曰： 柳子文出身文科， 稍識事理， 一任守令， 貪心忽生， 損民肥己， 欺公營私， 誠蠹政之蠹賊。 錄名贓案， 禁錮終身，</p>

록 금고(禁錮)시키는 것이 법에 당연합니다. 지금 장안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졌는데, 신 등은 그 까닭을 모르겠으나 죄안(罪案)을 열거하여 날날이 진술하기를 청합니다. 쌀 4석(碩)으로 면포(綿布) 15필(匹)과 바꾸고 그것을 유기(鋤器)와 바꾸어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장물(贓物)의 첫 번째이고, 중사(中絲) 5근을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장물의 두 번째이고, 생견(生繭) 10석을 자기가 챙겼으니 그것이 장물의 세 번째입니다. 무릇 장물죄를 범한 사람은 범한 것이 비록 작더라도 장안에 기록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징계로 1백 사람을 경계시켜 선비의 기풍을 가다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자문(柳子文)의 장물은 바로 그 죄 중에서도 중하고 큰 것입니다. 그 밖에 흥리인(興利人)16807)에게 면포(綿布)를 받고 관곡(官穀)을 지급한 등의 일은 날날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처음 추문(推問)할 때에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과 유자문을 일일이 직접 문초하였는데, 이제 거짓을 꾸며 근거없는 문권(文券)을 바쳤으니, 이것은 유자문의 속이는 것을 알 만합니다. 그 때를 당해서 과연 이 문권이 있었다면 두 차례의 형신(刑訊)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바쳤을 것입니다. 10년 뒤에 가만히 그 일에 관계된 사람에게 요청하여 감히 이것으로 질정(質正)하여 전하(殿下)를 속이려 하니, 이것은 매우 간사한 자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예(禮)로써 나라를 다스리시고 선비의 기풍을 진작(振作)시키고 풍속을 권려(勸礪)하는데도 오히려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장오(贓汚)에 빠진 자가 28명이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장물죄를 범하고 도망중에 있는 자가 두 사람이며 가두어 놓고 국문(鞫問)하는 자가 한 사람이니, 장리(贓吏)가 성상(聖上)의 교화에 누(累)를 끼치는 것이 이와 같이 많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그것을 바로잡아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만일 혹시라도 용서한다면 폐단을 장차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유자문을 용서하는 것은 비록 해로움이 없는 것 같으나, 풍속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리는 조짐은 자

於法當矣，今命除贓案，臣等未知其由。請舉罪案而歷陳之：以米四碩買綿布十五匹，易鋤器入己，其贓一也；中絲五斤入己，其贓二也；生繭十碩入己，其贓三也。凡犯贓之人，所犯所小，猶且錄案，欲其懲一而警百，以礪士風也。子文之贓，乃其罪之重且大者也。其他如受興利人綿布給官穀等事，則難以枚舉也。初推時，事干人及子文一一直招，今而飾詐，納其無據之文券，此則子文之許可知矣。當其時果有此文券，則不待二次刑訊，自當納之矣。十年之後暗請事干，敢以此質之，以欺殿下，此則奸回之尤者也。殿下自即位以來，以禮爲國，振士風，礪風俗，猶有不畏邦憲以陷贓汚者二十有八人。不但此也，即今犯贓在逃者二人，囚禁而鞫者一人，贓吏之有累聖化，如此其多也。據法而繩之，猶恐不勝，如或寬之，弊將何救？赦一子文，雖若無害，傷風敗俗，漸不可長也。

不聽。

	<p>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3 일(경술)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여러 도의 연분(年分)에 다시 한 등급을 더한다고 합니다. 금년은 가뭄과 흉년이 매우 심하여 민간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곳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령(守令)이 친히 전묘(田畝)를 살펴서 곡식을 잘 익고 익지 않은 것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그것이 가볍고 험한 것이 아닌가 하여 더러는 수령을 책망하기에 이르는데, 만약 법을 지켜 흔들리지 않는 자라면 비록 감사의 책망이 있더라도 마땅히 그 등급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높은 등급으로 고치게 되는데, 감사는 그래도 가볍다고 여겨 또 한 등급을 더하는 것이 바로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또 등급을 더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困窮)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의 의논으로 연분(年分)의 등급을 더한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입니다. 성상께서 백성들이 주리는 것을 진념(軫念)하셔서 진휼사(賑恤使)를 파견하여 그들을 구휼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세금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건의한 의도는 국가의 저축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축하는 계획은 당연히 풍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필이면 흉년에 하려고 하십니까? 묘당(廟堂)16808)의 대신이 어찌 백성들의 생활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의논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신만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의 저축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의정부(議政府)에서 등급을 더하도록 계청(啓請)하고, 또 의정부에서 여러 도(道)의 연분 등제(年分等第)가 지나치게 가</p>	<p>○庚戌/御經筵。講訖，同知事金宗直啓曰：“臣聞諸道年分又加一等。今年旱荒太甚，民間雖或有刈穫之處，然其所食，必無贏餘。守令親審田畝，隨其稔否，以爲等第報監司；監司慮其輕歎，或至誚讓守令。若守法不撓者，則雖有監司之責，當不移易其等第矣；如其非人，更高等第，監司猶以爲輕，又加一等，乃其常事也。今國家又從而加等，則民生不亦困乎？以朝廷之議年分加等，邇來所無之事。聖上軫念民飢，遣賑恤使調救之不暇，而反欲加賦，實未便。當初建議之意，爲國儲備也。然儲蓄之策，當待豐年，何必於凶歲乎？廟堂大臣豈不重念民生，而有是議乎？然臣獨以爲不可也。”上曰：“國儲虛竭，故政府啓請加等。政府請諸道年分等第過輕者，免其監司，若爾則民必受害，故今只加一等。倉廩垂竭，不可不慮。但今年荒甚而加等收稅，則慮有後世之議，憲府及卿言是也。予將更議處之。”宗直曰：“以政府獻議，有此加賦之令，然閭巷小民</p>

	<p>벼운 것은 그 감사(監司)를 면직(免職)시키라고 청하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해를 받을 것이므로 한 등급만 더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창름(創廩)이 거의 고갈(枯渴)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금년은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등급을 올려서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면 후세의 의논이 있을까 염려되니, 사헌부(司憲府)와 경(卿)의 말이 옳다. 내가 장차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겠다.”</p> <p>하였는데, 김종직(金宗直)이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헌의(獻議)한 것으로 이렇게 세금을 더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여항(閭巷)의 소민(小民)들은 그 까닭을 모르고서 반드시 원망이 성상(聖上)에게 돌아갈 것입니다.”</p> <p>하고, 장령(掌令) 이의(李誼)는 말하기를, “감사(監司)가 여러 고을을 순심(巡審)하여 그 등급을 정하고 호조(戶曹)에 신보(申報)16809) 하는데, 조정에서는 감사를 신임하지 않고 또 한 등급을 더하는 것은 너무나 사체(事體)를 상실한 것입니다. 청컨대 세금을 더하지 마소서. 더구나 민간의 곡식 종자는 모두 관청에 바쳤는데 또 세금을 더한다면 소민(小民)들은 무엇을 먹겠습니까?”</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가 등급을 절충[折中]한다면 좋은 것이다. 다만 내가 들으니, 더러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등급을 너무 험하게 하는 자가 있다 하니 매우 옳지 않다. 그러나 지금 등급을 더하는 것은 감사를 신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에 이익이 되게 하려고 많이 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해서 후일 진휼하고 구제하는데 대비하려는 것이다.”</p> <p>하였는데,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말하기를, “감사들은 거개가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여 그 등급을 가볍게 하였습니 다. 비록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한 푼이라도 너그럽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p>	<p>不知其由，必怨歸於上矣。”掌令李誼曰：“監司巡審諸邑，定其等第，申報戶曹，而朝廷不信監司，又加一等，殊失事體，請勿加賦。況民間穀種既皆納官，而又加租稅，則小民何食？”上曰：“監司折中等第則善矣，但予聞或干譽於民而等第過歇者，甚爲不可。然今之加等，非不信監司，又非欲利於國而多取之也，求以備後日之賑救也。”領事尹壕曰：“監司率欲利民輕其等第，雖曰寬民一分，然不可寡取也。爲國儲備，不得已耳，但凶年加賦爲未穩。”宗直曰：“臣謂國儲雖不裕，寬民一分可也。”誼又啓曰：“柳子文犯贓致罪之物，則繭十碩、絲五斤、米四斛而已。今更閱推案，子文之犯，非特此也。受賈人金長壽綿布五十匹，又畜平壤及江界官婢，費用公廩。且於安州作田，使邑吏治之，名爲姻家之田，而實潛輸其家。其他瑣瑣冒濫之事，難以枚舉。近者貪風日滋，金溝縣令趙繼孫、陽智縣監李仲善俱坐贓，繼孫則逃匿。雖痛繩以法，猶不知懼，況寬縱之，使無所懲艾。向者歸厚署別坐趙成璧盜松板四箇，猶</p>
--	---	--

	<p>그러나 적게 거두어 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저축하고 대비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일 뿐입니다. 다만 흉년이 든데다가 세금을 더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뿐입니다.”</p> <p>하고, 김종직(金宗直)은 말하기를, “신은 생각하건대 나라의 저축은 비록 넉넉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에게 한 푼이라도 너그럽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p> <p>하였다. 이의(李誼)가 또 아뢰기를, “유자문(柳子文)이 장물죄를 범하여 죄를 이루게 된 물건은 고치[繭] 10석(碩), 실[絲] 5근(斤), 쌀 4곡(斛)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추안(推案)16810) 을 보니, 유자문이 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인(賈人)16811) 김장수(金長壽)에게서 면포(綿布) 50필(匹)을 받았으며, 또 평양(平壤)과 강계(江界)의 관비(官婢)를 기르면서 공름(公廩)을 허비하여 썼으며, 또 안주(安州)에다 전지(田地)를 일구어 고을의 아전들로 하여금 손질하게 하고 명목은 인척(姻戚) 집안의 전지라고 하였으나 실지로는 <그 수확을> 자신의 집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질구레하고 모람(冒濫)된 일은 낱낱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근자에 탐람(貪婪)하는 기풍이 날로 불어나 금구 현령(金溝縣令) 조계손(趙繼孫)·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중선(李仲善)이 함께 장물죄에 연좌되었으며, 조계손은 도망하여 숨었으니, 비록 법으로 통렬하게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더구나 너그럽게 그들을 놓아주어 징계되는 바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지난 번에 귀후서 별좌(歸厚署別坐) 조성벽(趙成璧)이 송판(松板) 4개를 훔쳤는데도 오히려 장안(贓安)에 기재 되었으니, 더구나 유자문의 장물이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다만 승복(承服)한 것뿐이다. 전날 경연(經筵)에서 조지서(趙之瑞)가 ‘숙천(肅川)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유자문의 죄는 애매하다。」고</p>	<p>載贓案，況子文之贓乎？”上曰：“予之所知，但其時承服耳。前日經筵趙之瑞云：‘肅川人皆曰：「子文之罪曖昧。」’故卿等屢請而不允。其前後推案，抄書以啓。”</p>
--	--	--

	<p>한다' 하기에, 경(卿) 등이 여러 번 청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그 전후의 추안(推案)을 베껴서 아뢰라.” 하였다.</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4 일(신해)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호조 참판(戶曹參判)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아뢰는 것으로 연분 등제(年分等第)를 다시 의논하였는데, 이른바 세금을 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지방에서도 곡식이 잘 익은 곳과 잘 익지 않은 곳이 있는데, 어찌 한결같이 보아서 그 등급을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 조금 잘 익은 곳은 비록 한 등급을 더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 세금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하문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자,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일정상 세금 외에 명목이 없는 것은 거두어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비(經費)가 매우 많아서 경상도(慶尙道)의 왜료(倭料)16813)는 태반(太半)이나 부족하니,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은 말하기를, “신이 관찰사(觀察使)가 되었을 적에 보니, 같은 지역 중에 비록 땅이 기름지고 곡식이 잘된 곳이 있으나, 많은 것을 따라서 그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한 푼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들이 한 푼의 혜택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듣건대, 전라 상도(全羅上道)는 흉년(凶年)이 들었고, 하도(下道)는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p>	<p>○辛亥/受常參，視事。戶曹參判金升卿啓曰：“以臺諫所啓，更議年分等第，其所謂加賦者，非也。一面之中，有稔處，有不稔處，豈可一視而同其等第乎？其稍稔之處，雖加一等，非損於民，且非加賦也。”上曰：“大臣業已議定矣。”仍問左右曰：“何如？”領議政尹弼商對曰：“常賦之外，不可以無名而取之。國家經費甚多，而慶尙倭料太半不足，年分加等，不得不爾。”廣原君李克墩曰：“臣爲觀察使時見之，一面之中雖有地饒豐稔之處，從多而輕其賦稅，不可也。古人云：‘寬民一分，則民受一分之賜。’然臣聞全羅上道則荒甚，下道則稍稔，收稅稍稔之處，以賑凶歉之民，亦無不可。”持平宋軼曰：“常賦之外，加賦未便。”上曰：“民無遠慮，日費無餘，官取而還與之，亦無妨。然方以賑救爲事，而有加賦之名，似未安也。”</p>

	<p>조금 풍년이 든 곳의 세금을 징수하여 흉년이 든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p> <p>하고, 지평(持平) 송질(宋軼)은 말하기를, “일정한 세금 외에 세금을 더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멀리 염려하는 것이 없으면 날로 허비해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니, 관(官)에서 거둬들였다가 돌려주는 것도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구(賑救)하는 것을 일삼으면서 세금을 더한다는 명목(名目)은 적당하지 않은 듯하다.”</p> <p>하였다.</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4 일(신해) 3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觀察使) 어세겸(魚世謙)이 와서 아뢰기를, “경창(京倉)의 쌀 1천 석(碩)으로 벼씨를 교환하는 일은 이미 전교(傳敎)를 받아 호조(戶曹)에 이문(移文)16816) 하였는데, 호조에서 쌀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회답하였습니다. 무릇 민간에서 수확한 벼는 본래 많지 않은데다가 먹는 것을 여기에 의뢰하는데, 지금 교환하는 일에 저축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민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경창(京倉)의 쌀을 바꿀 때마다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본도(本道)에서 사곡(私穀)을 봉(封)해 둔 숫자는 다만 3천여 석인데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은 벼를 교환하느라고 거의 다 썼으며, 또 의창(義倉)에 저축된 것도 떨어졌으니, 사곡 3천 석으로 어떻게 한 고을의 백성들을 진구(賑救)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경창(京倉)의 쌀 1만여 석을 방출하여 그 값을 넉넉하게 해서 백성들과 물화(物貨)로 바꾸고 풍년이 들어 곡식이 천해질 때를 기다려 도로 사들인다면 국가에서 그 근본을 잃지 않고 백성들도 이익을 얻게 되어 관청과 민간 양편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린 백성을 진제(賑濟)하는데 한끼의 식량으로 장정(壯丁)은 2홉(合) 5작(勺)이고 유아(幼弱)는 7작이니, 먹</p>	<p>○京畿觀察使魚世謙來啓曰：“以京倉米一千碩換稻種事，已受教移文戶曹，戶曹答以隨後給米。凡民間收穫之稻，本不多也，而仰食於此，今以抵換之故，民不得食，此誠可悶。今以京倉米隨換隨給何如？且本道封閉私穀之數，只三千餘石，而軍資倉穀換稻殆盡，又乏義倉之儲，以私穀三千碩，安能賑一邑之民？請出京倉米萬餘碩，優其直，與民質貨，以待年豐穀賤而還賣，則國家不失其本，而民亦蒙利，官民兩便。且飢民賑濟一時之食，壯則二合五勺，弱則七勺，所食甚少，請加數。”傳曰：“質換給米，依所啓；以米質布，乃新法，不可輕舉。飢民賑</p>

	<p>을 것이 매우 적습니다. 청컨대 숫자를 더해 주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교환하여 쌀을 지급하는 것은 아된 대로 하고, 쌀로써 베를 바꾸는 것은 신법(新法)이니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다. 그리고 주린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쌀의 〈분량은〉 호조 당상(戶曹堂上)과 상의(商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救之米，與戶曹堂上商議以啓。”</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4 일(신해) 5번째기사</p>	<p>명하여 연분 등제(年分等第)의 일을 의정부(議政府)에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금년이 비록 극심한 흉년이라고 하나 산골 고을의 전지(田地)와 물이 있었던 전지는 곡식의 결실이 풍년이 든 해와 같은데도 감사가 등제(等第)를 지나치게 가볍게 하였으므로 전일(前日)에 등급을 더하려고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정괄(鄭恬)은 의논하기를, “지금 흉년을 당하였는데 연분(年分)의 등급을 더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 도(道) 가운데에는 조금 곡식이 잘 여문 곳도 있으니, 비록 한 등급을 더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흉년이 들어 국가의 비용이 부족하므로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여러 의논을 관찰하건대, 모두 지난 번의 의논을 그대로 지킨 것이다. 다만 대간(臺諫)이 말한 것도 이치에 닿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등급을 더하게 하였으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일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고 나를 후(厚)하게 거뒀다 들인다고 할까 염려스럽다. 그러니 의정부(議政府)에서 백성들이 두루 알도록 유시(諭示)하라.”</p>	<p>○命更議年分等第事于議政府。 尹弼商、李克培、李坡議：“今年雖曰甚凶歉，山郡之田及有水之田，其稔等於豐年。而監司等第過輕，故前日議欲加等耳。” 鄭恬議：“今當險年，年分加等，似乎未安。然諸道間有稍稔處，雖加一等，不至於過重。” 鄭蘭宗議：“年飢國用不足，年分加等，出於不得已也。” 傳曰：“予觀群議，皆守前議。但臺諫所言亦有理，然出於不得已，故使加一等。慮愚民不悉事勢，以我爲厚斂矣。其諭政府，俾民周知。”</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4일(신해) 6번째기사</p>	<p>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넉넉하면 임금이 누가 넉넉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한 푼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들이 한 푼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격언(格言)인 것이다. 내가 보잘것없는 덕(德)으로 백성들의 부모(父母)가 되어 백성을 어질게 하는 정치는 비록 시행한 것이 없었더라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르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흉년 때문에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어서, 비록 긴급하지 않은 비용은 절약을 하지만 진구(賑救)하는 비용과 조도(調度)16817)의 수를 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일에 이르러 창름(倉廩)이 거의 고갈되었고 경상 일도(慶尙一道)는 지역이 넓고 저축한 것이 풍족하다고 일컫는데도 왜료(倭料)로 지공(支供)하는 것이 태반(太半)이나 부족한 실정이니, 기타 여러 도는 이것을 미루어 알 만하다. 금년에 여러 도(道)의 연분은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의논을 따라 각각 한 등급을 더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등급을 더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네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대간(臺諫)의 말이 바로 나의 뜻과 부합된다. 다만 조정의 의논이 보통 해에 지역을 나누어 등제(等第)를 매길 때면 부실(不實)한 자가 더러는 폐해(弊害)를 받지만, 지금은 등급을 따라서 살펴보고 징험하므로 틀림 없이 그런 폐해는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더구나 국가의 채용(財用)이 텅비어 조도(調度)가 넉넉하지 않으니, 만일 두어 해만 흉년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이 주리는 것을 좌시(坐視)하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면제된 것을 거두어 급한 것을 진휼(賑恤)하는 것도 황정(荒政)16818)의 방법으로, 그것이 국가의 백년 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니, 이 말이 이치에 닿아서 나도 감히 억지로 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민(小民)들은 지극히 어리석으니, 어찌 일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다</p>	<p>○傳旨議政府曰：“古語云：‘百姓足，君誰與不足?’ 又曰：‘寬民一分，則民受一分之賜。’ 此誠爲國者之格言也。予以涼德，爲民父母，仁民之政，雖無所施，愛民之心，無所不至。頃緣年歉，稅入尠少，雖節不急之用，而賑救之費、調度之數，在所不廢，至于今日，倉廩垂罄。慶尙一道，號稱地廣，儲蓄亦饒，而倭料所支，太半不足；其他諸道，推此可知。今年諸道年分，從政府、六曹之議，各加一等。當此凶年，加等收稅，予所不忍，臺諫之言，正合予意。但廷議以爲：‘其在常年分面等第之時，則不實者容或受弊；今既逐段審驗，必無此弊。況國用虛竭，調度不裕，如遇數年之荒，坐視民飢，無以爲策。收其所除，以周其急，亦是荒政之一事。其於國家大計，不得不爾。’ 此言有理，予亦不敢強違。然小民至愚，豈悉事勢之難而不以予爲厚斂乎？嗷嗷黎民怨咨可知。惟爾政府，體予至懷，曉諭中外。”</p>
---	--	--

	<p>알아서 나를 후하게 거둬들인다고 하지 않겠는가? 근심에 파묻힌 못백성들의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을 알 만하다. 그대 의정부(議政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5 일(임자) 2번째기사</p>	<p>호조 당상(戶曹堂上)·진휼사(賑恤使)·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를 명소(命召)하여 진제(賑濟)하는 쌀의 수량을 더하는 것과 경창(京倉)의 쌀을 바꾸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p> <p>“유약자(幼弱者)의 한 끼의 식량으로 쌀 7작(勺)은 지나치게 적으니, 콩 5작을 더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배와 바꾸는 일은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경기 관찰사 어세겸(魚世謙)이 말하기를,</p> <p>“빈민(貧民)에게 지급하는 경창(京倉)의 미곡(米穀)에 있어서 경기(京畿)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창에 가서 받는 것이 구례(舊例)입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은 창름(倉廩)이 텅비어서 백성을 구제할 계획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고을에서 경창의 곡식을 수령하여 본관(本官)으로 수송하게 하고 사람수를 계산하여 관(官)에다 면포(綿布) 1필(匹)을 바치게 해서 그 값으로 쌀 4두(斗)를 지급한다면 백성들이 두터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포로 명년 가을을 기다려 곡식과 바꾼다면 곡식의 수량이 반드시 감절이 될 것이고 국가의 창고도 넉넉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p> <p>하니, 진휼사(賑恤使) 노사신(盧思愼)·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참판(參判) 김승경(金升卿)은 말하기를,</p> <p>“신 등은 듣건대, 연분(年分)에 등급을 더하는 일을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를 내려 중외(中外)에 유시(諭示)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신 등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세금을 더하는 것은 아니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응당 세금을 더하게 해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부득이해서라</p>	<p>○命召戶曹堂上、賑恤使、京畿觀察使，議賑濟米加數及京倉米換布事。咸曰：“弱者一時之食，米七勺，過少，加豆五勺何如？貿布事，不可輕舉。”京畿觀察使魚世謙曰：“應給貧民京倉米穀。京畿之民自受京倉，舊例；諸邑則倉廩空竭，救民無術。臣意以謂諸邑受於京倉，輸之本官，計口數，官納綿布一匹而給價米四斗，則民蒙厚惠矣。以此綿布，待明年秋買穀，則穀數必倍，而國廩亦裕矣。”賑恤使盧思愼、戶曹判書李德良、參判金升卿曰：“臣等聞年分加等事，下傳旨于政府，使諭中外。臣等意此非加賦，而愚民聞之，必曰：‘不應加賦，而爲是不得已之辭，以慰解之耳。’請收成命。”傳曰：“可。”仍傳于政府曰：“勿下傳旨。”思愼等又啓曰：“失農諸道觀察使、都事，雖已秩滿，救荒前勿遞爲便。正朝陪箋，勿差守令，代以察訪何如？”傳曰：“可。”</p>

	<p>는 말로 위로하고 해명하는 것이다.’ 할 것이니, 정컨대 성명(成命)을 거두소서.”</p> <p>하자, 전교하기를, “옳다.”</p> <p>하고,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전교하기를, “전지(傳旨)를 내리지 말라.”</p> <p>하였다. 노사신(盧思愼) 등이 또 아뢰기를, “실농(失農)한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와 도사(都事)는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구황(救荒) 전에는 체임(遞任)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조(正朝)에 전문(箋文)을 모시는 것도 수령(守令)을 차출하지 말고 찰방(察訪)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6 일(계축) 3번째기사</p>	<p>임금이 양대비전에 잔치를 올리고, 이어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 한성부(漢城府)·경연 당상(經筵堂上)·도총부(都摠府)·대사헌(大司憲)·대사간(大司諫), 그리고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와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사관(史官)을 전정(殿庭)에서 대접하도록 명하고 풍악을 내려 주면서 전교하기를, “모두 마음껏 마시도록 하라.”</p> <p>하고, 또 명하여 잔치에 참여한 관원들에게 동짓날에 대하여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지어서 올리라고 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가 술에 취하여 기생과 시끄럽게 떠들고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임금께서 이미 이 기생을 나에게 내려 주셨다.”</p> <p>하니,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윤호는 본래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p>	<p>○上進宴于兩大妃殿。仍命饋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參判以上、漢城府、經筵堂上、都摠府、大司憲、大司諫、入直諸將、承政院、弘文館、史官于殿庭，賜樂。傳曰：“皆痛飲。”又命參宴官製《至日》七言律詩以進。領敦寧尹壕醉酒，與妓號呶而舞，曰：“上既賜我此妓矣。”人皆笑之。壕本上黨府院君韓明澮族屬，事之如父，無異家臣。常於族會，喜作俳優戲，備諸醜態，以求笑於明澮之</p>

	<p>明澮)의 족속(族屬)으로 섬기기를 아비같이 하면서 가신(家臣)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항상 족속이 모이면 즐거이 배우들의 희롱하는 모양을 하며 여러 가지 추태(醜態)를 다 부리면서 한명회의 자녀와 희첩(姬妾)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면서도 태연하게 여기고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귀(富貴)하게 된 다음에는 한명회를 업신여기는 뜻이 있었다.</p>	<p>子女姬妾，而恬不知愧。 及富貴，頗有陵轢明澮之志。</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8일(을묘)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한언(韓堰)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사헌부(司憲府)와 함께 여러 번 세금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셨는데 발락(發落)16819) 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매우 옳다. 세금을 더한다는 명목이 비록 아름답지는 않으나 나라의 계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대신들이 세금을 더하고자 건의(建議)한 것이 어찌 백성들의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음이겠는가? 진실로 나라에 이롭게 하려고 백성에게 침어(侵漁)16820) 하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 창름(倉廩)이 일제히 비었고 명년(明年)의 농사도 알 수 없으니, 설사 금년 같은 흉년이 든다면 국가에서 무슨 저축으로 주린 백성을 진구(賑救)하겠는가? 백성들은 항심(恒心)16821) 이 없어서 한 사람이 늘 두어 사람의 식량을 겸하고 있으며, 술과 안주로 허비하여 버리고 후일의 계수(計數)16822) 를 돌아보지 않으니, 관(官)에서 거둬들여 진대(賑貸)16823) 하여 준다면 거의 먹는 것이 절약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김종직(金宗直)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호조(戶曹)에서 왜료(倭料) 6천 석(碩)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한 등급을 더하도록 청하였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왜료를 조절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찌 다른 계책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후하게 거둬들이려 하십니까</p>	<p>○乙卯/受常參。 御經筵。 講訖，大司諫韓堰啓曰：“臣等與憲府，屢啓不宜加賦，昨命議于大臣，未知發落。” 上曰：“臺諫之言甚是。 加賦之名雖不美，爲國之計不得不爾。 大臣之建議加賦者，豈不思民食乎？ 固非欲利於國而侵漁於百姓也。 爾來倉廩一空，明年農事亦未可知，設使凶荒如今年，則國家以何儲蓄而調救飢民乎？ 民無恒心，一人常兼數人之食，糜費酒肴，不顧後日。 計數官收而賑貸，則庶幾食之有節矣。” 同知事金宗直曰：“臣聞戶曹以倭料六千碩不足， 請加一等。 臣謂倭料調給，豈無他策，而欲厚斂於民乎？” 上曰：“此不得已耳，非欲厚斂也。” 宗直曰：“加等取民，非厚斂而何？ 且臣有所聞，不敢不啓。 慶尙道觀察使李克基會災傷敬差官于星州，按其等第。 仁同縣監洪漢忠，克基之所知者，守令畏監司之責輕歇等第也，使</p>

	<p>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것은 부득이하여서이고 후하게 거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p> <p>하자, 김종직이 말하기를,</p> <p>“등급을 더하여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후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이 들은 것을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기(李克基)가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과 성주(星州)에서 모여 그 등제(等第)를 안찰(按察)하였는데, 인동 현감(仁同縣監) 홍한충(洪漢忠)은 이극기가 아는 자이므로 수령들이 감사의 등제를 가볍고 험하게 하였다는 책망을 두려워하여 홍한충으로 하여금 먼저 이극기를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이극기가 과연 홍한충의 등제를 가볍게 한 것을 책망하므로 여러 수령들이 그것을 듣고 또 한 등급을 더하였으니, 이극기의 어짊으로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도(道)의 감사는 어찌 국가의 재용(財用)을 깊이 염려하지 않고 그 등제를 가볍게 하였겠습니까? 감사가 이미 조정에 신보(申報)하였는데 다시 등급을 더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장령(掌令) 김질(金耆)이 말하기를,</p> <p>“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바로 옛날의 공법(貢法)16824)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을 당하여 세금을 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p> <p>하고, 검토관(檢討官) 김수동(金壽童)은 말하기를,</p> <p>“성상께서 명년에 흉년이 들 것을 염려하시고 등급을 더해서 세금을 거둬들이 진구(賑救)하는 데 대비하려 하시니, 그 염려하심이 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현재 먹기조차 어려워 굶어 죽는 것을 구제하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느 겨를에 후일(後日)에 진구(賑救)할 것을 계산하여 세금을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사필(史筆)로 기록할 때 무어라고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漢忠先謁克基， 克基果責漢忠等第之輕， 諸守令聞之， 又加一等。 以克基之賢， 尚且如此， 他道監司豈不深慮國用， 而輕其等第乎？ 監司既已申報， 朝廷不宜更爲加等。” 掌令金耆曰：“我國收稅， 卽古之貢法。 今當凶歲， 加賦不可。” 檢討官金壽童曰：“上慮明年凶歉， 加等收稅， 以爲賑救之備， 其慮深矣。 然民方艱食， 救死不〔瞻〕〔瞻〕， 何暇計後日之賑救而加賦乎？ 書之史筆， 以爲何如？” 上曰：“加等之舉， 非迫民於死也， 將以備後日之賑恤耳。 今不加等， 後遇凶荒， 國家坐視民飢而不救， 則於史筆亦且不美矣。” 金耆曰：“田一結， 若下之下， 則稅米四斗； 今加一等而爲下之中， 則加二斗。 貧乏之民加備二斗， 不亦難乎？” 上謂領事韓明澮曰：“於政丞議何如？” 對曰：“臺諫所言固善。 民惟邦本， 本固邦寧， 固不可厚取之也。 然京外倉廩垂竭， 國家調度不足， 朝臣祿俸亦已減省。 國雖凶荒， 倭料不可不給， 若以凶荒而減給， 則嫌隙必生。 臣聞長湍、 麻田等邑年穀稍稔， 而例置下等， 推此可知他道， 今之加等， 出於不得已</p>
--	--	---

	<p>“등급을 더하는 거사(學事)는 백성을 꺾박하여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후일에 진휼(賑恤)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지금 등급을 더하지 않고서 뒤에 흉년을 만나게 되어 국가에서 백성들이 주리는 것을 좌시(坐視)하면서 구제하지 못한다면 사필(史筆)에도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p> <p>하였다. 김질(金鰲)이 말하기를,</p> <p>“전지(田地) 1결(結)의 〈등급이〉 만약 하지하(下之下)이면 세금으로 바치는 쌀이 4두(斗)입니다. 지금 한 등급을 더하여 하지중(下之中)이 되면 2두(斗)를 더하게 되는데, 가난하여 아무 것도 없는 백성이 2두(斗)를 더 장만하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에게 이르기를,</p> <p>“정승(政丞)의 의견은 어떠한가?”</p> <p>하자, 대답하기를,</p> <p>“대간(臺諫)의 말한 것이 참으로 옳다고 여깁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가 편안해지므로 후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경외(京外)의 창름(倉廩)이 거의 비었고, 국가의 조도(調度)도 부족하며, 조신(朝臣)들의 녹봉(祿俸)도 이미 줄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왜료(倭料)는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흉년이 들었다 해서 지급하는 것을 줄인다면 혐극(嫌隙)16825 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들건대, 장단(長湍)과 마전(麻田) 등의 고을은 곡식이 약간 잘 여물었는데도 전례대로 하등(下等)에 두었으니, 이것을 미루어 보면 다른 도(道)도 알 만하며, 지금 등급을 더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태평 세월이 오래 되어 기름진 지역의 주민들은 음식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한 번 식사하는 비용이 거의 한 말[斗]의 쌀을 〈소비하는데〉 이르니, 비록 남은 곡식이 있더라도 후일의 계획을 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풍은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다만 국가에서 절약</p>	<p>也。我國昇平日久，沃土之民飲食過侈，一飯之費幾至斗米，雖有餘粟，不爲後日之計。然民風不可變易，第在國家節之而已。”左承旨成健曰：“臣等聞倭料六千碩不足，不可遠輸他道之穀。故該曹請於慶尙道加年分一等，又以加賦一道爲未便，諸道年分皆加一等。前日下問之時，臣等以爲無妨者以此。”上曰：“以經常之道言之，加等非也；以國家大計言之，不得不爾。”宗直曰：“陸贄曰：‘桀有天下而不足，湯用七十里而有餘。’此以節用言也。今若裁省浮費，則不必加等也。”不聽。明澮又啓曰：“向者兀狄哈破會寧長墻，搶擄人蓄而去，邊將不卽應變制敵。臣謂遣官推鞫罪之，則邊將知所戒。”上曰：“可。”</p>
--	--	---

	<p>하는 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p> <p>하였으며,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이 말하기를, “신은 들으니, 왜료(倭料) 6천 석(碩)이 부족한데 다른 도의 곡식을 멀리서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해조(該曹)에서 경상도(慶尙道)에 연분(年分) 한 등급을 더하도록 청하였고, 또 한 도에만 세금을 더하는 것은 미편(未便)하다고 해서 여러 도의 연분을 모두 한 등급씩 더하게 하셨는데, 전일 하문(下問)하실 때에 신 등이 무방(無妨)하다고 여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경상(經常)16826) 의 도(道)로써 말한다면 등급을 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국가의 대계(大計)로써 말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p> <p>하였다. 김종직(金宗直)이 말하기를, “육지(陸贄)가 말하기를, ‘결(桀)임금은 천하(天下)를 소유하였으나 부족하게 여겼고, 탕(湯)임금은 70리의 <작은 나라로서> 썼으되 여유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절용(節用)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낭비하는 것을 줄인다면 반드시 등급을 더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한명회(韓明澮)가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울적함(兀狄哈)이 회령(會寧)의 긴 담장을 파괴시키고 사람과 가축을 약탈해 갔는데도 변장(邊將)이 즉시 변고에 응하여 적을 제어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생각하건대 관원을 보내어 추국(推鞠)해서 죄준다면 변장들이 경계할 바를 알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p> <p>하였다.</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명하여 갑사(甲士)의 월봉(月俸)을 앞서 의논한 재상(宰相)과 대간(臺諫)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p>	<p>○命更議甲士月俸于前議宰相及臺諫。 盧思愼議：“雖給月俸，比他軍士</p>

<p>(成化) 21년) 11월 8일(을묘) 5번째기사</p>	<p>“비록 월봉(月俸)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다른 군사(軍士)에 비교하면 넉넉한 것이 됩니다. 더구나 흉년이 들어 <녹봉(祿俸)을> 줄인 것은 감사만이 아니니, 아직은 월봉을 지급하도록 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옛날대로 회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爲優。 況凶年減省， 非獨甲士， 姑給月俸， 待年豐復舊何如?” 從之。</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9일(병진) 3번째기사</p>	<p>형조 판서(刑曹判書) 성준(成俊)과 참의(參議) 민영견(閔永肩)이 와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몹시 추울 때에는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재주(滓酒)와 숯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호조(戶曹)에서는 횡간(橫看)16833) 에 없는 것이라 하여 허락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큰 추위에 죄수들이 불쌍합니다.” 하자, 명하여 예전대로 지급하게 하였다.</p>	<p>○刑曹判書成俊、參議閔永肩來啓曰：“前此隆寒， 獄囚給滓酒及炭， 今戶曹以橫看所無不許， 如此大寒， 囚徒可矜。” 命依舊給之。</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11일(무오) 5번째기사</p>	<p>예조 좌랑(禮曹佐郎) 박삼길(朴三吉)에게 명하여 양지(仰之)에게 말하게 하기를, “있는 것을 없는 것과 바꾸어 서로 의뢰하여 쓰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하였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귀도(貴島)와 대대로 서로 친선(親善)을 도모했고, 통관(通款)16849) 하기를 매우 두텁게 하여 그 있고 없는 것을 당연히 아낄 것이 아니다. 후추[胡椒]는 귀도에서 많이 생산되며, 서증(暑證)을 견디게 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전하(殿下)께서 민간에 널리 퍼뜨리시려고 생각하시어 이 앞서 여러 차례 종자(種子)를 구하셨는데, 이제 듣건대, 도주(島主)가 전사(專使)16850) 에게 종자를 구하도록 하였다 하니, 그 정성이 가상할 만하다. 진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린(交隣)하고 사대(事大)하며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의뢰하는 의리가 아닐 것이다.” 하였는데, 양지(仰之)가 대답하기를, “후추[胡椒]의 종자는 남만(南蠻)에서 생산이 되는데, 유구국(琉球國)은 남만에서 무역을 해오고 본국(本國)은 유구국에서 무역을 해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후추의 종자를 무역하려고 윤 2, 3월에 이미 사자(使者)를 남만에 보</p>	<p>○命禮曹佐郎朴三吉語(仰之) [仰止] 曰：“以有易無， 相資爲用， 自古而然。 況我國與貴島世世相好， 通款甚厚， 其於有無， 非所當靳。 胡椒多產於貴土， 而堪治暑證， 故殿下思欲廣布民間， 前此屢次求種。 今聞島主專使求種， 其誠款可嘉。 苟不如此， 非所以交隣事大有無相資之義也。” (仰之) [仰止] 答曰：“胡椒種產於南蠻， 琉球國質於南蠻， 本國質於琉球國。 本國欲質胡椒種於閏二三月， 已遣使南蠻， 來歲三四月間可還。 但南蠻人轉賣時必烹其種， 恐爲無用矣。”</p>

	<p>내었으니, 내년 3, 4월 사이에는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남만 사람들이 전매(轉賣)할 적에 반드시 그 종자를 삶아 버리므로 아마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p> <p>하였다.</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17일(갑자) 6번째기사</p>	<p>유자문(柳子文)의 일을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p> <p>“유자문의 장물(贓物)은 관고(官庫)의 미멸(米憵)이 아니고, 이것은 아중(衙中)16871)에서 지출하여 사용하는 급료(給料)이니, 장물로 논하는 것은 정실에 지나칠 것 같습니다. 그 고치[繭]를 바꾼 일도 이미 변명하였으니,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p> <p>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p> <p>“유자문이 이미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오히려 악명(惡名)을 덮어쓰고 씻을 수 없으니, 아마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개과 천선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정괄(鄭佾)은 의논하기를,</p> <p>“관리의 장오(贓汚)16872)는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유자문이 아중(衙中)의 쌀도 유기(鑰器)를 샀는데, 비록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물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아중에 썼다면 그만이었으나, 이것을 사용하여 물건을 산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실과 고치[絲繭]는 그 처음에 추국(推鞠)할 때 해당 관리인 오광문(吳廣文) 등이 모두 아중(衙中)에 납입하였다는 것으로 자복하였으며, 유자문도 자복하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뒤에 이르러 오광문에게 부동(符同)해서 조사(招辭)를 변경시키고 승복하지 않는다 하여, 여기에 의거해서 가볍게 장안(贓案)에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광문 등을 신문하여 정실이 드러나고 일이 명백해진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p>	<p>○議柳子文事于議政府。 尹弼商、李克培議：“子文之贓，非官庫米憵，只是衙中支用之料，以贓論，似過情。其質繭之事亦已發明，上裁。” 洪應議：“子文已明非入己之實，而猶被惡名，不能澡雪，恐有冤抑，開其自新之路爲便。” 鄭佾議：“官吏贓汚，不可輕論。 子文以衙中米買鑰器，雖曰自己應受之物，若用之於衙中則已矣，用此買物，甚爲不可。 絲繭則其初推鞠時，該吏吳廣文等皆以入衙服之， 子文亦服。 至十餘年之後，以符同廣文變辭不服，不可據此輕削贓案。 更訊廣文等，情現事白，然後更議何如？” 金謙光議：“以衙米易鑰器，其無廉恥甚矣，然非倉庫錢糧盜用之例。 絲繭納衙事，子文及廣文等曾已服招錄案， 更改爲難。 然今廣文六次刑訊，終始發明，上裁施行。” 鄭蘭宗議：“柳子文所坐之贓，只綿布、鑰器、繭絲；而綿布、鑰器，以衙屬人衙料所買證辨之，廣文</p>

	<p>“관아(官衙)의 쌀로 유기(鑪器)와 바꾸었으니 그것은 매우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고의 전량(錢糧)을 훔쳐서 쓴 예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과 고치를 관아에 들였다는 일은 유자문과 오광문 등이 그 전에 이미 공초(供招)에서 자복한 것이니 녹안(錄案)을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광문이 여섯 차례 형신(刑訊)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을 하니,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p> <p>하고, 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유자문이 죄를 받은 장물(贓物)은 다만 면포(綿布)·유기(鑪器)·고치·실인데, 면포와 유기는 관아(官衙)에 딸린 사람의 아료(衙料)로써 산 것이라고 증거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오광문은 여러 번 형장(刑杖)을 가했는데도 관에서 썼다고 말을 하니, 지금 장리(贓吏)로 논하는 것은 원민(冤悶)16873)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니, 모두 말하기를, ‘유자문의 일은 애매하다.’ 하니, 대간(臺諫)을 불러서 이 여러 의논을 보이고 장안(贓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유시(諭示)하라.”</p> <p>하였다.</p>	<p>屢加刑杖，而亦言官用。今論贓吏，似涉冤悶。”傳曰：“今觀群議，皆云子文之事曖昧。其召臺諫，示此群議，諭以可削之意。”</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17일(갑자) 7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관교(官敎)를 위조(僞造)한 야인(野人)을 불러다가 본조(本曹)에서 추문(推問)하라고 명하셨는데, 본조에서는 잔치를 마련하거나 음식 대접을 할 따름이며, 힐문(詰問)하는 일은 고례(古例)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힐문할 즈음에 정실을 다 말하지 않는데도 목에 칼을 씌우지 않고 신문(訊問)한다면 한갓 국위(國威)만 손상시킬 따름일 것입니다. 또 이 무리들이 이미 죄인이 되었으니 낭청(郎廳)으로 하여금 관(館)에 나아가 추문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마땅히 통사(通事)로 하여금 힐문하게 하기를, ‘너희들의 관교(官敎)는 모두 속임이 있</p>	<p>○禮曹啓：“官敎僞造野人，命招致本曹推問，本曹設宴饋餉而已，若其詰問事，則無古例。且詰問之際，若不輸情而不鎖項訊問，則徒損國威而已。且此輩既爲罪人，使郎廳就館問之，亦爲不可。宜令通事詰之曰：‘爾等官敎皆有詐僞，自今不得除職矣。’且會寧官吏及鄉通事，初不致察上送，竝推鞫</p>

	<p>으니, 이제부터는 관직(官職)에 제수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또 회령(會寧)의 관리와 향통사(鄉通事)16874)가 당초에 살피지 않고 올려 보낸 것도 아울러 추국(推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예조(禮曹)에서 말한 것이 사리(事理)에 닿는 것 같다. 그것을 다시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p> <p>하였다.</p>	<p>何如?” 傳曰: “禮曹之言似有理, 其更議于領敦寧以上。”</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21일(무진) 5번째기사</p>	<p>명하여 갑사(甲士)의 월봉(月俸)에 대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갑사(甲士)는 대졸(隊卒)과 청로대(淸路隊)16882)의 유(類)가 아니며, 시위(侍衛)하는 괴로움도 이 무리들의 예(例)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의 예로 월료(月料) 3두(斗)를 지급한다면 사체(事體)에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섯 달을 지탱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매월 1일에 쌀 6두(斗)를 예전 월봉(月俸)을 줄 때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4개월 만에 입번(立番)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동등(冬等)의 녹봉을 이미 받은 자가 반이 넘으니,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예에 의거하여 모두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命議甲士月俸事。 右議政李克培議: “甲士非隊卒、淸路隊之類, 而侍衛勤苦, 亦非此輩之例。 今與此輩例給月料三斗, 則非徒事體不可, 經過六朔亦所不堪。 臣以爲每朔給米六斗, 依舊月俸時例, 四朔立番爲便。 且冬等祿俸已受者過半, 其未受者, 依他例畢給何如?” 從之。</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23일(경오) 2번째기사</p>	<p>호조(戶曹)·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堂上官)이 와서 아뢰기를, “동서(東西)의 진제장(賑濟場)에 기민(飢民)으로 취식(就食)하는 자가 모두 21명인데, 한 사람이 한 끼에 먹는 것이 쌀 1홉 반, 콩 1홉 반이므로 기민들이 모두 말하기를, ‘먹을 것이 적어 차라리 다른 데에서 빌어 먹으려고 한다.’ 하였으니, 노약자(老弱者)는 비록 3홉이라도 넉넉하지만 장정(壯丁)은 부족합니다. 신 등의 생각에, 맥피(麥皮)16884)의 가루는 평소 저축해둔 사람이 많으니 2홉 반을 지급하여 쌀·콩과 섞어서 취사(炊事)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기민으로 옷이 없어 몸이 드러난 자가 더러 있어 해를 넘기기가 어려</p>	<p>○戶曹、漢城府堂上來啓曰: “東西賑濟場飢民就食者, 摠二十一人; 一人一時所食, 米一合半、豆一合半。 飢民皆云: ‘食少, 寧欲丐食於他。’ 蓋老弱者雖三合猶足, 壯者則不足。 臣等意麥皮屑多素儲, 人給二合半, 使之合炊米豆何如? 且飢民無衣服, 或有露體者, 卒歲爲難。 以濟用監敝帷造給衣</p>

	<p>을 것이니, 제용감(濟用監)의 떨어진 장막으로 옷을 지어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그렇게 하라.”</p> <p>하였다.</p>	<p>服何如?” 傳曰: “可。”</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25 일(임신) 1번째기사</p>	<p>충청도 진휼사(忠淸道賑恤使) 유순(柳洵)이 와서 아뢰기를, “본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조밀한데 여러 고을의 태반(太半)이 실농(失農)하였으니, 12월부터 명년 4월까지 인구수를 계산하여 호조(戶曹)의 식례(式例)대로 기민(飢民)을 진급(賑給)한다면 쌀 21만 1천 7백 77석(碩) 3두(斗), 콩 21만 5천 69석 14두가 <소요됩니다.> 다만 본도에 남아 있는 실제 숫자는 쌀 12만 2천 4백 3석, 콩 3만 4천 72석 뿐이니, 그 부족한 수는 쌀이 8만 9천 4백 12석, 콩이 18만 3백 97석 10두입니다. 그러나 남아 있다는 실제 숫자도 군자(軍資)의 곡식을 아울러 계산한 것이니, 군자도 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전라도(全羅道)의 곡식을 본도로 옮겨 와 진구(賑救)하는 일을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치계(馳啓)하자, 호조(戶曹)에서 논청(論請)하였는데, 충청도·전라도 두 도(道)의 순찰사(巡察使)가 내려가서 함께 의논하여 치계한 뒤에 다시 의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신이 내려가서 치계하는 것이 서울에 있으면서 친계(親啓)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전라도의 곡식을 미리 수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호조(戶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壬申/忠淸道賑恤使柳洵來啓曰: “本道地廣民稠, 而列郡失農太半, 自十二月至明年四月, 計人口數, 依戶曹式例賑給飢民, 則米二十一萬一千七百七十七碩三斗、豆二十一萬五千六十九碩十四斗。 但本道遺在實數, 米十二萬二千四百三碩、豆三萬四千七十二碩而已; 其不足數, 米八萬九千四百十二碩、豆十八萬三百九十七碩十斗。 然所謂遺在實數, 并計軍資之穀, 而軍資亦不可空竭也。 頃者全羅道之穀移轉本道賑救事, 忠淸監司馳啓論請。 戶曹以謂忠淸、全羅兩道巡察使下去, 共議馳啓後更議。 但臣下去馳啓, 不若在京親啓也。 全羅之穀預令輸轉何如?” 傳曰: “與戶曹同議以啓。”</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1월 26 일(계유) 1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충청도의 저축이 적으니 전라도의 곡식을 옮겨다 주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양도(兩道) 연변(沿邊)의 여러 고을의 곡식은 지난 신축년(16886) 에 모두 평안도로 수송하였으므로 저축된 것이 대개 적습니다. 신 등</p>	<p>○癸酉/戶曹判書李德良等來啓曰: “忠淸道儲積尠少, 以全羅之穀移給固當。 然兩道沿邊諸邑之穀, 去辛丑年盡輸于平安道, 所儲蓋寡。 臣等意忠淸附近</p>

	<p>의 생각으로는, 충청도 부근의 여러 고을은 충청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고, 연변의 각 고을은 전라 중도(全羅中道)의 백성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니, 청컨대 진휼사(賑恤使)·겸판서(兼判書) 등과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p>	<p>諸邑，則自令忠淸之民輸轉；沿邊各官，則令全羅中道之民移運，分給爲便。然此事不可輕議，請與賑恤使及兼判書等議啓。”傳曰：“可。”</p>
<p>성종 185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1월 28일(을해)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관교(官敎)를 위조한 야인(野人) 원다사(元多沙)·노목합(奴木哈) 등을 힐문(詰問)하는 절목(節目)은 이러합니다.</p> <p>1. 뜰 위에서 힐문할 적에 혹시라도 거만하고 무례(無禮)하면 나장(羅將)16888) 으로 하여금 목에 칼을 씌우게 하여 뜰 아래로 물러가서 꿇어앉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1. 통사(通事)도 압송해 오게 하여 아울러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1. 전일(前日) 본조에서 음식 대접을 할 적에 노목합이 자못 거만한 기색이 있었으니, 본래 성질이 포악한 자가 만에 하나라도 위조한 자취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혹시 성을 내어 변고를 일으킬까 염려되니, 북평관(北平館)의 관리로 하여금 도검(刀劍)을 차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1. 노목합 등이 스스로 잘못을 알고 하나하나 정실(情實)을 자복하면 잠간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한명회·윤필상·홍응·노사신·윤호는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심회는 의논하기를, “만약 힐문(詰問)한다면 마땅히 예조에서 아뢴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p>	<p>○禮曹啓僞造官敎野人元多沙、奴木哈等詰問節目：</p> <p>一。階上詰問時，如或悖慢無禮，令羅將鎖項，退跪庭下何如？一。押來通事，并鞫何如？一。前日〔本〕曹饋餉時，奴木哈頗有悖慢氣色。本是性惡者，萬一僞造情跡現著，則慮或發怒生變，令北平館官吏禁佩刀劍何如？一。奴木哈等自知其非，一一輸情，則暫設酒饌饋送何如？</p> <p>命議于領敦寧以上。鄭昌孫、韓明澮、尹弼商、洪應、盧思愼、尹塚議：“依禮曹所啓施行。”沈滄議：“若詰問，則當如禮曹所啓。然其罪非犯邊之例，但持僞造官敎求官爵而已。奸詐之迹已現，雖窮詰，終難治罪，棄之</p>

	<p>나 그 죄는 변경(邊境)을 침범한 예(例)는 아니며 다만 위조한 관교를 가지고서 관작(官爵)을 얻으려고 했을 따름입니다. 간사한 자취가 이미 드러났으며 비록 끝까지 힐문하다 해도 마침내 죄를 다스리기는 어려우니, 내버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야인은 예의(禮義)를 모르니, 만약 힐문하는 즘음에 거만하고 무례(無禮)하여 예조(禮曹)에 욕(辱)이 된다면 그냥 방치할 수도 없으며 제재(制裁)하는 것도 형편상 어렵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예조 낭관(禮曹郎官)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힐문하게 하여 자복하면 그만이고, 만일 자복하지 않으면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이과(李坡)는 의논하기를, “야인이 관교를 위조한 것은 그 정실(情實)이 관작(官爵)을 얻으려고 한 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예조(禮曹)는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며 사건을 심문하는 아문(衙門)은 아닙니다. 칼을 씌워 뜰 아래로 물러나게 하여 꿇어앉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듯하며, 도검(刀劍)을 차는 것을 금지하는 일도 형적(形迹)이 있어야 하니 금지시키는 즘음에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p> <p>하고, 정괄(鄭佶)은 의논하기를, “관교를 위조한 것은 야인(野人)의 추술(麤率)16889) 한 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나라 사람이 위조해서 준 것이니,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조에서 힐문하되 거만하고 무례하다면 그냥 두는 것도 어려우니, 낭관(郎官)을 보내어 힐문하게 하고, 만약 자복하지 않으면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엄하게 국문하여서 국법(國法)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피인(彼人)은 예의(禮義)로써 대우할 수 없습니다. 예조에서 비록 위엄을 보이면서 힐문하더라도 그가 만약 성을 내어 끝내 정실을 자복하지 않으면 형</p>	<p>便。”李克培議：“野人不知禮義，若詰問之際，悖慢無禮，致辱禮曹，則置之固不可，制之亦勢難。臣以爲使禮曹郎官就問，服之則已矣，如不服，下義禁府鞫問何如？”李坡議：“野人僞造官教，其情不過欲得官爵而已。禮曹乃接待客人之所，非問事衙門，鎖項退跪庭下，似乎過重。禁佩刀劔事，亦有形迹，其禁止之際，措辭亦難。”鄭佶議：“官教僞造，非野人麤率者所爲，必我國人僞造而給，不可不推。若於禮曹詰問而悖慢無禮，則置之爲難；遣郎官詰問，若不服則下禁府嚴鞫，以示國法何如？”金謙光議：“彼人不可以禮義待之。禮曹雖示威詰問，彼若發怒終不輸情，刑推爲難，非徒損威，亦或生釁。官教僞造，不過欲得我國官爵，慕義歸順耳，別無他意。招來階上，詰問輸情，則依第四條饋送。如其不服，語之曰：‘將汝罪狀啓達，則終被重罪，姑勿啓。’以是語而棄之何如？”鄭蘭宗議：“彼人居永安道五鎭，皆急於朝京，買賣人官教告身，塗擦改書者，比比有之。惟在鎭將審察，僞迹旣著，則轉報監司、節度使，詰問收官</p>
--	---	---

	<p>장(刑杖)으로 추문하기도 어려우니, 위엄이 손상될 뿐 아니라 혹은 혼단(釁端)도 생길 것입니다. 관교를 위조한 것은 우리 나라의 관작을 얻어서 의(義)를 사모하여 귀순(歸順)하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며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섬돌 위에 불러다 힐문하고 정실을 자복하면 제4조에 의하여 대접하여 보내고, 만약 자복하지 않으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죄상을 가지고 계달(啓達)하면 끝내 중죄(重罪)를 받을 것이므로 아직 아뢰지 않았다.’ 하여, 이렇게 말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정난중(鄭蘭宗)은 의논하기를,</p> <p>“피인(彼人)이 영안도(永安道) 5진(五鎭)에 살면서 모두 서울에 와서 조회하는 것에 급하여 남의 관교와 고신(告身)을 매매해서 바르고 문질러서 고쳐 쓰는 자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진장(鎭將)이 자세히 살펴서 위조한 흔적이 이미 나타나면 감사(監司)와 절도사(節度使)에게 보고하여 힐문해서 관교와 고신을 회수하는 한편 올려 보내기를 허락하지 말고 엄하게 책망하여 물리칠 뿐입니다. 지금은 살피지 못하고 아울러 올려 보내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진장에게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예조에서 힐문하는데도 거만하고 무례하다면 위세와 명망만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예조 낭관(禮曹郎官)을 보내어 관교를 바르고 문지른 까닭을 힐문하고, 아울러 한자(漢字)로 남의 성명을 써 넣은 것을 물어서, 만일 모든 정실을 자백하면 책망하여 용서하고, 만일 정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힐문하고 책망하여 그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우의정(右議政)의 의논이 옳다.”</p> <p>하였다.</p>	<p>敎告身，不許上送，嚴責退之耳。今不能致察，竝令上送，是則鎭將不得無罪。若今禮曹詰問而悖慢無禮，則徒損威望矣。姑禮曹郎官詰問官教塗擦之由，并問漢字書填人姓名。如盡輸情，責而赦之；如不輸情，反覆詰責，使知其罪何如？”傳曰：“右議政之議是也。”</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김흔(金訢)이 상소(上疏)하기를,</p> <p>“올해는 한발(旱魃)이 매우 심하여 적지(赤地)16892) 가 천리(千里)나 되고</p>	<p>○己卯/弘文館直提學金訢上疏曰:</p>

(成化) 21년) 12월 2
일(기묘) 1번째기사

하삼도(下三道)16893) 가 더욱 그 재해를 입었는데, 성상(聖上)께서 진휼사(賑恤使)를 보내어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으나 물의(物議)가 분운(紛紜)하여 이로온 점과 해로운 점을 다투어 말하면서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신을 보내는 것이 이롭다고 말하는 자는 이르기를, ‘감사(監司)는 한 도(道)를 안찰(按察)하기 때문에 부서(簿書)16894) 를 처리할 것이 많이 쌓이고 소송(訴訟)을 처리하기에 바빠서 진실로 진휼(賑恤)하는 일에만 마음을 다할 틈이 없으며, 군읍(郡邑)이 많고 인민의 수도 많아 구치(驅馳)16895) 하면서 무휼(撫恤)한다 하더라도 두루 하기가 쉽지 않으니, 반드시 진휼사를 보낸 뒤에야야 옳을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朝廷)에서 수령(守令)을 두어서 자목(字牧)16896) 의 소임을 맡기고서도 오히려 잘못할까 염려하여 감사(監司)를 보내어 이를 살피게 하고, 그 잘하고 못함을 따라 출척(黜陟)16897)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목(字牧)은 감사의 직책이고, 부서와 소송을 처리하는 것만이 급한 업무가 아닙니다. 더구나 기황(飢荒)16898) 을 만나서는 잡송(雜訟)을 다 멈추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사의 〈비중이〉 크기로는 마땅히 진휼만한 것이 없는데, 진휼은 특히 자목(字牧)하는 한 가지 일인 것입니다. 감사가 진실로 어질다면 어찌 반드시 진휼사를 보내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신이 영남(嶺南)에 사명(使命)을 받들었을 때에 감사 이극기(李克基)를 보고 이 말로써 물었더니, 이극기의 말하는 바도 또한 신의 뜻과 같았습니다. 대개 토지(土地)가 크기로는 영남과 같은 곳이 없는데, 진실로 어진 감사를 얻어서 처리한다면 오히려 여유(餘裕)가 있을 것인데, 더구나 영남보다 작은 곳이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집집마다 이르게 하고 호(戶)마다 무휼한다고 하면, 한 도(道)가 무릇 몇 고을이며, 한 고을이 무릇 몇 개의 마을이며, 한 마을이 몇 집이나 되는 것입니까? 비록 사신으로 열 사람을 보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 것인데,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今歲旱魃爲虐，赤地千里，而下三道尤被其災。命遣賑恤使以救之，物議紛紜，爭言利害，莫能相一。言遣使之利者，曰：“監司按察一道，簿書雲委，訴訟倥傯，固未假盡賑恤之事。郡邑之多，人民之衆，驅馳撫恤，未易周徧，必遣賑恤使而後可。”臣愚以爲不然。朝廷置守令，以寄字牧之任，猶慮其未也，遣監司以察之，黜陟其能否，則字牧者乃監司之職，而簿書、訴訟，非所當務也。況值飢荒，悉停雜訟，政之大者，宜莫如賑恤，而賑恤特字牧一事耳。監司苟賢矣，何必待遣賑恤使歟？臣奉使嶺南，見監司李克基問，以是語，克基所言亦與臣合。夫土地之大，莫如嶺南，而苟得賢監司處之，猶有餘裕，況小於嶺南者乎？若必欲家到而戶撫之，則一道凡幾邑，一邑凡幾里，一里凡幾家？雖遣使十輩，尙且不足，將何爲而可乎？言者又曰：“發倉賑給，監司所不得擅，必遣賑恤使然後可。”臣愚以謂不然。監司、賑恤使，均爲宰相，其位等，其職同，豈可爲監司則不得發倉，而爲賑恤使而後乃可發倉乎？若以爲監司私一道之

말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창고의 곡식을 꺼내어 진휼해 주는 일은 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진휼사를 보낸 연후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감사나 진휼사는 같은 재상(宰相)이므로, 그 지위가 비등(比等)하고 그 직분이 같은 데, 어찌 감사라면 창고의 곡식을 꺼낼 수가 없고 진휼사가 된 뒤에야 창고의 곡식을 꺼낼 수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감사가 한 도의 백성을 사사롭게 여기어, 참으로 생활만을 생각하여 저축(儲蓄)한 것이 다하여 없어지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장차 창고를 털어가면서 구제해 주는 것이라면, 진휼사는 진휼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는데 홀로 그 백성을 사사로이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해를 거듭하여 공사(公私)의 저축이 넉넉하지 못한데, 비록 진휼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신(神)이 실어오고 귀신이 운반해 올 수는 없을 것이니, 어떻게 감사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이보다 앞서서는 조금만 흉황(凶荒)을 만났어도 진휼사를 파견하는 것을 예(例)로 삼았으나, 금년의 흉년은 근세에도 없었던 것인데, 만약 진휼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백성을 구제하는 뜻을 보이는 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일을 시행(施行)함에 있어서는 오직 옳게 할 따름인데 어찌 전례만 따르겠습니까? 진휼사를 보낼 만하면 비록 예가 없더라도 꼭 이를 보내야 할 것이고, 만일 보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어찌 구례를 가지고 반드시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실정을 힘쓰는 것이 아니고 한갓 이름만을 따르는 것이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말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만약 감사를 적당한 사람을 얻게 되면 그만이지 마는, 만약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진휼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백성은 어디에 의뢰하겠습니까?’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말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감사를 만일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했다고 하

民，苟以生活爲意，不顧儲蓄匱竭，將倒廩以賑之；則賑恤使以賑恤爲任，獨不私其民乎？矧今早荒連年，公私儲蓄不敷，雖遣賑恤使，固不得神輸鬼運，則亦何有加於監司哉？言者又曰：“前此暫遇凶荒，例遣賑恤使。今年之荒近世所無，而若不遣賑恤使，無以示恤民之意。”臣愚以謂不然。事之施行，惟其可而已，安用例爲？賑恤使可遣，則雖無例固當遣之；如不可遣，則何可以舊例而必遣之乎？是不務實而徒循名也，而可乎？言者又曰：“若使監司得人則已，若不得人而又不遣賑恤使，則民何所賴？”臣愚以謂此言最爲的當。然監司若不得人，則當以堪爲賑恤使者代之可也，何可以監司之任畀之匪人，而又別遣賑恤使，以分其職乎？是一道兩監司也，不已冗乎？言遣使之害者，曰：“賑恤使之行雖甚簡約，有僸從，有馱載焉，文移往來，亦必有吏以主之，郵傳之卒又當不下五六。郡邑素無數年之蓄，今年之稅一無所收，守令妻孥之養尚且不(瞻)〔瞻〕，則其支供之費，將何從出？不過刻削救民之備以奉之耳。而且閭里民物之衆庶，

면, 마땅히 진휼사의 업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의 소임을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 것이며, 또 따로 진휼사를 보내어 그 직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까? 이는 한 도에 두 사람의 감사를 두는 것이니, 이미 쓸데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휼사를 보내는 것이 해롭다고 말하는 자는 이르기를, ‘진휼사의 행차가 비록 매우 간략하더라도 겸종(兼從)16899) 이 있고 태재(馱載)16900) 가 있을 것이며, 문서를 옮겨 오고 가는 데에 또한 아전이 있어서 이를 맡아 할 것이고, 우전(郵傳)16901) 의 군사도 5, 6명을 밀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읍(郡邑)에는 본래부터 수년(數年)의 비축이 없었을 것이고 금년의 세곡(稅穀)은 하나도 거둔 것이 없을 것이니, 수령(守令)의 처자(妻子)를 양육하기에도 오히려 넉넉지 못할 것인데, 그 지공(支供)할 비용이 장차 어디로부터 나오겠는가? 백성을 구제할 비축물을 깎고 잘라서, 이를 보양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 여리(閭里)와 민물(民物)의 많은 것을 진휼사와 그 종사(從事)하는 이의 이목(耳目)으로 두루 고르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아전과 종자(從者)를 나누어 보내어 살펴야 할 것이다. 아전과 종자는 거의가 소인(小人)이므로, 한 번 기민(飢民)을 보면 문득 봉식(封殖)16902) 할 자료를 삼는다고 하면서, 수령(守令)을 공갈하여 화회(貨賄)16903) 를 요구할 것이며, 수령은 가리워지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뒷일을 두려워하여 이를 줄 것이니, 진휼사가 비록 밝게 살핀다 하더라도 어찌 수령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을 걱정한다면 흉년에 대비할 물건을 실어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보내어 진휼사가 왕래(往來)하는 길에 옮겨 놓고서 염문(廉問)16904) 에 응(應)하게 할 따름인 것이다. 심한 자는 굶주려 죽어가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몰아다가 암학(巖壑)16905) 의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않는 곳에 두고,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고서 저절로 죽기를 기다릴 것이니, 저들이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면하기만을 꾀할 따름이다.’라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賑恤使及其從事之耳目所不周，則必分遣吏及從者以察之。吏及從者率皆小人，一見飢民，輒以爲封殖之資，恐嚇守令，以求貨賄；守令利於蒙蔽，贈遺恐後。賑恤使雖明察，安能盡知守令？患其然也，則輸載備荒之物，自東徂西，移之於賑恤使往來之路，以應廉問而已。甚者驅餓莩流冗之民，置於巖壑人跡不到之地，使不得出入，以待自斃。彼非憎民也，謀免己罪而已。”臣愚以爲此言似乎過當，雖未必如是之甚，亦不可謂盡是誣妄，而廚傳支供迎送之費，所不必免。由是觀之，賑恤使之遣，未必有利，而害則隨之，不若不遣之爲愈也。臣聞日南至，賜宗宰近臣酒樂，期於必醉，至有失儀者。呦呦鹿鳴，《雅》有其什，而以德音孔昭爲貴；需于酒食，《易》稱貞吉，而以濡首不知節爲失。沈湎于酒，在平時尚且不可，況今百姓方且餓莩，流離於郊野之外。而群臣相與號呶，婆娑於殿陛之下，遠近觀聽，必以爲聖澤偏於貴近而不能下究萬民也，可不惜哉？

傳曰：“所上書，予乃觀詳矣。凡臣子

	<p>생각으로는 이 말이 정도에 지나친 듯합니다. 비록 반드시 이와 같이 심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무망(誣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방[廚]을 옮겨 가면서 지공(支供)하고 영송(迎送)하는 비용은 반드시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진흙사를 보내는 것이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니고 해로움이 따르는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이 나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p> <p>신이 듣건대, 지난 남지(南至)16906) 날에 종재(宗宰)와 근신에게 술과 풍악을 하사하시어 반드시 취하도록 하셨으므로 체통을 잃는 자가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유유 녹명(呦呦鹿鳴)16907) 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에 그 시편(詩篇)이 있으나 덕음(德音)16908) 이 매우 밝은 것을 귀하게 여겼고 주식(酒食)을 기다린다는 것을 《역경(易經)》 수괘(需卦)에 정길(貞吉)16909) 하다고 일컬었으나 본성을 잃도록 크게 취하여 절차를 모르는 것은 과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술에 침면(沈湎)16910) 하는 것은 평시에도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인데, 더구나 지금 백성들이 바야흐로 아포(餓殍)16911) 하고 교야(郊野)의 밖에서 유리(流離)하는 때에 여러 신하들이 서로 엮히어 전폐(殿陛)16912) 의 아래에서 떠들면서 춤을 추었으니, 멀리서나 가까이에서 보거나 듣고 반드시 생각하기를, ‘성상(聖上)의 은택이 귀근(貴近)에게만 치우치고 아래로 만백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니,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상서(上書)한 것은 내가 자세히 보았다. 무릇 신자(臣子)로서 평소에 생각한 바를 진달(陳達)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다만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가 진흙사가 내려가는 것이 편치 못하다고 말했다면, 진흙사를 보내도록 청한 것은 어찌서인가? 내가 마땅히 뒷날 얼굴을 맞대어 말하겠다.”</p> <p>하자, 김흔이 아뢰기를,</p>	<p>所懷，不達不可也。但慶尙道監司以賑恤使下去未便爲言，則請送賑恤使何也？予當後日面言耳。” 訶啓曰：“臣見李克基，問曰：‘人言監司多事，不違賑恤也，然乎？’對曰：‘賑恤重事，乃監司之所當任也。’”</p>
--	---	--

	<p>“신이 이극기(李克基)를 보고 묻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사는 일이 많아서 진휼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한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진휼하는 중대(重大)한 일은 곧 감사가 마땅히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2월 2 일(기묘) 2번째기사</p>	<p>진휼사(賑恤使) 한치형(韓致亨)·이극돈(李克墩)이 와서 아뢰기를, “전자에 평안도(平安道)에서 구황(救荒)을 할 때에 ‘만약 유리(流離)한 빈집이 있으면, 수령(守令)을 죄줄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수령들이 죄를 두려워하여 실려(室廬)16913) 를 철거시키고 뽕나무를 찍고 베어내며, 그 집터를 갈아서 마치 밭이나 들판과 같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만을 모면하였을 뿐이므로, 이듬해 봄에 유민(流民)이 되돌아와서 처소(處所)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크게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신(臣) 등이 내려가서 순찰(巡察)할 때에 만약 유리(流離)한 빈집이 있으면, 수령에게 물어서 대답하기를, ‘아무 고을 아무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수령으로 하여금 초무(招撫)16914) 하게 하고 수령을 죄주지 않겠으며, 만약 수령이 유민(流民)의 간 곳을 모른다면 과죄(科罪)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에서 구황(救荒)할 곡식이 부족하여 관찰사(觀察使)가 계청(啓請)하기를, ‘전라도(全羅道)의 곡식 10만 석(碩)을 내어서 충청도로 조전(漕轉)16915)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 곡식도 부족하다고 하여 또 계청한다면 불가(不可)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옳다.”</p> <p>하였다.</p>	<p>○賑恤使韓致亨、李克墩來啓曰：“前者平安道救荒時，若有流移空家，則罪守令。守令等畏罪，撤去室廬，斫伐桑柘，耕其家基，似若田原然，謀免己罪。明春流民還來，則失所無依，是大不可。臣等下去巡察，若有流移空戶，則問於守令，而答云某郡某處就食，則令守令招撫而不罪守令。若守令不知流民去處，則科罪何如？”克墩又啓曰：“忠淸道救荒之穀不足，觀察使啓請發全羅道穀十萬碩，漕轉于忠淸。若此穀不足而又啓請，則未可也。”傳曰：“可。”</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삼도(三道)의 진휼사(賑恤使) 및 종사관(從事官)·호조(戶曹)의 당상관(堂上官)을 명소(命召)하여 술을 하사하고, 어서(御書)를 내리기를,</p>	<p>○命召三道賑恤使及從事官、戶曹堂上賜酒，下御書曰：“今日賜酒，卿等</p>

<p>(成化) 21년) 12월 2 일(기묘) 3번째기사</p>	<p>“오늘 술을 내리는 것은 어찌 경(卿) 등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겠느냐? 원 원(元元)16916) 의 명(命)이 경들에게 달려 있으니, 각각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 우리 백성을 보전토록 하라.” 하였다.</p>	<p>豈爲歡歟? 元元之命在乎卿等, 其各體 予至懷, 保我黎元。”</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2월 2 일(기묘) 4번째기사</p>	<p>호조 겸판서(戶曹兼判書) 노사신(盧思愼) 등이 아뢰기를, “동서(東西)의 진제장(賑濟場)에서 취식하는 기민(飢民) 중에 경기(京畿)의 사 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수령(守令)이 진휼(賑恤)을 부 지런히 하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청컨대 호조 낭청(戶曹郎廳) 두 사람을 좌 도(左道)와 우도(右道)에 나누어 보내어 실농(失農)한 여러 고을의 부정한 사 실을 적발(摘發)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옳다.” 하고, 곧 정랑(正郎) 신경(申經)과 좌랑(佐郎) 강겸(姜謙)에게 명령하여 부정한 사실을 적발하게 하였다.</p>	<p>○戶曹兼判書盧思愼等啓曰: “東西賑 濟場就食飢民內, 京畿人居多, 此必守 令不勤賑恤故也。 請發遣曹郎廳二員, 分往左右道失農諸邑摘奸。” 傳曰: “可。” 卽命正郎申經、佐郎姜謙摘 奸。</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2월 6 일(계미) 2번째기사</p>	<p>경상도(慶尙道) 진휼사(賑恤使) 한치형(韓致亨)·종사관(從事官) 박치(朴耜)와 전라도(全羅道) 진휼사 이극돈(李克墩)·종사관 권경희(權景禧)와 충청도(忠淸 道) 진휼사 유순(柳洵)·종사관 김극검(金克儉) 등이 사조(辭朝)하니 술을 대접 하도록 명하고, 진휼사 등에게 모마장(毛馬裝) 1부(部)와 유석(油席) 1장(張) 과 궁전모(弓箭帽) 1건(件)을 하사(下賜)하였다.</p>	<p>○慶尙道賑恤使韓致亨·從事官朴 耜、全羅道賑恤使李克墩·從事官權 景禧、忠淸道賑恤使柳洵·從事官金 克儉等辭。 命饋酒, 賜賑恤使等毛馬 裝一部、油席一張、弓箭帽一件。</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2월 7 일(갑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송질(宋軼)이 아뢰기 를, “근일에 전지(傳旨)를 보건대, 이제 홍상(洪常)에게 장(杖) 80대 이하의 죄를 천단(擅斷)16925) 하게 하고, 정존(鄭存)에게 태(笞) 50대 이하의 죄를 결단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저 형벌(刑罰)을 쓰는 데에는 유사(有司)가 있는 것인 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君)이 이르기를,</p>	<p>○御經筵。 講訖, 持平宋軼啓曰: “近 觀傳旨, (今) [令] 洪常擅斷杖八十以 下罪, 鄭存斷笞五十以下罪。 夫用刑, 有司存焉, 付之他人, 至爲未便。” 上 曰: “所言是矣。 但鷹房之人托以鷹 食, 作弊於民必多。 欲禁此弊, 故令 提調洪常、內官鄭存直斷耳。” 宋軼</p>

<p>“말하는 것은 옳다. 다만 응방(鷹房)16926)의 사람들이 매의 먹이를 칭탁하고 백성에게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금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조(提調) 홍상과 내관(內官) 정준으로 하여금 직접 결단하도록 한 것이다.”</p> <p>하였다. 송질이 이르기를,</p> <p>“장(杖)을 사용하는 관청은 형조(刑曹)와 의금부(義禁府)이고, 태(笞)를 사용하는 관청은 사헌부(司憲府)와 한성부(漢城府)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와 장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또 법사(法司)라면 비록 태가 하나이거나 열이라 하더라도 모두 율(律)에 비추어서 죄를 주겠지만, 응방은 반드시 경중(輕重)에 마땅함을 잃을 것이니, 제조로 하여금 형조(刑曹)에 이관(移關)하여 죄를 논(論)하도록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옳다. 만약 내관이 죄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친히 결단하겠다.”</p> <p>하고, 김흔(金訢)을 돌아보고 이르기를,</p> <p>“그대가 상서(上書)한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다. 홍문관(弘文館)은 직책이 고문(顧問)에 있는 것이니, 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체통을 잃었다는 일은, 그날이 명일(名日)이었으므로 두 분 대비전(大妃殿)에 헌수(獻壽)하고 겸하여 재상(宰相)들을 대접했는데, 대비전에서도 내려보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에게 권하여 마시게 한 것이다. 상서(上書)에 이르기를 ‘멀리서나 가까이에서 보거나 듣고 반드시 생각하기를, 「성상(聖上)의 은택이 귀근(貴近)에게만 치우치고 아래로 만백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날의 잔치는 즐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또 내가 많이 마시게 했을 뿐이고 체통을 잃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대가 비록 말했다 하더라도 지금 정조(正朝)에 또한 대신(大臣)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p>	<p>曰：“用杖之官，刑曹、義禁府；用笞之官，則司憲府、漢城府而已。今用笞杖於他處，未便。且法司則雖笞一十，皆照律罪之，鷹房則必輕重失宜。令提調移關刑曹論罪爲便。” 上曰：“可。若內官有罪，則予當親斷。” 顧謂金訢曰：“觀爾所上書，予甚嘉悅。弘文館職在顧問，而予所未及思量之事，言之可也。然其飲酒失儀之事，則其日乃名日，獻壽於兩大妃殿，兼餉宰相，而大妃殿亦有賜送，故勸宰相飲耳。但所上書云：‘遠近觀聽，必以爲聖澤偏於貴近而不能下究萬民也。’此則非也。其日之宴，非爲歡樂也，且予使之劇飲耳，非教以失儀也。爾雖言之，今於正朝，亦不得不餉大臣也。” 金訢曰：“愚民不知國家之事，恐有怨心也。” 上謂承旨曰：“其日有失儀者乎？” 成健對曰：“上教劇飲，臣等亦醉。” 金訢曰：“尹壕醉舞，頗失儀矣。” 上曰：“李克基請遣賑恤使，與金訢所言不合矣。” 金訢曰：“大抵人有謀身之計。若賑恤之事，已獨任之，而如有所失，則誰任其責乎？此克基爲身謀而且謙辭也。臣見克基，問</p>
---	--

	<p>하니, 김흔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국가(國家)의 일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날 체통을 잃은 자가 있었느냐?” 하니, 성건(成健)이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많이 마시라고 하교(下敎)하셨으므로 신(臣) 등도 취했었습니다.” 하였고, 김흔이 이르기를, “윤호(尹壕)가 취하여 춤을 추었으니, 자못 체통을 잃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극기(李克基)는 진휼사(賑恤使)를 보낼 것을 청하였으니, 김흔이 말한 것과 는 맞지 않는다.” 하니, 김흔이 말하기를, “대저 사람이란 자신을 생각하는 계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휼(賑恤)하는 일을 자기 혼자서 맡았다가 만일 실수하는 바가 있다면, 누가 그 책임을 맡겠습니까? 이것이 이극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겸손한 말입니다. 신이 이극기를 보고 묻기를, ‘감사(監司)는 일이 많아서 진휼할 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였더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진휼은 곧 감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감사를 보내어 한 도(道)의 일을 위임(委任)했는데, 만약 제 몸만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것을 옳다고 하겠는가? 마땅히 그 소임을 다할 따름인 것이다.” 하니, 김흔이 말하기를, “이미 감사가 있는데 또 진휼사를 보내면 한 도에 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p>	<p>曰：‘監司多事，未暇賑恤，然乎?’ 克基曰：‘豈其然乎? 賑恤乃監司之所當務也。’ 上曰：‘國家遣監司，委任一道之事，若爲身謀，豈其可乎? 當盡其任而已。’ 金訢曰：‘既有監司，又遣賑恤使，則是一道兩監司也。’ 上曰：‘監司則專治公事，賑恤使則專爲救荒也。’</p>
--	--	--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는 오로지 공사(公事)만을 다스리고 진휼사는 오로지 구황(救荒)만을 할 것이다.” 하였다.</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2월 9 일(병술)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16927) 하여 아뢰기를, “개성부(開城府)의 죄수 중[僧] 학홍(學洪)이 백성(百姓) 조홍충(趙洪忠)·박실(朴實) 등과 승인(僧人) 신계(信戒)를 모살(謀殺)하고 소와 잡물(雜物)을 탈취(奪取)한 죄는 아울러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16928) 에 해당되며, 처자(妻子)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있는 곳의 관노비(官奴婢)로 소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성준(成俊)이 아뢰기를, “세자(世子)가 지금 이미 《소학(小學)》·《대학(大學)》·《중용(中庸)》·《논어(論語)》 등의 글을 읽었으니, 서연(書筵)에 청하여 세자가 먼저 읽은 것을 강(講)할 때에 아울러 뜻을 해석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세자가 약(藥)을 올리거나 수라를 올릴 때에 나이가 어려서 비록 친히 맛은 보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시(監視)하게 하여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였다.</p>	<p>○丙戌/受常參，視事。刑曹三覆啓：“開城府囚僧學洪與百姓趙洪忠、朴實等謀殺僧人信戒，奪取牛及雜物罪，並律該斬不待、時妻子依《大典》屬所在官奴婢。”從之。刑曹判書成俊啓曰：“世子今已讀《小學》、《大學》、《中庸》、《論語》等書，請於書筵世子讀前講時，並釋義。”上曰：“可。”俊又啓曰：“世子於進藥進膳之時，年少雖未親嘗，使之監視，知其所當爲之事何如？”上曰：“年尚少矣。”</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 등이 아뢰기를, “야인(野人) 이유시함(李柳時哈)이 본조(本曹)에서 잔치를 베풀어 접대할 때</p>	<p>○禮曹判書柳攄等啓曰：“野人李柳時哈於本曹宴享時，醉酒請妓。且云：</p>

<p>(成化) 21년) 12월 10일(정해) 2번째기사</p>	<p>술에 취하여 기녀(妓女)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나의 아버 이만주(李滿住)는 고려(高麗)16929) 에서 머리를 베었고, ‘나의 어미는 사로잡혀 왔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수원(讎怨)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람됨이 매우 경박(輕薄)합니다. 더구나 인면수심(人面獸心)16930) 이어서 가까이하고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니, 이 사람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傳旨)이 전지(傳旨)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의심스러움이 없다. 그러나 예관(禮官)이 아뢰는 것을 구태여 억지로 어기지 못하겠으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慎) 등이 의논하기를, “이유시합(李柳時哈)이 비록 말하는 것은 경박하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일을 저지를 이치는 만무(萬無)할 것이며, 더구나 오늘의 행사는 오로지 이 무리들을 위하여 접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술잔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크게 실망(失望)할 것이니, 전례대로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시고, 따뜻한 말씀을 내리시어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傳旨)이 전교(傳旨)하기를, “의심스러운 것이 만무하니, 그들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라.” 하였다.</p>	<p>‘吾父滿住則高麗斷頭， 吾母則生擒而來。’ 此言出於讎怨， 而其爲人也甚輕薄， 況人面獸心， 不可親信， 使之進爵未安。” 傳曰：“予意無疑， 然禮官所啓， 不敢強違， 議于領敦寧以上。” 尹弼商、李克培、盧思慎議：“李柳時哈雖云輕薄， 萬無不虞之理。 況今日之舉， 專爲此輩接待也， 若未得進爵， 大爲失望。 依前例命進爵， 且賜溫言以慰何如?” 傳曰：“萬無可疑， 其令進爵。”</p>
<p>성종 186권,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2월 10일(정해) 3번째기사</p>	<p>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중위(中衛)의 사송인(使送人) 이유시합(李柳時哈)·사을두(沙乙豆) 등을 접견(接見)하는데,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瑄)·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瑄)·덕원군(德原君) 이서(李曙)·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誠)·강양군(江陽君) 이숙(李瀟)·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영중추(領中樞) 노사신(盧思慎)·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공조 판서(工曹判書) 권찬(權攢)·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승원(李崇元)·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攄)·형</p>	<p>○上御思政殿， 接見中衛使送李柳時哈、沙乙豆等。 月山大君瑄、齊安大君瑄、(德原君) [德源君] 曙、烏山君澍、河城府院君鄭顯祖、定陽君淳、雲山君誠、江陽君瀟、八溪君淨、領議政尹弼商、右議政李克培、領中樞盧思慎、領敦寧尹壕、工曹判書權攢、吏曹判書李崇元、禮曹判書柳</p>

	<p>조 판서(刑曹判書) 성준(成俊) 및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이유시합 등에게 전교(傳敎)하기를, “한창 추운 때에 먼길을 잘 왔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니, 이유시합 등이 아뢰기를, “성덕(聖德)이 지중(至重)하여 아무 탈 없이 왔습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오늘의 잔치는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일기(日氣)가 매우 추우니, 각각 많이 마시도록 하라.” 하니, 이유시합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르기를, “신은 이만주(李滿住)의 소자(少子)이고, 사을두는 달한(達罕)의 아들이며, 달한의 사신(使臣) 등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달한 도독(達罕都督)도 올 수가 있겠느냐?” 하니, 이유시합이 아뢰기를, “화라운 울적함(火刺溫兀狄哈) 등이 우리의 경계를 킁박하여 날마다 계속하여 침노하므로, 이것이 의구(疑懼)스러워서 차마 관할하는 인민(人民)을 버리고 결연히 올라오지 못합니다. 지난 해에 신의 형(兄)이 안마(鞍馬)를 하사(下賜) 받는 은총을 입어서 감대(感戴)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또한 이에 의거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알았다.” 하였다. 이유시합이 또 아뢰기를, “전일 이두이(李豆伊)·이고라함(李古羅哈)이 내조(來朝)했을 때에는 창아(娼兒)를 주도록 명하셨는데, 또한 이 예를 의거하여 내려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輕、刑曹判書成俊及承旨等入侍。 上傳于柳時哈等曰：“盛寒遠路好來，予甚喜焉。” 柳時哈等啓曰：“聖德至重，無恙而來。” 又傳曰：“今日之宴，爲慰汝等也。 日氣甚寒，其各劇飲。” 柳時哈叩頭曰：“臣，李滿住之少子；沙乙豆，達罕之子也。 達罕使臣等輸款耳。” 傳曰：“達罕都督可得來乎？” 柳時哈啓曰：“火刺溫兀狄哈等逼居我境，日來侵軼，爲此疑懼，不敦棄所管人民決然上來爾。 往年臣之兄蒙賜鞍馬，感戴而還，今亦依此恩賜，深切望焉。” 上曰：“知道。” 柳時哈又啓曰：“前日李豆伊、李古羅哈來朝之時，命給娼兒，亦依此例賜給何如？” 傳曰：“第就坐。” 沙乙豆啓曰：“童請禮，吾之族屬也，伏望賜其子官爵。” 傳曰：“知道。” 酒行七遍，上命柳時哈、沙乙豆等進爵。 上問沙乙豆曰：“汝年幾何？” 對曰：“年今二十三歲。” 宴訖，賜物有差。</p>
--	---	---

	<p>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자리에 가서 앉아라.” 하였다. 사을두(沙乙豆)가 아뢰기를, “동청례(童請禮)는 우리의 족속(族屬)입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그의 아들에게 관작(官爵)을 내려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술이 일곱 순배 돌아간 뒤에 임금이 이유시함과 사을두 등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사을두에게 묻기를, “너의 나이가 몇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나이 지금 23세입니다.” 하였다. 잔치를 마치고서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2월 17일(갑오) 3번째기사</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이균(李均)과 검토관(檢討官) 이거(李据)가 아뢰기를, “신 등이 들으니, 근일에 응방(鷹坊)의 패인(牌人)을 가설(加說)하고 별시위(別侍衛)의 체아직(遞兒職)16956) 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흉년(凶年)을 당하여, 백관(百官)의 녹봉(祿俸)과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유생(儒生)들의 늬양 직전(廩養職田)도 모두 감생(減省)하였는데, 응방에는 체아를 가설해 주었으니, 신 등은 아마도 매와 개 때문에 성덕(聖德)에 누(累)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옳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르다. 응방을 설치한 것은 천신(薦新)16957) 및 양전(兩殿)16958) 의 일용(日用)의 진상(進上)을 위해서다. 별시위의 체아직이 남는 수(數)가 있기 때문에 옮겨서 준 것이다. 만약 응방(鷹</p>	<p>○御夕講。侍讀官李均、檢討官李据啓曰：“臣等聞近日加設鷹坊牌人，給別侍衛遞兒。今當年凶，百官祿俸、成均四學儒生廩養、職田皆減省，而鷹房則加設遞兒，臣等恐以鷹犬而累聖德也。”上曰：“爾言似是，實則非也。鷹房之設，爲薦新及兩殿日用進上也。別侍衛遞兒有餘數，故移給之。若廢鷹房令觀察使備進，則弊必及民。放鷹者類皆貧民，勞苦實多，不可不給料也。予豈好鷹犬而然也?”李据曰：“臣等久侍經幄，豈不知上之不好鷹犬</p>

	<p>坊)을 폐하고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준비하여 올리게 한다면 폐단이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방응(放鷹)16959) 을 하는 자들은 모두 가난한 백성들로서 노고(勞苦)가 실로 많으니, 요(料)16960) 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어찌 매와 개를 좋아하여 그렇게 하였겠는가?”</p> <p>하였다. 이거가 말하기를,</p> <p>“신 등이 오래도록 경약(經幄)16961) 에서 모셨는데, 어찌 성상께서 매와 개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금년은 흉년이어서 모든 용비(用費)를 모두 감생(減省)하였는데, 비록 이것이 비어서 남는 체아직이라 하더라도 만약 응방에 주지 아니하면 또한 국용(國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 등이 아뢰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 “주지 말라.”</p> <p>하였다.</p>	<p>乎? 但今年凶, 凡用費皆減省, 雖是空餘遞兒, 若不給鷹房, 則亦爲國用, 故臣等啓之耳。” 上曰: “勿給。”</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2월 18일(을미)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p> <p>“수원(水原)의 죄수 사노(私奴) 산이(山伊)와 종[奴] 박정(朴丁) 등이 세 번이나 절도(竊盜)를 범한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16964) 에 해당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전옥(典獄)의 죄수 김효손(金孝孫)이 사비(私婢) 옥비(玉非)를 넘어뜨리고, 안고 있던 아이를 부딪쳐 상하여 죽게 한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됩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 “그 아이의 나이가 겨우 한 살이었고, 또 일찍이 개에게 물리어 자못 상처(傷處)가 있었던 것으로, 우연히 김효손의 부딪침을 당하여 죽게 된 것인데, 김효손을 살인(殺人)으로 논하는 것은 정실(情實)이 용서할 만하니, 사형(死刑)을 감하게 하라.”</p>	<p>○乙未/受常參, 視事。 刑曹三覆啓: “水原因私奴山伊、奴朴丁等三犯竊盜罪, 律該絞待時。” 從之。 又啓: “典獄囚金孝孫顛置私婢玉非, 觸傷抱兒致死罪, 律該絞待時。” 上曰: “其兒年纔一歲, 且曾爲狗咬, 頗有傷處, 偶值孝孫之觸, 因而致死。 論孝孫以殺人, 情實可恕, 其減死。” 大司憲李瓊全啓曰: “三衛野人由平安道上來, 山川道路, 令虜備諳, 有乖謀國之計。 若因循不改, 則遂成例事, 莫若早爲之圖。 且彼實豺狼, 而命進爵於御榻之上, 未</p>

	<p>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삼위(三衛)의 야인(野人)들이 평안도(平安道)를 경유하여 올라오게 하는데, 산천(山川)과 도로(道路)를 오랑캐들로 하여금 낯낯이 알도록 하는 것은 국가(國家)를 도모하는 계책에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행하고 고치지 아니하면 마침내 예사(例事)가 될 것이니, 일찍이 도모하는 것만 같지 못한 것입니다. 또 저들은 실제로 시랑(豺狼)16965) 과 같은데, 어탑(御榻)16966) 위에다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신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사책(史策)에 그 사실을 쓰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p> <p>하였고, 우참찬(右參贊) 정낭종(鄭蘭宗)이 아뢰기를, “변장(變將)일 것 같으면 뜰 아래에서 접대(接待)하여 위엄(威嚴)을 보이는데, 전하(殿下)께서는 전내(殿內)에 접견(接見)하시고 술잔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다름이 있으나, 외이(外夷)16967) 를 대접하는 방법이 아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 또 조하(朝賀)와 조참(朝參)과 같은 때에 저들도 또한 반열(班列)에 따르게 하셨는데, 이 때를 당해서 우연히 접견하시는 것은 옳겠지만 하필 번거롭게 수레를 타고 경복궁(景福宮)에까지 거동하시어 접대하여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王)이 이르기를, “이미 서로(西路)를 열었으니, 마땅히 그 일의 기미(機微)를 살펴서 천천히 도모해야 할 것이고, 갑자기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내에서 인견(引見)하고 술잔을 올리게 하는 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옛부터 이미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다만 금후(今後)로는 선정전(宣政殿)에서 접대(接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p> <p>하였다.</p>	<p>穩，書之史策亦非美事。”右參贊鄭蘭宗啓曰：“邊將則於庭下接待，以示嚴威；而殿下接見於殿內，至令進爵。京外有異，待外夷之道恐不當如是。且如朝賀、朝參，彼亦隨班，當此之時，偶爾接見可也，何必至煩乘輿爲幸景福宮以待乎？”上曰：“已開西路，當審其事機而徐爲之圖，不可猝改也。引見殿內，使之進爵，非始於我，自古已然。但今後接待於宣政殿何如？”</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야인(野人)을 접대(接待)하는 데에 여러 의견이 한결같지 않다. 예종조(睿宗</p>	<p>○傳于承政院曰：“野人接待諸議不一。睿宗朝事，予未之知，世祖朝或</p>

(成化) 21년) 12월 18
일(을미) 2번째기사

朝)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나, 세조조(世祖朝)에서는 간혹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내가 후대(厚待)를 하는 것은 변경(邊境)을 편안케 하고자 한 것인데, 재상(宰相)으로서 헌의(獻議)하는 자가 이르기를, <야인에 대하여> 변장(邊將)의 접대는 매우 엄하게 하는데, 조정(朝廷)의 대우(待遇)가 압닐(狎昵)16968) 에 지나치다.’고 하니, 이 말이 어떠한가? 다만 인견(引見)하는 것이라면 하필 경복궁(景福宮)에서 해야 하는 것이겠느냐? 마땅히 선정전(宣政殿)에서 접대하도록 하라. 대사헌(大司憲)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위험스런 말로 마음을 두렵게 하였는데, 과연 그 말과 같다면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야인이 순종하여 와서 귀부하니, 제왕(帝王)의 큰 도량으로써 인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탑(御榻)에 술잔을 올리는 것은 설만(褻慢)16969) 한 듯하니, 신 등이 말하는 것은 저 무리로 하여금 친히 올리게 하지 말고, 다만 어탑 아래에 부복(俯伏)하게 하고,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받아서 위에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선정전은 섬돌이 좁아서 야인 및 시연관(侍宴官)이 모두 좌석에 나열해 앉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예조(禮曹)의 관원을 불러서 널리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파(李坡)·정괄(鄭恬)·김겸광(金謙光)·유지(柳輕)·권중린(權仲麟)이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施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命進爵。予之厚待，欲安邊境也。宰相獻議者乃曰：‘邊將接待之甚嚴，而朝廷待遇過乎狎昵。’此言何如？但其引見，則何必景福宮乎？當於宣政殿待之。大司憲以史筆恐動之，果如其言，將何如而可？”承旨等啓曰：“野人效順來附，以帝王大度，不得不引見，但進爵御榻，似褻慢。臣等謂勿令彼輩親進，但俯伏榻下，司饗院提調轉進於上何如？”但宣政殿陞狹小，野人及侍宴官未盡列坐，何以處之？”傳曰：“召領敦寧以上、議政府、禮曹，博議以啓。”韓明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尹壕、李坡、鄭恬、金謙光、柳輕、權仲麟議：“依所啓施行何如？”從之。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2월 19 일(병신) 1번째기사</p>	<p>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였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좌위(左衛)의 추장(酋長) 토로(土老)의 사송인(使送人) 동나칭가(童羅稱可)와 우위(右衛)의 부추장(副酋長) 나하(羅下)의 사송인 동거우동(童巨右同) 등 10인을 접견(接見)하였는데,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瑁)·덕원군(德原君) 이서(李曙)·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誠)·강양군(江陽君) 이숙(李瀟)·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남천군(南川君) 이쟁(李曄)·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노사신(盧思愼)·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좌찬성(左贊成) 이파(李坡)·좌참찬(左參贊) 김겸광(金謙光)·공조 판서(工曹判書) 권찬(權攢)·형조 판서(刑曹判書) 성준(成俊)·승지(承旨)·사관(史官)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동나칭가 등에게 전교(傳敎)하기를, “먼길에 잘 왔으니, 내가 기쁘다.” 하니, 동나칭가 등이 대답하기를, “성은(聖恩)이 지중(至重)하여 탈없이 왔습니다.” 하였다. 술이 일곱 순배 돌아가자 동나칭가와 동거우동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고, 이어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丙申/幸景福宮御思政殿接見左衛酋長土老使送童羅稱可、右衛副酋長羅下使送童巨右同等十人。 月山大君婷、齊安大君瑁、(德原君) [德源君]曙、烏山君澍、定陽君淳、雲山君誠、江陽君瀟、八溪君淨、南川君曄、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右議政李克培、領中樞府事盧思愼、領敦寧尹壕、西河君任元濬、左贊成李坡、左參贊金謙光、工曹判書權攢、刑曹判書成俊、承旨、史官等入侍。 上傳于羅稱可等曰：“遠路好來，予喜之。” 羅稱可等對曰：“聖恩至重，無恙耳。” 酒行七遍，命羅稱可、巨右同進爵，仍賜物有差。</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2월 22 일(기해)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 등이 와서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16971) 에는 이미 대신(大臣)을 보내어 진휼(賑恤)을 합시다 마는 영안도(永安道)·강원도(江原道)에는 실농(失農)한 여러 고을이 또한 많이 있으니, 그 진휼하는 모든 일을 조신(朝臣)을 보내어 부정 사실을 적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동진제장(東賑濟場)과 서진제장(西賑濟場)에 나아가서, 밥을 먹는 굶주린 백성들이 추워서 얼 것이 염려스러우니, 사복시(司僕寺)의 마의(馬衣)를 주어 추위를 막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戶曹判書李德良等來啓曰：“下三道則已遣大臣賑恤，永安、江原失農諸邑亦多有之，其賑恤諸事，遣朝臣摘奸何如？ 且東西賑濟場就食飢民，寒凍可慮，給司僕寺馬衣，禦寒何如？” 傳曰：“可。”</p>

	<p>“그렇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186권, 16년 (1485 을사 / 명 성화 (成化) 21년) 12월 26 일(계묘) 1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성절사(聖節使) 한찬(韓僎)을 인견(引見)하고 이르기 를, “경(卿)은 곡청(谷淸)을 보았느냐? 따로 바친 물건은 어떻게 여기던가?” 하니, 한찬이 대답하기를, “신이 북경에 도착한 이튿날에 곡청이 와서 보고 신에게 묻기를, ‘따로 바칠 물건은 수(數)를 갖추어 가지고 왔습니까?’라고 하기에, 신이 진열(陳列)하여 열어 보이니, 곡청이 말하기를, ‘대단히 정교(精巧)합니다. 이 앞서 한씨(韓氏) 의 족친이 내조(來朝)했을 때에는 반드시 사사로이 진헌(進獻)하는 것이 있었 는데, 재상(宰相)께서도 사사로이 드릴 물건이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외국(外國)의 배신(陪臣)이 사사로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처 음부터 준비해 오지 못했소. 한씨가 살았을 때에는 혹 사사로이 드리는 물건 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한씨도 이미 서거(逝去)하였으니, 사사로이 드릴 연고 가 없어졌소.’ 하였더니, 곡청이 이르기를, ‘재상의 행차인데, 어찌 바칠 만한 물건이 없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마침 곡청의 처소에 사사로운 선물을 청 (廳) 가운데에 싸서 두었는데, 곡청이 보고 가리키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무 슨 물건입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대인(大人)이 본국(本國)을 향한 정성이 지극하므로, 전하께서 간략하게 보잘것없는 물품이나 정성을 표하는 것이요.’ 하였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이는 실로 황은(皇恩)입니다. 내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그 물건을 받고 나서 말하기를 ‘재상께서 만약 정말 사사로이 드릴 물건이 없다면, 마땅히 이 물건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하므로, 신이 불가하다고 말하였으나, 곡청은 듣지 않고 포자(布子)와 식물(食 物)을 조금 나누어 황표(黃標)을 붙이고서 친히 받들고 대궐에 나아갔습니다. 또 뒷날 곡청이 한 장의 단본(單本)을 내어 신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명년</p>	<p>○癸卯/御宣政殿引見聖節使韓僎，曰： “卿見谷淸乎？ 別獻之物以謂何如？” 對曰：“臣到京翌日，淸來見。 問臣 曰：‘別獻之物，備數齋來乎？’ 臣陳列 開示，淸曰：‘十分精巧。 前此韓氏族 親來朝，則必有私進獻，宰相亦有私獻 物歟？’ 臣答曰：‘外國陪臣不可別有私 獻，故初不備來。 韓氏生時，或有私 進之物，今則韓氏已逝，私獻無緣 矣。’ 淸曰：‘宰相之行，豈無可獻之物 乎？’ 適谷淸處私人情之物裹置廳中， 淸見而指之曰：‘是何物歟？’ 臣答曰： ‘大人向本國懇款，故殿下略將薄物以 表誠耳。’ 淸曰：‘此實皇恩，我有何 功？’ 仍受其物，曰：‘宰相若果無私進 之物，則當以此物獻之。’ 臣以謂不 可，淸不從，略分布子食物，貼以黃標， 親奉詣闕。 又後日淸出一單本以示臣， 曰：‘明年別獻，可依此數。’ 臣見訖， 答曰：‘其中鐵錮錮金、虎牙之類，措 辦尤難。 金非本土之產，亦大人之所 知也。 虎是傷人之獸，捕獲亦難。 雖 幸而得獲，可用之牙，十無二三。 曾</p>

<p>(明年)에 따로 바치는 것은 이 수(數)에 의거하십시오.’ 하므로, 신이 보기를 마치고 대답하기를, ‘그 가운데에 철(鐵)과 강(鋼)과 금(金)과 호아(虎牙)의 종류는 장만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금은 본토(本土)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대인도 아는 바이고, 호랑이란 사람을 상(傷)하게 하는 짐승이므로 포획(捕獲)하기도 어렵고, 비록 다행히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쓸 만한 어금니는 열에 두세 개도 없으며, 일찍이 대인이 중국 조정에 아뢰므로 인하여 면제하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이니, 금후에 이와 같은 것은 아마도 수량대로 올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나도 깊이 그 폐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지(聖旨)로 부터 나온 것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조용히 준비하기 어려운 사정을 극력 말하였더니, 곡청이 사람을 물리치고 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조정의 일을 재상에게 전하여 말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지마는, 선인(先人)의 뜻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곡청(谷淸)은 곧 정동(鄭同)의 양자(養子)이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물건을 정말 마련하기가 어려우면 꼭 수량대로 모으지 말고, 그 밖의 수량을 더한 물건도 만일 다 마련할 수가 없으면, 반드시 수량에 구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因大人數奏獲蒙許免，今後如是，恐未依數以進。’ 淸曰：‘吾亦深知其弊。然出自聖旨，奈如之何?’ 臣從容極陳難備之狀，淸屏人與臣言曰：‘朝廷之事，傳說宰相，固不可也。然不忘先人之志，故言之耳。 【淸乃鄭同養子也。】 前件等物，果若難辦，不須執數。 其他加數物件，如不得盡辦，亦不必拘數。’”</p>
--	---